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105호

2025. 11. 6.(목)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제2025-3085호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
제2025-3117호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0
제2025-3127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5
제2025-3143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3
제2025-3151호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3

[행정예고]

제2025-3126호 서울특별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행정예고 ····· 48

◈ 고 시

제2025-596호 도시관리계획(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⑧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566
제2025-597호 월드컵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601
제2025-59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청계천) ····· 664
제2025-599호 강동구 성내동 382-6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고시 ····· 665
제2025-600호 서리풀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671
제2025-601호 매헌시민의숲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688
제2025-602호 위례지구 근린공원 15호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 702
제2025-603호 도시관리계획(본동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710
제2025-604호 불광동 170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729
제2025-605호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745

제2025-606호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779
제2025-607호 『이문 · 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문3구역) 결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801
제2025-608호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변경 고시 ····· 822
제2025-609호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839
제2025-610호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857
제2025-611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 880
제2025-612호 건축허가등 제한 지형도면 고시 ····· 886
제2025-613호 고덕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17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 지형도면 고시 ····· 895
제2025-614호 명일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14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 지형도면 고시 ····· 921

◈ 공 고

제2025-3068호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 943
제2025-3074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946
제2025-3079호 양천자원회수시설 환경상영향조사 결과 열람 공고 ····· 949
제2025-3082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 950
제2025-3083호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유치기관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 951
제2025-3098호 2025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공표 ····· 961
제2025-3108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 965
제2025-3109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970
제2025-3110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973
제2025-3111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979
제2025-3113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981
제2025-3118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983
제2025-3119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1001
제2025-3120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1025
제2025-3123호 도시관리계획(명동관광특구 등 68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 1065

제2025-3128호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 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 1123
제2025-3129호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 구역6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 1127
제2025-3130호 서울시 준공업지역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 ····· 1131
제2025-3142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정 공고 ····· 1134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규칙]

제110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 1144
제110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 ····· 1146

◈ 구 고 시

제2025-189호 도시계획시설사업(응봉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성동구) ····· 1148
제2025-162호 도시계획시설(개운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성북구) ····· 1157
제2025-11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은평구) ····· 1159
제2025-153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고시(동작구) ····· 1161
제2025-95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송파구) ····· 1164

◈ 구 공 고

제2025-1091호 소공 제4구역 및 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중구) ····· 1165
제2025-1100호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0·11지구 내 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최초) 의견청취 열람공고(중구) ····· 1178
제2025-1900호 항동지구 2호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구로구) ····· 1183
제2025-194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열람공고(동작구) ····· 1192
제2025-2157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문화공원2 조성계획결정(최초) 열람공고(서초구) ····· 1193
제2025-246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열람공고(강남구) ····· 1205

◈ 사업소고시

제2025-43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1208
제2025-440호 하천점용허가(미래한강본부) ····· 1209
제2025-44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1210
제2025-44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1210
제2025-44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1211

◈ 사업소공고

제2025-442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미래한강본부) ····· 1212

◈ 정 정

제2025-3094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정정) 열람공고 ····· 1239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085호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을 제한하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방법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상을 위촉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 방법 변경(안 제9조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2명 이상 →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상)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전화 : 2133-32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 ·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1) FAX: 02)2133-3228
(2) E-mail: whiteop @seoul.go.kr

(3) 우편: 40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재무과(☎02-2133-3228)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00호

이 조례(안)는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지방회계법」 제38조”를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을 “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소관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을 “시의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
3. “특별회계”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3.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9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	② ----------

장”이라 한다)은 행정(1)부시장이 맡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 ---------- ---------- ---------- ---------- ----------.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상임위원회 소속 시의원 2명 이상	1. ---------- -- 시의원 ----------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117호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당직 근무자의 당직 휴무 사용기한을 연장하여 휴식권을 보장하고, 미비하고 현 제도와 맞지 않는 부분들을 현행화하여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당직근무자의 당직휴무 사용기한 연장(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 (기존) 1) 숙직근무자는 숙직 종료기간이 속하는 날 휴무 가능
2) 당직근무(숙직 또는 일직) 종료시간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 가능
- (변경) 1) 일직근무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 가능
2) 숙직근무자는 숙직 종료기간이 속하는 날 휴무. 다만, 숙직 종료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나 숙직근무자가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숙직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 휴무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 1일을 지정하여 휴무 가능

나. 벌당직 근무자 관련 규정 추가(안 제6조제4항 신설)
- ‘복무 및 보안 관련규정 등을 위반하여 당직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당직근무자의 휴무’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

다. 당직실 비치 물품 중 ‘향토예비군비상소집 명부’와 ‘민방위대원비상소집 명부’를 제외(안 제11조제1항)

라. 당직자의 일반의무 중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일 때’의 연락대상 추가(안 제13조제3항)
- (기존) 관련부서에 연락
- (변경) 관련부서나 기관에 연락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총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전화: 2133-56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1) E-mail: woodframe@seoul.go.kr

(2)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총무과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총무과(☎02-2133-5610)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는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부서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일직근무자(재택일직근무자를 제외한다)를 근무가 끝난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부서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를 숙직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나 숙직근무자가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숙직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복무 및 보안 관련규정 등을 위반하여 당직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을 “제1항제3호의”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이를 지체없이 관련부서에 연락하거나”를 “지체없이 관련부서나 기관에 연락하거나 이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당직근무자의 휴식 등) ① (생 략)	제6조(당직근무자의 휴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는 숙직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대직자에게 업무 인계 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다만, 부서장은 당직근무(숙직 또는 일직) 종료시간이 공휴일 등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0일(공휴일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 부서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일직근무자(재택일직근무자를 제외한다)를 근무가 끝난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③ 부서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제외한다)를 숙직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나 숙직근무자가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숙직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④ 복무 및 보안 관련규정 등을

	위반하여 당직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실의 비품)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향토예비군비상소집 명부	<삭 제>
5. 민방위대원비상소집 명부	<삭 제>
6. 삭 제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명부에는 전화·도보·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② (생 략)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련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지체없이 관련부서나 기관에 연락하거나 이를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127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을 구체화하고, 중랑캠핑숲 등 공원시설의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 이용료 감면 세부 기준 마련(안 제11조제4항 신설)
나. 서울식물원 공원입장료 규정 삭제(안 별표 2)
다. 중랑캠핑숲 등 공원시설 이용료 조정 및 문구 정비(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정원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정원도시정책과(전화: 02-2133-20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 ·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1) FAX : 02-768-8876
(2) E-mail : bjh9825@seoul.go.kr
(3)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정원도시정책과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 서울특별시 정원도시정책과(☎02-2133-2017)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30퍼센트”를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0퍼센트”를 “100분의 50”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조제3항제4호”를 “제20조제4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조제3항”을 “제20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20조제3항제1호”를 “제20조제4항제1호”로, “이 규칙 제11조제4항제1호”를 “제11조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1조제4항제2호”를 “제11조제5항제2호”로 한다.

④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별표 3의 운동시설 이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공원입장료(제8조 관련)

공 원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서 울 대공원	동물원	어 른 1회 청소년 1회 어린이 1회	5,000 3,000 2,000	◦ 단체의 경우에는 3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입장료에 시설 이용료를 포함하거나 기업 및 단체와 협약에 따라 입장료나 이용료를 일부 부담하는 기획상품 등은 공원관리청이 따로 할인요금을 정할 수 있다.
	테마가든 (어린이동물원 및 장미원)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2,000 1,500 1,000	

※(주) ◦ 어린이 : 6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 어 른 : 19세 이상
◦ 단 체 : 30명 이상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별표 3]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공원별	종 별		사용 기준	금 액(원)		비 고
				체육경기	기타행사	
공 통	잔디광장		1㎡당, 2시간	20		1. 토, 공휴일은 이용료의 30% 가산 2. 야간은 주간이용료의 30% 가산 (토, 공휴일은 제외) 3. 2시간 초과시 시간당 이용료의 50% 4. 풋살장의 청소년 이용료는 30% 할인. 단, 어린이는 무료.(이 경우 청소년 및 어린이의 팀 구성원 비율이 50% 이상일 때 적용) 5. 테니스장의 월 개인연습 이용권은 해당 이용료에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6. 시간당 이용 및 이용료 징수 가능
	일반운동장(광장)			5	10	
	축구장	잔디	1회 2시간	120,000	300,000	
		인조잔디		55,000	110,000	
	풋살장	10인용		25,000		
		6인용		15,000		
	테니스장	실 외	1면당, 2시간당	8,000		
		실 내	1면당, 2시간당	25,000		
	파크골프장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4,000 3,000 2,000		
	파크골프장 물품대여료		클럽(1회당, 개당)	1,000		
	야영장 (캠핑장)	일반	야영장소 1회당	10,000		1회 이용은 1박 2일 기준
		전기료	전기이용료 1회당	3,000		
		캠프시설	바비큐존 · 1회당(4인용) · 1회당(8인용) · 1회당(12인용)	10,000 15,000 20,000		1차 11:00~16:00 2차 17:00~22:00
	야영장(캠핑장) 물품대여료		일반 야영텐트 1회당	5,000		1회 이용은 1박 2일 기준
			1인용 매트 1회당	1,000		
	사진 · 영상 촬영 및 녹화		1시간당 초과 시간당	13,000 6,500		영화, TV드라마, CF촬영 등 영리목적 촬영에 한함. 다만,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 가능.
	강의실		1㎡당, 1시간당	200		1. 회의실 등 강의실과 유사한 형태나 용도를 가진 시설 포함 2.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3. 냉난방기를 가동할 때에는 시설의 공간별로 요금을 정하여 별도 산정
	공연장 (복합문화공간 포함)		1㎡당, 1시간당	100		1.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2. 실내공간에 한함. 단, 필요한 경우 옥상공간을 포함 3. 냉난방기를 가동할 때에는 시설의 공간별로 요금을 정하여 별도 산정

공원별	종 별	사용 기준	금 액(원)		비 고
			체육경기	기타행사	
	국궁장	1일(3시간)	3,000		
		1개월	30,000		
	입장권 발매행사	입장권을 발매 하는 유료행사	입장권 발매총액의 10%		
	◦ 공원의 시설이용료는 공원관리청이 정하며 위탁관리자가 공원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 전에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공원관리청은 위탁관리자가 신고한 이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공원별	종 별	사용 기준	금 액(원)		비 고
			체육경기	기타행사	
남 산 공 원	남산 차량통행료	승합자동차 (16인승 이상)	6,000		1. 순환버스·시티투어버스·긴급 및 통행허가차량·장애인콜택시·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은 무료. 2. 환경친화적 차량(CNG,CNG하이브리드, 전기사용자동차) 또는 2015년 이후 제작된 자동차는 남산 차량통행료의 50%를 감면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4,000		
서울 대공원	성인 야구장	1일	80,000	200,000	1. 토, 공휴일은 이용료의 30% 가산 2. 야간은 주간이용료의 30% 가산(토. 공휴일은 제외) 3. 야간은 전기료 별도 산정 4. 전광판 이용시 전광판 이용료 별도 산정 5. 리틀야구장은 주간만 운영
		3시간	50,000		
	리틀 야구장	1일	40,000	100,000	
		3시간	25,000		
	서울대공원 캠핑장	어 른 1회당	2,000		
		청소년 1회당	1,500		
		어린이 1회당	1,000		
어린이 대공원 · 서울숲	야외무대 이용료	주간 1회 2시간	100,000		1. 공원이용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 가능 2. 야간은 주간이용료의 100% 가산 3.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이용료의 50%
중랑 캠핑숲	청소년 체험의 숲	어 른 1회당	10,000		평일 단체 이용시 30% 할인
		청소년 1회당	7,000		
		어린이 1회당	5,000		
	캠핑장	일반/오토캠핑	30,000		전기료 별도 산정
		글램핑	90,000		
	중랑캠핑장 야영텐트	1회당	10,000		
불암산	더불어숲 (챌린지 로우코스)	어른 1회당	10,000		1. 평일 단체 이용시 30% 할인(30인 이상) 가. 단체 할인 적용시 별도 할인 미적용 (코스연계 할인 미적용) 2. 2개 코스 이상 이용시 10% 할인 3. 챌린지액티브코스는 터널메이즈와 짚코스터 또는 플라잉팍스로 구성되며 개별시설 이용료는 다음과 같음 가. 터널메이즈 : 어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
		청소년 1회당	7,000		
		어린이 1회당	5,000		
	더불어숲 (챌린지 하이코스)	어른 1회당	8,000		
		청소년 1회당	6,000		
		어린이 1회당	4,000		
	더불어숲 (챌린지	어른 1회당	8,000		
		청소년 1회당	6,500		

공원별	종 별	사용 기준	금 액(원)		비 고
			체육경기	기타행사	
	액티브코스)	어린이 1회당	5,000		나. 짚코스터 또는 플라잉팍스 : 어른 3,000원, 청소년 2,500원, 어린이 2,000원
일자산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오토/데크캠핑	25,000		전기료 별도 산정
초안산	캠핑장	일반캠핑 (주차분리형)	25,000		1. 전기료 별도 산정 2. 주차요금 포함(1면당 1대) 가. 추가 주차 시 별도 산정
		오토/데크캠핑	28,000		
		캐빈하우스	30,000		
천왕산	캠핑장	일반/오토캠핑	30,000		1. 전기료 별도 산정 2. 주차요금 포함(1면당 1대)
앵봉산	캠핑장	일반/오토캠핑	30,000		전기료 별도 산정
		글램핑	90,000		

○ 어린이 : 6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 어 른 : 19세 이상
○ 단 체 : 30명 이상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 주·야간 구분
▷(11월 ~ 2월) — 주간 : 09:00 - 18:00 야간 : 18:00 - 24:00
▷(3월 ~ 10월) — 주간 : 09:00 - 19:00 야간 : 19:00 - 24: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입장료 등의 감면) ①·② (생 략)	제11조(입장료 등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별표 2에 따른 입장료를 감액할 수 있다.	③ ----------.
1. 조례 제20조제2항제1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료의 30퍼센트 감액	1. ---------- 100분의 30 --
2. 조례 제2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료의 50퍼센트 감액	2. ---------- 100분의 50 --
<신 설>	④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별표 3의 운동시설 이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관리청은 조례 제20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 제20조제4항제4호----------.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⑤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 제20조제4항----------.
1. 점용료의 전액 면제 : 조례 제2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이 규칙 제1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 ---------- 제20조제4항제1호---------- 제11조제5항제1호----------
2.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 제11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 제11조제5항제2호----------

[별표2] 공원입장료(제8조 관련)

공 원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서 울 대공원	동물원	어 른 1회 청소년 1회 어린이 1회	5,000 3,000 2,000	◦ 단체의 경우에는 3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입장료에 시설 이용료를 포함하거나 기업 및 단체와 협약에 따라 입장료나 이용료를 일부 부담하는 기획상품 등은 공원관리청이 따로 할인요금을 정할 수 있다.
	테마가든 (어린이동물원 및 장미원)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2,000 1,500 1,000	
서 울 식물원	온실 및 주제정원	어 른 1회 청소년 1회 어린이 1회	5,000 3,000 2,000	

※(주) ○ 어린이 : 6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 어 른 : 19세 이상 65세 미만
○ 단 체 : 30명 이상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별표3]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공원별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체육경기	금 액(원) 기타행사	비 고
공 통	잔디광장		1㎡당, 2시간	20		1. 토, 공휴일은 이용료의 30% 가산 2. 야간은 주간이용료의 30% 가산 (토, 공휴일은 제외) 3. 2시간 초과시 시간당 이용료의 50% 4. 풋살경기장의 청소년 이용료는 30% 할인. 단, 어린이는 무료.(이 경우 청소년 및 어린이의 팀 구성원 비율이 50% 이상일 때 적용) 5. 테니스장의 월 개인연습 이용권은 해당 이용료에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6. 시간당 이용 및 이용료 징수 가능
	일반운동장(광장)			5	10	
	축구장	잔디	1회 2시간	120,000	300,000	
		인조잔디		55,000	110,000	
	풋살경기장	10인용		25,000		
		6인용		15,000		
	테니스장	실 외	1면당, 2시간당	8,000		
		실 내	1면당, 2시간당	25,000		
중랑 캠핑숲	청소년 체험의 숲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10,000 7,000 5,000		평일 단체 이용시 30% 할인
	캠핑장		일반/오토캠핑	25,000		전기료 별도 산정
			글램핑	90,000		
	중랑캠핑장 야영텐트		1회당	10,000		
천왕산	캠핑장		일반/오토캠핑	30,000		주차요금 포함(1면당 1대)
			전기이용료 1회당	5,000		

○ 어린이 : 6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 어 른 : 19세 이상 65세 미만
○ 단 체 : 30명 이상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 주·야간 구분
▷(11월 ~ 2월) — 주간 : 09:00 - 18:00 야간 : 18:00 - 24:00
▷(3월 ~ 10월) — 주간 : 09:00 - 19:00 야간 : 19:00 - 24:00

[별표2] 공원입장료(제8조 관련)

공 원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서 울 대공원	동물원	어 른 1회 청소년 1회 어린이 1회	5,000 3,000 2,000	◦ 단체의 경우에는 3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입장료에 시설 이용료를 포함하거나 기업 및 단체와 협약에 따라 입장료나 이용료를 일부 부담하는 기획상품 등은 공원관리청이 따로 할인요금을 정할 수 있다.
	테마가든 (어린이동물원 및 장미원)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2,000 1,500 1,000	

※(주) ○ 어린이 : 6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 어 른 : 19세 이상
○ 단 체 : 30명 이상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별표3]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공원별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체육경기	금 액(원) 기타행사	비 고
공 통	잔디광장		1㎡당, 2시간	20		1. 토, 공휴일은 이용료의 30% 가산 2. 야간은 주간이용료의 30% 가산 (토, 공휴일은 제외) 3. 2시간 초과시 시간당 이용료의 50% 4. 풋살장의 청소년 이용료는 30% 할인. 단, 어린이는 무료.(이 경우 청소년 및 어린이의 팀 구성원 비율이 50% 이상일 때 적용) 5. 테니스장의 월 개인연습 이용권은 해당 이용료에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6. 시간당 이용 및 이용료 징수 가능
	일반운동장(광장)			5	10	
	축구장	잔디	1회 2시간	120,000	300,000	
		인조잔디		55,000	110,000	
	풋살장	10인용		25,000		
		6인용		15,000		
	테니스장	실 외	1면당, 2시간당	8,000		
		실 내	1면당, 2시간당	25,000		
중랑 캠핑숲	청소년 체험의 숲		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	10,000 7,000 5,000		평일 단체 이용시 30% 할인
	캠핑장		일반/오토캠핑	30,000		전기료 별도 산정
			글램핑	90,000		
	중랑캠핑장 야영텐트		1회당	10,000		
천왕산	캠핑장		일반/오토캠핑	30,000		1. 전기료 별도 산정 2. 주차요금 포함(1면당 1대)

○ 어린이 : 6세 이상 12세 이하
○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 어 른 : 19세 이상
○ 단 체 : 30명 이상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 주·야간 구분
▷(11월 ~ 2월) — 주간 : 09:00 - 18:00 야간 : 18:00 - 24:00
▷(3월 ~ 10월) — 주간 : 09:00 - 19:00 야간 : 19:00 - 24:0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143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시립청소년시설 개·폐소, 사업 등 변경사항을 현행화하며, 시립청소년센터 세부 조직·정원 규정 탄력성 확보를 통한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시설 운영 종료내용·명칭변경 현행화(안 제3조)
1) (신규 시설) 청소년음악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추가
2) (운영 종료) 근로청소년복지관 운영 종료에 따른 조문 삭제
3) (명칭 변경) 청소년직업체험센터 → 청소년미래진로센터

기 존	개 정
제3조(사업영역) ② 근로청소년복지관은 근로청소년의 자아개발과 복지 향상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하 생략〉	**제3조(사업영역)** ②항 조문삭제 〈이하 동일〉
③ ~ ⑤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기 존	개 정
⑥ 청소년직업체험센터는 청소년의 다양한 수준에 맞는 직업체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직업에 대해 이해하고, 청소년 스스로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청소년미래진로센터는 청소년의 다양한 수준에 맞는 미래진로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진로에 대해 이해하고, 청소년 스스로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맞춤형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보급	1. 청소년 맞춤형 미래진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보급
2. 대안적 삶과 진로 탐색을 위한 대안교육과정 운영	2. 〈현행과 동일〉
3. 청소년의 창의적 직업체험활동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3. 청소년의 창의적 진로체험활동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4. 미래 사회를 살아갈 청소년을 위한 혁신적 학습생태계 구축	4. 〈현행과 동일〉
5. 그 밖에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미래진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 ⑫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신 설〉	⑬ 청소년음악센터는 청소년 음악활동을 지원·육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 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청소년의 창의성 향상을 위한 음악·창작 프로그램 운영

기 존	개 정
	3.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음악 프로그램 운영 4. 청소년 음악교육 및 창작활동에 관한 동향조사 및 정책연구 5. 청소년을 위한 음악공연 프로그램 기획 · 운영 6. 그 밖에 청소년음악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 존	개 정
〈신 설〉	⑭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자립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 밖 청소년 보호 · 자립지원 사업 2. 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발굴 및 안정적인 주거 지원 3. 자립 훈련 프로그램 제공, 퇴소 후 사후관리 등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4. 자립지원수당지원 대상자 및 쉼터 퇴소 청소년 임대주택 대상자 지원 · 관리 5. 그 밖에 자립지원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청소년시설 조직 · 정원 현행화(안 제7조 및 별표1 · 2)

1) 대내외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 및 정원을 기존 규칙(별표)에서 삭제하고, 매년 ‘사업계획’ 서울시 승인 절차로 일원화

다. ‘노동청소년 임대아파트’ 사업 종료에 따른 조문 삭제(안 제8장)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청소년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 ·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1) FAX: 02)2133-1430

(2) E-mail: choi599@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5층 청소년정책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02-2133-4113)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3143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청소년시설운영자”를 “청소년시설 운영자”로, “경우「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경우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직업체험센터”를 “청소년미래진로센터”로, “직업체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직업에 대해 이해하고”를 “미래진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진로에 대해 이해하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직업체험”을 “미래진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직업체험활동”을 “진로체험활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청소년직업체험센터”를 “청소년미래진로센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청소년음악센터는 청소년 음악활동을 지원·육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청소년의 창의성 향상을 위한 음악·창작 프로그램 운영
3.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음악 프로그램 운영
4. 청소년 음악교육 및 창작활동에 관한 동향조사 및 정책연구
5. 청소년을 위한 음악공연 프로그램 기획·운영
6. 그 밖에 청소년음악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⑭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자립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 밖 청소년 보호·자립지원 사업
2. 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발굴 및 안정적인 주거 지원
3. 자립 훈련 프로그램 제공, 퇴소 후 사후관리 등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4. 자립지원수당지원 대상자 및 쉼터 퇴소 청소년 임대주택 대상자 지원·관리
5. 그 밖에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제1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 상 조직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별도의 조직을 구성”을 “업무 수행상 연내 조직·정원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별도 조직·정원을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청소년시설의 조직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사업계획 수립 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운영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대표 : 65세”를 “대표: 65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직원 : 60세”를 “직원: 60세”로 한다.

제28조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29조 중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30조 중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5조 중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로 한다.

제36조제1호 중 “비상 시”를 “비상시”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운영자가 수립하는 사업계획은”을 “운영자는”으로, “감안하여”를 “감안하여 사업계획을”로 한다.

제8장(제50조부터 제59조까지)을 삭제한다.

제6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운영규정 및 기록물관리

제60조 앞의 “제9장 운영규정 및 기록물관리”를 삭제한다.

제61조제1항 중 “기록물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을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및”을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별칭 사용) 청소년시설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별표1에 따른 시설명 외에 별칭을 함께 명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조(별칭 사용) 청소년시설 운영자---------- 경우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
제3조(사업영역) ① (생 략)	제3조(사업영역)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로청소년복지관은 근로청소년의 자아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 제>
1. 근로청소년들의 건전한 생활관을 정립시키기 위한 교육	
2. 근로청소년들의 여가선용과 능력개발을 위한 정서함양교육	
3. 근로청소년들의 건전한 직업관 확립을 위한 상담 및 지원	
4. 근로청소년들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생활유도를 위한 복지후생	
5. 청소년의 진로·취업프로그	

램 개발·운영 및 노동에 대한 권익보호활동	
6. 그 밖에 근로청소년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청소년직업체험센터는 청소년의 다양한 수준에 맞는 직업체험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직업에 대해 이해하고, 청소년 스스로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청소년미래진로센터---------- 미래진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진로에 대해 이해하고----------.
1. 청소년 맞춤형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보급	1. ---------- 미래진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청소년의 창의적 직업체험활동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3. ---------- 진로체험활동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 청소년미래진로센터 ----------
⑦ ~ ⑫ (생 략)	⑦ ~ ⑫ (현행과 같음)
<신 설>	⑬ 청소년음악센터는 청소년 음악활동을 지원·육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청소년의 창의성 향상을 위한 음악·창작 프로그램 운영 3.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음악 프로그램 운영 4. 청소년 음악교육 및 창작활동에 관한 동향조사 및 정책연구 5. 청소년을 위한 음악공연 프로그램 기획·운영 6. 그 밖에 청소년음악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⑭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자립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 밖 청소년 보호·자립 지원 사업 2. 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발굴 및 안정적인 주거 지원 3. 자립 훈련 프로그램 제공, 퇴소 후 사후관리 등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4. 자립지원수당지원 대상자 및 쉼터 퇴소 청소년 임대주택 대상자 지원·관리
	5. 그 밖에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운영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조례 별표2의 범위에서 1개월 단위로 부과·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 별표 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조직) ① 청소년시설의 조직은 별표1과 같이 시설장 밑에 시설운영을 총괄·보좌하는 부장을 두고 업무에 따라 팀을 설치·운영한다.	제7조(조직) ① 청소년시설의 조직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사업계획 수립 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상 조직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별도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 업무 수행상 연내 조직·정원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별도 조직·정원을 운영----------.
③ 청소년시설의 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표2와 같다.	<삭 제>
제8조(인사) 서울특별시장(이하	제8조(인사) 시장----------

“시장”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하여 청소년시설의 종사자의 채용, 전보, 승진 등 인사에 관하여 기준을 정한다.	---------- ---------- ---------- ---------- ---------- ---------- ---------- --------.
제12조(정년기준) 운영자는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정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1. 청소년시설의 대표 : 65세 2. 대표를 제외한 직원 : 60세	제12조(정년기준) ---------- ---------- ---------- ----------. 1. --------- 대표: 65세 2. ---------- 직원: 60세
제28조(퇴직급여) 시설의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제28조(퇴직급여) ---------- --- 대해서---------- ----------.
제29조(계약) 청소년시설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제29조(계약) ---------- ----------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
제30조(예산·결산·회계관리) 예	제30조(예산·결산·회계관리) -

산·결산·회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1조(재산관리) ①·② (생 략)	제31조(재산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청소년시설의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제32조(물품관리) ①·② (생 략)	제32조(물품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운영자는 청소년시설의 물품관리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
제35조(위험 예방)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에 따라 운영자는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매	제35조(위험 예방)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

달 실시하는 정기 안전점검 외에도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시설물, 개인보호장비, 응급 처치함 등 재해 및 위험의 예방과 안전 조치를 위한 시설·장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 ---------- ---------- ---------- ---------- -------.
제36조(안전 교육) 운영자는 청소년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안전 교육) ---------- ---------- ---------- ---------- ----------.
1. 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 및 비상 시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1. ---------- 비상시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7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생략)	제37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자가 수립하는 사업계획은 시설의 규모,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 ----------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 ---.
제8장 노동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삭 제>
제50조(입주대상자) 노동청소년 임대아파트(이하 “임대아파트”	<삭 제>

라 한다)의 입주대상자는 시에 소재하는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미혼여성노동자로 한다.		
제51조(입주 신청) ①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각 사업장 대표의 추천을 받아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운영자에게 입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임대아파트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소속 사업장 대표의 입주희망자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삭제	<삭 제>	
제52조(입주자 선정) ① 운영자는 입주자 선정 시 제50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중 연령이 낮은 생산직 노동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하되, 자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삭 제>	

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노동자 4. 그 밖의 노동청소년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1.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을 동반하여 입주하는 사람 2.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③ 운영자는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이를 게시·공고하고 추첨에 의하여 동호수를 결정한다.		
제53조(임대계약 및 입주) ① 제52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지정기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임대아파트 입주자관리카	<삭 제>	

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임대보증금 등 징수) 운영자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등으로 구분하여 부과·징수한다.	<삭 제>	
제55조(임대보증금) ①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대계약체결 전 운영자가 정하는 금융기관에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사람이 계약체결 후 임대료 그 밖에 공공요금 등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임대보증금으로 이를 대체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 납부하였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 부족분을 재예치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9조제2항단서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분할납부는 2개월 기간범위 내에서 운영자가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56조(임대료) ① 임대아파트에	<삭 제>	

입주한 사람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운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대료를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대료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임대료 납입고지서는 납부마감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7조(공공요금 등) ① 공공요금 등은 관계기관에서 고지되는 단위별로 납부하되 호별로 그 사용자가 균등 부담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없는 호에 대하여 공공요금은 운영자가 부담한다.	<삭 제>	
제58조(임대차기간) ① 임대아파트의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만료 후 계속 임대차를 원하는 경우에는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신규입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계속 임대차 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간만료 30일 전까	<삭 제>	

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임대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입주대기자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만료 20일 전까지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 후 계약만료 또는 계약만료 전 퇴거 희망 시 매월 15일 이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계약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확인 등) 운영자는 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장의 대표에게 입주자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임대아파트 배치 근무인력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장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9장 운영규정 및 기록물관리	<삭 제>
<신 설>	제8장 운영규정 및 기록물관리
제61조(기록물의 관리) ① 운영자는 청소년시설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준용하여 분류·보관 관리하여	제61조(기록물의 관리) ① ----------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

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기록물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151호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대상 규정 신설
나. 용어 통일 및 중복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아이돌봄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담당관(전화 : 02-2133-4803, FAX : 02-2133-0749, E-mail : 201511036@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
(1) 팩스(FAX) : 02-2133-0749
(2) 이메일(E-mail) : 201511036@seoul.go.kr
(3)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아이돌봄담당관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
다.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아이돌봄담당관(☎ 02-2133-4803)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4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이용대상)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그 동반 아동으로 한다.

1.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 자영업자 또는 학교 재학생

제3조(종전의 제2조) 중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조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료**

구분	대 상	이용요금
이용료	아동 (0세 ~ 9세)	5,000원/인/회
* 돌봄서비스 이용 시 돌봄비 2,000원/인/회 추가		

※ 우리동네키움센터(초등학생 전용시설)와 결합형인 서울형 키즈카페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전학년 이용 가능

※ 주된 용도를 달리하고 있는 시설 안의 어린이 이용 공간을 서울형 키즈카페로 편입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기존 이용대상 및 이용요금 유지 가능

신 · 구조문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신 설></td><td>제2조(이용대상)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그 동반 아동으로 한다.
1.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직장의 종사자 또는 학교 재학생</td></tr>
<tr><td>제2조(이용료)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료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td><td>제3조(이용료) 조례 ----------
----

----------.</td></tr>
<tr><td>제3조 (생 략)</td><td>제4조 (현행 제3조와 같음)</td></tr>
<tr><td>[별표]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료
<table><tr><th>구분</th><th>대 상</th><th>이용요금</th></tr><tr><td>입장료</td><td>아동
(0세 ~ 9세)</td><td>5,000원/인/회</td></tr><tr><td colspan="3">* 돌봄서비스 이용 시 돌봄비 2,000원/인/회 추가</td></tr></table></td><td>[별표]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료
<table><tr><th>구분</th><th>대 상</th><th>이용요금</th></tr><tr><td>이용료</td><td>아동
(0세 ~ 9세)</td><td>5,000원/인/회</td></tr><tr><td colspan="3">* 돌봄서비스 이용 시 돌봄비 2,000원/인/회 추가</td></tr></table></td></tr>
</table>

※ 우리동네키움센터(초등학생 전용시설)와 결합형인 서울형 키즈카페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전학년 입장 가능	※ 우리동네키움센터(초등학생 전용시설)와 결합형인 서울형 키즈카페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전학년 이용 가능
※ 상설형이 아닌 가변형, 비상설형인 서울형 키즈카페의 경우에는 시울특별시장이 이용료를 별표 1의 이용료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행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126호

서울특별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와 관련「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의2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서울특별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25개 구)
 다. 시간적 범위 : 2026년 ~ 2035년(10년)
 라. 계획수립기관 : 서울특별시

2.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5. 11. 6. ~ 2025. 12. 4. (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및 인터넷 게재
 다. 공고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 인터넷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참고

3. 의견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 공고기간 내
 나. 제출방법 : 주민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로 방문(우편)제출,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이메일 (20191202120007@seoul.go.kr, fax 2133-1043)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02-2133-38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시 가 축 분 뇨 관 리 기 본 계 획

기 후 변 화 영 향 평 가 서

2025. 10.

서울특별시

목 차

제 1 장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 1
1.1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 3
1.2 계획의 개요 ····· 4
1.3 평가대상지역의 기후현황 및 전망 ····· 16
1.4 결정된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 68

제 2 장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 77
2.1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 79
2.2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적정성 ····· 130

제 3 장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 149
3.1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 151
3.2 기후위기 적응 전략의 적정성 ····· 176

제 4 장 결론 ····· 249

제 5 장 부록 ····· 253
5.1 평가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 255
5.2 용어해설 ····· 258
5.3 평가서 작성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 261
5.4 기타자료 ····· 262

제 1 장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1.1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1.2 계획의 개요
1.3 평가대상지역의 기후현황 및 전망
1.4 결정된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제 1 장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1.1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 서울시는 타 시도에 비해 가축 사육 두수가 적은 편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가축을 사육하고 있어 가축사육 현황, 분뇨 배출량 및 처리 실태 등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장기적인 대응 필요하다.

◦ 가축분뇨의 비점오염원 관리, 악취 저감, 자원화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계환경의 목표기준을 달성하고 쾌적한 자연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 본 계획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관련 [별표2]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한다.

◦ 한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2] 에 따른 대상 계획에 해당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표 1.1-2> 참조).

<표 1.1 - 1>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
제23조(기후변화영향평가)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소관 정책 또는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표 1.1 -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

구 분	관련 법령
라. 폐기물·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아목

자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2]

구 분	관련 법령
1. 정책계획 아. 폐기물·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1.2 계획의 개요

1.2.1 계획의 배경

◦ 본 계획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10년마다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으로서, 2023년 8월 16일 법률 개정에 따라 제7조의 가축분뇨 실태조사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법적 의무가 강화되었다.

◦ 서울시는 타 시도에 비해 가축 사육 두수가 매우 적은 편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가축을 사육하고 있어 가축사육 현황, 분뇨 배출량 및 처리 실태 등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장기적인 대응 필요하며, 가축분뇨의 비점오염원 관리, 악취 저감, 자원화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계환경의 목표기준을 달성하고 쾌적한 자연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1.2.2 계획의 목적

◦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은 서울시 내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자원화 촉진을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또한 본 계획은 서울시 여건에 맞는 가축분뇨 처리체계 구축, 자원화 촉진, 악취 저감, 지속가능한 도시축산 환경 조성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며, 법령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1.2.3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가. 추진경위

◦ 2024. 09. : 서울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용역 착수

◦ 2025. 02.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25. 03. : 서울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보고

◦ 2025. 06.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2025. 07. 18 ~ 07. 25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서면심의)

◦ 2025. 07. 31 : 서울시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

◦ 2025. 08. 07 ~ 08. 20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나. 향후계획

◦ 2025. 09. :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서 포함) 협의 요청

◦ 2025. 11. :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협의 완료(예정)

1.2.4 계획의 개요

계 획 명	◦서울시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공간적 범위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대상지
시간적 범위	◦기준연도 2026년 ◦목표연도 : 1단계 2029년 / 2단계 2032년 / 3단계 2035년 ◦타당성검토 : 2031년
내용적 범위	◦관할구역의 지리적 환경, 오염원 및 가축사육 현황 등에 관한 개요 ◦연도별·구역별·축종별 사육 현황과 장래 사육 예정인 가축의 마릿수 ◦가축별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장래 예상 발생량 ◦가축별 분뇨의 가축별 수집·운반·처리 현황 및 처리 계획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 ◦축산농가의 가축분뇨관리 현황 및 개선계획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실태조사 실시 ◦그 밖에 가축분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계획시행기관	◦서울특별시
계획승인기관	◦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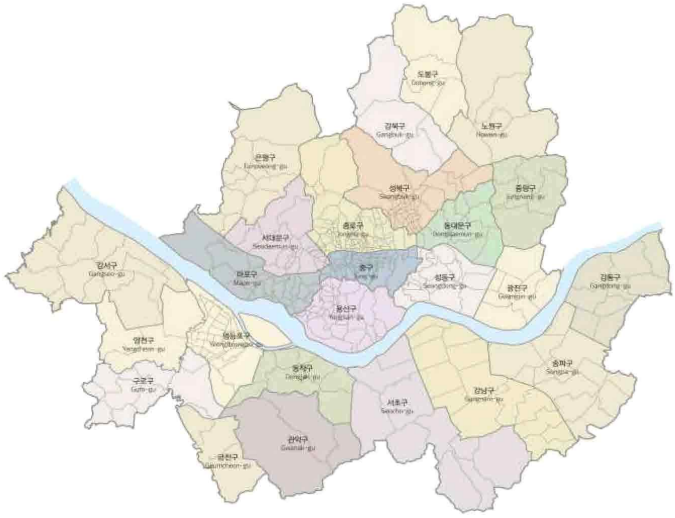

1.2.5 계획의 내용

가. 계획목표

◦ 기본목표 : 서울시 현실적 가축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및 수질보전 선도

◦ 실행목표 : 가축사육 제한과 점진적 개체수 감소로 분뇨발생 감소

나. 가축분뇨 적정처리 계획

1) 현 황

가) 가축사육 제한지역

◦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통적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생활환경보전·수질보전 목적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제한구역의 범위(전 지역 vs. 일부 지역), 거리 등 세부 지정 기준, 예외 허용 및 허가제 운영 방식, 기존 농가에 대한 특례 등에서 구별로 차이가 있다.

◦ 일부 자치구(예: 종로구, 마포구, 관악구 등)는 관할 전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실상 모든 가축사육을 금지하고 있다.

나) 서울시 가축사육 현황(2024년 서울시 자체관리 기준)

◦ 서울시는 2024년 기준 총 7개의 축사 중, 허가대상에 해당되는 경북농장 1개소는 폐쇄되어 최종 6개소의 신고시설을 운영 중이며, 가축 종은 젖소, 사슴, 개로 조사되었다.

◦ 자치구별로 성동구 1개소, 서초구 4개소, 강북구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폐쇄시설(서초구 경북농장 1개소)을 제외하고 서초구에 4개의 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 성동구에 서울숲공원 내 관상용 사슴 사육시설 1개소, 서초구에서는 경찰특공대에서 업무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고 있으며, 젖소 사육시설 1개소, 사슴 사육시설 2개소를 운영 중이며, 강북구의 북서울꿈의숲 내에도 관상용 사슴 사육시설 1개소를 운영 중이다.

<표 1.2.5 -1> 서울시 자치구별 가축사육 현황

자치구	소재지	시설명	축종	사육두수	시설규모(㎡)	분뇨처리방법	비고
성동구	성수동1가 685-20	서울숲공원	사슴	26	2,770	퇴비	
서초구	방배동 산184	경찰특공대	개	31	1,009	정화	
	원지동 산 72	경북농장	한우	20	1,564	위탁	폐쇄
	내곡동 228-1	서초목장	젖소	10	574	위탁	
	우면동 192	세한사슴	사슴	23	396	퇴비	
	원지동 225-2	새원사슴	사슴	3	330	퇴비	
강북구	번동 90	북서울꿈의숲	사슴	14	2,511	퇴비	

나) 가축분뇨 처리 현황

◦ 서울시는 상업적 축산농가가 극소수(2024년 기준 소·사슴 등)로 가축분뇨 발생량이 매우 적은 편이다.

◦ 실제로 환경부 공식 통계에서도 서울시의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량은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가축분뇨는 서울시 공공분뇨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할 수 있으나, 현재 가축사육시설 대부분 퇴비화, 폐기, 정화 등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다) 공공처리시설

◦ 서울시 내 분뇨처리가 가능한 공공처리시설로는 4개의 물재생센터(중랑, 난지, 서남, 탄천) 중 분뇨처리 기능이 없는 탄천물재생센터를 제외한 3개 센터가 위치한다.

◦ 탄천은 과거 상수원 보호 문제와 지역 정서, 그리고 인근 초등학교(200m 이내) 등 교육환경보호법상 법적 제한으로 인해 분뇨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3개 센터는 가축뿐만 아니라 전체 분뇨를 자치구별로 집결 및 처리하는 시설로, 중랑물재생센터는 서울 동북부 9개 자치구 전역과 종로구, 의정부시 일부 지역을 담당하며 처리용량이 가장 크다.

난지물재생센터는 서울 서북부 4개 자치구 전역과 일부 지역(종로구, 중구, 성동구, 고양시)를 담당하고 있으며, 서남물재생센터는 서울 서남부 9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1.2.5 - 2> 공공처리시설 현황

시설명	처리용량 (분뇨, ㎘/일)	처리량(2024년 기준) (분뇨 및 정화조, ㎘/일)	이용 자치구
중랑물재생센터	4,000	4,528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종로구(일부), 의정부시(일부)
난지물재생센터	4,500	3,292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종로구(일부), 중구(일부), 성동구(일부), 고양시(일부)
서남물재생센터	4,000	4,000	용산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2) 서울시 가축분뇨 적정 관리계획 방향성

가) 정책방향 및 기본방침

◦ 서울시 내에서 가축분뇨를 처리 및 관리하는 유형은 개별 자체처리(정화, 퇴비, 액비 등), 위탁처리(단독, 연계 등)로 구분, 처리 방법은 시설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서울시의 도시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가축분뇨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토양 및 수질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 축종 및 축산농가, 규모별 장래 사육두수, 가축분뇨 예상 발생량, 축산계 수질오염총량 및 비점오염원 배출현황 등을 기반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적정 처리 목표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축종별 관리 유형 및 중점관리사항

(1) 보관 및 처리 원칙

◦ 서울시 소규모 시설은 자연부숙에 의한 퇴비화가 최적이며, 기술인력, 고가 장비 없이도 운영가능하다.

◦ 다만, 환경경오염 방지를 위해 주기적 점검(연 2회)으로 악취·유출 사전 차단이 필수적이다.

<표 1.2.5 - 3> 보관 및 처리원칙

구 분	내 용
저장 기간	◦ 1년 이내 보관 후 주기적 처리 악취 발생 최소화
분뇨 분리	◦ 고액분리기 또는 자연 침전을 통해 고형분(분)과 액상분(뇨) 분리
규모 적합성	◦ 소량 특성상 고가 시설 대신 저비용·저기술 방식 채택

(2) 축종별 분뇨관리 방법

구분	사슴 분뇨	젖소 분뇨	개 분뇨
발생량	약 40톤/년	약 30톤/년	약 5톤/년
보관	◦사육장 인접 폐쇄형 저장조 설치 → 악취 차단을 위해 덮개 및 생균제(EM) 투입	◦고액분리: 고형분 분리후 퇴비화 ◦저장 공간 -고형분 : 퇴비사(1.5m 높이 이하 적재, 자연송풍) -액상분 : 폐쇄형 액비저장조	◦고형분 위주 : 고형분 비율이 높아 직접 퇴비화 적합
처리	◦퇴비화 : 고형분은 퇴비사에서 1년간 부숙 후 퇴비 생산 ◦액비화 : 액상분은 액비저장조(4개월 이상 저장)에서 발효 후 활용 ◦폐기 : 미활용 분뇨 위탁처리(연1회)	◦퇴비 : 공원녹지 등에 활용 가능. ◦액비 : 주변 농경지(유기농)에 살포 (환경부 기준 준수)	◦소형 퇴비통 설치 : 발효촉진제(톱밥+미생물) 혼합 후 3개월 부숙 ◦폐기 대안 : 퇴비화 어려울 시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위탁 처리 가능

(3) 관리 핵심사항

구 분	내 용
저장 주기	◦ 분뇨 6개월마다 교반으로 부패 가속화
기간별 시행사항	◦ 1~3개월 : 분뇨 분리 후 저장조 적재 ◦ 4~6개월: 고형분 퇴비화, 액상분 액비화 진행 ◦ 7~12개월 : 미활용 분뇨 위탁 처리 및 퇴비/액비 활용
악취관리	◦ 소량 특성상 고가 시설 대신 저비용·저기술 방식 채택 ◦ 저장조 주변 생균제 분무 (주 1회) ◦ 강우 시 유출수 차단벽 설치

다) 관리계획안 대안 검토

◦ 서울시 가축사육 현황 및 분뇨처리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획안을 검토하였으며, 검토결과 '단계별 가축분뇨시설 감소' 안을 적정관리 기본계획으로 결정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울시 가축종별 현황

◦ 서울시 가축종은 현재(2024년 기준) 젖소 10두, 사슴 66두, 개 31두로 확인되었으며, 젖소 두수 10마리 내외 유지, 사슴 66두 유지, 개 31두 유지로 나타났다.

◦ 단계적 가축두수의 변화 예측과 분뇨발생량 감축 계획 검토를 위해 축종의 평균연령과 수명, 농장의 현황을 검토하였다.

(2) 서울시 가축분뇨시설 단계별 감소 계획

(가) 공공시설

① 서울숲 사슴

◦ 서울숲은 2005년 6월 개장과 함께 다양한 사슴류를 방사하며 생태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시작 함

◦ 개장 초기에는 꽃사슴 21마리, 고라니 10마리, 다마사슴 5마리 등 총 36마리의 사슴류가 방사됨 개장 직후 추가 방사로 꽃사슴 19마리, 다마사슴 3마리가 추가로 방사되어, 개장 초기 총 사슴류는 약 58마리로 추정됨

◦ 그러나 2006년 이후 사슴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수사슴 5마리와 암사슴 40마리 등 총 45마리를 외부로 매각하는 조치가 이루어짐

◦ 2024년 기준 서울숲 사슴 두수는 26마리로, 현재 기준 감소세를 반영하면 2035년까지 50% 자연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표 1.2.5 - 4> 서울숲의 연도별 사슴 마리수 변화

시기	주요 내용	사슴 마리수
2005년 6월	개장 및 첫 방사	36~58마리
2005년 하반기	출산 등으로 개체수 증가	+5마리
2006년	개체수 증가, 일부 매각	50여 마리, 45마리 매각
2024년	안정적 관리	26마리

② 북서울꿈의숲 사슴

◦ 2009년 개장 이후 사슴방사장을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자연생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정확한 초기 마리수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2021년 기준 사슴 21마리(수컷 9, 암컷 7, 보육분 5)가 방사되어 있었음

◦ 2024년 기준으로 북서울꿈의숲 사슴방사장에는 14마리의 사슴이 서식하고 있으며, 특이사항은 암수 분리 중임. 2021년 대비 30% 감소하였음

◦ 따라서 현재 사슴 연령을 감안하여 감소세를 고려하면 2035년까지 최대 80% 자연감소를 예상함

<표 1.2.5 - 5> 북서울꿈의숲의 연도별 사슴 마리수 변화

시기	주요 내용	사슴 마리수
2009년	개장 및 첫 방사	(공식 수 미공개)
2021년	사슴방사장 운영, 가족 단위 번식	21마리(수 9, 암 7, 보육 5)
2024년	안정적 관리	14마리

◦ 꽃사슴은 사육 시 평균 수명은 15~18년, 최대 25년 이상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되고 있음

◦ 서울숲과 북서울꿈의숲 사슴들이 관리환경에서 적절히 사육되었을 때, 평균연령은 약 10년 전후, 길게는 12년 수준일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2035년까지 평균적으로 공공시설 2개소 대상 65%가량 두수 감소를 예상함

③ 경찰특공대 개

◦ 경찰특공대에서 사육 중인 개 31마리는 공공 업무 목적으로 현재 두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다만, 경찰특공대 내부 자체 정화시설을 통해 개 분뇨는 자가처리 되고 있음에 따라 분뇨관리 시설 감소 목표 대상으로는 제외하는 것이 적절함

(나) 사설시설

① 세한사슴, 새원사슴

◦ 서초구 내 사설 사슴농장 2개소의 개체수 감소 의지 협의 후, 지속적 감축을 통한 폐업을 유도하고 가축분뇨 감속 목표 실현 가능

◦ 현재 기준 수익목적의 사육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수익목적 사육 의사가 있다면 감축노력에 대한 보상을 고려해야 할 수 있음

② 서초목장 젖소

◦ 현재 서초구에 위치한 서초목장의 운영자의 고령화로 젖소 10두의 관리 지속성이 불투명한 상황임

◦ 장기적으로 운영자 연령을 고려하여 두수의 감소 및 폐업이 예상됨에 따라 가축분뇨 발생 감소 목표 실현 가능

(3) 계획의 장단점

(가) 장 점

◦ 분뇨 발생량 직접 감소

: 사육두수의 감소는 사슴분뇨 발생량의 직접적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음

◦ 환경부하 및 관리 부담 완화

: 분뇨 발생량이 줄어들면 악취, 침출수, 토양·수질오염 등 2차 환경문제 발생 가능성이 크게 낮아짐. 또한 분뇨 처리·운반·자원화에 소요되는 비용과 인력, 시설 운영 부담도 함께 경감됨

◦ 정책적 효과

: 온실가스 감축, 자원순환 촉진 등 국가·지자체 환경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함 특히 분뇨 발생량 저감은 도시 내 환경 민원 감소와 시민 수용성 제고로 이어짐

◦ 지역 환경질 개선

: 사설 사슴사육시설 개체수 감축으로인한 분뇨 저감 효과는 인근 주거지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분뇨·악취·위생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음. 또한 분뇨의 퇴비화·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도 함께 줄어들 수 있음

◦ 관리 효율성 및 비용 절감

: 분뇨 처리에 드는 비용, 인력, 시설 유지비가 감소하여 농가의 관리 부담이 완화됨. 수익 목적이 아닌 사육시설의 경우, 불필요한 분뇨 발생을 줄여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나) 단점

◦ 일부 개체별 유전자 다양성이 저하될 수 있음

◦ 사설시설의 개체수 감소는 일부 수익목적 사육농가의 소득 감소 우려나 동물복지, 사회적 수용성, 지역경제 등 다양한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라) 관리계획 방향성 설정

◦ 서울시 가축사육 현황 및 분뇨처리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안을 검토 한 결과, 적정관리 기본계획은 서울시 내 가축사육 개체수 감소 유도안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따라서, 현재 퇴비화 처리 여건을 유지하되, 서울시 관내에서 되도록 퇴비화 100%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 이는 현재 퇴비화 처리 여건을 유지하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개체수 감소로 분뇨발생 감소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 또한 환경오염 영향 감소를 위해 주기적 실태 점검과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방지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자 하였다.

3) 서울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가) 단계별 기본계획

◦ 서울시는 추가 시설의 증설 없이 현재 가축사육 두수를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분뇨발생 감소를 위한 방향으로 시기적 단계별 정량목표와 발생, 수집 및 운반, 처리, 자원화 단계로 구분하여 세부전략을 수립하였다.

◦ 시기적 3단계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며, 1단계(2026년~2029년), 2단계(2030년~2032년), 3단계(2033년~2035년)로 구분하여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였다.

◦ 최종 서울시 가축분뇨 기본계획은 서울시 도시 특성을 반영한 분뇨발생 시설의 지속적 감소에 초점을 맞춘 3단계 전략으로 구성하였다.

◦ 가축사육을 제한하거나 지속적 감소를 추진하여 환경 개선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5 - 6> 계획의 목표

기본목표	◦ 서울시 현실적 가축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및 수질보전 선도
실행목표	◦ 가축사육 제한과 점진적 개체수 감소로 분뇨발생 감소

<표 1.2.5 - 7> 기본계획 목표 및 주요 추진계획

추진전략	단계별	1단계 (2026년~2029년)	2단계 (2030년~2032년)	3단계 (2032년~2035년)
		가축분뇨시설 관리강화 및 시설 15% 감소	가축분뇨시설 50% 감소	가축분뇨시설 감소 관리
주요 추진 계획	발생 단계	- 가축두수 모니터링 및 감축계획(사설시설) 수립 (총 6개소 → 총 5개소)	- 가축분뇨시설 감축 추진 (총 5개소 → 3개소) · 사설시설 폐업시 보상 등 · 공공시설 가축관리(암수구별 등)에 따른 자연감소 추진 (총 5개소 → 총 3개소) - 가축사용 제한 조례제정 추진 (미제정 자치구 限)	- 감소된 가축분뇨시설 관리 (총 3개소) · 가축분뇨시설(개체수 감소 시) 면적조정 등 - 가축사육 조례 제정 (미제정 자치구 限)
	수집·운반 단계	- 효율적 가축분뇨 수집·운반 방안 모색	- 일부 자치구 가축분뇨 공동수거체계 구축 - 가축분뇨 미발생 자치구 수집운반업 폐업 조정	- 가축분뇨 인접지역 공동자원화 시설 운반 - 가축분뇨관련영업자(수집운반업 등) 지도점검 등 관리 강화
	처리 단계	- 적정 퇴비화를 위한 농장주 및 담당자 교육실시 - 일부 가축분뇨시설 정화처리	- 적정퇴비화 방안 유지 - 일부 가축분뇨시설 정화처리 - 가축분뇨 분뇨처리시설 투입	- 적정 퇴비화 방안 유지 - 일부 가축분뇨시설 정화처리 - 인접지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투입
	자원화 방안	- 적정 퇴비화로 양질의 퇴비 생산	- 양질의 퇴비 생산 - 바이오가스 생산량 증대	- 양질의 퇴비 생산 - 재생에너지 확대 기여

나) 수질오염 저감관리

(1) 하천수질오염관리

◦ 서울시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대부분 퇴비화 및 위탁·자가처리 하고 있으므로 기상(폭우, 재해 등)에 의한 영향, 인위적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 따라서 서울시 수질측정망 지점과 가축분뇨 발생지점과의 거리, 가축분뇨 처리방법을 고려할 때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2) 오염부하량 및 처리 목표 설정

◦ 서울시 여건에 맞는 두수 관리계획에 따른 적정 처리량을 100% 전량 처리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목표 달성 시, 환경오염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1.2.5 - 8> 단계별 가축분뇨 적정 처리량 산정

구분	축종	단계별 가축분뇨 적정 처리량 산정			
		항목	처리필요 부하량 (kg/일)	적정 처리율 (%)	적정 처리량 (kg/일)
1단계	젖소	BOD	8.7570	100	8.7570
		T-N	1.9070	100	1.9070
		T-P	0.3420	100	0.3420
	사슴	BOD	0.6600	100	0.6600
		T-N	0.3102	100	0.3102
		T-P	0.0396	100	0.0396
2단계	젖소 (-100%)	BOD	0	100	0
		T-N	0	100	0
		T-P	0	100	0
	사슴 (-60%)	BOD	0.3960	100	0.3960
		T-N	0.1861	100	0.1861
		T-P	0.0238	100	0.0238
3단계	젖소 (-100%)	BOD	0	100	0
		T-N	0	100	0
		T-P	0	100	0
	사슴 (-82.5%)	BOD	0.0713	100	0.0713
		T-N	0.0335	100	0.0335
		T-P	0.0043	100	0.0043

다) 악취관리

◦ 축산분뇨 발생 개별 농가에서는 '축산 냄새 저감 기본 관리 매뉴얼' 등을 참조하여 축산농가에 전파하는 등 악취저감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악취 관리 계획

◦ 최근 서울시 내 축산악취 관련 민원은 발생한 바 없으며, 가축분뇨 실태조사 결과, 악취 정도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끼치지 않을 정도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악취는 환경적 여건에 따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 발생단계에서의 적정 사육밀도 유지: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마리당 면적 기준 준수
- 사육환경 개선 : 축사 내부 청소 강화 및 환기시설 개선
- 분뇨 적체 방지: 임시분뇨보관시설 내 분뇨 높이 80cm 이하 유지, 연 1회 이상 완전 청소

(가) 발생단계 악취저감 방안

◦ 바이오필터 시스템

- 생물학적 처리방식으로 악취물질을 미생물이 분해
- 복합악취 제거효율 52.7% 이상 확인
- 설치비용이 저렴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점

◦ 안개분무시설

- 미생물 제제나 탈취제를 미세하게 분무하여 악취 중화
- 하루 2~4회 이상 정기적 분무로 지속적 악취관리
- 축사 내부 및 외부 동시 설치로 복합적 효과

◦ 스크러버(세정탑) 시스템

- 화학적 세정을 통한 악취물질 흡수·흡착·분해
- 고농도 악취에 효과적이나 화학약품 사용으로 2차 오염 우려

◦ 전자선 악취제거 기술

- 저에너지 전자가속기로 악취물질의 분자구조를 분해
- 악취제거 효율 99% 달성, 화학약품 불사용으로 친환경적

(나) 처리단계 악취저감 방안

① 소규모 축산시설(젖소, 사슴)

◦ 기본 시설

- 밀폐형 축사 구조로 개선
- 자연환기에서 강제환기 시스템으로 전환
- 축사 내부 안개분무시설 설치

◦ 악취저감 장비

- 액비순환시설: 부숙된 액비와 분뇨 교체·순환으로 냄새저감
- 바이오커튼: 축사 출입구에 설치하여 악취 확산 방지
- 미생물 제제: 1일 1회 이상 축사 내외부 살포

② 도시형 반려동물 시설

◦ 관리 강화 방안

◦ 분뇨 즉시 수거 원칙

◦ 악취방지를 위한 밀폐형 보관용기 사용

◦ 소독·탈취제 정기 사용

1.3 평가대상지역의 기후현황 및 전망

1.3.1 서울특별시 기상·기후 현황

가. 관측지점 개요

◦ 본 계획지구가 위치하는 서울기상대의 기상자료를 인용하였다.

<표 1.3 - 1> 관측지점 개요

구 분	위 치	H (m)	Hb (m)	ht (m)	ha (m)	hr (m)
서울기상대	북위 37° 57′ 동경 126° 96′	85.67	86.67	1.5	10.0	0.5

주) H = 노장의 해발높이(Height of observation field above mean sea level)
Hb = 수은기압계의 해발높이(Height of mercurial barometer above mean sea level)
ht = 온도계의 지상높이(Height of thermometer above the ground)
ha = 풍속계의 지상높이(Height of anemometer above the ground)
hr = 우량계의 지상높이(Height of raingauge above the ground)
자료 : 1994~2024년 서울기상대 기상관측자료, 기상청

나. 최근 기상·기후 현황

◦ 서울시의 2024년 기상·기후 현황 조사결과, 평균기온 14.9℃, 강수량 1,311.4mm, 평균풍속 2.3m/sec, 주풍향 NE풍, 평균습도 66.0%, 해면기압 1,015.7hPa, 일조시간 2,231.9hr으로 조사되었다.

<표 1.3 - 2> 서울기상청의 2024년 연평균 기상·기후 현황

구분		기온(℃)			강수량 (mm)	평균풍속 (m/sec)	주풍향 (풍)	평균습도 (%)	해면기압 (hPa)	일조시간 (hr)
		극최고	평균	극최저						
서울시	2024년	36.4	14.9	-14.0	1,311.4	2.3	NE	66.0	1,015.7	2,231.9

자료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

다. 과거 기상·기후 현황

◦ 서울시의 1994년부터 30년간 과거 기상·기후 현황 조사결과, 평균기온 13.0℃, 평균최고기온 17.6℃, 평균최저기온 8.1℃, 강수량 1,439.8 mm, 평균풍속 2.3m/sec, 평균습도 61.8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 1.3 - 3> 서울기상청의 1994~2023년 연평균 기상·기후 현황

구분		기온(℃)			강수량 (mm)	평균풍속 (m/sec)	평균습도 (%)	일조시간 (hr)
		평균최고	평균	평균최저				
서울시	1994년~2023년	17.6	13.0	9.1	1,439.8	2.3	61.8	2,151.1

자료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

라.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현황(1994~2023년)

1) 기온

◦ 서울특별시의 1994년부터 30년간 연도별 기온 현황 조사결과, 연평균 기온은 13.0℃, 최고기온은 8월이 가장 높은 34.8℃, 최저기온은 1월이 가장 낮은 -13.2℃로 조사되었다.

◦ 서울특별시의 연도별 기온 변화 현황 조사결과, 평균기온은 0.21℃/10년 증가하는 추세로 조사되었으며, 최고기온은 0.54℃/10년 증가하는 추세로 조사되었고, 최저기온은 0.04℃/10년 감소 추세로 조사되었다.

<표 1.3 - 4> 서울특별시 월평균 기온 현황(1994~2023년)

(단위 :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평균기온	-2.0	0.8	6.4	12.8	18.4	22.9	25.6	26.3	21.8	15.2	7.6	0.0	13.0
최고기온	9.5	13.2	19.6	26.0	30.2	32.8	34.1	34.8	31.0	26.3	20.2	12.0	24.1
최저기온	-13.2	-10.5	-4.6	2.5	8.6	14.7	19.2	18.5	12.6	3.2	-4.6	-11.6	2.9

자료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

<표 1.3 - 5> 서울특별시 연도별 기온 변화 현황

(단위 : ℃)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평균기온	13.5	12.2	12.2	12.9	13.8	13.2	12.7	12.8	12.9	12.8
최고기온	24.8	22.3	23.7	24.2	24.1	24.0	23.6	23.7	24.0	23.3
최저기온	3.3	2.7	1.9	2.4	3.5	2.6	2.9	3.4	3.7	3.3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기온	13.3	12.1	13.0	13.3	12.9	12.9	12.1	12.0	12.2	12.5
최고기온	24.9	23.8	23.0	23.6	23.7	24.6	22.9	22.7	23.2	24.3
최저기온	3.7	2.7	3.4	3.6	2.9	3.5	1.6	2.4	2.4	2.5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기온	13.4	13.6	13.6	13.0	12.9	13.5	13.2	13.7	13.2	14.1
최고기온	25.0	25.0	25.2	24.5	24.8	25.1	24.1	25.7	24.4	26.2
최저기온	3.3	2.8	2.5	2.8	1.4	3.5	3.7	2.4	2.8	3.7

자료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

월별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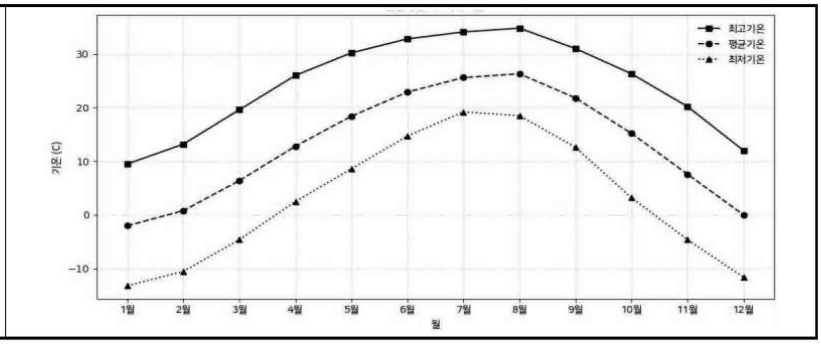

(그림 1.3 - 1) 서울특별시 월평균 기온 현황(1994~2023년)

연도별 평균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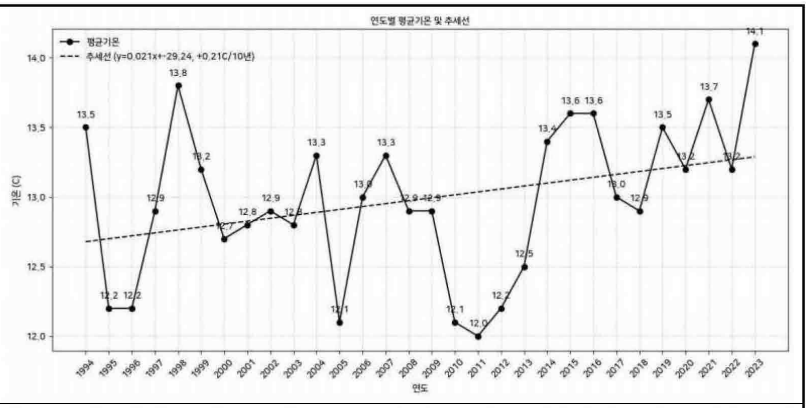
연도별 최고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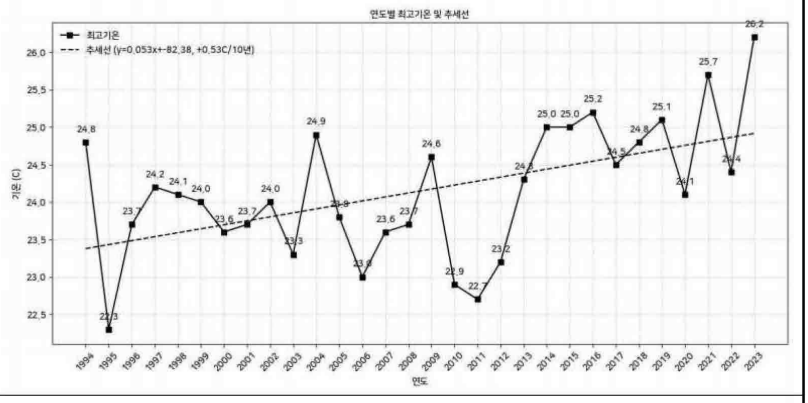
연도별 최저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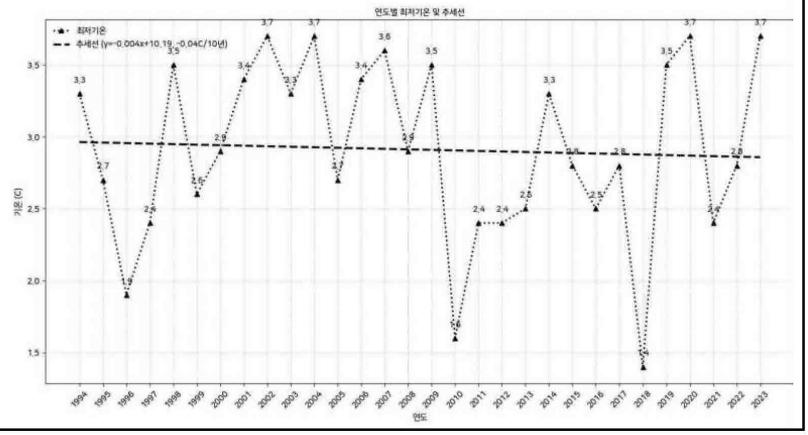

(그림 1.3 - 2) 서울특별시 기온 변화 현황

2) 강수량

◦ 서울특별시의 1994년부터 30년간 연도별 강수량 현황 조사결과, 연평균 강수량은 1,439.8mm, 월별 강수량은 7월이 가장 높은 404.4mm로 조사되었다.

◦ 서울특별시의 연도별 강수량 변화 현황 조사결과, 연간 강수량은 66.4mm/10년 감소, 일 최다 강수량은 30.4mm/10년 감소 추세로 조사되었다.

<표 1.3 - 6> 서울특별시 월평균 강수량 현황(1994~2023년)

(단위 : mm)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강수량	18.2	23.8	40.8	73.9	102.7	140.0	**404.4**	361.2	143.8	56.7	52.3	22.0	**1,439.8**

자료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

<표 1.3 - 7> 서울특별시 연도별 강수량 변화 현황

(단위 : mm)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연간 강수량	1,055.8	1,598.6	1,256.6	1,210.2	2,349.1	1,733.1	1,186.8	1,386.0	1,388.0	2,012.0
일 최다 강수량	79.4	149.2	168.6	127.7	332.8	261.6	122.9	273.4	178.0	177.0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간 강수량	1,499.1	1,358.4	1,681.9	1,212.3	1,356.3	1,564.0	2,043.5	2,039.3	1,646.3	1,403.8
일 최다 강수량	108.5	115.0	241.0	76.0	127.5	190.0	259.5	301.5	137.0	165.0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연간 강수량	808.9	792.1	991.7	1,233.2	1,284.1	891.3	1,651.1	1,186.5	1,775.3	1,598.8
일 최다 강수량	59.5	80.0	108.5	144.5	96.5	63.2	103.1	77.4	176.2	91.6

자료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

월별 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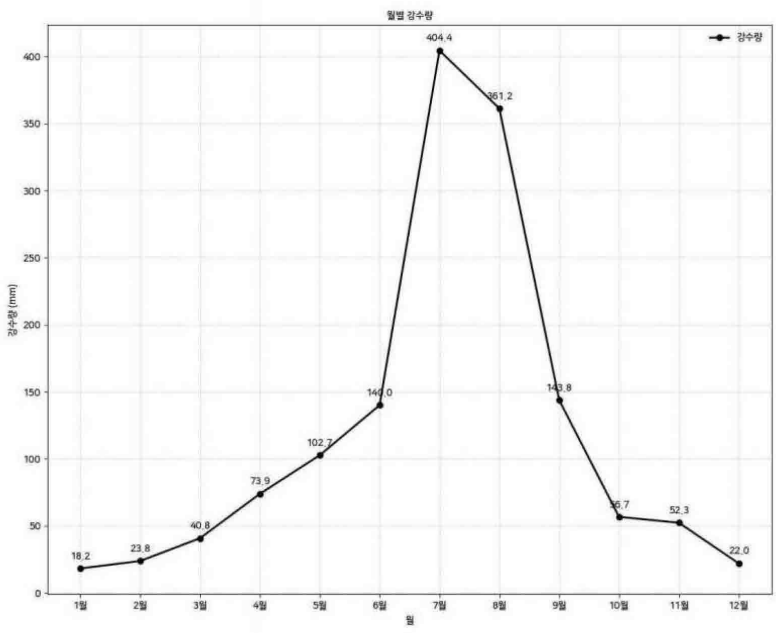
연도별 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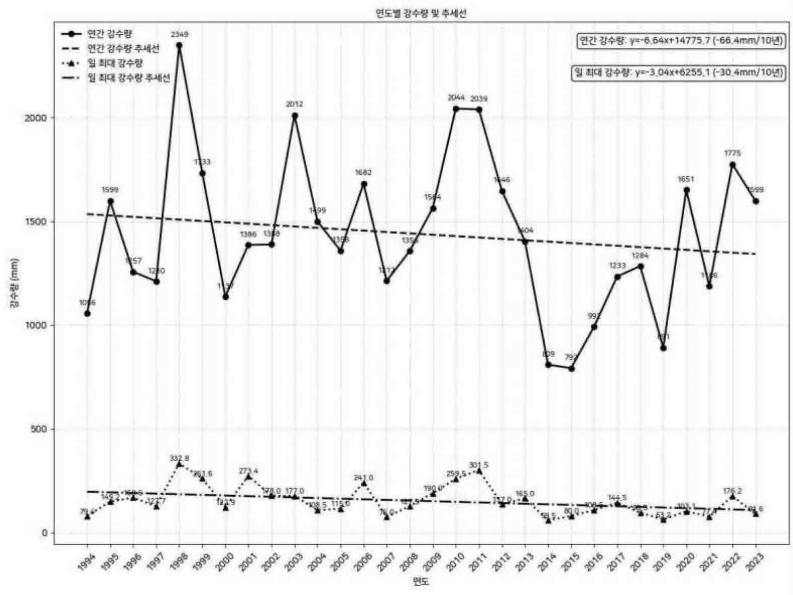

(그림 1.3 - 3) 서울특별시 강수량 변화 현황

3) 평균풍속

◦ 서울특별시의 1994년부터 30년간 연도별 평균풍속 현황 조사결과, 연평균 풍속은 2.3m/sec, 월평균 풍속은 3·4월이 가장 높은 2.7m/sec로 조사되었다.

◦ 서울특별시의 연도별 평균풍속 변화 현황 조사결과, 연간 평균풍속은 0.07㎧/10년 증가 추세로 조사되었다.

<표 1.3 - 8> 서울특별시 월평균 평균풍속 현황(1994~2023년)

(단위 : m/sec)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평균풍속	2.4	2.5	2.7	2.7	2.5	2.2	2.2	2.1	2.0	2.0	2.2	2.3	2.3

자료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

<표 1.3 - 9> 서울특별시 연도별 평균풍속 변화 현황

(단위 : m/sec)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평균풍속	2.3	2.3	2.2	2.3	2.2	1.9	2.2	1.8	2.1	2.0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평균풍속	2.4	2.4	2.4	2.4	2.4	2.4	2.5	2.7	2.8	2.8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풍속	2.6	2.7	2.3	2.2	1.7	2.0	2.4	2.3	2.4	2.3

자료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

월별 평균풍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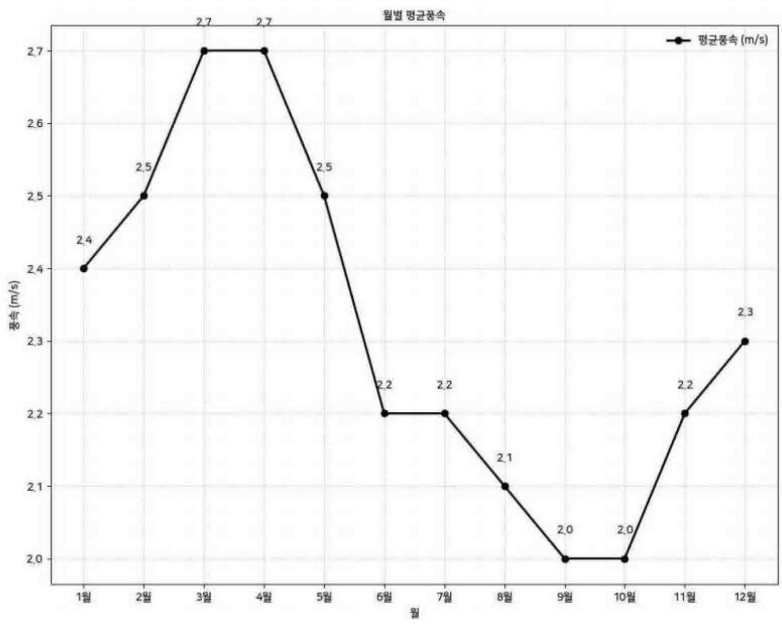
연도별 평균풍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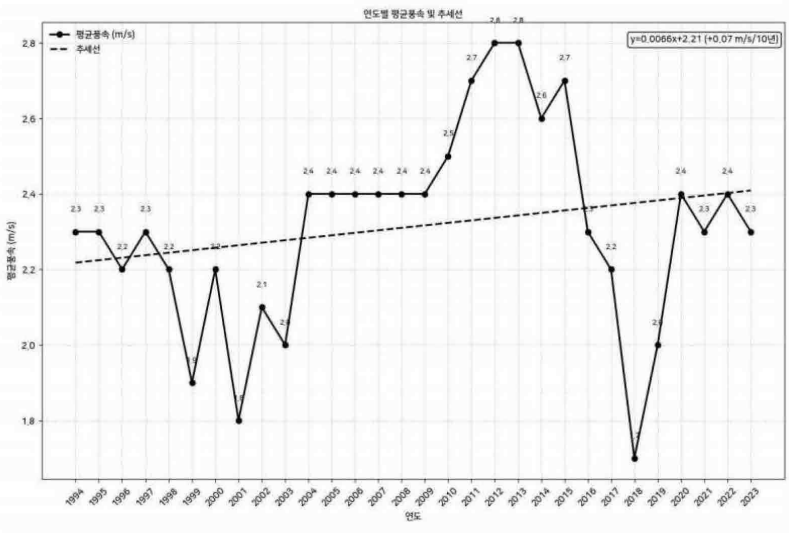

(그림 1.3.1 - 5) 서울특별시 평균풍속 변화 현황

4) 상대습도

◦ 서울특별시의 1994년부터 30년간 연도별 상대습도 현황 조사결과, 연평균 상대습도는 61.8%, 월평균 상대습도는 7월이 가장 높은 75.9%로 조사되었다.

◦ 서울특별시의 연도별 상대습도 변화 현황 조사결과, 연간 상대습도는 0.72%/10년 감소 추세로 조사되었다.

<표 1.3.1 - 10> 서울특별시 월평균 상대습도 현황(1994~2023년)

(단위 :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평균
상대습도	55.8	54.2	54.3	54.5	59.6	66.0	75.9	73.7	66.6	62.3	60.6	57.7	61.8

자료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

<표 1.3.1 - 11> 서울특별시 연도별 상대습도 변화 현황

(단위 : %)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상대습도	64.9	63.5	61.5	61.9	64.9	65.3	63.8	60.8	62.2	64.7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상대습도	62.1	60.4	60.8	62.2	59.4	61.1	63.1	59.7	56.6	60.0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상대습도	62.8	60.0	59.2	57.8	57.5	56.8	63.4	65.7	64.4	66.8

자료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

월별 상대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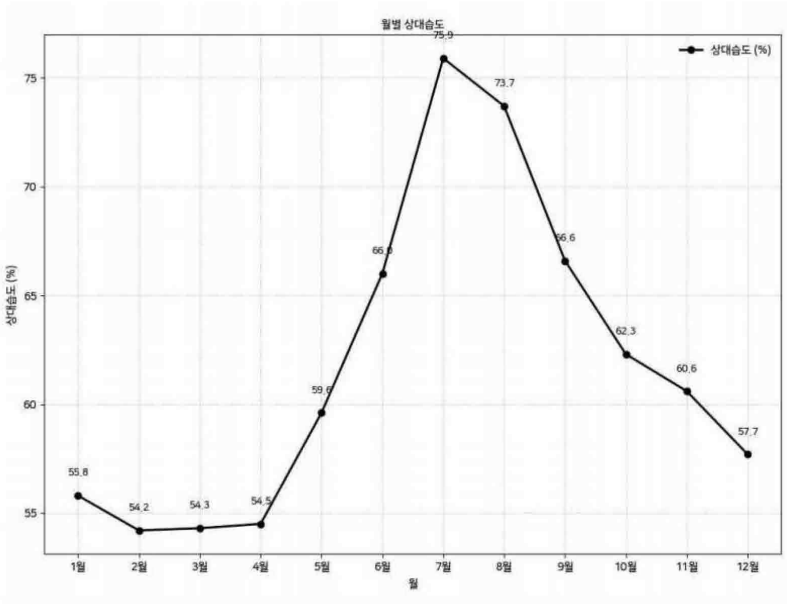
연도별 상대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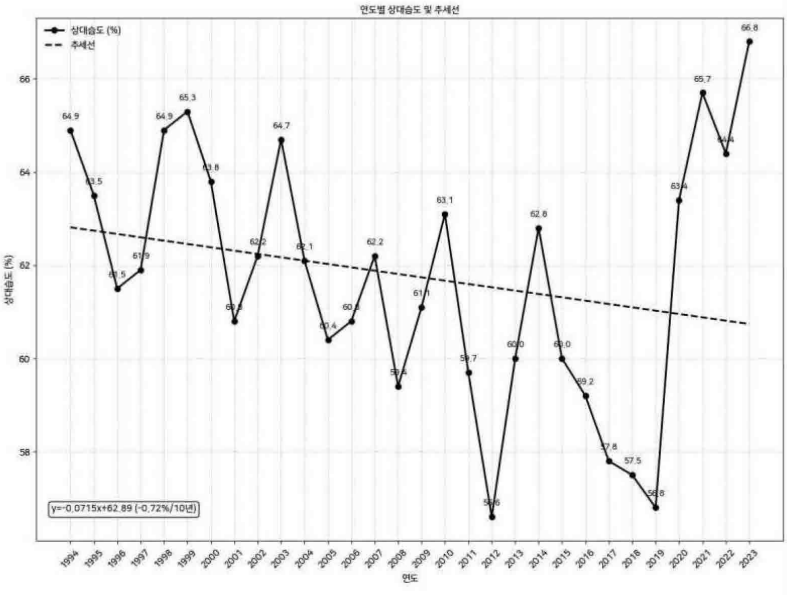

(그림 1.3.1 - 6) 서울특별시 상대습도 변화 현황

5) 일조시간

◦ 서울특별시의 1994년부터 30년간 연도별 일조시간 현황 조사결과, 연간 일조시간은 2,151.1hr, 월평균 일조시간은 5월이 가장 높은 223.9hr로 조사되었다.

◦ 서울특별시의 연도별 일조시간 변화 현황 조사결과, 연간 일조시간은 176.28hr/10년 증가 추세로 조사되었다.

<표 1.3.1 - 12> 서울특별시 월평균 일조시간 현황(1994~2023년)

(단위 : hr)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일조시간	173.2	173.0	201.3	206.0	**223.9**	187.0	126.5	151.2	177.9	203.5	160.5	167.1	2,151.1

자료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

<표 1.3.1 - 13> 서울특별시 연도별 일조시간 변화 현황

(단위 : hr)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일조시간	2,327.4	2,290.6	2,168.1	2,318.3	2,080.2	2,143.8	1,506.2	1,605.3	1,421.4	1,449.7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일조시간	2,116.6	2,037.1	1,931.7	1,847.3	2,145.4	2,145.4	1,855.3	2,073.8	2,406.6	2,418.7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일조시간	2,432.3	2,580.3	2,497.8	2,606.3	2,580.7	2,542.2	2,263.7	2,190.1	2,325.2	2,224.0

자료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

월별 일조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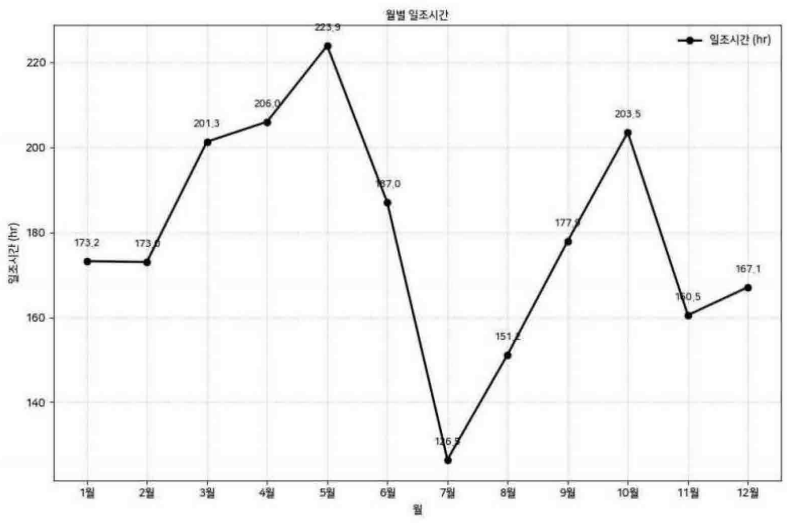
연도별 일조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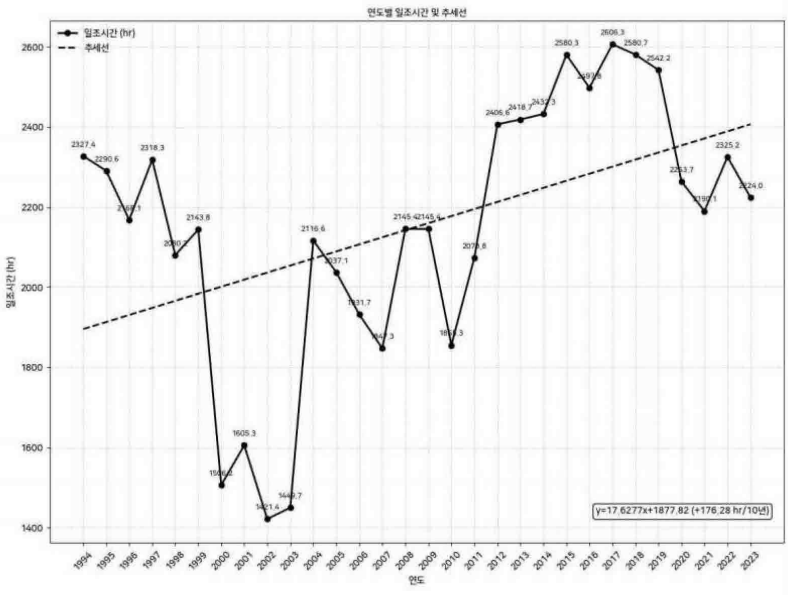

(그림 1.3.1 - 7) 서울특별시 일조시간 변화 현황

6) 폭염일수

◦ 서울특별시의 1994년부터 30년간 연도별 폭염일수 현황 조사결과, 연간 폭염일수는 10.2일, 월평균 폭염일수는 8월이 가장 높은 5.4일로 조사되었다.

◦ 서울특별시의 연도별 폭염일수 변화 현황 조사결과, 연간 폭염일수는 2.14일/10년 증가 추세로 조사되었다.

<표 1.3.1 - 14> 서울특별시 월평균 폭염일수 현황(1994~2023년)

(단위 : 일)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폭염일수	0.0	0.0	0.0	0.0	0.1	0.6	4.1	**5.4**	0.0	0.0	0.0	0.0	**10.2**

자료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

<표 1.3 - 10> 서울특별시 연도별 폭염일수 변화 현황

(단위 : 일)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폭염일수	29	3	7	16	0	14	18	4	3	0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폭염일수	10	6	7	4	3	4	2	3	14	2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폭염일수	10	8	24	13	35	15	4	18	10	19

자료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

월별 폭염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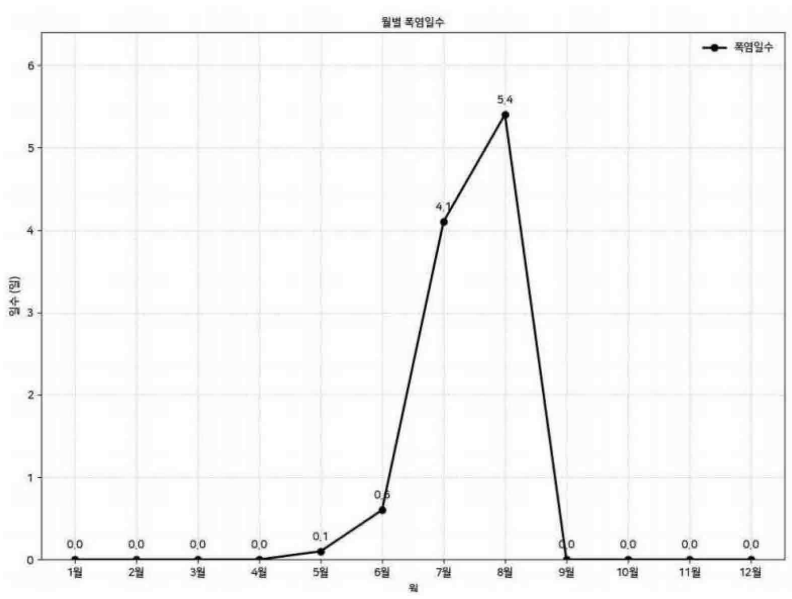
연도별 폭염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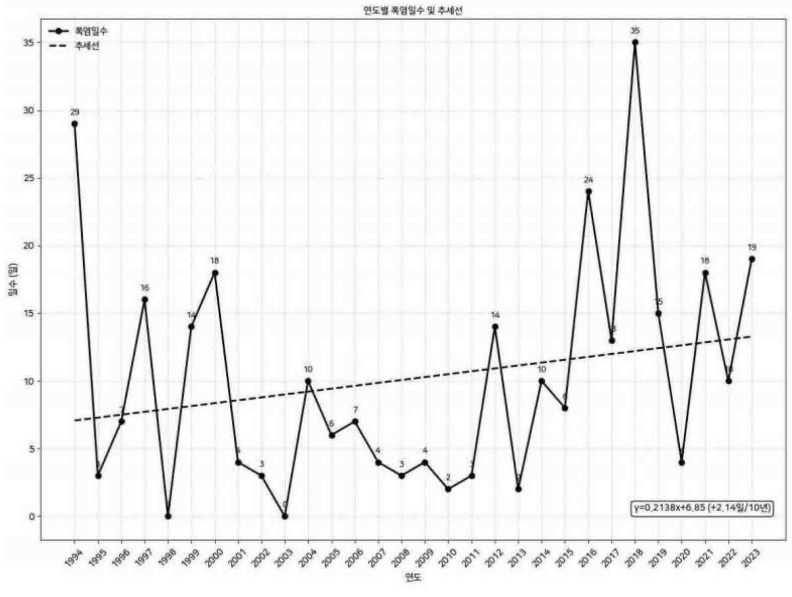

(그림 1.3 - 4) 서울특별시 폭염일수 변화 현황

7) 열대야일수

◦ 서울특별시의 1994년부터 30년간 연도별 열대야일수 현황 조사결과, 연간 열대야일수는 14.6일, 월평균 열대야일수는 8월이 가장 높은 8.7일로 조사되었다.

◦ 서울특별시의 연도별 열대야일수 변화 현황 조사결과, 연간 열대야일수 3.23일/10년 증가 추세로 조사되었다.

<표 1.3 - 11> 서울특별시 월평균 열대야일수 현황(1994~2023년)

(단위 : 일)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열대야일수	0.0	0.0	0.0	0.0	0.0	0.1	5.8	**8.7**	0.0	0.0	0.0	0.0	**14.6**

자료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

<표 1.3 - 12> 서울특별시 연도별 열대야일수 변화 현황

(단위 : 일)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열대야일수	36	16	14	17	3	8	10	9	4	1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열대야일수	13	11	10	14	9	4	15	4	20	23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열대야일수	6	12	32	19	29	17	13	21	24	25

자료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

월별 열대야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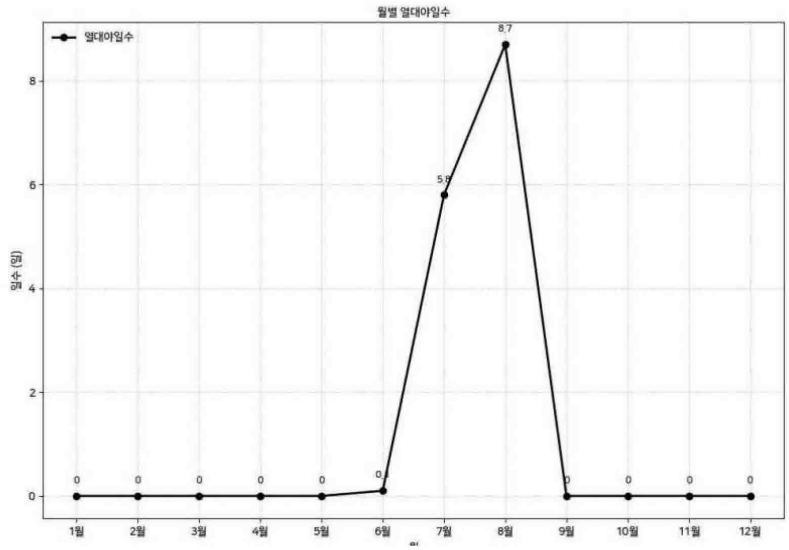
연도별 열대야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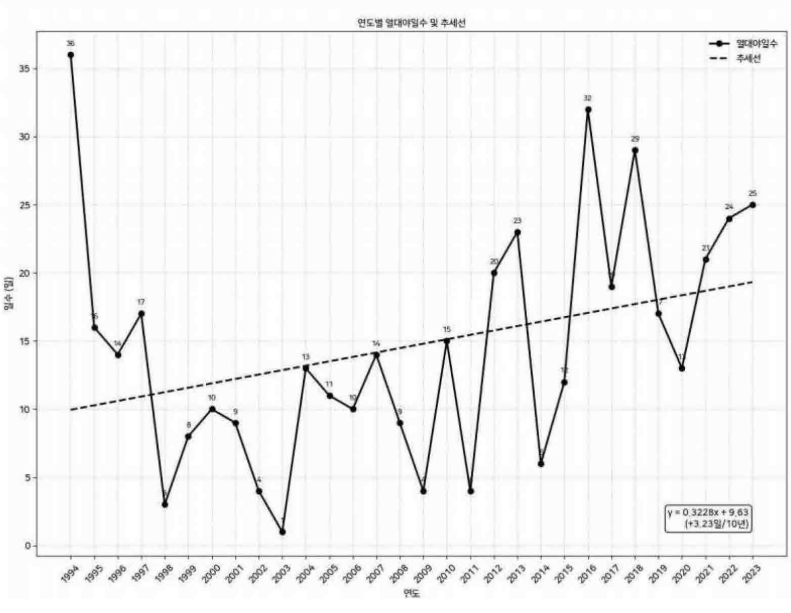

(그림 1.3 - 5) 서울특별시 열대야일수 변화 현황

8) 한파일수

◦ 서울특별시의 1994년부터 30년간 연도별 한파일수 현황 조사결과, 연간 한파일수는 3.5일, 월평균 한파일수는 1월이 가장 높은 1.9일로 조사되었다.

◦ 서울특별시의 연도별 한파일수 변화 현황 조사결과, 연간 한파일수는 1.49일/10년 증가 추세로 조사되었다.

<표 1.3 - 13> 서울특별시 월평균 한파일수 현황(1994~2023년)

(단위 : 일)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한파일수	1.9	0.5	0.0	0.0	0.0	0.0	0.0	0.0	0.0	0.0	0.0	1.1	3.5

자료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

<표 1.3 - 14> 서울특별시 연도별 한파일수 변화 현황

(단위 : 일)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한파일수	2	0	1	2	3	2	0	6	1	4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한파일수	3	2	3	0	1	2	11	5	8	8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한파일수	1	1	5	3	11	0	2	8	4	7

자료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

월별 한파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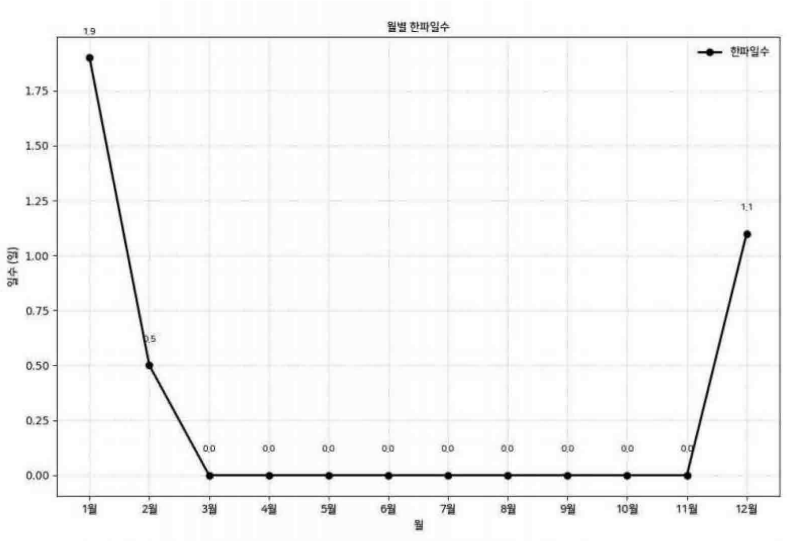
연도별 한파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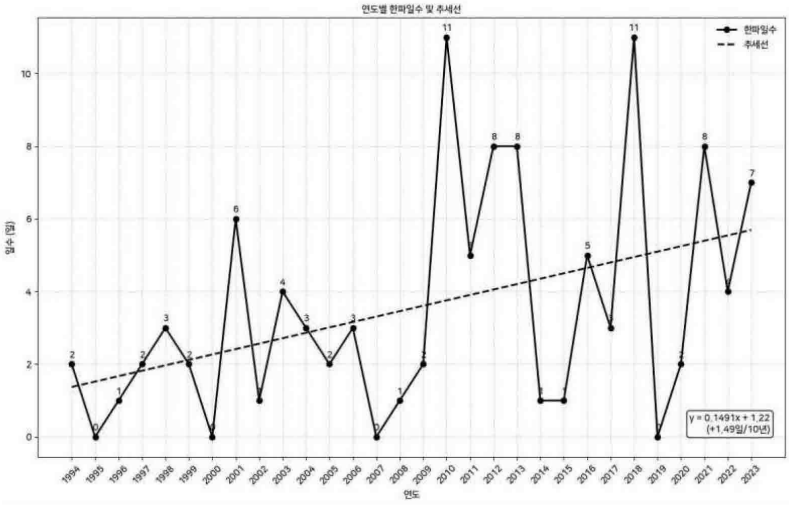

(그림 1.3 - 6) 서울특별시 한파일수 변화 현황

9) 서리일수

◦ 서울특별시의 1994년부터 30년간 연도별 서리일수 현황 조사결과, 연평균 서리일수는 54.0일, 월평균 서리일수는 12월이 가장 높은 13.0일로 조사되었다.

◦ 서울특별시의 연도별 서리일수 변화 현황 조사결과, 연간 서리일수는 5.77일/10년 감소 추세로 조사되었다.

<표 1.3 - 15> 서울특별시 월평균 서리일수 현황(1994~2023년)

(단위 : 일)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서리일수	12.4	11.4	6.1	0.9	0.0	0.0	0.0	0.0	0.0	1.4	8.8	**13.0**	**54.0**

자료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

<표 1.3 - 16> 서울특별시 연도별 서리일수 변화 현황

(단위 : 일)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서리일수	52	82	77	99	92	72	54	30	39	39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서리일수	52	69	60	60	31	34	23	48	46	39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서리일수	37	27	28	56	38	58	73	50	85	72

자료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

월별 서리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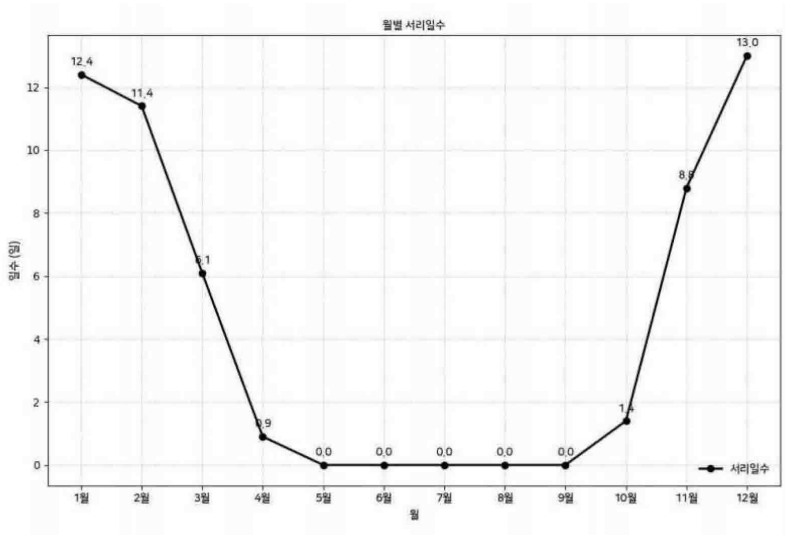
연도별 서리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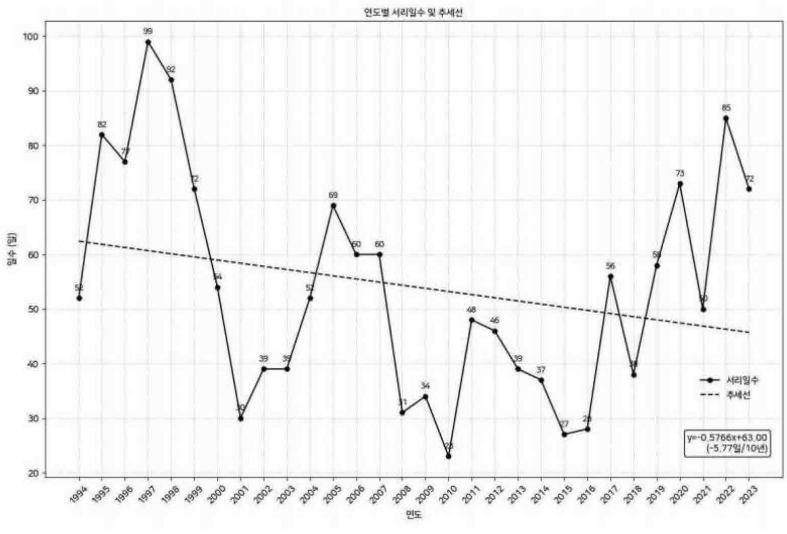

(그림 1.3 - 7) 서울특별시 서리일수 변화 현황

10) 결빙일수

◦ 서울특별시의 1994년부터 30년간 연도별 결빙일수 현황 조사결과, 연간 결빙일수는 106.7일, 월평균 결빙일수는 1월이 가장 높은 29.1일로 조사되었다.

◦ 서울특별시의 연도별 결빙일수 변화 현황 조사결과, 연간 결빙일수는 5.48일/10년 감소 추세로 조사되었다.

<표 1.3 - 17> 서울특별시 월평균 결빙일수 현황(1994~2023년)

(단위 : 일)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결빙일수	**29.1**	24.4	12.9	1.2	0.0	0.0	0.0	0.0	0.0	0.9	11.4	26.8	**106.7**

자료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

<표 1.3 - 18> 서울특별시 연도별 결빙일수 변화 현황

(단위 : 일)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결빙일수	112	124	129	110	107	113	121	121	102	91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결빙일수	98	111	103	99	97	101	115	109	118	107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결빙일수	105	91	100	117	99	103	93	94	105	106

자료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

월별 결빙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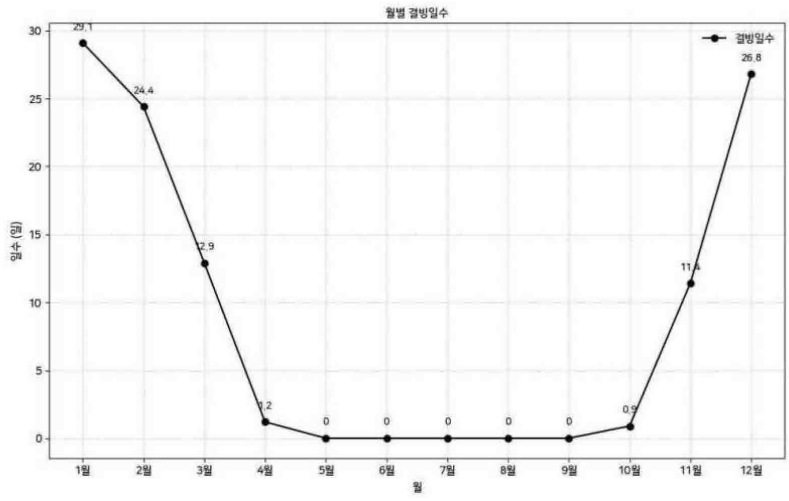
연도별 결빙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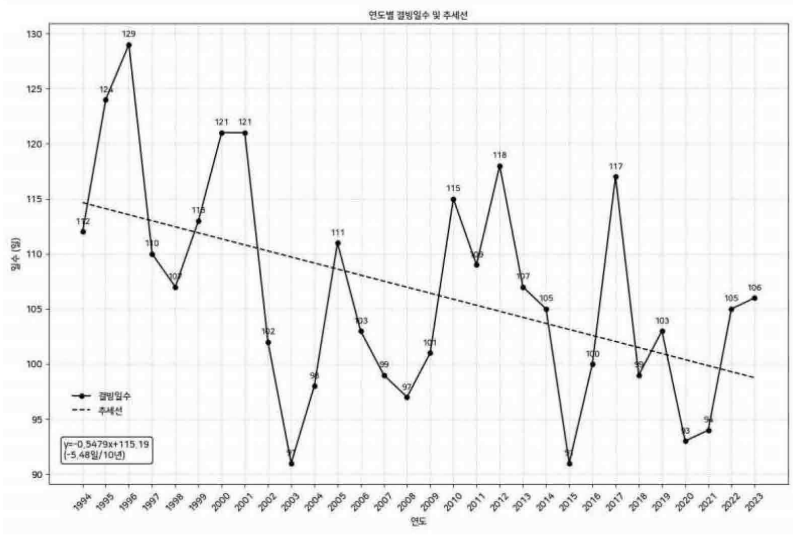

(그림 1.3 - 8) 서울특별시 결빙일수 변화 현황

11) 강수일수

◦ 서울특별시의 1994년부터 30년간 연도별 강수일수 현황 조사결과, 연간 강수일수는 108.7일, 월평균 강수일수는 7월이 가장 높은 16.0일로 조사되었다.

◦ 서울특별시의 연도별 강수일수 변화 현황 조사결과, 연간 강수일수는 1.05일/10년 증가 추세로 조사되었다.

<표 1.3 - 19> 서울특별시 월평균 강수일수 현황(1994~2023년)

(단위 : 일)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강수일수	6.3	5.3	6.9	8.5	8.8	10.1	**16.0**	14.9	9.1	6.2	8.6	8.0	**108.7**

자료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

<표 1.3 - 20> 서울특별시 연도별 강수일수 변화 현황

(단위 : 일)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강수일수	98	111	102	102	119	97	105	91	107	128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강수일수	100	105	108	132	110	113	136	108	110	128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강수일수	101	104	109	102	104	98	106	117	104	109

자료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

월별 강수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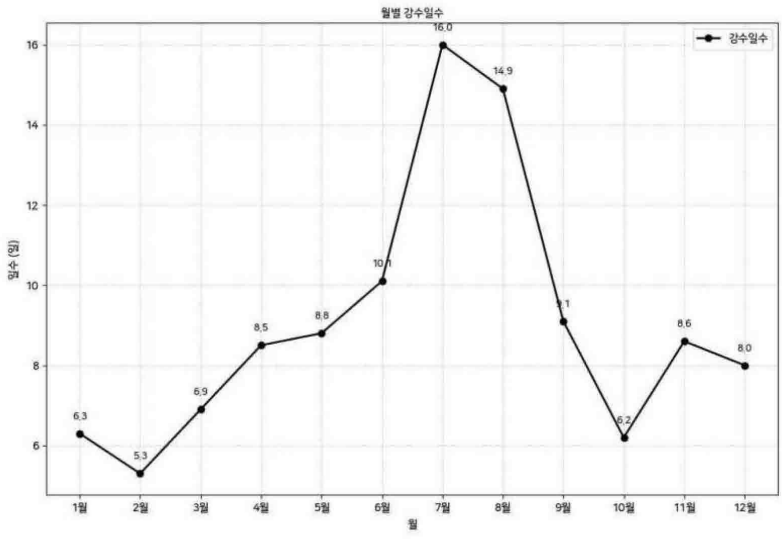
연도별 강수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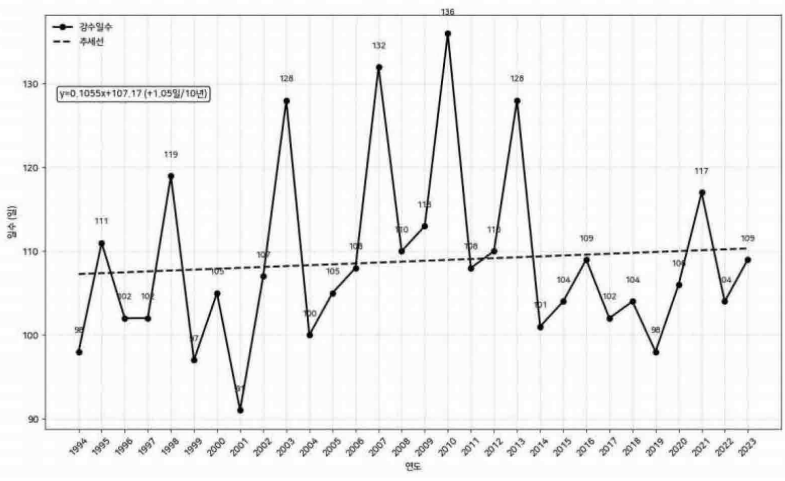

(그림 1.3 - 9) 서울특별시 강수일수 변화 현황

12) 폭풍일수

◦ 서울특별시의 1994년부터 30년간 연도별 폭풍일수 현황 조사결과, 연평균 폭풍일수는 0일로 조사되었다.

◦ 서울특별시의 연도별 폭풍일수 변화 현황 조사결과, 연간 폭풍일수는 0.04일/10년 감소 추세로 조사되었다.

<표 1.3 - 21> 서울특별시 월평균 폭풍일수 현황(1994~2023년)

(단위 : 일)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폭풍일수	0	0	0	0	0	0	0	0	0	0	0	0	0

자료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

<표 1.3 - 22> 서울특별시 연도별 폭풍일수 변화 현황

(단위 : 일)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폭풍일수	0	0	0	0	1	0	0	0	0	0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폭풍일수	0	0	0	0	0	0	1	0	0	0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폭풍일수	0	0	0	0	0	0	0	0	0	0

자료 :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

월별 폭풍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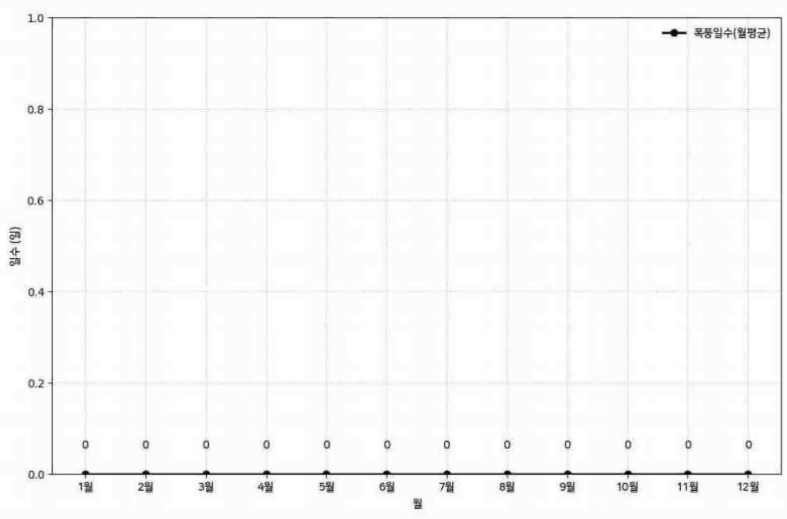
연도별 폭풍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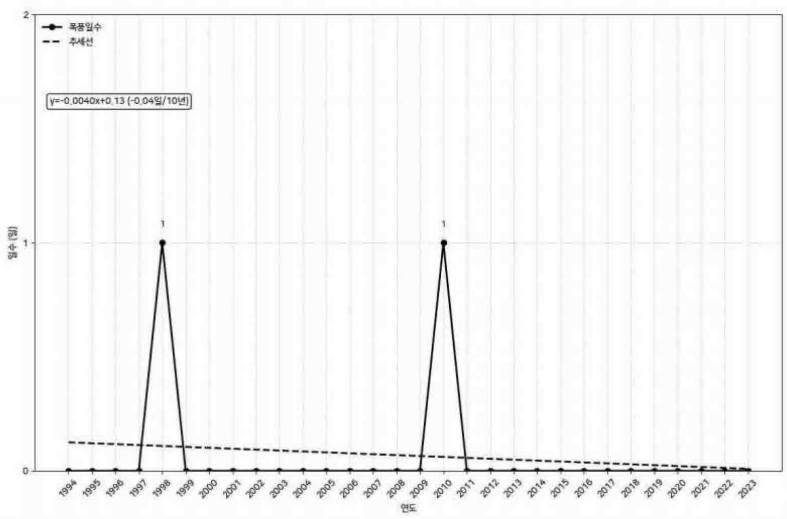

(그림 1.3 - 10) 서울특별시 폭풍일수 변화 현황

1.3.2 기후변화 전망

◦ 계획지구가 위치하는 서울특별시의 기후변화 전망은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후정보포털(http://www.climate.go.kr)의 “미래 기후전망(서울특별시)”에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가.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요

◦ 기후변화 전망을 위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IPCC SSP(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공통사회경제경로) 시나리오를 적용하였으며 이는 2100년 기준 복사강제력 강도(기존 RCP 개념)와 함께 미래 사회경제변화를 기준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미래의 완화와 적응 노력에 따라 5개의 시나리오로 구별되며, 인구통계, 경제발달, 복지, 생태계 요소, 자원, 제도, 기술발달, 사회적 인자, 정책을 고려한 시나리오이다.

◦ 본 계획지구가 위치한 서울특별시의 기후변화 전망 검토시 시나리오는 SSP1-2.6, SSP2-4.5, SSP3-7.0, SSP5-8.5을 활용하여 2021년부터 2050년까지 10년별 단위로 분석하였다.

<표 1.3 - 23> SSP 시나리오 종류

종류	내용	CO_2 농도(2100년)
SSP1-2.6	◦ 재생에너지 기술 발달로 화석연료 사용이 최소화되고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432ppm
SSP2-4.5	◦ 기후변화 완화 및 사회경제 발전 정도가 중간 단계를 가정하는 경우	567ppm
SSP3-7.0	◦ 기후변화 완화 정책에 소극적이며 기술개발이 늦어 기후변화에 취약한 사회구조를 가정하는 경우	834ppm
SSP5-8.5	◦ 산업기술의 빠른 발전에 중심을 두어 화석연료 사용이 높고 도시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1,089p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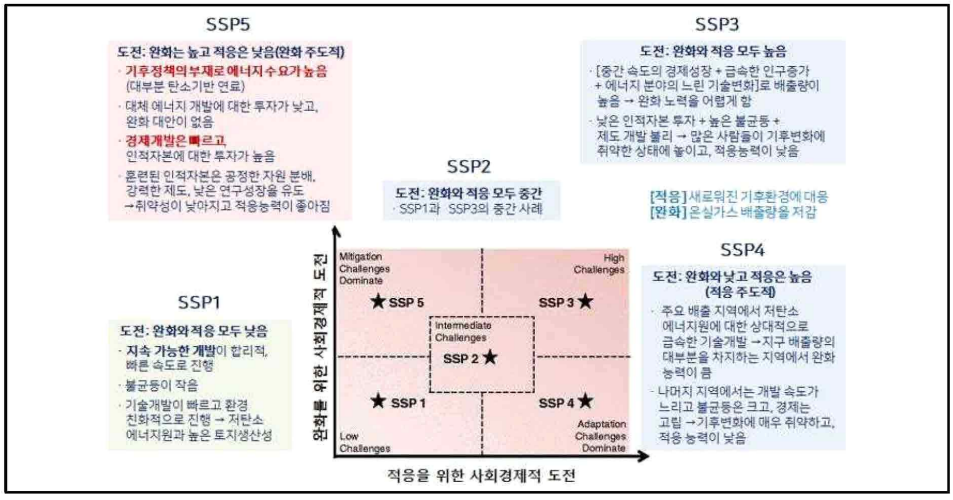

(그림 1.3 - 11) SSP 시나리오의 구성과 내용

나. 기후변화 전망

1) 평균기온

◦ 서울특별시의 연간 평균기온 전망은 SSP1-2.6 시나리오에서 전반기(2021~2040년) 13.2℃/년, 중반기(2041~2060년) 13.5℃/년, 후반기(2081~2100년) 14.2℃/년으로 경향성은 +0.26℃/10년으로 조사되었다.

◦ SSP2-4.5 시나리오에서는 전반기(2021~2040년) 13.1℃/년, 중반기(2041~2060년) 14.1℃/년, 후반기(2081~2100년) 15.4℃/년으로 경향성은 +0.43℃/10년으로 조사되었다.

◦ SSP3-7.0 시나리오에서는 전반기(2021~2040년) 13.2℃/년, 중반기(2041~2060년) 14.6℃/년, 후반기(2081~2100년) 17.3℃/년으로 경향성은 +0.67℃/10년으로 조사되었다.

◦ SSP5-8.5 시나리오에서는 전반기(2021~2040년) 13.3℃/년, 중반기(2041~2060년) 14.7℃/년, 후반기(2081~2100년) 18.2℃/년으로 경향성은 +0.78℃/10년으로 조사되었다.

<표 1.3 - 24> SSP 시나리오별 평균기온 전망

(단위 : ℃/년)

구분		SSP1-2.6	SSP2-4.5	SSP3-7.0	SSP5-8.5
서울 특별시	현재(2000~2019년)	11.9	11.9	11.9	11.9
	전반기(2021~2040년)	13.2	13.1	13.2	13.3
	중반기(2041~2060년)	13.5	14.1	14.6	14.7
	후반기(2081~2100년)	14.2	15.4	17.3	18.2
	경향성(10년당)	+0.26	+0.43	+0.67	+0.78

자료 : 기상청 기후정보포털(www.climate.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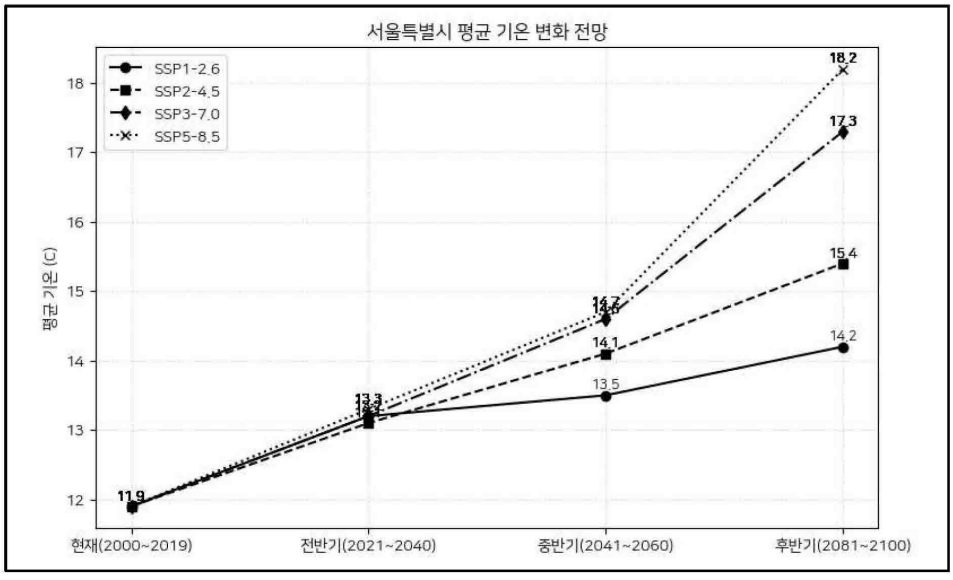

(그림 1.3 - 12) SSP 시나리오별 평균기온 전망

SSP1-2.6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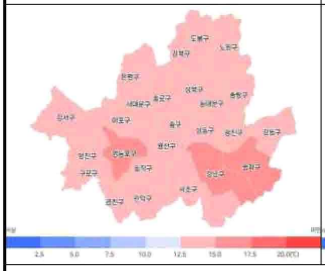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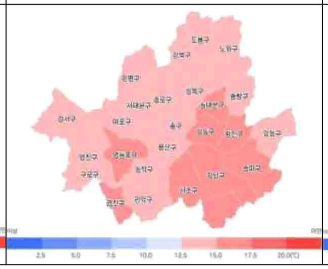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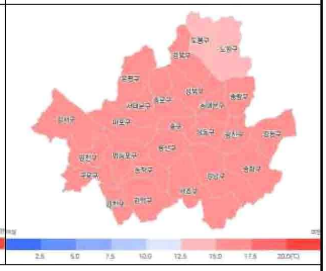
SSP2-4.5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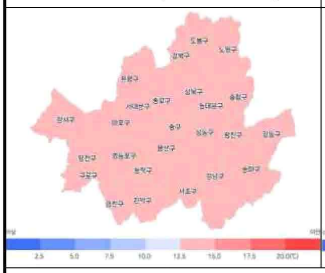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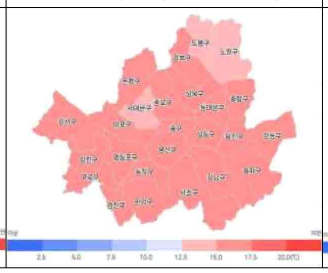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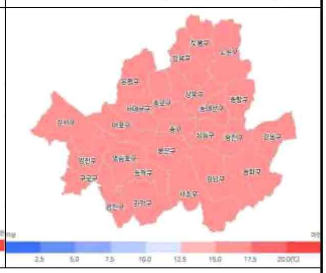
SSP3-7.0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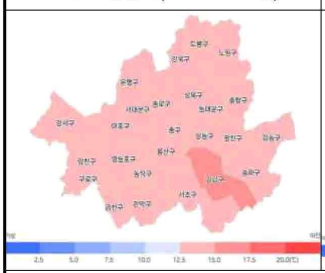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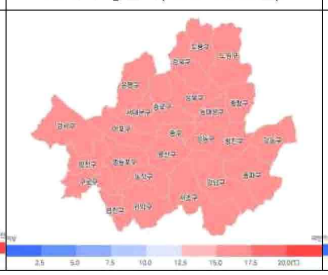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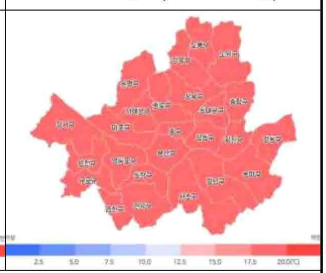
SSP5-8.5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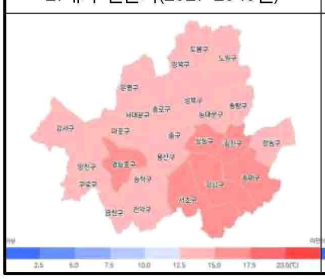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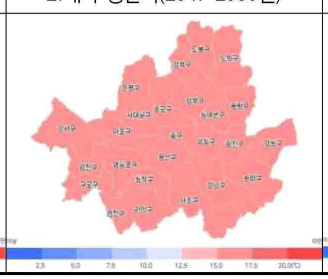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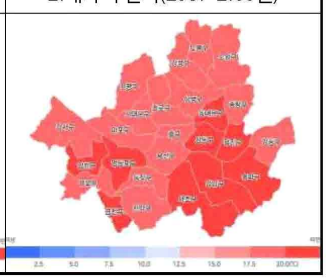

(그림 1.3.2 - 3)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별 연간 평균기온 분포도

2) 연간 월평균 최고기온

◦ 서울특별시의 연간 최고기온 전망은 SSP1-2.6 시나리오에서 전반기(2021~2040년) 19.4℃/일, 중반기(2041~2060년) 19.6℃/일, 후반기(2081~2100년) 20.4℃/일로 경향성은 +0.28℃/10년으로 조사되었다.

◦ SSP2-4.5 시나리오에서는 전반기(2021~2040년) 19.3℃/일, 중반기(2041~2060년) 20.2℃/일, 후반기(2081~2100년) 21.6℃/일로 경향성은 +0.44℃/10년으로 조사되었다.

◦ SSP3-7.0 시나리오에서는 전반기(2021~2040년) 19.3℃/일, 중반기(2041~2060년) 20.9℃/일, 후반기(2081~2100년) 23.7℃/일로 경향성은 +0.72℃/10년으로 조사되었다.

◦ SSP5-8.5 시나리오에서는 전반기(2021~2040년) 19.6℃/일, 중반기(2041~2060년) 21.0℃/일, 후반기(2081~2100년) 24.7℃/일로 경향성은 +0.84℃/10년으로 조사되었다.

<표 1.3 - 25> SSP 시나리오별 연간 최고기온 전망

(단위 : ℃/일)

구분		SSP1-2.6	SSP2-4.5	SSP3-7.0	SSP5-8.5
서울 특별시	현재(2000~2019년)	17.9	17.9	17.9	17.9
	전반기(2021~2040년)	19.4	19.3	19.3	19.6
	중반기(2041~2060년)	19.6	20.2	20.9	21.0
	후반기(2081~2100년)	20.4	21.6	23.7	24.7
	경향성(10년당)	+0.28	+0.44	+0.72	+0.84

자료 : 기상청 기후정보포털(www.climate.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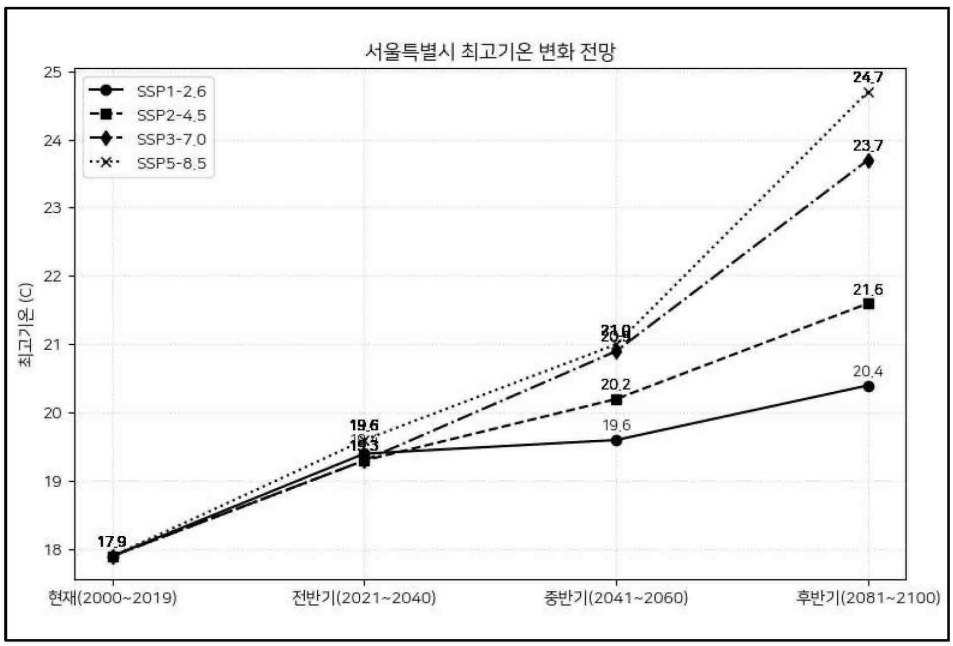

(그림 1.3 - 13) SSP 시나리오별 최고기온 전망

SSP1-2.6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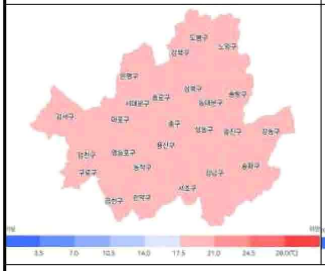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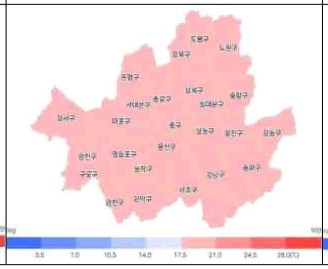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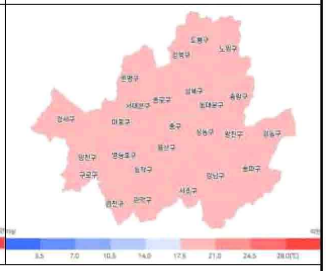
SSP2-4.5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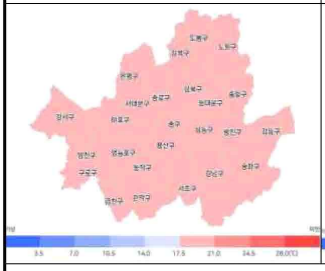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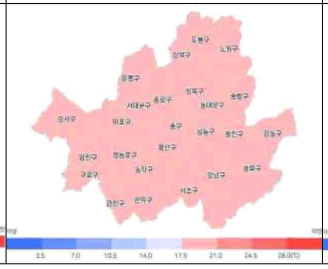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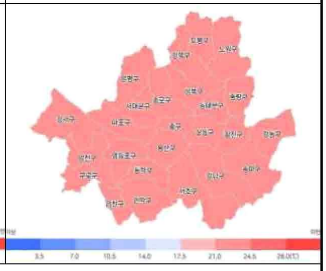
SSP3-7.0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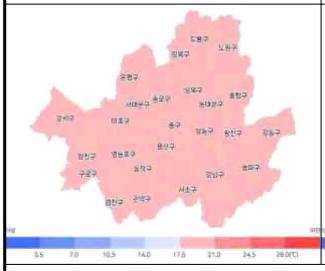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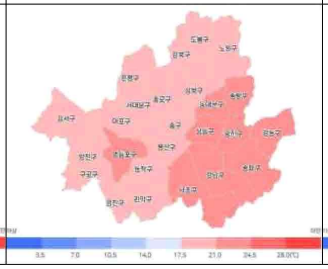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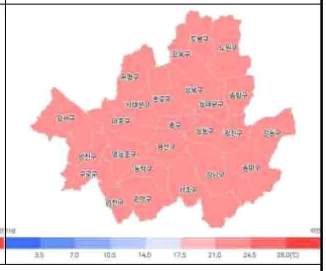
SSP5-8.5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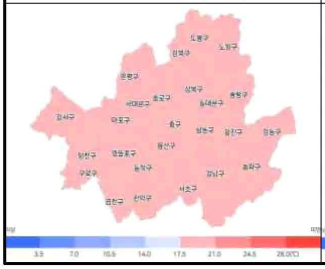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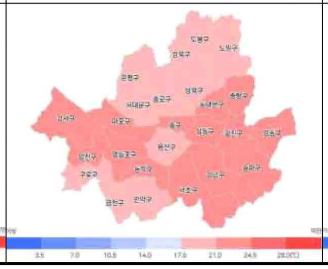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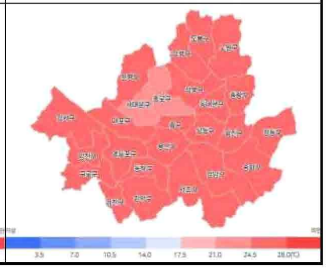

(그림 1.3 - 14)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별 연간 최고기온 분포도

3) 연간 월평균 최저기온

◦ 서울특별시의 연간 최저기온 전망은 SSP1-2.6 시나리오에서 전반기(2021~2040년) 10.4℃/일, 중반기(2041~2060년) 10.7℃/일, 후반기(2081~2100년) 11.4℃/일로 경향성은 +0.27℃/10년으로 조사되었다.

◦ SSP2-4.5 시나리오에서는 전반기(2021~2040년) 10.3℃/일, 중반기(2041~2060년) 11.3℃/일, 후반기(2081~2100년) 12.8℃/일로 경향성은 +0.46℃/10년으로 조사되었다.

◦ SSP3-7.0 시나리오에서는 전반기(2021~2040년) 10.4℃/일, 중반기(2041~2060년) 11.9℃/일, 후반기(2081~2100년) 14.7℃/일로 경향성은 +0.71℃/10년으로 조사되었다.

◦ SSP5-8.5 시나리오에서는 전반기(2021~2040년) 10.5℃/일, 중반기(2041~2060년) 12.1℃/일, 후반기(2081~2100년) 15.7℃/일로 경향성은 +0.83℃/10년으로 조사되었다.

<표 1.3 - 26> SSP 시나리오별 연간 최저기온 전망

(단위 : ℃/일)

구분		SSP1-2.6	SSP2-4.5	SSP3-7.0	SSP5-8.5
서울특별시	현재(2000~2019년)	9.0	9.0	9.0	9.0
	전반기(2021~2040년)	10.4	10.3	10.4	10.5
	중반기(2041~2060년)	10.7	11.3	11.9	12.1
	후반기(2081~2100년)	11.4	12.8	14.7	15.7
	경향성(10년당)	+0.27	+0.46	+0.71	+0.83

자료 : 기상청 기후정보포털(www.climate.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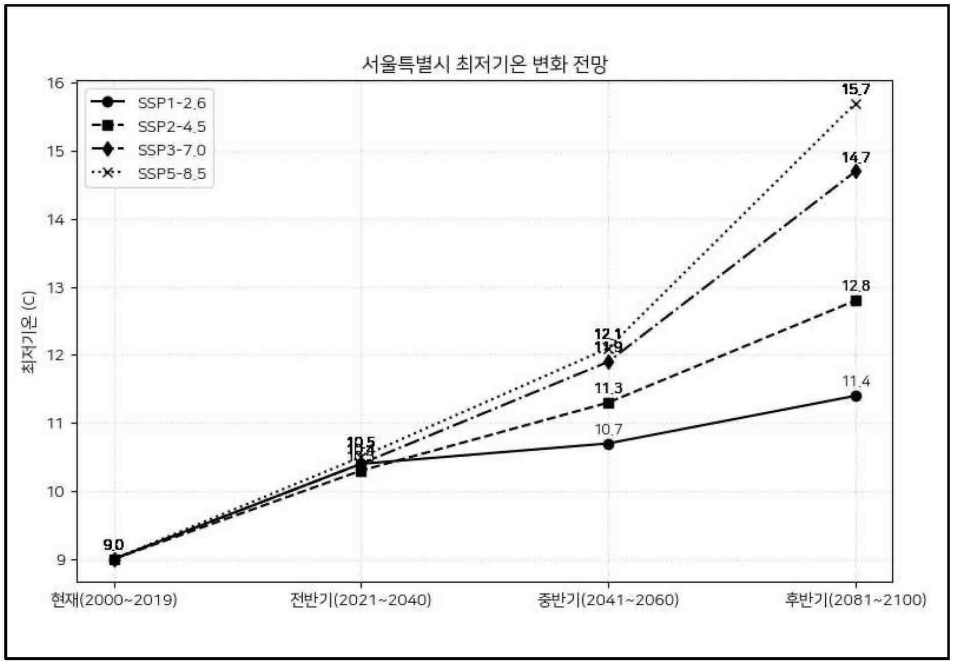

(그림 1.3 - 15) 연간 최저기온 전망

SSP1-2.6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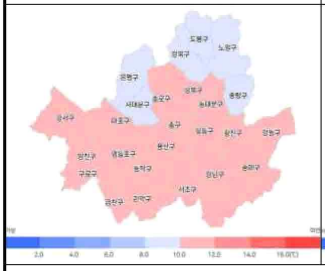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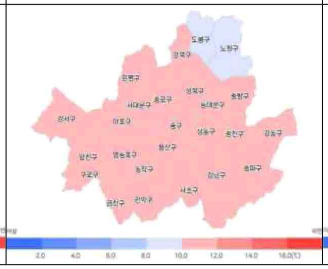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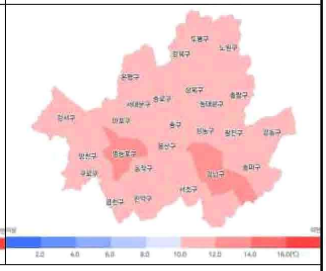
SSP2-4.5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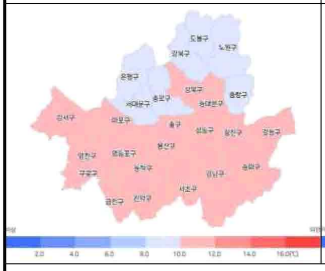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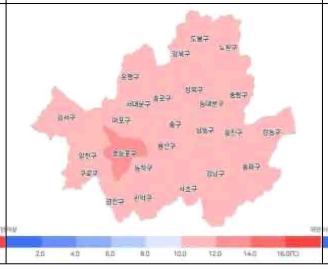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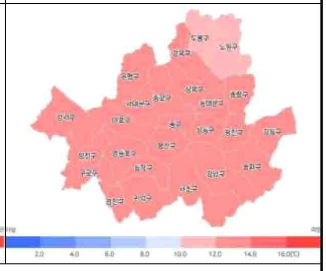
SSP3-7.0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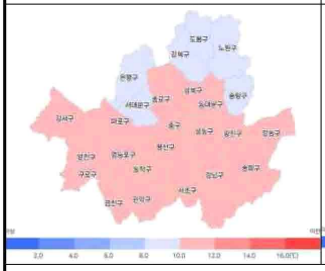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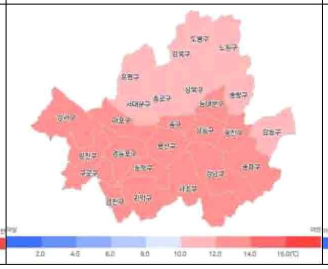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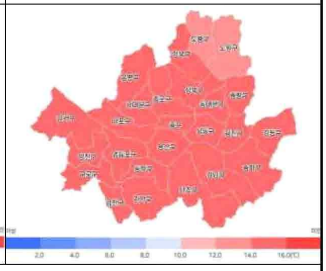
SSP5-8.5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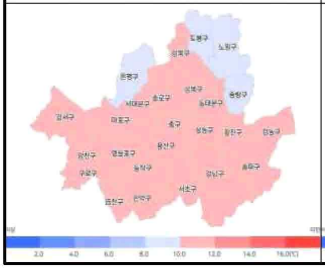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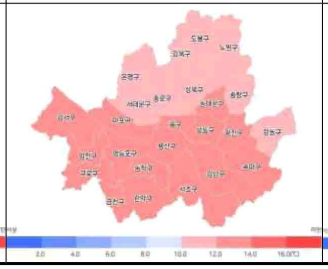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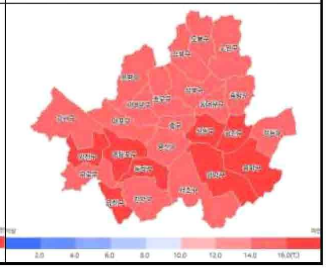

(그림 1.3 - 16)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별 연간 최저기온 분포도

4) 강수량

◦ 서울특별시의 연간 강수량 전망은 SSP1-2.6 시나리오에서 전반기(2021~2040년) 1,337.3mm/년, 중반기(2041~2060년) 1,435.0mm/년, 후반기(2081~2100년) 1,422.1mm/년으로 경향성은 +18.96mm/10년으로 조사되었다.

◦ SSP2-4.5 시나리오에서는 전반기(2021~2040년) 1,434.6mm/년, 중반기(2041~2060년) 1,462.0mm/년, 후반기(2081~2100년) 1,534.9mm/년으로 경향성은 +29.63mm/10년으로 조사되었다.

◦ SSP3-7.0 시나리오에서는 전반기(2021~2040년) 1,402.5mm/년, 중반기(2041~2060년) 1,379.9mm/년, 후반기(2081~2100년) 1,515.7mm/년으로 경향성은 +27.32mm/10년으로 조사되었다.

◦ SSP5-8.5 시나리오에서는 전반기(2021~2040년) 1,331.4mm/년, 중반기(2041~2060년) 1,396.8mm/년, 후반기(2081~2100년) 1,521.9mm/년으로 경향성은 +31.29mm/10년으로 조사되었다.

<표 1.3 - 27> SSP 시나리오별 연간 강수량 전망

(단위 : mm/년)

구분		SSP1-2.6	SSP2-4.5	SSP3-7.0	SSP5-8.5
서울특별시	현재(2000~2019년)	1,269.6	1,269.6	1,269.6	1,269.6
	전반기(2021~2040년)	1,337.3	1,434.6	1,402.5	1,331.4
	중반기(2041~2060년)	1,435.0	1,462.0	1,379.9	1,396.8
	후반기(2081~2100년)	1,422.1	1,534.9	1,515.7	1,521.9
	경향성(10년당)	+18.96	+29.63	+27.32	+31.29

자료 : 기상청 기후정보포털(www.climate.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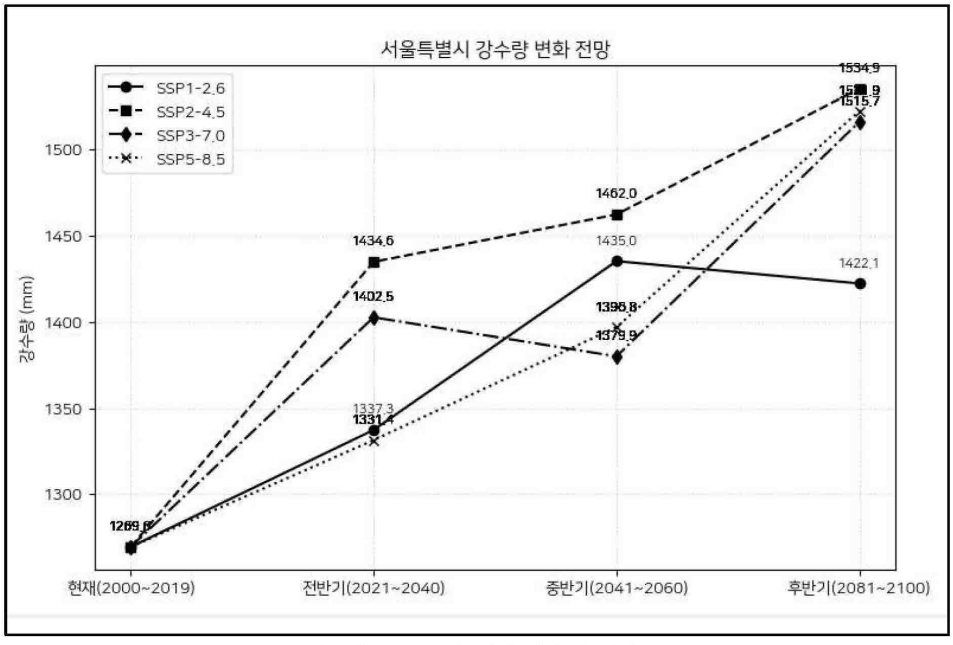

(그림 1.3 - 17) 연간 강수량 전망

SSP1-2.6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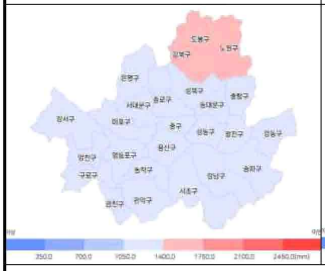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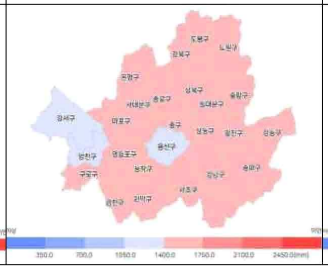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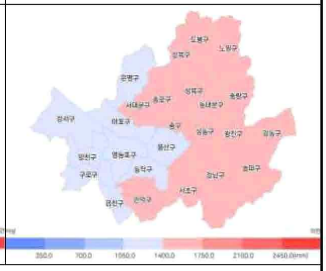
SSP2-4.5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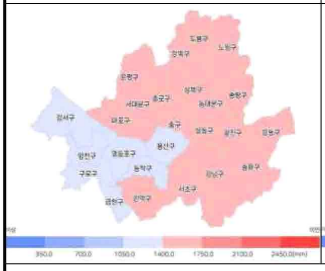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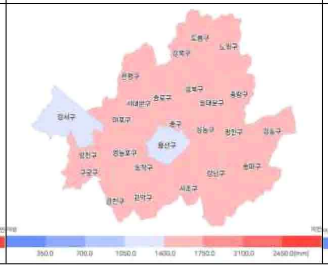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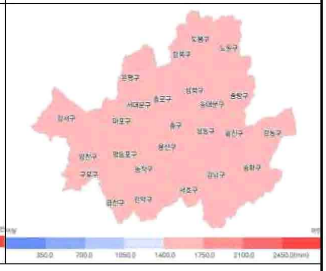
SSP3-7.0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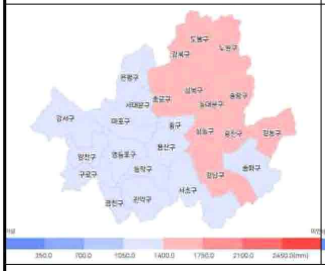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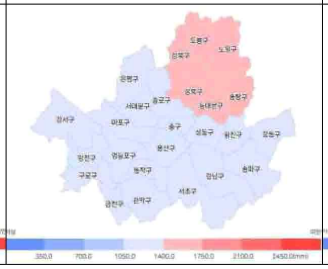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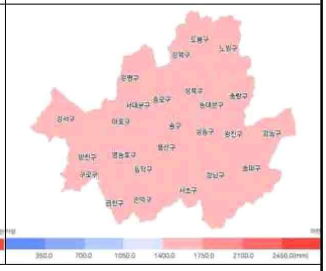
SSP5-8.5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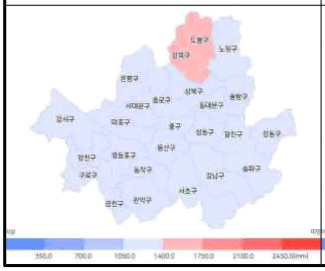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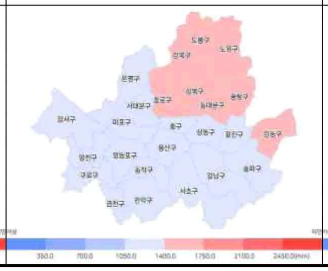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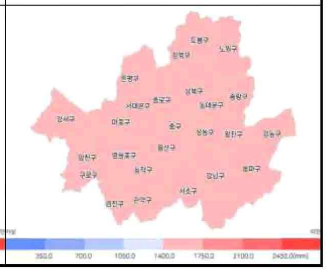

(그림 1.3 - 18)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별 연간 강수량 분포도

5) 폭염일수

◦ 서울특별시의 연간 폭염일수 전망은 SSP1-2.6 시나리오에서 전반기(2021~2040년) 30.8일/년, 중반기(2041~2060년) 37.6일/년, 후반기(2081~2100년) 42.7일/년으로 경향성은 +3.19일/10년으로 조사되었다.

◦ SSP2-4.5 시나리오에서는 전반기(2021~2040년) 33.9일/년, 중반기(2041~2060년) 43.4일/년, 후반기(2081~2100년) 59.2일/년으로 경향성은 +5.24일/10년으로 조사되었다.

◦ SSP3-7.0 시나리오에서는 전반기(2021~2040년) 31.6일/년, 중반기(2041~2060년) 52.0일/년, 후반기(2081~2100년) 91.8일/년으로 경향성은 +9.59일/10년으로 조사되었다.

◦ SSP5-8.5 시나리오에서는 전반기(2021~2040년) 33.4일/년, 중반기(2041~2060년) 54.7일/년, 후반기(2081~2100년) 109.8일/년으로 경향성은 +11.84일/10년으로 조사되었다.

<표 1.3.2 - 6> SSP 시나리오별 연간 폭염일수 전망

(단위 : 일/년)

구분		SSP1-2.6	SSP2-4.5	SSP3-7.0	SSP5-8.5
서울 특별시	현재(2000~2019년)	15.0	15.0	15.0	15.0
	전반기(2021~2040년)	30.8	33.9	31.6	33.4
	중반기(2041~2060년)	37.6	43.4	52.0	54.7
	후반기(2081~2100년)	42.7	59.2	91.8	109.8
	경향성(10년당)	+3.19	+5.24	+9.59	+11.84

자료 : 기상청 기후정보포털(www.climate.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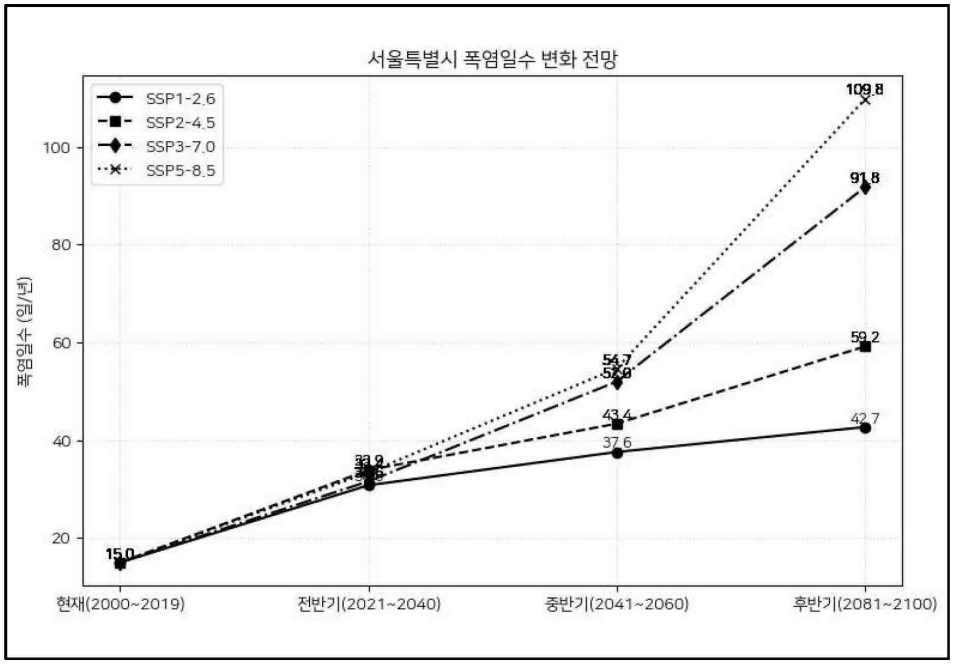

(그림 1.3 - 19) 연간 폭염일수 전망

SSP1-2.6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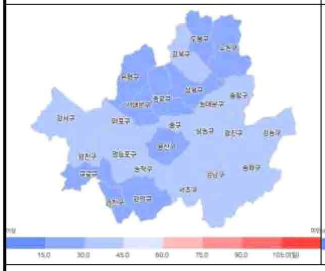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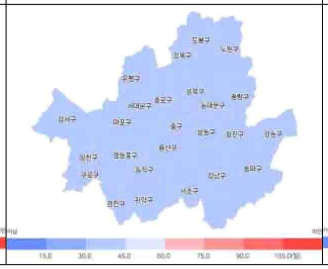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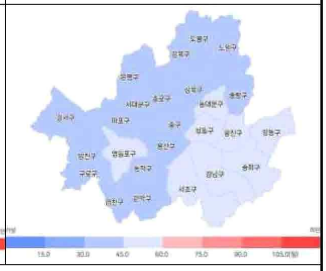
SSP2-4.5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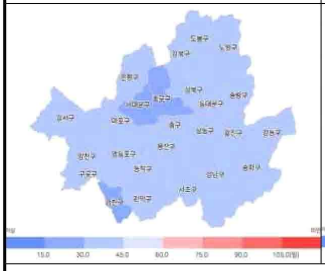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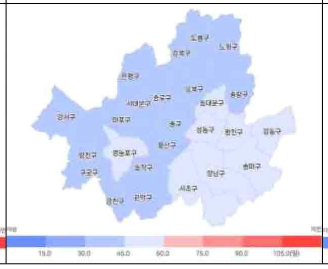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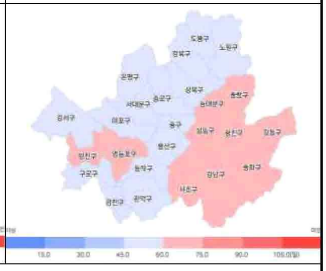
SSP3-7.0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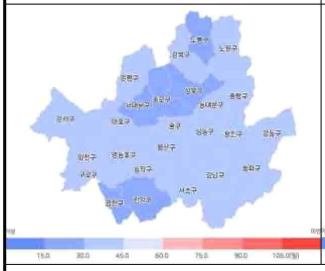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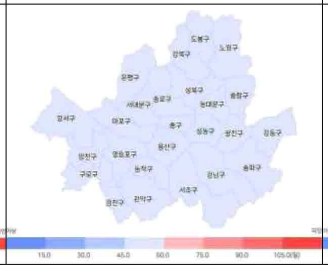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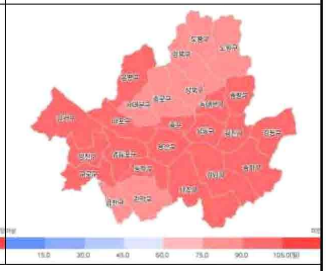
SSP5-8.5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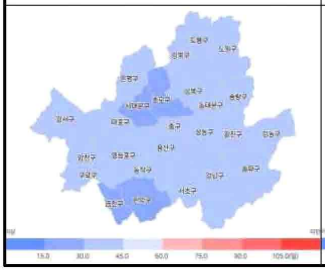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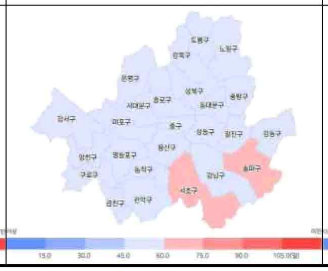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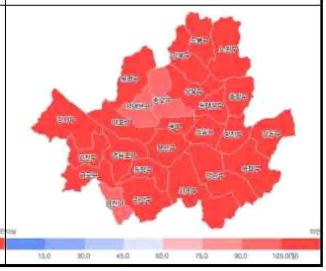

(그림 1.3 - 20)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별 연간 폭염일수 분포도

6) 열대야일수

◦ 서울특별시의 연간 열대야일수 전망은 SSP1-2.6 시나리오에서 전반기(2021~2040년) 33.9일/년, 중반기(2041~2060년) 39.9일/년, 후반기(2081~2100년) 41.7일/년으로 경향성은 +3.34일/10년으로 조사되었다.

◦ SSP2-4.5 시나리오에서는 전반기(2021~2040년) 33.0일/년, 중반기(2041~2060년) 44.4일/년, 후반기(2081~2100년) 60.4일/년으로 경향성은 +5.81일/10년으로 조사되었다.

◦ SSP3-7.0 시나리오에서는 전반기(2021~2040년) 32.5일/년, 중반기(2041~2060년) 49.6일/년, 후반기(2081~2100년) 83.9일/년으로 경향성은 +8.89일/10년으로 조사되었다.

◦ SSP5-8.5 시나리오에서는 전반기(2021~2040년) 33.0일/년, 중반기(2041~2060년) 51.1일/년, 후반기(2081~2100년) 96.1일/년으로 경향성은 +10.43일/10년으로 조사되었다.

<표 1.3.2 - 7> SSP 시나리오별 연간 열대야일수 전망

(단위 : 일/년)

구분		SSP1-2.6	SSP2-4.5	SSP3-7.0	SSP5-8.5
서울특별시	현재(2000~2019년)	11.3	11.3	11.3	11.3
	전반기(2021~2040년)	33.9	33.0	32.5	33.0
	중반기(2041~2060년)	39.9	44.4	49.6	51.1
	후반기(2081~2100년)	41.7	60.4	83.9	96.1
	경향성(10년당)	+3.34	+5.81	+8.89	+10.43

자료 : 기상청 기후정보포털(www.climate.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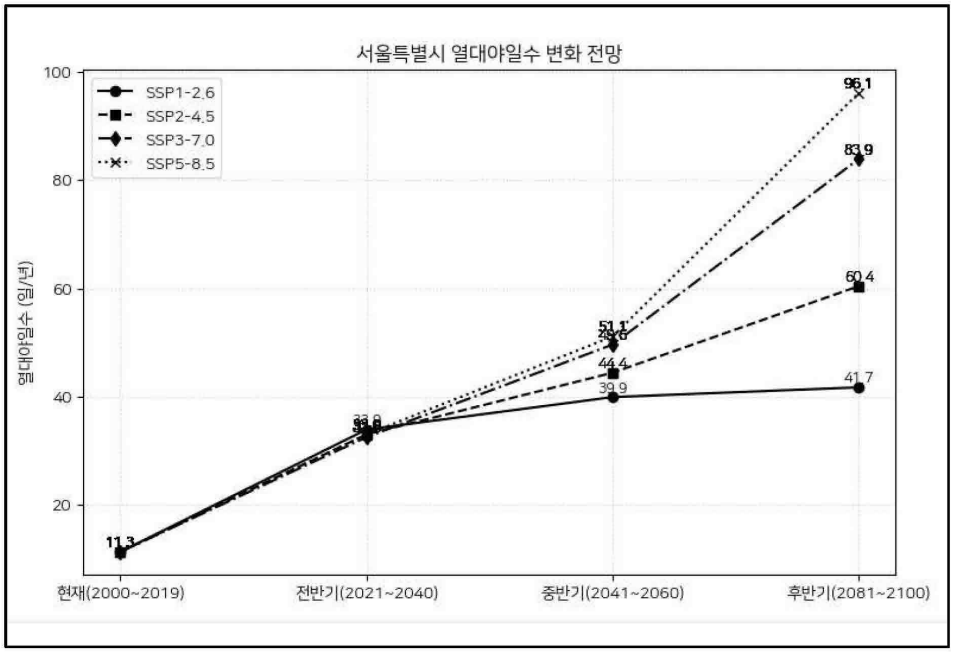

(그림 1.3 - 21) SSP 시나리오별 열대야일수 전망

SSP1-2.6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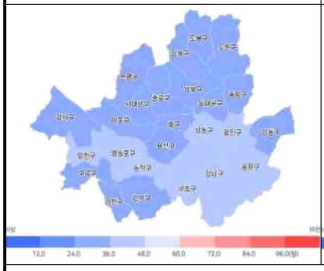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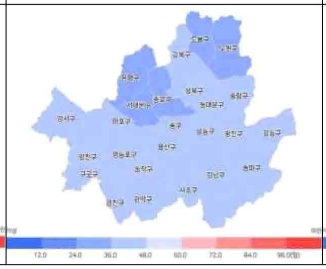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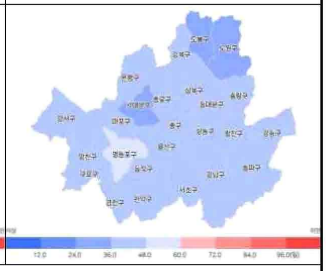
SSP2-4.5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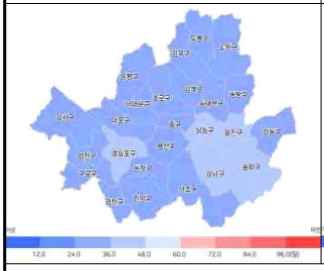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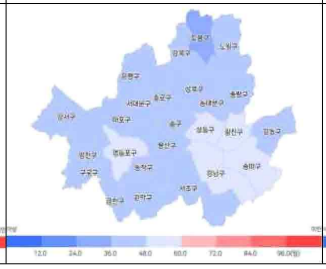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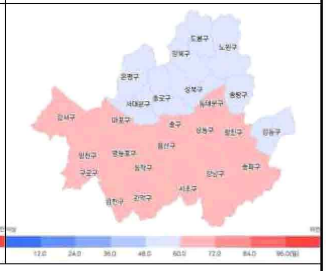
SSP3-7.0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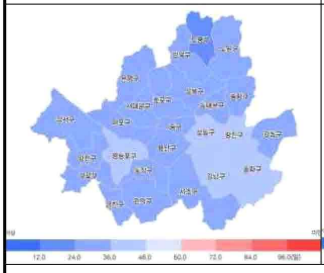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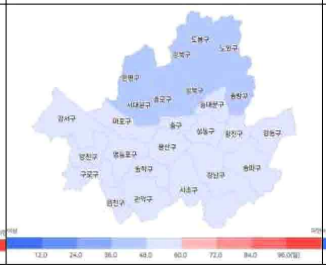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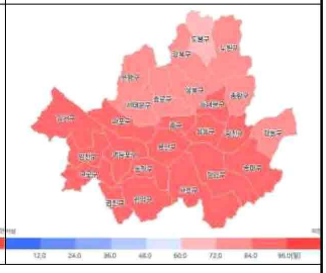
SSP5-8.5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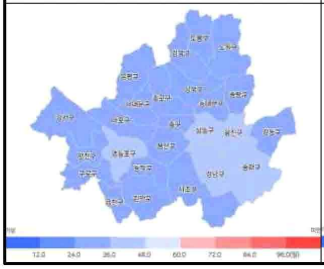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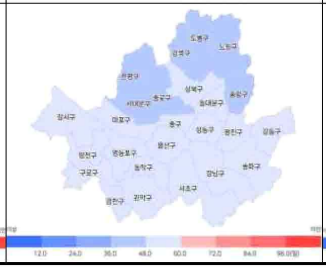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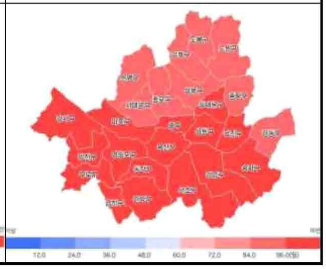

(그림 1.3 - 22)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별 연간 열대야일수 분포도

7) 연간 일최고기온

◦ 서울특별시의 연간 일최고기온 전망은 SSP1-2.6 시나리오에서 전반기(2021~2040년) 38.2℃/일, 중반기(2041~2060년) 39.2℃/일, 후반기(2081~2100년) 39.1℃/일로 경향성은 +0.36℃/10년으로 조사되었다.

◦ SSP2-4.5 시나리오에서는 전반기(2021~2040년) 38.6℃/일, 중반기(2041~2060년) 39.2℃/일, 후반기(2081~2100년) 40.3℃/일로 경향성은 +0.49℃/10년으로 조사되었다.

◦ SSP3-7.0 시나리오에서는 전반기(2021~2040년) 38.4℃/일, 중반기(2041~2060년) 40.1℃/일, 후반기(2081~2100년) 43.0℃/일로 경향성은 +0.86℃/10년으로 조사되었다.

◦ SSP5-8.5 시나리오에서는 전반기(2021~2040년) 38.5℃/일, 중반기(2041~2060년) 39.8℃/일, 후반기(2081~2100년) 43.8℃/일로 경향성은 +0.95℃/10년으로 조사되었다.

<표 1.3 - 28> SSP 시나리오별 연간 일최고기온 전망

(단위 : ℃/일)

구분		SSP1-2.6	SSP2-4.5	SSP3-7.0	SSP5-8.5
서울특별시	현재(2000~2019년)	35.9	35.9	35.9	35.9
	전반기(2021~2040년)	38.2	38.6	38.4	38.5
	중반기(2041~2060년)	39.2	39.2	40.1	39.8
	후반기(2081~2100년)	39.1	40.3	43.0	43.8
	경향성(10년당)	+0.36	+0.49	+0.86	+0.95

자료 : 기상청 기후정보포털(www.climate.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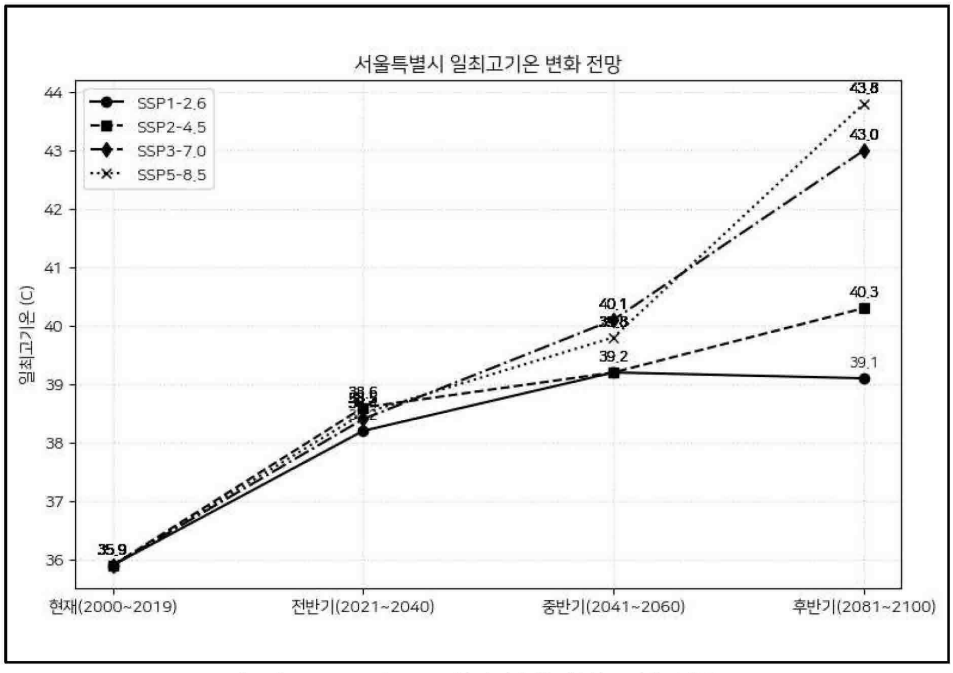

(그림 1.3 - 23) SSP 시나리오별 일최고기온 전망

SSP1-2.6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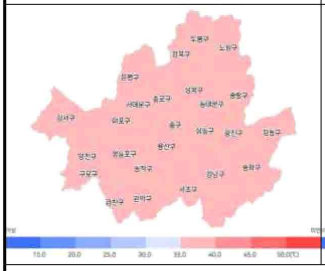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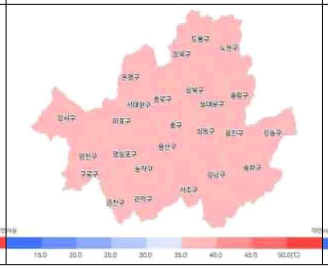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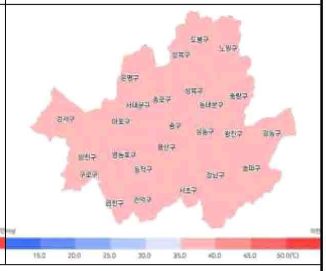
SSP2-4.5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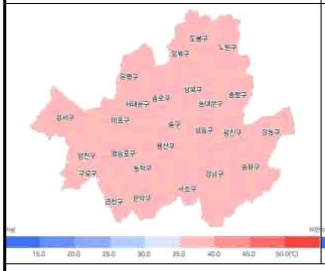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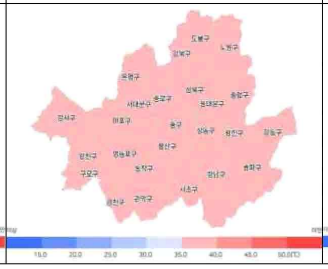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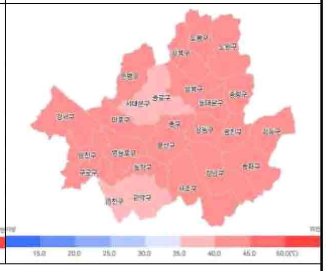
SSP3-7.0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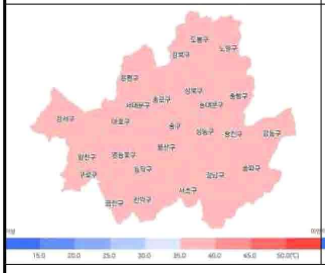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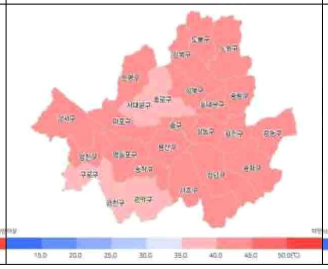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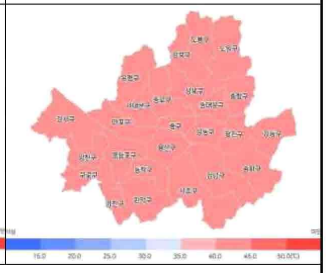
SSP5-8.5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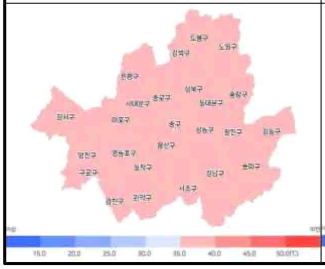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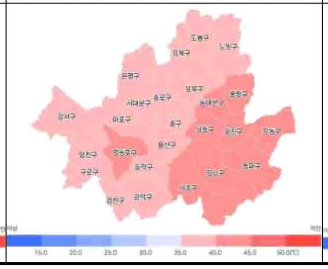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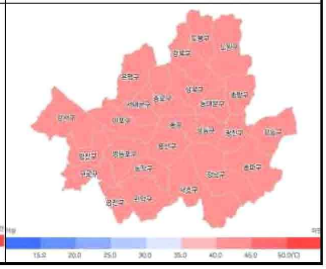

(그림 1.3 - 24)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별 연간 일최고기온 분포도

8) 연간 일최저기온

◦ 서울특별시의 연간 일최저기온 전망은 SSP1-2.6 시나리오에서 전반기(2021~2040년) -13.5℃/일, 중반기(2041~2060년) -13.7℃/일, 후반기(2081~2100년) -12.4℃/일로 경향성은 +0.21℃/10년으로 조사되었다.

◦ SSP2-4.5 시나리오에서는 전반기(2021~2040년) -14.0℃/일, 중반기(2041~2060년) -12.6℃/일, 후반기(2081~2100년) -9.9℃/일로 경향성은 +0.56℃/10년으로 조사되었다.

◦ SSP3-7.0 시나리오에서는 전반기(2021~2040년) -13.5℃/일, 중반기(2041~2060년) -11.6℃/일, 후반기(2081~2100년) -7.9℃/일로 경향성은 +0.81℃/10년으로 조사되었다.

◦ SSP5-8.5 시나리오에서는 전반기(2021~2040년) -12.9℃/일, 중반기(2041~2060년) -11.6℃/일, 후반기(2081~2100년) -6.6℃/일로 경향성은 +0.95℃/10년으로 조사되었다.

<표 1.3 - 29> SSP 시나리오별 연간 일최저기온 전망

(단위 : ℃/일)

구분		SSP1-2.6	SSP2-4.5	SSP3-7.0	SSP5-8.5
서울특별시	현재(2000~2019년)	-14.2	-14.2	-14.2	-14.2
	전반기(2021~2040년)	-13.5	-14.0	-13.5	-12.9
	중반기(2041~2060년)	-13.7	-12.6	-11.6	-11.6
	후반기(2081~2100년)	-12.4	-9.9	-7.9	-6.6
	경향성(10년당)	+0.21	+0.56	+0.81	+0.95

자료 : 기상청 기후정보포털(www.climate.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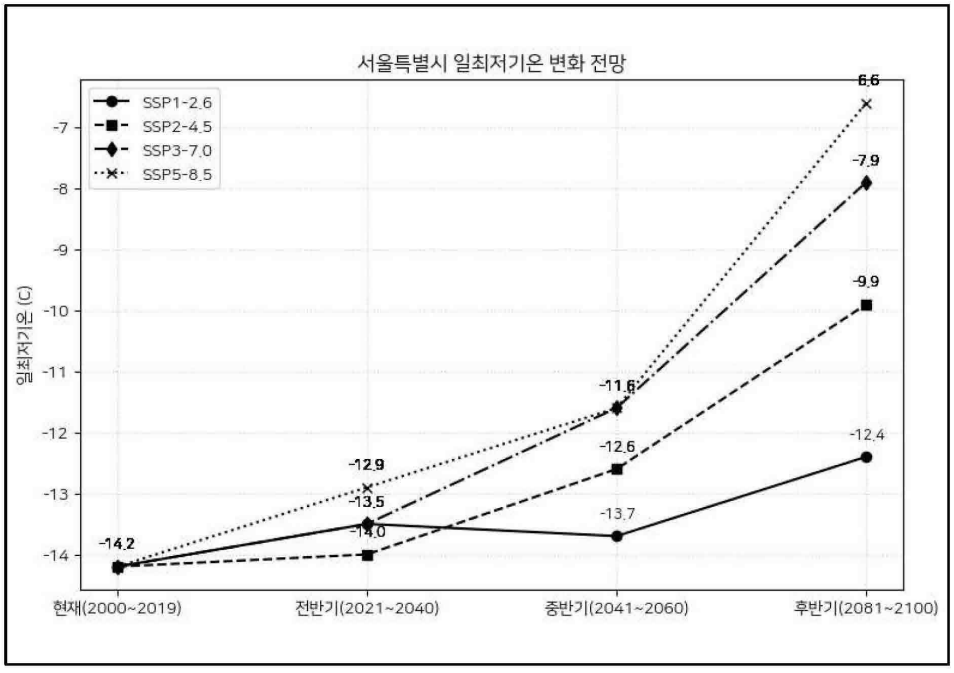

(그림 1.3 - 25) 연간 일최저기온 전망

SSP1-2.6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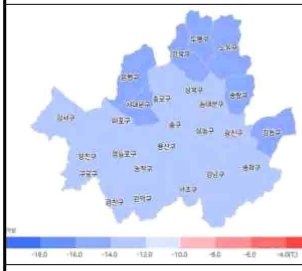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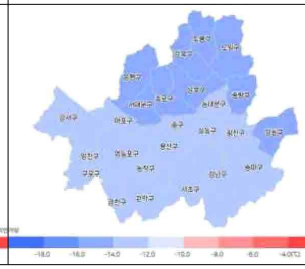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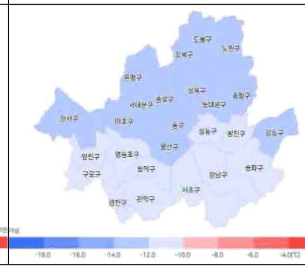
SSP2-4.5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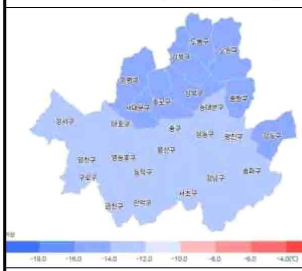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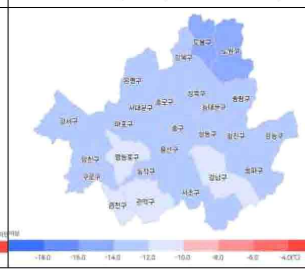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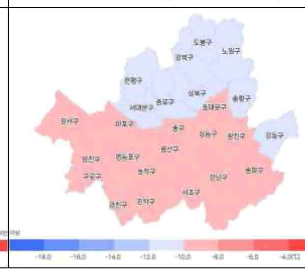
SSP3-7.0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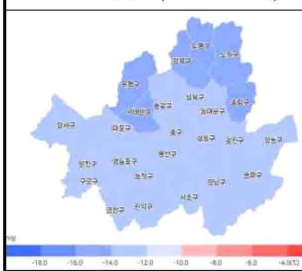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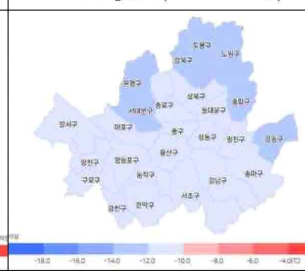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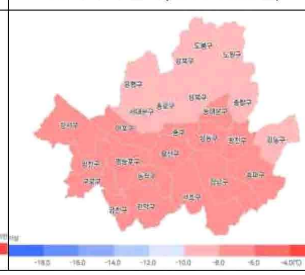
SSP5-8.5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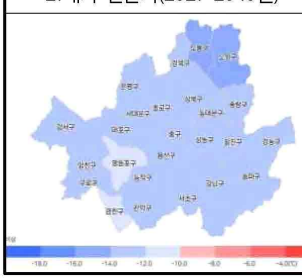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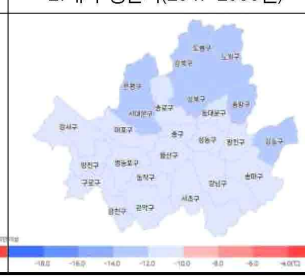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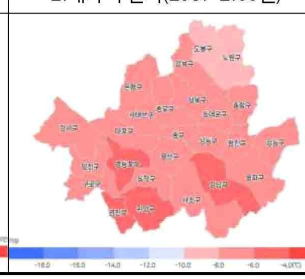

(그림 1.3 - 26)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별 연간 일최저기온 분포도

9) 한파일수

◦ 서울특별시의 연간 한파일수 전망은 SSP1-2.6 시나리오에서 전반기(2021~2040년) 3.9일/년, 중반기(2041~2060년) 4.6일/년, 후반기(2081~2100년) 2.0일/년으로 경향성은 -0.28일/10년으로 조사되었다.

◦ SSP2-4.5 시나리오에서는 전반기(2021~2040년) 5.5일/년, 중반기(2041~2060년) 2.3일/년, 후반기(2081~2100년) 0.3일/년으로 경향성은 -0.59일/10년으로 조사되었다.

◦ SSP3-7.0 시나리오에서는 전반기(2021~2040년) 3.4일/년, 중반기(2041~2060년) 1.2일/년, 후반기(2081~2100년) 0.0일/년으로 경향성은 -0.56일/10년으로 조사되었다.

◦ SSP5-8.5 시나리오에서는 전반기(2021~2040년) 2.6일/년, 중반기(2041~2060년) 1.5일/년, 후반기(2081~2100년) 0.0일/년으로 경향성은 -0.52일/10년으로 조사되었다.

<표 1.3 - 30> SSP 시나리오별 연간 한파일수 전망

(단위 : 일/년)

구분		SSP1-2.6	SSP2-4.5	SSP3-7.0	SSP5-8.5
서울 특별시	현재(2000~2019년)	4.4	4.4	4.4	4.4
	전반기(2021~2040년)	3.9	5.5	3.4	2.6
	중반기(2041~2060년)	4.6	2.3	1.2	1.5
	후반기(2081~2100년)	2.0	0.3	0.0	0.0
	경향성(10년당)	-0.28	-0.59	-0.56	-0.52

자료 : 기상청 기후정보포털(www.climate.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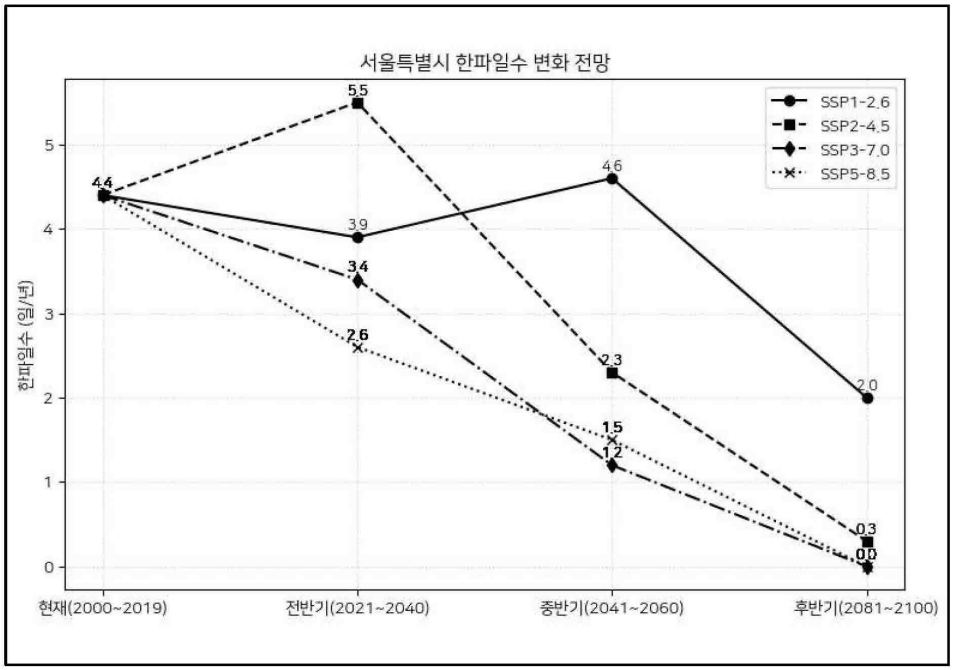

(그림 1.3 - 27) 연간 한파일수 전망

SSP1-2.6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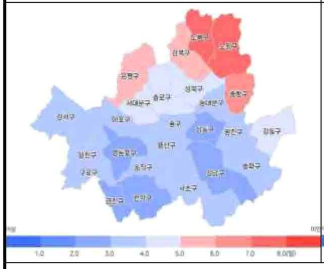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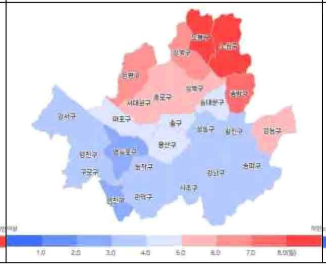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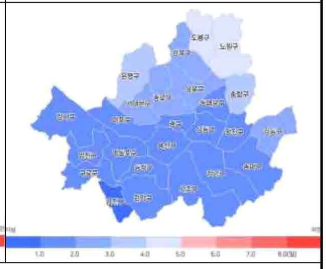
SSP2-4.5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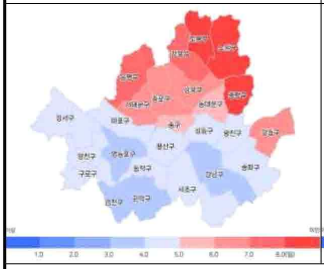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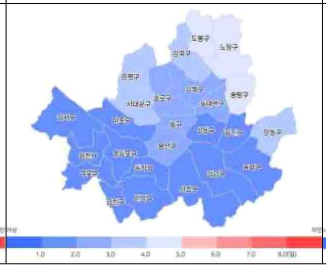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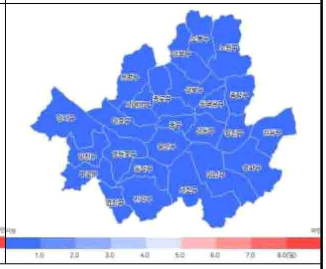
SSP3-7.0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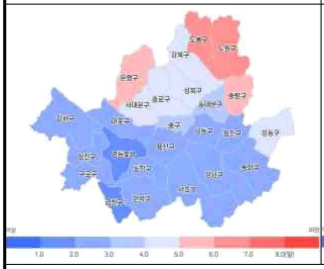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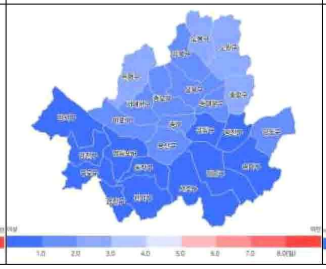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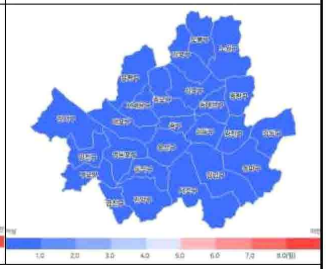
SSP5-8.5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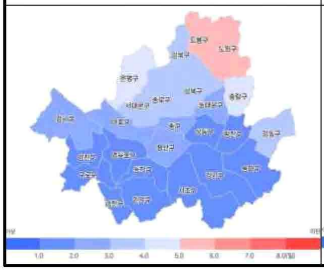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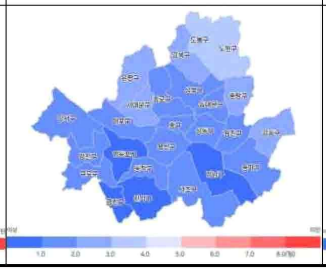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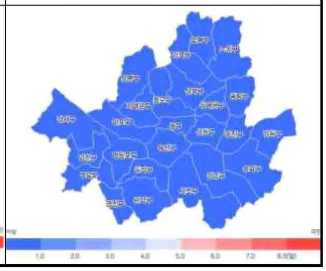

(그림 1.3 - 28)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별 연간 한파일수 분포도

11) 결빙일수

◦ 서울특별시의 연간 결빙일수 전망은 SSP1-2.6 시나리오에서 전반기(2021~2040년) 14.3일/년, 중반기(2041~2060년) 16.1일/년, 후반기(2081~2100년) 11.7일/년으로 경향성은 -0.69일/10년으로 조사되었다.

◦ SSP2-4.5 시나리오에서는 전반기(2021~2040년) 17.7일/년, 중반기(2041~2060년) 11.1일/년, 후반기(2081~2100년) 4.5일/년으로 경향성은 -1.82일/10년으로 조사되었다.

◦ SSP3-7.0 시나리오에서는 전반기(2021~2040년) 15.5일/년, 중반기(2041~2060년) 8.2일/년, 후반기(2081~2100년) 1.6일/년으로 경향성은 -2.14일/10년으로 조사되었다.

◦ SSP5-8.5 시나리오에서는 전반기(2021~2040년) 11.6일/년, 중반기(2041~2060년) 9.0일/년, 후반기(2081~2100년) 0.6일/년으로 경향성은 -2.09일/10년으로 조사되었다.

<표 1.3 - 31> SSP 시나리오별 연간 결빙일수 전망

(단위 : 일/년)

구분		SSP1-2.6	SSP2-4.5	SSP3-7.0	SSP5-8.5
서울 특별시	현재(2000~2019년)	18.2	18.2	18.2	18.2
	전반기(2021~2040년)	14.3	17.7	15.5	11.6
	중반기(2041~2060년)	16.1	11.1	8.2	9.0
	후반기(2081~2100년)	11.7	4.5	1.6	0.6
	경향성(10년당)	-0.69	-1.82	-2.14	-2.09

자료 : 기상청 기후정보포털(www.climate.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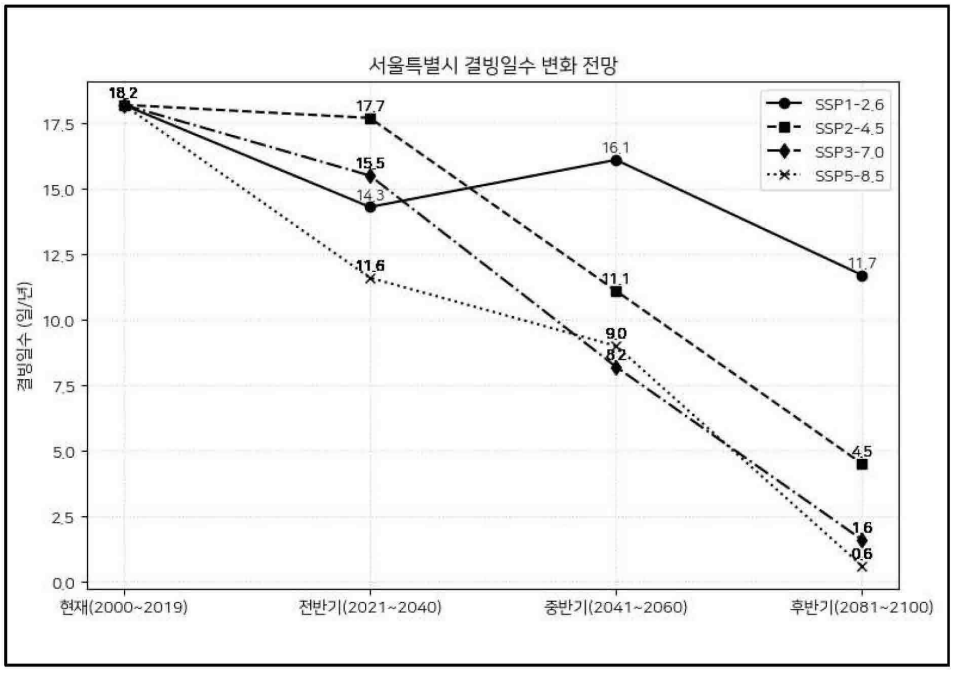

(그림 1.3 - 29) 연간 결빙일수 전망

SSP1-2.6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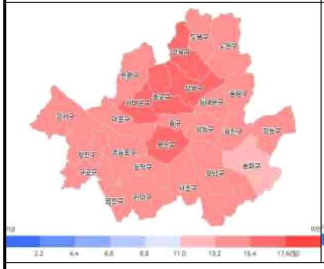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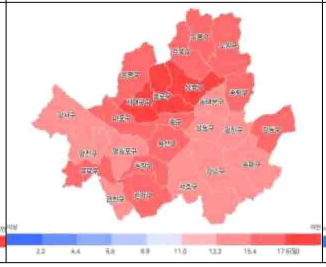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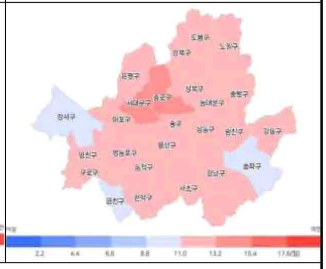
SSP2-4.5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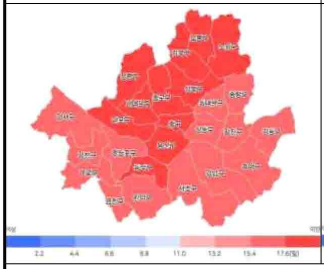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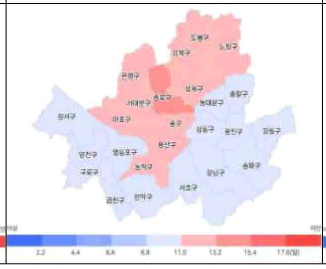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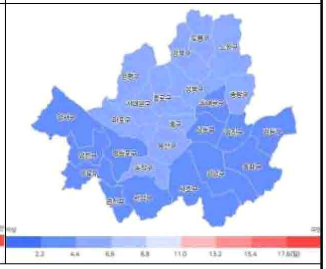
SSP3-7.0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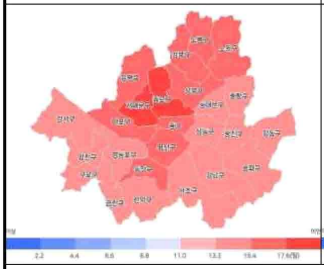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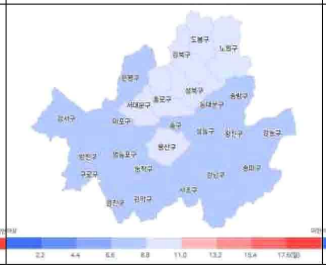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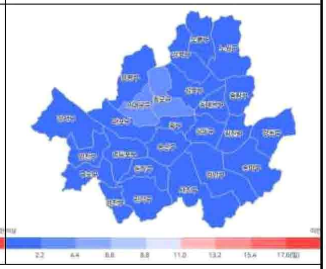
SSP5-8.5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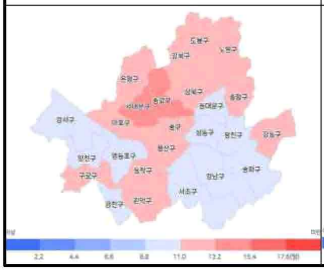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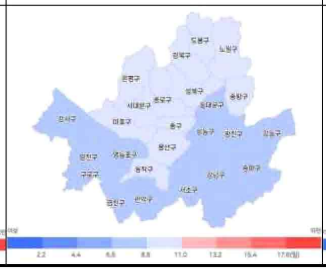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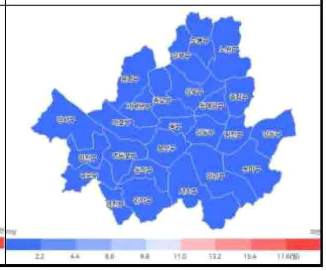

(그림 1.3 - 30)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별 연간 결빙일수 분포도

12) 서리일수

◦ 서울특별시의 연간 서리일수 전망은 SSP1-2.6 시나리오에서 전반기(2021~2040년) 71.7일/년, 중반기(2041~2060년) 74.5일/년, 후반기(2081~2100년) 63.0일/년으로 경향성은 -2.87일/10년으로 조사되었다.

◦ SSP2-4.5 시나리오에서는 전반기(2021~2040년) 76.8일/년, 중반기(2041~2060년) 65.7일/년, 후반기(2081~2100년) 53.6일/년으로 경향성은 -4.40일/10년으로 조사되었다.

◦ SSP3-7.0 시나리오에서는 전반기(2021~2040년) 72.5일/년, 중반기(2041~2060년) 58.0일/년, 후반기(2081~2100년) 37.4일/년으로 경향성은 -6.39일/10년으로 조사되었다.

◦ SSP5-8.5 시나리오에서는 전반기(2021~2040년) 70.2일/년, 중반기(2041~2060년) 59.3일/년, 후반기(2081~2100년) 33.7일/년으로 경향성은 -6.75일/10년으로 조사되었다.

<표 1.3.2 - 10> SSP 시나리오별 연간 서리일수 전망

(단위 : 일/년)

구분		SSP1-2.6	SSP2-4.5	SSP3-7.0	SSP5-8.5
서울 특별시	현재(2000~2019년)	89.8	89.8	89.8	89.8
	전반기(2021~2040년)	71.7	76.8	72.5	70.2
	중반기(2041~2060년)	74.5	65.7	58.0	59.3
	후반기(2081~2100년)	63.0	53.6	37.4	33.7
	경향성(10년당)	-2.87	-4.40	-6.39	-6.75

자료 : 기상청 기후정보포털(www.climate.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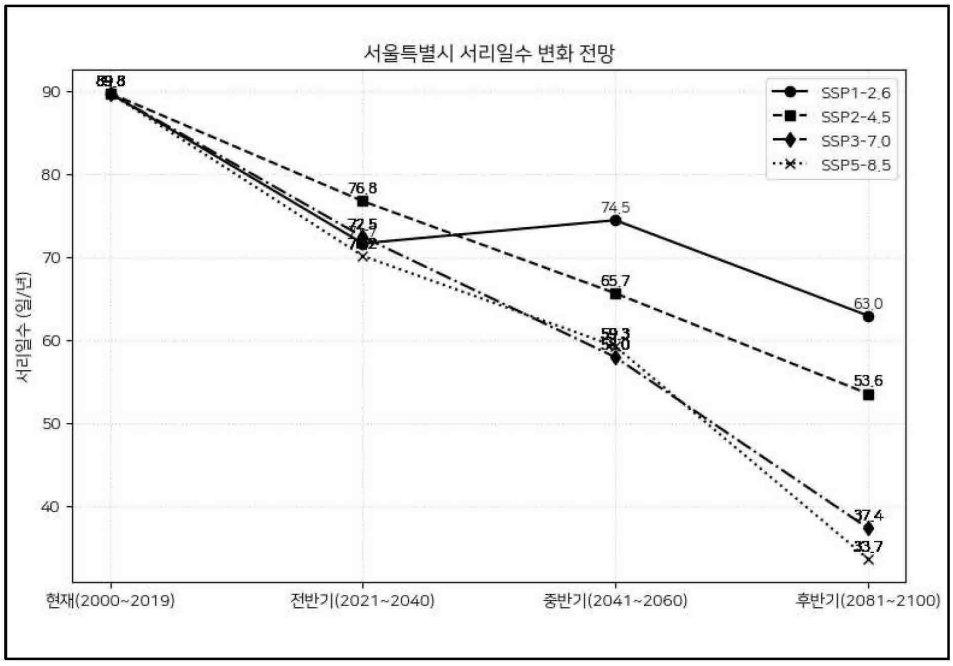

(그림 1.3 - 31) 연간 서리일수 전망

SSP1-2.6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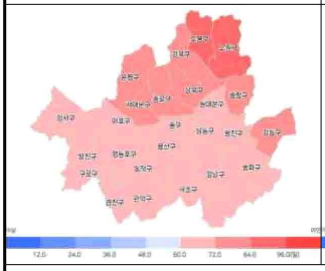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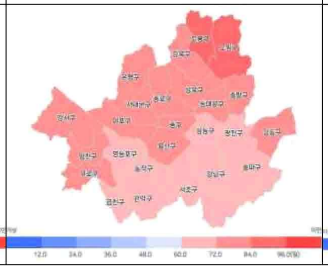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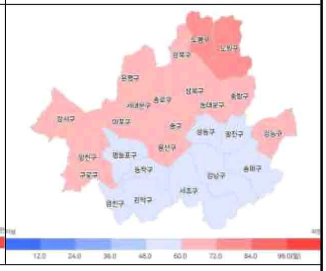
SSP2-4.5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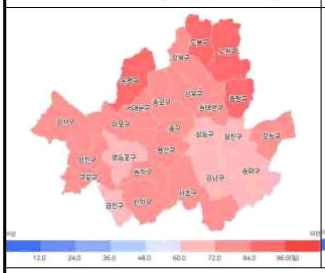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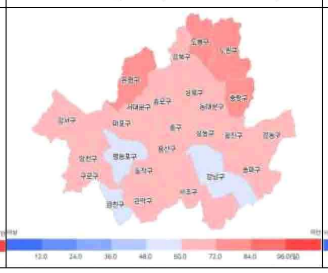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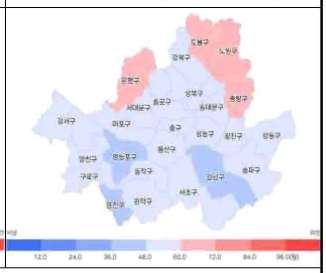
SSP3-7.0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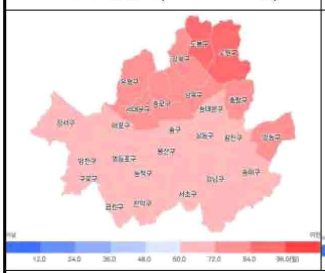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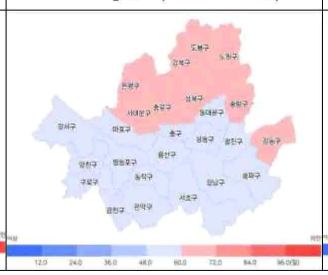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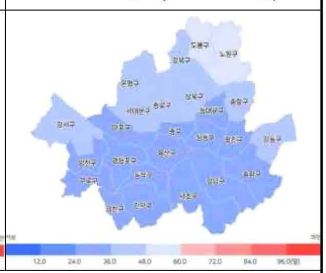
SSP5-8.5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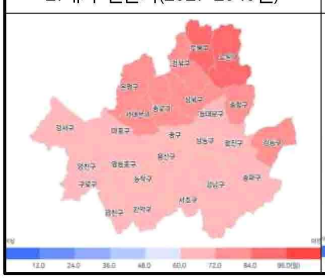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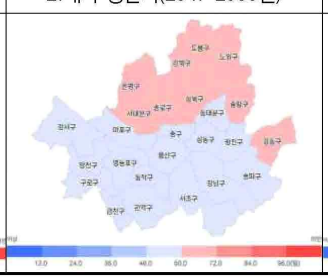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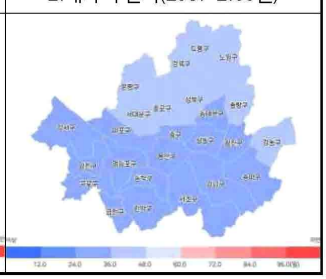

(그림 1.3 - 32)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별 연간 서리일수 분포도

13) 일 최다강수량

◦ 서울특별시의 연간 일 최다강수량 전망은 SSP1-2.6 시나리오에서 전반기(2021~2040년) 162.9mm/일, 중반기(2041~2060년) 188.1mm/일, 후반기(2081~2100년) 189.3일/년으로 경향성은 +6.04mm/일·10년으로 조사되었다.

◦ SSP2-4.5 시나리오에서는 전반기(2021~2040년) 179.9mm/일, 중반기(2041~2060년) 191.6mm/일, 후반기(2081~2100년) 194.5mm/일로 경향성은 +6.05mm/일·10년으로 조사되었다.

◦ SSP3-7.0 시나리오에서는 전반기(2021~2040년) 185.9mm/일, 중반기(2041~2060년) 178.0mm/일, 후반기(2081~2100년) 208.0mm/일로 경향성은 +7.31mm/일·10년으로 조사되었다.

◦ SSP5-8.5 시나리오에서는 전반기(2021~2040년) 169.9mm/일, 중반기(2041~2060년) 190.0mm/일, 후반기(2081~2100년) 188.8mm/일로 경향성은 +5.71mm/일·10년으로 조사되었다.

<표 1.3 - 32> SSP 시나리오별 연간 일 최다강수량 전망

(단위 : mm/일)

구분		SSP1-2.6	SSP2-4.5	SSP3-7.0	SSP5-8.5
서울특별시	현재(2000~2019년)	139.7	139.7	139.7	139.7
	전반기(2021~2040년)	162.9	179.9	185.9	169.9
	중반기(2041~2060년)	188.1	191.6	178.0	190.0
	후반기(2081~2100년)	189.3	194.5	208.0	188.8
	경향성(10년당)	+6.04	+6.05	+7.31	+5.71

자료 : 기상청 기후정보포털(www.climate.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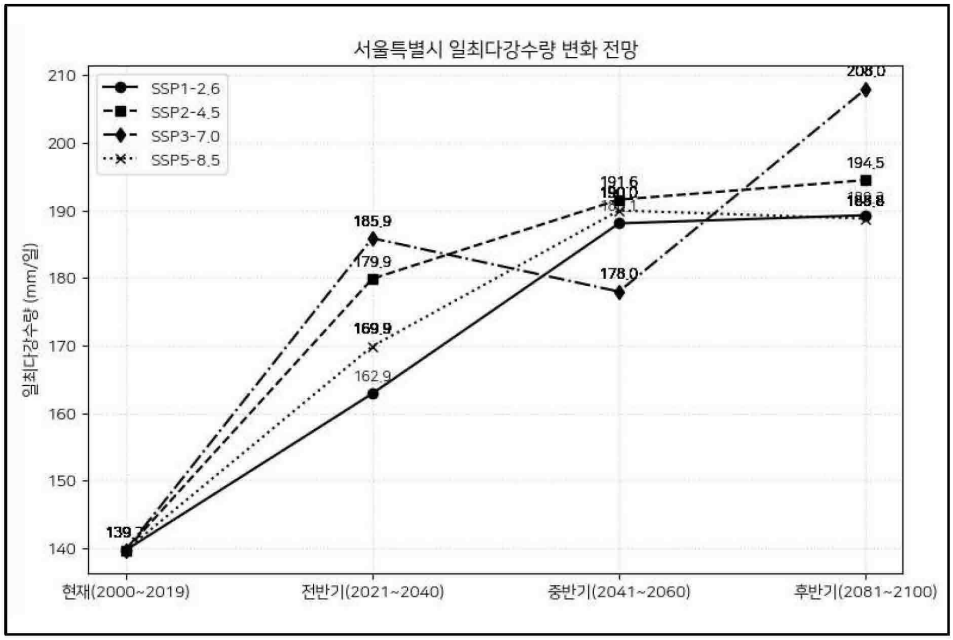

(그림 1.3 - 33) 일 최다강수량 전망

SSP1-2.6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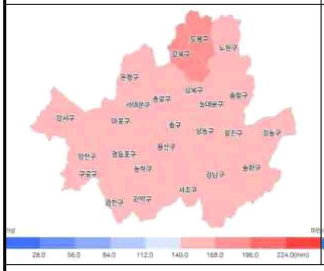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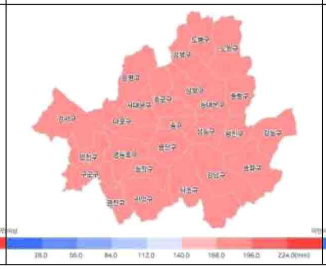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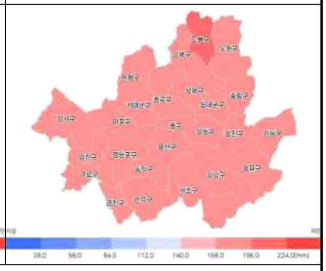
SSP2-4.5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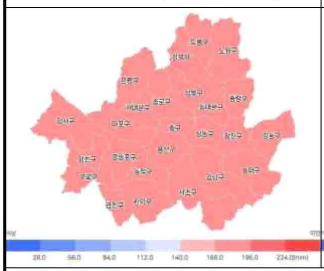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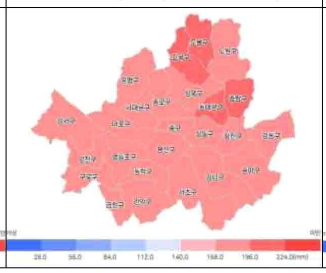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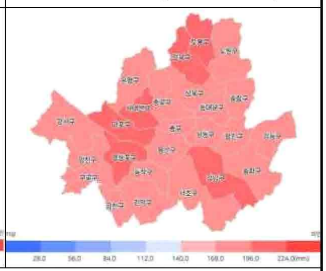
SSP3-7.0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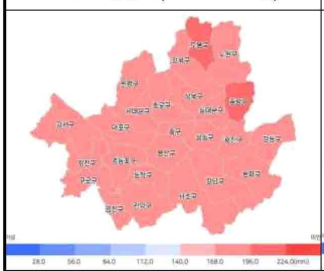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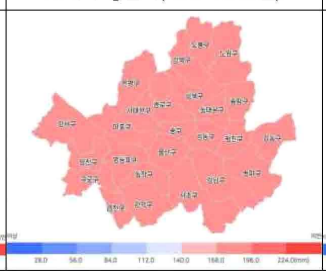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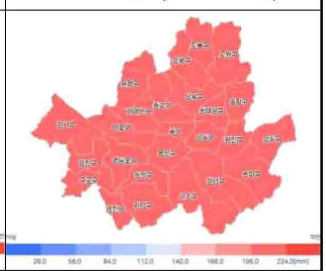
SSP5-8.5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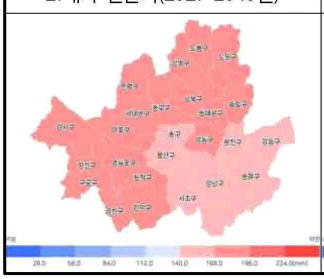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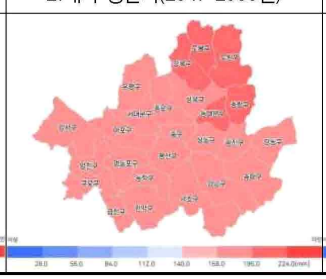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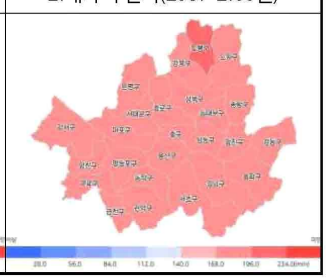

(그림 1.3 - 34)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별 일 최다강수량 분포도

14) 호우일수

◦ 서울특별시의 연간 호우일수 전망은 SSP1-2.6 시나리오에서 전반기(2021~2040년) 3.2일/년, 중반기(2041~2060년) 3.3일/년, 후반기(2081~2100년) 3.3일/년으로 경향성은 +0.06일/10년으로 조사되었다.

◦ SSP2-4.5 시나리오에서는 전반기(2021~2040년) 3.6일/년, 중반기(2041~2060년) 3.5일/년, 후반기(2081~2100년) 3.6일/년으로 경향성은 +0.09일/10년으로 조사되었다.

◦ SSP3-7.0 시나리오에서는 전반기(2021~2040년) 3.2일/년, 중반기(2041~2060년) 3.2일/년, 후반기(2081~2100년) 3.7일/년으로 경향성은 +0.11일/10년으로 조사되었다.

◦ SSP5-8.5 시나리오에서는 전반기(2021~2040년) 3.0일/년, 중반기(2041~2060년) 3.2일/년, 후반기(2081~2100년) 3.7일/년으로 경향성은 +0.12일/10년으로 조사되었다.

<표 1.3 - 33> SSP 시나리오별 연간 호우일수 전망

(단위 : 일/년)

구분		SSP1-2.6	SSP2-4.5	SSP3-7.0	SSP5-8.5
서울 특별시	현재(2000~2019년)	2.7	2.7	2.7	2.7
	전반기(2021~2040년)	3.2	3.6	3.2	3.0
	중반기(2041~2060년)	3.3	3.5	3.2	3.2
	후반기(2081~2100년)	3.3	3.6	3.7	3.7
	경향성(10년당)	+0.06	+0.09	+0.11	+0.12

자료 : 기상청 기후정보포털(www.climate.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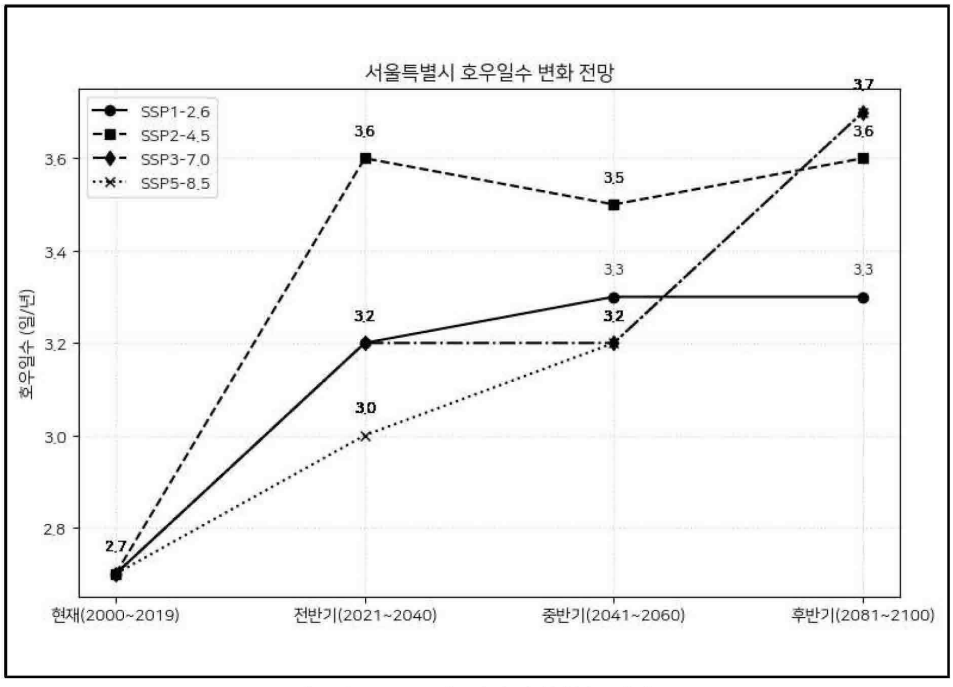

(그림 1.3 - 35) 연간 호우일수 전망

SSP1-2.6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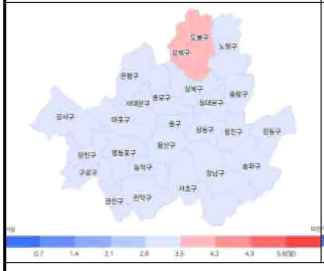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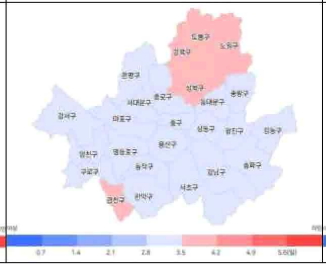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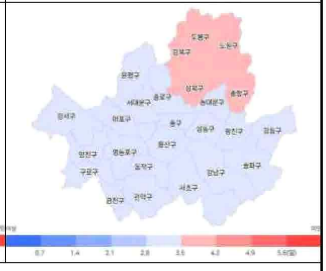
SSP2-4.5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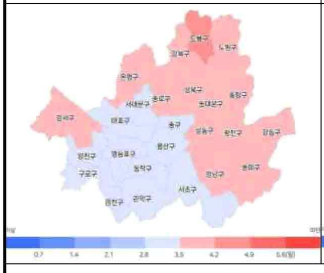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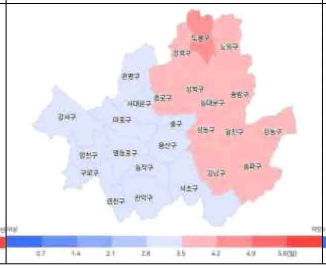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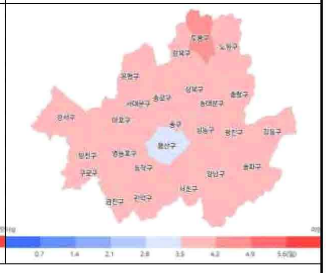
SSP3-7.0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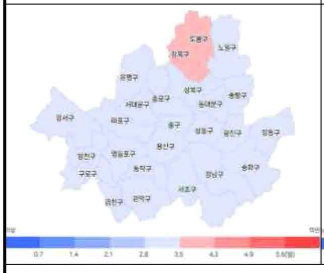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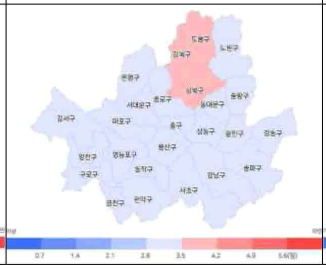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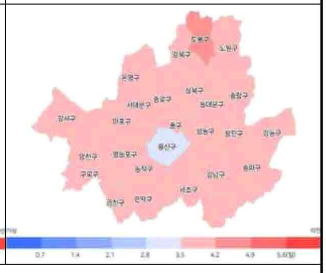
SSP5-8.5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	21세기 중반기(2041~2060년)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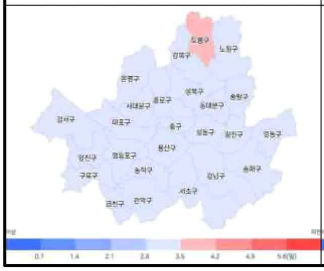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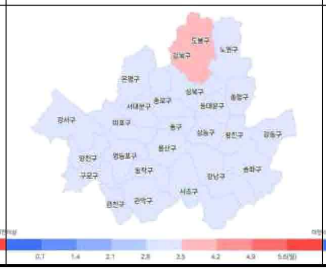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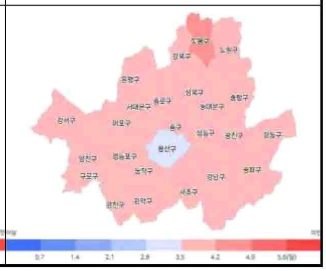

(그림 1.3 - 36) 연간 호우일수 분포도

1.4 결정된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1.4.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같은 법 11조(평가 항목, 범위등의 결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실시 전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1.4.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4조

◦ 주관행정기관 : 서울특별시

◦ 구 성 : 총 11인(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 협의기관,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등)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기간 : 2025. 7. 18 ~ 2025. 7. 25.

<표 1.4.2 -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위원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자격요건	관련법규 (법 시행령)
위원장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과 장	어○○	계획 수립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 지명	제4조제1항
위원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주무관	김○○	계획 수립기관의 장 등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제4조제2항 2호
위원	서초구 (청소행정과)	팀 장	이○○		제4조제2항 2호
위원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사무관	김○○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제4조제2항 1호
위원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주무관	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제4조제2항 4의2호
위원	한국환경연구원 (국토정책평가실)	선임연구위원	문○○	협의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민간(기후)전문가	제4조제2항 3의2호
위원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부연구위원	박○○		
위원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	사무국장	류○○	해당 계획 등과 관련한 학식 등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제4조제2항 3호
위원	생태보전시민모임	공동대표	민○○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제4조제2항 5호 나목
위원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김○○		
위원	양재1동 주민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공○○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제4조제2항 5호 가목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SEOUL MY SOUL'

서 울 특 별 시

서울시 홈페이지 seoul.go.kr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알림 및 평가서 서면심의 요청

1. 귀 기관(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전략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과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붙임1)하고 귀하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서면심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붙임2)를 참조하여 **'25. 7. 25.(금)까지** 물재생시설과로 심의 의견서(붙임3)를 회신(공문 또는 전자메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전자메일 : 김태형 주무관 / 2019120212007@seoul.go.kr

참　고

o 심의개요
- (안　　건)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전략·기후변화영향평가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심의기간) '25. 7.18일(금) ~ 25일(금)
- (심의내용)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전략·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붙임: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1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별도 송부) 1부.
3. 심의 의견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부장관(국토환경정책과장), 한강유역환경청장(환경평가과장), 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장), 한국환경연구원장, 민간전문가등(가축분뇨기질비료협동조합, 생태보전시민모임, 중앙대학교, 양재1동주민자치발전위원회) 협의위원(4)님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전결 07/15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0516　(2025. 7. 15.)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36　/전송 02-2133-1043　/ 2019120212007@seoul.go.kr　/ 부분공개(5)

(그림 1.4.2 -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공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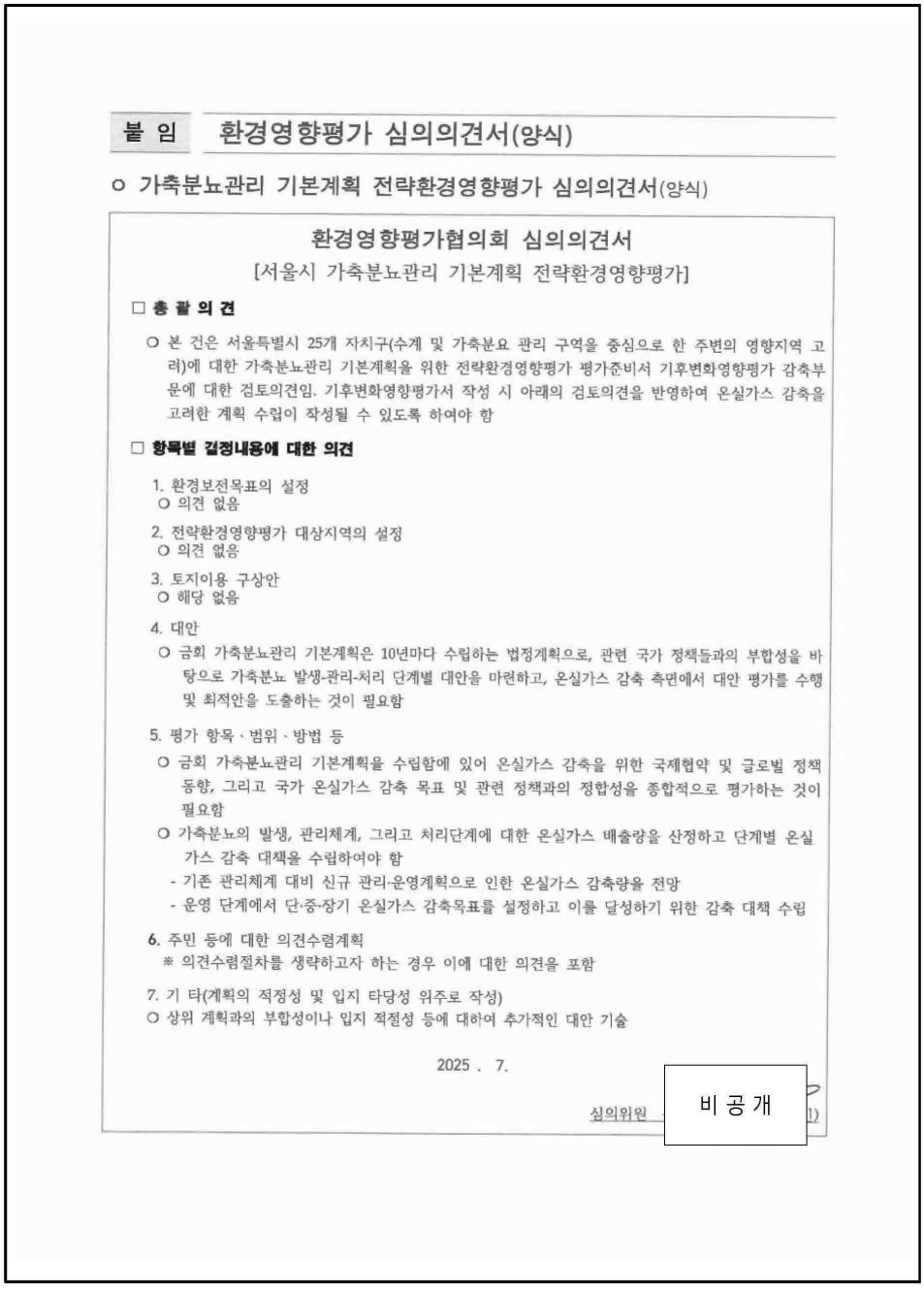

붙 임 환경영향평가 심의의견서(양식)

○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의견서(양식)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서울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괄 의 견**

○ 본 건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수계 및 가축분요 관리 구역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영향지역 고려)에 대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기후변화영향평가 감축부문에 대한 검토의견임.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시 아래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 수립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항목별 검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 없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 없음

3. 토지이용 구상안
○ 해당 없음

4. 대안
○ 금회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관련 국가 정책들과의 부합성을 바탕으로 가축분뇨 발생-관리-처리 단계별 대안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대안 평가를 수행 및 최적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금회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 및 글로벌 정책 동향, 그리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관련 정책과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 가축분뇨의 발생, 관리체계, 그리고 처리단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기존 관리체계 대비 신규 관리·운영계획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전망
- 운영 단계에서 단·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감축 대책 수립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안 기술

2025 . 7.

심의위원

비 공 개

(그림 1.4.2 -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검토의견

붙 임 환경영향평가 심의의견서(양식)

○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의견서(양식)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서울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괄 의 견**

○ 본 건은 서울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중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기후위기 적응 부분에 관한 의견으로 다음 의견을 반영하여 추후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작성 할 필요가 있음.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 없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 없음

3.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4. 대안
○ 의견 없음

5.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기후위기 적응 관련 계획 및 정책 검토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강화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계획, 환경계획 등 공간계획을 검토하여 본 사업과의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계획대상지의 특성에 맞는 리스크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 없음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 없음

2025. 7. 24.

심의위원 비 공 개

(그림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검토의견

1.4.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심의의견 및 조치내용

위원	구 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한국환경연구원(문○○)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4. 대안	◦금회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관련 국가 정책들과의 부합성을 바탕으로 가축분뇨 발생-관리-처리 단계별 대안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대안 평가를 수행 및 최적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본 계획과 국제협약 및 국가 정책,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가축수를 감소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도록 대안을 선정하여 계획하였음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금회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 및 글로벌 정책 동향, 그리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관련 정책과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가축분뇨의 발생, 관리체계, 그리고 처리 단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기존 관리체계 대비 신규 관리·운영 계획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전망 - 운영 단계에서 단·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감축 대책 수립	◦본 계획과 국제협약 및 국가 정책,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음 ◦별도의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통해 계획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산정 및 감축전략을 수립하였음 - 온실가스 감축량 전망을 산정하여 제시함 -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감축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함	
한국환경연구원(박○○)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계획 및 정책 검토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강화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계획, 환경계획 등 공간계획을 검토하여 본 사업과의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계획대상지의 특성에 맞는 리스크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별도의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통해 적응 관련 계획 및 정책 검토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강화대책과 상위계획을 검토하여 본 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하였음 ◦계획대상지의 특성에 맞는 리스크를 도출하였음(폭우로 인한 하천/호소로의 오염물질 유입 증가, 폭염 및 한파로 인한 축사 에너지 사용량 증가)	

1.4.4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범위 등 결정내용

<표 1.4.4 - 1>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범위 등 결정내용

항 목		평가 방법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감축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국제협약 및 국제동향, 관련계획 등의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부합여부 평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지자체 관련계획 등과의 연계성 및 정합성 평가
	◦감축 전략의 적정성	◦계획 수립에 따른 예상 온실가스 배출원 파악 ◦예상 배출원에 대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선정 및 배출원 단위 산정 ◦현재 및 목표연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산정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전략 수립 ◦감축목표 및 목표시점 제시, 국가 및 지자체 감축목표 등을 반영한 세부 이행전략 수립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국제협약 및 국제동향, 국제적응 정책,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및 연계성 검토
	◦기후위기 적응 전략의 적정성	◦기후위기 적응요인의 예상되는 영향을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분석 및 결과 제시 ◦국가 및 지자체 적응대책과 연계한 적응전략 마련

주)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175호, 2023.07.05.) 참고

1.4.5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각각 14일 이상 공개하였다.

◦ 공개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https://www.eiass.go.kr/)

◦ 공개기간 : 2025. 08. 7. ~ 2025. 8. 20

◦ 의견제출

- 의견제출 기간 : 공개기간 내
- 의견제출 방법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주민의견등록 및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 서면 제출

<표 1.4.5 - 1> 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범위 등 결정내용

관련법 조항	내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책계획(이하 "정책계획"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서울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김태형 2025-08-06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이메일	20191202120007@seoul.go.kr
전화	02-2133-3836
공고마감일자	2025-08-20

바로보기 바로듣기 공고문.pdf (91,598 Bytes, 다운로드: 32 회)

바로보기 바로듣기 따로붙임1) 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서울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pdf (3,651,183 Bytes, 다운로드: 5 회)

바로보기 바로듣기 따로붙임2) 주민의견제출서(서식).hwpx (29,228 Bytes, 다운로드: 3 회)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5-2387호

서울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서울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에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기후변화 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의견 제출서에 따라 공개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6일
서울특별시장

1. **계획의 개요**
가. 계획명 : 서울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나. 위 치 : 서울시 행정구역(25개 구)
다. 시간적 범위 : 2026년 ~ 2035년(10년)
라. 계획수립기관 : 서울시

2. **공개개요**
가. 공개기간 : 2025. 8. 7. ~ 2025. 8. 20. (14일간)
나. 공개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다. 공개내용 :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따로붙임 1)

3. **의견제출방법**
가. 제출기간 : 공개기간 내
나. 제출방법 : 주민의견제출서(따로붙임 2)를 작성하여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로 제출 (20191202120007@seoul.go.kr, fax 02-2133-1043)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02-2133-38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1.4.5 - 1)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결정내용 공개공고

(그림 1.4.5 - 2)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결정내용 공개공고

제 2 장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2.1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2.2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적정성

제 2 장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2.1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 · 계획과의 정합성

2.1.1 국제협약 및 국제동향

가. 기후변화협약(UNFCCC)

◦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책임'에 따라 각자의 능력에 맞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약속하였다.

◦ 협약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는 당사국 총회(COP)이며, 협약의 이행 및 과학 · 기술적 측면을 검토하기 위해 이행부속기구(SBI)와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를 두고 있다.

◦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따라 협약 부속서 1에 포함된 42개국에 대해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규모를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 부속서1에 포함되지 않은 개도국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보고, 계획 수립, 이행과 같은 일반적인 의무를 부여하였다. 한편, 협약부속서2에 포함된 24개 선진국에 대해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정과 기술을 지원하는 의무를 규정하였다.

◦ 부속서1국가는 협약 채택 당시 OECD, 동유럽(시장경제전환국가) 및 유럽경제공동체(EEC) 국가들이며, 부속서2는 그중 OECD와 EEC 국가들만을 포함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부속서1국가들은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개도국으로 분류된다.

- 부속서1 국가 : 벨라루스,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모나코,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리히텐슈타인, 몰타+부속서2국가+ECC
- 부속서2 국가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 ECC

1) 협약명

◦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

2) 채택일자(발효일자)

◦ 1992.05.09.(1994.03.21.)

- 우리나라 가입일자(발효일자) : 1993.12.14.(1994.03.21.)

3) 목적 및 원칙

◦ 기후체계가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 그러한 수준은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식량생산이 위협받지 않으며 경제개발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할 수 있기에 충분한 기간내에 달성되어야 한다.

◦ 책임과 각각의 능력에 따라 인류의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기후체계를 보호해야 한다.

◦ 따라서, 선진국인 당사자는 기후변화 및 그 부정적 효과에 대처하는데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에 특별히 취약한 국가 등 개발도상국인 당사자와, 개발도상국인 당사자를 포함하여 이 협약에 따라 불균형적이며 지나친 부담을 지게 되는 당사자의 특수한 필요와 특별한 상황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 당사자는 기후변화의 원인을 예견·방지 및 최소화하고 그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심각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의 위협이 있는 경우, 충분한 과학적 확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연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후변화를 다루는 정책과 조치는 최저비용으로 세계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비용이 효과적이어야 한다.

◦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책과 조치는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고, 종합적이어야 하며, 온실가스의 모든 관련 배출원·흡수원 및 저장소 그리고 적응 조치를 포함하여야 하며, 모든 경제분야를 포괄하여야 한다.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노력은 이해 당사자가 협동하여 수행할 수 있다.

◦ 당사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할 권리를 보유하며 또한 증진하여야 한다.

◦ 경제발전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필수적임을 고려하여, 인간활동으로 야기된 기후변화로부터 기후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는 각 당사자의 특수한 상황에 적절하여야 하며 국가개발계획과 통합되어야 한다.

◦ 당사자는 모든 당사자, 특히 개발도상국인 당사자가 지속적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고 그럼으로써 기후변화문제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지적이며 개방적인 국제경제체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 일방적 조치를 포함하여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는 국제무역에 대한 자의적 또는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수단이나 위장된 제한수단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4) 공약

◦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원에 따른 인위적인 배출과 흡수원에 따른 제거에 관한 국가통계를 작성, 정기적으로 갱신 및 공표하고 총회에 통보해야 한다.

◦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조치와 기후변화에 충분한 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를 국가적, 지역적 계획을 수립·실시·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 에너지·수송·산업·농업·임업·폐기물관리분야를 포함한 모든 관련분야에서 인위적 배출 규제·감축 또는 방지하는 기술·관행 및 공정을 개발·적용하고, 이전을 포함하여 확산시키는 것을 촉진하고 협력해야 한다.

◦ 생물자원·산림·해양과 그 밖의 육상·연안 및 해양 생태계 등 온실가스의 흡수원과 저장소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촉진하고 또한 적절한 보존 및 강화를 촉진하며 협력해야 한다.

◦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적응을 준비하는데 협력한다. 즉, 연안관리·수자원 및 농업을 위한 계획, 아프리카 등 가뭄·사막화 및 홍수에 의하여 영향받는 지역의 보호와 복구를 위한 적절한 통합계획을 개발하고 발전해야 한다.

◦ 관련 사회·경제 및 환경정책과 조치에서 가능한 한 기후변화를 고려하며,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이에 적응하기 위하여 채택한 사업과 조치가 경제·공중보건 및 환경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영향평가와 같은 국가적으로 입안되고 결정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 기후변화의 원인·결과·규모·시기 및 여러 대응 전략의 경제적·사회적 결과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이에 관한 잔존 불확실성을 축소·제거하기 위하여 기후체계와 관련된 과학적·기술적·기능적·사회 경제적 및 법률적 정보의 포괄적, 공개적 그리고 신속한 교환을 촉진하고 협력해야 한다.

◦ 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훈련 및 홍보를 촉진하고 협력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비정부기구 등의 광범위한 참여를 장려한다.

◦ 국가통계, 계획 중인 조치의 서술 등 이행 관련 정보를 당사자 총회에 통보해야 한다.

5) 기후변화협약과 본 계획과의 정합성

◦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 분뇨의 적정처리 및 관리로 온실가스 유발물질인 메탄가스를 저감할 수 있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으로 판단된다.

나. 파리협정(Paris Agreement)

◦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에서는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다.

◦ 이로써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던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넘어 모든 국가가 자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참여하는 보편적인 체제가 마련되었다.

◦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 지구적 장기목표 하에 모든 국가가 2020년부터 기후행동에 참여하며, 5년 주기 이행점검을 통해 점차 노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파리협정은 또한,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단위로 제출하고 국내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재원 조성 관련, 선진국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여타국가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 협정은 기후행동 및 지원에 대한 투명성 체제를 강화하면서도 각국의 능력을 감안하여 유연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리 협정의 이행 및 장기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 2015년 12월 파리에서 채택되고, 2016년 4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서명된 파리협정은 10월5일 발효요건이 충족되어 30일 후인 11월 4일 공식 발효되었다.

◦ 파리협정 발효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2016.11.7.~18)에서는 2018년까지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자는 데 합의하였다.

◦ 이와 관련, 2018년 제24차 당사국총회(COP24, 카토비체)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 지침을 제외한 감축, 적응, 투명성, 재원, 기술이전 등 8개 분야 16개 지침을 채택하였다.

◦ 그리고 마침내 2021년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 글래스고)에서 6년간 치열한 협상을 진행해 온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타결함으로써 파리협정의 세부이행규칙을 완성하였다.

1) 협약명

◦ 파리협정

2) 채택일자(발효일자)

◦ 2015.12.12(2016.11.04)

- 우리나라 발효일자 : 2016.12.03.

3) 목표

◦ 기후변화의 위험 및 영향을 상당히 감소시킬 것이라는 인식하에, 산업화 전 수준 대비 지구평균 기온 상승을 2℃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 및 산업화 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의 추구할 것이다.

◦ 식량 생산을 위협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적응하는 능력과 기후 회복력 및 온실가스 저배출 발전을 증진하는 노력을 증대할 것이다.

◦ 온실가스 저배출 및 기후 회복적 발전이라는 방향에 부합하도록 하는 재정 흐름을 조성할 것이다.

4) 공약

◦ 온실가스의 배출권에 의한 인위적 배출과 흡수원에 의한 제거 간에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차기 NDC를 준비하고, 통보·유지한다.

◦ 모든 당사국은 파리협정의 목표를 고려하여 5년마다 NDC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기존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또한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감축 정책 및 지원 현황 등을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제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제사회는 글로벌 이행 점검을 통해 당사국이 제출한 NDC의 총체적 효과가 파리협정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지속해서 점검한다.

◦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리협정의 이행 및 장기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5) 파리협정과 본 계획과의 정합성

◦ 본 정책계획은 서울특별시 전역의 가축분뇨를 적정관리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 현재 가축사육 두수를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분뇨발생 감소화를 위한 단계적 감축 등을 실현하여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계획으로 판단된다.

2.1.2 국가 감축 정책과의 정합성

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기본법

1) 제7조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한다.

◦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비전(이하 “국가비전”이라 한다)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이하 “국가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국가비전 등 정책목표에 관한 사항
- 국가비전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 환경 · 에너지 · 국토 · 해양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재원조달, 조세 · 금융, 인력양성, 교육 · 홍보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정부는 국가전략을 수립 ·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자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정부는 기술적 여건과 전망,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전략의 내용 및 수립 ·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8조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부문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 정부는 『파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감축목표,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 감축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등”이라 한다)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협정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기술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수 있다.

◦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흡수 전망
-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가능성
-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기여도
- 국가 에너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 국내 산업, 특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업종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0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정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대책
-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사항
-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등 녹색성장 시책에 관한 사항

-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본 계획과의 정합성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등에서 본 계획의 현재 가축사육 두수를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분뇨발생 감소화를 위한 단계적 감축 등을 실현하여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정합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2030 국가 NDC 상향안

1)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 『탄소중립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국제 동향,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해 목표 설정
- 입법 취지 :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법 제8조제1항)

◦ 18년 배출량(727.6백만톤) 대비 △40%(291백만톤) 감축 → 30년 배출량 : 436.6백만톤
- 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 NDC 상향안(△40%)은 (18년 총배출량 - 30년 순배출량) 적용 시 감축률이며, (18년 순배출량 - 30년 순배출량) 적용 시 NDC 상향안의 감축률은 △36.4%
- 정부는 40% 이상 감축을 위해 추가적인 감축 수단 발굴 및 관련 연구 수행 등 적극 노력
- 국내 감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국외 감축을 추진할 경우 파리협정 당사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구 전체의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

◦ NDC 상향안의 연평균 감축률(기준연도→목표연도)은 4.17%/년, 주요국 대비 도전적인 목표
- 주요국 연평균 감축률(%/년, 기준연도→목표연도) : (EU) 1.98, (미) 2.81 (영) 2.81, (일) 3.56

2) 부문별 주요 감축 방안

가) 전환

◦ (18년)269.6 → (30년)192.7(△28.5%, 현 NDC) → (30년)149.9백만톤(△44.4%, 상향안)

◦ (수요) GDP 상승효과(K-반도체 전략 등) 디지털 경제 확대 및 전기차 확대 등 전력수요 증가분 반영 및 혁신기술 도입 등 수요관리 수단 이행력 강화(송배전 손실 등 고려한 필요 발전량 추산 : 612.4TWh)

- 전력수요 증가분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에 따른 예상 수요 : 542.5TWh → 수정 수요 : 567.0TWh
- 수요관리 수단 : 효율관리 제도개선, 고효율기기 확대, 에너지관리시스템 연계, V2G, 스마트조명,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

◦ (공급) 유류·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 혼소를 도입하여 전원믹스 구성

<표 2.1.2 - 1> 2030년 전원믹스 구성안

(단위 : TWh)

구 분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암모니아	양수·기타	합 계
발전량	146.4	133.2	119.5	185.2	22.1	6.0	612.4
비중	23.9%	21.8%	19.5%	30.2%	3.6%	1.0%	100.0%

자료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2021. 10. 18, 관계부처 합동

나) 산업

◦ (18년)260.5 → (30년)243.8(△6.4%, 현 NDC) → (30년)222.6백만톤(△14.5%, 상향안)

◦ (철강) 신·증설 설비 고로 → 전기로 대체, 미래기술(전로에 철스크랩 다량 투입 기술, 코크스 소비열량 저감기술 등)의 조기 상용화 등

- 전기로 대체 : 전기로 제강은 전기로 열을 발생시켜 폐철을 녹여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코크스를 사용하지 않아 기존 고로 방식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다.

◦ (석유화학) 친환경 원료로 전환(납사 → 바이오 납사), 자원 순환을 통한 폐플라스틱의 원료 활용 확대 등

◦ (시멘트) 예열기 및 냉각기 에너지효율 개선, 친환경 연료로 전환(유연탄 → 폐플라스틱, LNG → 전기) 등

◦ (기타) 연원료의 전력화, 고효율기기·FEMS 도입 확대, 산업단지 열병합 발전시설 친환경연료 이용 확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불화가스 저감 설비 확충 등

- 산업단지 열병합 발전시설 친환경연료 이용 확대 : 석탄·석유 발전설비 중 일부를 LNG 발전 또는 바이오 납사로 전환하되, 관련 법·제도 정비, 주민수용성 문제 해결, 안정적 연료 수급 등 필요하다.

다) 건물

◦ (18년)52.1 → (30년)41.9(△19.5%, 현 NDC) → (30년)35.0백만톤(△32.8%, 상향안)

◦ (에너지효율 향상)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과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그린리모델링 확대

- 제로에너지 건축 :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단열 등)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여 에너지효율과 성능 향상

◦ (고효율기기 보급, 수요관리) 조명·가전 등 고효율기기 보급 및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추진

◦ (스마트에너지 관리) 냉·난방 환기, 조명, 급탕 등에 센서 및 계측장비설치, 통신망과 연계한 실시간 에너지 자동제어 시스템 도입

◦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태양광·지열·수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역난방 열공급 효율 향상, 화석연료 사용기기 전력화 등

라) 수송

◦ (18년)98.1 → (30년)70.6(△28.1%, 현 NDC) → (30년)61.0백만톤(△37.8%, 상향안)

◦ (수요관리)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고, 연계 교통 강화, 철도 중심 교통체계 강화, 운행제한 제도 확대 등으로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 2018년 대비 2030년 자동차 주행거리 4.5% 감축

◦ (친환경차 보급) 사업용 우선 전환(50만대 이상), 노후차 교체 등 친환경차 보급 확산(전기·수소차 450만대 등), 친환경차 전환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대

◦ (행태개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친환경운전 활성화 등 에너지 절감

◦ (바이오디젤) 경유차를 대상으로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3 → 8%)

◦ (해운·항공) 친환경선박(LNG/하이브리드 선박) 보급 및 운항 최적화 등 해운 에너지효율 개선, 항공기 운영효율 개선

마) 농축수산

◦ (18년)24.7 → (30년)19.4(△21.6%, 현 NDC) → (30년)18.0백만톤(△27.1%, 상향안)

◦ (저탄소 농업) 간단관개 비율 확대(2주 이상 비율 61%), 물 얕게 대기 등 논물 관리방식 개선, 질소질 비료 사용을 줄여 친환경농업 확산

- 간단관개 : 모내기 후, 추수 전에 논에 물 대는 기간을 축소하여 메탄가스 배출 저감

◦ (가축관리)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정화처리 확대, 저메탄·저단백 사료 보급, 축산생산성 향상, 식생활 전환 등으로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 저감

- 저메탄·저단백 사료 보급 : 한육우·젖소 대상 저메탄 사료 보급 확대 및 한우·돼지 대상 저단백질 사료 보급을 통한 분뇨 내 질소 감소

◦ (고효율 설비 보급) 에너지 절감 시설·설비 보급, 농기계 연료를 저탄소 연료로 전환, 노후 어선의 엔진 교체 등

- 농기계 연료를 저탄소 연료로 전환 : 경유 10%·등유 5% 감축, 전기·수소 이용 확대

바) 폐기물

◦ (18년)17.1 → (30년)11.0(△35.6%, 현 NDC) → (30년)9.1백만톤(△46.8%, 상향안)

◦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생활, 사업장, 지정 폐기물 등의 감량 및 재활용률을 대폭 확대

<표 2.1.2 - 2>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률

구 분	감량률	재활용률	
		2018년	2030년
생활 폐기물	30년 기준 전망 대비 17%	62%	83%
사업장 폐기물		82%	93%
지정 폐기물		66%	67%
건설 폐기물	-	98%	99%

자료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2021. 10. 18, 관계부처 합동

◦ (바이오 플라스틱 확대) 생활 및 사업장에 쓰이는 플라스틱 중 15~20%를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

◦ (바이오가스) 매립지와 환경기초시설 중 생물학적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 회수 및 활용 확대

사) 수소

◦ (30년)7.6백만톤

◦ (온실가스) 천연가스를 활용하여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배출

- 전환(연료전지), 수송(수소차) 등에 활용

◦ (배출량 최소화) 수전해 수소 기술개발·상용화 지원, 부생/해외수입 수소공급을 확대하여 수소공급의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표 2.1.2 - 3> 수소 공급 전망(2030)

(단위 : 백만tH_2, 백만tCO_2eq)

구 분	수전해	추출	부생/해외수입	합 계
수소공급량	0.25	0.77	0.92	1.94
수소공급 비율	12.9%	39.7%	47.4%	100%
온실가스 배출량	0	7.55	0	7.55

주) 2050 시나리오의 수요 최대공급원인 해외수입 방식의 시범사업 및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수전해 수소생산 증가 가능성 반영
자료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2021. 10. 18, 관계부처 합동

아) 흡수원

◦ (18년)-41.3 → (30년)-22.1(현 NDC) → (30년)-26.7백만톤(상향안)

◦ (산림 · 임업) 산림경영의 지속가능성 증진, 숲가꾸기, 목재 활용, 산림 보전 · 복원, 도시숲 가꾸기 등

◦ (해양 등 기타) 연안 및 내륙습지 신규 조성, 바다숲 조성, 하천 수변구역 및 댐 홍수터 호라용 식생복원, 도시녹지 조성 등

자) CCUS

◦ (30년)-10.3백만톤(상향안)

◦ (CCS) 국내 주변 해역 탐사 · 시추를 통해 대용량 저장소 확보(~23) 및 해외 폐가스전, 폐유전 등 저장소 적극 확보

◦ (CCU) 상용화 R&D, 다양한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한 민간 확산

차) 국외 감축

◦ (30년)-16.2(현 NDC) → (30년)-33.5백만톤(상향안)

- 국내 추가감축 수단을 발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목표 달성을 위해 보충적인 수단으로 국외 감축 활용

◦ (국제 논의동향) 파리협정 제6조 내에 '온실가스 감축시설적의 국제적 이전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세부 이행규칙에 관해서는 국제적 협의 미완료

◦ (현황) 국내 기업의 해외 감축사업(21.10월 현재 124건, 연간 2천만톤 수준)을 진행 중이며, 정부 간 양자협정 등의 방식으로 국외감축 사업 협력국 확대 중

◦ (향후 계획) 양자협력(FTA · ODA 활용) 활성화, 국제 플랫폼 참여 확대를 통한 다자협력 강화, 민간과 연계한 국제 탄소시장 활용 극대화

<표 2.1.2 - 4> 부문별 감축 목표

(단위 : 백만톤CO_2eq)

구 분	부 문	기준연도(18)	현 NDC (18년 비 감축률)	NDC 상향안 (18년 비 감축률)
배출량[1]		727.6	536.1	436.6(△291.0, △40.0%)
배출	전환	269.6	192.7	149.9(△44.4%)
	산업	260.5	243.8	222.6(△14.5%)
	건물	52.1	41.9	35.0(△32.8%)
	수송	98.1	70.6	61.0(△37.8%)
	농축수산	24.7	19.4	18.0(△27.1%)
	폐기물	17.1	11.0	9.1(△46.8%)
	수소	-	-	7.6
	기타(탈루 등)	5.6	5.2	3.9
흡수 및 제거	흡수원	-41.3	-22.1	-26.7
	CCUS	-	-10.3	-10.3
	국외 감축[2]	-	-16.2	-33.5

주) 1. 기준연도(18) 배출량은 총배출량, 30년 배출량은 순배출량(총배출량 - 흡수 · 제거량)
2. 국내 추가감축 수단을 발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목표 달성을 위해 보충적인 수단으로 국외 감축 활용
자료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2021. 10. 18, 관계부처 합동

◦ 상기 배출량은 직접 배출량을 기준으로 작성

- (직접배출량) 배출원에서의 활동으로 배출원 경계 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

(예시) 가정에서 난방을 위해 가스 보일러를 사용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

- (간접배출량) 배출원에서의 활동이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이 되나, 실제 온실가스 발생은 배출원 경계 밖에서 일어나는 경우의 배출량

(예시) 에어컨 등 전기제품 사용을 위한 전력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3) 계획지구와 2030 국가 NDC 상향안과의 정합성

◦ 금회 계획은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으로 농축수산부문의 저탄소 농업 및 가축관리에서 일부 정합성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어 금회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1) 2050 탄소중립 기본방향

가)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 · 수소의 활용 확대

◦ 2050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는 탄소중립을 향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가 핵심이다.

◦ 태양광, 풍력, 수력 등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이 에너지 공급 시스템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화석연료 기반의 석탄, LNG 발전의 대부분은 장기적으로 CCUS 기술 적용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이러한 에너지 공급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통한 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 확보, 탄소가격을 활용한 정책 추진, 국가 전력 시스템의 고도화 등이 필요하다.

◦ 특히,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받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발전량 예측 불확실성 증가 및 출력 변동성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 정보통신기술(IC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전기차, ESS, 수소 등 에너지 저장이 가능한 모든 시스템의 통합과 연계,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호 소통하고 거래하는 프로슈머의 확대 등 진일보한 스마트 그리드의 확산이 그 대안이 될 것이다.

◦ 아울러, 현재 화석연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차량, 냉·난방 시스템, 산업부문 등 대부분의 분야가 미래에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확보된 청정전기를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의 2050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화석연료 기반의 운송 수단이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한 운송 수단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

◦ 특히, 도로 운송에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되어 2050년 이전에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대중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 항공기, 전기·수소 선박, 철도 전기화 등 다른 운송 부문도 이러한 변화가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나) 에너지 효율의 혁신적인 향상

◦ '에너지 효율'은 가장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제1의 에너지원이라 불린다.

◦ 에너지 효율 향상은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효율제품 생산 등 연관 산업

육성에도 크게 기여하는, 경제성이 높은 에너지 소비 감축 전략이다.

◦ 또한,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 여건을 고려할 때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도 필수적인 전략이다.

◦ 아울러, 에너지 효율 개선은 에너지 공급 용량 감소를 유도하고 이는 결국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되는 ESS, 수소화 기술보다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것이다.

◦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자동차 연비 기준 향상, 건물 단열 기능 확대, 에너지 고효율 기기 사용, 스마트 에너지관리 시스템 보급 등 많은 부문에서 이미 도입되었거나 즉시 도입 가능한 수단들이 존재하며, 정부부터 산업계, 일반 국민까지 모든 부문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 따라서 정부가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명확한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규제와 인센티브가 잘 조화된 정책을 펼친다면 모든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의 결과로서 에너지 효율의 혁신적인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 탄소 제거 등 미래 기술의 상용화

◦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제조업 여건을 고려할 때 저탄소사회 전환을 넘어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수소 기술 및 CCUS 등 미래 기술의 개발과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상용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 주요 산업분야인 철강 생산 공정에서 환원제로 사용되는 코크스 제조(석탄의 건류), 시멘트 생산원료인 석회석 소성, 석유화학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납사의 열분해 과정은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필연적으로 배출하는 산업공정이기 때문이다.

라) 순환경제 확대로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 원료의 채취-소비-폐기로 이르는 선형 경제구조를 원료의 재사용,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순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과 생태계 보전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전략이다.

◦ 순환경제의 핵심은 제품의 전주기(생산, 소비, 재활용, 순환, 폐기)에 걸쳐 자원의 순환성을 강화하고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제품 생산을 위한 자원과 에너지 투입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미래 신기술 의존도도 크게 낮추게 되어 목표 달성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마) 탄소 흡수 수단 강화

◦ 토지, 산림, 해양 생태계는 환경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자 우리 생존의 필수적인 다양한 재화와 먹거리 및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원이다. 아울러, 이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저장하는 유력한 환경수단으로 탄소중립 사회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산화탄소 저장 능력이 큰 산림의 유지 및 신규조성 확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의 이행, 목재 제품의 이용 촉진 등은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

<표 2.1.2 - 5> 주요 부문별 감축 수단 및 전망(예시)

감축수단			전망지표		
			감축효과	기술성숙	감축비용
에너지공급(전력 · 열)					
	1. CO_2 포집 · 저장 · 활용(CCUS)		●	◐	○
	2. 에너지믹스 개선		●	●	●
	3. 수소경제 활성화	연료전지 도입	●	◐	◐
		수소 공급	●	◐	○
산 업					
	1. 수소화 기술 및 원료 재활용		●	◐	○
	2. 신소재 전환 및 고부가 제품 확대		●	○	○
	3. 기기 효율개선		●	●	●
	4. 스마트 공장 및 산단		◐	●	◐
	5. CO_2 포집 · 저장 · 활용(CCUS)		●	◐	○
	6. 저탄소 연 · 원료 사용		○	●	●
	7. 산업공정 배출 감축		●	●	●
건 물					
	1.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		●	●	○
	2. 고효율 기기보급		◐	●	◐
	3. 스마트 에너지 관리		○	◐	◐
	4. 신재생 에너지 확대 및 미활용 열 활용		●	◐	○
수 송					
	1. 도로부문 바이오연료 혼합		◐	●	◐
	2. 친환경차 보급 포함, 평균연비 개선		●	●	◐
	3. 철도부문 선진화		○	◐	○
	4. 항공부문 선진화		○	◐	○
	5. 해운부문 선진화		○	◐	○
	6. 교통 수요관리		◐	-	-
폐기물					
	1. 재활용 · 감량		●	●	○
	2. 메탄가스 회수	관리형 매립지	◐	●	◐
		생물학적 처리시설	●	●	◐
	3. 매립부문 호기성 운영 강화		●	○	◐
	4.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	○	●
농축수산					
	1. 스마트 농업(농업 · 축산 · 수산)으로의 전환		◐	●	◐
	2.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 보급 확대		●	◐	◐
	3. 정책 수요자 참여 정책 활성화		◐	◐	◐
	4. 친환경 에너지 확대		●	●	◐
탄소흡수원(산림)					
	1. 탄소흡수원 확대(신규조림, 재조림)		◐	◐	◐
	2. 탄소흡수원 유지관리(산림경영)		●	◐	●
	3. 목재공급량 확대		◐	◐	◐

주) ● : 고(유리), ◐ : 중(보통), ○ : 저(불리)
자료 :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검토안(2020.2)

2) 부문별 비전 및 전략

가) 에너지 공급

(1) 비전

◦ 온실가스 배출 없이 친환경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활용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나라 2050 비전을 달성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 전력 부문은 2030 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문으로 혁신적인 재생에너지 보급과 화석연료 발전에 대한 CCUS 기술 적용을 전제로 한다.

◦ 앞으로 태양광, 풍력을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공급 체계가 전환되어야 하며, 화석연료 발전원의 경우 기저발전원의 역할에서 재생에너지의 불완전성을 보충하기 위한 전력원으로 역할이 바뀔 것이다. 이 경우 CCUS 기술의 연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

◦ 2050년 전력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전력 생산의 중심이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핵심으로 한 재생에너지가 되어야 한다.

(나) 연료전지 및 그린수소 확대

◦ 우리나라는 산업 혁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수소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삼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2019년에 발표한 바 있다.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핵심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 수소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수소를 연료전지, 다양한 모빌리티 등에 활용하여 기존 탄소자원 중심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친환경 에너지원인 수소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다) 화석연료 발전에 대한 CCUS 기술 적용

◦ 전력 부문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의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이 필요하다.

◦ 석탄발전과 LNG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대기로만 배출되지 않는다면 두 발전 방식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변동성 문제 해결과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2) 전략

(가) 재생에너지 기술적 제약 극복

◦ 태양광, 풍력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는 자연의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 기반으로 한다. 즉, 한번 시설을 설치하면 한계비용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는 깨끗하고 무한한 에너지원을 공급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원이다.

◦ 하지만, 재생에너지가 석탄, 원자력, LNG 등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온 기존의 전통적인 에너지원을 뛰어 넘어 주력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을 활용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변동성, 간헐성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여야 한다.

◦ 4차 산업기술에 따른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고도화된 네트워크, 혁신적으로 발전 중인 에너지저장 시스템(ESS), 양수 발전 등은 잉여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저장할 수 있는 좋은 기술적, 환경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 재생에너지 친화형 제도 구축

◦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체계로의 전환은 이러한 중앙 집중형 전력망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재생에너지의 발전 사업의 범위는 무궁무진하며, 누구나 소규모로 참여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중앙 집중형, 일방향성 방식의 전력망 구조에서 탈피하여, 분산형, 참여형, 다방향성의 특성을 가진 전력망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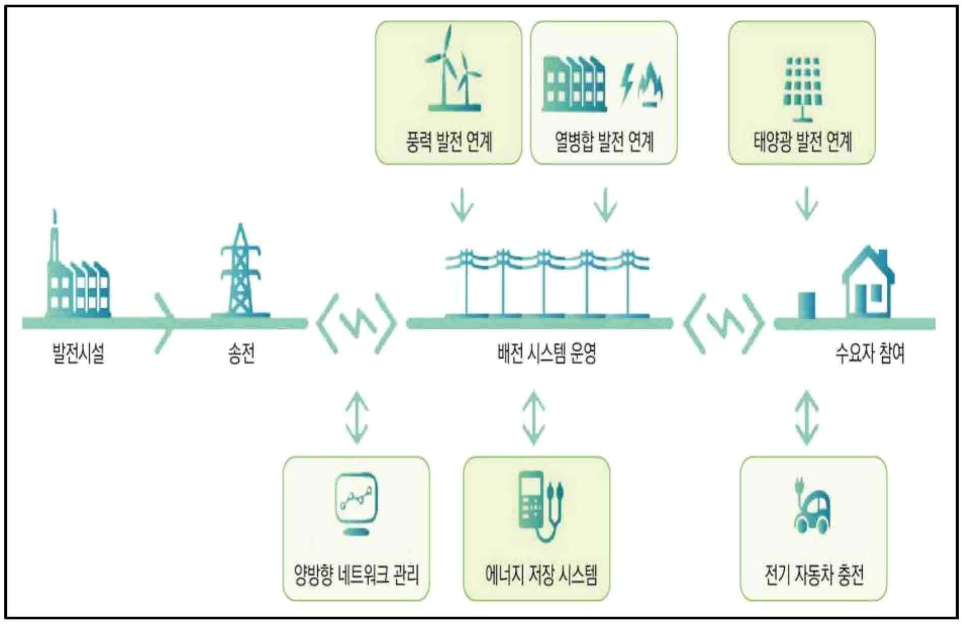

(그림 2.1.2 - 1) 새로운 에너지 공급 시스템 비전

나) 산업

(1) 비전

◦ 온실가스 감축은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이며, 에너지 효율 개선, 국제경쟁력 강화 등 경쟁력 확보의 기회로도 작용할 것이다.

◦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법으로는 에너지 이용, 효율 개선, 저탄소 연료 전환, CCUS 기술 도입, 혁신적인 산업 공정 개선 등 다양한 옵션이 존재한다.

(가) 미래 신기술 적용

◦ 현재 사용되는 공정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공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가 쉽지 않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소화, 바이오매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등 기존의 공정 배출 구조와 전혀 다른 화학 반응을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수소 활용 CO_2 저감 제철기술(탄소 연·원료 기반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기초 기술개발을 추진 중으로 2025년 이후 실증화 등을 거쳐 기술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도 온실가스 타량 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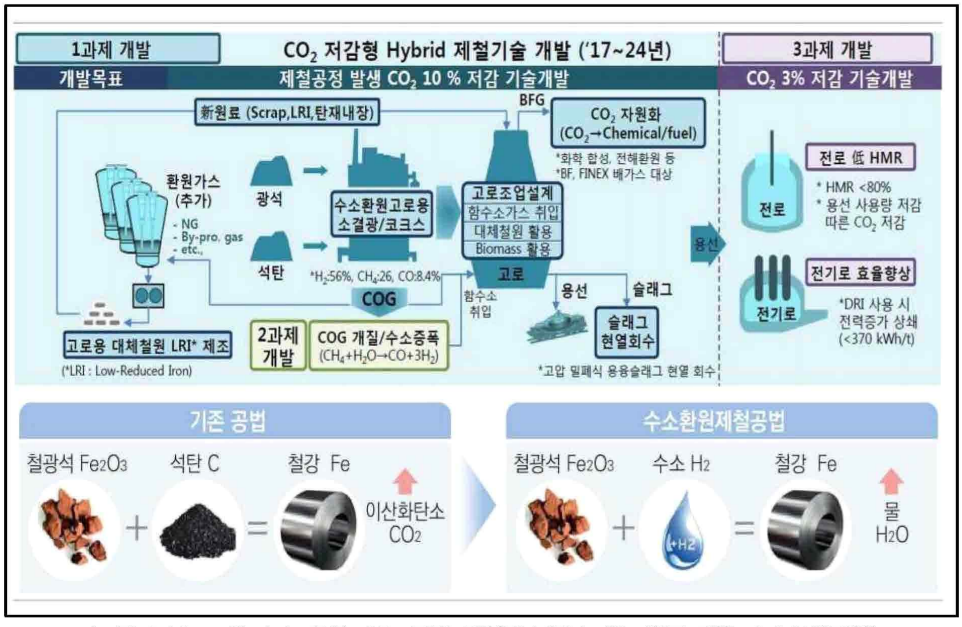

(그림 2.1.2 - 2) 수소 활용 CO_2 저감 제철기술(탄소 연·원료 기반 수소환원제철)

(나) 에너지 효율 개선

◦ 첨단 정보통신기술(AI, IoT 등)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공장, 산업단지의 스마트화도 미래에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수단이다.

◦ 산업의 스마트화란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 과정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통합하는 것으로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여 제품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 이는 결국, 자원과 에너지 사용을 절감시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할 수 있다.

◦ 공장의 스마트화 적용 시 평균 7~10%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50년까지 대부분의 공장과 산단에 스마트화 적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림 2.1.2 - 3) 스마트공장 및 스마트 산단

(다) 저탄소 연료 사용 확대

◦ 공정에서 소비되는 화석연료(유연탄, 중유, 경유)를 폐합성수지,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은 감축 효과가 존재하고, 기술적으로도 검토되고 있는 감축 수단이다.

◦ 아울러, 전력 부문의 탄소중립을 바탕으로 산업 부문의 전력화 현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2050년 산업 부문 비전 달성을 위한 주요 전략이다.

◦ 다만, 전기화는 전력의 생산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계수, 전기화에 따른 에너지 손실 등에 따라 반드시 온실가스 감축 옵션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정에 따라 물리적으로 전기화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 그러므로 산업 부문의 업종별 특성, 전기 공급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온실가스가 감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정책

(가)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강화

◦ 규제와 인센티브의 조화를 통해 기업 스스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확대하여야 한다.

◦ 대표적 규제 수단인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기업이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기업이 배출권 구매, 생산량 조절 등을 통해 규제에 대응하도록 하기보다는, 에너지 효율 개선 투자, 재생에너지 활용 등 기업의 직접 감축을 유인하는 제도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배출권거래제와 병행하여 정부와 다소비 사업자 간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에 따른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이를 위한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

다) 수송

(1) 비전

(가)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 대중화

◦ 청정에너지원을 활용하여 구동되는 전기차, 수소차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다.

◦ 이에 따라, 수송 부분의 2050년 비전 달성을 위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확대는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가장 높은 핵심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 저탄소 운송 연료 사용 확대

◦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원인 석유와 생물 기반의 에너지원인 바이오매스를 일정비율로 혼합해 사용하는 바이오연료(에탄올, 디젤)는 기존 운송 시스템인 내연기관차에 즉시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옵션이라는 큰 장점을 지닌다.

◦ 2050년에도 전기화, 수소화가 어려운 수송 순단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며, 이 경우 바이오 연료의 확대는 좋은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된다.

(다) 해운 · 항공 · 철도 선진화

◦ 철도는 우리나라에서 사람의 이동과 물류 운송에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이자 대표적인 저탄소 배출 교통수단이다.

◦ 우리나라 철도의 경우 이미 대부분 전력기반 시스템이 완비되었는데 도심지의 전철과 도시 간 이동수단인 고속철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 이에 따라 1990년 이후 철도 여객 운송량 확대 속도 대비 온실가스 배출 증가 속도는 낮아졌다.

◦ 항공과 해운 부문의 경우도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청정에너지원(전기, 수소, 바이오연료)을 바탕으로 한 수송 체계의 선진화가 주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다.

(라) 교통 수요관리 및 차량 운행 최적화

◦ 사람의 행동 변화와 사회 시스템 개선도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될 수 있다.

◦ 대표적인 전략으로 자동차 운행 수요를 억제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법과 교통 운영시스템의 최적화를 통하여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 차량 이용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억제하는 전략으로는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 보행 및 자전거 중심의 생활권 구축, 자동차 공유서비스 확대가 있다.

◦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자율주행차 기술의 상용화는 기존 도로 시스템 안에서 자동차 운행을 최적화하여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 자율주행차 기술 역시, 자동차 도로 운행의 최적화를 유도하는 미래 기술로써 에너지 효율 제고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교통 수요관리 정책과 차량 운행 최적화를 통한 에너지 효율 제고 효과는 2050년 수송 부문 비전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전략

(가) 친환경차 보급 인프라 구축

◦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규제도 자동차 제작사로 하여금 내연기관차의 연료 효율을 높이게 하고 친환경차 판매를 유도하는 좋은 전략이다.

◦ 현재는 승용차, 소형 승합·화물차에 한하여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시행 중이지만, 향후에는 규제 대상을 중형, 대형차까지 확대하여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전기,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도 중요한 전략이다.

◦ 친환경차 이용자가 전국 어디서든 편하고 쉽게 전기와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편의성은 친환경차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정부는 이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다.

(나) 모빌리티 기술 혁신

◦ 수송 부문은 2050 비전 달성을 위한 과감한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과 사회 인프라 개선만으로는 완전한 탈탄소화를 달성하기가 쉽지는 않다.

◦ 이는 추가적인 감축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미래 모빌리티 기술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 예를 들어, 드론 수송의 확산은 화물차에 의한 운송 소요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는 개인용 이동 수단으로서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아울러, 도심항공교통, 하이퍼튜브, 수소 철도 등 미래 혁신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교통수단은 아직 개발이 초기 단계인 만큼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성과 기술 실현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는 이들 기술에 지속적인 투자를 제공할 것이다.

라) 건물

(1) 비전

◦ 정부의 건물 부문 2050 비전은 모든 사람이 이상기후에도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및 업무환경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비용 효과적으로 에너지 이용을 합리화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 이는 단열, 기밀성능을 강화하여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지열, 수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국민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도 개선할 수 있다.

◦ 건물 부문은 우리나라 건물의 에너지 사용 패턴을 고려하여,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실가스를 현재보다 대폭 감축할 예정이다.

◦ 다만, 건물 부문에서 주로 난방, 온수, 취사용으로 사용되는 도시가스의 경우 가스망이 이미 전국적으로 구축된 점을 고려할 때 완전한 탈탄소화가 쉽지 않다.

◦ 이는 향후 수소 같은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개발 및 경제성을 고려한 보급 가능성, 기기의 전력화 정도에 따라 감축 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가)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 즉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저탄소 에너지원을 건물에 공급하는 것은 건물 이용자들의 에너지 비용도 절감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는 가장 비용 효과적인 감축 수단이다.

◦ 우리나라는 신축 건물과 기존 건물을 구분하여 건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와 인센티브를 병행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신축 건물의 경우 규제 수단으로서 제로에너지건축물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연면적 1,000m^2 이상인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연면적 5백m^2 이상인 모든 공공·민간 건물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 건물 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 수단과 함께 에너지원의 저탄소화 또한 중요하다.

◦ 건물 외벽에 부착 가능한 태양광 패널은 건물 내 전기 공급의 탈탄소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열, 수열, 미활용(발전폐열, 소각폐열 등) 에너지 활용은 냉·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기존 화석연료 시스템의 저탄소화를 유도할 수 있다.

◦ 이러한 건물 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 효과는 건물 부문 2050 비전 달성에 가장 핵심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2 - 4) 건물 재생에너지 활용 예시

(나) 고효율 기기 보급

◦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기기, 사무기기, 조명기기의 보급 확대는 건물 내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주요한 감축 수단이다.

◦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가정 내에서 사용되는 주요 가전제품을 에너지효율등급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에너지 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구매 시 제품 가격의 일정 부분을 환급해 주는 등 소비 진작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 아울러, LED대비 에너지 효율이 저조한 형광등의 시장 퇴출을 위해 2027년까지 형광등의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센서와 제어 기능을 활용하여 주변 환경에 따라 최적의 조명을 제공하는 스마트 LED 조명도 2040년까지 60% 이상 보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 2050년까지 이러한 고효율 기기의 보급으로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전략

(가)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재정 지원

◦ 건물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각종 수단은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는 건물 이용자의 에너지 비용을 낮춰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

마) 폐기물

(1) 비전 및 전략

◦ 자원의 채취, 제품의 생산 및 유통, 소비, 폐기물 재활용과 처리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자원 투입의 수요를 줄이고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거나 에너지로 재사용하고, 재활용 되지 못한 폐기물은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친환경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우리 사회 탄소중립의 핵심 수단으로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 이는 폐기물 부문의 2050 비전이자 나아가, 순환경제와 연계하여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가장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감축수단이 될 수 있다.

(가) 폐기물 발생의 근본적 감축

◦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에서 자원 절감과 폐기물 감축을 최우선으로 하여 경제성장과 폐기물 발생의 탈동조화가 필요하다.

◦ 먼저, 생산단계에서는 생산 공정별 자원 흐름을 최적화하여 자원과 에너지의 손실을 줄이고 발생한 부산물을 최대한 사업장 내에서 재투입하는 친환경 생산구조로의 개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자원다소비 및 폐기물 다량배출 업종과 기업의 폐기물 감량, 자원생산성, 재생원료 투입률 등에 대한 목표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폐기물 등의 획기적 저감을 위해 다회용 포장재 중심의 새로운 물류체계를 확립하고, 기업과 기업간,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에서 다회용 포장재를 이용하여 배송하고 회수하는 등 지속적으로 재사용을 촉진할 예정이다.

◦ 소비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저감을 위해 제품의 수리가능성, 내구성 등을 설계단계부터 향상시키고, 부품 수리 정보 등의 제공도 필요하다. 플라스틱 1회용품은 단계적으로 생산·사용 금지를 확대해 나간다. 정부는 앞으로 각 지역별 수리·수선, 재사용, 업사이클 등 허브를 구축하여 한 번 쓰고 버리는 폐기물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나)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 재활용되지 못한 폐기물은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 현재 음식물류폐기물에 적용되고 있는 직매립 금지를 가연성폐기물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선별 및 소각 등을 거쳐 잔재물만 매립되도록 하고, 친환경 매립기준을 설정하여 저탄소형 매립지 관리를 실현하도록 할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매립시설에서는 메탄가스 회수·이용 설비를 확충하는 등 에너지 생산도 늘릴 예정이다.

◦ 이와 함께, 폐기물의 단순 소각을 넘어 에너지 생산기반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지역 난방 등과 연계하여 최대한 활용하고, 고부가가치 수소 생산·활용 시설과 연계한다.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설비 및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소각시설 설치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바) 농축수산(농업 · 축산 · 수산)

(1) 비전 및 전략

◦ 농축수산 부문의 경우 대부분의 온실가스 배출이 식량 생산과정의 생물학적 요인에 기인하는 만큼 근본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배출량을 저감시킬 수단과 기술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 논물관리, 투입재 절감, 양질조사료 및 저메탄사료 보급과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촉진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아울러, 농축수산 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경우 청정에너지 활용과 에너지 저감 시설 적용을 통해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가) 스마트 농업(농업 · 축산 · 수산)으로의 전환

◦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기술 발전은 농업 및 축·수산 부문에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스마트팜과 스마트양식장 클러스터가 그 대표적인 예시로서 기존 농경지 및 시설하우스, 축사, 양식장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불필요한 투입재(에너지, 비료, 물 등)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동화를 통해 농업·축산·수산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 우리나라는 농축수산 부문에 이러한 스마트 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팜 7,000ha, 스마트축사 5,000호를 보급하고, 2023년까지 동·서·남해 주요 거점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3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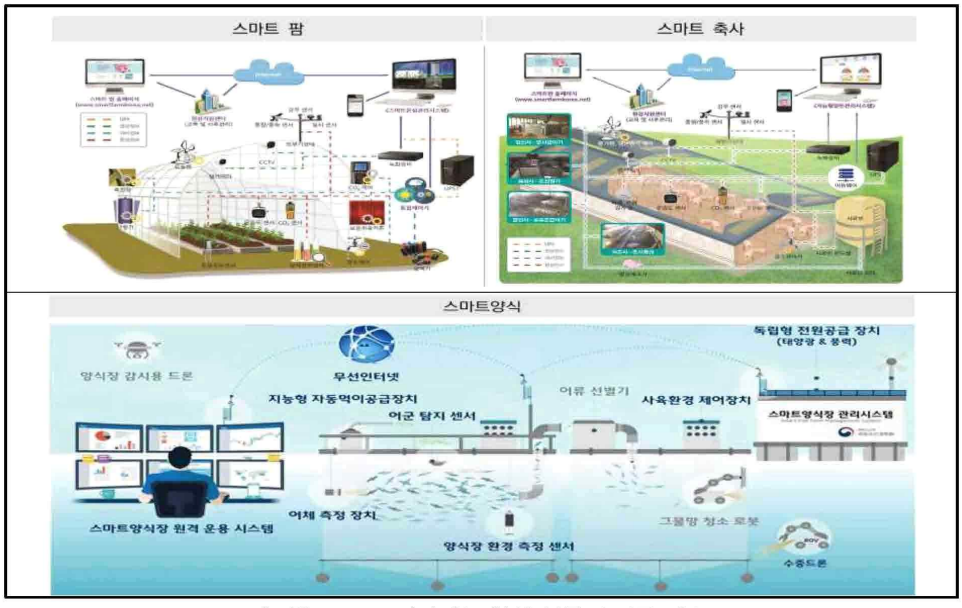

(그림 2.1.2 - 5) 농업·양식 부문 스마트 기술

(나) 친환경 에너지 확대

◦ 농업, 축산, 수산 시설에서 사용되는 화석연료를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가장 크고 실현 가능한 수단이다.

◦ 가축 분뇨 에너지화, 태양광 보급, 지열 활용 등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저감시킬 수 있는 수단이며, LED 조명, 보온커튼 등은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

◦ 한편, 전기 어선, 수소 어선 등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어선개발은 어업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저탄소 생산구조 정착,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어업을 구축하는 옵션으로서 미래에 보급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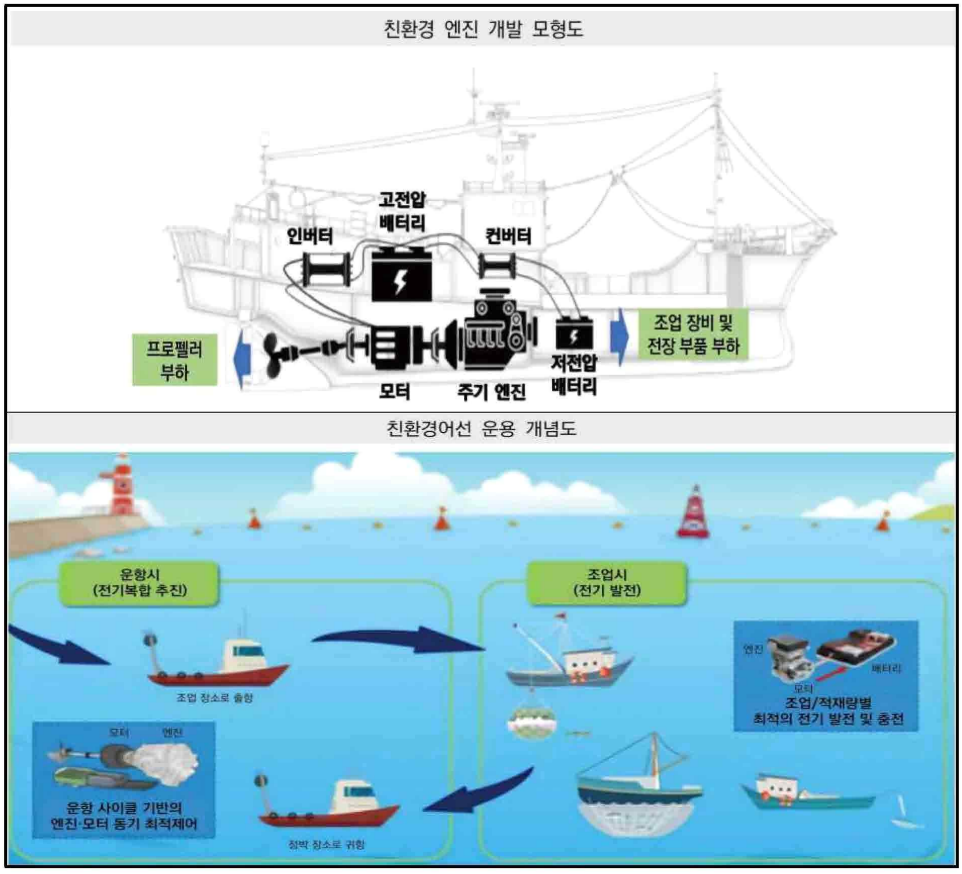

(그림 2.1.2 - 6)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어선 개발 개념도

사) 탄소 흡수원

(1) 비전 및 전략

◦ 산림은 탄소흡수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분야로서 산림경영의 혁신을 통해 산림의 노령화 문제를 개선하고 목재제품의 이용률을 제고하여 탄소저장량을 높여야 한다.

◦ 생산 단계에서는 조림과 산림경영 등을 통해 산림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며, 소비 단계에서는 국산 목재의 이용률을 높여 순환적인 산림 자원 활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가) 탄소흡수원 확대(신규조림/재조림)

◦ 조림은 가장 중요한 이산화탄소 흡수 증진 수단으로 비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조림하는 '신규 조림'과 본래 산림이지만 다른 용도로 전용된 토지를 다시 인공적으로 조림하는 '재조림'으로 구분된다.

◦ 이미 성공적으로 산림녹화를 이룬 우리나라는 신규 조림/재조림 대상지가 거의 없는 실정이나, 도시숲·정원 등 생활권 녹지조성, 훼손지·주요생태축의 산림복원, 유휴토지(한계농지, 정주지 등) 조림 등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나) 탄소흡수원 유지·관리(산림경영)

◦ 산림경영은 산림의 탄소흡수능력이 최대가 되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산림을 관리하는 것으로 수종갱신, 숲 가꾸기 활동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활동들은 영급 구조가 한 쪽으로 편중되고, 사유림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림구조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종갱신, 숲 가꾸기 활동 등으로 연평균('15~'19) 약 17만ha의 벌채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향후에는 수종갱신의 면적 및 산주의 산림경영 참여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 수종갱신은 탄소흡수능력이 저하된 산림병해충 피해림, 생장이 떨어지는 불량림 등을 대상으로 입목을 벌채한 후 탄소 흡수량이 높은 입목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이산화탄소 흡수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나 장기적으로는 흡수량 증진에 기여한다.

3) 계획지구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과의 정합성

◦ 금회 계획은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으로 농축수산부문에서 본 계획의 단계적 가축사육 감축 추진, 가축분뇨 발생 감소화 및 자원화 촉진 및 효율적 분뇨 등에서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는 계획에서 정합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탄소중립 ·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1) 수립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

-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 목표 등의 달성을 위해 '국가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2) 계획 기간 및 주기

◦ 20년을 계획기간('23~'42)으로 5년마다 연동계획으로 수립 · 시행

3) 주요 내용

가) 탄소중립기본법 제10조 제2항

◦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 온실가스 배출 · 흡수 현황 및 전망

◦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 · 연도별 대책

◦ 기후변화의 감시 · 예측 · 영향 · 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 녹색기술 · 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등 녹색성장 시책에 관한 사항

◦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각 분야별 정책과의 연계 및 감축대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 국제감축 사업의 목적, 원칙 및 추진 방안

4) 기본 원칙

가) 탄소중립기본법 제3조

◦ 미래세대의 생존 보장을 위해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 및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

◦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고, 기후위기와 관련한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

◦ 기후정의를 추구하여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취약한 계층 · 부문 · 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

◦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

◦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

5)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수송 등 부문별 감축목표와 각 부문의 연도별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 대책 수립

◦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 NDC : '30년까지 '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21.12월 UN 제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6) 중장기 감축 목표

가) 2030 NDC 상향안(21.10)

◦ 2050 탄소중립 선언(20.10)의 후속조치로 '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로 상향(21.10) 및 UN 제출(21.12)

나) 『탄소중립기본법』(22.3.25 시행)에 따른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 국제사회에 약속한 NDC 상향안(21.10)의 감축목표 준수

◦ 단, 감축수단별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부문 간, 부문 내 일부조정

- 산업부문은 원료수급 곤란 및 기술전망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3.1%p↓)

- 부족한 감축량은 전환부문 수소 등 청정에너지 보급 및 국제감축의 확대를 통해 달성(각 400만톤씩 확대)

7) 부문별 감축목표

<표 2.1.2 - 6> 부문별 배출량 목표

(단위 : 백만톤CO_2e, 괄호는 '18년 대비 감축률)

구 분	부 문	2018 실적	2030 목표	
			기존 (21.10)	수정 (23.3)
배출량(합계)		727.6	436.6 (40.0%)	436.6 (40.0%)
배출	전환	269.6	149.9 (44.4%)	145.9 (45.9%)[2]
	산업	260.5	222.6 (14.5%)	230.7 (11.4%)
	건물	52.1	35.0 (32.8%)	35.0 (32.8%)
	수송	98.1	61.0 (37.8%)	61.0 (37.8%)
	농축수산	24.7	18.0 (27.1%)	18.0 (27.1%)
	폐기물	17.1	9.1 (46.8%)	9.1 (46.8%)
	수소	(-)	7.6	8.4[3]
	탈루 등	5.6	3.9	3.9
흡수 및 제거	흡수원	(-41.3)	-26.7	-26.7
	CCUS	(-)	-10.3	-11.2[4]
	국제감축	(-)	-33.5	-37.5[5]

주) 1. 기준연도('18) 배출량은 총배출량 / '30년 배출량은 순배출량 (총배출량 - 흡수·제거량)
2. 태양광, 수소 등 청정에너지 확대로 400만톤 추가 감축
3. 수소수요 최신화(블루수소 + 10.5만톤), 블루수소 관련 탄소포집량은 CCUS 부문에 반영(0.8백만톤)
4. 국내 CCS 잠재량 반영(0.8백만톤), CCU 실증경과 등을 고려한 확대(0.1백만톤)
5. 민관협력 사업 발굴 및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량 400만톤 확대

8) 연도별 감축목표

◦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본격 시행 이후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기까지의 시차 발생을 고려하여 연도별 감축목표 설정

<표 2.1.2 - 7> 연도별 배출량 목표

(단위 : 백만톤CO_2e)

부문	2018 (기준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686.3[1]	633.9	625.1	617.6	602.9	585.0	560.6	529.5	436.6[2]
전환	269.6	223.2	218.4	215.8	211.8	203.6	189.9	173.7	145.9
산업	260.5	256.4	256.1	254.8	252.9	250.0	247.3	242.1	230.7
건물	52.1	47.6	47.0	46.0	44.5	42.5	40.2	37.5	35.0
수송	98.1	93.7	88.7	84.1	79.6	74.8	70.3	66.1	61.0
농축수산	24.7	22.9	22.4	21.9	21.2	20.4	19.7	18.8	18.0
폐기물	17.1	15.1	14.7	4.1	13.3	12.5	11.4	10.3	9.1
수소	(-)	3.4	4.1	4.8	5.5	6.2	6.9	7.6	8.4
탈루 등	5.6	5.1	5.0	5.0	4.9	4.8	4.5	4.2	3.9
흡수원	-41.3	-33.5	-31.3	-28.9	-30.4	-29.1	-28.3	-27.6	-26.7
CCUS	(-)	-	-	-	-0.4	-0.7	-1.3	-3.2	-11.2

주) 1. 국제사회에 제출된 '18년 총배출량은 727.6백만톤이나 순배출량 기준으로는 686.3백만톤이며, 모든 연도별 합계는 순배출량 기준 (부문별 소수점 첫째자리 아래 절삭)
2. 국제감축은 관련 국제기준 확정, 최초 활용시기('26년 예상)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목표를 설정할 예정으로 '30년 목표에만 반영

9) 주요 부문별 감축 방향

가) 전환

◦ 석탄발전 감축 및 원전, 재생e 확대 등 청정 에너지 전환 가속화

◦ 전력 계통망, 저장체계 등 기반 구축

◦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통한 수요 관리 강화

나) 산업

◦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기술 및 연·원료 전환 대안 확보

◦ 펀드, 보조, 융자 등 기업의 투자 부담 경감

◦ 배출권 거래제 배출효율기준할당 및 유상할당 확대 등을 통한 자발적인 감축활동 유도

다) 건물

◦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화 및 기축건물의 그린리모델링 등 에너지효율 강화

◦ 건물 성능 정보 공개를 통한 효율 개선

라) 수송

◦ 전기·수소차 보급, 내연기관차의 전기화, 무탄소 선박 등 이동수단의 저탄소화

◦ 내연차의 온실가스·연비기준 강화

◦ 대중교통 활성화

마) 농축수산

◦ 농업(스마트팜, 저탄소 생산기술 및 농기계 개발)

◦ 축산업(저메탄사료 개발, 가축분뇨 활용)

◦ 수산업(LPG·하이브리드 어선개발, 양식·수산가공업 저탄소·스마트화)

바) 폐기물

◦ 폐기물 다향 배출사업장 감량 설비 지원 등 폐기물 원천감량

◦ 유용폐자원의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 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사) 수소

◦ 그린수소 생산 등 핵심기술 시증 및 인프라 구축

◦ 수소 모빌리티 다양화

◦ 수소 클러스터 지정 등 수소 활용범위 확대

아) 흡수원

◦ 산림·해양·습지·정주지 등 흡수원 강화·복원

◦ 도시숲 등 신규 흡수원 확대

◦ MRV(산정·보고·검증)체계 고도화

자) CCUS

◦ 산업, 안전, 인증기준 등을 포함한 단일법 제정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개발·실증 강화

◦ CCS 추가 저장소 확보

차) 국제감축

◦ 승인, 취득 등 국제감축사업 이행 기반 마련

◦ 환경·산업·산림·해양·국토 등 부문별 국제감축사업 발굴

◦ 협정체결 대상국 확대

10) 부문별 중장기 감축 대책

가) 전환 부문

<표 2.1.2 - 8> 세부과제 목록

과제명	주관부처(협조부처)
청정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 가속화	
① 탈탄소 에너지 공급믹스 달성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	산업부
② 무탄소 전원으로서 원전 활용 확대	산업부
③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부
④ 청정에너지 추가 확대	산업부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 구축	
① 재생에너지 관련 전력계통망 확충 및 에너지 저장체계 구축	산업부
② 비용효율적 보급 추진	산업부
③ 주민 수용성 강화	산업부
④ RE100 이행기반 구축	산업부
수요효율화 및 에너지 탄소중립 기반 구축	
① 재생에너지 관련 전력계통망 확충 및 에너지 저장체계 구축	산업부
② 비용효율적 보급 추진	산업부
③ 주민 수용성 강화	산업부
④ RE100 이행기반 구축	산업부
전력수급 체계 혁신으로 탄소중립 기여	
① 탄소중립 친화적인 전력공급 체계 구축	산업부
②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미래형 전력망 구축	산업부
③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 및 합리적 에너지 요금 체계 구축	산업부

나) 산업 부문

<표 2.1.2 - 9> 세부과제 목록

과제명	주관부처 (협조부처)
탄소중립 실현 핵심기술 확보	
① 탈탄소 에너지 공급믹스 달성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	산업부
② 한계돌파형 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산업부
③ 해외기술 모니터링·습득체계 기반 유연한 기술확보 추진	산업부
기업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전폭적 지원	
① 저탄소 전환 부담이 큰 부문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세제 지원 추진 및 정부지원 강화	기재부 (산업부)
② 실물경제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보조 확대 및 금융 공급 활성화	산업부 (기재부, 환경부, 금융위)
③ 주민 수용성 강화	산업부
④ RE100 이행기반 구축	산업부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① 배출량 감축 인센티브 확대	환경부 (기재부, 산업부)
②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환경부
③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 및 기준 개선	환경부 (기재부, 산업부, 해수부, 국토부, 농식품부)
④ 배출권 거래시장의 유동성 확대	환경부
⑤ 배출권시장 유연성 제고	환경부
⑥ 배출권 평가·인증 체계 개선	환경부
탄소중립 정부·산업계 거버넌스 및 측정기반 마련	
① 산업 친환경 전환을 위한 상생 협의체 확대 운영	산업부 (중기부)
② 민·관 합동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운영	환경부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농식품부, 국조실)
③ 산업부문 저탄소 전환 측정기반 마련	산업부, 환경부

다) 건물 부문

<표 2.1.2 - 10> 세부과제 목록

과제명	주관부처 (협조부처)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강화	
①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및 성능 강화	국토부 (산업부)
② 소형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강화 방안 마련	국토부
③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추진	
① 총량제와 연계한 노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로드맵 마련	국토부
②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원대상 확대 및 의무화 단계적 추진	국토부
③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확산	국토부
건축물 에너지 사용효율 향상	
① 건물 에너지사용설비·관리시스템 효율혁신	산업부
② 건물 에너지효율 평가관리기반 강화 및 효율개선	산업부 (국토부)
③ 공공부문의 선도적 온실가스 감축 강화	환경부
계획수립·공간조성 탄소중립화	
① 국토단위 탄소중립을 위해 국토종합계획에 탄소중립 가치 반영	국토부
② 도시단위 탄소중립을 위해 도시계획에 탄소중립요소 도입	국토부
③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탄소배출 공간지도 구축	국토부
④ 정주지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통계산정 체계 구축	국토부
⑤ 계획·개발사업의 탄소중립 내재화를 위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추진	환경부
⑥ 건물 분야 에너지 전환 및 재생에너지 확대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등)

라) 수송 부문

<표 2.1.2 - 11> 세부과제 목록

과제명	주관부처 (협조부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촉진	
① 전기·수소차로의 전환 가속화	환경부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② 전기·수소차 시장 선점을 위한 생산체계 구축 및 평가기반 마련	산업부 (국토부)
③ 신속·편리한 전기·수소차 충전기반 마련	환경부 (국토부, 산업부)
대중교통 활성화, 자가용 내연기관차 수요관리	
①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수단 확대·다양화 및 연계 강화	국토부
②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확대	국토부 (환경부)
③ 자가용 내연차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이용수요 관리	국토부 (환경부)
④ PM·자전거 활성화 및 생활권 보행환경 개선	국토부 (행안부, 환경부)
⑤ 교통량 감소를 위한 제도 및 지원 보강	국토부
내연기관 저탄소화	
① LCA(전주기 평가)를 고려한 온실가스·연비기준 강화	환경부 (국토부, 산업부)
②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세제 개편 추진	행안부
③ 내연차의 무공해 전환 가속화 유도	환경부 (국토부)
④ 행태개선을 통한 경제·친환경 운전 문화 확산	국토부 (환경부)
친환경 철도·항공·해운	
① 친환경 철도중심 교통체계 강화	국토부
② 항공기·항공연료의 친환경화 및 운항 효율화	국토부 (산업부)
③ 친환경 해운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선박 및 인프라 전환	해수부 (산업부)

마) 농축수산 부문

<표 2.1.2 - 12> 세부과제 목록

과제명	주관부처 (협조부처)
저탄소 농업기술 및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구조 전환	
① 디지털 · 그린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저탄소 농업기반 마련	농식품부 (농진청)
② 친환경농산물 생산 · 유통 · 소비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농식품부 (농진청)
농업(재배) 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	
① 논물관리 기술 개발 및 보급	농식품부 (농진청)
② 화학비료(질소질비료) 사용 감축	농식품부 (농진청)
③ 바이오차 개발 · 보급을 통한 토양 탄소저장능력 제고	농식품부 (농진청)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	
① 저메탄사료 및 저단백사료 개발 · 보급	농식품부 (농진청)
② 생산성 향상을 통한 온실가스 및 가축분뇨 저감	농식품부 (농진청)
③ 가축분뇨 활용 확대	농식품부 (농진청)
농업 분야 화석에너지 사용 축소 및 에너지 전환	
① 시설농업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	농식품부 (농진청)
② 친환경 농기계 개발 · 보급	농식품부
농촌 재생에너지 확대	
① 농촌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농식품부
② 농촌마을 RE100 추진	농식품부
수산업 활동의 에너지 사용 효율화 및 저탄소 전환	
① 저탄소 · 무탄소 어선 보급 및 노후어선 효율성 제고	해수부
② 양식 · 수산가공 에너지 사용 고효율 · 스마트화	해수부
③ 어항시설 친환경 에너지 생산 지원	해수부

바) 폐기물 부문

<표 2.1.2 - 13> 세부과제 목록

과제명	주관부처 (협조부처)
생산·유통·소비 단계 폐기물 원천감량	
① 설계·생산 단계부터 기업의 폐기물 감량 유도	환경부 (산업부)
② 현장여건을 고려한 일회용품 감량	환경부
③ 농산물, 택배포장 등 과대포장 관리 개선	환경부
④ 다회용 용기·택배포장 등 일회용품 대체 신산업 육성	환경부
⑤ 혁신소재 개발 및 바이오플라스틱으로 전환	산업부 (환경부)
⑥ 비위생매립지 정비 및 메탄포집 확대	환경부
재활용 원료인 폐자원의 안정적 공급	
① 국민이 편리한 생활폐자원 배출체계 확립	환경부
② 재활용 폐기물의 안정적 수거체계 마련	환경부
③ 선별시설 확충 및 자동화·현대화로 유용폐자원 확보	환경부
④ 재활용이 쉬운 제품 설계·생산 확대	환경부 (산업부)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① 플라스틱 물질·화학적 재호라용 촉진	환경부 (해수부)
② 건설폐기물 재활용 확대	환경부
③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활성화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④ 유기성 폐자원 등 바이오가스화 활성화	환경부
⑤ 재생원료 사용 제품의 안정적 수요창출	환경부 (산업부, 조달청)

사) 수소 부문

<표 2.1.2 - 14> 세부과제 목록

과제명	주관부처 (협조부처)
국내외 청정수소 생산	
①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그린수소 생산 기반 구축	산업부 (과기부, 해수부, 환경부)
② 탄소저장소를 확보하여 블루수소 생산체계 구축	산업부 (과기부, 해수부, 환경부)
③ 기술개발·실증사업을 통한 원자력수소 생산기반 마련	산업부
④ 시범사업을 통해 해외 청정 수소 생산 본격화	산업부·외교부
빈틈없는 수소 인프라 구축	
① 항만 내 수소 생산·도입 인프라 구축	해수부 (산업부)
② 수소 생산·도입 지역을 거점으로 수소배관망 구축 확대	산업부
③ 시장 수요에 기반한 수소 충전소 확대	환경부 (국토부, 산업부)
수소 활용 확대	
① 연료전지 및 혼소 발전 기술개발 등 수소발전 확대	산업부 (과기부, 해수부, 환경부)
② 수소 모빌리티 다양화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중기부, 해수부)
③ 산업 문야 수소활용 기반 마련	산업부 (국토부, 환경부)
수소 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	
① 범부처 합동 R&D 추진으로 수소분야 기술개발 표준화	과기부 (산업부, 해수부, 환경부)
② 안전기준 마련, 법령정비, 인력양성 등 수소분야 기반 구축	산업부 (환경부)
③ 수소 클러스터 구축, 수소도시 등 지역별 수소 생태계 적용범위 확대	산업부 (국토부, 과기부, 중기부, 환경부, 해수부)

아) 흡수원 부문

<표 2.1.2 - 15> 세부과제 목록

과제명	주관부처 (협조부처)
산림순환경영으로 탄소 흡수·저장 기능 증진	
① 조림, 숲가꾸기, 목재수확 확대를 통한 흡수기능 강화	산림청
② 임도, 임업기계 등 산림순환경영 기반 구축	산림청
③ 고부가가치 목재이용 활성화로 탄소 저장고 확대	산림청
④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재생에너지 활용	산림청
해양 흡수원의 체계적 복원·관리 및 흡수력 규명 확대	
① 연안습지 복원·보호를 통한 탄소흡수력 확대	해수부
② 바다숲 확대 조성 및 조성방안 다각화	해수부
③ 신규 블루카본 발굴 및 국가 온실가스 통계 활용도 제고	해수부
산림흡수원의 보전·복원 및 신규 흡수원 확대	
① 산림의 생태적 복원 및 보호지역 확대	산림청
②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해 예방 및 회소화	산림청
③ 내륙습지의 탄소흡수 활용 증진	환경부
④ 도시숲 조성, 유휴토지 조림 등 신규 흡수원 확충	산림청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흡수원 MRV(산정·보고·검증) 체계 고도화	
① 토지이용변화 매트릭스 작성체계 구축	환경부 (농식품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② 흡수원별 국가고유계수 개발	환경부 (농식품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③ 탄소흡수원 통계 산정체계 고도화 및 정보 통합관리	환경부 (농식품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④ 탄소·생물다양성 공편익 증진을 위한 평가체계 마련	환경부 (농식품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자) CCUS 부문

<표 2.1.2 - 16> 세부과제 목록

과제명	주관부처 (협조부처)
CCUS 확대 보급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	
① CCUS 총괄협의체 구성·운영 및 법·제도 개선	국조실 (과기부, 산업부, 해수부)
② CCUS 관련 국가 온실가스 통계 기반 마련	환경부 (과기부)
CCUS 기술개발 및 산업 인프라 구축	
①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산업부 (해수부)
②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CCU) 기술개발 및 실증 강화	과기부

차) 국제감축 부문

<표 2.1.2 - 17> 세부과제 목록

과제명	주관부처 (협조부처)
국제감축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① 국제감축 사업 지원을 위한 국내 규범 및 시스템 정비	탄녹위 (관계부처)
② 국제감축 사업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탄녹위 (관계부처)
③ 주요국과 기후변화 협력협정 등 체결 등 협력 확대	외교부 (관계부처)
④ 국제감축 실적 확보를 위한 국제감축 사업 추진	탄녹위 (관계부처)
부문별 국제감축 사업 발굴 및 추진	
① 산업·에너지 분야 국제감축 사업 발굴 및 추진	산업부
② 환경 분야 국제감축 사업 발굴 및 추진	환경부
③ 국토교통 분야 국제감축 사업 발굴 및 추진	국토부
④ 해양수산 분야 국제감축 사업 발굴 및 추진	해수부
⑤ 농업분야 국제감축 사업 발굴 및 추진	농식품부
⑥ 산림 분야 산림 활용 탄소저감활동(REDD+) 확대	산림청

11) 본 계획과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 금회 계획은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으로 농축수산부문의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서 온실가스 및 가축분뇨 저감, 가축분뇨 활용 확대에서 본 계획의 가축분뇨 발생 감소화, 자원화 촉진 및 효율적 분뇨처리 강화 등에서 일부 정합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2.1.3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가.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

1) 종합계획의 의의

가) 계획의 성경

◦ 향후 5년간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법정계획

◦ 별도 행정계획이었던 기존 대책에 비해 보다 강력한 국가·행정기관 구속력 발생

나) 법적 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란 특별법 제7조

>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 ①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 계획 기간

◦ 2025년 ~ 2029년 (5년 계획)

라) 대상 지역

◦ 전국

- 기본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나, 계획에 포함된 주요 사업은 지역별 오염수준, 배출량 및 배출원 구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

마) 관리 물질

◦ 초미세먼지($PM_{2.5}$),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휘발성 유기화학물(VOCs), 암모니아(NH_3)

2) 비전 및 추진과제

가) 비전

◦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건강한 국민

나) 목표

◦ 2029년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3㎍/m^3 달성

※ 2021년(18㎍/m^3) 대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27% 이상 저감

<표 2.1.3 - 1> 중점 추진과제

핵심 전략	중점 추진과제
1 핵심배출원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동시감축	◆ (산업) 사업장 배출총량 축소 및 관리 고도화 ◆ (수송) 무공해차 보급 가속화 ◆ (발전) 석탄화력 감축 및 무탄소 전원 확대 ◆ (농·축산) 축산 환경관리 및 사육방식 개선
2 국민 생활주변 미세먼지 집중관리	◆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 ◆ 생활공간 주변 대기오염 취약지역 집중 저감 ◆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강화
3 민감·취약계층 건강보호	◆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저감 강화 ◆ 민감·취약계층 건강보호 조치 다각화
4 과학적 기반 강화	◆ 미세먼지 측정·예보 고도화 ◆ 미세먼지 및 그 생성물질의 연구 및 기술 개발 ◆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 지원
5 실효적 국제협력 확대	◆ 한·중·일 협력 내실화 ◆ 국제기구와 아시아 대기개선 협력 ◆ ODA 연계 등을 통한 대기산업 해외진출 지원

자료 :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 2024. 11. 27, 관계부처 합동

3) 분야별 추진과제

가) 국내 배출량 감축 목표

◦ 감축 목표 : '29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29년까지 PM-2.5(직접) 18%, SOx 16%, NOx 31%, VOCs 12%, NH_3 16% 이상 감축 추진 ('21년 배출량 기준)

<표 2.1.3 - 2> 감축 목표

(단위 : 백톤/년)

구 분		계	산업	발전	수송	생활
PM2.5 (직접배출)	배출량	573	76	181	25	291
	삭감량	105	22	45	11	27
	삭감률	18%	29%	25%	43%	9%
SOx	배출량	1,610	1,166	87	277	79
	삭감량	252	63	2	187	0
	삭감률	16%	5%	2%	67%	0%
NOx	배출량	8,845	1,778	5,690	457	919
	삭감량	2,708	194	2,142	256	116
	삭감률	31%	11%	38%	56%	13%
VOCs	배출량	10,028	2,432	943	89	6,564
	삭감량	1,165	170	191	22	781
	삭감률	12%	7%	20%	24%	12%
NH_3	배출량	2,620	431	18	22	2,149
	삭감량	429	54	4	3	368
	삭감률	16%	13%	21%	16%	17%

주) 배출량 및 감축량은 관련 산정방법론과 통계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속 보완
자료 :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 2024. 11. 27, 관계부처 합동

나) 핵심배출원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동시 감축

(1) 산업 분야

◦ 대기관리권역 배출허용총량 관리 효율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장 관리, IoT, AI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사업장 감시 및 측정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사업장 대기배출원 저감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사업장 연료전환 및 공정관리 혁신 지원

(2) 도로 수송 분야

◦ 차종별 전략적 보급 지원, 무공해차 안전관리 및 편의성 개선 등을통해 국민 생활 속 무공해차 대중화 추진

◦ 규제와 지원을 병행한 내연기관차 단계적 감축 및 관리 강화

(3) 비도로 수송 분야

◦ 선박·항만 분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 인프라 확대, 대기오염저감 조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확대·강화

◦ 건설·농업기계·공항 부문 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전환 촉진

(4) 발전 분야

◦ 화력발전소 단계적 감축 및 고농도 발생 시 발생원 집중 감축, 무탄소전원 확대, 청정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 확대

(5) 농업·축산 분야

◦ 가축분뇨 처리방식 고도화, 가축 사육방식 개선 등을 통해 암모니아 최다 배출원인 농·축산 부문 발생원 저감

◦ 암모니아 측정관리 강화 및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등을 통해 암모니아 저감 정책 기반 강화

◦ 영농폐기물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농업부문 생물성 연소 배출원 저감

다) 국민 생활주변 미세먼지 집중관리

◦ 국민 건강보호 중심의 안전한 실내 환경 조성

◦ 국민이 체감하는 촘촘하고 안전한 일상 속 미세먼지 저감·관리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측정·산정체계 보완 및 집중 저감조치 시행

라) 민감·취약계층 건강 보호

◦ 고농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저감·회피 대책 추진

◦ 민감·취약계층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련 인프라 확충, 건강 영향 연구 등을 강화하고 對국민 소통·홍보 노력 병행

마) 미세먼지 과학적 기반 강화

◦ 위성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예보를 고도화하고 국가 배출량 산정체계 개선 등을 통한 미세먼지 정책 기반 강화 추진

바) 실효적 국제협력 확대

◦ 다국간 공동 연구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과학적 원인 규명 강화

◦ 미세먼지와 더불어 오존, 온실가스 등 한·일·중 협력분야 다각화

◦ UNDP, UNEP 등 국제기구와 아시아 역내 대기질 개선 협력 강화

◦ ODA 연계 등을 통한 국내 대기산업 해외진출 다각화 모색

4) 본 계획과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과의 정합성

◦ 금회 계획은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으로 농업·축산 분야에서 가축분뇨 처리방식 고도화, 가축 사육방식 개선 등에서 본 계획의 단계적 가축사육 감축 추진, 자원화 촉진 및 효율적 분뇨처리 등에서 일부 정합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제2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2020-2040)

1) 기본계획 및 기본방향

가) 신 기후체제(파리협정) 당사국으로서 온실가스 감축 책임 요구

(1) 선진국·개도국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신 기후체제 출범

◦ 선진국만 감축책임을 지는 교토체제에서 모든 협정 가입국이 자발적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파리협정 체제로 본격 이행

- 주기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투명한 평가 및 진전된 NDC 제출 필요

◦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로서 감축의무 상향과 실효적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 요구 지속 증가 예상

- OECD 국가 중 5위, 연료연소(CO_2) 기준 세계 7위

나) 기본방향

(1) 온실가스 감축

(가) 파리협정 목표(2℃ 상승 억제, 1.5℃ 달성 노력)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

◦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정부·민간 등 주체별·분야별 전 부문의 역량을 집중하여 대응

◦ 국내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비용·효과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가 전체 온실가스 감축 비용 최소화

2)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1) 2030년 감축 목표

(가) 총괄 목표

◦ 17년 대비 24.4% 감축(30년 BAU 대비 37% 감축)

- 15년, 16년 대비 22.6% 감축

① 국내감축

◦ 총 배출량 목표 574.3백만톤 이내(BAU 대비 32.5% 감축)

- 에너지 부문 : 505.3백만톤(88%), 비에너지 부문 : 69백만톤(12%)

② 기타

◦ 산림흡수, 국외감축 등으로 38.3백만톤 감축(BAU 대비 4.5%)

(나) 부문별 목표

◦ 핵심 4대 배출원(전환 · 산업 · 건물 · 수송)에서 집중 감축(91%)

<표 2.1.3 - 7>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단위 : 백만톤 CO_2, %)

부 문		배출량 (17)	배출전망 (30 BAU)	감축목표		
				목표 배출량	BAU대비 감축량(감축률)	주요 감축수단
국내 부문별 목표		-	850.8	574.3	△276.4[1](32.5%)	-
배출원 감축	산업	392.5	481.0	382.4	△98.5 (20.5%)	효율개선, 냉매대체, 연 · 원료전환, 폐열활용
	건물	155.0	197.2	132.7	△64.5 (32.7%)	단열강화(신규 · 기존), 설비개선, BEMS 확대
	수송	99.7	105.2	74.4	△30.8 (29.3%)	친환경차 확대, 연비개선, 친환경선박 보급, 바이오디젤
	폐기물	16.8	15.5	11.0	△4.5 (28.9%)	재활용 확대, 메탄가스 회수
	공공(기타)	20.0	21.0	15.7	△5.3 (25.3%)	LED 조명, 재생에너지 확대
	농축산	**20.4**	**20.7**	**19.0**	**△1.6 (7.9%)**	**분뇨 에너지화, 논물관리**
	탈루 등	4.8	10.3	7.2	△3.1 (30.5%)	-
감축 수단 활용	전환	(253.1)	(333.2)[2]	(192.7)	(△140.5)[3](42.2%)	전원믹스 개선, 수요관리
	E신산업/ CCUS	-	-	-	△10.3	탄소포집 · 활용 · 저장
국외감축 등		-	-	-	△38.3 (4.5%)	산림흡수+국제시장활용
감축 수단 활용	산림 흡수원	(-41.6)	-	-	△22.1	경제림단지 조성, 도시숲 확대
	국외감축 등	-	-	-	△16.2	양자협력, SDM
합 계		709.1[4]	850.8	536.0	△314.8 (37%)	국내(32.5%) + 국외(4.5%)

비고) 1. 목표배출량은 부문별 배출량 합계에서 전환부문 전원믹스 및 CCUS로 인한 감축량 반영
2. 전환부문은 전기 · 열 사용에 따라 부문별 배출량에 기 포함, 전체 배출량 합계에서 제외
3. 추가감축잠재량 34.1백만톤을 포함한 것으로 20년 NDC 제출 전까지 감축목표 및 수단 확정
4. 산림부분 흡수량을 제외하지 않은 총 배출량
자료 :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2019. 10, 관계부처합동

나)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

(1) 전환 부문

(가) 배출전망

◦ 30년 전체 배출량의 39.1%(333.2백만톤) 예상

(나) 감축목표

◦ 30년까지 전환부문 배출량 42.2% 삭감(△140.5백만톤)

(다) 핵심과제

◦ 노후 석탄발전 추가 감축, 봄철 가동중지 확대, 환경급전 도입 등 석탄발전 비중 축소 및 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전환 가속화

(2) 산업 부문

(가) 배출전망

◦ 30년 전체 배출량의 56.5%(481백만톤) 예상

- 산업부문 예상 기여율 : 철강업(32%) > 석유화학업(13%) > 시멘트업(7%)

(나) 감축목표

◦ 30년까지 산업부문 배출량 20.5% 삭감(△98.5백만톤)

(다) 핵심과제

◦ 에너지효율 혁신, 신기술 개발·보급 확산, 친환경 연료 대체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온실가스 감축 효과 동시 달성

(3) 건물(가정·상업) 부문

(가) 배출전망

◦ 30년 전체 배출량의 23.1%(197.2백만톤) 예상

- 건물부문 예상 기여율 : 상업(56%) > 가정(44%)

(나) 감축목표

◦ 30년까지 건물부문 배출량 32.7% 삭감(△64.5백만톤)

(다) 핵심과제

◦ 녹색 건축물 확산, 고효율제품 확대 등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4) 수송 부문

(가) 배출전망

◦ 30년 전체 배출량의 12.3%(105.2백만톤) 예상

(나) 감축목표

◦ 30년까지 수송부문 배출량 29.3% 삭감(△30.8백만톤)

(다) 핵심과제

◦ 저공해차 보급 확대, 연비기준 강화, 친환경선박 보급 등으로 수송 분야별(도로·해양·항공) 배출원 관리 강화

(5) 폐기물 부문

(가) 배출전망

◦ 30년 전체 배출량의 1.8%(15.5백만톤) 예상

(나) 감축목표

◦ 30년까지 폐기물부문 배출량 28.9% 삭감(△4.5백만톤)

(다) 핵심과제

◦ 폐기물 최소화, 재활용 촉진, 메탄가스 회수 등 자원순환 체계 구축

(6) 공공 부문

(가) 배출전망

◦ 30년 전체 배출량의 2.4%(21백만톤) 예상

(나) 감축목표

◦ 30년까지 공공부문 배출량 25.3% 삭감(△5.3백만톤)

(다) 핵심과제

◦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강화

(7) 농축산 부문

(가) 배출전망

◦ 30년 전체 배출량의 2.4%(20.7백만톤) 예상

(나) 감축목표

◦ 30년까지 농축산부문 배출량 7.9% 삭감(△1.6백만톤)

(다) 핵심과제

◦ 논물관리 감축기술 개발·보급, 가축분뇨 에너지·자원화 확대

(8) CCUS·산림 부문

(가) 감축목표

◦ 30년까지 CCUS 10.3백만톤, 산림흡수 22.1백만톤 감축

-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나) 핵심과제

◦ CCUS 원천 및 실증기술 개발, CO_2 해양저장소 확보 노력, 국내 산림 흡수원 확충 등 비배출원 부문의 감축수단 활용 강화

3) 본 계획과 제2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2020-2040)과의 정합성

◦ 금회 계획은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으로 농축산 부문의 가축분뇨 에너지·자원화 확대 등에서 본 계획의 자원화 촉진 및 효율적 분뇨처리강화 등에서 일부 정합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1) 계획의 배경

◦ 인구 감소, 기술 혁신과 저성장 시대 등 사회·경제적 전환에 대비한 국가환경정책 방향 모색

- 인구감소 및 초고령화 시대의 빠른 도래와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환경정책 패러다임 제시
- 경제성장률 둔화와 저성장 추세에 대응하고 빅데이터, AI, 센서기술, 자율자동차 등 기술혁신과 데이터 경제 시대에 대비하는 환경정책방향 마련 필요
- 미세먼지, 기후위험, 화학물질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 생활과 맞닿아 있는 환경문제의 적극적 해법 마련

◦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 통합 물관리, 환경정의, 국토-환경계획의 통합관리 등 새로운 환경정책 수요를 반영한 국가환경 비전과 전략 마련

- 통합 물관리, 친환경에너지 전환 등으로 자원·경제정책의 녹색화를 확대하고 성과창출 도모
-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과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 마련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시행으로 환경정책의 공간화 및 공간환경 관리 전략 마련

◦ 최상위 국가환경종합계획으로서의 위상 정립과 실효성 제고

- 지방분권화 진전, 국민 참여요구 증대 등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환경정책 거버넌스 모델 구축
- 환경부문 관련 계획과 하위 시·도, 시·군·구 환경보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통해 최상위 계획으로서 위상 정립 및 실효성 제고

◦ 사회·경제적 전환과 새로운 환경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새롭게 수립

※ '15년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16~'35)을 수립하여 추진해왔으나, 사회·경제 전반의 녹색전환을 견인하고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훈령에 따라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과 연계하기 위하여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20~'40)』을 수립

2) 계획의 법적 근거와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0~2040년

◦ 공간적 범위 : 대한민국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국토 및 해양 전역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환경영향권을 고려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등 공간적 영역 포함

◦ 내용적 범위 :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환경현황과 전망, 각 환경 분야별 대책과 계획 등을 마련

- 인구·산업·경제·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원·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과

◦ 환경의 질(質) 변화 전망, 환경 현황과 전망, 환경 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주요 환경분야 대책 및 사업계획

※ 생물다양성·생태계·경관 등 자연환경, 토양환경 및 지하수 수질, 해양환경, 국토환경, 대기환경, 수질환경, 상하수도 보급,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화학물질 관리, 방사능 오염물질 관리, 기후변화 등

- '19년 1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대책 및 계획 추가

3) 환경관리 핵심전략 및 정책과제

환경관리 7대 핵심전략	주요정책과제
전략 1 생태계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토 생태용량 확대	· 국토환경 연결성 확보와 자연회복으로 국토 생태용량 증가 · 모두가 누리는 자연혜택으로 생태복지 실현 · 지속가능한 녹색도시·지역으로 도약 · 연안 및 해양 환경의 생태건강성 강화
전략 2 사람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한 통합 물관리	· 물순환 건전성과 수요·공급의 조화를 고려한 물서비스 강화 · 수질오염관리 선진화로 안전한 물환경 조성 ·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 및 생태계서비스 가치 실현 · 유역기반·참여기반의 통합 물관리로의 전환
전략 3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 미세먼지의 근본적 해결 추진 · 위해성에 기반한 공기질 관리 · 생활주변유해인자·화학물질·제품 관리 강화
전략 4 기후환경 위기에 대비된 저탄소 안심사회 조성	· 저탄소 안심사회 기반구축 ·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추진 · 기후위험 대응과 신(新)기회 창출 현실화 · 미래 환경안보 관리강화
전략 5 모두를 포용하는 환경정책으로 환경정의 실현	· 환경정의 구현과 녹색사회로의 전환 · 수용체 관점의 환경개선 · 환경정보의 알권리와 피해자 구제 강화
전략 6 산업의 녹색화와 혁신적 R&D를 통한 녹색순환경제 실현	· 환경R&D의 미래지향적 혁신 · 물질순환과 친환경경영에 기초한 산업 녹색화 · 환경일자리 창출과 환경가치 제고
전략 7 지구환경보전을 선도하는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현	· 항구적인 남북환경협력 이행 · 동북아 환경협력 발전 · 국제협약의 성실한 이행·선도와 개발도상국 협력 확대

4) 본 계획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과의 정합성

◦ 금회 계획은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으로 사람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한 통합 물관리, 미세먼지 등 환경위해로부터 국민건강 보호의 가축분뇨에 따른 물환경 조성 및 위해성에 기반한 공기질 관리 등에서 일부 정합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서울특별시 환경보전계획(2016-2025)

1) 계획의 목적 및 특징

◦ 서울시는 1차 환경보전계획(1996년~2005년)을 실행하였으며, 이후 2002년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 및 2003년에 개정된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에 따라 2차 환경보전계획으로 「서울특별시 환경보전계획(2006~2015)」을 수립하고 10년간 사업을 실행함.

◦ 3차 환경보전계획의 계획연도가 도래함에 따라「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및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제11조에 따라 10년 단위의「서울특별시 환경보전계획(2016~2025)」이 수립되어야 함.

◦ 서울시 환경보전계획은 시민의 환경욕구에 부응하는 계획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쾌적한 서울시의 미래 환경을 제시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도시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 환경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짐.

◦ 서울특별시 환경보전계획은 서울시 환경의 모든 계획을 종합하고 구체화하는 계획으로 국가 환경 종합계획과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성을 가짐.

2) 계획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기준 및 지표 년도 : 2015년, 2020년, 2025년

◦ 목표연도 : 2025년

나) 공간적 범위

◦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 전역이며, 영향을 미치는 기타지역을 포함한다.

다) 내용적 범위

◦ 서울시의 현황을 비롯한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기존 환경보전계획의 성과평가 및 관련계획의 검토§ 계획의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사업계획 수립

◦ 서울시 공간환경분석 및 공간환경계획 수립

◦ 환경부 및 관련계획과 관계법규를 검토하여 중·장기 투자 사업계획에 반영

◦ 계획의 추진 및 집행체계 정비(사업비 산정, 재원조달 방법 등)

◦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한 사항(2030도시기본계획, 서울의 약속 등을 참고하여 관련분야 반영)

3) 계획의 성격

◦ 「서울특별시 환경보전계획」은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인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 그리고 전략을 담은 서울시 환경정책에 관한 최상위 계획이다.

◦ 또한, 중앙정부 및 국토 환경보전의 목표와 조화를 이루고 환경부분 간의 핵심정책을 통합하여 자치구 환경보전의 방향을 이끄는 수도 서울의 환경보전 이정표로서 광역계획의 역할을 수행한다.

4) 계획의 목표

◦ 시민행복의 삶의 원천인, 환경복지도시

◦ 회복력 높고 건간한, 생태문화도시

◦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하는, 성장창출도시

5) 계획의 핵심전략

전략.1 시민최우선 생활환경 구현

- 대기환경: 시민이 안전하게 호흡할 수 있는 공기품질시대를 선도
- 상하수도 보급 · 관리 및 수질환경보전: 시민이 행복을 누리는 물 환경 복지 도시
- 토양 · 지하수 관리: 토양: 건강한 토지자원의 보전과 유지

전략.2 찾아가는 체감형 환경서비스 구축

- 실내공기질: 건강 100세 시대를 앞당기는 안전한 실내공기질 관리
- 유해화학물질 및 악취관리: 안락한 생활환경 조성
- 소음 · 진동: 사전 예방적 소음진동관리

전략.3 회복력 높은 생태자원 확대

- 자연생태: 건강한 생태계 조성
- 공원녹지: 시민과 함께하는 녹색도시 만들기

전략.4 저비용 · 고효율 자원순환체계 구축

- 폐기물: 매립제로형 자체자원화 기반
- 도시물순환: 물이 순환하는 쾌적한 도시
- 에너지: 시민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전략.5 민관주도 환경거버넌스 구축

- 지구환경보전: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의 환경거버넌스 구현
- 환경-경제: 시민이 공감하는 친환경 경제도시
- 환경-사회: 환경취약계층을 위한 다층적 환경거버넌스 활성화

5) 본 계획과 서울시 환경보전계획(2016-2025)과의 정합성

◦ 금회 계획은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으로 시민최우선 생활환경 구현, 찾아가는 체감형 환경서비스 구축의 가축분뇨에 따른 상하수도 보급·관리 및 수질환경보전, 유해화학물질 및 악취관리 등에서 일부 정합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2.2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적정성

◦ 본 계획은 서울특별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중 운영시 가축장내 발효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였으며, 금회 감축전략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제시하였고, 향후 개별 개발사업 시행시 경제적·기술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전략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2.2.1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산정

가. 계획지구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 조사

1) 계획지구 조사범위

가)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 설정 : 서울특별시 일원

<표 2.2 - 1> 서울시 가축사육시설 분류 및 현황(2024년 기준)

가축 종류	허가대상 (축사/운동장 면적 등)	신고대상 (축사/운동장 면적 등)	신고미만 (무신고)	서울시 현황
돼지	1,000㎡ 이상	50㎡ 이상 1,000㎡ 미만	50㎡ 미만	사육두수 및 시설 없음
소 (한우, 육우)	축사 900㎡ 이상 또는 운동장 450㎡ 이상	축사 100㎡ 이상 900㎡ 미만 운동장 200~450㎡ 미만	100㎡ 미만(축사) 200㎡ 미만(운동장)	1개소
젖소	축사 900㎡ 이상 또는 운동장 2,700㎡ 이상	축사 100㎡ 이상 900㎡ 미만 운동장 300~2,700㎡ 미만	100㎡ 미만(축사) 300㎡ 미만(운동장)	1개소
말	900㎡ 이상	100㎡ 이상 900㎡ 미만	100㎡ 미만	공식 사육농가 없음
닭·오리	3,000㎡ 이상	200㎡ 이상 3,000㎡ 미만	200㎡ 미만	공식 사육농가 없음
메추리	-	200㎡ 이상	200㎡ 미만	사육농가 없음
양·사슴	-	200㎡ 이상	200㎡ 미만	2개소, 공공시설 관상목적 2개소
개	-	60㎡ 이상	60㎡ 미만	1개소 (상업적 사육농가 없음)
방목 사육시설	-	돼지 36마리 이상 소·젖소·말 9마리 이상 닭·오리 1,500마리 이상 양·사슴 50마리 이상	그 미만	해당 없음

◦ 시간적 범위 설정

- 계획 전, 공사시, 운영시의 3단계로 구분함
- 공사시 : 토목공사 기간
- 운영시 : 1단계 2026~2029년, 2단계 2030~2032년, 3단계 2033~2035년

<표 2.2 - 2>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범위

구분	내용	비고
계획 전	공사 시작 전 계획대상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공사시	공사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운영시	운영시 감축전략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량	

2) 계획지구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 계획지역의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은 토지현황을 고려하여 수송, 공업/상업, 산업,가정, 폐기물, 농업, LULUCF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 배출원 및 흡수원의 세분은 환경영향평가의 영향 분석 체계와 연계하여 부문별 배출량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감축목표 및 전략 수립과 실행에 따른 감축량 및 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가) 부문별 산정대상 온실가스 및 배출원

◦ 온실가스 배출원 및 배출구분, 산정대상 온실가스는 다음과 같음

<표 2.2 - 3> 부문별 산정 대상 온실가스(배출원)

구 분	배출구분		배출요인	산정대상 온실가스
수 송	이동배출원		이동 연소시설의 에너지(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CO_2, CH_4, N_2O
공공/상업	직접배출		고정 연소시설의 에너지(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CO_2, CH_4, N_2O
	간접배출	전기	외부 공급된 전기, 열, 수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CO_2, CH_4, N_2O
		열		
		수도		
산업	직접배출		고정 연소시설의 에너지(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CO_2, CH_4, N_2O
	간접배출	전기	외부 공급된 전기, 열, 수도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CO_2, CH_4, N_2O
		열		
		수도		
가정	직접배출		고정 연소시설의 에너지(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CO_2, CH_4, N_2O
	간접배출	전기	외부 공급된 전기, 열, 수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CO_2, CH_4, N_2O
		열		
		수도		
폐기물	매립		사업지역 배출 폐기물의 매립, 소각, 생물학적 처리, 하·폐수 처리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CH_4
	소각			CO_2, CH_4, N_2O
	하폐수처리			CH_4, N_2O
	생물학적처리			CH_4, N_2O
농업	**장내 발효**		**가축 장내 발효에 의한 메탄 배출**	**CH_4**
	가축 분뇨 처리		**가축 분뇨 처리에 의한 메탄 배출**	**CH_4**
	비료 사용		**비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CH_4, N_2O**
	작물 잔사 소각		바이오매스 연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CO_2, CH_4, N_2O

자료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안내서, 2023.3, 환경부

나) 부문별 산정대상 온실가스 및 흡수원

◦ 온실가스 흡수원 및 산정대상 온실가스는 다음과 같다.

<표 2.2 - 4> 부문별 산정 대상 온실가스(흡수원)

구 분	배출구분	배출요인	산정대상 온실가스
LULUCF	산림지	산림지로 유지된 산림지	CO_2,
		타토지에서 적용된 산림지	
	농경지	농경지로 유지된 농경지	CO_2, N_2O
		타토지에서 적용된 농경지	
	초지	초지로 유지된 초지	CO_2,
		타토지에서 적용된 초지	
	습지	초지로 유지된 초지	CO_2, CH_4
		타토지에서 적용된 초지	
	수확된 목재제품	수확된 목재제품	CO_2,

주 : LULUCF(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
자료 : 2023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24. 07.,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다) 부문별 산정대상 온실가스 및 흡수원

(1) 공사시

◦ 공사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미 모두 시설 운영중으로 공사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제외하였다.

<표 2.2 - 5> 공사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대상

부문	배출구분		배출 여부	비고
산업	직접배출	고정배출원	X	
가정 (현장사무소)	직접배출	고정배출원	X	
	간접배출	전기	X	
		열	X	
		수도	X	
폐기물	매립		X	
	소각		X	
	하폐수처리		X	
	생물학적처리		X	
LULUCF			X	

(2) 운영시

◦ 운영시 온실가스 예상 배출원은 가축에 의한 농업부문에 의한 배출이 예상된다.

<표 2.2 - 6> 운영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대상

부문	배출구분		배출 여부	비고
수송	이동배출원		X	
공공/상업	직접배출	고정배출원	X	
	간접배출	전기	X	
		열	X	
		수도	X	
산업	직접배출	고정배출원	X	
	간접배출	전기	X	
		열	X	
		수도	X	
가정	직접배출	고정배출원	X	
	간접배출	전기	X	
		열	X	
		수도	X	
폐기물	매립		X	
	소각		X	
	하폐수처리		X	
	생물학적처리		X	
농업	장내 발효		O	
	가축 분뇨 처리		O	
	비료 사용		O	
	작물 잔사 소각		X	
LULUCF	산림지	산림지로 유지된 산림지	X	
		타토지에서 적용된 산림지	X	
	농경지	농경지로 유지된 농경지	X	
		타토지에서 적용된 농경지	X	
	초지	초지로 유지된 초지	X	
		타토지에서 적용된 초지	X	
	습지	초지로 유지된 초지	X	
		타토지에서 적용된 초지	X	

나.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 현황

1) 온실가스 배출량

◦ 2022년 서울특별시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4,370.24GgCO$_2$eq.로 2010년 30,093.59GgCO$_2$eq. 대비 18.68%가 감소한 값이고, 전년도(2020년) 25,831.99GgCO$_2$eq. 대비 6.00%가 감소하였다.

◦ 서울특별시의 최근 10년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12년으로 30,705.88GgCO$_2$eq.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였다. 2018년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기준이 되는 해로 2021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8년 기준배출량 대비 9.17%가 감소한 양이다

<표 2.2 - 7> 서울특별시 온실가스 배출량(2010~2022년)

(단위 : GgCO$_2$eq)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배출량		30,093.59	30,640.76	30,705.88	30,061.91	28,354.42	28,788.48	28,581.01	27,934.67	26,605.48	26,100.62	25,741.53	25,831.99	24,370.24
순배출량		29,873.19	30,453.49	30,564.82	30,058.02	28,302.60	28,662.36	28,444.39	27,817.97	26,534.10	26,025.57	25,654.48	25,744.73	24,283.47
직접배출량	에너지	29,042.91	29,649.40	29,774.27	28,904.44	27,274.38	27,834.69	27,459.91	26,768.96	25,497.60	24,974.39	24,754.58	24,850.12	23,486.25
	산업공정	747.59	602.96	633.11	686.96	713.41	614.98	770.43	747.32	681.76	815.32	697.1	662.03	610.78
	농업	-	-	-	-	-	-	-	-	-	-	-	-	-
	LULUCF	-220.4	-187.26	-141.06	-3.9	-51.82	-126.12	-136.63	-116.7	-71.38	-75.05	-87.05	-87.27	-86.77
	폐기물	303.09	388.39	298.5	470.51	366.62	338.81	350.67	418.39	426.13	310.91	289.85	319.85	273.21
	합계	29,873.19	30,453.49	30,564.82	30,058.01	28,302.59	28,662.36	28,444.38	27,817.97	26,534.11	26,025.57	25,654.48	25,744.73	24,283.47
간접배출량	전력	24,123.95	24,068.38	23,916.54	23,766.46	22,003.72	21,661.95	22,877.19	23,115.00	24,336.51	22,388.56	19,869.82	20,520.15	20,335.00
	열	1,285.77	1,079.16	1,205.80	1,117.19	892.56	912.05	967.69	941.12	580.88	894.82	901.57	861.04	959.33
	폐기물	5,194.46	5,192.53	4,973.37	5,150.52	4,840.39	4,658.63	4,611.02	4,560.87	4,477.06	4,301.29	4,134.68	4,073.89	3,941.72
	합계	30,604.17	30,340.07	30,095.71	30,034.17	27,736.66	27,232.63	28,455.89	28,617.00	29,394.45	27,584.66	24,906.07	25,455.07	25,236.05

주 1) VKT 기반 배출량 활용시, 과대산정 우려가 있거나, 연료 판매량과 소비량이 일치하는 지역의 경우 연료판매량을 소비량으로 적용
2) 인천(서구)의 폐기물 매립 배출량의 경우 수도권매립지공사 소재로 서울, 경기, 인천의 폐기물을 매립 처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자료 :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24), 2024년 지역온실가스 통계(2010-2022)

2) 온실가스 부문별 배출량

◦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46,560천톤CO2eq.로, 2005년 배출량인 52,342천톤CO2eq.대비 5,782천톤CO2eq.(11.0%) 감소하였다.

◦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은 2007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08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 2007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3,363천톤CO2eq.로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약 1,021천톤CO2eq.(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8년 이후의 배출량은 점차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마련한 이후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 서울시의 경우,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가 높은 직접배출보다는 간접배출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 2015년 이후 소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는 유가 하락으로 인한 석유류 소비의 증가 및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여름철 냉방, 겨울철 난방일수의 증가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판단된다.
- 2020년은 COVID-19로 인한 에너지 생산, 제조, 산업, 농업 등 인간의 모든 전반적인 활동에 제약이 생겨 2019년도 배출량 대비 2,168천톤CO2eq.(4.6%)가 감소하였음. 2021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0년에 비해 완화되면서 2020년 대비 온실가스가 1,150천톤CO2eq.(약 2.6%)가 증가하였다.
- 2022년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의 요인으로 배출량 증가세가 계속되어 2021년 대비 618천톤CO2eq.(약 1.3%)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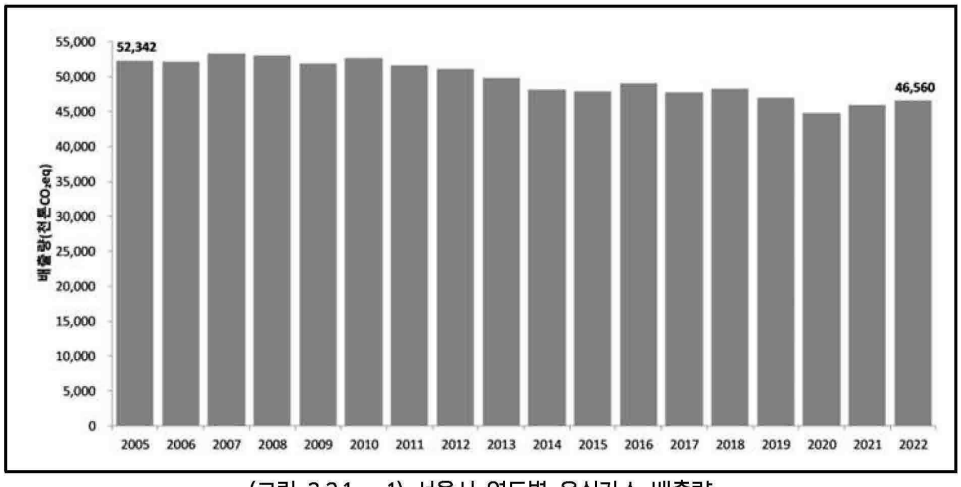

(그림 2.2.1 - 1) 서울시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3) 서울특별시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현황

가) 지목 현황

◦ 서울특별시의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을 보면 총 면적 605.24㎢ 중 대지가 219.38㎢(36.25%)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임야 138.87㎢(22.94%), 도로 79.28㎢(13.10%), 하천 52.16㎢(8.6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2.2 - 8>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단위 : ㎢, %)

구 분	계	대 지	임 야	도 로	하 천	학교용지	공 원	잡종지	기 타
서울특별시	605.20 (100.00)	223.11 (36.87)	136.75 (22.60)	80.62 (13.32)	52.06 (8.60)	24.93 (4.12)	24.58 (4.06)	16.26 (2.69)	46.89 (7.75)

주) 기타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광천지, 염전,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철도용지, 제방,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자료 : 제64회 2024 서울통계연보(2023년 기준), 2024, 서울특별시

나) 가축사육 현황

◦ 2024년 기준 총 7개의 축사 중, 허가대상에 해당되는 경북농장 1개소는 폐쇄되어 최종 6개소의 신고시설을 운영 중이며, 가축 종은 젖소, 사슴, 개로 조사되었다.

◦ 자치구별로 성동구 1개소, 서초구 4개소, 강북구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폐쇄시설(서초구 경북농장 1개소)을 제외하고 서초구에 4개의 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 성동구에 서울숲공원 내 관상용 사슴 사육시설 1개소, 서초구에서는 경찰특공대에서 업무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고 있으며, 젖소 사육시설 1개소, 사슴 사육시설 2개소를 운영 중. 강북구의 북서울꿈의숲 내에도 관상용 사슴 사육시설 1개소를 운영 중이다.

<표 2.2 - 9> 서울시 자치구별 가축사육 현황(2024년 기준)

자치구	소재지	시설명	축종	사육두수	시설규모(㎡)	분뇨처리방법	비고
성동구	성수동1가 685-20	서울숲공원	사슴	26	2,770	퇴비	
서초구	방배동 산184	경찰특공대	개	31	1,009	정화	
	원지동 산 72	경북농장	한우	20	1,564	위탁	폐쇄
	내곡동 228-1	서초목장	젖소	10	574	위탁	
	우면동 192	세한사슴	사슴	23	396	퇴비	
	원지동 225-2	새원사슴	사슴	3	330	퇴비	
강북구	번동 90	북서울꿈의숲	사슴	14	2,511	퇴비	

다. 배출원단위 산정

◦ 가축종별 온실가스 산정식 및 배출계수는 다음과 같다.

<표 2.2 - 10> 분뇨관리에서의 CH4 배출

$$E = \sum_{t}(EFt \times \frac{Nt}{10^6})$$

E : 가축의 분뇨관리에 이한 CH_4 배출량, $GgCH_4/yr$
Nt : 가축 종별 사육두수, 두
EFt : t 가축종에 대한 CH_4 배출계수

자료 :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 2015.12, 환경부/국토환경평가과

<표 2.2 - 11> 가축종별 장내 발효 배출계수

구 분	젖소		한육우		
	육성우	착유우	송아지	번식우	비육우
배출계수 (kgCH4/yr)	61.813	106.690	39.191	48.979	50.712

자료 :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 2015.12, 환경부/국토환경평가과

<표 2.2 - 12> 가축종별 장내 발효 배출계수

구 분	염소	말	돼지	사슴	토끼
배출계수 (kgCH4/yr)	5	18	1.5	20	0.2297

자료 :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 2015.12, 환경부/국토환경평가과

<표 2.2 - 13> 가축종별 장내 발효 배출계수

구 분	젖소	한육우	돼지	닭	
				산란계	육계
배출계수 (kgCH4/yr)	19.953	0.621	0.183	0.022	0.016

자료 :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 2015.12, 환경부/국토환경평가과

<표 2.2 - 14> 그 외 가축종의 분뇨관리 CH4 배출계수

구 분	산양	말	칠면조	오리	사슴	토끼
배출계수 (kgCH4/yr)	0.20	2.34	0.09	0.03	0.22	0.08

자료 :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 2015.12, 환경부/국토환경평가과

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1) 계획시행 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가)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 계획시행 전 온실가스 배출량은 농업부분에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특별시의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참고하였으며, 2010~2021년 기준 농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서울시는 상업적 축산농가가 극소수(2024년 기준 소·사슴 등)여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매우 적은편이며, 실제로 환경부 공식 통계에서도 서울시의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량은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가축분뇨는 서울시 공공분뇨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겠으나, 현재 가축사육시설 대부분 퇴비화, 폐기, 정화 등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가축종별 장내 발효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214.05kgCH_4/yr로 산정되었으며, 현재 서울특별시는 향후 단계적 개체수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라 점차 더 배출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2.2 - 15> 가축종별 사육두수 및 연간 분뇨발생량

구분	사육두수(두)	연간 분뇨발생량(kg)	주요 처리방식
젖소	10	101,507	위탁 처리
사슴	66(성동+강북)	8,760	퇴비 처리
개	31	23,762	자가정화 처리

<표 2.2 - 16> 가축종별 장내 발효 배출량 산정

구분	사육두수(두)	배출계수	배출량(kgCH_4/yr)
젖소	10	19.953	199.53
사슴	66	0.22	14.52
개	31	-	-
합계	107	-	214.05

주) 개의 배출계수는 따로 없어 배출량 산정을 생략함

2) 사업시행 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계획지구 사업시행 후 공사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어 생략하였으며, 운영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재에서 가축두수는 증가하지않고 오히려 단계적으로 사육두수 감축을 시행하여 운영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2.2.2 감축 전략 수립

◦ 본 계획은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으로, 사육두수 등을 이용하여 온실가스 발생량을 산정한 결과 현황대비 총 214.05kgCH_4/yr의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 바,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수립하였다.

◦ 감축전략 수립시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 2015.12.09., 환경부"에 제시된 온실가스 저감방안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2023.4)",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수립하였다.

가. 감축목표 설정

◦ 건물 부문은 가장 큰 감축 잠재량을 갖는 부문으로써 공공건물 리모델링 사업과 민간건물 BRP 확대 사업 등으로 계획기간 동안 8,046천톤CO_2eq.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서울시 2033년 감축 목표인 13,974천톤CO_2eq.의 57.6%에 해당한다.

◦ 수송 부문은 친환경차 보급과 다양한 교통수요 감축 사업 등으로 계획기간 동안 3,285천 톤CO_2eq. 감축 목표량을 설정하였으며, 이는 서울시 전체 감축 목표량의 23.5%에 해당한다.

◦ 에너지 부문에서는 태양광과 연료전지, 그리고 지열에너지 등의 미활용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2,265 천톤CO_2eq.를 감축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전체 감축 목표량의 16.2%이다.

◦ 폐기물과 흡수 부문에서는 각각 370천톤CO_2eq., 7.9천톤CO_2eq.을 감축목표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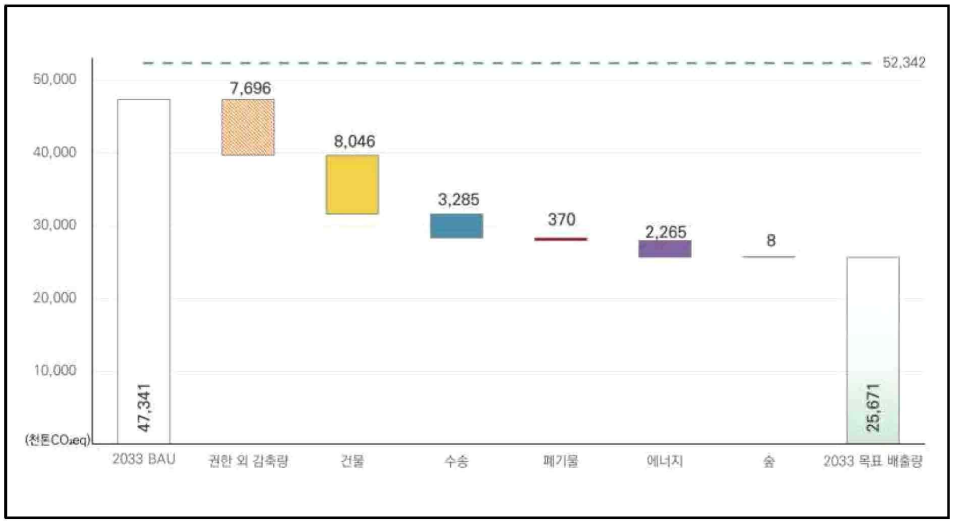

(그림 2.2.2 - 1)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표 2.2 - 17> 서울시 중장기 감축률

(단위 : 천톤CO_2eq)

구분		기준연도	2030년			2033년		
		2005년 배출량	2030년 전망배출량	2030 목표배출량	기준연도 대비 감축률	2033년 전망배출량	2033 목표배출량	기준연도 대비 감축률
총 배출량		52,342	46,956	31,530	40.0%	47,341	25,671	51.0%
건물		30,250	29,528	18,651[1]	35.0%	30,062	16,243	46.3%
수송		11,341	8,362	6,149	45.8%	8,285	5,000	55.9%
폐기물		6,900	4,850	4,512	34.6%	4,529	4,159	39.7%
기타		3,851	4,216	2,870[2]	25.5%	4,464	2,541	34.0%
상쇄	흡수(숲)			△6			△8	
	에너지			△1,646			△2,265	

주) 1. 서울시 인벤토리 기준이며, 서울시 관리권한 외 항목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임
2. 기타 부문의 '배출량'은 산업(제조업 등), 탈루배출, 산업공정, AFOLU(농업, 산림 및 기타 토지이용) 등을 포함하며 '전망 배출량'은 농업과 산업, 산업공정을 포함하여, 탈루와 LULUCF(산림 및 기타 토지이용) 부문이 제외됨
3. 탈루와 LULUCF는 전체 인벤토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기준 0.17%로 미미하며, 탈루배출도 감소하는 추세임
4) 건물 부문의 목표 배출량에는 전환 부문 에너지믹스 개선에 따른 감축 효과가 반영됨
5) 기타 부문의 목표 배출량에는 공항, 국군용, 철도 등 관리권한 외 감축량이 포함됨
자료 :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

<표 2.2 - 18> 환경부 인벤토리 기준 중장기 감축목표

(단위 : 천톤CO_2eq)

구분			2018년 기준 배출량	2030년 목표 배출량	2033년 목표 배출량
관리 권한 배출량			46,107	28,660	23,225
온실가스 배출량 (직접+간접)	건물[1]	가정	14,302	21,628	18,252
		상업·공공	18,756		
	도로수송		8,630	5,182	4,035
	농업		**2**	**2**	**2**
	폐기물		4,416	3,568	3,227
흡수 및 제거[2]			△72	△74	△76
관리권한 외	에너지		-	△1,646	△2,265

※ 참고 1. 서울시 관리 권한 내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기준
2. 2018년 기준 배출량은 총배출량, 2030·2033년 목표 배출량은 순배출량(총배출량-흡수·제거량)
3. 부문별 배출량은 직접 배출량과 간접 배출량의 합계
주) 1) 건물의 목표 배출량에는 전환부문 에너지믹스 개선에 따른 감축 효과 반영됨
2) 흡수 및 제거에는 흡수 부문(관리권한 외)의 감축량 포함
자료 :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

◦ 환경부 산정 인벤토리를 기준으로 서울시 중장기 감축률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기준 인벤토리의 값과 포괄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 인벤토리 기준 중장기 감축률과 배출량 수치는 다르지만, 전망 배출량에서 목표배출량을 뺀 값인 감축량은 동일하다.

- 두 표에서 건물, 수송, 폐기물, 흡수, 기타 부문의 감축량은 2030년과 2033년 모두 동일하고, 다음 표에 기타 부문 감축량(전망 배출량-목표 배출량)에는 서울시 관리권한 외 감축량이 포함되어 있다.

◦ 서울특별시의 농업부문은 2천톤CO_2eq으로 2030년 목표 23.8%, 2033년 24.9%를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본 계획도 농업부문에 해당하여 24.9%로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표 2.2 - 19> 서울시 중장기 감축률(인벤토리 적용 기준)

(단위 : 천톤CO_2eq)

구분	기준연도	2030년			2033년		
	2018년 배출량	2030년 전망배출량	2030 목표배출량	기준연도 대비 감축률	2033년 전망배출량	2033 목표배출량	기준연도 대비 감축률
관리권한 배출량	46,107	42,739	28,660	37.8%	42,973	23,225	49.6%
건물	33,058	31,505	21,628	34.6%	32,071	18,252	44.8%
도로수송	8,630	7,395	5,182	40.0%	7,320	4,035	53.2%
농업	**2**	**2**	**2**	**23.8%**	**2**	**2**	**24.9%**
폐기물	4,416	3,906	3,568	19.2%	3,647	3,277	25.8%
흡수원	-72	-68	-74	-1.8%	-68	-76	-5.2%
에너지			-1,646			-2,265	

주) 1) 환경부 인벤토리 기준 서울시 관리 권한 내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을 기준으로 함
2) 총배출량 산정 시 2018년은 흡수원 제외, 목표연도(2030년, 2033년)는 흡수원 포함임
3) 부문별 배출량은 직접+간접 배출량임
4) 건물 부문의 목표 배출량에는 에너지믹스 개선에 따른 감축 효과가 반영되어 있음
5) 농업의 감축률은 기준연도 대비 BAU 감소에 따른 것임

나. 감축 전략

1)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2023.4)

가) 전략목표

◦ 탄소중립·녹색성장,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

나) 3대 정책방향

◦ 경제·사회구조 모든 영역에서 책임있는 탄소중립 실천

◦ 소통·공감·협력을 통해 질서있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으로 녹색성장을 이끌어가는 혁신주도 탄소중립

다) 4대 전략 및 12대 과제

(1) 구체적·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 원전+재생에너지 조화

◦ 산업구조 전환

◦ 국토의 저탄소화

(2)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 기술혁신·규제개선

◦ 핵심산업 육성

◦ 재정지원·투자확대

(3)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탄소중립

◦ 에너지소비절감

◦ 지방중심

◦ 산업·일자리 전환

(4) 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 기후적응기반 구축

◦ 국제사회 선도

◦ 이행관리

라) 중장기 감축목표

(1) 수립경과

(가) 2030 NDC 상향안 마련('21.10)

◦ 2050 탄소중립 선언('20.10)의 후속조치로 '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로 상향('21.10) 및 UN 제출('21.12)

(나) 「탄소중립기본법」('22.3.25시행)에 따라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마련

◦ 국제사회에 약속한 NDC 상향안('21.10)의 감축목표 준수

◦ 단, 감축수단별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부문 간, 부문 내 일부조정

- 산업부문은 원료수급 곤란 및 기술전망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3.1%p↓)

- 부족한 감축량은 전환부문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보급 및 국제감축의 확대를 통해 달성(각 400만톤씩 확대)

(2) 부문별 감축목표

(가) '30년 감축 후 배출량 436.6백만톤('18년 배출량 대비 △40%)

◦ 전환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45.9% 감축

◦ 산업부문은 원·연료 전환, 공정배출 감축 등을 통해 감축하되, 기술개발 상용화 시기 등을 고려하여 11.4% 감축

◦ 건물·수송·농축수산·폐기물 등 타 부문에서도 합리적 이행수단을 발굴, 27.1~46.8% 감축 및 흡수원, CCUS 등을 통한 배출 상쇄

◦ 이외 국제감축은 국내감축의 보충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파리협정 등 전지구적 탄소저감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

(3) 주요 부문별 감축방향

(가) 전환

◦ 석탄발전 감축 및 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등 청정에너지 전환가속화

◦ 전력계통망, 저장체계 등 기반구축

◦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통한 수요관리 강화

(나) 산업

◦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기술 및 연·원료 전환 대안 확보

◦ 펀드, 보조, 융자 등 기업의 투자부담 경감

◦ 배출권 거래제 배출효율기준할당 및 유상할당 확대 등을 통한 자발적인 감축활동 유도

(다) 건물

◦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화 및 기축건물의 그린리모델링 등 에너지효육 강화

◦ 건물 성능 정보공개를 통한 효율개선

(라) 수송

◦ 전기·수소차 보급, 내연기관차의 전기화, 무탄소 선박 등 이동수단의 저탄소화

◦ 내연차의 온실가스·연비기준 강화

◦ 대중교통 활성화

(마) 농축수산

◦ 스마트팜, 저탄소 생산기술 및 농기계 개발

◦ 저메탄사료 개발, 가축분뇨 활용

◦ LPG·하이브리드 어선개발, 양식·수산가공업 저탄소·스마트화

(바) 폐기물

◦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감량 설비지원 등 폐기물 원천감량

◦ 유용폐자원의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 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사) 수소

◦ 그린수소 생산 등 핵심기술 실증 및 인프라 구축

◦ 수소 모빌리티 다양화

◦ 수소 클러스터 지정 등 수소 활용범위 확대

(아) 흡수원

◦ 산림·해양·습지·정주지 등 흡수원 강화·복원

◦ 도시숲 등 신규 흡수원 확대

◦ MRV(산정·보고·검증)체계 고도화

(자) CCUS

◦ 산업, 안전, 인증기준 등을 포함한 단일법 제정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개발·실증 강화

◦ CCS 추가 저장소 확보

(차) 국제감축

◦ 승인, 취득 등 국제감축사업 이행기반 마련

◦ 환경·산업·산림·해양·국토 등 부문별 국제감축사업 발굴

◦ 협정체결 대상국 확대

2)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가) 농업부문 감축수단

◦ (연료 전환 등) 어선 및 농기계 연료의 전기·수소화, 고효율 에너지 설비 보급,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등 추진

- (농축산)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농촌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농기계·보일러 등에서 사용하는 등유·경유 수요의 전기·수소화

- (수산) 노후 어선 교체 및 장비 고효율화 수단 확대

◦ (영농법 개선) 화학비료 저감, 친환경 농법 시행 확대 등 영농법 개선을 통해 농경지 메탄·아산화질소 발생 억제

- 벼농사로 유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논물 관리방식 개선 및 농경지 질소질 비료 사용 저감, 바이오차(Bio-char)* 등 신규 기술 확대

* 목재 등을 300~350℃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 없이 열분해하여 만든 숯 형태의 유기물로, 토양 살포 시 토양 내 탄소 저장 효과 있음

◦ (가축 관리) 가축분뇨 자원순환 확대 및 저탄소 가축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48%를 차지하는 메탄가스 및 분뇨 내 질소를 줄이기 위해 저메탄·저단백질사료 보급 확대

- 디지털 축산 경영을 통한 가축 정밀 사양, 폐사율 감소 등을 통해 축산의 생산성 향상

- 분뇨 중 탄소는 메탄으로 회수 및 에너지원(열이나 전기, 수소)으로 활용하여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처리율 확대('18년 5% 내외 → '50년 35% 이상)

◦ (식생활 전환) 식단변화, 대체가공식품 이용 확대

- 사회구조 변화, 대체가공식품(배양육, 식물성분 고기, 곤충원료 등) 기술 개발 및 이용확대 등으로 인한 식단 변화 고려

<표 2.2 - 20> 감축 전략 총괄표

구분	감축전략	비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2023.4)	◦ 전략목표 - 탄소중립·녹색성장,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 ◦ 중장기 감축목표 - 2050 탄소중립 선언('20.10)의 후속조치로 '18년 온실가스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로 상향 및 UN제출('21.12) - 「탄소중립기본법」('22.3.25시행)에 따라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마련 ◦ 주요 부문별 감축방향(농업수산부문) - 스마트팜, 저탄소 생산기술 및 농기계 개발 - 저메탄사료 개발, 가축분뇨 활용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 농업부문 감축수단 - (가축 관리) 가축분뇨 자원순환 확대 및 저탄소 가축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	◦ 감축수단 - AFOLU 농업부문 비료 저감계획 - AFOLU 축산부문 CH_4 포집계획	

다. 계획 시행에 따른 적용 가능한 감축전략

◦ 본 계획은 기본계획 단계로 추후 실시계획 단계 시 부문별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며, 계획시행에 따른 적용 가능한 감축전략은 문헌조사, 기본 계획 자료 등을 분석하여 정성적으로 제시하였다.

1) 운영시

가) 가축분뇨 발생 감소화

(1) 서울시 가축종별 현황

◦ 서울시 가축종은 현재(2024년 기준) 젖소 10두, 사슴 66두, 개 31두로 확인된다.

◦ 4장에서 분석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농·축산업전망 자료 적용 결과는 젖소 두수 10마리 내외 유지, 사슴 66두 유지, 개 31두 유지로 나타났으나, 단계적 가축두수의 변화 예측과 분뇨발생량 감축 계획 검토를 위해 축종의 평균연령과 수명, 농장의 현황을 검토하였다.

(2) 서울시 가축분뇨 발생 감소화 계획

(가) 공공시설 : 서울숲 사슴

◦ 서울숲은 2005년 6월 개장과 함께 다양한 사슴류를 방사하며 생태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했다.

◦ 개장 초기에는 꽃사슴 21마리, 고라니 10마리, 다마사슴 5마리 등 총 36마리의 사슴류가 방사됨 개장 직후 추가 방사로 꽃사슴 19마리, 다마사슴 3마리가 추가로 방사되어, 개장 초기 총 사슴류는 약 58마리로 추정된다.

◦ 그러나 2006년 이후 사슴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수사슴 5마리와 암사슴 40마리 등 총 45마리를 외부로 매각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 2024년 기준 서울숲 사슴 두수는 26마리로, 현재 기준 감소세를 반영하면 2035년까지 5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표 2.2 - 21> 서울숲의 연도별 사슴 마리수 변화

시기	주요 내용	사슴 마리수
2005년 6월	개장 및 첫 방사	36~58마리
2005년 하반기	출산 등으로 개체수 증가	+5마리
2006년	개체수 증가, 일부 매각	50여 마리, 45마리 매각
2024년	안정적 관리	26마리

(나) 공공시설 : 북서울꿈의숲 사슴

◦ 2009년 개장 이후 사슴방사장을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자연생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정확한 초기 마리수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2021년 기준 사슴 21마리(수컷 9, 암컷 7, 보육분 5)가 방사되어 있었다.

◦ 2024년 기준으로 북서울꿈의숲 사슴방사장에는 14마리의 사슴이 서식하고 있으며, 특이사항은 암수 분리 중임. 2021년 대비 30% 감소하였다.

◦ 따라서 현재 사슴 연령을 감안하여 감소세를 고려하면 2035년까지 최대 80% 감소를 예상한다.

<표 2.2 - 22> 북서울꿈의숲의 연도별 사슴 마리수 변화

시기	주요 내용	사슴 마리수
2009년	개장 및 첫 방사	(공식 수 미공개)
2021년	사슴방사장 운영, 가족 단위 번식	21마리(수 9, 암 7, 보육 5)
2024년	안정적 관리	14마리

◦ 꽃사슴은 사육 시 평균 수명은 15~18년, 최대 25년 이상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

◦ 서울숲과 북서울꿈의숲 사슴들이 관리환경에서 적절히 사육되었을 때, 평균연령은 약 10년 전후, 길게는 12년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

◦ 따라서 2035년까지 평균적으로 공공시설 2개소 대상 65%가량 두수 감소를 예상한다.

(다) 공공시설 : 경찰특공대 개

◦ 경찰특공대에서 사육 중인 개 31마리는 공공 업무 목적으로 현재 두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 다만, 경찰특공대 내부 자체 정화시설을 통해 개 분뇨는 자가처리 되고 있음에 따라 분뇨관리 시설로는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

(라) 사설시설 : 세한사슴, 새원사슴

◦ 서초구 내 사설 사슴농장 2개소의 개체수 감소 의지 협의 후, 지속적 감축을 유도하고 가축분뇨 감소화 실현 가능하다.

◦ 현재 기준 수익목적의 사육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수익목적 사육 의사가 있다면 감축노력에 대한 보상을 고려해야 할 수 있다.

(마) 사설시설 : 서초목장 젖소

◦ 현재 서초구에 위치한 서초목장의 운영자의 고령화로 젖소 10두의 관리 지속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 장기적으로 운영자 연령을 고려하여 두수의 감소 및 폐업이 예상됨에 따라 가축분뇨 발생 감소화 가능하다.

나) 효율적 자원화

(1) 서울시 가축분뇨 자원화 비용 현황

◦ 기본적으로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방법 중 서울시는 퇴비화 방식으로 대다수 처리하고 있다.

<표 2.2 - 23> 가축종별 연간 분뇨발생량

구분	사육두수(두)	연간 분뇨발생량(kg)	주요 처리방식
젖소	10	101,507	위탁 처리
사슴	66 (성동+강북)	8,760	퇴비 처리
개	31	23,762	자가정화 처리

◦ 현재 기준 서울시 가축분뇨 발생량은 4장에서 자치구별로 제시한 바와 같이 성동구 5,694kg, 강북구 3,066kg 등 총 8,760kg/년 임. 이는 환경부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준 배출원단위를 적용한 값이다.

◦ 처리 방식별로 향후 10년간 예상 처리소요비용 및 효율을 검토하기 위해 기간을 3단계로 나누어 분석하고, 단계는 1단계(2026년~2029년), 2단계(2029년~2031년), 3단계(2032년~2035년)로 구분하였다.

◦ 기본 가정은 젖소 10두의 연간 분뇨발생량 101,507kg를 전부 위탁처리하는 경우, kg당 40원으로, 사슴은 66두의 연간 분뇨발생량 8,760kg을 전부 퇴비처리하는 경우 kg당 135원으로 하였다.

- 처리 단가는 2024년 환경부 및 농촌진흥청 게시 예산지침 및 현장사례 기준 평균값으로 산정

◦ 여기서, 개는 31두의 연간 분뇨발생량이 23,762kg지만, 자가 정화하고 있으므로 비용 없음으로 정리

- 젖소의 경우 다수 지자체의 2024~2025년 가축분뇨 위탁처리 단가계약 공고에서 톤당 3만~5만원(kg당 30~50원) 수준이 일반적이다.
- 사슴 등 초식가축 분뇨 퇴비화 처리비용은 2023년~2024년 기준 kg당 100~170원(톤당 10만~17만원) 수준으로 산정되고 있다.

<표 2.2 - 24> 계획의 단계별 처리소요비용 예측(원)

구분	1단계 (2026년~2029년, 4년)	2단계 (2030년~2032년, 3년)	3단계 (2032년~2035년, 4년)	합계
젖소	16,241,120	12,180,840	16,241,120	44,663,080
사슴	4,730,400	3,547,800	4,730,400	13,008,600
합계	20,971,520	15,728,640	20,971,520	57,671,680

자료 : 지자체 위탁계약, 환경부, 농촌진흥청, 현장조사 자료 기반 단가 적용

(2) 서울시 가축분뇨 효율적 자원화

(가) 서울시 관내 퇴비화 100% 소화

◦ 서울시는 현재 사슴에 대한 분뇨를 부숙 후 퇴비화하고 있으며, 젖소 분뇨는 위탁 처리중이나, 전량 퇴비화 가능하다.

◦ 위탁처리는 전문 처리장에서 대량·연속 안정 수거가 가능하나, 처리비용이 소요된다.

◦ 젖소 분뇨는 유기물과 각종 영양분이 풍부해 농경지 비료로 활용하면 토양개량과 양분공급 효과가 있다.

◦ 퇴비화는 호기성 미생물 작용을 통해 분뇨를 부숙·소멸시키고, 수분과 염분 함량 등 관리 기준을 맞추면 친환경 비료로 자원화할 수 있다.

◦ 젖소 분뇨 퇴비화의 시설투자비(마리당 약 400~500천 원) 및 운영비(연간 170여 천 원)는 위탁처리와 대체로 비슷하거나 운영력이 우위일 수 있다.

(나) 퇴비화 과정 중 환경영향(악취) 관리

◦ 퇴비화는 온실가스 저감·에너지 절감 효과와 함께 부가가치(자원 순환)가 있으나, 퇴비 과잉 및 악취·수질오염 유발 가능성이 있어 관리가 필수적이다.

◦ 일반적으로 소량 분뇨 관리 특화 방안으로 톱밥, 왕겨 등 활용으로 부피를 50% 감축하는 등 수분 조절을 하거나, 호기성 발효로 병원균을 완전히 제거하여 부숙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거나, 발효촉진제, 탈취제 적극 활용하여 악취를 제어하는 등 충분한 처리 및 관리가 가능하다.

제 3 장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3.1 적응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3.2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전략의 적정성

3.1 적응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3.1.1 국가 적응 정책과의 정합성

가. 제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

1) 근거 법령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 • **법 제4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④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 수립·시행
> • **시행령 제38조(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수립·시행

2) 대책기간 및 주기

◦ 3차 대책기간은 2021년~2025년으로 5년마다 연동계획으로 수립·시행

3) 수립절차

◦ 관계부처 합동수립 → 녹색성장 위원회 심의·확정

4) 주요 내용

◦ 「제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은 지구온도 상승에도 대비하는 사회 전부분의 기후탄력성 제고, 기후 감시·예측 인프라 구축으로 과학기반 적응 추진 및 모든 이행주체가 참여하는 적응 주류화 실현을 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내용	◦ **기후리스크 적응력 제고** - 미래 기후위험을 고려한 물관리 - 생태계 건강성 유지 - 전 국토의 적응력 제고 - 지속가능한 농수산 환경 구축 - 건강피해 사전예방 체계 마련 - 산업 및 에너지 분야 적응역량 강화 ◦ **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 종합 감시체계 구축 - 시나리오 생산 및 예측 고도화 - 평가도구 및 정보제공 강화	◦ **적응 주류화 실현** - 기후적응 추진체계 강화 - 기후탄력성 제고 기반 마련 - 기후적응 협력체계 구축 및 인식제고

자료 : 제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

가) 미래 기후위험을 고려한 물관리

(1) 현황 및 리스크

(가) 현황

◦ 홍수 발생 빈도 및 피해 증가

◦ 가뭄발생 빈도 및 강도 증가

◦ 하천·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 건전성 악화

(나) 리스크

◦ 기후변화로 수량·수질, 수리시설, 서식처에 대한 지속적인 리스크 발생

◦ 극한기상 현상으로 오염물질 증가, 지하수 함양량 감소 등 신규 리스크 발생

<표 3.1 - 1> 물관리 부문 리스크 목록

구 분	번 호	리스크명	비 고
홍 수	W01	폭우로 인한 하천 및 유역의 홍수 피해 증가	
	W02	폭우로 인한 하천/호소로의 오염물질 유입 증가	
	W03	폭우로 인한 댐과 하천의 기반시설 안정성 저하	
가 뭄	W04	가뭄으로 인한 하천의 건천화 심화	
	W05	기온 상승 및 가뭄으로 인한 하천/호소 수질 악화	
	W06	가뭄으로 인한 물 공급(생활/공업/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능력 저하	
	W07	기온 상승 및 가뭄으로 인한 지하수 함양량 감소	
수질/수생태계	W08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하구 및 연안 물관리 취약성 증가	
	W09	강우량 변동폭 증가에 따른 댐/저수지 관리 취약성 증가	
	W10	폭염에 의한 수생생물 열 스트레스 증가	

자료 : 제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

(2) 추진과제

(가) 기후변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

① 홍수대응력 제고를 위한 조기경보체계 구축

◦ 홍수 예보 인프라 확충으로 관측 취약지역 해소

- 홍수특보지점을 확대하고, 특보지점 운영·관리를 위한 예보 전담기능 강화 및 AI 홍수예보 도입 등

◦ 홍수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 환경부·기상청의 예측 강수정보 공유 확대(5종 → 8종), 홍수기 합동근무 도입 등

◦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남북 공유하천 공동관리

- 남북 공유하천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 남북간 댐 방류 사전 통보체계 구축 및 기초자료 교환

② 지역 맞춤형 홍수 대응 강화

◦ 도시지역 침수예방사업 다각화

-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확대 및 하수관 키우기, 저류·펌프시설 지속 확충 등 지역 통수능력 제고
- 상습침수지역의 하수관로 설계빈도 상향(10~30년 → 30~50년 빈도) 등

◦ 도시하천유역 종합치수 추진체계 구축

- 수해위험이 높은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연계하여 '도시하천(26개 유역)의 범부처 도시침수예방대책' 수립 등

③ 국가 물관리 시설의 홍수대응 역량 강화

◦ 기후변화를 반영한 댐·하천 설계기준 강화

- 국가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 평가 후 중요지역의 방어목표 대폭 상향(최대 200년 → 500년 빈도) 등 차등화된 목표 적용
- 지방하천의 계획빈도(50~80년) 한 권역별(145개) 하천 기본계획을 재검토(매년 20개 권역)하여 현실에 맞게 상향

◦ 물관리 인프라 안전관리 강화

- 기후변화와 연계한 댐 유형별, 부재별 노후화 실태조사· 및 이·치수 기능 개선을 통한 노후 물관리 시설의 장수명화 방안 연구 등

◦ 하천 인접지역 홍수터 확대

- 하천변 인접 국공유지의 하도 복원, 강변저류지 설치 등 홍수 저감사업 추진 등

④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

◦ 침수우려지역 상황정보 선제적 제공

- 침수 위험지구에 IoT기본 계측시스템(강수량·강우강도 등 분석)을 설치하여 침수 우려 시 주민에게 위험정보 사전 제공 등

◦ 재난정보 알림 실효성 강화

- 홍수, 산사태 등 긴급 대피가 필요한 경우 즉시 인지하도록 경보음(40dB, 긴급재난 등급)과 함께 재난문자방송 송출 등

⑤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체계 구축

◦ 민·관 합동 재난폐기물 대응체계 구축

- 지자체, 지방환경청, 폐기물 관련 협회(건폐, 소각·매립협회 등)가 합께 '권역별 대응반'을 구성하여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

◦ 재난폐기물 안정적 처리기반 마련

- 재난폐기물 등 국가차원의 처리가 시급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추진 등

(나) 가뭄대응력 제고 및 수자원 다변화로 물안보 강화

① 가뭄 대응 능력 제고

◦ 지역 맞춤형 가뭄 예방 및 대응 강화

- 상수도 누수방지 및 수질 유지를 위하여 노후상수도 개량
- 전국 생·공용수 '가뭄취약지도' 작성, 수요자 맞춤형 지원서비스('단비') 시행 등

◦ 미래 극한가뭄 대응전략 수립 및 연구

- 극한가뭄시 시설별 용수공급 가능 기간 및 물부족량 평가 방안 연구, 생·공용수 공급시설의 적응능력 평가 및 대응전략 연구 등

◦ 메가가뭄 대응기술 개발

- 웹기반 국가확률가뭄도 및 지역별 가뭄위험도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메가가뭄확산예측모델 구축 등

◦ 국민체감형 가뭄정보 생산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생·공용수 관련 체감형 가뭄정보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국가가뭄정보포털을 통해 우리동네 가뭄 정보 등 대국민 서비스 시행 등

② 가뭄 통합대응체계 구축

◦ 통합 가뭄 예·경보 추진

- 효과적인 가뭄 대응을 위해 현재 부처별 가뭄정보를 취합·운영중인 통합 가뭄 예·경보제의 법적근거(「자연재해대책법」) 마련
- 통합 가뭄 예·경보(one-map), 가뭄 통계 등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가뭄정보서비스(NIDIS)' 구축 등

③ 대체수자원의 안정적 확보

◦ 지하수 통합 관리체계 구축 및 보전

- 기관별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지하수 관측망의 연계 운영과 수량-수질 통합 관측을 확대하고, 정보 제공 편의성 제고
- 기 개발된 지하수 공공관정을 가뭄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 지원체계 구축 등

◦ 하수재이용 확대 및 수요처 연계를 통한 활용성 제고

- 신·증설 하수처리장의 처리수 재이용 방안 검토 의무화를 추진하고, 하수처리수, 빗물, 중수도 등을 다양한 용도(하천유지용수 등)로 재이용 확대 등

③ 수자원 활용성 제고를 위한 상수도 시스템 구축

◦ AI·ICT기반 실시간 상수도 자동 관리체계 구축

◦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

- 장래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신규 광역상수도 건설, 광역 급수체계 조정사업 등 추진으로 지역 간 용수공급 불균형 해소 및 안정적인 용수공급
-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공업용수가 부족한 기존 산업단지의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공업용수도를 건설하여 공업용수 적기 공급 등

(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건전한 물환경 조성

① 도시의 물순환 회복

◦ 물순환 관리 체계 마련

- 시·도별, 소권역별 중장기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을 관리하는 '물순환목표관리제' 추진
- 저영향개발(LID) 기법 확대 적용으로 가뭄 및 도시침수 예방, 수질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 물순환 구조 개선 등

◦ 물순환 모니터링 물수지 관리 강화

- 댐·저수지 공급·사용량, 유역외 물이동, 취·방류수량 등을 고려한 실시간 물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물이용 효유성 제고 및 의사결정 지원 등

◦ 유역단위 지표수-지하수 연계 및 순화체계 구축

- 하천건천화 방지를 위한 기저유출 개선방안 도출 및 지하수 과다이용지역 관리방안 수립 등

② 폭우 및 수온상승 대비 수질오염 관리 강화

◦ 수질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

- 조류 감시지점 개선, 녹조 경보 및 발생단계별 대응체계 강화로 녹조 피해 예방
- 산단·농공단지 등이 밀접한 수질오염 우려지류 40개를 대상으로 소규모 감시망 구축, 본류 수질자동측정조 확충 등

◦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 비점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3차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21~'25)'을 수립하고, 측정망 설치·운영 확대
- 비점오염물질 발생원 및 배출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저감기법을 도입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제도 시행 등

②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

◦ 수상태계 건강성 위협요인 평가 및 변화 예측기술 개발

◦ 수량-수질-수생태 통합관리

◦ 하천 생태계의 건전성 및 자연성 회복

- 국가 훼손하천 목록 작성 및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 제작 등 정보 제공 등

◦ 하천유지용수 확보를 통한 하천의 기능성 회복

- 도심하천 건천화 대응을 위한 환경생태유량 산정 및 확보 등

③ 수량-수질 통합물관리 체계 마련

◦ 물관리 분야의 국가 계획 및 정책의 통합 추진

- 수량·수질·재해 등 물관리 전 분야를 총괄하여 향후 10년간 물관련 정책의 구심점이 될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21~'30) 추진

- 분절된 상태로 운영중인 법정계획들을 통합물관리 관점에 부합하도록 효율화·체계화 추진

◦ 물환경 분야 측정망 및 정보시스템 통합·연계 운영

- 물환경 분야 5개 기관 15 분야 물정보 제공

나) 생태계 건강성 유지

(1) 현황 및 리스크

(가) 현황

◦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종 분포, 생물계절 변화 발생

◦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건전성 저하

(나) 리스크

◦ 기후변화로 인한 종·개체수·서식지 감소 등 다양한 생태계 변화

◦ 기후변화·자연재해에 따른 생물자원 및 생물서식지 피해

<표 3.1 - 2> 생태계 부문 리스크 목록

구 분	번 호	리스크명	비 고
생물종	E01	기온 상승 및 강수량 증가로 인한 식물(종, 군락, 식물계절, 분포) 변화	
	E02	기온 상승 및 강수량 변동으로 인한 아고산대(종, 생육, 분포) 변화	
	E03	기후변화에 의한 외래 종(육상동물, 육상식물, 해양 외래, 해적 생물 등) 증가 및 질병 증가	
	E04	기후변화에 의한 멸종위기종 및 희귀/보호종 감소	
	E05	이상 기후로 인한 생물 종 및 개체수 증가	
	E06	가뭄 및 기온상승으로 인한 산림의 탄소 흡수량 감소	
	E07	기후변화로 인한 임산물 피해	
생물 서식지	E08	기온 상승 및 강수량 증가로 인한 척추·무척추 동물의 개체수 감소 및 서식지 축소	
	E09	기온 상승 및 강수량 변화에 따른 담수 생물(동물, 식물) 개체 수 감소 및 서식지 축소	
	E10	기온 상승으로 인한 산림 생물(아고산 식생, 참업수, 북방계 식물, 보호식물 등 포함) 서식지 변화	
	E11	극한기상에 의한 생태계 변화	
	E12	기온 상승 및 강수변동, 가뭄으로 인한 토양 미생물 변화	
	E13	폭우 및 가뭄으로 인한 산림 계류수의 변화	
	E14	기온 상승 및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도서 생태계 변화	
	E15	기후변화로 인한 습지 면적 감소, 육화 및 생물상 변화	
	E16	강우 패턴 변화 및 해양산성화로 인한 연안 및 하구역, 해양생태 환경 변화 및 피해	
	E17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조간대 및 하구생태계 변화	
	E18	폭우 및 가뭄으로 인한 산림재해(산사태, 산불 등) 발생 증가 및 대형화	

자료 : 제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

(2) 추진과제

(가) 국가 생태계 기후변화 모니터링 및 대응기반 강화

① 생태계 분야별 모니터링 강화 및 첨단기술 활용

◦ 정확한 생태정보 수집을 위한 모니터링 고도화

◦ 육상·산림 생태계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 관측위성 및 ICT·AI 활용 농업생태계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 해양·갯벌·담수 생태계 모니터링

◦ 도서생태계 기후변화 영향 모니터링

② 시민참여형 모니터링 기반 강화

◦ 기후변화 적응 모니터링을 위한 국민참여 확대

- '생물다양성 관측 네트워크(K-BON)'운영 등 시민참여형 모니터링 강화

- 국립공원 기후변화 시민 과학 모니터링 강화(600명)

◦ 도서 지역 모니터링을 위한 지역 준분류학자 참여 확대

③ 국가 생태계 기후변화 영향 대응기반 마련

◦ 생태분야 기후변화 위험성 평가 체계화

- 생태계 분야 기후변화 위험성 평가를 위한 정량적 지표 개발(예 : 종 서식지) 및 주기적인 평가를 위해 생태계 부문 '위험성 평가 종합 보고서' 발간 등

◦ 국가 생태계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 국가 생태계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관련 규정 마련

-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연구(관계부처, 연구기관)하고, 기관별 결과자료 통합한 정보 관리·분석 체계 마련 등

(나)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통한 생태계 건강성 유지

①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태계 보전·복원을 위한 기반 구축

◦ 국가보호지역 확대 및 관리 강화

- 기후탄력성 제고와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육상보호지역 면적 확대 추진 등

◦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도서·연안, 5대강을 국가생태축으로 설정하고, 이와 연계된 광역·지역 생태축을 연결하여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현 등

②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생물종 보전·복원 강화

◦ 지속적인 생물종 발굴·확보 및 유전자원 활용

-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다양성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생물종목록을 매년 발견하고 새로운 종 발굴·확보 지속
- 동·식물, 미생물의 위치정보와 유전정보를 토대로 개체군, 군집 수준의 계통학적 생물다양성 평가 및 변화 예측 등

◦ 서식지 내·외 보전활동 지원 및 확대

- 야생생물 관련 계획과 산림보호지역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호지역 관리시 기후변화 적응 중점 추진 등

◦ 멸종위기종 등 기후변화 취약 생물종 보전 강화

- 생태계별 기후변화 취약생물종(아고산대 침엽수, 산호초 등) 선정, 예측모델 개발 및 생물적응 과정·기능 규명 등 적응대책방법 개발 등

◦ 멸종위기종·천연기념물·고유종 보호

- '우선 복원대상종(25종)' 대상 복원계획 수립, 복원사업 추진 등

◦ 기후변화 대응 산림 수종 육성 및 복원 기술 개발

- 자생·도입 유망수종의 지리적 이동에 따른 조림적지 판정을 위한 생육환경·특성 간 연관관계 조사 등

③ 기후변화 취약생태계 중점 보호 및 도시생태계 회복

◦ 취약 생태계 변화 영향 예측 및 대응

-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식물계절 및 산림생산성 변화 모델을 개발하고, 멸종위기 고산지역 침엽수종 보전·복원 매뉴얼 개발 등

◦ 취약 생태계 전략적 적응기술 개발 추진

- 특이생태계 및 경관적 요소를 고려한 복원 방법 개발 및 도서문화자원과 접목한 도서생태계 보전 전략 수립 등

◦ 생태공간 복원을 통한 도시생태계 건강성 증진

- 도시화로 인해 파편화된 생태계(습지, 녹지, 생물서식처 등)를 연결 및 복원, 고유종 서식지 확보 등 도시생태공간 녹색복원 추진
- 저영향개발 기법 적용에 따른 생태공간 및 녹지 조성 활용모델을 개발하고, 도시 소생태계조성(옥상녹화 등)을 활용한 도심환경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등

(다) 이상기후로 인한 생태계 위해·재난 관리 강화

① 야생동물 질병 관리 강화

◦ 국가 단위 야생동물질병 관리체계 구축

◦ 신종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를 통한 원헬스 체계 구축

② 생물대발생 예측 연구 및 대응

◦ 돌발적으로 대발생하는 생물(곤충 등) 모니터링

◦ 생물대발생 예측 및 방제방안 마련

③ 외래생물 및 유해한 생물종 관리 강화

◦ 외래생물과 교란생물의 유입경로 및 실태조사

◦ 산림병해충 예측·예찰 고도화

◦ 유해해양생물 관리 및 해양 유전자변형 생물체 안전관리

④ 산림재해 예방 역량 강화

◦ 산악기상정보 구축 체계 강화

◦ 산사태 및 산불 등 대응을 위한 예측 체계 구축 및 고도화

- 산사태 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생활권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중심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확대·지정 및 취약지역 중심으로 사방시설 확충 등

다) 전 국토의 적응력 제고

(1) 현황 및 리스크

(가) 현황

◦ 기후변화·도시화 등으로 자연재해 발생 빈도, 규모, 피해 증가

◦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지역 피해 악화 가능성 증대

(나) 리스크

◦ 기후변화는 정주환경의 이상기후 리스크 심화

◦ 기후변화로 새로운 유형의 시설피해, 재해 리스크 발생

<표 3.1 - 3> 국토·연안 부문 리스크 목록

구 분	번 호	리스크명	비 고
정주 공간	L01	폭우로 인한 저지대 침수 위험 증가	
	L02	폭우로 인한 주거지역 비탈면 붕괴위험성 증가	
	L03	폭우, 해일, 파랑, 해수면상승으로 연안지역 침수범람 위험 증가	
	L04	파랑 및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백사장, 사구, 연안, 갯벌, 수림지의 침식	
	L05	폭우로 인한 도시 침수 피해 증가	
기반시설 및 건축물	L06	**폭우, 폭설로 인한 육상교통 운행 중단 및 사고 증가**	
	L07	**기온변동성 증가로 인한 포장도로 조기파손 현상 증가**	
	L08	폭염으로 인한 철도레일 변형 및 탈선위험 증가	
	L09	이상 기상 현상(강풍, 폭우, 폭설)로 인한 항만시설, 공항 시설물의 파손 및 운영 정지	
	L10	이상 기상 현상(폭우, 강풍, 폭설, 폭염)으로 인한 전기/통신시설 피해 증가	
	L11	강우패턴 변화로 인한 배수시설 기능저하	
	L12	폭설, 강풍으로 인한 노후 불량 건축물 파손 증가	
	L13	폭염으로 인한 주거 지역 열 스트레스 증가	
	L14	해일, 강풍, 파랑, 해수면상승으로 인한 연안시설물 피해 증가	

자료 : 제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

(2) 추진과제

(가) 국토·연안 기후재해 대응 기반 강화

① 국토·연안 기후재해 대응 과학기반 강화

◦ 국가단위 자연재해 취약성 분석 및 리스크 평가

- 지역 간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 유형 검토, 현재 취약성 분석 및 미래 리스크 평가를 통한 권역별 자연재해 위험지역 선정

- 국가단위의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리스크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 연안재해 대응 리스크 분석 및 기술개발

- 기후변화 대응 연안재해(연안침수, 연안침식 등) 리스크 분석 연구, 리스크 기반 연안재해 정량적 평가방안 마련 및 시범평가

② 기후재해 대응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

◦ 시민참여 기반 기후 재해정보 플랫폼 구축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나) 지역중심 기후탄력성 관리기반 확대 및 강화

① 지자체 주도 기후탄력성 제고

◦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 추진

- 도시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종합진단을 통해 환경·ICT 기술 기반 지역 맞춤형 환경ㅅ개선 지원

◦ 지자체 재해대응 관리기반 강화

- 기존 풍수해 중심에서 대설·가뭄 등 계획수립 범위를 확대하여 '지자체 제2차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 지역단위 기후탄력성 평가 연구

◦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 강화

② 지역 연안의 기후 탄력성 제고

◦ 침수 및 침식에 대한 연안지역 관리 강화

◦ 연안지역 보전사업을 활용한 연안갯벌 보전 및 활용

◦ 자연기반 해결책(NBS)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추진

③ 지역 맞춤형 재해예방 확대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관리 및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 연안 재해 피해유형별 대응방안 마련

(다) 사회기반시설·건축물 적응력 제고

① 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 대응력 확보

◦ 사회기반시설 기후 위험관리 방안 마련

- 사회기반시설 재투자 타당성조사시 기후변화 리스크 검토 및 반영 방안 마련
- 시설물 성능평가(구조 안전성·내구성·사용성 종합평가) 실시 및 성능평가 결과 이력관리

◦ 이상기후 대응 도로시설 점검·정비 강화

- 집중호우 시 배수처리 취약구간인 오목구간 및 급커브 구간 고속도로 노면수 처리에 선배수 방식 도입
- 일반국도 포장 균열률·소성변형량 등을 측정하여 포장상태지수(NHPCI)를 적정수준 이상(5.0)으로 유지·관리

◦ 이상기후 대비 항만시설 점검·정비 강화

◦ 자연재해 취약 철도시설 유지보수 및 개량

② 건축물 기후변화 적응 체계 강화

◦ 공공부문 건물 제로 에너지화 추진

◦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참여 촉진

◦ 강풍 대비 건축물 안전 강화

라) 지속가능한 농수산 환경 구축

(1) 현황 및 리스크

(가) 현황

◦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자원의 변화 및 위험성증가

◦ 이상기상으로 인한 농수산 생산환경 및 생산기반 취약성 증가

(나) 리스크

◦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생산성 저하, 생산 시설 피해 발생 리스크 상존

◦ 농업용 호소의 수질 저하, 조업환경 변화 등 새로운 위험 대두

<표 3.1 - 4> 농수산 부문 리스크 목록

구 분	번 호	리스크명	비 고
식량자원	A01	극한사상으로 인한 작물 생산성 변동	
	A02	기온 상승으로 인한 작물 생산성 저하	
	A03	기온 상승으로 인한 작물 품질 저하	

<표 계속> 농수산 부문 리스크 목록

구 분	번 호	리스크명	비 고
식량자원	A04	기온상승 및 강우일수 변화로 인한 작부체계 변화	
	A05	기온 및 강수량 상승으로 인한 작물 재배적지 변화	
	A06	폭염, 기온상승 및 습도 증가로 인한 가축 생산성 저하	
	A07	폭염, 저산소화, 한파, 태풍으로 인한 양식업 피해	
	A08	해수온 상승 및 저산소화로 인한 수산자원의 변화	
생산환경 기반	A9	폭염 및 한파로 인한 축사 에너지 사용량 증가	
	A10	폭설 및 강풍으로 인한 시설(축사, 온실) 피해 증가	
	A11	한파 및 온도 상승으로 인한 농작물 병해충 피해 증가	
	A12	한파 및 온도 상승으로 인한 가축 질병 발병	
	A13	폭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 및 토양유실, 농업용수 수질오염	
	A14	가뭄 및 기온변화로 인한 농업수리시설의 수자원공급 안정성 증가 및 수질 저하	
	A15	강수량 증가에 따른 농업용 수리시설 홍수 대응력 저하	
	A16	강우일수 증가로 인한 농기계 활용 저하	
	A17	해상기상환경 변화로 인한 조업환경 변화	

자료 : 제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

(2) 추진 과제

(가) 기후탄력성 제고를 위한 영향 정보 제공

① 농·축·수산 부문별 생산성 평가 및 예측 기술 개발

◦ 농업부문 기후변화 영향·취약성을 평가하고 통합 관리

◦ 작물부문 생산량 예측 및 생산환경 변화 모니터링

◦ 축산부문 생산성 실태조사 및 분포도 구축

◦ 수산부문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예측 기술 개발

②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체계 강화

◦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현장 활용 확대

◦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예측기술 및 평가 강화

(나) 기후변화 적응 농수산 생사 기반 강화

① 기후변화 적응형 농·축·수산 생산시설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 농업시설 에너지 효율화 기술 및 제어시스템 개발

◦ 스마트 농·축·수산 생산시설 보급 및 확대

② 안정적 작물 생산 및 수급 안정화 기반 마련

◦ 작물의 이상기상 피해 경감기술 및 기후적응형 작물품종 재배기술 개발

◦ 안정적 수급체계 마련 및 재해보험 개선

③ 재배시설 설계기준 및 농업기반시설 점검 강화

◦ 재배시설에 대한 내재해형 설계기준 개선 및 시설 보급 확대

◦ 재해 대비 농업기반시설 관리 강화

④ 기후변화 대응 양식기술 개발 및 양식장 관리 강화

◦ 기후적응형 양식 품종 개발 및 관리

◦ 재해 상습발생 어장 관리 강화

(다) 안전한 농수산 환경 보전

① 병해충 및 외래종 관리 강화

◦ 농작물 병해충 피해 예방 및 대응기술 개발

② 농업용수 수질 및 토양, 수산물 생산 해역 환경관리 강화

◦ 농업용 호소 수질측정망 운영 및 수질 개선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용수 수질 영향·취약성 평가

◦ 기후변화에 따른 농경지 토양 영향·취약성 평가

◦ 수산물 생산해역 오염원 관리 및 수산물 위생관리 강화

③ 기후변화에 따른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 강화

◦ 가뭄 상습지역 수리시설 설치 및 용수공급 체계 재편

◦ 물부족 상시화를 대비하기 위한 밭가뭄 대응 기술 고도화

마) 건강피해 사전예방 체계 마련

(1) 현황 및 리스크

(가) 현황

◦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및 질환 증가

◦ 고령화, 극한기상 등에 따른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위험 증가

◦ 건강영향 감시 및 정보, 국제적·지역적 대응 필요성 증대

(나) 리스크

◦ 기후변화에 따른 온열질환, 매개체 감염병 등 건강 위험 증가

◦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감염병, 정신건강 등 새로운 건강 위험 대두

<표 3.1 - 5> 건강 부문 리스크 목록

구 분	번 호	리스크명	비 고
감염병	H01	기온 상승에 의한 매개체 질환 증가	
	H02	기온 상승에 의한 수인성 질환 증가	
	H03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신종 감염병 발생 증가	
건강질환	H4	대기오염에 의한 심뇌혈관계 질환 증가	
	H5	기온 상승에 의한 심뇌혈관계 질환 증가	
	H6	기온변동폭 증가로 인한 심뇌혈관계 질환 증가	
	H7	기상재해로 인한 정신건강 질환 증가	
	H8	대기오염에 의한 호흡기계·알레르기 질환 증가	
	H9	대기오염에 의한 정신건강 질환 증가	
	H10	기온 상승에 의한 호흡기계·알레르기 질환 증가	
	H11	폭염에 의한 정신건강 질환 증가	
	H12	폭염에 의한 신장질환 증가	
	H13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증가	

자료 : 제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

(2) 추진 과제

(가) 기후변화 건강영향 감시 및 평가 체계 구축

① 기후변화 건강영향 감시 체계 운영

◦ 온열·한랭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 운영

◦ 극한기상 대비 건강영향 감시·관리 플랫폼(앱 등) 개발

② 기후보건영향평가 체계 구축

◦ 기후보건영향평가 운영 체계 확립

◦ 기후보건영향평가 자료 수집 및 활용방안 마련

(나) 기후변화에 따른 감염병 대응 강화

① 기후변화 감염병 대응 기술 연구개발(R&D)

◦ 기후변화 급만성 질병 연구

◦ 기후변화와 관련 있는 매개체 감염병에 대한 병리학적, 분자학적, 유전학적 연구 등

② 감염병 감시·대응 체계 운영

◦ 감염병 사건기반 감시체계(EBS, event-based surveillance) 운영

◦ 인수공통감염병 감시·대응 강화

◦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감시(Enter-Net) 및 대응체계 운영

◦ 감염병 매개체 종합감시체계(Vector-Net) 운영

◦ 해양환경내 병원성 비브리오균 감시체계(Vibrio-Net) 강화

③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폐기물 처리 강화

◦ 고감염성 폐기물 안전처리 체계 마련

◦ 감염 우려 의료폐기물 처리 신기술 개발

(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건강 보호

① 기후변화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 기후변화 환경보건 서비스 거점 운영

◦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및 보호사업 연구

② 취약계층 건강증진사업 확대

◦ 정신건강 질환 실태조사 및 영향 연구

◦ 건강도시 활성화 지원

5) 본 계획과 국가 적응 정책과의 정합성 검토 결과

◦ '3.2.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전략의 적정성' 작성시 '제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에 제시된 기후변화 리스크 항목을 활용하여 계획지구의 우선관리리스크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침수, 하천범람, 산사태, 가뭄, 폭염, 한파 등 지역 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동시에 자치구별 취약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적응대책을 수립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계획은 국가 적응대책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서울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국가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1.2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1) 수립 배경

◦ 국내외 여건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필요

◦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한 혁신적 국토운영전략 필요

◦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람 중심의 국토 비전과 전략 마련

◦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으로 위상 재정립과 실효성 제고 필요

2) 근거 법령

◦ 헌법 제120조제2항 :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 국토기본법 제6조 : 국토계획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0년 ~ 2040년

◦ 공간적 범위 : 대한민국의 주권이 실직적으로 미치는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한반도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대

◦ 내용적 범위 : 국토기본법 제10조에 대한 기본적·장기적 정책방향을 포함

4) 계획의 비전

◦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국토의 백년대계 실현을 지향하며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설정

◦ 모두를 위한 국토

- 다양한 세대와 계층, 지역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포용국가 기반을 갖추고, 좋은 일자리와 안전하고 매력적인 정주환경을 갖춰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지속가능한 국토를 조성

◦ 함께 누리는 삶터

- 삶의 질, 건강 등 우리 국민이 중요시하는 가치를 주거공간, 생활공간, 도시 공간 등 다양한 국토공간에서 구현하고, 깨끗하고 품격있는 국토 경관 조성과 산지, 해양, 토지 등 국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로 행복한 삶터를 구현

5) 품격있고 환경 친화적 공간 창출

가) 깨끗하고 환경 친화적 국토 조성

(1) 산·강·바다 국토환경관리 네트워크 강화

◦ 국토생태축의 구체적인 공간범위를 설정하고 복원·관리체계 등을 법제화 하여 국토 생태기능 증진 및 연결성 강화

◦ 국토생태축은 생태녹지축과 해양·연안수계축으로 구성하고 핵심보전지역, 관리지역 등의 설정을 통한 국토환경 공간관리 원칙 수립

◦ 국토생태축과 도심지 녹지공간과의 네트워크 강화

(2) 녹색인프라 확충 및 환경서비스 접근성 제공

◦ 녹색인프라 등 우수한 환경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건강과 삶의 질 개선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녹색인프라의 입지·관리 최적화

(3) 오염·방치 공간의 복원과 재생

◦ 오염공간의 복원과 활용

◦ 방치 공간의 활력 제고

(4) 첨단기술을 활용한 친환경적 국토공간 구현

◦ IoT, AI 등 미래지향적 환경기술 개발을 통한 국토·도시 환경문제 해결

◦ IoT,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녹색인프라를 보급하고, 기존에 보급된 인프라의 친환경 성능 향상

◦ 친환경 모빌리티·자동차 개발,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 환경 친화적인 미래 유망 기술 개발

(5) 국토-환경분야 정책 협력의 지속적인 이행

◦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

◦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 추진

나)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노력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국토환경 조성

◦ 신기후체제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노력

◦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국토대응체계 구축

- 도시 물순환 역량 강화, 기후변화 대비 용수 확보의 지속가능성 제고, 취약 지역 기후재난·재해 안전관리망 확충

- 도시미기후 분석, 바람길 및 물순환 개선, 도시녹화 사업 등 도시열섬, 미세먼지 등에 대응한 도시공간계획 강화

◦ 저탄소 국토환경 조성을 위한 적응기반 향상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녹색인프라와 도시 내 공원녹지 등을 확충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탄소 배출 저감 유도
-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교통과 연계된 토지이용 강화,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개발, 자족성을 갖춘 신도시 조성

◦ 에너지 및 탄소 저감을 위한 첨단 모빌리티체계 구축

- 교통 분야에서는 교통수요관리 강화,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 대중교통 확충, 저탄소 교통물류체계 구축과 관련 인프라 조성

(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 공간 조성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배출원 관리 강화

- 미세먼지 저감을 고려한 친환경 차량 확대와 친환경 차량 안전·충전시설 기준 마련

◦ 미세먼지 저감 및 분산에 유리한 도시공간구조 형성

- 도시 개발 시 광역적·지역적 바람길 확보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공기를 빠르게 유입시키고 정체된 미세먼지를 신속히 배출하기 위한 도시계획 수립
- 깨끗한 공기가 도심부 주거지역까지 온전하게 전달되도록 산림·산지(생성·공급지)에서부터 도심부(수혜지)에 이르는 바람길 전 구간을 체계적으로 관리

◦ 중국 등 인접국과의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공조체계 구축

(3) 초국경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공조 확대

◦ 국제사회의 환경보호 프로그램 참여

-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인 신기후체제(파리협정), UN지속가능발전목표(SDG) 등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강화

◦ 기후변화, 미세먼지, 해양 등 초국경 환경문제에 공동대응방안 모색

- 동북아지역 내 환경재난에 대비하여 다자 간·양자 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 적응, 기술개발과 이전, 역량 배양 등 역내 국가 공동 참여

◦ 남북 협력을 통한 한반도 환경문제 대응체계 마련

- 한반도의 주요 생태축을 연결·복원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DMZ 등 지역에 대해서는 생태공원화 등 중점 관리
- 남북 경협 시 환경을 고려하여 도로·철도 등 선형 시설의 입지 선정

다)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노력

(1) 토지에 대한 형평성과 사회적 가치 제고

◦ 토지의 공적기능 실현과 토지시장 질서 확립 추진

◦ 토지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

◦ 국·공유지, 유휴토지 자원의 활용과 공공토지 비축의 효율성 제고

◦ 토지정보 관리의 스마트화

(2) 산림생태계 복원과 생태·문화 공간화

◦ 산지의 파편화 방지·복원과 지속가능한 이용·관리 강화

◦ 도시 내 녹색생태계 구축 확산

(3) 전 주기적 수재해 대응과 물 서비스 강화

◦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종합적인 수재해 대응체계 구축

◦ 취수원 다변화 및 안정적 물공급 확보

◦ 물 순환체계 회복으로 자연성·생태적 건강성 회복 및 활용가치 제고

◦ 유역별 물 관리 거버넌스로 맞춤형 물관리 구현

6) 본 계획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의 정합성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은 균형발전, 지속가능성, 스마트·안전 인프라 구축, 지역 맞춤형 발전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 본 계획에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관리 등 스마트 인프라 구축 목표와 정합성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나. 제3차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1) 배경 및 목적

가) 배경

◦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상의 빈도와 강도가 심해짐에 따라 인구와 경제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시의 기후 위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적응 대책이 필요하다.

- 현재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된다면 21세기 후반 서울의 연평균기온은 4℃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 기후회복탄력성(resilience)제고를 위해 서울시 특성을 고려한 부문들(물관리, 시설물, 생태계, 건강)에 대한 적응대책 마련이 필요함

◦ 앞서 수립하여 추진한 '제2차 서울시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7~2021)'에서는 기후변화에 고도로 적응하는 기후안전수도를 비전으로 4개 부문 건강, 재난·재해, 물관리, 산림·생태계에 대하여 각 부문별 적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6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기후변화 적응 실효성 증진 측면에서 적응대책의 보완이 필요하다.

나) 목적

◦ 본 계획의 목적은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적응대책(2022-2026)의 수립에 있다.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적응대책(2022-2026)은 기후변화 전망과 사회경제적 역량을 파악하여 서울시 기후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부문별 적응 계획을 마련하는 계획이다.

2) 수립근거

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5년마 정부에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적응대책을, 광역지자체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 정부는 5년 단위로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부의 적응대책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 서울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하여 제1차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2~2016)을 수립하였으며, 2차 서울시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7~2021)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에 의해 수립되는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17~2021)'에 완화 계획과 통합되어 수립되었다.

나)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에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서울시장은 기후변화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계획에는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배출억제 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한 제도적 추진사항,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교육 및 홍보대책,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자원조달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서울시는 위 조례에 의거하여 제2차 서울특별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17~2021)부터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계획을 포함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함.

3) 계획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역 및 관련 주변 지역

나) 시간적 범위

◦ 단기(2022년 ~ 2026년, 5개년), 장기(2050)

◦ 장기 기후영향 등을 고려하여 단기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을 마련

다) 내용적 범위

◦ 기후변화 적응 계획

- 2017-2021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 평가

- 부문별(물관리, 생태계, 시설물 관리(도시공간), 건강)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지역리스크 도출
- 부문별 적응전략 설정
- 부문별 세부이행과제 수립

4) 계획의 주요 내용

◦ 기존 서울시 기후변화 적응계획 평가

-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7-2021)'의 이행성과 분석

◦ 서울시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 서울시 기온, 강수량 변화 등 기후변화 추이, 이상기후 현상 및 피해 현황 분석
- 기상청의 기후전망 자료를 활용하여 시나리오에 따른 단기, 중기, 장기 기후변화를 전망하고 현재까지의 추세와 비교·분석
- 과거 기후 현상, 피해 사례, 미래 전망을 활용하여 발생가능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전망

◦ 지역리스크 선정

-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리스크 목록을 검토하고, 부문별 서울시 기후변화 영향 및 특성을 분석하여 예비리스크 도출
- 예비리스크에 대해 취약성 및 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 결과와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중점리스크를 선정

◦ 부문별 추진전략 및 세부이행과제 수립

가) 물관리 지역리스크

◦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물관리 부문 리스크와 서울시 물관리 부문 기후변화 영향 특성 검토를 토대로 서울시 물관리 부문을 홍수, 물순환, 물환경으로 구분하여 총 7개의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표 3.1 - 6> 물관리 부문 리스크 목록

구 분	번 호	리스크 항목	비 고
홍수	리스크 1-1	집중호우로 인한 돌발홍수 발생 등 홍수 발생 및 피해 증가	
	리스크 1-2	집중호우로 인한 물관리 시설물(제방, 우수관로, 빗물펌프장 등) 취약성 증가	
물순환	리스크 2-1	유역내 물(하천에서 흐르는 물, 지하수 등)의 자연적인 순환의 균형 훼손	
	리스크 2-2	가뭄으로 인한 물(생활용수, 농업용수 등)부족	
물환경	리스크 3-1	수온상승과 폭우시 비점오염물의 유입으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 악화	
	리스크 3-2	집중호우시 하천으로 유입되는 재난 폐기물의 증가 및 악취 발생	
	리스크 3-3	하천의 생태 및 환경적 기능(자정작용, 생태서식처, 경관 및 친수)저하	

나) 생태계 지역리스크

◦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문헌분석, 서울시 생태계 특성 분석, 국내 미디어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10개의 취약성을 평가하였다.

<표 3.1 - 7> 생태계 부문 리스크 목록

구 분	번 호	리스크 항목	비 고
생물종 변화	리스크 1	기온 및 강수량 변동에 따른 식물(종, 군락, 식물계절, 분포)변화	
	리스크 2	기온 및 강수량 변동에 따른 외래종 증가	
	리스크 3	기후변화에 따른 보호종 감소	
	리스크 4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종(동물) 및 개체수 변화	
	리스크 5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증가(생물종 돌발 대발생 고려)	
생태계 변화	리스크 6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의 탄소 흡수량 감소	
	리스크 7	기후변화로 인한 습지면적 감소 및 육지화	
산림재해 발생	리스크 8	폭우로 인한 산림재해(산사태 등) 증가 및 대형화	
	리스크 9	가뭄으로 인한 산림재해(산불 등) 증가	
유지관리 비용관리	리스크 10	극한 기후에 의한 도시녹지 및 건축물 녹화 유지관리 비용 증가	

다) 시설물 관리(도시공간) 지역리스크

◦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문헌분석, 서울시 시설물 관리(도시공간) 특성 분석, 국내 미디어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8개의 리스크를 평가 항목으로 적용하였다.

<표 3.1 - 8> 시설물 관리(도시공간) 부문 리스크 목록

구 분	번 호	리스크 항목	비 고
건축물	리스크 1	폭염으로 인한 주거지역 열 스트레스 증가	
	리스크 2	폭우로 인한 지하공간 침수위험 증가	
	리스크 3	폭우로 인한 시가지 비탈면(옹벽·축대, 인공자연 비탈면) 붕괴위험 증가	
	리스크 4	극한기상(폭우, 강풍, 폭설)로 인한 노후·불량 건축물 붕괴위험 증가	
기반시설	리스크 5	극한기상(폭염, 폭우, 강풍, 폭설)으로 인한 에너지(전력, 도시가스) 및 통신시설 피해위험(정전, 도시가스 공급중단, 통신 마비 등) 증가	
	리스크 6	극한기상(폭우, 강풍, 폭설)로 인한 도시교통(도로, 도시철도) 시설물 파손·붕괴 운행중단, 사고위험 증가	
	리스크 7	기온변동성 증가로 인한 포장도로 조기파손 위험 증가	
	리스크 8	폭염으로 인한 도시철도 레일 변형 및 탈선위험 증가	

라) 건강 부문 지역리스크

◦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서울시 건강 영향 관련 기상요인 현황을 분석하여, 총 9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표 3.1 - 9> 건강 부문 리스크 목록

구 분	번 호	리스크 항목	비 고
기온상승	리스크 1	기온 상승에 의한 매개체 질환 증가	
	리스크 2	기온 상승에 의한 수인성 질환 증가	
	리스크 3	기온 상승에 의한 심뇌혈관계 질환 증가	
	리스크 4	기온 상승에 의한 호흡기계·알레르기질환 증가	
폭염	리스크 5	폭염에 의한 온열 질환 증가	
	리스크 6	폭염에 의한 정신건강 질환 증가	
대기오염	리스크 7	대기오염에 의한 정신건강 질환 증가	
	리스크 8	대기오염에 의한 심뇌혈관계 질환 증가	
	리스크 9	대기오염에 의한 호흡기계·알레르기질환 증가	

5) 적응대책 목표 및 추진전략

◦ 서울의 기후위기 적응력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의 목표를 '기후위기 안전 도시 기반 구축'으로 설정하고, '도시 인프라 적응능력 강화와 위기관리능력 제고', '기후위험으로부터 시민 건강 적응력 향상'을 추진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 적응목표 및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1, 2차 서울시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세부시행계획과 부문별 기후영향, 취약성 평가, 지역리스크 분석 결과, 서울시 유관계획의 사업을 세부 검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4개 부문별 목표와 추진전략을 수립한다.

(그림 3.1 - 1) 서울시 기후위기 적응대책(2022-2026) 부문별 목표 및 추진전략

6) 본 계획과 제3차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적응대책과의 정합성

◦ 본 평가서에서는 '3.2.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전략의 적정성'에서 도시침수, 하천범람, 산사태, 가뭄 등 다양한 재해 유형에 대해 '폭우로 인한 하천/호소로의 오염물질 유입 증가', '폭염 및 한파로 인한 축사 에너지 사용량 증가'의 취약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서울시 시설점검 체계를 통해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함과 점진적인 사육 두수의 감소를 통한 에너지 사용 감축 등의 적응대책을 수립하였다.

◦ '제3차 서울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물관리, 생태계, 시설물 관리, 건강 등의 부문에 대해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3.2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전략의 적정성'에서 제시한 적응대책은 이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22-2026)

1) 추진배경

가) 수립배경

◦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단기 실행계획 수립 필요

◦ 기후위기 적응을 위해 공원녹지·물순환·건강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 수립

◦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 필요

나) 수립근거

◦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 :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8조 :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다) 계획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2022-2026년(5년간)

(2) 내용적 범위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부문을 포괄하는 종합계획

2) 추진방향 및 목표

가) 추진방향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건물, 교통 부문 정책 집중

◦ 대도시 서울에 특성화된 기후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차별화

나) 비전 및 목표

◦ 2026년까지 온실가스 30%감축, 기후위기 안전 도시기반 구축

(그림 3.1 - 2)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22-2026)의 비전 및 목표

3) 본 계획과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과의 정합성

◦ 본 평가서에서는 '3.2.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전략의 적정성'에서 도시침수, 하천범람, 산사태, 가뭄 등 다양한 재해 유형에 대해 '폭우로 인한 하천/호소로의 오염물질 유입 증가', '폭염 및 한파로 인한 축사 에너지 사용량 증가'의 취약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서울시 시설점검 체계를 통해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함과 점진적인 사육 두수의 감소를 통한 에너지 사용 감축 등의 적응대책을 수립하였다.

◦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은 대도시 서울에 특성화된 기후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차별화에 대해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3.2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전략의 적정성'에서 제시한 적응대책은 이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3.2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전략의 적정성

3.2.1 기후위기 적응요인 영향 분석

가. 서울시 재난 위험지도 및 재난사례 기초 자료 조사

1) 도시침수지도

◦ 환경부의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의 '도시침수지도'를 이용하여 계획지구의 도시침수지역 해당여부를 조사하였다.

◦ 총 25개의 자치구 중 12개의 자치구가 도시침수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침수흔적도

◦ 행정안전부의 '생활안전지도'의 침수흔적도를 이용하여 계획지구의 침수흔적 해당여부를 조사하였다.

◦ 총 25개의 자치구 모두 침수흔적이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하천범람지도

◦ 환경부의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의 '하천범람지도'를 이용하여 계획지구의 하천범람지역 해당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 총 25개의 자치구 중 23개의 자치구가 하천범람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산사태위험등급지도

◦ 산림청의 '산림공간정보서비스'의 '산사태위험등급지도'를 이용하여 계획지구의 산사태위험 1·2등급 해당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 총 25개의 자치구 모두 산사태위험 1·2등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 - 1> 계획지구의 도시침수, 하천범람, 산사태 1·2등급 해당여부

구	구역면적(㎢)	해당여부			
		도시침수지역	침수흔적	하천범람지역	산사태위험1·2등급
종로구	23.91	X	O	O	O
중구	9.96	X	O	X	O
용산구	21.87	X	O	O	O
성동구	16.82	X	O	O	O
광진구	17.06	X	O	O	O
동대문구	14.22	X	O	O	O
중랑구	18.50	X	O	O	O

<표 계속> 계획지구의 도시침수, 하천범람, 산사태 1·2등급 해당여부

구	구역면적(㎢)	해당여부			
		도시침수지역	침수흔적	하천범람지역	산사태위험1·2등급
성북구	24.58	X	O	O	O
강북구	23.60	X	O	X	O
도봉구	20.65	O	O	O	O
노원구	35.44	X	O	O	O
은평구	29.71	O	O	O	O
서대문구	17.63	O	O	O	O
마포구	23.85	X	O	O	O
양천구	17.41	X	O	O	O
강서구	41.45	O	O	O	O
구로구	20.12	O	O	O	O
금천구	13.02	O	O	O	O
영등포구	24.55	O	O	O	O
동작구	16.36	O	O	O	O
관악구	29.57	O	O	O	O
서초구	46.97	O	O	O	O
강남구	39.50	O	O	O	O
송파구	33.88	X	O	O	O
강동구	24.59	O	O	O	O

자료 : 1.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https://floodmap.go.kr/)
2. 생활안전지도(https://www.safemap.go.kr/)
3. 산림공간정보서비스(https://map.forest.go.kr/for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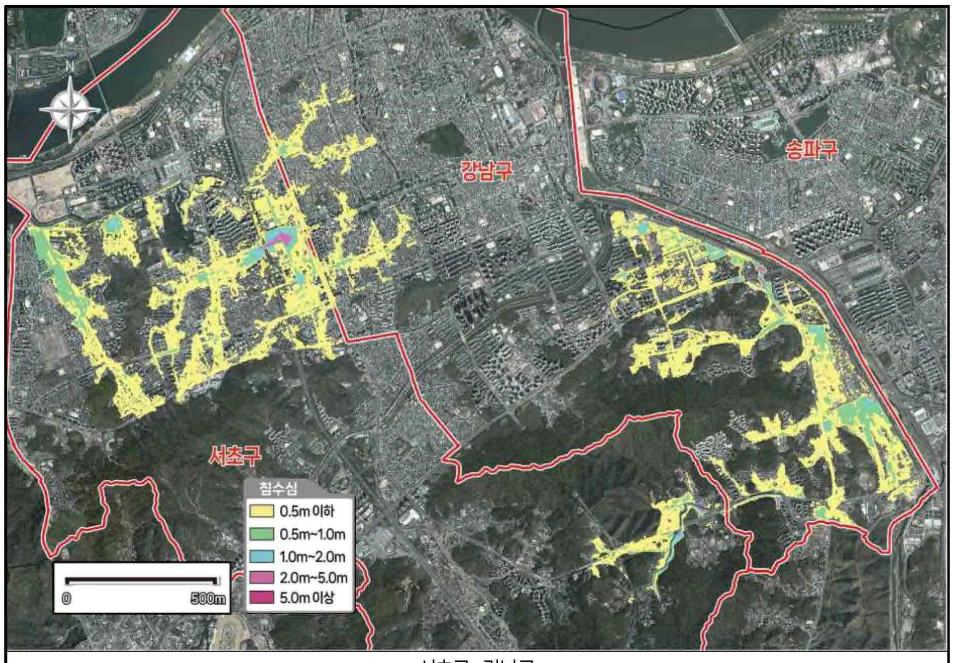

서초구, 강남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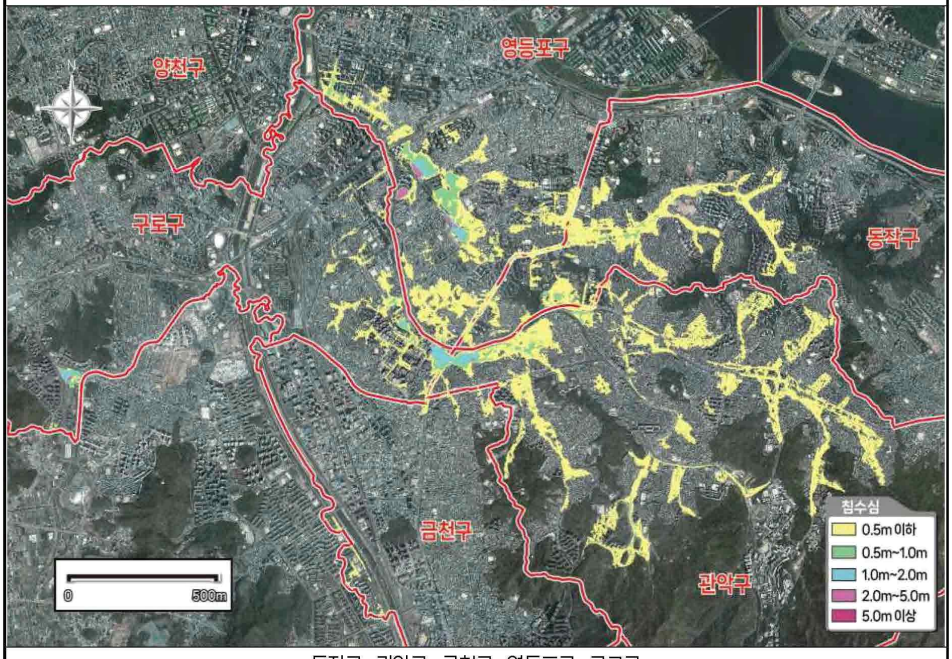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그림 3.2 - 1) 도시침수지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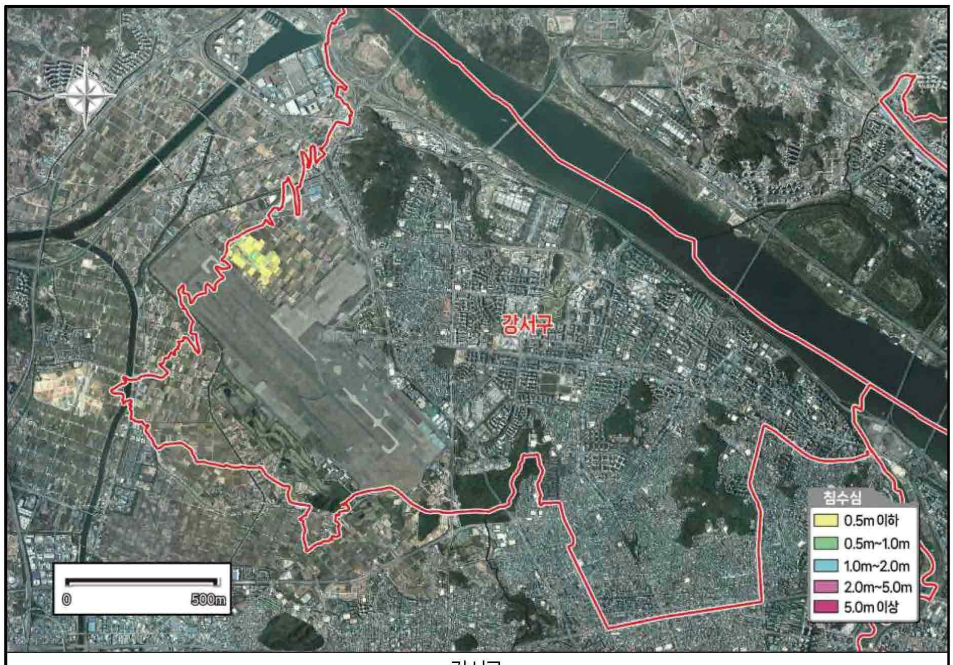

강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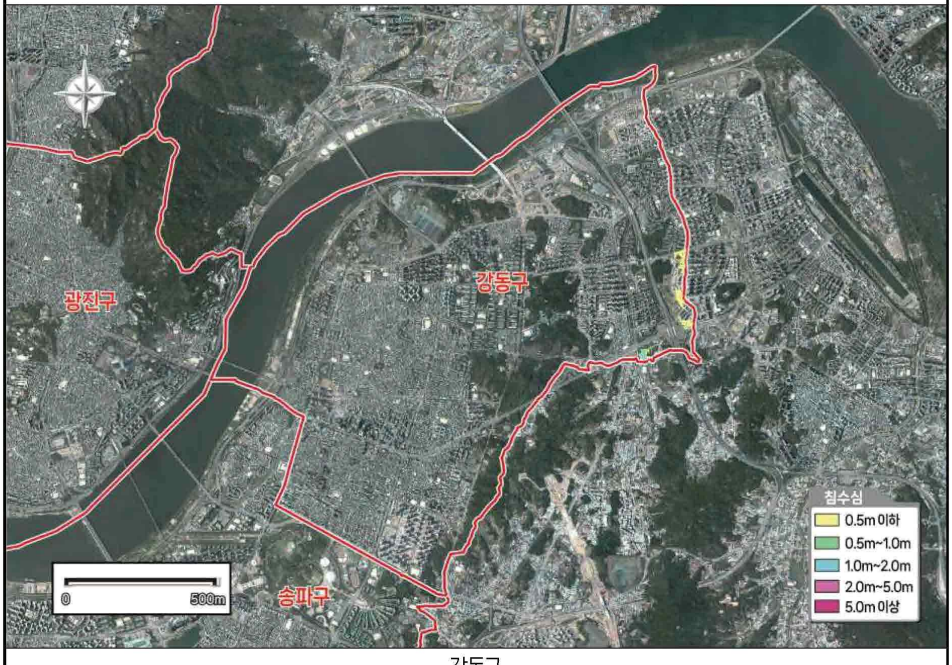

강동구

(그림 3.2 - 2) 도시침수지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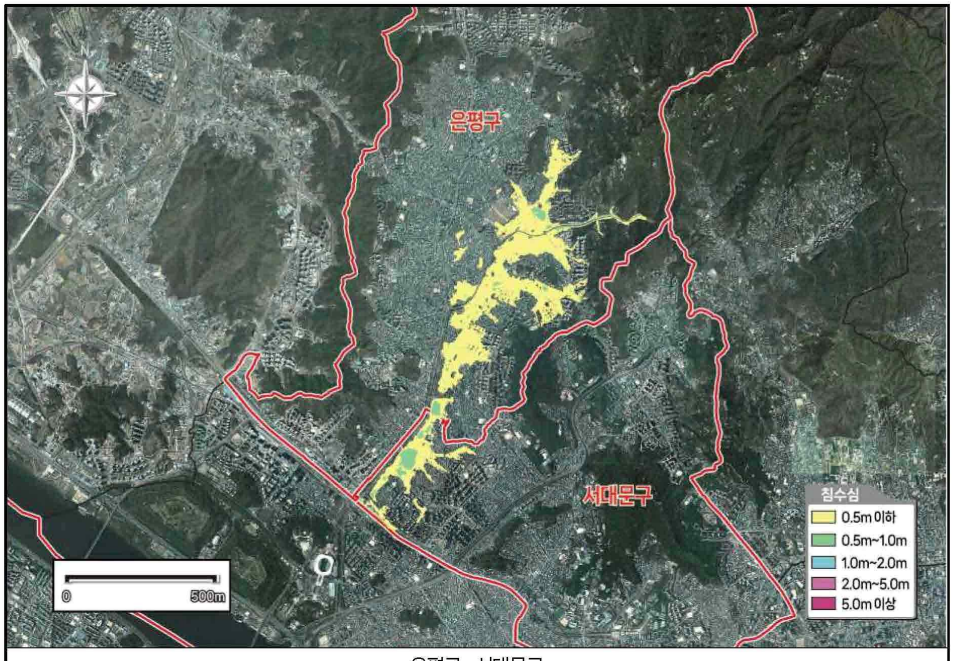

은평구, 서대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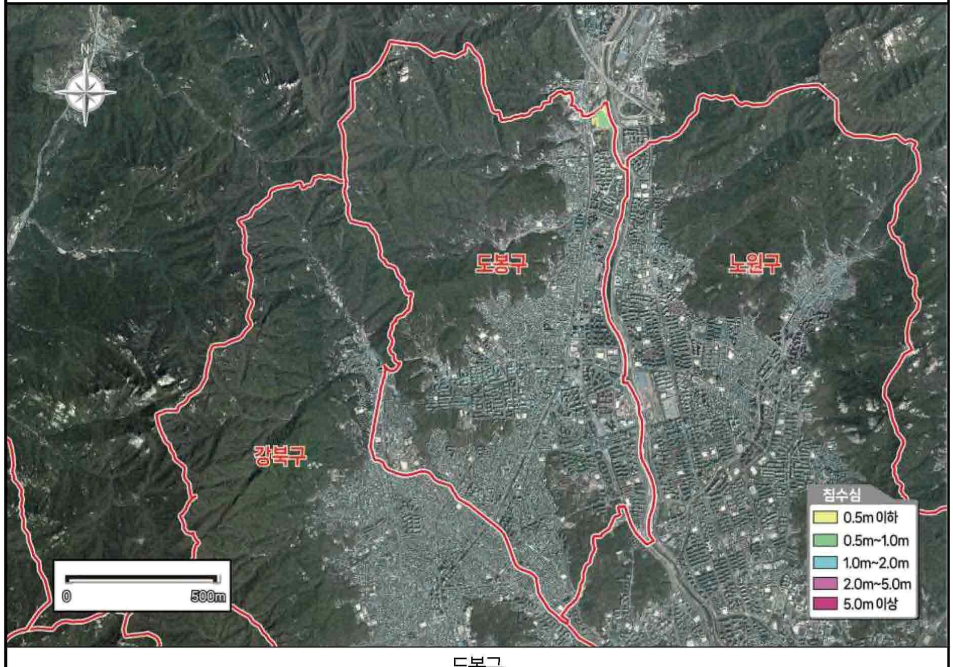

도봉구

(그림 3.2 - 3) 도시침수지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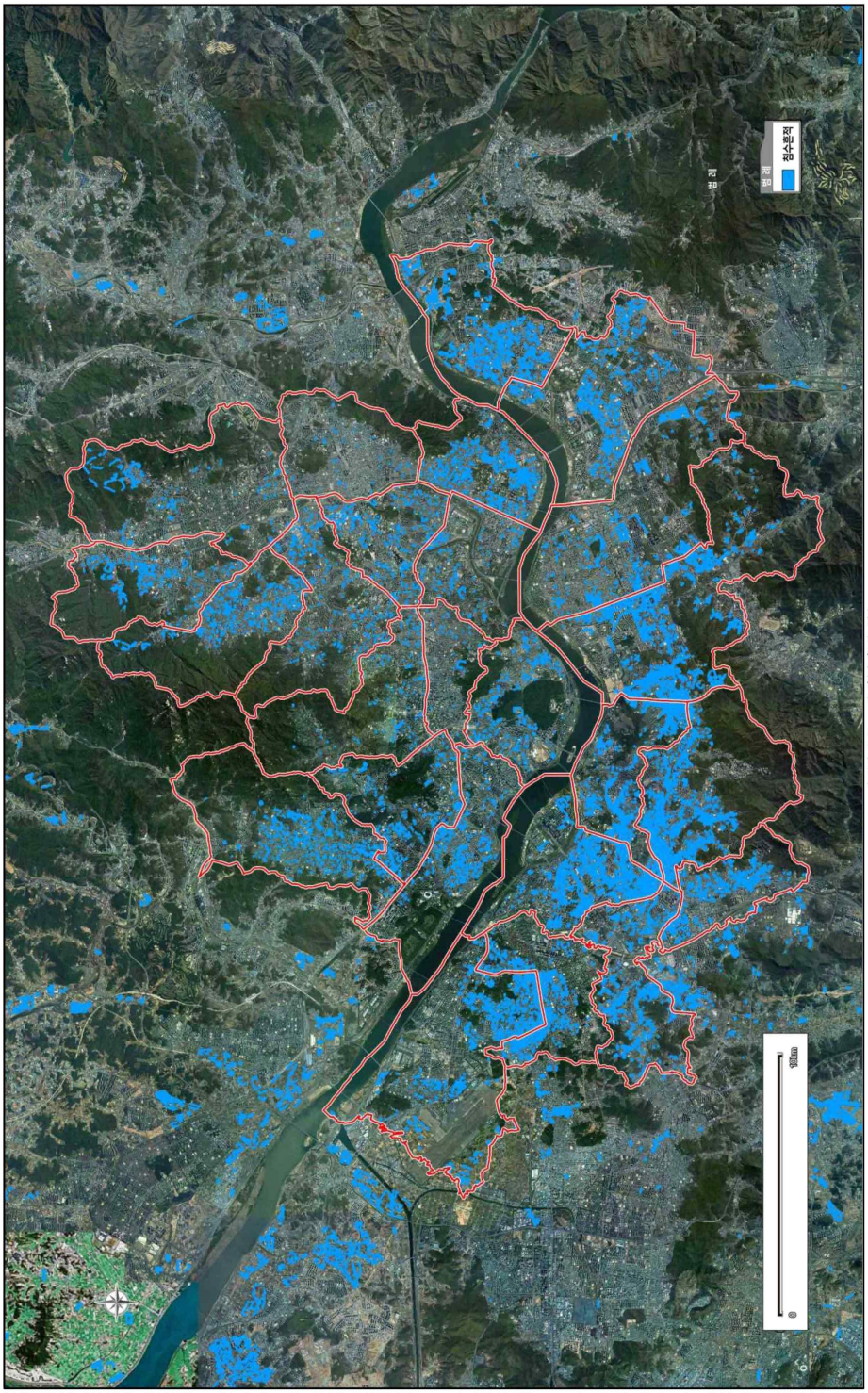

(그림 3.2 - 4) 침수흔적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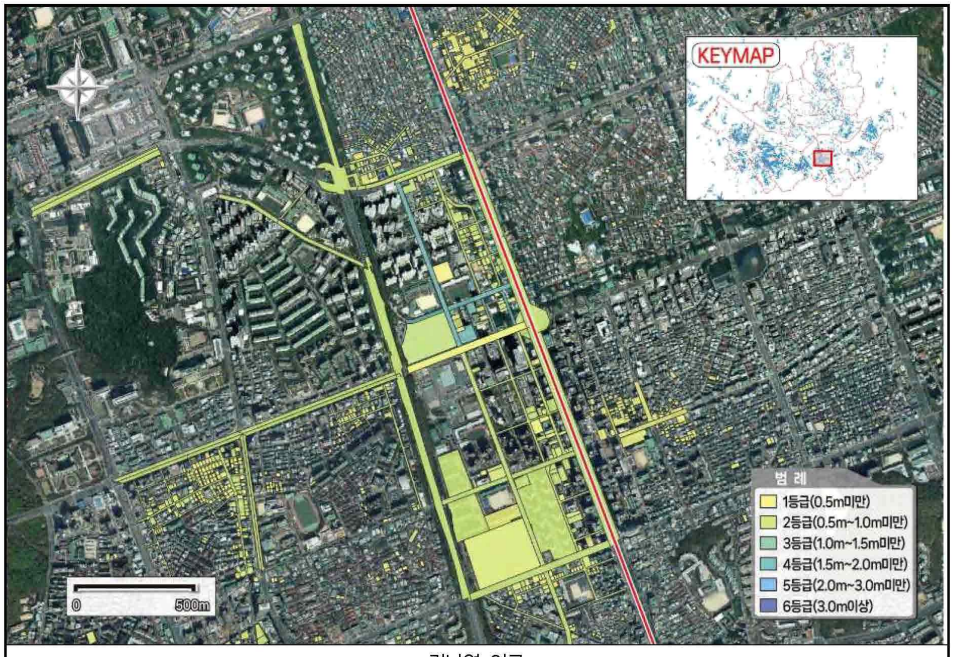

강남역 인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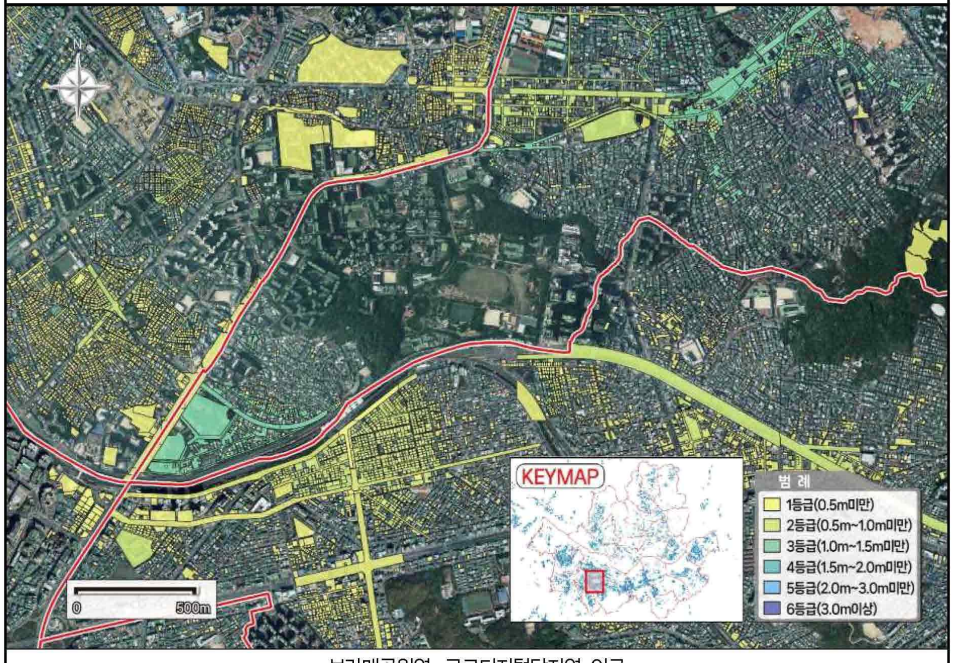

보라매공원역,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

(그림 3.2 - 5) 침수흔적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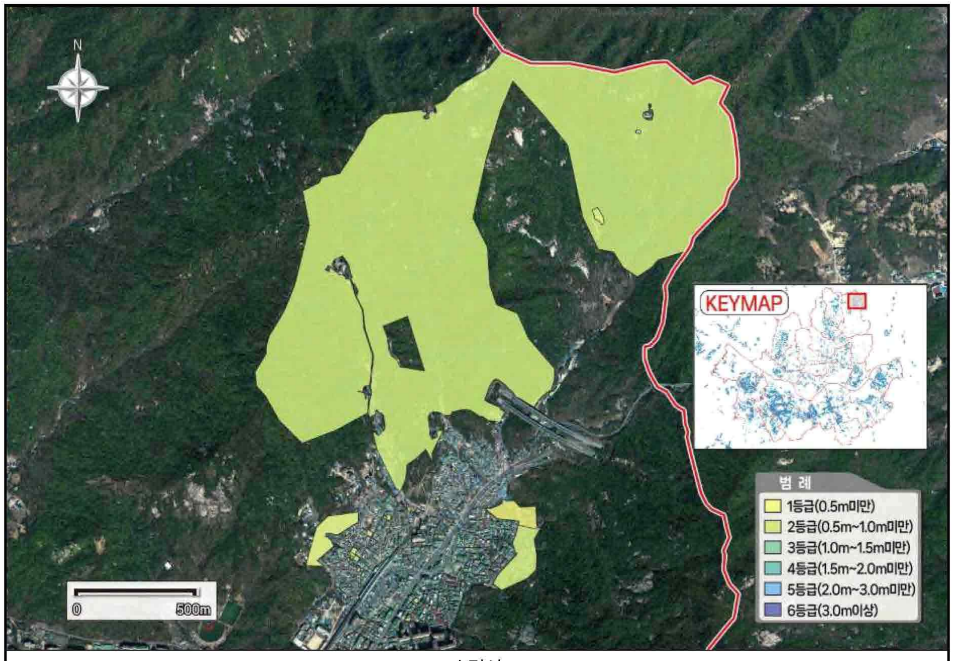

수락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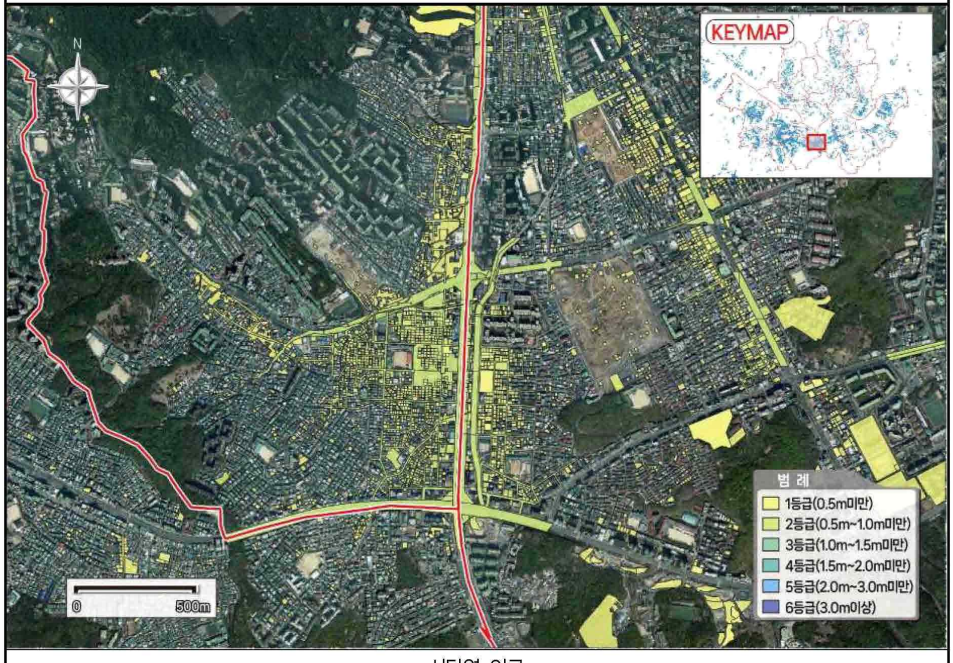

사당역 인근

(그림 3.2 - 6) 침수흔적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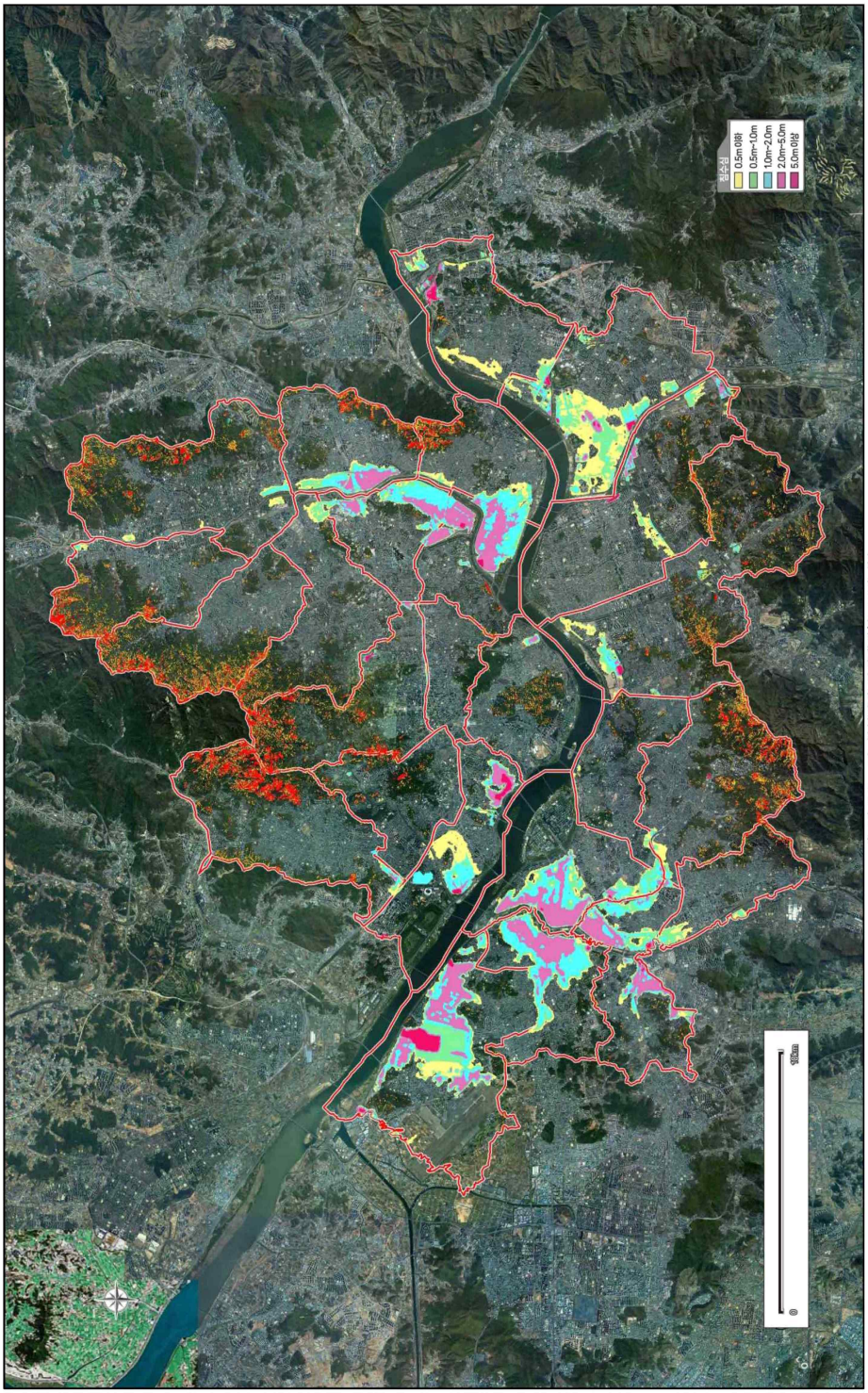

(그림 3.2 - 7) 하천범람·산사태위험등급지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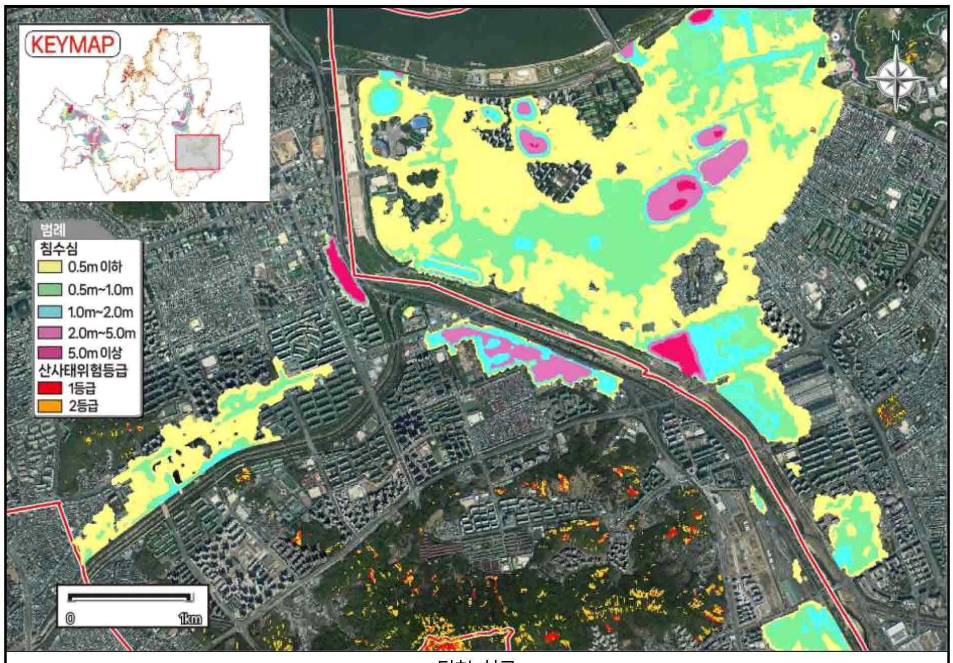

탄천 하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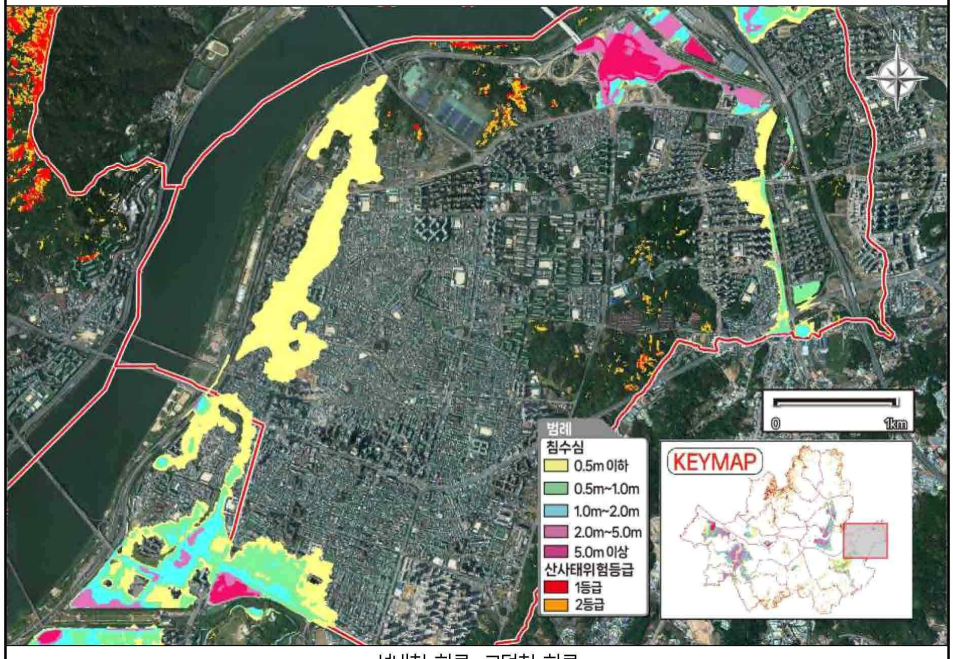

성내천 하류, 고덕천 하류

(그림 3.2 - 8) 하천범람·산사태위험등급지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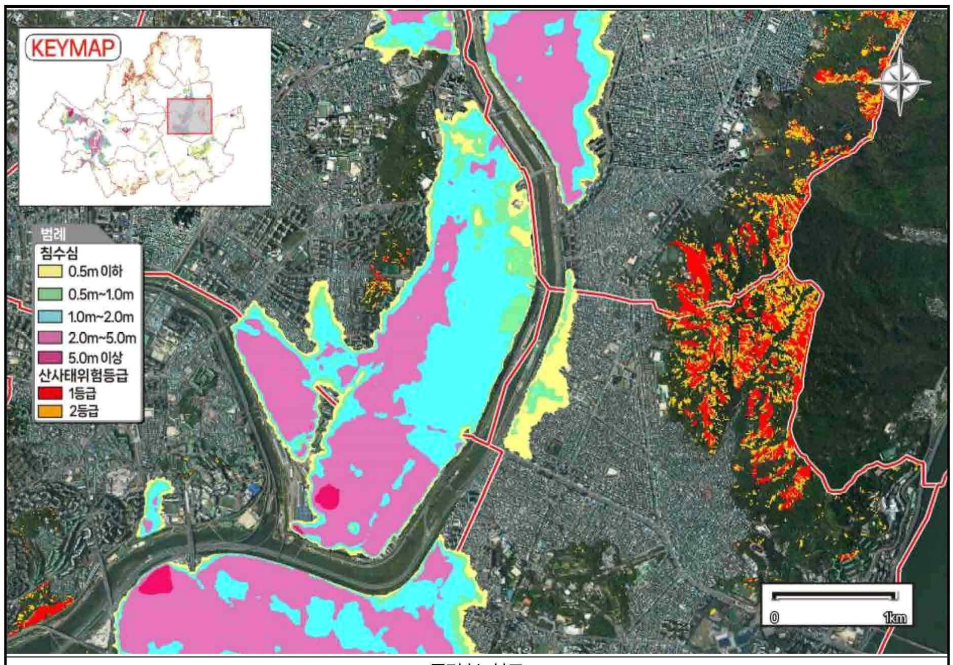

중랑천 하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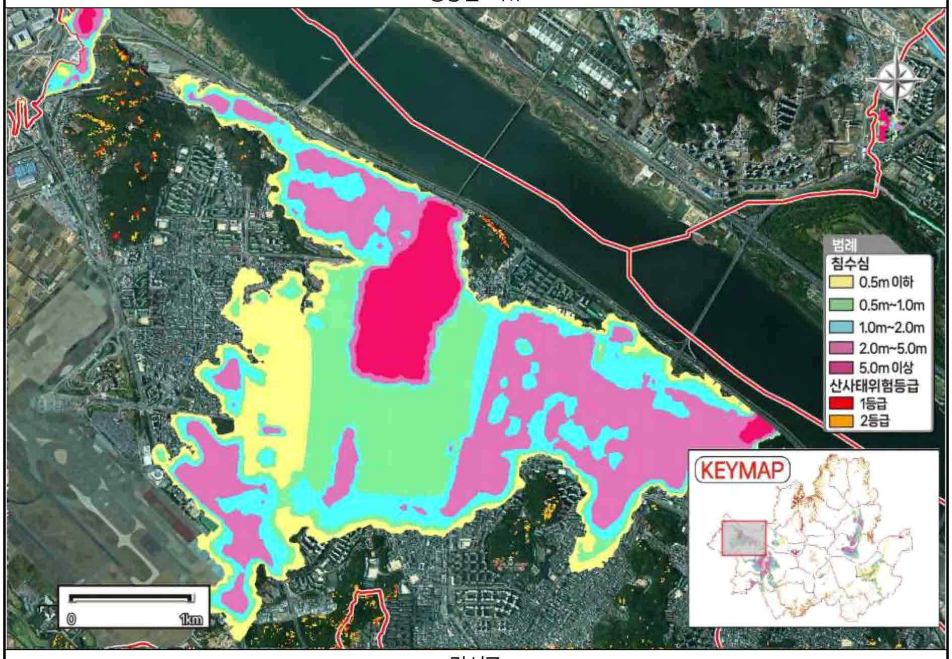

강서구

(그림 3.2 - 9) 하천범람·산사태위험등급지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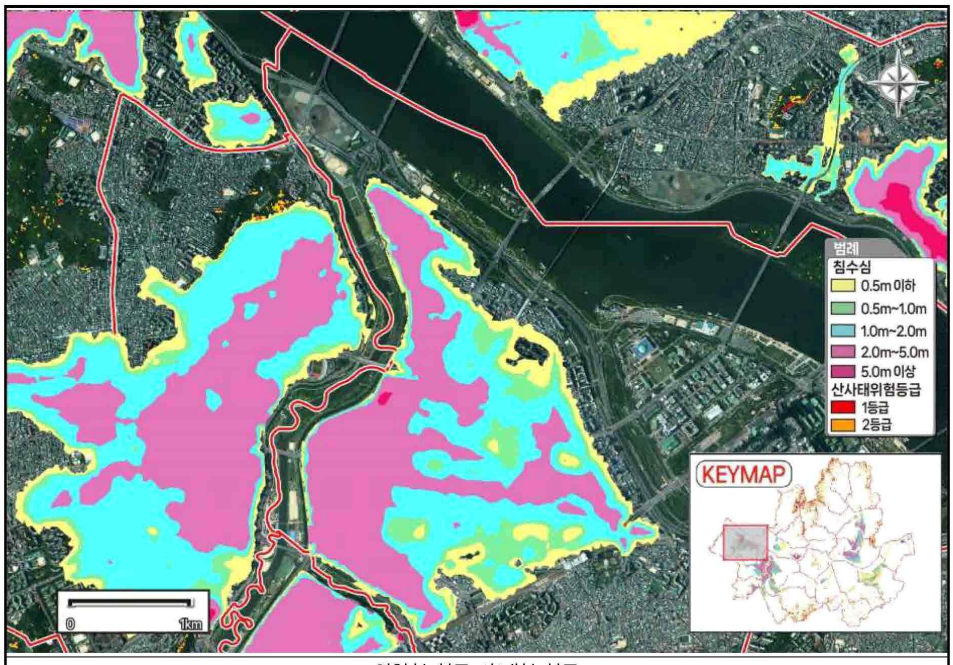

안양천 하류, 홍제천 하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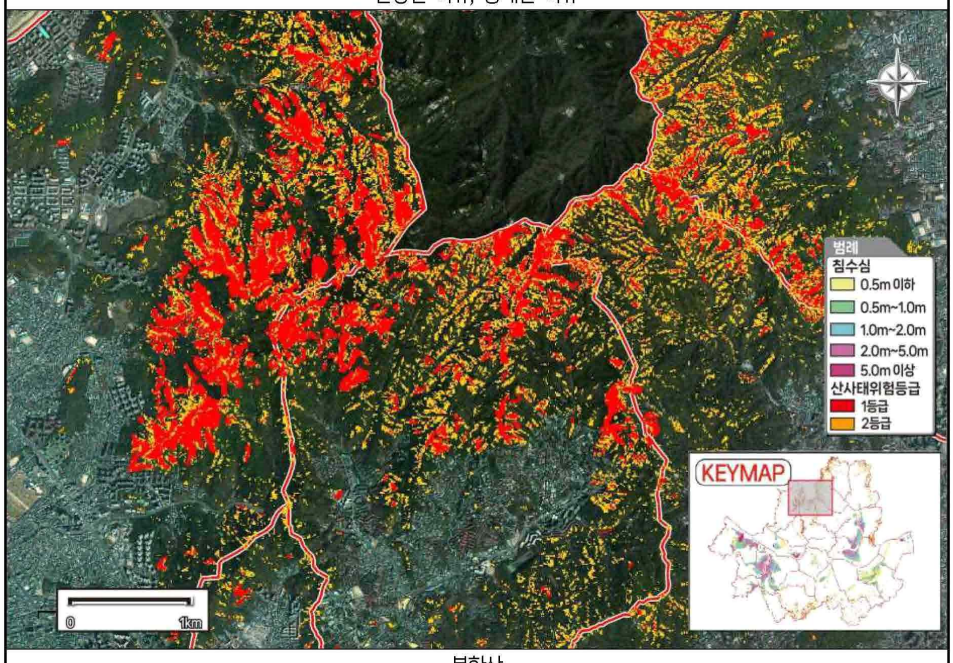

북한산

(그림 3.2 - 10) 하천범람·산사태위험등급지도(4)

5) 가뭄지수(SGI)

◦ 계획지구인 서울특별시의 가뭄지수는 전 자치구 '정상'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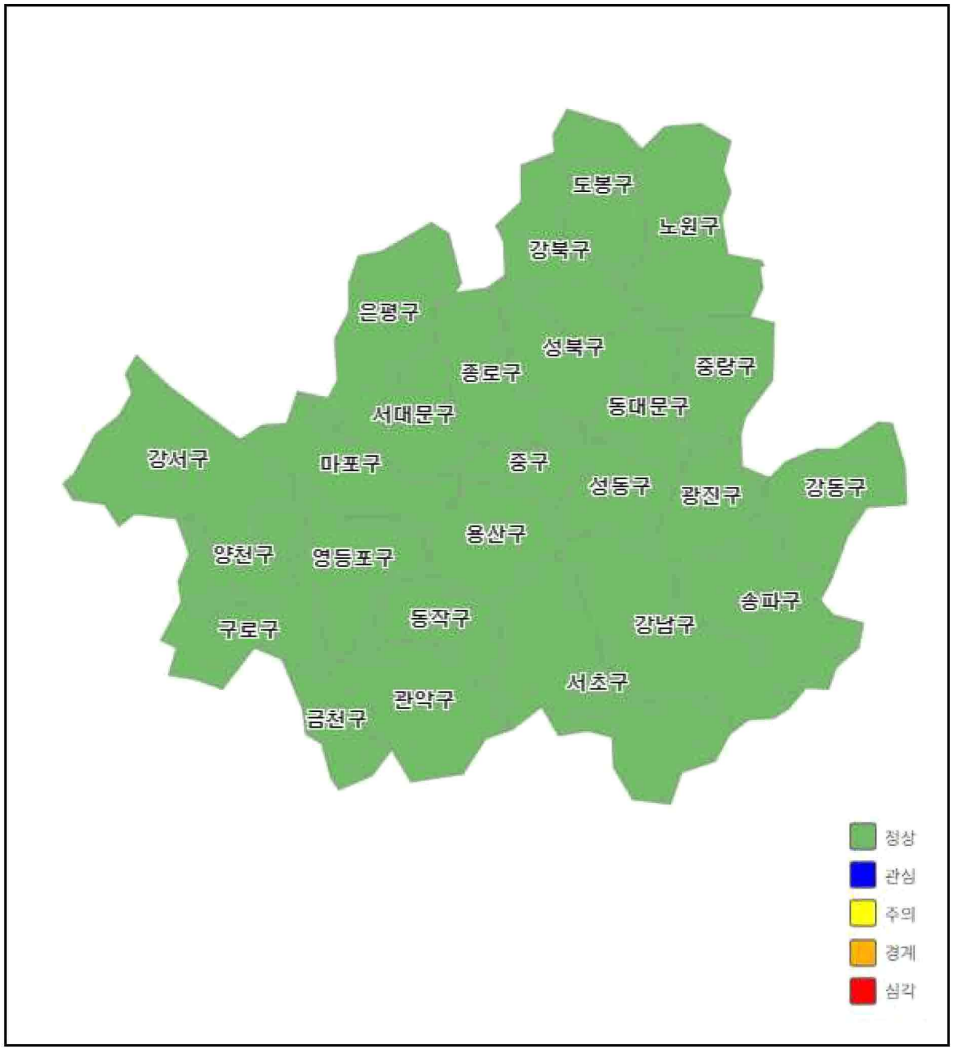

(그림 3.2 - 11) 가뭄지수(SGI)

6) 산사태 발생 이력

◦ 행정안전부의 '생활안전정보'지도를 이용하여 계획지구내에서 발생한 산사태 발생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 계획지구내에 발생한 산사태는 총 44건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수는 2011년 7월 집중호우 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2 - 2> 산사태 발생 이력

구 분	발생위치	발생일시	발생원인	비 고
1	노원구 덕릉로129길 107	2018.08.26	호우	
2	강북구 삼양로181길 194-29	2018.08.26.	호우	
3	강북구 수유동 산68-1	2011.07.27.	호우	
4	성북구 정릉동 228	2011.07.26.	호우	
5	중랑구 상봉동 481-2	2011.07.27.	호우	
6	성북구 하월곡동 산5-57	2011.07.29.	호우	
7	성북구 종암동 산2-27	2011.07.26.	호우	
8	종로구 평창40길 11	2017.07.02.	호우	
9	관악구 봉천동 산117	2011.07.27.	호우	
10	관악구 신림동 산169-49	2011.07.27.	호우	
11	관악구 신림동 산122-20	2011.07.27.	호우	
12	관악구 신림동 1678-12	2011.07.27.	호우	
13	관악구 봉천동 산174-172	2011.07.27.	호우	
14	관악구 신림동 산134-8	2011.07.27.	호우	
15	관악구 신림동 산88	2011.07.27.	호우	
16	관악구 신림동 산102-12	2011.07.27.	호우	
17	관악구 신림동 산102-11	2011.07.27.	호우	

<표 계속> 산사태 발생 이력

구 분	발생위치	발생일시	발생원인	비 고
18	관악구 신림동 산75-1	2011.07.27.	호우	
19	관악구 신림동 산58-17	2011.07.27.	호우	
20	관악구 신림동 산56-2	2011.07.27.	호우	
21	관악구 봉천동 산25	2011.07.27.	호우	
22	관악구 봉천동 산32	2011.07.27.	호우	
23	관악구 봉천동 산17-3	2011.07.27.	호우	
24	관악구 남현동 산67-1	2011.07.27.	호우	
25	관악구 남현동 산66-10	2011.07.27.	호우	
26	관악구 남현동 산93-8	2011.07.27.	호우	
27	서초구 방배동 2899	2011.07.27.	호우	
28	서초구 방배동 산79-8	2011.07.27.	호우	
29	서초구 방배동 산92-1	2011.07.27.	호우	
30	서초구 서초동 산150-125	2011.07.27.	호우	
31	서초구 방배동 산92-15	2011.07.27.	호우	
32	서초구 우면동 509-1	2011.07.27.	호우	
33	서초구 서초동 산143-1	2011.07.27.	호우	
34	서초구 양재동 산61	2011.07.27.	호우	
35	서초구 양재동 산55	2011.07.27.	호우	
36	서초구 양재동 산20-3	2011.07.27.	호우	
37	서초구 양재동 산36-1	2011.07.27.	호우	
38	강남구 도곡동 869	2011.07.27.	호우	
39	강남구 도곡동 산43	2011.07.27.	호우	
40	강남구 삼성동 76-25	2011.07.27.	호우	
41	서초구 내곡동 44-1	2011.07.27.	호우	
42	서초구 내곡동 1-3046	2011.07.27.	호우	
43	강남구 수서동 749	2011.07.27.	호우	
44	강남구 수서동 737	2011.07.27.	호우	

자료 : 생활안전지도(https://www.safemap.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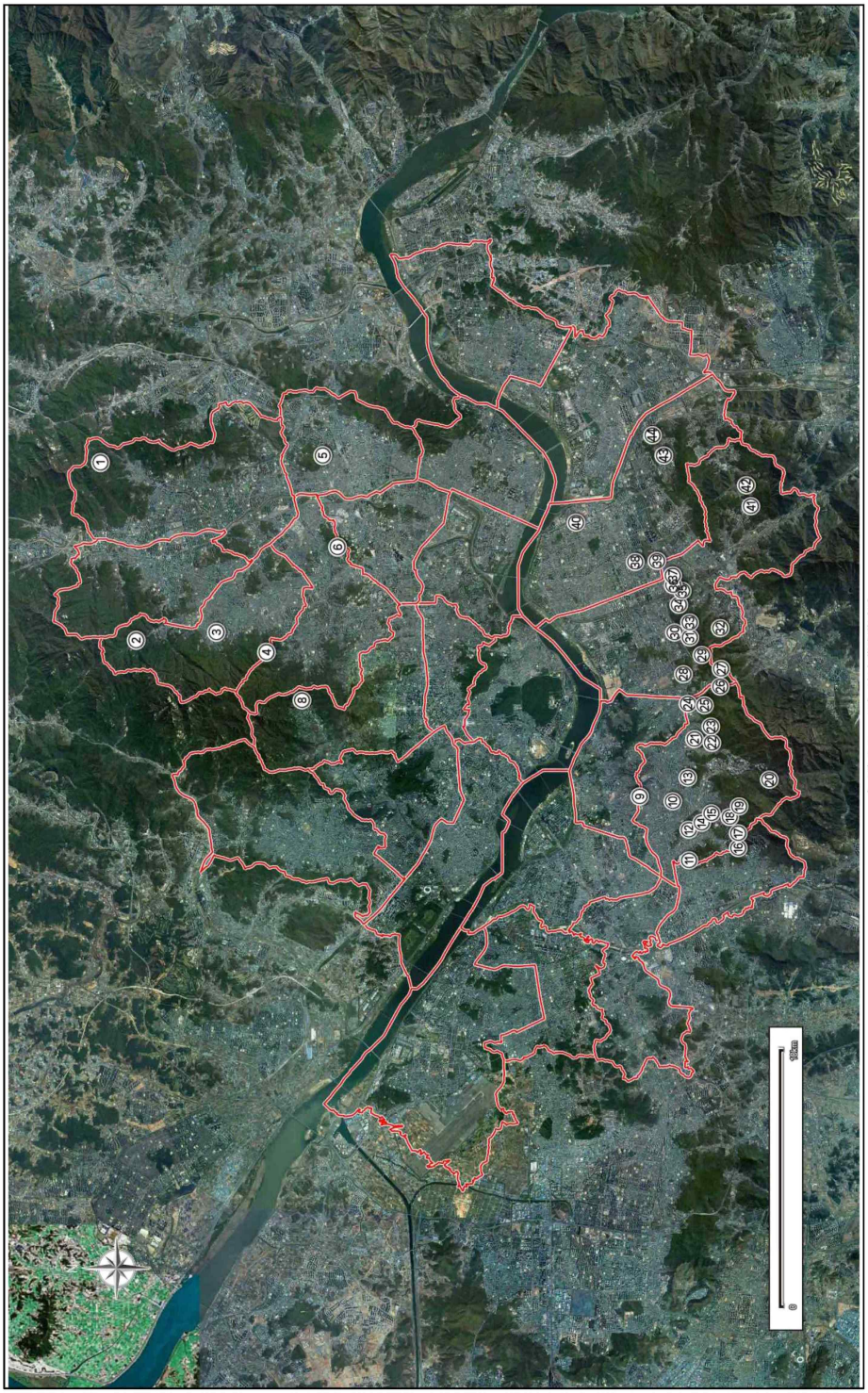

(그림 3.2 - 12) 산사태발생이력

7) 재난/재해 사례

<표 3.2 - 3> 서울특별시 재난/재해 사례

구 분		일 시	주요 내용
호 우	연합뉴스	2025년 7월 17일	17일 서울에 내린 폭우로 강북구 수유동 한 주택 외벽이 무너져 주민 20여명이 대피했다. 강북구청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7시께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근 주민 18명이 대피했으며, 이후에도 대피자가 추가됐다. 구청은 경찰, 소방과 함께 무너진 외벽에 방수포를 덮어 임시 조치하는 한편 복구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아일보	2022년 8월 9일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내 일부 매장이 침수됐고 삼성동 코엑스 내 도서관과 카페 등에는 누수 피해가 발생했다. 강남소방서 관계자는 "폭우로 인해 하수구가 역류한다는 신고가 끊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6시 반부터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이 전면 통제됐고, 오후 9시 26분경 서울 관악구 도림천이 범람하면서 대피 공지가 내려졌다. 밤늦게 잠수교도 전면 통제됐다.
폭 설	연합뉴스	2024년 11월 27일	서울 폭설로 적설량 20㎝ 돌파…성북구·강북구 등 큰 눈 동북권 대설경보·전역 대설주의보…인왕산로 등 4곳 도로 통제 오전 7시 성북 20.6cm·강북 20.4cm·도봉 16.4㎝·은평 16㎝
	뉴시스	2025년 2월 7일	서울시 '도로위험 상황예보' 주의 단계 9호선 당산역서 궤도 장애, 10분간 지연 버스 기다리다 지하철역으로 발걸음 돌려
폭 염	CBS 노컷뉴스	2018년 7월 22일	서울 강남 도심 한복판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다.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소방당국은 폭염으로 인해 아스팔트가 내려앉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열대야	한국재난뉴스	2025년 8월 1일	연일 계속된 폭염에 서울의 열대야 일수가 7월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밤 서울의 최저기온은 27.8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크게 웃돌면서 7월 서울의 열대야 일수는 총 23일로 집계됐다. 열대야는 '밤이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발생일을 집계하는 만큼, 지난밤까지가 7월 열대야 통계의 마감 시점이었다. 이에 따라 1908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열대야가 기록된 달로 남게 됐다.

나. 기후 현황

◦ 계획지구인 서울특별시의 기후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적응대책(2022, 서울특별시)'의 자료를 인용하였다.

<표 3.2 - 4> 서울 기온 및 강수 변화(10년 평균)

기간	평균기온(℃)	일최저기온(℃)	일최고기온(℃)	강수량(mm)	강수일수(일)
1921-1930년	11.0	6.0	16.4	1355.8	111.8
1931-1940년	10.9	6.4	16.4	1261.4	114.2
1941-1950년	11.0	6.2	16.7	1177.9	110.0
1951-1960년	11.3	7.0	16.4	1346.1	112.9
1961-1970년	11.6	7.5	16.4	1506.1	112.9
1971-1980년	11.9	7.9	16.7	1231.5	109.4
1981-1990년	12.0	8.0	16.6	1371.7	107.9
1991-2000년	12.7	8.7	17.3	1429.6	105.7
2001-2010년	12.8	9.1	17.1	1550.2	113.0
2011-2020년	13.0	9.0	17.8	1274.2	107.0
과거 30년(1921-1950년)	11.0	6.2	16.5	1265.0	112.0
최근 30년(1991-2020년)	12.8	8.9	17.4	1418.0	108.6
과거 30년 대비 최근 30년 증감	+1.9 (17.0%)	+2.7 (44.2%)	+0.9 (5.6%)	+153 (12.1%)	-3.4 (-3.1%)

주) 관측 지점 : 서울(108),
자료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2022, 서울특별시

1) 기온

◦ 서울시의 평균기온이 1910년대 10.7℃에서 2010년대 13.0℃로 2.3℃상승하였다.

- 같은 기간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약 1.9℃ 상승(1910년대 12℃에서 2010년대 13.9℃)하였으며, 전국 평균기온 상승 폭 대비 서울의 상승 폭이 0.4℃ 더 높음

<표 3.2 - 5> 과거 100년간 서울, 전국 평균기온

구분	1910년대 1911~1920	1920년대 1921~1930	1930년대 1931~1940	1940년대 1941~1949	1950년대 1954~1960	1960년대 1961~1970	1970년대 1971~1980	1980년대 1981~1990	1990년대 1991~2000	2000년대 2001~2010	2010년대 2011~2020
서울시 평균기온(℃)	10.7	11.0	10.9	11.0	11.3	11.6	11.9	12.0	12.7	12.8	13.0
전국 평균기온(℃)	12.0	12.1	12.2	12.3	12.5	12.6	12.8	13.0	13.6	13.7	13.9

주) 관측 지점 : 서울(108), 강릉(105), 인천(112), 대구(143), 부산(159), 목포(165)
자료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2022, 서울특별시

◦ 과거 100년(1921~2020년) 간 서울의 연평균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평균일최저기온 상승 폭이 평균일최고기온 상승 폭보다 높다.

- 과거 30년(1921~1950년) 평균값과 최근 30년(1991~2020년) 평균값 비교시, 평균기온이 1.8℃, 평균일최고기온이 1.0℃ 상승하였고, 평균일최저기온이 2.8℃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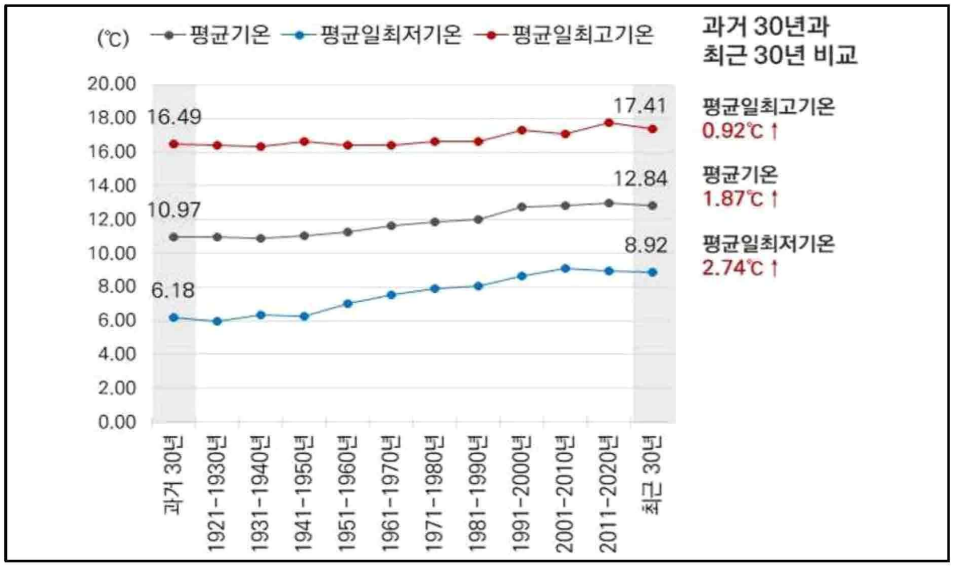

(그림 3.2 - 13) 서울 평균 기온 현황

2) 강수량

◦ 서울의 강수량은 장기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최근 급감하였다.

◦ 강수량이 증가하는 반면, 강수일수는 감소하여 강수강도가 증가하였다.

- 1910년대 1,263.0mm → 2000년대 1,550.2mm → 2010년대 1,274.2mm

<표 3.2 - 6> 과거 100년간 서울 평균 강수량

구분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1911~1920	1921~1930	1931~1940	1941~1949	1954~1960	1961~1970	1971~1980	1981~1990	1991~2000	2001~2010	2011~2020
연간 강수량 (mm)	1,263.0	1,355.8	1,261.4	1,177.9	1,346.1	1,506.1	1,231.5	1,371.7	1,429.6	1,550.2	1,274.2
강우일수 (일)	188.7	147.6	152.5	143.2	148.9	154.8	148.8	146.1	137.8	140.5	141.2

주) 관측 지점 : 서울(108),
자료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2022, 서울특별시

◦ 강수량과 강수일수는 기온에 비해 다소 증감 변동이 있어 과거 30년과 최근 30년 비교와 더불어 과거 50년(1921~1970년)과 최근 50년(1971~2020년)의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 과거 30년 강수량과 강수일 평균은 각각 1,252mm와 111일이고, 최근 30년은 1,418mm와 109일로 강수량은 166mm 증가한 반면, 강수일은 2일 줄어듦
- 50년 구간 비교에서도 30년 구간과 유사한 경향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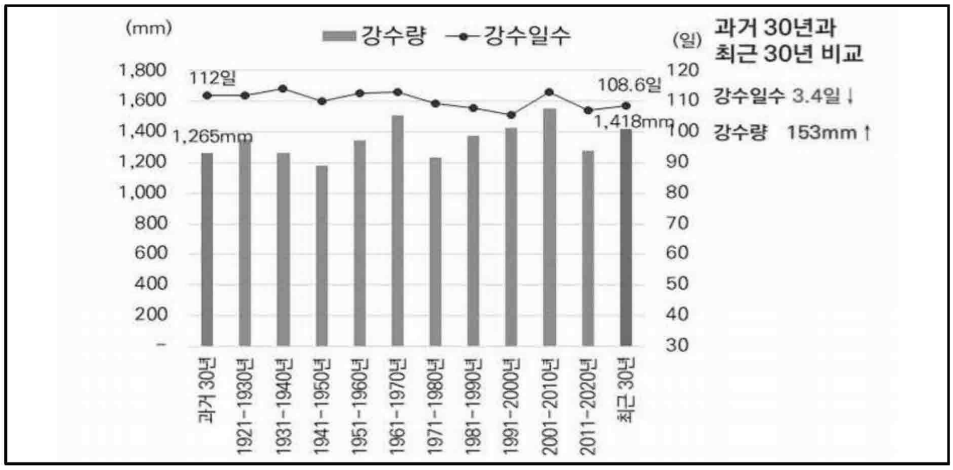

(그림 3.2 - 14) 서울 평균 강수량 변화

2) 극한기후

◦ 100년간 서울의 평균 연최고기온은 35.1℃이고, 최근 30년 동안 35.1℃를 초과했던 해는 15번으로 이중 8해가 10년사이 집중되었으며, 2018년도 연최고기온이 39.6℃까지 오르며 100년간 관측값 중 최고기온을 기록하였다.

◦ 100년간 서울의 폭염일수는 9.7일이나, 최근 30년 9.7일을 초과했던 해는 11번이었고, 이중 폭염일수가 20일이 넘는 해는 1994년, 2016년, 2018년으로 3개 해로 연최고기온을 기록한 2018년은 폭염일수 역시 35일로 최고 폭염일수를 기록하였다.

◦ 100년간 서울의 평균 열대야일수는 7.1일이나 최근 30년 7.1일을 초과했던 해는 21해로 폭염보다 열대야 발생이 더 잦았고, 최고 열대야일수는 1994년도에 36일으로 열대야일수가 20일이 넘는 해는 1994년을 포함하여, 2013년, 2016년, 2018년 4개 해로 최근 10년에 더 집중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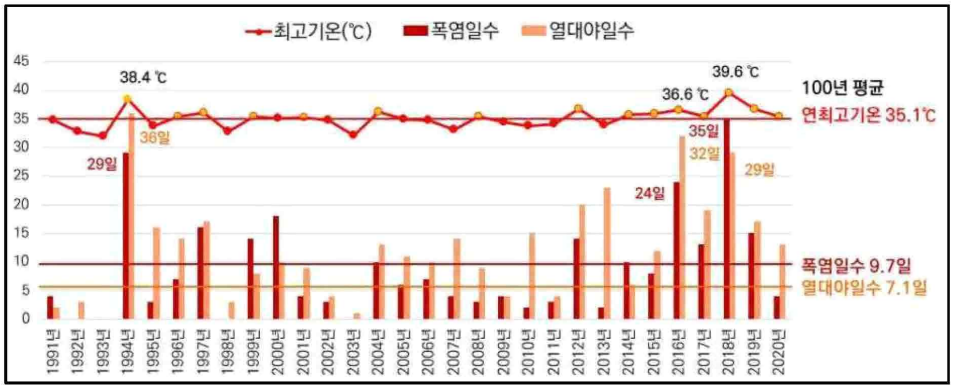

(그림 3.2 - 15) 최근 30년 서울 연최고기온,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 서울의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를 2005년과 2018년 두 개년도로 비교했을 때, 폭염일수는 각각 6일과 35일, 열대야일수는 11일과 29일로 고온 관련 극한기후 일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 서울의 극한 고온 발생일이 증가함과 동시에 여름일수도 함께 증가하고, 100년 전 10년(1921~1930년) 동안 평균 여름일수가 109.9일이었으나, 최근 10년(2011~2020년)동안의 평균 여름일수는 127일로 100년 전 10년 평균 여름일수보다 17일이 늘어났다.

<표 3.2 - 7> 서울 여름철 극한 기온값

연 도	연최고기온(℃)	폭염일수(일)	열대야일수(일)	여름일수(일)
1991	34.7	4	2	110
1992	32.8	0	3	98
1993	31.9	0	0	105
1994	38.4	29	36	126
1995	33.7	3	16	102
1996	35.4	7	14	117
1997	36.1	16	17	104
1998	32.8	0	3	131
1999	35.4	14	8	120

<표 계속> 서울 여름철 극한 기온값

연 도	연최고기온(℃)	폭염일수(일)	열대야일수(일)	여름일수(일)
2000	35.1	18	10	117
2001	35.3	4	9	125
2002	34.8	3	4	114
2003	32.2	0	1	104
2004	36.2	10	13	109
2005	35.0	6	11	112
2006	34.7	7	10	111
2007	33.2	4	14	113
2008	35.4	3	9	115
2009	34.4	4	4	122
2010	33.8	2	15	112
2011	34.1	3	4	103
2012	36.7	14	20	124
2013	33.9	2	23	130
2014	35.8	10	6	130
2015	36.0	8	12	140
2016	36.6	24	32	136
2017	35.4	13	19	135
2018	39.6	35	29	120
2019	36.8	15	17	137
2020	35.4	4	13	115
서울 100년 평균	35.1	9.7	7.1	112.2
1921-1930	35.7	12.9	6.8	109.9
1931-1940	35.4	12.4	4.8	112.8
1941-1950	36.1	71.4	3.2	113.4
1951-1960	32.7	9.6	3.6	104.9
1961-1970	34.6	6.6	5.2	110.5
1971-1980	34.3	5.2	4.6	106.5
1981-1990	34.7	6.3	5.5	108.3
1991-2000	34.6	9.1	10.9	113.0
2001-2010	34.5	4.3	9.0	113.7
2011-2020	36.0	12.8	17.5	127.0

자료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2022, 서울특별시

◦ 서울의 극한 고온 현상이 증가하는 반면, 극한 저온 현상은 감소하는 추세로 과거 100년간 결빙일수, 서리일수, 한파일수 모두 감소하였고, 연최저기온은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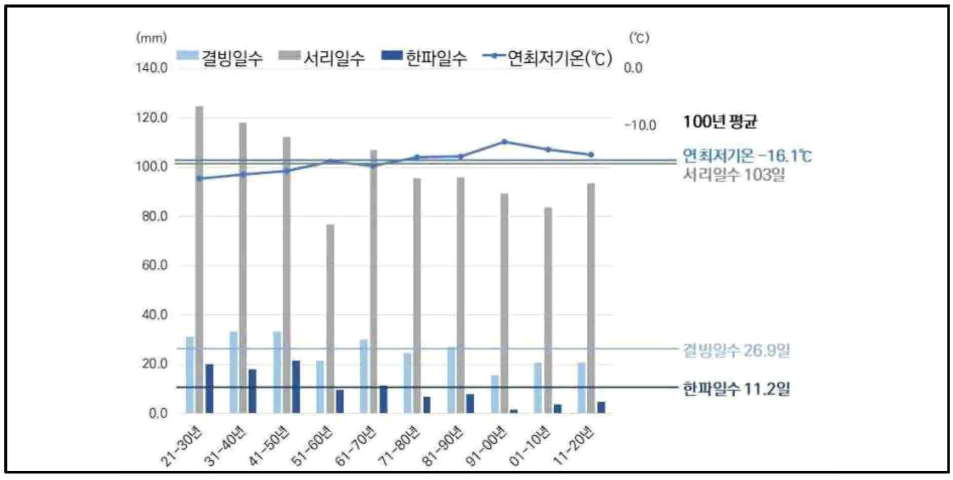

(그림 3.2 - 16) 과거 100년간 서울 저온 극한기후지수

◦ 일 최다강수량의 100년 평균은 141.6mm이고, 강수량이 141.6mm 이상인 해는 총 42번있었고, 이중 강수량이 200mm이상이었던 12해 중 6번이 1981~2020년 사이에 나타났다.

◦ 즉 최근 40년 사이 일 최다강수량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고, 300mm이상이었던 해는 2해(1998년, 2011년)로 1998년에 332mm는 100년 강수량 측정 후 최대 일 최다강수량을 기록하였다.

◦ 강수강도는 연 총강수량을 연중 습윤일수(일강수량이 1.0mm이상인 날)로 나눈 값으로 비가 내린 날의 평균 강수량으로 최근 100년간 강수강도 평균은 16.6mm/일 대비 최근 30년간 강수강도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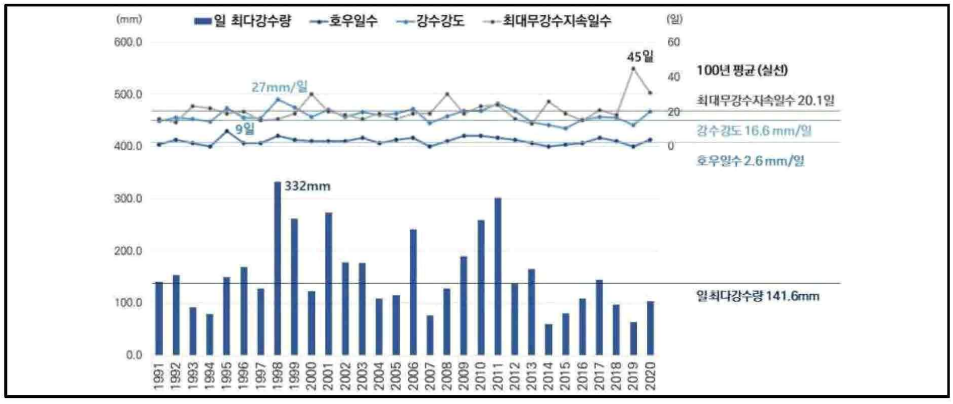

(그림 3.2 - 17) 최근 30년 서울 극한 강수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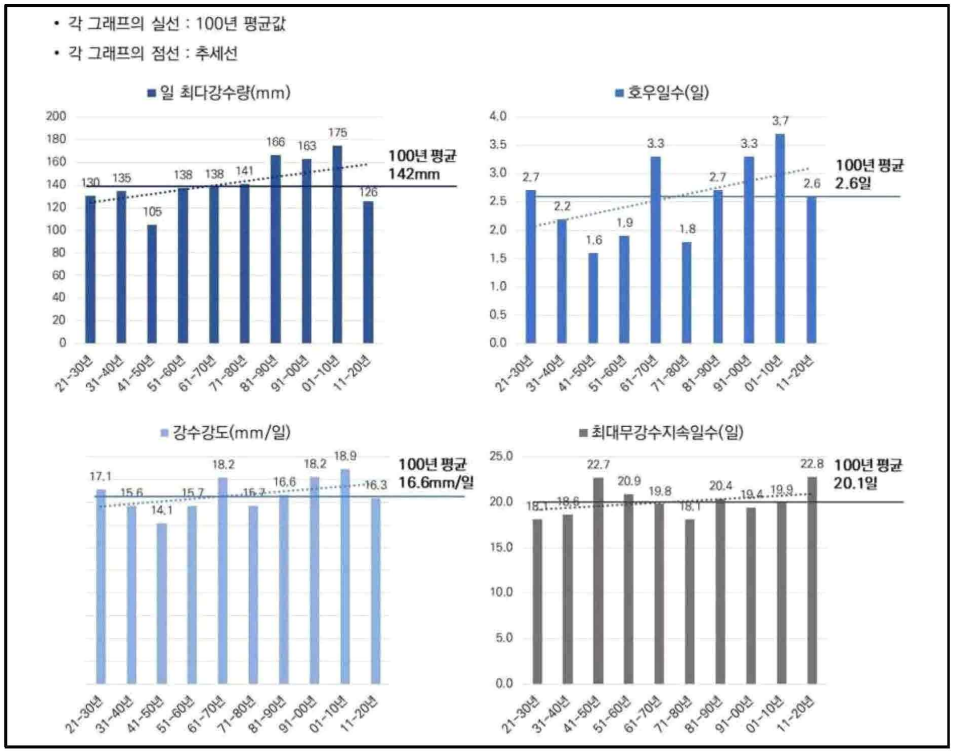

(그림 3.2 - 18) 과거 100년 서울 극한 강수 경향

<표 3.2 - 8> 서울 강수량 극한 기후값

연 도	일최다강수량(mm)	호우일수(일)	강수강도(mm/일)	최대무강수지속일수(일)
1991	140.2	1	14.7	16
1992	153.3	4	16.5	14
1993	91.8	2	15.8	23
1994	79.4	0	14.3	22
1995	149.2	9	21.9	19
1996	168.6	2	16.8	20
1997	127.7	2	16.1	15
1998	332.8	6	27.0	16
1999	261.6	4	22.5	19
2000	122.9	3	17.0	30
2001	273.4	3	21.3	20
2002	178.0	3	16.9	18
2003	177.0	5	19.7	16

<표 계속> 서울 강수량 극한 기후값

연 도	일최다강수량(mm)	호우일수(일)	강수강도(mm/일)	최대무강수지속일수(일)
2004	108.5	2	18.3	19
2005	115.0	4	19.1	16
2006	241.0	5	21.8	19
2007	76.0	0	13.5	19
2008	127.5	3	17.2	30
2009	190.0	6	20.6	19
2010	259.5	6	20.6	23
2011	301.5	5	24.9	24
2012	137.0	4	20.6	16
2013	165.0	2	13.6	13
2014	59.5	0	12.3	26
2015	80.0	1	10.6	19
2016	108.5	2	15.3	15
2017	144.5	5	17.1	21
2018	96.5	3	16.5	18
2019	63.2	0	12.2	45
2020	103.1	4	20.1	31
서울 100년 평균	141.61	2.6	16.6	20.1
1921-1930	130.4	2.7	17.1	18.1
1931-1940	134.9	2.2	15.6	18.6
1941-1950	104.8	1.6	14.1	22.7
1951-1960	137.6	1.9	15.7	20.9
1961-1970	138.2	3.3	18.2	19.8
1971-1980	140.7	1.8	15.7	18.1
1981-1990	166.3	2.7	16.6	20.4
1991-2000	162.8	3.3	18.2	19.4
2001-2010	174.6	3.7	18.9	19.9
2011-2020	125.9	2.6	16.3	22.8

자료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2022, 서울특별시

다. 기후 전망

◦ 계획지구인 서울특별시의 기후변화 전망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3차 서울시 기후위기 적응대책(2022, 서울특별시)'의 자료를 인용하였다.

1) 기온 및 강수 전망

가) 기온

◦ SSP시나리오에 의한 서울시 미래 기온 변화 전망에 따르면,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상당히 실현되는 SSP1-2.6 시나리오에서는 서울특별시 연평균기온은 현재 대비 세기 전반기에 1.5℃ 중반기에 1.7℃ 후반기에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1세기 후반기(2081~2100년)의 평균기온이 15.5℃로 예측되고,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 저감없이 배출되는 SSP5-8.5시나리오에서는 19.8℃로 예측된다.

- 이는 현재 기후값 2000~2019년 평균기온인 13.1℃보다 각각 2.4℃, 6.4℃ 상승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저감정책 실현 여부에 따라 평균기온의 상승폭이 달라짐을 의미한다.

◦ 현재 기후값 대비 21세기 후반기 서울의 연평균 최고기온 변화를 살펴보면 2000~2019년 17.9℃에서 SSP1-2.6시나리오 기준 2.5℃ 상승하여 20.4℃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SSP5-8.5시나리오 기준 6.8℃ 상승하여 24.7℃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 연평균 최저기온은 2000~2019년 9.0℃에서 21세기 후반기에 SSP1-2.6시나리오 기준 2.4℃ 상승하여 11.4℃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SSP5-8.5시나리오 기준 6.7℃ 상승하여 15.7℃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나) 강수

◦ SSP시나리오에 의한 서울시 미래 강수량 변화 전망에 따르면, SSP1-2.6시나리오에서 21세기 후반기 연강수량이 1,405.7mm로 예측되고, SSP5-8.5시나리오에서는 1,563.6mm로 예측되었다.

- SSP1-2.6시나리오의 경우 서울특별시 연강수량은 현재 대비 21세기 전반기에 40.9mm, 중반기에 131.1mm, 후반기에 135.6mm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SSP5-8.5시나리오의 경우 21세기전중 후반기 서울특별시 연강수량은 현재 대비 전반기에 28.8mm, 중반기에 144.6mm, 후반기에 293.5mm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저탄소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21세기 후반기 연강수량 증감폭은 157.9mm 커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3.2 - 9> 서울 기온 및 강수 전망

항목	현재기후값 2000-2019	SSP 시나리오	전반기 2021-2040	중반기 2041-2060	후반기 2081-2100
연평균기온 (℃)	13.1	SSP1-2.6	14.6 (+1.5)	14.8 (+1.7)	15.5 (+2.4)
		SSP5-8.5	14.7 (+1.6)	16.2 (+3.1)	19.8 (+6.7)
연평균 최고기온 (℃)	17.9	SSP1-2.6	19.4 (+1.5)	19.6 (+1.7)	20.4 (+2.5)
		SSP5-8.5	19.6 (+1.7)	21.0 (+3.1)	24.7 (+6.8)
연평균 최저기온 (℃)	9.0	SSP1-2.6	10.4 (+1.4)	10.7 (+1.7)	11.4 (+2.4)
		SSP5-8.5	10.5 (+1.5)	12.1 (+3.1)	15.7 (+6.7)
연강수량 (mm)	1,270.1	SSP1-2.6	1,311.0 (+1.5)	1,401.2 (+131.1)	1,405.7 (+135.6)
		SSP5-8.5	1,298.9 (+28.8)	1,414.7 (+144.6)	1,563.6 (+293.5)

자료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2022, 서울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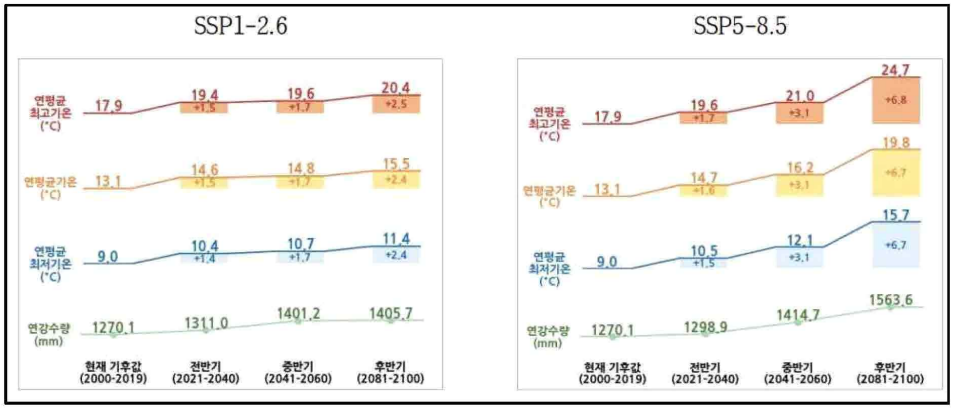

(그림 3.2 - 19) 서울 기온 및 강수 전망

2) 극한기후 전망

◦ (폭염일수) 서울특별시 21세기 후반기 폭염일수는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 현재(15.0일)대비 27.8~94.8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SSP1-2.6시나리오의 경우 서울특별시 폭염일수는 현재 대비 21세기 전반기에 15.9일, 중반기에 22.7일,

후반기에 27.8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SSP5-8.5시나리오의 경우 서울특별시 폭염일수는 현재 대비 21세기 전반기에 18.4일, 중반기에 39.7일, 후반기에 94.8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열대야일수) 서울특별시 21세기 후반기 열대야일수는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 현재(11.3일)대비 30.5~84.8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SSP1-2.6시나리오의 경우 서울특별시 열대야일수는 현재 대비 21세기 전반기에 22.6일, 중반기에 28.7일, 후반기에 30.5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SSP5-8.5시나리오의 경우 서울특별시 열대야일수는 현재 대비 21세기 전반기에 21.7일, 중반기에 39.8일, 후반기에 84.8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여름일수) 서울특별시 21세기 후반기 여름일수는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 현재(127.7일)대비 22.7~66.6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SSP1-2.6시나리오의 경우 서울특별시 여름일수는 현재 대비 21세기 전반기에 12.7일, 중반기에 17.3일, 후반기에 22.7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SSP5-8.5시나리오의 경우 서울특별시 여름일수는 현재 대비 21세기 전반기에 14.5일, 중반기에 29.7일, 후반기에 66.6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한파일수) 서울특별시 21세기 후반기 한파일수는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 현재(4.4일)대비 2.4~4.4일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SSP1-2.6시나리오의 경우 서울특별시 한파일수는 현재 대비 21세기 전반기에 -0.5일, 중반기에 0.2일, 후반기에 -2.4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SSP5-8.5시나리오의 경우 서울특별시 한파일수는 현재 대비 21세기 전반기에 -1.8일, 중반기에 -2.9일, 후반기에 -4.4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호우일수) 서울특별시 21세기 후반기 호우일수는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 현재(2.7일)대비 0.7~1.0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SSP1-2.6시나리오의 경우 서울특별시 호우일수는 현재 대비 21세기 전반기에 0.4일, 중반기에 0.6일, 후반기에 0.7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SSP5-8.5시나리오의 경우 서울특별시 호우일수는 현재 대비 21세기 전반기에 0.4일, 중반기에 0.6일, 후반기에 1.0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강수강도) 서울특별시 21세기 후반기 강수강도는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 현재(16.9mm/일)대비 2.3~3.6mm/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SSP1-2.6시나리오의 경우 서울특별시 강수강도는 현재 대비 21세기 전반기에 2.1mm/일, 중반기에 2.7mm/일, 후반기에 2.3mm/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SSP5-8.5시나리오의 경우 서울특별시 강수강도는 현재 대비 21세기 전반기에 1.7mm/일, 중반기에 2.4mm/일, 후반기에 3.6mm/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5일최다강수량) 서울특별시 21세기 후반기 5일최다강수량는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 현재(261.6mm) 대비 67.6~44.4mm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SSP1-2.6시나리오의 경우 서울특별시 5일최다강수량은 현재 대비 21세기 전반기에 28.7mm, 중반기에 61.4mm, 후반기에 67.6mm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SSP5-8.5시나리오의 경우 서울특별시 5일최다강수량은 현재 대비 21세기 전반기에 32.0mm, 중반기에 74.2mm, 후반기에 44.4mm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표 3.2 - 10> 서울 극한기후지수 전망

항목	현재기후값 2000-2019	SSP 시나리오	전반기 2021-2040	중반기 2041-2060	후반기 2081-2100	경향성 (10년 당)
폭염일수 (일)	15.0	SSP1-2.6	30.9 (+15.9)	37.7 (+22.7)	42.8 (+27.8)	3.22
		SSP5-8.5	33.4 (+18.4)	54.7 (+39.7)	109.8 (+94.8)	11.97
열대야일수 (일)	11.3	SSP1-2.6	33.9 (+22.6)	40.0 (+28.7)	41.8 (+30.5)	3.36
		SSP5-8.5	33.0 (+21.7)	51.1 (+39.8)	96.1 (+84.8)	10.54
여름일수 (일)	127.7	SSP1-2.6	140.4 (+12.7)	145.0 (+17.3)	150.4 (+22.7)	2.62
		SSP5-8.5	142.2 (+14.5)	157.4 (+29.7)	194.3 (+66.6)	8.37
한파일수 (일)	4.4	SSP1-2.6	3.9 (-0.5)	4.6 (+0.2)	2.0 (-2.4)	-0.28
		SSP5-8.5	2.6 (-1.8)	1.5 (-2.9)	0.0 (-4.4)	-0.53
호우일수 (일)	2.7	SSP1-2.6	3.1 (+0.4)	3.3 (+0.6)	3.4 (+0.7)	0.08
		SSP5-8.5	3.1 (+0.4)	3.3 (+0.6)	3.7 (+1.0)	0.12
강수강도 (mm/일)	16.9	SSP1-2.6	19.0 (+2.1)	19.2 (+2.3)	19.6 (+2.7)	0.24
		SSP5-8.5	18.6 (+1.7)	19.3 (+2.4)	20.5 (+3.6)	0.42
5일최다 강수량 (mm)	261.6	SSP1-2.6	323.0 (+61.4)	290.3 (+28.7)	329.2 (+67.6)	8.34
		SSP5-8.5	293.6 (+32.0)	335.8 (+74.2)	306.0 (+44.4)	5.40

자료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2022, 서울특별시

라. 기후 변화 취약성 평가

1) 물관리

가) 집중호우로 인한 돌발홍수 발생 등 홍수 발생 및 피해 증가

◦ 서울의 서남권, 동남권 등 한강 이남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40년 이후부터는 강서구, 양천구, 마포구, 영등포구 등 서울시 한강 하류에 인접한 지역의 취약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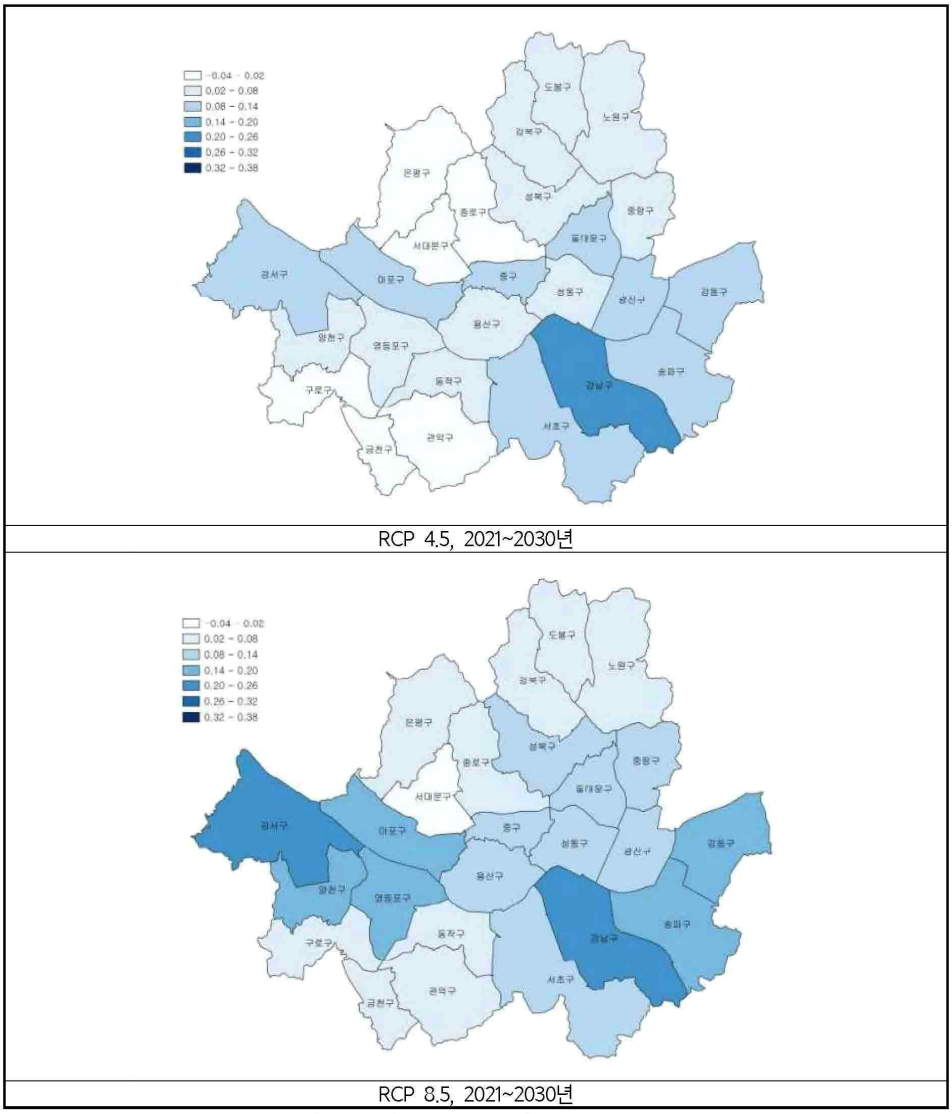

RCP 4.5, 2021~2030년

RCP 8.5, 2021~2030년

(그림 3.2 - 20) 집중호우로 인한 돌발홍수 발생 등 홍수 발생 및 피해 증가 취약성평가 결과_(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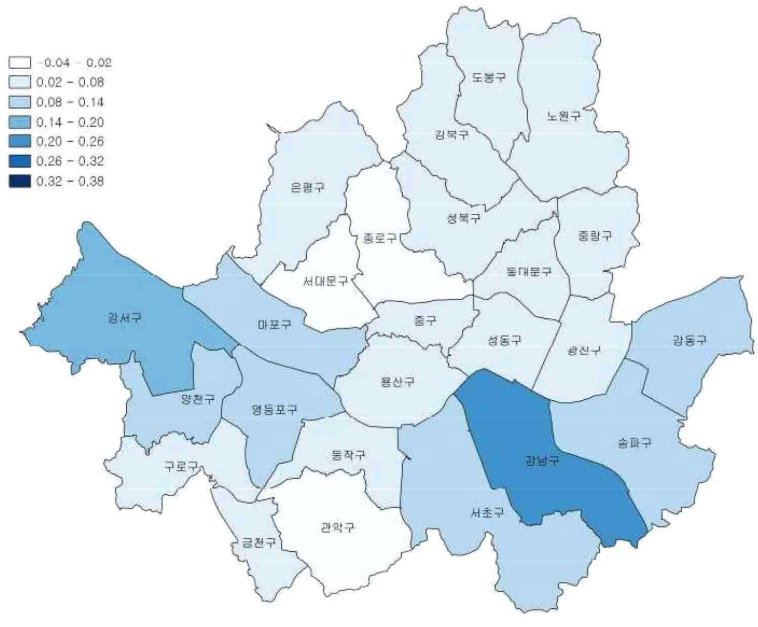

RCP 4.5, 2031~204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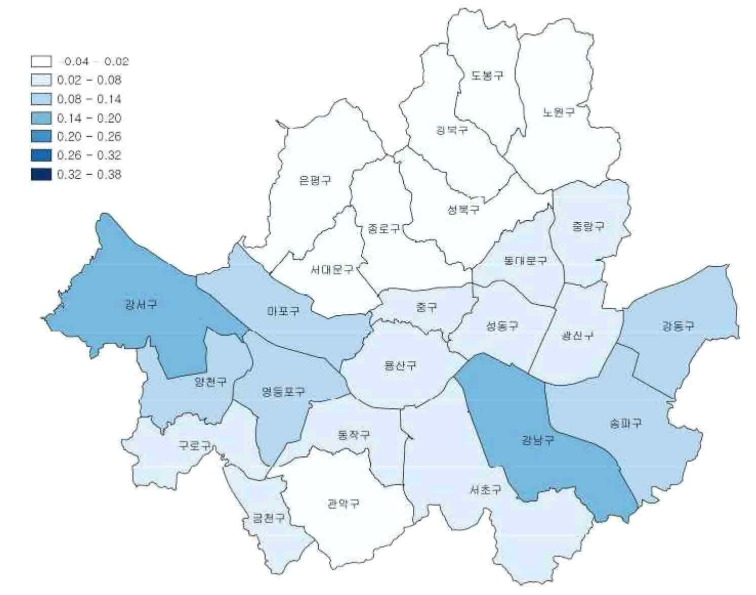

RCP 8.5, 2031~2040년

(그림 3.2 - 21) 집중호우로 인한 돌발홍수 발생 등 홍수 발생 및 피해 증가 취약성평가 결과_(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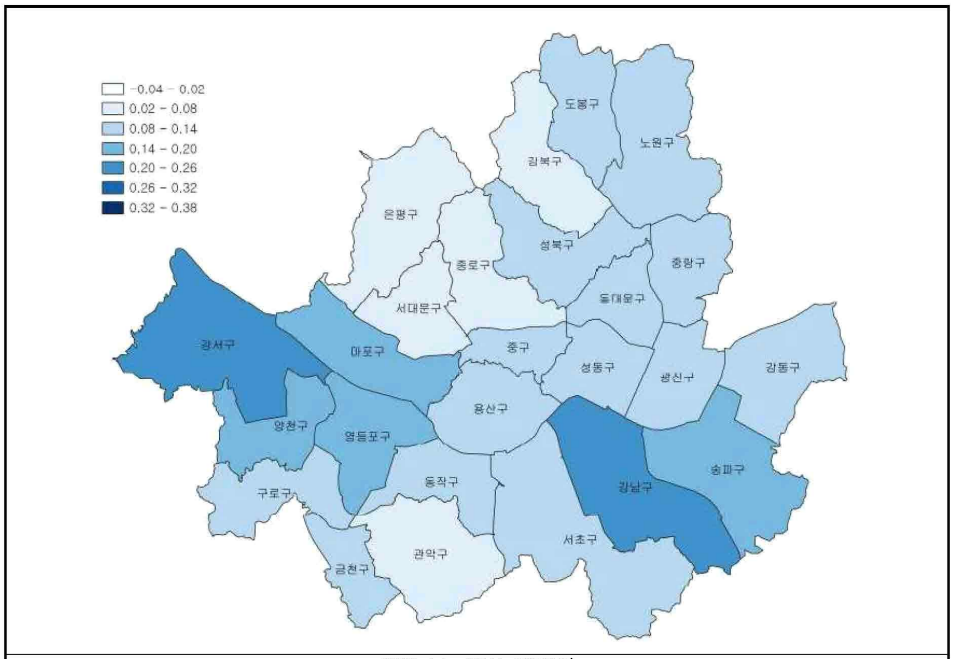

RCP 4.5, 2041~20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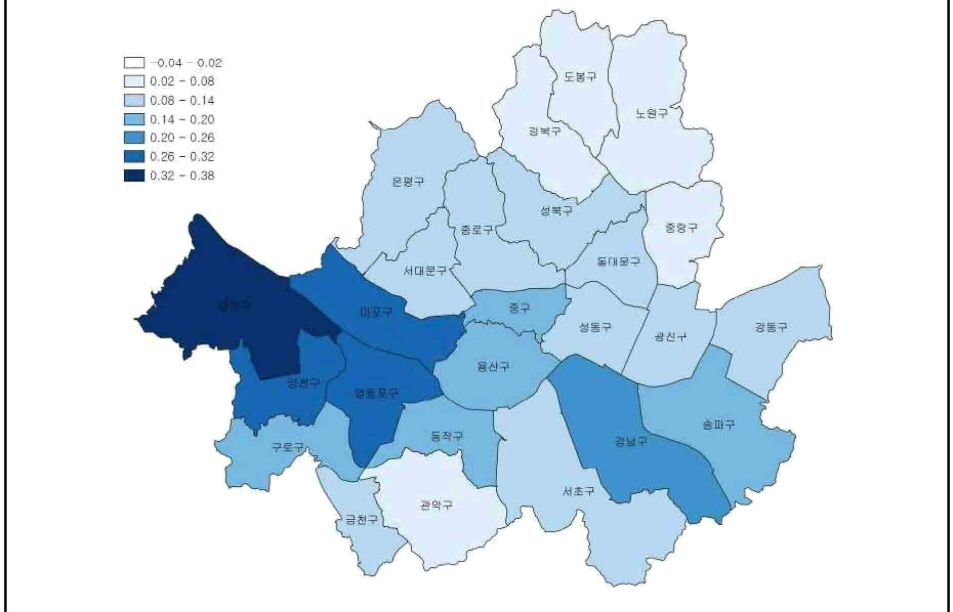

RCP 8.5, 2041~2050년

(그림 3.2 - 22) 집중호우로 인한 돌발홍수 발생 등 홍수 발생 및 피해 증가 취약성평가 결과_(3)

나) 집중호우로 인한 물관리 시설물 취약성 증가

◦ 서울의 한강변 도심권에서 취약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30년 이후부터 서울시 한강 하류 지역의 취약성이 취약성이 점차 증가하여 2040년 이후에는 한강하류, 홍제천하류, 안양천하류지역 등 서남권의 취약성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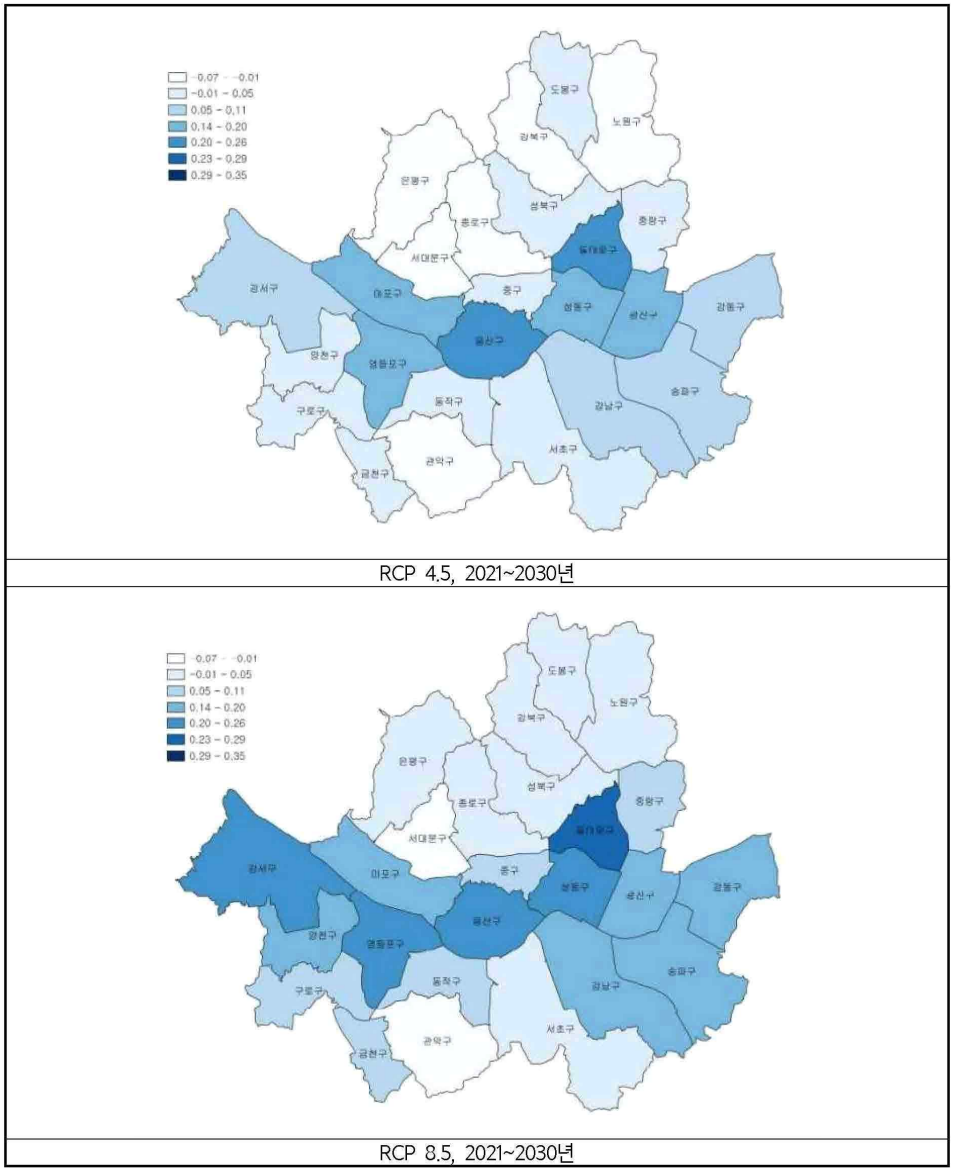

RCP 4.5, 2021~2030년

RCP 8.5, 2021~2030년

(그림 3.2 - 23) 집중호우로 인한 물관리 시설물 취약성 증가 취약성평가 결과_(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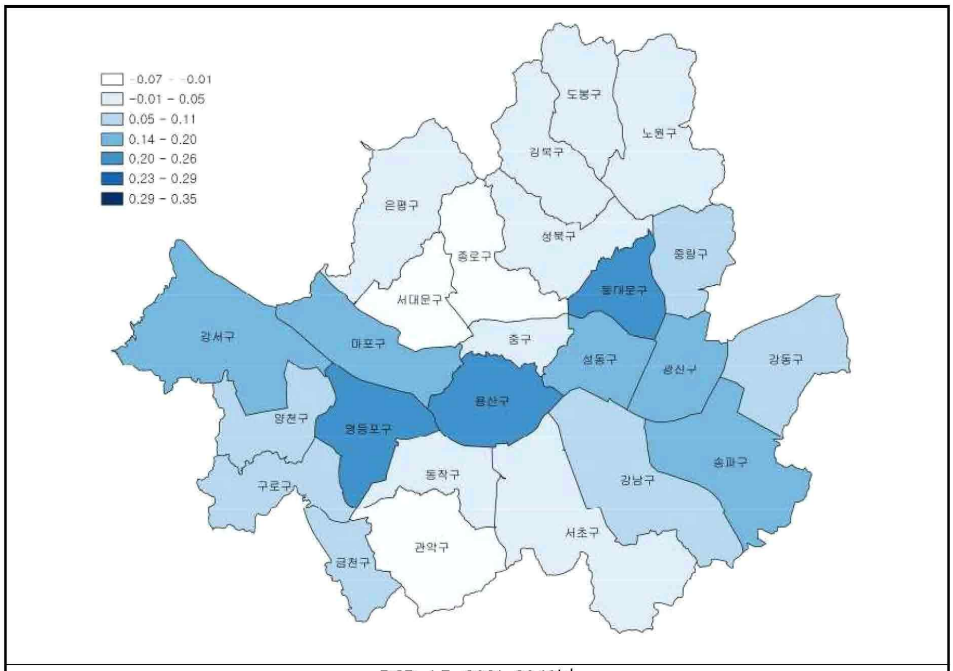

RCP 4.5, 2031~204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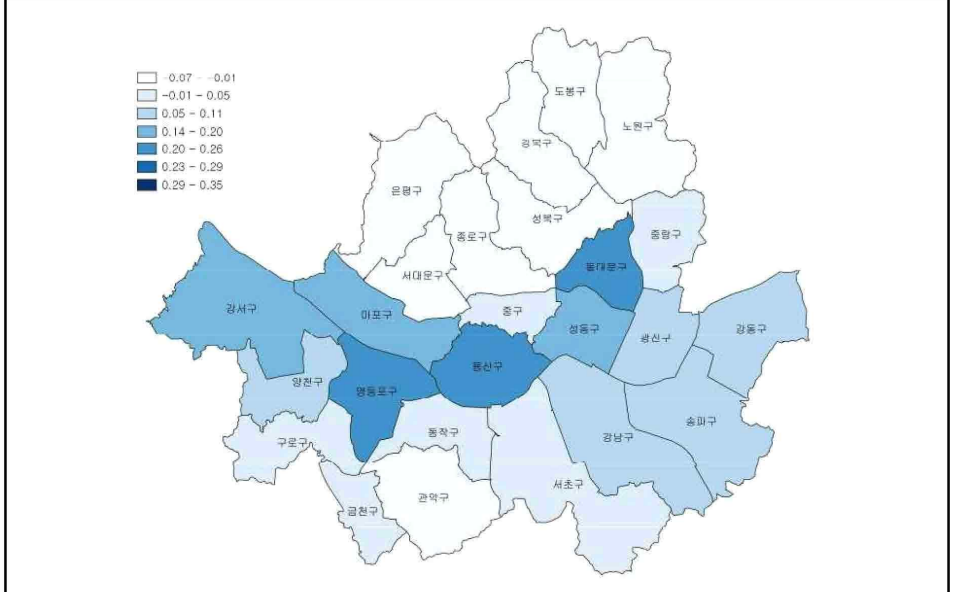

RCP 8.5, 2031~2040년

(그림 3.2 - 24) 집중호우로 인한 물관리 시설물 취약성 증가 취약성평가 결과_(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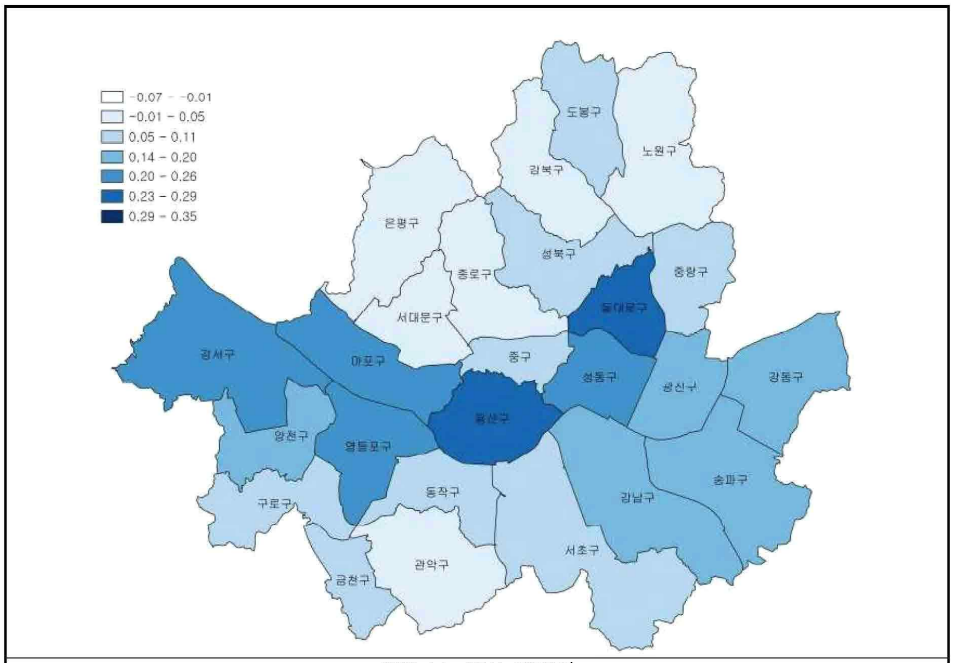

RCP 4.5, 2041~20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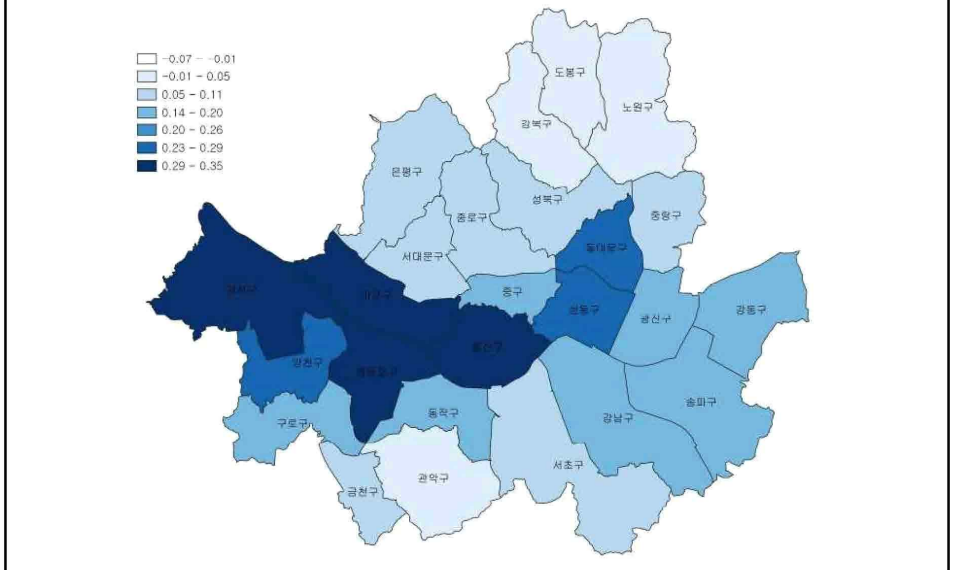

RCP 8.5, 2041~2050년

(그림 3.2 - 25) 집중호우로 인한 물관리 시설물 취약성 증가 취약성평가 결과_(3)

다) 유역내 물의 자연적인 순환의 균형 훼손

◦ 전반적으로 한강변에 위치한 도심권에서 취약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30년 이후 탄천 하류지역, 중랑천 하류지역, 안양천 하류지역 등 주요 지류하천의 하류지역에 위치하고 불투수율 및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취약성이 점차 증가하여 2040년 이후에는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동대문구의 취약성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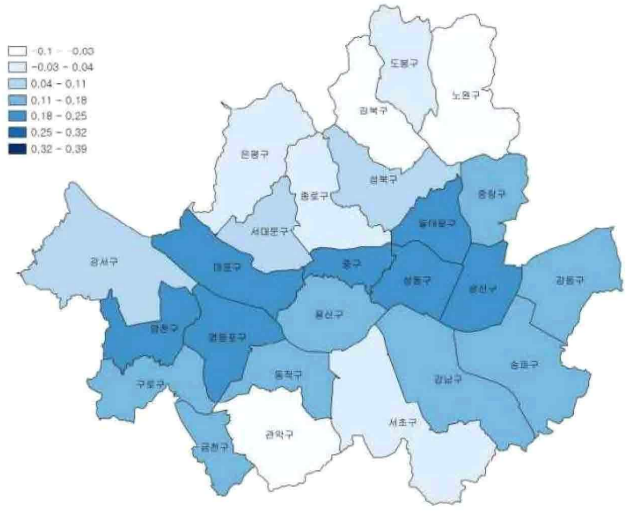

RCP 4.5, 2021~20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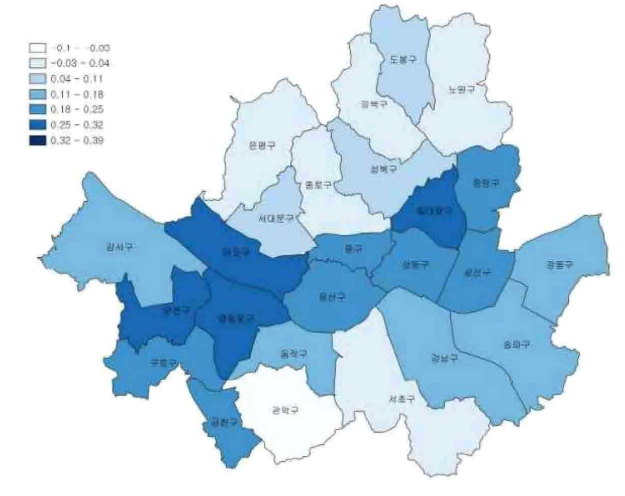

RCP 8.5, 2021~2030년

(그림 3.2 - 26) 유역내 물의 자연적인 순환의 균형 훼손 취약성평가 결과_(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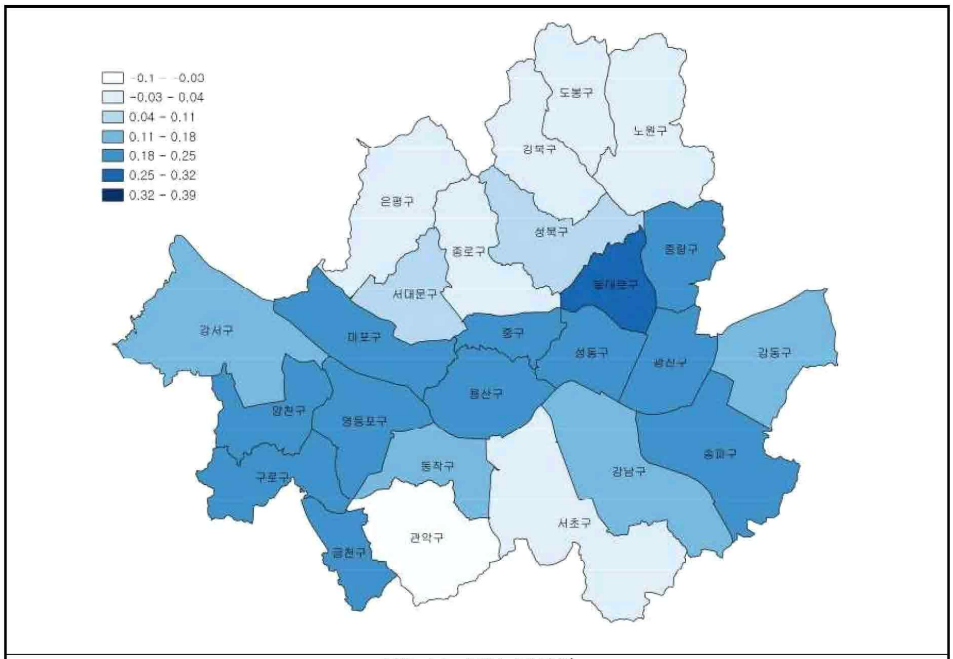

RCP 4.5, 2031~204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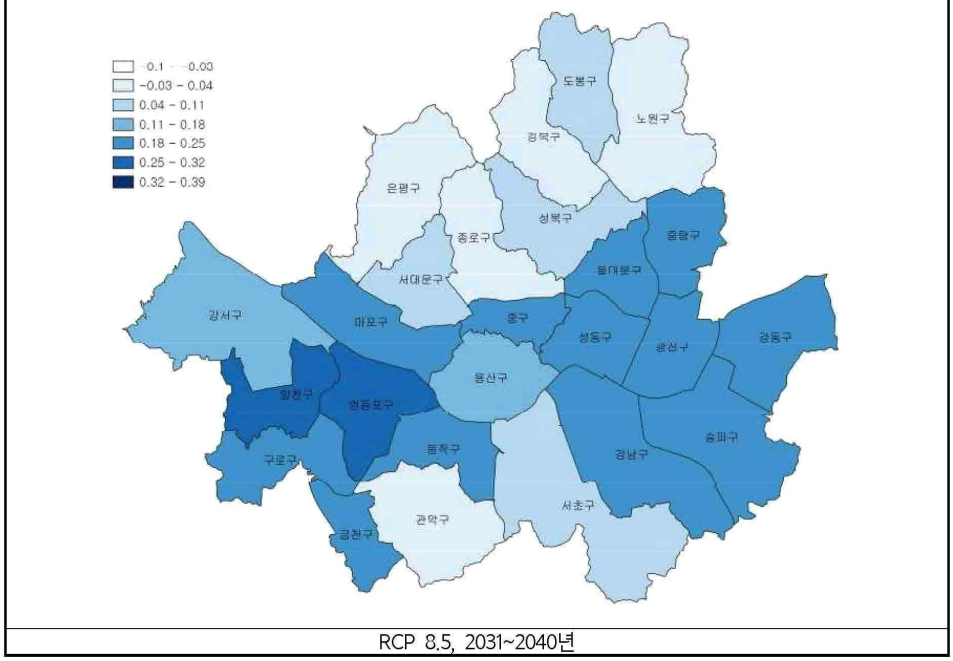

RCP 8.5, 2031~2040년

(그림 3.2 - 27) 유역내 물의 자연적인 순환의 균형 훼손 취약성평가 결과_(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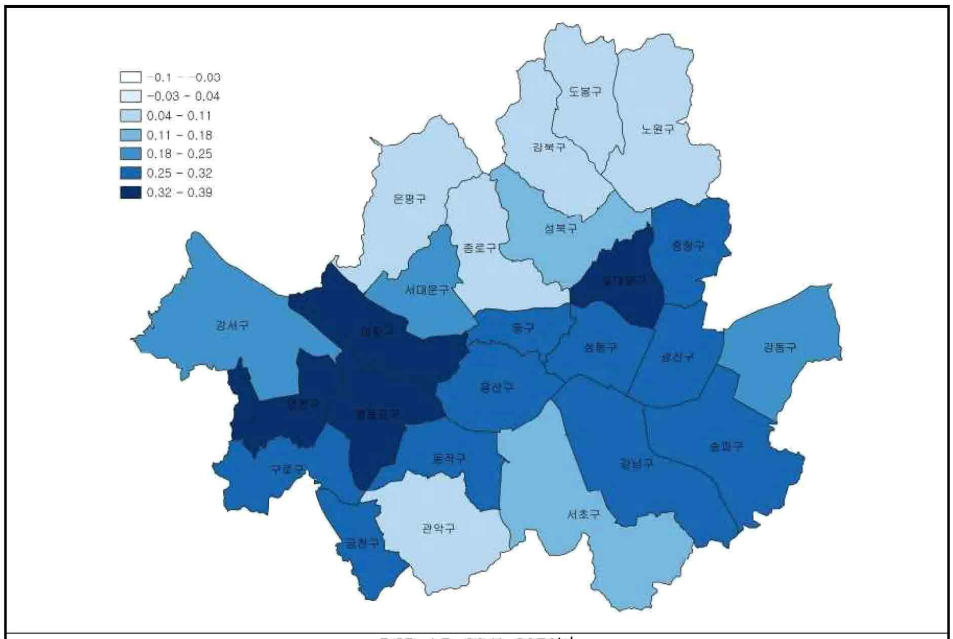

RCP 4.5, 2041~20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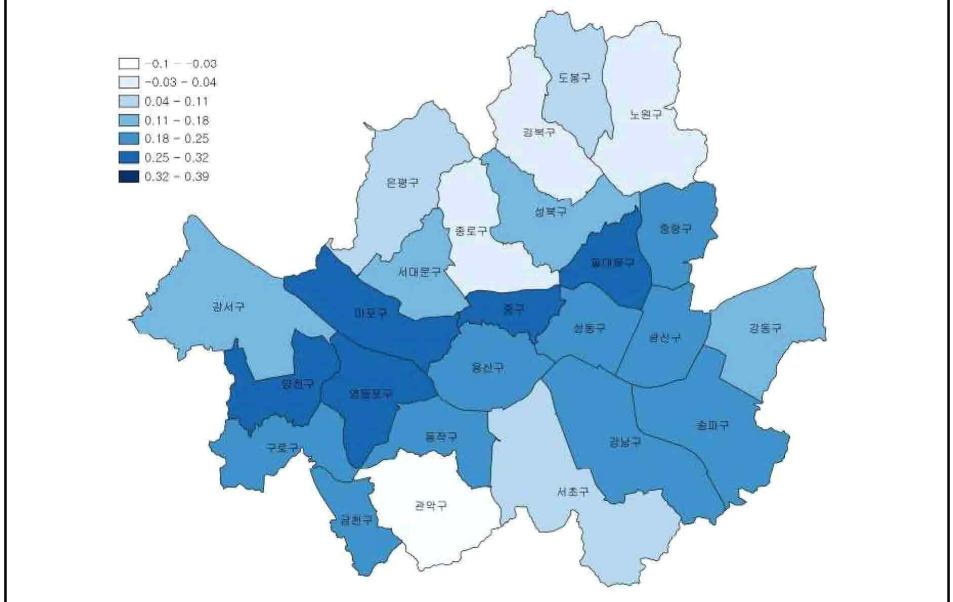

RCP 8.5, 2041~2050년

(그림 3.2 - 28) 유역내 물의 자연적인 순환의 균형 훼손 취약성평가 결과_(3)

라) 수온상승과 폭우시 비점오염물의 유입으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 악화

◦ 한강변에 위치한 지역의 취약성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40년 이후에는 한강하류를 포함한 안양천 하류, 홍제천 하류에서 취약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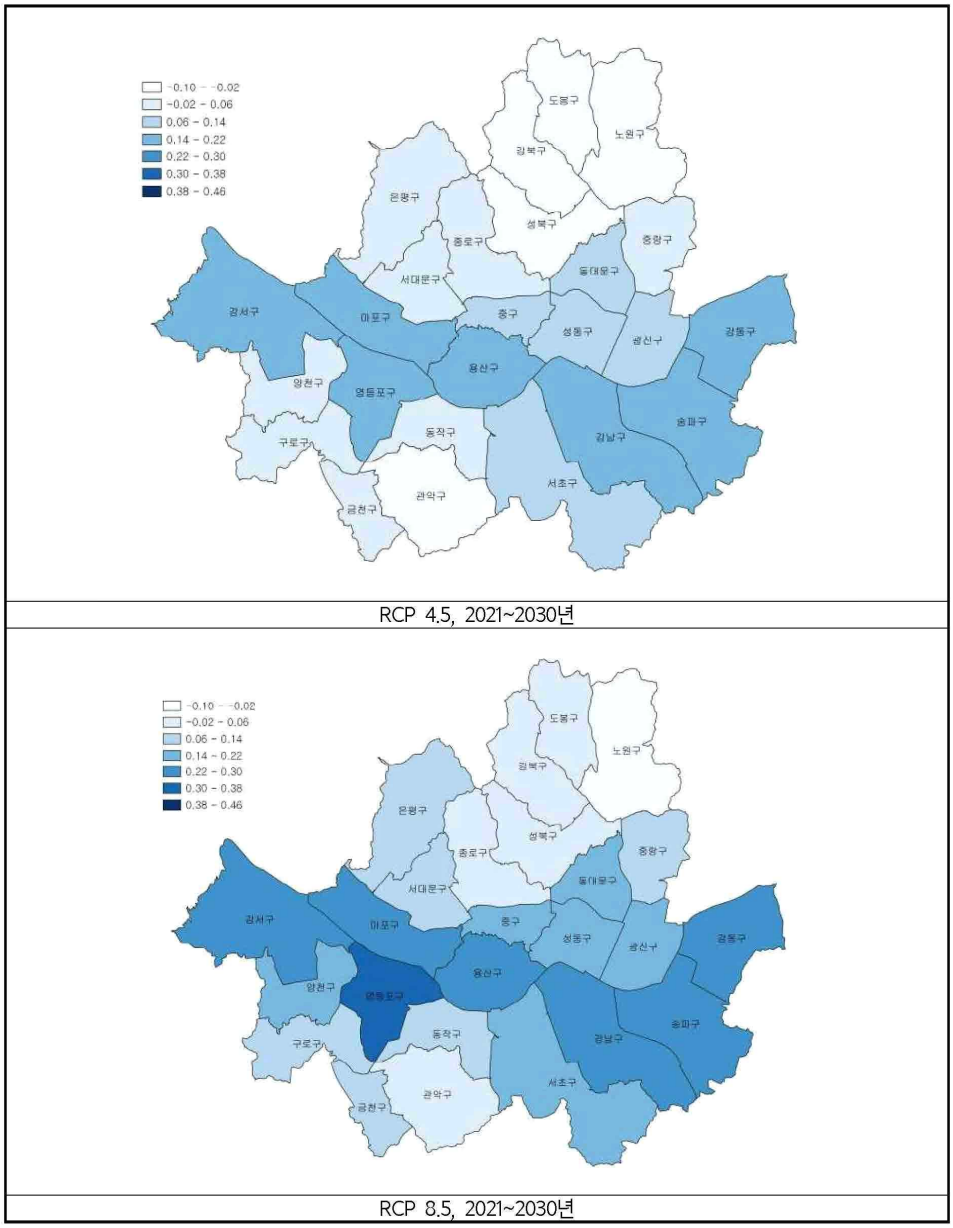

RCP 4.5, 2021~2030년

RCP 8.5, 2021~2030년

(그림 3.2 - 29) 수온상승과 폭우시 비점오염물의 유입으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 악화 취약성평가 결과_(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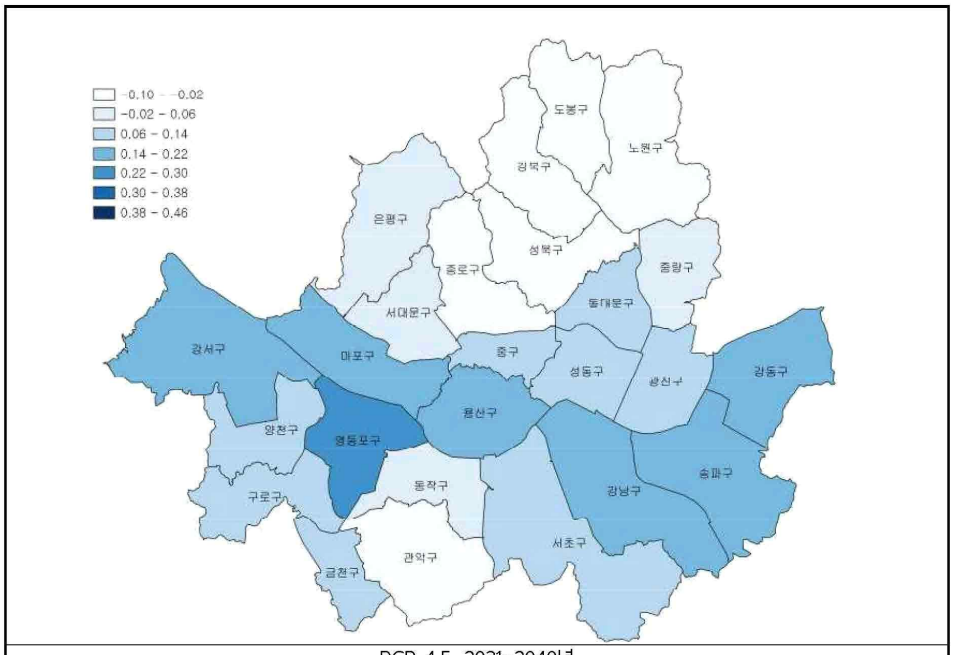

RCP 4.5, 2031~204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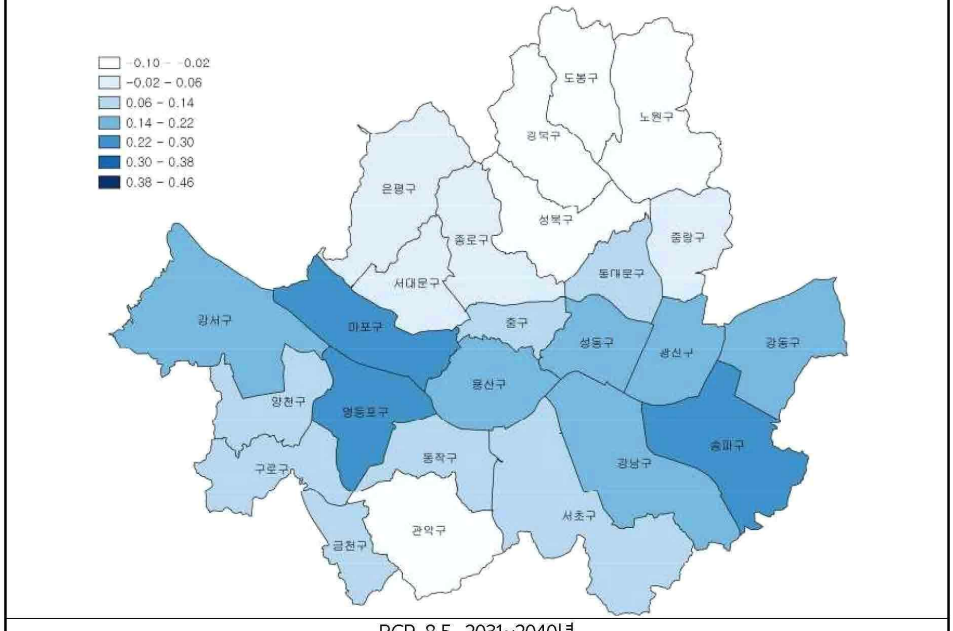

RCP 8.5, 2031~2040년

(그림 3.2 - 30) 수온상승과 폭우시 비점오염물의 유입으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 악화 취약성평가 결과_(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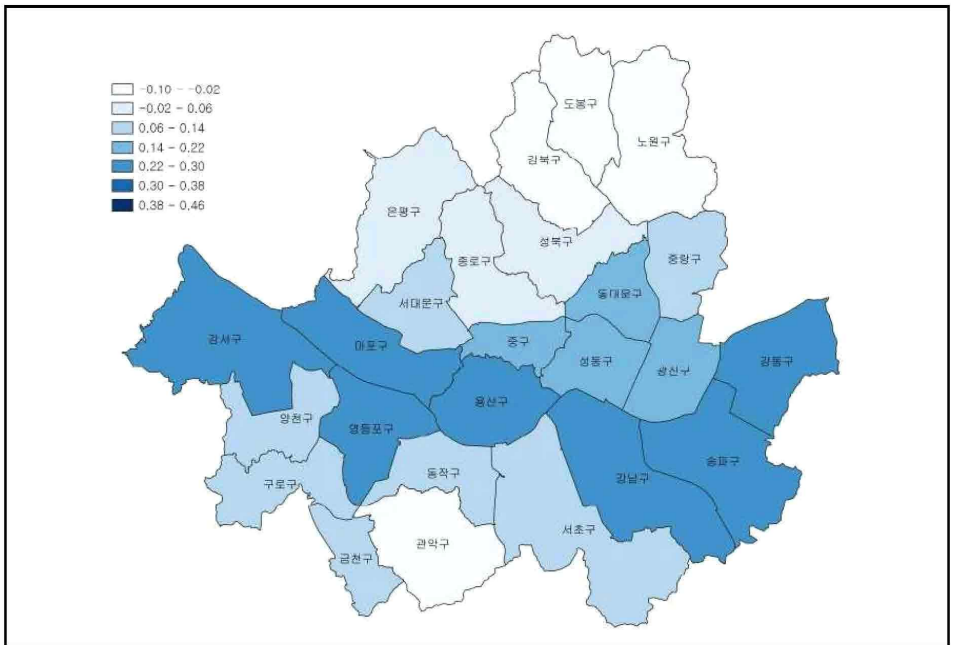

RCP 4.5, 2041~20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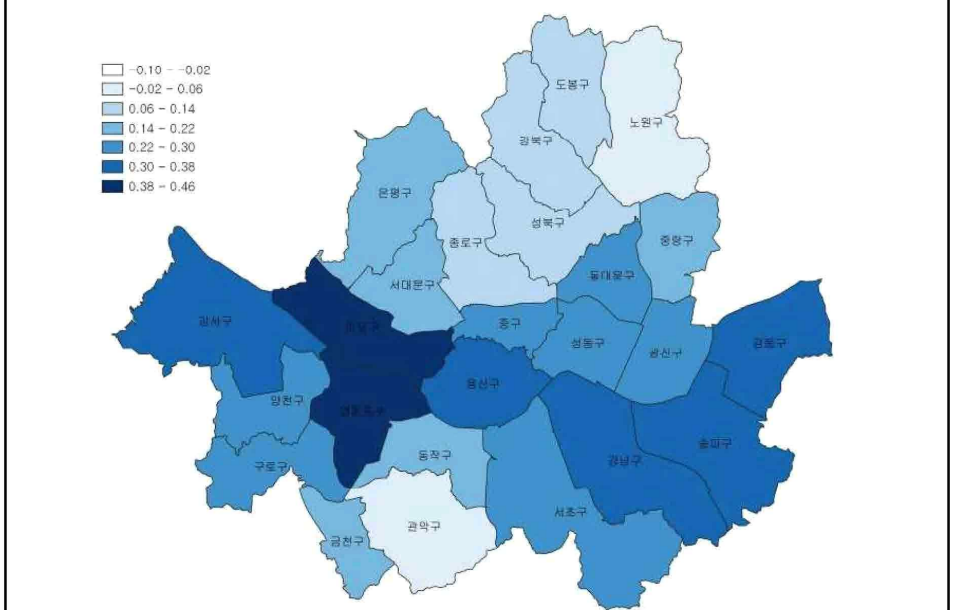

RCP 8.5, 2041~2050년

(그림 3.2 - 31) 수온상승과 폭우시 비점오염물의 유입으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 악화 취약성평가 결과_(3)

마) 집중호우시 하천으로 유입되는 재난폐기물의 증가 및 악취발생

◦ 탄천하류와 안양천하류, 중랑천하류 등 주요 지류하천 하류에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취약성이 점차 증가하여, 2040년 이후에는 한강 하류지역의 강서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에서의 취약성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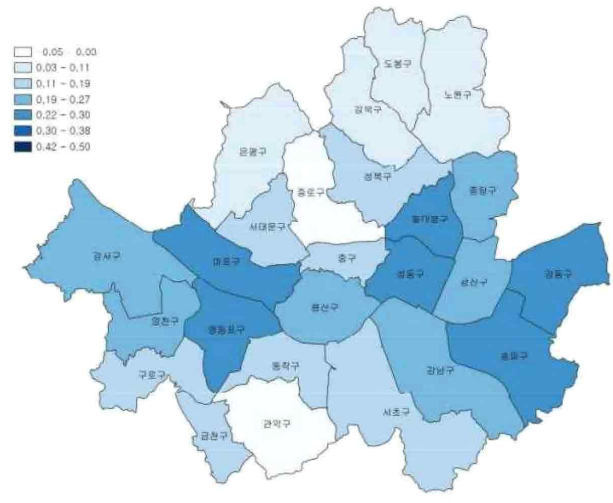

RCP 4.5, 2021~20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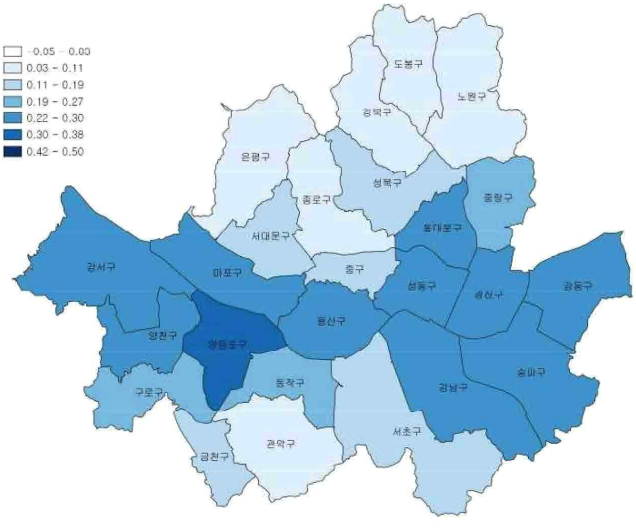

RCP 8.5, 2021~2030년

(그림 3.2 - 32) 집중호우시 하천으로 유입되는 재난폐기물의 증가 및 악취발생 취약성평가 결과_(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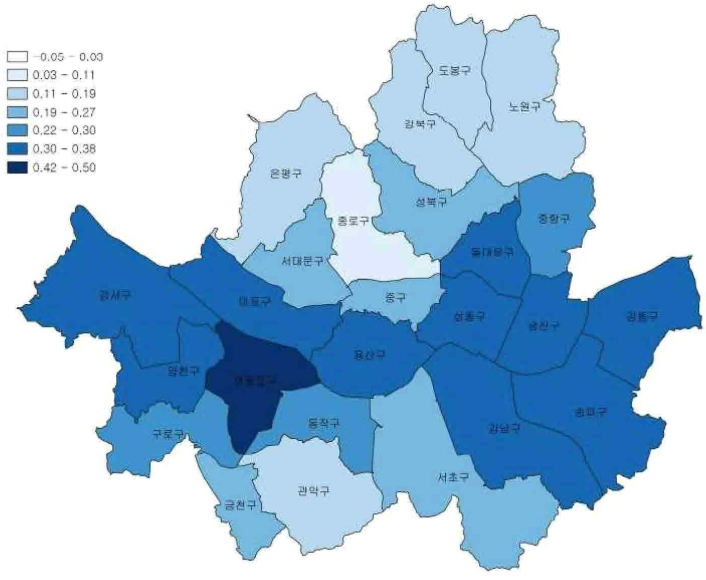

RCP 4.5, 2031~204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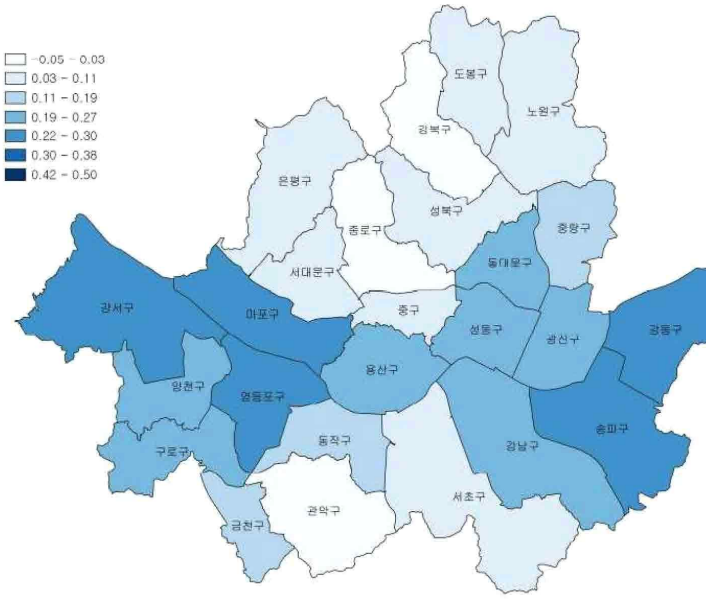

RCP 8.5, 2031~2040년

(그림 3.2 - 33) 집중호우시 하천으로 유입되는 재난폐기물의 증가 및 악취발생 취약성평가 결과_(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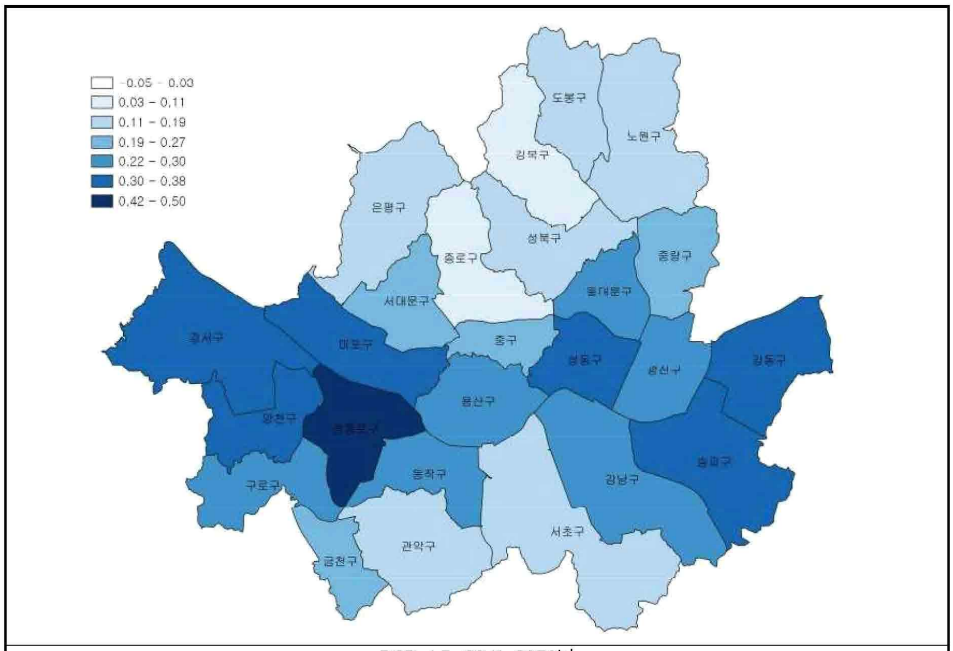

RCP 4.5, 2041~20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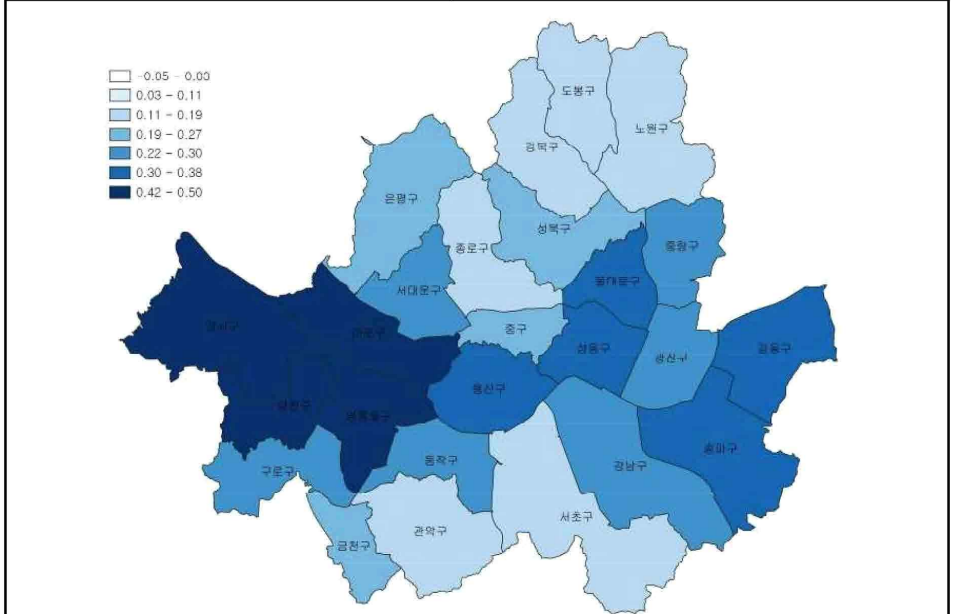

RCP 8.5, 2041~2050년

(그림 3.2 - 34) 집중호우시 하천으로 유입되는 재난폐기물의 증가 및 악취발생 취약성평가 결과_(3)

2) 산림·생태계

가)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종(동물) 및 개체수 변화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출현빈도가 높은 마포, 강남, 강북, 강동구 등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 미래 기후변화에 의해 서울시 동부지역에서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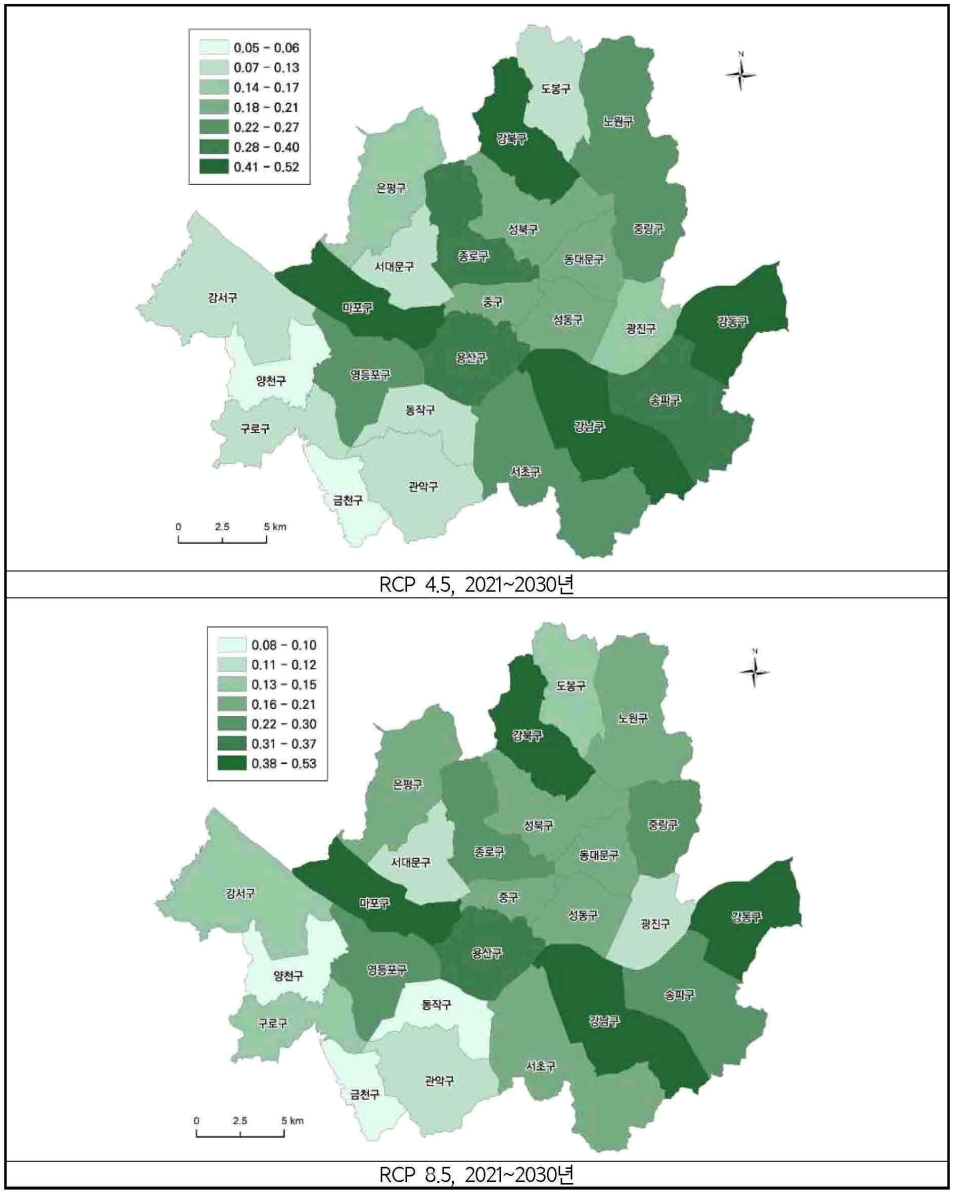

(그림 3.2 - 35)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종(동물) 및 개체수 변화 취약성평가 결과_(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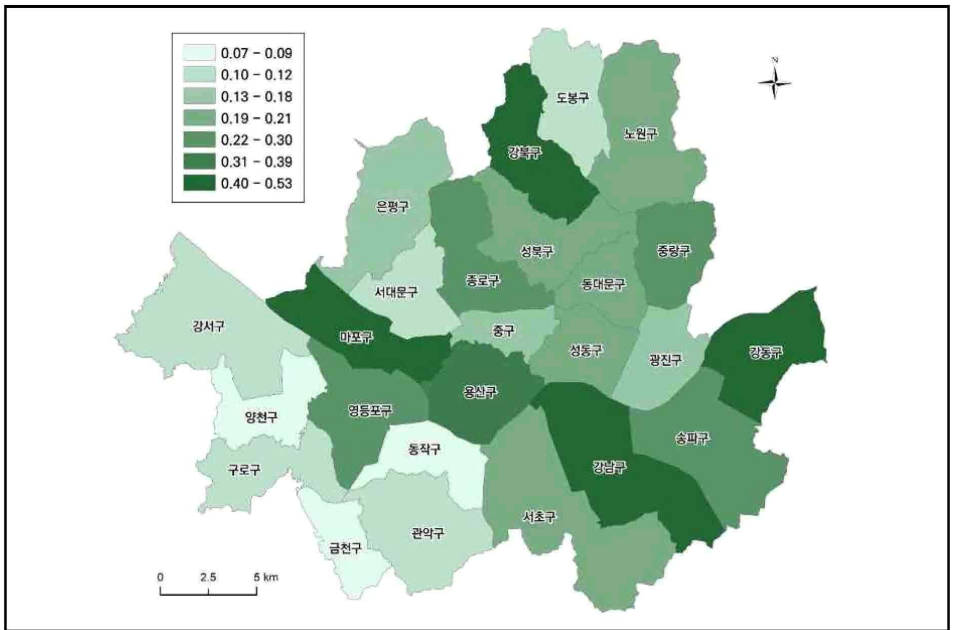

RCP 4.5, 2031~204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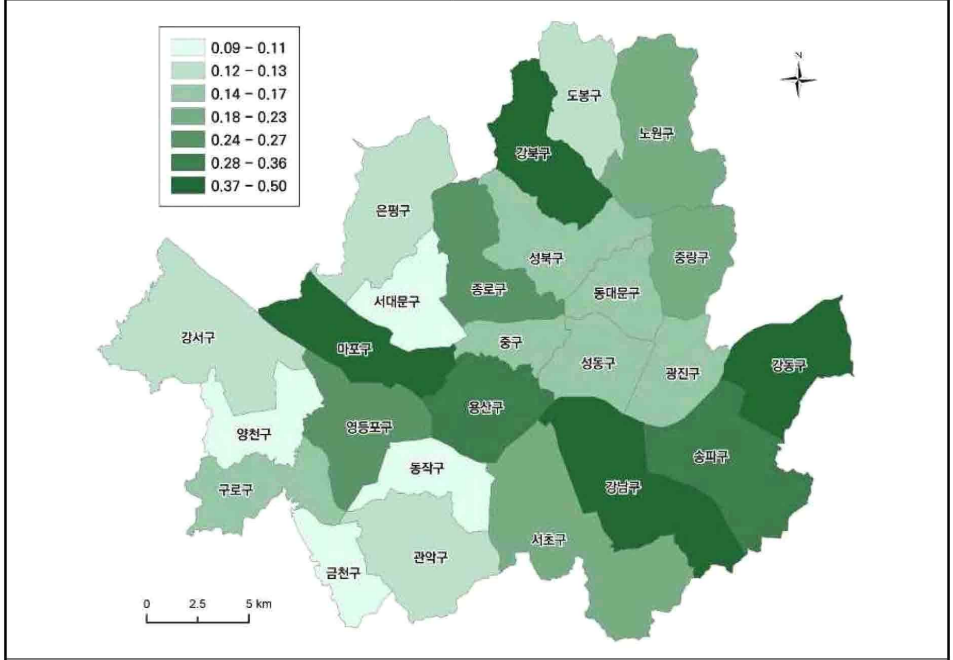

RCP 8.5, 2031~2040년

(그림 3.2 – 36)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종(동물) 및 개체수 변화 취약성평가 결과_(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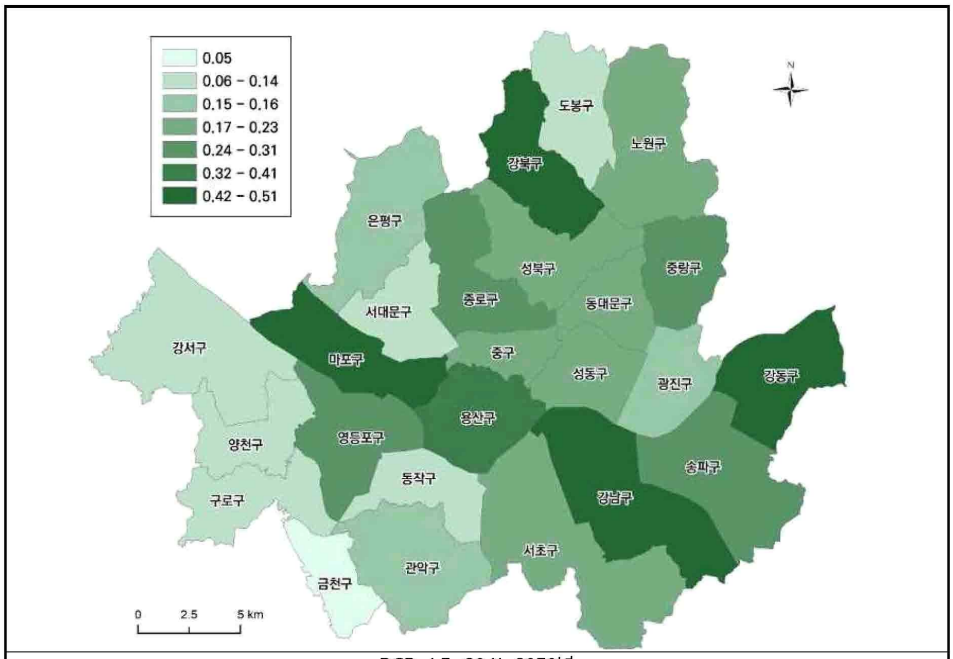

RCP 4.5, 2041~20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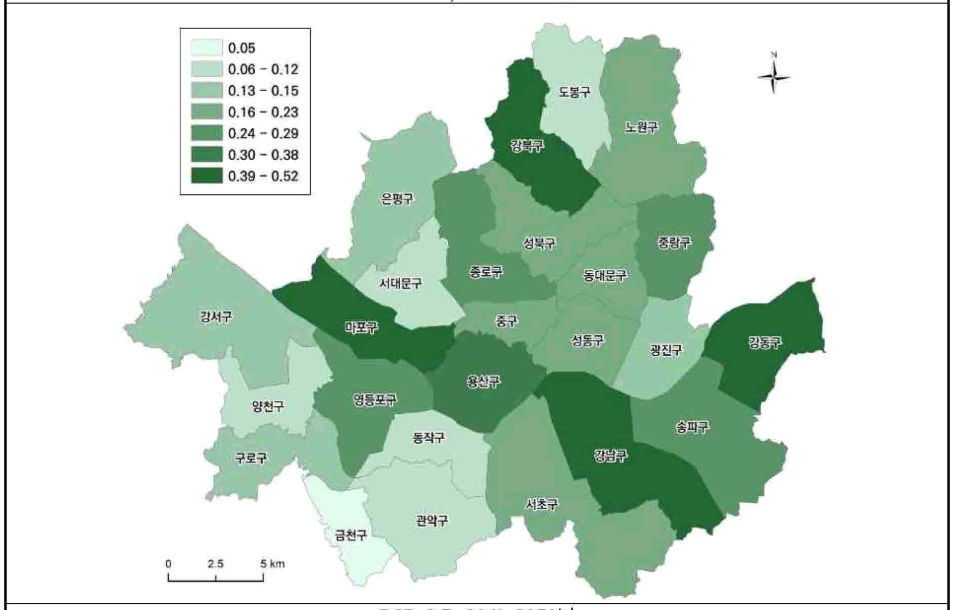

RCP 8.5, 2041~2050년

(그림 3.2 - 37)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종(동물) 및 개체수 변화 취약성평가 결과_(3)

나)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증가(생물종 돌발 대발생 고려)

◦ 산림면적이 상대적으로 큰 은평, 노원, 서초구 등에서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 미래 기후변화에 의해 강북대비 강남지역의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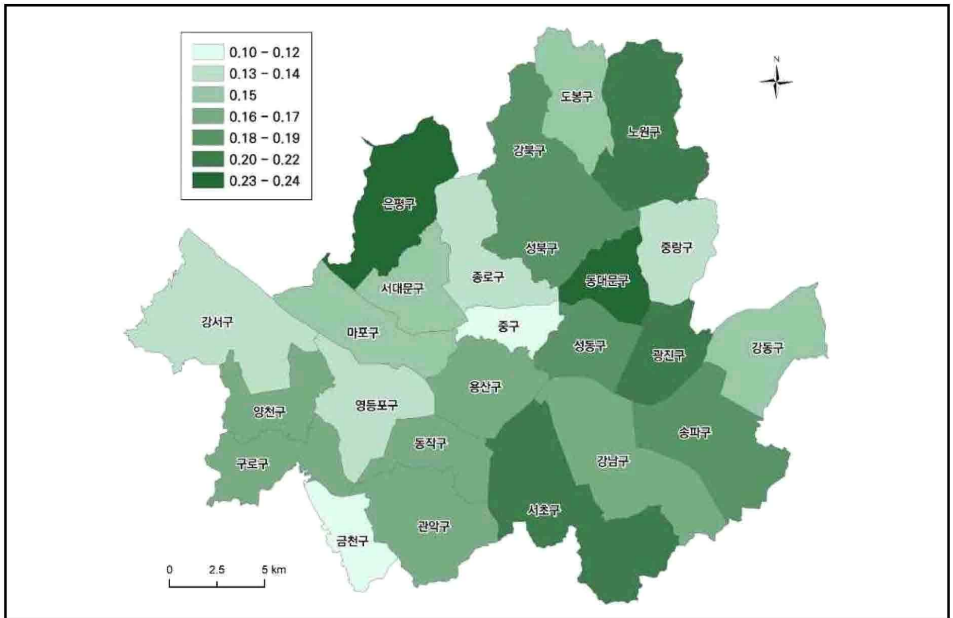

RCP 4.5, 2021~20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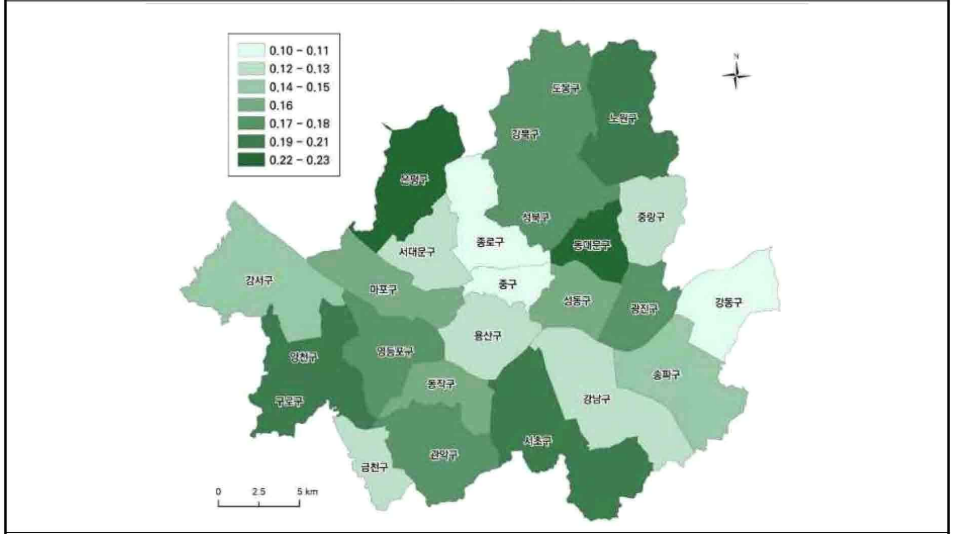

RCP 8.5, 2021~2030년

(그림 3.2 – 38)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증가(생물종 돌발 대발생 고려) 결과_(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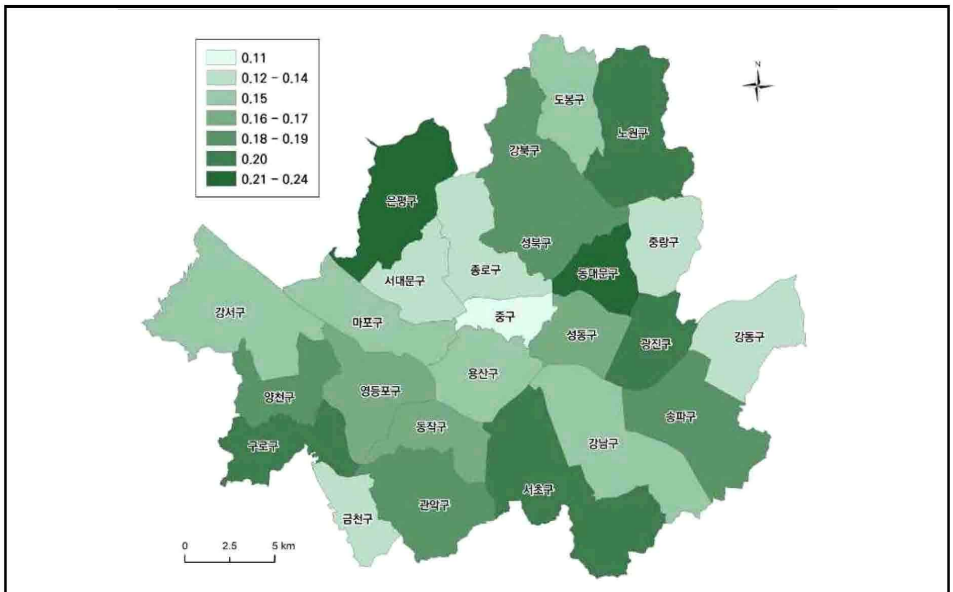

RCP 4.5, 2031~204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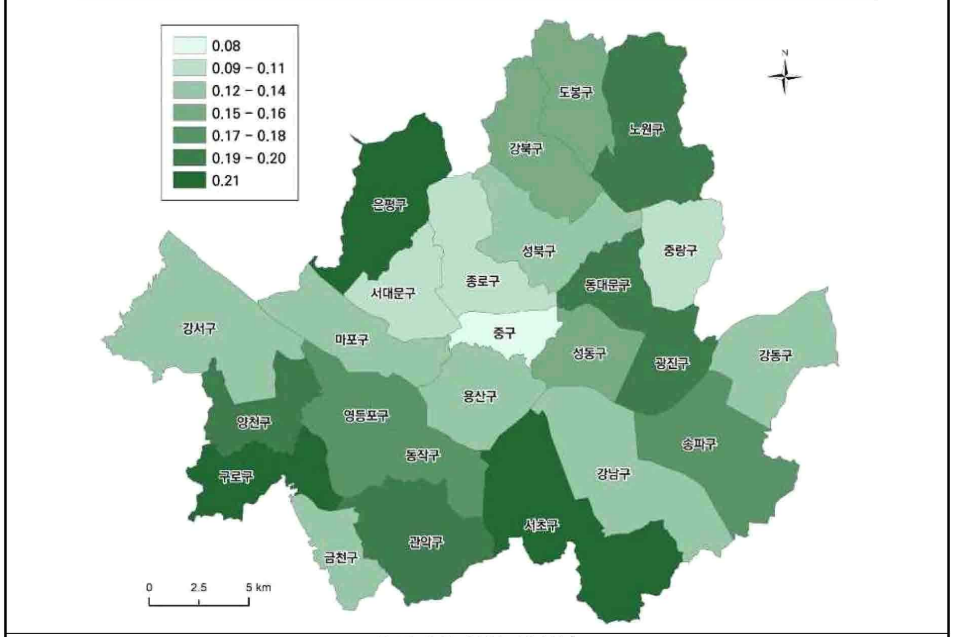

RCP 8.5, 2031~2040년

(그림 3.2 - 39)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증가(생물종 돌발 대발생 고려) 취약성평가 결과_(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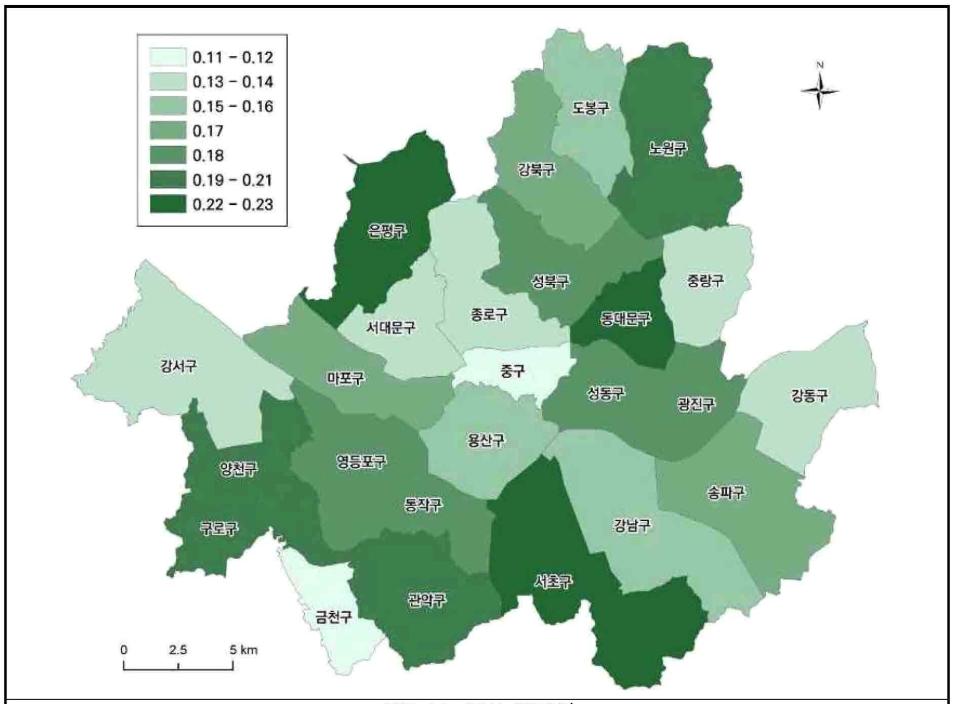

RCP 4.5, 2041~20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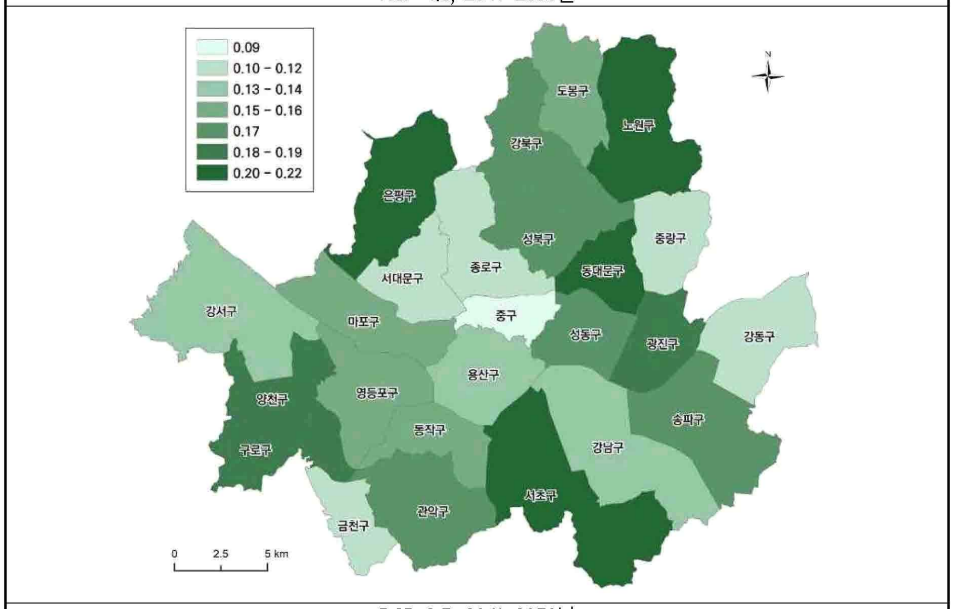

RCP 8.5, 2041~2050년

(그림 3.2 – 40)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증가(생물종 돌발 대발생 고려) 취약성평가 결과_(3)

3) 건강

가) 기온상승에 의한 매개체 질환 증가

◦ 서울 동북, 동남권의 취약도가 높게 분포하며, 기후노출값 자체가 높게 나타나고, 적응능력에 비해 민감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고취약도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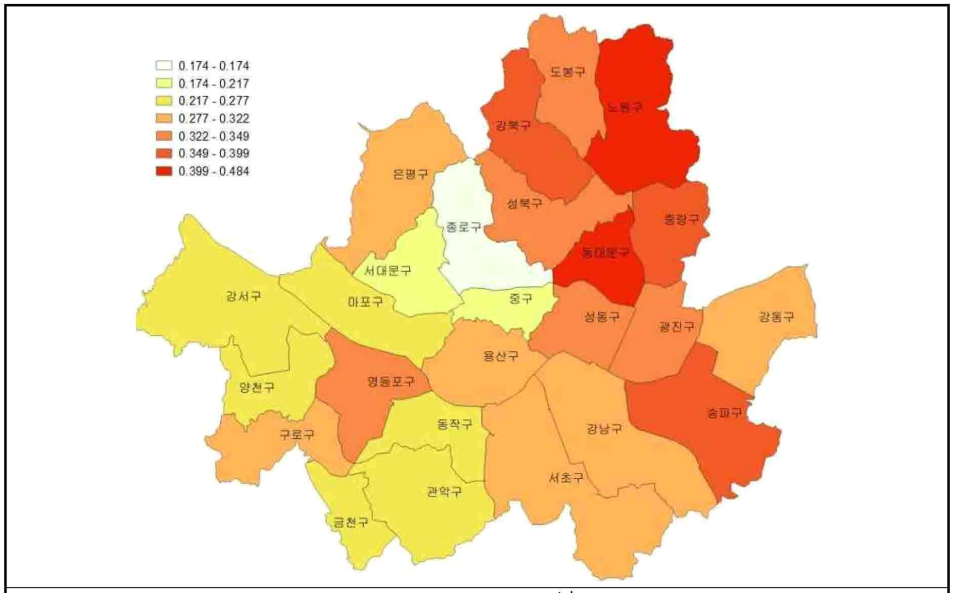

RCP 4.5, 2021~20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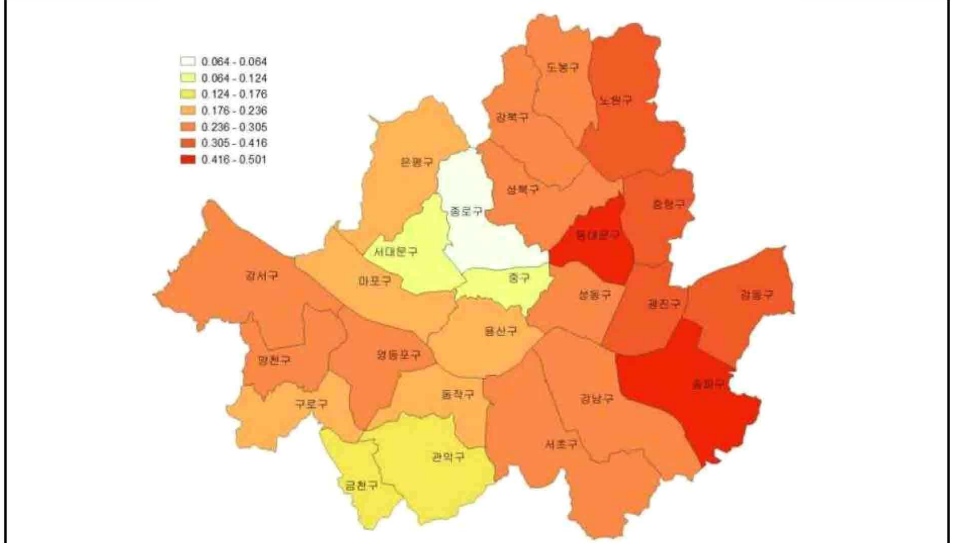

RCP 8.5, 2021~2030년

(그림 3.2 - 41) 기온상승에 의한 매개체 질환 증가 취약성평가 결과_(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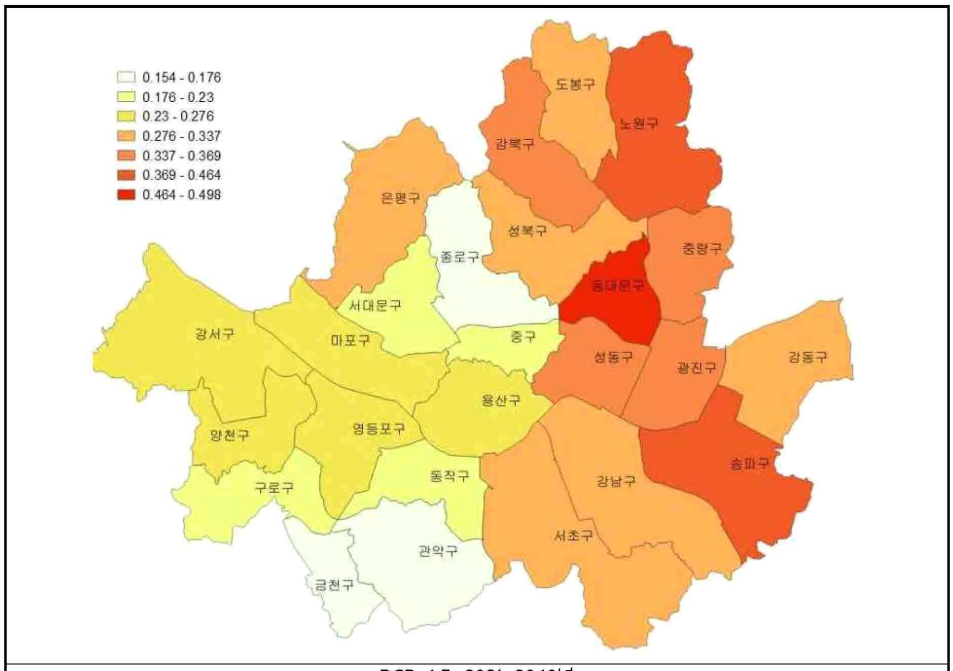

RCP 4.5, 2031~204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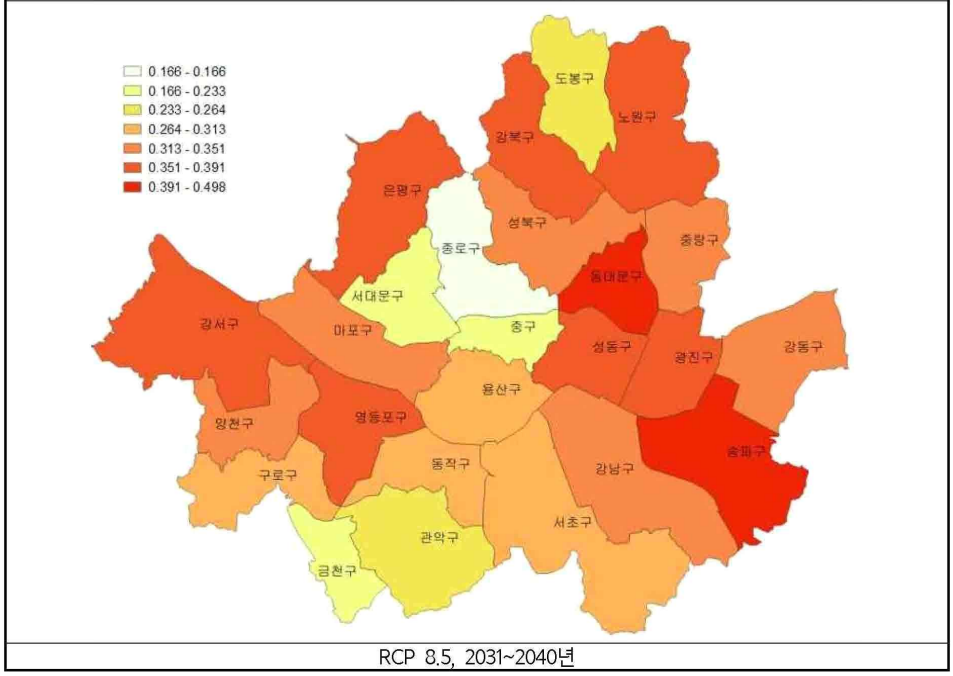

RCP 8.5, 2031~2040년

(그림 3.2 - 42) 기온상승에 의한 매개체 질환 증가 취약성평가 결과_(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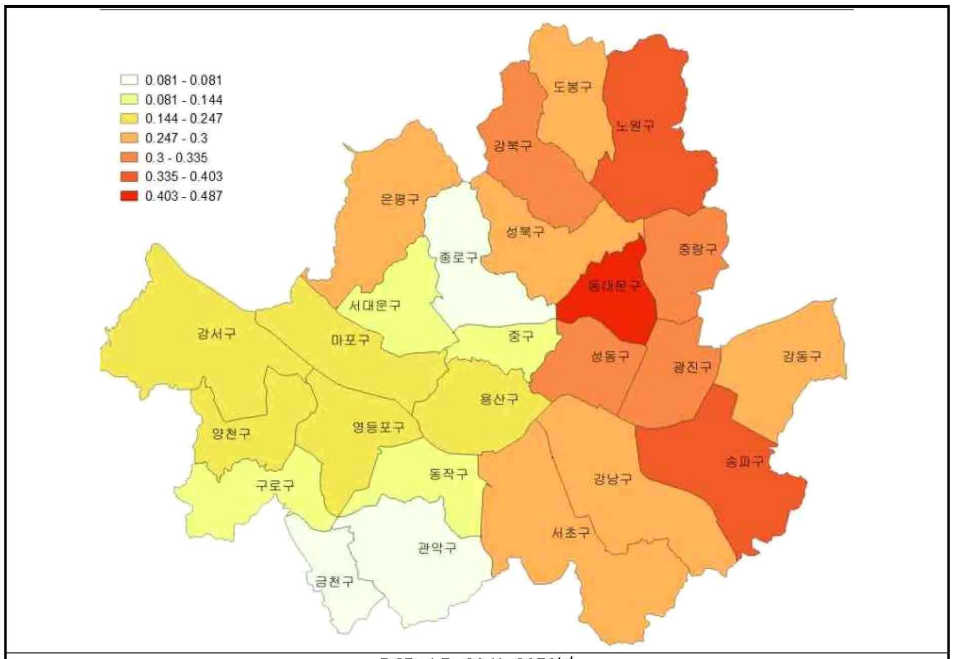

RCP 4.5, 2041~20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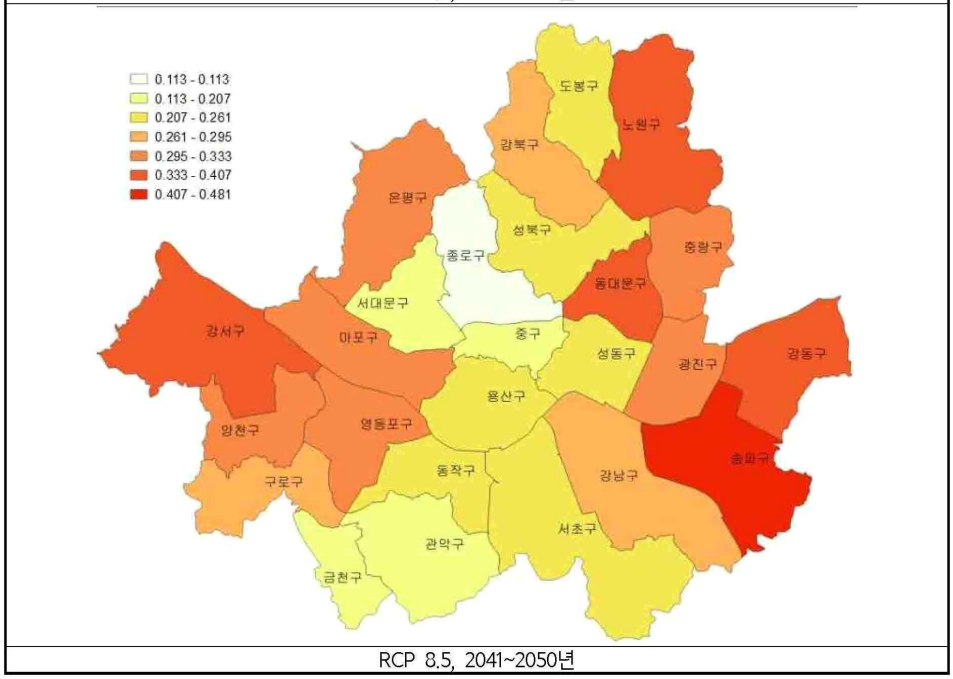

RCP 8.5, 2041~2050년

(그림 3.2 - 43) 기온상승에 의한 매개체 질환 증가 취약성평가 결과_(3)

나) 기온상승에 의한 수인성 질환 증가

◦ 서울 동북, 서부권의 취약도가 높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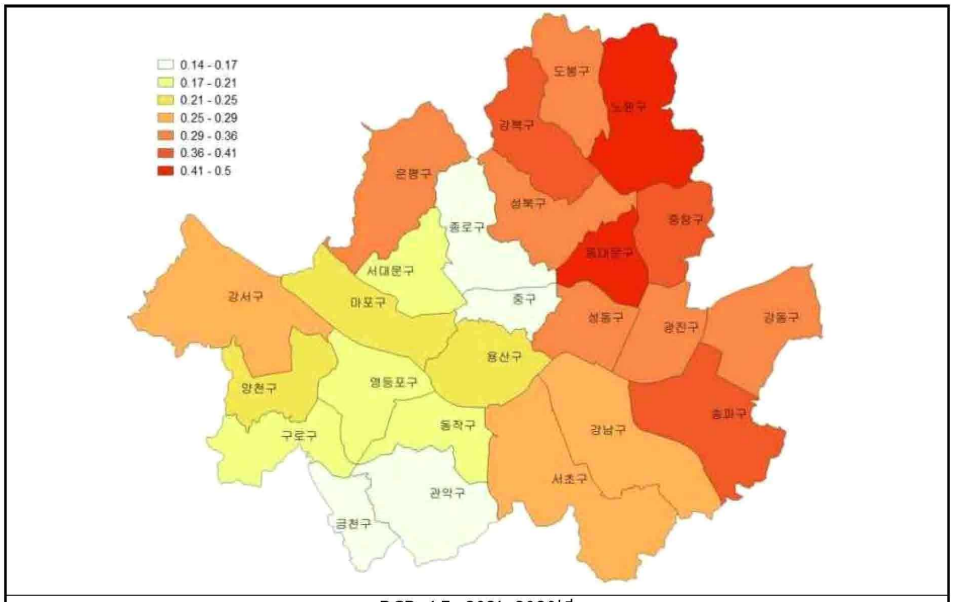

RCP 4.5, 2021~20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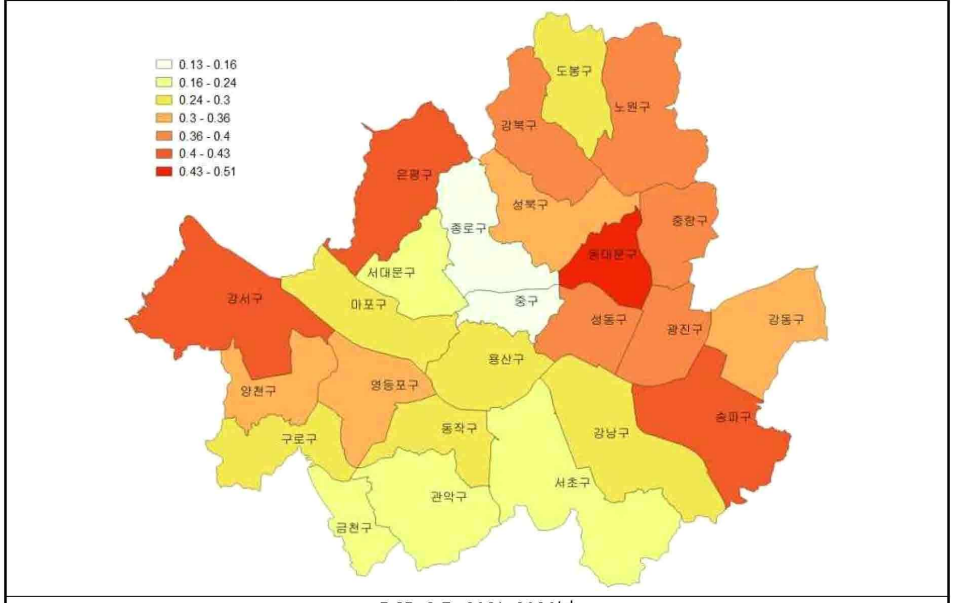

RCP 8.5, 2021~2030년

(그림 3.2 - 44) 기온상승에 의한 수인성 질환 증가 취약성평가 결과_(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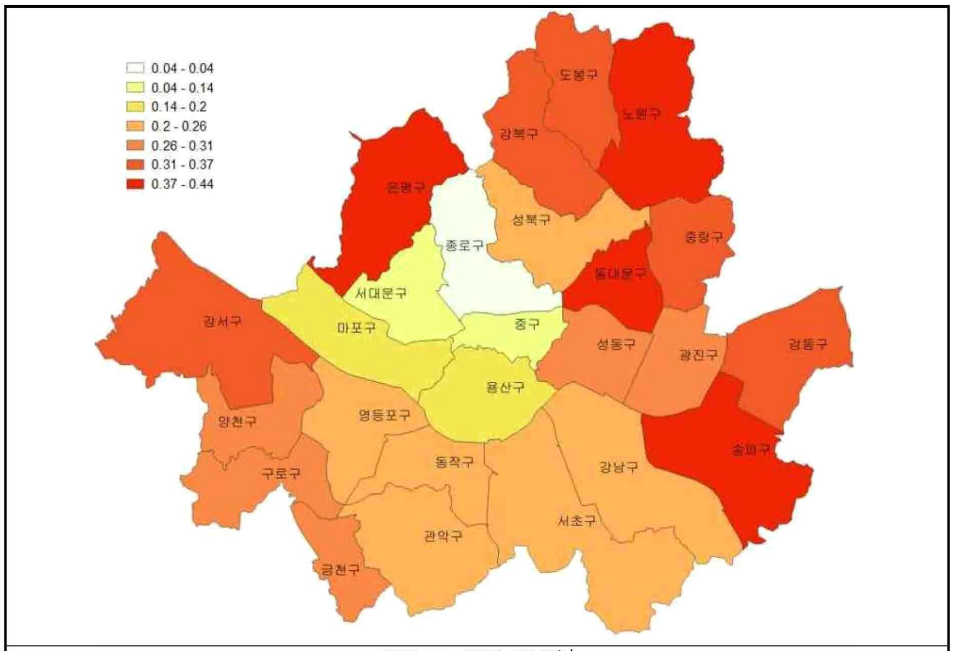

RCP 4.5, 2031~204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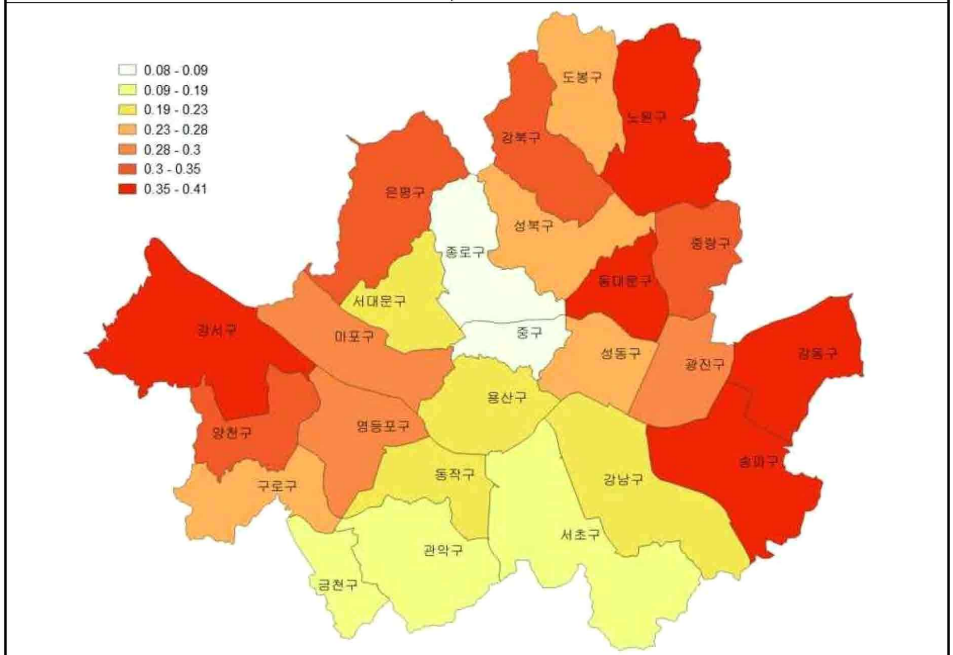

RCP 8.5, 2031~2040년

(그림 3.2 - 45) 기온상승에 의한 수인성 질환 증가 취약성평가 결과_(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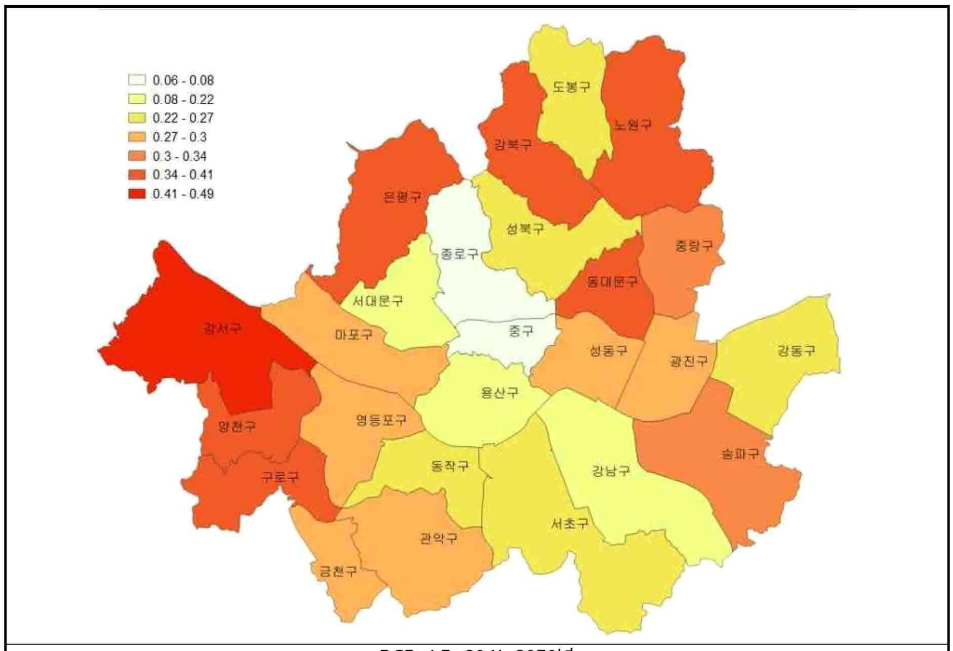

RCP 4.5, 2041~20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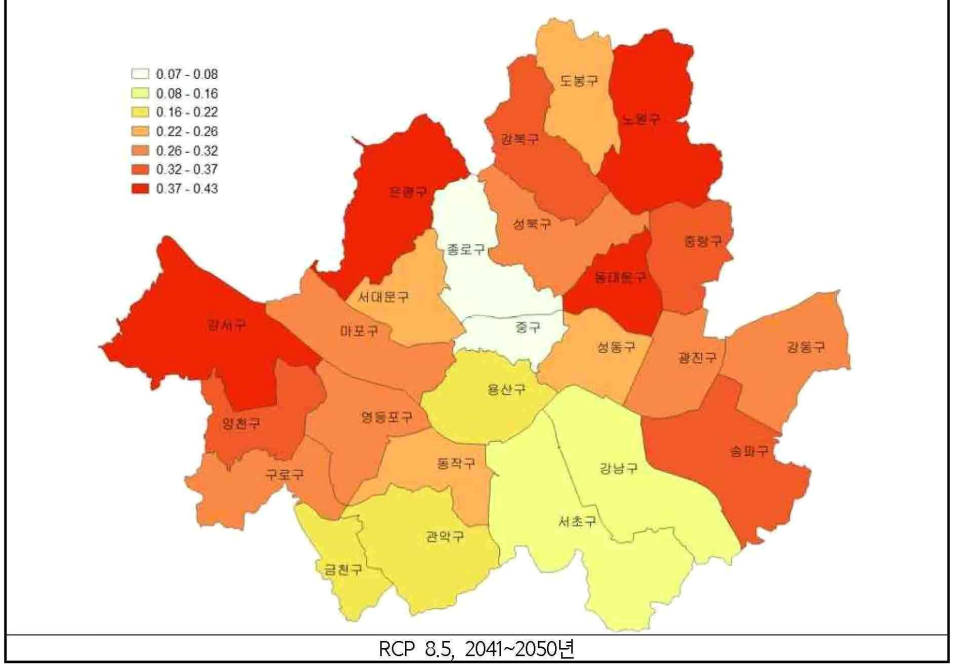

RCP 8.5, 2041~2050년

(그림 3.2 - 46) 기온상승에 의한 수인성 질환 증가 취약성평가 결과_(3)

4) 시설물 관리(도시공간)

가) 극한기상(폭염, 폭우, 강풍, 폭설)으로 인한 에너지(전력, 도시가스) 및 통신시설 피해 위험(정전, 도시가스 공급중단, 통신 마비 등) 증가

◦ 전기 공급설비 면적이 넓은 영등포구, 양천구와 열 공급설비 면적이 넓은 강동구 등 외곽지역의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미래기온, 강수량, 풍속, 적설량의 변화로 모든 자치구의 취약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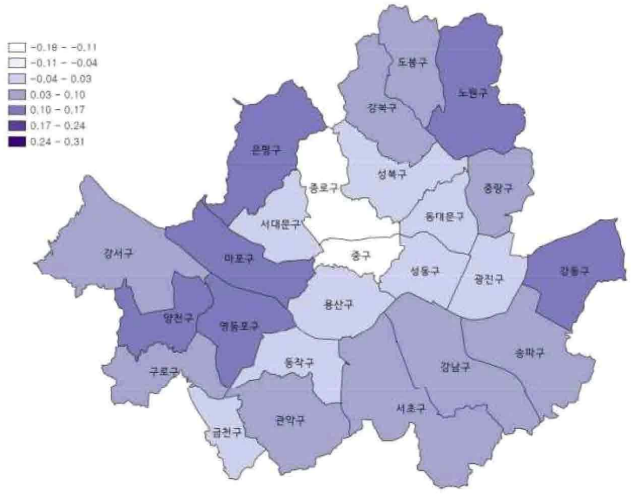

RCP 4.5, 2021~20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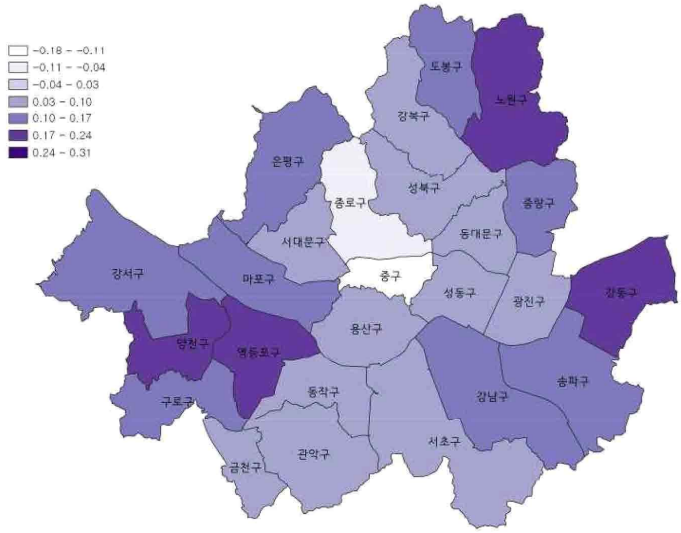

RCP 8.5, 2021~2030년

(그림 3.2 - 47) 기온상승에 의한 매개체 질환 증가 취약성평가 결과_(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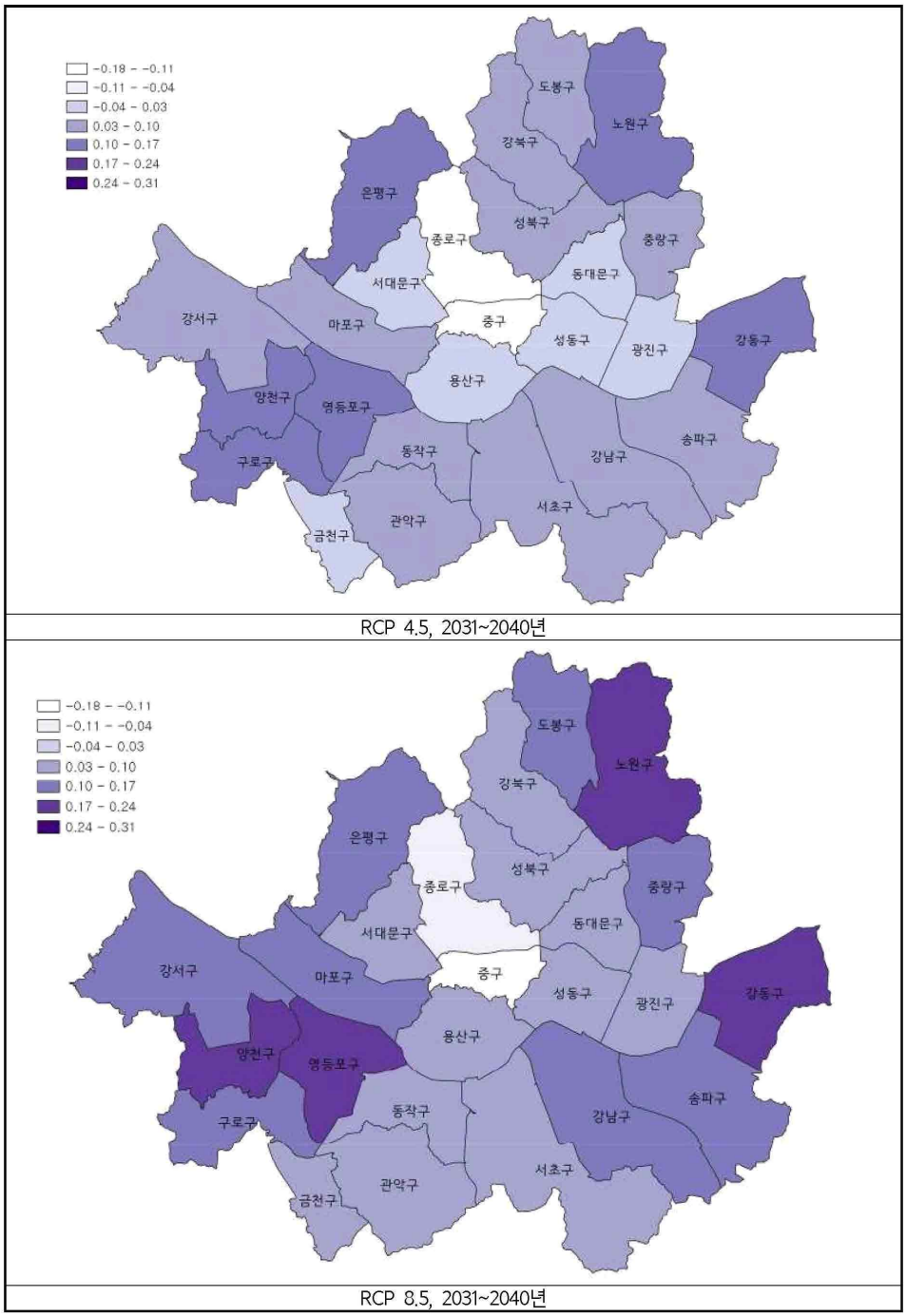

(그림 3.2 - 48) 기온상승에 의한 매개체 질환 증가 취약성평가 결과_(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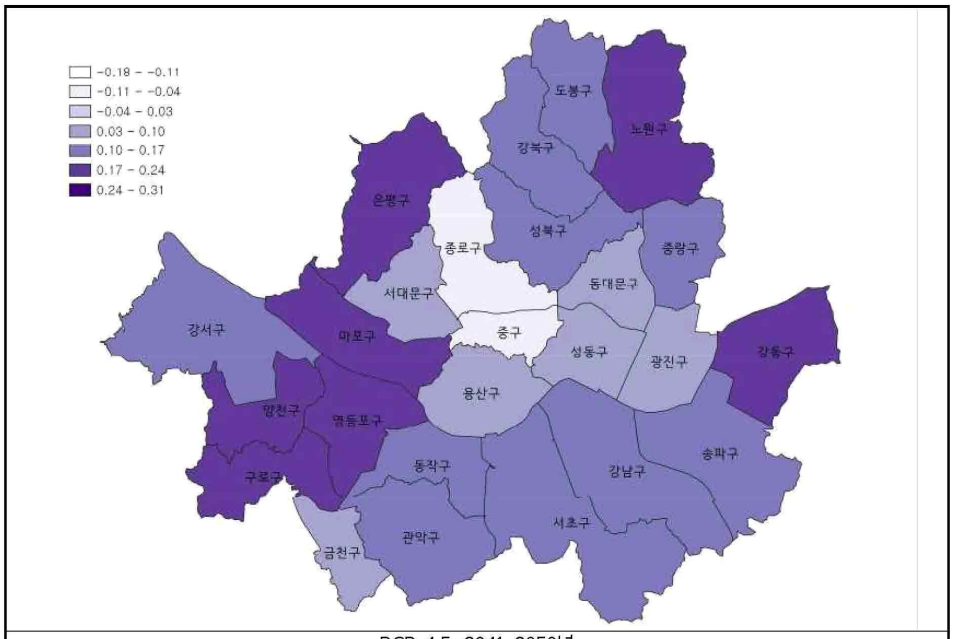

RCP 4.5, 2041~20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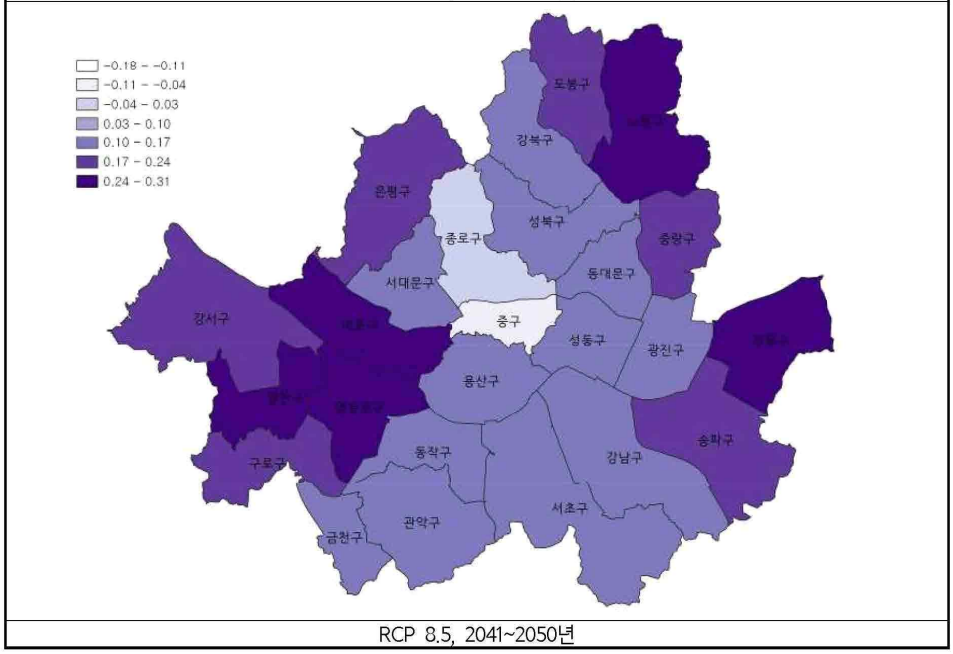

RCP 8.5, 2041~2050년

(그림 3.2 - 49) 기온상승에 의한 매개체 질환 증가 취약성평가 결과_(3)

5) 서울특별시 취약성 검토

◦ 물관리 부문에서 한강변 지역 주요 지류하천 하류 지역 홍수발생 등에 의한 수자원으로의 오염물 유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산림·생태계 부문에서 산림면적이 큰 지역을 위주로 생물상의 종수 변화와 병해충 증가 등의 취약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 부문에서 동부권에 취약성이 나타났으나, 장기적으로 서부권 역시 취약성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설물 관리(도시공간) 부문에서 서울시 외곽지역의 취약성이 높으나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기후 전망 및 취약성 검토 정리

◦ 상기에 작성한 기후전망 및 취약성 검토를 바탕으로 계획지구의 기후 특성과 주요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 계획지구인 서울시의 SSP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라 평균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폭염과 열대야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SSP5-8.5 시나리오 기준으로 평균기온은 13.1℃에서 19.8℃로 상승하며, 폭염일수는 15.0일에서 94.8일로 늘어나고 열대야일수는 11.3일에서 84.8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수관련 지표인 강수량은 1,270.1㎜에서 1,563.6㎜로 증가하며, 호우일수, 강수강도, 5일최다강수량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와 침수 위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계획지구인 서울시의 취약성 검토 결과 물관리 부문에서 한강변, 하천 하류부 중심으로 취약성이 크고,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산림면적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생태계 부문 취약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본 계획상 현재 가축을 사육 중인 자치구는 성동구, 서초구, 강북구로 서울시의 기후전망에서 기온상승에 따른 폭염일수의 증가와, 강수관련 지표가 증가하며, 장기적으로 기온상승과 강수관련 취약성이 나타나는 지역들로 본 계획의 특성상 가축분뇨 관리의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리스크를 반영한 적응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2.4.2 - 1> 서울시 자치구별 가축사육 현황

자치구	소재지	시설명	축종	사육두수	시설규모(㎡)	분뇨처리방법	비고
성동구	성수동1가 685-20	서울숲공원	사슴	26	2,770	퇴비	
서초구	방배동 산184	경찰특공대	개	31	1,009	정화	
	원지동 산 72	경북농장	한우	20	1,564	위탁	폐쇄
	내곡동 228-1	서초목장	젖소	10	574	위탁	
	우면동 192	세한사슴	사슴	23	396	퇴비	
강북구	원지동 225-2	새원사슴	사슴	3	330	퇴비	

바.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1) 국가 리스크 목록 검토

◦ '제3차 서울시 기후위기 적응대책(2022, 서울시)'에 따라 '제3차 국가 기후위기적응 강화대책'에서 제공하는 기후위기 리스크 목록 중 서울시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제외하였다.

<표 3.2 - 11> 물관리 부문

구 분	번 호	리스크명	비 고
홍 수	W01	폭우로 인한 하천 및 유역의 홍수 피해 증가	
	W02	폭우로 인한 하천/호소로의 오염물질 유입 증가	
	W03	폭우로 인한 댐과 하천의 기반시설 안정성 저하	
가 뭄	W04	가뭄으로 인한 하천의 건천화 심화	
	W05	기온 상승 및 가뭄으로 인한 하천/호소 수질 악화	
	W06	가뭄으로 인한 물 공급(생활/공업/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능력 저하	
	W07	기온 상승 및 가뭄으로 인한 지하수 함양량 감소	
수질/수생태계	W09	강우량 변동폭 증가에 따른 댐/저수지 관리 취약성 증가	

자료 : 제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

<표 3.2 - 12> 생태계 부문

구 분	번 호	리스크명	비 고
생물종	E01	기온 상승 및 강수량 증가로 인한 식물(종, 군락, 식물계절, 분포) 변화	
	E02	기온 상승 및 강수량 변동으로 인한 아고산대(종, 생육, 분포) 변화	
	E03	기후변화에 의한 외래 종(육상동물, 육상식물, 해양 외래, 해적 생물 등) 증가 및 질병 증가	
	E04	기후변화에 의한 멸종위기종 및 희귀/보호종 감소	
	E05	이상 기후로 인한 생물 종 및 개체수 증가	
	E06	가뭄 및 기온상승으로 인한 산림의 탄소 흡수량 감소	
	E07	기후변화로 인한 임산물 피해	
생물 서식지	E08	기온 상승 및 강수량 증가로 인한 척추·무척추 동물의 개체수 감소 및 서식지 축소	
	E09	기온 상승 및 강수량 변화에 따른 담수 생물(동물, 식물) 개체 수 감소 및 서식지 축소	
	E10	기온 상승으로 인한 산림 생물(아고산 식생, 참엽수, 북방계 식물, 보호식물 등 포함) 서식지 변화	
	E11	극한기상에 의한 생태계 변화	
	E12	기온 상승 및 강수변동, 가뭄으로 인한 토양 미생물 변화	
	E13	폭우 및 가뭄으로 인한 산림 계류수의 변화	
	E15	기후변화로 인한 습지 면적 감소, 육화 및 생물상 변화	
	E18	폭우 및 가뭄으로 인한 산림재해(산사태, 산불 등) 발생 증가 및 대형화	

자료 : 제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

<표 3.2 - 13> 국토·연안 부문

구 분	번 호	리스크명	비 고
정주 공간	L01	폭우로 인한 저지대 침수 위험 증가	
	L02	폭우로 인한 주거지역 비탈면 붕괴위험성 증가	
	L03	폭우, 해일, 파랑, 해수면상승으로 연안지역 침수범람 위험 증가	
	L05	폭우로 인한 도시 침수 피해 증가	
기반시설 및 건축물	L06	폭우, 폭설로 인한 육상교통 운행 중단 및 사고 증가	
	L07	기온변동성 증가로 인한 포장도로 조기파손 현상 증가	
	L08	폭염으로 인한 철도레일 변형 및 탈선위험 증가	
	L09	이상 기상 현상(강풍, 폭우, 폭설)로 인한 항만시설, 공항 시설물의 파손 및 운영 정지	
	L10	이상 기상 현상(폭우, 강풍, 폭설, 폭염)으로 인한 전기/통신시설 피해 증가	
	L11	강우패턴 변화로 인한 배수시설 기능저하	
	L12	폭설, 강풍으로 인한 노후 불량 건축물 파손 증가	
	L13	폭염으로 인한 주거 지역 열 스트레스 증가	

자료 : 제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

<표 3.2 - 14> 농수산 부문

구 분	번 호	리스크명	비 고
식량자원	A01	극한사상으로 인한 작물 생산성 변동	
	A02	기온 상승으로 인한 작물 생산성 저하	
	A03	기온 상승으로 인한 작물 품질 저하	
	A04	기온상승 및 강우일수 변화로 인한 작부체계 변화	
	A05	기온 및 강수량 상승으로 인한 작물 재배적지 변화	
	A06	폭염, 기온상승 및 습도 증가로 인한 가축 생산성 저하	
	A07	폭염, 저산소화, 한파, 태풍으로 인한 양식업 피해	
생산환경 기반	A9	폭염 및 한파로 인한 축사 에너지 사용량 증가	
	A10	폭설 및 강풍으로 인한 시설(축사, 온실) 피해 증가	
	A11	한파 및 온도 상승으로 인한 농작물 병해충 피해 증가	
	A12	한파 및 온도 상승으로 인한 가축 질병 발병	
	A13	폭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 및 토양유실, 농업용수 수질오염	
	A14	가뭄 및 기온변화로 인한 농업수리시설의 수자원공급 안정성 증가 및 수질 저하	
	A15	강수량 증가에 따른 농업용 수리시설 홍수 대응력 저하	
	A16	강우일수 증가로 인한 농기계 활용 저하	

자료 : 제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

<표 3.2 - 15> 건강 부문 리스크 목록

구 분	번 호	리스크명	비 고
감염병	H01	기온 상승에 의한 매개체 질환 증가	
	H02	기온 상승에 의한 수인성 질환 증가	
	H03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신종 감염병 발생 증가	
건강질환	H04	대기오염에 의한 심뇌혈관계 질환 증가	
	H05	기온 상승에 의한 심뇌혈관계 질환 증가	
	H06	기온변동폭 증가로 인한 심뇌혈관계 질환 증가	
	H07	기상재해로 인한 정신건강 질환 증가	
	H08	대기오염에 의한 호흡기계·알레르기 질환 증가	
	H09	대기오염에 의한 정신건강 질환 증가	
	H10	기온 상승에 의한 호흡기계·알레르기 질환 증가	
	H11	폭염에 의한 정신건강 질환 증가	
	H12	폭염에 의한 신장질환 증가	
	H13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증가	

자료 : 제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

2) 서울시 리스크 목록

◦ 서울시 리스크 목록은 '제3차 서울시 기후위기 적응대책(2022, 서울시)' 자료를 인용하였다.

<표 3.2 - 16> 물관리 부문

구 분	번 호	리스크 항목	비 고
홍수	리스크 1-1	집중호우로 인한 돌발홍수 발생 등 홍수 발생 및 피해 증가	
	리스크 1-2	집중호우로 인한 물관리 시설물(제방, 우수관로, 빗물펌프장 등) 취약성 증가	
물순환	리스크 2-1	유역내 물(하천에서 흐르는 물, 지하수 등)의 자연적인 순환의 균형 훼손	
	리스크 2-2	가뭄으로 인한 물(생활용수, 농업용수 등)부족	
물환경	리스크 3-1	수온상승과 폭우시 비점오염물의 유입으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 악화	
	리스크 3-2	집중호우시 하천으로 유입되는 재난 폐기물의 증가 및 악취 발생	
	리스크 3-3	하천의 생태 및 환경적 기능(자정작용, 생태서식처, 경관 및 친수)저하	

<표 3.2 - 17> 산림/생태계 부문

구 분	번 호	리스크 항목	비 고
생물종 변화	리스크 1	기온 및 강수량 변동에 따른 식물(종, 군락, 식물계절, 분포)변화	
	리스크 2	기온 및 강수량 변동에 따른 외래종 증가	
	리스크 3	기후변화에 따른 보호종 감소	
	리스크 4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종(동물) 및 개체수 변화	
	리스크 5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증가(생물종 돌발 대발생 고려)	
생태계 변화	리스크 6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의 탄소 흡수량 감소	
	리스크 7	기후변화로 인한 습지면적 감소 및 육지화	
산림재해 발생	리스크 8	폭우로 인한 산림재해(산사태 등) 증가 및 대형화	
	리스크 9	가뭄으로 인한 산림재해(산불 등) 증가	
유지관리 비용관리	리스크 10	극한 기후에 의한 도시녹지 및 건축물 녹화 유지관리 비용 증가	

<표 3.2 - 18> 시설물 관리(도시공간) 부문

구 분	번 호	리스크 항목	비 고
건축물	리스크 1	폭염으로 인한 주거지역 열 스트레스 증가	
	리스크 2	폭우로 인한 지하공간 침수위험 증가	
	리스크 3	폭우로 인한 시가지 비탈면(옹벽·축대, 인공자연 비탈면) 붕괴위험 증가	
	리스크 4	극한기상(폭우, 강풍, 폭설)로 인한 노후·불량 건축물 붕괴위험 증가	
기반시설	리스크 5	극한기상(폭염, 폭우, 강풍, 폭설)으로 인한 에너지(전력, 도시가스) 및 통신시설 피해위험(정전, 도시가스 공급중단, 통신 마비 등) 증가	
	리스크 6	극한기상(폭우, 강풍, 폭설)로 인한 도시교통(도로, 도시철도) 시설물 파손·붕괴 운행중단, 사고위험 증가	
	리스크 7	기온변동성 증가로 인한 포장도로 조기파손 위험 증가	
	리스크 8	폭염으로 인한 도시철도 레일 변형 및 탈선위험 증가	

<표 3.2 - 19> 건강 부문

구 분	번 호	리스크 항목	비 고
기온상승	리스크 1	기온 상승에 의한 매개체 질환 증가	
	리스크 2	기온 상승에 의한 수인성 질환 증가	
	리스크 3	기온 상승에 의한 심뇌혈관계 질환 증가	
	리스크 4	기온 상승에 의한 호흡기계·알레르기질환 증가	
폭염	리스크 5	폭염에 의한 온열 질환 증가	
	리스크 6	폭염에 의한 정신건강 질환 증가	
대기오염	리스크 7	대기오염에 의한 정신건강 질환 증가	
	리스크 8	대기오염에 의한 심뇌혈관계 질환 증가	
	리스크 9	대기오염에 의한 호흡기계·알레르기질환 증가	

3) 계획지구의 우선관리 리스크 선정

◦ 서울시 재난 위험지도 및 재난사례 기초 자료 조사, 서울시 기후 전망, 국가 리스크 목록, 서울시 취약성 및 리스크 목록을 바탕으로 계획지구의 우선관리 리스크를 선정하였다.

◦ 본 계획은 가축분뇨의 관리를 위한 별도의 추가시설의 증설없이 현재 가축사육 두수를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분뇨발생의 감소를 위한 계획으로 계획상의 기후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가축분뇨의 발생은 불가피한 특성상 폭우시 분뇨가 유출되어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경우 등의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폭우로 인한 하천/호소로의 오염물질 유입 증가”항목을 우선관리 리스크로 선정하였다.

◦ 또한 축사관리 강화 및 관리체계의 고도화 역시 계획의 단계로 폭염 및 한파시 축사관리의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폭염 및 한파로 인한 축사 에너지 사용량 증가”항목을 우선관리 리스크로 선정하였다.

<표 3.2 - 20> 선정된 우선관리 리스크의 연관성, 발생 가능성, 피해 규모

번호	리스크명	연관성			발생가능성		피해규모	
		높음	보통	낮음	높음	낮음	높음	낮음
W02	폭우로 인한 하천/호소로의 오염물질 유입 증가	O			O		O	
A9	폭염 및 한파로 인한 축사 에너지 사용량 증가		O			O		O

주) <표 3.2 - 11~15>의 국가 리스크 목록의 번호를 표시하였음

3.2.4. 계획지구 적응전략 관리

가. 물관리 부문

◦ 계획지구인 서울시는 한강 변, 하천 하류를 중심으로 물관리 부문 취약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분뇨관리의 목적이 있는 본 계획상 '폭우로 인한 하천/호소로의 오염물질 유입 증가' 리스크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적응전략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표 3.2 - 21> 물관리 부문 리스크 따른 적응전략

리스크 평가 항목	적응전략
◦ 폭우로 인한 하천/호소로의 오염물질 유입 증가	◦ 가축분뇨법 제8조에 따라 주거밀집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생활환경이나 수질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할수 있다. 서울시는 일부 자치구를 제외한 자치구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생활환경보전·수질보전 목적의 제한을 두고 있다.(예외적으로 특정조건에서 허가를 받아 사육이 가능하나 극소수이며,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신규 가축사육시설의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 서울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대규모 축산업이 거의 없는 특수한 도시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소규모 시설에 한정되어 있고, 퇴비화 및 위탁·자가처리 하고 있어 가축분뇨발생이 기상에 의한 영향 인위적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서울시 하천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다. ◦ 톱밥, 왕겨 등의 활용으로 부피를 50% 감축하는 등 수분조절을 하여 충분한 처리 및 관리가 가능하다. ◦ 서울시 시설점검 체계를 통해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1) 수질오염 저감관리

가) 하천수질오염 관리

◦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하천 수질측정망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10년(2015~2024년)간의 수질현황과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특이점은 없었으며 항목별적정 수질값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여기서, 수질측정망 지점과 가축분뇨 발생지점간의 지표면 직선거리가 최소 2km에서 최대 8km의 거리를 두고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또한 서울시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대부분 퇴비화 및 위탁·자가처리 하고 있으므로 기상(폭우, 재해 등)에 의한 영향, 인위적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 따라서 서울시 수질측정망 지점과 가축분뇨 발생지점과의 거리, 가축분뇨 처리방법을 고려할 때 수질 오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지만, 측정값은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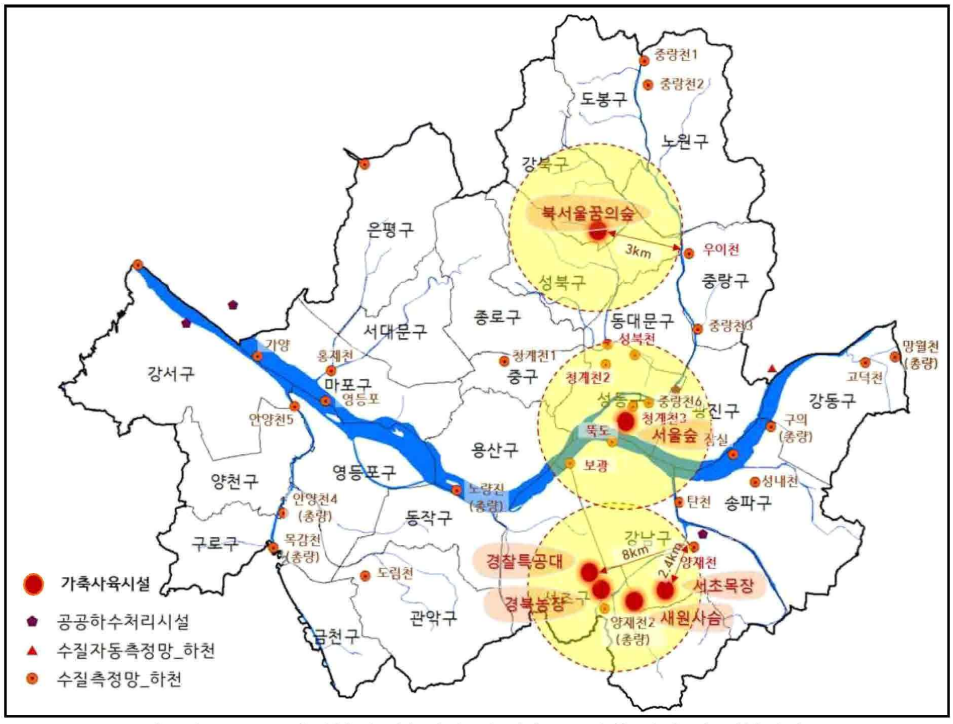

(그림 3.2 - 50) 하천수질측정망 및 가축분뇨발생 지점 간 영향거리

나) 오염부하량 및 처리 목표 설정

◦ 오염부하에 대한 계획목표 설정을 위해 서울시 관리기준 가축사육 두수를 바탕으로 오염원 배출부하량을 산정하고, 가축분뇨 발생량과 가축분뇨 처리량을 비교하여 가축분뇨 적정처리에 따른 수질저감 효과를 제시하였다.

◦ 가축분뇨 발생량과 자원화처리, 정화처리, 에너지화 등 가축분뇨 처리량을 비교하여 처리량에 따라 수질 저감효과를 산정할 수 있다.

◦ 가축분뇨 발생부하량은 가축 사육두수에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국립환경과학원, 2022)의 축종별 축산분뇨 발생부하원단위(BOD, TN, TP)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 배출부하량(kg/일) = 사육두수(두) × 배출원단위(kg/두·일)

◦ 서울시 가축분뇨로 인한 BOD, TN, TP 배출부하량은 젖소에 의한 양이 BOD 1.116kg/일, TN 1.473kg/일, TP 0.024kg/일 순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는 현재 오염부하량과 관련하여 젖소와 사슴에 관해서 산정하였으며, 경찰특공대의 개 사육으로 인한 분뇨는 정화방식으로 자가 처리하고 있으므로 부하량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 축산계로 인한 오염 저감을 위해서는 적정 처리량 목표를 세워 오염부하 저감효과를 예측 및 제시할 수 있으며, 단계별 적정 처리량은 단계별 처리필요 부하량에 단계별 적정 처리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

◦ 1단계 처리 필요 부하량은 발생부하량이며, 1단계 적정 처리율을 곱하여 1단계 적정 처리량을 산정하였다.

◦ 2단계 처리 필요 부하량은 가축사육 두수의 감소(사설시설 100% 감소, 공공시설 40% 감소)를 고려한 발생부하량을 적정 처리율 100%로 곱하여 2단계 적정 처리량으로 산정하였다.

◦ 3단계 처리 필요 부하량은 가축사육 두수의 감소(사설시설 100% 감소, 공공시설 65% 감소)를 고려한 발생부하량을 적정 처리율 100%로 곱하여 3단계 적정 처리량으로 산정하였다.

◦ 이와 같이 서울시 여건에 맞는 두수 관리 계획에 따른 적정 처리량을 항상 100% 전량 처리 목표로 설정하여 목표 달성 시, 환경오염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 - 22>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원단위 및 서울시 가축분뇨 배출부하량 산정

축종	가축분뇨 배출부하량 산정(kg/일)			
	항목	가축사육두수 (두)	원단위 (kg/두/일)	배출부하량 (kg/일)
한우	BOD	-	0.5950	-
	TN		0.0942	-
	TP		0.0197	-
젖소	BOD	10	0.1116	8.757
	TN		0.1473	1.907
	TP		0.0024	0.342
돼지	BOD	-	0.0314	-
	TN		0.0256	-
	TP		0.0019	-
양/사슴	BOD	66	0.0060	0.6600
	TN		0.0080	0.3102
	TP		0.0001	0.0396
개	BOD		0.0021	
	TN		0.0030	
	TP		0.0001	
가금류	BOD	-	0.0010~0.0015	-
	TN		0.0015~0.0020	-
	TP		0.00005~0.0001	-

자료 : 축산분뇨 발생부하원단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2024, 국립환경과학원) 최신개정.

<표 3.2 - 23> 단계별 가축분뇨 적정 처리량 산정

구분	축종	단계별 가축분뇨 적정 처리량 산정			
		항목	처리필요 부하량 (kg/일)	적정 처리율 (%)	적정 처리량 (kg/일)
1단계	젖소	BOD	8.7570	100	8.7570
		T-N	1.9070	100	1.9070
		T-P	0.3420	100	0.3420
	사슴	BOD	0.6600	100	0.6600
		T-N	0.3102	100	0.3102
		T-P	0.0396	100	0.0396
2단계	젖소 (-100%)	BOD	0	100	0
		T-N	0	100	0
		T-P	0	100	0
	사슴 (-60%)	BOD	0.3960	100	0.3960
		T-N	0.1861	100	0.1861
		T-P	0.0238	100	0.0238
3단계	젖소 (-100%)	BOD	0	100	0
		T-N	0	100	0
		T-P	0	100	0
	사슴 (-82.5%)	BOD	0.0713	100	0.0713
		T-N	0.0335	100	0.0335
		T-P	0.0043	100	0.0043

2) 서울시 시설점검 체계

가) 공통 점검사항

◦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 형태로 축사내 과다 보관하거나 주변 농경지 등에 과다 살포 또는 불법 매립·투기하는 행위

◦ 배출시설 및 퇴비사 등 처리시설 고장, 부식 마모 등으로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인근 농수로, 하천 등에 유출하는 행위

- 퇴비사의 침출수 또는 액비화과정 중 액비가 축사주변으로 유출시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에 해당됨 (제17조제1항제2호 위반)

◦ 무허가·미신고시설 또는 처리시설 없이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표 3.2 - 24> 서울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주기

구분		점검 주기
우수관리 시설 (위탁)	허가대상시설	1회/년
	신고대상시설	1회/2년
일반관리 시설	허가대상시설	2회/년
	신고대상시설	1회/년
중점관리 시설	허가대상시설	4회/년
	신고대상시설	2회/년
가축분뇨 재활용 사업장		1회/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4회/년

나) 정화시설

◦ 약품비 및 전력비 등의 절감을 위해 처리시설을 미가동하거나 지하수를 섞어 희석 방류하는 등 부적정 처리 행위

◦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 또는 중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 퇴·액비화

◦ 퇴비사 등에서 침출수 발생으로 축사주변 및 공공수역 오염 행위

◦ 톱밥, 왕겨 등의 수분조절제 사용 여부

◦ 퇴·액비를 축사주변 농경지 등에 야적·투기 여부

◦ 살포대상 초지 및 농경지 확보 여부, 살포기준 준수 여부

나. 농수산 부문

◦ 계획지구인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전지역으로 시설물관리(도시공간) 부문 취약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축사관리 강화 및 관리 시스템 구축의 목적이 있는 본 계획상 '폭염 및 한파로 인한 축사 에너지 사용량 증가' 리스크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적응전략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표 3.2 - 25> 농수산 부문 리스크 따른 적응전략

리스크 평가 항목	적응전략
◦ 폭염 및 한파로 인한 축사 에너지 사용량 증가	◦ 본 계획은 별도의 시설 증설없이 점진적으로 가축 사육 두수를 감소시키는 계획으로 가축분뇨발생시설의 감소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축사에너지 사용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 4 장 결론

제 4 장 결론

4.1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4.1.1 감축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 본 계획은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수립으로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등과 연관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합성을 갖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반영하는데 상위 계획으로 반영될 수 있음

◦ 본 계획은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수립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성장기본법, 2030 국가 NDC 상향안 등과의 정합성이 있으며 참고하여 감축목표를 반영해야 함

4.1.2 감축 전략의 적정성

◦ 현재 서울특별시의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천톤CO_2eq으로 2030년 목표 23.8%, 2033년 24.9%를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으며,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2023.4),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의해 설정된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30 BAU 대비 수송 부문 감축률은 37.8%의 감축률을 본 계획 지구 감축목표로 설정하였음

4.2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4.2.1 적응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 '3.2.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전략의 적정성' 작성시 '제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에 제시된 기후변화 리스크 항목을 활용하여 계획지구의 우선관리리스크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침수, 하천범람, 산사태, 가뭄, 폭염, 한파 등 지역 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동시에 자치구별 취약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적응대책을 수립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계획은 국가 적응대책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서울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국가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줌

◦ 본 평가서에서는 '3.2.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전략의 적정성'에서 도시침수, 하천범람, 산사태, 가뭄 등 다양한 재해 유형에 대해 서울시의 취약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적응대책을 수립하였음

◦ '제3차 서울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물관리, 생태계, 시설물 관리, 건강 등의 부문에 대해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3.2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전략의 적정성'에서 제시한 적응대책은 이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4.2.2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전략의 적정성

◦ 본 계획과 관련된 리스크 평가 항목으로는 물관리(폭우로 인한 하천/호소로의 오염물질 유입 증가)항목을 선정하였으며, 본 계획에서의 기후리스크 대응전략은 톱밥, 왕겨 등의 활용을 통한 수분조절과 서울시 시설점검 체계를 통한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표 4 - 1> 종합평가 및 결론

구분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전략	비고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본 계획인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서울특별시의 가축 사육두수가 매우 적어 농업부분에서 온실가스는 미미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단계적 사육두수 감축, 가축분뇨 자원화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가 예상되며,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됨	◦본 계획인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운영시 가축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 예상되고 있으나, 앞으로 가축두수가 증가하진 않고 오히려 감소하여,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기대됨	◦현재 서울특별시의 농업부분에서의 온실가스 미미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상위계획의 감축전략인 온실가스 및 가축분뇨 저감, 가축분뇨 에너지·자원화 확대 등을 활용할 계획이며, 본 계획의 단계적 사육두수 감축,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임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제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제3차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과 정합성 갖고 있음 ◦본 계획은 국가 적응대책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서울시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국가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줌 ◦본 계획은 가축분뇨의 관리를 위한 별도의 추가시설의 증설 없이 단계별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계획으로 계획상의 기후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본 계획 시행시 국가 기후 리스크 목록 중 물관리 부문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물순환 기후변화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하여 서울시 시설점검 체계를 통해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할 계획임	

제 5 장 부 록

5.1 평가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5.2 용어해설
5.3 평가서 작성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5.4 기타자료

제 5 장 부 록

5.1 평가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5.1.1 평가대행자

구 분		내 용	비 고
평가대행기관		(주)청담엔지니어링	전화번호 : 031-261-9173
지 정 기 관		한강유역환경청장	
1종	지 정 일 자	2018. 10. 29	
	지 정 번 호	제서 - 357호	
2종	지 정 일 자	2018. 10. 16	
	지 정 번 호	제서 - 2-04호	

5.1.2 참여자 명단

분 야	성명	등급	자격증명칭 및 번호	직급
총괄	오정희	미생물공학	환경영향평가사·환경기사/공학박사	
	임혜령	환경학	환경영향평가사	
온실가스 감축	배진화	생물학	폐기물처리기사	
	신은숙	미생물공학	소음진동기사	
	조인희	환경공학	대기환경기사	
	이강윤	환경공학	대기환경기사	
기후위기 적응	서정식	토목학	환경기사	
	박지영	환경공학	수질환경기사	
	김충남	환경공학	수질환경기사	
	이건희	환경공학	수질환경기사	

5.1.3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

Page : 1/5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12.2.>

출력 일시 : 2025-5-9 13:18

등록번호 제서-357 호		발급번호 : 20250509073699OMEG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기관(업체)명칭		(주)청담엔지니어링	등록상태	영업
대표자 성명		오형희		
주사무소	소재지	(1697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1 A동 1807호 (구갈동,기흥ICT밸리SKV1)		
	전화번호	031- 261-9173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1697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1 A동 1807호 (구갈동,기흥ICT밸리SKV1)		
	전화번호	031- 261-9173 (FAX) 031- 261-7275		
실험실	소재지	측정대행계약체결 (주)가람환경기술, (주)가림환경연구소, (주)디케이환경기술연구소, (주)바른환경연구소, (주)비엔지기술연구소, (주)영진환경테크, (주)코엔라이프, (주)코엔라이프, (주)코엔텍알앤씨, (주)한국산업공해연구소, (주)한솔환경산업, 자연과환경(주), 주식회사 지오이엔씨, 동명영양과학원(주), (주)신덕환경엔지니어링, (주)해성환경, (주)한국환경기술연구원		
	전화번호	- -		
기타		제 1 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수 및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 1 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

Page : 2/5

<변경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2018.10.29	환평협- 5815호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신규등록 끝.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
2019.02.01	환평협-262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총괄: 조영지(초급) → 서정식(중급), 토지환경: 서정식(중급) → 박수빈(초급)]. 끝.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
2019.03.12	환평협-599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생활환경및기타(중급): 서우현(고급) 해임, 생활환경및기타(초급): 지승훈(초급) 추가]. 끝.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
2019.03.22	환평협-695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생활환경및기타(중급): 김숙희(특급) 등록]. 끝.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
2019.05.20	환평협-1200호로 기술인력 해임 [토지환경(고급): 김환종(특급) 해임]. 끝.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
2019.06.28	환평협-1611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토지환경(고급): 김숙희(특급) 등록, 생활환경및기타(중급): 김숙희(특급) → 김인영(중급), 생활환경및기타(초급): 이강윤(초급) 등록]. 끝.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
2019.10.22	환평협-2368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토지환경(초급): 박수빈(초급) 해임]. 끝.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
2019.10.30	환평협-2444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생활환경및기타(초급): 이강윤(초급) → 토지환경(초급): 이강윤(초급)]. 끝.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
2020.01.22	환평협-206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생활환경 및 기타(특급): 오승훈(특급) 등록]. 끝.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
2020.03.26	환평협-862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토지환경(고급): 김숙희(특급) → 오승훈(특급), 생활환경및기타: 오승훈(특급) 해임]. 끝.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
2020.08.12	환평협-2070호로 기술인력 해임 [생활환경및기타(초급): 김인철 해임]. 끝.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

Page : 3/5

<변경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2020.08.19	환평협-2085호로 측정대행업체 변경등록 [(추가) (주)가림환경연구소 : 2020-08-12 ~ 2022-08-11(자동연장), 측정분야: 대기(NO2, PM10, PM2.5 납만 가능), 소음, 수질(유기인, PCB,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PCE,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DEHP, 안티몬, 1,4-다이옥세인, 폼알데하이드, 헥사클로로벤젠 제외)]. 끝.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
2020.09.22	환평협-2334호로 측정대행업체 변경등록 [(추가) (주)바른환경연구소 : 2020-09-01 ~ 2021-08-31(자동연장), 측정분야: 수질(지하수 및 해역 전항목 제외)]. 끝.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
2021.05.25	환평협- 1030호로 측정대행업체 변경등록 [(추가) (주)비엔지기술연구소 2021-05-01 ~ 2023-04-30(자동연장), 측정분야: 대기, 소음, 수질(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DEHP, 안티몬, 1,4-다이옥세인, 폼알데하이드, 헥사클로로벤젠, 지하수 및 해역 전항목 제외)]. 끝.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
2021.07.23	환평협- 1410호로 측정대행업체 변경등록. [(해지) (주)코엔텍 , (추가) (주)에스알테크 2021-06-16 ~ 2023-06-15(자동연장), 측정분야: 소음]. 끝.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
2021.08.11	환평협- 1520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생활환경및기타(초급): 박지영 등록]. 끝.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
2021.09.10	환평협- 1712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자연생태환경(중급): 노영옥 등록]. 끝.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
2021.11.22	환평협- 2174호로 측정대행업체 변경등록. [(추가) (주)에스알테크 2021-10-13 ~ 2023-10-12(자동연장), 측정분야: 대기(납, 벤젠 제외)]. 끝.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
2022.01.14	환평협- 135호로 측정대행업체 변경등록. [(추가) ㈜한솔환경산업 - '22.01.13 ~ '24.01.12(자동연장), 측정분야: 대기, 소음, 수질(지하수 및 해역 전항목 제외)]. 끝.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
2022.01.18	환평협- 141호로 주사무소소재지 및 평가담당부서소재지 변경등록 [(주사무소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 101, 502호(상갈동, 그린빌프라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1, A동 1807호 (구갈동, 기흥ICT밸리SKV1)], [(평가담당부서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 101, 502호(상갈동, 그린빌프라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1, A동 1807호 (구갈동, 기흥ICT밸리SKV1)]. 끝.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
2022.03.22	환평협-639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토지환경: 이강윤(초급) 타업체 기술인력 등록으로 인한 해임 처리] 끝.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

Page : 4/5

<변경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2022.03.28	환평협- 684호로 기술인력 및 측정대행업체 변경등록, [(기술인력) 토지환경: - → 박지영(초급), 생활환경및기타: 김인영(중급), 박지영(초급) 해임, 김숙희(특급) 등록], [(측정대행업체 추가) (주) 디케이환경기술연구소 - '22.03.14 ~ '24.03.13(자동연장), 측정분야: 대기, 소음]. 끝.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
2022.04.28	환평협- 1026호로 측정대행업체 변경등록, [(상호변경): (주)에스알테크 → (주)코엔라이프]. 끝.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
2022.05.25	환평협- 1271호로 측정대행업체 변경등록, [(해지) (주)산업공해연구소]. 끝.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
2022.07.06	환평협-1620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토지환경: 오승훈(특급) 타업체 기술인력 등록으로 인한 해임 처리] 끝.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
2022.07.22	환평협- 1803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총괄: 오정희(특급 → 평가사) 등급변경, 자연생태환경: 노영옥(고급) 해임, 토지환경: - → 노영옥(고급)]. 끝.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
2022.11.29	환평협- 2677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자연생태환경: 김상협(특급/생명과학석사 → 특급/ICT환경공학박사) 자격변경]. 끝.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
2022.12.16	환평협- 2837호로 측정대행업체 변경등록, [(추가) 자연과환경(주) - '22.12.12 ~ '23.12.11(자동연장), 측정분야: 대기, 소음, 수질]. 끝.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
2023.01.27	환평협- 254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생활환경및기타: 지승훈(초급) → 지승훈(초급)]. 끝.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
2023.04.14	환평협- 955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생활환경및기타: 지승훈(초급) → 이건희(초급)]. 끝.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
2023.04.21	환평협- 1001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생활환경및기타: 조인희(초급) 등록]. 끝.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
2023.07.14	환평협- 1487호로 측정대행업체 변경등록, [(재계약 및 측정분야추가) (주)디케이환경기술연구소 - '23.07.12 ~ '25.07.12(자동연장), 측정분야: 대기, 소음, 수질(pH, BOD, COD, TOC, SS, DO, T-N, T-P, Chl-a,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카드뮴, 비소, 납, 6가크롬, ABS, 안티몬 만 가능)]. 끝.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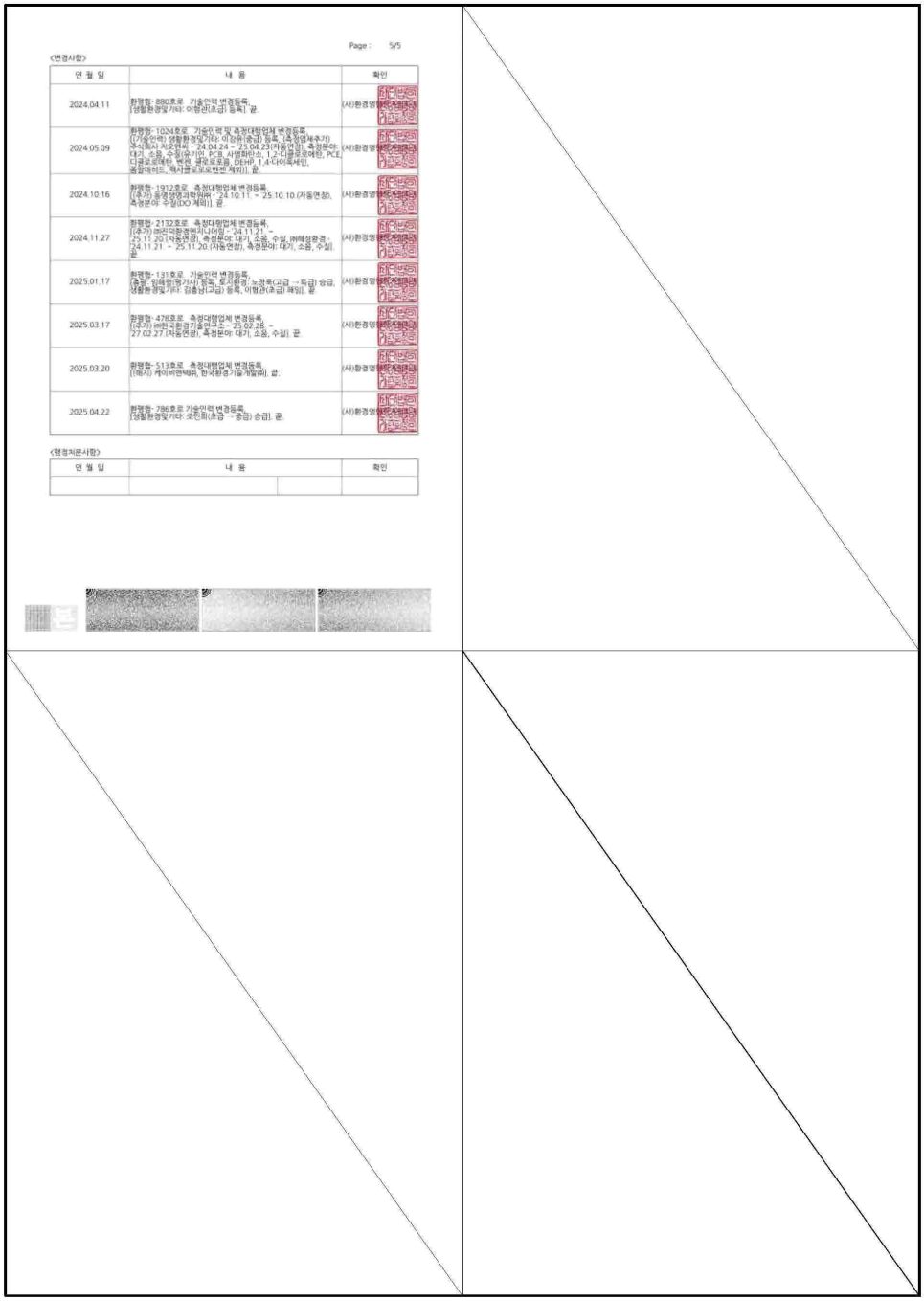

Page : 5/5

<변경사항>

연 월 일	내 용	확인
2024.04.11	환평협-2992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생활환경및기타: 이정선(초급) 등록) 끝.	(사)환경영
2024.05.09	환평협-1024호로 기술인력 및 측정대행업체 변경등록 (기술인력: 생활환경및기타: 이정선(중급) 등록 (초급업체추가) 주식회사 지오워터 - '24.04.24 ~ '25.04.23(자동연장), 측정분야: 대기 소음 수질(상기야 PCB, 사염화타소, 1,2-디클로로에탄, PCE,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디하P, 1,4-디이옥세인, 폼알데하드, 핵사클로로벤젠 제외)) 끝.	(사)환경영
2024.10.16	환평협-1912호로 측정대행업체 변경등록 (추가) 동명엔지니어링㈜ - '24.10.11. ~ '25.10.10.(자동연장), 측정분야: 수질(DO 제외)) 끝.	(사)환경영
2024.11.27	환평협-2132호로 측정대행업체 변경등록 (추가) 에이치환경연사-(주) - '24.11.21. ~ '25.11.20'(자동연장), 측정분야: 대기, 소음, 수질, (주)해성환경 - '24.11.21. ~ '25.11.20.(자동연장), 측정분야: 대기, 소음, 수질) 끝.	(사)환경영
2025.01.17	환평협-131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총괄, 임해원(평가사) 등록, 토지환경: 노정목(고급 → 특급) 승급, 생활환경및기타: 김충남(고급) 등록, 이정선(초급) 해임)) 끝.	(사)환경영
2025.03.17	환평협-478호로 측정대행업체 변경등록 (추가) (주)한국환경기술연구소 - '25.02.28. ~ '27.02.27.(자동연장), 측정분야: 대기, 소음, 수질). 끝.	(사)환경영
2025.03.20	환평협-513호로 측정대행업체 변경등록 ((해지) 케이비면세㈜, 한국환경기술개발㈜), 끝.	(사)환경영
2025.04.22	환평협-786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생활환경및기타: 조진희(초급 → 중급) 승급), 끝.	(사)환경영

<행정처분사항>

연 월 일	내 용	확인

5.2 용어해설

용 어	내 용
◦ 기후변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기간 관찰되어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 기후위기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탄소중립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산림 등), 제거(CCUS)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가 되는 개념이다.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배출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이에 탄소중립을 '넷-제로(net-zero)'라 부른다.
◦ 탄소중립 사회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기술·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
◦ 온실가스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_2), 메탄(CH_4), 아산화질소(N_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HFCs(수소불화탄소)	무독성 가스로, 냉장고 및 에어컨 냉매로 사용
PFCs(과불화탄소)	탄소와 불화의 화합물로, 전자제품과 도금산업 등에서 세정용으로 사용되며 우리나라는 주로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됨
SF_6(육불화황)	전기제품, 변압기 등의 절연체로 사용되는 가스
CH_4(메탄)	에너지 연료연소로 배출되거나 유기물(비료, 분뇨, 폐기물, 하수)에 대한 미생물의 혐기성 분해로 발생
N_2O(아산화질소)	에너지 연료연소로 배출되거나 유기물(비료, 분뇨, 폐기물, 하수)의 질산화 및 탈질산화로 발생
LULUCF	Land-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
온실가스배출량 통계(인벤토리)	인위적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원(sources)에 대한 배출량(emission) 및 흡수원(sinks)에 의한 흡수량(removals)의 목록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협의체(IPCC)	기후변화에 대처하고자 세계기상기구와 유엔환경프로그램이 공동으로 설립(1988년)한 정부간 협의체
총배출량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LULUCF)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배출량을 합산한 값
순배출량	토지, 임업 분야를 포함하여 합산한 배출량

용 어	내 용
◦ 온실가스 배출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함
◦ 온실가스 흡수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 및 임업활동 등에 의하여 대기로부터 온실가스가 제거되는 것을 말함
◦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함
◦ 에너지전환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기후위기 대응(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함)과 환경성·안정성·에너지안보·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말함
◦ 기후위기 적응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고화 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기후정의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함
◦ 정의로운전환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함
◦ 녹색성장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함
◦ 녹색경제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말함
◦ 녹색기술	기후변화대응 기술(「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말함),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자원순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함)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함)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함
◦ 녹색산업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함

용 어	내 용
◦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함
◦ 2050 지방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 NDC	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5년 주기 제출)의 약자
◦ SDGs	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지속가능발전목표)의 약자
◦ LEDs	LEDS :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의 약자

5.3 평가서 작성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 기후변화협약(UNFCCC)
◦ 파리협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기본법
◦ 2030 국가 NDC 상향안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 탄소중립 · 녹색성장 국가 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 제2차 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2025-2029)
◦ 제2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2020-2040)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 서울특별시 환경보전계획(2016-2025)
◦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안내서, 2023.3, 환경부
◦ 2023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24.07,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2023년 지역온실가스 통계(2010-2021),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제64회 2024 서울통계연보(2023년 기준), 2024, 서울특별시
◦ 축산물이력제(https://datalab.mtrace.go.kr)
◦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 2015, 환경부/국토환경평가과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2025.04.11., 환경부고시 제2025-62호
◦ 2024년 승인 국가온실가스 배출·흡수계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
◦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
◦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2023.4)
◦ 건설공사표준품셈, 2025, 한국건설연구원
◦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1], 2022.11.21., 산업통상자원부
◦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 2017.12, 한국환경공단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 제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 제3차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서울특별시
◦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22-2026)
◦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https://floodmap.go.kr/)
◦ 산림공간정보서비스(https://map.forest.go.kr/forest/)
◦ 생활안전지도(https://www.safemap.go.kr/)

5.4 기타자료

5.4.1 온실가스 배출계수

가. 연료별 발열량

◦ 연료별 발열량과 배출계수는 「에너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표]에 제시된 연료별 국가 고유 발열량을 적용한다.

<표 5.4.1 - 1> 연료별 발열량

구분	에너지원	단위	총발열량			순발열량		
			MJ	kcal	석유환산톤 (10-3toe)	MJ	kcal	석유환산톤 (10-3toe)
석유	원유	kg	45.7	10,920	1.092	42.8	10,220	1.022
	휘발유	L	32.4	7,750	0.775	30.1	7,200	0.720
	등유	L	36.6	8,740	0.874	34.1	8,150	0.815
	경유	L	37.8	9,020	0.902	35.3	8,420	0.842
	바이오디젤	L	34.7	8,280	0.828	32.3	7,730	0.773
	B-A유	L	39.0	9,310	0.931	36.5	8,710	0.871
	B-B유	L	40.6	9,690	0.969	38.1	9,100	0.910
	B-C유	L	41.8	9,980	0.998	39.3	9,390	0.939
	프로판(LPG1호)	kg	50.2	12,000	1.200	46.2	11,040	1.104
	부탄(LPG3호)	kg	49.3	11,790	1.179	45.5	10,880	1.088
	나프타	L	32.2	7,700	0.770	29.9	7,140	0.714
	용제	L	32.8	7,830	0.783	30.4	7,250	0.725
	항공유	L	36.5	8,720	0.872	34.0	8,120	0.812
	아스팔트	kg	41.4	9,880	0.988	39.0	9,330	0.933
	윤활유	L	39.6	9,450	0.945	37.0	8,830	0.883
	석유코크스	kg	34.9	8,330	0.833	34.2	8,170	0.817
	부생연료유1호	L	37.3	8,900	0.890	34.8	8,310	0.831
	부생연료유2호	L	39.9	9,530	0.953	37.7	9,010	0.901
가스	천연가스(LNG)	kg	54.7	13,080	1.308	49.4	11,800	1.180
	도시가스(LNG)	Nm3	42.7	10,190	1.019	38.5	9,190	0.919
	도시가스(LPG)	Nm3	63.4	15,150	1.515	58.3	13,920	1.392
석탄	국내무연탄	kg	19.7	4,710	0.471	19.4	4,620	0.462
	연료용 수입무연탄	kg	23.0	5,500	0.550	22.3	5,320	0.532
	원료용 수입무연탄	kg	25.8	6,170	0.617	25.3	6,040	0.604
	연료용 유연탄(역청탄)	kg	24.6	5,860	0.586	23.3	5,570	0.557
	원료용 유연탄(역청탄)	kg	29.4	7,030	0.703	28.3	6,760	0.676
	아역청탄	kg	20.6	4,920	0.492	19.1	4,570	0.457
	코크스	kg	28.6	6,840	0.684	28.5	6,810	0.681
전기 등	전기(발전기준)	kWh	8.9	2,130	0.213	8.9	2,130	0.213
	전기(소비기준)	kWh	9.6	2,290	0.229	9.6	2,290	0.229
	신탄	kg	18.8	4,500	0.450	-	-	-

비고
1. "총발열량"이란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의 잠열을 포함한 발열량을 말한다.
2. "순발열량"이란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의 잠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3. "석유환산톤"(toe: ton of oil equivalent)이란 원유 1톤(t)이 갖는 열량으로 107kcal를 말한다.
4. 석탄의 발열량은 인수식(引受式)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코크스는 건식(乾式)을 기준으로 한다.
5. 최종 에너지사용자가 사용하는 전력량 값을 열량 값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1kWh=860kcal를 적용한다.
6. 1cal=4.1868J이며, 도시가스 단위인 Nm3은 0℃ 1기압(atm) 상태의 부피 단위(m3)를 말한다.
7. 에너지원별 발열량(MJ)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며, 발열량(kcal)은 발열량(MJ)으로부터 환산한 후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다. 두 단위 간 상충될 경우 발열량(MJ)이 우선한다.
자료 :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개정 2022.11.21.>

나. 연료종류별 온실가스 배출계수

◦ 연료종류별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에 제시된 자료를 적용한다.

<표 5.4.1 - 2> 연료종류별 온실가스 배출계수

연 료 명		국내 에너지원 기준	CO_2	CH_4				N_2O	
				에너지 산업	제조업 건설업	상업 공공	가정 기타	에너지 산업 제조업 건설업	상업 공공 가정 기타
1. 액체연료									
원 유		원유	73,300	3	3	10	10	0.6	0.6
오리멀젼		-	77,000	3	3	10	10	0.6	0.6
천연가스액		-	64,200	3	3	10	10	0.6	0.6
가솔린	자동차용 가솔린	휘발유	69,300	3	3	10	10	0.6	0.6
	항공용 가솔린	-	70,000	3	3	10	10	0.6	0.6
	제트용 가솔린	JP-8	70,000	3	3	10	10	0.6	0.6
제트용 등유		JET A-1	71,500	3	3	10	10	0.6	0.6
기타 등유		실내 등유 보일러 등유	71,900	3	3	10	10	0.6	0.6
혈암유		-	73,300	3	3	10	10	0.6	0.6
가스/디젤 오일		경유, B-A	74,100	3	3	10	10	0.6	0.6
잔여 연료유	B-A유	B-A	75,100	3	3	10	10	0.6	0.6
	B-B유	B-B	76,400	3	3	10	10	0.6	0.6
	B-C유	B-C	77,400	3	3	10	10	0.6	0.6
액화석유가스		LPG	63,100	1	1	5	5	0.1	0.1
에탄		-	61,600	1	1	5	5	0.1	0.1
나프타		납사	73,300	3	3	10	10	0.6	0.6
역청(아스팔트)		아스팔트	80,700	3	3	10	10	0.6	0.6
윤활유		윤활유	73,300	3	3	10	10	0.6	0.6
석유 코크스		석유코크	97,500	3	3	10	10	0.6	0.6
정유공장 원료		정제연료 (반제품)	73,300	3	3	10	10	0.6	0.6
기타 오일	정유가스	정제가스	57,600	1	1	5	5	0.1	0.1
	접착제 (파라핀왁스)	파라핀왁스	73,300	3	3	10	10	0.6	0.6
	백유	용제	73,300	3	3	10	10	0.6	0.6
	기타석유제품	기타	73,300	3	3	10	10	0.6	0.6
II. 고체연료									
무 연 탄		국내 무연탄 수입 무연탄	98,300	1	10	10	300	1.5	1.5
점 결 탄		원료용 유연탄	94,600	1	10	10	300	1.5	1.5
기타 역청탄		연료용 유연탄	94,600	1	10	10	300	1.5	1.5
하위 유연탄		아역청탄	96,100	1	10	10	300	1.5	1.5

연 료 명		국내 에너지원 기준	CO_2	CH_4				N_2O	
				에너지 산업	제조업 건설업	상업 공공	가정 기타	에너지 산업 제조업 건설업	상업 공공 가정 기타
갈 탄		갈탄	101,000	1	10	10	300	1.5	1.5
유혈암 및 역청암		-	107,000	1	10	10	300	1.5	1.5
갈탄 연탄		-	97,500	1	10	10	300	1.5	1.5
특허 연료		-	97,500	1	10	10	300	1.5	1.5
코크스	코크스로 코크스	코크스	107,000	1	10	10	300	1.5	1.5
	가스 코크스	-	107,000	1	1	5	5	0.1	0.1
콜타르		-	80,700	1	10	10	300	1.5	1.5
III. 기체연료									
부 생 가 스	가스공장 가스	-	44,400	1	1	5	5	0.1	0.1
	코크스로 가스	코크스가스	44,400	1	1	5	5	0.1	0.1
	고로 가스	고로가스	260,000	1	1	5	5	0.1	0.1
	산소 강철로 가스	전로가스	182,000	1	1	5	5	0.1	0.1
천연가스		천연가스(LNG)	56,100	1	1	5	5	0.1	0.1
IV. 기타 화석연료									
도시 폐기물 (비-바이오매스 부분)		-	91,700	30	30	300	300	4	4
산업 폐기물		-	143,000	30	30	300	300	4	4
폐 유		-	73,300	30	30	300	300	4	4
토 탄		이탄	106,000	1	2	10	300	1.5	1.4
V. 바이오매스(Biomass)									
고체 바이오연료	목재/목재폐기물	-	112,000	30	30	300	300	4	4
	아황산염 잿물(흑액)	-	95,300	3	3	3	3	2	2
	기타 고체바이오매스	-	100,000	30	30	300	300	4	4
	목 탄	-	112,000	200	200	200	200	4	1
액체 바이오연료	바이오 가솔린	-	70,800	3	3	10	10	0.6	0.6
	바이오 디젤	-	70,800	3	3	10	10	0.6	0.6
	기타 바이오연료	-	79,600	3	3	10	10	0.6	0.6
기체 바이오연료	매립지 가스	-	54,600	1	1	5	5	0.1	0.1
	슬러지 가스	-	54,600	1	1	5	5	0.1	0.1
	기타 바이오가스	-	54,600	1	1	5	5	0.1	0.1
기타 비-화석연료	도시폐기물 (바이오매스부분)	-	100,000	30	30	300	300	4	4

주) "에너지산업"이란 연료 추출 또는 전력생산, 열병합발전, 열공장(heat plant), 석유 정제산업, 고체연료의 제조(코크스, 갈탄 등) 등의 산업을 의미한다.

자료 :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 2015, 환경부 <개정 2015.12.09.>

<표 5.4.1 - 3> 연료별, 온실가스별 기본 배출계수

연료종류	기본 배출계수 (kg/TJ)		
	CO_2	CH_4	N_2O
휘발유	69,300	25	8.0
경유	74,100	3.9	3.9
LPG	63,100	62	0.2
등유	71,900	-	-
윤활유	73,300	-	-
CNG	56,100	92	3
LNG	56,100	92	3

자료 : 1.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 2015.12, 환경부/국토환경평가과
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2016.12, 환경부

다.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계수

<표 5.4.1 - 4> 폐수처리부문 CH_4 배출계수

업 종	배출계수 ($kgCH_4/kgBOD$)
화학	0.000025324
전기전자	0.0029398
피혁·신발	0.00042027
음식료품	0.0057589
섬유	0.00075604
제지	0.00055489
비금속	0.00042648
발전수도	0.0074021
폐수처리업	0.0017689
금속	0.013865
기타산업[1)]	0.0033919

1) 기타산업의 경우 다른 10개 업종 배출계수의 평균값
자료 :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 2015, 환경부 <개정 2015.12.09.>

<표 5.4.1 - 5> 폐기물 소각에서 CH_4 배출계수

소각/기술유형		CH_4 배출계수(습량기준) kg/Gg
연속식 소각	스토커	0.2
	유동상	0
준연속식 소각	스토커	6
	유동상	188
배치형(회분식) 소각	스토커	60
	유동상	237

자료 :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 2015, 환경부 <개정 2015.12.09.>

<표 5.4.1 - 6> 폐기물 소각에서 N_2O 배출계수

소각 유형 및 기술분류		N_2O 배출계수 (kgN_2O/Gg)
연속식	스토커	47
	유동상	67
준연속식	스토커	41
	유동상	68
배치식	스토커	56
	유동상	221

자료 :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 2015, 환경부 <개정 2015.12.09.>

<표 5.4.1 - 7> 폐기물 소각에서 CO_2 배출계수

국가 배출원 분류	국가 조성 분류	IPCC 배출원 분류	dm	CF	FCF
생활 폐기물	음식물 채소류	MSW	0.40	0.38	0.00
	종이류		0.7951	0.4276	0.01
	나무류		0.85	0.50	0.00
	고무피혁류		0.9449	0.6201	0.20
	플라스틱류		0.8605	0.7630	1.00
	기타가연분		0.5548	0.5137	1.00
	불연분(불연분전체)		0.90	-	-

국가 배출원 분류	국가 조성 분류	IPCC 배출원 분류	dm	CF	FCF
사업장 폐기물	폐지류	Industrial Waste	0.6997	0.4252	0.01
	폐목재류		0.8846	0.6060	0.00
	폐섬유천류		0.9897	0.5488	0.16
	폐합성수지류		0.9803	0.6695	0.80
	폐합성고무류		0.9978	0.8293	0.17
	폐피혁류		0.9843	0.5779	0.20
	폐수처리슬러지		0.4250	0.4737	0.00
	공정슬러지		0.3197	0.4246	0.00
	정수처리슬러지		0.1677	0.4143	0.00
	하수처리슬러지		0.2270	0.4566	0.00
	동식물성폐잔재물		0.4350	0.5222	0.00
	폐식용유		0.9850	0.7305	0.00
	기타가연분		0.5548	0.5137	1.00
	불연분		0.90	-	-
건설 폐기물	종이류	Industrial Waste	0.9660	0.4069	0.01
	나무류		0.8846	0.6060	0.00
	폐합성수지류		0.9803	0.6695	0.80
	폐섬유		0.9897	0.5488	0.16
	기타가연분		0.5548	0.5137	1.00
	불연분		0.90	-	-
지정 폐기물	전체(Bulk)	Harzardous Waste		0.4252	0.275
	공정슬러지		0.35	0.6060	0.00
	폐수처리슬러지		0.5667	0.5488	0.00
	폐합성고무		0.8354	0.6695	0.17
	폐합성수지		0.8312	0.8293	0.80
	광재		0.50	0.5779	-
	분진		0.50	0.4737	-
	소각재		0.8684	0.4246	-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0.50	0.4143	-
	폐내화물 및 도자기조각		0.50	0.4566	-
	폐석면		0.50	0.5222	-
	폐수처리슬러지		0.5667	0.7305	0.00
	폐유독물		0.3823	0.5137	0.90
	폐주물사 및 폐사		0.50	-	
	폐촉매		0.9840	0.4069	0.90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0.9970	0.6060	0.90
	PCB함유 폐기물		0.8793	0.6695	0.90
	기타폐유기용제		0.1783	0.5488	1.00
	폐농약		0.3233	0.5137	-
	폐산		0.50	-	-
	폐알칼리		0.50		-
	폐유		0.9650	0.45	1.00
	폐페인트 및 폐락카		0.4763	0.2796	1.00
	할로겐족 용기용제		0.0057	0.8162	1.00
	기타전체		0.50	0.6757	1.00
병원성 폐기물	전체(Bulk)	Clinical Waste	0.6945	-	0.40
	조직물류		0.6945	-	0.00
	폐합성수지류 등		0.8312	0.2652	0.40

자료 :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 2015, 환경부 <개정 2015.12.09.>

라. 간접 온실가스 배출계수

1) 전력, 열 용수 사용 배출계수

◦ 전력, 열, 용수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다음과 같다.

<표 5.4.1 - 8> 간접 온실가스 배출계수

구분	온실가스 배출계수
전력사용	E = Q x EF Q : 외부에서 공급받은 전력 사용량(MWh) EF : 전력 배출계수, 0.466 tCO_2eq/MWh
열사용	E = Q x EF Q : 외부에서 공급받은 열(스팀) 사용량(TJ) EF : 열(스팀) 배출계수, 59,685 $kgCO_2eq/TJ$
용수사용 (상수, 공업용수)	E = 수도사용량(1,000m^3) x EF EF : 수도 배출계수, 332$kgCO_2/m^3$ (상수), 102$kgCO_2/m^3$ (공업용수)

자료 :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 2015, 환경부 <개정 2015.12.09.>

<표 5.4.1 - 9> 에너지부문(간접배출_전기) 온실가스 배출계수

구 분	CO_2 (tCO_2/MWh)	CH_4 ($kgCH_4/MWh$)	N_2O (kgN_2O/MWh)
2개년 평균 (2010~2011)	0.4645	0.0053	0.0033

자료 : 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지침, 한국전력거래소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4.1

2) 축산업 배출계수

◦ 가축종별 온실가스 산정식 및 배출계수는 다음과 같다.

<표 3.1.1 -1> 분뇨관리에서의 CH4 배출

$$E = \sum_t (EFt \times \frac{Nt}{10^6})$$

E : 가축의 분뇨관리에 이한 CH_4 배출량, $GgCH_4/yr$
Nt : 가축 종별 사육두수, 두
EFt : t 가축종에 대한 CH_4 배출계수

자료 :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 2015.12, 환경부/국토환경평가과

<표 3.1.1 -2> 가축종별 장내 발효 배출계수

구 분	젖소		한육우		
	육성우	착유우	송아지	번식우	비육우
배출계수 (kgCH4/yr)	61.813	106.690	39.191	48.979	50.712

자료 :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 2015.12, 환경부/국토환경평가과

<표 3.1.1 -3> 가축종별 장내 발효 배출계수

구 분	염소	말	돼지	사슴	토끼
배출계수 (kgCH4/yr)	5	18	1.5	20	0.2297

자료 :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 2015.12, 환경부/국토환경평가과

<표 3.1.1 -4> 가축종별 장내 발효 배출계수

구 분	젖소	한육우	돼지	닭	
				산란계	육계
배출계수 (kgCH4/yr)	19.953	0.621	0.183	0.022	0.016

자료 :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 2015.12, 환경부/국토환경평가과

<표 3.1.1 -5> 그 외 가축종의 분뇨관리 CH4 배출계수

구 분	산양	말	칠면조	오리	사슴	토끼
배출계수 (kgCH4/yr)	0.20	2.34	0.09	0.03	0.22	0.08

자료 :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 2015.12, 환경부/국토환경평가과

마. 지구온난화지수

◦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를 사용한다.

<표 5.4.1 - 10> 지구온난화지수

온실가스의 종류		지구온난화 계수
이산화탄소(CO_2)		1
메탄(CH_4)		21
아산화질소(N_2O)		310
수소불화탄소(HFCs)	HFC-23	11,700
	HFC-32	650
	HFC-41	150
	HFC-43-10mee	1,300
	HFC-125	2,800
	HFC-134	1,000
	HFC-134a	1,300
	HFC-143	300
	HFC-143a	3,800
	HFC-152a	140
	HFC-227ea	2,900
	HFC-236fa	6,300
	HFC-245ca	560
과불화탄소(PFCs)	PFC-14	6,500
	PFC-116	9,200
	PFC-218	7,000
	PFC-31-10	7,000
	PFC-c318	8,700
	PFC-41-12	7,500
	PFC-51-14	7,400
육불화황(SF6)		23,900

자료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서 울 시 가 축 분 뇨 관 리 기 본 계 획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서

2025. 10.

서울특별시

목 차

제 1 장 요약문 ····· 1

1.1 계획의 내용 ····· 3

1.2 지역개황 ····· 4

1.3 평가항목·범위 설정 ····· 5

1.4 환경에 미칠 주요 환경영향 ····· 6

1.5 환경보전대책 ····· 7

1.6 대안의 설정 및 대안별 환경영향, 최종안 선정 ····· 7

1.7 결론 ····· 10

제 2 장 계획의 개요 ····· 11

2.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13

2.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13

2.3 추진경위 및 절차 ····· 14

2.4 계획의 내용 ····· 15

제 3 장 환경보전목표 ····· 27

3.1 환경보전목표 ····· 29

3.2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29

제 4 장 대안 ····· 33

4.1 대안의 종류 설정 ····· 35

4.2 대안의 비교 및 검토 ····· 36

제 5 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43

5.1 평가대상지역 설정 ····· 45

5.2 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 45

5.3 평가항목의 설정 ····· 46

제 6 장 지역개황 ····· 49
6.1 일반현황 ····· 51
6.2 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현황 ····· 53
6.3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 60
6.4 환경피해유발 시설물 현황 ····· 61
6.5 환경기초시설 현황 ····· 63
6.6 환경적인 배려를 필요로 하는 시설 현황 ····· 65

제 7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 69
7.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 71
7.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71
7.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 74

제 8 장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의 결정내용 및 조치내용 ····· 85
8.1 평가항목 설정 ····· 87
8.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88
8.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결과 및 조치내용 ····· 89

제 9 장 주민 등의 의견수렴 ····· 101
9.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103
9.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결과 ····· 105

제 10 장 계획의 적정성 ····· 107
10.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 109
10.2 계획의 연계성 및 일관성 ····· 124
10.3 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성 ····· 148

제 11 장 종합평가 및 결론 ····· 253

제 12 장 부록 ····· 259
12.1 평가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 261
12.2 용어해설 및 참고자료 ····· 267

제 1 장 요 약 문

1.1 계획의 내용
1.2 지역개황
1.3 평가항목·범위 설정
1.4 환경에 미칠 주요 환경영향
1.5 환경보전대책
1.6 대안의 설정 및 대안별 환경영향, 최종안 선정
1.7 결론

제 1 장 요 약 문

1.1 계획의 내용

계 획 명	◦서울시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공간적 범위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대상지
시간적 범위	◦기준연도 2026년 ◦목표연도 : 1단계 2029년 / 2단계 2032년 / 3단계 2035년 ◦타당성검토 : 2031년
내용적 범위	◦관할구역의 지리적 환경, 오염원 및 가축사육 현황 등에 관한 개요 ◦연도별·구역별·축종별 사육 현황과 장래 사육 예정인 가축의 마릿수 ◦가축별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장래 예상 발생량 ◦가축별 분뇨의 가축별 수집·운반·처리 현황 및 처리 계획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 ◦축산농가의 가축분뇨관리 현황 및 개선계획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실태조사 실시 ◦그 밖에 가축분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계획시행기관	◦서울특별시
계획승인기관	◦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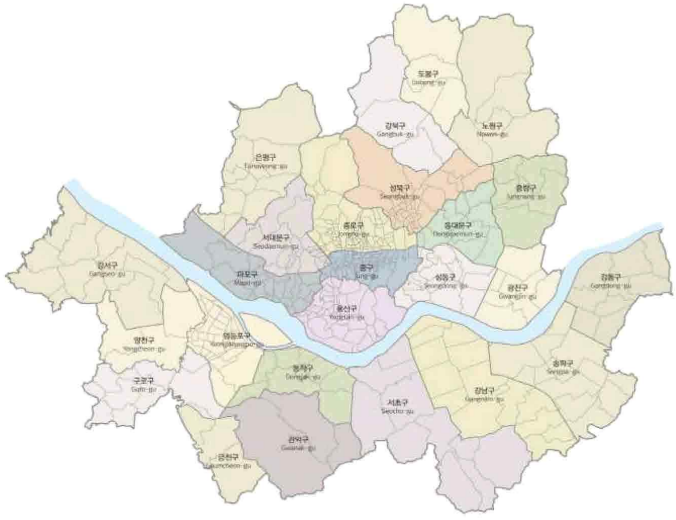

1.2 지역개황

◦ 계획지구 일원 환경관련지구·지역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2 - 1> 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 현황

구분		관련법규	계획지구 해당여부	비고
자연생태환경	생태·자연도 1등급	-자연환경보전법	O	1, 2, 3등급, 별도관리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O	18개소 위치
	야생생물 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O	10개소 위치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O	1개소 위치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	O	1개소 위치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산림보호법	X	해당없음
	백두대간보호지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X	해당없음
	특정도서지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X	해당없음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	O	6개소 위치
수환경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고시 제2025-46호	X	해당없음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O	1개소 위치
	수변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X	해당없음
	배출허용(폐수)적용 지역	-물환경보전법	O	'나'지역 해당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물환경보전법	X	해당없음
	수질오염총량단위유역	-물환경보전법	O	굴포A, 안양A, 한강I, 한강H, 탄천A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물환경보전법	O	한강서울 - Ib(좋음) 한강고양 - III(보통)
	수산자원 보호구역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X	해당없음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관리법	X	해당없음
대기환경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보전법	O	전지역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고시 제2018-23호	X	해당없음
	저황유 공급·사용 지역	-대기환경보전법	O	황 함유율 0.1% 이하의 경유, 황 함유량 0.3% 이하의 중유
	악취관리지역	-악취방지법	X	해당없음

1.3 평가항목·범위 설정

◦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현황을 조사·분석하고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대상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항목 및 범위를 설정하였다.

<표 1.3 - 1>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설정

평가항목	예측 및 평가방법	관련자료
1. 계획의 적정성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가) 국가환경정책	◦환경계획 및 시책과의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여부	◦국가환경종합계획, 국가폐기물종합관리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기후변화 협약대응 종합대책 등 ◦각종 법령 및 계획관련 자료
나) 국제환경동향·협약·규범	◦국제적 환경관련 협약, 조약, 규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는지 여부	
2)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대상계획과의 연관성 및 준수를 위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관계부처 계획과의 연계성	◦물환경보전법 ◦가축분뇨와 관련된 정부시책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비점오염관리종합대책 등 상·하위계획
나)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관련 상위 행정계획 및 타 행정계획간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성 있게 반영되었지의 여부	
3) 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성		
가) 공간계획의 적정성	◦국토 환경적 토지이용 차원에서 공간계획의 효율적으로 계획되었는지 여부 검토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보고서 ◦문헌자료
나)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국가적 환경문제와 연계하여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검토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보고서 ◦문헌자료
다) 환경용량의 지속성	◦악취, 토양, 지표수 현황 파악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용량 및 환경지표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였는지 여부 검토 ◦적정 저감방안 검토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보고서 ◦토양 및 수질측정망 자료 ◦문헌자료

1.4 환경에 미칠 주요 환경영향

◦ 본 계획시행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환경상 미칠 항목들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기법 등을 이용하여 항목별 영향을 예측·평가하였다.

◦ 계획시행으로 인해 주변 환경에 미칠 주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예측된다.

<표 1.4 - 1> 환경에 미칠 주요 환경영향

구 분	주요 영향
악취	◦ 사육두수 및 가축분뇨 발생 전망 결과 현재와 동일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악취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됨
토양	◦ 향후 가축분뇨 관리 미흡시 토양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정책계획의 특성상 개발행위가 수반되지 않아 토양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됨
수질	◦ 서울시 가축분뇨발생으로 인한 수질오염부하는 통계적으로 무시 가능한 수준이며, 앞서 살펴본 수질측정망 지점(중랑천6, 탄천, 청계천 등)에서 관측되는 수질 문제는 도시화, 산업화, 하수처리 인프라의 한계 등 대규모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복합적 작용이 주원인 것으로 판단됨

1.5 환경보전대책

◦ 본 계획시행으로 인해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을 최소화하고 계획효과와 환경보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항목별 저감방안을 수립하였다.

<표 1.5 - 1> 환경보전대책

구 분	환경보전대책
악취	◦ 악취 관리 필요성 ◦ 단계적 가축사육 감축 추진 ◦ 서울시 가축분뇨 관련 악취 관리 계획 ◦ 발생단계 악취저감 체계 ◦ 처리단계 악취저감 체계
토양	◦ 분뇨 운반체계 점검 및 관리 ◦ 가축 두수 감소계획
수질	◦ 서울시 수질측정망 측정값은 정기적으로 확인 ◦ 서울시 여건에 맞는 두수 관리 계획에 따른 적정 처리량을 항상 100% 전량 처리 목표로 설정하여 목표 달성

1.6 대안의 설정 및 대안별 환경영향, 최종안 선정

◦ 본 기본계획에 대한 대안의 설정은 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획 비교', '수단·방법', '시기·순서'를 대안으로 선정하였다.

1.6.1 계획비교

◦ 서울시 가축사육 현황 및 분뇨처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안을 검토 한 결과, 적정관리 기본계획은 1안(가축분뇨 발생 감소화)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이에 따라 현재 퇴비화 처리 여건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자연스러운 개체수 감소를 통화 분뇨 발생 감소화 유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3단계로 주요 추진전략을 발생단계, 수집·운반단계, 처리단계, 자원화방안으로 구분하여 주요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표 1.6 - 1> 수단·방법(가축분뇨 처리방안)에 대한 검토

<table>
<tr><th>구분</th><th>1안(가축분뇨 발생 감소화)</th><th>2안(효율적 자원화)</th><th>3안(지자체 연계 처리)</th></tr>
<tr><td>개념</td><td>◦공공 사슴사육시설의 개체수 감축
: 25년까지 40%감축</td><td>◦퇴비화, 액비화, 바이오가스화</td><td>◦서울시 인접 지자체와 연계 처리</td></tr>
<tr><td>현황</td><td>◦서울시 가축종 : 젖소 10두, 사슴 66두, 개 31두
◦공공시설(서울숲, 북서울꿈의숲) :사슴 개체 50~80% 감소 예상
◦사설시설 : 세한사슴, 새원사슴, 서초목장 운영자의 고령화 등으로 폐업 등 예상</td><td>◦현재 퇴비화 방식으로 대다수 처리중
<table><tr><th>구분</th><th>사육두수(두)</th><th>연발생량(kg)</th><th>처리방식</th></tr><tr><td>젖소</td><td>10</td><td>101,507</td><td>위탁처리</td></tr><tr><td>사슴</td><td>66</td><td>8,760</td><td>퇴비처리</td></tr><tr><td>개</td><td>31</td><td>23,762</td><td>자가정화처리</td></tr></table></td><td>◦서울시 시내 처리용량 한계 해소를 위해 경기도 지역의 공공처리시설 또는 민간 시설과 협업 이송·처리
◦경기도의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과 연계 추진</td></tr>
<tr><td>장점</td><td>◦분뇨 발생량 직접 감소
◦환경부하 및 관리 부담 완화
◦정책적 효과 : 국가·지자체 환경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
◦지역 환경질 개선
◦관리 효율성 및 비용 절감</td><td>◦자원 순환 효과 극대화 및 토양 개량에 기여
◦환경적 부담 감소, 친환경 농업 정책 및 도시생태 네트워크에 긍정적 파급효과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자원화 시설지원·기술개발·운영관리 효율화 촉진</td><td>◦처리시설의 효율적 활용
: 서울시 내 기존 기존 퇴비화 시설 포화 문제 보완 및 인접 지역 처리자원 효율적 이용
◦환경오염 감소 : 분뇨처리량의 분산 및 전문처리시설 집중운영
◦농가 지원 및 자원화 확대
◦행정협력 강화
: 서울, 경기도 공동문제 해결하기 위한 협력체제 강화</td></tr>
<tr><td>단점</td><td>◦공공시설 내 사슴 개체수 감축
- 생태체험 기회가 감소, 유전자 다양성이 저하
◦사설시설의 개체수 감축
- 사육농가의 소득 감소 우려
◦다양한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td><td>◦현실적으로 가축분뇨 전량을 서울시 내에서 처리 어려움
◦각종 기준 및 품질관리 체계 미흡→퇴비 품질저하 우려
◦시설 투자운영비 및 공간, 시설 노후화, 관리 인력부족 등 경제성·실행성가능성 측면 한계</td><td>◦이송 비용과 물류 부담 : 이송거리 증가에 따른 비용, 악취 피해 위험성 증가
◦행정·조직 간 협업 어려움
◦지역 주민 반대 가능성
◦처리시설 수용 한계</td></tr>
<tr><td>선정</td><td>○</td><td></td><td></td></tr>
<tr><td>검토 결과</td><td colspan="3">◦서울시 현실적 여건을 고려 시 1안(가축분뇨 발생 감소화) 선택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검토됨
◦현재 퇴비화 처리 여건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자연스러운 개체수 감소를 통화 분뇨 발생 감소화 유도</td></tr>
</table>

1.6.2 입지에 대한 대안별 비교·검토

가. 대안검토

◦ 서울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안과 일괄 시행안을 대안으로 비교·검토하였으며,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6 - 2> 시기·순서에 대한 대안검토

구 분	대안 1 단계별 시행	대안 2 일괄 시행
내 용	◦ 현재 퇴비화 처리 여건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자연스러운 개체수 감소를 통화 분뇨 발생 감소화 유도	◦ 일괄적인 시행
장 점	◦ 현재 퇴비화 처리 여건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자연스러운 개체수 감소를 통화 분뇨 발생 감소화 유도 ◦ 이러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통해 서울시는 도시 내 가축분뇨의 발생부터 자원화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점진적으로 분뇨발생량을 줄여 궁극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과 수질보전을 실현	◦ 시행기간의 단축 구축 가능
단 점	◦ 단계별 추진에 따른 계획시행에 상대적으로 장기간 소요	◦ 동시 시행에 따른 환경부하 가중 및 체계적 계획 추진 어려움 ◦ 대규모 사업비 필요
선정안	O	
선정사유	◦ 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장기화될 수 있으나,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점진적으로 분뇨발생량을 줄여 궁극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과 수질보전을 실현하고자 함 ◦ 3단계로 주요 추진전략을 발생단계, 수집·운반단계, 처리단계, 자원화방안으로 구분하는 1안을 대안으로 선정	

나. 단계별 추진전략 및 계획

◦ 서울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3단계 걸쳐 추진전략과 가축분뇨 발생·관리·처리 단계별 추진계획을 설정하여 기본계획 수립하였다.

<표 4.2.3 - 2> 단계별 추진전략

구분	시행기간	목표년도	추진계획
1단계	2026~2029년	2029	◦ 가축분뇨시설 관리강화 및 시설 15% 감소
2단계	2030~2032년	2032	◦ 가축분뇨시설 50% 감소
3단계	2033~2035년	2035	◦ 가축분뇨시설 감소 관리

<표 4.2.3 - 3> 단계별 추진계획

추진 전략	단계별	1단계 (2026년~2029년)	2단계 (2030년~2032년)	3단계 (2032년~2035년)
		가축분뇨시설 관리강화 및 시설 15% 감소	가축분뇨시설 50% 감소	가축분뇨시설 감소 관리
주요 추진 계획	발생 단계	- 가축두수 모니터링 및 감축계획(사설시설) 수립 (총 6개소 → 총 5개소)	- 가축분뇨시설 감축 추진 (총 5개소 → 3개소) · 사설시설 폐업시 보상 등 · 공공시설 가축관리(암수구별 등)에 따른 자연감소 추진 (총 5개소 → 총 3개소) - 가축사용 제한 조례제정 추진 (미제정 자치구 限)	- 감소된 가축분뇨시설 관리 (총 3개소) · 가축분뇨시설(개체수 감소 시) 면적조정 등 - 가축사육 조례 제정 (미제정 자치구 限)
	수집·운반 단계	- 효율적 가축분뇨 수집·운반 방안 모색	- 일부 자치구 가축분뇨 공동수거 체계 구축 - 가축분뇨 미발생 자치구 수집 운반업 폐업 조정	- 가축분뇨 인접지역 공동자원화 시설 운반 - 가축분뇨관련영업자(수집운반업 등) 지도점검 등 관리 강화
	처리 단계	- 적정 퇴비화를 위한 농장주 및 담당자 교육실시 - 일부 가축분뇨시설 정화처리	- 적정퇴비화 방안 유지 - 일부 가축분뇨시설 정화처리 - 가축분뇨 분뇨처리시설 투입	- 적정 퇴비화 방안 유지 - 일부 가축분뇨시설 정화처리 - 인접지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투입
	자원화 방안	- 적정 퇴비화로 양질의 퇴비 생산	- 양질의 퇴비 생산 - 바이오가스 생산량 증대	- 양질의 퇴비 생산 - 재생에너지 확대 기여

1.7 결론

◦ 본 계획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10년마다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가축분뇨 관리계획 수립지침, 2015,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계획수립의 기본방침을 준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내 가축분뇨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본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가축분뇨를 적정 관리하기 위하여 단계별 목표 및 추진전략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2장 정책계획의 개요

2.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2.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2.3 추진경위 및 절차
2.4 계획의 내용

제 2 장 정책계획의 개요

2.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2.1.1 계획의 배경

◦ 본 계획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10년마다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으로서, 2023년 8월 16일 법률 개정에 따라 제7조의 가축분뇨 실태조사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법적 의무가 강화되었다.

◦ 서울시는 타 시도에 비해 가축 사육 두수가 매우 적은 편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가축을 사육하고 있어 가축사육 현황, 분뇨 배출량 및 처리 실태 등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장기적인 대응 필요하며, 가축분뇨의 비점오염원 관리, 악취 저감, 자원화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계환경의 목표기준을 달성하고 쾌적한 자연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2.1.2 계획의 목적

◦ 서울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은 서울시 내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자원화 촉진을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또한 본 계획은 서울시 여건에 맞는 가축분뇨 처리체계 구축, 자원화 촉진, 악취 저감, 지속가능한 도시 축산 환경 조성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며, 법령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2.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대상에 해당하며, 정책계획의 종류 및 협의요청 시기는 아래와 같다.

◦ 본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책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 작성, 주민의견 수렴, 주민의견 반영여부 공개의 절차가 생략된다.

<표 2.2 - 1>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실시근거

구 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요청시기
아. 폐기물·분뇨·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가축분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승인하기 전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별표2]

2.3 추진경위 및 절차

가. 추진경위 및 계획

- 2024. 09. : 서울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용역 착수
- 2025. 02.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25. 03. : 서울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보고
- 2025. 06.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2025. 07. 18 ~ 07. 25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개최(서면심의)
- 2025. 07. 31 : 서울시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
- 2025. 08. 07 ~ 08. 20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2025. 09. :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서 포함) 협의 요청
- 2025. 11. : 전략환경영향평가(기후변화영향평가 포함) 협의 완료(예정)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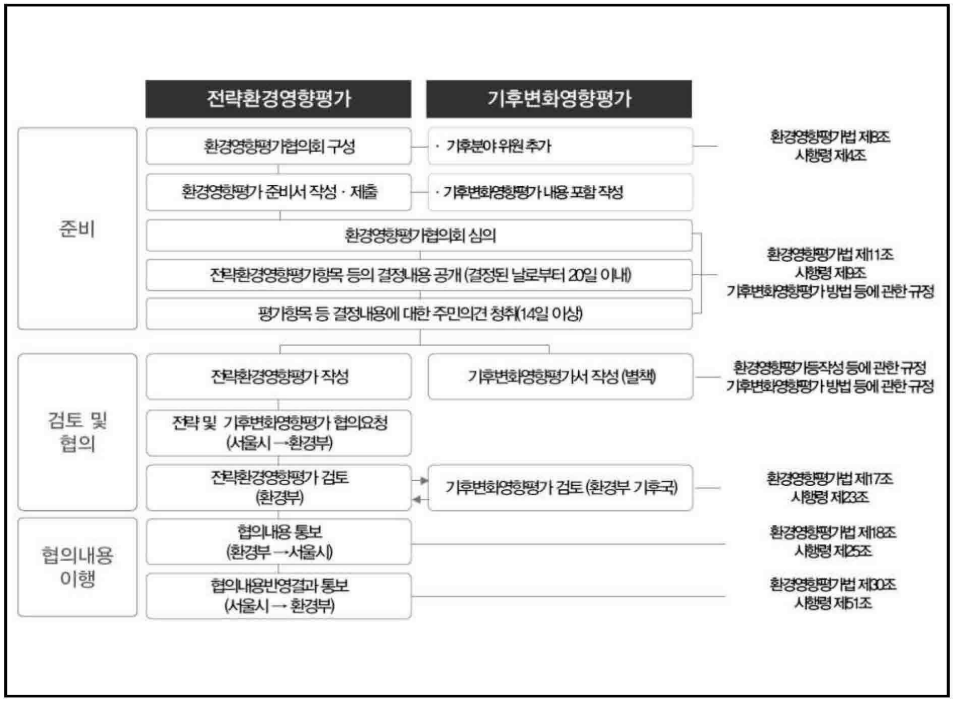

2.4 계획의 내용

2.4.1 계획의 개요

계 획 명	◦서울시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공간적 범위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대상지
시간적 범위	◦기준연도 2026년 ◦목표연도 : 1단계 2029년 / 2단계 2032년 / 3단계 2035년 ◦타당성검토 : 2031년
내용적 범위	◦관할구역의 지리적 환경, 오염원 및 가축사육 현황 등에 관한 개요 ◦연도별·구역별·축종별 사육 현황과 장래 사육 예정인 가축의 마릿수 ◦가축별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장래 예상 발생량 ◦가축별 분뇨의 가축별 수집·운반·처리 현황 및 처리 계획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 ◦축산농가의 가축분뇨관리 현황 및 개선계획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실태조사 ◦그 밖에 가축분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계획시행기관	◦서울특별시
계획승인기관	◦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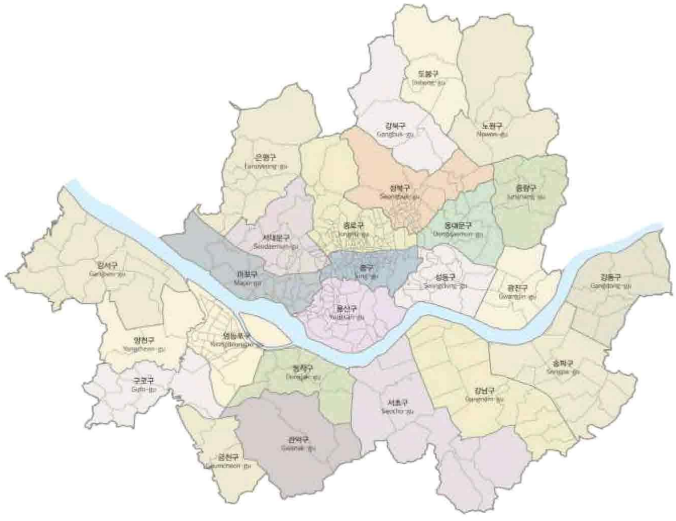

2.4.2 계획의 내용

가. 계획목표

◦ 기본목표 : 서울시 현실적 가축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및 수질보전 선도

◦ 실행목표 : 가축사육 제한과 점진적 개체수 감소로 분뇨발생 감소

나. 가축분뇨 적정처리 계획

1) 현 황

가) 가축사육 제한지역

◦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통적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생활환경보전·수질보전 목적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제한구역의 범위(전 지역 vs. 일부 지역), 거리 등 세부 지정 기준, 예외 허용 및 허가제 운영 방식, 기존 농가에 대한 특례 등에서 구별로 차이가 있다.

◦ 일부 자치구(예: 종로구, 마포구, 관악구 등)는 관할 전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실상 모든 가축사육을 금지하고 있다.

나) 서울시 가축사육 현황(2024년 서울시 자체관리 기준)

◦ 서울시는 2024년 기준 총 7개의 축사 중, 허가대상에 해당되는 경북농장 1개소는 폐쇄되어 최종 6개소의 신고시설을 운영 중이며, 가축 종은 젖소, 사슴, 개로 조사되었다.

◦ 자치구별로 성동구 1개소, 서초구 4개소, 강북구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폐쇄시설(서초구 경북농장 1개소)을 제외하고 서초구에 4개의 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 성동구에 서울숲공원 내 관상용 사슴 사육시설 1개소, 서초구에서는 경찰특공대에서 업무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고 있으며, 젖소 사육시설 1개소, 사슴 사육시설 2개소를 운영 중이며, 강북구의 북서울꿈의숲 내에도 관상용 사슴 사육시설 1개소를 운영 중이다.

<표 2.4.2 - 1> 서울시 자치구별 가축사육 현황

자치구	소재지	시설명	축종	사육두수	시설규모(㎡)	분뇨처리방법	비고
성동구	성수동1가 685-20	서울숲공원	사슴	26	2,770	퇴비	
서초구	방배동 산184	경찰특공대	개	31	1,009	정화	
	원지동 산 72	경북농장	한우	20	1,564	위탁	폐쇄
	내곡동 228-1	서초목장	젖소	10	574	위탁	
	우면동 192	세한사슴	사슴	23	396	퇴비	
	원지동 225-2	새원사슴	사슴	3	330	퇴비	
강북구	번동 90	북서울꿈의숲	사슴	14	2,511	퇴비	

나) 가축분뇨 처리 현황

◦ 서울시는 상업적 축산농가가 극소수(2024년 기준 소·사슴 등)로 가축분뇨 발생량이 매우 적은 편이다.

◦ 실제로 환경부 공식 통계에서도 서울시의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량은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가축분뇨는 서울시 공공분뇨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할 수 있으나, 현재 가축사육시설 대부분 퇴비화, 폐기, 정화 등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다) 공공처리시설

◦ 서울시 내 분뇨처리가 가능한 공공처리시설로는 4개의 물재생센터(중랑, 난지, 서남, 탄천) 중 분뇨처리 기능이 없는 탄천물재생센터를 제외한 3개 센터가 위치한다.

◦ 탄천은 과거 상수원 보호 문제와 지역 정서, 그리고 인근 초등학교(200m 이내) 등 교육환경보호법상 법적 제한으로 인해 분뇨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3개 센터는 가축뿐만 아니라 전체 분뇨를 자치구별로 집결 및 처리하는 시설로, 중랑물재생센터는 서울 동북부 9개 자치구 전역과 종로구, 의정부시 일부 지역을 담당하며 처리용량이 가장 크다.

난지물재생센터는 서울 서북부 4개 자치구 전역과 일부 지역(종로구, 중구, 성동구, 고양시)를 담당하고 있으며, 서남물재생센터는 서울 서남부 9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2.4.2 - 2> 공공처리시설 현황

시설명	처리용량 (분뇨, ㎘/일)	처리량(2024년 기준) (분뇨 및 정화조, ㎘/일)	이용 자치구
중랑물재생센터	4,000	4,528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종로구(일부), 의정부시(일부)
난지물재생센터	4,500	3,292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종로구(일부), 중구(일부), 성동구(일부), 고양시(일부)
서남물재생센터	4,000	4,000	용산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2) 서울시 가축분뇨 적정 관리계획 방향성

가) 정책방향 및 기본방침

◦ 서울시 내에서 가축분뇨를 처리 및 관리하는 유형은 개별 자체처리(정화, 퇴비, 액비 등), 위탁처리(단독, 연계 등)로 구분, 처리 방법은 시설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서울시의 도시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가축분뇨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토양 및 수질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 축종 및 축산농가, 규모별 장래 사육두수, 가축분뇨 예상 발생량, 축산계 수질오염총량 및 비점오염원 배출현황 등을 기반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적정 처리 목표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축종별 관리 유형 및 중점관리사항

(1) 보관 및 처리 원칙

◦ 서울시 소규모 시설은 자연부숙에 의한 퇴비화가 최적이며, 기술인력, 고가 장비 없이도 운영가능하다.

◦ 다만, 환경경오염 방지를 위해 주기적 점검(연 2회)으로 악취·유출 사전 차단이 필수적이다.

<표 2.4.2 - 3> 보관 및 처리원칙

구 분	내 용
저장 기간	◦ 1년 이내 보관 후 주기적 처리 악취 발생 최소화
분뇨 분리	◦ 고액분리기 또는 자연 침전을 통해 고형분(분)과 액상분(뇨) 분리
규모 적합성	◦ 소량 특성상 고가 시설 대신 저비용·저기술 방식 채택

(2) 축종별 분뇨관리 방법

구분	사슴 분뇨	젖소 분뇨	개 분뇨
발생량	약 40톤/년	약 30톤/년	약 5톤/년
보관	◦사육장 인접 폐쇄형 저장조 설치 → 악취 차단을 위해 덮개 및 생균제(EM) 투입	◦고액분리: 고형분 분리후 퇴비화 ◦저장 공간 -고형분 : 퇴비사(1.5m 높이 이하 적재, 자연송풍) -액상분 : 폐쇄형 액비저장조	◦고형분 위주 : 고형분 비율이 높아 직접 퇴비화 적합
처리	◦퇴비화 : 고형분은 퇴비사에서 1년간 부숙 후 퇴비 생산 ◦액비화 : 액상분은 액비저장조(4개월 이상 저장)에서 발효 후 활용 ◦폐기 : 미활용 분뇨 위탁처리(연1회)	◦퇴비 : 공원녹지 등에 활용 가능. ◦액비 : 주변 농경지(유기농)에 살포 (환경부 기준 준수)	◦소형 퇴비통 설치 : 발효촉진제(톱밥+미생물) 혼합 후 3개월 부숙 ◦폐기 대안 : 퇴비화 어려울 시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위탁 처리 가능

(3) 관리 핵심사항

구 분	내 용
저장 주기	◦ 분뇨 6개월마다 교반으로 부패 가속화
기간별 시행사항	◦ 1~3개월 : 분뇨 분리 후 저장조 적재 ◦ 4~6개월: 고형분 퇴비화, 액상분 액비화 진행 ◦ 7~12개월 : 미활용 분뇨 위탁 처리 및 퇴비/액비 활용
악취관리	◦ 소량 특성상 고가 시설 대신 저비용·저기술 방식 채택 ◦ 저장조 주변 생균제 분무 (주 1회) ◦ 강우 시 유출수 차단벽 설치

다) 관리계획안 대안 검토

◦ 서울시 가축사육 현황 및 분뇨처리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획안을 검토하였으며, 검토결과 '단계별 가축분뇨시설 감소' 안을 적정관리 기본계획으로 결정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울시 가축종별 현황

◦ 서울시 가축종은 현재(2024년 기준) 젖소 10두, 사슴 66두, 개 31두로 확인되었으며, 젖소 두수 10마리 내외 유지, 사슴 66두 유지, 개 31두 유지로 나타났다.

◦ 단계적 가축두수의 변화 예측과 분뇨발생량 감축 계획 검토를 위해 축종의 평균연령과 수명, 농장의 현황을 검토하였다.

(2) 서울시 가축분뇨시설 단계별 감소 계획

(가) 공공시설

① 서울숲 사슴

◦ 서울숲은 2005년 6월 개장과 함께 다양한 사슴류를 방사하며 생태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시작 함

◦ 개장 초기에는 꽃사슴 21마리, 고라니 10마리, 다마사슴 5마리 등 총 36마리의 사슴류가 방사됨 개장 직후 추가 방사로 꽃사슴 19마리, 다마사슴 3마리가 추가로 방사되어, 개장 초기 총 사슴류는 약 58마리로 추정됨

◦ 그러나 2006년 이후 사슴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수사슴 5마리와 암사슴 40마리 등 총 45마리를 외부로 매각하는 조치가 이루어짐

◦ 2024년 기준 서울숲 사슴 두수는 26마리로, 현재 기준 감소세를 반영하면 2035년까지 50% 자연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표 2.4.2 - 4> 서울숲의 연도별 사슴 마리수 변화

시기	주요 내용	사슴 마리수
2005년 6월	개장 및 첫 방사	36~58마리
2005년 하반기	출산 등으로 개체수 증가	+5마리
2006년	개체수 증가, 일부 매각	50여 마리, 45마리 매각
2024년	안정적 관리	26마리

② 북서울꿈의숲 사슴

◦ 2009년 개장 이후 사슴방사장을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자연생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정확한 초기 마리수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2021년 기준 사슴 21마리(수컷 9, 암컷 7, 보육분 5)가 방사되어 있었음

◦ 2024년 기준으로 북서울꿈의숲 사슴방사장에는 14마리의 사슴이 서식하고 있으며, 특이사항은 암수 분리 중임. 2021년 대비 30% 감소하였음

◦ 따라서 현재 사슴 연령을 감안하여 감소세를 고려하면 2035년까지 최대 80% 자연감소를 예상함

<표 2.4.2 - 5> 북서울꿈의숲의 연도별 사슴 마리수 변화

시기	주요 내용	사슴 마리수
2009년	개장 및 첫 방사	(공식 수 미공개)
2021년	사슴방사장 운영, 가족 단위 번식	21마리(수 9, 암 7, 보육 5)
2024년	안정적 관리	14마리

◦ 꽃사슴은 사육 시 평균 수명은 15~18년, 최대 25년 이상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되고 있음

◦ 서울숲과 북서울꿈의숲 사슴들이 관리환경에서 적절히 사육되었을 때, 평균연령은 약 10년 전후, 길게는 12년 수준일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2035년까지 평균적으로 공공시설 2개소 대상 65%가량 두수 감소를 예상함

③ 경찰특공대 개

◦ 경찰특공대에서 사육 중인 개 31마리는 공공 업무 목적으로 현재 두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다만, 경찰특공대 내부 자체 정화시설을 통해 개 분뇨는 자가처리 되고 있음에 따라 분뇨관리 시설 감소 목표 대상으로는 제외하는 것이 적절함

(나) 사설시설

① 세한사슴, 새원사슴

◦ 서초구 내 사설 사슴농장 2개소의 개체수 감소 의지 협의 후, 지속적 감축을 통한 폐업을 유도하고 가축분뇨 감속 목표 실현 가능

◦ 현재 기준 수익목적의 사육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수익목적 사육 의사가 있다면 감축노력에 대한 보상을 고려해야 할 수 있음

② 서초목장 젖소

◦ 현재 서초구에 위치한 서초목장의 운영자의 고령화로 젖소 10두의 관리 지속성이 불투명한 상황임

◦ 장기적으로 운영자 연령을 고려하여 두수의 감소 및 폐업이 예상됨에 따라 가축분뇨 발생 감소 목표 실현 가능

(3) 계획의 장단점

(가) 장 점

◦ 분뇨 발생량 직접 감소

: 사육두수의 감소는 사슴분뇨 발생량의 직접적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음

◦ 환경부하 및 관리 부담 완화

: 분뇨 발생량이 줄어들면 악취, 침출수, 토양·수질오염 등 2차 환경문제 발생 가능성이 크게 낮아짐. 또한 분뇨 처리·운반·자원화에 소요되는 비용과 인력, 시설 운영 부담도 함께 경감됨

◦ 정책적 효과

: 온실가스 감축, 자원순환 촉진 등 국가·지자체 환경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함 특히 분뇨 발생량 저감은 도시 내 환경 민원 감소와 시민 수용성 제고로 이어짐

◦ 지역 환경질 개선

: 사설 사슴사육시설 개체수 감축으로인한 분뇨 저감 효과는 인근 주거지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분뇨·악취·위생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음. 또한 분뇨의 퇴비화·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도 함께 줄어들 수 있음

◦ 관리 효율성 및 비용 절감

: 분뇨 처리에 드는 비용, 인력, 시설 유지비가 감소하여 농가의 관리 부담이 완화됨. 수익 목적이 아닌 사육시설의 경우, 불필요한 분뇨 발생을 줄여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나) 단점

◦ 일부 개체별 유전자 다양성이 저하될 수 있음

◦ 사설시설의 개체수 감소는 일부 수익목적 사육농가의 소득 감소 우려나 동물복지, 사회적 수용성, 지역경제 등 다양한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라) 관리계획 방향성 설정

◦ 서울시 가축사육 현황 및 분뇨처리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안을 검토 한 결과, 적정관리 기본계획은 서울시 내 가축사육 개체수 감소 유도안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따라서, 현재 퇴비화 처리 여건을 유지하되, 서울시 관내에서 되도록 퇴비화 100%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 이는 현재 퇴비화 처리 여건을 유지하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개체수 감소로 분뇨발생 감소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 또한 환경오염 영향 감소를 위해 주기적 실태 점검과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방지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자 하였다.

3) 서울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가) 단계별 기본계획

◦ 서울시는 추가 시설의 증설 없이 현재 가축사육 두수를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분뇨발생 감소를 위한 방향으로 시기적 단계별 정량목표와 발생, 수집 및 운반, 처리, 자원화 단계로 구분하여 세부전략을 수립하였다.

◦ 시기적 3단계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며, 1단계(2026년~2029년), 2단계(2030년~2032년), 3단계(2033년~2035년)로 구분하여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였다.

◦ 최종 서울시 가축분뇨 기본계획은 서울시 도시 특성을 반영한 분뇨발생 시설의 지속적 감소에 초점을 맞춘 3단계 전략으로 구성하였다.

◦ 가축사육을 제한하거나 지속적 감소를 추진하여 환경 개선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4.2 - 6> 계획의 목표

기본목표	◦ 서울시 현실적 가축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및 수질보전 선도
실행목표	◦ 가축사육 제한과 점진적 개체수 감소로 분뇨발생 감소

<표 2.4.2 - 7> 기본계획 목표 및 주요 추진계획

추진전략	단계별	1단계 (2026년~2029년)	2단계 (2030년~2032년)	3단계 (2032년~2035년)
		가축분뇨시설 관리강화 및 시설 15% 감소	가축분뇨시설 50% 감소	가축분뇨시설 감소 관리
주요 추진 계획	발생 단계	- 가축두수 모니터링 및 감축계획(사설시설) 수립 (총 6개소 → 총 5개소)	- 가축분뇨시설 감축 추진 (총 5개소 → 3개소) · 사설시설 폐업시 보상 등 · 공공시설 가축관리(암수구별 등)에 따른 자연감소 추진 (총 5개소 → 총 3개소) - 가축사용 제한 조례제정 추진 (미제정 자치구 限)	- 감소된 가축분뇨시설 관리 (총 3개소) · 가축분뇨시설(개체수 감소 시) 면적조정 등 - 가축사육 조례 제정 (미제정 자치구 限)
	수집·운반 단계	- 효율적 가축분뇨 수집·운반 방안 모색	- 일부 자치구 가축분뇨 공동수거체계 구축 - 가축분뇨 미발생 자치구 수집운반업 폐업 조정	- 가축분뇨 인접지역 공동자원화 시설 운반 - 가축분뇨관련영업자(수집운반업 등) 지도점검 등 관리 강화
	처리 단계	- 적정 퇴비화를 위한 농장주 및 담당자 교육실시 - 일부 가축분뇨시설 정화처리	- 적정퇴비화 방안 유지 - 일부 가축분뇨시설 정화처리 - 가축분뇨 분뇨처리시설 투입	- 적정 퇴비화 방안 유지 - 일부 가축분뇨시설 정화처리 - 인접지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투입
	자원화 방안	- 적정 퇴비화로 양질의 퇴비 생산	- 양질의 퇴비 생산 - 바이오가스 생산량 증대	- 양질의 퇴비 생산 - 재생에너지 확대 기여

나) 수질오염 저감관리

(1) 하천수질오염관리

◦ 서울시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대부분 퇴비화 및 위탁·자가처리 하고 있으므로 기상(폭우, 재해 등)에 의한 영향, 인위적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 따라서 서울시 수질측정망 지점과 가축분뇨 발생지점과의 거리, 가축분뇨 처리방법을 고려할 때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2) 오염부하량 및 처리 목표 설정

◦ 서울시 여건에 맞는 두수 관리계획에 따른 적정 처리량을 100% 전량 처리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목표 달성 시, 환경오염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2.4.2 - 8> 단계별 가축분뇨 적정 처리량 산정

구분	축종	단계별 가축분뇨 적정 처리량 산정			
		항목	처리필요 부하량 (kg/일)	적정 처리율 (%)	적정 처리량 (kg/일)
1단계	젖소	BOD	8.7570	100	8.7570
		T-N	1.9070	100	1.9070
		T-P	0.3420	100	0.3420
	사슴	BOD	0.6600	100	0.6600
		T-N	0.3102	100	0.3102
		T-P	0.0396	100	0.0396
2단계	젖소 (-100%)	BOD	0	100	0
		T-N	0	100	0
		T-P	0	100	0
	사슴 (-60%)	BOD	0.3960	100	0.3960
		T-N	0.1861	100	0.1861
		T-P	0.0238	100	0.0238
3단계	젖소 (-100%)	BOD	0	100	0
		T-N	0	100	0
		T-P	0	100	0
	사슴 (-82.5%)	BOD	0.0713	100	0.0713
		T-N	0.0335	100	0.0335
		T-P	0.0043	100	0.0043

다) 악취관리

◦ 축산분뇨 발생 개별 농가에서는 '축산 냄새 저감 기본 관리 매뉴얼' 등을 참조하여 축산농가에 전파하는 등 악취저감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악취 관리 계획

◦ 최근 서울시 내 축산악취 관련 민원은 발생한 바 없으며, 가축분뇨 실태조사 결과, 악취 정도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끼치지 않을 정도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악취는 환경적 여건에 따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 발생단계에서의 적정 사육밀도 유지: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마리당 면적 기준 준수
- 사육환경 개선 : 축사 내부 청소 강화 및 환기시설 개선
- 분뇨 적체 방지: 임시분뇨보관시설 내 분뇨 높이 80cm 이하 유지, 연 1회 이상 완전 청소

(가) 발생단계 악취저감 방안

◦ 바이오필터 시스템

- 생물학적 처리방식으로 악취물질을 미생물이 분해
- 복합악취 제거효율 52.7% 이상 확인
- 설치비용이 저렴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점

◦ 안개분무시설

- 미생물 제제나 탈취제를 미세하게 분무하여 악취 중화
- 하루 2~4회 이상 정기적 분무로 지속적 악취관리
- 축사 내부 및 외부 동시 설치로 복합적 효과

◦ 스크러버(세정탑) 시스템

- 화학적 세정을 통한 악취물질 흡수·흡착·분해
- 고농도 악취에 효과적이나 화학약품 사용으로 2차 오염 우려

◦ 전자선 악취제거 기술

- 저에너지 전자가속기로 악취물질의 분자구조를 분해
- 악취제거 효율 99% 달성, 화학약품 불사용으로 친환경적

(나) 처리단계 악취저감 방안

① 소규모 축산시설(젖소, 사슴)

◦ 기본 시설

- 밀폐형 축사 구조로 개선
- 자연환기에서 강제환기 시스템으로 전환
- 축사 내부 안개분무시설 설치

◦ 악취저감 장비

- 액비순환시설: 부숙된 액비와 분뇨 교체·순환으로 냄새저감
- 바이오커튼: 축사 출입구에 설치하여 악취 확산 방지
- 미생물 제제: 1일 1회 이상 축사 내외부 살포

② 도시형 반려동물 시설

◦ 관리 강화 방안

◦ 분뇨 즉시 수거 원칙

◦ 악취방지를 위한 밀폐형 보관용기 사용

◦ 소독·탈취제 정기 사용

제3장 환경보전목표

3.1 환경보전목표
3.2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제 3 장 환경보전목표

3.1 환경보전목표

3.1.1 개 요

◦ 본 계획은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정책계획)으로 계획 전체에 적용할 지속가능한 발전 및 환경보전 방향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분야의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였다.

◦ 환경보전목표는 다음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49호)」 제7조의2
- 계획의 성격 및 내용
- 평가대상지역의 지역·환경적 특성
- 계획 수립 시행 시 계획수립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적 이슈 등

3.2 환경보전목표 설정

3.2.1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표 3.2.1 - 1> 환경보전목표

평가분야	평가항목	환경보전목표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가. 국가환경정책	◦국가환경종합계획, 서울시 환경계획, 특별종합대책 등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계획과의 부합성 확보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야생생물보호기본계획 등 자연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확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시책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책과의 부합성 확보
	나. 국제환경동향·협약·규범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국제환경 동향, 협약, 규범 등에 따른 계획 반영
2)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등 국토관리계획과 연계된 계획 수립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수직 또는 수평적으로 연계된 계획 수립
	나.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세부 추진계획 수립
3)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가. 공간계획의 적정성	◦환경공간계획, 환경보전도지역, 생태경관 우수지역 등을 고려한 계획 수립
	나. 수요·공급규모의 적정성	◦인구, 자연, 관광, 산업, 에너지, 토지이용, 도시환경 기반시설 등의 수요·공급 발생 요소를 고려한 계획 수립
	다. 환경용량의 지속성	◦대기, 수질 등의 국가, 지역 환경기준 및 환경기준 유지달성을 위해 국가 등이 설정한 환경목표기준 준수 ◦대기·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 검토 및 연계

나. 계획 시행시 환경보전목표

◦ 본 계획의 수립을 통한 사업 시행시 공사로 인한 영향에 대하여 환경보전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3.2.1 - 2> 계획시행 시 환경보전목표

구분		환경영향요소	환경보전목표	사유	비고
수환경 분야	수질	◦오수처리수 방류수질 -BOD, T-P	◦「하수도법」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생활환경기준(하천)	◦관련 법률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준	공사시

3.2.2 관련기준

가.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1) 하천 (생활환경기준)

대권역명	중권역명	목표기준			
				생물이해등급	
				수생태계 특성	어류생물지수
한강	한강서울	좋음	Ib	매우좋음~좋음	A, B
	한강고양	보통	III	좋음~보통	C

비 고

1. 연간 275일 이상 유지되는 저수위보다 높은 수위에서 달성·유지되어야할 목표기준임
2. 각 중권역의 대표지점은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에 따름
3. 생물이해등급 중 "수생태계 특성"은『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별 생물학적 특성이해표'의 생물등급에 따르며, "어류생물지수"는 '생물측정망 조사 및 평가지침(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16-372호)'의 어류생물지수(FAI) 평가등급에 따름

※ 어류생물지수(FAI) 평가등급

평가지표	고려요소	평가등급				
		매우좋음(A)	좋음(B)	보통(C)	나쁨(D)	매우나쁨(E)
어류생물지수 (FAI)	국내종의 종수 및 개체수, 민감종수, 내성종수, 잡식종수, 비정상종수 등	80이상 100이하	60이상 80미만	40이상 60미만	20이상 40미만	0이상 20미만

4. 호소기준의 각 호소는 하천기준의 각 중권역에서 제외됨
5. 각 중권역 대표지점의 목표기준 달성여부 평가는『물환경 목표기준 평가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6호)』에 따라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및 총인(T-P) 항목에 대해 각각 평가하며, 중권역 대표지점별 수질측정 보고자료의 연간산술평균값으로 평가함
6. 각 중권역 대표지점의 목표기준 달성기간은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기간과 같이 2025년까지로 함
7. 향후 대권역 계획 수립 시 오염원 변화 및 지점 변경 등 물환경 정책 추진 여건과 세부 추진방향을 반영하여 일부 지점 목표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자료 :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환경부고시 제2018-6호)

구분	범위
Ⅰ지역	가. 「수도법」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각각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라.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Ⅱ지역	「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또는 총인(T-P)의 수치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목표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현저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Ⅲ지역	「물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Ⅰ지역 및 Ⅱ지역을 제외한다)
Ⅳ지역	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제외한 지역

자료 : 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1]

나. 소음진동 환경

◦ 본 계획의 영향이 발생하는 주변 정온시설 중 주거시설 및 종교시설, 병원 등의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생활소음규제기준 주간 65dB(A), 축사의 경우 환경분쟁피해배상액 산정기준 주간 60dB(A), 학교의 경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55dB(A)로 소음유지 목표기준을 설정하였다.

◦ 진동유지목표기준으로는 주거지역 및 종교시설, 학교는 생활진동규제 기준 주간 65dB(A), 축사의 경우 환경분쟁피해배상액 산정기준 57dB(V)을 환경목표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표 3.2.2 - 4> 환경보전목표 설정(소음·진동)

구 분	환경목표기준	근 거
소 음	- 주거시설 : 65dB(A) - 학교 : 55dB(A) - 축사 : 60dB(A)	생활소음규제기준, 주거지역, 공사장주간 학교보건법 교사내 소음기준 환경분쟁조정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진 동	- 주거시설 : 65dB(V) - 학교 : 65dB(V) - 축사 : 57dB(V)	생활진동규제기준, 주거지역, 공사장주간 생활진동규제기준, 주거지역, 공사장주간 환경분쟁조정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다. 토양환경

◦ 본 계획에 따른 토양환경 목표기준은 토양환경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표 3.2.2 - 5>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단위: ㎎/㎏,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pg-TEQ/g)

물질	1지역	2지역	3지역	1지역	2지역	3지역
카드뮴	4	10	60	12	30	180
구리	150	500	2,000	450	1,500	6,000
비소	25	50	200	75	150	600
수은	4	10	20	12	30	60
납	200	400	700	600	1,200	2,100
6가크롬	5	15	40	15	45	120
아연	300	600	2,000	900	1,800	5,000
니켈	100	200	500	300	600	1,500
불소	400	400	800	800	800	2,000
유기인화합물	10	10	30	-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	4	12	3	12	36
시안	2	2	120	5	5	300
페놀	4	4	20	10	10	50
벤젠	1	1	3	3	3	9
톨루엔	20	20	60	60	60	180
에틸벤젠	50	50	340	150	150	1,020
크실렌	15	15	45	45	45	135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800	2,000	2,000	2,400	6,0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8	8	40	24	24	1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4	4	25	12	12	75
벤조(a)피렌	0.7	2	7	2	6	21
1,2-디클로로에탄	5	7	70	15	20	210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500	1,000	3,000

※ 비고

1. 1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3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학교용지·구거(溝渠)·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2. 2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염전·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창고용지·하천·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 및 잡종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3. 3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 부지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반환하거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의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반환 후 용도에 따른 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5. 벤조(a)피렌 항목은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발암물을 사용한 지역(예: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및 하천 등)에만 적용한다.
6.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하는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조치명령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조사 기간 또는 정화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목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변경 예정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된 경우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후 공사가 착공된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목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하는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의 관계 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의 용도에 부합하는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관계 서류를 통하여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지역에 해당하는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자료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8. 11. 27.>

제4장 대 안

4.1 대안의 종류 설정
4.2 대안의 비교 및 검토

제 4 장 대안의 설정

4.1 대안의 종류 설정

4.1.1 대안의 종류

◦ 일반적으로 대안은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기, 공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한다.

◦ 금회 평가시 대안은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 3개를 설정하고 사유 제시하였다.

◦ 본 서울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의 대안으로는 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획비교', '수단·방법', '시기·순서'를 대안으로 선정하였다.

<표 4.1.1 - 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정책계획)

대안 종류	대안선정 방법	비고
계획비교	◦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No action)상황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 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 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입 지	◦ 개발대상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계획구역 또는 그 경우 계획구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
시기·순서	◦ 개발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시기 및 진행순서(예: 연차별 개발)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기 타	◦ 상기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4.2 대안의 비교 및 검토

4.2.1 계획비교에 대한 대안

◦ 금회 서울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수립(Action) 및 미수립(No Action)에 따른 대안별 비교 · 분석을 실시하였다.

◦ 계획비교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지침이 필요한 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안1(Action)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2.1 - 1> 계획 비교에 대한 대안 검토(행정계획 수립 및 미수립)

구 분	대안 1(Action) (계획수립 시)	대안 2(No action) (계획수립 미수립 시)
대 안	◦금회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서울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서울시 내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자원화 촉진을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현재의 환경여건(현재의 환경질 및 환경용량) 유지 ◦공사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 없음
장 점	◦서울시 여건에 맞는 가축분뇨 처리 체계 구축, 자원화 촉진, 악취저감, 지속가능한 도시축산 환경조성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성을 제시 ◦법령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	-
단 점	◦가축분뇨 자원화에 따른 2차 오염 발생 ◦가축분뇨 처리계획에 따른 축산농가 등의 민원발생 우려	◦기본계획 미수립으로 체계적인 가축분뇨 관리의 어려움 ◦가축분뇨로 인한 수계오염, 악취발생 등의 주변 생활환경 악화 우려 발생
선 정	O	

◦ 선정된 각각의 대안에 대하여 환경영향을 평가항목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계획의 적정성으로 이에 대한 세부항목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2.1 - 2> 정책계획의 적정성

세부 검토항목	대안 1(Action) (계획수립 시) 검토내용 및 근거	대안 2(No action) (계획수립 미수립 시) 검토내용 및 근거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1) 국가환경정책		
◦국가에서 시행하는 환경계획 및 시책과의 부합하는지?	-국가 시행 계획 및 시책과 부합하는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체계적인 가축분뇨 관리 가능	-기본계획의 미수립으로 현상태 유지 및 체계적인 가축분뇨 관리 어려움
◦해당 계획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었는지?	-기본계획 수립으로 해당 계획과의 연관성 및 준수를 위한 계획을 체계적 반영 가능	-기본계획의 미수립으로 현상태 유지, 체계적 가축분뇨 관리 어려움
2)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국제적 환경 관련 동향·협약·규범 및 해당 계획과 관련성이 있는 국제적 환경 동향을 고려하였는지?	-기본계획 수립 시 국제적인 협약 등으로 규정된 사항 및 국제적 환경 동향 반영 가능	-기본계획 미수립으로 현상태 유지, 국제적 협약 및 환경 동향 반영 어려움
2.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1)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상·하위 계획과의 일관성이 있는지?	-상위 행정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한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체계적인 가축분뇨 관리 가능	-기본계획 미수립으로 현상태 유지
◦타 계획과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다른 행정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한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체계적인 가축분뇨 관리 가능	
2)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계획 목표와 세부 내용이 일관성이 있는지?	-계획목표에 부합하는 세부 가축분뇨 처리계획 수립	-기본계획 미수립으로 현상태 유지

<표 계속> 정책계획의 적정성

세부 검토항목	대안 1(Action) (계획수립 시) 검토내용 및 근거	대안 2(No action) (계획수립 미수립 시) 검토내용 및 근거
3.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1) 공간계획의 적정성		
◦국토의 생태적 건전성, 환경과 개발의 조화 등을 위해 통합적 네트워크화 방안이 고려되었는지?	-	-
◦광역적 생태·녹지축(백두대간, 하천 등) 보전 등 각종 보호지역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되었는지?	-	-
◦국토의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차원에서 생활권 배분 등 공간계획이 효율적으로 계획되었는지?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수립	-기본계획 미수립으로 현상태 유지
◦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여건 변화와 관련 장·단기적 보전대책을 감안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	-
2) 수요 공급 규모의 적정성		
◦인구, 자원, 에너지 등의 수요·공급 관점에서 국가적·지구적 환경문제와 연계하여 환경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었는지?	-가축분뇨 발생량 예측, 자원수요 등 국가환경문제와 연계하여 환경저감계획 수립	-기본계획 미수립으로 현상태 유지
3) 환경용량의 지속성		
◦계획의 수요·규모·수단 예측 시 환경용량 및 환경지표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타당하게 검토·분석되었는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용량 및 환경지표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타당하게 검토·분석·제시함	-기본계획 미수립으로 체계적인 가축분뇨 관리 어려움
◦대기오염 총량관리제도, 수질오염 총량관리 제도의 할당 부하량의 준수가 가능한지?	-수질오염총량계획 및 개별시설에 대한 악취저감 계획 등을 수립	-기본계획 미수립으로 현상태 유지

4.2.2 수단·방법에 대한 대안

가. 현 황

◦ 서울시의 상업적 축산농가는 현재 극소수(2024년 기준 소·사슴 등)임에 따라 가축분뇨 발생량은 매우 적은 실정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 2024년 기준 총 7개의 축사 중, 허가대상에 해당되는 경북농장 1개소는 폐쇄되어 최종 6개소의 신고시설을 운영 중이며, 가축 종은 젖소, 사슴, 개로 조사되었다.

◦ 자치구별로 성동구 1개소, 서초구 4개소, 강북구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폐쇄시설(서초구 경북농장 1개소)을 제외하고 서초구에 4개의 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 성동구에 서울숲공원 내 관상용 사슴 사육시설 1개소, 서초구에서는 경찰특공대에서 업무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고 있으며, 젖소 사육시설 1개소, 사슴 사육시설 2개소를 운영 중. 강북구의 북서울꿈의숲 내에도 관상용 사슴 사육시설 1개소를 운영 중이다.

<표 4.2.2 - 1> 서울시 자치구별 가축사육 현황(2024년 기준)

자치구	소재지	시설명	축종	사육두수	시설규모(㎡)	분뇨처리방법	비고
성동구	성수동1가 685-20	서울숲공원	사슴	26	2,770	퇴비	
서초구	방배동 산184	경찰특공대	개	31	1,009	정화	
	원지동 산 72	경북농장	한우	20	1,564	위탁	폐쇄
	내곡동 228-1	서초목장	젖소	10	574	위탁	
	우면동 192	세한사슴	사슴	23	396	퇴비	
	원지동 225-2	새원사슴	사슴	3	330	퇴비	
강북구	번동 90	북서울꿈의숲	사슴	14	2,511	퇴비	

나. 관리계획 대안검토

◦ 서울시 가축사육 현황 및 분뇨처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안을 검토 한 결과, 적정관리 기본계획은 1안(가축분뇨 발생 감소화)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이에 따라 현재 퇴비화 처리 여건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자연스러운 개체수 감소를 통화 분뇨 발생 감소를 유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3단계로 주요 추진전략을 발생단계, 수집·운반단계, 처리단계, 자원화방안으로 구분하여 주요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표 4.2.2 - 2> 수단·방법(가축분뇨 처리방안)에 대한 검토

<table>
<tr><th>구분</th><th>1안(단계별 가축분뇨시설 감소)</th><th>2안(효율적 자원화)</th><th>3안(지자체 연계 처리)</th></tr>
<tr><td>개념</td><td>◦공공 사슴사육시설의 개체수 감축
: 2033년까지 70%감축</td><td>◦서울시 관내 퇴비화 100% 소화</td><td>◦인접 지자체와 연계 처리
-서울시 시내 처리용량 한계 해소를 위해 경기도 지역의 공공처리시설 또는 민간 시설과 협업 이송·처리
-경기도의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과 연계 추진</td></tr>
<tr><td>현황</td><td colspan="3">◦서울시 가축종 : 젖소 10두, 사슴 66두, 개 31두
◦공공시설(서울숲, 북서울꿈의숲) : 사슴 개체 50 ~ 80% 자연감소 예상
◦사설시설 : 세한사슴, 새원사슴, 서초목장 운영자의 고령화 등으로 폐업 등 예상
◦현재 퇴비화 방식으로 대다수 처리중
<table>
<tr><th>구분</th><th>사육두수(두)</th><th>연발생량(kg)</th><th>처리방식</th></tr>
<tr><td>젖소</td><td>10</td><td>101,507</td><td>위탁처리</td></tr>
<tr><td>사슴</td><td>66</td><td>8,760</td><td>퇴비처리</td></tr>
<tr><td>개</td><td>31</td><td>23,762</td><td>자가정화처리</td></tr>
</table></td></tr>
<tr><td>장점</td><td>◦분뇨 발생량 직접 감소
◦환경부하 및 관리 부담 완화
◦정책적 효과 : 국가·지자체 환경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
◦지역 환경질 개선
◦관리 효율성 및 비용 절감</td><td>◦자원 순환 효과 극대화 및 토양 개량에 기여
◦수질 및 토양오염, 악취발생 등 환경부담 감소
◦정책적으로 친화경농산물 인증 확대, 자원화, 기술개발, 운영관리 효율화 촉진</td><td>◦처리시설의 효율적 활용
: 서울시 내 기존 기존 퇴비화 시설 포화 문제 보완 및 인접 지역 처리자원 효율적 이용
◦환경오염 감소 : 분뇨처리량의 분산 및 전문처리시설 집중운영
◦농가 지원 및 자원화 확대
◦행정협력 강화
: 서울, 경기도 공동문제 해결하기 위한 협력체제 강화</td></tr>
<tr><td>단점</td><td>◦공공시설 내 사슴 개체수 감축
- 생태체험 기회가 감소, 유전자 다양성이 저하
◦사설시설의 개체수 감축
- 사육농가의 소득 감소 우려
◦다양한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td><td>◦현실적으로 가축분뇨 전량을 서울시 내에서 처리 어려움
◦각종 기준 및 품질관리 체계 미흡→퇴비 품질저하 우려
◦시설 투자운영비 및 공간, 시설 노후화, 관리 인력부족 등 경계성·실행성가능성 측면 한계</td><td>◦이송 비용과 물류 부담 : 이송거리 증가에 따른 비용, 악취 피해 위험성 증가
◦행정·조직 간 협업 어려움
◦지역 주민 반대 가능성
◦처리시설 수용 한계</td></tr>
<tr><td>선정</td><td>○</td><td></td><td></td></tr>
<tr><td>검토 결과</td><td colspan="3">◦서울시 현실적 여건을 고려 시 1안(단계별 가축분뇨시설 감소) 선택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검토됨
◦현재 퇴비화 처리 여건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자연스러운 개체수 감소를 통화 분뇨 발생 감소 유도</td></tr>
</table>

4.2.3 시기·순서에 대한 대안

가. 대안검토

◦ 서울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안과 일괄 시행안을 대안으로 비교·검토하였으며,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2.3 - 1> 시기·순서에 대한 대안검토

구 분	대안 1	대안 2
	단계별 시행	일괄 시행
내 용	◦ 현재 퇴비화 처리 여건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자연스러운 개체수 감소를 통화 분뇨 발생 감소화 유도	◦ 일괄적인 시행
장 점	◦ 현재 퇴비화 처리 여건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자연스러운 개체수 감소를 통화 분뇨 발생 감소화 유도 ◦ 이러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통해 서울시는 도시 내 가축분뇨의 발생부터 자원화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점진적으로 분뇨발생량을 줄여 궁극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과 수질보전을 실현	◦ 시행기간의 단축 구축 가능
단 점	◦ 단계별 추진에 따른 계획시행에 상대적으로 장기간 소요	◦ 동시 시행에 따른 환경부하 가중 및 체계적 계획 추진 어려움 ◦ 대규모 사업비 필요
선정안	○	
선정사유	◦ 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장기화될 수 있으나,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점진적으로 분뇨발생량을 줄여 궁극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과 수질보전을 실현하고자 함 ◦ 3단계로 주요 추진전략을 발생단계, 수집·운반단계, 처리단계, 자원화방안으로 구분하는 1안을 대안으로 선정	

나. 단계별 추진전략 및 계획

◦ 서울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3단계 걸쳐 추진전략과 가축분뇨 발생·관리·처리 단계별 추진계획을 설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4.2.3 - 2> 단계별 추진전략

구분	시행기간	목표년도	추진계획
1단계	2026~2029년	2029	◦ 가축분뇨시설 관리강화 및 시설 15% 감소
2단계	2030~2032년	2032	◦ 가축분뇨시설 50% 감소
3단계	2033~2035년	2035	◦ 가축분뇨시설 감소 관리

<표 4.2.3 - 3> 단계별 추진계획

추진 전략	단계별	1단계 (2026년~2029년)	2단계 (2030년~2032년)	3단계 (2032년~2035년)
		가축분뇨시설 관리강화 및 시설 15% 감소	가축분뇨시설 50% 감소	가축분뇨시설 감소 관리
주요 추진 계획	발생 단계	- 가축두수 모니터링 및 감축계획(사설시설) 수립 (총 6개소 → 총 5개소)	- 가축분뇨시설 감축 추진 (총 5개소 → 3개소) · 사설시설 폐업시 보상 등 · 공공시설 가축관리(암수구별 등)에 따른 자연감소 추진 (총 5개소 → 총 3개소) - 가축사용 제한 조례제정 추진 (미제정 자치구 限)	- 감소된 가축분뇨시설 관리 (총 3개소) · 가축분뇨시설(개체수 감소 시) 면적조정 등 - 가축사육 조례 제정 (미제정 자치구 限)
	수집·운반 단계	- 효율적 가축분뇨 수집·운반 방안 모색	- 일부 자치구 가축분뇨 공동수거 체계 구축 - 가축분뇨 미발생 자치구 수집 운반업 폐업 조정	- 가축분뇨 인접지역 공동자원화 시설 운반 - 가축분뇨관련영업자(수집운반업 등) 지도점검 등 관리 강화
	처리 단계	- 적정 퇴비화를 위한 농장주 및 담당자 교육실시 - 일부 가축분뇨시설 정화처리	- 적정퇴비화 방안 유지 - 일부 가축분뇨시설 정화처리 - 가축분뇨 분뇨처리시설 투입	- 적정 퇴비화 방안 유지 - 일부 가축분뇨시설 정화처리 - 인접지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투입
	자원화 방안	- 적정 퇴비화로 양질의 퇴비 생산	- 양질의 퇴비 생산 - 바이오가스 생산량 증대	- 양질의 퇴비 생산 - 재생에너지 확대 기여

제 5 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5.1 평가대상지역 설정
5.2 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5.3 평가항목의 설정

제 5 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5.1 평가대상지역 설정

◦ 본 계획은 서울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정책계획으로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공간적 범위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근거하여 평가대상지를 설정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기본계획 수립기간으로 설정하였다.

<표 5.1 - 1> 평가대상지역 설정

구 분	평가 범위
공간적 범위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수계 및 가축분뇨 관리 구역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영향지역 고려)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대상지
시간적 범위	◦2026년 ~ 2035년 (기준연도 2026년, 1단계 : 2029년, 2단계 : 2032년, 3단계 : 2035년, 타당성검토 : 2031년)

5.2 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 본 정책계획의 공간적, 시간적 범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항목별 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였다.

<표 5.2 - 1>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선정

평가 항목	평가방법 및 평가대상지역 설정기준	평가대상지역 범위
1. 계획의 적정성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가) 국가환경정책	◦계획수립에 따른 국가 환경정책과의 부합성 검토	서울특별시
나) 국제환경동향·협약·규범	◦국제적 환경관련협약, 조약, 규범 등을 고려한 수립여부 검토	서울특별시
2)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본 계획과 상위 행정계획의 일관성 여부 검토 ◦관련 행정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서울특별시
나)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본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과 세부 추진내용의 일관성 검토	서울특별시

<표 계속>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선정

평가 항목	평가방법 및 평가대상지역 설정기준	평가대상지역 범위
3) 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성		
가) 공간계획의 적정성	◦국토 환경적 토지이용 차원에서 공간계획의 효율적으로 계획되었는지 여부 검토	서울특별시
나)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계획 등 검토	서울특별시
다) 환경용량의 지속성	◦악취, 토양, 지표수 현황 파악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용량 및 환경지표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였는지 여부 검토 ◦적정 저감방안 검토	서울특별시

5.3 평가항목의 설정

◦ 본 정책계획의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시행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되는 항목을 선정하되, 본 계획은 정책계획임을 고려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을 선정하였다.

<표 5.3 - 1> 평가항목의 선정 및 선정사유

평가 항목	선정 사유
1. 계획의 적정성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가) 국가환경정책	◦국가에서 시행하는 환경계획 및 시책과 부합할 수 있는 계획 수립
나) 국제환경동향·협약·규범	◦국제적 환경동향을 고려한 계획 수립
2)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본 계획과 상위 행정계획의 일관성 유지
나)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계획의 목표와 추진내용의 일관성 유지
3)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가) 공간계획의 적정성	◦가축 사육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실태, 가축사육제한지역 검토
나)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계획 등 검토
다) 환경용량의 지속성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악취, 토양,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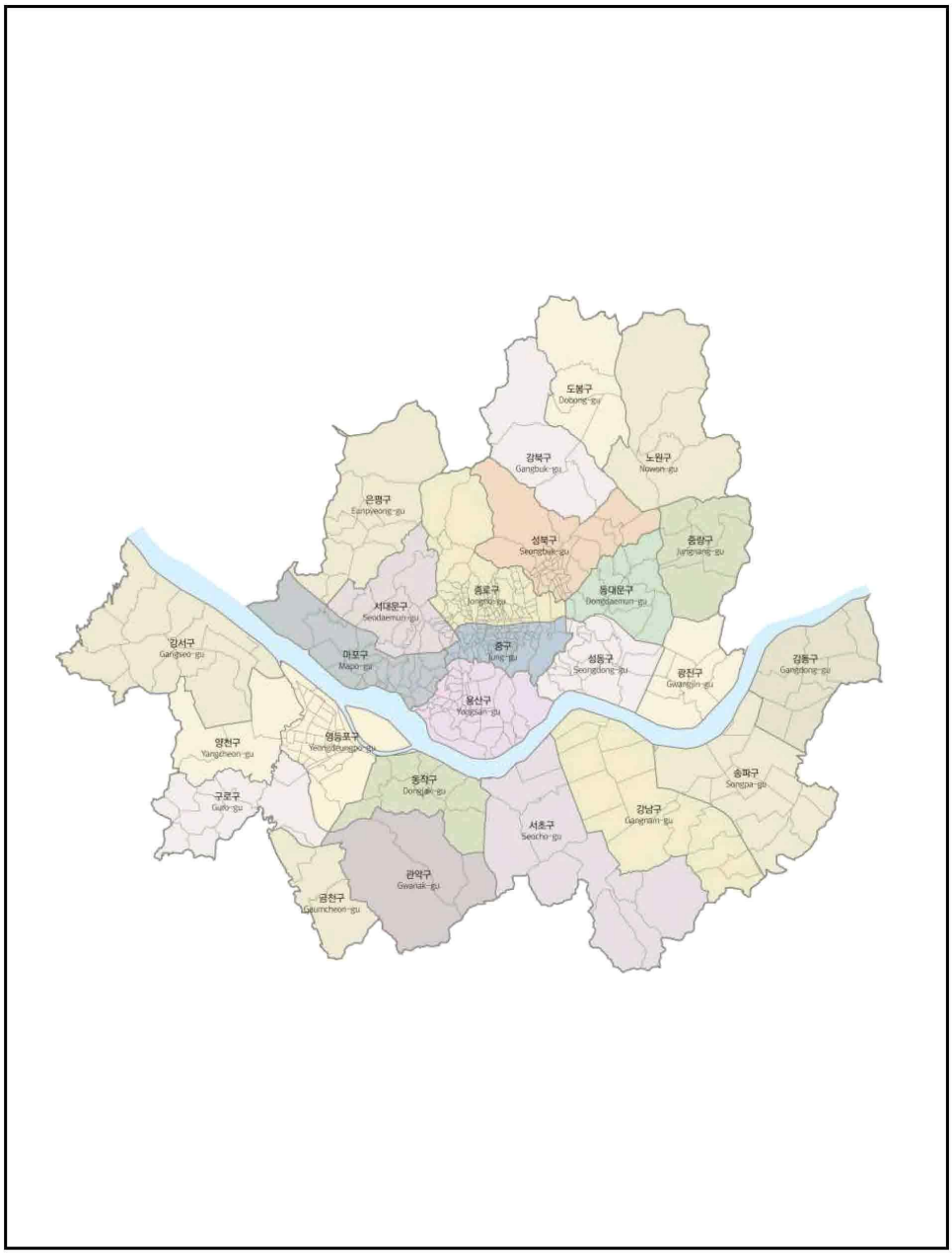

(그림 5.2 - 1)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제 6 장 지역개황

6.1 일반현황
6.2 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현황
6.3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6.4 환경피해유발 시설물 현황
6.5 환경기초시설 현황
6.6 환경적인 배려를 필요로 하는 시설 현황

제6장 지역개황

6.1 일반현황

6.1.1 지역개황

◦ 서울특별시는 한반도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며, 대한민국의 정치·경제·문화·교통의 중심이다.

◦ 동쪽은 경기도 남양주시·구리시·하남시, 서쪽은 경기도 고양시·김포시·부천시, 남쪽은 경기도 성남시·과천시·안양시·광명시, 북쪽은 경기도 의정부시·양주시에 접해 있다.

<표 6.1.1 - 1> 서울특별시의 위·경도상 위치

시청 소재지	경도와 위도의 극점			연장거리
	단	지명	극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동 단	강동구 상일동 산12	동경 127°11′ 06" 북위 37°32′ 56"	동서간 36.78km
	서 단	강서구 오곡동 654	동경 126°45′ 55" 북위 37°33′ 16"	
	남 단	서초구 원지동 산4의 62	동경 127°03′ 05" 북위 37°25′ 44"	남북간 30.30km
	북 단	도봉구 도봉동 산31	동경 127°01′ 14" 북위 37°41′ 55"	

자료 : 제64회 2024 서울통계연보(2023년 기준), 2024, 서울특별시

6.1.2 행정구역 현황

◦ 서울특별시의 면적은 총 605.20㎢이며, 25개의 구, 426개의 행정동, 467개의 법정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가축사육 현황 자치구인 강북구는 서울특별시 전체 면적의 3.90%(23.60㎢), 서초구는 서울특별시 전체 면적의 7.76%(46.97㎢), 성동구는 서울특별시 전체 면적의 2.78%(16.8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1.2 - 1> 행정구역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면 적(㎢)	구		동		통	반
		자치구	자치구가 아닌 구	행정	법정		
서울특별시	605.20	25	-	426	467	12,926	96,663
강북구	23.60	1	-	13	4	390	3,395
서초구	46.97	1	-	18	10	562	3,822
성동구	16.82	1	-	17	17	471	3,645

자료 : 제64회 2024 서울통계연보(2023년 기준), 2024, 서울특별시

6.1.3 토지이용 현황

◦ 서울특별시의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을 보면 총 면적 605.24㎢ 중 대지가 219.38㎢(36.25%)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임야 138.87㎢(22.94%), 도로 79.28㎢(13.10%), 하천 52.16㎢(8.6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서울특별시 가축사육 현황 자치구인 강북구는 임야가 12.52㎢(53.05%), 서초구는 임야가 17.82㎢(37.94%), 성동구는 대지가 6.24㎢(37.10%)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1.3 - 1>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단위 : ㎢, %)

구 분	계	대 지	임 야	도 로	하 천	학교용지	공 원	잡종지	기 타
서울특별시	605.20 (100.00)	223.11 (36.87)	136.75 (22.60)	80.62 (13.32)	52.06 (8.60)	24.93 (4.12)	24.58 (4.06)	16.26 (2.69)	46.89 (7.75)
강북구	23.60 (100.00)	6.68 (28.31)	12.52 (53.05)	2.00 (8.47)	0.33 (1.40)	0.55 (2.33)	0.92 (3.90)	0.09 (0.38)	0.51 (2.16)
서초구	46.97 (100.00)	13.14 (27.98)	17.82 (37.94)	6.30 (13.41)	2.49 (5.30)	0.91 (1.94)	1.04 (2.21)	0.72 (1.53)	4.55 (9.69)
성동구	16.82 (100.00)	6.24 (37.10)	0.26 (1.55)	2.28 (13.56)	3.75 (22.29)	0.95 (5.65)	0.72 (4.28)	0.74 (4.40)	1.88 (11.18)

주) 기타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광천지, 염전,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철도용지, 제방,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자료 : 제64회 2024 서울통계연보(2023년 기준), 2024, 서울특별시

6.1.4 도시계획 현황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현황을 보면, 도시지역 면적은 총 605.60㎢이며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 326.50㎢(53.91%), 녹지지역 233.47㎢(38.55%), 상업지역 25.65㎢(4.24%), 공업지역 19.97㎢(3.30%)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1.4 - 1> 용도지역별 도시계획 현황

(단위 : ㎢, %)

구 분	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소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 지 지 역				
						소 계	보전	생산	자연	
서울특별시	605.60 (100.00)	605.60 (100.00)	326.50 (53.91)	25.65 (4.24)	19.97 (3.30)	233.47 (38.55)	0.07 (0.01)	1.06 (0.18)	232.34 (38.37)	- -

자료 : 제64회 2024 서울통계연보(2023년 기준), 2024, 서울특별시

6.2 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 현황

◦ 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구분		관련법규	계획지구 해당여부	비고
자연생태환경	생태·자연도 1등급	-자연환경보전법	O	1, 2, 3등급, 별도관리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O	18개소 위치
	야생생물 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O	10개소 위치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O	1개소 위치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	O	1개소 위치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산림보호법	X	해당없음
	백두대간보호지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X	해당없음
	특정도서지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X	해당없음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	O	6개소 위치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O	22개소 위치
수환경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고시 제2025-46호	X	해당없음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O	1개소 위치
	수변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X	해당없음
	배출허용(폐수)적용 지역	-물환경보전법	O	'나'지역 해당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물환경보전법	X	해당없음
	수질오염총량단위유역	-물환경보전법	O	굴포A, 안양A, 한강I, 한강H, 탄천A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물환경보전법	O	한강서울 - Ib(좋음) 한강고양 - III(보통)
	수산자원 보호구역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X	해당없음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관리법	X	해당없음
대기환경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보전법	O	전지역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고시 제2018-23호	X	해당없음
	저황유 공급·사용 지역	-대기환경보전법	O	황 함유율 0.1% 이하의 경유, 황 함유량 0.3% 이하의 중유
	악취관리지역	-악취방지법	X	해당없음

6.2.1. 자연생태환경

가. 생태·자연도

◦ 서울특별시 관내에는 생태자연도 1, 2, 3등급과 별도관리지역이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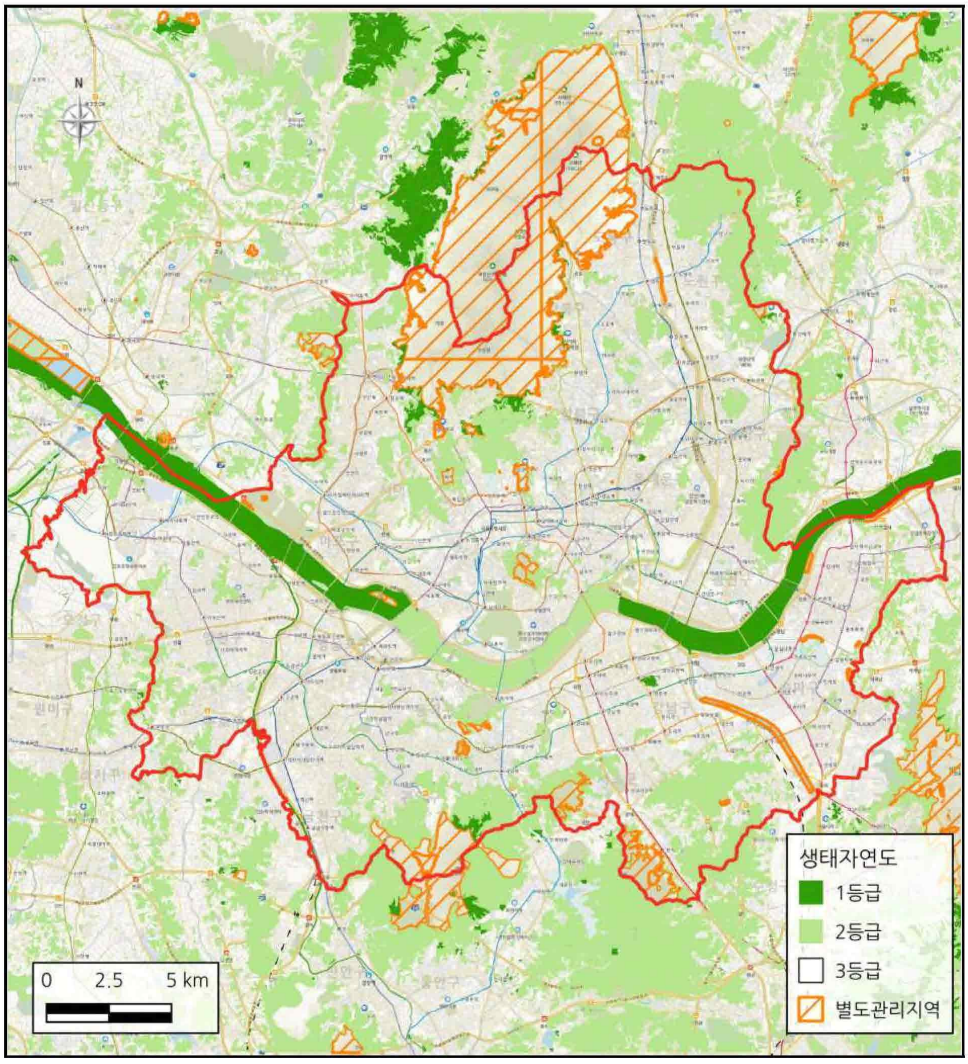

(그림 6.2.1 - 1) 생태·자연도

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현황

◦ 서울특별시에는 시·도지사 지정 생태·경관보전지역이 18개소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2.1 - 1>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현황

시도	지역명	위치	면적(㎢)	특징	지정일자
서울특별시	한강밤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4-4 및 마포구 당인동 314	0.279	도심 속 철새도래지	1999.08.10
	둔촌동	서울 강동구 둔촌동 212	0.030 (완: 0.005)	생물다양성 풍부 오리나무림 발달	2000.03.06 (`13.07.04확대)
	방이동	서울 송파구 방이동 439-2 일대	0.059	생물다양성 풍부	2002.04.15 (`05.11.24확대)
	탄천	서울 송파구 가락동 및 강남구 수서동	1.151	도심 속의 자연하천	2002.04.15
	진관내동	서울 은평구 진관동 282-1 일대	0.017	생물다양성 풍부	2002.12.30
	암사동	서울 강동구 616 일대	0.270 (완: 0.143)	한강변 자연호안	2002.12.30. (`21.12.30확대)
	고덕동	서울 강동구 고덕동 396 일대 서울 강동구 강일동 661 일대 (고덕수변 생태복원지 ~ 하남시계)	0.320 (완: 0.082)	한강변 자연호안으로 다양한 자생종 번성 및 조류 서식	2004.10.20. (`07.12.27확대)
	청계산 원터골	서울 서초구 원지동 산 4-38번지 일대	0.146	갈참나무를 중심으로 낙엽활엽수림대 발달	2004.10.20
	헌인릉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산 13-1 일대	0.057	오리나무림 발달	2005.11.24
	남산	서울 중구 예장동 산 5-6 일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산 1-5 일대	0.705	남북녹지축의 거점공간 신갈나무 등 자연성 유지	2006.07.27. (2007.12.27)
	불암산 삼육대	서울 노원구 공릉동 산 223-1 일대	0.204	생물다양성 풍부 서어나무군집 분포	2006.07.27
	창덕궁후원	서울 종로구 와룡동 2-71 일대	0.441	도심지역 자연성 유지 갈참나무군집 분포	2006.07.27
	봉산	서울 은평구 신사동 산 93-16	0.073	대규모 팥배나무 군집	2007.12.27
	인왕산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산1-1 일대	0.258	기암과 소나무가 잘 어우러지는 수려한 자연경관	2007.12.27
	성내천하류	서울 송파구 방이동 88-6 일대	0.070	도심 속 자연하천	2009.11.26
	관악산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일대	0.748	회양목군락 자생지	2009.11.26
	백사실계곡	서울 종로구 부암동 산 7 일대	0.132 (완: 0.037)	생물다양성 풍부	2009.11.26
	한강강서	서울 강서구 개화동 168-2 일대	0.283 (완: 0.045)	도심 속 자연하천 생물다양성 풍부	2024.12.26

자료 :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현황(24.12월), 환경부

다.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현황

◦ 서울특별시에는 야생생물보호구역이 10개소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2.1 - 2>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현황

소재지	지정면적(㎢)	지정년도	관리기관
관악산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54외 7필지)	5.00	2001	환경부
서울 서초 원지동 청계산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산4-17외 218)	3.38	2002	환경부
우면산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산34-1외 1)	0.0184	2007	서초구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산10-4외 22필지)	0.4298	2008	동작구
수락산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산153-1)	0.0312	2008	노원구
용마산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산 1-1, 1-3, 망우동 산57-4)	0.043	2008	환경부
서울 진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산 35-1외 66)	0.0795	2010	은평구
서울 난지한강공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96-121외 60)	0.0566	2013	한강사업본부
서울 중랑천 상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853-3 일원 녹천교-상계교 좌안둔치)	0.0235	2016	노원구
노을공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78-1 일원)	0.0231	2020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자료 : 1. 야생생물 보호구역 현황, 2017.12.31., 환경부
2.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의 자연생태(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18510)
3.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08-80호

라. 자연공원 지정 현황

◦ 서울특별시에는 자연공원(북한산 국립공원)은 1개소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2.1 - 3> 자연공원 지정 현황

구 분	공원명	구역	면적(km^2)	지정일	비고
국립공원	북한산	서울, 경기	76.334	1983. 04. 02	

자료 : 자연공원 지정 현황, 2024.12., 환경부

마. 습지보호지역 지정 현황

◦ 서울특별시에는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습지보호지역 1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2.1 - 4> 습지보호지역 지정현황

구 분	위 치	면적(km^2)	등록일자
한강밤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0.273	2012. 06. 21

자료 :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람사르습지 등록 현황, 2024.12., 환경부

바.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조사지역 현황

◦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조사지역(2023-2024) 조사결과, 서울특별시에는 총 6개 지역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2.1 - 5>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조사지역 현황

구 분		종 수	개체수	멸종위기 야생생물		비고
				Ⅰ급	Ⅱ급	
성산대교-성수대교	12월	32	2,113	흰꼬리수리	-	
	1월	29	3,107			
성수대교-팔당댐	1월	35	4,155	호사비오리, 흰꼬리수리, 참수리	큰기러기, 큰고니, 매	
	2월	32	5,304			
중랑천	12월	30	2,794	흰꼬리수리	큰기러기	
	1월	28	3,743			
탄천	12월	28	1,187	흰꼬리수리	-	
	1월	33	1,532			
성산대교-행주대교	12월	36	2,635	-	큰기러기, 잿빛개구리매	
	1월	35	2,245			
안양천	12월	36	2,858	흰꼬리수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1월	39	2,574			

자료 : 2023~2024년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2024, 국립생물자원관

사. 가축사육제한구역 현황

◦ 서울시 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자치구는 21개 자치구로 조사되었다.

<표 6.2.1 - 5> 가축사육제한구역 현황

구 분	자치구	조 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 제 1617호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중구조례 제 1279호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1294호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 1670호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용산구조례 제 1116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1439호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 1712호
	송파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 제 1202호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성북구조례 제 1270호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 1800호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1765호

<표 계속> 가축사육제한구역 현황

구 분	자치구	조 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 1823호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 1097호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도봉구조례 제 1764호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 1921호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 849호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 1643호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 877호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 1091호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 1050호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 1170호
	강남구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음
	서초구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음
	성동구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음
	구로구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음

6.2.2 수환경

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현황

◦ 서울특별시에는 환경부 고시에 의하여 1개소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2.2 - 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보호구역명	행정구역	최초지정일	지정면적(㎢)	소재지
잠실	서울특별시	1995.03.20	6.45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잠실수중보 상류 하천구역

자료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2024.12, 환경부

나. 배출허용기준(폐수)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 서울특별시 전역은 「배출허용기준(폐수)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환경부고시 제2007-107호)」규정에 의하여 "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2.2 - 2> 배출허용기준(폐수)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구 분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서울특별시	-	-	전 역

자료 : 배출허용기준(폐수)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환경부고시 제2007-107호

다.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 계획지구는 “한강” 대권역, “한강서울”, “한강잠실”, “한강고양”중권역에 해당되며,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은 “Ib(좋음)” 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2.2 - 3>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대권역명	중권역명	목표기준			
				생물이해등급	
				수생태계 특성	어류생물지수
한강	한강서울	좋음	Ib	매우좋음~좋음	A, B
	한강잠실	좋음	Ib	매우좋음~좋음	A, B
	한강고양	보통	III	좋음~보통	C

자료 :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환경부고시 제2018-6호

라. 수질오염총량관리 현황

◦ 서울특별시는 굴포A, 안양A, 한강I, 한강H, 탄천A 수질오염총량관리 단위유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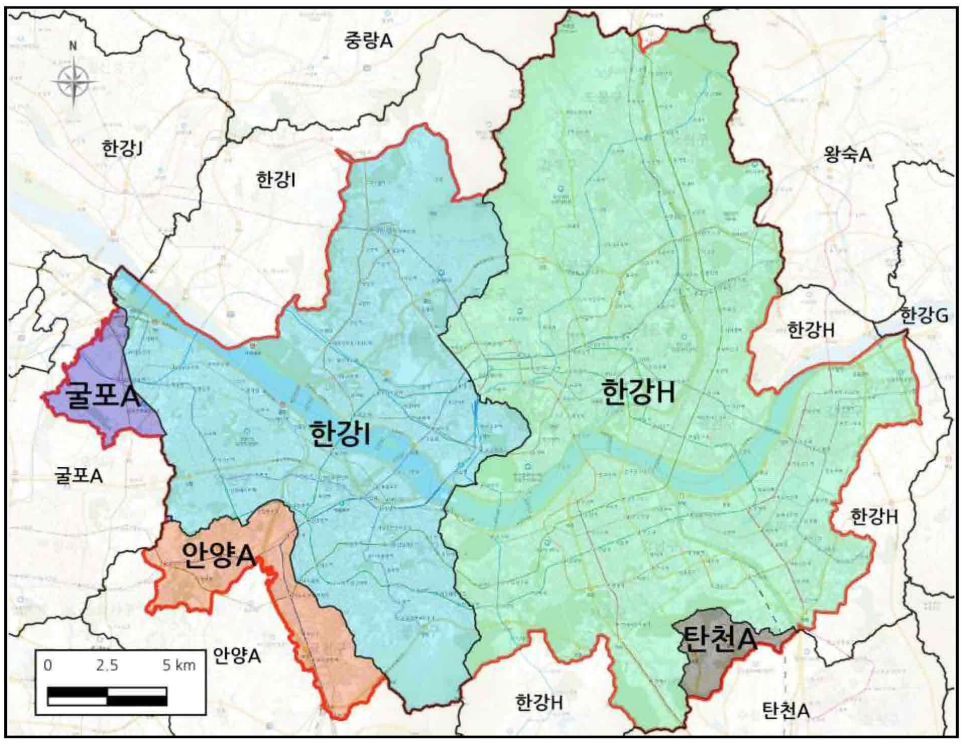

(그림 6.2.2 - 1) 수질오염총량관리 단위유역도

6.2.3 대기환경

가. 대기관리권역 현황

◦ 서울특별시는 전지역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3 - 1> 대기관리권역 현황

권 역	지역 구분	지역 범위	비 고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 지역**	

자료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12. 26>

나. 저황유 공급 및 사용지역 지정현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한 「저황유의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의 범위(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10의2]」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는 황 함유율 0.1% 이하의 경유, 황 함유량 0.3% 이하의 중유(LSWR 포함)를 공급·사용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표 6.2.3 - 2> 황함유량 0.3% 이하 중유(LSWR포함) 공급·사용지역

시·도별	공급·사용지역
특별시 및 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자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의2, 저황유의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의 범위(제40조제1항 관련), <개정 2023. 12. 26>

6.3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계획지구 해당여부	비고
주 요 보 호 대상 시설물	취 수 장	4개소	
	정 수 장	6개소	
	국 가 유 산	2,066점	

6.3.1 취·정수장 현황

◦ 서울특별시 관할 취수장은 4개소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3.1 - 1> 취수장 현황

취수장명	소재지	시설용량(m^3/일)	취수방법	공급정수장
암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산1	1,710,000	취수관거	암사
자양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701	800,000	취수관거	구의, 뚝도
풍납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419	700,000	취수문	영등포
강북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경강로 682	2,300,000	취수탑	강북, 구의, 뚝도

자료 : 2023 상수도 통계, 2024, 환경부

◦ 서울특별시 관할 정수장이 6개소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3.1 - 2> 정수장 현황

정수장명	소재지	시설용량 (㎥/d)	정수형식	급수구역
구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500,000	급속여과+AOP+GAC	광진구 등 4개구 48개동
뚝도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700,000	급속여과+AOP+GAC	종로구 등 7개구 76개동
암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131	1,600,000	급속여과+AOP+GAC	강동구 등 9개구 119개동
영등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11	600,000	급속여과+막여과(MF)+GAC	양천구 등 4개구 57개동
강북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	1,000,000	급속여과+AOP+GAC	중랑구 등 11개구 116개동
광암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293	400,000	급속여과+AOP+GAC	송파구 등 2개구 31개동

자료 : 2023 상수도 통계, 2024, 환경부

6.3.2 국가유산

◦ 서울특별시에는 국가지정유산 1,084점, 시지정유산 651점 등 총 2,066점의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3.2 - 1> 국가유산 현황

(단위 : 점)

총계	지정유산													등록 문화 유산
	국가지정유산							시지정유산					문화 유산 자료	
	계	국보	보물	사적 및 명승	천연 기념물	국가 민속 문화 유산	국가 무형 유산	계	유형 문화 유산	무형 유산	기념물 및 자연 유산	민속 문화 유산		
2,066	1,084	167	760	72	12	42	31	651	521	55	41	34	83	248

자료 : 제64회 2024 서울통계연보(2023년 기준), 2024, 서울특별시

6.4 환경피해유발 시설물 현황

◦ 환경피해유발 시설물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계획지구 해당여부	비고
환경피해 유발 시설물	도로	8,330.40km	
	공항	김포공항	
	산업 및 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 1개소 일반산업단지 3개소	

6.4.1 도로 현황

◦ 서울특별시의 도로현황은 연장 8,330.40km, 포장 8,330.40km로 조사되었으며, 고속도로 27.61km, 일반국도 161.43km, 특별시도 8,141.36km로 조사되었다.

<표 6.4.1 - 1> 도로 현황

(단위 : km, %)

구분	합 계			고속도로	일 반 국 도			특 별 시 도		
	계	포장(%)	미포장		계	포장(%)	미포장	계	포장(%)	미포장
서울특별시	8,330.40	8,330.40 (100.00)	-	27.61	161.43	161.43 (100.00)	-	8,141.36	8,141.36 (100.00)	-

자료 : 제64회 2024 서울통계연보(2023년 기준), 2024, 서울특별시

6.4.2 항공수송 현황

◦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김포공항 항공수송 현황 조사결과, 국내선 여객 20,208,251명, 국제선 3,215,907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6.4.2 - 1> 항공수송 현황(김포공항)

(단위 : 명, 톤)

구분	국내선			국제선		
	여객[2]	화물[3]	우편	여객	화물	우편
서울특별시	20,208,251	139,139	5	3,215,907	45,789	636

주) 1. 김포공항 실적만 작성
2.여객수송인원은 유·무상 승객의 합계임
3. 화물수송량에 수하물 포함
자료 : 제64회 2024 서울통계연보(2023년 기준), 2024, 서울특별시

6.4.3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현황

◦ 서울특별시의 대기오염 배출시설이 2,388개소, 수질(폐수)배출시설이 2,772개소, 소음 및 진동 배출시설이 266개소로 조사되었다.

<표 6.4.3 -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현황

(단위 : 개)

구 분	대기(가스, 먼지, 매연 및 악취)						수질(폐수)						소음·진동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서울특별시	2,388	-	11	19	789	1,569	2,772	5	18	47	88	2,614	266

자료 : 제64회 2024 서울통계연보(2023년 기준), 2024, 서울특별시

6.4.4 산업 및 농공단지

◦ 서울특별시에는 1개소의 국가산업단지가 조성완료, 3개소의 일반산업단지가 조성완료, 조성중, 미개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4.4 - 1> 산업 및 농공단지 현황

(단위: 천㎡, 개, 명)

구 분	단 지 명	조성상태	지정면적	관리면적	입주업체수	가동업체수	종업원수
국가	한국수출산업	완료	1,922	1,920	15,262	13,964	137,465
	서울디지털	완료	1,922	1,920	15,262	13,964	137,465
일반	서울온수	완료	158	158	198	198	1,516
	마곡	조성중	1,124	1,124	199	149	38,873
	강동	미개발	78	78	-	-	-

자료 : 전국산업단지현황, 2025.1분기, 한국산업단지공단

6.5 환경기초시설 현황

◦ 환경기초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계획지구 해당여부	비 고
환경기초시설	분뇨처리시설	3개소	
	폐기물소각시설	5개소	
	폐기물매립시설	X	
	하수처리장	4개소	

6.5.1 분뇨처리시설

◦ 서울특별시 관할 분뇨처리시설은 3개소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5.1 - 1> 분뇨처리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용량 (㎥/일)	처리량 (㎥/일)	처리공법	연계처리장명	방류수역
중랑물재생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47-6	4,000.0	4,778.2	물리적	중랑물재생센터	한강 (중랑천)
서남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4	4,000.0	3,819.7	물리적	서남물재생센터	한강 (한강)
난지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262-2	4,500	3,884.7	물리적, 생물학적	난지물재생센터	한강 (한강)

자료 : 2023 하수도통계, 2024, 환경부

6.5.2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 서울특별시에는 소각시설이 5개소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서울특별시에는 매립시설이 위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5.2 - 1> 소각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용량 (톤/일)	소각방식	운영방식	2023년 처리량(톤)	가동개시일
노원자원 회수시설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70길 99	800.0	일반소각	연속식	158,687.3	1991.09.18
은평환경 플랜트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53	48.0	고온용융	연속식	13,214.6	2007.03.02
마포자원 회수시설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6	750.0	일반소각	연속식	175,354.0	2002.02.28
양천자원 회수시설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121	400.0	일반소각	연속식	104,409.0	1996.03.14
강남자원 회수시설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	900.0	일반소각	연속식	235,024.9	1995.04.25

자료 : 2023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24, 환경부

6.5.3 공공하수처리시설

◦ 서울특별시 관할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4개소로, 총 시설용량 4,980,000.0㎥/일로 조사되었다.

<표 6.5.3 - 1>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처리시설명	위치	시설용량(톤/일)	처리방법	비고
중랑물재생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47-6	1,590,000.0	표준활성슬러지법, A_2O, MLE, SBAF	
서남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4	1,630,000.0	기타, 표준활성슬러지법, MLE, 4 stage-BNR	
탄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580	900,000.0	표준활성슬러지법, MLE	
난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92-2	860,000.0	중력침전법, 표준활성슬러지법, MLE, A_2O	
합 계	-	4,980,000.0	-	

자료 : 2023 하수도통계, 2024, 환경부

6.6 환경적인 배려를 필요로 하는 시설 현황

◦ 환경적인 배려를 필요로 하는 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계획지구 해당여부	비 고
환경배려시설	교 육 시 설	2,616개소	
	의 료 시 설	18,777개소	

6.6.1 교육시설

◦ 서울특별시에는 유치원 769개소, 초등학교 608개소, 중학교 390개소, 고등학교 320개소, 특수학교 32개소 등 총 2,616개소가 운영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6.1 - 1> 교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1]	특수학교	대학교[2]	대학원	기타학교
서울특별시	학교수	2,616	769	608	390	320	32	48	406	43
	학급(과)수	47,673	3,618	17,884	8,358	8,962	856	2,698	4,546	751

주) 1. 고등학교 수는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를 합친 수임
2. 대학교 수는 전문대학, 교육대학교, 대학교를 합친 수임
자료 : 제64회 2024 서울통계연보(2023년 기준), 2024, 서울특별시

6.6.2 의료시설

◦ 서울특별시에는 종합병원 56개소, 일반병원 228개소, 의원 9,668개소, 특수병원 15개소, 요양병원 108개소 등 총 18,777개소가 운영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6.2 - 1> 의료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1]	종합병원	병원[3]	의원	특수[4] 병원	요양병원	치과 병·의원	한방병원	한방의원	조산원	부속[5] 병·의원
서울특별시	병원수	18,777	56	228	9,668	15	108	4,923	85	3,624	3	67
	병상수[2]	90,308	33,800	16,830	9,099	3,421	20,304	129	5,250	1,467	7	1

주) 1. 합계는 의료법 제3조에 의거하여 의료기관 종별에 포함되지 않는 보건소(보건분소, 보건지소) 제외
2. 병상수는 입원료 기준 입원병실 병상수의 합계임
3. 군인병원은 제외
4. 특수병원에 정신병원, 결핵병원, 한센병원, 노인전문병원 포함
5. 부속 병·의원의 기준은 회사 또는 산업체의 종업원을 위한 부속의원임(의료법 35조)
자료 : 제64회 2024 서울통계연보(2023년 기준), 2024, 서울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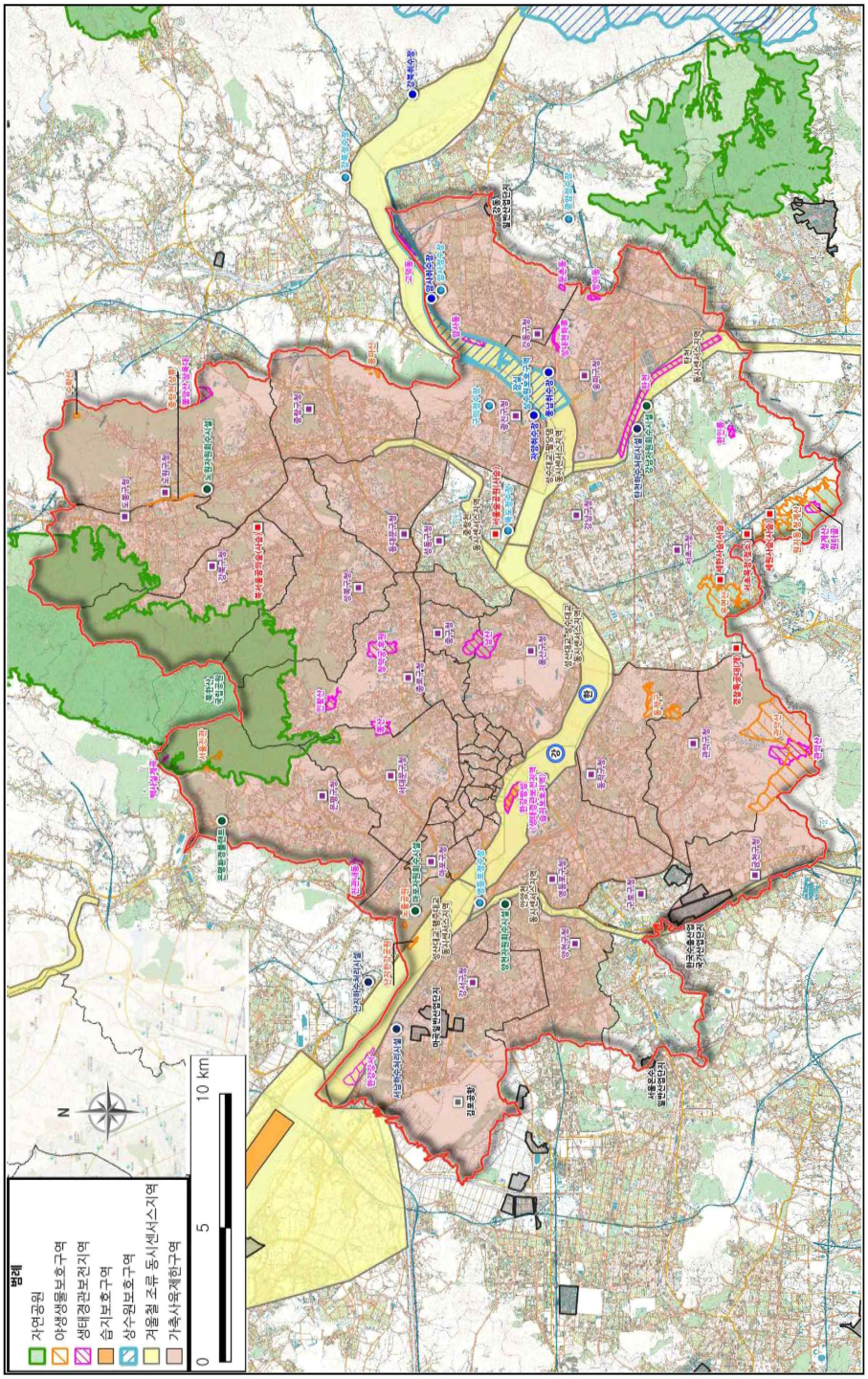

(그림 6 - 1) 지 역 개 황 도

- 67 -

제 7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7.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7.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7.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제7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7.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 본 계획에 따른 평가서 작성하는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근거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서면심의)하였다.

<표 7.1 -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구 분	내 용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전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2025년 7월 18일(금)에서 7월 25일(금)까지 서면심의로 심의위원(총 11인)의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심의의견을 수렴하였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해당 지자체 주거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였다.

-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4조
- 주관행정기관 : 서울특별시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총 11인(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 협의기관, 기후전문가, 민간 전문가, 주민대표 등)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SEOUL MY SOUL"

서 울 특 별 시

서울시 홈페이지 seoul.go.kr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알림 및 평가서 서면심의 요청

1. 귀 기관(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전략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과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붙임1)하고 귀하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서면심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붙임2)를 참조하여 **'25. 7. 25.(금)까지** 물재생시설과로 심의 의견서(붙임3)를 회신(공문 또는 전자메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전자메일 : 김태형 주무관 / 2019120212007@seoul.go.kr

참 고

o 심의개요
- (안 건)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전략·기후변화영향평가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심의기간) '25. 7.18일(금) ~ 25일(금)
- (심의내용)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전략·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붙임: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1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별도 송부) 1부.
3. 심의 의견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부장관(국토환경정책과장), 한강유역환경청장(환경평가과장), 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장), 한국환경연구원장, 민간전문가등(가축분뇨기질비료협동조합, 생태보전시민모임, 중앙대학교, 양재1동주민자치발전위원회) 협의위원(4)님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전결 07/15**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0516 (2025. 7. 15.)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36 /전송 02-2133-1043 / 2019120212007@seoul.go.kr / 부분공개(5)

(그림 7.2 -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위원위촉 및 개최 알림

<표 7.2 - 1> 협의회 심의위원 명단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자격요건	관련법규 (법 시행령)
위원장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과 장	어OO	계획 수립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 지명	제4조제1항
위원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주무관	김OO	계획 수립기관의 장 등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제4조제2항 2호
위원	서초구 (청소행정과)	팀 장	이OO		제4조제2항 2호
위원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사무관	김OO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제4조제2항 1호
위원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주무관	이OO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제4조제2항 4의2호
위원	한국환경연구원 (국토정책평가실)	선임연구위원	문OO	협의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민간(기후)전문가	제4조제2항 3의2호
위원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부연구위원	박OO		
위원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	사무국장	류OO	해당 계획 등과 관련한 학식 등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제4조제2항 3호
위원	생태보전시민모임	공동대표	민OO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제4조제2항 5호 나목
위원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김OO		
위원	양재1동 주민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공OO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제4조제2항 5호 가목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기간 : 2025년 07월 18일 ~ 07월 25일
- 결정사항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대안의 검토
  :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7.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심의의견에 대한 평가항목의 결정 및 조치내용은 "제8장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내용"에 제시하였다.

◦어 ○ ○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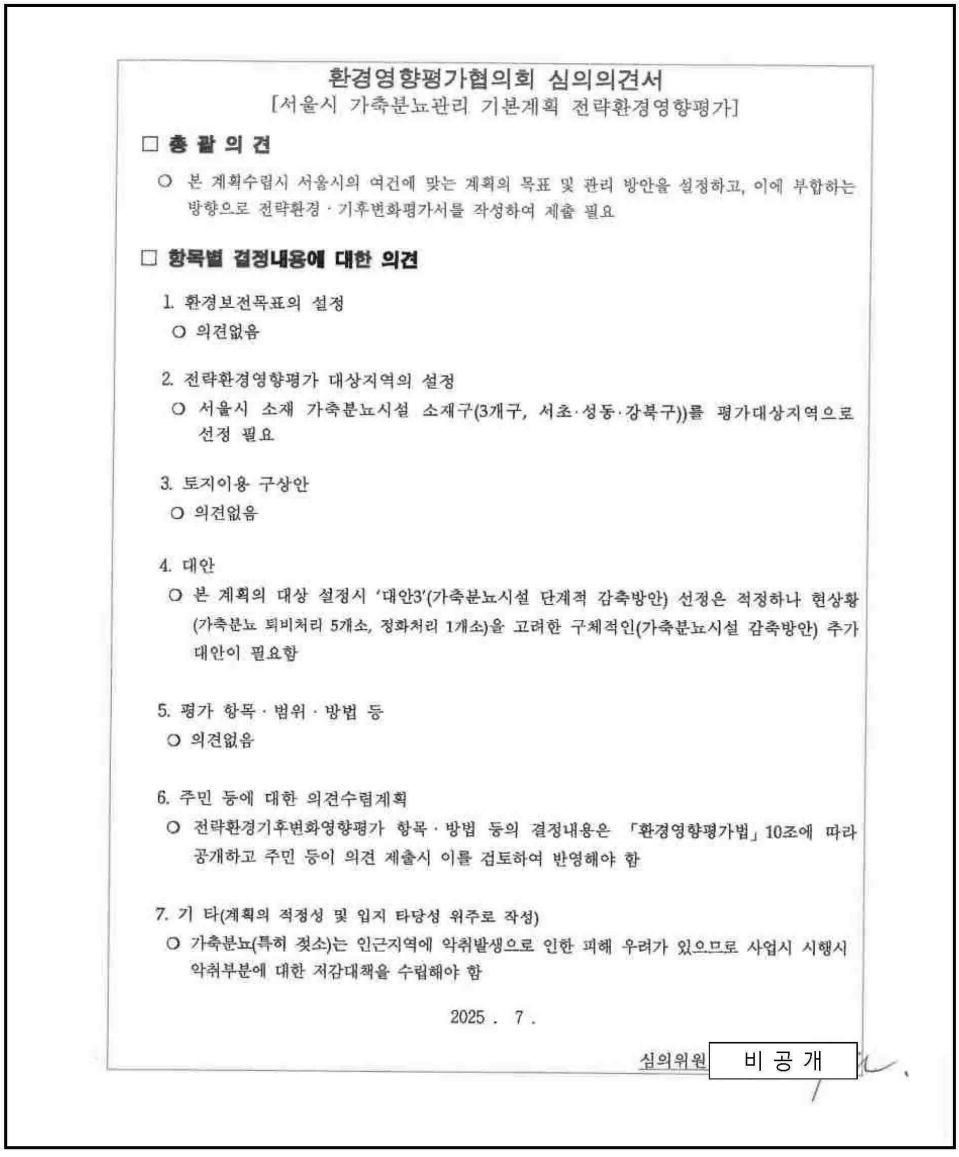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서울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괄 의 견

○ 본 계획수립시 서울시의 여건에 맞는 계획의 목표 및 관리 방안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략환경 · 기후변화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 필요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없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서울시 소재 가축분뇨시설 소재구(3개구, 서초·성동·강북구))를 평가대상지역으로 선정 필요

3.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4. 대안
○ 본 계획의 대상 설정시 '대안3'(가축분뇨시설 단계적 감축방안) 선정은 적정하나 현상황(가축분뇨 퇴비처리 5개소, 정화처리 1개소)을 고려한 구체적인(가축분뇨시설 감축방안) 추가 대안이 필요함

5.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의견없음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 방법 등의 결정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10조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이 의견 제출시 이를 검토하여 반영해야 함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가축분뇨(특히 젖소)는 인근지역에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시 시행시 악취부분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함

2025 . 7 .

심의위원 비 공 개

○김 ○ ○ (서울시 물재생시설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서울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괄 의 견

○ 서울시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작성 및 제출해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없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서울시 소재 가축분뇨시설 소재구(3개구, 서초·성동·강북구)를 평가대상지역으로 선정 필요

3.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4. 대안

○ 본 계획의 대안 설정시 가축분뇨시설 감소 추세 중인 서울시 여건을 고려한 '대안3'(가축분뇨시설 감축방안) 선정은 적정하나, 가축분뇨시설 감소추세 분석 등 '대안3'의 구체화가 필요함

- 가축분뇨시설 감소추세인 서울시 여건과 '대안1'(자원화 확대), '대안2'(공공처리시설 활용)은 상이함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방법 등의 결정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10조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이 의견 제출시 이를 검토하여 반영해야 함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없음

2025 . 7 .

심의위원 비 공 개

○박 ○ ○ (서울시 서초구)

붙 임 환경영향평가 심의의견서

○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의견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서울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괄 의 견**

○ 가축분뇨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음.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관련 법률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정하게 설정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서울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정책계획이므로 대상지역 설정 적정

3. 토지이용 구상안
○ 구체적인 입지가 없는 정책계획으로, 토지이용 구상안이 생략됨에 따라 의견 없음.

4. 대안
○ 가축분뇨 처리시 현재 처리방법을 유지하며 단계적 개체 수 감축을 유도하는 제시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5.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부 고시 등에 의거한 평가 항목·범위·방법 적정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예고 실시 적정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 및 상위 계획에 부합

2025 . 7.

심의위원 비 공 개

○김 ○ ○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서울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괄 의 견

○ 동 계획은 서울시 내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자원화 촉진을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축분뇨법 제5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서울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으로서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서 포함)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동의(√)

○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규정에 따라 평가분야 및 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함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동의(√)

○ 수계 및 가축분뇨관리 구역 중심으로 한 주변의 영향지역을 고려하여 25개 자치구로 지역을 설정하였음에 따라 타당함

3. 토지이용 구상안 : 해당없음

○ 구체적인 입지가 없는 정책계획임으로 생략

4. 대안 : 수정의견(√)

○ 계획 비교, 수단·방법, 시기·순서에 대한 대안을 action과 no action 비교로 설정하였으나

○ 기타 가축·분뇨감량의 목표별 등 대안을 추가 검토가 가능한지 검토 필요하고, 아울러 제시된 대안(계획비교, 수단·방법비교)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정량적인 평가 필요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동의(√)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평가항목을 제시

- 해당 지역 및 수계의 물환경관리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서울시 공공계획 등 기타 상·하위계획과의 연계성·적정성 검토

- 시설확충 계획이 있을 경우 공간계획 검토 및 자원화에 따른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퇴비생산내역, 퇴비화 활용현황 등) 검토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해당없음

○ 동 계획은 정책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의에 따라 행정예고할 계획임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2(정책계획의 의견 수렴)에 따른 행정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필요

2025 . 7.

심의위원 비 공 개

○ 이 ○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서울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괄 의 견

○ 본 심의의견은 '서울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지자체에 부합하는 계획의 목표 및 관리방안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없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3.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4. 대안
   ○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의 목표 및 관리방안에 따른 여러 가지 대안을 설정하고 최적 대안을 선정·제시하여야 함
   - 관리방법, 시기 등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되, 가축분뇨 발생 특성과 처리현황, 지역 환경 현황에 적합한 대안을 제시

5.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평가서상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어야 하며, 조사 방법에 대한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
   ○ 계획수립을 위한 환경기준, 현황자료 등은 최신 자료에 근거하여야 함.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국가물환경관리계획,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적정성 등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동 심의결과를 반영·작성한 평가서의 세부적인 검토 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2025 . 7.

심의위원 비 공 개 1)

◦ 문 ○ ○ (한국환경연구원 국토정책평가실)

붙 임 **환경영향평가 심의의견서(양식)**

○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의견서(양식)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서울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괄 의 견

○ 본 건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수계 및 가축분뇨 관리 구역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영향지역 고려)에 대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기후변화영향평가 감축부문에 대한 검토의견임.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시 아래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 수립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항목별 검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 없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 없음

3. 토지이용 구상안
○ 해당 없음

4. 대안
○ 금회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관련 국가 정책들과의 부합성을 바탕으로 가축분뇨 발생-관리-처리 단계별 대안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대안 평가를 수행 및 최적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5.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금회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 및 글로벌 정책 동향, 그리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관련 정책과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 가축분뇨의 발생, 관리체계, 그리고 처리단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기존 관리체계 대비 신규 관리·운영계획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전망
- 운영 단계에서 단·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감축 대책 수립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안 기술

2025 . 7.

심의위원 비 공 개 (인)

○ 박 ○ ○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붙 임 환경영향평가 심의의견서(양식)

o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의견서(양식)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서울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괄 의 견**

○ 본 건은 서울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중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기후위기 적응 부분에 관한 의견으로 다음 의견을 반영하여 추후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작성 할 필요가 있음.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 없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 없음

3.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4. 대안
○ 의견 없음

5.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기후위기 적응 관련 계획 및 정책 검토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강화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계획, 환경계획 등 공간계획을 검토하여 본 사업과의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계획대상지의 특성에 맞는 리스크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 없음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 없음

2025. 7. 24.

심의위원 비 공 개

◦ 류 ○ ○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

o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의견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서울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괄 의 견

○ 서울특별시의 가축분뇨 발생 6개소 중 3개소는 공공, 3개소만 민간이며 가축사육두수 및 가축분뇨발생량이 자가처리가 가능한 소규모로 악취나 침출수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해보임.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동의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동의
※ 6개소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한강H'에 해당. 연계되는 내용은 없는지요?

3. 토지이용 구상안
○ 동의

4. 대안
○ 수정의견: 자원화 방법으로 제시된 바이오가스방식 보다 현 퇴비화방식을 추천
※ 평가준비서 pp.10 중간 퇴비화를 최적으로 기술하고 바이오가스방식을 제시한 이유가?
※ 평가준비서 pp.50 표6.2.1-1의 내용 중 '2차 오염' ?

5.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동의
※ 평가준비서 pp.62 상단 '본 용인시 농어촌도로' ?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3개소 공공시설, 3개소만 민간시설로 악취·소음 등의 일생생활에 민원이 없다면 의견수렴 과정(행정예고)은 생략 가능해 보임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소규모시설로 퇴비화 유지. 민원 우려시 부숙촉진제, 수분조절제 등 지원을 통해 악취저감

2025. 7. 25.

심의위원 비 공 개

○ 민 ○ ○ (생태보전시민모임)

붙 임 환경영향평가 심의의견서(양식)

○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의견서(양식)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서울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괄 의 견**

❍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온실가스(메탄 등) 감축에 대한 환경목표가 추가되면 좋겠음.

❍ 폐기물 및 악취 저감에 대한 환경목표도 추가되면 좋겠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원안대로 서울특별시와 가축사육대상지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3.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4. 대안

❍ 수단·방법에 대한 대안과 시기·순서에 대한 대안의 연계성이 부족해 보임.

5.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입지의 타당성의 경우 현재 가축사육대상지에 대한 세부평가항목을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최소한 수환경의 보전,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등의 항목은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봄.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안 기술

2025. 7. 24.

심의위원 비 공 개

○ 김 ○ ○ (중앙대학교)

붙 임 환경영향평가 심의의견서(양식)

ㅇ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의견서(양식)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서울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괄 의 견**

❍ 8, 9쪽의 단계별 계획을 보면, 각 단계의 연도가 상이하며, 서울시의 경우 소량의 가축분뇨 발생량이므로 바이오가스 모듈, 분뇨발생량 최소화 기술 적용 등이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33쪽, 바. '센서스 조사지역(2022-2023)'과 표 4.2.1-5의 하단 '자료(2023-2024년)'이 상이함.

❍ 중랑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최근 흰목물떼새, 참매, 새호리기 등이 서식

3. 토지이용 구상안

❍ -

4. 대안

❍ 기본계획에 '서울시 여건에 맞는 가축분뇨 처리체계 구축'과 '자원화 촉진'을 언급하고 있지만, 전자는 구체적인 분명한 표현이 요구되며, 후자는 소량이라 불확실.

❍ 52쪽, 가축분뇨 발생량 예측, 악취저감 계획은 보이지 않음.

❍ 54쪽, 시기,순서에 대한 대안은 내용에 없음.

5.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행정예고 대상에는 공공시설, 사설목장 관리자 등이지만 지역 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듣도록 할 것.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

2025 . 7.

심의위원 비 공 개

◦ 공 ○ ○ (양재1동 주민자치발전위원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서

[서울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괄 의 견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 본 기본계획의 목표와 세부계획과의 일관성, 부합성을 검토하여야 함
○ 서울시의 가축분뇨에 대한 현재 사육규모 및 처리현황, 향후 사육 전망 등을 고려하여 처리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없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3.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구체적 입지가 없는 정책계획)

4. 대안
○ 서울시의 가축사육 현황 및 규모, 분뇨처리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수단·방법에 대한 대안으로 대안3(단계적 개체수 감축) 선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은 구체적 입지가 없는 정책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평가항목 선정시 「입지의 타당성 항목의 생략은 타당함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은 정책계획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개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여야 함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 없음

2025 . 7. 25

심의위원 비 공 개

제 8 장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의 결정내용 및 조치내용

8.1 평가항목 설정
8.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8.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결과 및 조치내용

제8장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의 결정내용 및 조치내용

8.1 평가항목 설정

◦ 본 대상계획인 '서울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항 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이다.

◦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제2025-49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본 정책계획의 평가항목을 선정하였다.

<표 8.1 - 1> 전략환경영향평가 세부평가항목 선정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	선정
계획의 적정성	1) 환경보전 계획과의 부합성			
	가) 국가환경정책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환경계획 및 시책과 정책목표를 검토하여 금회 대상 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
	나) 국제환경동향·협약·규범		◦국제적 환경관련 협약, 조약, 규범, 국제환경동향 등과의 부합성 검토	○
	2)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각종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 금회 대상계획의 연계성 검토	○
	나)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금회 대상계획의 계획목표와 세부내용의 일관성 및 체계적 계획 여부 검토	○
	3)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가) 공간계획의 적정성		◦가축분뇨처리 처리현황 및 처리시설 관리실태	○
	나) 수요·공급규모의 적정성		◦금회 대상계획 수립에 따른 가축분뇨 발생원, 발생량, 운반 및 처리계획 등 검토	○
	다) 환경용량의 지속성		◦금회 대상계획에 따른 악취, 토양, 수질 영향검토 및 저감방안 수립	○
입지의 타당성	1) 자연환경의 보전		◦구체적 입지가 없는 정책 기본계획	X
	가)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			
	나)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다)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라) 수환경의 보전			
	2) 생활환경의 안정성			
	가) 환경기준 부합성			
	나)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다)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3)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가)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8.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본 대상계획인 '서울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은 정책계획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방법을 설정하였다.

<표 8.2 - 1> 평가범위의 설정

구 분	평가범위
공간적 범위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수계 및 가축분뇨 관리 구역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영향지역 고려)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대상지
시간적 범위	◦2026년 ~ 2035년(1단계 : 2029년, 2단계 : 2032년, 3단계 : 2035년, 타당성검토 : 2031년)

<표 8.2 - 2> 항목별 평가 방법 설정

평가항목	예측 및 평가방법	관련자료
1. 계획의 적정성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가) 국가환경정책	◦환경계획 및 시책과의 정책목표와의 부합성 여부	◦국가환경종합계획, 국가폐기물 종합관리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기후변화 협약대응 종합대책 등 ◦각종 법령 및 계획관련 자료
나) 국제환경동향·협약·규범	◦국제적 환경관련 협약, 조약, 규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였는지 여부	
2)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대상계획과의 연관성 및 준수를 위한 계획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관계부처 계획과의 연계성	◦물환경보전법 ◦가축분뇨와 관련된 정부시책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비점오염관리종합대책 등 상·하위계획
나)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관련 상위 행정계획 및 타 행정계획간의 수직적 또는 수평적 연계성이 일관성 있게 반영되었지의 여부	
3) 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성		
가) 공간계획의 적정성	◦국토 환경적 토지이용 차원에서 공간계획의 효율적으로 계획되었는지 여부 검토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보고서 ◦문헌자료
나)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국가적 환경문제와 연계하여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검토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보고서 ◦문헌자료
다) 환경용량의 지속성	◦악취, 토양, 지표수 현황 파악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용량 및 환경지표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였는지 여부 검토 ◦적정 저감방안 검토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보고서 ◦토양 및 수질측정망 자료 ◦문헌자료

8.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및 조치내용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제시된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8.3 -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및 조치내용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서00 위원 (서울시 물재생 시설과)	**□ 총 괄 의 견**		
	◦ 본 계획수립 시 서울시의 여건에 맞는 계획의 목표 및 관리방안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략환경·기후변화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 필요	◦ 기본계획 수립 시 대상지인 서울시의 현황 및 관련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기본계획 내용을 기준으로 전략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작성하였음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		
	◦ 의견없음	-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서울시 소재 가축분뇨시설 소재구(3개구, 서초·성동·강북구)를 평가대상지역으로 선정 필요	◦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문헌 및 개황조사를 실시하되,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 및 예측은 수계 및 가축분뇨관리 구역 중심으로 한 주변의 영향지역을 고려하여 실시하였음	
	3. 토지이용구상안		
	◦ 의견없음	-	
	4. 대안		
	◦ 본 계획의 대안 설정시 '대안3(가축분뇨시설 단계적 감축방안' 선정은 적정하나, 현 상황(가축분뇨 퇴비처리 5개소, 정화처리 1개소)을 고려한 구체적인(가축분뇨시설 감축방안) 추가 대안이 필요함	◦ 서울시의 현재 가축사육 현황 및 분뇨처리 여건을 고려하여 '가축분뇨 발생감소화'안을 계획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효율적 자원화방안 및 지자체 연계처리 방안을 검토하였음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		
	◦ 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방법 등의 결정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10조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이 의견 제출시 이를 검토하여 반영해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평가항목·방법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시행하였음	
	7. 기 타		
	◦ 가축분뇨(특히 젖소)는 인근지역에 악취발생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시 시행시 악취부분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함	◦ 서울시 내 최근까지 가축분뇨에 따른 악취 민원건은 없는 상태이며, 기본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악취 저감대책을 검토·수립하였음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및 조치내용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박00 위원 (서울시 서초구)	**□ 총 괄 의 견**		
	◦ 가축분뇨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음	-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		
	◦ 관련 법률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정하게 설정	-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서울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정책계획이므로 대상지역 설정 적정	-	
	3. 토지이용구상안		
	◦ 구체적인 입지가 없는 정책계획으로, 토지이용구상안이 생략됨에 따라 의견 없음	-	
	4. 대안		
	◦ 가축분뇨 처리시 현재 처리방법을 유지하며 단계적 개체수 감축을 유도하는 제시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부 고시 등에 의거한 평가 항목·범위·방법 적정	-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예고 실시 적정	-	
	7. 기 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령 및 상위계획에 부합	-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및 조치내용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김00 위원 (환경부)	**□ 총 괄 의 견**		
	◦동 계획은 서울시 내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자원화 촉진을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축분뇨법 제5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서울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으로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서 포함)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본 환경영향평가협의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였음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		
	◦환경영향가서 등 작성 규정에 따라 평가분야 및 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함	-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수계 및 가축분뇨관리 구역 중심으로 한 주변의 영향지역을 고려하여 25개 자치구로 지역을 설정하였음에 따라 타당함	-	
	3. 토지이용구상안		
	◦구체적인 입지가 없는 정책계획임으로 생략	-	-
	4. 대안		
	◦계획비교, 수단·방법, 시기·순서에 대한 대안을 action과 no action 비교로 설정하였으나, ◦기타 가축·분뇨감량의 목표별 등 대안을 추가 검토가 가능한지 검토 필요하고, 아울러 제시된 대안(계획비교, 수단·방법비교)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정량적인 평가 필요	◦서울시의 현재 가축사육 현황 및 분뇨처리 여건을 고려하여 '가축분뇨 발생감소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단계별 감축목표를 제시하였음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김00 위원 (환경부)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평가항목을 제시 - 해당지역 및 수계의 물환경관리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서울시 공공계획 등 기타 상·하위계획과의 연계성·적정성 검토 - 시설확충 계획이 있을 경우 공간계획 검토 및 자원화에 따른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퇴비생산내역, 퇴비화 활용현황 등) 검토	- 각종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 본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였음 - 서울시의 현재 가축사육 현황 및 분뇨처리 여건을 고려하여 사육시설 감축을 통한 '가축분뇨 발생감소화' 계획을 수립하였음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		
	◦ 동 계획은 정책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예고할 계획임	-	
	7. 기 타		
	◦「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2(정책계획의 의견수렴)에 따른 행정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필요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본 협의회 의견반영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였음.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2에 따라 행정예고를 시행할 계획임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및 조치내용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이00 위원 (한강유역환경청)	**□ 총 괄 의 견**		
	◦ 본 심의의견은 '서울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지자체에 부합하는 계획의 목표 및 관리방안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기본계획 수립 시 대상지인 서울시의 현황 및 관련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방안을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		
	◦ 의견없음	-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	
	3. 토지이용구상안		
	◦ 의견없음	-	
	4. 대안		
	◦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의 목표 및 관리방안에 따른 여러 가지 대안을 설정하고 최적 대안을 선정·제시하여야 함 - 관리방법, 시기 등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되, 가축분뇨 발생 특성과 처리현황, 지역 환경현황에 적합한 대안을 제시	◦ 서울시의 현재 가축사육 현황 및 분뇨처리 여건을 고려하여 '가축분뇨 발생감소화'안을 계획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효율적 자원화방안 및 지자체 연계처리 방안을 검토하였음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서상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어야 하며, 조사방법에 대한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 ◦ 계획수립을 위한 환경기준, 현황자료 등은 최신 자료에 근거하여야 함	◦ 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충실히 작성하였음 ◦ 환경기준, 현황자료 등은 최신자료를 이용하였음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		
	◦ 의견없음	-	
	7. 기 타		
	◦ 국가물환경관리계획,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적정성 등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동 심의결과를 반영·작성한 평가서의 세부적인 검토 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본 계획과 국제협약 및 국가 정책,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음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및 조치내용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문00 위원 (한국환경연구원)	**□ 총 괄 의 견**		
	◦ 본 건은 서울특별시 25개 지치구(수계 및 가축분뇨 관리구역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영향지역 고려)에 대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기후변화영향평가 감축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임.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작성 시 아래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 수립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		
	◦ 의견없음	-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	
	3. 토지이용구상안		
	◦ 의견없음	-	
	4. 대안		
	◦ 금회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관련 국가 정책들과 부합성을 바탕으로 가축분뇨 발생·관리·처리 단계별 대안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대안 평가를 수행 및 최적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 본 계획과 국제협약 및 국가 정책,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최적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였음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및 조치내용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금회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협약 및 글로벌 정책동향, 그리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관련 정책과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가축분뇨의 발생, 관리체계, 그리고 처리단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기존 관리체계 대비 신규 관리·운영계획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전망 - 운영 단계에서 단·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감축 대책 수립	◦본 계획과 국제협약 및 국가 정책,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음 ◦별도의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통해 계획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산정 및 감축전략을 수립하였음 - 온실가스 감축량 전망을 산정하여 제시함 -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감축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함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		
	◦-	-	
	7. 기 타		
	◦-	-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및 조치내용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박00 위원 (한국환경연구원)	**□ 총 괄 의 견**		
	◦ 본 건은 서울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중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기후위기 적응 부분에 관한 의견으로 다음 의견을 반영하여 추후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	◦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서를 별도로 작성하였음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		
	◦ 의견없음	-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	
	3. 토지이용구상안		
	◦ 의견 없음	-	
	4. 대안		
	◦ 의견 없음	-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기후위기 적응 관련 계획 및 정책 검토 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강화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계획, 환경계획 등 공간계획을 검토하여 본 사업과의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별도의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통해 적응관련 계획 및 정책 검토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강화대책 검토하고, 상위계획을 검토하여 본 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하였음	
	◦ 계획대상지의 특성에 맞는 리스크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계획대상지의 특성에 맞는 리스크를 도출하였음(폭우로 인한 하천/호소로의 오염물질 유입 증가, 폭염 및 한파로 인한 축사 에너지 사용량 증가)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		
	◦ 의견 없음	-	
	7. 기 타		
	◦ 의견 없음	-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및 조치내용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류00 위원 (가축분 유기질 비료협 동조합)	**□ 총 괄 의 견**		
	◦ 서울특별시의 가축분뇨 발생 6개소 중 3개소는 공공, 3개소만 민간이며 가축사육두수 및 가축분뇨발생량이 자가처리가 가능한 소규모로 악취나 침출수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해보임	◦ 서울시의 현재 가축사육 현황 및 분뇨처리 여건을 고려하여 '가축분뇨 발생감소화'안을 계획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효율적 자원화방안 및 지자체 연계처리 방안을 검토하였음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		
	◦ 동의	-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동의	-	
	3. 토지이용구상안		
	◦ 동의	-	
	4. 대안		
	◦ 수정의견 : 자원화 방법으로 제시된 바이오가스방식 보다 현 퇴비화방식을 추천	◦ 현재 퇴비화 처리 여건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자연스러운 개체수 감소를 통한 분뇨 발생 감소화 유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동의	-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		
	◦ 3개소 공공시설. 3개소만 민간시설로 악취·소음 등의 일상생활에 민원이 없다면 의견수렴 과정(행정예고)은 생략 가능해 보임	◦ 본 계획은 정책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에 따라 행정예고할 계획임	
	7. 기 타		
	◦ 소규모 시설로 퇴비화 유지, 민원 우려시 부숙촉진제, 수분조절에 등 지원을 통해 악취 저감	◦ 서울시 내 가축분뇨 발생 시설은 소규모 시설로서 퇴비화의 현안 유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악취저감 대책을 수립하였음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및 조치내용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민00 위원 (생태보전시민모임)	**□ 총 괄 의 견**		
	◦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음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		
	◦ 온실가스(메탄 등) 감축에 대한 환경목표가 추가되면 좋겠음 ◦ 폐기물 및 악취저감에 대한 환경목표도 추가되면 좋겠음	◦ 기후평가시 온실가스 감축 및 악취에 대한 환경목표를 설정하였음 ◦ 장기적으로 자연스러운 개체수 감소를 통한 분뇨발생 감소화 유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원안대로 서울특별시와 가축사육대상지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3. 토지이용구상안		
	◦ 의견 없음	-	
	4. 대안		
	◦ 수단·방법에 대한 대안과 시기·순서에 대한 대안의 연계성이 부족해 보임	◦ 최종 선정된 대안으로 단계별 추진전략 및 계획 수립·제시하였음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입지의 타당성의 경우 현재 가축사육대상지에 대한 세부평가항목을 적용해야 하지 않을 생각함. 최소한 수환경의 보전,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등의 항목은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환경용량의 지속성 항목에서 수질, 악취, 토양 항목을 선정하여 대상지의 현황 및 영향예측, 저감방안을 검토하였음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		
	◦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본 협의회 의견반영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였으며,「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2에 따라 행정예고를 시행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음	
	7. 기 타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안 기술	◦ 계획의 적정성 항목에서 국가환경정책 및 국제협약,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연계성을 검토하였음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및 조치내용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김00 위원 (중앙대학교)	**□ 총 괄 의 견**		
	◦ 8, 9쪽의 단계별 계획을 보면, 각 단계의 연도가 상이하며, 서울시의 경우 소량의 가축분뇨 발생량이므로 바이오가스 모듈, 분뇨발생량 최소화 기술 적용 등이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	◦ 관련 내용은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감축방안 중의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며, 현재 가축사육 현황 및 분뇨처리 여건을 고려하여 현재 퇴비화 처리 여건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자연스러운 개체수 감소를 통한 분뇨 발생 감소화 유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		
	◦ -	-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33쪽, 바. '센서스 조사지역(2022-2023)'과 표 4.2.1-5의 하단 '자료(2023-2024년)'이 상이함 ◦ 중랑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최근 흰목물떼새, 참매, 새호리기 등이 서식	◦ 오기내용은 '2023-2024년'으로 수정하였음 ◦ 평가대상범위내 문헌조사를 통해 관련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겠음	
	3. 토지이용구상안		
	◦ -	-	-
	4. 대안		
	◦ 기본계획에 '서울시 여건에 맞는 가축분뇨 처리체계 구축'과 '자원화 촉진'을 언급하고 있지만, 전자는 구체적인 분명한 표현이 요구되며, 후자는 소량이라 불확실 ◦ 52쪽, 가축분뇨 발생량 예측, 악취저감 계획은 보이지 않음 ◦ 54쪽, 시기, 순서에 대한 대안은 내용에 없음	◦ 서울시의 현재 퇴비화 처리 여건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자연스러운 개체수 감소를 통한 분뇨 발생 감소화 유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최근 서울시 내 축산악취 관련 민원 발생은 없으나, 악취저감계획을 수립 제시하였음 ◦ 시기·순서에 대안을 검토 제시하였음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		
	◦ 행정예고 대상에는 공공시설, 사설목장 관리자 등이지만 지역 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듣도록 할 것.	◦ 「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2에 의거 「행정절차법」 따라 행정예고를 시행할 계획임	
	7. 기 타		
	◦ -	-	

<표 계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및 조치내용

구분	의견내용	조치계획	비고
공00 위원 (양재1동 주민자치발전위원회)	**□ 총 괄 의 견**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 본 기본계획의 목표와 세부계획과의 일관성, 부합성을 검토하여야 함 ◦서울시의 가축분뇨에 대한 현재 사육규모 및 처리현황, 향후 사육 전망 등을 고려하여 처리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국가환경정책 및 국제 협약,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연계성을 검토하도록 하였음 ◦서울시는 가축사육두수 및 가축분뇨발생량이 소규모인 상황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퇴비화 처리 여건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자연스러운 개체수 감소를 통한 분뇨 발생 감소화 유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		
	◦의견 없음	-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의견 없음	-	
	3. 토지이용구상안		
	◦의견 없음	-	
	4. 대안		
	◦서울시의 가축사육 현황 및 규모, 분뇨처리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수단·방법에 대한 대안으로 대안3(단계적 개체수 감축) 선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은 구체적 입지가 없는 정책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평가항목 선정시 「입지의 타당성 항목의 생략은 타당함	-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은 정책계획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개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본 협의회 의견반영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2에 따라 행정예고를 시행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음	
	7. 기 타		
	◦의견 없음	-	

제 9 장 주민 등의 의견수렴

9.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9.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결과

제 9 장 주민 등의 의견수렴

9.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9.1.1 결정내용 공개 실시근거

◦ 본 정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서울시청 홈페이지)과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14일 이상 공개를 실시하였다.

<표 9.1.1 - 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실시근거

구 분	내 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9.1.2 결정내용 공개 현황

◦ 공람기간 : 2025. 08. 07 ~ 08. 20

◦ 공개장소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공개내용: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 주민의견 제출기간 : 공람기간과 동일

◦ 주민의견 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식으로 작성 후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에 서면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의견 등록

◦ 주민의견 제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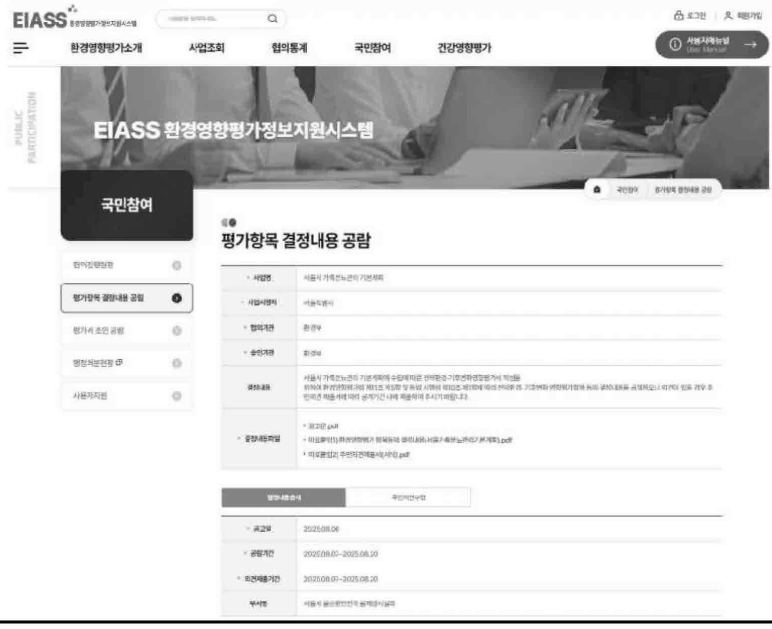

(그림 9.1.2 - 1) 평가항목 결정내용 공개

9.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결과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공개시스템(eiass) 상에 공개하였으며, 그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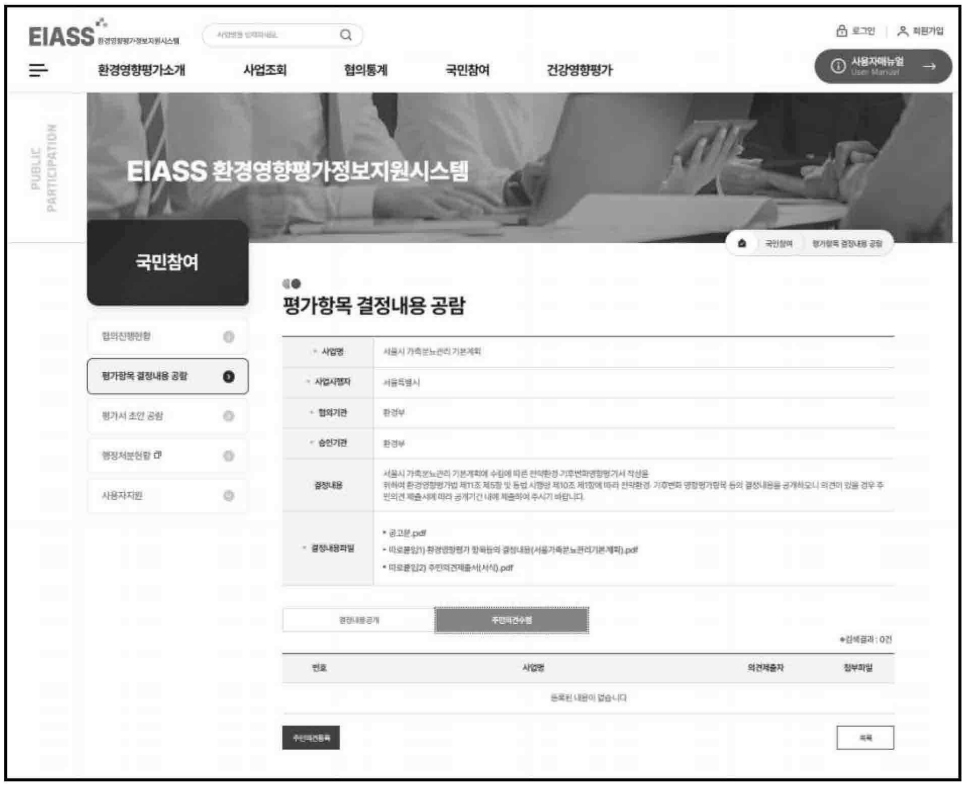

(그림 9.2 - 1) 주민의견 수렴결과

제 10 장 계획의 적정성

10.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10.2 계획의 연계성 및 일관성
10.3 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성

제 10 장 계획의 적정성

10.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10.1.1 국가환경정책

가.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년)

1) 계획의 성격

가) 계획의 체계

◦ (의의) 향후 20년*간의 국가 환경정책의 비전과 장기전략을 제시하는 법정계획

* 「국토계획」 등 관련 국가계획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10년에서 20년으로 계획기간 연정 (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5.11.12)

◦ (법적근거) 「환경정책기본법」(제14조)

◦ (계획기간) 2016년~2035년(20년)

◦ (비전) "자연과 더불어, 안전하게,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

나) 위상과 역할

◦ 환경분야의 범정부 최상위 계획으로 분야별 환경계획, 타 중앙 행정기관·지자체 환경계획에 대한 기본원칙 및 방향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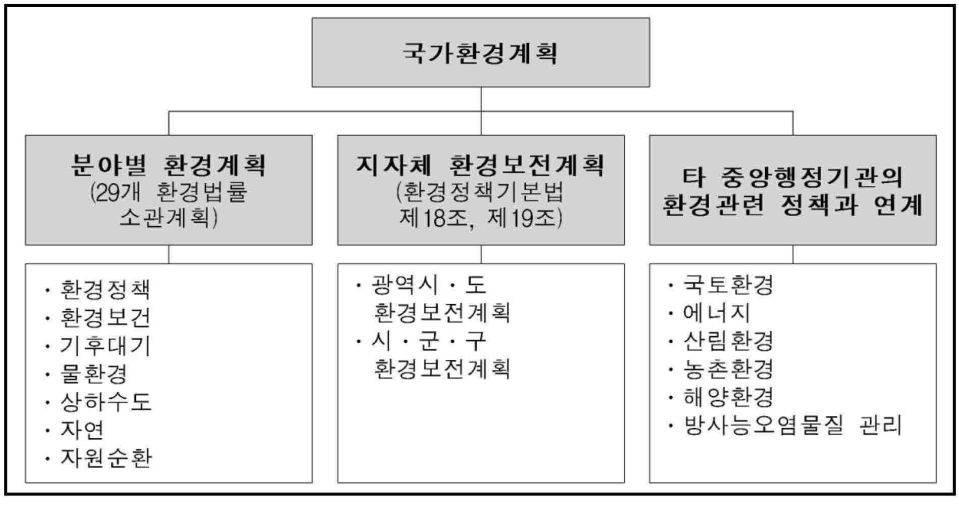

(그림 10.1.1 - 1) 국가환경종합계획과 타 환경계획간 관계

2) 수립경과

가) 제1차 환경보전장기 종합계획(1987~2001년)

◦ 비전 :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국민 생활의 질 개선

◦ 의의 : 한강·낙동강·서남해권 환경보전종합계획을 통합하여 수립

◦ 내용 : 대기·수질오염방지 및 폐기물 관리를 주 대상으로 단계별 목표와 대책수립

나) 제2차 환경보전장기 종합계획(1996~2005년) : 환경비전 21

◦ 비전 : 지구와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여 환경국가 건설

◦ 의의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분야 최초의 장기종합계획

◦ 내용 : 쾌적한 삶의 질 달성,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복원, 지구환경 보전을 목표로 오염사전예방, 조화와 통합, 원인자·수해자 부담, 경제적 유인제도 활용 등

다) 제3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년)

◦ 비전 : 지속가능한 선진국가 조성

◦ 의의 :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환경계획으로 수립(3대 국토생태축과 5대 환경관리 대권에 대한 공간계획 포함)

◦ 내용 : 지속가능하고 활력있는 자연생태 보전, 자연자원 보전과 효율적 관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환경을 지키는 경제-경제를 지키는 환경, 환경 형평성 구현 기반 구축, 동북아 환경보전 및 환경협력 강화, 지구적 지속가능한 발전의 선도

3) 비전 및 목표

가) 비전

◦ 비전 : 자연과 더불어, 안전하게, 모두가 누리는 환경 행복

◦ 자연과 더불어(Nature plus) : 풍요롭고 건강한 자연

- 생물다양성 보전·강화로 기후변화·외래종 유입 등 부정적 영향이 있어 그 기능성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건강성 확보
- 인간이 조화롭게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공급·조절·지원·문화 등 생태계 서비스를 풍요롭게 제공할 수 있는 생태환경 조성

◦ 안전하게(Safey up) : 환경안전기준 및 안전역량 제고

- 기상이변, 원전사고, 화학물질 사고 등으로 '안전'은 국민행복을 좌우하는 주요 이슈로 등장
- 불확실성 속에서 다양한 건강위해요소 및 미래 위험을 예방하고 피해발생 최소화,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사회 구축

◦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Happy Korea) : 사회적 환경권의 실현

- 오염예방, 처리등에 국한된 환경권의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장하여 사전적 환경권 보장체계로 전환
- 취약계층, 민감계층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행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고품질 환경복지를 제공하여 모두가 행복한 국가에 기여

나) 목표

◦ 풍요롭고 조화로운 자연과 사람

- 한반도 생태용량의 양적 확충 및 질적 고도화,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통해 인간·생명이 풍요로운 자연 자원관리
- 생태자원을 활용한 휴양 인프라 등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고품질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관리 실시

◦ 환경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심사회

- 신물질·신기술 개발 가속화, 유해물질 사용 증가, 기상이변 등 건강위해요인 및 미래 환경위험 발생 예방
- 환경영향요소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환경 및 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및 국민안심 확보

◦ 국격에 걸맞는 지속가능환경

- 첨단과학기술 등을 바탕으로 창의적 저탄소 순환 경제의 정착,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모델 제시
- 기후변화 등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책임 있는 참여

4) 전략별 개선방향 및 주요과제

구분	개선방향	주요과제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관리	◦ 기존 3대 생태축과 수생태측의 연결성 강화 ◦ 한반도 생태용량의 순증 실현 ◦ 보전과 이용의 선순환 정책	◦ 한반도 생태용량 확충 ◦ 고유 생물종 및 유전자원 발굴·보전 ◦ 연안 및 해양생태계 관리 강화 ◦ 생태서비스 가치 극대화 ◦ 사전예방적 국토환경관리 강화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	◦ 지역주민의 수요를 고려한 최적환경관리 ◦ 국민행복을 위한 적극적 환경기준 설정 ◦ 현명한 쇠퇴를 고려한 도시농촌환경관리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환경서비스 제공 ◦ 미래형 도시환경서비스 강화 ◦ 친환경농산어촌 조성

구분	개선방향	주요과제
건강위해 환경요인의 획기적 저감	◦ 건강중심 통합환경관리로 이행 ◦ 신규 유해오염물질 및 위해요소 관리 ◦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위해성 관리	◦ 예방적 환경보전관리 강화 ◦ 대기 위해물질관리 강화 ◦ 물환경 위해관리체계 강화 ◦ 토양 및 지하수 위해관리체계 강화 ◦ 화학물질 사전위해성 관리 강화
미래 환경위험대응능력 강화	◦ 미래환경위험에 대한 사전 예측 및 위험 최소화 ◦ 동북아 등 지정학적 개념 고려하여 대응	◦ 기후변화 위험관리 및 신기회 창출 현실화 ◦ 생태·생물학적 위험관리능력 제고 ◦ 방사능 위험관리 강화 ◦ 미래 환경안보 관리 시스템 구축
창의적 저탄소 순환경제의 정착	◦ 저탄소 순환경제 ◦ 민간 창의성 활용 극대화	◦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 자원순환경제 고도화 ◦ ICT를 활용한 친환경 생산·소비 확대 ◦ 환경산업 생태계 혁신
지구환경 보전 선도	◦ 국격에 맞는 지구환경보전 주도 ◦ 환경공동체를 위한 체계적 접근	◦ 범지구적 환경보전 기여 ◦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적극 지원 ◦ 동북아 환경보전 선도 ◦ 한반도 환경공동체 실현
환경권 실현을 위한정책기반 조성	◦ 사전적 환경권 보장 ◦ 쌍방향 정보 생산·공개로 시민거버넌스 실현 ◦ 지방의 경쟁과 책임을 높이는 환경관리	◦ 환경권 보장을 위한 체계 혁신 ◦ 쌍방향 환경정보에 기반한 첨단 환경거버넌스 실현 ◦ 경쟁과 책임강화로 지방의 환경가치 제고

5) 국가환경종합계획과의 부합성

◦ 서울특별시 환경보전계획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고려하여 수립할 계획이다.

나.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년)

1) 계획의 수립배경

◦ 경제개발과 인구의 도시집중(세계 인구의 50% 이상 도시거주)으로 야생생물 서식지가 파괴되고, 생물다양성이 지속적으로 감소*

* 2050년까지 전 세계 생물의 10%가 사라질 전망('13, OECD 환경전망 2050)

-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면적에 비해 각종 개발사업이 계속되고 있어 서식지 파편화 및 생물다양성 감소가 심화될 전망

◦ 그간, 생물다양성법 제정('12), 국립생물자원관('07)·국립생태원('13),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15) 설립 등 제도 및 인프라 구축

- 습지보호지역 34개소, 특정도서 219개소, 국립공원 21개소를 지정('14년말)하는 등 보호지역 확대 추진
-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입 등 사전·사후 환경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등 국토개발과 자연보전의 조화 기반 마련

◦ 반면, 보호지역 지정은 국제사회 요구에 비해 미흡하고, 자연의 현명한 이용을 위한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

- UN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제시한 보호지역 최소비율 17% 및 OECD 평균 16.4%에 미치지 못함

* UN은 '20년까지 육상의 17% 보호지역 지정 권고, 우리나라는 12.6%(육상)

- 여가·레저·문화체험 증가로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 수요는 증가하나 생태관광 인프라는 미흡
- 나고야의정서가 발효('14.10)됨에 따라 생물자원 발굴 및 생물산업 육성이 시급하나 이행절차 및 제도정비가 지연되고 있고, 산업계의 인식과 대응은 미흡

◦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수립으로 향후 10년간 자연환경보전정책 방향과 여건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정책수단 마련 필요

2) 계획의 성격과 역할

가) 기본계획의 법적 성격

◦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 규정에 근거한 장기종합계획('16~'25)

-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제3조)과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제6조)을 실천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추진할 사항을 담은 기본계획

◦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자연환경분야 부문계획

-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에 따라 수립되는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16~'35)의 자연환경분야 실천과제 추진을 위한 부문계획

◦ 우리나라 자연환경분야 최상위 종합계획

-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최상위 계획으로 생태계, 생물종, 유전다양성, 생물안전, 생태계서비스 부문을 포괄하는 전략계획
-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내용을 반영하여 실천과제를 추진하는 실행계획
-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야생생물보호세부계획, 지방생물다양성전략 등 지자체 추진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나) 기본계획의 역할

◦ 향후 10년간의 우리나라 자연환경 여건을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대응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

◦ 지자체와 민간단체, 국민, 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권역별 시책과 협력과제 추진방안을 제시

◦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역할 확대를 위해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추진과제를 제시

3) 계획의 비전 및 목표

(그림 10.1.1 - 2) 계획의 기본 체계

4) 자연환경보전의 목표별 추진전략 및 주요 과제

구분	추진전략	주요과제
자연생태계 서식지 보호	◦ 생태축 보전·복원체계 확립 및 법·제도 정비 ◦ 국제수준 보호지역 확대(17%) ◦ 보호지역 행위규제의 합리적 개선	◦ 국가핵심/광역/도시·생활공간 생태축 관리체계 정립 ◦ 국가핵심/광역/도시·생활공간 생태축별 보전·복원 추진 ◦ 보호지역 관리 강화 ◦ 보호지역 관리기반 강화
야생생물 보호·복원	◦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해제 체계 개선 ◦ 위해 우려종 지정 확대(2025년 150종) ◦ 생물안전 통합관리대책 마련(2020년) - 외래종, 야생생물 질병 등 통합관리	◦ 야생생물 보호 강화 ◦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내·외 보전확대 ◦ 밀렵·밀거래·불법채취 근절대책 강화 ◦ 외래·유해생물로부터 안전한 자연환경 ◦ 야생생물 질병 관리 강화 ◦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 확대 ◦ 야생생물 안전관리 기반 강화 ◦ 기후변화 대응 야생생물 보호·관리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생활공간	◦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활용 의무화 ◦ 마을 생태계 모니터링 및 보전·복원 추진 ◦ 생태복원체계 확립 및 전문업 도입	◦ 도시 생활공간 생태환경 조사 및 평가 ◦ 도시 생활공간 생태계 보전·복원 ◦ 마을 생활공간 생태환경 조사 및 평가 ◦ 마을 생활공간 생태계 보전·복원 ◦ 생활공간 생태계 관리기반 확립 ◦ 생태복원 제도적 기반 마련 ◦ 생태복원 모니터링 기반 마련
자연혜택의 현명한 이용	◦ 생태관광을 포함한 생태계서비스 확대 ◦ 자생 생물자원 조사·발굴·DB화 확대	◦ 국립공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균형 ◦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 문화와 어우러지는 자연 혜택 증진 ◦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확대 ◦ 생태계서비스 평가 기반 마련 ◦ 생태계 서비스 평가 및 관리 ◦ 생물자원 조사·발굴 ◦ 생물자원 통합 DB구축 ◦ 생물자원 활용가치 제고 ◦ 나고야의정서 대응 및 이익공유 활성화

구분	추진전략	주요과제
자연환경보전 기반선전화	◦ 지자체 국토 -환경계획 연계수립 추진 ◦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증대, 자연환경 훼손 조정제 도입 ◦ 지역·시민·준전문가 참여기반 마련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동성 강화 ◦ 자연분야 환경영향평가 제도·운영 선진화 ◦ 자연환경보전 조사체계 개선 ◦ 자연환경보전 정보화 추진 ◦ 자연환경보전 기술개발 및 산업활성화 ◦ 인식증진 및 참여 확대 ◦ 생물다양성 교육 강화 ◦ 자연환경보전 정책 평가지수 개발 ◦ 지역 자연환경보전 추진체계 확립
자연환경보전 협력강화	◦ 재정·인력 지원, 국제적 리드 확보 ◦ 동북아 자연환경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 확대	◦ 부처간 협력 강화 ◦ 지자체 협력 강화 ◦ 지역주민 협력 강화 ◦ 국제사회 역할 확대를 위한 기반 강화 ◦ 자연환경 국제협력사업 추진 ◦ 접경지역 및 북한의 자연환경보전 협력 확대 ◦ 동북아 자연환경보전 협력 확대

5)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과의 부합성

◦ 본 계획은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으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관리로 인하여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 일부 부합성을 가진다.

다.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17~2036년)

1) 수립배경

◦ (법정 계획) 정부는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계획기간 : 2017 ~ 2036

* 기후변화대응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참여, 규제·시장·기술 활용으로온실가스 감축 달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법 제38조)

◦ (중장기 계획)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

- 신기후체제가 우리경제에 부담이 아닌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총괄적인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 기후변화대응 중장기 정책 시그널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투자유도 및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저탄소 사회 구현 촉진

2) 주요내용

◦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단계별 대책

◦ 기후변화 감시·취약성평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 국제협력 및 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

3) 국내 기후변화 대응

가)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1999~2007년)

◦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범정부 대책기구인 「기후변화협약 실무대책회의」에서 3차례에 걸쳐 종합대책(계획기간 : 3년) 수립

1차 종합계획('99~'01)	2차 종합계획('02~'04)	3차 종합계획('05~'07)
◦ 온실가스 저감대책(24개) ◦ 신축성체제 활용대책 ◦ 온실가스저감 기반조성	◦ 협상역량 강화 ◦ 감축 기술개발 ◦ 감축대책 강화 ◦ 국민참여 확대	◦ 협약이행 기반구축 ◦ 부분별 온실가스 감축 ◦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

나)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2008~2012년)

◦ '기후친화산업 육성', '국민 삶의 질 제고 및 환경개선',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 선도'를 3대 목표로 단기 및 중장기 과제 제시

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8년)

◦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중기전략으로 5년마다 수립

1차 5개년 계획('09~'13)	2차 5개년 계획('14~'18)
◦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 신성장동력 창출 ◦ 삶의 질 개선과 위상강화	◦ 저탄소 경제·사회 구조의 정착 ◦ 녹색기술과 ICT의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 기후변화에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기반 구축

라) 주요 성과

◦ 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해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기후변화 대응 전문역량 강화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통한 국제사회에 기여 노력

◦ 파리협정 채택에 따른 기후변화 총력 대응 체계로의 전환

4) 기후변화 대응 추진전략 및 주요 과제

구분	개선방향	주요과제
경제적 온실가스 감축수단 활용	◦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청정연료 발전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등 비용 효율적인 감축정책 및 수단 확대 ◦ 배출권거래제,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 등 탄소시장 적극 활용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저탄소 전원믹스 강화, 에너지 효율 제고 등 ◦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등 ◦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국제시장메커니즘(IMM) 활용
신산업 육성으로 경제성장 지원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확산을 통해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10대 기후기술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투자확대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신시장 선점	◦ 민간의 신산업 창출 지원, 신기술 기반·투자 확대 등
기후변화에 안전한 사회 건설	◦ 기후변화 복합위성 활용 등 과학적인 위험관리를 통해 기후변화 감시·예측 역량 선진화 ◦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및 지역, 건강·재난관리 등에 대한 통합 정보 제공	◦ 과학적인 기후변화 영향 분석·관리, 기후변화에 안전한 사회 건설 등 ◦ 범정부 기후변화 협상 대응력 강화, 감축 이행 점검 대응
범사회적 실천 기반 구축	◦ 다양한 경로의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제기구, 다자·양자 협력 등에서의 협상 대응력 강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부와 기업간 등 다양한 채널의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전 국민의 감축 참여 유도	◦ 기후변화 거버넌스 구축, 기후변화 대응 국민적 공감대 형성

5)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부합성

◦ 금회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시 단계적 축소 등을 통하여 메탄가스 저감, 양질의 분뇨 확보 등 온실가스 저감계획에 부응할 것으로 판단된다.

10.1.2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가. 기후변화협약(UNFCCC)

◦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책임'에 따라 각자의 능력에 맞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약속하였다.

◦ 협약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는 당사국 총회(COP)이며, 협약의 이행 및 과학·기술적 측면을 검토하기 위해 이행부속기구(SBI)와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를 두고 있다.

◦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따라 협약 부속서 1에 포함된 42개국에 대해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규모를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 부속서1에 포함되지 않은 개도국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보고, 계획 수립, 이행과 같은 일반적인 의무를 부여하였다. 한편, 협약부속서2에 포함된 24개 선진국에 대해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정과 기술을 지원하는 의무를 규정하였다.

◦ 부속서1국가는 협약 채택 당시 OECD, 동유럽(시장경제전환국가) 및 유럽경제공동체(EEC) 국가들이며, 부속서2는 그중 OECD와 EEC 국가들만을 포함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부속서1국가들은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개도국으로 분류된다.

- 부속서1 국가 : 벨라루스,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모나코,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리히텐슈타인, 몰타+부속서2국가+ECC
- 부속서2 국가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 ECC

1) 협약명

◦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

2) 채택일자(발효일자)

◦ 1992.05.09.(1994.03.21.)
- 우리나라 가입일자(발효일자) : 1993.12.14.(1994.03.21.)

3) 목적 및 원칙

◦ 기후체계가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 그러한 수준은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식량생산이 위협받지 않으며 경제개발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할 수 있기에 충분한 기간내에 달성되어야 한다.

◦ 책임과 각각의 능력에 따라 인류의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기후체계를 보호해야 한다.

◦ 따라서, 선진국인 당사자는 기후변화 및 그 부정적 효과에 대처하는데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에 특별히 취약한 국가 등 개발도상국인 당사자와, 개발도상국인 당사자를 포함하여 이 협약에 따라 불균형적이며 지나친 부담을 지게 되는 당사자의 특수한 필요와 특별한 상황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 당사자는 기후변화의 원인을 예견·방지 및 최소화하고 그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심각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의 위협이 있는 경우, 충분한 과학적 확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연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후변화를 다루는 정책과 조치는 최저비용으로 세계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비용이 효과적이어야 한다.

◦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러한 정책과 조치는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고, 종합적이어야 하며, 온실가스의 모든 관련 배출원·흡수원 및 저장소 그리고 적응 조치를 포함하여야 하며, 모든 경제분야를 포괄하여야 한다.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노력은 이해 당사자가 협동하여 수행할 수 있다.

◦ 당사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할 권리를 보유하며 또한 증진하여야 한다.

◦ 경제발전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필수적임을 고려하여, 인간활동으로 야기된 기후변화로부터 기후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는 각 당사자의 특수한 상황에 적절하여야 하며 국가개발계획과 통합되어야 한다.

◦ 당사자는 모든 당사자, 특히 개발도상국인 당사자가 지속적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고 그럼으로써 기후변화문제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지적이며 개방적인 국제경제체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 일방적 조치를 포함하여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는 국제무역에 대한 자의적 또는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수단이나 위장된 제한수단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4) 공약

◦ 모든 온실가스의 배출원에 따른 인위적인 배출과 흡수원에 따른 제거에 관한 국가통계를 작성, 정기적으로 갱신 및 공표하고 총회에 통보해야 한다.

◦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조치와 기후변화에 충분한 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조치를 국가적, 지역적 계획을 수립·실시·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 에너지·수송·산업·농업·임업·폐기물관리분야를 포함한 모든 관련분야에서 인위적 배출 규제·감축 또는 방지하는 기술·관행 및 공정을 개발·적용하고, 이전을 포함하여 확산시키는 것을 촉진하고 협력해야 한다.

◦ 생물자원·산림·해양과 그 밖의 육상·연안 및 해양 생태계 등 온실가스의 흡수원과 저장소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촉진하고 또한 적절한 보존 및 강화를 촉진하며 협력해야 한다.

◦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적응을 준비하는데 협력한다. 즉, 연안관리·수자원 및 농업을 위한 계획, 아프리카 등 가뭄·사막화 및 홍수에 의하여 영향받는 지역의 보호와 복구를 위한 적절한 통합계획을 개발하고 발전해야 한다.

◦ 관련 사회·경제 및 환경정책과 조치에서 가능한 한 기후변화를 고려하며,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이에 적응하기 위하여 채택한 사업과 조치가 경제·공중보건 및 환경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영향평가와 같은 국가적으로 입안되고 결정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 기후변화의 원인·결과·규모·시기 및 여러 대응 전략의 경제적·사회적 결과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이에 관한 잔존 불확실성을 축소·제거하기 위하여 기후체계와 관련된 과학적·기술적·기능적·사회 경제적 및 법률적 정보의 포괄적, 공개적 그리고 신속한 교환을 촉진하고 협력해야 한다.

◦ 기후변화에 관한 교육, 훈련 및 홍보를 촉진하고 협력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비정부기구 등의 광범위한 참여를 장려한다.

◦ 국가통계, 계획 중인 조치의 서술 등 이행 관련 정보를 당사자 총회에 통보해야 한다.

5) 기후변화협약과 본 계획과의 정합성

◦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 분뇨의 적정처리 및 관리로 온실가스 유발물질인 메탄가스를 저감할 수 있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으로 판단된다.

나. 파리협정(Paris Agreement)

◦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에서는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다.

◦ 이로써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던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넘어 모든 국가가 자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참여하는 보편적인 체제가 마련되었다.

◦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 지구적 장기목표 하에 모든 국가가 2020년부터 기후행동에 참여하며, 5년 주기 이행점검을 통해 점차 노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파리협정은 또한,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단위로 제출하고 국내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재원 조성 관련, 선진국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여타국가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 협정은 기후행동 및 지원에 대한 투명성 체제를 강화하면서도 각국의 능력을 감안하여 유연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리 협정의 이행 및 장기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 2015년 12월 파리에서 채택되고, 2016년 4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서명된 파리협정은 10월5일 발효요건이 충족되어 30일 후인 11월 4일 공식 발효되었다.

◦ 파리협정 발효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2016.11.7.~18)에서는 2018년까지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자는 데 합의하였다.

◦ 이와 관련, 2018년 제24차 당사국총회(COP24, 카토비체)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 지침을 제외한 감축, 적응, 투명성, 재원, 기술이전 등 8개 분야 16개 지침을 채택하였다.

◦ 그리고 마침내 2021년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 글래스고)에서 6년간 치열한 협상을 진행해 온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타결함으로써 파리협정의 세부이행규칙을 완성하였다.

1) 협약명

◦ 파리협정

2) 채택일자(발효일자)

◦ 2015.12.12(2016.11.04)

- 우리나라 발효일자 : 2016.12.03.

3) 목표

◦ 기후변화의 위험 및 영향을 상당히 감소시킬 것이라는 인식하에, 산업화 전 수준 대비 지구평균 기온 상승을 2℃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 및 산업화 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의 추구할 것이다.

◦ 식량 생산을 위협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적응하는 능력과 기후 회복력 및 온실가스 저배출 발전을 증진하는 노력을 증대할 것이다.

◦ 온실가스 저배출 및 기후 회복적 발전이라는 방향에 부합하도록 하는 재정 흐름을 조성할 것이다.

4) 공약

◦ 온실가스의 배출권에 의한 인위적 배출과 흡수원에 의한 제거 간에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차기 NDC를 준비하고, 통보·유지한다.

◦ 모든 당사국은 파리협정의 목표를 고려하여 5년마다 NDC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기존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또한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감축 정책 및 지원 현황 등을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제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제사회는 글로벌 이행 점검을 통해 당사국이 제출한 NDC의 총체적 효과가 파리협정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지속해서 점검한다.

◦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리협정의 이행 및 장기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5) 파리협정과 본 계획과의 정합성

◦ 본 정책계획은 서울특별자시 전역의 가축분뇨를 적정관리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 가축분뇨를 자원화 등을 실현하여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계획으로 판단된다.

10.2 계획의 연계성 및 일관성

10.2.1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가. 현황조사

1) 조사항목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 가축분뇨 관리·이용 대책, 한미 FTA발효 등에 대비한 가축분뇨 관리대책, 자원 순환형 가축분뇨처리 대책, 서울특별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제3차 강우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2)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 : 계획지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 시간적 범위 : 상위·관련계획의 계획수립기간

<표 10.2.1 - 1> 조사항목 및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범위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2013)	계획지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
	가축분뇨 관리·이용 대책(2004)		-
	한미 FTA발효 등에 대비한 가축분뇨 관리대책		-
	자원 순환형 가축분뇨처리 대책		-
	서울특별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2020~2040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2016~2025
	제3차 강우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2021~2025

3) 조사방법

◦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확인 및 문헌조사

4) 조사결과

가)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농림축산식품부, 2013)

(1) 계획의 목표

◦ 지속 가능항 친환경 축산업 구현

(2) 추진전략

◦ 축산 현실에 맞게 기술 수준,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도 적용시기 등에 대해 단계별 접근 또는 차등적용

◦ 민간중심의 자율관리 체계로 전환하되, 정부는 계획수립·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민·관의 역할 분담 체계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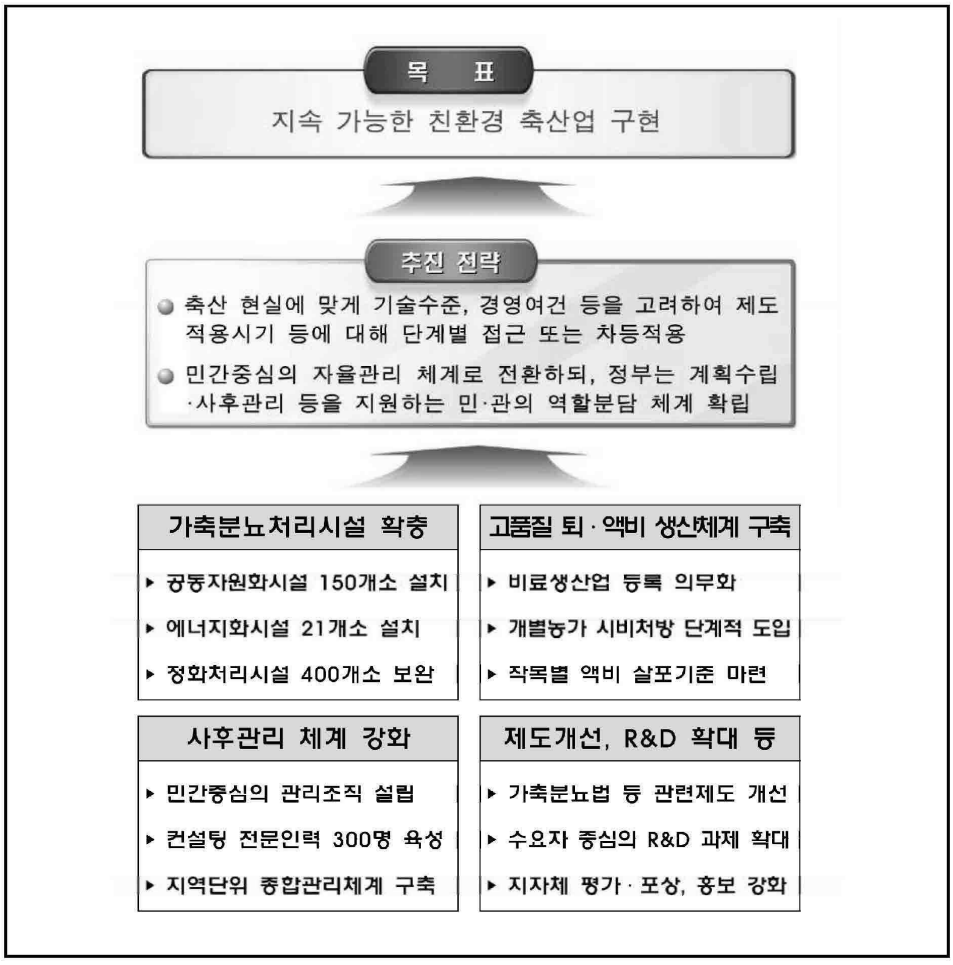

(그림 10.2.1 - 1)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 목표 및 추진전략

(3) 주요대책

(가)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

◦ 공동자원화 및 에너지화시설 확충을 통해 개별농가 처리 감축

◦ 지역별 적정 처리시설 확충 후, 개보수 등 관리 강화로 전환

◦ 가축분뇨법 재정에 다른 개별농가 정화처리 시설 조기 보완

(나) 고품질 퇴·액비 생산체계 구축

◦ 퇴·액비 생산 주체별 단계적으로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화

◦ 모든 농가에 대한 시비처방 제도화 및 액비 수요처 확대

(다) 사후관리 체계 강화

◦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민간관리기구 설립

◦ **전국단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가축분뇨 컨설턴트 육성**

-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 지역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전산관리로 지자체 업무부담을 최소화

(라) 제도개선, R&D 확대 등

◦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활성화 도모

◦ 현장에서 필요한 R&D 확대,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간접 지원

나)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농림부·환경부 합동, 2004)

(1) 목표

◦ 농림부 : 친환경 축산경영체계 구축, 자원화 확대 지원

◦ 환경부 : 공공처리시설 정상화 및 개별 처리시설 관리강화

◦ 부처 공동으로 관리제도 개선 및 법령 정비

(2) 역할

◦ 국가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

- 농림부 : 중·장기적인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과 축산정책 수립 등에 동 대책을 반영
- 환경부 :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관리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함에 정책의 기조를 고려·반영
- 가축분뇨 자원화 및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칭)"제정시 대책을 기본 자료로 설정

◦ 지자체의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을 위한 단위계획 수립시 가이드 라인으로 기능

- 지자체에서 동 계획을 토대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 지역내 축산업과 경종농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비료공급원으로 최대한 가능하도록 함
- 잔여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함

◦ 농·축협 및 농업기술센터 등은 가축분뇨가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동 대책을 축산 및 경종농가 지원의 기본지침으로 활용

(3) 대책목표 및 추진원칙

◦ 대책목표

- 가축분뇨 이용 확대로 자원순환형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하천 수질율 Ⅰ~Ⅱ급수로 개선

◦ 추진원칙

- 기존대책의 합리적 개선

  : 개별농가 지원 및 공공처리시설 정상화 등 양부처가 추진해 오고 있는 기존 대책을 합리적으로 개선

- 사전예방원칙의 도입

  : 사후관리 중심에서 양분총량제, 사육두수총량제, 사육제한 확대 등 오염사전예방원칙의 도입

- 농업부문과의 연계강화

  :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 친환경농산물 이용 촉진 등 최종 수요자인 경종 농업부문과 연계강화

- 양부처 합동 지속적 관리

  :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양부처 합동협의회 및 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하여 지속관리

(4) 전략수립 방향

(가) 강점은 확대하고 약점은 보완

◦ 축산농가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

- 축산농가 처리시설 및 저장시설 설치 지원
- 친환경 축사 설치 및 친환경축산직불제를 통한 우수 농가 지원 확대

◦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확대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 화학비료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격 보조금 확대, 품질 개선 및 안전성 제고
- 퇴·액비 유통센터 활성화 및 살포장비·살포비 지원

◦ 가축분뇨처리기술 개발 및 지원

- 우수분뇨처리기술 소개 및 교육 지원
-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교육 강화
- 분뇨처리가 용이하도록 사료 및 첨가제 등 성분 조정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

- 소규모 농가 분뇨처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신규시설 지속 지원
- 지역내 자원화-정화처리 통합관리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 법령상 미비점 정비

- 축산농가에 대한 과잉관리 규정 개선
- 규제대상 가축의 범위 정비, 방류수기준 강화 및 방목·운동당 관리규정 신설 등

(나)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에 대응

◦ 친환경농업 확대에 필요한 화학비료 대체 비료로 양질의 가축분뇨 퇴·액비 생산유도

- 화학비료 가격차손 보조 중단 및 유기질 비료 가격보조 확대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로 가축분뇨 수요처 확보

◦ 친환경농산물 이용확대로 가축분뇨 수요 확대

- 친환경농업대상 제정·운영으로 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 친환경축산 기반조성으로 축산 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 친환경축산직불제, 축산업 등록제 등으로 친환경축산 유도
- 악취·해충·민원 없는 축사 조정을 위한 친환경축사 시범사업 실시

◦ 생활환경보전지역, 수질보전지역, 과밀사육지역, 질병빈발지역 등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운영

- 가축사육제한 등을 통해 주민생활 개선과 수질보전, 가축사육 안전성 도모

다) 한미 FTA 발효 등에 대비한 가축분뇨 관리대책(환경부, 2004)

(1) 목표

◦ 2012년까지 중규모 축산농가 분뇨 발생량의 60% 정도를 공공 및 공동 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

(2) 추진방향

◦ 공공처리시설 유입대상을 신고미만 축산농가 위주에서 신고대상과 일부 허가대상 축산농가까지 확대

- 사육규모를 고려하여 소규모(돼지 500두 미만)는 공공처리, 중규모(500~2,000두)는 공공 또는 공동 자원화 처리, 대규모는 자체 처리를 원칙으로 처리대책의 실효성 제고

◦ 정화처리 위주의 공공처리시설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퇴·액비 등 자원화로 전환

- 축산농가, 경종농가, 양돈협회, 농협, 축협 등이 참여하는 "지역단위 퇴·액비 유통센터"를 활성화하여 자원화를 촉진

◦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환경부·농림부 및 농·축협 등 생산·소비자단체가 포함된 "가축분뇨관리 추진기획단"을 구성·운영

(3) 주요 대책의 내용

【 주요 분야 】	【 중점 추진내용 】
공공 및 공동 처리시설 확충	·소규모 농가지원을 위한 공공처리시설 설치확대(환경부) ·중규모 이상 농가지원을 위한 공동처리시설 지원 확대(농림부)
퇴·액비 사용 촉진을 위한 축산·경종간 연계체계 구축	·액비유통센타 설치 대폭 확대 ·퇴·액비 유통협의체 구성·운영(시·군 주관) ·자연순환농업 추진 협약식, 액비살포 조인식 등 추진
퇴·액비 이용 촉진 관련제도 현실화	·액비 저장기간 및 가축분뇨 배출원 단위 조정 등 규제 현실화 ·액비살포 농경지 등 확보의무 기준 완화 및 대상토지(임야) 확대 검토 ·퇴·액비 부숙도 판정기준 마련
공공처리시설 운영 효율화	·4대강 수계기금으로 공공처리시설 운영비용 지원확대 ·소규모 농가의 공공처리시설 반입 유도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 등을 통한 성능개선 ·공공처리시설 유입대상 확대
지도교육·점검 및 홍보강화 등	·해양배출 감축, 무단방류 방지 등 홍보강화 ·퇴·액비 시범포 사업 연찬회 개최 ·가축분뇨 관리대책 수립 및 관리강화 ·시·군별 가축분뇨관리·이용대책 협의회 구성·운영

라) 자원순환형 가축분뇨처리 대책(농림부, 2007)

(1) 목표

◦ 가축분뇨 자원화(퇴비·액비)로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2) 대책

(가)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사업비가 '06년 341억원에서 '07년 431억원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99억원)

- 가축분뇨 자원화율 : ('05) 82% → ('07) 83% → ('13) 90%

◦ 축산과 경종이 상생

◦ 자연순환농업을 구현

◦ 환경보전

(나)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

◦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 '07년부터 연간 50만톤 이상 감축하여 전량 육상처리

※ ('06) 261만톤 → ('07)220 →('08)170 → ('00) 70 → ('12) 0

◦ 2011년까지 가축분뇨처리 사업비 집중 지원으로 자원화 촉진

(다) 자연순환농업

◦ 자연순환농업 목표

- 경종과 축산이 함께하여 생태를 보전하는 자연순환농업 구현
- 가축분뇨 자원화율 : ('05) 82% → ('07) 83 → ('10) 85 → ('13) 90
- 가축분뇨해양배출량 : ('06) 261만톤 → ('12) 0
- 공공처리되는 물량외 자원화 가능한 물량은 전량 농경지에 환원

◦ 기본방향

- 안전성이 확보된 양질의 퇴·액비 생산깁나 구축
- 퇴·액비 유통 및 이용체계 구축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 경종·축산농가가 균형 발전하는 환경 조성

(라) 가축분뇨 자원화시스템 평가 및 정보제공

◦ 가축분뇨 자원화 시스템에 대해 전문가 평가 후 검증된 시스템을 농가 등에 정보 제공,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등 효율성 증진

◦ 시설설치 업체의 시스템 시공후 농가 사후관리 여건 조성, 지속 적인 기술개발 의욕 고취

(마) 가축분뇨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

◦ 기존 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연계한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 및 통합자원화 공정시스템 개발·실증화

(바) 액비 이용 영종 농가 경진대회

◦ 12년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전면 금지에 대비 가축분뇨 액비의 자원화 및 벼농사 재배 이용 확대 등을 위해 양돈협회 자체 추진

◦ 경종농가 액비사용 활성화, 액비이용 재배기술 정착 등

(사) 친환경축산 개념 및 표준모델

◦ 농지내 축사진입 용이,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제도」의 도입 등을 고려할 때 친환경축산 개념을 설정하고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성 대두

◦ 쾌적하고 깨끗한 사육환경의 조성 및 악취저감이 가능한 축사시 설의 설치 등 경종농가와 연계된 표준화된 친환경축산(축사)의 표준모델의 제공을 추진('07.12월)

◦ 아울러, 기존에 제작·보급('01년)한 축사 및 자원화시설 표준설 계도를 대체하여 변화된 여건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설계도를 제작·보급할 계획('07~'08년)

(아)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 농림부·환경부가 공동으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대책"을 수립· 발표('04.11)하면서, '07년부터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하기로 함

◦ 지자체별 비료(화학비료, 가축분뇨 등) 공급량과 농경지 비료 수요량 을 분석하여 양분공급 현황 정보 제공

- 양분이 일정수준 이상 지역은 감축목표를 설정·이행토록 유도

(자)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07.9.28)

-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위법령 제정

마) 서울특별시 204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1) 계획의 목표

◦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

◦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바탕으로 관할 구역 안의 유역별로 행정계획을 마련

◦ 청천시와 건우시의 하수를 체계적으로 수집·이송·저류·처리하고 강우시 우수배제를 통한 도시침수 예방 및 강우월류수 최소화 등 효율적인 하수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

(2)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9년, 목표연도 2040년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체 지역

하수를 수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지역(광명시, 하남시, 고양시, 과천시, 의정부시 등)

(3) 계획의 비전, 목표, 전략

◦ 비전 : 시민행복에 기여하는 하수도

◦ 목표 : 안전한 생활(재해에 안전한 시설) - 인프라 역량 강화 & 도시방재 성능 강화

깨끗한 하천(수영 가능한 한강) - 방류수 수질개선 & 강우시 배출오염 저감

쾌적한 환경(시민불편 최소화) - 시민 불편 해소 & 시민친화 공간 제공

경쟁력 확보(과학기술 활용) - 스마트 하수도 구축 & 에너지 자립률 강화

(그림 10.2.1 - 2) 서울특별시 204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바)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1) 계획의 위상 및 역할

◦ 수질, 수량관리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부 물환경관리 정책의 최상위 계획

◦ 대·중·소권역 물환경 관리계획,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및 기본·시행계획,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등 주요 물환경관리 대책 수립의 지침서 역할

(2)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6년 ~2025년

◦ 공간적 범위 : 하천·호소·연안을 포함하는 전 국토의 물환경

(3) 계획의 비전, 목표, 전략

◦ 비전 : 방방곡곡 건강한 물이 있어 모두가 행복한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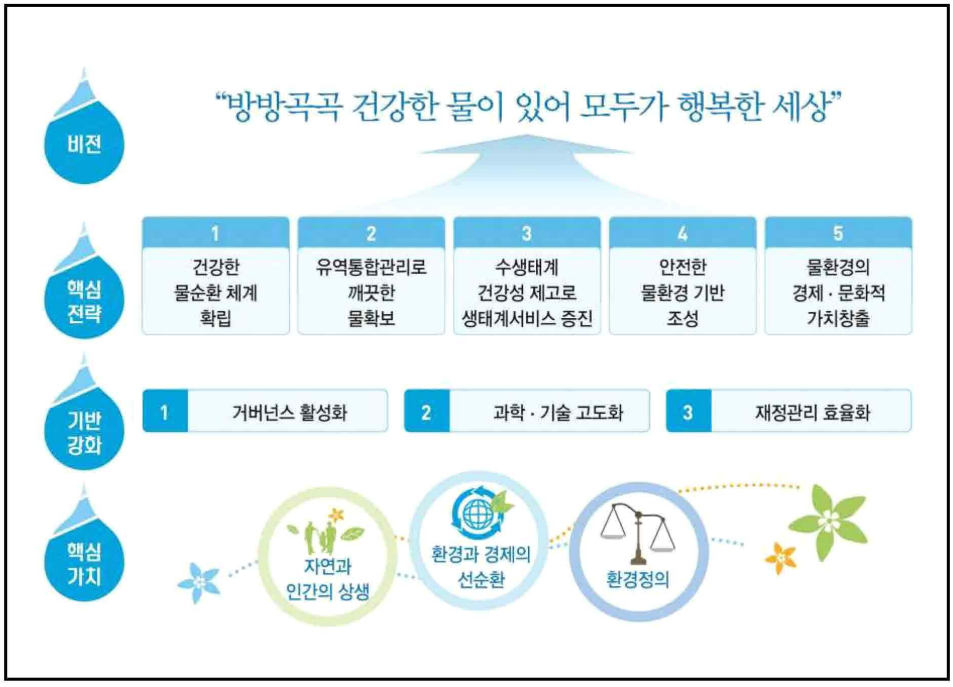

(그림 10.2.1 - 3)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비전 및 핵심전략

(4) 핵심 전략

<표 10.2.1 - 2> 핵심 전략 및 달성 목표

핵심전략	달성목표
핵심전략 1.	건강한 물순환 체계 확립 불투수면적률 25% 초과 51개 소권역의 지역별 물순환 목표 설정 * 기본계획 5년차 평가 시까지 정량화된 지표 개발·산정하여 국가 목표 설정[1)]
핵심전략 2.	**유역통합관리로 깨끗한 물 확보** 주요 상수원의 수질 좋음(Ⅰ) 등급(BOD*·T-P 기준) 달성 * 하천 목표기준에 TOC 도입 시('21년) 기준 변경 검토
핵심전략 3.	수생태계 건강성 제고로 생태계 서비스 증진 전국 수체의 수생태계 건강성 양호(B) 등급 달성
핵심전략 4.	안전한 물환경 기반 조성 산업폐수 유해물질 배출량 10% 저감(2010~2015년 평균 대비) 4대강 상수원 보의 총인 농도와 남조류세포수 일정 수준 이하 유지
핵심전략 5.	물환경의 경제·문화적 가치 창출 국민 물환경 체감 만족도 80% 이상 달성

주) 1. 참고사례 : 불투수면적률 35~50%인 경우 연 강수량의 35% 저류·침투(출처: California water & land use partnership)
서울시는「건강한 물순환도시 조성」종합계획의 목표로 2050년까지 연평균 강우량의 40%(620㎜) 저류 · 침투 제시

(가) 건강한 물순환 체계 확립

◦ 환경생태유량 확보 제도화

- 환경생태유량 확보의 당위성
- 현행 유량관리 현황
- 가뭄대응방식의 한계
- 환경생태유량 산정 · 확보 제도화
- 환경가뭄지수 개발 · 도입

◦ 지표수-지하수 통합관리

- 지하수의 역할 인식 필요성
- 기저유출의 의의 및 중요성
- 지표수에 대한 영향 파악 및 지표수-지하수 통합관리

◦ 전 국토의 물 저류·함양 기능 향상

- 물 저류·함양 기능 향상의 필요성
- LID GSI 적용 확대 및 기술적·제도적 기반 마련
- 하수도 요금제를 활용한 경제적 유인책 도입
- 투수면 확대 및 지역별 관리
- 물순화 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나) 유역통합관리로 깨끗한 물 확보

◦ 주요 상수원 수질 Ⅰ등급 달성과 유역계획의 수립

- 목표 설정 및 유역계획 수립
- 대·중·소권역 계획 및 중점투자계획 수립·이행
- 유역특성을 반영한 지역기반 계획 수립
- 유역거버넌스 활성화 및 참여 확대

◦ 오염총량제가 상수원 수질개선의 핵심수단

- 오염총량제의 수질개선 실효성 제고
- 오염총량제 운영방식 개선
- 총량 목표·지점의 기본계획 연계성 강화
- 지류총량제 도입
- 비점오염관리 방안을 총량 삭감량으로 인정
- 연차별 이행평가결과 공개로 지자체의 자발적 제재 실효화

◦ 지류·지천 수질개선 강화

◦ 농·축산업 분야 오염원 중점관리

- 양분관리제 도입
-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 바이오가스화, 가축분뇨 질소·인 회수

  : 고체연료제조 등 자원화시설 개선 중심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확충

  : 가축분뇨처리를 위해 현재 15%인 공공처리시설을 50%까지 확대 설치

◦ 경제적 유인책을 활용한 사전예방적 비점오염원 관리

(다) 수생태계 건강성 제고로 생태계 서비스 증진

-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체계 확립 및 양호(B) 등급 목표 달성
- 건강성 훼손하천 원인규명 및 복원 체계 확립
- 수생태계의 종·횡적 연결성 제고
- 기후변화에 취약한 수생태계 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전
- 수생태계 서비스 가치 측정 및 정책 활용
- 수생태계 전문 조사연구조직 신설

(라) 안전한 물환경 기반 조성

- 감시물질 도입 및 수질오염물질 지정·관리 강화
- 업종 특성을 고려한 폐수배출시설 관리

(라) 안전한 물환경 기반 조성

- 감시물질 도입 및 수질오염물질 지정·관리 강화
- 업종 특성을 고려한 폐수배출시설 관리
- 사업장 수질오염의 자율관리기반 마련
- 수질오염사고 대응능력 강화
- 통제가능한 수준의 녹조 관리
- 기후변화 취약시설 관리

(마) 물환경의 경제·문화적 가치 창출

- 물환경관리 전문화로 물산업 창출
- 환경기초시설 자산관리제도 도입
- 친수활동 안전 확보 및 쾌적함 제고
- 물문화 체험공간 조성

사) 제3차 강우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1) 계획의 목적

◦ 비점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략 및 추진과제 마련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중 물환경부문 관리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분야의 전략 및 실행계획

(2) 계획기간 : 2021년 ~2025년

(3) 계획의 비전 및 전략

◦ 비전 : 수질개선이 체감되는 비점오염원 관리

◦ 목표 : 비점오염배출부하량 T-P 5% 감축

('25 전망) 52.7톤/일 → ('25 목표) 50.1톤/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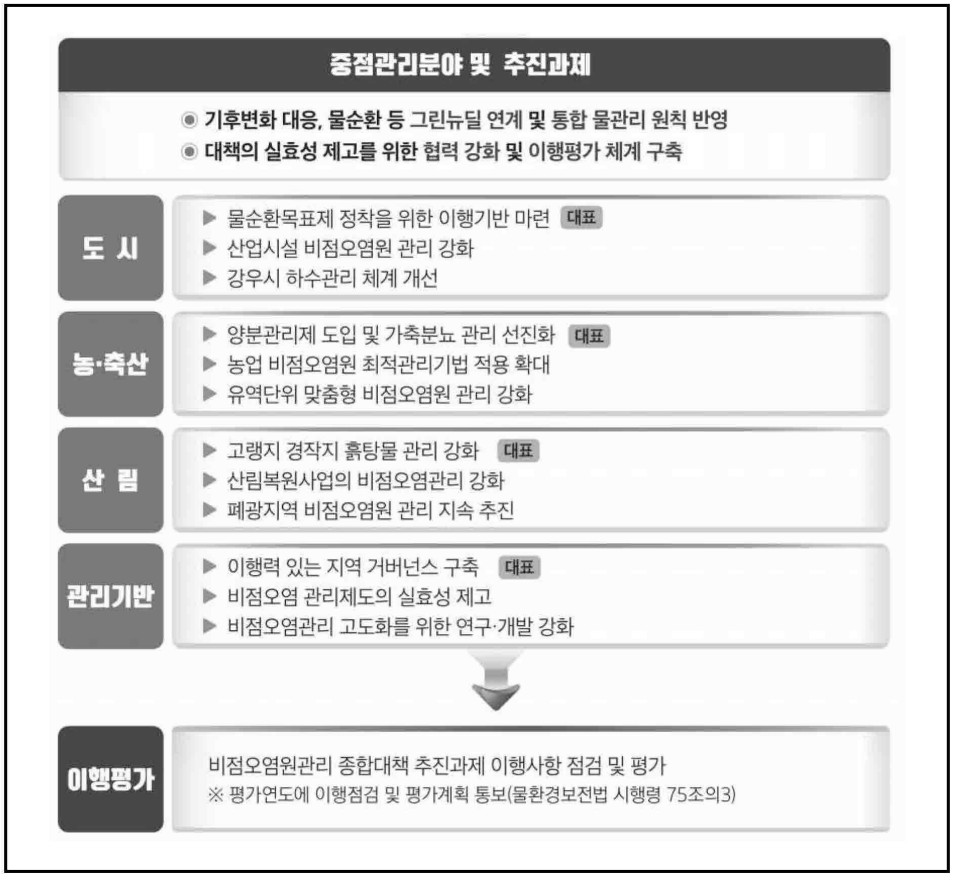

(그림 10.2.1 - 4) 제3차 강우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추진과제

목표

T-P 배출부하량 5% 저감
('25전망) 52.7톤/일 → ('25목표) 50.1톤/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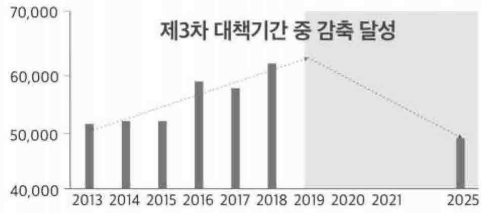

※ (직접효과) 간이하수처리장 424개(2천톤/일, 1조7,800억원)
※ (간접효과) 녹조예방, 생태계 건강성 회복, 도시침수대응 및 경관개선
※ (일자리) 5년간 12,900명의 고용 창출

(단위 : 톤/일)

대권역	'25년 배출부하량(T-P)	
	전망	목표
한강	14.5	13.8
낙동강	14.4	13.7
금강	12.4	11.8
영산·섬진강	11.4	10.8

관리지표	관리목표	비 고
도 시 불투수면적 감축 (%)	불투수율 감축 ('17) 40.3% → ('30) 37.6%	'30년 불투수율 25%이상 소권역(62개소) 대상 평균 불투수율 감축목표 설정
농·축산 비점오염 관리지역 (개소)	농·축산분야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 확대 ('20) 9개소 → ('25) 20개소	농업분야 추가 지정
산 림 고랭지 흙탕물 관리 (㎢)	흙탕물 관리 배수구역 확장 ('20) 37.9㎢ → ('25) 47.2㎢	1,873ha/년
관리기반 지역 거버넌스 (개소)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20) 7개소 → ('25) 50개소	9개소/년

(그림 10.2.1 - 5) 분야별 비점오염원 관리지표

(가) 물순환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도시개발사업 저영향개발기법 적용 확대
- 물순환개선 모델 구축
- 저영향개발기법 보급 확산
- 물순환지수 및 인증제 도입 방안 마련
- 산업시설 비점오염원 중점관리
- 기존도시 그레이인프라의 개선 및 활용
- 도시 맞춤형 강우유출수 관리 강화
- 물순환 우선관리지역 선정 및 관리계획 수립
- 물순환 관리정책 고도화
- 도로, 건물 유래 비점오염 관리 강화

(나) 실효성 있는 농·축산 비점오염원 관리

- 지역단위 양분관리제 기반마련 및 확대시행
- 농업생산기반시설 연계관리
- 공익직불제와 연계한 농업비점 발생 저감
- 주민참여형 농업비점관리 및 거버넌스 구축확대
- 상수원 비점관리를 위한 친환경관리 계약제 도입 검토
- 유역중심의 비점오염 관리를 위한 유역진단 실시
- 가축분뇨 관리 고도화

(다) 산림·토양유실저감 등 표토관리 강화

- 고랭지 경작지 흙탕물저감사업 지속 추진
- 토양유실 저감 및 표토관리
- 산림복원으로 비점오염 발생 예방
- 폐광지역 비점오염저감사업 지속추진

(라) 비점오염원 관리기반 강화

-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제도 개선 및 대상물질 확대
-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 추진체계 개선
-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체계 내실화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제도 내실화

나. 환경평가

1) 세부평가항목

◦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및 일관성 검토

<표 10.2.1 - 3> 세부평가항목

평가항목	현황조사 결과	세부 평가항목 설정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2013)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서 제시된 세부정책목표를 평가지표로 설정
	가축분뇨 관리·이용 대책(2004)	
	한미 FTA발효 등에 대비한 가축분뇨 관리대책	
	자원 순환형 가축분뇨처리 대책	
	서울특별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제3차 강우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2) 평가방법

◦ 상위 및 관련 계획에서 제시된 세부정책목표를 평가지표로 설정하여 서울특별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분석·평가

3) 평가결과

가)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본 계획인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은 서울시 내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자원화 촉진을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또한 본 계획은 서울시 여건에 맞는 가축분뇨 처리체계 구축, 자원화 촉진, 악취 저감, 지속가능한 도시 축산 환경 조성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며, 법령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 수직적·수평적으로 일관성 있게 연계하여 계획지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10.2.1 - 4>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구 분	연계성	연계성 검토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	○	•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시 해당 계획에 적합한 자원순환형, 가축분뇨 관리체계를 단계별로 선정하여 지속적, 효율적으로 가축분뇨를 관리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계획함
가축분뇨 관리·이용 대책	○	
한미 FTA발효 등에 대비한 가축분뇨 관리대책	○	
자연 순환형 가축분뇨처리 대책	○	
서울특별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	• 가축분뇨 발생량을 예측한 결과 발생량은 향후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증설 및 신설계획은 없음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	• 공공 사육시설의 개체수 감축을 추진함으로 분뇨발생량 직접적인 감소를 유도하여 유역통합관리로 깨끗한 물 확보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함
제3차 강우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	• 가축분뇨 발생부터 처리(자원화)까지 전과정을 관리하여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분뇨발생 감소를 위해 계획을 수립함

주) ○ : 직접적으로 연관된 계획, △ : 간접적으로 연관된 계획, × : 연계성 없음

10.2.2 계획 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 본 계획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시·도지사는 10년마다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2033년 8월 16일 법률 개정으로 제7조의 가축분뇨 실태조사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법적 의무가 강화하고 있다.

◦ 이에 서울특별시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서울시 여건에 맞는 가축분뇨 처리체계 구축, 자원화 촉진, 악취 저감, 지속가능한 도시축산 환경 조성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며, 법령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금회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의 계획목표와 내용을 일관성 있게 수립하였다.

가. 계획의 배경

◦ 서울특별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10년마다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2023년 8월 16일 법률 개정에 따라 제7조의 가축분뇨 실태조사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법적 의무가 강화하였다.

◦ 서울시는 타 시도에 비해 가축 사육 두수가 적은 편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가축을 사육하고 있어 가축사육 현황, 분뇨 배출량 및 처리 실태 등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장기적인 대응 필요하다.

◦ 가축분뇨의 비점오염원 관리, 악취 저감, 자원화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계환경의 목표기준을 달성하고 쾌적한 자연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나. 계획의 목적

◦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은 서울시 내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자원화 촉진을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또한 본 계획은 서울시 여건에 맞는 가축분뇨 처리체계 구축, 자원화 촉진, 악취 저감, 지속가능한 도시축산 환경 조성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며, 법령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다. 계획의 대상

◦ 계획의 대상 : 가축분뇨

<표 10.2.1 - 1> 서울시 자치구별 가축사육 현황

자치구	소재지	시설명	축종	사육두수	시설규모(㎡)	분뇨처리방법	비고
성동구	성수동1가 685-20	서울숲공원	사슴	26	2,770	퇴비	
서초구	방배동 산184	경찰특공대	개	31	1,009	정화	
	원지동 산 72	경북농장	한우	20	1,564	위탁	폐쇄
	내곡동 228-1	서초목장	젖소	10	574	위탁	
	우면동 192	세한사슴	사슴	23	396	퇴비	
	원지동 225-2	새원사슴	사슴	3	330	퇴비	
강북구	번동 90	북서울꿈의숲	사슴	14	2,511	퇴비	

라. 계획의 주요 내용

1) 단계별 세부 추진 전략

◦ 본 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 목표는 '서울시 현실적 가축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및 수질보전 선도'로 설정하였고, 실행목표는 '가축사육 제한과 점진적 개체수 감소로 분뇨발생 감소'로 설정하였다.

◦ 3단계로 추진 전략과 가축분뇨의 발생·관리·처리 단계별 추진계획을 설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 1단계(2026년~2029년) : 가축분뇨시설 관리강화 및 시설 15% 감소

◦ 2단계(2030년~2032년) : 가축분뇨시설 50% 감소

◦ 3단계(2032년~2035년) : 가축분뇨시설 감소 관리

<표 10.2.1 - 2> 서울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목표 및 주요 추진계획

계획목표		○ 기본목표 : 서울시 현실적 가축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및 수질보전 선도 ○ 실행목표 : 가축사육 제한과 점진적 개체수 감소로 분뇨발생 감소		
추진 전략	단계별	1단계 (2026년~2029년)	2단계 (2030년~2032년)	3단계 (2032년~2035년)
		가축분뇨시설 관리강화 및 시설 15% 감소	가축분뇨시설 50% 감소	가축분뇨시설 감소 관리
주요 추진 계획	발생 단계	- 가축두수 모니터링 및 감축계획(사설시설) 수립 (총 6개소 → 총 5개소)	- 가축분뇨시설 감축 추진 (총 5개소 → 3개소) · 사설시설 폐업시 보상 등 · 공공시설 가축관리(암수구별 등)에 따른 자연감소 추진 (총 5개소 → 총 3개소) - 가축사용 제한 조례제정 추진 (미제정 자치구 限)	- 감소된 가축분뇨시설 관리 (총 3개소) · 가축분뇨시설(개체수 감소 시) 면적조정 등 - 가축사육 조례 제정 (미제정 자치구 限)
	수집·운반 단계	- 효율적 가축분뇨 수집·운반 방안 모색	- 일부 자치구 가축분뇨 공동수거 체계 구축 - 가축분뇨 미발생 자치구 수집 운반업 폐업 조정	- 가축분뇨 인접지역 공동자원화 시설 운반 - 가축분뇨관련영업자(수집운반업 등) 지도점검 등 관리 강화
	처리 단계	- 적정 퇴비화를 위한 농장주 및 담당자 교육실시 - 일부 가축분뇨시설 정화처리	- 적정퇴비화 방안 유지 - 일부 가축분뇨시설 정화처리 - 가축분뇨 분뇨처리시설 투입	- 적정 퇴비화 방안 유지 - 일부 가축분뇨시설 정화처리 - 인접지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투입
	자원화 방안	- 적정 퇴비화로 양질의 퇴비 생산	- 양질의 퇴비 생산 - 바이오가스 생산량 증대	- 양질의 퇴비 생산 - 재생에너지 확대 기여

2) 수질오염 저감관리

◦ 계획목표 설정을 위해 서울시 관리기준을 바탕으로 오염원 배출부하량을 재산정하고, 가축분뇨 발생량과 가축분뇨 처리량을 비교하여 가축분뇨 적정처리에 따른 수질저감 효과를 제시하였다.

◦ 축산계로 인한 오염 저감을 위해서는 적정 처리량 목표를 세워 오염부하 저감효과를 예측 및 제시할 수 있으며, 단계별 적정 처리량은 단계별 처리필요 부하량에 단계별 적정 처리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

◦ 1단계 : 처리 필요 부하량은 발생부하량, 1단계 적정 처리율을 곱하여 1단계 적정 처리량 산정

◦ 2단계 : 처리 필요 부하량은 가축사육 두수의 감소(사설시설 100% 감소, 공공시설 40% 감소)를 고려한 발생부하량을 적정 처리율 100%로 곱하여 2단계 적정 처리량으로 산정

◦ 3단계 : 처리 필요 부하량은 가축사육 두수의 감소(사설시설 100% 감소, 공공시설 65% 감소)를 고려한 발생부하량을 적정 처리율 100%로 곱하여 3단계 적정 처리량으로 산정

<표 10.2.1 - 3> 서울시 가축분뇨 배출부하량 산정

축종	가축분뇨 배출부하량 산정(kg/일)			
	항목	가축사육두수 (두)	원단위 (kg/두/일)	배출부하량 (kg/일)
한우	BOD	-	0.5950	-
	TN		0.0942	-
	TP		0.0197	-
젖소	BOD	10	0.1116	8.757
	TN		0.1473	1.907
	TP		0.0024	0.342
돼지	BOD	-	0.0314	-
	TN		0.0256	-
	TP		0.0019	-
양/사슴	BOD	66	0.0060	0.6600
	TN		0.0080	0.3102
	TP		0.0001	0.0396
개	BOD		0.0021	
	TN		0.0030	
	TP		0.0001	
가금류	BOD	-	0.0010~0.0015	-
	TN		0.0015~0.0020	-
	TP		0.00005~0.0001	-

자료 : 축산분뇨 발생부하원단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2024, 국립환경과학원) 최신개정.

<표 10.2.1 - 4> 단계별 가축분뇨 적정 처리량 산정

구분	축종	단계별 가축분뇨 적정 처리량 산정			
		항목	처리필요 부하량 (kg/일)	적정 처리율 (%)	적정 처리량 (kg/일)
1단계	젖소	BOD	8.7570	100	8.7570
		T-N	1.9070	100	1.9070
		T-P	0.3420	100	0.3420
	사슴	BOD	0.6600	100	0.6600
		T-N	0.3102	100	0.3102
		T-P	0.0396	100	0.0396
2단계	젖소 (-100%)	BOD	0	100	0
		T-N	0	100	0
		T-P	0	100	0
	사슴 (-60%)	BOD	0.3960	100	0.3960
		T-N	0.1861	100	0.1861
		T-P	0.0238	100	0.0238
3단계	젖소 (-100%)	BOD	0	100	0
		T-N	0	100	0
		T-P	0	100	0
	사슴 (-82.5%)	BOD	0.0713	100	0.0713
		T-N	0.0335	100	0.0335
		T-P	0.0043	100	0.0043

3) 악취관리

◦ 축산분뇨 발생 개별 농가에서는 '축산 냄새 저감 기본 관리 매뉴얼' 등을 참조하여 축산농가에 전파하는 등 악취저감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 악취 관리 계획

◦ 최근 서울시 내 축산악취 관련 민원은 발생한 바 없으며, 가축분뇨 실태조사 결과, 악취 정도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끼치지 않을 정도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악취는 환경적 여건에 따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계획하였다.

◦ 발생단계에서의 적정 사육밀도 유지: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마리당 면적 기준 준수

◦ 사육환경 개선: 축사 내부 청소 강화 및 환기시설 개선

◦ 분뇨 적체 방지: 임시분뇨보관시설 내 분뇨 높이 80cm 이하 유지, 연 1회 이상 완전 청소

(1) 발생단계

(가) 바이오필터 시스템

◦ 생물학적 처리방식으로 악취물질을 미생물이 분해

◦ 복합악취 제거효율 52.7% 이상 확인

◦ 설치비용이 저렴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점

(나) 안개분무시설

◦ 미생물 제제나 탈취제를 미세하게 분무하여 악취 중화

◦ 하루 2~4회 이상 정기적 분무로 지속적 악취관리

◦ 축사 내부 및 외부 동시 설치로 복합적 효과

(다) 스크러버(세정탑) 시스템

◦ 화학적 세정을 통한 악취물질 흡수·흡착·분해

◦ 고농도 악취에 효과적이나 화학약품 사용으로 2차 오염 우려스템

(라) 전자선 악취제거 기술

◦ 저에너지 전자가속기로 악취물질의 분자구조를 분해

◦ 악취제거 효율 99% 달성, 화학약품 불사용으로 친환경적

(2) 처리단계

(가) 소규모 축산시설(젖소, 사슴)

① 기본 시설

- 밀폐형 축사 구조로 개선
- 자연환기에서 강제환기 시스템으로 전환
- 축사 내부 안개분무시설 설치

② 악취저감 장비

- 액비순환시설 : 부숙된 액비와 분뇨 교체·순환으로 냄새저감
- 바이오커튼 : 축사 출입구에 설치하여 악취 확산 방지
- 미생물 제제 : 1일 1회 이상 축사 내외부 살포

(나) 도시형 반려동물 시설

① 관리 강화 방안

- 분뇨 즉시 수거 원칙
- 악취방지를 위한 밀폐형 보관용기 사용
- 소독·탈취제 정기 사용

10.3 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성

10.3.1 공간계획의 적정성

가. 현황조사

1) 조사항목

◦ 토지지목 및 용도지구 현황

◦ 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 현황

◦ 서울시 가축사육 관련 현황

2) 조사범위

◦ 계획지구(서울특별시)

3) 조사방법

◦ 통계자료 및 관련자료 문헌조사

4) 조사결과

가) 토지지목 및 용도지구 현황

(1) 계획지구 토지지목별 현황

◦ 계획지구의 전체 면적은 605.20㎢이며, 지목별 현황은 대지가 223.15㎢(36.9%)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임야 136.51㎢(22.6%), 도로 80.65㎢(13.3%), 하천 52.07㎢(8.6%)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경작지인 전, 답, 과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0.3.1 - 1> 계획지구 토지지목별 현황(2024년 기준)

(단위 : ㎢)

구분	소계	전	답	과수원	임야	대지	도로	하천	공원	기타
소계	605.20	9.06	7.6	0.26	136.51	223.15	80.65	52.07	24.83	71.07
구성비	100.0%	1.5%	1.3%	0.0%	22.6%	36.9%	13.3%	8.6%	4.1%	11.7%
종로구	23.91	0.8	-	-	9.36	8.2	2.39	0.28	0.32	2.57
중구	9.96	-	-	-	1.27	5.19	2.13	0.03	0.46	0.87
용산구	21.87	0.04	-	-	1.6	10.06	2.51	4.76	0.2	2.7
성동구	16.82	0.16	0.01	-	0.26	6.25	2.28	3.75	0.72	3.39
광진구	17.06	0.03	0.01	-	2.47	7.01	2.5	2.52	0.72	1.79
동대문구	14.22	0.04	0.01	-	0.72	7.8	2.63	0.57	0.33	2.1
중랑구	18.5	0.25	0.11	0.13	2.49	7.26	2.88	0.91	1.16	3.3
성북구	24.58	0.06	0.05	-	8.05	10.22	2.74	0.52	0.58	2.34
강북구	23.61	0.06	0.03	-	12.52	6.68	2.01	0.34	0.92	1.05
도봉구	20.65	0.23	0.09	0.03	9.57	6.19	2.09	0.47	0.54	1.46
노원구	35.44	0.18	0.16	0.02	15.38	9.36	2.89	1.1	0.78	5.57

<표 계속> 계획지구 토지지목별 현황(2024년 기준)

구분	소계	전	답	과수원	임야	대지	도로	하천	공원	기타
은평구	29.71	0.34	0.15	-	13	10	2.99	0.52	0.97	1.74
서대문구	17.63	0.07	-	-	4.44	7.14	2.18	0.44	0.69	2.67
마포구	23.85	0.27	0.1	-	0.32	8.55	3.53	5.77	2.83	2.49
양천구	17.41	0.1	0.01	-	1.06	8.67	3.09	0.45	1.75	2.28
강서구	41.45	1.42	2.81	0.07	2.74	11.95	4.4	3.65	1.82	12.6
구로구	20.12	0.34	0.24	-	2.87	8.56	2.92	0.97	1.02	3.19
금천구	13.02	0.03	0.02	-	2.71	5.07	2.03	0.62	0.24	2.28
영등포구	24.55	0.03	0.04	-	0.06	9.5	4.26	8.08	0.67	1.92
동작구	16.35	0.03	0.03	-	2.33	7.87	2.37	0.64	1.01	2.05
관악구	29.57	0.12	0.06	-	15.94	8.21	2.61	0.55	0.74	1.34
서초구	46.97	2.17	1.54	0.01	17.81	13.13	6.31	2.49	1.06	2.46
강남구	39.5	0.63	0.7	-	6.02	16.32	6.78	4.01	1.72	3.31
송파구	33.88	0.47	0.56	-	0.67	14.92	6.26	5.34	2.4	3.29
강동구	24.59	1.18	0.86	-	2.83	9	3.88	3.31	1.18	2.34

주) 기타 : 목장용지, 광천지, 염전,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철도용지, 제방,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자료 : 서울열린데이터광장, 2024, 서울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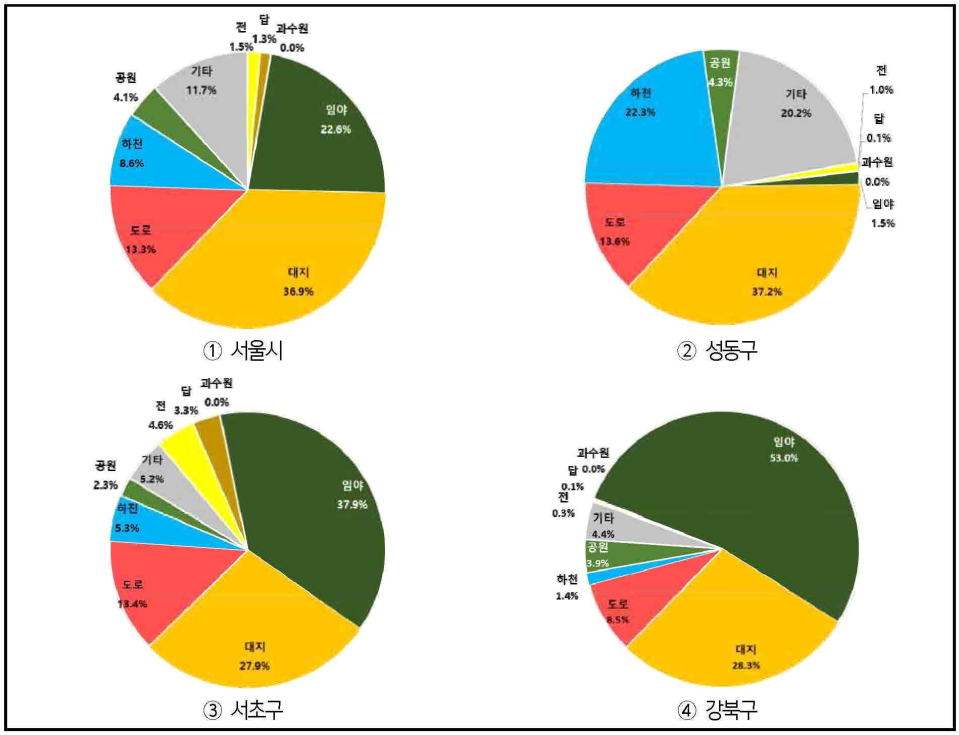

(그림 10.3.1 - 1) 서울시 가축사육 지역별 토지이용도 비율

(2) 계획지구 용도지역 현황

◦ 계획지구 용도지역의 전체 면적은 605.61㎢이며, 용도지역별 현황은 주거지역이 326.52㎢(53.92%)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녹지지역 233.46㎢(38.55%), 상업지역 25.66㎢(4.2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10.3.1 - 2> 계획지구 용도지역 현황

(단위 : ㎢)

구분	소계	도시지역					비도시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소계	605.61	326.52	25.66	19.97	233.46	-	-
구성비	100.00%	53.92%	4.24%	3.30%	38.55%	0.00%	0.00%
종로구	23.97	9.83	2.94	-	11.2	-	-
중구	9.97	6.01	3.94	-	0.03	-	-
용산구	21.9	12.18	1.27	-	8.44	-	-
성동구	16.8	9.93	0.49	2.05	4.33	-	-
광진구	17.08	11.59	0.21	-	5.27	-	-
동대문구	14.25	13.04	0.82	-	0.38	-	-
중랑구	18.53	10.81	0.37	-	7.35	-	-
성북구	24.62	17.83	0.4	-	6.39	-	-
강북구	23.64	10.89	0.28	-	12.46	-	-
도봉구	20.68	8.1	0.26	1.49	10.84	-	-
노원구	35.6	14.09	0.47	-	21.03	-	-
은평구	29.79	15.36	0.53	-	13.9	-	-
서대문구	17.69	15.44	0.29	-	1.96	-	-
마포구	23.89	13.29	0.95	-	9.66	-	-
양천구	17.47	12.54	0.8	0.09	4.04	-	-
강서구	41.46	14.71	1.33	2.92	22.5	-	-
구로구	20.14	10.27	0.52	4.2	5.16	-	-
금천구	13.01	5.84	0.15	4.12	2.9	-	-
영등포구	24.35	8.01	2.62	5.02	8.71	-	-
동작구	16.39	13.78	0.36	-	2.25	-	-
관악구	29.56	15.32	0.39	-	13.85	-	-
서초구	46.9	19.01	1.33	-	26.56	-	-
강남구	39.5	24.23	1.95	-	13.32	-	-
송파구	33.86	21.47	2.29	-	10.1	-	-
강동구	24.56	12.95	0.7	0.08	10.83	-	-

자료 : 서울열린데이터광장, 2024, 서울특별시

나) 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 현황

◦ 계획지구의 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 현황 조사결과, 계획지구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생태·경관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조사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배출허용(폐수)적용 지역 '나'지역,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Ib, III 등급' 지역, 수질오염총량단위유역, 대기관리권역, 저황유 공급·사용지역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제6장 지역개황」 참조).

<표 10.3.1 - 3> 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 현황

구분		관련법규	계획지구 해당여부	비고
자연생태환경	생태 · 자연도 1등급	-자연환경보전법	O	1, 2, 3등급, 별도관리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O	18개소 위치
	야생생물 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O	10개소 위치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O	1개소 위치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	O	1개소 위치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산림보호법	X	해당없음
	백두대간보호지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X	해당없음
	특정도서지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X	해당없음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	O	6개소 위치
수환경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고시 제2025-46호	X	해당없음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O	1개소 위치
	수변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X	해당없음
	배출허용(폐수)적용 지역	-물환경보전법	O	'나'지역 해당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물환경보전법	X	해당없음
	수질오염총량단위유역	-물환경보전법	O	굴포A, 안양A, 한강I, 한강H, 탄천A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물환경보전법	O	한강서울 - Ib(좋음) 한강고양 - III(보통)
	수산자원 보호구역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X	해당없음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관리법	X	해당없음
대기환경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보전법	O	전지역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고시 제2018-23호	X	해당없음
	저황유 공급·사용 지역	-대기환경보전법	O	황 함유율 0.1% 이하의 경유, 황 함유량 0.3% 이하의 중유
	악취관리지역	-악취방지법	X	해당없음

다) 서울시 가축사육 현황

(1) 서울시 가축사육 정보 기준

◦ 서울시의 가축 사육 두수(2025년 4월 기준 11두)는 농식품부의 축산법 기준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환경부의 분뇨 처리 시설 허가는 별도로 관리되며, 도시화로 인해 실제 사육 농가가 극소수여서 두 기준에 혼선이 있다.

◦ 「가축분뇨법」과 「축산법」의 기준 차이는 환경 관리(환경부)와 산업 지원(농식품부)의 이원적 체계에서 비롯됨에 따라 환경부의 최근 해석으로 현장 혼란은 완화되었으나, 향후 부처 간 정책 연계를 통한 일원화가 필요하며, 특히 서울시처럼 도심형 축산이 한정된 지역에서는 두 기준의 실질적 영향이 미미하나, 전국적 차원에서는 지속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0.3.1 - 4> 가축사육 현황 차이 비교(2024년 12월 기준)

구 분	농식품부(축산법)	환경부(가축분뇨법)
사육종	한우, 젖소	-
사육두수	18두	-
조사대상	등록된 상업적 농가	모든 분뇨 발생원
자료제공	축산물이력제	전국오염원조사

◦ 본 대상계획인 서울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에는 「축산법」 기준 자료를 우선 검토하고, 서울시 자체 신고 관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실적인 사육환경 및 분뇨 발생 전망과 계획을 검토하였다.

(2) 서울시 가축사육 현황

(가) 축산법 기준

◦ 축산법(축산물이력제)을 기준으로 한 서울시 축산시설은 2024년 기준 2개소, 가축 종은 육우, 젖소와 한우으로 확인되었다.

◦ 돼지, 닭, 오리 등 기타 가축에 대해서는 공식 등록된 사육두수가 없거나 극소수(0~10두 미만, 실질적 사육농가 없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서울시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육우, 젖소, 한우)는 2023년 말 대비 2024년 사이 사육두수가 40%로 급격히 감소하였음. 이는 도시화, 농가 고령화, 축산업 구조조정 영향으로 판단된다.

<표 10.3.1 - 5> 연도별 가축사육 현황

구 분	사육 두수				시설 수 (개소)
	육우	젖소	한우	합 계	
2015년	2	16	79	97	3~4

<표 계속> 연도별 가축사육 현황

구 분	사육 두수				시설 수 (개소)
	육우	젖소	한우	합 계	
2016년	-	17	95	112	3
2017년	-	15	98	113	2~3
2018년	3	14	101	118	2~3
2019년	1	15	89	105	2
2020년	-	13	77	90	2
2021년	3	13	58	74	2
2022년	2	12	40	54	2
2023년	3	7	20	30	2
2024년	1	9	8	18	2

자료 : 서울특별시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2025.09., 서울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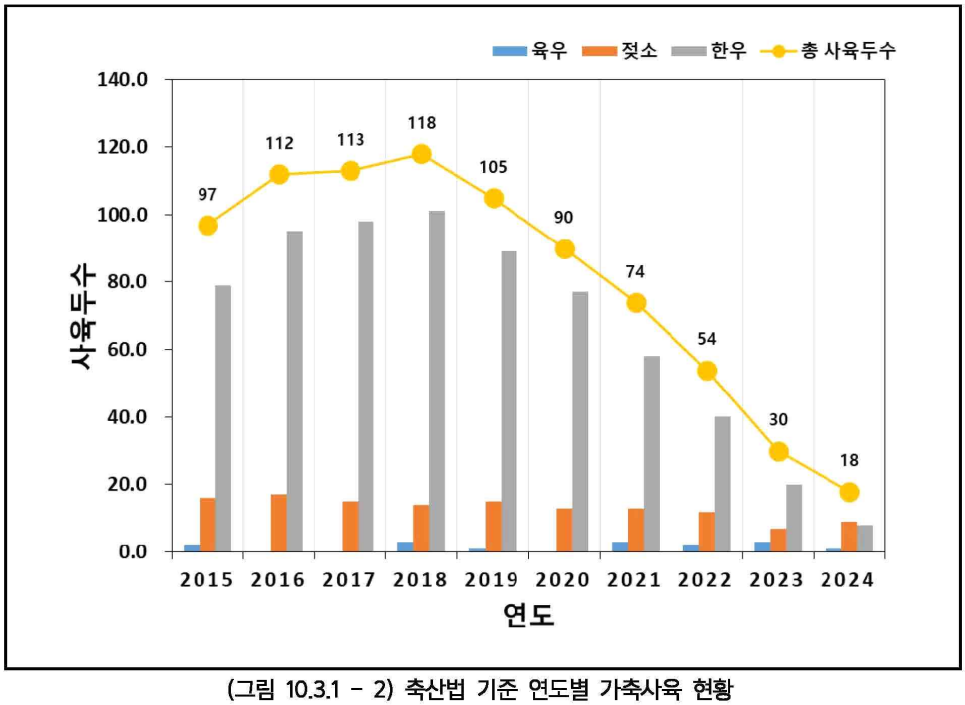

(그림 10.3.1 - 2) 축산법 기준 연도별 가축사육 현황

(나) 가축분뇨법 기준

◦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축산시설은 허가대상, 신고대상, 신고미만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러나, 서울시 도시 특성 상 실제 운영중인 축산시설은 극소수이며, 아래 표는 2024년 기준 법령상 분류기준에 따른 현황을 정리하였다.

<표 10.3.1 - 6> 서울시 가축사육시설 분류 및 현황(2024년 기준)

가축 종류	허가대상 (축사/운동장 면적 등)	신고대상 (축사/운동장 면적 등)	신고미만 (무신고)	서울시 현황
돼지	1,000㎡ 이상	50㎡ 이상 1,000㎡ 미만	50㎡ 미만	사육두수 및 시설 없음
소(한우, 육우)	축사 900㎡ 이상 또는 운동장 450㎡ 이상	축사 100㎡ 이상 900㎡ 미만 운동장 200~450㎡ 미만	100㎡ 미만(축사) 200㎡ 미만(운동장)	1개소
젖소	축사 900㎡ 이상 또는 운동장 2,700㎡ 이상	축사 100㎡ 이상 900㎡ 미만 운동장 300~2,700㎡ 미만	100㎡ 미만(축사) 300㎡ 미만(운동장)	1개소
말	900㎡ 이상	100㎡ 이상 900㎡ 미만	100㎡ 미만	공식 사육농가 없음
닭·오리	3,000㎡ 이상	200㎡ 이상 3,000㎡ 미만	200㎡ 미만	공식 사육농가 없음
메추리	-	200㎡ 이상	200㎡ 미만	사육농가 없음
양·사슴	-	200㎡ 이상	200㎡ 미만	2개소, 공공시설 관상목적 2개소
개	-	60㎡ 이상	60㎡ 미만	1개소 (상업적 사육농가 없음)
방목 사육시설	-	돼지 36마리 이상 소·젖소·말 9마리 이상 닭·오리 1,500마리 이상 양·사슴 50마리 이상	그 미만	해당 없음

자료 : 서울특별시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2025.09., 서울특별시

(다) 서울시 자체 관리 기준

◦ 2024년 기준 총 7개의 축사 중, 허가대상에 해당되는 경북농장 1개소는 폐쇄되어 최종 6개소의 신고시설을 운영 중이며, 가축 종은 젖소, 사슴, 개로 조사되었다.

◦ 자치구별로 성동구 1개소, 서초구 4개소, 강북구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폐쇄시설(서초구 경북농장 1개소)을 제외하고 서초구에 4개의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성동구에 서울숲공원 내 관상용 사슴 사육시설 1개소, 서초구에서는 경찰특공대에서 업무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고 있으며, 젖소 사육시설 1개소, 사슴 사육시설 2개소를 운영 중이며, 강북구의 북서울꿈의숲 내에도 관상용 사슴 사육시설 1개소를 운영 중으로 조사되었다.

<표 10.3.1 - 7> 서울시 자치구별 가축사육 현황(2024년 기준)

자치구	소재지	시설명	축종	사육두수	시설규모(㎡)	분뇨처리방법	비고
성동구	성수동1가 685-20	서울숲공원	사슴	26	2,770	퇴비	
서초구	방배동 산184	경찰특공대	개	31	1,009	정화	
	원지동 산 72	경북농장	한우	20	1,564	위탁	폐쇄
	내곡동 228-1	서초목장	젖소	10	574	위탁	
	우면동 192	세한사슴	사슴	23	396	퇴비	
	원지동 225-2	새원사슴	사슴	3	330	퇴비	
강북구	번동 90	북서울꿈의숲	사슴	14	2,511	퇴비	

자료 : 서울특별시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2025.09., 서울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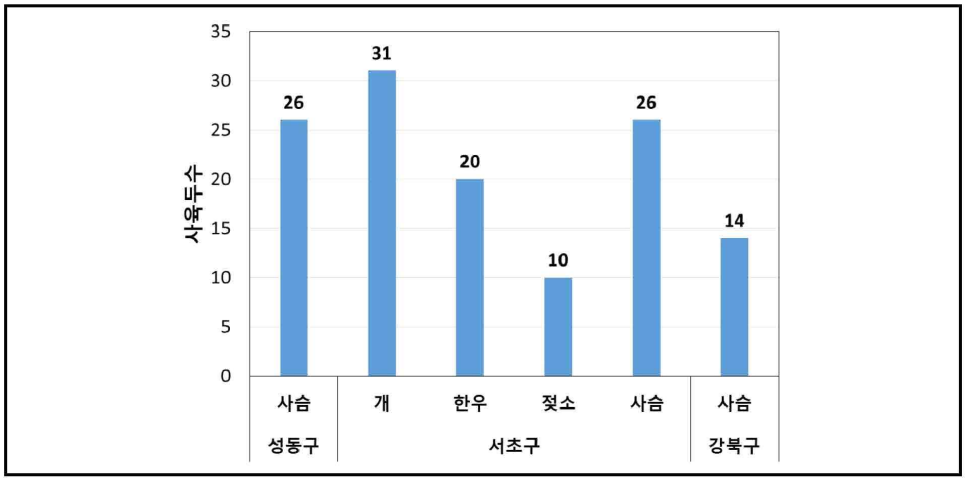

(그림 10.3.1 - 3) 서울시 자체 관리 기준 연도별 가축사육 현황

나. 환경평가 및 환경보전대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각 자치구도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도 각자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가축사육 현황을 연도별 추이를 살펴볼 때, 점차 사육두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자체 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의 규모와 현황을 조사한 바 서울시 발생 가축분뇨는 충분히 처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표 10.3.1 - 8>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 관련 규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 현황 및 관리계획

가) 환경부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 지정기준 권고안

◦ 환경부에서 권고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0.3.1 - 9> 가축사육제한구역(지역) 지정기준 권고안(환경부)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 주거밀집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td><td>○ 주거밀집지역
- 가구의 최소단위는 5~10호 기준으로 함
·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함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음(전기시설,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
·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함
- 가구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를 기준으로 설정
○ 축종별 거리제한
- 소·말 100m, 젖소 250m, 돼지·개·닭·오리 500m
※ 이격 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고 지자체의 지정학적 입지, 환경적요소, 경제적요소, 배출시설 규모 등에 따라 확대·축소 조정 가능</td></tr>
<tr><td>□ 가축분뇨법에 규정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td><td>○ 상수원 보호구역(수도법 제7조)
○ 특별대책지역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 상수원보호구역(취수시설 포함)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유하거리를 정하여 제한할 수 있음</td></tr>
<tr><td>□ 타 법률상 지역·지구 등의 선택적 적용</td><td>○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적, 경제적인 특성에 따라 지역주민 생활환경보전 또는 수질보전을 위해 타 법률상 지역·지구 등의 선택적 적용
<table>
<tr><th>구 분</th><th>관 련 법</th><th>제 한 구 역</th></tr>
<tr><td rowspan="6">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지역</td><td>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도시지역)</td><td>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자연, 생산, 보전)내 밀집주거지역</td></tr>
<tr><td>학교보건법 제5조</td><td>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td></tr>
<tr><td>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td><td>개발제한구역</td></tr>
<tr><td>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td><td>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td></tr>
<tr><td>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td><td>다중이용업소</td></tr>
<tr><td>자연공원법 제4조, 제23조</td><td>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td></tr>
</table></td></tr>
</table>

<표 계속>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환경부)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 타 법률상 지역·지구 등의 선택적 적용</td><td>
<table>
<tr><th>구 분</th><th>관 련 법</th><th>제 한 구 역</th></tr>
<tr><td rowspan="3">수질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td><td>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한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td><td>수변지역</td></tr>
<tr><td>지하수법 제 12조</td><td>지하수보전구역</td></tr>
<tr><td>습지보전법 제13조</td><td>습지보호구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td></tr>
<tr><td>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td><td>「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제2조관련)</td><td>환경기준</td></tr>
</table>
</td></tr>
<tr><td>□ 제한구역내 예외적 가축사육 허용범위</td><td>○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아래의 가축사육
- 소, 젖소, 말, 돼지, 개 : 5두 이하
- 닭, 오리 : 20수 이하
○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또는 지역
※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확대·축소 조정 가능</td></tr>
</table>

자료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 2011.10.14., 환경부

나)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

◦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등으로부터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지자체의 조례지정 현황 및 악취확산예측 결과를 토대로 제한거리 기준 마련하는 것을 추진 배경으로 하고 있다.

◦ 거주민 및 축종별 규모, 수질관리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설정하였으며, 악취로 인근 주민에 영향을 미치는 축사는 거리제한을 두었다.

◦ 악취확산식을 이용한 사육제한거리의 제안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0.3.1 - 10> 과학적인 제한거리 설정(환경부-농림부 합동 용역결과)

구 분	현 환경부 권고안	용역 결과			
		설문조사 (중간값)	지자체 조례 현황(중간값)	악취확산예측 분석결과	
한·육우	100m	20~1,000m (250m)	60~500m (200m)	400마리 미만	50m
				400마리 이상	70m
젖소	250m	50~3,000m (1,000m)	100~1,000m (250m)	400마리 미만	75m
				400마리 이상	110m
돼지	500m	50~3,000m (1,000m)	50~2,000m (500m)	1,000마리 미만	400m
				1,000~3,000 마리	700m
				3,000마리 이상	1,000m
닭·오리	500m	50~2,000m (600m)	200~2,000m (500m)	20,000마리 미만	250m
				20,000~50,000마리	450m
				50,000마리 이상	650m

자료 :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 2015.03.30., 환경부

다) 서울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 가축분뇨법 제8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밀집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생활환경이나 수질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각 자치구는 이 법률에 근거해 별도의 조례를 두고 있다.

◦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가축사육 제한 기준은 공통적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있지만, 세부 지정 범위, 제한 방식, 예외 허용 기준 등에서 각 구별로 차이가 있다.

◦ 공통적으로 모든 자치구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생활환경보전·수질보전 목적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제한구역의 범위(전 지역 vs. 일부 지역), 거리 등 세부 지정 기준, 예외 허용 및 허가제 운영 방식, 기존 농가에 대한 특례 등에서 구별로 차이가 있다.

◦ 일부 자치구(예: 종로구, 마포구, 관악구 등)는 관할 전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실상 모든 가축사육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한대상은 「가축분뇨법」 제2조에 규정된 모든 가축(단, 애완 및 방범용 일부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 관악구, 노원구, 도봉구 등도 주거환경 보호, 시민 보건향상, 수질보전 등을 이유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하고 있으며, 일부 구는 주거밀집지역, 학교·병원·공공시설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만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 또한 거리를 기준으로 도로, 하천, 주요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예: 100m, 200m 등) 이내를 제한구역으로 정하는 구도 있다.

◦ 제한 대상 가축의 범위는 대부분 「가축분뇨법」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 말, 염소, 개, 사슴 등)을 모두 포함하나, 일부 구는 애완동물, 실험·연구 목적 동물, 공공 목적의 사육 등은 예외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예외 허용(허가제) :

- 연구·교육·공공 목적, 기존 농가의 존치 등 특정 조건에서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사육이 가능
- 제한구역 내에서 불가피하게 가축을 사육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기준도 구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 일부 구는 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존재하던 기존 축사에 대해 일정 기간 존치 또는 이전 유예, 보상 규정을 두고 있음
- 상위법령의 개정, 지역 실정, 민원 발생 등에 따라 조례 내용이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 제한 기준(예: 거리, 제한대상 가축, 예외 허용 범위 등)은 각 구의 조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음

◦ 실제로 서울시 내 상업적 축산농가는 극소수이며,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신규 가축사육시설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2)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현황

가) 각 처리시설별 현황

◦ 서울시는 상업적 축산농가가 극소수(2024년 기준 소·사슴 등)여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매우 적은 편이고, 실제로 환경부 공식 통계에서도 서울시의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량은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 가축분뇨는 서울시 공공분뇨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겠으나, 현재 가축사육시설 대부분 퇴비화, 폐기, 정화 등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 한편, 최근 10년간 서울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태풍 또는 집중호우, 지진, 폭설 등으로 영향을 받은 내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0.3.1 - 11> 서울시 자치구별 가축분뇨 처리시설현황(2024년 기준)

자치구	소재지	시설명	축종	사육두수	시설규모(㎡)	처리시설규모(톤/일)	분뇨처리방법
성동구	성수동1가 685-20	서울숲공원	사슴	26	2,770	0.0162	퇴비

<표 계속> 서울시 자치구별 가축분뇨 처리시설현황(2024년 기준)

자치구	소재지	시설명	축종	사육두수	시설규모(㎡)	처리시설규모(톤/일)	분뇨처리방법
서초구	방배동 산184	경찰특공대	개	31	1,009	10	정화
	내곡동 228-1	서초목장	젖소	10	574	0.0834	위탁
	우면동 192	세한사슴	사슴	23	396	0.0168	퇴비
	원지동 225-2	새원사슴	사슴	3	330	0.0018	퇴비
강북구	번동 90	북서울꿈의숲	사슴	14	2,511	0.0084	퇴비

자료 : 서울특별시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2025.09., 서울특별시

나) 공공처리시설 현황

◦ 서울시 내 분뇨처리가 가능한 공공처리시설로는 4개의 물재생센터(중랑, 난지, 서남, 탄천) 중 분뇨처리 기능이 없는 탄천물재생센터를 제외한 3개 센터가 있으며, 탄천물재생센터는 과거 상수원 보호 문제와 지역 정서, 그리고 인근 초등학교(200m 이내) 등 교육환경보호법상 법적 제한으로 인해 분뇨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았다.

◦ 3개 센터는 가축뿐만 아니라 전체 분뇨를 자치구별로 집결 및 처리하는 시설로, 중랑물재생센터는 서울 동북부 9개 자치구 전역과 종로구, 의정부시 일부 지역을 담당하며 처리용량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난지물재생센터는 서울 서북부 4개 자치구 전력과 일부 지역(종로구, 중구, 성동구, 고양시)를 담당하고 있으며, 서남물재생센터는 서울 서남부 9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0.3.1 - 12> 서울시 공공처리시설 현황(2024년 기준)

시설명	처리용량 (분뇨, ㎘/일)	처리량(2024년 기준) (분뇨 및 정화조, ㎘/일)	이용 자치구
중랑물재생센터	4,000	4,528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종로구(일부), 의정부시(일부)
난지물재생센터	4,500	3,292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종로구(일부), 중구(일부), 성동구(일부), 고양시(일부)
서남물재생센터	4,000	4,000	용산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자료 : 서울특별시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2025.09., 서울특별시

10.3.2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가. 현황조사

1) 조사항목

◦ 서울시 가축사육 현황

◦ 서울시 가축분뇨 발생 현황

◦ 서울시 가축분뇨 처리 현황

2) 조사범위

◦ 계획지구

3) 조사방법

◦ 문헌조사

4) 조사결과

가) 가축사육 두수 현황

(1) 축산법 기준

◦ 돼지, 닭, 오리 등 기타 가축에 대해서는 공식 등록된 사육두수가 없거나 극소수(0~10두 미만, 실질적 사육농가 없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서울시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육우, 젖소, 한우)는 2023년 말 대비 2024년 사이 사육두수가 40%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는 도시화, 농가 고령화, 축산업 구조조정 영향으로 판단된다.

<표 10.3.2 - 1> 연도별 가축사육 현황

구 분	사육 두수				시설 수 (개소)
	육우	젖소	한우	합 계	
2021년	3	13	58	74	2
2022년	2	12	40	54	2
2023년	3	7	20	30	2
2024년	1	9	8	18	2

자료 : 서울특별시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2025.09., 서울특별시

(2) 서울시 자체 관리 기준

◦ 2024년 기준 총 7개의 축사 중, 허가대상에 해당되는 경북농장 1개소는 패쇄되어 최종 6개소의 신고시설을 운영 중이며, 가축 종은 젖소, 사슴, 개로 조사되었다.

◦ 자치구별로 성동구 1개소, 서초구 4개소, 강북구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폐쇄시설(서초구 경북농장 1개소)을 제외하고 서초구에 4개의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성동구에 서울숲공원 내 관상용 사슴 사육시설 1개소, 서초구에서는 경찰특공대에서 업무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고 있으며, 젖소 사육시설 1개소, 사슴 사육시설 2개소를 운영 중이며, 강북구의 북서울꿈의숲 내에도 관상용 사슴 사육시설 1개소를 운영 중으로 조사되었다.

<표 10.3.2 - 2> 서울시 자치구별 가축사육 현황(2024년 기준)

자치구	소재지	시설명	축종	사육두수	시설규모(㎡)	분뇨처리방법	비고
성동구	성수동1가 685-20	서울숲공원	사슴	26	2,770	퇴비	
서초구	방배동 산184	경찰특공대	개	31	1,009	정화	
	원지동 산 72	경북농장	한우	20	1,564	위탁	폐쇄
	내곡동 228-1	서초목장	젖소	10	574	위탁	
	우면동 192	세한사슴	사슴	23	396	퇴비	
	원지동 225-2	새원사슴	사슴	3	330	퇴비	
강북구	번동 90	북서울꿈의숲	사슴	14	2,511	퇴비	

자료 : 서울특별시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2025.09., 서울특별시

(3) 서울통계연보 기준

◦ 서울시의 최신인 2023년 기준 통계연보에 의하면 가축분뇨 관리가 필요한 축종으로 한우, 육우, 젖소 등이 있으며, 꿀벌을 제외하고 2023년 기준 총 31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0.3.2 - 3> 서울통계연보 가축사육 현황(2023년 기준)

구 분	한육우		젖소		꿀벌	
	사육농장	마리수	사육농장	마리수	사육가구	군수
2021년	2	70	1	15	32	2,735
2022년	2	42	1	12	23	2,360
2023년	2	23	1	9	22	1,155

자료 : 제64회 서울통계연보(2023년 기준), 2025, 서울특별시

나) 가축분뇨 발생 현황

◦ 가축사육두수 및 축종이 가장 많이 집계된 통계인 “서울시 자체 관리 기준” 통계를 사용하여 산정하였으며, 가축분뇨 발생원단위는 환경부 공고 제2002-444호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표 10.3.2 - 4>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축종(단위)	발생원단위			
	분	뇨	세정수	합계
한우(㎏/두·일)	7.98	4.87	-	12.85
젖소(㎏/두·일)	17.09	10.72	-	27.81
돼지(㎏/두·일)	0.83	3.70	0.20	4.73
산란계(g/수·일)	-	-	-	99.05
육계(g/수·일)	-	-	-	96.95
오리(g/수·일)	-	-	-	191.04
말(㎏/두·일)	6.80	4.30	-	11.10
염소(㎏/두·일)	0.33	0.36	-	0.69
양·사슴(㎏/두·일)	0.20	0.40	-	0.60
개(㎏/두·일)	0.30	1.80	-	2.10

자료 : 환경부 공고 제2022-444호

◦ 가축사육두수에 가축분뇨 발생량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2024년 기준 발생량이 382.8㎏/일(139.7톤/년)로 확인되었다.

<표 10.3.2 - 5> 가축분뇨 발생량(2024년 기준)

자치구	축종	사육두수	발생원단위	단위	발생량(㎏/일)
성동구	사슴	26	0.60	㎏/두·일	15.6
서초구	개	31	2.10	㎏/두·일	65.1
	젖소	10	27.81	㎏/두·일	278.1
	사슴	26	0.60	㎏/두·일	15.6
강북구	사슴	14	0.60	㎏/두·일	8.4
서울시 합계		-	-	-	382.8
서울시 합계(연간 발생량)		-	-	-	139.7톤/년

다) 가축분뇨 처리 현황

(1) 각 처리시설별 현황

◦ 서울시는 상업적 축산농가가 극소수(2024년 기준 소·사슴 등)여서 가축분뇨 발생량이 매우 적은 편이고, 실제로 환경부 공식 통계에서도 서울시의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량은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 가축분뇨는 서울시 공공분뇨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겠으나, 현재 가축사육시설 대부분 퇴비화, 폐기, 정화 등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 한편, 최근 10년간 서울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태풍 또는 집중호우, 지진, 폭설 등으로 영향을 받은 내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0.3.2 - 6> 서울시 자치구별 가축분뇨 처리시설현황(2024년 기준)

자치구	소재지	시설명	축종	사육두수	시설규모(㎡)	처리시설규모(톤/일)	분뇨처리방법
성동구	성수동1가 685-20	서울숲공원	사슴	26	2,770	0.0162	퇴비
서초구	방배동 산184	경찰특공대	개	31	1,009	10	정화
	내곡동 228-1	서초목장	젖소	10	574	0.0834	위탁
	우면동 192	세한사슴	사슴	23	396	0.0168	퇴비
	원지동 225-2	새원사슴	사슴	3	330	0.0018	퇴비
강북구	번동 90	북서울꿈의숲	사슴	14	2,511	0.0084	퇴비
합 계				107	-	10.1266	-

자료 : 서울특별시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2025.09., 서울특별시

(2) 공공처리시설 현황

◦ 서울시 내 분뇨처리가 가능한 공공처리시설로는 4개의 물재생센터(중랑, 난지, 서남, 탄천) 중 분뇨처리 기능이 없는 탄천물재생센터를 제외한 3개 센터가 있으며, 탄천물재생센터는 과거 상수원 보호 문제와 지역 정서, 그리고 인근 초등학교(200m 이내) 등 교육환경보호법상 법적 제한으로 인해 분뇨처리장이 설치되지 않았다.

◦ 3개 센터는 가축뿐만 아니라 전체 분뇨를 자치구별로 집결 및 처리하는 시설로, 중랑물재생센터는 서울 동북부 9개 자치구 전역과 종로구, 의정부시 일부 지역을 담당하며 처리용량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난지물재생센터는 서울 서북부 4개 자치구 전력과 일부 지역(종로구, 중구, 성동구, 고양시)를 담당하고 있으며, 서남물재생센터는 서울 서남부 9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0.3.2 - 7> 서울시 공공처리시설 현황(2024년 기준)

시설명	처리용량 (분뇨, ㎘/일)	처리량(2024년 기준) (분뇨 및 정화조, ㎘/일)	이용 자치구
중랑물재생센터	4,000	4,528	중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종로구(일부), 의정부시(일부)
난지물재생센터	4,500	3,292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종로구(일부), 중구(일부), 성동구(일부), 고양시(일부)
서남물재생센터	4,000	4,000	용산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자료 : 서울특별시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2025.09., 서울특별시

(3) 가축분뇨 수거·운반 현황

◦ 계획지구인 서울시에 위치한 가축분뇨 수집 및 운반이 가능한 업체는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곳으로 3개소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0.3.2 - 8> 서울시 가축분뇨 수집 및 운반 업체 현황

사업장명	소재지	인허가일자
(주)성신환경	은평구 응암동 109-3	2002-03-13
한도정화(주)	은평구 증산서길 95	2011-03-16
은평산업(주)	은평구 역촌동 63-24	2011-03-16

자료 : 서울특별시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2025.09., 서울특별시

<표 10.3.2 - 9>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구 분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가. 사무실 나.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용량 합계 3,600리터 이상) 다. 차고(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 2명 이상

자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3]

(4) 서울시 가축분뇨 자원화 비용 현황

◦ 기본적으로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방법(퇴비화, 액비화, 바이오가스화) 중 서울시는 퇴비화 방식으로 대다수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0.3.2 - 10> 가축종별 연간 분뇨발생량

구 분	사육두수(두)	연간 분뇨발생량(㎏)	주요 처리방식
젖소	10	101,507	위탁 처리
사슴	66(성동+강북)	8,760	퇴비 처리
개	31	23,762	자가정화 처리

자료 : 서울특별시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2025.09., 서울특별시

◦ 현재 기준 서울시 가축분뇨 발생량은 앞서 <10.3.2 -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성동구 5,694㎏, 강북구 3,066㎏ 등 총 8,760㎏/년으로 조사되었다.

◦ 처리 방식별로 향후 10년간 예상 처리소요비용 및 효율을 검토하기 위해 기간을 3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단계는 1단계(2026년~2029년), 2단계(2029년~2031년), 3단계(2032년~2035년)로 구분하였다.

◦ 처리단가 기준은 2024년 환경부 및 농촌진흥청 게시 예산지침 및 현장사례 기준의 평균값으로 산정하였다.

◦ 개는 31두의 연간 분뇨발생량이 23,762㎏지만, 자가 정화하고 있으므로 비용 없음으로 정리되었다.

◦ 젖소의 경우 다수 지자체의 2024~2025년 가축분뇨 위탁처리 단가계약 공고에서 톤당 3만~5만원(㎏당 30~50원) 수준이 일반적이며, 사슴 등 초식가축 분뇨 퇴비화 처리비용은 2023년~2024년 기준 ㎏당 100~170원(톤당 10만~17만원) 수준으로 산정되었다.

<표 10.3.2 - 11> 계획의 단계별 처리소요비용 예측(원)

구 분	1단계 (2026년~2029년)	2단계 (2030년~2032년)	3단계 (2032년~2035년)	합 계 (원)
젖 소	16,241,120	12,180,840	16,241,120	44,663,080
사 슴	4,730,400	3,547,800	4,730,400	13,008,600
개	-	-	-	-
합 계	20,971,520	15,728,640	20,971,520	57,671,680

자료 : 서울특별시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2025.09., 서울특별시

나. 환경평가

1) 평가항목

◦ 가축사육 두수 전망

◦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

2) 평가방법

◦ 수학적 추정방법 및 원단위를 이용한 발생량 예측

3) 평가결과

가) 가축사육 두수 전망

◦ 서울시 가축은 소, 사슴, 개 세 개 종으로, 각각의 가축별 장래 사육두수 예측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농·축산업전망 자료를 활용하였다.

◦ 매년 발간되는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에서 축종별, 단위연도별(5년, 10년) 변화율을 활용하여 가축사육두수를 예측하여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24년 기준 10두에 국가 단위 연평균 변화율(+0.3%)을 적용하여 10년 변화를 예측한 결과, 미미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도시화로 인한 축산업 쇠퇴가 지속되어 10년간 0.3두로 증가(10→10.30)폭이 미미하며 현재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text{예측 두수} = 10 \times (1 + 0.003)^{(\text{연도} - 2025)}$$
$$\text{(예. 2026년 : } 10 \times (1.003)^{1} = 10.03\text{)}$$

◦ 사슴의 경우, 서울숲, 북서울꿈의숲 등 서울시 공원에서 기르고 있는 사슴들은 주로 꽃사슴(자라미, 얼룩사슴 등)과 노루, 그리고 일부 외래종(예: Muntjac, 사향노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 사슴들은 자연 상태가 아닌 공원 또는 방사장에서 꾸준한 관리와 보호를 받으며 사육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사육 환경(동물원, 공원 등)에서 사슴의 기대수명은 15~20년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자료에 따르면, 건강 상태가 좋고 환경 관리를 잘 받을 경우 20년 이상 사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서울숲과 북서울꿈의숲의 사슴들은 전문 인력의 건강 관리, 충분한 먹이 공급, 외부 위험요소 차단 등 최적의 사육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이들 사슴은 15~20년 이상 생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개체는 20년을 넘길 수도 있고, 구체적 개체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현재 어린 개체라면 앞으로 10~15년 이상, 성체라면 5~10년 이상 생존이 기대된다.

◦ 개의 경우, 작업견(경찰견)은 일반 반려견보다 활동량과 스트레스가 높아 수명이 10~20% 단축될 수 있으므로, 2024년 기준으로 보유한 31마리의 개 두수에 연간 10% 자연감소율을 적용하여 예측하였다.

$$\text{개체수}n = 31 \times (0.9)n$$
$$(n = \text{2026년부터의 경과 연수, 즉 2026년은 } n=1,\ 2035\text{년은 } n=10)$$

◦ 경찰견 주력 품종

- 벨지안 말리노아 : 평균 12년
- 저먼 셰퍼드 : 평균 11.3년

◦ 단, 정책 변화(가축사육 제한 강화)가 발생할 경우 변동 가능성은 있다.

◦ 개의 경우는 수명을 기준으로 예측하였으나, 경찰특공대는 일반적으로 필요 인원을 맞추기 위해 매년 신규견을 도입하므로, 실제 운영 개체수는 이보다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특수목적을 감안하여 현재 두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표 10.3.2 - 12> 서울시 연도별 가축 사육두수 전망 결과(2026년~20235년)

년도	소	사슴	개	
			감소	유지
현재	10	66	31.0	31
2026	10.03	66	27.9	31
2027	10.06	66	25.1	31
2028	10.09	66	22.6	31
2029	10.12	66	20.3	31
2030	10.15	66	18.3	31
2031	10.18	66	16.5	31
2032	10.21	66	14.8	31
2033	10.24	66	13.3	31
2034	10.27	66	12.0	31
2035	10.30	66	10.8	31

자료 : 서울특별시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2025.09., 서울특별시

나) 가축분뇨 발생량 전망

(1)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및 예측량

◦ 가축분뇨 발생 전망은 축종별 사육두수에 앞서 <표 10.3.2 - 4>의 가축분뇨 발생원단위(환경부 공고 제2022-444호)를 곱해서 산정하였으며, 축종별 가축 사육두수 전망결과를 바탕으로 발생원단위를 적용하여 가축분뇨 발생량을 산정하였다.

◦ 성동구는 사슴 두수가 현재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분뇨 발생량은 하루 15.6㎏/일, 매년 5,694㎏/년 발생이 예상된다.

<표 10.3.2 - 13>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및 예측량

(단위 : ㎏/일)

년도	성동구	서초구				강북구
	사슴	젖소	개	사슴	서초구 합계	사슴
현재	15.6	278.1	65.1	15.6	358.8	8.4
2026	15.6	278.9	65.1	15.6	359.6	8.4
2027	15.6	279.8	65.1	15.6	360.5	8.4
2028	15.6	280.6	65.1	15.6	361.3	8.4
2029	15.6	281.4	65.1	15.6	362.1	8.4
2030	15.6	282.3	65.1	15.6	363.0	8.4
2031	15.6	283.1	65.1	15.6	363.8	8.4
2032	15.6	283.9	65.1	15.6	364.6	8.4
2033	15.6	284.8	65.1	15.6	365.5	8.4
2034	15.6	285.6	65.1	15.6	366.3	8.4
2035	15.6	286.4	65.1	15.6	367.1	8.4

자료 : 서울특별시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2025.09., 서울특별시

(2) 연도별 가축분뇨 발생량 및 예측량

◦ 서초구는 젖소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2026년 101,811㎏/년을 시작으로 소폭 증가하여 2035년에 104,552㎏/년으로 발생량 다소 증가, 개의 두수 유지로 23,762㎏/년, 사슴의 두수 유지로 5,694㎏/년 발생하여 총 131,267㎏/년에서 134,007㎏/년으로 다소 증가가 예상된다.

◦ 강북구는 사슴 두수 유지로 매년 3,066㎏/년 발생이 예상된다.

<표 10.3.2 - 14> 연도별 총 가축분뇨 발생량 및 예측량

(단위 : ㎏/년)

년도	성동구	서초구				강북구
	사슴	젖소	개	사슴	서초구 합계	사슴
현재	5,694	101,507	23,762	5,694	130,962	3,066
2026	5,694	101,811	23,762	5,694	131,267	3,066
2027	5,694	102,116	23,762	5,694	131,571	3,066
2028	5,694	102,420	23,762	5,694	131,876	3,066
2029	5,694	102,725	23,762	5,694	132,180	3,066
2030	5,694	103,029	23,762	5,694	132,485	3,066

<표 계속> 연도별 총 가축분뇨 발생량 및 예측량

(단위 : ㎏/년)

년도	성동구	서초구				강북구
	사슴	젖소	개	사슴	서초구 합계	사슴
2031	5,694	103,334	23,762	5,694	132,789	3,066
2032	5,694	103,638	23,762	5,694	133,094	3,066
2033	5,694	103,943	23,762	5,694	133,398	3,066
2034	5,694	104,247	23,762	5,694	133,703	3,066
2035	5,694	104,552	23,762	5,694	134,007	3,066

자료 : 서울특별시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2025.09., 서울특별시

(3) 공공처리시설 활용 시 고려사항 검토

◦ 서울시 가축분뇨 처리를 공공시설을 활용하게 된다면, 중랑물재생센터로 강북구 사슴 14두와 관련한 처리가 가능하다.

◦ 서초구 사슴 26두와 젖소 10두는 탄천물재생센터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으나, 탄천물재생센터는 분뇨처리 기능이 없어 중랑, 난지, 서남센터 등 다른 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해야 한다.

◦ 따라서 서울시 공공처리시설로의 가축분뇨 처리를 유도할 경우, 운반 및 처리 비용이 다량 발생할 수 있으며, 소규모 분뇨(젖소 10두, 사슴 66두 등)는 운반·처리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 기존 위탁·퇴비화 대비 단위 처리비용이 증가할 가능성 있다.

(가) 공공처리시설로의 운반 및 처리 비용

◦ 분뇨 운반비 : 서울시 기준, 분뇨 운반비는 10ℓ당 220원(2025년 영등포구 기준), 0.75㎥(750ℓ) 기준 23,800원, 초과 100ℓ당 2,240원 등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실제 운반비는 거리, 운반량, 업체 계약조건에 따라 추가 변동될 수 있다.

◦ 분뇨 처리비(물재생센터 반입비)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2025년 기준)는 중랑 1,032천원/㎥, 난지 928천원/㎥, 서남 1,018천원/㎥ 등으로 구역별 차이가 있음. 실제 농가·시설의 분뇨 반입 시에는 수집·운반비와 처리비가 합산되어 부과된다.

(나) 탄천물재생센터 처리시설 미보유에 따른 추가비용

◦ 운반거리 증가: 서초구 등 탄천센터 인근 지역은 분뇨를 중랑, 난지, 서남센터까지 장거리 운반해야 하므로, 운반비가 추가로 발생함. 운반거리 10km 이상 증가 시, 운반비가 10~30% 이상 추가될 수 있다.

◦ 시간·노동력 증가 : 운반시간 증가로 인한 인건비, 차량 운영비 등도 추가 부담 요인이 된다.

◦ 퇴비화에 비해 농경지 환원 등 자원순환 효과가 낮고, 현재 서울시가 퇴비화 하고 있는 분뇨량이 소량이긴 하지만, 이마저도 공공시설처리로 인해 자원순환성이 약화될 수 있다.

◦ 물재생센터까지의 운반 거리, 물류비 부담이 발생하며, 처리시설 용량 및 반입 기준에 따라 수용이 제한될 수 있음에 따라 시설 접근성이 비효율적이다.

<표 10.3.2 - 15> 기존 처리방식과 공공처리시설 활용 처리방식 비교

항목	기존 처리(위탁·퇴비화)	물재생센터(공공처리시설) 처리
비용	젖소 위탁처리: ㎏당 30~50원 사슴 퇴비화: ㎏당 100~170원	반입비(㎥당 90~100만원대) +운반비(10ℓ당 220원 등)
운반비	농가 인근 처리로 저렴	장거리 운반 시 추가비용 발생
자원순환성	퇴비·액비로 농경지 환원, 자원화	자원순환성 낮음, 대부분 하수처리 후 방류
환경성	악취·침출수 등 2차 오염 우려	고도처리로 환경오염 저감, 악취 저감
민원	악취·살포지 부족 등 민원 가능성	대규모 시설로 민원 저감 효과
정책 연계	자원화율 제고 정책과 연계	에너지화 등 신기술 연계 가능

다. 환경보전대책

1) 가축분뇨 처리계획 방향

◦ 서울시 내에서 가축분뇨를 처리 및 관리하는 유형은 개별 자체처리(정화, 퇴비, 액비 등), 위탁처리(단독, 연계 등)로 구분하며, 처리 방법은 시설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선택하도록 한다.

◦ 서울시의 도시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가축분뇨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토양 및 수질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 축종 및 축산농가, 규모별 장래 사육두수, 가축분뇨 예상 발생량, 축산계 수질오염총량 및 비점오염원 배출현황 등을 기반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적정 처리 목표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가축분뇨 보관 및 처리 원칙

◦ 저장 기간 : 1년 이내 보관 후 주기적 처리 악취 발생 최소화

◦ 분뇨 분리 : 고액분리기 또는 자연 침전을 통해 고형분(분)과 액상분(뇨) 분리

◦ 규모 적합성 : 소량 특성상 고가 시설 대신 저비용·저기술 방식 채택

◦ 소규모 축산시설의 분뇨 처리는 저장 공간 최소화와 자원화 효율성을 중심으로 설계

◦ 서울시 소규모 시설은 자연 부숙에 의한 퇴비화가 최적이며, 기술인력·고가 장비 없이도 운영 가능하며, 다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주기적 점검(연 2회)으로 악취·유출 사전 차단이 필수적이다.

나) 축종별 분뇨관리 방법

(1) 사슴 분뇨

◦ 보관 : 사육장 인접 폐쇄형 저장조 설치하고 악취 차단을 위해 덮개 및 생균제(EM) 투입

◦ 처리 :

- 퇴비화: 고형분은 퇴비사에서 1년간 부숙 후 퇴비 생산
- 액비화: 액상분은 액비저장조(4개월 이상 저장)에서 발효 후 액비 활용
- 폐기: 미활용 분뇨는 위탁 처리업체 연간 1회 반출

(2) 젖소 분뇨

◦ 고액분리 : 스크레이퍼로 고형분 분리 후 퇴비화.

◦ 저장 공간 :

- 고형분: 퇴비사 (1.5m 높이 이하 적재, 자연송풍 적용)
- 액상분: 폐쇄형 액비저장조(부피 ≈ 40m³)

◦ 처리 :

- 퇴비는 서울시 공원 녹지 등에 활용 가능
- 액비는 주변 농경지(유기농)에 살포(환경부 기준 준수)

(3) 개 분뇨

◦ 고형분 위주 : 개 분뇨는 고형분 비율이 높아 직접 퇴비화 적합

◦ 처리 :

- 소형 퇴비통 설치 : 발효촉진제(톱밥+미생물) 혼합 후 3개월 부숙
- 폐기 대안 : 퇴비화 어려울 시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위탁 처리 가능

(4) 분뇨 관리 공통사항

◦ 저장 주기 : 분뇨 6개월마다 교반으로 부패 가속화

◦ 기간별 시행사항

- 1~3개월 : 분뇨 분리 후 저장조 적재
- 4~6개월 : 고형분 퇴비화, 액상분 액비화 진행
- 7~12개월 : 미활용 분뇨 위탁 처리 및 퇴비/액비 활용

◦ 악취 관리 :

- 저장조 주변 생균제 분무(주 1회)
- 강우 시 유출수 차단벽 설치

◦ 법적 기준 :

- 「가축분뇨법」에 따라 퇴비는 1~2개월, 액비는 4개월 이상 저장
- 위탁 처리 시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 활용(기술인력 1명 이상 필수)

2) 가축분뇨 처리방안

가) 가축분뇨 효율적 자원화

(1) 서울시 관내 퇴비화 100% 소화

◦ 서울시는 현재 사슴에 대한 분뇨를 부숙 후 퇴비화 하고 있으며, 젖소 분뇨는 위탁 처리중이나, 전량 퇴비화 가능한 상황이다.

◦ 위탁처리는 전문 처리장에서 대량·연속 안정 수거가 가능하나, 처리비용이 소요되는 점이 있다.

◦ 젖소 분뇨는 유기물과 각종 영양분이 풍부해 농경지 비료로 활용하면 토양개량과 양분공급 효과가 있다.

◦ 퇴비화는 호기성 미생물 작용을 통해 분뇨를 부숙·소멸시키고, 수분과 염분 함량 등 관리 기준을 맞추면 친환경 비료로 자원화할 수 있다.

◦ 젖소 분뇨 퇴비화의 시설투자비(마리당 약 400~500천 원) 및 운영비(연간 170여 천 원)는 위탁처리와 대체로 비슷하거나 운영력이 우위일 수 있다.

(2) 퇴비화 과정 중 환경영향(악취) 관리

◦ 퇴비화는 온실가스 저감·에너지 절감 효과와 함께 부가가치(자원 순환)가 있으나, 퇴비 과잉 및 악취·수질오염 유발 가능성이 있어 관리가 필수적이다.

◦ 일반적으로 소량 분뇨 관리 특화 방안으로 톱밥, 왕겨 등 활용으로 부피를 50% 감축하는 등 수분조절을 하거나, 호기성 발효로 병원균을 완전히 제거하여 부숙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거나, 발효촉진제, 탈취제 적극 활용하여 악취를 제어하는 등 충분한 처리 및 관리가 가능하다.

나) 단계별 가축분뇨시설 감소 유도

(1) 서울시 가축 개체수 단계적 감소 계획

(가) 공공 사슴사육 시설의 개체수 감소

① 서울숲 사슴

◦ 서울숲은 2005년 6월 개장과 함께 다양한 사슴류를 방사하며 생태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하였다.

◦ 개장 초기에는 꽃사슴 21마리, 고라니 10마리, 다마사슴 5마리 등 총 36마리의 사슴류가 방사되었다.

◦ 개장 직후 추가 방사로 꽃사슴 19마리, 다마사슴 3마리가 추가로 방사되어, 개장 초기 총 사슴류는 약 58마리로 추정되었다.

◦ 그러나 2006년 이후 사슴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수사슴 5마리와 암사슴 40마리 등 총 45마리를 외부로 매각하는 조치가 이루어졌고, 2024년 기준 서울숲 사슴 두수는 26마리로 확인되었다.

◦ 따라서 현재 기준 감소세를 반영하면 2035년까지 자연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0.3.2 - 16> 서울숲의 연도별 사슴 마리수 변화

시기	주요 내용	사슴 마리수
2005년 6월	개장 및 첫 방사	36~58마리
2005년 하반기	출산 등으로 개체수 증가	+5마리
2006년	개체수 증가, 일부 매각	50여 마리, 45마리 매각
2024년	안정적 관리	26마리

② 북서울꿈의숲 사슴

◦ 북서울꿈의숲은 2009년 개장 이후 사슴방사장을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자연생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정확한 초기 마리수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2021년 기준 사슴 21마리(수컷 9, 암컷 7, 보육분 5)가 방사되었고, 2024년 기준으로 북서울꿈의숲 사슴방사장에는 14마리의 사슴이 서식하고 있으며, 2021년 대비 30% 감소하였다.

◦ 따라서 현재 사슴 연령을 감안하여 감소세를 고려하면 2035년까지 최대 80% 자연감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0.3.2 - 17> 북서울꿈의숲의 연도별 사슴 마리수 변화

시기	주요 내용	사슴 마리수
2009년	개장 및 첫 방사	(공식 수 미공개)
2021년	사슴방사장 운영, 가족 단위 번식	21마리(수 9, 암 7, 보육 5)
2024년	안정적 관리	14마리

◦ 꽃사슴은 사육 시 평균 수명은 15~18년, 최대 25년 이상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

◦ 서울숲과 북서울꿈의숲 사슴들이 관리환경에서 적절히 사육되었을 때, 평균연령은 약 10년 전후, 길게는 12년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

◦ 따라서 2035년까지 평균적으로 공공시설 2개소 대상 65% 가량 두수의 자연감소를 예상한다.

(나) 사설 사슴사육 시설의 개체수 감축 노력

◦ 서초구 내 사슴농장 2개소의 개체수 감소 의지 협의 후, 지속적 감축을 유도할 수 있다.

◦ 현재 기준 수익목적의 사육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수익목적 사육 의사가 있다면 감축노력에 대한 보상을 고려해야 할 수 있다.

다) 관리기본계획의 방향

◦ 서울시 가축사육 현황 및 분뇨처리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안을 검토 한 결과, 적정관리 기본계획은 서울시 가축에 대한 단계별 가축분뇨시설 감소 계획안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적으로 자연스러운 개체수 감소를 유도하도록 한다.

◦ 서울시 관내 퇴비화 100% 소화 방안의 경우, 이는 현재 퇴비화 처리 여건을 유지하되, 서울시 관내에서 되도록 퇴비화 100%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친환경 도시·자원순환 정책에 부합하지만, 농경지 수요와 유통망, 품질관리 등 현실적 한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연계정책, 기술·행정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서울시 내 농경지와 도시녹지, 공공시설 등에 퇴비 살포 수요처를 확대하거나, 농산물 인증과 연계한 유통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농가·공공·유통업체와 협업체계 구축, 행정지원 및 보조금 차등적용, 지역 단위 통합관리센터 운영 등 정책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3.3 환경용량의 지속성

10.3.3.1 악취

가. 현황조사

◦ 조사항목 :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 및 악취현황, 악취 발생원 현황 및 악취물질, 악취 민원 발생 현황
◦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 : 계획지구 및 서울특별시
- 시간적 범위 : 2024년~현재
◦ 조사방법 : 문헌조사
◦ 조사결과 : 농장별 악취 조사결과 모두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함

1) 악취관리지역 지정 현황

◦ 계획지구가 위치한 서울특별시에는 악취관리지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대기배출시설(악취) 현황

◦ 계획지구가 위치한 서울특별시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가스·먼지·매연 및 악취)이 총 2,388개소가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0.3.3.1 -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구 분	합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서울특별시	2,388	-	11	19	789	1,569

자료 : 2023 통계연보, 2024, 서울특별시

3) 악취발생시설 및 물질

◦ 가축분뇨관련 축산농업 악취발생물질을 살펴보면 대부분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등 주요 악취유발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0.3.3.1 - 2> 악취발생시설 및 물질

공장사업장 \ 물질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황화메틸	이황화메틸	암모니아	이세트알데히드	스티렌	탄화수소류	케톤알데히드류	알콜류	에스테르류	질소화합물	황화합물	저급지방산류	기타
축산농업	양돈업	●	●	◎	◎	◎									●	
	양우업	●	●	◎	◎	◎									●	
	양계업	●	●	◎	◎	●	●						◎		◎	

주) ◎(측정에서 검출된 물질),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는 물질)
자료 : 악취관리편람, 2012, 환경부

<표 10.3.3.1 - 3> 축산악취 발생원 및 특징

발생원		악취강도	악취특징
축사내	가축, 채취	약	황화수소, 암모니아, 메틸메르갑탄, 트리메틸아민, 황화이메틸
	축사바닥	중	
	사료(배합)	약	
	쓰레기	강	디메틸아민, 트리메틸아민, 젖산
	하수구	중	
분뇨처리	분뇨운반장치	중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틸메르갑탄, 트리메틸아민, 황화이메틸, 이황화이메틸
	건조	약~중	
	퇴비처리시설	약	
	오수처리시설	약	암모니아, 메틸메르갑탄, 황화수소
	분뇨, 오니처리장	중	황화수소, 암모니아
	분 건조기	강	암모니아, 디메틸아민, 젖산, 메틸메르갑탄, 트리메틸아민
	분 소각	약~강	암모니아, 디메틸아민, 메틸메르갑탄

자료 : 1. 일본, 악취방지기술 매뉴얼, 공해대책기술동우회
2.우사, 양계사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배출 특성조사 및 저감방안 연구, 2004, 환경부

4) 서울시 자치구별 사육두수 현황

◦ 2024년 기준 총 7개의 축사 중, 허가대상에 해당되는 경북농장 1개소는 폐쇄되어 최종 6개소의 신고시설을 운영 중이며, 가축 종은 젖소, 사슴, 개로 조사되었다.

◦ 자치구별로 성동구 1개소, 서초구 4개소, 강북구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폐쇄시설(서초구 경북농장 1개소)을 제외하고 서초구에 4개의 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 성동구에 서울숲공원 내 관상용 사슴 사육시설 1개소, 서초구에서는 경찰특공대에서 업무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고 있으며, 젖소 사육시설 1개소, 사슴 사육시설 2개소를 운영 중. 강북구의 북서울꿈의숲 내에도 관상용 사슴 사육시설 1개소를 운영 중이다.

<표 10.3.3.1 - 4> 서울시 자치구별 가축사육 현황(2024년 기준)

자치구	소재지	시설명	축종	사육두수	시설규모(㎡)	분뇨처리방법	비고
성동구	성수동1가 685-20	서울숲공원	사슴	26	2,770	퇴비	
서초구	방배동 산184	경찰특공대	개	31	1,009	정화	
	원지동 산 72	경북농장	한우	20	1,564	위탁	폐쇄
	내곡동 228-1	서초목장	젖소	10	574	위탁	
	우면동 192	세한사슴	사슴	23	396	퇴비	
	원지동 225-2	새원사슴	사슴	3	330	퇴비	
강북구	번동 90	북서울꿈의숲	사슴	14	2,511	퇴비	

5) 서울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 가축분뇨법 제8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밀집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생활환경이나 수질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각 자치구는 이 법률에 근거해 별도의 조례를 두고 있다.

◦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가축사육 제한 기준은 공통적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있지만, 세부 지정 범위, 제한 방식, 예외 허용 기준 등에서 각 구별로 차이가 있다.

◦ 공통적으로 모든 자치구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생활환경보전·수질보전 목적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제한구역의 범위(전 지역 vs. 일부 지역), 거리 등 세부 지정 기준, 예외 허용 및 허가제 운영 방식, 기존 농가에 대한 특례 등에서 구별로 차이가 있다.

◦ 일부 자치구(예: 종로구, 마포구, 관악구 등)는 관할 전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실상 모든 가축사육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한대상은 「가축분뇨법」 제2조에 규정된 모든 가축(단, 애완 및 방범용 일부 제외)이다.

◦ 관악구, 노원구, 도봉구 등도 주거환경 보호, 시민 보건향상, 수질보전 등을 이유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하고 있다.

◦ 일부 구는 주거밀집지역, 학교·병원·공공시설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만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다.

◦ 또한 거리를 기준으로 도로, 하천, 주요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예: 100m, 200m 등) 이내를 제한구역으로 정하는 구도 있다.

◦ 제한 대상 가축의 범위는 대부분 「가축분뇨법」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 말, 염소, 개, 사슴 등)을 모두 포함하나, 일부 구는 애완동물, 실험·연구 목적 동물, 공공 목적의 사육 등은 예외로 허용하기도 함.

◦ 예외 허용(허가제): 연구·교육·공공 목적, 기존 농가의 존치 등 특정 조건에서는 구청장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사육이 가능

◦ 제한구역 내에서 불가피하게 가축을 사육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기준도 구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 일부 구는 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존재하던 기존 축사에 대해 일정 기간 존치 또는 이전 유예, 보상 규정을 두고 있다.

◦ 상위법령의 개정, 지역 실정, 민원 발생 등에 따라 조례 내용이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 제한 기준(예: 거리, 제한대상 가축, 예외 허용 범위 등)은 각 구의 조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 실제로 서울시 내 상업적 축산농가는 극소수이며,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신규 가축사육시설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6) 현재 서울시 시설별 악취 조사결과

◦ 환경오염영향조사로 악취는 세한사슴(사슴), 서초목장(젖소), 새원사슴(사슴), 서울숲공원(사슴), 북서울꿈의숲(사슴), 경찰특공대(개) 등 6개 지점에 대하여 2025년 7월에 조사를 수행하였다.

◦ 악취 분석결과, 모든 농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인 복합악취(15 이하)와 암모니아(1 mg/L 이하)를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황화수소, 메탈메르캅탄,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지정악취 3종은 모든 조사지점에서 불검출되었다.

<표 10.3.3.1 - 5> 악취 조사결과

구분	비고	복합악취 (희석배수)	암모니아 (ppm)	황화수소 (ppm)	메탈메르캅탄 (ppm)	아세트알데하이드 (ppm)
세한사슴	사슴	4	0.4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목장	젖소	3	0.1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새원사슴	사슴	3	0.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울숲공원	사슴	3	0.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북서울꿈의숲	사슴	3	0.1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경찰특공대	개	6	0.7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자료 : 서울시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2025.09, 서울특별시

(그림 6.3 - 1) 악취 조사결과(복합악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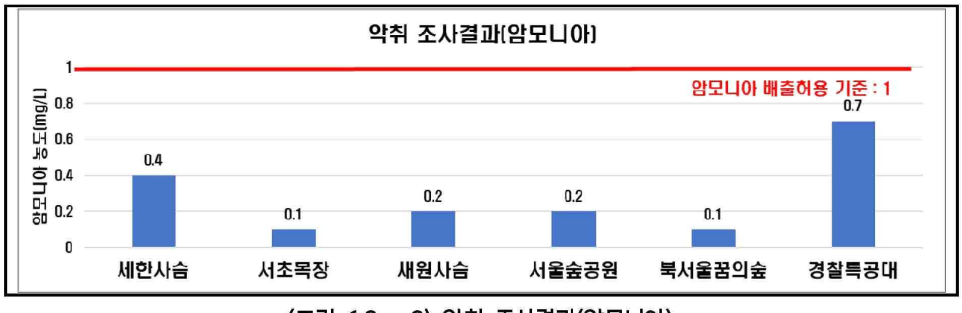

(그림 6.3 - 2) 악취 조사결과(암모니아)

7) 악취민원 발생 현황

◦ 서울특별시에 최근 가축에 대한 악취민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환경평가

◦ 예측항목 : 운영시 악취 발생량 예측
◦ 예측범위
- 공간적 범위 : 계획지구 및 서울특별시
- 시간적 범위 : 운영시
◦ 예측방법 : 원단위에 따른 가축분뇨 발생량 예측
◦ 예측결과
- 사육두수 및 가축분뇨 발생 전망 결과 현재와 동일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악취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됨

1) 가축별 장래 사육두수 예측

◦ 서울시 가축은 소, 사슴, 개 세 개 종으로, 각각의 가축별 장래 사육두수 예측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농·축산업전망 자료를 활용하였다.

◦ 매년 발간되는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에서 축종별, 단위연도별(5년, 10년) 변화율을 활용하여 가축사육두수를 예측하여 발표하고 있다.

◦ 2024년 기준 10두에 국가 단위 연평균 변화율(+0.3%)을 적용하여 10년 변화를 예측한 결과, 미미한 증가세를 보였음. 도시화로 인한 축산업 쇠퇴가 지속되어 10년간 0.3두로 증가(10→10.30)폭이 미미하며 현재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예측 두수=10×(1+0.003)(연도 - 2025)
(예. 2026년: 10×(1.003)1=10.03)

◦ 사슴의 경우, 서울숲, 북서울꿈의숲 등 서울시 공원에서 기르고 있는 사슴들은 주로 꽃사슴(자라미, 얼룩사슴 등)과 노루, 그리고 일부 외래종(예: Muntjac, 사향노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사슴들은 자연 상태가 아닌 공원 또는 방사장에서 꾸준한 관리와 보호를 받으며 사육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사육 환경(동물원, 공원 등)에서 사슴의 기대수명은 15~20년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자료에 따르면, 건강 상태가 좋고 환경 관리를 잘 받을 경우 20년 이상 사는 사례도 있으며, 서울숲과 북서울꿈의숲의 사슴들은 전문 인력의 건강 관리, 충분한 먹이 공급, 외부 위험요소 차단 등 최적의 사육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이들 사슴은 15~20년 이상 생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개체는 20년을 넘길 수도 있다. 구체적 개체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현재 어린 개체라면 앞으로 10~15년 이상, 성체라면 5~10년 이상 생존이 기대된다.

◦ 개의 경우, 작업견(경찰견)은 일반 반려견보다 활동량과 스트레스가 높아 수명이 10~20% 단축될 수 있으므로, 2024년 기준으로 보유한 31마리의 개 두수에 연간 10% 자연감소율을 적용하여 예측하였다.

개체수n=31×(0.9)n (n = 2026년부터의 경과 연수, 즉 2026년은 n=1, 2035년은 n=10)

◦ 경찰견 주력 품종: 벨지안 말리노아: 평균 12년, 저먼 셰퍼드: 평균 11.3년

◦ 정책 변화(가축사육 제한 강화)가 발생할 경우 변동 가능성 있다.

◦ 개의 경우는 수명을 기준으로 예측하였으나, 경찰특공대는 일반적으로 필요 인원을 맞추기 위해 매년 신규견을 도입하므로, 실제 운영 개체수는 이보다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특수목적을 감안하여 현재 두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표 10.3.3.1 - 6> 연도별 가축 사육두수 전망 결과(2026년~2035년)

년도	소	사슴	개	
			감소	유지
현재	10	66	31.0	31
2026	10.03	66	27.9	31
2027	10.06	66	25.1	31
2028	10.09	66	22.6	31
2029	10.12	66	20.3	31
2030	10.15	66	18.3	31
2031	10.18	66	16.5	31
2032	10.21	66	14.8	31
2033	10.24	66	13.3	31
2034	10.27	66	12.0	31
2035	10.30	66	10.8	31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전망 2025

2) 가축분뇨 발생 전망

◦ 가축분뇨 발생 전망은 축종별 사육두수에 가축분뇨 발생원단위(환경부 공고 제2022-444호)를 곱해서 산정하였다.

◦ 축종별 가축 사육두수 전망결과를 바탕으로 발생원단위를 적용하여 가축분뇨 발생량을 산정하였다.

◦ 성동구는 사슴 두수가 현재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분뇨 발생량은 하루 15.6kg/일, 매년 5,694kg/년 발생이 예상되며, 서초구는 젖소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2026년 101,811kg/년을 시작으로 소폭 증가하여 2035년에 104,552kg/년으로 발생량 다소 증가, 개의 두수 유지로 23,762kg/년, 사슴의 두수 유지로 5,694kg/년 발생하여 총 131,267kg/년에서 134,007kg/년으로 다소 증가가 예상되며, 강북구는 사슴 두수 유지로 매년 3,066kg/년 발생이 예상된다.

<표 10.3.3.1 - 7> 가축분뇨 발생원단위

(단위 : kg/일·두)

축종 (kg/두·일)	가축분뇨 발생원단위			
	분(A)	뇨(B)	세정수(C)	합계(D) (D=A+B+C)
한우	7.98	4.87	-	12.85
젖소	17.09	10.72	-	27.81
돼지	0.83	3.70	0.20	4.73
산란계	-	-	-	99.05
육계	-	-	-	96.95
오리	-	-	-	191.04
말	6.80	4.30	-	11.10
염소	0.33	0.36	-	0.69
양·사슴	0.20	0.40	-	0.60
개	0.30	1.80	-	2.10

출처 : 가축분뇨 발생원단위(환경부 공고 제2022-444호)

<표 10.3.3.1 - 8>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및 예측량

(단위 : kg/일)

년도	성동구	서초구				강북구
	사슴	젖소	개	사슴	서초구 합계	사슴
현재	15.6	278.1	65.1	15.6	358.8	8.4
2026	15.6	278.9	65.1	15.6	359.6	8.4
2027	15.6	279.8	65.1	15.6	360.5	8.4
2028	15.6	280.6	65.1	15.6	361.3	8.4
2029	15.6	281.4	65.1	15.6	362.1	8.4
2030	15.6	282.3	65.1	15.6	363.0	8.4
2031	15.6	283.1	65.1	15.6	363.8	8.4
2032	15.6	283.9	65.1	15.6	364.6	8.4
2033	15.6	284.8	65.1	15.6	365.5	8.4
2034	15.6	285.6	65.1	15.6	366.3	8.4
2035	15.6	286.4	65.1	15.6	367.1	8.4

<표 10.3.3.1 - 9> 연도별 총 가축분뇨 발생량 및 예측량

(단위 : kg/년)

년도	성동구	서초구				강북구
	사슴	젖소	개	사슴	서초구 합계	사슴
현재	5,694	101,507	23,762	5,694	130,962	3,066
2026	5,694	101,811	23,762	5,694	131,267	3,066
2027	5,694	102,116	23,762	5,694	131,571	3,066
2028	5,694	102,420	23,762	5,694	131,876	3,066
2029	5,694	102,725	23,762	5,694	132,180	3,066
2030	5,694	103,029	23,762	5,694	132,485	3,066
2031	5,694	103,334	23,762	5,694	132,789	3,066
2032	5,694	103,638	23,762	5,694	133,094	3,066
2033	5,694	103,943	23,762	5,694	133,398	3,066
2034	5,694	104,247	23,762	5,694	133,703	3,066
2035	5,694	104,552	23,762	5,694	134,007	3,066

3) 서울특별시 가축분뇨 예측결과

◦ 장래 사육두수 및 가축분뇨 발생량, 예측량은 모두 원단위를 사용하여 개의 사육두수는 감소하며, 젖소는 0.3사육두수가 증가하나 현재수준에 그칠 전망이며, 증가량이 높지않아 악취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라. 환경보전대책

1) 악취 관리 필요성

◦ 축산분뇨 발생 개별 농가에서는 '축산 냄새 저감 기본 관리 매뉴얼' 등을 참조하여 축산농가에 전파하는 등 악취저감 노력을 강구할 계획이다.

2) 단계적 가축사육 감축 추진

◦ 공공 시설은 교육 목적 유지가 강하므로 감축하더라도 일정 규모를 유지하되, 사설시설은 2035년 이후 완전 감축을 목표로 점진적 두수 감축 및 폐업 유도를 추진하도록 계획하였다.

3) 서울시 가축분뇨 관련 악취 관리 계획

◦ 최근 서울시 내 축산악취 관련 민원은 발생한 바 없으며, 가축분뇨 실태조사 결과, 악취 정도는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끼치지 않을 정도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악취는 환경적 여건에 따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 발생단계에서의 적정 사육밀도 유지: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마리당 면적 기준 준수하고 사육환경 개선으로 축사 내부 청소 강화 및 환기시설 개선하고 분뇨 적체 방지로 임시분뇨보관시설 내 분뇨 높이 80cm 이하 유지, 연 1회 이상 완전 청소할 계획이다.

가) 발생단계 악취저감 체계

(1) 바이오필터 시스템

◦ 생물학적 처리방식으로 악취물질을 미생물이 분해

◦ 복합악취 제거효율 52.7% 이상 확인

◦ 설치비용이 저렴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점

(2) 안개분무시설

◦ 미생물 제제나 탈취제를 미세하게 분무하여 악취 중화

◦ 하루 2~4회 이상 정기적 분무로 지속적 악취관리

◦ 축사 내부 및 외부 동시 설치로 복합적 효과

(3) 스크러버(세정탑) 시스템

◦ 화학적 세정을 통한 악취물질 흡수·흡착·분해

◦ 고농도 악취에 효과적이나 화학약품 사용으로 2차 오염 우려

(4) 전자선 악취제거 기술

- 저에너지 전자가속기로 악취물질의 분자구조를 분해
- 악취제거 효율 99% 달성, 화학약품 불사용으로 친환경적
- 처리용량 22CMM, 최대 300~400CMM까지 확장 가능

나) 처리단계 악취저감 체계

(1) 소규모 축산시설(젖소, 사슴)

(가) 기본 시설

- 밀폐형 축사 구조로 개선
- 자연환기에서 강제환기 시스템으로 전환
- 축사 내부 안개분무시설 설치

(나) 악취저감 장비

- 액비순환시설: 부숙된 액비와 분뇨 교체·순환으로 냄새저감
- 바이오커튼: 축사 출입구에 설치하여 악취 확산 방지
- 미생물 제제: 1일 1회 이상 축사 내외부 살포

(2) 도시형 반려동물 시설

(가) 관리 강화 방안

- 분뇨 즉시 수거 원칙
- 악취방지를 위한 밀폐형 보관용기 사용
- 소독·탈취제 정기 사용

다) 기술별 비용 및 효과

<표 10.3.3.1 - 10> 기술별 비용 및 효과

기술 구분	초기투자비	연간 운영비	처리효율	적용 권장 시설
바이오필터	500~1,000만원	100~200만원	50~70%	소규모 전체
안개분무시설	200~500만원	50~100만원	30~50%	모든 시설
스크러버	1,000~3,000만원	300~500만원	70~90%	중규모 이상
전자선 시스템	3,000~5,000만원	500~800만원	95~99%	고농도 악취
ICT 모니터링	300~800만원	100~200만원	관리효율	모든 시설

10.3.3.2 토양

가. 현황조사

◦ 조사항목 : 토양 현황농도(Cd, Cu, As, Zn, Ni 등 23개 항목)
◦ 조사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 조사방법 : - 문헌조사 : 2023년 토양측정망
- 현장조사 : 1차 2025년 6월, 2차 2025년 8월
◦ 조사결과 : 모든 항목에 대하여 토양오염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1) 문헌조사

◦ 서울시 내 토양오염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토양측정망 자료를 활용하였다.

가) 조사항목

◦ 토양측정망(2023년) : pH, Cd, Cu, As, Hg, Pb, Cr^{6+}, Zn, Ni, 불소, 유기인, PCBs, CN, 페놀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TCE, PCE, 벤조(a)피렌, 1, 2-디클로로에탄 총 23개 항목

나) 조사범위

◦ 서울시 내 토양측정망 56개 지점

<표 10.3.3.2 - 1> 서울시 내 토양측정망

구분	지점번호	지점명칭	주 소	지목	면적(㎡)
1	SA-②-198	서울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217	학교용지	25,146
2	SS-②-100	종로옥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353-1	전	5,514
3	SO-①-005	중구예장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5-6	임야	439,171
4	SA-②-203	덕수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3	학교용지	11,655
5	SO-①-004	용산이태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60	임야	3,306
6	SA-②-197	한남용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26-1	학교용지	17,731
7	SA-②-194	금호성동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2가 511	학교용지	15,427
8	SK-③-296	동이로군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93-24	대지(2지역)	73
9	SA-⑦-356	성동성수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22-27	학교용지	24,609
10	SF-②-247	뚝섬광진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410-1	하천부지	38,885

자료 : 토양지하수 종합정보시스템(http://sgis.nier.go.kr)

<표 계속> 서울시 내 토양측정망

구분	지점번호	지점명칭	주 소	지목	면적(㎡)
11	SK-②-121	광진광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145-8	대지(1지역)	87,244
12	SU-②-109	어린이대공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 18	공원	501,359
13	SU-②-356	동대문답십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2동 2-13	공원	2,472
14	SA-②-204	신현중랑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1동 482	학교용지	11,694
15	SS-③-277	중랑신내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256-2	전	3,134
16	SO-①-003	북한산매표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1	임야	3,751,657
17	ST-①-069	성북정릉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636	종교용지	3,448
18	SA-②-202	숭인성북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222-4	학교용지	11,307
19	ST-①-066	강북수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87	종교용지	3,970
20	SU-②-357	북서울꿈의숲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90	공원	609,327
21	SO-①-001	서울도봉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24	임야	2,200
22	SA-②-192	도봉도봉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429-1	학교용지	12,025
23	SK-②-122	도봉상계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110	대지(1지역)	27,192
24	SF-⑥-348	노원공릉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660-7	하천부지	24,855
25	ST-①-068	은평진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354	종교용지	7,788
26	SN-②-086	불광근린공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33-1	답	182
27	SO-①-002	서대문홍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64-16	임야	16,468
28	SA-②-201	연세대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95	학교용지	25,946
29	SA-②-193	마포마포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347-5	학교용지	15,631
30	SK-②-123	마포도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50	대지(1지역)	43,950
31	SK-②-124	양천목동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12	대지(1지역)	108,854
32	SA-②-190	신정강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869-42	학교용지	20,614
33	SE-②-303	서울강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과해동 676	잡종지(2지역)	115,639

자료 : 토양지하수 종합정보시스템(http://sgis.nier.go.kr)

<표 계속> 서울시 내 토양측정망

구분	지점번호	지점명칭	주 소	지목	면적(㎡)
34	SK-②-120	강서방화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852	대지(1지역)	29,985
35	SN-③-253	강서개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511-2	답	2,356
36	SS-③-278	강서오곡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곡동 609-3	전	4,189
37	SA-②-199	고척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76-2	학교용지	13,664
38	SN-②-084	구로항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70	답	1,124
39	SK-⑤-334	영등포공단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 100-26	대지(2지역)	1,041
40	SS-⑤-328	온수산단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 94	전	2,122
41	SA-②-200	금천가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300-21	학교용지	13,622
42	SA-②-196	당산영등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323	학교용지	15,818
43	SK-②-125	영등포여의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2	대지(1지역)	34,879
44	SA-②-191	남성관악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324-18	학교용지	6,935
45	SN-②-085	동작사당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205-4	답	641
46	ST-①-067	서초우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56	종교용지	5,113
47	SO-②-078	서울서초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85-2	임야	20,015
48	SA-②-189	언주강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22	학교용지	9,979
49	SK-②-126	강남일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741	대지(1지역)	31,499
50	SA-②-195	삼전송파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63	학교용지	13,883
51	SK-②-119	올림픽공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	대지(2지역)	43,827
52	SK-②-127	강동방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9	대지(1지역)	209,118
53	SK-②-128	잠실송파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7	대지(1지역)	296,846
54	SK-②-129	올림픽경기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88-2	대지(2지역)	549,419
55	SU-②-110	석촌호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7	공원	150,850
56	SU-②-111	길동생태공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92	공원	108

자료 : 토양지하수 종합정보시스템(http://sgis.nier.go.kr)

다) 문헌조사 결과

◦ 서울시의 토양측정망 자료 조사결과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 및 2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0.3.3.2 - 2> 서울시의 세부지점별 토양측정망 운영결과

(단위 : mg/kg)

구분	Cd	Cu	As	Hg	Pb	Cr+6	Zn	Ni	불소	pH
1	0.00	5.0	0.00	0.01	17.1	0	49.1	3.0	-	7.6
2	0.33	35.0	3.93	0.08	44.9	0	128.6	8.3	-	7.1
3	0.23	36.4	3.53	0.08	18.0	0	52.1	20.7	-	6.8
4	0.00	4.7	0.00	0.00	16.6	0	71.2	3.9	-	8.4
5	0.13	40.8	1.83	0.04	24.9	0	119.8	32.3	-	6.8
6	0.11	3.4	0.00	0.00	15.5	0	43.1	3.1	-	9.0
7	0.21	18.0	2.21	0.02	35.6	0	67.7	8.6	-	7.7
8	0.00	24.6	3.63	0.03	18.6	0	97.6	14.1	357	7.7
9	0.00	2.7	0.00	0.00	16.2	0	53.0	2.6	-	8.7
10	0.12	18.4	2.98	0.02	13.9	0	100.6	13.5	-	6.8
11	0.29	44.7	9.20	0.05	50.5	0	163.6	46.7	211	7.5
12	0.00	10.7	2.00	0.03	19.2	0	67.8	7.3	-	6.6
13	0.10	16.7	0.00	0.37	21.2	0	75.4	6.2	-	6.3
14	0.00	5.5	0.00	0.01	17.0	0	64.8	2.9	-	7.9
15	0.00	29.5	2.55	0.05	9.0	0	72.6	38.3	-	6.8
16	0.37	30.5	0.00	0.09	33.7	0	64.8	8.7	-	6.7
17	0.00	16.6	4.00	0.14	26.6	0	74.6	6.0	-	8.4
18	0.00	2.8	0.00	0.04	8.6	0.9	58.2	2.5	-	9.3
19	0.24	20.5	2.40	0.06	19.2	0	95.5	11.8	-	7.1
20	0.11	21.3	3.23	0.04	25.6	0	96.6	12.6	-	6.6

주) 1. "-"은 미검사이며, "0"은 정량한계 미만
2. 유기인, PCBs, CN, 페놀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TCE, PCE, 벤조(a)피렌, 1, 2-디클로로에탄은 미검사 및 정량한계 미만으로 조사되었음
자료 : 토양지하수 종합정보시스템(sgis.nier.go.kr)

<표 계속> 서울시의 세부지점별 토양측정망 운영결과

(단위 : mg/kg)

구분	Cd	Cu	As	Hg	Pb	Cr+6	Zn	Ni	불소	pH
21	0.10	17.6	2.33	0.04	29.8	0	76.1	5.3	-	6.9
22	0.00	2.8	0.00	0.00	17.9	0	56.4	1.9	-	9.1
23	0.18	33.9	4.30	0.14	25.4	0	95.4	9.8	336	8.4
24	0.20	25.9	2.07	0.07	23.0	0	123.9	8.4	-	7.2
25	0.13	16.8	2.69	0.07	24.5	0	73.6	13.6	-	8.3
26	0.16	32.3	0.00	0.05	18.5	0	112.8	34.3	-	5.8
27	0.56	48.6	7.73	0.37	60.3	0	253.0	12.0	-	7.9
28	0.10	9.5	1.53	0.02	19.2	0	77.9	7.4	-	8.5
29	0.29	15.6	0.00	0.03	14.8	0	64.0	13.2	-	8.9
30	0.21	43.0	4.70	0.07	26.3	0	109.6	33.3	116	8.7
31	0.17	57.2	3.50	0.07	34.0	0	132.4	36.0	338	6.2
32	0.10	6.1	2.21	0.01	11.2	0	61.1	4.1	-	9.1
33	0.13	29.9	3.10	0.03	29.6	0	80.6	32.3	248	7.2
34	0.20	44.4	5.67	0.04	26.3	0	111.4	20.7	295	7.6
35	0.00	16.0	0.00	0.03	19.7	0	85.9	12.4	-	8.4
36	0.00	13.5	2.57	0.04	11.8	0	53.5	12.3	-	8.2
37	0.00	5.8	0.00	0.02	18.8	0	56.7	4.0	-	8.8
38	0.23	45.0	5.47	0.03	21.7	0	122.6	35.4	-	7.6
39	0.60	81.2	4.57	0.05	98.0	0	389.2	103.0	290	7.9
40	0.23	47.5	3.62	0.05	26.3	0	127.3	31.4	-	7.7
41	0.17	33.6	4.53	0.01	15.0	0	107.4	14.8	-	8.9

주) 1. "-"은 미검사이며, "0"은 정량한계 미만
2. 유기인, PCBs, CN, 페놀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TCE, PCE, 벤조(a)피렌, 1, 2-디클로로에탄은 미검사 및 정량한계 미만으로 조사되었음
자료 : 토양지하수 종합정보시스템(sgis.nier.go.kr)

<표 계속> 서울시의 세부지점별 토양측정망 운영결과

(단위 : mg/kg)

구분	Cd	Cu	As	Hg	Pb	Cr+6	Zn	Ni	불소	pH
42	0.20	11.8	2.91	0.02	19.2	0	82.4	8.6	-	8.8
43	0.27	35.6	5.07	0.05	36.5	0	113.0	24.2	344	6.2
44	0.25	35.0	14.01	0.03	20.8	0	118.7	20.1	-	8.0
45	0.11	38.3	4.73	0.03	19.1	0	108.3	34.9	-	6.1
46	0.17	25.8	2.59	0.04	43.9	0	148.6	20.3	-	6.8
47	0.50	54.8	4.83	0.04	64.7	0	141.1	34.5	-	6.8
48	0.37	23.7	7.96	0.03	15.2	0	121.8	30.8	-	6.7
49	0.15	22.6	0.00	0.02	10.8	0	87.7	30.4	333	7.9
50	0.00	9.4	0.00	0.00	16.5	0	75.1	4.1	-	9.4
51	0.00	32.4	5.20	0.02	20.1	0	119.0	22.9	156	7.3
52	0.16	41.1	12.40	0.04	25.2	0	125.4	24.6	155	7.0
53	0.43	45.7	6.20	0.05	20.3	0	191.5	20.3	148	6.4
54	0.00	32.9	8.46	0.04	18.8	0	109.4	24.4	225	6.2
55	0.18	55.9	5.77	0.04	25.7	0	137.4	26.9	-	8.8
56	0.12	26.3	4.50	0.02	13.2	0	88.8	33.4	-	7.5

주) 1. "-"은 미검사이며, "0"은 정량한계 미만
2. 유기인, PCBs, CN, 페놀류,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TCE, PCE, 벤조(a)피렌, 1, 2-디클로로에탄은 미검사 및 정량한계 미만으로 조사되었음
자료 : 토양지하수 종합정보시스템(sgis.nier.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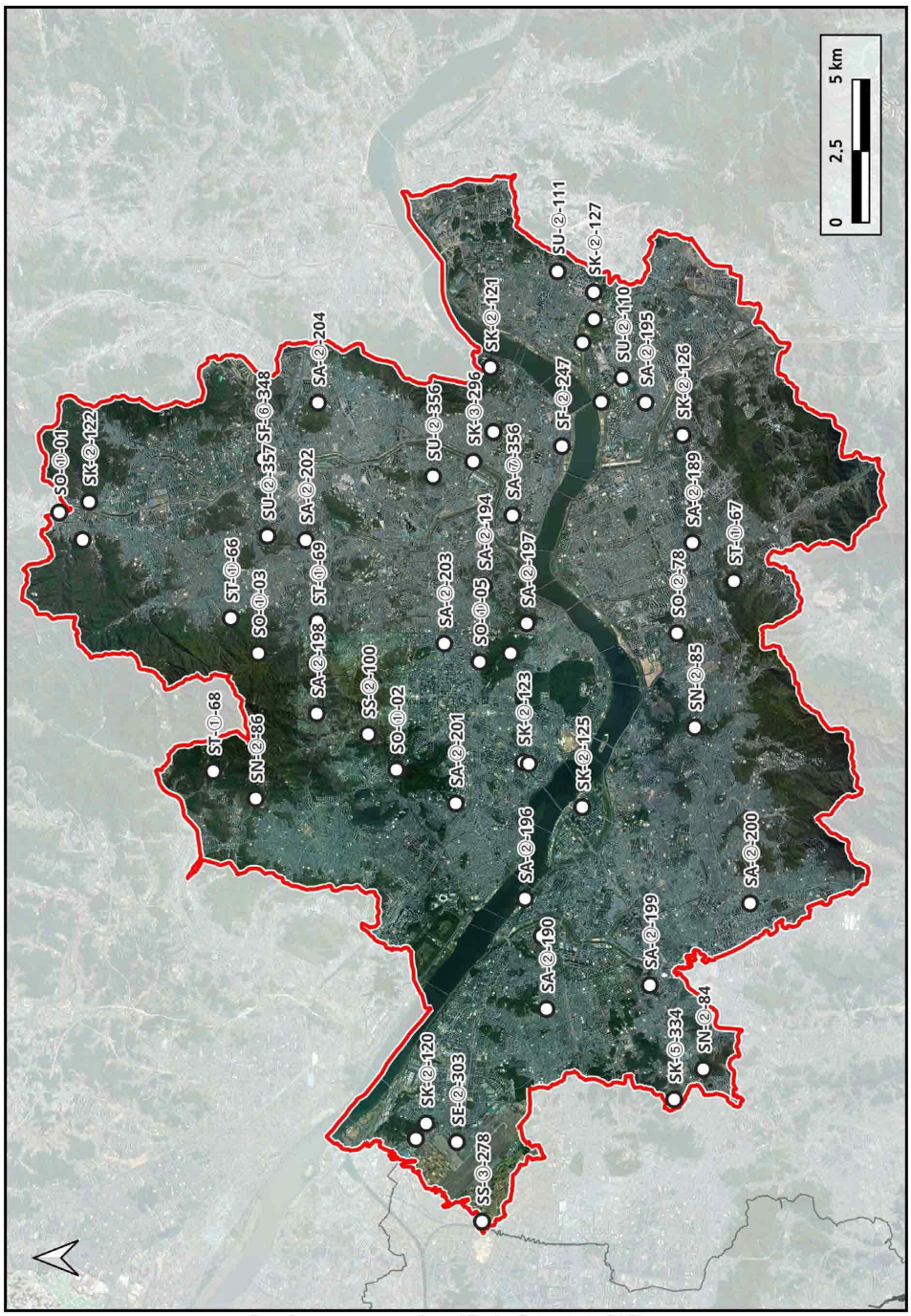

(그림 10.3.3.2 - 1) 토양 측정망 지점 위치도

2) 현장조사

◦ 축산농가 인근 국가측정망 부재로 인해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가) 조사항목

◦ 비소, 카드뮴, 수은, 납, 크롬, 구리, 니켈, 아연 8개 항목

나) 조사범위

◦ 퇴비처리 인근지역 4개소(내곡동, 우면동, 원지동), 배경지점 1개소.

다) 조사시기

◦ 1차 : 2025년 6월

◦ 2차 : 2025년 8월

라) 조사결과

◦ 현장조사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전지역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0.3.3.2 - 1> 토양 1, 2차 조사결과(평균값)

구분	비고	비소 (mg/kg)	카드뮴 (mg/kg)	수은 (mg/kg)	납 (mg/kg)	크롬 (mg/kg)	구리 (mg/kg)	니켈 (mg/kg)	아연 (mg/kg)
세한사슴	세한사슴 내부	0.30	0.10	N.D.	1.54	N.D.	1.60	0.58	37.86
보광농장	새원사슴 인근	0.40	0.08	N.D.	2.23	N.D.	4.98	0.51	28.60
신원농장	새원사슴 인근	0.25	0.04	N.D.	3.33	N.D.	3.76	0.42	15.35
서초목장 인근	서초목장 내부	0.32	0.10	N.D.	2.72	N.D.	4.98	0.44	30.16
은미농원	배경지점	0.28	0.10	N.D.	1.42	N.D.	1.87	0.59	39.60

주) N.D. : 불검출(Not Detected)

(그림 10.3.3.2 - 2) 토양 현장조사 지점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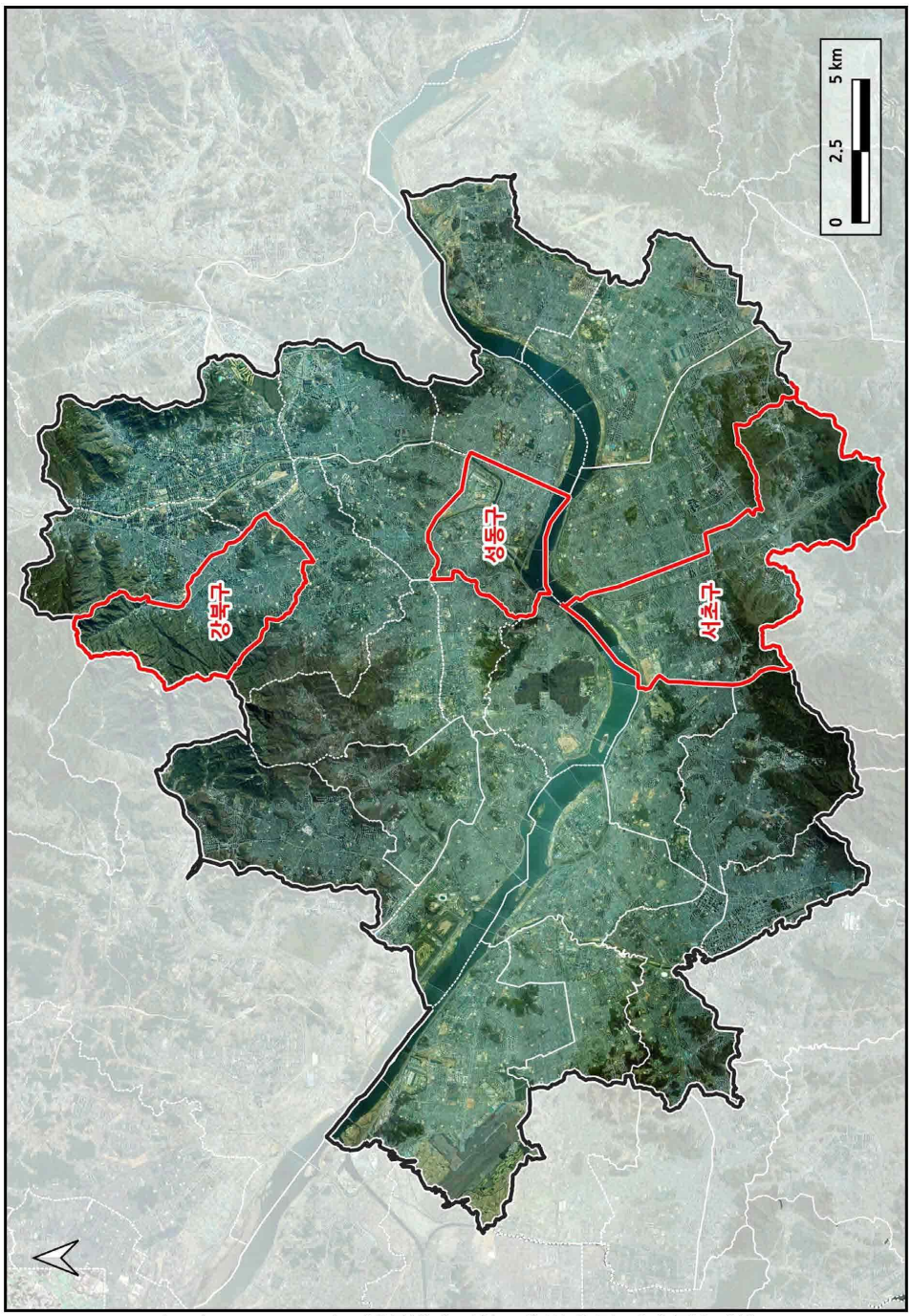

(그림 10.3.3.2 - 3) 서울특별시 지역소재 발생 및 관리 필요지역

나. 환경보전목표

◦ 본 계획수립에 따른 환경보전목표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명시된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 및 2지역'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표 10.3.3.2 - 3>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단위: ㎎/㎏,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pg-TEQ/g)

물 질	토양오염우려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		
	1지역	2지역	3지역	1지역	2지역	3지역
카드뮴	4	10	60	12	30	180
구리	150	500	2,000	450	1,500	6,000
비소	25	50	200	75	150	600
수은	4	10	20	12	30	60
납	200	400	700	600	1,200	2,100
6가크롬	5	15	40	15	45	120
아연	300	600	2,000	900	1,800	5,000
니켈	100	200	500	300	600	1,500
불소	800	1,300	2,000	2,400	3,900	6,000
유기인화합물	10	10	30	-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	4	12	3	12	36
시안	2	2	120	5	5	300
페놀	4	4	20	10	10	50
벤젠	1	1	3	3	3	9
톨루엔	20	20	60	60	60	180
에틸벤젠	50	50	340	150	150	1,020
크실렌	15	15	45	45	45	135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800	2,000	2,000	2,400	6,0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8	8	40	24	24	1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4	4	25	12	12	75
벤조(a)피렌	0.7	2	7	2	6	21
1,2-디클로로에탄	5	7	70	15	20	210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	160	340	1,000	500	1,000	3,000

※ 비고

1. 1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3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학교용지·구거(溝渠)·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2. 2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염전·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창고용지·하천·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 및 잡종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3. 3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 부지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반환하거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의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반환 후 용도에 따른 지역 기준을 적용한다.
5. 벤조(a)피렌 항목은 제한물질 ·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과 폐받침목을 사용한 지역(예: 철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및 하천 등)에만 적용한다.
6.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하는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조치명령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조사 기간 또는 정화 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지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목변경이 예정된 경우에는 변경 예정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된 경우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후 공사가 착공된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목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가 착공된 경우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나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하는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의 관계 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의 용도에 부합하는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관계 서류를 통하여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지역에 해당하는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자료 : 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03.07.>

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5.03.07.>

다. 환경평가

◦ 예측항목 : 가축분뇨에 의한 토양오염

◦ 예측범위 :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

◦ 예측방법 : 참고문헌 및 유사사례 참조

◦ 예측결과

- 단계적인 개체수 감축을 유도하여 분뇨발생량의 감소효과로 토양오염 등의 2차 환경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
- 위탁처리 및 퇴비화 작업 중 분뇨의 유출이 있을 경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본 계획은 서울시 가축분뇨 기본계획으로 개발행위가 수반하지 않는 정책계획으로 실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양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향후 가축분뇨 관리의 미흡시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을 설정하였다.

1) 가축분뇨 처리방안

가) 서울시 가축분뇨 적정 관리계획 방향성

(1) 정책 방향 및 기본방침

◦ 서울시 내에서 가축분뇨를 처리 및 관리하는 유형은 개별 자체처리(정화, 퇴비, 액비 등), 위탁처리(단독, 연계 등)로 구분하며, 처리 방법은 시설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 서울시의 도시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가축분뇨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토양 및 수질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2) 축종별 관리 유형 및 중점 관리 사항

◦ 환경부 가축분뇨관세부계획 수립지침('24)에서는 축종별 분뇨 성상을 고려하여 적용가능한 처리시설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 서울시 가축종 중 젖소의 경우 정화, 에너지화(바이오가스화), 퇴비화로 처리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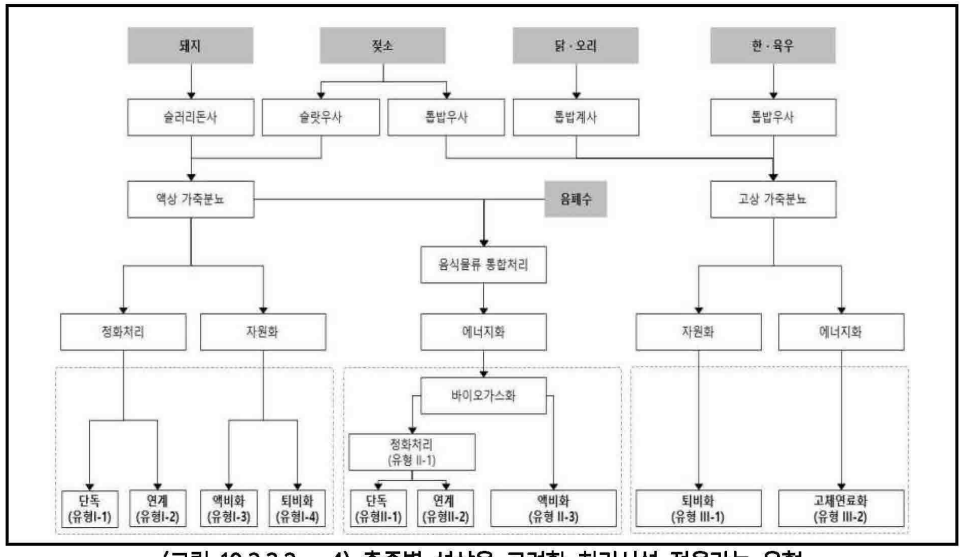

(그림 10.3.3.2 - 4) 축종별 성상을 고려한 처리시설 적용가능 유형

나) 서울시 가축분뇨 관리계획

◦ 서울시 가축분뇨 관리계획으로 가축분뇨의 처리는 기존 방식(퇴비화, 정화처리, 위탁처리)대로 처리를 하며, 단계적인 개체수 감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 단계적인 개체수 감축을 유도할 시 분뇨 발생량의 직접적인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로 인한 토양, 수질오염등 2차 환경문제 발생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분뇨의 퇴비화,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도 함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하지만 기존 방식의 가축분뇨 처리를 할 경우 위탁처리나 퇴비화 작업 중 분뇨의 유출이 있을 경우 처리물의 특성인 고농도 유기물 및 질소의 함유로 소량의 토양환원시 양분으로 작용하나 과다한 양의 누출시 토양오염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외부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2.1.4 - 1> 서울시 자치구별 가축사육 현황 및 분뇨 처리 방법

자치구	소재지	시설명	축종	사육두수	시설규모(㎡)	분뇨처리방법	비고
성동구	성수동1가 685-20	서울숲공원	사슴	26	2,770	퇴비	
서초구	방배동 산184	경찰특공대	개	31	1,009	정화	
	원지동 산 72	경북농장	한우	20	1,564	위탁	폐쇄
	내곡동 228-1	서초목장	젖소	10	574	위탁	
	우면동 192	세한사슴	사슴	23	396	퇴비	
	원지동 225-2	새원사슴	사슴	3	330	퇴비	
강북구	번동 90	북서울꿈의숲	사슴	14	2,511	퇴비	

라. 환경보전대책

1)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가) 단계별 기본계획

◦ 서울시는 추가시설의 증설 없이 현재 가축사육 두수를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분뇨 발생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시기적 단계별 정량목표와, 단계별 세부전략을 수립하였다.

계획 목표	○ 기본목표 : 서울시 현실적 가축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및 수질보전 선도 ○ 실행목표 : 가축사육 제한과 점진적 개체수 감소로 분뇨발생 감소		
추진 전략	단계별	1단계 (2026년~2029년)	2단계 (2030년~2032년) ⇒	3단계 (2033년~2035년) ⇒
		가축분뇨시설 관리강화 및 시설 15% 감소	가축분뇨시설 50% 감소	가축분뇨발생 감소 관리
주요 추진 계획	발생 단계	- 가축두수 모니터링 및 감축계획(사설시설) 수립 (총 6개소 → 총 5개소)	- 가축분뇨시설 감축 추진 (총 5개소 → 총 3개소) · 사설시설 폐업시 보상 등 · 공공시설 가축관리(암수구별 등)에 따른 자연감소 추진 (총 5개소 → 총 3개소) - 가축사용 제한 조례제정 추진(미제정 자치구 限)	- 감소된 가축분뇨시설 적정관리 (총 3개소) · 가축분뇨시설(개체수 감소 시) 면적조정 등 - 가축사육 조례 제정 (미제정 자치구 限)
	수집·운반 단계	- 효율적 가축분뇨 수집운반 방안 모색	- 일부 자치구 가축분뇨 공동수거 체계 구축 - 가축분뇨 미발생 자치구 수집 운반업 폐업 조정	- 가축분뇨 인접지역 공동 자원화시설 운반 - 가축분뇨관련영업자(수집 운반업 등) 지도점검 등 관리 강화
	처리 단계	- 적정 퇴비화를 위한 농장주 및 담당자 교육실시 - 일부 가축분뇨시설 정화 처리	- 적정퇴비화 방안 유지 - 일부 가축분뇨시설 정화 처리 - 가축분뇨 분뇨처리시설 투입	- 적정퇴비화 방안 유지 - 일부 가축분뇨시설 정화 처리 - 인접지역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시설 투입
	자원 회방안	- 적정 퇴비화로 양질의 퇴비 생산	- 양질의 퇴비 생산 - 바이오가스 생산량 증대	- 양질의 퇴비 생산 - 재생에너지 확대 기여

(그림 10.3.3.2 - 5) 서울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목표 및 주요 추진계획

나) 주요 추진전략

◦ 시기별 3단계로 주요 추진전략을 발생단계, 수집·운반단계, 처리단계, 자원화 방안으로 구분하였다.

◦ 1단계(2026년~2029년) : 가축분뇨시설 관리강화 및 시설의 15%감소

- 발생단계 : 적정 사육두수 관리, 공공시설과 사설시설 개체수 모니터링, 가축분뇨시설 감축(6개소에서 5개소)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함과 동시 분뇨발생시설의 15% 감소를 목표
- 수집·운반단계 : 효율적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위한 방안 모색
  퇴비화 4개소에 대해 최단한 자체 소화 권장
  위탁처리 중인 1개소에 대한 자체 소화 또는 근거리지역 자원화시설 투입을 유도
- 처리단계 : 적정 퇴비화를 위한 농장주 및 담당자 교육
  일부 가축분뇨시설 정화처리를 철지히 함
- 자원화 방안 : 적정 퇴비화를 통한 양질의 퇴비 생산

◦ 2단계(2030년~2032년) : 가축분뇨시설 50% 감소

- 발생단계 : 가축분뇨시설 감축(2개소 추가 감소를 통한 3개소 유지 목표)과 함께 보상 체계 추진
  공공시설의 자연 감소 관리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자치구에 한해 조례제정을 추진하도록 함
- 수집·운반단계 : 운반 체계 최적화를 위한 관내 공동수거하는 체계 구축
  가축분뇨 미발생 자치구의 가축분뇨수집운반업 폐업 조정 유도
- 처리단계 : 적정퇴비화 방안을 유지하고, 일부 가축분뇨시설의 정화처리 유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로의 투입을 유도
- 자원화 방안 : 양질의 퇴비 생산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3단계(2033년~2035년) : 감소된 가축분뇨시설의 적정관리로 발생량 지속 감소를 목표

- 발생단계 : 감소된 가축분뇨시설 3개소 시설의 적정관리 및 지속적 감소 노력
- 수집·운반단계 : 인접 지역 공동자원화시설로의 운반 추진과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 처리단계 : 적정퇴비화 방안 유지, 일부 정화처리 유지, 인접 지역 공동자원화시설로 가축분뇨 투입
- 자원화 방안 : 양질의 퇴비 생산, 재생에너지 확대 기여

다)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토양오염 저감효과

◦ 분뇨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양오염에 대해 운반체계를 점검 및 관리하고 최적화함에 따라 토양오염 피해를 관리 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 계획에 따른 점진적인 가축사육 두수 감소로 최종 분뇨 발생 제로화를 계획함에 따라 토양환경보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0.3.3.3 수질

가. 현황조사

◦ 조사항목 : 하천 현황, 하천수질 등
◦ 조사범위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조사방법 : 문헌조사, 현장조사, 지형도 확인
◦ 조사결과 :
① 지표수질 현황

- pH : 7.3 ~ 8.1
- DO : 8.3 ~ 12.3mg/L
- BOD : 0.8 ~ 1.5mg/L(Ia(매우좋음)~Ib(좋음)등급)
- COD : 2.3 ~ 6.8mg/L
- SS : 2.7 ~ 8.1mg/L
- T-N : 2.475 ~ 12.345mg/L
- T-P : 0.015 ~ 0.263mg/L
- TOC : 1.5 ~ 4.2mg/L

② 지하수질 현황

- pH : 불검출~8.2
- 총대장균군 : 불검출~22.3군수/100mL
- 질산성질소 : 불검출~22.3mg/L
- 염소이온 : 불검출~155.1mg/L
- 카드뮴 : 불검출~17.45mg/L
- 비소 : 불검출~0.01mg/L
- 페놀 : 불검출~0.005mg/L
- 납 : 불검출~84mg/L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불검출~0.006mg/L
- 트리클로로에틸렌 : 불검출~0.094mg/L
- 1,1,1-트리클로로에탄 : 불검출~0.004mg/L
- 벤젠 : 불검출~0.001mg/L

③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서울특별시에는 6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위치, 총 시설용량 4,800,000㎥/일

1) 하천 현황

◦ 서울특별시에는 국가하천 6개소, 지방하천이 38개소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서울특별시의 수계현황은 중랑천, 안양천, 도림천 등에 합류 후 한강을 통해 서해로 유입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0.1.4.1 - 1> 하천현황(국가하천)

하천명	본류	제1지류	제2지류	제3지류	기 점	종 점	유로연장(㎞)	유역면적(㎢)
한강	한강	-	-	-	송천 합류점	용강리유도 31m 산정부터 남북으로 그은 직선	489.7	*34,267.70 23,076.80
중랑천	한강	중랑천	-	-	의정부 장암동	한강(국가) 합류점	36.44	296.87
안양천	한강	안양천	-	-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한강(국가) 합류점	33.33	283.75
목감천	한강	안양천	목감천	-	시흥시 논공동, 광명시 가학동	안양천(국가) 합류점	15.50	57.16
굴포천	한강	굴포천	-	-	인천 부평구 갈산동 193-61	한강(국가) 합류점	26.23	124.58
아라천	아라천	-	-	-	한강 분기점	인천 서구 오류동	35.03	157.14

자료 :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http://www.river.go.kr)

<표 10.1.4.1 - 2> 하천현황(지방하천)

하천명	본류	제1지류	제2지류	제3지류	제4지류	기 점	종 점	유로연장(km)	유역면적(㎢)
청계천	한강	중랑천	청계천	-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48	중랑천(국가) 합류점	14.41	50.02
고덕천	한강	고덕천	-	-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425-7	한강(국가) 합류점	7.31	18.85
대사골천	한강	고덕천	대사골천	-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443-5	고덕천(지방) 합류점	2.74	1.22
망월천	한강	고덕천	망월천	-		하남시 풍산동 284-5	고덕천(지방) 합류점	5.40	3.06
성내천	한강	성내천	-	-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227	한강(국가) 합류점	9.77	35.27
감이천	한강	성내천	감이천	-		하남시 감북동 468	성내천(지방) 합류점	2.59	8.03
탄천	한강	탄천	-	-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BOX교	한강(국가) 합류점	32.55	303.07
세곡천	한강	탄천	세곡천	-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1-2583	탄천(지방) 합류점	6.02	15.00
양재천	한강	탄천	양재천	-		과천시 별양동 복개종점	탄천(지방) 합류점	16.60	60.24
여의천	한강	탄천	양재천	여의천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136-1	양재천(지방) 합류점	6.96	12.43
도봉천	한강	중랑천	도봉천	-		서울시 도봉구 도봉천 산 89-1, 산90	중랑천(국가) 합류점	4.67	7.46
방학천	한강	중랑천	방학천	-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587-2	중랑천(국가) 합류점	3.48	4.78
당현천	한강	중랑천	당현천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40-1, 308-2	중랑천(국가) 합류점	7.39	11.15
묵동천	한강	중랑천	묵동천	-		서울시 중랑구 신내 71-37	중랑천(국가) 합류점	6.23	10.26
우이천	한강	중랑천	우이천	-		서울시 도봉구 우이동 200	중랑천(국가) 합류점	12.35	27.29
대동천	한강	중랑천	우이천	대동천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산74-1	우이천(지방) 합류점	3.49	2.28
가오천	한강	중랑천	우이천	가오천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산124	우이천(지방) 합류점	3.68	2.34
화계천	한강	중랑천	우이천	화계천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산127-1	우이천(지방) 합류점	4.33	4.05
면목천	한강	중랑천	면목천	-	-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20-4	중랑천(국가) 합류점	5.89	10.51
성북천	한강	중랑천	청계천	성북천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36	청계천(지방) 합류점	6.87	7.32
정릉천	한강	중랑천	청계천	정릉천	-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산1-1	청계천(지방) 합류점	11.43	19.15
월곡천	한강	중랑천	청계천	정릉천	월곡천	서울시 도봉구 마아동 837	정릉천(지방) 합류점	4.22	4.15
전농천	한강	중랑천	청계천	전농천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532-1	중랑천(국가) 합류점	1.85	4.57
반포천	한강	반포천	-	-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85	한강(국가) 합류점	7.70	31.49
사당천	한강	반포천	사당천	-	-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산101-14	반포천(지방) 합류점	7.47	12.08
봉원천	한강	봉원천	-	-	-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31-123	한강(국가) 합류점	2.29	6.01
홍제천	한강	홍제천	-	-	-	서울시 종로구 평동 복개시점부	한강(국가) 합류점	13.00	40.77
불광천	한강	홍제천	불광천	-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423-5	홍제천(지방) 합류점	9.83	20.27
녹번천	한강	홍제천	불광천	녹번천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산42-1	불광천(지방) 합류점	2.22	5.75
시흥천	한강	안양천	시흥천	-	-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16-16	안양천(국가) 합류점	2.60	3.24
오류천	한강	안양천	목감천	오류천	-	서울시 구로구 궁동 252	목감천(국가) 합류점	5.67	6.55
도림천	한강	안양천	도림천	-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808-126	안양천(국가) 합류점	14.51	42.50
도림천 지류2	한강	안양천	도림천	도림천 지류2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73-5	도림천(지방) 합류점	3.10	2.55
봉천천	한강	안양천	도림천	봉천천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239-15	도림천(지방) 합류점	7.31	9.19
대방천	한강	안양천	도림천	대방천	-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34-43	도림천(지방) 합류점	7.43	7.65
향동천	한강	향동천	-	-	-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한강(국가) 합류점	5.93	9.97
창릉천	한강	창릉천	-	-	-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한강(국가) 합류점	21.95	78.59
구파발천	한강	창릉천	구파발천	-	-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산109-12	창릉천(지방) 합류점	-	-

자료 :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http://www.river.go.kr)

(그림 10.1.4.1 - 1) 서울특별시 수계현황

2) 수자원 이용현황

가) 상수도 시설 현황

◦ 서울특별시 관할 취수장은 4개소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0.1.4.1 - 3> 취수장 현황

취수장명	소재지	시설용량(m^3/일)	취수방법	공급정수장
암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산1	1,710,000	취수관거	암사
자양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701	800,000	취수관거	구의, 뚝도
풍납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419	700,000	취수문	영등포
강북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경강로 682	2,300,000	취수탑	강북, 구의, 뚝도

자료 : 2023 상수도 통계, 2024, 환경부

◦ 서울특별시 관할 정수장이 6개소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0.1.4.1 - 4> 정수장 현황

정수장명	소재지	시설용량 (m^3/d)	정수형식	급수구역
구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500,000	급속여과+AOP+GAC	광진구 등 4개구 48개동
뚝도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700,000	급속여과+AOP+GAC	종로구 등 7개구 76개동
암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131	1,600,000	급속여과+AOP+GAC	강동구 등 9개구 119개동
영등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11	600,000	급속여과+막여과(MF)+GAC	양천구 등 4개구 57개동
강북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	1,000,000	급속여과+AOP+GAC	중랑구 등 11개구 116개동
광암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293	400,000	급속여과+AOP+GAC	송파구 등 2개구 31개동
합 계	-	4,800,000	-	-

자료 : 2023 상수도 통계, 2024, 환경부

나) 상수도 공급 현황

◦ 서울특별시의 상수도 공급 현황 조사결과, 2023년 기준 급수 도시 구역 내 총인구 9,638,799인 전체에 대하여 급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일 1인당 급수량은 302L/인·일로 나타났다.

<표 10.1.4.1 - 5> 상수도 공급 현황

구분	급수도시 내 총인구(인)	급수인구(인)	보급률(%)	시설용량(㎥/일)	1일1인당 급수량(L/인·일)	비 고
서울특별시	9,638,799	9,638,799	100.0	4,800,000	302	
종로구	150,453	150,453	100.0		571	
중구	131,793	131,793	100.0		649	
용산구	227,106	227,106	100.0		329	
성동구	284,766	284,766	100.0		309	
광진구	351,180	351,180	100.0		289	
동대문구	359,873	359,873	100.0		281	
중랑구	387,470	387,470	100.0		266	
성북구	438,168	438,168	100.0		275	
강북구	292,977	292,977	100.0		277	
도봉구	309,494	309,494	100.0		298	
노원구	502,925	502,925	100.0		251	
은평구	470,869	470,869	100.0		237	
서대문구	320,629	320,629	100.0		304	
마포구	375,162	375,162	100.0		309	
양천구	439,252	439,252	100.0		285	
강서구	568,826	568,826	100.0		268	
구로구	415,651	415,651	100.0		306	
금천구	241,105	241,105	100.0		305	
영등포구	397,800	397,800	100.0		315	
동작구	389,714	389,714	100.0		260	
관악구	497,883	497,883	100.0		304	
서초구	412,078	412,078	100.0		366	
강남구	550,282	550,282	100.0		362	
송파구	660,025	660,025	100.0		327	
강동구	463,318	463,318	100.0		216	

자료 : 제64회 2024 서울통계연보(2023년 기준), 2024, 서울특별시

가) 분뇨처리시설 현황

◦ 서울특별시 관할 분뇨처리시설은 3개소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0.1.4.1 - 6> 분뇨처리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용량 (㎥/일)	처리량 (㎥/일)	처리공법	연계처리장명	방류수역
중랑물재생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47-6	4,000.0	4,778.2	물리적	중랑물재생센터	한강(중랑천)
서남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4	4,000.0	3,819.7	물리적	서남물재생센터	한강(한강)
난지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262-2	4,500	3,884.7	물리적, 생물학적	난지물재생센터	한강(한강)

자료 : 2023 하수도통계, 2024, 환경부

나)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 서울특별시 관할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4개소로, 총 시설용량 4,980,000.0㎥/일로 조사되었다.

<표 10.1.4.1 - 7>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처리시설명	위치	시설용량(톤/일)	처리방법	비고
중랑물재생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47-6	1,590,000.0	표준활성슬러지법, A_2O, MLE, SBAF	
서남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74	1,630,000.0	기타, 표준활성슬러지법, MLE, 4 stage-BNR	
탄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580	900,000.0	표준활성슬러지법, MLE	
난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92-2	860,000.0	중력침전법, 표준활성슬러지법, MLE, A_2O	
합 계	-	4,980,000.0	-	

자료 : 2023 하수도통계, 2024, 환경부

4)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의 지정 현황

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현황

◦ 서울특별시에는 환경부 고시에 의하여 1개소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0.1.4.1 - 8>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보호구역명	행정구역	최초지정일	지정면적(㎢)	소재지
잠실	서울특별시	1995.03.20	6.45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잠실수중보 상류 하천구역

자료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2024.12, 환경부

나) 배출허용기준(폐수)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 서울특별시 전역은 「배출허용기준(폐수)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환경부고시 제2007-107호)」규정에 의하여 "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0.1.4.1 - 9> 배출허용기준(폐수)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구 분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서울특별시	-	-	전 역

자료 : 배출허용기준(폐수)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환경부고시 제2007-107호

다)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 계획지구는 "한강" 대권역, "한강서울", "한강잠실", "한강고양"중권역에 해당되며,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 기준은 "Ib(좋음)" 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0.1.4.1 - 10>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대권역명	중권역명	목표기준			
				생물이해등급	
				수생태계 특성	어류생물지수
한강	한강서울	좋음	Ib	매우좋음~좋음	A, B
	한강잠실	좋음	Ib	매우좋음~좋음	A, B
	한강고양	보통	III	좋음~보통	C

자료 :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환경부고시 제2018-6호

5) 수질오염총량관리 현황

가) 서울특별시 수질오염총량관리 단위유역 현황

◦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대상인 총량관리단위유역 49개 단위유역 중 서울특별시는 굴포A, 한강I, 한강H, 안양A, 탄천A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0.1.4.1 - 11> 서울특별시 수질오염총량관리 단위유역 수계구간

구 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	비 고
굴포A	굴포천 수계구간 중 발원지로부터 한강 합류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안양A	안양천 수계구간 중 발원지로부터 도림천 합류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한강I	한강 수계구간 중 한강대교 지점부터 행주대교 지점까지 전구간 및 유역	
한강H	한강 수계구간 중 왕숙천 합류점 후부터 한강대교 지점까지 전구간 및 유역	
탄천A	탄천 수계구간 중 발원지로부터 경기도-서울시경계점까지 전구간 및 유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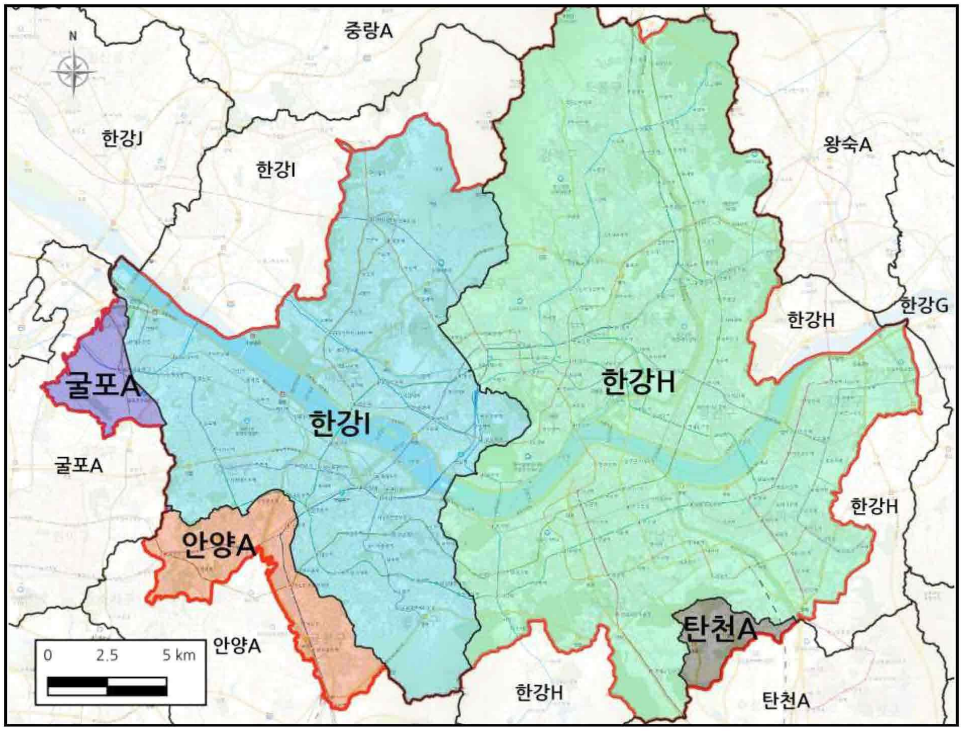

(그림 10.1.4.1 - 2) 수질오염총량관리 단위유역도

나) 2단계 수질오염총량 서울특별시 목표 수질

◦ 서울특별시의 2단계 수질오염총량 목표수질은 한강H BOD 2.7kg/일, T-P 0.126kg/일, 한강I 3.8kg/일, T-P 0.214kg/일, 탄천A 4.0kg/일, T-P 0.314kg/일, 안양A 6.2kg/일, T-P 0.320kg/일, 굴포A 3.9kg/일, T-P 0.486kg/일로 조사되었다.

<표 10.1.4.1 - 12> 2단계 수질오염총량 목표수질(서울특별시)

구 분	BOD(kg/일)	T-P(kg/일)
한강H	2.7	0.126
한강I	3.8	0.214
탄천A	4.0	0.314
안양A	6.2	0.320
굴포A	3.9	0.486

자료 : 2단계 서울특별시 한강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2021.08, 서울특별시

6) 수질측정망 조사

가) 조사시기

<표 10.1.4.1 - 13> 조사항목

구분	조사시기	비 고
수질측정망	2015년 ~ 2024년	

나) 조사지점

<표 10.1.4.1 - 14> 조사지점

영향권	자치구	대권역	중권역	측정소명	주소	조사기관
성동구	동대문구	한강	한강서울	성북천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성북천교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성동구	한강	한강서울	중랑천6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성동교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성동구	한강	한강서울	청계천2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무학교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성동구	한강	한강서울	청계천3	서울시 성동구 사근동 중랑천 합류전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서초구	강남구	한강	한강서울	양재천2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대치교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성동구	한강	한강서울	뚝도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성수대교	한강유역환경청
	용산구	한강	한강서울	보광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한남대교	한강유역환경청
강북구	성북구	한강	한강서울	우이천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중랑천 합류전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자료 : 물환경정보시스템 물환경지리정보

다) 조사항목

<표 10.1.4.1 - 15> 조사항목

구분	항목	비 고
지표수질	pH, DO, BOD, COD, SS, T-N, T-P, TOC	

라) 조사결과

(1) pH

◦ 최근 10년간 하천 pH는 평균 최저 7.3~최고 8.1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이천 지점이 가장 높고 중랑천6 지점이 가장 낮았다.

◦ 과거대비 수치 변화는 미미하며 24년은 평균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10.1.4.1 - 16> 수질측정망조사 결과(pH)

년도 / 지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뚝도	7.7	8.1	7.8	7.8	8	7.9	7.8	7.7	8.3	7.9	7.9
보광	7.4	7.8	7.6	7.6	7.7	7.7	7.5	7.6	7.9	7.5	7.6
성북천	7.7	7.7	7.8	7.8	7.4	7.5	7.3	7.3	7.4	7.5	7.5
양재천2	7.8	7.7	7.7	7.4	7.9	7.4	6.8	7.2	7.1	7.5	7.5
우이천	8.2	8.1	8.2	8.1	8.2	8.2	7.9	8	8	8.4	8.1
중랑천6	7.5	7.4	7.2	7.3	7.4	7.4	7.2	7.2	7	7	7.3
청계천2	7.9	8.1	7.7	7.9	7.8	7.6	7.5	7.5	7.8	7.9	7.8
청계천3	8.1	8	8.1	8	8	8	7.6	7.9	7.6	7.9	7.9

자료 : 물환경정보시스템(https://water.nier.go.kr)

(2) DO

◦ 최근 10년간 하천 평균 DO농도는 우이천 지점이 12.3으로 가장 높고, 중랑천 지점이 8.3으로 가장 낮았다.

◦ 우이천을 제외한 전지점에서 10년 평균보다 낮은 값을 보이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0.1.4.1 - 17> 수질측정망조사 결과(DO)

년도 / 지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뚝도	10	10.3	10.6	10.6	10	10.3	9.2	9.2	10	9.2	9.9
보광	9	9.4	10.3	9.9	9.7	9.8	9	10	10.3	9.5	9.7
성북천	10.6	12.6	14.1	13.6	10.5	10	9.2	10.7	9.1	9.5	11.0
양재천2	10.1	11	10.6	10.8	11.3	10.2	10.6	9.8	10.1	10.2	10.5
우이천	11.4	12.3	12.3	12.5	13.3	12	12	12	12.1	12.9	12.3
중랑천6	6.5	7.5	8.8	8.7	8.6	8.4	8.4	8.8	8.9	8.4	8.3
청계천2	11	11.2	11.3	11.1	11.1	10.6	10.8	10.2	10.6	10.7	10.9
청계천3	11.3	11.5	11.7	11.6	12.2	10.8	9.8	10.3	10.5	11.2	11.1

자료 : 물환경정보시스템(https://water.nier.go.kr)

(3) BOD

◦ 최근 10년간 하천 평균 BOD농도는 중랑천6 지점이 가장 높고, 청계천2 지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과거 10년 평균에 비해 24년 값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환경정책기본법」의 수질환경기준상 '좋음'(Ia등급: BOD ≤1mg/L) 및 '약간 좋음'(Ib등급: BOD 1~2mg/L) 수준에 해당되어 관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0.1.4.1 - 18> 수질측정망조사 결과(BOD)

지점 \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뚝도	2	1.8	1.3	1.2	1.4	1.4	1.6	1	1.3	1.7	1.5
보광	2.9	2.3	1.5	1.7	1.5	1.4	1.8	0.9	1.6	2.2	1.8
성북천	1.9	1.2	1.6	1.5	0.6	0.7	1.1	1.2	1.1	0.8	1.2
양재천2	1.4	1.1	1.4	1.9	1.1	0.8	1.3	2	1.6	1.6	1.4
우이천	1.5	1.2	1.8	1.7	1.2	1	1.2	2.1	1.2	1.4	1.4
중랑천6	7	6.7	5.9	5.6	4.2	1.8	2.6	3.3	1.8	2.9	4.2
청계천2	0.7	0.8	0.8	0.9	0.5	0.7	0.9	0.9	0.7	0.8	0.8
청계천3	1.7	1.4	1.4	1.6	0.9	0.9	1.4	1.6	1.7	1.4	1.4

자료 : 물환경정보시스템(https://water.nier.go.kr)

(4) COD

◦ 최근 10년간 하천 평균 COD농도는 중랑천6 지점이 가장 높고, 청계천2 지점이 가장 낮았다.

◦ 10년 평균을 기준으로 최근 몇 년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0.1.4.1 - 19> 수질측정망조사 결과(COD)

지점 \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뚝도	5.1	5	4.8	4.5	4.5	4.4	4.9	4	3.8	4.5	4.6
보광	6	5.5	5.1	5.1	4.8	4.8	5	4.1	4.5	4.9	5.0
성북천	4.2	2.5	2.5	2.7	1.7	2	2.5	2.6	2.5	2.2	2.5
양재천2	5.2	3.7	3.5	3.6	3.9	3.1	3.7	4.9	4.2	4.4	4.0
우이천	5.2	3.2	2.8	2.8	3.4	2.9	3.5	3.9	3.3	3.8	3.5
중랑천6	10.3	7.8	6.2	6.2	6.7	6.1	6.4	6.1	5.7	6.3	6.8
청계천2	3.1	2.6	2.2	2.1	1.9	2.2	2.6	2.4	1.9	2	2.3
청계천3	3.8	3.2	2.6	2.8	2.5	2.3	2.6	3.6	2.8	2.7	2.9

자료 : 물환경정보시스템(https://water.nier.go.kr)

(5) SS

◦ 최근 10년간 하천 평균 SS 농도는 중랑천6 지점이 가장 높고, 성북천 지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 또한 마찬가지로 10년치 평균값에 비해 대부분 감소추세로 보이지만 일부 양재천2 지점과 청계천3 지점에서 평균치보다 다소 높은 값을 보였다.

<표 10.1.4.1 - 20> 수질측정망조사 결과(SS)

지점 \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뚝도	4.8	6	12.9	6.2	5.8	6.7	8.2	8.8	6.6	6	7.2
보광	5.8	7.2	11.7	7.6	6.6	7.6	6.8	7.1	8.5	10	7.9
성북천	4.2	1.4	4.3	4.3	1.8	1.7	2.5	2	2.1	2.2	2.7
양재천2	5.5	2.9	4.7	5.9	7.1	4.3	6.4	8.8	5.7	10.1	6.1
우이천	5.8	1.7	3.5	5	2.7	4.9	5.6	4.6	5.6	6	4.5
중랑천6	14.4	4.6	7.9	8.2	8	9	7.9	6.9	6.6	7.6	8.1
청계천2	2.6	1.2	2.3	2.5	2.1	1.6	3.5	3.7	4.1	4.6	2.8
청계천3	3.7	2.3	4	3.3	4.4	2.3	3.8	9.8	4.5	8.4	4.7

자료 : 물환경정보시스템(https://water.nier.go.kr)

(6) T-N

◦ 최근 10년간 하천 평균 T-N농도는 중랑천6 지점이 가장 높고, 청계천2 지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1.4.1 - 21> 수질측정망조사 결과(T-N)

지점 \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뚝도	3.638	3.932	3.285	3.397	3.155	3.123	2.932	2.999	2.412	2.528	3.140
보광	5.246	5.204	4.24	4.525	3.828	4.252	4.289	4.065	3.489	3.739	4.288
성북천	2.549	4.209	4.469	4.709	4.96	5.313	4.771	4.299	4.237	3.625	4.314
양재천2	5.852	5.924	5.67	5.63	5.335	4.996	5.243	6.431	6.402	5.157	5.664
우이천	6.181	5.909	6.58	5.741	5.948	4.93	4.745	4.195	4.733	6.708	5.567
중랑천6	12.627	13.57	13.266	12.605	12.318	11.703	11.466	11.438	11.799	12.659	12.345
청계천2	2.308	2.599	2.283	2.582	2.443	2.48	2.49	2.612	2.434	2.515	2.475
청계천3	2.508	2.91	2.685	3.042	2.707	2.744	3.091	2.973	2.958	2.631	2.825

자료 : 물환경정보시스템(https://water.nier.go.kr)

(7) T-P

◦ 최근 10년간 하천 평균 T-P농도는 중랑천6 지점이 가장 높고, 청계천2 지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랑천6을 제외하고는 전지점에서 10년치 평균보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0.1.4.1 - 22> 수질측정망조사 결과(T-P)

지점 \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뚝도	0.073	0.054	0.065	0.045	0.043	0.042	0.073	0.065	0.03	0.036	0.053
보광	0.217	0.08	0.073	0.066	0.047	0.068	0.084	0.06	0.042	0.059	0.080
성북천	0.04	0.038	0.037	0.04	0.024	0.023	0.042	0.042	0.031	0.022	0.034
양재천2	0.11	0.093	0.067	0.075	0.094	0.037	0.123	0.173	0.113	0.068	0.095
우이천	0.031	0.032	0.026	0.046	0.057	0.027	0.049	0.043	0.037	0.031	0.038
중랑천6	1.151	0.323	0.122	0.174	0.193	0.115	0.175	0.162	0.116	0.102	0.263
청계천2	0.012	0.02	0.01	0.019	0.013	0.01	0.014	0.031	0.014	0.01	0.015
청계천3	0.036	0.047	0.035	0.048	0.039	0.031	0.048	0.088	0.076	0.04	0.049

자료 : 물환경정보시스템(https://water.nier.go.kr)

(8) TOC

◦ 최근 10년간 하천 평균 TOC농도는 중랑천6 지점이 타 지점에 비해 다소 높은 값을 보이며, 이는 수질 환경기준 '보통(III)' 등급(5 mg/L 이하) 을 상회하는 수치로 조사되었다.

<표 10.1.4.1 - 23> 수질측정망조사 결과(TOC)

지점 \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뚝도	2.6	2.3	2.4	2.2	2.3	2.2	1.8	2.5	2.4	2.2	2.3
보광	3	2.9	2.5	2.4	2.4	2.4	2.1	2.6	2.6	2.4	2.5
성북천	2	1.3	1.5	1.6	1.1	1.3	1.4	1.5	1.6	1.6	1.5
양재천2	3	2.3	2.4	2.4	2.5	2.1	2.3	2.7	2.8	3	2.6
우이천	2.5	1.9	2	2	2.1	1.8	1.9	2.1	2.1	2.7	2.1
중랑천6	5.2	4.6	4.3	4.1	4.3	3.7	3.6	3.8	4	4.5	4.2
청계천2	1.7	1.4	1.4	1.5	1.4	1.4	1.4	1.5	1.5	1.6	1.5
청계천3	1.9	1.7	1.6	1.8	1.6	1.6	1.7	1.9	2.1	2.1	1.8

자료 : 물환경정보시스템(https://water.nier.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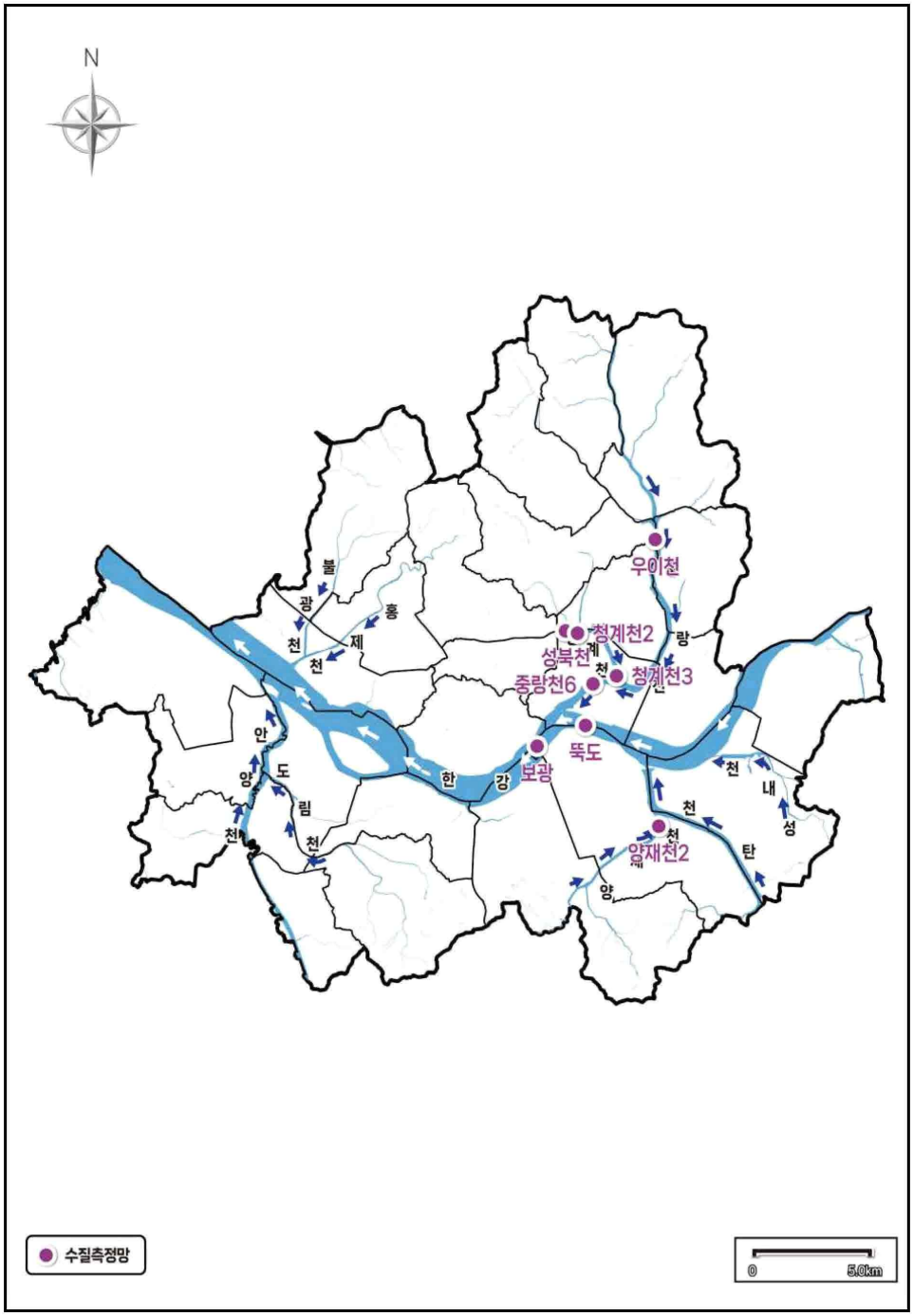

(그림 10.1.4.1 - 3) 수질측정망 위치도

<표 10.1.4.1 - 24> 수질 및 수생태계 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 시행령 제2조 관련)

가. 하천

1)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항목	기준값(mg/L)	항목	기준값(mg/L)
카드뮴(Cd)	0.005 이하	비소(As)	0.05 이하
시안(CN)	검출되어서는 안 됨 (검출한계 0.01)	수은(Hg)	검출되어서는 안 됨 (검출한계 0.001)
유기인	검출되어서는 안 됨 (검출한계 0.0005)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검출되어서는 안 됨 (검출한계 0.0005)
납(Pb)	0.05 이하	6가 크롬(Cr^{6+})	0.05 이하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0.5 이하	사염화탄소	0.004 이하
1,2-디클로로에탄	0.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4 이하
디클로로메탄	0.02 이하	벤젠	0.01 이하
클로로포름	0.08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008 이하
안티몬	0.02 이하	1,4-다이옥세인	0.05 이하
포름알데히드	0.5 이하	헥사클로로벤젠	0.00004 이하

2) 생활환경 기준

등급		상태 (캐릭터)	기준								
			수소이온농도 (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mg/L)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mg/L)	총유기탄소량 (TOC) (mg/L)	부유물질량 (mg/L)	용존산소량 (DO) (mg/L)	총인 (T-P) (mg/L)	대장균군 (군수/100 mL)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매우 좋음	Ia		6.5~8.5	1 이하	2 이하	2 이하	25 이하	7.5 이상	0.02 이하	50 이하	10 이하
좋음	Ib		6.5~8.5	2 이하	4 이하	3 이하	25 이하	5.0 이상	0.04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 좋음	II		6.5~8.5	3 이하	5 이하	4 이하	25 이하	5.0 이상	0.1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III		6.5~8.5	5 이하	7 이하	5 이하	25 이하	5.0 이상	0.2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 나쁨	IV		6.0~8.5	8 이하	9 이하	6 이하	100 이하	2.0 이상	0.3 이하	-	-
나쁨	V		6.0~8.5	10 이하	11 이하	8 이하	쓰레기 등이 떠 있지 아니할 것	2.0 이상	0.5 이하	-	-
매우 나쁨	VI		-	10 초과	11 초과	8 초과	-	2.0 미만	0.5 초과	-	-

비고 : 1.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가. 매우 좋음 :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나. 좋음 :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다. 약간 좋음 :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라. 보통 :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마. 약간 나쁨 :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바. 나쁨 :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않으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사. 매우 나쁨 :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아. 용수는 당해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자. 수소이온농도(pH) 등 각 기준항목에 대한 오염도 현황, 용수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맞는 처리방법에 따라 용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음.

자료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 <개정 2022.12.06.>

7) 지하수측정망 현황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7조 (측정망의 설치 등)에 의해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지하수측정망의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10년(2015~2024년)간의 지하수 수질 현황을 분석하였다.

◦ 서울시의 지하수측정망은 국가관리측정망 3개소, 국가오염우려측정망 36개소, 보조수질측정망 100개소에서 지하수 수질이 측정되고 있다.

◦ 서울시 가축분뇨 발생 지점 영향권에 해당되는 지하수측정망을 살펴보면 강북구 2지점, 성동구 3지점, 서초구 3지점, 경기도 과천시 6지점이 있다.

가) 조사시기

<표 10.1.4.1 - 25> 조사항목

구분	조사시기	비 고
지하수측정망	2015년 ~ 2023년	

나) 조사지점

◦ 서울시 가축분뇨 발생지점 영향권 내 지하수측정망 현황

영향권	측정망종류	측정소명	대권역	중권역	표준단위유역	주소
성동구	국가오염우려측정망	성동성수1	한강	한강서울	중랑천합류전	성동구 성수동1가 685-715
	국가오염우려측정망	성동성수3	한강	한강서울	중랑천합류전	성동구 성수동1가 656-1244
	보조수질측정망	성동성수	한강	한강서울	중랑천합류전	성동구 성수동1가 13-109
서초구	국가오염우려측정망	강남개포	한강	한강서울	탄천하류	강남구 개포동 1164-2
	보조수질측정망	서초양재	한강	한강서울	탄천하류	서초구 양재동 202
	보조수질측정망	서초방배	한강	한강서울	한강대교수위표	서초구 방배동 479-5
강북구	국가관리측정망	서울장위	한강	한강서울	중랑천하류	성북구 장위동 270-1 장위빗물펌프장 내
	보조수질측정망	벌말어린이공원	한강	한강서울	중랑천하류	강북구 번동 235
과천시	국가관리측정망	과천과천	한강	한강서울	탄천하류	과천시 과천동 550
	국가오염측정망	과천관문_천부	한강	한강서울	탄천하류	과천시 관문동 3
	국가오염측정망	과천관문_심부2	한강	한강서울	탄천하류	과천시 관문동 3
	국가오염우려측정망	과천주암3	한강	한강서울	탄천하류	과천시 주암동 37-1
	국가오염우려측정망	과천주암1	한강	한강서울	탄천하류	과천시 주암동 110-1
	국가오염우려측정망	과천주암4	한강	한강서울	탄천하류	과천시 주암동 300

자료 : 국가지하수정보센터(https://www.gims.go.kr/)

다) 조사항목

<표 10.1.4.1 - 26> 조사항목

구분	항목	비 고
지하수질	pH, 총대장균군,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카드뮴, 비소, 페놀, 납,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 벤젠	

라) 조사결과

◦ 지하수측정망 조사결과, pH는 불검출~8.2, 총대장균군은 불검출~22.3군수/100mL, 질산성질소는 불검출~22.3mg/L, 염소이온은 불검출~155.1mg/L, 카드뮴은 불검출~17.45mg/L, 비소는 불검출~0.01mg/L, 페놀은 불검출~0.005mg/L, 납은 불검출~84mg/L,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불검출~0.006mg/L, 트리클로로에틸렌은 불검출~0.094mg/L, 1,1,1-트리클로로에탄은 불검출~0.004mg/L, 벤젠은 불검출~0.001mg/L로 조사되었다.

<표 10.1.4.1 - 27> 지하수측정망 조사결과(1)

영향권	관측지점	년도	분기	pH	총대장균군 (군수/100mL)	질산성질소 (mg/L)	염소이온 (mg/L)
서초구	강남개포	2023	상반기	6.5	0	0.9	161.9
서초구	강남개포	2023	하반기	불검출	해당없음	불검출	6.6
서초구	강남개포	2022	상반기	6.5	0	2	119.5
서초구	강남개포	2022	하반기	6.8	10	1.2	155.1
서초구	강남개포	2021	상반기	6.5	불검출	1.7	123.8
서초구	강남개포	2021	하반기	7.4	불검출	1.7	141.7
서초구	강남개포	2020	상반기	7.1	0	3.7	139.1
서초구	강남개포	2020	하반기	7.8	1	1.7	20.9
서초구	강남개포	2019	상반기	7.2	0	2.2	112.9
서초구	강남개포	2019	하반기	6.8	8	1.2	134.1
서초구	강남개포	2018	상반기	6.5	0	2.2	128.1
서초구	강남개포	2018	하반기	7.6	0	1.5	154.3
서초구	서초양재	2023	상반기	7.4	0	0.7	57.9
서초구	서초양재	2023	하반기	7.6	0	1.8	14.9
서초구	서초양재	2022	상반기	7.1	0	0.3	65
서초구	서초양재	2022	하반기	6.7	0	0.4	56.9
서초구	서초양재	2021	상반기	7	0	4.9	13.5
서초구	서초양재	2021	하반기	6.5	1	5.1	13.5
서초구	서초양재	2020	상반기	8.1	0	1.2	6.4
서초구	서초양재	2020	하반기	7.1	0	0.3	59.9
서초구	서초양재	2019	상반기	6.8	0	0.3	54.9
서초구	서초양재	2019	하반기	8.2	0	1.6	8.9
서초구	서초양재	2018	상반기	6.9	불검출	불검출	66.7
서초구	서초양재	2018	하반기	7.1	0	0.6	62.4
서초구	서초양재	2017	상반기	6.8	불검출	0.1	64
서초구	서초양재	2017	하반기	6.6	불검출	불검출	57.8
서초구	서초양재	2016	상반기	7.3	불검출	1.7	71
서초구	서초양재	2016	하반기	7.7	불검출	불검출	58
서초구	서초양재	2015	상반기	6.3	불검출	불검출	2
서초구	서초양재	2015	하반기	6.5	불검출	불검출	2

<표 계속> 지하수측정망 조사결과(1)

영향권	관측지점	년도	분기	pH	총대장균군 (군수/100mL)	질산성질소 (mg/L)	염소이온 (mg/L)
서초구	서초방배	2023	상반기	8.2	0	0.3	84.2
서초구	서초방배	2023	하반기	7.2	0	1.7	15.5
서초구	서초방배	2022	상반기	7.9	0	0.3	94
서초구	서초방배	2022	하반기	8.1	0	0.3	89.5
서초구	서초방배	2021	상반기	8.1	0	0.2	90.5
서초구	서초방배	2021	하반기	7.9	2	0.3	90.8
서초구	서초방배	2020	상반기	8.2	0	0.3	78.4
서초구	서초방배	2020	하반기	6.8	0	불검출	91.1
서초구	서초방배	2019	상반기	7.8	0	0.3	84.1
서초구	서초방배	2019	하반기	8	0	불검출	92.6
서초구	서초방배	2018	상반기	8	불검출	불검출	83.4
서초구	서초방배	2018	하반기	8	0	0.8	6.5
서초구	서초방배	2017	상반기	7.9	불검출	불검출	76
서초구	서초방배	2017	하반기	7.9	불검출	불검출	103.5
서초구	서초방배	2016	상반기	8	불검출	1.4	109
서초구	서초방배	2016	하반기	7.9	불검출	불검출	75
서초구	서초방배	2015	상반기	7.8	불검출	불검출	89
서초구	서초방배	2015	하반기	7.9	불검출	불검출	87
성동구	성동성수1	2023	상반기	7	0	불검출	93.3
성동구	성동성수1	2023	하반기	불검출	해당없음	불검출	6.8
성동구	성동성수3	2023	상반기	6.7	0	14.3	42.1
성동구	성동성수3	2023	하반기	불검출	해당없음	불검출	6.6
성동구	성동성수3	2022	상반기	6.1	0	17.3	57
성동구	성동성수3	2022	하반기	6.6	0	12.6	57.2
성동구	성동성수3	2021	상반기	6.8	불검출	13.8	51.5
성동구	성동성수3	2021	하반기	6.5	불검출	13.7	48.1
성동구	성동성수3	2020	상반기	8	0	22.3	81.9
성동구	성동성수3	2020	하반기	6.6	0	15.2	56.1
성동구	성동성수3	2019	상반기	6.4	0	18	49.4
성동구	성동성수3	2019	하반기	6.8	0	15.8	44.9
성동구	성동성수3	2018	상반기	6.8	0	16.2	50.1
성동구	성동성수3	2018	하반기	7.9	0	13.1	47.5
성동구	성동성수3	2017	상반기	6.7	0	14.5	58.3
성동구	성동성수3	2017	하반기	7.7	5	11.4	38.8
성동구	성동성수3	2016	상반기	7.1	53	18.5	66.2
성동구	성동성수3	2016	하반기	6.7	0	16.8	60.2

<표 계속> 지하수측정망 조사결과(1)

영향권	관측지점	년도	분기	pH	총대장균군 (군수/100mL)	질산성질소 (mg/L)	염소이온 (mg/L)
성동구	성동성수	2023	상반기	7	0	0.4	72.2
성동구	성동성수	2023	하반기	6.9	0	0.7	66.6
성동구	성동성수	2022	상반기	6.9	1	0.3	78.4
성동구	성동성수	2022	하반기	7	0	4.1	19.3
성동구	성동성수	2021	상반기	6.9	3	불검출	69.4
성동구	성동성수	2021	하반기	7.1	0	0.2	74.2
성동구	성동성수	2020	상반기	6.9	0	불검출	78.3
성동구	성동성수	2020	하반기	7	0	0	75.2
성동구	성동성수	2019	상반기	6.8	0	불검출	77.9
성동구	성동성수	2019	하반기	7.2	0	불검출	63.6
성동구	성동성수	2018	상반기	7	0	0	81.3
성동구	성동성수	2018	하반기	6.9	0	0	0
성동구	성동성수	2017	상반기	6.9	400	불검출	86
성동구	성동성수	2017	하반기	7.1	불검출	불검출	69.4
성동구	성동성수	2016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	2016	하반기	7	불검출	0.2	70
성동구	성동성수	2015	상반기	6.9	불검출	0.2	76
성동구	성동성수	2015	하반기	6.9	불검출	0.2	76
강북구	서울장위	2022	상반기	6.4	2	8.4	31.8
강북구	서울장위	2022	하반기	6.6	30	7	31.4
강북구	서울장위	2023	상반기	7.7	불검출	8.6	35.2
강북구	서울장위	2023	하반기	7.3	6	7.4	29.6
강북구	벌말어린이공원	2021	상반기	7.1	0	8.7	39.6
강북구	벌말어린이공원	2021	하반기	6.6	불검출	10.8	42.9
강북구	벌말어린이공원	2022	상반기	6.5	230	불검출	42.7
강북구	벌말어린이공원	2022	하반기	6.4	0	0.4	6.4
강북구	벌말어린이공원	2023	상반기	7.1	불검출	0.5	10.7
강북구	벌말어린이공원	2023	하반기	6.1	불검출	0.5	12.8
서초구	과천과천	2023	하반기	6.6	250	0.4	20.2
서초구	과천과천	2023	상반기	6.5	650	0.4	24.8
서초구	과천과천	2022	하반기	6.8	2	1	21.2
서초구	과천과천	2022	상반기	7	불검출	5.1	88
서초구	과천관문(천부)	2023	하반기	5.6	440	5	38.8
서초구	과천관문(천부)	2023	하반기	5.3	1	4.8	44.5
서초구	과천관문(천부)	2023	상반기	5.8	5	4.2	36.1
서초구	과천관문(천부)	2023	상반기	5.6	110	4.2	35.8

<표 계속> 지하수측정망 조사결과(1)

영향권	관측지점	년도	분기	pH	총대장균군 (군수/100mL)	질산성질소 (mg/L)	염소이온 (mg/L)
서초구	과천관문(심부2)	2023	하반기	6.8	33	9.7	37.2
서초구	과천관문(심부2)	2023	하반기	6.2	33	9.7	35.9
서초구	과천관문(심부2)	2023	상반기	6.8	불검출	11.7	33.6
서초구	과천관문(심부2)	2023	상반기	6.6	2	11.3	41.8
서초구	과천주암3	2023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주암3	2023	하반기	불검출	해당없음	불검출	6.6
서초구	과천주암3	2022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주암1	2023	상반기	6.5	불검출	3.4	11
서초구	과천주암1	2023	하반기	불검출	해당없음	불검출	6.1
서초구	과천주암1	2022	상반기	6.2	불검출	4.1	15.4
서초구	과천주암1	2022	하반기	6.4	불검출	3.1	7.8
서초구	과천주암1	2021	상반기	7.5	불검출	5.2	20.2
서초구	과천주암1	2021	하반기	6.4	불검출	3.6	12.3
서초구	과천주암1	2020	상반기	6.9	불검출	4	16.4
서초구	과천주암1	2020	하반기	7.5	불검출	3.8	13
서초구	과천주암1	2019	상반기	7.3	불검출	3.6	16.9
서초구	과천주암1	2019	하반기	6.8	불검출	3.7	15.1
서초구	과천주암1	2018	상반기	6.6	불검출	2.9	13.4
서초구	과천주암1	2018	하반기	6.8	불검출	3.3	13.2
서초구	과천주암1	2017	상반기	6.4	불검출	2.6	16.2
서초구	과천주암1	2017	하반기	7.4	불검출	3.3	14.4
서초구	과천주암1	2016	상반기	6.5	검출	3.3	14.7
서초구	과천주암1	2016	하반기	7.1	불검출	3	16.5
서초구	과천주암1	2015	상반기	6.2	불검출	2.5	12
서초구	과천주암1	2015	하반기	6.5	검출	2.8	12.5
서초구	과천주암4	2023	하반기	불검출	해당없음	불검출	7

<표 10.1.4.1 - 28> 지하수측정망 조사결과(2)

영향권	관측지점	년도	분기	카드뮴 (mg/L)	비소 (mg/L)	페놀 (mg/L)	납 (mg/L)
서초구	강남개포	2023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강남개포	2023	하반기	0.54	불검출	불검출	84
서초구	강남개포	2022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강남개포	2022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강남개포	2021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강남개포	2021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강남개포	2020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강남개포	2020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강남개포	2019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강남개포	2019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강남개포	2018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강남개포	2018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양재	2023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양재	2023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양재	2022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양재	2022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양재	2021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양재	2021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양재	2020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양재	2020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양재	2019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양재	2019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양재	2018	상반기	불검출	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양재	2018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양재	2017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양재	2017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양재	2016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양재	2016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양재	2015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양재	2015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방배	2023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방배	2023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방배	2022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방배	2022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방배	2021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방배	2021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표 계속> 지하수측정망 조사결과(2)

영향권	관측지점	년도	분기	카드뮴 (mg/L)	비소 (mg/L)	페놀 (mg/L)	납 (mg/L)
서초구	서초방배	2020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방배	2020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방배	2019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방배	2019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방배	2018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방배	2018	하반기	불검출	0.01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방배	2017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방배	2017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방배	2016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방배	2016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방배	2015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방배	2015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1	2023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1	2023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
성동구	성동성수3	2023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3	2023	하반기	14.69	불검출	불검출	0
성동구	성동성수3	2022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3	2022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3	2021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3	2021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3	2020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3	2020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3	2019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3	2019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3	2018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3	2018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3	2017	상반기	0	0	불검출	0
성동구	성동성수3	2017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0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3	2016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3	2016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	2023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	2023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	2022	상반기	0	0	0	0
성동구	성동성수	2022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	2021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	2021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표 계속> 지하수측정망 조사결과(2)

영향권	관측지점	년도	분기	카드뮴 (mg/L)	비소 (mg/L)	페놀 (mg/L)	납 (mg/L)
성동구	성동성수	2020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	2020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	2019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	2019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	2018	상반기	0	0	0	0
성동구	성동성수	2018	하반기	0	0	0	0
성동구	성동성수	2017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	2017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	2016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	2016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	2015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	2015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서울장위	2022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서울장위	2022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서울장위	2023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서울장위	2023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강북구	벌말어린이공원	2021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강북구	벌말어린이공원	2021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강북구	벌말어린이공원	2022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강북구	벌말어린이공원	2022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강북구	벌말어린이공원	2023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강북구	벌말어린이공원	2023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과천	2023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과천	2023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과천	2022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과천	2022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관문(천부)	2023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0.005	불검출
서초구	과천관문(천부)	2023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관문(천부)	2023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관문(천부)	2023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관문(심부2)	2023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관문(심부2)	2023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관문(심부2)	2023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관문(심부2)	2023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주암3	2023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주암3	2023	하반기	17.45	불검출	불검출	0

<표 계속> 지하수측정망 조사결과(2)

영향권	관측지점	년도	분기	카드뮴 (mg/L)	비소 (mg/L)	페놀 (mg/L)	납 (mg/L)
서초구	과천주암3	2022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주암1	2023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주암1	2023	하반기	3.7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주암1	2022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주암1	2022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주암1	2021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주암1	2021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주암1	2020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주암1	2020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주암1	2019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주암1	2019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주암1	2018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주암1	2018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주암1	2017	상반기	0	0	불검출	0
서초구	과천주암1	2017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0	불검출
서초구	과천주암1	2016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주암1	2016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주암1	2015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주암1	2015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주암4	2023	하반기	0.04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표 10.1.4.1 - 29> 지하수측정망 조사결과(3)

영향권	관측지점	년도	분기	테트라클로로 에틸렌(mg/L)	트리클로로 에틸렌(mg/L)	1,1,1-트리클로로 에탄(mg/L)	벤젠 (mg/L)
서초구	강남개포	2023	상반기	0.00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강남개포	2023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강남개포	2022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강남개포	2022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강남개포	2021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강남개포	2021	하반기	0.00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강남개포	2020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강남개포	2020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강남개포	2019	상반기	0.002	0	0	0
서초구	강남개포	2019	하반기	0	0	0	0
서초구	강남개포	2018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표 계속> 지하수측정망 조사결과(3)

영향권	관측지점	년도	분기	테트라클로로에틸렌(mg/L)	트리클로로에틸렌(mg/L)	1.1.1-트리클로로에탄(mg/L)	벤젠(mg/L)
서초구	강남개포	2018	하반기	0	0	0	0
서초구	서초양재	2023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양재	2023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양재	2022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양재	2022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양재	2021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양재	2021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양재	2020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양재	2020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양재	2019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양재	2019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양재	2018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양재	2018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양재	2017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양재	2017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양재	2016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양재	2016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양재	2015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양재	2015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방배	2023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방배	2023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방배	2022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방배	2022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방배	2021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방배	2021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방배	2020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방배	2020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방배	2019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방배	2019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방배	2018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방배	2018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방배	2017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방배	2017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방배	2016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방배	2016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서초방배	2015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표 계속> 지하수측정망 조사결과(3)

영향권	관측지점	년도	분기	테트라클로로에틸렌(mg/L)	트리클로로에틸렌(mg/L)	1.1.1-트리클로로에탄(mg/L)	벤젠(mg/L)
서초구	서초방배	2015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1	2023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1	2023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3	2023	상반기	0.003	0.002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3	2023	하반기	불검출	0.001	불검출	0.001
성동구	성동성수3	2022	상반기	0.003	0.004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3	2022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3	2021	상반기	0.002	0.003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3	2021	하반기	0.002	0.003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3	2020	상반기	0.002	0.006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3	2020	하반기	0.002	0.01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3	2019	상반기	0.003	0.006	0	0
성동구	성동성수3	2019	하반기	0.003	0.008	0	0
성동구	성동성수3	2018	상반기	불검출	0.005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3	2018	하반기	0	0.001	0	0
성동구	성동성수3	2017	상반기	0	0.072	0	0
성동구	성동성수3	2017	하반기	0.002	0.093	0	0
성동구	성동성수3	2016	상반기	0.0025	0.037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3	2016	하반기	0.006	0.094	0.004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	2023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	2023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	2022	상반기	0	0	0	0
성동구	성동성수	2022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	2021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	2021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	2020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	2020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	2019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	2019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	2018	상반기	0	불검출	0	0
성동구	성동성수	2018	하반기	0	0	0	0
성동구	성동성수	2017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	2017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	2016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	2016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성동성수	2015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표 계속> 지하수측정망 조사결과(3)

영향권	관측지점	년도	분기	테트라클로로에틸렌(mg/L)	트리클로로에틸렌(mg/L)	1,1,1-트리클로로에탄(mg/L)	벤젠(mg/L)
성동구	성동성수	2015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서울장위	2022	상반기	불검출	0.007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서울장위	2022	하반기	불검출	0.006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서울장위	2023	상반기	불검출	0.006	불검출	불검출
성동구	서울장위	2023	하반기	불검출	0.005	불검출	불검출
강북구	벌말어린이공원	2021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강북구	벌말어린이공원	2021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강북구	벌말어린이공원	2022	상반기	불검출	0.002	불검출	불검출
강북구	벌말어린이공원	2022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강북구	벌말어린이공원	2023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강북구	벌말어린이공원	2023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과천	2023	하반기	불검출	0.017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과천	2023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과천	2022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과천	2022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관문(천부)	2023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관문(천부)	2023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관문(천부)	2023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관문(천부)	2023	상반기	0.00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관문(심부2)	2023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관문(심부2)	2023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관문(심부2)	2023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관문(심부2)	2023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주암3	2023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주암3	2023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주암3	2022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주암1	2023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주암1	2023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주암1	2022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주암1	2022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주암1	2021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주암1	2021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주암1	2020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주암1	2020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주암1	2019	상반기	0	0	0	0
서초구	과천주암1	2019	하반기	0	0	0	0

<표 계속> 지하수측정망 조사결과(3)

영향권	관측지점	년도	분기	테트라클로로에틸렌(mg/L)	트리클로로에틸렌(mg/L)	1.1.1-트리클로로에탄(mg/L)	벤젠(mg/L)
서초구	과천주암1	2018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주암1	2018	하반기	0	0	0	0
서초구	과천주암1	2017	상반기	0	0	0	0
서초구	과천주암1	2017	하반기	0	0	0	0
서초구	과천주암1	2016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주암1	2016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주암1	2015	상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주암1	2015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서초구	과천주암4	2023	하반기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표 10.1.4.1 - 30> 지하수의 수질기준(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1조 관련)

항목 \ 이용목적별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
일반 오염 물질 (4개)	수소이온농도(pH)	5.8~8.5	6.0~8.5	5.0~9.0
	총대장균군	5,000 이하(군수/100mL)	-	-
	질산성질소	20 이하	20 이하	40 이하
	염소이온	250 이하	250 이하	500 이하
특정 유해 물질 (16개)	카드뮴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비소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시안	0.01 이하	0.01 이하	0.2 이하
	수은	0.001 이하	0.001 이하	0.001 이하
	다이아지논	0.02 이하	0.02 이하	0.02 이하
	파라티온	0.06 이하	0.06 이하	0.06 이하
	페놀류	0.005 이하	0.005 이하	0.01 이하
	납	0.1 이하	0.1 이하	0.2 이하
	크롬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이하	0.03 이하	0.06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	0.15 이하	0.3 이하	0.5 이하
	벤젠	0.015 이하	-	-
	톨루엔	1 이하	-	-
	에틸벤젠	0.45 이하	-	-
	크실렌	0.75 이하	-	-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염소이온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어업용수
   나. 지하수의 이용 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해수침입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염소이온 농도가 증가한 경우
2.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가 생활용수의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자료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1조 관련 [별표 9] <개정 2025. 1. 24.>

나.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

◦ 환경보전 목표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5-49호」 및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5, 환경부」를 참고하였으며, 수질'항목의 환경보전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본 계획구간은 중권역 "한강" 대권역, "한강서울", "한강잠실", "한강고양"중권역에 해당하며, 수질 목표기준은 Ⅱ(약간좋음)으로 조사되어 가축분뇨로 인해 수계에 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별표1] 환경기준 COD 4mg/L, TOC 3mg/L(Ib등급)이하를 목표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표 10.1.4.1 - 31> 환경보전목표기준 설정

구 분	법적기준	목표기준		비 고
중권역 물환경 목표기준	-	COD·TOC Ib(좋음)등급		한강대권역
2단계 수질오염총량 목표수질(서울특별시)	-	한강H	BOD 2.7kg/일, T-P 0.126kg/일	
		한강I	BOD 3.8kg/일, T-P 0.214kg/일	
		탄천A	BOD 4.0kg/일, T-P 0.314kg/일	
		안양A	BOD 6.2kg/일, T-P 0.320kg/일	
		굴포A	BOD 3.9kg/일, T-P 0.486kg/일	

자료 :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개정 2022.12.6.)
2.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환경부고시 제2018-6호
3. 2단계 서울특별시 한강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2021.08, 서울특별시

다. 환경평가

◦ 예측항목 및 범위 : 운영시 가축 두수 전망 및 가축분뇨 발생량 예측
◦ 예측방법 : 사업계획 자료 조사
◦ 예측결과
- 오염부하량에 따른 영향예측
서울시 가축분뇨발생으로 인한 수질오염부하는 통계적으로 무시 가능한 수준이며, 앞서 살펴본 수질측정망 지점(중랑천6, 탄천, 청계천 등)에서 관측되는 수질 문제는 도시화, 산업화, 하수처리 인프라의 한계 등 대규모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복합적 작용이 주원인 것으로 판단됨

1) 운영시

가) 서울특별시 축산계 오염부하량

◦ 서울특별시의 축산계 오염부하량은 「서울특별시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2025.09, 서울특별시」의 자료를 인용하였다.

(1) 전체 오염부하량

◦ 수질오염총량제와 연계하여 수질오염부하에 가축분뇨가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인구, 축산, 토지, 양식장, 산업폐수 등에 따른 발생부하를 탄천상류, 탄천하류, 성남수위표, 중랑천 합류전, 중랑천 상류, 청계천, 중랑천하류, 한강대교 지점의 1997-2019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종합 분석하였다.

◦ 지역별로 한강수계의 경우 수질오염부하량은 BOD 기준으로 서울시 44,314.65㎏/일, 경기도 22,116.28㎏/일로 서울이 경기도의 약 2배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 중 하수처리장이 서울 전체 배출부하량의 85%를 차지하며, 가축분뇨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비중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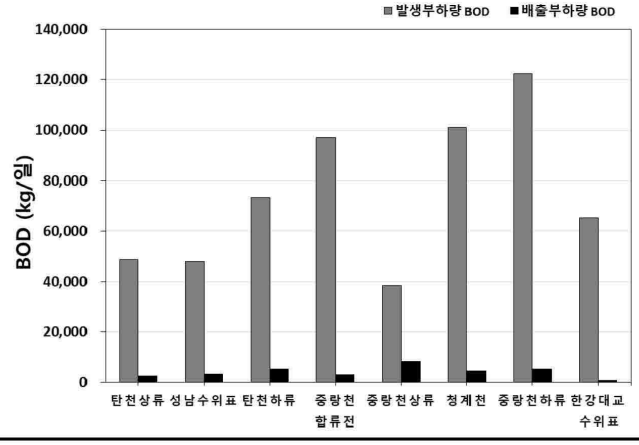

(그림 10.1.4.1 - 4) 2019년 기준 표준유역별 전체 BOD(kg/일) 부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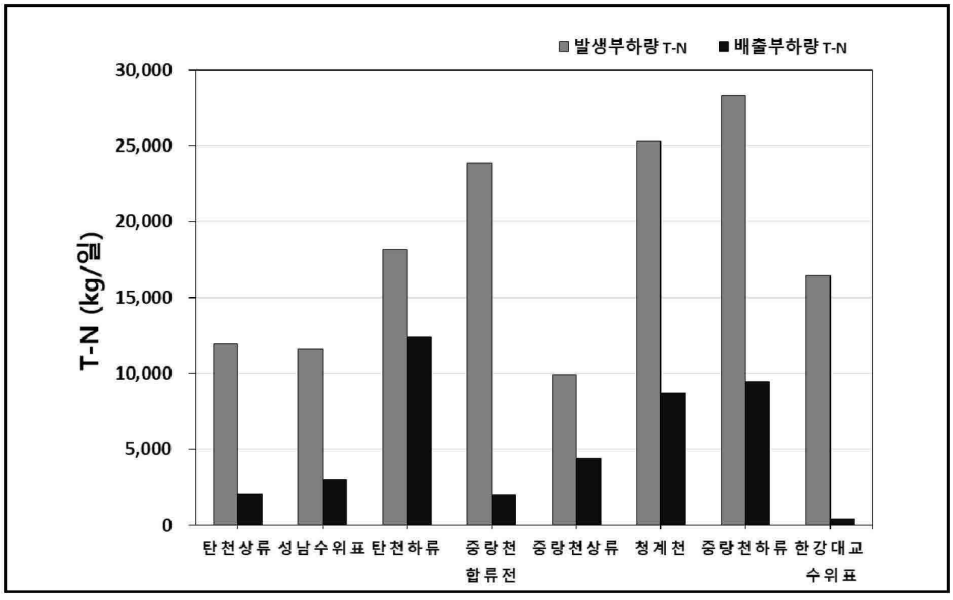

(그림 10.1.4.1 - 5) 2019년 기준 표준유역별 전체 T-N(kg/일) 부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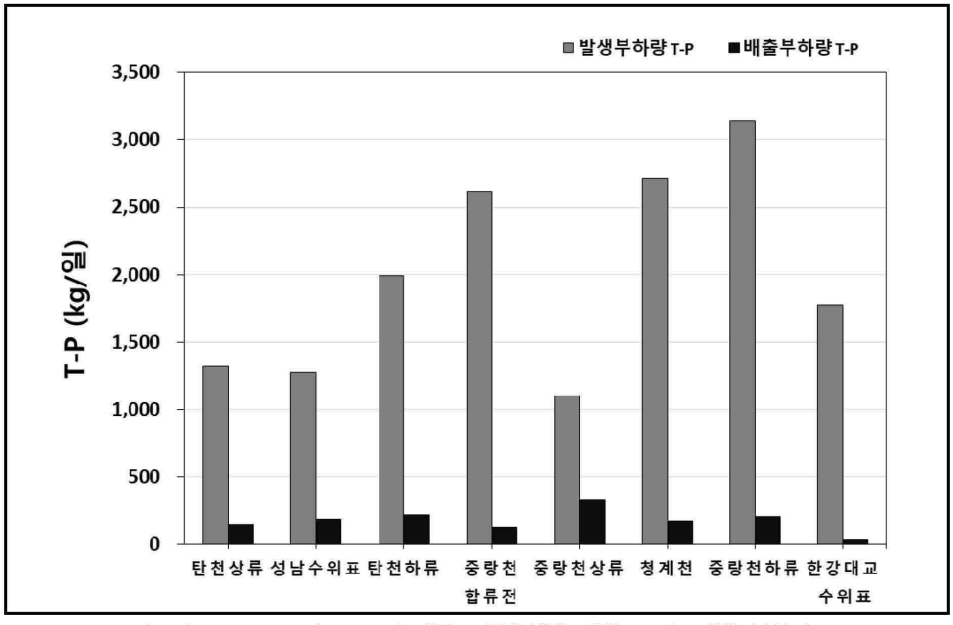

(그림 10.1.4.1 - 6) 2019년 기준 표준유역별 전체 T-P(kg/일) 부하량

(2) 축산 오염부하량

◦ 환경부 수질오염총량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 가축사육시설 인근 오염부하량을 살펴보았다.

◦ 2019년 기준 전국 가축분뇨 발생량은 전체 하폐수 발생량의 0.7%에 불과하지만, 수질오염부하량에서는 BOD 38.5%, T-N 27.5%, T-P 39.6%를 차지하였다.

◦ 농림수산식품부 자료 기준으로 오염부하량 산정 시, 2024년 기준 서울시 가축사육 현황은 한우 8두, 육우 1두, 젖소 9두로 제공하고 있다.

◦ 중랑천 유역의 경우, 중랑천 상류부 경기도 지역에서 소규모 축산시설 존재하나, 서울시 진입 후 축산계 오염부하량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중랑천 하류는 서울시 도심 지역으로 축산계 오염부하량 0에 근접하였다.

◦ 탄천 유역의 경우, 탄천 상류는 성남 지역의 소규모 축산시설로 인한 미미한 오염부하량 값을 보이고 있으며, 탄천 하류는 서울시 강남 지역으로 축산시설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 청계천은 복원 후 인공하천으로 상류에서 유입되는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주요 오염원으로, 축산계 오염부하량은 무시 가능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한강대교 지점의 경우, 상류 유역의 모든 축산계 오염부하량이 집적되나, 서울시 구간의 기여도는 0.1% 미만이다.

◦ 서울시 축산계 기여도는 전국 축산계 BOD 대비 0.00004% 수준으로 서울시 전체 오염부하량 대비 0.03% 미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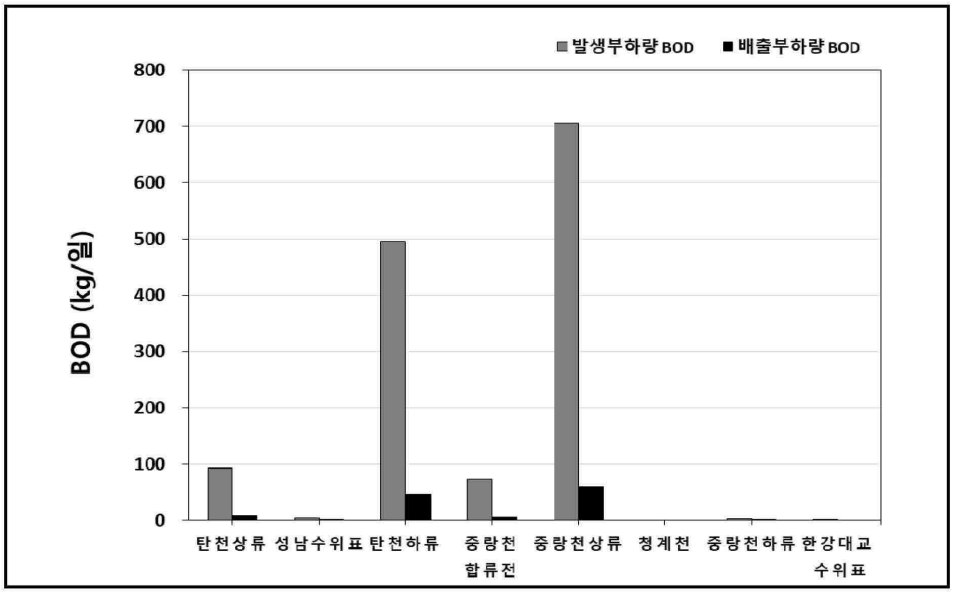

(그림 10.1.4.1 - 7) 2019년 기준 표준유역별 축산 BOD(kg/일) 부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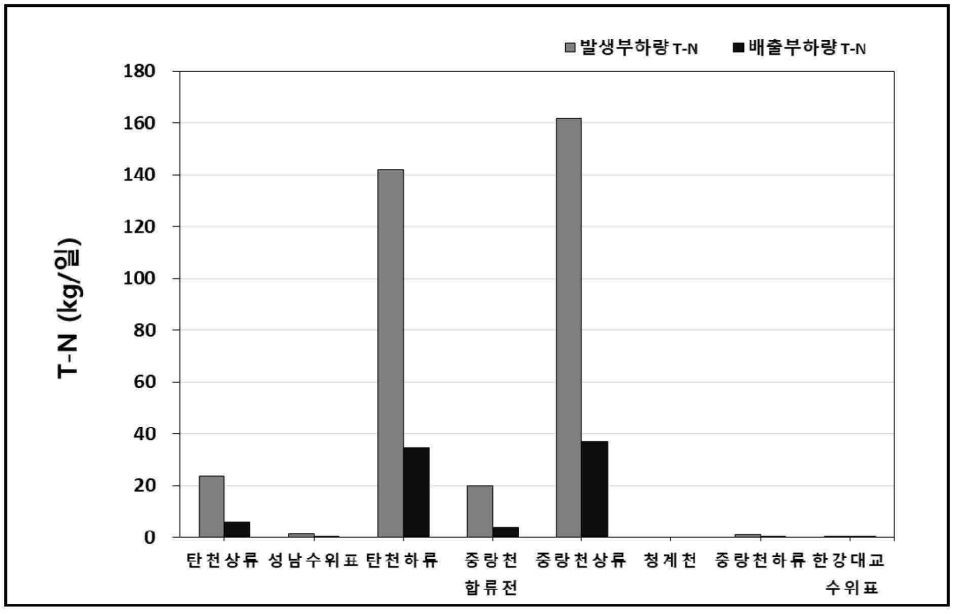

(그림 10.1.4.1 - 8) 2019년 기준 표준유역별 축산 T-N(kg/일) 부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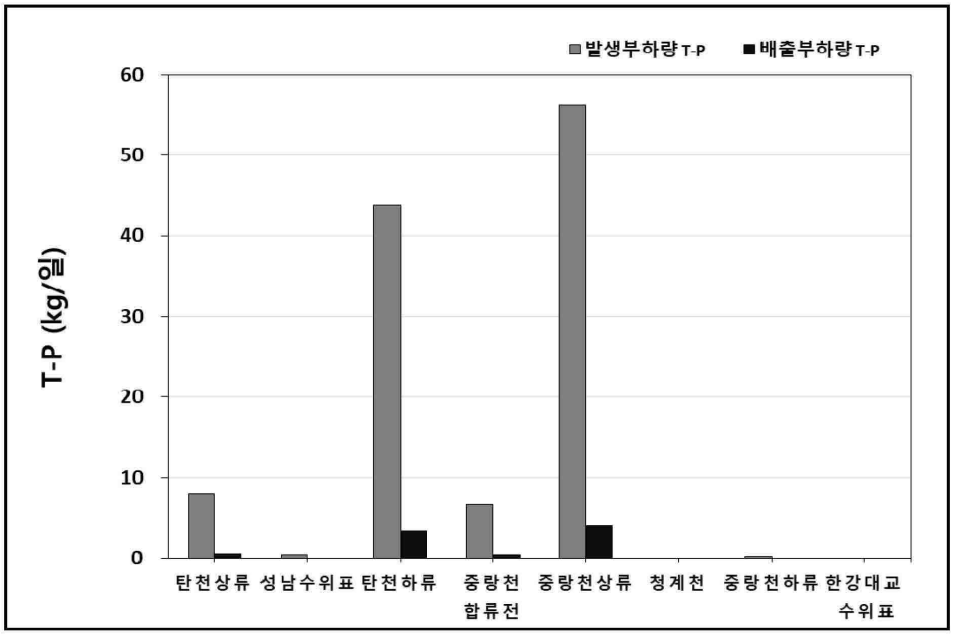

(그림 10.1.4.1 - 9) 2019년 기준 표준유역별 축산 T-P(kg/일) 부하량

<표 10.1.4.1 - 32> 탄천상류 표준유역 오염부하량(축산)

년도	발생(kg/일)			배출(kg/일)		
	BOD	T-N	T-P	BOD	T-N	T-P
1997	2,659.0	642.8	235.2	47.4	129.2	23.1
1998	2,501.1	605.2	222.3	45	123.2	21.9
1999	2,514.4	608.8	224.3	45.3	125.3	22.1
2000	2,103.9	501.3	184.8	37.7	101.4	17.4
2002	30,500.3	7,566.5	2,872.5	3,608.3	3,210.1	721.6
2003	45,052.0	16,733.5	4,334.2	6,458.5	9,807.5	1,241.9
2004	48,365.5	18,603.7	4,677.8	7,017.4	11,074.8	1,353.7
2005	51,204.1	19,420.0	4,952.4	7,349.9	11,423.3	1,419.5
2006	4,391.0	2,195.1	407.0	644.9	1,424.6	118.2
2013	2,990.3	735.5	277.5	139.7	133.1	161.0
2019	92.4	23.6	7.9	8.3	5.7	0.6

자료 :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s://www.wami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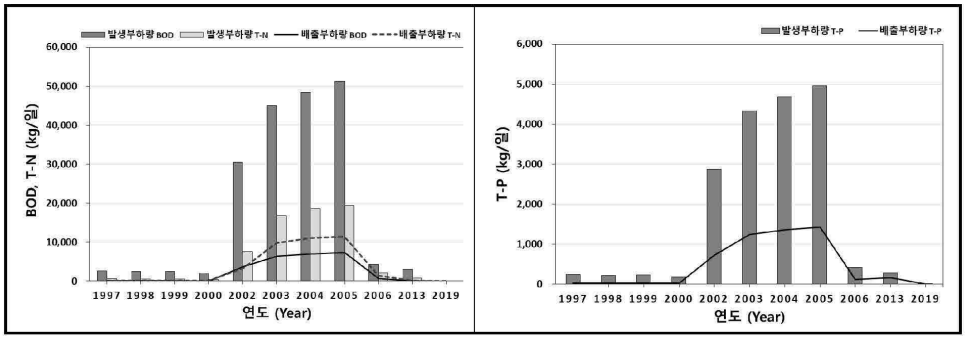

(그림 10.1.4.1 - 10) 탄천상류 축산 오염부하량 (1997-2019년)

<표 10.1.4.1 - 33> 성남수위표 표준유역 오염부하량(축산)

년도	발생(kg/일)			배출(kg/일)		
	BOD	T-N	T-P	BOD	T-N	T-P
1997	196.8	56.2	19.9	5.4	12.7	1.1
1998	182.8	52.2	18.5	5.2	11.9	1.2
1999	181.9	51.8	18.6	5.1	11.9	1.2
2000	194.3	54.6	19.3	5.5	12	1.2
2002	32,756.1	8,125.9	3,085.2	3,877.5	3,448.3	775.1
2003	48,384.4	17,971.0	4,654.8	6,936.2	10,532.8	1,333.7
2004	51,942.4	19,979.8	5,023.5	7,536.3	11,893.6	1,454.0
2005	54,990.7	20,856.3	5,318.7	7,893.3	12,268.0	1,524.7
2006	1,172.0	588.8	108.9	172.7	382.7	31.7
2013	3,035.6	746.6	281.7	141.8	135.1	163.5
2019	5.3	1.3	0.4	0.5	0.2	0

자료 :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s://www.wami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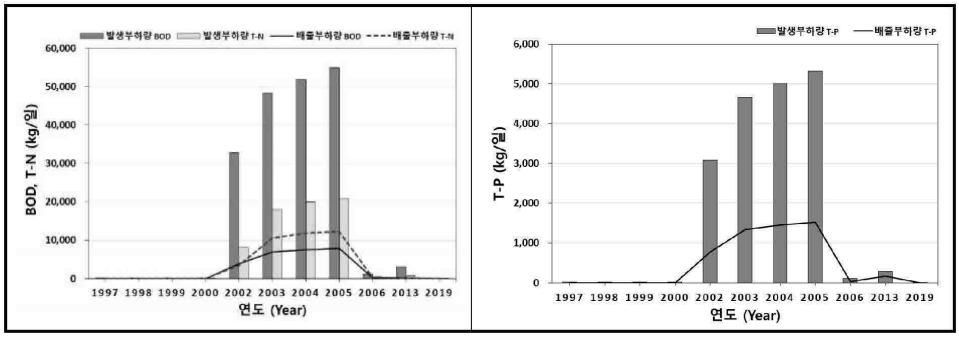

(그림 10.1.4.1 - 11) 성남수위표 축산 오염부하량 (1997-2019년)

<표 10.1.4.1 - 34> 탄천하류 표준유역 오염부하량(축산)

년도	발생(kg/일)			배출(kg/일)		
	BOD	T-N	T-P	BOD	T-N	T-P
1997	699.2	195.2	63.9	13.2	26.8	2.6
1998	709.2	199.6	65.1	13.1	26.8	2.5
1999	696.4	196.6	64.2	13	26.7	2.5
2000	816.6	226.9	77.7	17	37.1	3.4
2002	3,234.1	802.9	304.8	382.5	340.5	75.8
2003	4,778.3	1,771.40	460.1	684.9	1,037.0	131.2
2004	5,084.9	1,956.80	491.3	737.3	1,163.9	142.4
2005	5,382.9	2,040.30	520.4	772.2	1,200.2	149.1
2006	655.7	182	57.3	58.8	72.5	10.2
2013	2,854.30	702	264.9	133.3	127	153.7
2019	495.2	141.9	43.8	45.5	34.5	3.3

자료 :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s://www.wami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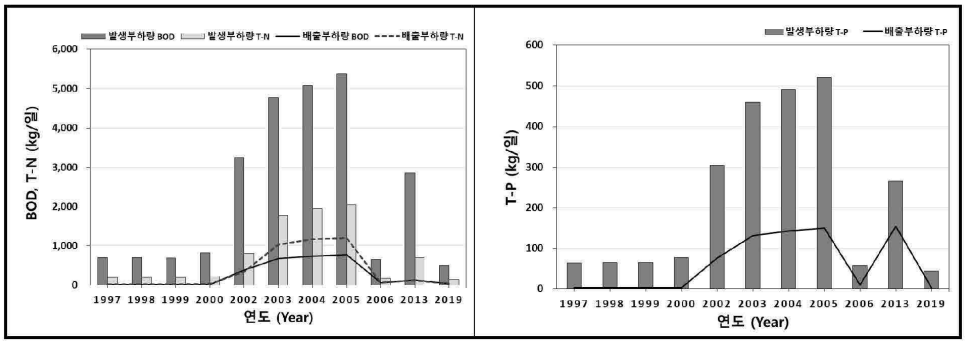

(그림 10.1.4.1 - 12) 탄천상류 축산 오염부하량 (1997-2019년)

<표 10.1.4.1 - 35> 중랑천 합류전 표준유역 오염부하량(축산)

년도	발생(kg/일)			배출(kg/일)		
	BOD	T-N	T-P	BOD	T-N	T-P
1997	901	245.2	85.8	22.2	51	6
1998	831.9	226.6	79.4	20.4	47.2	5.7
1999	826.2	225.1	78.9	20.2	47	5.6
2000	882	237.4	82.7	21.2	48.5	5.8
2002	4,131.2	1,025.8	389.4	489.7	435.9	96.6
2003	6,105.5	2,261.2	587.4	875.1	1,323.4	167.7
2004	6,480.1	2,493.8	626.1	939.2	1,483.4	181.1
2005	6,859.0	2,599.5	662.7	983.7	1,528.9	190
2006	88.2	28	8.2	10.3	13.5	1.9
2013	2,990.3	735.5	277.5	139.7	133.1	161
2019	72.5	19.9	6.7	6.5	4	0.4

자료 :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s://www.wami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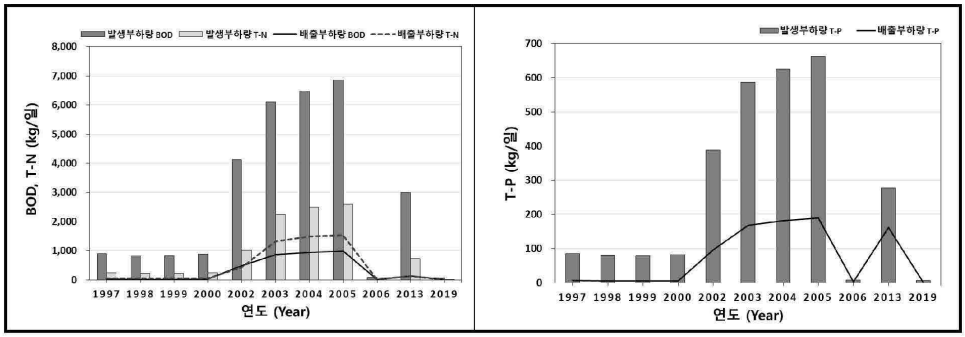

(그림 10.1.4.1 - 13) 중랑천합류전 축산 오염부하량 (1997-2019년)

<표 10.1.4.1 - 36> 중랑천 상류 표준유역 오염부하량(축산)

년도	발생(kg/일)			배출(kg/일)		
	BOD	T-N	T-P	BOD	T-N	T-P
1997	3,738.1	858.3	315	73.1	127.2	12.1
1998	3,346.5	773.5	286.2	67	121.6	11.6
1999	3,149.9	732.4	273	66.4	121.9	11.6
2000	3,829.5	888	325.2	80.6	146.8	13.8
2002	21,843.8	5,418.8	2,057.2	2,583.1	2,298.6	517
2003	32,265.8	11,984.5	3,104.1	4,629.6	7,026.4	888.3
2004	34,639.1	13,324.1	3,349.8	5,030.7	7,934.5	968.3
2005	36,672.1	13,908.7	3,546.8	5,267.7	8,183.4	1,014.80
2006	3,605.3	1,373.1	342.3	515.3	817.7	98.2
2013	3,488.6	858	323.7	162.9	155.3	187.9
2019	705.8	162	56.2	60.6	37.2	4.1

자료 :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s://www.wami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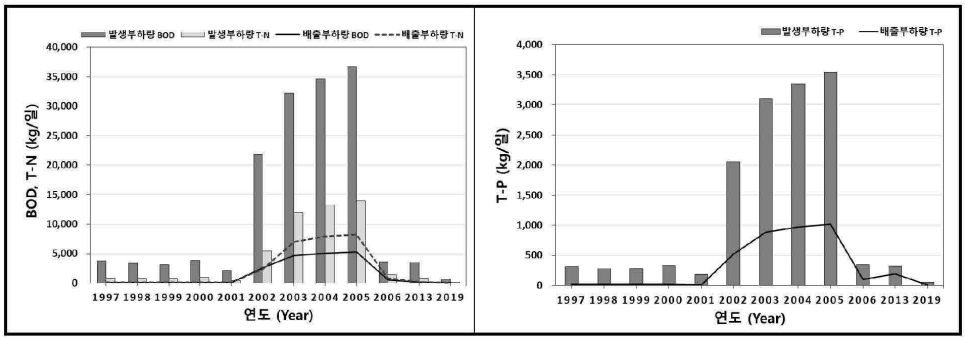

(그림 10.1.4.1 - 14) 중랑천 상류 축산 오염부하량 (1997-2019년)

<표 10.1.4.1 - 37> 청계천 표준유역 오염부하량(축산)

년도	발생(kg/일)			배출(kg/일)		
	BOD	T-N	T-P	BOD	T-N	T-P
1997	0.5	0.1	0	0	0	0
1998	0.5	0.1	0	0	0	0
1999	0.4	0.1	0	0	0	0
2000	0.5	0.1	0	0	0	0
2002	54.2	14.3	5.1	6.9	6.2	0.2
2003	82.9	24.9	8.3	12.3	13.3	0.9
2004	19.4	7.1	1.4	2	3.5	0.4
2005	19.7	5.8	1.4	2.1	3.3	0.4
2006	9.5	2.9	0.9	0.8	1.1	0.1
2013	1,857.6	456.9	172.4	86.8	82.7	100.0
2019	0	0	0	0	0	0

자료 :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s://www.wami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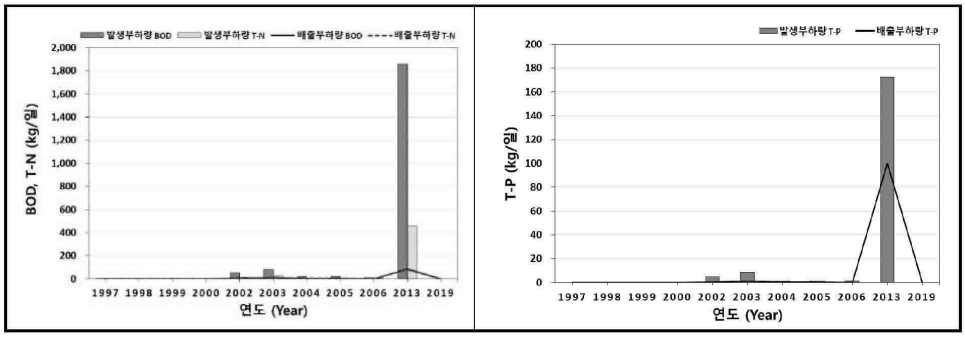

(그림 10.1.4.1 - 15) 청계천 축산 오염부하량 (1997-2019년)

<표 10.1.4.1 - 38> 중랑천 하류 표준유역 오염부하량(축산)

년도	발생(kg/일)			배출(kg/일)		
	BOD	T-N	T-P	BOD	T-N	T-P
1997	8.8	2.4	0.8	0.3	0.5	0
1998	8.0	2.2	0.8	0.2	0.4	0
1999	7.8	2.1	0.8	0.2	0.4	0
2000	8.3	2.2	0.7	0.2	0.4	0
2002	240.2	62.1	23.6	29.3	26.6	3.6
2003	359.3	120.5	35.6	51.2	67.1	8.4
2004	242.6	95.2	22.3	33.5	54.2	6.5
2005	254.9	93.0	23.7	35	54.5	6.8
2006	14.0	4.5	1.3	1.3	2.0	0.2
2013	3,398.0	835.7	315.3	158.7	151.2	183.0
2019	2.5	0.8	0.2	0.2	0.2	0

자료 :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s://www.wami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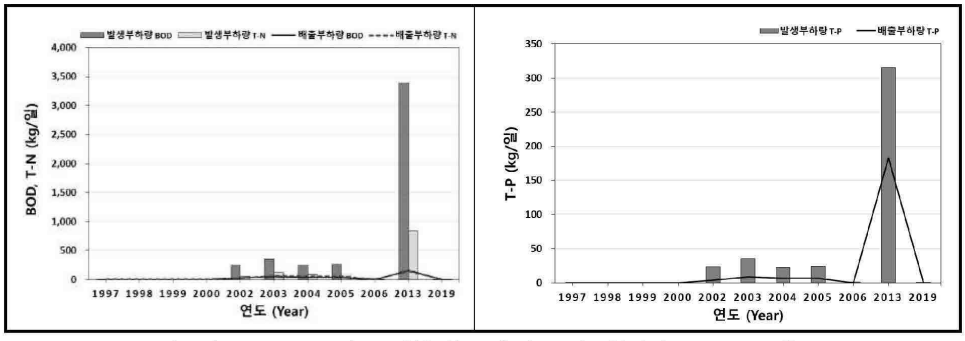

(그림 10.1.4.1 - 16) 중랑천 하류 축산 오염부하량 (1997-2019년)

<표 10.1.4.1 - 39> 한강대교 수위표 표준유역 오염부하량(축산)

년도	발생(kg/일)			배출(kg/일)		
	BOD	T-N	T-P	BOD	T-N	T-P
1997	17.3	4.7	1.6	0.4	0.9	0.1
1998	16.3	4.5	1.5	0.4	0.9	0.1
1999	16.2	4.4	1.5	0.4	0.9	0.1
2000	17.6	4.8	1.7	0.4	0.9	0.1
2002	110.5	27.7	10.8	13.5	12.2	1.9
2003	164.8	57.0	16.2	23.6	32.1	3.8
2004	128.8	49.9	12.1	18.1	28.9	3.5
2005	135.7	50.1	12.8	19.0	29.5	3.7
2006	186	45.1	14.4	17.9	17.8	2.7
2013	1,585.7	390	147.2	74.1	70.6	85.4
2019	0.5	0.2	0	0	0.1	0

자료 :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s://www.wami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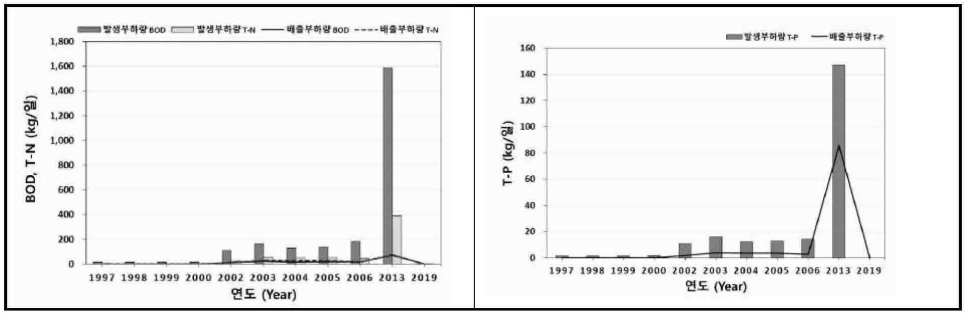

(그림 10.1.4.1 - 17) 한강대교수위표 축산 오염부하량 (1997-2019년)

◦ 서울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대규모 축산업이 거의 없는 특수한 도시 환경을 가지고 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를 통해 도시지역 내 가축사육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 내 가축사육은 소규모 시설에 한정되어 있음. 따라서 가축분뇨발생이 서울시 하천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다.

◦ 서울시 내 가축사육 규모가 연간 50톤 미만으로, 전국 대규모 축산단지(연간 5,000만톤)의 0.0001% 수준이다.

◦ 관리 체계 측면에서, 공원 내 사육시설은 48시간 이내 분뇨 수거 의무화, 차단시설 설치 등 체계적 관리로 하천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 주요 오염원의 압도적 영향측면에서 살펴보면, 서울시 하천 수질 악화의 주원인은 하수처리장 방류수(85%), 산업폐수, 비점오염원, 생활하수이며, 가축분뇨는 전체 오염부하량의 0.1% 미만에 불과하다.

◦ 법적으로도 서울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를 통해 도심 내 축산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가축분뇨 발생 자체가 구조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 따라서 서울시 가축분뇨발생으로 인한 수질오염부하는 통계적으로 무시 가능한 수준이며, 앞서 살펴본 수질측정망 지점(중랑천6, 탄천, 청계천 등)에서 관측되는 수질 문제는 도시화, 산업화, 하수처리 인프라의 한계 등 대규모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복합적 작용이 주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3) 토지 오염부하량

◦ 특정 지점별(탄천상류, 탄천하류, 성남수위표, 중랑천 합류전, 중랑천 상류, 청계천, 중랑천하류, 한강대교)의 1997-2019년 기간동안의 토지계 오염 발생부하량을 살펴보았다.

토지계 발생부하량 = Σ(지목별 면적 × 지목별 연평균 발생부하원단위)

◦ 토지계 오염원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비중을 나타낸다.

◦ 서울시 토지이용 특성을 살펴보면, 대지 비율을 기준으로 서울시는 고도로 도시화됨에 따라 대지 면적이 전국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농경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농경지(논 2.95%, 밭 4.10%, 시설재배지 3.82%)가 분포하며, 산림지역은 전체의 64.16%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오염부하 기여도를 보인다.

◦ 지역별로는 중랑천 유역의 경우, 중랑천 상류에서 하류까지 도시화 진행에 따라 대지 면적 증가로 인한 토지계 오염부하량 급증함. BOD 기준으로 대지(85.9 kg/㎢/day)가 주요 기여원으로, 도시지역 토지계 오염부하가 농경지 대비 12배 이상 높다.

<표 10.1.4.1 - 40> 토지계 토지이용별 발생원단위

토지이용 구분	BOD(kg/㎢/일)	T-N(kg/㎢/일)	T-P(kg/㎢/일)
논	2.3	6.56	0.61
밭	1.6	9.44	0.24
임야	1.0	2.20	0.14
대지	85.9	13.69	2.10
목장	35.1	5.37	1.72
골프장	1.0	3.56	2.76
기타	1.0	0.06	0.03

자료 : 환경부
비고) 밭은 지목별 면적 중 전과 과수원을 포함한다. 대지는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체육용지(골프장 제외),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를 포함한다. 기타에는 광천지, 염전,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공원, 묘지, 잡종지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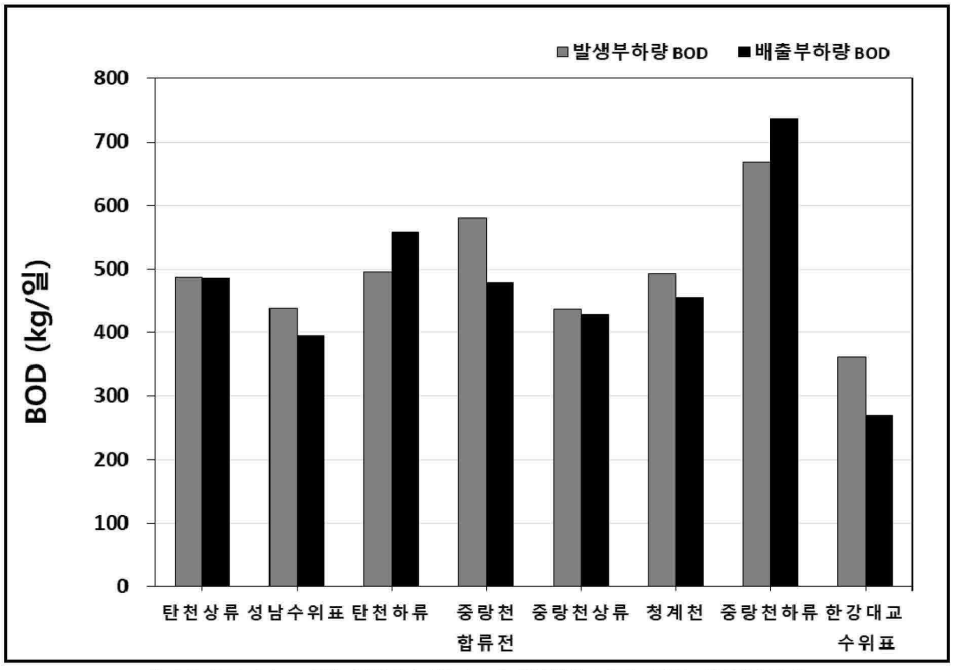

(그림 10.1.4.1 - 18) 2019년 기준 표준유역별 토지 BOD 오염부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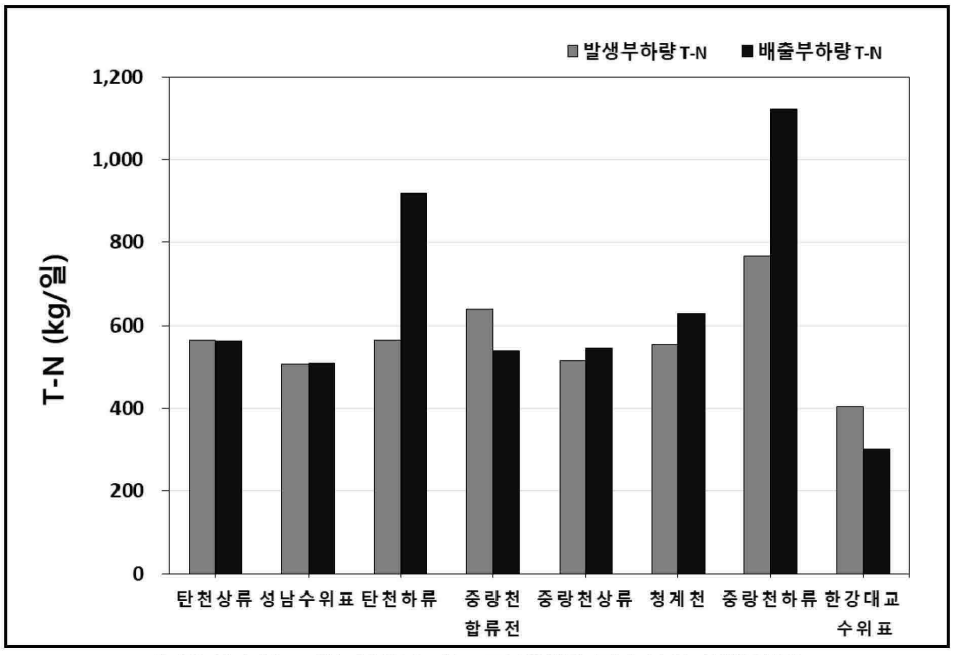

(그림 10.1.4.1 - 19) 2019년 기준 표준유역별 토지 T-N 오염부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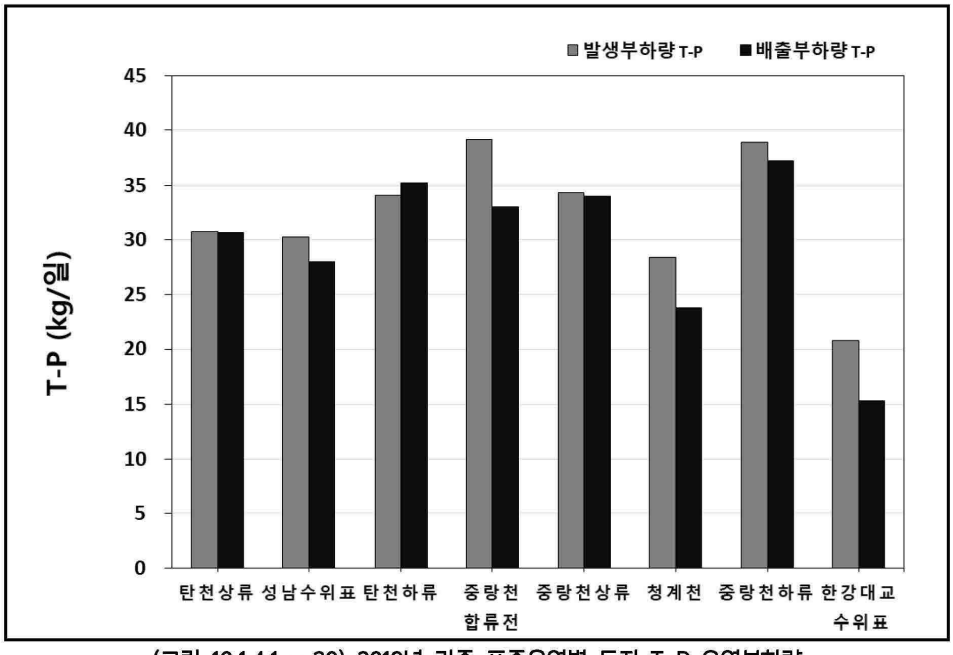

(그림 10.1.4.1 - 20) 2019년 기준 표준유역별 토지 T-P 오염부하량

◦ 탄천 유역의 경우 탄천 상류(성남 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혼재로 인한 중간 수준의 토지계 부하량을 보이고, 탄천 하류(강남 지역)은 고밀도 개발로 인한 높은 대지계 오염부하량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청계천 유역은 복원 후 인공공급수를 사용함에 따라 상류 하수처리장 방류수와 밀접한 연관성으로 토지계 오염부하량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한강대교 지점은 한강 본류의 경우 상류 유역의 모든 토지계 오염부하량이 집적되는 지점으로 전체 유역의 토지이용 현황을 반영하고 있다.

◦ 전국적으로는 비점오염원이 전체 수질오염부하량의 42~69%를 차지하며, 이 중 토지계 비점오염원이 57.5~63.5%를 차지한다.

◦ 서울시의 토지계 오염부하량 중 가축분뇨 기여도는 0.1 미만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의 토지계 오염부하량은 도시화와 개발압력이 주요 원인이며, 가축분뇨발생으로 인한 영향은 통계적으로 무시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0.1.4.1 - 41> 탄천상류 표준유역 오염부하량(토지)

년도	발생(kg/일)			배출(kg/일)		
	BOD	T-N	T-P	BOD	T-N	T-P
1997	1,758.3	509.5	55.7	439.5	127.6	13.9
1998	1,758.3	509.5	55.7	439.5	127.6	13.9
1999	1,758.3	509.5	55.7	439.5	127.6	13.9
2000	1,758.3	509.5	55.7	439.5	127.6	13.9
2002	455.6	376	33	193.2	159.6	14.1
2003	466.6	375.8	33.4	198.5	159.3	14.3
2004	478.4	375.9	33.5	203.3	159.4	14.3
2005	486.9	375.7	33.6	207.1	159.3	14.3
2006	699.9	399.1	33.7	297.5	169.6	14.3
2013	2,880.5	639.7	79.9	720.1	159.9	20.0
2019	487	564.7	30.8	485.1	562.8	30.7

자료 :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s://www.wami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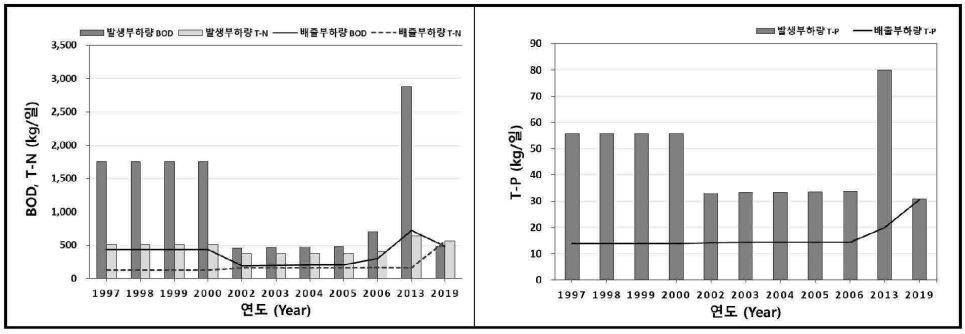

(그림 10.1.4.1 - 21) 한강대교수위표 토지 오염부하량 (1997-2019년)

<표 10.1.4.1 - 42> 성남수위표 표준유역 오염부하량(토지)

년도	발생(kg/일)			배출(kg/일)		
	BOD	T-N	T-P	BOD	T-N	T-P
1997	1,948.8	534.8	59.9	487.2	133.7	14.7
1998	1,948.8	534.8	59.9	487.2	133.7	14.7
1999	1,948.8	534.8	59.9	487.2	133.7	14.7
2000	1,948.8	534.8	59.9	487.2	133.7	14.7
2002	705	405.6	38.9	299.6	172.6	16.6
2003	716.1	405	39.1	304.1	172.6	16.7
2004	727.7	405.2	39.4	309.2	172.5	17.1
2005	735.4	404.9	39.6	312.4	172.5	17.2
2006	712.6	406.3	34.3	302.9	172.7	14.6
2013	2,924.2	649.4	81.1	731.0	162.3	20.3
2019	438.6	506.9	30.3	394.6	508.9	28.0

자료 :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s://www.wami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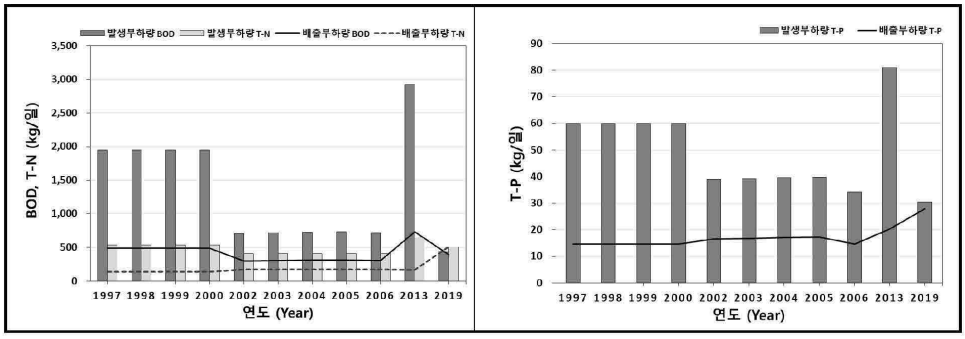

(그림 10.1.4.1 - 22) 성남수위표 토지 오염부하량 (1997-2019년)

<표 10.1.4.1 - 43> 탄천하류 표준유역 오염부하량(토지)

년도	발생(kg/일)			배출(kg/일)		
	BOD	T-N	T-P	BOD	T-N	T-P
1997	2,761.1	619.5	77.0	690.1	154.8	19.4
1998	2,761.1	619.5	77.0	690.1	154.8	19.4
1999	2,761.1	619.5	77.0	690.1	154.8	19.4
2000	2,761.1	619.5	77.0	690.1	154.8	19.4
2002	2,000.6	499.2	65.9	850.2	211.7	28.2
2003	2,008.9	498.9	66.0	853.9	211.6	28.3
2004	2,015.4	498.5	66.2	856.6	211.6	28.3
2005	2,017.1	498.4	66.1	857.1	211.4	28.3
2006	680.8	388.2	32.8	289.3	165.0	13.9
2013	2,749.6	610.6	76.3	687.4	152.7	19.1
2019	495.9	564.9	34.1	557.3	919.5	35.2

자료 :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s://www.wami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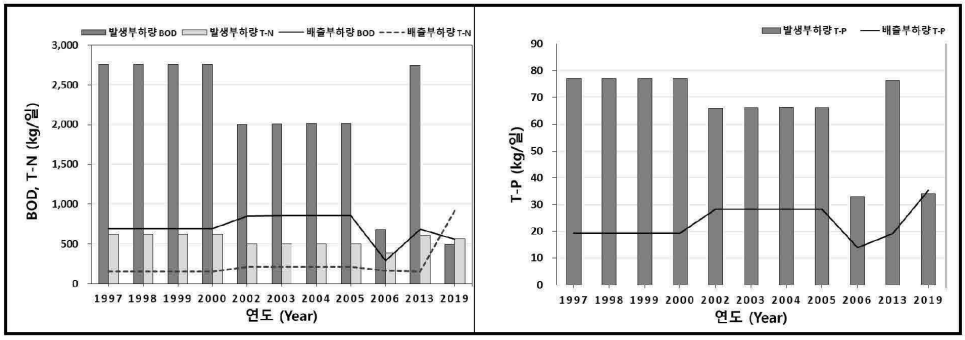

(그림 10.1.4.1 - 23) 탄천하류 토지 오염부하량 (1997-2019년)

<표 10.1.4.1 - 44> 중랑천 합류전 표준유역 오염부하량(토지)

년도	발생(kg/일)			배출(kg/일)		
	BOD	T-N	T-P	BOD	T-N	T-P
1997	3,119.2	640.9	84.6	780	159.9	20.9
1998	3,119.2	640.9	84.6	780	159.9	20.9
1999	3,119.2	640.9	84.6	780	159.9	20.9
2000	3,119.2	640.9	84.6	780	159.9	20.9
2002	2,203.4	530.5	71.1	936.3	225.3	29.9
2003	2,211.7	530.1	71.1	940.5	225.0	29.9
2004	2,218.8	529.5	71.4	943.2	224.9	29.9
2005	2,219.8	529.3	71.4	943.8	224.8	29.9
2006	700.9	399.6	33.8	297.9	169.8	14.4
2013	2,880.5	639.7	79.9	720.1	159.9	20.0
2019	580.7	637.6	39.1	477.6	538.4	33.0

자료 :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s://www.wami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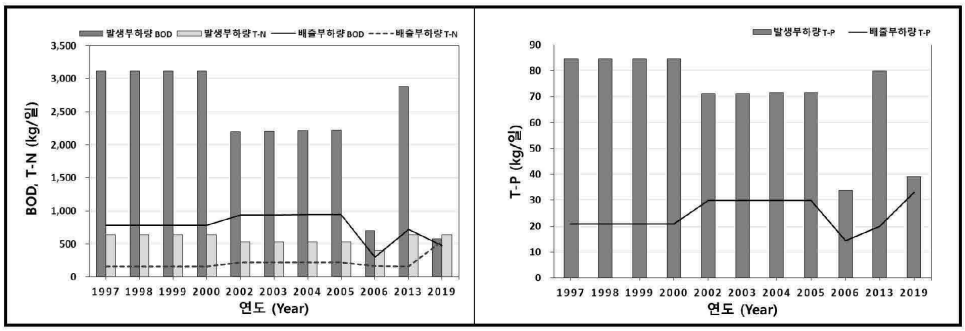

(그림 10.1.4.1 - 24) 중랑천합류전 토지 오염부하량 (1997-2019년)

<표 10.1.4.1 - 45> 중랑천 상류 표준유역 오염부하량(토지)

년도	발생(kg/일)			배출(kg/일)		
	BOD	T-N	T-P	BOD	T-N	T-P
1997	1,373.5	538.1	51.2	343.6	134.2	12.8
1998	1,374.0	538.0	51.2	343.8	134.3	12.8
1999	1,374.6	538.0	51.2	344.0	134.2	12.8
2000	1,374.4	538.0	51.1	344.0	134.2	12.8
2002	516.0	426.4	37.5	219.1	180.9	15.8
2003	529.4	425.9	37.5	224.9	180.9	16.0
2004	542.6	426.2	37.8	230.6	180.9	16.1
2005	552.5	426	38.4	234.6	180.8	16.2
2006	816.3	465.4	39.3	346.9	197.8	16.7
2013	3,360.6	746.3	93.2	840.2	186.6	23.3
2019	436.8	515.9	34.3	427.4	544.5	34.0

자료 :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s://www.wami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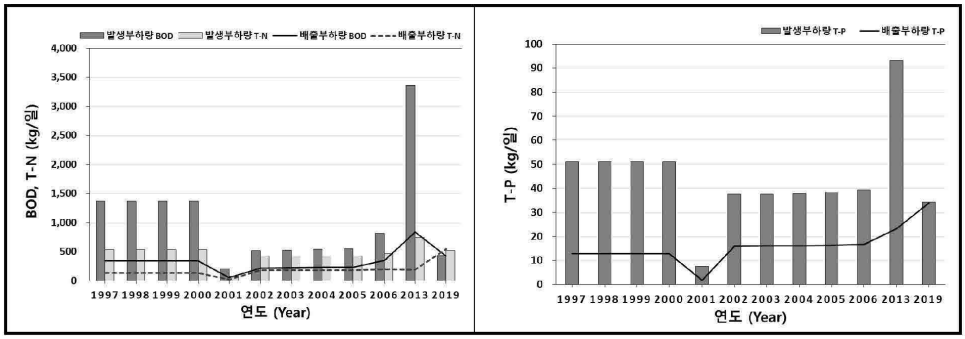

(그림 10.1.4.1 - 25) 중랑천 상류 토지 오염부하량 (1997-2019년)

<표 10.1.4.1 - 46> 청계천 표준유역 오염부하량(토지)

년도	발생(kg/일)			배출(kg/일)		
	BOD	T-N	T-P	BOD	T-N	T-P
1997	3,349.0	568.5	84.0	837.2	141.8	21.1
1998	3,349.0	568.5	84.0	837.2	141.8	21.1
1999	3,349.0	568.5	84.0	837.2	141.8	21.1
2000	3,349.0	568.5	84.0	837.2	141.8	21.1
2002	1,947.2	378.0	57.0	827.9	160.6	24.1
2003	1,951.6	377.8	57.0	829.5	160.2	24.2
2004	1,954.5	377.6	57.0	830.5	160.2	24.2
2005	1,952.3	377.0	57.0	829.5	160.0	24.2
2006	435.6	248.4	21.0	185.1	105.5	8.9
2013	1,789.4	397.4	49.6	447.4	99.3	12.4
2019	493.2	554.4	28.4	455.9	627.0	23.8

자료 :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s://www.wami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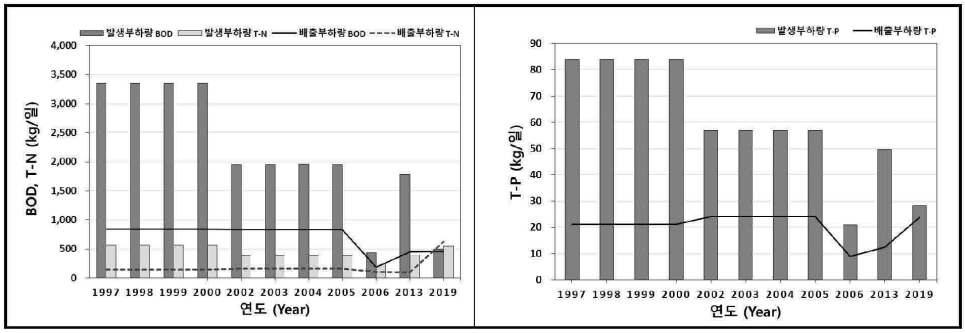

(그림 10.1.4.1 - 26) 청계천 상류 토지 오염부하량 (1997-2019년)

<표 10.1.4.1 - 47> 중랑천 하류 표준유역 오염부하량(토지)

년도	발생(kg/일)			배출(kg/일)		
	BOD	T-N	T-P	BOD	T-N	T-P
1997	4,849.3	883.5	124.8	1,211.9	221.2	31.8
1998	4,849.3	883.5	124.8	1,211.9	221.2	31.8
1999	4,849.3	883.5	124.8	1,211.9	221.2	31.8
2000	4,849.3	883.5	124.8	1,211.9	221.2	31.8
2002	3,562.4	695.1	104.2	1,513.8	295.1	44.3
2003	3,570.0	694.6	104.3	1,518.1	295.0	44.4
2004	3,575.4	694.4	104.4	1,519.4	295.0	44.4
2005	3,571.2	693.3	104.4	1,518.5	294.9	44.4
2006	799.6	455.9	38.5	339.8	193.8	16.4
2013	3,273.3	726.9	90.8	818.3	181.7	22.7
2019	667.2	768.1	38.9	737.1	1,121.10	37.3

자료 :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s://www.wami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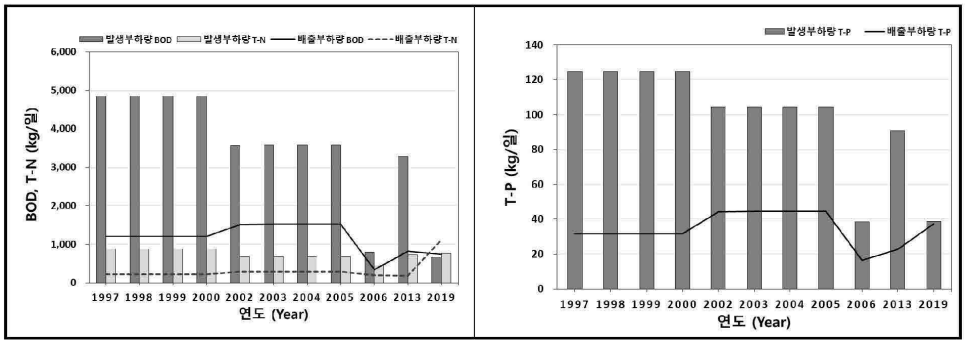

(그림 10.1.4.1 - 27) 중랑천 하류 토지 오염부하량 (1997-2019년)

<표 10.1.4.1 - 48> 한강대교 수위표 표준유역 오염부하량(토지)

년도	발생(kg/일)			배출(kg/일)		
	BOD	T-N	T-P	BOD	T-N	T-P
1997	2,340.0	402.4	58.9	585.0	100.6	14.7
1998	2,340.0	402.4	58.9	585.0	100.6	14.7
1999	2,340.0	402.4	58.9	585.0	100.6	14.7
2000	2,340.0	402.4	58.9	585.0	100.6	14.7
2002	1,637.4	319.7	47.5	695.7	135.9	20.4
2003	1,640.9	319.3	47.5	697.6	135.9	20.4
2004	1,643.0	319.1	47.7	698.0	135.9	20.4
2005	1,641.1	318.5	47.7	697.9	135.7	20.4
2006	365.6	208.5	17.6	155.4	88.6	7.5
2013	1,527.5	339.2	42.4	381.9	84.8	10.6
2019	361.8	404.1	20.8	269.4	300.4	15.3

자료 :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s://www.wami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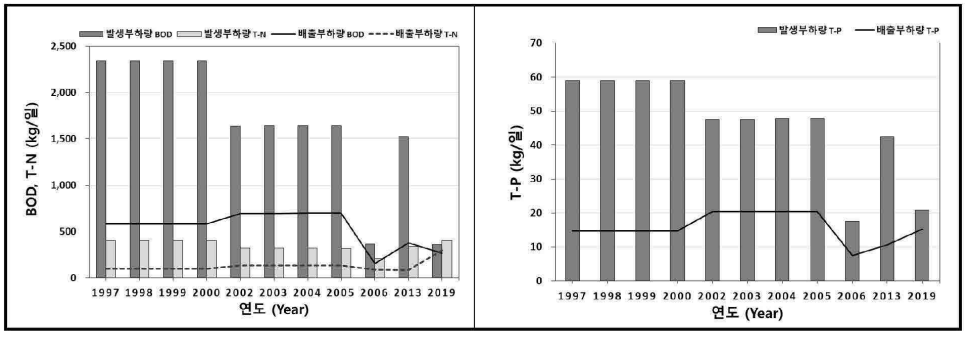

(그림 10.1.4.1 - 28) 한강대교수위표 토지 오염부하량 (1997-2019년)

라. 환경보전대책

1) 운영시

가) 수질오염 저감 관리

(1) 하천수질 오염 관리

◦ 상기에서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하천 수질측정망 자료를 활용하여 최근 10년(2015~2024년)간의 수질현황과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특이점은 없었으며 항목별적정 수질값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여기서, 수질측정망 지점과 가축분뇨 발생지점간의 지표면 직선거리가 최소 2km에서 최대 8km의 거리를 두고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또한 서울시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대부분 퇴비화 및 위탁·자가처리 하고 있으므로 기상(폭우, 재해 등)에 의한 영향, 인위적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 따라서 서울시 수질측정망 지점과 가축분뇨 발생지점과의 거리, 가축분뇨 처리방법을 고려할 때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지만, 측정값은 정기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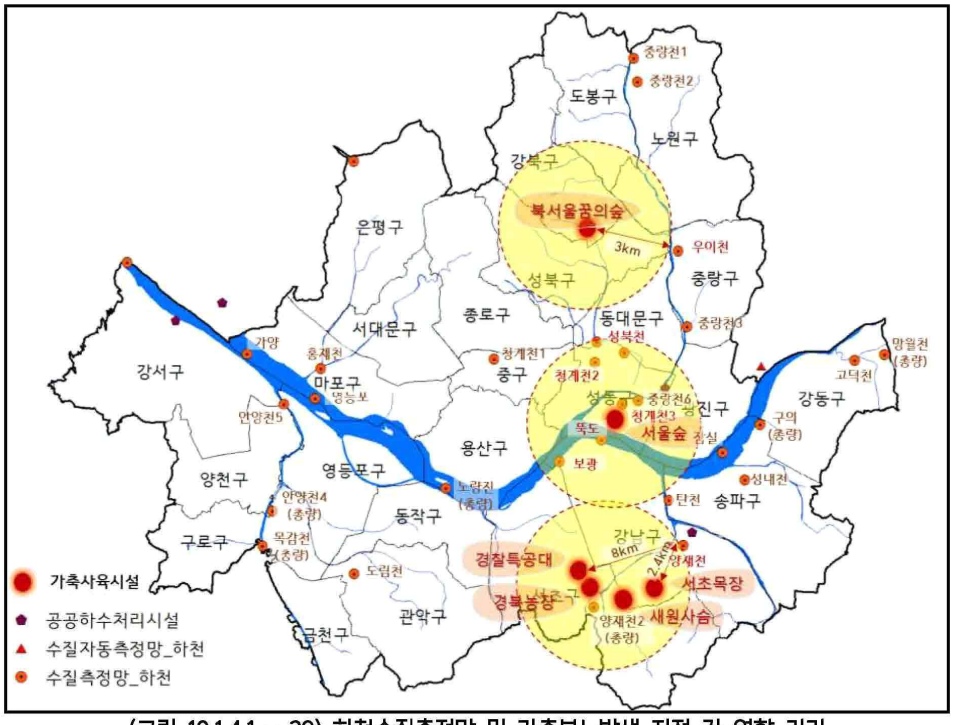

(그림 10.1.4.1 - 29) 하천수질측정망 및 가축분뇨발생 지점 간 영향 거리

(2) 오염부하량 및 처리 목표 설정

◦ 오염부하에 대한 계획목표 설정을 위해 서울시 관리기준 가축사육 두수를 바탕으로 오염원 배출부하량을 산정하고, 가축분뇨 발생량과 가축분뇨 처리량을 비교하여 가축분뇨 적정처리에 따른 수질저감 효과를 제시하였다.

◦ 가축분뇨 발생량과 자원화처리, 정화처리, 에너지화 등 가축분뇨 처리량을 비교하여 처리량에 따라 수질 저감효과를 산정할 수 있다.

◦ 가축분뇨 발생부하량은 가축 사육두수에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국립환경과학원, 2022)의 축종별 축산분뇨 발생부하원단위(BOD, TN, TP)를 곱하여 산정하였다

- 배출부하량(kg/일) = 사육두수(두) × 배출원단위(kg/두·일)

◦ 서울시 가축분뇨로 인한 BOD, TN, TP 배출부하량은 젖소에 의한 양이 BOD 1.116kg/일, TN 1.473kg/일, TP 0.024kg/일 순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는 현재 오염부하량과 관련하여 젖소와 사슴에 관해서 산정함. 경찰특공대의 개 사육으로 인한 분뇨는 정화방식으로 자가 처리하고 있으므로 부하량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 축산계로 인한 오염 저감을 위해서는 적정 처리량 목표를 세워 오염부하 저감효과를 예측 및 제시할 수 있으며, 단계별 적정 처리량은 단계별 처리필요 부하량에 단계별 적정 처리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다.

◦ 1단계 처리 필요 부하량은 발생부하량이며, 1단계 적정 처리율을 곱하여 1단계 적정 처리량을 산정하였다.

◦ 2단계 처리 필요 부하량은 가축사육 두수의 감소(사설시설 100% 감소, 공공시설 40% 감소)를 고려한 발생부하량을 적정 처리율 100%로 곱하여 2단계 적정 처리량으로 산정하였다.

◦ 3단계 처리 필요 부하량은 가축사육 두수의 감소(사설시설 100% 감소, 공공시설 65% 감소)를 고려한 발생부하량을 적정 처리율 100%로 곱하여 3단계 적정 처리량으로 산정하였다.

◦ 이와 같이 서울시 여건에 맞는 두수 관리 계획에 따른 적정 처리량을 항상 100% 전량 처리 목표로 설정하여 목표 달성 시, 환경오염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표 10.1.4.1 - 49>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원단위 및 서울시 가축분뇨 배출부하량 산정

축종	가축분뇨 배출부하량 산정(kg/일)			
	항목	가축사육두수 (두)	원단위 (kg/두/일)	배출부하량 (kg/일)
한우	BOD	-	0.5950	-
	TN		0.0942	-
	TP		0.0197	-
젖소	BOD	10	0.1116	8.757
	TN		0.1473	1.907
	TP		0.0024	0.342
돼지	BOD	-	0.0314	-
	TN		0.0256	-
	TP		0.0019	-
양/사슴	BOD	66	0.0060	0.6600
	TN		0.0080	0.3102
	TP		0.0001	0.0396
개	BOD		0.0021	
	TN		0.0030	
	TP		0.0001	
가금류	BOD	-	0.0010~0.0015	-
	TN		0.0015~0.0020	-
	TP		0.00005~0.0001	-

<표 10.1.4.1 - 50> 단계별 가축분뇨 적정 처리량 산정

구분	축종	단계별 가축분뇨 적정 처리량 산정			
		항목	처리필요 부하량 (kg/일)	적정 처리율 (%)	적정 처리량 (kg/일)
1단계	젖소	BOD	8.7570	100	8.7570
		T-N	1.9070	100	1.9070
		T-P	0.3420	100	0.3420
	사슴	BOD	0.6600	100	0.6600
		T-N	0.3102	100	0.3102
		T-P	0.0396	100	0.0396
2단계	젖소 (-100%)	BOD	0	100	0
		T-N	0	100	0
		T-P	0	100	0
	사슴 (-60%)	BOD	0.3960	100	0.3960
		T-N	0.1861	100	0.1861
		T-P	0.0238	100	0.0238
3단계	젖소 (-100%)	BOD	0	100	0
		T-N	0	100	0
		T-P	0	100	0
	사슴 (-82.5%)	BOD	0.0713	100	0.0713
		T-N	0.0335	100	0.0335
		T-P	0.0043	100	0.0043

제 11 장 종합평가 및 결론

제 11 장 종합평가 및 결론

<표 11 - 1> 종합평가 및 결론

구분	항목	부합여부 및 관련내용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국가환경정책	◦본 계획은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으로 국가환경정책 중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년)",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년)",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17~2036년)"과 일부 부합성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됨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본 계획은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으로 국제 협약 중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분뇨의 적정처리 및 관리로 온실가스 유발물질인 메탄가스를 저감할 수 있어 기후변화와,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가축분뇨를 자원화 등을 실현하여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계획과 일부 부합한다.
계획의 연계성 및 일관성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시 해당 계획에 적합한 자원순환형, 가축분뇨 관리체계를 단계별로 선정하여 지속적, 효율적으로 가축분뇨를 관리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계획함으로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대책, 가축분뇨 관리·이용대책, 한미FTA발효 등에 대비한 가축분뇨 관리대책, 자연순환형 가축분뇨처리 대책 등과 직접적인 연계성을 가짐 ◦가축분뇨 발생량을 예측한 결과 발생량은 향후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증설 및 신설계획은 없음으로 서울특별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는 간접적으로 연계된 계획임 ◦공공 사육시설의 개체수 감축을 추진함으로 분뇨발생량 직접적인 감소를 유도하여 유역통합관리로 깨끗한 물 확보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함으로 제2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과 간접적으로 연계된 계획임 ◦가축분뇨 발생부터 처리(자원화)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여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분뇨 발생 감소를 위해 계획을 수립함으로 제3차 강우유출비점오염관리 종합대책과 연계성을 가짐
	계획 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본 계획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시·도지사는 10년마다 관할구역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2033년 8월 16일 법률 개정으로 제7조의 가축분뇨 실태조사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도록 법적 의무가 강화함 ◦이에 서울특별시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서울시 여건에 맞는 가축분뇨 처리체계 구축, 자원화 촉진, 악취 저감, 지속가능한 도시축산 환경 조성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며, 법령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금회 「가축분뇨 관리기본계획」의 계획목표와 내용을 일관성 있게 수립함 1단계(2026년~2029년) : 가축분뇨시설 관리강화 및 시설 15% 감소 2단계(2030년~2032년) : 가축분뇨시설 50% 감소 3단계(2033년~2035년) : 가축분뇨시설 감소 관리

<표 계속> 종합평가 및 결론

구분	항목	내용
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성	공간계획의 지속성	◦서울시 가축사육 현황 - 한우, 젖소 등 18두(축산법 기준) - 소 1개소, 젖소 1개소, 양·사슴 2개소, 개 1개소(가축분뇨법 기준, 가축사육시설 현황) - 자치구별 가축사육 현황(서울시 자체 관리 기준) · 성동구 : 사슴 사육시설 1개소 · 서초구 : 개 사육시설(경찰특공대) 1개소, 젖소 사육시설 2개소, 사슴 사육시설 2개소 · 강북구 : 사슴 사육시설 1개소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방안 -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가축사육 제한 기준은 공통적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있지만, 세부 지정 범위, 제한 방식, 예외 허용 기준 등에서 각 구별로 차이가 있으며, 25개 자치구 공통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한 수준임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현황 - 가축분뇨는 서울시 공공분뇨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겠으나, 현재 가축사육시설 대부분 퇴비화, 폐기, 정화 등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 성동구 가축분뇨 처리시설 처리방법 : 퇴비 · 서초구 가축분뇨 처리시설 처리방법 : 정화, 위탁, 퇴비 · 강북구 가축분뇨 처리시설 처리방법 : 퇴비 - 서울시 내 분뇨처리가 가능한 공공처리시설로는 4개의 물재생센터(중랑, 난지, 서남, 탄천) 중 분뇨처리 기능이 없는 탄천물재생센터를 제외한 3개 센터가 운영중임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가축사육 두수 현황 - 축산법 기준(2024년 기준) : 18두 - 서울시 자체 관리 기준(2024년 기준) : 107두 - 서울통계연보(2023년 기준) 기준 : 31두 - 소(육우, 젖소, 한우)는 2023년 말 대비 2024년 사이 사육두수가 40%로 급감하였음 ◦가축분뇨 발생량(2024년 기준) : 382.8㎏/일(139.7톤/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황(2024년 기준) : 10.1266톤/일 ◦서울시 공공처리시설 처리량(2024년 기준) - 중랑물재생센터 : 4,528㎘/일, 난지물재생센터 : 3,292㎘/일, 서남물재생센터 : 4,000㎘/일 ◦서울시 가축분뇨 수집 및 운반 가능 업체 : 4개소 ◦가축사육 두수 전망 및 가축분뇨 예측량 - 2035년 예측값은 2024년 현재와 비교시 비슷한 수준 및 다소 증가가 예상됨 ◦가축분뇨 처리방안 - 단계별 가축분뇨시설 감소 유도 - 효율적 자원화 - 지자체 연계 처리

<표 계속> 종합평가 및 결론

구분	항목		환 경 현 황	환 경 평 가	환경보전대책
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성	환경용량의 지속성	악취	◦농장별 악취 조사결과 모두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함	◦사육두수 및 가축분뇨 발생 전망 결과 현재와 동일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악취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됨	◦악취 관리 필요성 ◦단계적 가축사육 감축 추진 ◦가축분뇨 관련 악취관리 계획 ◦발생단계 악취저감 체계 ◦차리단계 악취저감 체계
		토양	◦문헌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 및 2지역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현지조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전지역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향후 가축분뇨 관리 미흡시 토양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정책계획의 특성상 개발행위가 수반되지 않아 토양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됨	◦분뇨 운반체계 점검 및 관리 ◦가축 두수 감소계획
		수질	◦지표수질 현황 - BOD 0.8 ~ 1.5 (Ia(매우좋음)~Ib(좋음)등급) - T-P 0.015 ~ 0.263mg/L - COD 2.3 ~ 6.8mg/L - TOC 1.5 ~ 4.2mg/L ◦지하수질 현황 - pH 불검출~8.2 - 총대장균군 불검출~22.3군수/100mL - 염소이온 불검출~155.1mg/L - 질산성질소 불검출~22.3mg/L 등	◦오염부하량에 따른 영향예측 -서울시 가축분뇨발생으로 인한 수질오염부하는 통계적으로 무시 가능한 수준이며, 앞서 살펴본 수질측정망 지점(중랑천6, 탄천, 청계천 등)에서 관측되는 수질 문제는 도시화, 산업화, 하수처리 인프라의 한계 등 대규모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복합적 작용이 주원인 것으로 판단됨	◦수질오염저감관리 - 계획목표 설정을 위해 서울시 관리기준을 바탕으로 오염원 배출부하량을 재산정 하고, 가축분뇨 발생량과 가축분뇨 처리량을 비교하여 가축분뇨 적정처리에 따른 수질저감 효과를 제시함 - 서울시 여건에 맞는 적정 처리량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 시, 환경오염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음

제 12 장 부 록

12.1 평가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12.2 용어해설 및 참고자료

제 12 장 부 록

12.1 평가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12.1.1 평가대행자

구 분		내 용	비 고
평가대행기관		(주)청담엔지니어링	전화번호 : 031-261-9173
지 정 기 관		한강유역환경청장	
1종	지 정 일 자	2018. 10. 29	
	지 정 번 호	제서 - 357호	
2종	지 정 일 자	2018. 10. 16	
	지 정 번 호	제서 - 2-04호	

12.1.2 참여자 명단

구 분		성 명	전 공	기술자격 구분	비고
총괄책임자		오정희	미생물공학	환경영향평가사·환경기사/공학박사	
계획의 적정성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오정희 신은숙 이강윤	미생물공학 미생물공학 환경공학	대기환경기사 소음진동기사 대기환경기사	
	계획의 연계성 및 일관성	김숙희 박지영 배진화	환경공학 환경공학 생물학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성	서정식 노정욱 송기선 임혜령 조인희	토목학 환경공학 생물학 조경학 환경공학	환경기사 공학박사 공학박사/자연생태복원기사 환경영향평가사 수질환경기사	
종합평가 및 결론		김충남	환경공학	수질환경기사	
부록		이건희	환경학	대기환경기사	

12.1.3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12.2.)

Page : 1/5

출력 일시 : [illegible]

등록번호 제서-357 호 발급번호 : 202507100770030BFQ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기관(업체)명칭		(주)청담엔지니어링	등록상태: 영업
대표자 성명		오경희	
주사무소	소재지	(1697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1 A동 1807호 (구갈동,기흥ICT밸리SKV1)	
	전화번호	031-261-9173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1697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1 A동 1807호 (구갈동,기흥ICT밸리SKV1)	
	전화번호	031-261-9173 (FAX) 031-261-7275	
실험실	소재지	측정대행계약체결 (주)가원환경기술, (주)가원환경연구소, (주)디케이환경기술연구소, (주)바른환경연구소, (주)비엔지기술연구소, (주)동진환경테크, (주)코엔라이프, (주)코엔라이프, (주)코엔텍알앤씨, (주)한국산업공해연구소, (주)한솔환경산업, 자연과환경(주), 주식회사 지오이엔씨, 동명경영기획원(주), (주)진덕환경엔지니어링, (주)해성환경, (주)한국환경기술연구원	
	전화번호	- -	
기타		제 1 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수 및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 1 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8년 10월 29일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

Page : 2/5

<변경사항>

연 월 일	내 용	확인
2018.10.29	환평협-5815호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신규등록 끝.	(사)환경영
2019.02.01	환평협-262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총괄: 조영지(초급) → 서경식(중급), 토지환경: 서경식(중급) → 박수빈(초급)]. 끝.	(사)환경영
2019.03.12	환평협-599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생활환경및기타(중급): 서우현(고급) 해임, 생활환경및기타(초급): 지승훈(초급) 추가]. 끝.	(사)환경영
2019.03.22	환평협-695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생활환경및기타(중급): 김숙희(특급) 등록]. 끝.	(사)환경영
2019.05.20	환평협-1200호로 기술인력 해임 [토지환경(고급): 김한종(특급) 해임]. 끝.	(사)환경영
2019.06.28	환평협-1611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토지환경(고급): 김숙희(특급) 등록, 생활환경및기타(중급): 김숙희(특급) → 김인영(중급), 생활환경및기타(초급): 이강윤(초급) 등록]. 끝.	(사)환경영
2019.10.22	환평협-2368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토지환경(초급): 박수빈(초급) 해임]. 끝.	(사)환경영
2019.10.30	환평협-2444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생활환경및기타(초급): 이강윤(초급) → 토지환경(초급): 이강윤(초급)]. 끝.	(사)환경영
2020.01.22	환평협-206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생활환경 및 기타(특급): 오승환(특급) 등록]. 끝.	(사)환경영
2020.03.26	환평협-862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토지환경(고급): 김숙희(특급) → 오승환(특급), 생활환경및기타: 오승환(특급) 해임]. 끝.	(사)환경영
2020.08.12	환평협-2070호로 기술인력 해임 [생활환경및기타(초급): 김민철 해임]. 끝.	(사)환경영

Page : 3/5

<변경사항>

연 월 일	내 용	확인
2020.08.19	환평협-2085호로 측정대행업체 변경등록 [(추가) (주)가원환경연구소 : 2020-08-12 ~ 2022-08-11(자동연장), 측정분야: 대기(NO2, PM10, PM2.5 납만 가능), 소음, 수질(유기인, PCB,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PCE,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DEHP, 안티몬, 1,4-다이옥세인, 폼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 제외)]. 끝.	(사)환경영
2020.09.22	환평협-2334호로 측정대행업체 변경등록 [(추가) (주)바른환경연구소 : 2020-09-01 ~ 2021-08-31(자동연장), 측정분야: 수질(지하수 및 해역 전항목 제외)]. 끝.	(사)환경영
2021.05.25	환평협-1030호로 측정대행업체 변경등록 [(추가) (주)비엔지기술연구소:2021-05-01 ~ 2023-04-30(자동연장), 측정분야: 대기, 소음, 수질(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DEHP, 안티몬, 1,4-다이옥세인, 폼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 지하수 및 해역 전항목 제외)]. 끝.	(사)환경영
2021.07.23	환평협-1410호로 측정대행업체 변경등록. [(해지) (주)코엔텍, (추가) (주)에스알테크:2021-06-16 ~ 2023-06-15(자동연장), 측정분야: 소음]. 끝.	(사)환경영
2021.08.11	환평협-1520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생활환경및기타(초급): 박지영 등록]. 끝.	(사)환경영
2021.09.10	환평협-1712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자연생태환경(중급): 노경욱 등록]. 끝.	(사)환경영
2021.11.22	환평협-2174호로 측정대행업체 변경등록. [(추가) (주)에스알테크:2021-10-13 ~ 2023-10-12(자동연장), 측정분야: 대기(납, 벤젠 제외)]. 끝.	(사)환경영
2022.01.14	환평협-135호로 측정대행업체 변경등록. [(추가) (주)한솔환경산업 - '22.01.13 ~ '24.01.12(자동연장), 측정분야: 대기, 소음, 수질(지하수 및 해역 전항목 제외)]. 끝.	(사)환경영
2022.01.18	환평협-141호로 주사무소소재지 및 평가담당부서소재지 변경등록 [(주사무소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 101, 502호(상갈동, 그린빌프라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1, A동 1807호 (구갈동, 기흥ICT밸리SKV1)], [(평가담당부서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 101, 502호(상갈동, 그린빌프라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1, A동 1807호 (구갈동, 기흥ICT밸리SKV1)]. 끝.	(사)환경영
2022.03.22	환평협-639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토지환경: 이강윤(초급) 타업체 기술인력 등록으로 인한 해임 처리] 끝.	(사)환경영

Page : 4/5

<변경사항>

연 월 일	내 용	확인
2022.03.28	환평협-684호로 기술인력 및 측정대행업체 변경등록. [(기술인력) 토지환경: - → 박지영(초급), 생활환경및기타: 김인영(중급), 박지영(초급) 해임, 김숙희(특급) 등록], [(측정대행업체 추가) (주) 디케이환경기술연구소 - '22.03.14 ~ '24.03.13(자동연장), 측정분야: 대기, 소음]. 끝.	(사)환경영
2022.04.28	환평협-1026호로 측정대행업체 변경등록. [(상호변경): (주)에스알테크 → (주)코엔라이프]. 끝.	(사)환경영
2022.05.25	환평협-1271호로 측정대행업체 변경등록. [(해지) (주)산업공해연구소]. 끝.	(사)환경영
2022.07.06	환평협-1620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토지환경: 오승환(특급) 타업체 기술인력 등록으로 인한 해임 처리] 끝.	(사)환경영
2022.07.22	환평협-1803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총괄: 오경희(특급 → 평가사) 등급변경, 자연생태환경: 노경욱(고급) 해임, 토지환경: - → 노경욱(고급)]. 끝.	(사)환경영
2022.11.29	환평협-2677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자연생태환경: 김삼협(특급/생명과학석사 → 특급/ICT환경공학박사) 자격변경]. 끝.	(사)환경영
2022.12.16	환평협-2837호로 측정대행업체 변경등록. [(추가) 자연과환경(주) - '22.12.12 ~ '23.12.11(자동연장), 측정분야: 대기, 소음, 수질]. 끝.	(사)환경영
2023.01.27	환평협-254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생활환경및기타: 지승훈(초급) → 지승훈(초급)]. 끝.	(사)환경영
2023.04.14	환평협-955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생활환경및기타: 지승훈(초급) → 이건희(초급)]. 끝.	(사)환경영
2023.04.21	환평협-1001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생활환경및기타: 조인희(초급) 등록]. 끝.	(사)환경영
2023.07.14	환평협-1487호로 측정대행업체 변경등록. [(재계약 및 측정분야추가) (주)디케이환경기술연구소 - '23.07.12 ~ '25.07.12(자동연장), 측정분야: 대기, 소음, 수질(pH, BOD, COD, TOC, SS, DO, T-N, T-P, Chl-a,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카드뮴, 비소, 납, 6가크롬, ABS, 안티몬 만 가능)]. 끝.	(사)환경영

Page : 5/5

<변경사항>

연 월 일	내 용	확인
2024.04.11	환평협-880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생활환경및기타: 이형관(초급) 등록]. 끝.	(사)환경영
2024.05.09	환평협-1024호로 기술인력 및 측정대행업체 변경등록, [(기술인력) 생활환경및기타: 이강윤(중급) 등록, [측정업체추가) 주식회사 지오엔씨 - '24.04.24 ~ '25.04.23(자동연장), 측정분야: 대기, 소음, 수질(유기인, PCB, 사염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PCE,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DEHP, 1,4-다이옥세인, 폼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 제외)]. 끝.	(사)환경영
2024.10.16	환평협-1912호로 측정대행업체 변경등록, [(추가) 동명생명과학원㈜ - '24.10.11. ~ '25.10.10.(자동연장), 측정분야: 수질(DO 제외)]. 끝.	(사)환경영
2024.11.27	환평협-2132호로 측정대행업체 변경등록, [(추가) ㈜진덕환경엔지니어링 - '24.11.21. ~ '25.11.20.(자동연장), 측정분야: 대기, 소음, 수질, ㈜해성환경 - '24.11.21. ~ '25.11.20.(자동연장), 측정분야: 대기, 소음, 수질] 끝.	(사)환경영
2025.01.17	환평협-131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총괄: 임혜령(평가사) 등록, 토지환경: 노경옥(고급 → 특급) 승급, 생활환경및기타: 김홍남(고급) 등록, 이형관(초급) 해임]. 끝.	(사)환경영
2025.03.17	환평협-478호로 측정대행업체 변경등록, [(추가) ㈜한국환경기술연구소 - '25.02.28. ~ '27.02.27.(자동연장), 측정분야: 대기, 소음, 수질]. 끝.	(사)환경영
2025.03.20	환평협-513호로 측정대행업체 변경등록, [(해지) 케이비엔텍㈜, 한국환경기술개발㈜]. 끝.	(사)환경영
2025.04.22	환평협-786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생활환경및기타: 조인희(초급 → 중급) 승급]. 끝.	(사)환경영

<행정처분사항>

연 월 일	내 용	확인

Page : 1/4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12.2.>

출력 일시 : 2025-7-10 13:32

등 록 번 호 제서-2-041 호 발급번호 : 2025071007701922LG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기관(업체)명칭		(주)청담엔지니어링	등록상태	영업
대표자 성명		오정희		
주사무소	소재지	(1697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1 A동 1807호 (구갈동,기흥ICT밸리SKV1)		
	전화번호	031-261-9173		
평가담당 부서	소재지	(1697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1 A동 1807호 (구갈동,기흥ICT밸리SKV1)		
	전화번호	031-261-9173 (FAX) 031-261-7275		
실 험 실	소재지	(1697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1 A동 1807호 (구갈동,기흥ICT밸리SKV1)		
	전화번호	070-5100-3565		
기 타		제 2 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수 및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 2 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

Page : 2/4

<변경사항>

연 월 일	내 용	확인
2018.10.16	환평협-5724호로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신규등록. 끝.	(사)환경영
2019.04.02	환평협-815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책임(육상식물): 송기선(특급) → 책임(육수생물): 송기선(특급), 전문조사원: 윤영욱(초급) → 김필재(고급)]. 끝.	(사)환경영
2019.06.04	환평협-1382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전문조사원(중급): 최난영(고급) → 김필재(고급), 전문조사원(초급): 김필재(고급) → 이지현(초급)]. 끝.	(사)환경영
2021.03.22	환평협-556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책임조사원(육수생물/특급): 송기선 → 책임조사원(육상식물/특급): 서원복, 전문조사원(육수생물/중급): 송기선(특급), 전문조사원(중급): 서원복 → 이슬아, 전문조사원(초급): 이슬아 → 염인영]. 끝.	(사)환경영
2022.01.18	환평협-141호로 주사무소소재지, 평가담당부서소재지, 실험실소재지 변경등록, [(주사무소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 101, 502호(상갈동, 그린빌프라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1, A동 1807호 (구갈동, 기흥ICT밸리SKV1)], [(평가담당부서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 101, 502호(상갈동, 그린빌프라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1, A동 1807호 (구갈동, 기흥ICT밸리SKV1)], [(실험실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 101, 502호(상갈동, 그린빌프라자)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1, A동 1807호 (구갈동, 기흥ICT밸리SKV1)]. 끝.	(사)환경영
2022.05.20	환평협-1242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전문조사원급: 이연호(육수생물/고급) 등록]. 끝.	(사)환경영
2022.11.29	환평협-2678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책임조사원급: 서원복(생물학석사 → ICT환경공학박사) 자격변경]. 끝.	(사)환경영
2022.12.07	환평협-2752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책임조사원급: 김상현(생명과학석사 → ICT환경공학박사) 자격변경, 전문조사원급: 김필재(고급 → 특급) 승급]. 끝.	(사)환경영
2023.04.12	환평협-924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책임조사원급: 서원복(육상식물/특급) → 이상경(육상식물/특급)]. 끝.	(사)환경영
2023.06.26	환평협-1360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전문조사원급: 이지현(초급 → 중급) 승급, 송민정(초급) 등록]. 끝.	(사)환경영

Page : 3/4

<변경사항>

연 월 일	내 용	확인
2023.07.05	환평협-1410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전문조사원급: 이연호(육수생물/고급 → 육수생물/특급) 승급]. 끝.	(사)환경영
2023.07.07	환평협-1433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전문조사원급: 이연호(육수생물/생물분류기사(동물) → 환경생물학석사) 분야지정 해지 및 자격변경]. 끝.	(사)환경영
2024.03.21	환평협-754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전문조사원: 김필재(특급) 타업체 기술인력 등록으로 인한 해임처리]. 끝.	(사)환경영
2024.07.05	환평협-1379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책임조사원: 이상경(육상식물/특급) → 송기선(육수생물/특급), 전문조사원: 송기선(육수생물/특급) 해임, 이슬아(중급 → 육상식물/중급) 분야지정]. 끝.	(사)환경영
2024.10.22	환평협-1947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전문조사원: 최창윤(육수생물/초급) 등록]. 끝.	(사)환경영
2025.01.17	환평협-132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전문조사원: 최창윤(육수생물/초급) 해임]. 끝.	(사)환경영
2025.03.14	환평협-450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전문조사원: 송민정(초급 → 중급) 승급, 채영진(초급) 등록]. 끝.	(사)환경영
2025.04.07	환평협-648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전문조사원급: 이슬아(육상식물/중급 → 육상식물/고급) 승급]. 끝.	(사)환경영
2025.05.14	환평협-918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전문조사원급: 송민정(중급) 타업체 기술인력 등록으로 인한 해임처리]. 끝.	(사)환경영
2025.07.09	환평협-1239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전문조사원: 염인영(초급 → 중급) 승급]. 끝.	(사)환경영
2025.07.10	환평협-1245호로 기술인력 변경등록 [전문조사원: 최두섭(특급) 등록]. 끝.	(사)환경영

12.1.4 원도급 및 하도급률 검토서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원도급 및 하도급률 검토서

1. 용역구분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2. 사업유형 :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3. 용역기간 : 2025년 ~ 협의완료시
4. 사업규모 : 6,000㎡
5. 원도금 및 하도급 계약내역

가. 원도급 계약내역

구 분	원도급금액(원)①	산정기준 금액(원)②	원도급률(%) (①/②×100)
직접인건비	17,389,653	17,927,477	97.0
직접경비	5,738,996	5,916,491	97.0
제경비	19,128,618	19,720,225	97.0
기술료	5,882,733	6,064,673	97.0
손해배상공제료	360,000	371,134	97.0
부가가치세	4,850,000	5,000,000	97.0
합 계	53,350,000	55,000,000	97.0

주) ① 원도급금액 : 발주처(사업자)와 실제 계약한 계약금액
② 산정기준금액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18-23호)적용단가를 기준으로 요율 적용하여 산정한 사업자 설계금액

6. 첨부
◦ 원도급 계약서(사본)

◦ 원도급 계약서

나라장터 전자문서 출력물 이 문서는 조달청의 동의 없이 수정, 변경 및 복사할 수 없습니다.

용역계약서

※원본확인용QR코드

2025년 02월 26일

<계 약 자>

<발주처>

기관명 :	서울특별시	계약관 :	최선혜
담당 부서 :		담당 :	최은정 (Tel: 02-2133-3249)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인

<계약상대자>

	상 호	주식회사 청담엔지니어링	사업자등록번호	219-86-01209
대표	주 소	(우: 1697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58-1, 에이동 1807호(구갈동, 기흥아이씨티밸리에스케이브이원)	전 화 번 호	031-261-9173
	대 표 자	오정희	F A X	031-261-7275

<수요기관>

	기 관 명	서울특별시		
대표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0 (태평로1가)	전 화 번 호	02-2133-3249
	담 당 자	최은정	F A X	

계약유형 :	용역	계약방법 :	수의계약		
계약법구분 :	지방계약법	조항호 :	(제25조제1항5호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물품·용역(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계약)		
계약번호 :	R25TA00217346-00	관리번호 :		기관관리번호 :	
계약일자 :	2025/02/26				
계약건명 :	서울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용역				
계약금액 :	일금 오천삼백삼십오만원	(₩	53,350,000)		
총용역부기금액 :	일금 오천삼백삼십오만원	(₩	53,350,000)		
현장 :	서울특별시				
착수일자 :	2025/02/26	금차완수일자 :	2025/12/25	총완수일자 :	2025/12/25
완수기한 :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금차 303일, 총차 303일				
검사기관 :	( )	검수기관 :	( )		
계약보증금 :	일금 이백육십육만칠천오백원	(₩	2,667,500)	계약보증금율 :	5 %
계약보증서 전자제출여부 :	전자접수 및 직접수납(현금접수)				

1/2

하자보수 보증금율 :		하자담보책임 기간(비고) :	
지체상금율 :	0.13 %		
계약해지여부 :	N	계약해지일자 :	

[채권 및 인지세 정보]

지방채매입액	₩	(	해당없음	)	
인지세과세 대상여부	Y	인지세액	₩	70,000	

위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자와 연대보증인은 각각 다음의 사항을 확약하며 계약의 증거로 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1. 계약자는 입찰시 공시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및 현장설명 사항과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공동수급협정서, 산출내역서(하도급 사항 포함) 및 붙임 전자계약 확약사항이 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
2. 전자계약에 따라 붙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등 각서에 기명 날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조치 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을 확인하고 제반사항 이행을 확약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물가변동적용기준 :

[첨부문서]

No.	문서유형	파일명/링크
1.	기타첨부파일	R25TA00217346_20250225164914_전자계약확약사항.html
2.	기타첨부파일	산출내역서.pdf
4.	기타첨부파일	붙임2) 과업지시서.hwpx
5.		청담-수의계약각서 4종.pdf

2/2

12.2 용어해설 및 참고자료

12.2.1 용어해설

가. 일반적인 환경용어

◦ 환경영향평가 :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영향 :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영향으로서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유익한 영향과 해로운 영향, 장·단기적 영향을 포함함.

◦ 저감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감소·완화시키는 것을 말함.

◦ 환경영향요소 : 사업계획의 내용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원인이 되는 요소를 말함

◦ 환경인자 : 환경을 구성하는 기초적인 요소(예) 대기, 수질, 폐기물 등)

12.2.2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가.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년)

◦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16~2025년)

◦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17~2036년)

◦ 기후변화협약(UNFCCC)

◦ 파리협정(Paris Agreement)

나. 계획의 연계성 및 일관성

◦ 중장기 가축분뇨 자원화 대책(2013)

◦ 가축분뇨 관리·이용 대책(2004)

◦ 한미 FTA발효 등에 대비한 가축분뇨 관리대책

◦ 자원 순환형 가축분뇨처리 대책

◦ 서울특별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 제3차 강우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 축산분뇨 발생부하원단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2024, 국립환경과학원) 최신개정.

다. 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성

1) 공간계획의 적정성

- 서울열린데이터광장, 2024,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2025.09., 서울특별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 2011.10.14., 환경부
-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 2015.03.30., 환경부

2)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 제64회 서울통계연보(2023년 기준), 2025, 서울특별시
- 환경부 공고 제2022-444호
- 서울특별시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2025.09., 서울특별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3]

3) 환경용량의 지속성

가) 악취

- 2023 통계연보, 2024,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2025.09., 서울특별시
- 일본, 악취방지기술 매뉴얼, 공해대책기술동우회
- 우사, 양계사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배출 특성조사 및 저감방안 연구, 2004, 환경부
- 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전망 2025
- 악취관리편람, 2012, 환경부
- 가축분뇨 발생원단위(환경부 공고 제2022-444호)

나) 토양

- 토양지하수 종합정보시스템(http://sgis.nier.go.kr)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08.07.>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5.08.07.>
-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수립지침, 2024.07.18., 환경부

다) 수질

-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http://www.river.go.kr)
- 2022 상수도 통계, 2023, 환경부

◦ 제64회 2024 서울통계연보(2023년 기준), 2024, 서울특별시

◦ 2022 하수도통계, 2023 환경부

◦ 배출허용기준(폐수)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환경부고시 제2007-107호

◦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환경부고시 제2018-6호, 2018.01.18.

◦ 2단계 서울특별시 한강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2021.08, 서울특별시

◦ 물환경정보시스템(http://water.nier.go.kr/)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 <개정 2022.12.6.>

◦ 서울특별시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2025.09, 서울특별시

주민의견 제출서

계획명	서울특별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위 치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계획시행자	서울특별시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년 10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96호

도시관리계획(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⑧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에 의거 아파트지구(용도지구)로 최초 지정, 건설부 건축 4441-6149호(1977.3.29.)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02호(2008.6.12.)로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16호(2023.11.23.)로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17호(2023.11.23.)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5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2025.07.15.), 2025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2025.09.10.)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⑧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⑧에 대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도입을 통해 압구정로데오역 일대를 상업·문화 중심의 새로운 관광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구역8(갤러리아 백화점)의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압구정동, 청담동 일원	1,167,719.5	-	1,167,719.5	서고 제2023-517호 (2023.11.23)	-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 변경

1) 도로 : 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연번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1	기정	광로	2	18	40	주간선 도로	6,500 (369)	압구정동	포이동	일반도로	건고 제46호 (1976.04.07)	구역내(4구역) 5m 확폭, 중복결정: 중로1-C, 중로2-109
2	기정	대로	2	28	30~44	보조간선 도로	4,300 (2,557)	청담동 (광로14)	잠원동	일반도로	건고 제503호 (1969.08.27)	구역내(4구역) 5m 확폭
3	기정	대로	2	30	30	주간선 도로	6,717 (402)	압구정동	포이동 (광로27)	일반도로	건고 제503호 (1969.08.27)	-
4	기정	대로	2	63	30~65 (52)	주간선 도로	4,100 (584)	장충체육관	압구정동	일반도로	건고 제426호 (1978.12.29)	논현로 (동호대교)
5	기정	대로	3	71	25~27 (25)	보조간선 도로	4,900 (332)	압구정동	도곡동 (대로2-28)	일반도로	건고 제198호 (1971.04.07)	중복결정: 철도②,③
	변경	대로	3	71	25~27 (25)	보조간선 도로	4,900 (332)	압구정동	도곡동 (대로2-28)	일반도로	건고 제198호 (1971.04.07)	중복결정: 철도②,③ 광장②
6	기정	대로	3	A	10~30	특수 도로	280	압구정동 434	압구정동 378-1	보행자 전용도로	서고 제2025-136호 (2025.03.13.)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중로1-136, 중로2-289, 중로2-109, 연결녹지①, 하천①
7	기정	중로	1	2	16	국지도로	310	압구정동 434	중로2-109	일반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중복결정: 유수지①
8	기정	중로	1	4	21	국지도로	122	대로2-28	중로2-3	일반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
9	기정	중로	1	6	23.5	국지도로	486	대로2-28	압구정 369-1	일반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
10	기정	중로	1	10	20	국지도로	280	대로2-28	중로2-109	일반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도로 일부 입체결정 (지상권 설정)

연번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11	기정	중로	2	1	18.5	국지도로	143	대로2-28	압구정 408	일반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
12	기정	중로	2	3	15	국지도로	456	중로1-2	현대 백화점	일반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
13	기정	중로	2	8	16.5	국지도로	420	대로2-28	중로2-109	일반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
14	기정	중로	2	109	11~29.5	국지도로	4,100 (2,832)	신사동	영동교	일반도로	서고 제198호 (1971.04.07.)	중복결정: (2구역) 유수지①, 대로3-A, 소로1-A (4구역) 소공원B,C, 광로2-18, 중로1-C, (5구역) 소공원 B,C
15	기정	중로	1	C	20~22	국지도로	117.3	압구정동 481	광로 2-18	지하 도로	서고제2025-503호 (2025.09.11)	중복결정: 소공원B, 광로2-18, 중로2-109
16	기정	중로	2	15	15	국지도로	50	중로2-109	압구정 414	일반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
17	기정	중로	3	5	12~15	국지도로	206	압구정 449	중로1-6	일반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
18	기정	중로	3	7	12	국지도로	246	중로1-6	중로2-8	일반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
19	기정	중로	3	12	12	국지도로	67	대로2-28	압구정 490	일반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
	변경	중로	3	12	12	국지도로	67	대로2-28	압구정 490	일반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선형조정 (가각 추가)
20	기정	중로	3	13	12	국지도로	141	대로3-71	청담 고등학교	일반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
21	신설	중로	3	14	10	국지도로	60.5	중로3-13	대로2-28	일반도로	-	-
22	기정	소로	1	A	11.5	국지 도로	160	압구정동 392 일대	압구정동 392 일대	지하 도로	서고제2025-136호 (2025.03.13.)	중복결정: 중로2-109, 연결녹지①

연번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23	기정	소로	1	14	10~12	국지도로	207	대로2-28	중로2-109	일반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

※ ( )은 구역 내 해당사항임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3-71	대로 3-71	일부 구간 중복결정	선릉로(대로 3-71) 하부 지하광장 설치를 위한 일부구간 중복결정
중로 3-12	중로 3-12	선형 조정 (가각 추가)	압구정로에서 중로3-12 진입을 위한 도로 가각 추가
-	중로 3-14	도로 신설 - 폭원 : 10m 연장 : 60.5m	압구정로와 선릉로 교차구간 일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2) 주차장 : 변경없음

3) 철도 : 변경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철도	지하철 역사 (3호선 압구정역)	압구정동 429-1 일원	5,800.0 (2,506.0)	서고 287호 (1981.07.30)	중복결정 : 대로 2-63 대로 2-30
변경	②	철도	지하철 역사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청담동 84 일원	6,488.0 (2,489.0)	건고 87호 (2005.04.16)	중복결정 : 대로 3-71 광장②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변경	③	철도	일반철도 (분당선)	왕십리역	삼성동 172-20	6,830 (251)	190,795 (4,227)	건고 6호 (2007.01.18)	중복결정 : 대로 3-71 광장②

※ ( )의 연장 및 면적은 구역 내 해당사항임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철도	• 일부 구간 중복결정 - 중복결정 면적 : 872.8㎡	• 선릉로(대로 3-71) 하부 지하광장 설치를 위한 일부 구간 중복결정
③	철도	• 일부 구간 중복결정 - 중복결정 면적 : 233.5㎡	• 선릉로(대로 3-71) 하부 지하광장 설치를 위한 일부 구간 중복결정

나. 도시공간시설 : 변경

1) 녹지 : 변경없음

2) 공원 : 변경없음

3) 광장 : 변경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광장 157호	교통광장	한남대교남단 (한강둔치일원)	216,218 (8,376)	서고 제1997-200호 (1997.06.17)	중복결정 : 녹지① (중복면적:2,348㎡)
신설	②	광장 (압구정로데오역)	지하광장	압구정로데오역	2,045.6	-	중복결정 : 대로3-71 철도②,③

※ ( ) 안은 구역 내 해당사항임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광장 (압구정로데오역)	• 광장 신설 - 면적 : 2,045.6㎡	• 지하철역 및 지상공간을 연결하는 시민 여가·휴게 공간 조성

4) 공공공지 : 변경없음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라. 방재시설 : 변경없음

(이 하 여 백)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나.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구번호	획지번호 (도면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A	A1	압구정동 414일원	60,580.0	-	60,580.0	특별계획구역 1 (미성1차,2차APT)
	A2	압구정동 408일원	5,982.8	-	5,982.8	
B	B1	압구정동 434일원	14,685.4	-	14,685.4	특별계획구역 2 (현대9,11,12차APT)
	B3	압구정동 429일원	10,473.1	-	10,473.1	특별계획구역 7 (현대백화점)
C	C1	압구정동 369-1일원	76,750.0	-	76,750.0	특별계획구역 3 (현대1,2,3,4,5,6,7,10,13,14차 APT, 현대빌라트, 대림빌라트)
D	D1	압구정동 447일원	97,526.4	-	97,526.4	
E	E1	압구정동 455일원	96,148.0	-	96,148.0	
	E2	압구정동 458일원	10,035.6	-	10,035.6	
F	F1	압구정동 465일원	26,201.6	-	26,201.6	
G	G1	압구정동 481일원	88,457.2	-	88,457.2	특별계획구역 4 (현대8차, 한양3,4,6차APT)
	G2	압구정동 490일원	58,951.9	-	58,951.9	특별계획구역 5 (한양1,2차APT)
	G3	압구정동 494일원	10,203.4	증) 18.2	10,221.6	특별계획구역 8 (갤러리아백화점)
I	I1	압구정동 513일원	41,590.0	-	41,590.0	특별계획구역 6 (한양5,7,8차APT)
	I2	압구정동 515일원	8,549.8	감) 636.9	7,912.9	특별계획구역 8 (갤러리아 백화점)
	I3	압구정동 518일원	2,986.1	-	2,986.1	특별계획구역 9 (기아자동차)
	I4	압구정동 521일원	1,579.6	-	1,579.6	기존 개발잔여지
J	-	-	-	-	-	-

▌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획지번호 (도면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G3	• 면적 증가 (증 18.2㎡) - 면적 : 10,203.4㎡ ⇒ 10,221.6㎡	• 5구역 정비계획에 따른 기존 도로 폐지에 따라 대지 내 도로 가각부 획지로 편입
I2	• 면적 감소 (감 636.9㎡) - 면적 : 8,549.8㎡ ⇒ 7,912.9㎡	• 압구정로와 선릉로 교차구간 일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2.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3. 건축물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4. 건축물 배치 · 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가.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 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배치 및 형태	공동주택	RA-3, RA-(3)	• 광역통경축 또는 지구통경축변의 건축선(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및 배치의 경우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따름 • 건축물 배치 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아파트 단지 조성기준(2020.01, 서울시)에 따라 배치계획 수립 • 도로변은 프라이버시 보호 및 소음저감을 위한 공간 확보 • 공원 및 녹지 주변은 쾌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녹지환경 조성 • 단지 내부 배치는 타워형, 판상형, 혼합형의 혼합 배치로 일률적인 판상 형태의 이미지 탈피 •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연출 및 개방감 있는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한강변 첫 주동은 중저층(15층~20층 이하)로 배치하고, 주변여건 및 공공기여 등을 고려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 시(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완화범위 결정 • 주동 형태가 상이하더라도 통경축 확보를 위한 배치 고려 • 주거지로서의 차분한 분위기와 안정감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하되, 미관적으로 단조롭지 않고 세련되게 연출 •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및 기준 준용하여 계획 • 대지와 도로의 경계부에 담장 등의 설치를 지양하고 커뮤니티시설 및 열린 조경시설 등을 배치하여 생활가로를 조성하여 열린공간으로 계획	-
	부대 및 복리 시설	RA-3, RA-(3)	• 가로활성화 특화구간 및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우선 배치 • 전면도로를 향하여 전면부 및 주출입구 계획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3층이하, 1층부 층고는 4m이상으로 계획 • 주택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법정 면적의 1/3이상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확보	
	특화 구간	수변부 건축물 디자인 특화구간	• 벽면 외관의 시각적 분절효과 등을 통해 다양하면서도 동질감 있는 건축물 외관 경관 창출 • 한강변 조망을 최대화하고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수변주거로서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주동배치 • 저층부(2층 이하) 부대 및 복리시설 등 공공개방커뮤니티시설 배치	조성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가로 활성화	• 벽면 외관의 시각적 분절효과 등을 통해 다양하면서도 동질감 있는 건축물 외관 경관 창출 • 저층부(2층 이하) 부대 및 복리시설, 근생시설 등 배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특화구간	• 저층부(2층 이하) 가로와의 개방성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외벽면 투시형 재료 사용 • 논현로변 특화디자인 등을 적용하여 가로활성화 도모(권장) • 압구정로변 저층부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하여 가로활성화 유도(권장)	
		중저층 배치구간	•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및 위압적 경관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중저층 배치(권장)	
		수변커뮤니티 배치구간	• 남·북방향의 공공보행통로와 한강변을 연결하는 입체보행교와 만나는 접점부에 수변 커뮤니티시설(개방형) 조성	
		디자인타워 배치구간	• 도심부 진입경관거점으로서 상징적인 디자인으로 주동계획	
		야간경관 특화구간	• 미디어파사드 등 다양한 조명방식을 활용하여 압구정로변 특화상권 및 청담명품거리와 연속되는 경관거점 조성 및 다채로운 도시경관 창출 • 건축물의 구조와 형상을 강조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설치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수 ※ 주거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로(25m) 이상 도로에 면하여 설치 ※ 미디어파사드는 서울시 좋은빛위원회 심의 통해 설치 여부 결정	
기타 외관 요소	옥외 설비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	• 에어컨 실외기가 외벽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가능한 별도의 설치공간 계획	-
	담장의 설치		• 원칙적으로 금지, 필요시 높이 1m이하의 투시형 목책 또는 식재등의 마운딩 가능	-
	광고물 설치제한		• 판류형 간판 설치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 • 건물 신축시 간판설치 및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판게시틀 등의 입면디자인 도입	-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배치 및 형태	특화 구간	야간경관 특화구간	야간경관 특화구간 신설	압구정로변의 연속적인 가로·도시경관 조성 및 조화로운 야간경관 관리를 위한 야간경관 특화구간 신설

(이 하 여 백)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변경

1) 특별계획구역 1~7,9 : 변경없음

2) 특별계획구역 8

▌특별계획구역 8(기정)

<table>
<tr><th colspan="3">구분</th><th colspan="2">계획내용</th><th>비고</th></tr>
<tr><td colspan="3">위치</td><td colspan="2">• 압구정동 494일원</td><td>갤러리아백화점</td></tr>
<tr><td colspan="3">구역면적</td><td colspan="2">• 20,363.0㎡</td><td></td></tr>
<tr><td colspan="3">용도지역·지구</td><td colspan="2">• 제3종일반주거지역 / 특화경관지구</td><td></td></tr>
<tr><td colspan="3">획지계획</td><td colspan="2">• 획지 H4, I2</td><td></td></tr>
<tr><td colspan="3">기반시설계획</td><td colspan="2">•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압구정로변 차로 확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참조)</td><td></td></tr>
<tr><td rowspan="4">용도계획</td><td rowspan="2">불허용도</td><td rowspan="2">획지
H4,I2</td><td colspan="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업무시설(1층에 한함), 총포판매소, 장의사, 게임제공업소,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이용업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td><td></td></tr>
<tr><td colspan="2">•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 단, 위용도 중 시(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외하며, [별표1]의 운영기준 적용</td><td>본 지구단위계획 “3-2. 건축물 용도 결정조서” ‘나.불허용도’ [별표1]</td></tr>
<tr><td rowspan="2">권장용도</td><td rowspan="2">획지
H4,I2</td><td>전층</td><td>저층부(1~2층)</td><td></td></tr>
<tr><td>•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제외)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사회복지시설
• 청소년 수련시설
•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td><td>•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사무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서점
• 판매시설</td><td></td></tr>
<tr><td rowspan="3">밀도계획</td><td>건폐율</td><td>획지
H4,I2</td><td colspan="2">• 50% 이하</td><td></td></tr>
<tr><td>용적률</td><td>획지
H4,I2</td><td colspan="2">• 기준(허용)용적률 : 250% 이하
• 상한 용적률 : 법적 용적률 2배 이하</td><td></td></tr>
<tr><td>높이</td><td>획지
H4,I2</td><td colspan="2">• 5층 이하</td><td></td></tr>
<tr><td rowspan="2">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td><td>건축선</td><td>획지
H4,I2</td><td colspan="2">• 건축한계선
- 선릉로(대로 3-71) 10m, 압구정로 6m, 이면부 3m</td><td>지침도에 따름</td></tr>
<tr><td>대지내 공지</td><td>전면 공지</td><td colspan="2">• 본 지구단위계획 “3-4.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에 따름</td><td>지침도에 따름</td></tr>
</table>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배치 및 형태	배치 및 형태	• 테마별 색상 적용 및 입면구조 분절, 창호 변화를 통해 개성있는 구성 연출 • 복합 건축물의 경우 저층부는 중층부 및 고층부와 구분되는 안정감 있는 재료 사용 및 필로티 조성을 통해 개방감 확보	
	기타 외관요소	• 옥외설비, 담장의 설치, 광고물 설치제한 : 본 지구단위계획 "3-4.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에 따름	

구분	계획내용	비고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단지 내 주차 및 차량동선, 단지 내 보행동선 : 본 지구단위계획 "4-1.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에 따름	지침도에 따름
기타사항	• 지역여건, 상가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획지H4, l2 주거용도 허용여부 및 비율 결정 • 높이 및 건폐율 관련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 계획, 창의적인 건축계획 등과 연계하여 시(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완화 가능 • 역세권사업 허용 : 역세권 사업 시행 시 개별 역세권 사업관련 기준 적용	

※ 상한용적률은 향후 변화된 구역여건을 반영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완화항목 및 인센티브를 확인하여 심의를 통하여 수립 및 결정
※ 용도완화 계획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획지H4, l2 내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에 대한 바닥면적 제한 완화
※ 기존 건축물의 경우 현재의 차량진출입 및 현 용도를 허용하며, 신축 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계획지침을 적용
※ 건축물 용도계획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및 「주택법」 개정시 개정된 내용 적용

(이 하 여 백)

▌특별계획구역 8(변경)

<table>
<tr><th colspan="3">구분</th><th>계획내용</th><th>비고</th></tr>
<tr><td colspan="3">위치</td><td>• 압구정동 494일원</td><td>갤러리아백화점</td></tr>
<tr><td colspan="3">구역면적</td><td>• 20,362.9㎡</td><td>오기 정정</td></tr>
<tr><td colspan="3">용도지역 · 지구</td><td>• 제3종일반주거지역 / 특화경관지구</td><td></td></tr>
<tr><td colspan="3">획지계획</td><td>• 획지 G3, I2</td><td>4구역 결정고시
(‘25.09.11)에 따른
획지번호 변경</td></tr>
<tr><td colspan="3">기반시설계획</td><td>•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압구정로변 차로 확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참조)</td><td></td></tr>
<tr><td rowspan="3">용도계획</td><td rowspan="2">불허용도</td><td rowspan="2">획지
G3,I2</td><td>•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업무시설(1층에 한함), 총포판매소, 장의사, 게임제공업소,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이용업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td><td></td></tr>
<tr><td>•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 단, 위용도 중 시(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외하며, [별표1]의 운영기준 적용</td><td>본
지구단위계획
“3-2. 건축물 용도
결정조서”
‘다.불허용도’
[별표1]</td></tr>
<tr><td>권장용도</td><td>획지
G3,I2</td><td>전층: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제외)
• 제1 · 2종 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사회복지시설
• 청소년 수련시설
•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저층부(1~2층):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사무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서점
• 판매시설</td><td></td></tr>
<tr><td rowspan="4">밀도계획</td><td>건폐율</td><td>획지
G3,I2</td><td>• 50% 이하
※ 창의·혁신디자인을 통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시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적용배제 되며, 향후 건축위원회 등 관련 심의에 따라 최대 60% 이내에서 최종 건폐율 결정</td><td></td></tr>
<tr><td rowspan="2">용적률</td><td>획지G3</td><td>• 기준(허용)용적률 : 250% 이하
• 상한 용적률 : 법적 용적률 2배 이하
※ 2025년 4월 29일 제1차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 개최결과에 따라 창의·혁신디자인 용적률 인센티브량은 최대 범위 56.1% 이하로 정하며, 향후 건축위원회 등 관련 심의에 따라 최종용적률 부여</td><td rowspan="2"></td></tr>
<tr><td>획지I2</td><td>• 기준(허용)용적률 : 250% 이하
• 상한 용적률 : 법적 용적률 2배 이하
※ 2025년 4월 29일 제1차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 개최결과에 따라 창의·혁신디자인 용적률 인센티브량은 최대 범위 55.8% 이하로 정하며, 향후 건축위원회 등 관련 심의에 따라 최종용적률 부여</td></tr>
<tr><td>높이</td><td>획지
G3,I2</td><td>• 60m 이하</td><td></td></tr>
</table>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획지 G3,I2	• 건축한계선 – 선릉로(대로 3-71) 10m, 압구정로 6m, 신설도로(중로 3-14) 2m, 그 외 이면도로 3m	
	대지내 공지	전면 공지	• 본 지구단위계획 "3-4.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에 따름 ※ 획지G3 서측도로(중로3-12)변 보도부속형 전면공지(3m)로 조성 ※ 획지I2 신설도로(중로3-14)변 보도부속형 전면공지(2m)로 조성	
건축물 배치 및 형태	배치 및 형태		• 테마별 색상 적용 및 입면구조 분절, 창호 변화를 통해 개성있는 구성 연출 • 복합 건축물의 경우 저층부는 중층부 및 고층부와 구분되는 안정감 있는 재료 사용 및 필로티 조성을 통해 개방감 확보	조성위치는 지침도를 따름
	야간경관 특화구간		• 압구정로, 선릉로변 일부 구간 설치 • 본 지구단위계획 "3-4.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에 따름	
	기타 외관요소		• 옥외설비, 담장의 설치, 광고물 설치제한 : 본 지구단위계획 "3-4.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에 따름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공공기여 총량		• 공공기여 기준 대지면적 : 18,694.5㎡ • 공공기여 비율 : 10.25% ※ 부지가액은 공시지가의 2배 적용 (공시지가: 47,940,000원/㎡)	
	공공시설, 기반시설 및 설치비용		〈도로〉 • 총 도로 면적 : 661.5㎡ 〈지하광장〉 • 연면적 : 약 1,895.6㎡ ※ 백화점 매장 출입구 연결구간 제외한 연면적 〈청담고 부지 내 공공시설등〉 • 설치 연면적 : 약 17,500㎡ (공사비 약 856억 원) • 설치 용도 : 디자인센터 등 문화복합시설 ※ 향후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기준(자연지반율 등) 완화적용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증가시 공사비 최대 약 1,223억 원 내에서 공공기여량 조정될 수 있음	
창의·혁신 디자인 세부 계획	창의·혁신 디자인 적용에 따른 계획		• 건축물 형태 및 외관 계획 – 서울의 새로운 아이콘이 되는 독창적이며 파급력 있는 디자인 제시 – 판매시설의 폐쇄적인 공간구조에서 탈피한 새로운 유형의 판매시설 공간 제시 – 위화감을 상쇄할 수 있는 매스의 분절 계획 – 한강으로의 보행통경축을 강조하는 매스 디자인 계획 – 지역 특성 및 정체성과 조화되는 외부공간의 통합디자인 제시	창의·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 참고 (시행지침)
	공공성 확보		• 녹지환경 개선 및 활성화 • 지역 기여 프로그램·시설 도입 – 지하광장 내 공공문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실내형 공개공간 조성 – 사회적 지원공간 조성 • 전망·휴식 등을 위한 실내 공유공간 조성 – 중층 정원 – 옥상 정원 • 공공공간 및 공유공간의 연결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단지 내 주차 및 차량동선, 단지 내 보행동선 : 본 지구단위계획 "4-1.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에 따름 ※ 획지 G3 : 선릉로변 차량진출입 일부구간 허용 ※ 획지 I2 : 6구역 내 중로 3-13의 개설 전까지 한시적으로 선릉로변 차량진출입 허용	지침도에 따름
기타사항			• 지역여건, 상가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획지G3, I2 주거용도 허용여부 및 비율 결정 • 높이 및 건폐율 관련 사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공공기여 계획, 창의적인 건축계획 등과 연계하여 시(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완화 가능 • 역세권사업 허용 : 역세권 사업 시행 시 개별 역세권 사업관련 기준 적용	

※ 상한용적률은 향후 변화된 구역여건을 반영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완화항목 및 인센티브를 확인하여 심의를 통하여 수립 및 결정
※ 용도완화 계획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획지G3, I2 내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에 대한 바닥면적 제한 완화
※ 기존 건축물의 경우 현재의 차량진출입 및 현 용도를 허용하며, 신축 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계획지침을 적용
※ 건축물 용도계획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및 「주택법」 개정시 개정된 내용 적용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밀도 계획	건폐율	획지 G3,I2	• 개발규모 완화조건 추가 명기	• 서울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사업 진행에 따른 특례사항 반영
	용적률	획지 G3,I2		
	높이	획지 G3,I2	• 개발규모 완화조건 추가 명기	• 서울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사업 진행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한 완화사항 반영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 이면부 3m → 이면도로 3m • 신설도로(중로 3-14) 2m 추가	• 서울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사업 진행에 따른 건축선 재조정
	대지 내 공지		• 획지G3 서측도로(중로3-12)변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조성 조건 명기 • 획지 I2 신설도로(중로3-14)변 보도부속형 전면공지(2m)로 조성	• 서울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사업 진행에 따른 사항 반영
건축물 배치 및 형태	야간경관 특화구간		• 야간경관 특화구간 항목 추가	• 미디어파사드 등 다양한 조명방식을 활용하여 압구정로변 특화상권 및 청담명품거리와 연속되는 경관거점 조성 및 다채로운 도시경관 창출 • 주거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화 구간 설정 및 관리
공공 기여에 관한 사항	공공기여 총량		• 공공기여 기준 대지면적 및 공공기여율 명기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순부담) 명기
	공공시설, 기반시설 및 설치비용		• '도로' 항목 추가 • '지하광장' 항목 추가 • '청담고 부지 내 공공시설등' 항목 추가	•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을 위한 공공기여 항목 명기
창의·혁신디자인 세부계획			• 창의·혁신디자인 세부계획 (창의혁신 디자인 적용에 따른 계획, 공공성 확보 계획) 항목 추가	• 향후 창의·혁신디자인 이행담보를 위한 건축물 배치 및 형태 계획 설정
교통처리계획			• 선릉로변 차량진출입 일부구간 허용	• 지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영향 최소화 및 주변 정비구역 개발시점을 고려, 선릉로변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일부 허용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1.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2.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3. 창의혁신디자인 세부계획(신설)

▌창의혁신디자인 세부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창의혁신 디자인 적용에 따른 계획	• 창의·혁신 디자인 확보를 위한 건축물 형태 및 외관계획 - 서울의 새로운 아이콘이 되는 독창적이며 파급력 있는 디자인 제시 - 판매시설의 폐쇄적인 공간구조에서 탈피한 새로운 유형의 판매시설 공간 제시 - 위화감을 상쇄할 수 있는 매스의 분절 계획 - 한강으로의 보행통경축을 강조하는 매스 디자인 계획 - 지역 특성 및 정체성과 조화되는 외부공간의 통합디자인 제시	-
공공성 확보	• 녹지환경 개선 및 활성화 • 지역 기여 프로그램·시설 도입 - 지하광장 내 공공문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실내형 공개공간 조성 - 사회적 지원공간 조성 • 전망·휴식 등을 위한 실내 공유공간 조성 - 중층 정원 - 옥상 정원 • 공공공간 및 공유공간의 연결	창의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 참고 (시행지침)

※ "디자인혁신 및 공유공간 운영·관리 협약서"는 본 결정도서에 첨부되어 있음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창의혁신 디자인 세부계획	• 창의혁신디자인 세부계획 항목 신설	• 서울시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사업 진행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창의혁신디자인 계획을 관리하기 위해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항목 신설 • 향후 세부계획에 대한 이행담보를 위해 '창의혁신디자인적용에 따른 계획' 항목과 '공공성 확보' 항목 신설

(이 하 여 백)

Ⅲ.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안)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특별계획구역 8	압구정동 494일원	20,362.9	-	20,362.9	서고 제2023-517호 (2023.11.23)	갤러리아백화점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 변경

1) 도로 : 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연번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1	기정	대로	3	71	25~27 (25)	보조간선 도로	4,900 (60.5)	압구정동	도곡동 (대로2-28)	일반도로	건고 제198호 (1971.04.07.)	중복결정: 철도②,③
	변경	대로	3	71	25~27 (25)	보조간선 도로	4,900 (60.5)	압구정동	도곡동 (대로2-28)	일반도로	건고 제198호 (1971.04.07.)	중복결정: 철도②,③ 광장②
2	기정	중로	3	12	12	국지도로	67	대로2-28	압구정 490	일반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
	변경	중로	3	12	12	국지도로	67	대로2-28	압구정 490	일반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선형조정 (가각 추가)
3	기정	중로	3	13	12	국지도로	141	대로3-71	청담 고등학교	일반도로	서고제2023-517호 (2023.11.23)	-
4	신설	중로	3	14	10	국지도로	60.5	중로3-13	대로2-28	일반도로	-	-

※ ( )은 특별계획구역 내 해당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3-71	대로 3-71	• 일부구간 중복결정	• 선릉로(대로 3-71) 하부 지하광장 설치를 위한 일부 구간 중복결정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3-12	중로 3-12	• 선형 조정 (가각 추가)	• 압구정로에서 중로3-12 진입을 위한 도로 가각 추가
-	중로 3-14	• 도로 신설 - 폭원 : 10m - 연장 : 60.5m	• 압구정로와 선릉로 교차구간 일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2) 주차장 : 변경없음

3) 철도 : 변경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변경	②	철도	지하철 역사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청담동 84 일원	6,488.0 (2,489.0)	건고 87호 (2005.04.16)	중복결정 : 대로 3-71 광장②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변경	③	철도	일반철도 (분당선)	왕십리역	삼성동 172-20	6,830 (251)	190,795 (4,227)	건고 6호 (2007.01.18)	중복결정 : 대로 3-71 광장②

※ ( )의 연장 및 면적은 구역 내 해당사항임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철도	• 일부 구간 중복결정 - 중복결정 면적 : 872.8㎡	• 선릉로(대로 3-71) 하부 지하광장 설치를 위한 일부구간 중복결정
③	철도	• 일부 구간 중복결정 - 중복결정 면적 : 233.5㎡	• 선릉로(대로 3-71) 하부 지하광장 설치를 위한 일부구간 중복결정

(이 하 여 백)

나. 도시공간시설 : 변경

1) 녹지 : 변경없음

2) 공원 : 변경없음

3) 광장 : 변경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②	광장 (압구정 로데오역)	지하광장	압구정로데오역	2,045.6 (981.2)	-	중복결정 : 대로3-71 철도②,③

※ ( )은 특별계획구역8 내 해당사항임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②	광장 (압구정 로데오역)	• 광장 신설 - 면적 : 2,045.6㎡	• 지하철역 및 지상공간을 연결하는 시민 여가· 휴게공간 조성

4) 공공공지 : 변경없음

다. 공공 · 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라. 방재시설 : 변경없음

(이 하 여 백)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

가. 가구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나.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구번호	획지번호 (도면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G	G3	압구정동 494일원	10,203.4	증) 18.2	10,221.6	특별계획구역 8 (갤러리아백화점)
I	I2	압구정동 515일원	8,549.8	감) 636.9	7,912.9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획지번호 (도면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G3	• 면적 증가 (증 18.2㎡) - 면적 : 10,203.4㎡ ⇒ 10,221.6㎡	• 5구역 정비계획에 따른 기존 도로 폐지에 따라 대지 내 도로 가각부 획지로 편입
I2	• 면적 감소 (감 636.9㎡) - 면적 : 8,549.8㎡ ⇒ 7,912.9㎡	• 압구정로와 선릉로 교차구간 일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도로 신설

(이 하 여 백)

2. 건축물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

▌건축물의 용도계획 (불허/권장/허용용도)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불허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업무시설(1층에 한함), 총포판매소, 장의사, 게임제공업소,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이용업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좌동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 단, 위용도 중 시(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외하며, [별표1]의 운영기준 적용	• 좌동	본 지구단위계획 "③-2. 건축물 용도 결정조서" '다.불허용도' [별표1]
권장 용도	전층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제외)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사회복지시설 • 청소년 수련시설 •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좌동	
	저층부 (1~2층)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사무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서점 • 판매시설	• 좌동	

(이 하 여 백)

나. 건축물의 규모

1)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제3종 일반주거 지역	획지 G3,I2	• 50% 이하 ※ 창의·혁신디자인을 통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시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적용배제 되며, 향후 건축위원회 등 관련 심의에 따라 최대 건폐율 60% 이내 에서 최종 건폐율 결정	좌동	-

2) 용적률

▌건축물의 용적률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획지 G3	• 기준(허용)용적률 : 250% 이하 • 상한 용적률 : 법적 용적률 2배 이하 ※ 2025년 4월 29일 제1차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창의·혁신디자인 용적률 인센티브량은 최대 범위 56.1% 이하로 정하며, 향후 건축위원회 등 관련 심의에 따라 최종용적률 부여	좌동	-
획지 I2	• 기준(허용)용적률 : 250% 이하 • 상한 용적률 : 법적 용적률 2배 이하 ※ 2025년 4월 29일 제1차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창의·혁신디자인 용적률 인센티브량은 최대 범위 55.8% 이하로 정하며, 향후 건축위원회 등 관련 심의에 따라 최종용적률 부여	좌동	-

(이 하 여 백)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 - 획지 G3

구분	내용		비고
상한 용적률 ①	토지 제공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량 = 허용용적률 * (1.3*가중치*α토지) • 세부기준은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 따름	법적 용적률의 2배 이하까지 완화
	공공시설등 설치 제공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량 = 허용용적률*(1.0*가중치*α건축물) • 세부기준은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 따름	
상한 용적률 ②	창의·혁신 디자인 특례	• 창의·혁신디자인 적용 시 시행령 용적률의 1.2배 이내 • 창의·혁신디자인 혁신방안은 시에서 제공하는 디자인가이드라인 기준을 적용 • 2025년 4월 29일 제1차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 개최결과에 따라 창의·혁신디자인 용적률 인센티브량은 최대 범위 56.1% 이하로 정하며, 향후 건축위원회 등 관련 심의에 따라 최종용적률 부여	시행령 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

※ 향후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따라 창의·혁신디자인 특례용적률은 조정될 수 있음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 - 획지 I2

구분	내용		비고
상한 용적률 ①	토지 제공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량 = 허용용적률 * (1.3*가중치*α토지) • 세부기준은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 따름	법적 용적률의 2배 이하까지 완화
	공공시설등 설치 제공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량 = 허용용적률*(1.0*가중치*α건축물) • 세부기준은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 따름	
상한 용적률 ②	창의·혁신 디자인 특례	• 창의·혁신디자인 적용 시 시행령 용적률의 1.2배 이내 • 창의·혁신디자인 혁신방안은 시에서 제공하는 디자인가이드라인 기준을 적용 • 2025년 4월 29일 제1차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 개최결과에 따라 창의·혁신디자인 용적률 인센티브량은 최대 범위 55.8% 이하로 정하며, 향후 건축위원회 등 관련 심의에 따라 최종용적률 부여	시행령 용적률의 1.2배까지 완화

※ 향후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따라 창의·혁신디자인 특례용적률은 조정될 수 있음

3) 높이

▌건축물의 높이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제3종 일반주거 지역	• 60m 이하	좌동	-

3. 건축물 배치 · 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

▌건축물의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축선 및 대지내 공지	건축선	획지 G3,I2	• 선릉로(대로 3-71) : 10m • 압구정로 : 6m • 신설도로(중로 3-14) : 2m • 그 외 이면도로 : 3m	• 좌동	조성위치는 지침도에 따름
	대지내 공지	전면 공지	• 본 지구단위계획 "3-4.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에 따름 ※ 획지G3 서측도로(중로3-12)변 보도부속형 전면공지(3m)로 조성 ※ 획지I2 신설도로(중로3-14)변 보도부속형 전면공지(2m)로 조성	• 좌동	
건축물 배치 및 형태	배치 및 형태		• 테마별 색상 적용 및 입면구조 분절, 창호 변화를 통해 개성있는 구성 연출 • 복합 건축물의 경우 저층부는 중층부 및 고층부와 구분되는 안정감 있는 재료 사용 및 필로티 조성을 통해 개방감 확보	• 좌동	
	야간경관 특화구간		• 압구정로, 선릉로변 일부 구간 설치 • 본 지구단위계획 "3-4.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에 따름	• 좌동	
	기타 외관요소		• 옥외설비, 담장의 설치, 광고물 설치제한 : 본 지구단위계획 "3-4. 건축물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조서"에 따름	• 좌동	

(이 하 여 백)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1.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교통처리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단지 내 주차 및 차량동선, 단지 내 보행동선 : 본 지구단위계획 "4-1.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에 따름 ※ 획지 G3 : 선릉로변 차량진출입 일부구간 허용 ※ 획지 I2 : 6구역 내 중로 3-13의 개설 전까지 한시적으로 선릉로변 차량진출입 허용	좌동	지침도에 따름

(이 하 여 백)

2. 창의혁신디자인 세부계획 : 신설

▌창의혁신디자인 세부계획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창의혁신 디자인 적용에 따른 계획	• 창의·혁신 디자인 확보를 위한 건축물 형태 및 외관계획 -서울의 새로운 아이콘이 되는 독창적이며 파급력 있는 디자인 제시 -판매시설의 폐쇄적인 공간구조에서 탈피한 새로운 유형의 판매시설 공간 제시 -위화감을 상쇄할 수 있는 매스의 분절 계획 -한강으로의 보행통경축을 강조하는 매스 디자인 계획 -지역 특성 및 정체성과 조화되는 외부공간의 통합디자인 제시	• 건축물 형태 [매스의 조형] - 한강으로의 보행통경축에 대응하는 오목한 형태의 매스 디자인으로 한강으로 가는 길에 상징적 건축경관 조성 (D3) - 시민들에게 개방되는 중층정원을 강조하는 디자인을 통해 가로공간에서의 인지성을 강조하고 폐쇄적인 기존 백화점 디자인 방식에서 탈피 (D5) [매스의 분절] - 기단부와 상층부로 배분하여 보행자의 시각적 위화감을 상쇄하고 입체적인 건축경관 제공 (C3, C4) - 수평의 긴 매스를 대칭적으로 배치하여 인근 고층 주거지와 대비되는 상징경관 형성 (C4) [접지층 높이 및 형태] - 선릉로 및 압구정로변 대지를 최대한 단차없는 공간으로 계획 (A3, A6) - 공개공지 및 조경공간 등 열린공간을 확보 (B3) • 건축물 외관 [재료] - 실·내외의 계절변화를 투영하는 유리 외벽 사용 (D6) - 실내형 공개공간 및 중층정원 식재를 통해 도심 내 수직 녹지환경 조성 (D6) [색채] - 주간: 주변 경관을 반영하는 유리를 주재료로 사용 (C1) - 야간: 미디어파사드 등 다양한 조명방식 적용하여 다채로운 색채 구현 (C1) [미래사회 대응] - 자연환기 가능한 이중외피 구조, 태양광발전 시스템 등 적용하여 에너지효율 강화 (E3) - 옥상녹화 계획으로 일사차단 (E3) - 지하광장과 실내형 공개공간, 중층정원의 유연한 공간구성이 가능하도록 계획 (E1, E2) - 지상부 자전거 및 PM보관소 계획 (E4)	
공공성 확보	• 녹지환경 개선 및 활성화 • 지역 기여 프로그램 · 시설 도입 - 지하광장 내 공공무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실내형 공개공간 조성 - 사회적 지원공간 조성 • 전망 · 휴식 등을 위한 실내 공유공간 조성 - 중층 정원 - 옥상 정원 • 공공공간 및 공유공간의 연결	• 녹지환경 개선 및 활성화 - 지형차가 있는 압구정로와 대지간 옹벽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조경계획 도입 (D4) - 공개공지, 실내형 공개공간, 중층정원, 옥상정원에 다양한 식재계획을 적용하여 계절별로 다양한 경관을 연출하고 수직동선으로 연결하며 일상의 휴게공간으로 조성 (D6) - 건물이 가진 곡선의 건축어휘를 외부 가로, 시설물, 조경계획에 적용하여 강력하고 일체화된 공간 정체성 부여 (C2, C5) - 공개공지 및 옥상정원 등에 미러폰드 조성하여 일상적 수공간 경험 제공 (D2) • 지역 기여 프로그램 · 시설 도입 [지하광장 내 공공문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지하철 이용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하철 연결구간과 통합적으로 계획 (A7, C7) -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하광장 영역 및 일부 대지 내 개방공간까지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경계를 최소화한 디자인 도입 (지하2층 영역) (A3) ※추후 공공(서울시, 강남구)과의 협의에 의한 타운매니지먼트 계획 등을 수립하여 다양한 지역문화 이벤트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지하철 역사(압구정로데오역) 운영시간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개방시간 설정 (A5, B4, C6) [실내형 공개공간 조성] - 쉽게 인지·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요 결절부에 설치하며 가로에서 한강으로의 시야 개방감 확보를 위해 투명한 유리외벽으로 계획 (A1, B3) - 지하광장 및 외부 보행가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며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구조로 계획 (A1, A5)	창의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 참고 (시행지침)

구분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함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세부적인 운영시간 제한 가능 [사회적 기여공간 조성] - 내외부 근로자를 위해 자연채광과 통풍이 가능한 위치에 교육세미나실, 직원휴게실을 계획하고, 지역에 필요한 놀이 및 돌봄시설 추가 계획 (E5) • 전망 · 휴식 등을 위한 실내 공유공간 조성 [중층 정원] - 지하광장~실내형 공개공간에서 연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수직 동선 계획 (B1, B2) - 일반 시민들을 위해 개방 (운영시간 10:30~20:00) [옥상 정원] - 옥상부 녹화 휴게공간 조성 (B1, B2) - 일반 시민들을 위해 개방 (운영시간 10:30~20:00) • 공공공간 및 공유공간의 연결 - 대지 내외에 조성된 개방공간을 연속적인 보행으로 연결하여 선릉로로 분리된 두 개 부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 (지하광장~건축물 내 공유공간(지상·하)~1층 실내형 공개공간~중층정원) (A2, A4)	

※ "디자인혁신 및 공유공간 운영 · 관리 협약서" 는 본 결정도서에 첨부되어 있음

3.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 : 신설

▌공공기여 내용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공공기여 총량	• 공공기여 기준 대지면적 : 18,694.5㎡ • 공공기여 비율 : 10.25% ※ 부지가액은 공시지가의 2배 적용 (공시지가 : 47,940,000원/㎡)	• 좌동	
공공시설, 기반시설 및 설치비용	〈도로〉 • 총 도로 면적 : 661.5㎡	• 좌동	
	〈지하광장〉 • 연면적 : 약 1,895.6㎡ ※ 백화점 매장 출입구 연결구간(150㎡) 제외한 연면적	• 좌동	-전체 지하광장 설치 연면적 : 약 2,045.6㎡ -관리청: 서울특별시 (도로시설과)
	〈청담고 부지 내 공공시설등〉 • 설치 연면적 : 약 17,500㎡ (공사비 약 856억 원) • 설치 용도 : 디자인센터 등 문화복합시설 ※ 향후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기준(자연지반율 등) 완화적용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증가시 공사비 최대 약 1,223억 원 내에서 공공기여량 조정 될 수 있음	• 좌동	-청담고 이전 후 해당 부지에 공공시설등(문화복합시설) 건립 예정 -관리청: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담당관, 어르신복지과)

※ 지하광장 및 청담고 부지 내 공공시설등의 세부 연면적 및 활용방향은 관계부서 협의 및 실시계획인가 등을 통해 변동 가능

▌지하광장 공공기여 면적 산정

구분	지하광장	비고
총 공사비(①)	약 348억 원	전체 지하광장 공사비 약 376억원 (설계·감리비 포함)
시설연면적(②)	약 1,895.6㎡	백화점 지하매장 출입구 연결구간 면적 제외 (전체 지하광장 연면적 약 2,045.6㎡)
부지가액(③)	95,880,000원/㎡	공시지가의 두 배(2025년 기준)
건축물 환산부지면적	약 362.9㎡	환산면적 = 총 공사비(①)/부지가액(③)

※ 지하광장의 세부 연면적은 관계부서 협의 및 실시계획인가 등을 통해 변동 가능

▌청담고 부지 내 공공시설등 공공기여 면적 산정

구분	공공시설등(문화복합시설)	비고
총 공사비(①)	약 856억 원	설계·감리비 포함
시설연면적(②)	약 17,500㎡	시설연면적(②) = 총 공사비(①) / 단위 면적당 공사비 ※단위 면적당 공사비는 2024년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문화및집회시설 신축비용(4,814,000원/㎡) 적용

구분	공공시설등(문화복합시설)	비고
부지가액(③)	95,880,000원/㎡	공시지가의 두 배(2025년 기준)
건축물 환산부지면적	약 892.8㎡	환산면적 = 총 공사비(①)/부지가액(③)

※ 청담고 부지 내 공공시설등의 연면적 및 용도는 공사비 약 856억 원 내에서 관계부서 협의 및 세부 건축계획 등을 통해 변동 가능

Ⅳ.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기타사항

세부내용, 도면 등의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미래공간담당관(☎02-2133-7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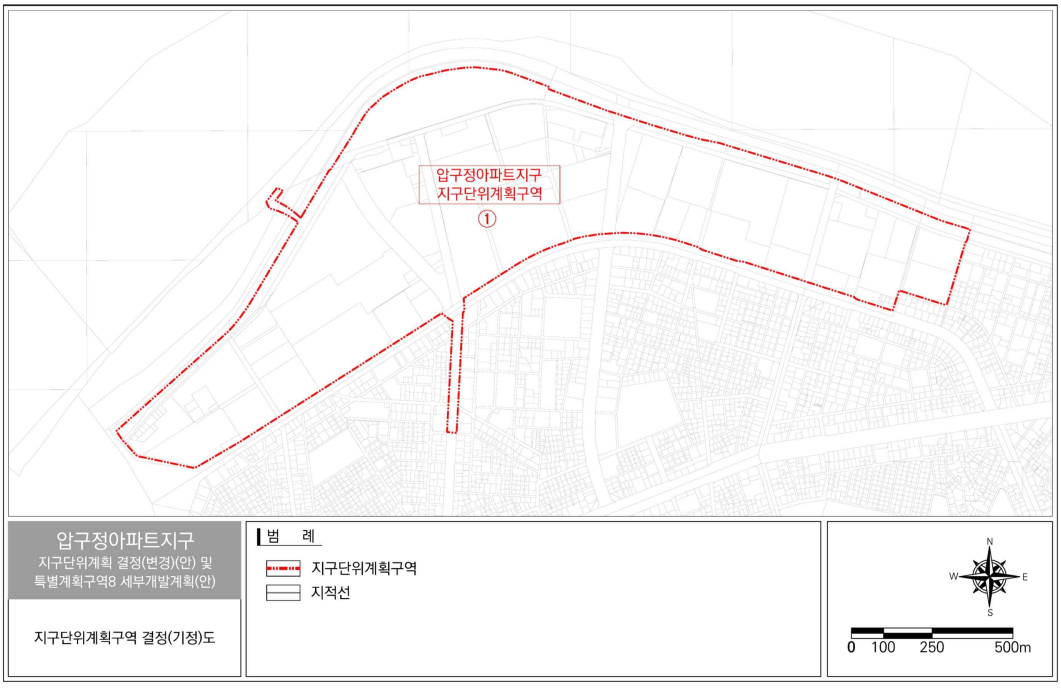

(이 하 여 백)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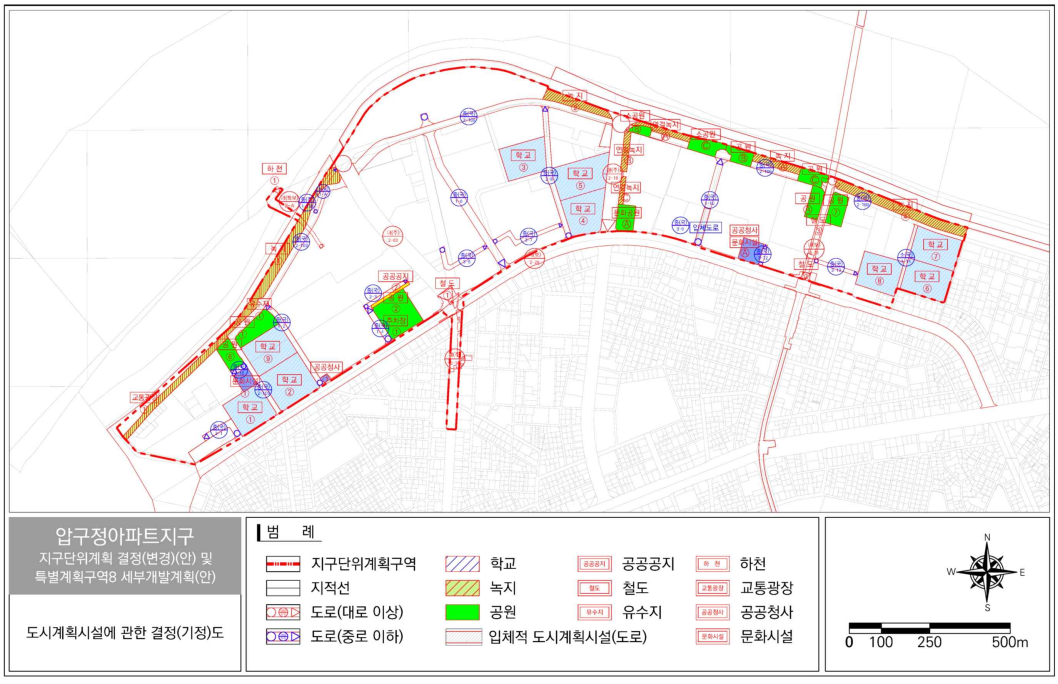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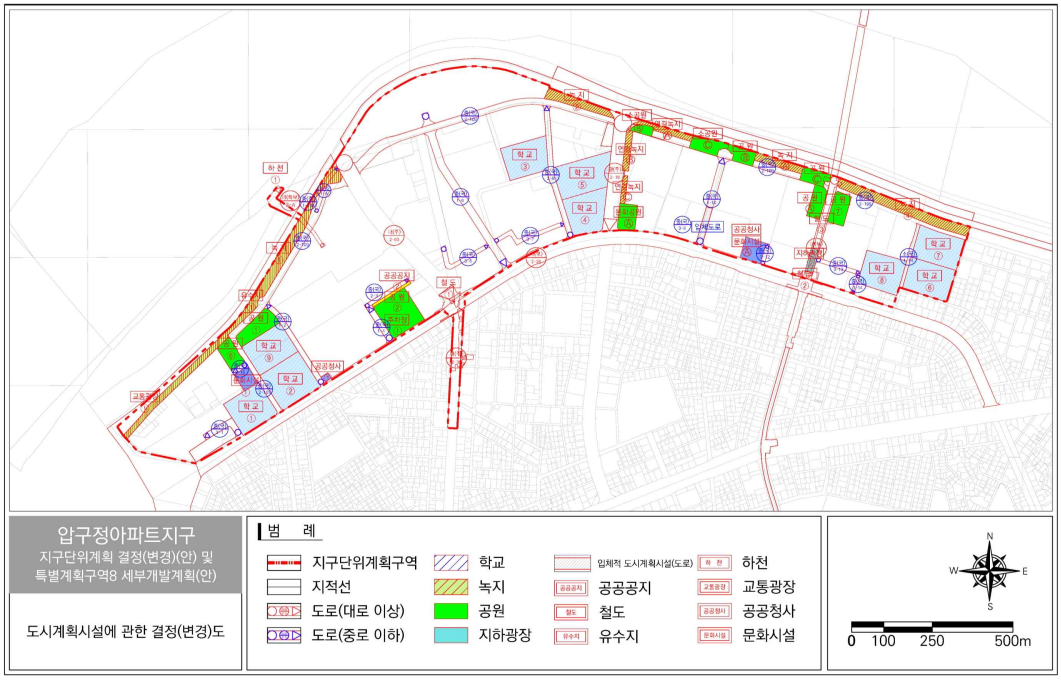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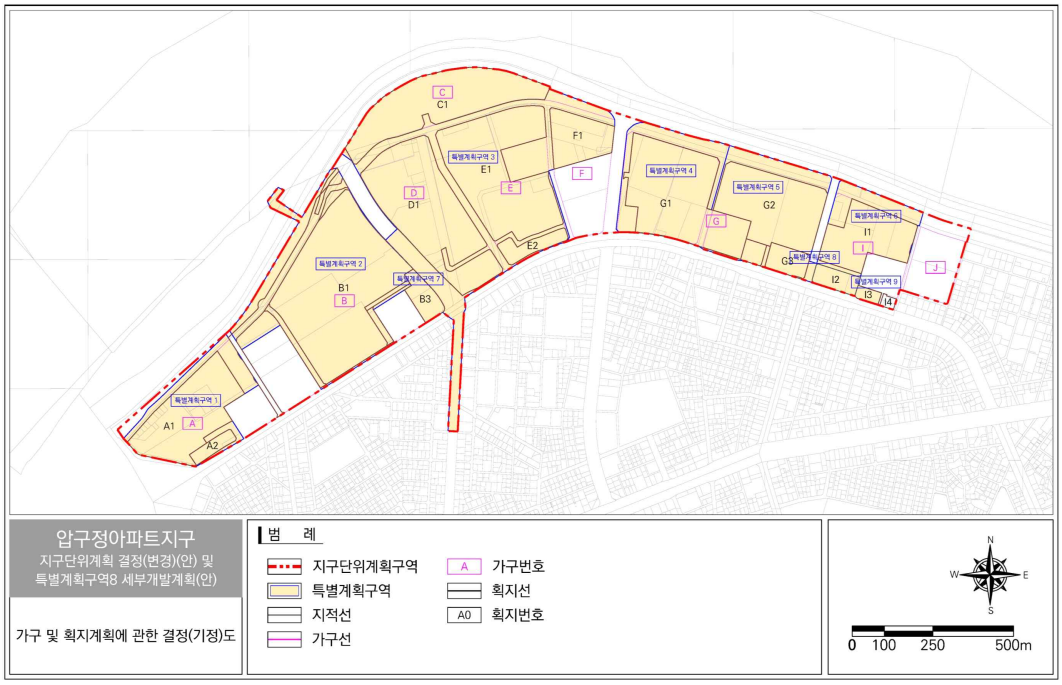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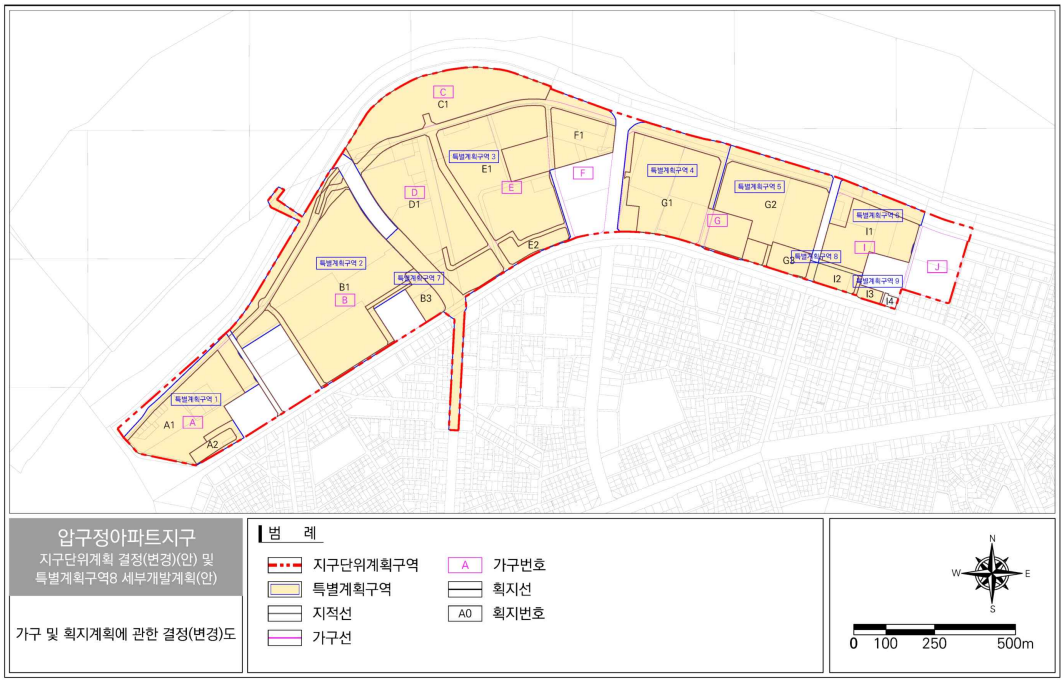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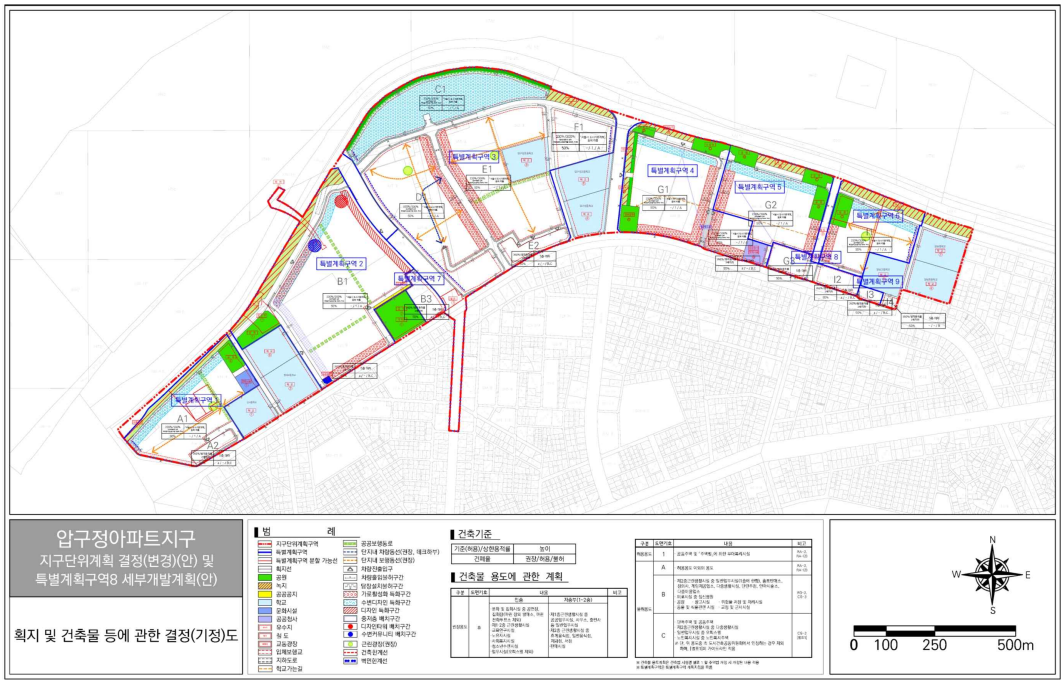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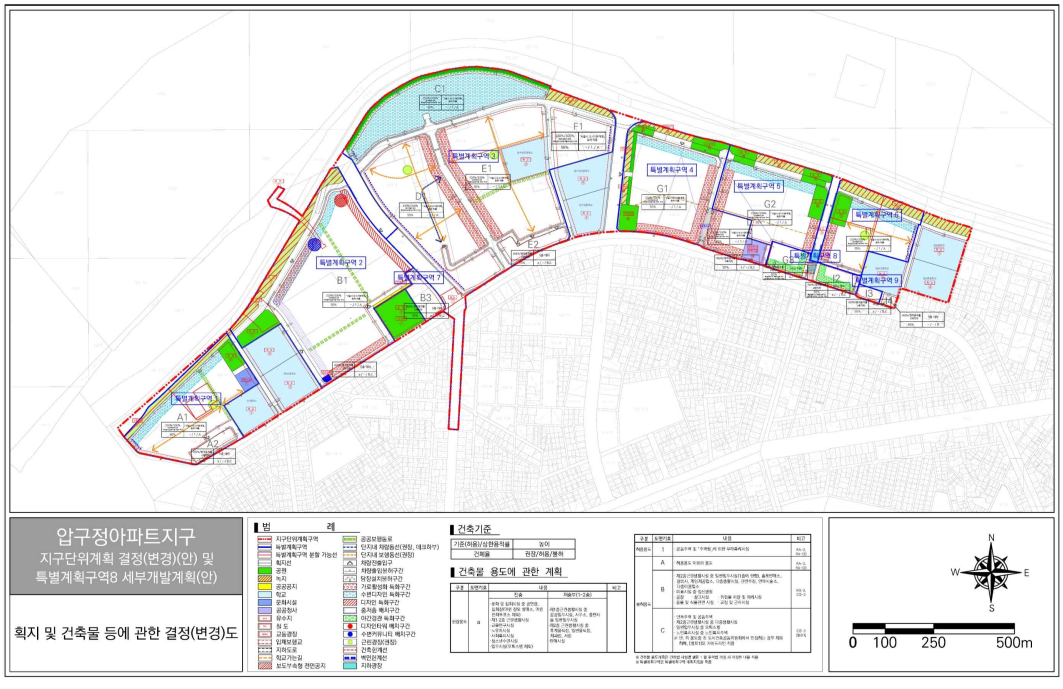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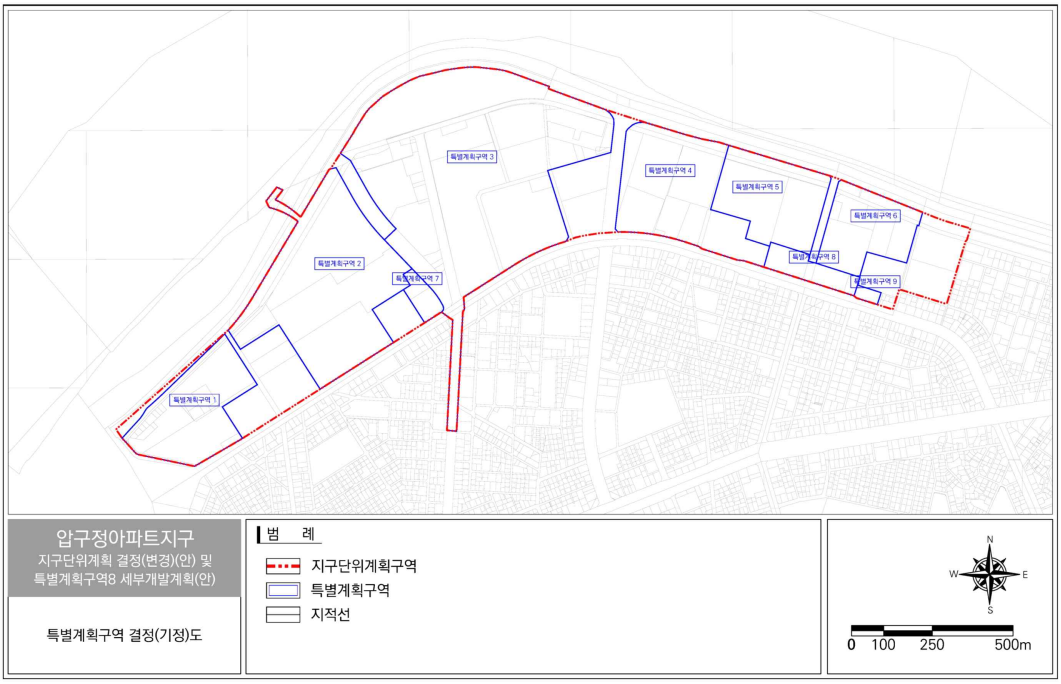

(이 하 여 백)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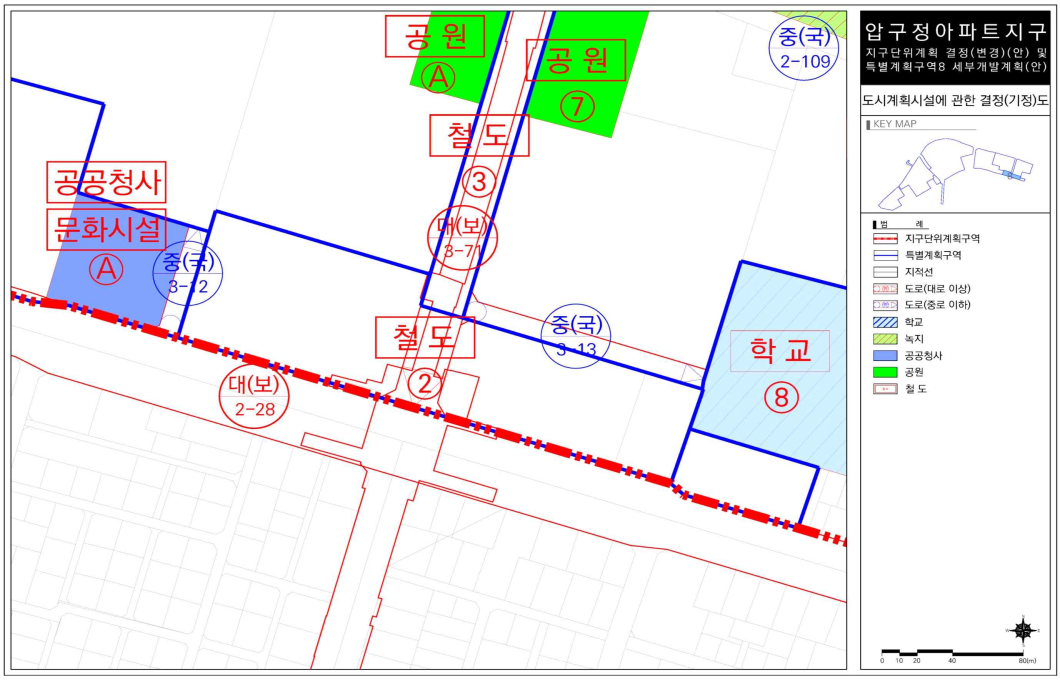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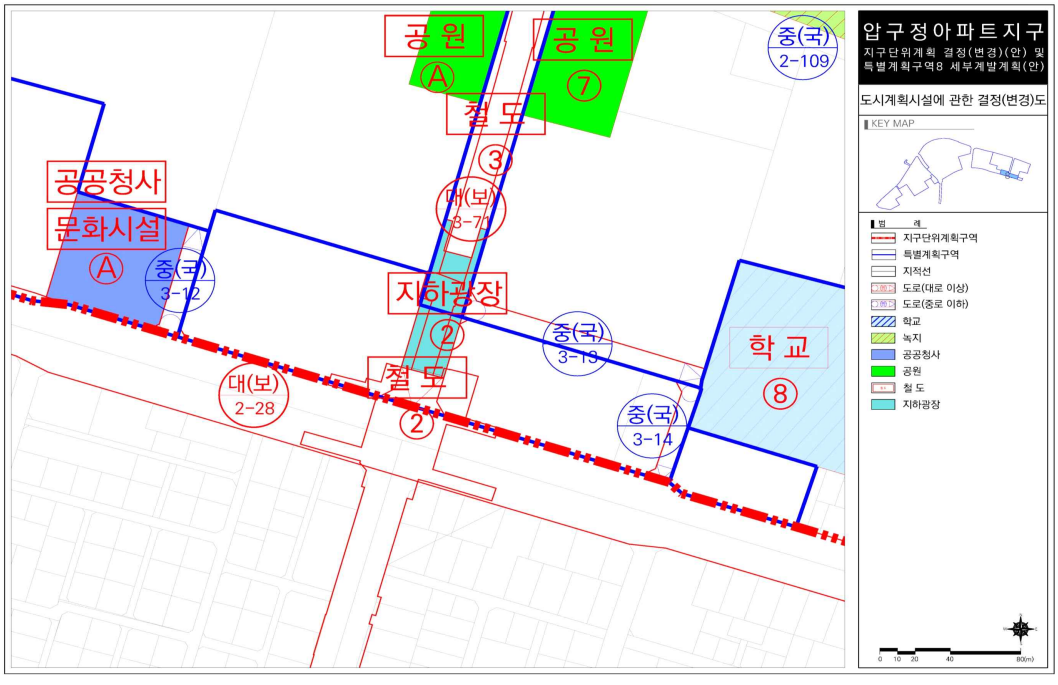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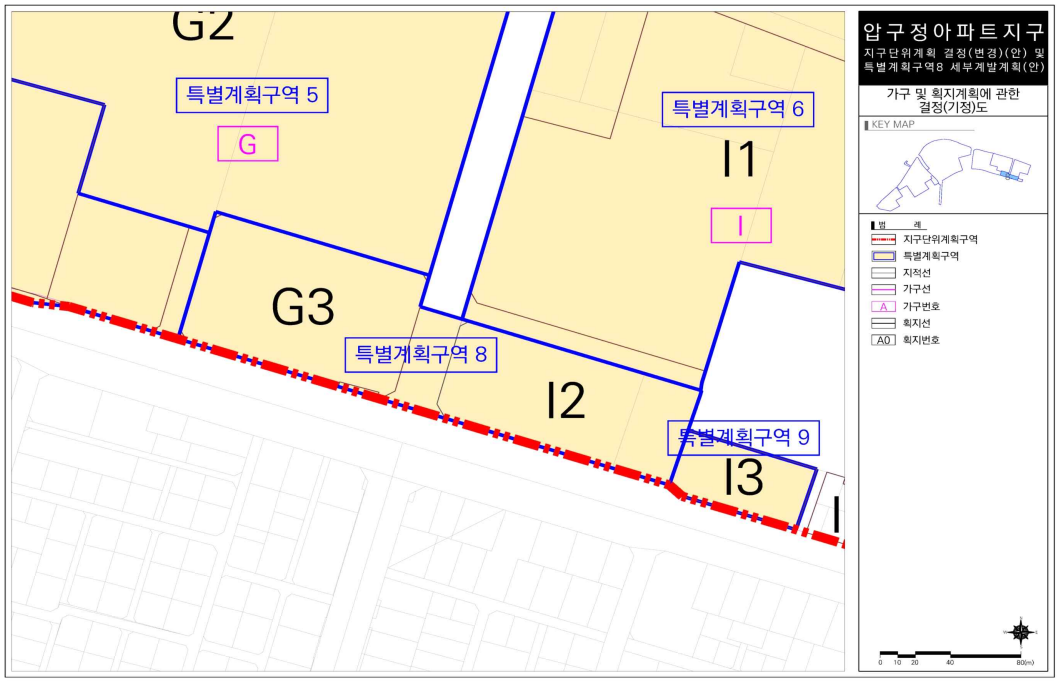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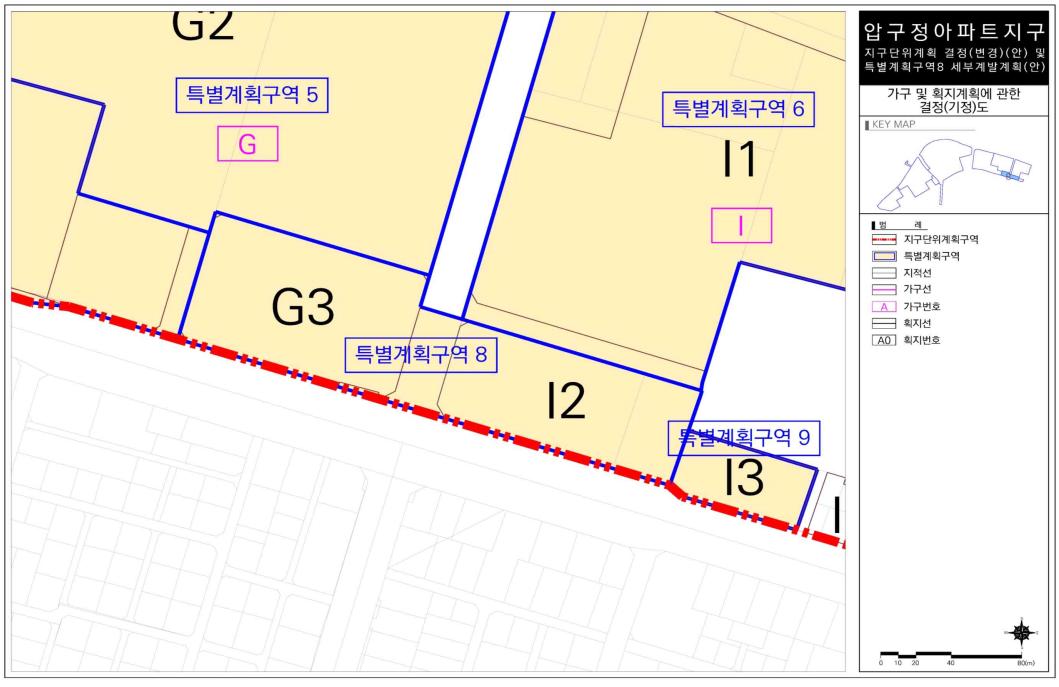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 8 세부개발계획 종합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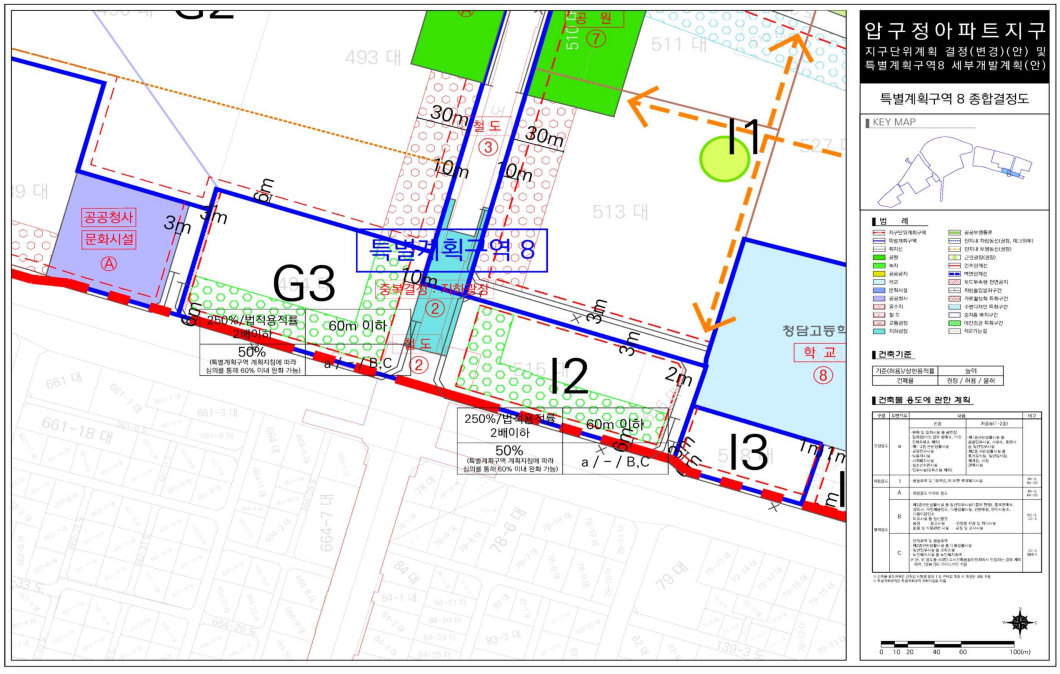

(이 하 여 백)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97호

월드컵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0-198호(2000.07.25.)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07호(2015.07.16.)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01호(2002.05.29.)로 최초 공원조성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390호(2025.07.24.)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된 마포구 상암동 478-1번지 일대 월드컵근린공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월드컵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월드컵공원(노을공원) 내 계단설치를 위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478-1번지 일대
3. 면　　적 : 2,284,085㎡
4.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2133-2067) 및 서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300-5536)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월드컵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조서

가. 총괄표(위치: 마포구 상암동 478-1번지 일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2,284,085	775,939.59	67	7,845.31	11,560.00	4,530	2,284,085	775,939.59	67	7,845.31	11,560.00	4,531	증 1기
기반시설	소계	289,557.6	289,557.6					289,557.6	289,557.6					
	도로	227,411.4	227,411.4					227,411.4	227,411.4					
	광장	62,146.2	62,146.2					62,146.2	62,146.2					
조경시설		235,619.10	235,619.10				394	235,619.10	235,619.10				394	
휴양시설		70,090.6	70,090.6				1,410	70,090.6	70,090.6				1,410	
유희시설		5,826	5,826				159	5,826	5,826				159	
운동시설		75,886	75,886				20	75,886	75,886				20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교양시설	20,868	20,868	2	2,098	3,794	37	20,868	20,868	2	2,098	3,794	37	
편익시설	69,406.03	69,406.03	27	2,301.15	2,381.86	119	69,406.03	69,406.03	27	2,301.15	2,381.86	120	증 1기
관리시설	6,186.26	6,186.26	38	3,446.16	5,384.14	2,391	6,186.26	6,186.26	38	3,446.16	5,384.14	2,391	
녹지및기타	1,510,645.41	2,500					1,510,645.41	2,500					
시설률 (법정 40%)	(775,939.59㎡/2,284,085㎡)x100=33.97%						(775,939.59㎡/2,284,085㎡)x100=33.97%						
건폐율 (법정 10%)	(7,845.31㎡/2,284,085㎡)x100=0.34%						(7,845.31㎡/2,284,085㎡)x100=0.34%						

○ 노을공원(위치: 마포구 상암동 478-1번지 일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8)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911,859	287,188.04	21	1,475.15	1,555.86	332	911,859	287,188.04	21	1,475.15	1,555.86	333	증 1기
기반시설	소계	67,205	67,205					67,205	67,205					
	도로	66,079	66,079					66,079	66,079					
	광장	1,126	1,126					1,126	1,126					
조경시설		138,376.1	138,376.1				90	138,376.1	138,376.1				90	
휴양시설		22,700	22,700				79	22,700	22,700				79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8)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유희시설							7						7	
운동시설		56,475	56,475					56,475	56,475					
교양시설		32	32	1	32	32	3	32	32	1	32	32	3	
편익시설		1,579.04	1,579.04	8	661.75	742.46	10	1,579.04	1,579.04	8	661.75	742.46	11	증 1기
관리시설		820.90	820.90	12	781.4	781.4	143	820.90	820.90	12	781.4	781.4	143	
녹지 및 기타	소계	624,670.96						624,670.96						
	녹지	624,670.96						624,670.96						

○ 하늘공원(위치: 마포구 상암동 478-72번지 일대)-변경없음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732,829.00	104,054.59	16	981.23	981.23	1,201	732,829.00	104,054.59	16	981.23	981.23	1,201	
기반시설	소계	94,813.40	94,813.40					94,813.40	94,813.40					
	도로	94,233.40	94,233.40					94,233.40	94,233.40					
	광장	580	580					580	580					
조경시설		614	614				188	614	614				188	
휴양시설		1,175	1,175				469	1,175	1,175				469	
유희시설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5,348.19	5,348.19	5	259.49	259.49	76	5,348.19	5,348.19	5	259.49	259.49	76	
관리시설	2,104	2,104	11	721.74	721.74	468	2,104	2,104	11	721.74	721.74	468	
녹지및기타	628,774.41						628,774.41						

○ 난지천공원(위치: 마포구 상암동 1538번지 일대)－변경없음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270,887	136,073.36	13	762.26	762.26	898	270,887	136,073.36	13	762.26	762.26	898	
기반시설 소계	33,565.2	33,565.2					33,565.2	33,565.2					
기반시설 도로	30,868	30,868					30,868	30,868					
기반시설 광장	2,697.2	2,697.2					2,697.2	2,697.2					
조경시설	37,959	37,959				57	37,959	37,959				57	
휴양시설	15,237.6	15,237.6				301	15,237.6	15,237.6				301	
유희시설	2,606	2,606				15	2,606	2,606				15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운동시설		17,010	17,010				20	17,010	17,010				20	
교양시설		13,731	13,731				34	13,731	13,731				34	
편익시설		15,383.8	15,383.8	7	370.43	370.43	22	15,383.8	15,383.8	7	370.43	370.43	22	
관리시설		580.76	580.76	6	391.64	391.64	449	580.76	580.76	6	391.64	391.64	449	
녹지 및 기타	소 계	134,813.64						134,813.64						
	녹 지	124,545.64						124,545.64						
	하 천	10,268						10,268						

○ 평화의공원(위치: 마포구 상암동 1535번지 일대)－변경없음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368,510	248,623.6	17	4,626.86	8,260.84	2,099	368,510	248,623.6	17	4,626.86	8,260.84	2,099	
기반시설	소계	93,974	93,974					93,974	93,974					
	도로	36,231	36,231					36,231	36,231					
	광장	57,743	57,743					57,743	57,743					
조경시설		58,670	58,670				59	58,670	58,670				59	
휴양시설		30,978	30,978				561	30,978	30,978				561	
유희시설		3,220	3,220				137	3,220	3,220				137	
운동시설		2,401	2,401					2,401	2,401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교양시설		7,105	7,105	1	2,066	3,762		7,105	7,105	1	2,066	3,762		
편익시설		47,095	47,095	7	1,009.48	1,009.48	11	47,095	47,095	7	1,009.48	1,009.48	11	
관리시설		2,680.6	2,680.6	9	1,551.38	3,489.36	1,331	2,680.6	2,680.6	9	1,551.38	3,489.36	1,331	
녹지및기타	소계	122,386.4	2,500					122,386.4	2,500					
	녹지	119,886.4						119,886.4						
	반려견놀이터	2,500	2,500					2,500	2,500					

○ 시설조서(노을공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911,859	287,188.04		21	1,475.15	1,555.86	332			911,859	287,188.04		21	1,475.15	1,555.86	333	증 1기
기반시설	소 계			67,205	67,205								67,205	67,205						
	도 로		전지역	66,079	66,079							전지역	66,079	66,079						
	광 장	가		1,126	1,126						가		1,126	1,126						
		가-1	상암478-1	237	237						가-1	상암478-1	237	237						
		가-2	상암478-1	678	678						가-2	상암478-1	678	678						
		가-3	상암481-36	211	211						가-3	상암481-36	211	211						
조경시설	소 계			138,376.1	138,376.1					90			138,376.1	138,376.1					90	
	초지공원	나	상암478-1	111,114.1	111,114.1						나	상암478-1	111,114.1	111,114.1						
	잔디밭	다	상암478-1	7,567	7,567						다	상암478-1	7,567	7,567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돌망태	라	상암478-1	520	520						라	상암478-1	520	520						
자연 물놀이터	마	상암478-1	7,630	7,630						마	상암478-1	7,630	7,630						
도시 농부정원	바	상암478-1	6,500	6,500						바	상암478-1	6,500	6,500						
자생화단	사	상암478-1	5,045	5,045						사	상암478-1	5,045	5,045						
파고라	①	전지역							(7)	①	전지역							(7)	
	1-1	전지역							8	1-1	전지역							8	
막구조파고라	②	전지역							(11)	②	전지역							(11)	
초 정	③	전지역							(47)	③	전지역							(47)	
목재데크	④	전지역							1	④	전지역							1	
조형물	⑤	전지역							16	⑤	전지역							16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휴양시설	소계			22,700	22,700					79			22,700	22,700					79	
	노을캠핑장	아		22,700	22,700						아		22,700	22,700						
		아-1	상암478-1	7,300	7,300						아-1	상암478-1	7,300	7,300						
		아-2	상암478-1	8,800	8,800						아-2	상암478-1	8,800	8,800						
		아-3	상암478-1	6,600	6,600						아-3	상암478-1	6,600	6,600						
	등의자	⑥	전지역							25	⑥	전지역							25	
		6-1	전지역							54	6-1	전지역							54	
유희시설	소계									7									7	
	무당벌레 야지트	⑦	상암481-6							1	⑦	상암481-6							1	
	통나무그물 놀이대	⑧	상암481-6							1	⑧	상암481-6							1	
	우드볼 하우스	⑨	상암481-6							1	⑨	상암481-6							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통나무 건너기	⑩	상암481-6							1	⑩	상암481-6							1	
	통나무복합 놀이대	⑲	상암481-6							1	⑲	상암481-6							1	
	통나무 오르기	⑳	상암481-6							1	⑳	상암481-6							1	
	인디언 놀이집	㉑	상암481-6							1	㉑	상암481-6							1	
편의시설	소 계			56,475	56,475								56,475	56,475						
	파크골프장	자	상암478-1	30,500	30,500						자	상암478-1	30,500	30,500						
		자-1	상암478-1	12,350	12,350						자-1	상암478-1	12,350	12,350						
		자-2	상암478-1	13,625	13,625						자-2	상암478-1	13,625	13,625						
교양시설	소 계			32	32		1	32	32	3			32	32		1	32	32	3	
	누에생태 체험관	1	상암478-1	32	32	목재	1	32	32		1	상암478-1	32	32	목재	1	32	32		
	책방	⑱	상암478-1							3	⑱	상암478-1							3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편의시설	소계			1,579.04	1,579.04		8	661.75	742.46	10			1,579.04	1,579.04		8	661.75	742.46	11	증 1기
	전망대	차		645	645						차		645	645						
		차-1	상암478-1	(164)	(164)						차-1	상암478-1	(164)	(164)						
		차-2	상암478-1	(138)	(138)						차-2	상암478-1	(138)	(138)						
		차-3	상암478-1	(153)	(153)						차-3	상암478-1	(153)	(153)						
		차-4	상암478-1	(190)	(190)						차-4	상암478-1	(190)	(190)						
	화장실	2	전지역	504.32	504.32		7	504.32	504.32		2	전지역	504.32	504.32		7	504.32	504.32		
		2-1	전지역	84.31	84.31	R.C.	1	84.31	84.31		2-1	전지역	84.31	84.31	R.C.	1	84.31	84.31		
		2-2	전지역	84.31	84.31	R.C.	1	84.31	84.31		2-2	전지역	84.31	84.31	R.C.	1	84.31	84.31		
		2-3	전지역	84.31	84.31	R.C.	1	84.31	84.31		2-3	전지역	84.31	84.31	R.C.	1	84.31	84.31		
		2-4	전지역	84.31	84.31	R.C.	1	84.31	84.31		2-4	전지역	84.31	84.31	R.C.	1	84.31	84.3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2-5	전지역	16.8	16.8	목조	1	16.8	16.8		2-5	전지역	16.8	16.8	목조	1	16.8	16.8		
		2-6	전지역	40	40	목조	1	40	40		2-6	전지역	40	40	목조	1	40	40		
		2-7	전지역	110.28	110.28	목조	1	110.28	110.28		2-7	전지역	110.28	110.28	목조	1	110.28	110.28		
	매점	3	상암481-6	429.72	429.72	경량필패	1	157.43	238.14		3	상암481-6	429.72	429.72	경량필패	1	157.43	238.14		
	음수대	⑪	전지역							9	⑪	전지역							9	
	목재계단	⑫	전지역							1	⑫	전지역							2	증 1기
관리시설	소 계			820.9	820.9		12	781.40	781.40	143			820.9	820.9		12	781.40	781.40	143	
	파크골프장 관리소	4	전지역	59	59	목조	1	59	59		4	전지역	59	59	목조	1	59	59		
	클럽하우스	4-1	전지역	130.9	130.9		1	118.40	118.40		4-1	전지역	130.9	130.9		1	118.40	118.40		
	안내소	5	전지역	204	204		4	177	177		5	전지역	204	204		4	177	177		
		5-1	전지역	73	73	R.C.	1	73	73		5-1	전지역	73	73	R.C.	1	73	73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창고	5-2	전지역	63	63	R.C.	1	36	36		5-2	전지역	63	63	R.C.	1	36	36		
	5-3	전지역	34	34	목조	1	34	34		5-3	전지역	34	34	목조	1	34	34		
	5-4	전지역	34	34	목조	1	34	34		5-4	전지역	34	34	목조	1	34	34		
	6	전지역	325	325		4	325	325		6	전지역	325	325		4	325	325		
	6-1	전지역	30	30	경량패널	1	30	30		6-1	전지역	30	30	경량패널	1	30	30		
	6-2	전지역	90	90	경량패널	1	90	90		6-2	전지역	90	90	경량패널	1	90	90		
	6-3	전지역	108	108	경량패널	1	108	108		6-3	전지역	108	108	경량패널	1	108	108		
	6-4	전지역	97	97	경량패널	1	97	97		6-4	전지역	97	97	경량패널	1	97	97		
펌프실	7	전지역	42	42	R.C.	1	42	42		7	전지역	42	42	R.C.	1	42	42		
기계실 및 물탱크실	7-1	전지역	60	60		1	60	60		7-1	전지역	60	60		1	60	60		
목책	⑬	전지역							1식	⑬	전지역							1식	
휴지통	⑭	전지역							10	⑭	전지역							10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녹지 및 기타	공원등	⑯	전지역							115	⑯	전지역							
	안내판	⑮	전지역							5	⑮	전지역							
	cctv	⑰	전지역							13	⑰	전지역							
	소계			624,670.96									624,670.96						
	녹지		전지역	624,670.96								전지역	624,670.96						

○ 시설조서(하늘공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전지역	732,829	104,054.59		16	981.23	981.23	1,201		전지역	732,829	104,054.59		16	981.23	981.23	1,201	
기반시설	소 계			94,813.4	94,813.4								94,813.4	94,813.4						
	도 로		전지역	94,233.4	94,233.4							전지역	94,233.4	94,233.4						
	광 장	가		580	580						가		580	580						
		가-1	상암481-72	201	201						가-1	상암481-72	201	201						
		가-2	상암481-81	153	153						가-2	상암481-81	153	153						
		가-3	상암481-72	113	113						가-3	상암481-72	113	113						
		가-4	상암482-242	113	113						가-4	상암482-242	113	113						
조경시설	소 계			614	614					188			614	614					188	
	암석원	나	상암481-72	585	585						나	상암481-72	585	585						
	화 단	다		29	29						다		29	29						
		다-1	상암481-72	23	23						다-1	상암481-72	23	23						
		다-2	상암481-72	6	6						다-2	상암481-72	6	6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파고라	①	전지역							5	①	전지역							5	
	막구조 파고라	②	상암481-72							3	②	상암481-72							3	
	막구조 파고라(조형)	③	전지역							3	③	전지역							3	
	막구조 파고라(大)	④	상암481-72							1	④	상암481-72							1	
	초 정	⑤	상암481-72							11	⑤	상암481-72							11	
	나무포트	⑥	전지역							19	⑥	전지역							19	
	대지조형물	⑦	상암481-72							1	⑦	상암481-72							1	
	조 형 물	⑧	전지역							2	⑧	전지역							2	
	자연석놓기	⑨	암481-72							143	⑨	암481-72							143	
휴양시설	소 계			1,175	1,175					469			1,175	1,175					469	
	휴게소	라		1,175	1,175						라		1,175	1,175						
		라-1	상암481-72	545	545						라-1	상암481-72	545	545						
		라-2	상암481-72	571	571						라-2	상암481-72	571	57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라-3	상암481-81	59	59						라-3	상암481-81	59	59						
	평의자	⑩	전지역							4	⑩	전지역							4	
	등의자	㉝	전지역							33	㉝	전지역							33	
	원목의자	⑪	전지역							382	⑪	전지역							382	
	통돌의자	⑫	전지역							50	⑫	전지역							50	
편의시	소계			5,348.19	5,348.19		5	259.49	259.49	76			5,348.19	5,348.19		5	259.49	259.49	76	
	전망대	마		5,089	5,089						마		5,089	5,089						
		마-1	상암481-81	721	721						마-1	상암481-81	721	721						
		마-2	상암481-81	132	132						마-2	상암481-81	132	132						
		마-3	상암481-81	212	212						마-3	상암481-81	212	212						
		마-4	상암482-242	372	372						마-4	상암482-242	372	372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선		마-5	상암481-72	351	351						마-5	상암481-72	351	351						
		마-6	상암482-242	165	165						마-6	상암482-242	165	165						
		마-7	상암482-49	166	166						마-7	상암482-49	166	166						
		마-8	상암482-49	173	173						마-8	상암482-49	173	173						
		마-9	암481-72	694	694						마-9	암481-72	694	694						
		마-10	암481-94	486	486						마-10	암481-94	486	486						
		마-11	암481-72	108	108						마-11	암481-72	108	108						
	전망대	마-12	상암482-49	359	359						마-12	상암482-49	359	359						
		마-13	상암481-72	37	37						마-13	상암481-72	37	37						
		마-14	상암481-72	166	166						마-14	상암481-72	166	166						
		마-15	상암481-81	73.7	73.7						마-15	상암481-81	73.7	73.7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마-16	상암481-81	182	182						마-16	상암481-81	182	182						
	마-17	상암1535-2	569	569						마-17	상암1535-2	569	569						
	마-18	상암487-3	42	42						마-18	상암487-3	42	42						
	마-19	상암487-3	80	80						마-19	상암487-3	80	80						
화장실	1		259.49	259.49		5	259.49	259.49		1		259.49	259.49		5	259.49	259.49		
	1-1	상암481-81	54.71	54.71	R.C	1	54.71	54.71		1-1	상암481-81	54.71	54.71	R.C	1	54.71	54.71		
	1-2	상암481-72	54.71	54.71	R.C	1	54.71	54.71		1-2	상암481-72	54.71	54.71	R.C	1	54.71	54.71		
	1-3	상암481-81	55.04	55.04	R.C	1	55.04	55.04		1-3	상암481-81	55.04	55.04	R.C	1	55.04	55.04		
	1-4	상암482-49	54.71	54.71	R.C	1	54.71	54.71		1-4	상암482-49	54.71	54.71	R.C	1	54.71	54.71		
	1-5	상암481-94	40.32	40.32	R.C	1	40.32	40.32		1-5	상암481-94	40.32	40.32	R.C	1	40.32	40.32		
음수대	⑬	전지역							9	⑬	전지역							9	
목 교	⑭	전지역							60	⑭	전지역							60	
콘크리트교	㉜	전지역							1	㉜	전지역							1	
목재계단	⑮	상암1535-2							2	⑮	상암1535-2							2	
자전거보관대	⑯	상암1535-2							3	⑯	상암1535-2							3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계 단	㉞	상암482-49							1	㉞	상암482-49							1	
관리시설	소 계			2,104	2,104		11	721.74	721.74	468			2,104	2,104		11	721.74	721.74	468	
	탐방객 안내센터	바	상암481-72	922	922	목조	1	103.11	103.11		바	상암481-72	922	922	목조	1	103.11	103.11		
	펌프실	2	상암481-6	42	42	R.C.	1	42	42		2	상암481-6	42	42	R.C.	1	42	42		
	목 책	⑰	전지역							1식	⑰	전지역							1식	
	휴지통	⑱	전지역							28	⑱	전지역							28	
	플랜터	⑲	전지역							62	⑲	전지역							62	
	종합안내판	⑳	전지역							5	⑳	전지역							5	
	해설판	㉑	전지역							83	㉑	전지역							83	
	수목명패	㉒	전지역							117	㉒	전지역							117	
	풍력발전기	㉓	전지역							5	㉓	전지역							5	
	전기실	3	상암487-31	21	21	목조	1	16.3	16.3		3	상암487-31	21	21	목조	1	16.3	16.3		
	공원등	㉔	전지역							109	㉔	전지역							109	
	수목잔디 조명등	㉕	전지역							28	㉕	전지역							28	
	분전반	㉖	전지역							3	㉖	전지역							3	
	피뢰침	㉗	전지역							7	㉗	전지역							7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볼라드	㉘	상암487-3							2	㉘	상암487-3							2	
방향표지판	㉙	전지역							11	㉙	전지역							11	
표 석	㉚	전지역							2	㉚	전지역							2	
c c t v	㉛	전지역							6	㉛	전지역							6	
안내소	4		98	98		5	86	86		4		98	98		5	86	86		
	4-1	상암1535-2	34	34	경량패널	1	34	34		4-1	상암1535-2	34	34	경량패널	1	34	34		
	4-2	상암487-3	10	10	경량패널	1	6	6		4-2	상암487-3	10	10	경량패널	1	6	6		
	4-3	상암481-94	10	10	경량패널	1	6	6		4-3	상암481-94	10	10	경량패널	1	6	6		
	4-4	상암481-94	34	34	목조	1	34	34		4-4	상암481-94	34	34	목조	1	34	34		
	4-5	상암481-72	10	10	목조	1	6	6		4-5	상암481-72	10	10	목조	1	6	6		
대기실																			
근로자 휴게시설	5	상암481-72	405	405	RC	1	319.56	319.56		5	상암481-72	405	405	RC	1	319.56	319.56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창고	6	상암481-72	318	318	경량패널	1	148.77	148.77		6	상암481-72	318	318	경량패널	1	148.77	148.77		
	집하장 및 야적장	사	상암481-72	292	292						사	상암481-72	292	292						
	주차관리실	7	상암481-94	6	6	경량패널	1	6	6		7	상암481-94	6	6	경량패널	1	6	6		
녹지 및 기타	소계			628,774.41									628,774.41							
	녹지		전지역	628,774.41								전지역	628,774.41							

○ 시설조서(난지천공원)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270,887	136,073.36		13	762.07	762.07	898			270,887	136,073.36		13	762.07	762.07	898	
기반시설	소 계			33,565.2	33,565.2								33,565.2	33,565.2						
	도 로			30,868	30,868								30,868	30,868						
	광 장	가-1	상암1538	2,662	2,662						가-1	상암1538	2,662	2,662						
		가-2	상암478-1	35.2	35.2						가-2	상암478-1	35.2	35.2						
조경시설	소 계			37,959	37,959					57			37,959	37,959					57	
	야생초화원	나	상암1542	1,279	1,279						나	상암478-1	1,279	1,279						
	잔디광장	다	상암1538-1	26,742	26,742						다	상암1538-1	26,742	26,742						
	오리연못	라	상암1538	7,173	7,173						라	상암1538	7,173	7,173						
	초화원	마	상암1538	2,765	2,765						마	상암1538	2,765	2,765						
	파고라	①								15	①								15	
	사각정자	②								2	②								2	
	막구조파고라	③								4	③								4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앉음벽	④								14	④								14	
	목재데크	⑤								2	⑤								2	
	디딤돌	⑦								20	⑦								20	
휴양시설	소 계			15,237.6	15,237.6					301			15,237.6	15,237.6					301	
	휴게광장	바	상암1538	7,895.6	7,895.6						바	상암1538	7,895.6	7,895.6						
	피크닉장	사	상암1538	5,971	5,971						사	상암1538	5,971	5,971						
	휴게소	아-1	상암478-1	808	808						아-1	상암478-1	808	808						
		아-2	상암478-1	188	188						아-2	상암478-1	188	188						
		아-3	상암1538	39	39						아-3	상암1538	39	39						
		아-4	상암478-1	306	306						아-4	상암478-1	306	306						
		아-5	상암478-1	30	30						아-5	상암478-1	30	30						
	평의자	⑧	전지역							55	⑧	전지역							55	
	등의자	⑨	전지역							99	⑨	전지역							99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사각의자	⑩	전지역							26	⑩	전지역							26	
	원목의자	⑪	상암1538-1							1	⑪	상암1538-1							1	
	평상	⑫	상암1538							6	⑫	상암1538							6	
	대피소내부의자	⑬	상암1538							1	⑬	상암1538							1	
	통나무테이블	⑭	상암1538							5	⑭	상암1538							5	
	학습테이블	⑮	상암1538							1	⑮	상암1538							1	
	통나무의자A	⑯	상암1538							60	⑯	상암1538							60	
	통나무의자B	⑰	상암1538							47	⑰	상암1538							47	
유희시설	소 계			2,606	2,606					15			2,606	2,606					15	
	중앙놀이터	자	상암1538-1	1,220	1,220						자	상암1538-1	1,220	1,220						
	유아놀이터	차	상암1538	1,386	1,386						차	상암1538	1,386	1,386						
	조합놀이대	⑱	상암1538							2	⑱	상암1538							2	
	케이블카	⑲	상암1538							1	⑲	상암1538							1	
	오름벽조합놀이대	⑳	상암1538							1	⑳	상암1538							1	
	역마차놀이대	㉑	상암1538							1	㉑	상암1538							1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자동차놀이대	㉒	상암1538							1	㉒	상암1538							1	
	그 네	㉓	상암1538							1	㉓	상암1538							1	
	숫자놀이판넬	㉔	상암1538							1	㉔	상암1538							1	
	OX놀이판넬	㉕	상암1538							1	㉕	상암1538							1	
	물놀이대	㉖	상암1538							1	㉖	상암1538							1	
	지네시소	㉗	상암1538-1							1	㉗	상암1538-1							1	
	개미집오르기	㉘	상암1538-1							1	㉘	상암1538-1							1	
	하늘과바람의소리	㉙	상암1538-1							1	㉙	상암1538-1							1	
	회전하는소리구체	㉚	상암1538-1							1	㉚	상암1538-1							1	
	쇠똥구리원판	㉛	상암1538-1							1	㉛	상암1538-1							1	
교양시설	소 계			13,731	13,731					34			13,731	13,731					34	
	유아숲체험장	카	상암1538	9,013	9,013						카	상암1538	9,013	9,013						
	야외공연장	타	상암1538-1	4,718	4,718						타	상암1538-1	4,718	4,718						
	나무위의집A	㉜	상암1538							1	㉜	상암1538							1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나무위의집B	㉝	상암1538							1	㉝	상암1538							1	
토끼집	㉞	상암1538							1	㉞	상암1538							1	
유아쉘터	㉟	상암1538							1	㉟	상암1538							1	
숲천막A	㊱	상암1538							1	㊱	상암1538							1	
숲천막B	㊲	상암1538							1	㊲	상암1538							1	
숲속요새	㊳	상암1538							1	㊳	상암1538							1	
숲속침대	㊴	상암1538							1	㊴	상암1538							1	
숲속그네	㊵	상암1538							1	㊵	상암1538							1	
출렁다리	㊶	상암1538							1	㊶	상암1538							1	
밧줄다리	㊷	상암1538							1	㊷	상암1538							1	
나무가지집A	㊸	상암1538							1	㊸	상암1538							1	
나무가지집B	㊹	상암1538							1	㊹	상암1538							1	
통나무기어오르기	㊺	상암1538							1	㊺	상암1538							1	
통나무 건너기	㊻	상암1538							2	㊻	상암1538							2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거미줄놀이	㊼	상암1538							1	㊼	상암1538							1	
	잠자리쉼터	㊽	상암1538							6	㊽	상암1538							6	
	가방걸이	㊾	상암1538							2	㊾	상암1538							2	
	통나무오르기	㊿	상암1538							1	㊿	상암1538							1	
	밧줄오르기	(75)	상암1538							5	(75)	상암1538							5	
	모래놀이대	(76)	상암1538							1	(76)	상암1538							1	
	그물놀이대	(77)	상암1538							1	(77)	상암1538							1	
	그물건너기	(78)	상암1538							1	(78)	상암1538							1	
운동시설	소 계			17,010	17,010					20			17,010	17,010					20	
	다목적구장	파-1	상암478-1	1,796	1,796						파-1	상암478-1	1,796	1,796						
		파-2	상암478-1	662	662						파-2	상암478-1	662	662						
		파-3	상암478-1	565	565						파-3	상암478-1	565	565						
	파크골프 체험장	러	상암478-1	4,185	4,185						러	상암478-1	4,185	4,185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풋살장	너	상암478-1	1,146	1,146						너	상암478-1	1,146	1,146						
	축구장	하	상암1538-1	8,577	8,577						하	상암1538-1	8,577	8,577						
	체력단련장	더	상암478-1	79	79						더	상암478-1	79	79						
	농구대	㊾	상암478-1							5	㊾	상암478-1							5	
	운동기구	㊿	전지역							15	㊿	전지역							15	
편의시설	소 계			15,383.8	15,383.8		6	370.43	370.43	22			15,383.8	15,383.8		6	370.43	370.43	22	
	주차장	거-1	상암1538	2,686	2,686						거-1	상암1538	2,686	2,686						
		거-2	상암1538	6,084	6,084						거-2	상암1538	6,084	6,084						
		거-3	상암1538	6,068	6,068						거-3	상암1538	6,068	6,068						
	화장실	1-1	상암1538	62	62	R.C.	(1)	43.2	43.2		1-1	상암1538	62	62	R.C.	(1)	43.2	43.2		
		1-2	상암1538	128	128	R.C.	(1)	84.9	84.9		1-2	상암1538	128	128	R.C.	(1)	84.9	84.9		
		1-3	상암1538	50	50	R.C.	(1)	50.31	50.31		1-3	상암1538	50	50	R.C.	(1)	50	50		
		1-4	상암1538	128	128	R.C.	(1)	84.9	84.9		1-4	상암1538	128	128	R.C.	(1)	84.9	84.9		
		1-5	상암478-1	27.8	27.8		(1)	27.8	27.8		1-5	상암478-1	27.8	27.8		(1)	27.8	27.8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매점	2-1	상암1538	75	75	경량패널	(1)	39.54	39.54		2-1	상암1538	75	75	경량패널	(1)	39.54	39.54		
		2-2	상암1538	75	75	경량패널	(1)	40.09	40.09		2-2	상암1538	75	75	경량패널	(1)	40.09	40.09		
	목교	㉟	상암1538							2	㉟	상암1538							2	
	징검다리	㊱	상암1538							2	㊱	상암1538							2	
	자전거보관대	㊸	전지역							4	㊸	전지역							4	
	음수대	㊹	전지역							8	㊹	전지역							8	
	대피소	㊼	상암1538							1	㊼	상암1538							1	
	목재계단	㊽	상암478-1							3	㊽	상암478-1							3	
	석재계단	㊾	상암478-1							2	㊾	상암478-1							2	
관리시설	소계			580.76	580.76		6	391.64	391.64	449			580.76	580.76		6	391.64	391.64	449	
	안내소	3-1	상암1538	34	34	경량패널	1	34	34		3-1	상암1538	34	34	경량패널	1	34	34		
		3-2	상암1538	6	6	경량패널	1	6	6		3-2	상암1538	6	6	경량패널	1	6	6		
		3-3	상암1538	10	10	경량패널	1	10	10		3-3	상암1538	10	10	경량패널	1	10	10		

구분	전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3-4	상암1538	6	6	경량철골조	1	6	6			3-4	상암1538	6	6	경량철골조	1	6	6		
	3-5	상암1538	6						1		3-5	상암1538	6						1	
목재휀스	㉟								1식		㉟								1식	95m
주차관리소	㊱	상암1538							4		㊱	상암1538							4	
무인정산기	㊲	상암1538							1		㊲	상암1538							1	
휴지통	㊳	전지역							32		㊳	전지역							32	
분전함	㊴	전지역							3		㊴	전지역							3	
일반안내판	㊵	전지역							13		㊵	전지역							13	
교통표지판	㊶	전지역							3		㊶	전지역							3	
방향표시판	㊷	전지역							15		㊷	전지역							15	
입구안내판(문주)	㊸	전지역							1		㊸	전지역							1	
입구안내판(걸이)	㊹	전지역							1		㊹	전지역							1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종합안내판	㉟	전지역							2	㉟	전지역							2	
시설안내판	㊱	전지역							8	㊱	전지역							8	
놀이터이용 수칙안내판	㊲	전지역							2	㊲	전지역							2	
공 원 등	㊳	전지역							254	㊳	전지역							254	
표 석	㊴	전지역							5	㊴	전지역							5	
볼 라 드	㊵	전지역							77	㊵	전지역							77	
수목보호대	⑦	전지역							5	⑦	전지역							5	
c c t v	⑫	전지역							14	⑫	전지역							14	
조명타워	㊵	상암1538							6	㊵	전지역							6	
휀 스	㊸	상암478-1							1	㊸	상암478-1							1	
그물망휀스	㊹	상암478-1							1	㊹	상암478-1							1	
창 고	4-4	상암1538	21	21	경량 패널	1	21	21		4-4	상암1538	21	21	경량 패널	1	21	21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근로자 대기실	5	상암1538	503.76	503.76		1	314.64	314.64		5	상암1538	503.76	503.76		1	314.64	314.64		
녹지 및 기타	소 계			134,813.64									134,813.64							
	녹 지			124,545.64									124,545.64							
	하 천			10,268									10,268							

○ 시설조서(평화의공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368,510	248,623.6		17	4,626.86	8,260.84	2,099			368,510	248,623.6		17	4,626.86	8,260.84	2,099	
기반시설	소계			93,974	93,974								93,974	93,974						
	도로			36,231	36,231								36,231	36,231						
	광장	가		57,743	57,743						가		57,743	57,743						
		가-1	성산 531	32,615	32,615						가-1	성산 531	32,615	32,615						
		가-2	상암1535	12,293	12,293						가-2	상암1535	12,293	12,293						
		가-3	성산 531	7,054	7,054						가-3	성산 531	7,054	7,054						
		가-4	상암1568	3,561	3,561						가-4	상암1568	3,561	3,561						
		가-5	상암1569	2,220	2,220						가-5	상암1569	2,220	2,220						
조경시설	소계			58,670	58,670					59			58,670	58,670					59	
	생태연못	나	성산 531	29,511	29,511						나	성산 531	29,511	29,511						
	평화의정원	다	상암1536	11,959	11,959						다	상암1536	11,959	11,959						
	잔디마당	라	상암1536	15,000	15,000						라	상암1536	15,000	15,000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시정원	마	상암1536	2,200	2,200						마	상암1536	2,200	2,200						
	파고라A	①	전지역			철재				10	①	전지역			철재				10	
	파고라B	②	상암1569			목재				2	②	상암1569			목재				2	
	파고라C	③	성산390-1			철재				6	③	성산390-1			철재				6	
	팔각정자	④	상암1535			목재				1	④	상암1535			목재				1	
	목재데크	⑤	전지역			목재				4	⑤	전지역			목재				4	
	천상열차 분야지도각석	⑥	전지역			석재				12	⑥	전지역			석재				12	
	앉음벽	⑦	전지역			석재				4	⑦	전지역			석재				4	
	장 승	⑧	성산390-1			목재				20	⑧	성산390-1			목재				20	
휴양시설	소 계			30,978	30,978					561			30,978	30,978					561	
휴양시설	휴게소	바		4,126	4,126						바		4,126	4,126						
휴양시설	휴게소	바-1	상암1535	2,738	2,738						바-1	상암1535	2,738	2,738						
휴양시설	휴게소	바-2	상암531	1,388	1,388						바-2	상암531	1,388	1,388						
휴양시설	피크닉장	사	상암1563	26,852	26,852						사	상암1563	26,852	26,852						
휴양시설	평의자	⑨	전지역			목재				26	⑨	전지역			목재				26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설	등의자	⑩	전지역			목재				222	⑩	전지역			목재				222	
	통돌의자	⑪	전지역			석재				165	⑪	전지역			석재				165	
	단식의자	⑫	전지역			석재				130	⑫	전지역			석재				130	
	평 상	⑬	전지역			목재				18	⑬	전지역			목재				18	
유희시설	소 계			3,220	3,220					137			3,220	3,220					137	
	놀이터	아	성산565-6	3,220	3,220						아	성산565-6	3,220	3,220						
	스카이데크	⑭	성산565-6							1	⑭	성산565-6							1	
	사면놀이대	⑮	성산565-6							1	⑮	성산565-6							1	
	목재계단	⑯	성산565-6							1	⑯	성산565-6							1	
	거울놀이벽	⑰	성산565-6							1	⑰	성산565-6							1	
	네트놀이대	⑱	성산565-6							1	⑱	성산565-6							1	
	미끄럼틀A	⑲	성산565-6							1	⑲	성산565-6							1	
	미끄럼틀B	⑳	성산565-6							2	⑳	성산565-6							2	
	그 네	㉑	성산565-6							2	㉑	성산565-6							2	
	공중활주로	㉒	성산565-6							1	㉒	성산565-6							1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기둥발고건너기	㉓	성산565-6							1	㉓	성산565-6							1	
	네트건너기	㉔	성산565-6							1	㉔	성산565-6							1	
	두줄건너기	㉕	성산565-6							1	㉕	성산565-6							1	
	세줄건너기	㉖	성산565-6							1	㉖	성산565-6							1	
	숨바꼭질	㉗	성산565-6							70	㉗	성산565-6							70	
	징검다리	㉘	성산565-6							1	㉘	성산565-6							1	
	통나무모험놀이대	㉙	성산565-6							1	㉙	성산565-6							1	
	통나무발고건너기	㉚	성산565-6							1	㉚	성산565-6							1	
	흔들놀이	㉛	성산565-6							2	㉛	성산565-6							2	
	로프사면놀이대	㉜	성산565-6							4	㉜	성산565-6							4	
	홀더사면놀이대	㉝	성산565-6							30	㉝	성산565-6							30	
	폴 사면놀이대	㉞	성산565-6							10	㉞	성산565-6							10	
	모래놀이대	㉟	성산565-6							3	㉟	성산565-6							3	
운동시설	소 계			2,401	2,401								2,401	2,40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테니스장	자	산390-1	2,401	2,401						자	산390-1	2,401	2,401						
양교시설	소 계			7,105	7,105		1	2,066	3,762				7,105	7,105		1	2,066	3,762		
	에너지드림센터	차	상암1536	7,105	7,105	R.C.	1	2,066	3,762		차	상암1536	7,105	7,105	R.C.	1	2,066	3,762		
편의시설	소 계			47,095	47,095		7	1,009.48	1,009.48	11			47,095	47,095		7	1,009.48	1,009.48	11	
	주차장	카		45,324	45,324						카		45,324	45,324						
		카-1	상암1569	11,153	11,153						카-1	상암1569	11,153	11,153						
		카-2	성산 531	18,107	18,107						카-2	성산 531	18,107	18,107						
		카-3	성산 531	9,825	9,825						카-3	성산 531	9,825	9,825						
		카-4	성산 531	5,721	5,721						카-4	성산 531	5,721	5,721						
		카-5	성산390-1	518	518						카-5	성산390-1	518	518						
	매 점	1		675	675		2	579.74	579.74		1		675	675		2	579.74	579.74		
		1-1	상암1569	215	215	R.C.	(1)	143.66	143.66		1-1	상암1569	215	215	R.C.	(1)	143.66	143.66		
		1-2	성산390-1	460	460	R.C.	(1)	436.08	436.08		1-2	성산390-1	460	460	R.C.	(1)	436.08	436.08		
	화장실	2		1,096	1,096		5	429.74	429.74		2		1,096	1,096		5	429.74	429.74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2-1	상암1535	279	279	R.C.	(1)	57.6	57.6		2-1	상암1535	279	279	R.C.	(1)	57.6	57.6		
	화장실	2-2	성산565-6	171	171	R.C.	1	43.2	43.2		2-2	성산565-6	171	171	R.C.	1	43.2	43.2		
		2-3	성산390-1	391	391	R.C.	1	73.94	73.94		2-3	성산390-1	391	391	R.C.	1	73.94	73.94		
		2-4	상암1535	85	85	R.C.	1	85	85		2-4	상암1535	85	85	R.C.	1	85	85		
		2-5	상암1569	170	170	R.C.	1	170	170		2-5	상암1569	170	170	R.C.	1	170	170		
	음수대	㉟	전지역							6	㉟	전지역							6	
	자전거보관대	㊲	전지역							4	㊲	전지역							4	
	보행육교	㊳	상암1531-1							1	㊳	상암1531-1							1	
관리시설	소계			2,680.6	2,680.6		9	1,551.38	3,489.36	1,331			2,680.6	2,680.6		9	1,551.38	3,489.36	1,331	
	공원관리사업소	3	성산390-1	2,074	2,074	R.C.	1	1,181	2,871		3	성산390-1	2,074	2,074	R.C.	1	1,181	2,871		
	안내소	4		66	66		4	58	58		4		66	66		4	58	58		
		4-1	성산531	10	10	경량패널	1	6	6		4-1	성산531	10	10	경량패널	1	6	6		
		4-2	성산531	10	10	경량패	1	6	6		4-2	성산531	10	10	경량	1	6	6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널									패널					
	4-3	상암1535	34	34	경량패널	1	34	34		4-3	상암1535	34	34	경량패널	1	34	34		
	4-4	상암1535	12	12	경량패널	1	12	12		4-4	상암1535	12	12	경량패널	1	12	12		
목 책	㊴	성산390-1			목재				1식	㊴	성산390-1			목재				1식	
주차관리소	㊵	전지역							4	㊵	전지역							4	
분리수거장	6	상암1563	30	30	목조	1	30	30		6	상암1563	30	30	목조	1	30	30		
매립가스소각장	7	성산390-1	24	24	경량패널	1	24	24		7	성산390-1	24	24	경량패널	1	24	24		
태양열전기실	8	상암1563	8	8		1	8	8		8	상암1563	8	8		1	8	8		
종합안내판	㊶	전지역							5	㊶	전지역							5	
근로자 휴게시설	9	성산390-1	478.6	478.6	R.C	1	250.38	498.36		9	성산390-1	478.6	478.6	R.C	1	250.38	498.36		
일반안내판	㊷	전지역							24	㊷	전지역							24	
공원유도사인	㊸	전지역							23	㊸	전지역							23	
놀이터안내수칙 표지판	㊹	전지역							1	㊹	전지역							1	
입구표석	㊺	전지역							2	㊺	전지역							2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휴지통	㊻	전지역							12	㊻	전지역							12	
	볼라드	㊼	전지역							123	㊼	전지역							123	
관리시설	공원등	㊽	전지역							1,040	㊽	전지역							1,040	
	수목잔디조명등	㊾	전지역							73	㊾	전지역							73	
	CCTV	㊿	전지역							24	㊿	전지역							24	
	태양열발전설비	⑤①	전지역							1식	⑤①	전지역							1식	
녹지 및 기타	소 계		전지역	122,386.4	2,500							전지역	122,386.4	2,500						
	녹 지		전지역	119,886.4								전지역	119,886.4							
	반려견놀이터	타	성산531	2,500	2,500						타	성산531	2,500	2,500						

○ 도로조서(노을공원)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11,111	66,079				
당초	소 로	소 계			7,717	56,855				
당초		1	1	11	1,830	20,140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3	1	7	643	4,501	내부도	소로 1-1	경기도경계	
당초			2	7	829	5,803	내부도	경기도경계	공원동측경계	
당초			3	7	1,419	9,933	내부도	공원동측경계	소로 1-1	
당초			4	5.5	1,834	10,087	내부도	소로 1-1	공원경계	
당초			5	5.5	1,162	6,391	내부도	소로 1-1	공원경계	
당초	산책로	소 계			3,394	9,224				
당초			1	3	1,358	4,074	산책로	광장 가-3	광장 가-1	황토포장
당초			3	3	252	756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1	황토포장
당초			4	2	48	96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2	황토포장
당초			7	2	120	240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9	황토포장
당초			8	2	21	42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10	황토포장
당초			9	2	154	308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11	황토포장
당초			10	2	92	184	산책로	산책로7	산책로9	황토포장
당초			11	2	147	294	산책로	운동장	운동장	황토포장
당초			12	2	306	612	산책로	산책로11	산책로13	황토포장
당초			13	3	211	633	산책로	산책로13	산책로12	황토포장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2	3	572	1,716	산책로	광장 가-1	소로 3-1	황토포장
당초			5	2	29	58	산책로	산책로4	산책로3	황토포장
당초			6	2	41	82	산책로	산책로4	산책로3	황토포장
당초			14	3	43	129	산책로	산책로2	방공진지	황토포장

○ 도로조서(하늘공원)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15,656.4	94,233.4				
당초	중로	소 계			804	14,472				
당초		2	1	18.0	804	14,472	진입로	공원북측경계	공원남측경계	
당초	소로	소 계			4,070	34,360				
당초		2	1	9.0	1,534	13,806	내부도	중로 2-1	소로 2-3	
당초			2	8.5	532	4,522	내부도	소로 2-1	소로 2-1	
당초			3	8.0	2,004	16,032	내부도	중로 2-1	공원 북측경계	
당초	소로	소 계			3,898	30,859				
당초		3	1	8	1,582	12,656	내부도	소로 3-4	소로 3-4	폐기물시설 관리도로
당초			2	8	100	800	내부도	소로 3-3	소로 3-1	폐기물시설 관리도로
당초			3	8	550	4,400	내부도	소로 3-1	소로 3-1	폐기물시설 관리도로
당초			4	8	235	1,880	관리도로	중로 2-1	소로 3-3	폐기물시설 관리도로
당초			5	8	1,366	10,928	내부도	소로 2-1	소로 2-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6	3	65	195	관리도로	소로 3-1	산책로 22	투수콘
당초	산책로	소 계			6,884.4	14,542.9				
당초			1	3	148	444	산책로	광장 가-1	소로 3-3	쇄석,마사토포장
당초			3	3	168	504	산책로	광장 가-1	소로 3-3	쇄석,마사토포장
당초			5	3	171	513	산책로	소로 3-4	광장 가-2	쇄석,마사토포장
당초			7	3	141	423	산책로	광장 가-2	소로 3-3	쇄석,마사토포장
당초			9	3	151	453	산책로	소로 3-3	광장 가-3	쇄석,마사토포장
당초			11	3	144	432	산책로	광장 가-3	소로 3-3	쇄석,마사토포장
당초			14	3	113	339	산책로	광장 가-4	소로 3-3	쇄석,마사토포장
당초			15	3	111	333	산책로	광장 가-4	소로 3-3	쇄석,마사토포장
당초	산책로		46	1.5	143.9	215.9	산책로	전망대마-1	소로3-1	
당초			48	3	6	15	산책로	산책로46	소로 3-1	마사토포장
당초			49	2	14	28	산책로	전망대 마-1	소로 3-1	마사토포장
당초			50	2	92	184	산책로	전망대 마-1	전망대 마-16	마사토포장
당초			52	2	48	96	산책로	전망대 마-16	전망대 마-15	마사토포장
당초			53	2	78	156	산책로	전망대 마-15	전망대 마-13	마사토포장
당초			54	2	13	26	산책로	산책로53	소로 3-1	마사토포장
당초			55	2	45	90	산책로	전망대 마-7	전망대 마-6	마사토포장
당초			56	2	48	96	산책로	소로 3-1	산책로57	마사토포장
당초			22	1.8	135.5	244	산책로	산책로 66	소로 3-3	
당초			31	1.8	255	459	산책로	소로 3-3	소로 3-1	침목깔기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34	2	152	304	산책로	소로 3-3	소로 3-2	침목깔기
당초			41	1.8	45	81	산책로	소로 3-2	소로 3-3	침목깔기
당초			21	1.5	285	427.5	산책로	소로 3-1	소로 3-4	마사토포장
당초			20	1.5	236	354	산책로	소로 3-1	소로 3-4	마사토포장
당초			19	1.5	195	292.5	산책로	소로 3-1	소로 3-4	마사토포장
당초			18	1.5	91	136.5	산책로	소로 3-1	소로 3-4	마사토포장
당초			17	1.5	51	76.5	산책로	소로 3-1	소로 3-4	마사토포장
당초			30	1.5	223	335	산책로	소로 3-4	소로 3-1	마사토포장
당초			29	1.5	184	276	산책로	소로 3-4	소로 3-1	마사토포장
당초			28	1.5	156	234	산책로	소로 3-4	소로 3-1	마사토포장
당초			27	1.5	123	184.5	산책로	소로 3-4	소로 3-1	마사토포장
당초			26	1.5	89	133.5	산책로	소로 3-4	소로 3-1	마사토포장
당초			35	1.5	283	424.5	산책로	소로 3-1	소로 3-2	마사토포장
당초			36	1.5	204	306	산책로	소로 3-1	소로 3-2	마사토포장
당초			37	1.5	95	142.5	산책로	소로 3-1	소로 3-2	마사토포장
당초			38	1.5	48	72	산책로	소로 3-1	소로 3-2	마사토포장
당초			42	1.5	194	291	산책로	소로 3-2	소로 3-1	마사토포장
당초			43	1.5	150	225	산책로	소로 3-2	소로 3-1	마사토포장
당초			44	1.5	61	91.5	산책로	소로 3-2	소로 3-1	마사토포장
당초	산책로		45	1.5	29	43.5	산책로	소로 3-2	소로 3-1	마사토포장
당초			32	0.9	155	139.5	산책로	소로 3-4	산책로31	침목깔기
당초			33	0.9	25	22.5	산책로	산책로32	산책로31	침목깔기
당초			39	0.9	40	36	산책로	산책로34	산책로10	침목깔기
당초			40	0.9	20	18	산책로	산책로34	산책로39	침목깔기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2	3	12	36	산책로	광장 가-1	소로 3-1	
당초			4	3	46	138	산책로	산책로3	소로 3-4	
당초			6	3	57	171	산책로	광장 가-2	소로 3-3	
당초			8	2.5	74	185	산책로	산책로7	소로 3-4	
당초			10	2.5	84	210	산책로	광장 가-3	소로 3-1	
당초			12	3	54	162	산책로	산책로11	소로 3-2	
당초			13	2.5	74	185	산책로	소로 3-1	광장 가-4	
당초			16	2.5	85	212.5	산책로	산책로15	소로 3-2	
당초			23	2.5	184	460	산책로	산책로19	산책로21	
당초			24	3	43	129	산책로	광장 가-1	암석원 나	
당초			25	3	73	219	산책로	휴게소 라-2	산책로5	
당초			47	2.5	222	555	산책로	산책로46	전망대 마-2	
당초			51	3.5	332	1,162	산책로	산책로50	소로 3-1	
당초			57	2.5	85	212.5	산책로	소로 3-1	산책로58	
당초			58	2.5	184	460	산책로	소로 3-1	휴게소 라-3	
당초			59	3	43	129	산책로	전망대 마-17	전망대 마-18	
당초			60	3	73	219	산책로	전망대 마-18	전망대 마-20	

○ 도로조서(난지천공원)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5,767	30,868				
당초	중 로	소 계			526	7,890				
당초		2	1	15.0	526	7,890	주진입로	공원북측경계	공원남측경계	
당초	소 로	소 계			2,362	14,667				
당초		1	1	10.0	172	1,720	진입로	공원북측경계	소로 2-1	
당초		2	1	8.0	46	368	내부로	산책로25	소로 3-1	
당초		3	1	6.5	1,170	7,605	내부로	중로 2-1	공원동측경계	
당초			2	6.0	158	948	내부로	소로 3-1	휴게광장 바	
당초			3	6.0	159	954	내부로	휴게광장 바	소로 3-1	
당초			4	6.0	169	1,014	내부로	소로 3-1	소로 1-1	
당초			5	6.0	42	252	내부로	소로 1-1	소로 3-1	
당초			6	6.5	128	832	내부로	소로 1-1	소로 3-1	
당초			7	3	318	974	내부로	산책로1	광장 가-3	
당초	산책로	소 계			2,879	8,311				
당초			3	3.0	609	1,827	산책로	중로 2-1	소로 3-2	
당초			1	2	352	714	진입로	공원북측경계	공원남측경계	
당초			2	2	71	165	내부로	소로 3-7	소로 3-7	
당초			4	3~5	153	563	산책로	산책로3	중로 2-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5	3.0	23	69	산책로	산책로3	농구장 타	
당초			6	3.0	11	33	산책로	산책로3	축구장 하	
당초			7	3.0	22	66	산책로	산책로3	놀이터 자	
당초			8	3.0	88	264	산책로	산책로3	산책로11	
당초			9	3.0	98	294	산책로	소로 3-2	소로 3-1	
당초			10	3.0	12	36	산책로	놀이터 자	소로 3-2	
당초			11	3.0	46	138	산책로	놀이터 자	휴게광장 바	
당초			12	3.0	43	130	산책로	휴게광장 바	공원북측경계	
당초			13	2.5	74	185	산책로	산책로12	산책로12	
당초			14	3.0	40	120	산책로	휴게광장 바	공원북측경계	
당초			15	2.5	74	185	산책로	산책로15	산책로15	
당초			16	2.5	30	75	산책로	산책로15	공원북측경계	
당초			17	2.5	184	460	산책로	휴게광장 바	소로 3-1	
당초			18	3.0	43	129	산책로	소로 3-3	산책로18	
당초			19	3.0	73	219	산책로	소로 3-3	소로 3-1	
당초			20	2.5	210	555	산책로	산책로17	소로 3-1	
당초			21	3.5	332	1,162	산책로	산책로21	산책로24	
당초			22	3.0	172	516	산책로	산책로22	산책로22	
당초			23	4.0	80	320	산책로	소로 3-1	소로 2-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24	3.0	5	15	산책로	산책로3	풋살장	
당초			25	2	20	43	진입로	소로 3-7	소로 3-7	
당초			26	2	14	28	진입로	중로 2-1	산책로1	

○ 도로조서(평화의공원)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6,037	36,231				
당초	중로	소 계			877	12,110				
당초		2	1	15.0	668	10,020	진입로	공원동측경계	광로2류(24)	
당초		3	1	10.0	209	2,090	진입로	공원북측경계	중로2-1	
당초	소로	소 계			2,712	17,174				
당초		1	1	10.0	163	1,630	보도	진입광장라-1	진입광장 라-2	
당초		2	1	8.0	47	376	진입로	광로2-24 (증산로)	주차장 타-1	
당초		2	2	8.0	308	2,772	진입로	광로2-24 (증산로)	공원남동측경계	
당초		2	3	8.0	150	1,200	보도	유니세프 광장 가	소로 3-14	
당초		3	1	7.0	113	788	진입로	공원동측경계	유니세프광장 가	
당초		3	2	3.0	57	171	보도	진입광장 라-1	주차장 타-2	
당초		3	3	6.0	365	2,190	보도	중로 2-1	소로 2-2	
당초		3	4	5.0	18	90	보도	소로 3-3	소로3-7	
당초		3	5	6.0	145	870	보도	소로3-6	소로 2-2	
당초		3	6	5.0	106	530	보도	소로3-3	염원의장 나	
당초		3	7	7.5	150	1,125	보도	소로 3-6	소로 2-2	
당초		3	8	5.0	24	120	보도	산책로1	휴게소 1-1	
당초		3	9	3.0	111	333	보도	휴게소 1-1	소로 3-3	
당초		3	10	4.0	110	440	보도	소로 3-3	브릿지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3	11	5.0	44	220	보도	염원의 장 나	소로 2-3	
당초		3	12	6.0	85	510	보도	펌프장	소로 2-2	
당초		3	13	6.0	66	396	보도	소로 2-2	펌프장	
당초		3	14	5.0	532	2,660	보도	소로 2-2	유니세프 광장 가	
당초		3	15	6.0	88	528	보도	소로 3-1	휴게소 1-2	
당초		3	16	7.5	30	225	보도	주차장 타-6	소로 3-15	
당초	산책로	소 계			2,448	6,947				
당초			1	3.5	180	630	산책로	중로 2-1	소로 3-9	
당초			2	3.0	32	96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3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m)	연 장(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산책로		3	3.0	85	510	산책로	소로 3-3	소로 3-3	
당초			4	1.5	100	150	산책로	산책로 3	소로 3-9	
당초			5	1.5	57	85	산책로	소로 3-9	소로 3-6	
당초			6	3.0	152	456	산책로	소로 3-3	소로 3-3	
당초			7	2.5	342	852	산책로	소로 2-2	소로 2-2	
당초			8	2.0	415	871	산책로	소로 3-14	소로 3-14	
당초			9	3.0	43	129	산책로	소로 3-14	산책로 11	
당초			10	3.0	34	102	산책로	소로 3-14	산책로 11	
당초			11	3.0	336	1,008	산책로	공원동측경계	소로3-14	
당초			12	1.5	35	52	산책로	화장실 2-2	산책로 16	
당초			13	3.0	38	114	산책로	소로 3-14	산책로 11	
당초			14	3.5	41	180	산책로	소로 3-1	산책로 16	
당초			15	3.0	23	69	산책로	소로 1-2	소로 3-1	
당초			16	2.5	271	878	산책로	소로 3-1	산책로 11	
당초			17	3.5	66	231	산책로	유니세프 광장 가	소로 3-15	
당초			18	3.0	33	99	산책로	유니세프 광장 가	소로 1-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19	3.0	36	108	산책로	주차장 타-6	산책로 17	
당초			20	1.5	50	75	산책로	주차장 타-1	중로 2-1	
당초			21	3	49	147	산책로	유니세프 광장 가	피크닉장 아	
당초			22	3.5	30	105	산책로	산책로 7	공원남서측경계	

월드컵공원 조성계획도(변경전)

SCALE=1/5,000

월드컵공원

월드컵공원

월드컵공원 조성계획도(변경후)

SCALE=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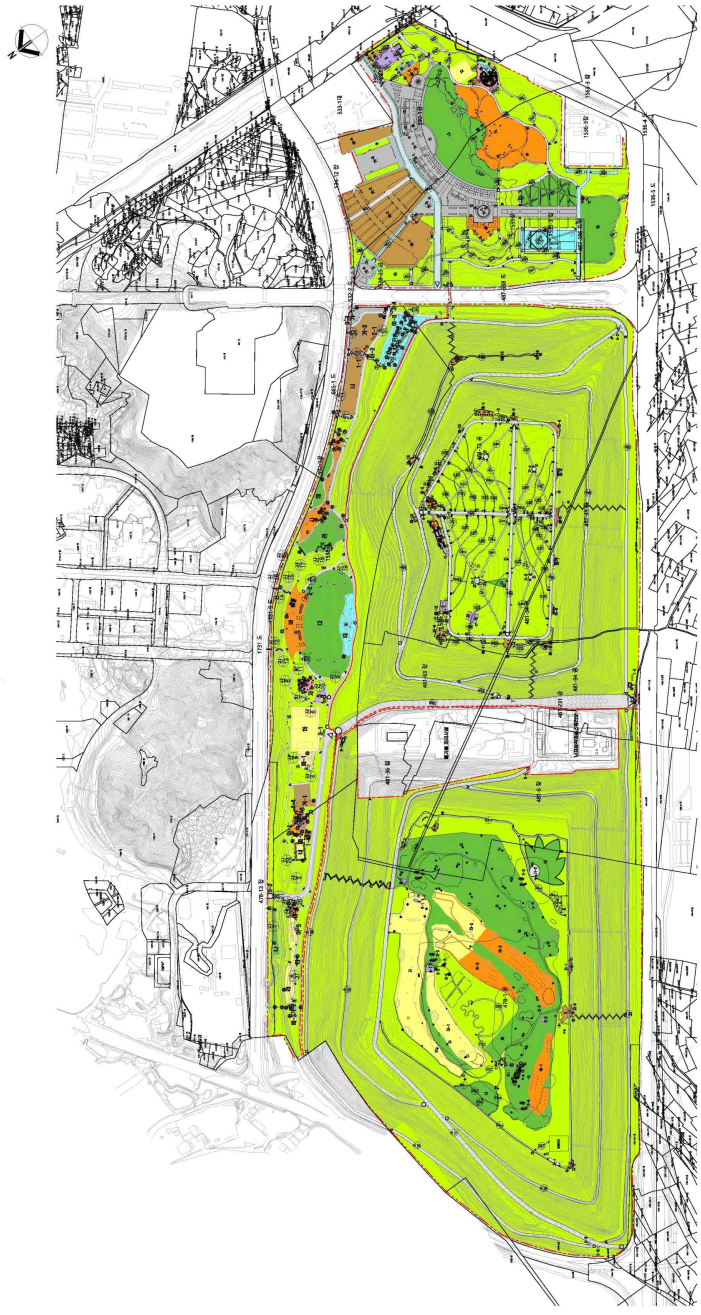

노을공원 조성계획도(변경전)

월드컵공원

SCALE=1/2,000

■ 범 례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기)	비고
합	계		911,859	287,188.04	332	
기반시설	소 계		67,205	67,205		
	도 로	㉮~㉲	66,079	66,079		
	광 장	가-1	237	237		
		가-2	678	678		
		가-3	211	211		
조경시설	소 계		138,376.1	138,376.1	90	
	초지공원	나	111,114.1	111,114.1		
	관 디 발	다	7,567	7,567		
	들 망 원	라	520	520		
	자연물놀이터	마	7,630	7,630		
	도시농부정원	바	6,500	6,500		
	자생화단	사	5,045	5,045		
	파 고 라	①			7	
		1-1			8	
	박구조파고라	②			11	
	초 경	③			47	
	목 재 데 크	④			1	
	조 형 물	⑤			16	
휴양시설	소 계		22,700	22,700	79	
	노을원형광장	아-1	7,300	7,300		
		아-2	8,800	8,800		
		아-3	6,600	6,600		
	등 의 자	⑥			25	
		6-1			54	
유희시설	소 계				1	
	유당발레아지트	⑦			1	
	통나무그물놀이대	⑧			1	
	우드볼하우스	⑨			1	
	통나무건너기	⑩			1	
	통나무복합놀이대	⑪			1	
	통나무오르기	⑫			1	
	인디언놀이집	⑬			1	
운동시설	소 계		56,475	56,475		
	파크골프장	자	43,500	30,500		소11
		자-1	12,350	12,350		
		자-2	13,625	13,625		
교양시설	소 계		32	32	3	
	녹의생태체험장	라	32	32	3	
	목탑					
편익시설	소 계		1,579.04	1,579.04	16	
	주 랑	차-1	164	164		
		차-2	138	138		
		차-3	153	153		
		차-4	190	190		
	광 장	2-1	84.31	84.31		
		2-2	84.31	84.31		
		2-3	84.31	84.31		
		2-4	84.31	84.31		
		2-5	16.8	16.8		
		2-6	40	40		
		2-7	110.28	110.28		
	매 점	③	429.72	429.72	14	
	음 수 대	⑪			9	
	벽재지도	⑭			1	
관리시설	소 계		820.9	820.9		별표신고
	파크골프장관리소	4	59	59		
	물품보관소	4-1	130.9	130.9		
	화 장 실	5-1	73	73		
		5-2	63	63		
		5-3	34	34		
		5-4	34	34		
	경 고	6-1	30	30		
		6-2	90	90		
		6-3	108	108		
		6-4	97	97		
	펌 프 실	7	42	42		
	기계실 및 발전기실	7-1	60	60		
	옥 탁	⑮			1식	
	휴 지 통	⑯			10	
	공 중 전	⑰			115	
	안 내 판	⑱			5	
	오수탱크	⑲			13	
녹지및기타	소 계		624,670.96		-	
	녹 지		624,670.96			

노을공원 조성계획도(변경후)

SCALE=1/2,000

■ 범 례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기)	비고
합계			911,859	287,188.04	333	중) 1기
기반시설	소계		67,205	67,205		
	도로	소1-1 ~ 산14	66,079	66,079		
	광장	가-1	237	237		
		가-2	678	678		
		가-3	211	211		
조경시설	소계		138,376.1	138,376.1	90	
	초지공원	나	111,114.1	111,114.1		
	잔디밭	다	7,567	7,567		
	돌망태	라	520	520		
	자연물놀이터	마	7,630	7,630		
	도시농부정원	바	6,500	6,500		
	자생화단	사	5,045	5,045		
	파고라	①			7	
		1-1			8	
	막구조파고라	②			11	
	초정	③			47	
	목재데크	④			1	
	조형물	⑤			16	
휴양시설	소계		22,700	22,700	79	
	노을캠핑장	아-1	7,300	7,300		
		아-2	8,800	8,800		
		아-3	6,600	6,600		
	등의자	⑥			25	
		6-1			54	
유희시설	소계				7	
	우당벌레아지트	⑦			1	
	통나무그물놀이대	⑧			1	
	우드볼하우스	⑨			1	
	통나무건너기	⑩			1	
	통나무복합놀이대	⑲			1	
	통나무오르기	⑳			1	
	인디언놀이집	㉑			1	
운동시설	소계		56,475	56,475		
	파크골프장	자	30,500	30,500		
		자-1	12,350	12,350		
		자-2	13,625	13,625		
교양시설	소계		32	32	3	
	누에생태체험장		32	32		
	책방	⑱			3	
편익시설	소계		1,579.04	1,579.04	11	중) 1기
	전망대	차-1	164	164		
		차-2	138	138		
		차-3	153	153		
		차-4	190	190		
	화장실	2-1	84.31	84.31		
		2-2	84.31	84.31		
		2-3	84.31	84.31		
		2-4	84.31	84.31		
		2-5	16.8	16.8		
		2-6	40	40		
		2-7	110.28	110.28		
	매점	3	429.72	429.72		
	음수대	⑪			9	
	목재계단	⑫			2	중) 1기
관리시설	소계		820.9	820.9	1	
	파크골프장관리소	4	59	59		
	클럽하우스	4-1	130.9	130.9		
	안내소	5-1	73	73		
		5-2	63	63		
		5-3	34	34		
		5-4	34	34		
	창고	6-1	30	30		
		6-2	90	90		
		6-3	108	108		
		6-4	97	97		
	펌프실	7	42	42		
	기계실 및 물탱크실	7-1	60	60		
	목책	⑬			1식	
	휴지통	⑭			10	
	공원등	⑮			115	
	안내판	⑯			5	
	cctv	⑰			13	
녹지및기타	소계		624,670.96		-	
	녹지		624,670.96			

난지천공원 조성계획도(변경없음)

월드컵공원

SCALE=1/3,000

■ 범 례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기)	비고
합계			270,887.0	136,073.36	898	
기반시설	소계		33,565.2	33,565.2		
	도로		30,868.0	30,868.0		
	광장	가-1	2,662.0	2,662.0		
		가-2	35.2	35.2		
조경시설	소계		37,959.0	37,959.0	57	
	야생초화원	나	1,279.0	1,279.0		
	잔디광장	다	25,742.0	25,742.0		
	오리연못	라	7,173.0	7,173.0		
	초화원	마	2,765.0	2,765.0		
	파고라	①			15	
	사각정자	②			2	
	목교&파고라	③			4	
	안용벽	④			14	
	목재데크	⑤			2	
	디딤돌	⑦			20	
휴양시설	소계		15,237.6	15,237.6	301	
	휴게광장	바	7,885.6	7,885.6		
	피크닉장	사	5,971.0	5,971.0		
	휴게소	아-1	808.0	808.0		
		아-2	188.0	188.0		
		아-3	39.0	39.0		
		아-4	306.0	306.0		
		아-5	30.0	30.0		
	편의자	⑧			55	
	등의자	⑨			99	
	사각의자	⑩			26	
	원목의자	⑪			1	
	평상	⑫			6	
	대피소내부의자	⑬			1	
	통나무테이블	⑭			5	
	학습데이블	⑮			1	
	통나무의자A	⑯			60	
	통나무의자B	⑰			47	
유희시설	소계		2,606.0	2,606.0	15	
	종합놀이터	자	1,220.0	1,220.0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기)	비고
유희시설	유아놀이터	차	1,386.0	1,386.0		
	조합놀이대	㉮			2	
	계이불카	㉯			1	
	오름벽조합놀이대	㉰			1	
	역마차놀이대	㉱			1	
	자동차놀이대	㉲			1	
	그 네	㉳			1	
	손잡놀이문널	㉴			1	
	OX놀이판널	㉵			1	
	흘놀이대	㉶			1	
	지네시소	㉷			1	
	개미잡오르기	㉸			1	
	하늘과바람소리	㉹			1	
	회전하는소리구멍	㉺			1	
	쇠통구리통판	㉻			1	
교양시설	소계		13,731.0	13,731.0	34	
	유아숲체험장	커	9,013.0	9,013.0		
	야외공연장	타	4,718.0	4,718.0		
	나무위의 집A	㉮			1	
	나무위의 집B	㉯			1	
	토끼집	㉰			1	
	유아쉘터	㉱			1	
	숲존의A	㉲			1	
	숲존막B	㉳			1	
	숲속오새	㉴			1	
	숲속희대	㉵			1	
	숲속그네	㉶			1	
	흔당다리	㉷			1	
	밧줄다리	㉸			1	
	나무가지집A	㉹			1	
	나무가지집B	㉺			1	
	통나무거미오르기	㉻			1	
	통나무건너기	㉼			2	
	거미줄놀이	㉽			1	
	광자리쉼터	㉾			5	
	가방걸이	㉿			2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기)	비고
교양시설	통나무오르기	㉿			1	
	밧줄오르기	㉿			5	
	오래놀이대	㉿			1	
	그물놀이대	㉿			1	
	그물건너기	㉿			1	
운동시설	소계		17,010.0	17,010.0	20	
	다목적구장	파-1	1,796.0	1,796.0		
		파-2	662.0	662.0		
		파-3	565.0	565.0		
	파크골프장	러	4,185.0	4,185.0		
	롯 볼 장	너	1,146.0	1,146.0		
	축 구 장	허	8,577.0	8,577.0		
	체력단련장	디	79.0	79.0		
	농 구 대	㉾			5	
	운동기구	㉾			15	
관익시설	소계		15,383.8	15,383.8	22	
	주 차 장	거-1	2,686.0	2,686.0		
		거-2	6,084.0	6,084.0		
		거-3	6,068.0	6,068.0		
	화 장 실	1-1	62.0	62.0		
		1-2	128.0	128.0		
		1-3	50.0	50.0		
		1-4	128.0	128.0		
		1-5	27.8	27.8		
	매 점	2-1	75.0	75.0		
		2-2	75.0	75.0		
	목 교	㉿			2	
	징검다리	㉿			2	
	자전거보관대	㉿			4	
	음 수 대	㉿			8	
	대피소	㉿			1	
	목교계단	㉿			3	
	석재계단	㉿			2	
관리시설	소계		580.76	580.76	449	
	안내소	3-1	34.0	34.0		
		3-2	6.0	6.0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기)	비고
관리시설	안내소	3-3	10.0	10.0		
		3-4	6.0	6.0		
		3-5			1	
	목재펜스	㉿				95m
	주차관리소	㉿			4	
	무인정산기	㉿			1	
	휴지통	㉿			32	
	분리함	㉿			3	
	일반안내판	㉿			13	
	교통표지판	㉿			3	
	방향표지판	㉿			15	
	쉼구안내판(공주)	㉿			1	
	쉼무안내판(설마)	㉿			1	
	종합안내판	㉿			2	
	시설안내판	㉿			8	
	놀이터영수확안내판	㉿			2	
	공원등	㉿			254	
	집 석	㉿			5	
	볼 라 드	㉿			77	
	수목보호대	㉿			5	
	cctv	㉿			14	
	조명탑 엑	㉿			6	
	휀스	㉿			1	404m
	그물망휀스	㉿			1	100m
	창 고	4-4	21	21		
	근로자 대기실	5	503.76	503.76		
녹지및기타	소계		134,813.64			
	녹 지		124,545.64			
	하 천		10,268			

하늘공원 조성계획도(변경없음)

SCALE=1/2,000

월드컵공원

■ 범 례

구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 작 물 (기)	비 고
합	계		732,829	104,054.59	1,201	
기반시설	소 계		94,813.4	94,813.4	–	
	도 로	(휴21) ~ (산60)	94,233.4	94,233.4		
	광 장	가-1	201	201		
		가-2	153	153		
		가-3	113	113		
		가-4	113	113		
조경시설	소 계		614	614	188	
	암 석 원	나	585	585		
	화 단	다-1	23	23		
		다-2	6	6		
	파 고 라	①			5	
	막구조파고라	②			3	
	막구조파고라(조형)	③			3	
	막구조파고라(대)	④			1	
	초 정	⑤			11	
	나 무 포 트	⑥			19	
	대지조형물	⑦			1식	
	조 형 물	⑧			2	
	자연석놓기	⑨			143	
휴양시설	소 계		1,175	1,175	469	
	휴 게 소	라-1	545	545		
		라-2	571	571		
		라-3	59	59		
	평 의 자	⑩			4	
	등 의 자	㉝			33	
	원 목 의 자	⑪			382	
	통 돌 의 자	⑫			50	
편익시설	소 계		5,348.19	5,348.19	76	
	전 망 대	마-1	721	721		
		마-2	132	132		
		마-3	212	212		
		마-4	372	372		
		마-5	351	351		
		마-6	165	165		
		마-7	166	166		
		마-8	173	173		
		마-9	694	694		
		마-10	486	486		
		마-11	108	108		
		마-12	359	359		
		마-13	37	37		
		마-14	166	166		
		마-15	73.7	73.7		
		마-16	182	182		
		마-17	569	569		
		마-18	42	42		
		마-19	80	80		
	화 장 실	1-1	54.71	54.71		
		1-2	54.71	54.71		
		1-3	55.04	55.04		
		1-4	54.71	54.71		
		1-5	40.32	40.32		
	음 수 대	⑬			9	
	목 교	⑭			60	
	콘크리트교	㉜			1	
	목 재 계 단	⑮			2	
	자전거보관대	⑯			3	
	계 단	㉞			1	
관리시설	소 계		2,104	2,104	468	
	탐방객 안내센터	바	922	922		
	펌 프 실	2	42	42		
	목 책	⑰			1식	L=1,689M
	휴 지 통	⑱			28	
	플 랜 터	⑲			62	
	종합안내판	⑳			5	
	해 설 판	㉑			83	
	수 목 명 패	㉒			117	
	풍력발전기	㉓			5	
	전 기 실	3	21	21		
	공 원 등	㉔			109	
	수목잔디조명등	㉕			28	
	분 전 반	㉖			3	
	피 뢰 침	㉗			7	
	볼 라 드	㉘			2	
	방향표지판	㉙			11	
	표 석	㉚			2	
	cctv	㉛			6	
	안 내 소	4-1	34	34		
		4-2	10	10		
		4-3	10	10		
		4-4	34	34		
		4-5	10	10		
	근로자 휴게시설	5	405	405		
	야적장 및 집하장	사	292	292		
	창고	6	318	318		
	주차관리실	7	6	6		
녹지및기타	소 계		628,774.41			
	녹 지		628,774.41	628,774.41		

평화의공원 조성계획도(변경없음)

SCALE=1/2,000

월드컵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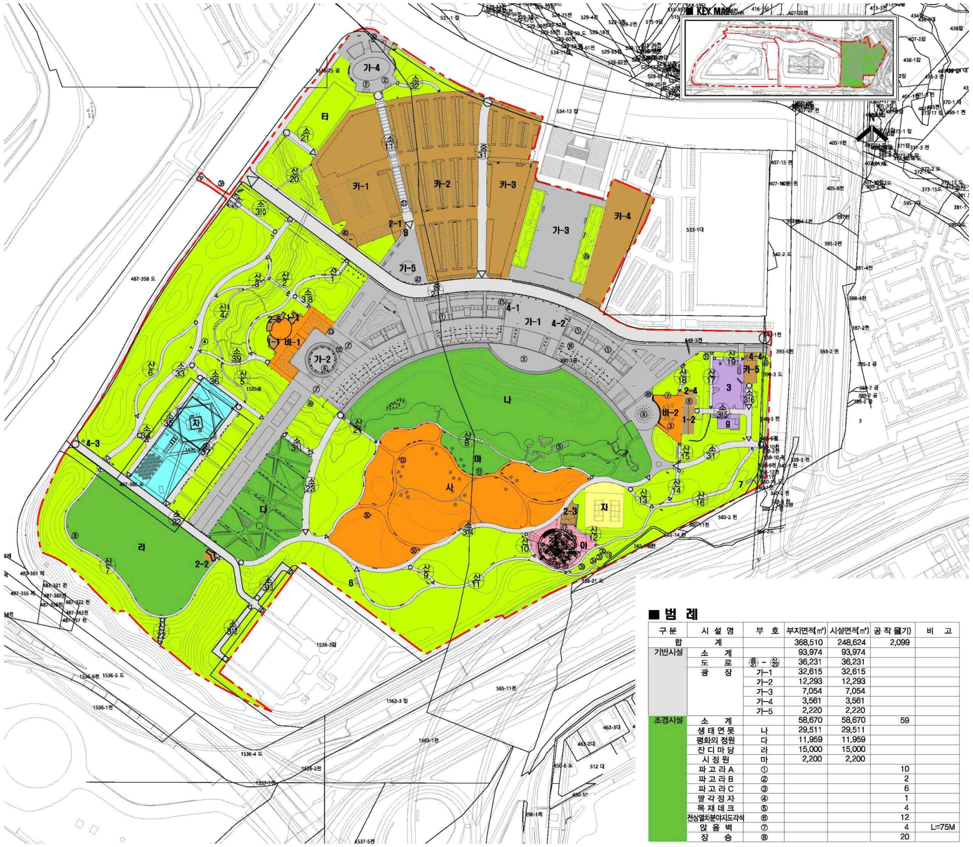

■ 범 례

구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합 계			368,510	248,624	2,099	
기반시설	소 계		93,974	93,974		
	도 로	충21 ~ 산22	36,231	36,231		
	광 장	가-1	32,615	32,615		
		가-2	12,293	12,293		
		가-3	7,054	7,054		
		가-4	3,561	3,561		
		가-5	2,220	2,220		
조경시설	소 계		58,670	58,670	59	
	생 태 연 못	나	29,511	29,511		
	평화의 정원	다	11,959	11,959		
	잔 디 마 당	라	15,000	15,000		
	시 정 원	마	2,200	2,200		
	파 고 라 A	①			10	
	파 고 라 B	②			2	
	파 고 라 C	③			6	
	팔 각 정 자	④			1	
	목 재 데 크	⑤			4	
	천상열차분야지도각석	⑥			12	
	앉 음 벽	⑦			4	L=75M
	장 승	⑧			20	

구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 작 물(기)	비 고
휴양시설	소 계		30,978	30,978	561	
	휴 게 소	바-1	2,738	2,738		
		바-2	1,388	1,388		
	피 크 닉 장	사	26,852	26,852		
	평 의 자	⑨			26	
	등 의 자	⑩			222	
	통 돌 의 자	⑪			165	
	단 식 의 자	⑫			130	
	평 상	⑬			18	
유희시설	소 계		3,220	3,220	137	
	놀 이 터	아	3,220	3,220		
	스카이데크	⑭			1	
	사면놀이대	⑮			1	
	목재계단	⑯			1	
	거울놀이벽	⑰			1	
	네트놀이대	⑱			1	
	미끄럼틀A	⑲			1	
	미끄럼틀B	⑳			2	
	그네	㉑			2	
	공중활주로	㉒			1	
	기둥밟고건너기	㉓			1	
	네트건너기	㉔			1	
	두줄건너기	㉕			1	
	세줄건너기	㉖			1	
	숨바꼭질	㉗			70	
	징검다리	㉘			1	
	통나무모험놀이대	㉙			1	
	통나무밟고건너기	㉚			1	
	흔들놀이	㉛			2	
	로프사면놀이대	㉜			4	
	홀더사면놀이대	㉝			30	
	폴사면놀이대	㉞			10	
	모래놀이대	㉟			3	
운동시설	소 계		2,401	2,401		
	테 니 스 장	자	2,401	2,401		
교양시설	소 계		7,105	7,105		
	에너지드림센터	차	7,105	7,105		
편익시설	소 계		47,095	47,095	11	
	주 차 장	카-1	11,153	11,153		
		카-2	18,107	18,107		
		카-3	9,825	9,825		
		카-4	5,721	5,721		
		카-5	518	518		
	매 점	1-1	215	215		
		1-2	460	460		
	화 장 실	2-1	279	279		
		2-2	171	171		
		2-3	391	391		
		2-4	85	85		
		2-5	170	170		
	음 수 대	㊱			6	
	자전거보관대	㊲			4	
	보 행 육 교	㊳			1	
관리시설	소 계		2,680.6	2,680.6	1,331	
	공원관리사업소	3	2,074	2,074		
	안 내 소	4-1	10	10		
		4-2	10	10		
		4-3	34	34		
		4-4	12	12		
	목 책	㊴			1식	L=29M
	주차관리소	㊵			4	
		5-1	-	-		
		5-2	-	-		
		5-3	-	-		
		5-4	-	-		
	분리수거장	6	30	30		
	매립가스 소각장	7	24	24		
	태양열전기실	8	8	8		
	근로자 휴게시설	9	478.6	478.6		
	종합안내판	㊶			5	
	일반안내판	㊷			24	
	공원유도사인	㊸			23	
	놀이터안내수칙표지판	㊹			1	
	입 구 표 석	㊺			2	
	휴 지 통	㊻			12	
	볼 라 드	㊼			123	
	공 원 등	㊽			1,040	
	수목잔디조명	㊾			73	
	C C T V	㊿			24	
	태양열발전설비	51			1식	
녹지및기타	소 계		122,386.4	2,500		
	녹 지		119,886.4			
	반려견놀이터	타	2,500	2,50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9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청계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하천의 명칭 : 청계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경제실 창조산업기획관 뷰티패션산업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8층

3. 점용의 목적
  - 목　　적 : 청계천 야간경관 점등식 연계 패션쇼 런웨이 등 설치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오간수교 ~ 버들다리 사이
  - 면　　적 : 약 L= 100m 구간

5. 점용기간 : 2025. 10. 28. ~ 10. 31.(4일)

6. 최초허가 연월일 : 2025. 10. 27.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99호

강동구 성내동 382-6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66호(2023.05.04.)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된 강동구 성내동 382-6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8조,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강동구 성내동 382-6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청년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변경없음)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4.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5.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1) 수용인구 : 약 395인(변경없음)
2) 주택건설계획 : 281세대
[기정] 공공임대 60세대, SH선매입 80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 141세대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가구당 인구수	수용인구(인)	비율(%)	비 고
공공임대	25 Type	10	3.56	1	10.00	2.53	
	33 Type	7	2.49	1	7.00	1.77	
	49 Type	13	4.63	1	13.00	3.29	
	50 Type	11	3.91	1	11.00	2.79	
	64 Type	19	6.76	2.65	50.35	12.75	
	소계	60	21.35	-	91.35	23.14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가구당 인구수	수용인구(인)	비율(%)	비 고
SH선매입	25 Type	80	28.47	1	80.00	20.26	
	소계	80	28.47	-	80.00	20.26	
공공지원 민간임대	25 Type	22	7.83	1	22.00	5.57	
	33 Type	25	8.90	1	25.00	6.33	
	43 Type	4	1.42	1	4.00	1.01	
	49 Type	35	12.46	1	35.00	8.86	
	50 Type	5	1.78	1	5.00	1.27	
	64 Type	49	17.44	2.65	129.85	32.89	
	69 Type	1	0.36	2.65	2.65	0.67	
	소계	141	50.18	-	223.5	56.60	
합 계		281	100.00	-	394.85	100.00	

※ 청년안심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 을 적용

[변경] 공공임대 60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 221세대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가구당 인구수	수용인구(인)	비율(%)	비 고
공공임대	25 Type	10	3.56	1	10.00	2.53	
	33 Type	7	2.49	1	7.00	1.77	
	49 Type	13	4.63	1	13.00	3.29	
	50 Type	11	3.91	1	11.00	2.79	
	64 Type	19	6.76	2.65	50.35	12.75	
	소계	60	21.35	-	91.35	23.14	
공공지원 민간임대	25 Type	102	36.30	1	102.00	25.83	
	33 Type	25	8.90	1	25.00	6.33	
	43 Type	4	1.42	1	4.00	1.01	
	49 Type	35	12.46	1	35.00	8.86	
	50 Type	5	1.78	1	5.00	1.27	
	64 Type	49	17.44	2.65	129.85	32.89	
	69 Type	1	0.36	2.65	2.65	0.67	
	소계	221	78.65	-	303.50	76.86	

구 분	세대수(세대)	비 율(%)	가구당 인구수	수용인구(인)	비율(%)	비 고
합 계	281	100.00	-	394.85	100.00	

※ 청년안심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 을 적용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변경없음)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붙임](도면게재생략)

[붙임]

Ⅰ.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없음)

Ⅱ.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사항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사항(변경없음)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사항

1) 건축물의 용도계획(변경없음)

2) 건축물의 밀도계획(변경없음)

3)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변경)

[기정]

구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비고
공공기여율	기본용적률(540%이하)	• 부지면적의 20%이상 - 2,427.00㎡×20% = 485.40㎡	• 기본공공기여 : 491.09㎡(20.23%) - 공공임대주택 : 321.67㎡(13.25%)[27세대] - 공공시설(자원봉사센터) : 169.42㎡(6.98%) ※ 환산부지(95.76㎡) + 부속토지(73.66㎡)	기본용적률 540%, 상한용적률 697%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해야함 (강동구 성내동 382-6 청년안심주택에 한함)
	상한용적률(697%이하)	• 완화용적률(157%)의 50% 이상 공공임대주택 제공 - 용적률 : 78.50% 이상 - 연면적 : 1,905.20㎡ 이상	• 추가공공기여 : 78.63% -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1,908.44㎡(78.63%) [33세대] [완화용적률 157%의 50% : 78.50%] ※ 부속토지면적 : 274.35㎡(11.30%)	
비주거비율		• 10%이상 20%이하(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주거 : 비주거 = 87.64% : 12.36%	
주택건설비중	주택규모	• 주택규모 : 전용면적 20㎡ ~ 60㎡ - 1인(셰어형 포함) 세대 : 실사용면적 25㎡ 이상 - 2인 이상 세대 : 실사용면적 45㎡ 이상	• 공공임대주택:SH선매입:공공지원민간임대 - 세대수 기준 = 21.35%:28.47%:50.18% - 연면적 기준 = 21.82%:15.69%:50.53% • 공공임대주택 : 60세대 - 25Type(10세대), 33Type(7세대), 49Type(13세대), 50Type(11세대), 64Type(19세대) • SH선매입: 80세대 - 25Type(80세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141세대 - 25Type(22세대), 33Type(25세대), 43Type(4세대), 49Type(35세대), 50Type(5세대), 64Type(49세대), 69Type(1세대)	
건축물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2가지 이상 의무 이행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 에너지효율 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 공공시설물 설치	• 에너지 효율 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구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비고
		-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에 규정한 발코니 설치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 「청년주택 운영기준」 3-3-9 - 100호 이상~ 300호 미만 : 150㎡ 이상	• 463.37㎡(지상20층)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10차) 3-2-1 준용

[변경]

구분		적용기준	계획내용	비고
공공 기여율	기본용적률 (540%이하)	• 부지면적의 20%이상 - 2,427.00㎡×20% = 485.40㎡	• 기본공공기여 : 491.09㎡(20.23%) - 공공임대주택 : 321.67㎡(13.25%)[27세대] - 공공시설(자원봉사센터) : 169.42㎡(6.98%) ※ 환산부지(95.76㎡) + 부속토지(73.66㎡)	기본용적률 540%, 상한용적률 697%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해야함 (강동구 성내동 382-6 청년안심 주택에 한함)
	상한용적률 (697%이하)	• 완화용적률(157%)의 50% 이상 공공임대주택 제공 - 용적률 : 78.50% 이상 - 연면적 : 1,905.20㎡ 이상	• 추가공공기여 : 78.63% -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1,908.44㎡(78.63%) [33세대] [완화용적률 157%의 50% : 78.50%] ※ 부속토지면적 : 274.35㎡(11.30%)	
비주거비율		• 10%이상 20%이하(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주거 : 비주거 = 87.64% : 12.36%	
주택 건설 비중	주택규모	• 주택규모 : 전용면적 20㎡ ~ 60㎡ - 1인(셰어형 포함) 세대 : 실사용면적 25㎡ 이상 - 2인 이상 세대 : 실사용면적 45㎡ 이상	• 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 세대수 기준 = 21.35%:78.65% - 연면적 기준 = 21.82%:66.22% • 공공임대주택 : 60세대 - 25Type(10세대), 33Type(7세대), 49Type(13세대), 50Type(11세대), 64Type(19세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221세대 - 25Type(102세대), 33Type(25세대), 43Type(4세대), 49Type(35세대), 50Type(5세대), 64Type(49세대), 69Type(1세대)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2가지 이상 의무 이행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 에너지효율 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 공공시설물 설치 -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에 규정한 발코니 설치	• 에너지 효율 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 「청년주택 운영기준」 3-3-9 - 100호 이상~ 300호 미만 : 150㎡ 이상	• 463.37㎡(지상20층)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10차) 3-2-1 준용

4)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사항(변경없음)

Ⅲ.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Ⅳ. 방재계획(변경없음)

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변경없음)

Ⅵ.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Ⅶ.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Ⅷ.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계획(변경없음)

Ⅸ. 관계도면(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00호

서리풀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93호(2024.2.22.)로 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서리풀근린공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서리풀근린공원 내 무장애숲길 조성을 위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함.

2. 위 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산160-24 일대

3. 면 적: 465,938.3㎡

4.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및 도면: 별첨
   ※ 첨부된 도면 등 (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또는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2133-2074), 서초구청 공원녹지과(☎2155-6882)

서리풀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초구 서초동 산160-24 일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465,938.30	86,564.80		14,854.72	88,451.55	6.00	465,938.30	88,888.62		14,854.72	88,451.55		증 2,323.82㎡
기반시설	소계	48,163.25	14,883.25 (16640)				1.00	50,501.81	17,221.81 (16640)				1	증 2,338.56㎡
	도로	39,195.71	22,555.71					41,534.27	24,894.27					증 2,338.56㎡
	광장	8,967.54	8,967.54				1.00	8,967.54	8,967.54				1	
조경시설		24,168.16	24,168.16				5.00	24,168.16	24,168.16					
유희시설													5	
휴양시설		4,228.22	4,228.22					4,213.48	4,213.48					감 14.74㎡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교양시설	19,439.00	19,439.00		14,602.54	88,199.37		19,439.00	19,439.00		14,602.54	88,199.37		
운동시설	763.00	763.00					763.00	763.00					
편익시설	5,854.00	5,854.00		44.10	44.10		5,854.00	5,854.00		44.10	44.10		
관리시설	589.17	589.17		208.08	208.08		589.17	589.17		208.08	208.08		
녹지 및 기타	362,733.50	-					360,409.68						감 2,323.82㎡
시설율 (법정 40%)	86,564.80㎡/465,938.3㎡×100=18.57%(법정40%이하)						88,888.62㎡/465,938.3㎡×100=19.07%(법정40%이하)						
건폐율 (법정 10%)	14,854.72㎡/465,938.3㎡×100=3.18%(법정10%이하)						14,854.72.㎡/465,938.3㎡×100=3.18%(법정10%이하)						

2.시설조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465,938.30	86,564.80		9	14,854.72	88,451.55	6.00			465,938.30	88,888.62	-	9	14,854.72		6.00	0.00
기반시설	소 계			48,163.25	31,523.25					1.00			50,501.81	33,861.81					1.00	증 2,338.56㎡
	도 로			39,195.71	22,555.71								41,534.27	24,894.27					-	감 2,338.56㎡
	보도교량	①		-						1.00			-	-					1.00	
	광 장	자		8,967.54	8,967.54					-			8,967.54	8,967.54						
		자-1		3,786.00	3,786.00					-			3,786.00	3,786.00						
		자-2		5,110.00	5,110.00					-			5,110.00	5,110.00						
		자-3		71.54	71.54					-			71.54	71.54						
조경시설	소 계			24,168.16	24,168.16					5.00			24,168.16	24,168.16					5.00	
	잔디밭	차		13,603.00	13,603.00								13,603.00	13,603.00						
	유실수원	카		2,938.00	2,938.00								2,938.00	2,938.00						
	화단	하		7,448.70	7,448.70								7,448.70	7,448.70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하-1		4,253.00	4,253.00								4,253.00	4,253.00						
		하-2		3,124.00	3,124.00								3,124.00	3,124.00						
		하-3		15.61	15.61								15.61	15.61						
		하-4		56.09	56.09								56.09	56.09						
	화계	가		84.19	84.19								84.19	84.19						
	경관용벽	나		34.52	34.52								34.52	34.52						
		나-1		0.72	0.72								0.72	0.72						
		나-2		14.06	14.06								14.06	14.06						
		나-3		5.12	5.12								5.12	5.12						
		나-4		2.65	2.65								2.65	2.65						
		나-5		11.97	11.97								11.97	11.97						
	개비온옹벽	마		59.75	59.75					5.00			59.75	59.75					5.00	
		마-1		15.16	15.16					1.00			15.16	15.16					1.00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마-2		8.31	8.31					1.00			8.31	8.31					1.00	
		마-3		9.76	9.76					1.00			9.76	9.76					1.00	
		마-4		5.75	5.75					1.00			5.75	5.75					1.00	
		마-5		20.77	20.77					1.00			20.77	20.77					1.00	
휴양시설	소계			4,228.22	4,228.22								4,213.48	4,213.48						감 14.74㎡
	휴게소	아		4,228.22	299.00								4,213.48	4,213.48						감 14.74㎡
		아-2		299.00	299.00								284.26	284.26						감 14.74㎡
		아-3		1,419.00	1,419.00								1,419.00	1,419.00						
		아-4		246.00	246.00								246.00	246.00						
		아-5		411.00	411.00								411.00	411.00						
		아-6		156.00	156.00								156.00	156.00						
		아-7		224.00	224.00								224.00	224.00						
		아-8		223.00	223.00								223.00	223.00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아-9		61.00	61.00								61.00	61.00						
	아-10		270.00	270.00								270.00	270.00						
	아-11		84.00	84.00								84.00	84.00						
	아-12		155.00	155.00								155.00	155.00						
	아-13		91.00	91.00								91.00	91.00						
	아-14		55.24	55.24								55.24	55.24						
	아-15		38.81	38.81								38.81	38.81						
	아-16		96.87	96.87								96.87	96.87						
	아-17		46.74	46.74								46.74	46.74						
	아-18		15.70	15.70								15.70	15.70						
	아-19		30.47	30.47								30.47	30.47						
	아-20		21.23	21.23								21.23	21.23						
	아-21		27.63	27.63								27.63	27.63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아-22		195.33	195.33								195.33	195.33						
		아-23		61.20	61.20								61.20	61.20						
교양시설	소 계			19,439,00	19,439,00			14,602.54	88,199.37				19,439.00	19,439.00			14,602.54	88,199.37		
	도서관	2		17,939,00	17,939,00			13,102.54	83,249.37				17,939.00	17,939.00			13,102.54	83,249.37		
		2-1		12,970,00	12,970,00			12,212.72	80,919.05				12,970.00	12,970.00			12,212.72	80,919.05		
		2-2		4,969,00	4,969,00			889.82	2,330.32				4,969.00	4,969.00			889.82	2,330.32		
	문화회관	3		1,500.00	1,500.00			1,500.00	4,950.00				1,500.00	1,500.00			1,500.00	4,950.00		
운동시설	소 계			763.00	763.00								763.00	763.00						
	베드민턴장	바		763.00	763.00								763.00	763.00						
		바-1		426.00	426.00								426.00	426.00						
		바-2		337.00	337.00								337.00	337.00						
편익시설	소 계			5,854.00	5,854.00			44.10	44.10				5,854.00	5,854.00			44.10	44.10		
	화장실	파		72.00	72.00			44.10	44.10				72.00	72.00			44.10	44.10		
		파-1		47.00	47.00			21.00	21.00				47.00	47.00			21.00	21.00		
		파-2		25.00	25.00			23.10	23.00				25.00	25.00			23.10	23.10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주차장	타		5,782.00	5,782.00								5,782.00	5,782.00						
관리시설	소 계			589.17	589.17			208.08	208.08				589.17	589.17			208.08	208.08		
	관리사무소	5		589.17	589.17			208.08	208.08				589.17	589.17			208.08	208.08		
녹지 및 기타	소 계			362,733.50	0								360,409.68	0						감 2,323.82㎡
	녹지 및 기타			362,733.50	0								362.733.50	0						감 2,323.82㎡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8,163.28	22,237.63				
					641.00	16,640.00				
변경	합 계				9,524.61	24,894.27				
					641.00	16,640.00				
당초	광로	소 계			297.00	12,574.00				
당초			1	40	157.00	6,506.00	도시계획도	서초동 산 160-67	서초동 산17-28	
당초			2	40	140.00	6.068.00	도시계획도	반포동 513-6	서초동 산183-3	
당초	중로	소 계			152.00	2,825.00				
당초		3	2	12	152.00	2,825.00	도시계획도	반포동 576	서초동 산172-12	
당초	소로	소 계			422.00	3,758.00				
					192.00	1,241.00				
당초		3	3	8	192.00	1,241.00	도시계획도	서초동 산160-67	서초동 산17-28	
당초		3	4	7	422.00	3,758.00	도시계획도	반포동 513-6	서초동 산183-3	
당초	산책로	소 계			7,741.28	18,479.63				
변경		소 계			9,102.61	21,136.27				
당초			1	2	149.00	299.00	산책로	반포동 산34-12	반포동 산28	
당초			3	2	84.00	167.00	산책로	반포동 산28	반포동 산40-12	
당초			4	2	42.00	84.00	산책로	반포동 산34-12	반포동 산34-12	
당초			5	2	189.42	417.15		산책로55	서초동 산183-12	
당초			6	2	53.00	107.00	산책로	반포동 산34-12	반포동 산34-12	
당초			7	2	102.00	204.00	산책로	산28-5	산28	
당초			8	2	188.09	361.70	산책로	휴게소 (아-6)	산책로 5	
당초			9	2	217.00	434.00	산책로	반포동 산28	서초동 산185-1	
당초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10	2	97.00	194.00	산책로	광로 2	산책로 11	
당초			11	2	562.00	1,124.00	산책로	잔디광장(차)	잔디광장(차)	
당초			12	2	76.00	151.00	산책로	소로 3-4	산책로 11	
당초			13	2	109.00	218.00	산책로	소로 3-3	산책로 37	
당초			14	2	220.00	440.00	산책로	중로 3-2	산책로 20	
당초			18	2	273.00	546.00	산책로	서초동 산160-24	쉼터(아-9)	
변경			18	1.8	1,439.96	2,823.20	산책로	산책로 58	쉼터(아-3)	
당초			20	2	134.00	304.00	산책로	쉼터(아-5)	쉼터(아-9)	
당초			21	2	61.00	117.00	산책로	서초동 산 156-58	산책로 41	
당초			25	2	161.00	322.00	산책로	산책로 20	방배동 산17-46	
당초			27	2	117.00	234.00	산책로	방배동 산 17-45	산책로 20	
당초			28	2	155.00	310.00	산책로	산책로 31	산책로 11	
당초			29	2	57.00	112.00	산책로	산책로 72	산책로 28	
당초			30	2	169.00	337.00	산책로	산책로 39	산책로 64	
당초			31	2	87.00	174.00	산책로	산책로 11	산책로 72	
당초			33	2	88.00	175.00	산책로	도자구역 산책로 33	도자구역 산책로 33	
당초			34	2	36.00	68.00	산책로	광로 1	도자구역 산책로 34	
당초			37	2	208.00	416.00	산책로	중로 3-2	산책로 11	
당초			39	2	137.00	274.00	산책로	서초동 산160-27	방배동 887-1	
당초			41	1.5	242.00	358.00	산책로	산책로 39	휴게소(아-4)	
당초			43	2	103.00	206.00	산책로	방배동 산23-35	산책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44	2	203.00	406.00	산책로	산책로 21	산책로 41	
당초			47	2	71.00	142.00	산책로	산책로 21	쉼터 (아-4)	
당초			49	2	154.49	318.08		방배동 167-31	산책로 41	
당초			50	4	53.25	236.09		연결교량 (①)	산책로 11	
당초			51	2	57.00	113.00	산책로	반포동 60-1	반포동 60-1	
당초			52	2	170.00	339.00	산책로	산책로 51	반포동 60-6	
당초			53	2	52.00	105.00	산책로	반포동 34-12	반포동 34-12	
당초			54	2	100.00	200.00	산책로	서초동 산185-1	서초동 산 185-1	
당초			55	1.5	92.76	164.70	산책로	반포동 산40-12	산책로 5	
당초			56	2~8	22.00	103.00	산책로	산책로 37	산책로 11	
당초			57	2	4.00	8.00	산책로	산책로 37	산책로 11	
당초			58	4	91.00	366.00	산책로	반포동 산85-2	반포동 산85-2	
당초			59	2	66.00	133.00	산책로	중로 3-2	산책로 14	
당초			60	2	113.00	226.00	산책로	산책로 14	산책로 14	
당초			61	3	56.00	167.00	산책로	쉼터 (아-3)	쉼터 (아-2)	
당초			62	2	53.00	95.00	산책로	쉼터 (아-2)	쉼터 (아-3)	
변경			62	2	247.37	474.44	산책로	산책로 73	산책로 18	
당초			63	2~4.5	173.00	600.00	산책로	쉼터 (아-3)	광로 1	
당초			64	3	357.00	1,241.00	산책로	광로 1	방배동 산 17-38	
당초			65	2	61.00	123.00	산책로	산책로 64	도서관 (2-2)	
당초			66	2	8.00	179.00	산책로	반포동 산59	소로 3-4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67	7	107.00	809.00	산책로	주차장 (타)	산책로 68	
당초			68	4~7	51.00	285.00	산책로	반포동 631-3	도서관 (2)	
당초			69	2	118.00	722.00	산책로	주차장 (타)	주차장 (타)	
당초			70	5.5	87.00	534.00	산책로	도서관 (2)	도서관 (2)	
당초			71	2	61.00	121.00	산책로	옥외휴양시설 (나-9)	산책로 31	
당초			72	2	184.00	375.00	산책로	옥외휴양시설 (나-9)	산책로 28	
당초			73	2	951.00	1,901.00	산책로	방배동 167-31	광장 (자-3)	
당초			74	2.4	4.56	22.76	산책로	방배동 167-31	서초동 산160-68	
당초			75	3	15.49	53.62	산책로	방배동 167-30	산책로 77	
당초			76	2.3	3.72	8.43	산책로	방배동 167-30	산책로 75	
당초			77	2.2	12.95	27.95	산책로	산책로 75	산책로 49	
당초			78	1.6	34.00	88.46	산책로	산책로 49	방배동 167-33	
당초			79	2	1.60	3.22	산책로	방배동 167-33	산책로 78	
당초			80	4.8	14.07	74.42	산책로	연결교량 (①)	산책로 55	
당초			81	1.5	21.88	35.05	산책로	산책로 80	산책로 55	

조성계획도[변경전]

서리풀근린공원

Scale : 1/5,000(A1)

■ 조성계획 총괄표-1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465,938.3	86,564.80	-	9	14,854.72	88,451.55	6	
기반시설	소계		48,163.25	31,523.25	-	-	-	-	1	
	도로	오	39,195.71	22,555.71 (16,640)	-	-	-	-	-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미포함
	보도교량	①	-	-	-	-	-	-	1	
	광장	자	8,967.54	8,967.54	-	-	-	-	-	
		자-1	3,786	3,786	-	-	-	-	-	
		자-2	5,110	5,110	-	-	-	-	-	
		자-3	71.54	71.54	-	-	-	-	-	
조경시설	소계		24,168.16	24,168.16	-	-	-	-	5	
	잔디밭	차	13,603	13,603	-	-	-	-	-	
	유실수원	카	2,938	2,938	-	-	-	-	-	
	화단	하	7,448.7	7,448.7	-	-	-	-	-	
		하-1	4,253	4,253	-	-	-	-	-	
		하-2	3,124	3,124	-	-	-	-	-	
		하-3	15.61	15.61	-	-	-	-	-	
		하-4	56.09	56.09	-	-	-	-	-	
	화계	가	84.19	84.19	-	-	-	-	-	
	경관옹벽	나	34.52	34.52	-	-	-	-	-	
		나-1	0.72	0.72	-	-	-	-	-	
		나-2	14.06	14.06	-	-	-	-	-	
		나-3	5.12	5.12	-	-	-	-	-	
		나-4	2.65	2.65	-	-	-	-	-	
		나-5	11.97	11.97	-	-	-	-	-	
	개비온옹벽	마	59.75	59.75	-	-	-	-	5	
		마-1	15.16	15.16	-	-	-	-	1	
		마-2	8.31	8.31	-	-	-	-	1	
		마-3	9.76	9.76	-	-	-	-	1	
		마-4	5.75	5.75	-	-	-	-	1	
		마-5	20.77	20.77	-	-	-	-	1	

■ 조성계획 총괄표-2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휴양시설	소계		4,228.22	4,228.22	-	-	-	-	-	
	휴게소	아	4,228.22	4,228.22	-	-	-	-	-	
		아-2	299	299	-	-	-	-	-	
		아-3	1419	1,419	-	-	-	-	-	
		아-4	246	246	-	-	-	-	-	
		아-5	411	411	-	-	-	-	-	
		아-6	156	156	-	-	-	-	-	
		아-7	224	224	-	-	-	-	-	
		아-8	223	223	-	-	-	-	-	
		아-9	61	61	-	-	-	-	-	
		아-10	270	270	-	-	-	-	-	
		아-11	84	84	-	-	-	-	-	
		아-12	155	155	-	-	-	-	-	
		아-13	91	91	-	-	-	-	-	
		아-14	55.24	55.24	-	-	-	-	-	
		아-15	38.81	38.81	-	-	-	-	-	
		아-16	96.87	96.87	-	-	-	-	-	
		아-17	46.74	46.74	-	-	-	-	-	
		아-18	15.70	15.70	-	-	-	-	-	
		아-19	30.47	30.47	-	-	-	-	-	
		아-20	21.23	21.23	-	-	-	-	-	
		아-21	27.63	27.63	-	-	-	-	-	
		아-22	195.33	195.33	-	-	-	-	-	
		아-23	61.20	61.20	-	-	-	-	-	
교양시설	소계		19,439	19,439	-	6	14,602.54	88,199.37	-	
	도서관	2	17,939	17,939	-	5	13,102.54	83,249.37	-	
		2-1	12,970	12,970	-	4	12,212.72	80,919.05	-	
		2-2	4,969	4,969	-	1	889.82	2,330.32	-	
	문화회관	3	1,500	1,500	-	1	1,500	4,950	-	
운동시설	소계		763	763	-	-	-	-	-	
	배드민턴장	바	763	763	-	-	-	-	-	
		바-1	426	426	-	-	-	-	-	
		바-2	337	337						
편익시설	소계		5,854	5,854	-	2	44.1	44.1	-	
	화장실	파	72	72	-	2	44.1	44.1	-	
		파-1	47	47	-	1	21	21	-	
		파-2	25	25	-	1	23.1	23.1	-	
	주차장	타	5,782	5,782	-	-	-	-	-	
관리시설	소계		589.17	589.17	-	1	208.08	208.08	-	
	관리사무소	5	589.17	589.17	-	1	208.08	208.08	-	
녹지 및 기타	소계		362,733.50	-	-	-	-	-	-	
	녹지		362,733.50	-	-	-	-	-	-	

조성계획도[변경후]

서리풀근린공원

Scale : 1/5,000(A1)

0 125 250 500

■ 조성계획 총괄표-1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465,938.3	88,888.62	-	9	14,854.72	88,451.55	6	
기반 시설	소계		50,501.81	31,523.25	-	-	-	-	1	
	도로	~~유~~	41,534.27	24,894.27 (16,640)	-	-	-	-	-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미포함
	보도교량	①	-	-	-	-	-	-	1	
	광장	자	8,967.54	8,967.54	-	-	-	-	-	
		자-1	3,786	3,786	-	-	-	-	-	
		자-2	5,110	5,110	-	-	-	-	-	
		자-3	71.54	71.54	-	-	-	-	-	
조경 시설	소계		24,168.16	24,168.16	-	-	-	-	5	
	잔디밭	차	13,603	13,603	-	-	-	-	-	
	유실수원	카	2,938	2,938	-	-	-	-	-	
	화단	하	7,448.7	7,448.7	-	-	-	-	-	
		하-1	4,253	4,253	-	-	-	-	-	
		하-2	3,124	3,124	-	-	-	-	-	
		하-3	15.61	15.61	-	-	-	-	-	
		하-4	56.09	56.09	-	-	-	-	-	
	화계	가	84.19	84.19	-	-	-	-	-	
	경관옹벽	나	34.52	34.52	-	-	-	-	-	
		나-1	0.72	0.72	-	-	-	-	-	
		나-2	14.06	14.06	-	-	-	-	-	
		나-3	5.12	5.12	-	-	-	-	-	
		나-4	2.65	2.65	-	-	-	-	-	
		나-5	11.97	11.97	-	-	-	-	-	
	개비온옹벽	마	59.75	59.75	-	-	-	-	5	
		마-1	15.16	15.16	-	-	-	-	1	
		마-2	8.31	8.31	-	-	-	-	1	
		마-3	9.76	9.76	-	-	-	-	1	
		마-4	5.75	5.75	-	-	-	-	1	
		마-5	20.77	20.77	-	-	-	-	1	

■ 조성계획 총괄표-2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휴양 시설	소계		4,213.48	4,213.48	-	-	-	-	-	
	휴게소	아	4,228.22	4,228.22	-	-	-	-	-	
		아-2	284.26	284.26	-	-	-	-	-	
		아-3	1419	1,419	-	-	-	-	-	
		아-4	246	246	-	-	-	-	-	
		아-5	411	411	-	-	-	-	-	
		아-6	156	156	-	-	-	-	-	
		아-7	224	224	-	-	-	-	-	
		아-8	223	223	-	-	-	-	-	
		아-9	61	61	-	-	-	-	-	
		아-10	270	270	-	-	-	-	-	
		아-11	84	84	-	-	-	-	-	
		아-12	155	155	-	-	-	-	-	
		아-13	91	91	-	-	-	-	-	
		아-14	55.24	55.24	-	-	-	-	-	
		아-15	38.81	38.81	-	-	-	-	-	
		아-16	96.87	96.87	-	-	-	-	-	
		아-17	46.74	46.74	-	-	-	-	-	
		아-18	15.70	15.70	-	-	-	-	-	
		아-19	30.47	30.47	-	-	-	-	-	
		아-20	21.23	21.23	-	-	-	-	-	
		아-21	27.63	27.63	-	-	-	-	-	
		아-22	195.33	195.33	-	-	-	-	-	
		아-23	61.20	61.20	-	-	-	-	-	
교양 시설	소계		19,439	19,439	-	6	14,602.54	88,199.37	-	
	도서관	2	17,939	17,939	-	5	13,102.54	83,249.37	-	
		2-1	12,970	12,970	-	4	12,212.72	80,919.05	-	
		2-2	4,969	4,969	-	1	889.82	2,330.32	-	
	문화회관	3	1,500	1,500	-	1	1,500	4,950	-	
운동 시설	소계		763	763	-	-	-	-	-	
	배드민턴장	바	763	763	-	-	-	-	-	
		바-1	426	426	-	-	-	-	-	
		바-2	337	337						
편익 시설	소계		5,854	5,854	-	2	44.1	44.1	-	
	화장실	파	72	72	-	2	44.1	44.1	-	
		파-1	47	47	-	1	21	21	-	
		파-2	25	25	-	1	23.1	23.1	-	
	주차장	타	5,782	5,782	-	-	-	-	-	
관리 시설	소계		589.17	589.17	-	1	208.08	208.08	-	
	관리사무소	5	589.17	589.17	-	1	208.08	208.08	-	
녹지 및 기타	소계		360,409.68	-	-	-	-	-	-	
	녹지		360,409.68	-	-	-	-	-	-	

부문조성계획도[변경전]

서리풀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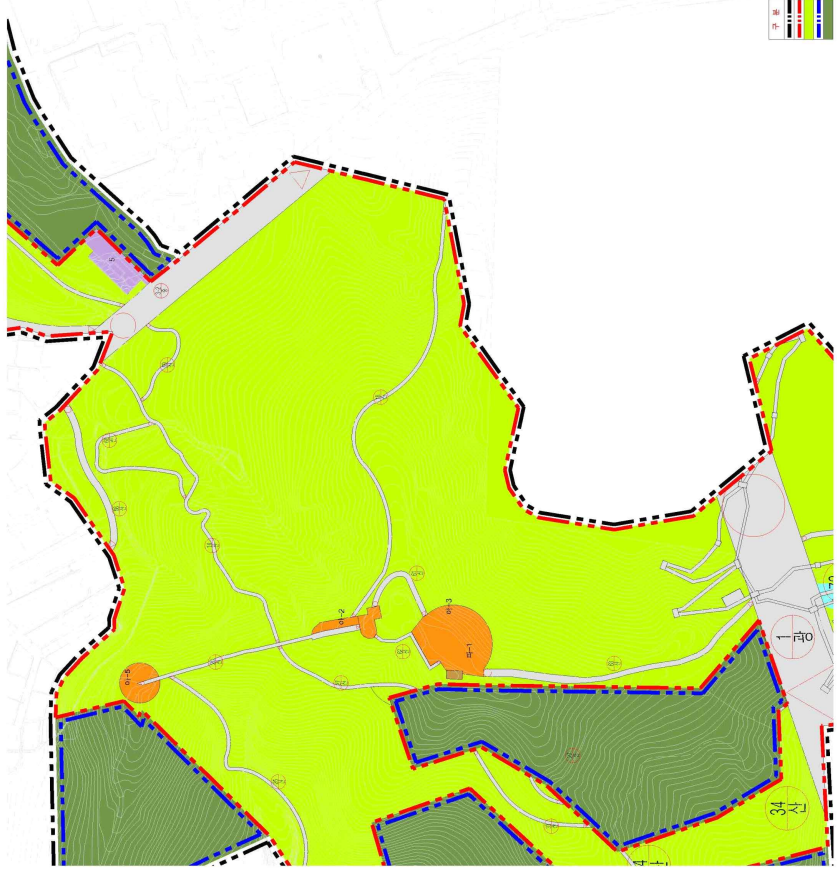

부분조성계획도[변경후]

서리풀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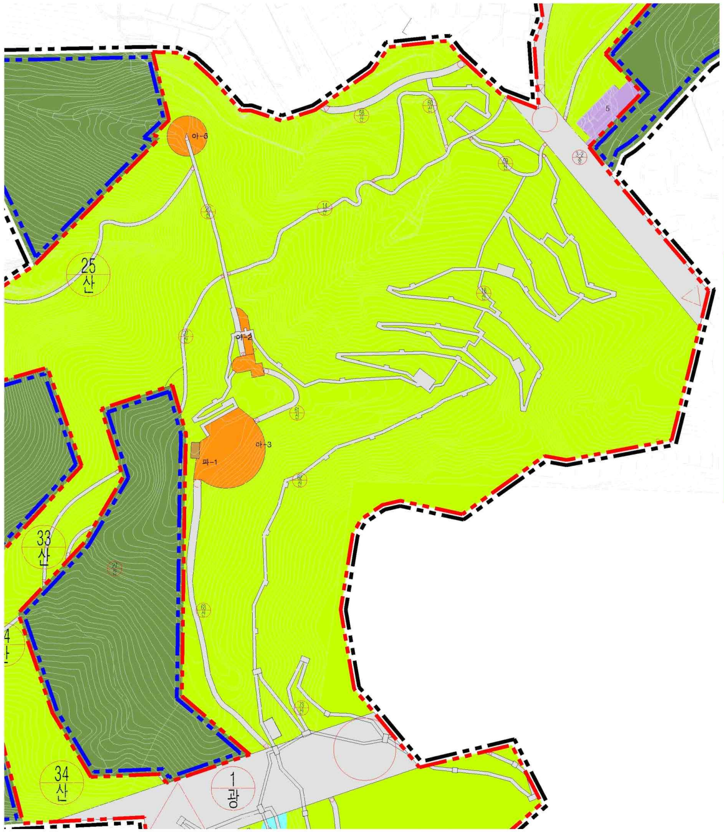

■ 조성계획 총괄표-1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465,938.3	88,888.62	-	9	14,854.72	88,451.55	6	
기반 시설	소계		50,501.81	31,523.25	-	-	-	-	1	
	도로	산	41,534.27	24,894.27 (16,640)	-	-	-	-	-	도시계획도로 시설면적 미포함
	보도교량	①	-	-	-	-	-	-	1	
	광장	자	8,967.54	8,967.54	-	-	-	-	-	
		자-1	3,786	3,786	-	-	-	-	-	
		자-2	5,110	5,110	-	-	-	-	-	
		자-3	71.54	71.54	-	-	-	-	-	
조경 시설	소계		24,168.16	24,168.16	-	-	-	-	5	
	잔디밭	차	13,603	13,603	-	-	-	-	-	
	유실수원	카	2,938	2,938	-	-	-	-	-	
	화단	하	7,448.7	7,448.7	-	-	-	-	-	
		하-1	4,253	4,253	-	-	-	-	-	
		하-2	3,124	3,124	-	-	-	-	-	
		하-3	15.61	15.61	-	-	-	-	-	
		하-4	56.09	56.09	-	-	-	-	-	
	화계	가	84.19	84.19	-	-	-	-	-	
	경관옹벽	나	34.52	34.52	-	-	-	-	-	
		나-1	0.72	0.72	-	-	-	-	-	
		나-2	14.06	14.06	-	-	-	-	-	
		나-3	5.12	5.12	-	-	-	-	-	
		나-4	2.65	2.65	-	-	-	-	-	
		나-5	11.97	11.97	-	-	-	-	-	
	개비온옹벽	마	59.75	59.75	-	-	-	-	5	
		마-1	15.16	15.16	-	-	-	-	1	
		마-2	8.31	8.31	-	-	-	-	1	
		마-3	9.76	9.76	-	-	-	-	1	
		마-4	5.75	5.75	-	-	-	-	1	
		마-5	20.77	20.77	-	-	-	-	1	

■ 조성계획 총괄표-2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휴양 시설	소계		4,213.48	4,213.48	-	-	-	-	-	
	휴게소	아	4,228.22	4,228.22	-	-	-	-	-	
		아-2	284.26	284.26	-	-	-	-	-	
		아-3	1419	1,419	-	-	-	-	-	
		아-4	246	246	-	-	-	-	-	
		아-5	411	411	-	-	-	-	-	
		아-6	156	156	-	-	-	-	-	
		아-7	224	224	-	-	-	-	-	
		아-8	223	223	-	-	-	-	-	
		아-9	61	61	-	-	-	-	-	
		아-10	270	270	-	-	-	-	-	
		아-11	84	84	-	-	-	-	-	
		아-12	155	155	-	-	-	-	-	
		아-13	91	91	-	-	-	-	-	
		아-14	55.24	55.24	-	-	-	-	-	
		아-15	38.81	38.81	-	-	-	-	-	
		아-16	96.87	96.87	-	-	-	-	-	
		아-17	46.74	46.74	-	-	-	-	-	
		아-18	15.70	15.70	-	-	-	-	-	
		아-19	30.47	30.47	-	-	-	-	-	
		아-20	21.23	21.23	-	-	-	-	-	
		아-21	27.63	27.63	-	-	-	-	-	
		아-22	195.33	195.33	-	-	-	-	-	
		아-23	61.20	61.20	-	-	-	-	-	
교양 시설	소계		19,439	19,439	-	6	14,602.54	88,199.37	-	
	도서관	2	17,939	17,939	-	5	13,102.54	83,249.37	-	
		2-1	12,970	12,970	-	4	12,212.72	80,919.05	-	
		2-2	4,969	4,969	-	1	889.82	2,330.32	-	
	문화회관	3	1,500	1,500	-	1	1,500	4,950	-	
운동 시설	소계		763	763	-	-	-	-	-	
	배드민턴장	바	763	763	-	-	-	-	-	
		바-1	426	426	-	-	-	-	-	
		바-2	337	337						
편익 시설	소계		5,854	5,854	-	2	44.1	44.1	-	
	화장실	파	72	72	-	2	44.1	44.1	-	
		파-1	47	47	-	1	21	21	-	
		파-2	25	25	-	1	23.1	23.1	-	
	주차장	타	5,782	5,782	-	-	-	-	-	
관리 시설	소계		589.17	589.17	-	1	208.08	208.08	-	
	관리사무소	5	589.17	589.17	-	1	208.08	208.08	-	
녹지 및 기타	소계		360,409.68	-	-	-	-	-	-	
	녹지		360,409.68	-	-	-	-	-	-	

구분	구분명
	기존공원경계
	시설공원경계
	시설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경계
	도시자연공원구역

Scale : 1/1,000(A1)

0 25 50 100

N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01호

매헌시민의숲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46호(1987.4.27.)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01호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38호(2025.9.25.)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한 서초구 양재동 236번지 일대 매헌시민의숲 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 기능이 저하된 교양시설(야외무대)를 폐지하고 기반시설 및 조경시설을 보완하여 공원의 접근성과 이용편의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6번지 일대

3. 면 적 : 258,991.5㎡

4.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그 외 세부 관련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으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02-2133-2074),
   동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02-460-2962)

붙임 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조서 및 조성계획도 일체. 끝.

매헌시민의숲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양재동 236번지 일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258,991.5	58,524.09	15	4,816.58	7,046.17	207	258,991.5	59,603.51	14	4,719.52	6,949.11	209	증)1,079.42㎡
기반시설	소계	21,562.97	21,562.97					22,620.97	22,620.97					증)1,058.00㎡
	도로	18,349.00	18,349.00					19,407.00	19,407.00					증)1,058.00㎡
	광장	3,213.97	3,213.97					3,213.97	3,213.97					
조경시설		7,293.40	7,293.40				5	7,411.88	7,411.88				7	증)118.48㎡
휴양시설							1						1	
유희시설		3,216.00	3,216.00	1	157.80	157.80		3,216.00	3,216.00	1	157.80	157.80		
운동시설		11,917.02	11,917.02	1	2,154.60	2,154.60		11,917.02	11,917.02	1	2,154.60	2,154.60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교양시설		8,557.89	8,557.89	2	918.92	2,732.02	6	8,460.83	8,460.83	1	821.86	2,634.96	5	감)97.06㎡
편익시설		3,623.08	3,623.08	7	445.14	445.14	9	3,623.08	3,623.08	7	445.14	445.14	9	
관리시설		1,1511.20	1,511.20	4	1,140.12	1,556.61	186	1,511.20	1,511.20	4	1,140.12	1,556.61	186	
그밖의 시설	반려견 놀이터	842.53	842.53					842.53	842.53					
녹지 및 기타	녹지	200,467.41						199,387.99						감)1,079.42㎡
시설율(40%이하)		(58,524.09 / 258,991.50) x 100 = 22.596%						(59,603.51 / 258,991.50) x 100 = 23.013%						증)0.417%
건폐율(10%이하)		(4,825.02 / 258,991.50) x 100 = 1.863%						(4,825.02 / 258,991.50) x 100 = 1.863%						

2. 시설조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치(양재동)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양재동)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합 계				258,991.50	58,524.09		15동	4,816.58	7,046.17	207			258,991.50	59,603.51		15동	4,825.02	7,046.17	209	증)1,079.42㎡
기반시설	소 계			21,562.97	21,562.97								22,620.97	22,620.97						증)1,058.00㎡
	도 로		전지역	18,349.00	18,349.00							전지역	19,407.00	19,407.00						증)1,058.00㎡
	광 장	가	전지역	2,967.20	2,967.20						가	전지역	2,967.20	2,967.20						
	광장-1	가-1	236	(867.00)	(867.00)						가-1	236	(867.00)	(867.00)						
	광장-2	가-2	200	(481.00)	(481.00)						가-2	200	(481.00)	(481.00)						
	광장-3	가-3	200	(1,261.00)	(1,261.00)						가-3	200	(1,261.00)	(1,261.00)						
	광장-4	가-4	201	(358.20)	(358.20)						가-4	201	(358.20)	(358.20)						
	추모광장	나	234	246.77	246.77						나	234	246.77	246.77						
조경시설	소 계			7,293.4	7,293.4					5			7,411.88	7,411.88					7	증)118.48㎡
	잔디광장	다		1,770.00	2,182						다		1,770.00	1,770.00						
	잔디광장-1	다-1	234	(867)	(867)						다-1	234	(455.00)	(455.00)						
	잔디광장-2	다-2	234	(1,110.00)	(1,110.00)						다-2	234	(1,110.00)	(1,110.00)						
	잔디광장-3	다-3	201	(205.00)	(205.00)						다-3	201	(205.00)	(205.00)						
	관상용식수대	라	234	305.40	305.40						라	234	305.40	305.40						
	파고라			179.00	179.00					5			205.00	205.00					7	증)26.00㎡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치(양재동)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양재동)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파고라-1	①	236	(135.00)	(135.00)					(3)	①	236	(135.00)	(135.00)					(3)	
	파고라-2	①	201	(44.00)	(44.00)					(2)	①	201	(44.00)	(44.00)					(2)	
	파고라-3										①	236	(26.00)	(26.00)					(2)	신 설
	수경공간	마	236	2,604.00	2,604.00						마	236	2,604.00	2,604.00						
	관상용식수대-1	갸-1	201	530.00	530.00						갸-1	201	530.00	530.00						
	관상용식수대-2	갸-2	201	1,124.00	1,124.00						갸-2	201	1,124.00	1,124.00						
	관상용식수대-3	갸-3	201	369.00	369.00						갸-3	201	369.00	369.00						
	휴게쉼터-1										냐-1	236	47.74	47.74						신 설
	휴게쉼터-2										냐-2	236	44.74	44.74						신 설
휴양시설	소 계									1									1	
	의 자		전지역							1		전지역							1	
유희시설	소 계			3,216.00	3,216.00		1동	157.80	157.80				2,589.00	2,589.00		1동	157.80	157.80		
	실내놀이터	1	200	380.00	380.00		1동	157.80	157.80		1	200	380.00	380.00		1동	157.80	157.80		
	어린이놀이터	하	236	2,836.00	2,836.00						하	236	2,209.00	2,209.00						
운동시설	소 계			11,917.02	11,917.02		1동	2,154.60	2,154.60				11,917.02	11,917.02		1동	2,154.60	2,154.60		
	운동장	바	236	3,050.00	3,050.00						바	236	3,050.00	3,050.00						
	실외테니스장	사	236	5,000.42	5,000.42						사	236	5,000.42	5,000.42						
	실내테니스장	2	236	2,154.60	2,154.60		1동	2,154.60	2,154.60		2	236	2,154.60	2,154.60		1동	2,154.60	2,154.60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치(양재동)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양재동)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맨발공원	아	236	1,712.00	1,712.00						아	236	1,712.00	1,712.00						
교양시설	소 계			8,557.89	8,557.89		2동	918.92	2,732.02	6			8,460.83	8,460.83		1동	821.86	2,634.96	6	감)97.06㎡
	기념관	3	236	1,895.00	1,895.00		1동	821.86	2,634.96		3	236	1,895.00	1,895.00		1동	821.86	2,634.96		
	위령탑	②	234	221.16	221.16					2	②	234	221.16	221.16					2	
	충혼탑	③	234	78.60	78.60					1	③	234	78.60	78.60					1	
	동 상	④	236	100.00	100.00					1	④	236	100.00	100.00					1	
	조각품	⑤	200							1	⑤	200							1	
	기념비	⑨	234	110.25	110.25					1	⑨	234	110.25	110.25					1	
	야외무대	4	236	97.06	97.06		1동	97.06	97.06											폐 쇄
	놀이마당	자	200	706.50	706.50						자	200	706.50	706.50						
	야외공연장	차	200	1,192.32	1,192.32						차	200	1,192.32	1,192.32						
	기획전시장	카	200	4,157.00	4,157.00						카	200	4,157.00	4,157.00						
편의시설	소 계			3,623.08	3,623.08		7동	445.14	445.14	9			3,623.08	3,623.08		7동	445.14	445.14	9	
	매 점	5		300.00	300.00		2동	31.28	31.28		4		300.00	300.00		2동	31.28	31.28		
	매점-1	5-1	200	(150.00)	(150.00)		(1동)	(15.64)	(15.64)		4-1	200	(150.00)	(150.00)		(1동)	(15.64)	(15.64)		
	매점-2	5-2	200	(150.00)	(150.00)		(1동)	(15.64)	(15.64)		4-2	200	(150.00)	(150.00)		(1동)	(15.64)	(15.64)		
	음수대	⑥	234 236 200	190.00	190.00					9	⑥	234 236 200	190.00	190.00					9	
	화장실	6		485.08	485.08		5동	341.86	341.86		5		485.08	485.08		5동	341.86	341.86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치(양재동)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양재동)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화장실-1	6-1	236	(160.00)	(160.00)		(2동)	(92.38)	(92.38)		5-1	236	(160.00)	(160.00)		(2동)	(92.38)	(92.38)		
	화장실-2	6-2	234	(216.72)	(216.72)		(2동)	(166.32)	(166.32)		5-2	234	(216.72)	(216.72)		(2동)	(166.32)	(166.32)		
	화장실-3	6-3	236	108.36	108.36		(1동)	83.16	83.16		5-3	236	108.36	108.36		(1동)	83.16	83.16		
	주차장	파		2,576.00	2,576.00						파		2,576.00	2,576.00						
	주차장-1	파-1	236	(1,500.00)	(1,500.00)						파-1	236	(1,500.00)	(1,500.00)						
	주차장-2	파-2	201	(877.00)	(877.00)						파-2	201	(877.00)	(877.00)						
	주차장-3	파-3	200	(199.00)	(199.00)						파-3	200	(199.00)	(199.00)						
	분장실	7	200	72.00	72.00			72.00	72.00		6	200	72.00	72.00			72.00	72.00		
관리시설	소 계			1,511.20	1,511.20		3동	1,140.12	1,556.61	186			1,511.20	1,511.20		3동	1,140.12	1,556.61	186	
	관리사무실	8		1,209.05	1,209.05		3동	887.05	1,303.54		7		1,209.05	1,209.05		3동	887.05	1,303.54		
	관리사무실-1	8-1	236	(743.00)	(743.00)		(1동)	429.44	461.65		7-1	236	(743.00)	(743.00)		(1동)	429.44	461.65		
	관리사무실-2	8-2	236	(333.05)	(333.05)		(1동)	(333.05)	(708.89)		7-2	236	(333.05)	(333.05)		(1동)	(333.05)	(708.89)		
	관리사무실-3	8-3	200	(133.00)	(133.00)		(1동)	(133.00)	(133.00)		7-3	200	(133.00)	(133.00)		(1동)	(133.00)	(133.00)		
	안내간판	⑦	전지역							21	⑦	전지역							21	
	휴지통									1									1	
	관 정	⑧	236	40.00	40.00					5	⑧	236	40.00	40.00					5	
	가로등		전지역							159		전지역							159	
	정원지원센터	10	201	262.15	262.15		1동	253.07	253.07		9	201	262.15	262.15		1동	253.07	253.07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치(양재동)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양재동)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그밖의 시설	소 계			842.53	842.53								842.53	842.53						
	반려견놀이터	9		842.53	842.53						8		842.53	842.53						
녹지	소 계			200,467.41									199,387.99							감)1,079.42㎡
	녹지		전지역	200,467.41								전지역	199,387.99							감)1,079.42㎡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계				5,317.0	18,349				
변경	합계				5,716.0	19,407				
당초	중로	계			25	300				
당초		3	1	12	25	300	기념관 주진입로			
당초		계			5,292.0	18,049				
변경		계			5,691.0	19,107				
당초	소로	3	1	3-6	492	1,794	산책로	지선도로	소로3-2시점	
당초		3	2	3-6	702	2,551	산책로	소로3-1종점	소로3-6분기점	
당초		3	3	4-6	108	441	산책로	소로3-2분기점	하천	
당초		3	4	3-6	137	639	산책로	소로3-5분기점	소로3-1분기점	
당초		3	5	4	232	1,172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	
당초		3	6	4-6	269	1,024	산책로	지선도로	소로3-5분기점	
당초		3	7	2-3	107	236	산책로	중로3-1분기점	소로3-9분기점	
당초		3	8	2	92	184	산책로	소로3-9분기점	소로3-1분기점	
당초		3	9	2-3	317	701	산책로	소로3-6분기점	소로3-4분기점	
당초		3	10	2	27	54	산책로	소로3-9분기점	소로3-1분기점	
당초		3	11	2	28	56	산책로	소로3-9분기점	소로3-1분기점	
당초		3	12	2-4	126	252	산책로	소로3-2분기점	소로3-5분기점	
당초		3	13	2-3	330	704	산책로	소로3-12분기점	소로3-5분기점	
당초		3	14	2-3	43	87	산책로	소로3-13분기점	소로3-5분기점	
당초		3	15	3-6	128	495	산책로	지선도로	소로3-17분기점	
당초		3	16	3-6	160	576	산책로	지선도로	소로3-17분기점	
당초		3	17	2-6	172	910	산책로	제2 잔디광장	제2 잔디광장	
당초		3	18	3-6	36	129	산책로	하천	소로3-17분기점	
당초		3	19	2	295	590	산책로	소로3-17분기점	소로3-18분기점	
당초		3	20	4-6	128	877	산책로	인접도로	기획전시장	
당초		3	21	4	76	304	산책로	광장-2	소로3-20분기점	
당초		3	22	4	134	536	산책로	광장-2	광장-3	
당초		3	23	4-6	338	1,711	산책로	기획전시장남측	기획전시장북측	
당초		3	24	2	108	217	산책로	소로3-20분기점	소로3-22분기점	
당초		3	25	2	18	66	산책로	인접도로	광장-2	
당초		3	26	2-3	45	99	산책로	북서측 후문	소로3-23시점	
당초		3	27	5	10	50	산책로	소로3-3분기점	운동장	
당초		3	28	5	8	40	산책로	소로3-2분기점	운동장	
당초		3	29	2	57	114	산책로	소로3-2분기점	화장실	
당초		3	30	3	3	9	기념관 부진입로	기념관	관리사무실	
당초		3	31	6	21	126	진입로	소로3-17분기점	소로3-17분기점	
당초		3	32	2	7	14	진입로	소로3-9분기점	위령탑	
당초		3	33	2	72	160	산책로	소로3-2분기점	하천	
당초		3	34	3	466	1,131	산책로	정원지원센터	정원지원센터	

구 분	등 급	류 별	번 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신 규	소로	3	35	2	23	53	산책로	소로3-29분기점	소로3-37시점	
신 규		3	36	2	52	125	산책로	소로3-35분기점	하 천	
신 규		3	37	2-4	126	406	산책로	휴게쉼터-1	소로3-39시점	
신 규		3	38	2-4	88	216	산책로	소로3-37시점	소로3-37종점	
신 규		3	39	2	22	65	산책로	소로3-37종점	소로3-2분기점	
신 규		3	40	2	58	121	산책로	소로3-39분기점	맨발공원	
신 규		3	41	2	6	13	산책로	맨발공원	소로3-37분기점	
신 규		3	42	2	24	49	산책로	맨발공원	소로3-2분기점	

조성계획총괄도(변경전)

매헌시민의 숲 근린공원

■ 범 례

구 분	기 호	시 설 명	시설면적(㎡)	규모/수량	비 고
		총 계	58,524.09	시설율 22.596%	
기반시설		소 계	21,562.97		
		도 로	18,349.00		
	가-1	광 장 - 1	867.00		
	가-2	광 장 - 2	481.00		
	가-3	광 장 - 3	1261.00		
	가-4	광 장 - 4	358.20		
	나	휴far광장	246.77		
조경시설		소 계	7,293.40	5개소	
	다-1	잔디광장-1	867.00		
	다-2	잔디광장-2	1110.00		
	다-3	잔디광장-3	205.00		
	라	관상용식수대	305.40		
		피고라	179.00	5개소	
	①	피고라-1	135.00	(3개소)	
		피고라-2	44.00	(2개소)	
	마	수경공간	2604.00		
	가-1	관상용식수대-1	530.00		
	가-2	관상용식수대-2	1124.00		
	가-3	관상용식수대-3	369.00		
휴양시설		소 계		1개소	
		의 자		1개소	전지역
유희시설		소 계	3,216.00		
	1	실내놀이터	380.00		
	하	어린이놀이터	2,836.00		
운동시설		소 계	11,917.02		
	바	운동장	3,050.00		
	사	실외테니스장	5,000.42		
	2	실내테니스장	2,154.60		
	아	앰벌공원	1,712.00		
교양시설		소 계	8,557.89	6개소	
	3	기념관	1,895.00		
	②	원형틴	221.16	2개소	
	③	종혼틴	78.60	1개소	
	④	정 상	100.00	1개소	
	⑤	조각품		1개소	
	⑨	기념비	110.25	1개소	
	4	야외무대	97.06		
	자	놀이마당	706.50		
	차	야외공연장	1,192.32		
	카	기획전시장	4,157.00		
편익시설		소 계	3,623.08	9개소	
	5-1	매점-1	150.00		
	5-2	매점-2	150.00		
	⑥	음수대	190.00	9개소	
	6-1	화장실-1	160.00	2개동	
	6-2	화장실-2	216.72	2개동	
	6-3	화장실-3	108.36	1개동	
	파-1	주차장-1	1,500.00		
	파-2	주차장-2	877.00		
	파-3	주차장-3	199.00		
	7	분장실	72.00		
관리시설		소 계	1,511.20		
	8-1	관리사무실-1	743.00	186개소	
	8-2	관리사무실-2	333.05		
	8-3	관리사무실-3	133.00		
	⑦	안내간판		21개소	
		휴지통		1개소	
	⑧	관 정	40.00	5개소	
		가로등		159개소	
	10	정보지원센터	262.15		
유희시설		소 계	842.53		
	9	반려견놀이터	842.53		
녹지		소 계	200,467.41		
		녹 지	200,467.41		

서울특별시
2025. 11. 6. (목)

조성계획총괄도(변경후)

매헌시민의 숲 근린공원

■ 범 례

구 분	기 호	시 설 명	시설면적(㎡)	규모/수량	비 고
		총 계	59,603.51	시설률 23.013%	
기반시설		소 계	22,620.97		
		도 로	19,407.00		
	가-1	광 장 - 1	867.00		
	가-2	광 장 - 2	481.00		
	가-3	광 장 - 3	1,261.00		
	가-4	광 장 - 4	358.20		
	나	주요광장	246.77		
조경시설		소 계	7,411.88	7개소	
	다-1	산다광장-1	455.00		
	다-2	산다광장-2	1,110.00		
	다-3	산다광장-3	205.00		
	라	관상용식수대	305.40		
		피고라	205.00	7개소	
	①	피고라-1	135.00	(3개소)	
		피고라-2	44.00	(2개소)	
		피고라-3	26.00	(2개소)	
	마	수경공간	2,604.00		
	가-1	관상용식수대-1	530.00		
	가-2	관상용식수대-2	1,124.00		
	가-3	관상용식수대-3	369.00		
	나-1	휴게쉼터-1	47.74		
	나-2	휴게쉼터-2	44.74		
휴양시설		소 계		1개소	
		연 자		1개소	전지역
유희시설		소 계	2,589.00		
	1	실내놀이터	380.00		
	하	어린이놀이터	2,209.00		
운동시설		소 계	11,917.02		
	바	운동장	3,050.00		
	사	실외테니스장	5,000.42		
	2	실내테니스장	2,154.60		
	아	팔각정원	1,712.00		
교양시설		소 계	8,460.83	6개소	
	3	기념관	1,895.00		
	②	위령탑	221.16	2개소	
	③	충혼탑	78.60	1개소	
	④	등 상	100.00	1개소	
	⑤	조각류		1개소	
	⑥	기념비	110.25	1개소	
	자	놀이마당	706.50		
	차	야외공연장	1,192.32		
	카	기획전시장	4,157.00		
유아시설		소 계	3,623.08	9개소	
	4-1	매쉼-1	150.00		
	4-2	매쉼-2	150.00		
	⑥	음수대	190.00	9개소	
	5-1	화장실-1	160.00	2개동	
	5-2	화장실-2	216.72	2개동	
	5-3	화장실-3	108.36	1개동	
	파-1	주차장-1	1,500.00		
	파-2	주차장-2	877.00		
	파-3	주차장-3	199.00		
	6	분장실	72.00		
관리시설		소 계	1,511.20		
	7-1	관리사무실-1	743.00	186개소	
	7-2	관리사무실-2	333.05		
	7-3	관리사무실-3	133.00		
	⑦	안내간판		21개소	
		표지등		1개소	
	⑧	관 정	40.00	5개소	
		가로등		159개소	
	9	청원지원센터	262.15		
공공시설		소 계	842.53		
	8	반려견놀이터	842.53		
녹지		소 계	199,387.99		
		녹 지	199,387.99		

부분조성계획도(변경전)

매헌시민의 숲 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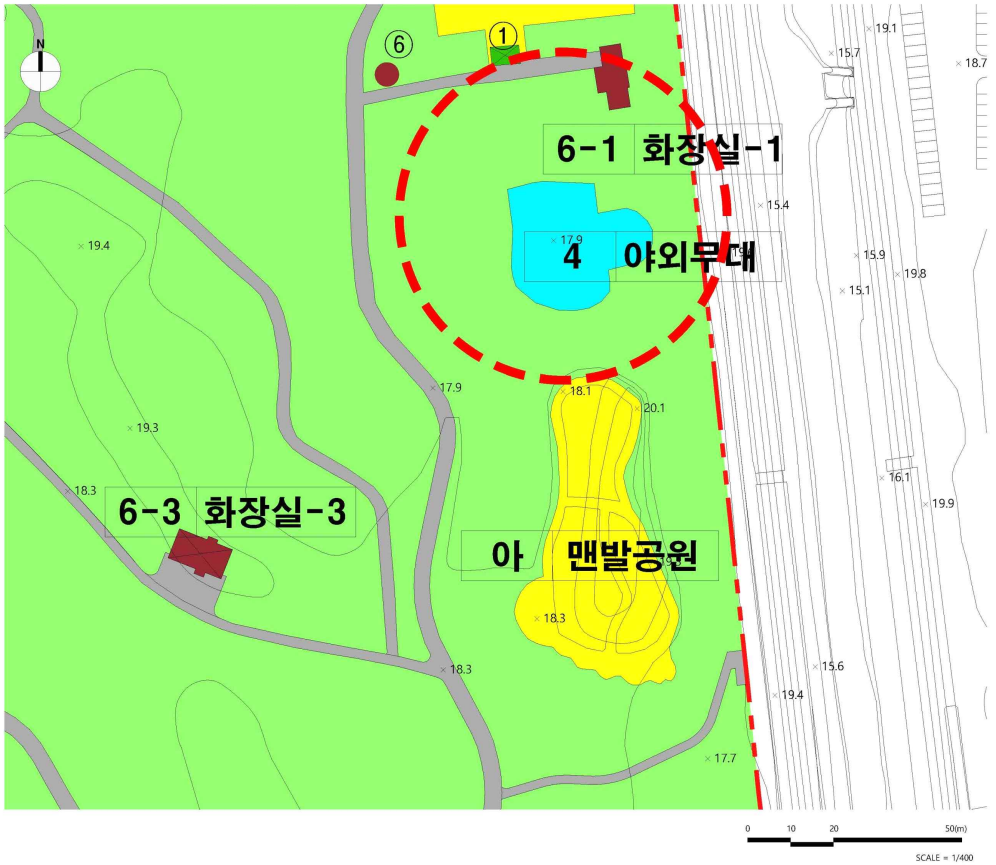

■범 례

구 분	기 호	시 설 명	시설면적(㎡)	규모/수량	비 고
		총 계	2,225.06		
기반시설		소 계	274.00		
		드 르	274.00		
유동시설		소 계	1,712.00		
	아	맨발공원	1,712.00		
건축시설		소 계	97.06		
	4	야외무대	97.06		
화장실		소 계	160.00		
	6-1	화장실-1	160.00	1개동	
녹지		소 계	9,229.34		
		녹 지	9,229.34		

부분조성계획도(변경후)

매헌시민의 숲 근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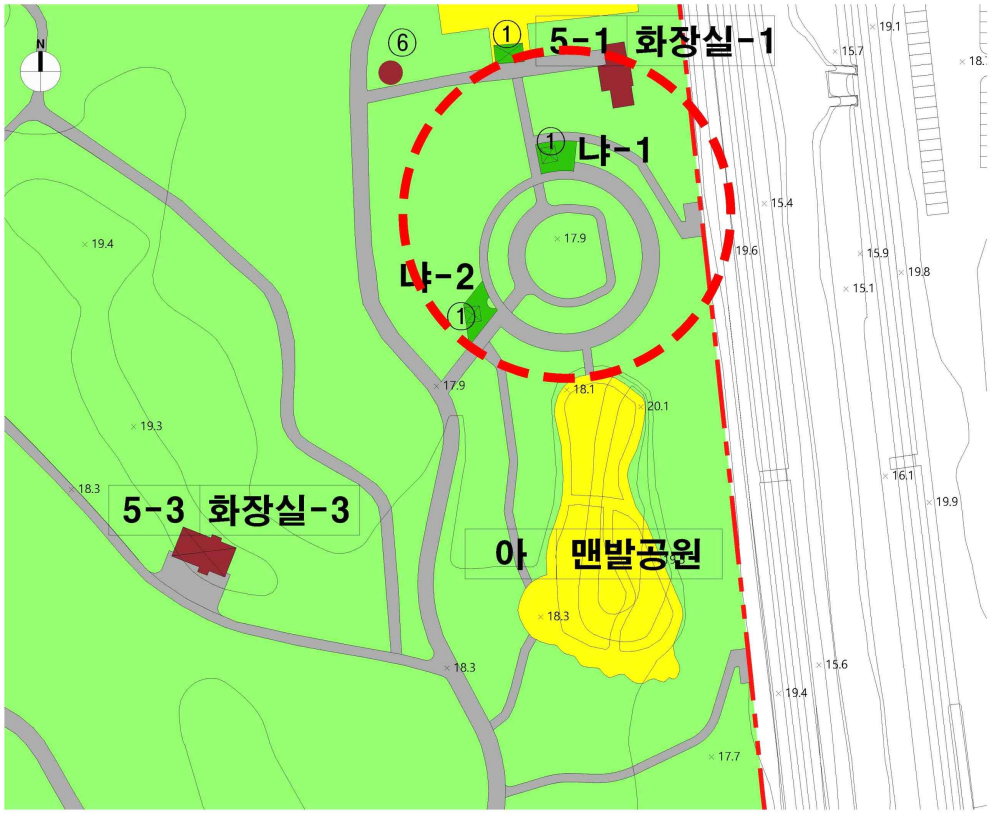

■범 례

구 분	기 호	시 설 명	시설면적(㎡)	규모/수량	비 고
		총 계	3,312.48		
기반시설		소 계	1,322.00		
		도 로	1,322.00		
기반시설		소 계	118.48		
	나-1	휴게쉼터-1	60.74		
	나-2	휴게쉼터-2	57.74		
유등시설		소 계	1,712.00		
	아	맨발공원	1,712.00		
별의시설		소 계	160.00		
	5-1	화장실-1	160.00	1개동	
녹지		소 계	8,141.92		
		녹 지	8,141.92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02호

위례지구 근린공원 15호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68호(2023.06.30.)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최초)된 위례지구 근린공원 15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최초)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의 면적, 시설 등을 조성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산 71-10 일원

3. 면　　적 : 28,565.00㎡

4. 위례지구 근린공원 15호 조성계획(최초)결정 조서 및 도면 : 별첨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 도면은 첨부 생략)은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6.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02-2133-2074)
   송파구청 공원녹지과(☏ 02-2147-3391)

위례지구 근린공원15호 조성계획결정조서

1. 총괄표 (위치 : 송파구 거여동 산71-10 일원)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28,565.00	7,434.99				114	
기반시설	소 계	4,974.74	4,974.74					
	도 로	3,344.30	3,344.30					
	광 장	1,630.44	1,630.44					
조 경 시 설		1,234.46	1,234.46				5	
휴 양 시 설		1,126.60	1,126.60				105	
유 희 시 설		-	-					
운 동 시 설		99.19	99.19				4	
교 양 시 설		-	-					
편 익 시 설		-	-					
관 리 시 설		-	-					
녹지 및 기타		21,130.01						
시 설 율 (법정 40%)		7,434.99 / 28,565.00 x 100 = 26.03%						
건 폐 율 (법정 20%)								

2.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 조	규 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28,565.00	7,434.99					114	
기반시설	소계			4,974.74	4,974.74						
	도로		공원내	3,344.30	3,344.30						
	진입광장	가	공원내	1,630.44	1,630.44						
		가-1	〃	(55.40)	(55.40)						
		가-2	〃	(17.78)	(17.78)						
		가-3	〃	(84.78)	(84.78)						
		가-4	〃	(131.93)	(131.93)						
		가-5	〃	(282.95)	(282.95)						
		가-6	〃	(1,057.60)	(1,057.60)						
조경시설	소계			1,234.46	1,234.46					5	
	잔디마당	나	공원내	530.93	530.93						
	벽천	다	공원내	313.30	313.30						
	바닥분수	라	공원내	153.94	153.94						
	계단	마	공원내	119.39	119.39						
		마-1	〃	(65.92)	(65.92)						
		마-2	〃	(45.30)	(45.30)						
		마-3	〃	(8.17)	(8.17)						
	화계	바	공원내	95.00	95.00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 조	규 모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플랜터	사	공원내	21.90	21.90						
	티하우스	①	공원내							1	
	조형파고라	②	공원내							3	
	원형파고라	③	공원내							1	
휴양시설	소계			1,126.60	1,126.60					105	
	쉼터	아	공원내	1,082.86	1,082.86						
		아-1	〃	(33.51)	(33.51)						
		아-2	〃	(244.30)	(244.30)						
		아-3	〃	(25.90)	(25.90)						
		아-4	〃	(158.87)	(158.87)						
		아-5	〃	(15.36)	(15.36)						
		아-6	〃	(21.87)	(21.87)						
		아-7	〃	(62.28)	(62.28)						
		아-8	〃	(44.00)	(44.00)						
		아-9	〃	(32.91)	(32.91)						
		아-10	〃	(42.03))	(42.03))						
		아-11	〃	(44.00)	(44.00)						
		아-12	〃	(54.53)	(54.53)						
		아-13	〃	(169.78)	(169.78)						

구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 조	규 모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아-14	〃	(51.94)	(51.94)						
		아-15	〃	(19.79)	(19.79)						
		아-16	〃	(61.79)	(61.79)						
	앉음벽	자	공원내	43.74	43.74						
	등의자	④	공원내							64	
	평의자	⑤	공원내							10	
	조약돌벤치	⑥	공원내							10	
	야외테이블의자	⑦	공원내							21	
운동시설	소계			99.19	99.19					4	
	체력단련장	차	공원내	99.19	99.19						
	체력단련시설	⑧	공원내							4	
녹지 및 기타	소계			21,130.01							
	녹지		공원내	21,130.01							

3. 도로조서

- 공원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합 계				1,348.3	3,344.30				
신설	소로	소 계			755.6	2,162.60				
		3류	1	3.0	408.8	1,206.50	진입로	부지경계	산책로17	
		〃	2	2.5	165.7	470.50	연결로	소로1	쉼터 아-14	
		〃	3	2.5	101.5	253.70	연결로	쉼터 아-14	진입광장 가-5	
		〃	4	2.5	54.8	155.60	연결로	소로 3	진입광장 가-5	
		〃	5	3.0	6.2	19.00	진입로	소로 4	부지경계	
		〃	6	3.0	18.6	57.30	진입로	진입광장 가-6	부지경계	
	산책로	소 계			592.7	1,181.70				
		3류	1	2.0	23.0	46.00	산책로	쉼터 아-1	진입광장 가-1	
		〃	2	1.5	106.7	156.00	산책로	진입광장 가-1	진입광장 가-1	
		〃	3	2.5	16.1	40.50	진입로	부지경계	산책로 2	
		〃	4	2.0	4.9	11.90	산책로	쉼터 아-2	소로 1	
		〃	5	2.0	12.4	38.80	진입로	부지경계	소로 1	
		〃	6	1.5	21.2	33.30	산책로	소로 1	쉼터 아-3	
		〃	7	2.0	8.4	14.30	산책로	소로 1	쉼터 아-3	
		〃	8	2.0	16.9	45.10	진입로	부지경계	소로 1	
		〃	9	1.5	17.2	25.80	산책로	쉼터 아-5	산책로 10	
		〃	10	2.0	73.7	147.30	산책로	쉼터 아-6	쉼터 아-4	
		〃	11	2.0	53.8	123.90	산책로	쉼터 아-4	소로 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	12	2.0	21.1	53.20	산책로	소로 1	산책로 10	
		〃	13	2.0	5.5	11.10	진입로	산책로 15	계단실	
		〃	14	2.0	14.6	29.40	진입로	부지경계	소로 2	
		〃	15	2.0	16.0	32.00	산책로	소로 2	소로 1	
		〃	16	2.0	7.3	14.70	산책로	소로 1	녹지	
신설	산책로	3류	17	2.0	95.7	187.10	산책로	녹지	쉼터 아-13	
		〃	18	2.0	15.3	30.70	산책로	플랜터	산책로 17	
		〃	19	2.0	15.9	31.80	산책로	계단 마-3	산책로 17	
		〃	20	2.0	14.2	28.70	진입로	산책로 17	부지경계	
		〃	21	3.0	9.5	28.50	산책로	쉼터 아-14	쉼터 아-13	
		〃	22	1.5	13.7	22.50	산책로	진입광장 가-6	소로 6	
		〃	22	3.0	9.6	29.10	진입로	부지경계	계단실	

조 성 계 획 도

근 린 공 원 1 5 호

S=1/700(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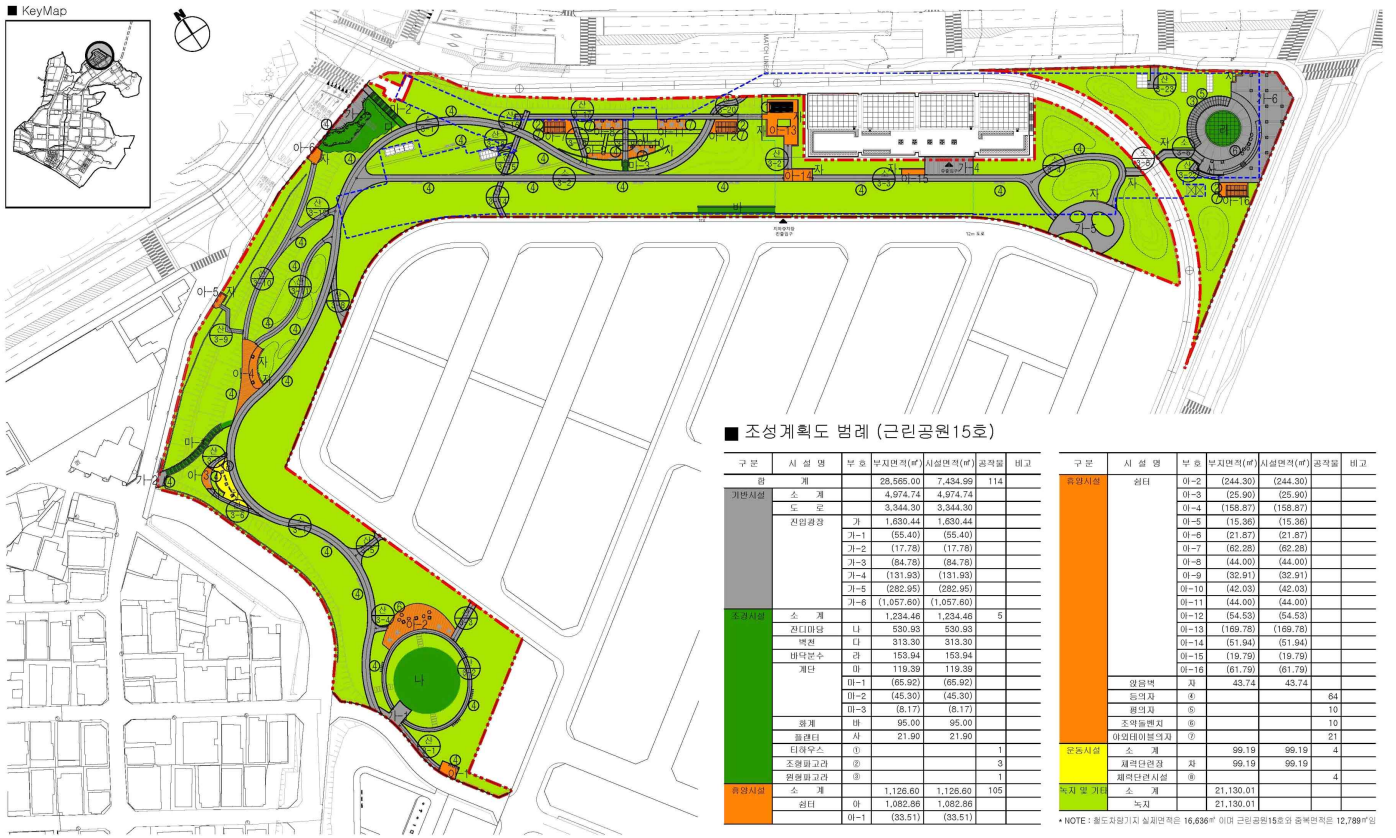

■ 조성계획도 범례 (근린공원15호)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	비 고
합 계			28,565.00	7,434.99	114	
기반시설	소 계		4,974.74	4,974.74		
	도 로		3,344.30	3,344.30		
	진입광장	가	1,630.44	1,630.44		
		가-1	(55.40)	(55.40)		
		가-2	(17.78)	(17.78)		
		가-3	(84.78)	(84.78)		
		가-4	(131.93)	(131.93)		
		가-5	(282.95)	(282.95)		
		가-6	(1,057.60)	(1,057.60)		
조경시설	소 계		1,234.46	1,234.46	5	
	잔디마당	나	530.93	530.93		
	백 천	다	313.30	313.30		
	바닥분수	라	153.94	153.94		
	계 단	마	119.39	119.39		
		마-1	(65.92)	(65.92)		
		마-2	(45.30)	(45.30)		
		마-3	(8.17)	(8.17)		
	옹 계	바	95.00	95.00		
	플랜터	사	21.90	21.90		
	티하우스	①			1	
	조명등고라	②			3	
	원형등고라	③			1	
휴양시설	소 계		1,126.60	1,126.60	105	
	쉼 터	아	1,082.86	1,082.86		
		아-1	(33.51)	(33.51)		

구 분	시 설 명	부 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공작물	비 고
휴양시설	쉼 터	아-2	(244.30)	(244.30)		
		아-3	(25.90)	(25.90)		
		아-4	(158.87)	(158.87)		
		아-5	(15.36)	(15.36)		
		아-6	(21.87)	(21.87)		
		아-7	(62.28)	(62.28)		
		아-8	(44.00)	(44.00)		
		아-9	(32.91)	(32.91)		
		아-10	(42.03)	(42.03)		
		아-11	(44.00)	(44.00)		
		아-12	(54.53)	(54.53)		
		아-13	(169.78)	(169.78)		
		아-14	(51.94)	(51.94)		
		아-15	(19.79)	(19.79)		
		아-16	(61.79)	(61.79)		
	앉음벽	자	43.74	43.74		
	등의자	④			64	
	원의자	⑤			10	
	조약돌벤치	⑥			10	
	아외테이블의자	⑦			21	
운동시설	소 계		99.19	99.19	4	
	체력단련장	차	99.19	99.19		
	체력단련시설	⑧			4	
녹지 및 기타	소 계		21,130.01			
	녹지		21,130.01			

* NOTE : 철도차량기지 실제면적은 16,636㎡ 이며 근린공원15호와 중복면적은 12,789㎡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03호

도시관리계획(본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동작구고시 제2017-24(2017.4.13.)호로 결정되고, 동작구고시 제2018-12(2018.2.22.)호, 동작구고시 제2018-89(2018.11.8.)호, 동작구고시 제2021-58(2021.4.1.)호로 결정(변경)된 「본동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444호(2025.3.6.)로 열람 공고하고, 2025년 제13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2025.7.23.)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1641호(2025.9.18.)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I. 결정 취지

○ 노들역세권(본동 441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위하여 노들역세권(본동 441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본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	29,726	-	29,726	동작구 고시 제2017-24호 (2017.4.13.)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9,726.0	-	29,726.0	100.0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4,480.1	4,480.1	15.1	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297.4	297.4	1.0	
	준주거지역	28,219.0	감) 4,119.3	24,099.7	81.1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507.0	감) 658.2	848.8	2.8	

□ 변경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대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480.1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변경 없음
		제3종일반주거지역	297.4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848.8	획지 내 일반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미관지구 일괄 폐지 반영(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9호))

구분	도면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 결정일	비 고
폐지	-	미관 지구	중심지 미관 지구	서울역광장 ~구영등포구청 (노량진동191-3 ~본동368-3)	217,734	8,725 (156)	12~20 (양측12)	서고시 제164호 (1984.4.22.)	한강로 지구 (노량진로변)

※ ( )는 대상지 내
※ 미관지구 일괄 폐지 반영(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9호)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변경

■ 도로 결정 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4	5,115	4,162	1	4,730	-	-	-	-	3	385	4,162
광로	-	-	-	-	-	-	-	-	-	-	-	-
대로	1	4,730	-	1	4,730	-	-	-	-	-	-	-
중로	1	155	2,035	-	-	-	-	-	-	1	155	2,035
소로	2	230	2,127	-	-	-	-	-	-	2	230	2,127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대로	1	6	35~45	주간선도로	4,730	한강대교남단	서울대교 남단	일반도로	-	건고 349 (79.9.24.)	-
변경	대로	1	6	35~45	주간선도로	4,730	한강대교 남단	서울대교 남단	일반도로	-	건고 349 (79.9.24.)	선형 변경
기정	중로	3	1	12	집산	155	본동 383-1	본동 443-4	일반도로	-	동작구 고시 제2017-24호 (2017.4.13)	-
기정	소로	3	1	6~12	국지	147	본동 443-2	노량진동 205-293	일반도로	-	동작구 고시 제2017-24호 (2017.4.13)	-
신설	소로	3	2	1~4	국지	83	소로 3-1	노량진동 205-258	일반도로	-	-	-

※ 소로 3-2는 추후 노량진동 일대 도시기반시설 정비에 따라 적정 폭원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1-6	대로 1-6	• 선형 변경	• 보행환경 개선 및 향후 노량진로 도로 개선을 위한 선형 변경
-	소로 3-2	• 신설 (B=1~4m, L=83m)	• 공공기여 되는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신설

나. 공간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공공공지: 변경

■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공공공지	본동 379-9번지 일대	580	감)580	-	동작구 고시 제2017-24호 (2017.4.13)	
신설	②	공공공지	노량진동 201 일대	-	증)870	870	-	

□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폐지	①	• 공공공지 폐지	• 도시계획도로(대로 1-6)로의 변경에 따른 공공공지 폐지
신설	②	• 공공공지 신설 : 870㎡	• 흑석 혁신거점 조성사업 변경 계획(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6194 (2024.11.13.))에 따라 흑석 혁신거점 조성사업 대체부지로 변경

다. 공공 · 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공공청사: 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공공청사	노량진동 201 일대	415	감)415	-	동작구 고시 제2017-24호 (2017.4.13)	
폐지	②	공공청사	노량진동 205-329 일대	455	감)455	-	동작구 고시 제2018-12호 (2018.2.22)	

※ 공공청사는 부지 및 건축물 일괄 기부채납(건축물 규모는 향후 활용계획과 연계하여 확정), 공공청사 부지는 추후 건축계획에 따라 합필 또는 공동개발 가능

□ 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폐지	①	• 공공청사 폐지	• 흑석 혁신거점 조성사업 변경 계획(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6194 (2024.11.13.))에 따라 공공청사 폐지 및 공공공지로 변경
폐지	②	• 공공청사 폐지	• 흑석 혁신거점 조성사업 변경 계획(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6194 (2024.11.13.))에 따라 공공청사 폐지 및 공공공지로 변경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구 분	획지번호	획지계획				비고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29,726.0	감) 4,756.3	24,969.7	
획지계획	소계	-	24,119.7	증) 850.0	24,969.7	
	획지1	본동 441번지 일대	24,119.7	감) 20.0	24,099.7	복합용지
	획지2	노량진동 201번지 일대	-	증) 870.0	870.0	공공공지
기반시설	소계	-	5,606.3	감) 5,606.3	-	
	획지2	본동 383-1번지 일대	4,156.3	감) 4,156.3	-	도로
	획지3-1	노량진동 201번지 일대	415.0	감) 415.0	-	공공청사
	획지3-2	노량진동 205-329번지 일대	455.0	감) 455.0	-	공공청사
	획지4	본동 379-9번지 일대	580.0	감) 580.0	-	공공공지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획지계획 변경	• 획지계획 내 기반시설 계획 제외 • 도로 선형변경에 따른 획지면적의 변경

2.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가.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2호의 공동주택(주상복합건물) - 제3호의 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의 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제외)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제7호의 판매시설 -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제13호의 운동시설 -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나. 건폐율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계획내용	비고
60% 이하	

다. 용적률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기준용적률	209.6% 이하	• 기준용적률 209.6% = {(19,482.7㎡×200%)+(3,979㎡×250%)+(658㎡×250%)}/24,119.7㎡
	(패키지) 허용용적률	400% 이하	• (패키지)허용용적률 장기전세주택 공급+지속가능형 건축구조+커뮤니티 지원시설+에너지효율 건축물+ 친환경건축물+선택항목(신재생에너지, 공공기여 방안, 역사문화 보전) 중 1개
	상한용적률	400% 이하	• 상한용적률: 2차 역세권(역중심 반경 250~500m)을 감안하여 용적률 400% 이내(도시·건축공동위원회, '09.12)
변경	기준(허용) 용적률	213.6% 이하	• 기준(허용)용적률 213.6% = {(19,497.9㎡×200%)+(3,943.6㎡×250%) +(658.2㎡×400%)}/24,099.7㎡
	상한용적률	500% 이하	• 상한용적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호)」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2025.1.24.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호)」에 따라 하나의 사업대상지 안에서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혼재 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적률 적용(획지 내 일반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준주거지역 법적용적률 적용)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2025.1.24.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호)」 참조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용적률에 관한 계획 변경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호)」 변경에 따른 용적률계획 변경

라. 높이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최고높이	110m 이하	
변경	최고높이	130m 이하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최고높이 변경	•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최고높이 계획의 변경

마. 건축한계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 한계선	• 대상지 북측(노량진로변) 5m 계획 • 대상지 동측, 서측 및 남측 4m 계획	

바. 장기전세주택 건설비율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계획내용	비고
기정	• 전용면적 60㎡ 이하: 60% 내외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30% 내외 • 전용면적 85㎡ 초과: 10% 내외 ※ 일반분양주택이 전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로서 85㎡ 초과를 설계시 설비를 위한 계획 등으로 불합리한 경우 85㎡ 초과 주택을 건설하지 않을 수 있음	• 전용면적 60㎡ 이하: 71%(182세대)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29%(76세대)	
변경	• 사업계획에 따라 건설하는 공공주택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대상지의 공동주택 규모 계획, 임대주택 공급정책방향 등을 감안하여 관련 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전용면적 60㎡ 이하: 80%(231세대)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20%(57세대)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장기전세주택 건설비율의 변경	• 건축계획의 변경에 따른 장기전세주택 건설비율 변경

사. 비주거시설의 건축 비율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계획내용	비고
기정	•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여 지상 1층과 2층은 비주거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 경우 지상층 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 미만으로 지상층에 건축하고 주택외의 시설은 지상층에 다음기준에 따라 건축을 권장한다. (1) 지상층 연면적의 10% 이상의 비주거시설 설치 (2)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입지여건을 고려 지하층에 설치 가능. 단, 이 경우에도 지상층 비주거시설이 입지하는 건물의 지상 1층과 2층에 비주거 설치를 권장한다	• 지상층 연면적: 96,003.56㎡ • 비주거시설: 20,068.36㎡(18.5%) 지상층비주거시설: 8,891.32㎡(9.26%) - 판매시설: 2,236.97㎡(2.3%) - 근린생활시설: 9,227.50㎡(9.6%) - 업무시설: 4,668.49㎡(4.8%) - 교육연구시설: 1,169.12㎡(1.2%) - 운동시설: 2,587.49㎡(2.7%)	

구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계획내용	비고
변경	• 준주거지역 내 비주거 시설 계획 시에는 도로변 등에 설치하여 역세권 일대 가로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지하층비주거시설: 5,188.83㎡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관련 인허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전실, 주차장 등 제외 면적으로, 보행 레벨을 고려하여 지하 2층 ~ 지하1층 비주거 시설을 계획함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비주거시설 건축 비율의 변경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호)」 변경에 따른 비주거시설 건축 비율의 변경

아. 용적률 적용에 관한 사항: 변경

○ 기정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

구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계획내용	비고
필수 항목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 경과규정 적용기준('11.1.17)에 따라 지속가능형 건축구조로 변경하여 적용	건축 심의에서 인정받음
	커뮤니티 지원시설	•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주택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 :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3%(최소 450㎡) 이상	• 5.16%(4,432.86㎡) -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85,788.58㎡)	추후 적용
	에너지효율 건축물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 합계가 86점이상 또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에너지효율 2등급이상 인증	• 에너지효율2등급이상 인증	분양승인전 인증

구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계획내용	비고
	친환경 건축물	• 「건축법」 제65조 및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용 - 환경영향평가 비대상 건축·주택사업도 우수등급이상 친환경 예비인증	• 친환경우수등급(75점이상) 예비인증	분양 승인전 인증
선택 항목	신재생 에너지 사용	•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기준」 제5조에 따라 표준건축공사비의 1%이상 투자 또는 건물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을 신재생에너지에 의해 생산	• 공동주택은 표준건축공사비의 1% 이상	1개 항목 선택 적용 공사시 감리자 설치 확인
	공공기여 방안	• 공공기여방안을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설계에 반영한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역사문화 보전계획	• 역사문화 보전등을 위한 지구지정 여부	-	
(패키지)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완화용적률	• 400%	적용

■ 부담률 산정

구분	공공시설 부담률	비고
공공시설	5,606.3㎡(18.9%)	※순부담
장기전세주택 무상양여지분	1,024.3㎡(3.4%)	
합계	5,606.3㎡ + 1,024.3㎡ = 6,630.6㎡(22.3%)	

※ 순부담이란 사유토지(국·공유지를 매입한 토지를 포함하되 무상 양여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것을 의미한다.

■ 상한용적률 산정

구분	산출결과	산출내역	비고
공공시설 제공면적	5,606.3㎡	• 도로(4,156.3㎡), 공공청사(870㎡), 공공공지(580㎡)	
가중치	1.0002	• 가중치 = 공공시설 제공부지 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1.0002 = 433.9% / 433.8%	
α	23.2%	• α = 공공시설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 5,606.3㎡ / 24,119.7㎡ = 23.2%	
상한용적률	400% 이내	• 상한용적률 = 400%(1+1.3x1.0002x23.2%) = 520.7% ⇒ 400% 이내	
상한용적률		400% 이하	

■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수립기준에 관한 사항

구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제1종지구단위계획	계획	비고
장기전세주택 건설비율	• 현장여건 및 제도상 허용용적률까지 적용하지 못할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5/10을 초과하는 범위 안에서 설계상 적용한 증가용적률의 50/100	• 건축계획용적률 : 398.03% • 완화된 용적률 : 188.43% • Shift공급용적률 : 94.52%	
공공시설 부담률	• 용도지역 1단계 상향시 15% 이상 • 용도지역 3단계 상향시 25% 이상	• 공공시설(순부담) : 18.9%(5,606.3㎡) • 장기전세주택 지분무상양여 : 3.4%(1,024.3㎡) ⇒ 총 6,630.6㎡(22.3%)	• 1단계 상향(636.10㎡) • 3단계 상향(5,994.50㎡) ⇒ 공공시설 부담기준 22.3%(6,630.6㎡)
커뮤니티 지원시설	• 휘트니스센터, 어린이집, 노인시설 등 입주자 및 지역주민들까지 포함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시설설치 • 300세대 이상 :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의 3%(최소 450㎡) 이상	좌동	

※ 장기전세주택 지분 및 커뮤니티지원시설의 세부시설 면적은 건축계획에 의해 산출된 수치임

○ 변경

■ 상한용적률 확보를 위한 서울형 주거환경정책

구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계획내용	비고
필수 항목	지속 가능형 공동주택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인 공동주택 • 「주택법」 제38조에 의한 장수명 주택 • 적합여부는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을 참조하여 건축위원회 에서 결정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적합여부는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을 참조하여 건축위원회에서 결정	
	친환경 건축물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서울특별시 고시)」에 의한 해당 적용대상의 구분을 적용하여 환경성능부문, 에너지성능부문, 에너지관리부문, 신·재생에너지부문 중 2가지 이상을 적용대상의 구분에서 상향단계를 적용 • 친환경 건축물의 적용은 사업계획승인 시 계획내용을 제출·확인하고 착공 전까지 예비인증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 시 인증받아야 됨	•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적용 – 기준(우량) 보다 상향 적용 • 신재생에너지 11% 적용 – 기준(10.5%) 보다 상향 적용	
	역사문화 보전	•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 및 등록문화재 또는 역사·생활 문화유산이 포함된 경우 보전계획을 준수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에 반영	• 해당사항 없음	
권장 항목	커뮤니티 지원시설 설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이외 전체 공동주택 세대수에 따라 기준 면적 이상으로 설치 권장	• 2.54%(2,993.72㎡) – 지상층 공동주택 연면적: 117,404.78㎡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관련 인허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용도는 주변 입지여건, 거주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입안권자와 서울시가 협의 후 결정하여 사업자가 설치토록 하고, 추후 커뮤니티 지원시설 용도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요에 맞춰 용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용도변경 시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이행하여야 한다. 용도 계획 시 운영재원 마련을 위해 최소한의 수익시설 설치를 할 수 있다.

※ 커뮤니티 지원시설은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비영리재단(사회적 기업, 협동단체 등) 및 전문기업, 민간기업, 공공 등 입안권자 또는 서울시가 인정하는 운영자와 사용대차계약을 통해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 상한용적률 확보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

구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	계획내용	비고
장기전세 주택 건설비율	• 상한용적률을 적용하여 완화된 용적률의 1/2 이상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 ※ 도시계획적으로 필요하거나 입안권자 또는 관련 위원회, 사전검토 가이드라인 등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공시설등은 별도로 확보하게 할 수 있다.	• 상한용적률: 500% - 완화된 용적률: 286.4% - 완화된 용적률의 1/2: 143.2% - 장기전세주택 계획 용적률: 101.79%	공공시설등 별도 확보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관련 인허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구분	용적률		공공기여율	계획내용	기부채납계획				
					시설명	규모(㎡)	부담시기	관리청	비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기준(허용) 용적률	213.6%	•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완화된 용적률의 1/2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부지면적 기준으로 환산 적용 • 부지면적의 28.6% 이상 (6,901.09㎡)	• 공공기여율: 29.05%(7,001.1㎡) - 장기전세주택: 20.80%(5,012.7㎡) - 공공시설등: 8.25%(1,988.4㎡)	장기전세주택	40,080.2 (연면적)	사용승인 전	SH	조성 후 기부채납
	상한 용적률	500.0%			도로	4,756.3 (설치 면적)	사용승인 전	서울시 및 동작구	조성 후 기부채납
					공공공지	870.0 (설치 면적)	사용승인 전	서울시	토지 기부채납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토지는 기부채납, 건축물은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 고시)로 매입함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2025.1.24.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호)」 참조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관련 인허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용적률 적용에 관한 사항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호)」 변경에 따른 용적률 적용에 관한 사항 변경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가. 교통처리계획: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보행동선		• 단지내 보행동선은 각 주동간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계획 • 건축한계선을 통한 보행공간 확보 • 보도변 식재를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단지내 주민운동공간, 어린이놀이터 등 오픈스페이스와의 연계	
	차량	차량출입 불허구간	• 노량진로에서 주진입로 진입 후 35m 구간에 대하여 차량출입을 불허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함	
		주차	• 거주민 및 상가를 위하여 주차장 분리하여 설치(978세대)	
변경	보행동선		• 단지내 보행동선은 각 주동간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계획 • 건축한계선을 통한 보행공간 확보 • 보도변 식재를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단지내 주민운동공간, 어린이놀이터 등 오픈스페이스와의 연계	
	차량	차량출입 불허구간	• 노량진로에서 주진입로 진입 후 35m 구간에 대하여 차량출입을 불허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함	
		주차	• 거주민 및 상가를 위하여 주차장 분리하여 설치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주차에 대한 사항	• 주차 설치 기준(세대수) 조서 내 문구 삭제

나. 공공보행통로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공공보행통로	• 주민들의 편리한 보행을 위해 보행자 부출입구에서 노량진로(35m) 및 공공청사로의 공공보행통로를 회랑형으로 지정	
변경	공공보행통로	• 주민들의 편리한 보행을 위해 노량진로(35m)에서 이면도로로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지정	선형 변경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사항	• 이면도로로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공공보행통로 선형 변경

다.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공개공지	• 노량진로(35m)와 주진입로(12m)의 교차부이며, 노들역과 가장 가까운 곳에 보행자를 위한 공개공지 설치	
변경	쌈지형 공지	• 노량진로(35m)와 주진입로(12m)의 교차부이며, 노들역과 가장 가까운 곳에 보행자를 위한 쌈지형공지 설치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공개공지 명칭 변경	• 주 용도가 공공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로서 공개공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 계획을 유지하되 쌈지형공지로 변경

라.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건축한계선	• 보행환경을 위해 건축한계선을 노량진로변(북측)으로 5m, 동측 도로변으로 4m, 남측과 서측 도로변으로 4m 지정 •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불가	
	지붕형태	• 주동과 시각적 연속성을 이루는 형태의 상층부 계획	
	입면계획	• 색채, 마감재 등을 이용한 저층/중층/고층부 차별화 • 자연친화적 출입구 확립	
변경	건축한계선	• 보행환경을 위해 건축한계선을 노량진로변(북측)으로 5m, 동측 도로변으로 4m, 남측과 서측 도로변으로 4m 지정 • 남측 건축한계선 내 통학생 안전을 위한 최소폭 3m 이상의 전면보도 조성	선형 변경
	지붕형태	• 주동과 시각적 연속성을 이루는 형태의 상층부 계획	
	입면계획	• 색채, 마감재 등을 이용한 저층/중층/고층부 차별화 • 자연친화적 출입구 확립	

□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건축한계선에 대한 사항	• 노량진로변(북측) 건축한계선에 대한 선형 변경 • 남측 건축한계선 내 3m 이상의 전면보도를 조성하도록 변경

Ⅲ.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동작구청 도시계획과(☎02-820-1947)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 및 동작구청 홈페이지(https://www.dongjak.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금회 결정(변경) 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50조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됨을 고지합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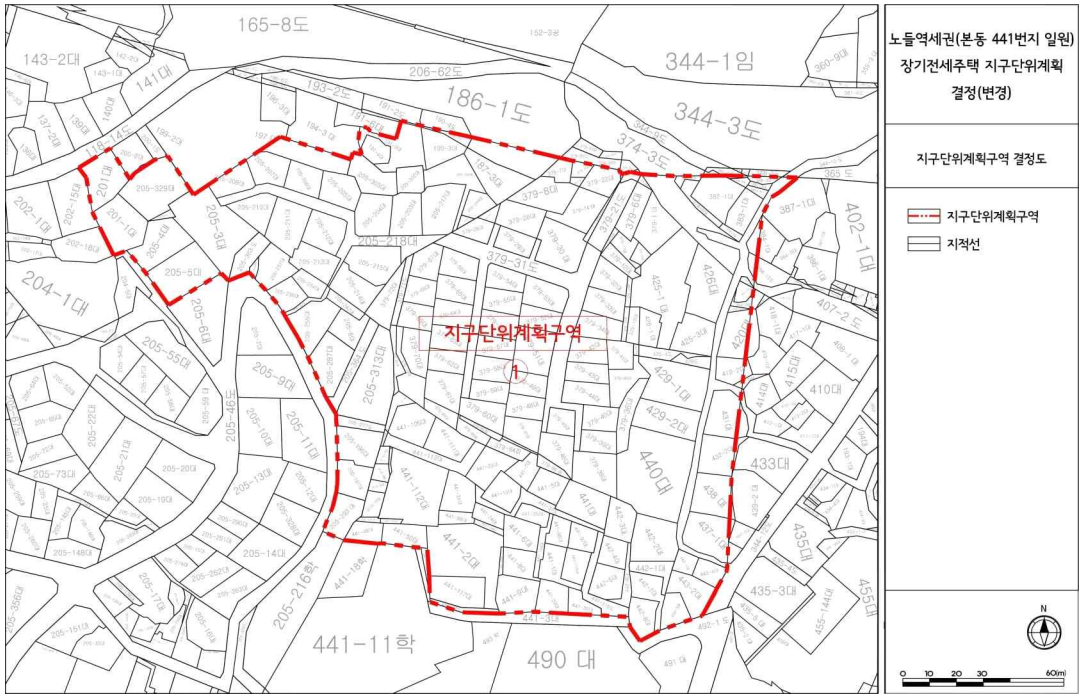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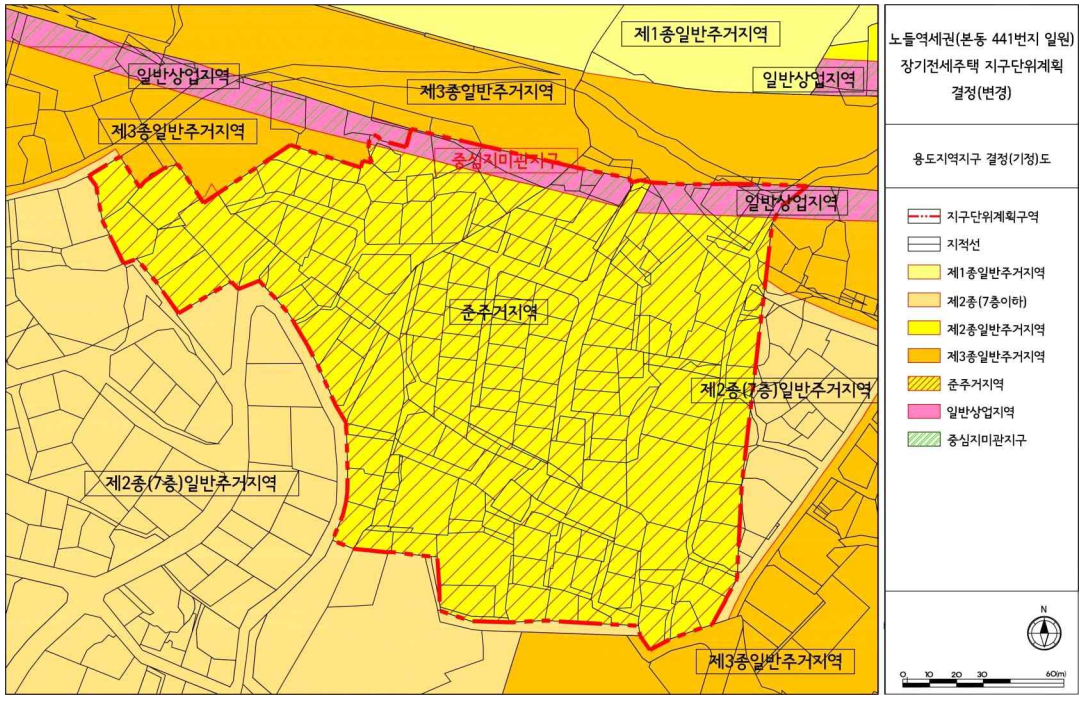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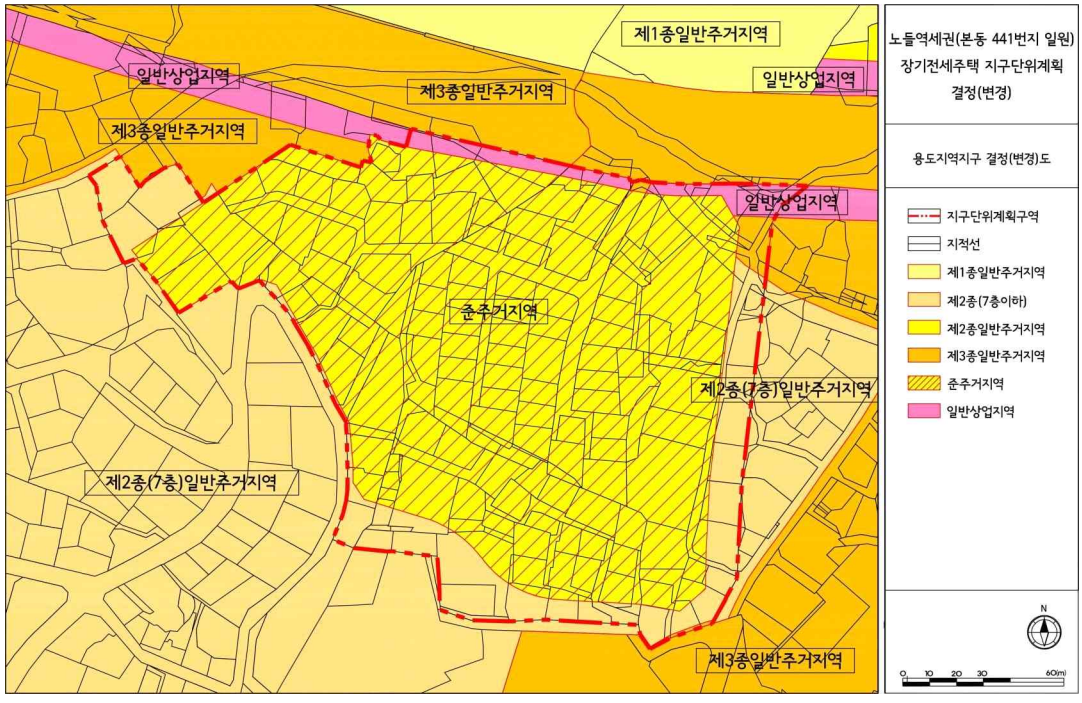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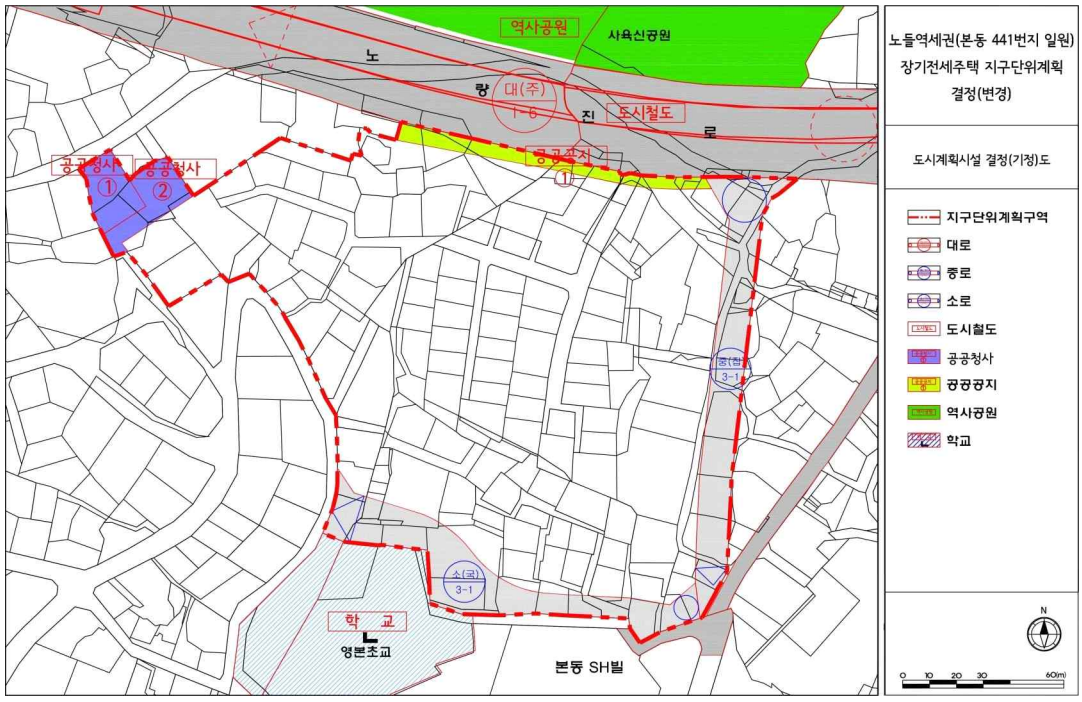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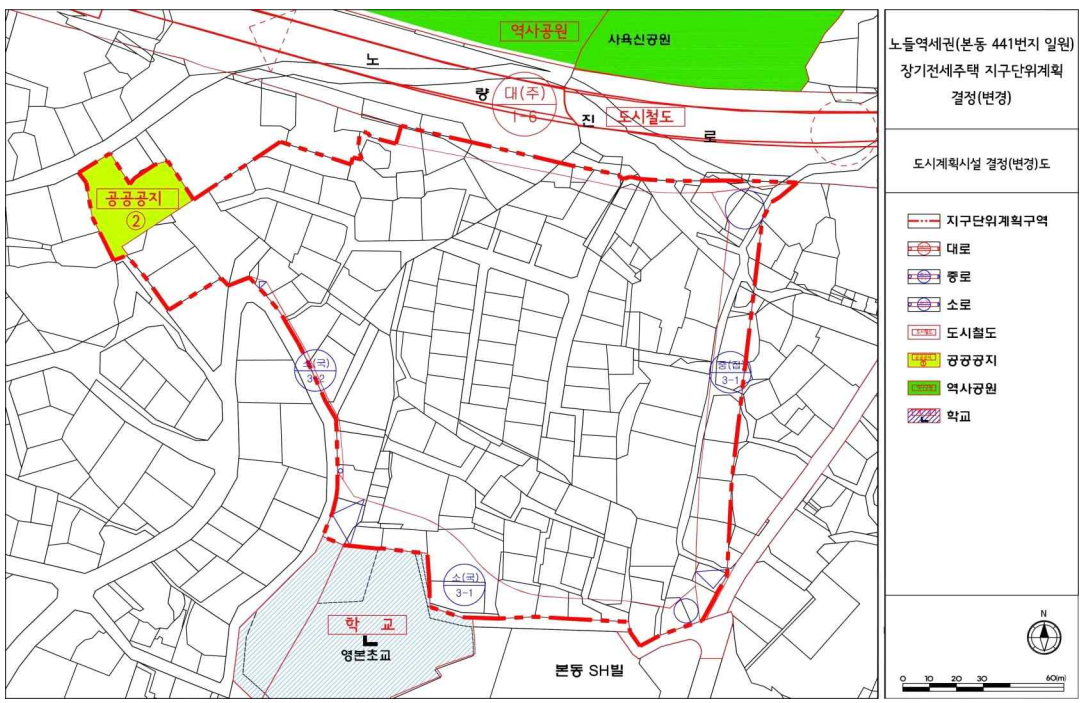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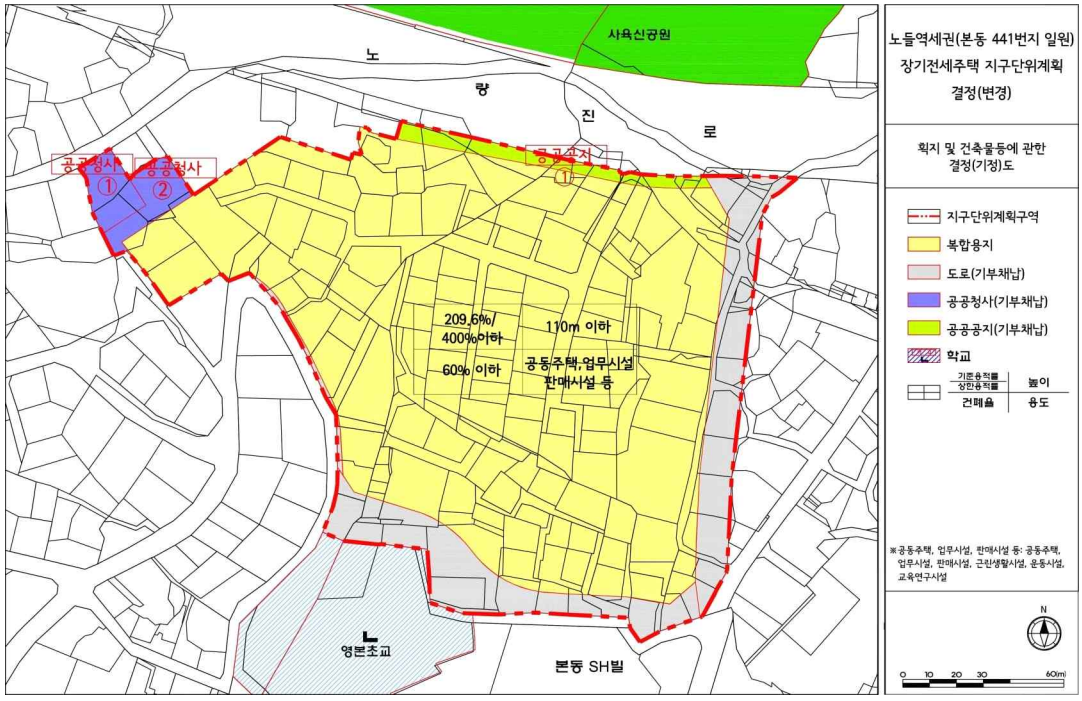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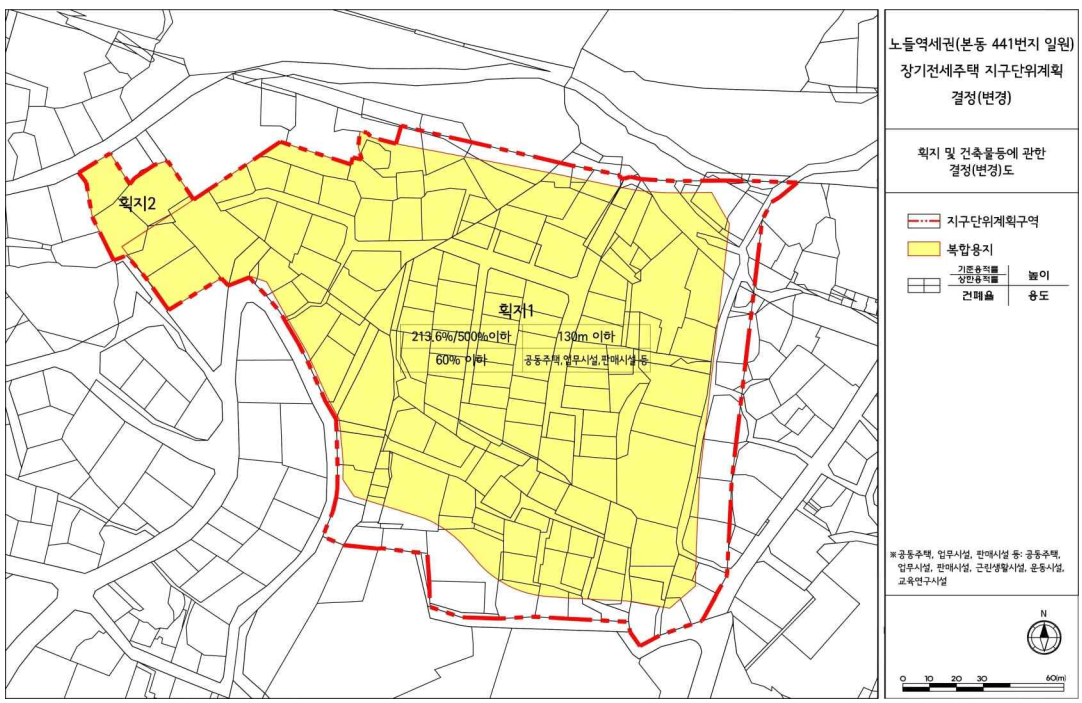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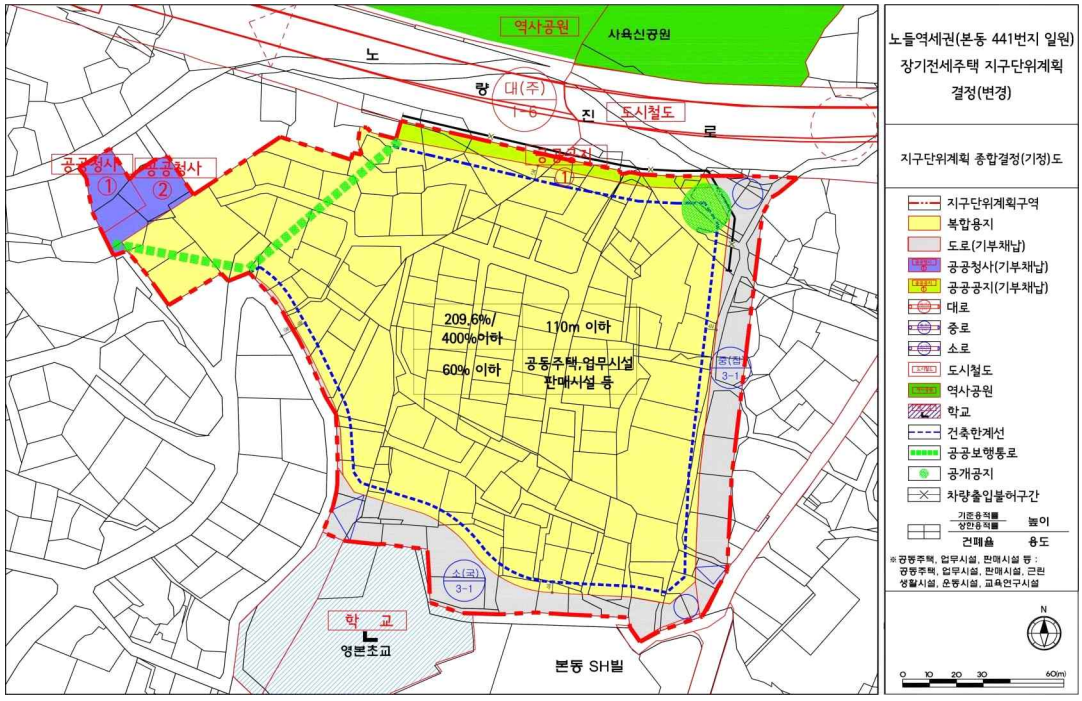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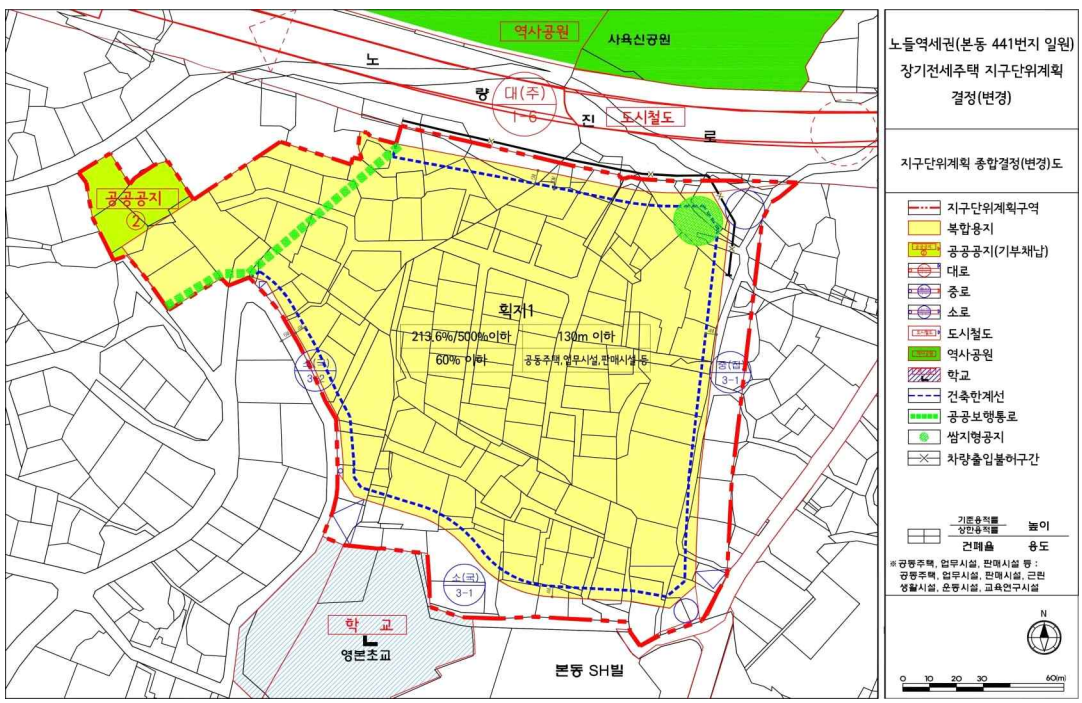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04호

불광동 170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65호(2023.12.21.)’로 고시한 ‘불광동 170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불광동 170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위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불량 건축물	비 고
기준	불광동 170번지 일대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것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이상일 것	-
현황		53,915.8㎡	전체 : 211동 노후·불량 : 186동(88.2%)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비 실행력 제고를 위한 도시·건축 정비 가이드라인 구상을 통해 지역 내 필요한 생활SOC 확충 및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

2. 불광동 170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결정
 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정
  ○ 관리지역 결정 조서

명칭	위치	면적(㎡)			비 고
		당초	증감	변경 후	
은평구 불광동 170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은평구 불광동 170번지 일대	51,523	증) 2,392.8	53,915.8	-

○ 관리지역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명칭	결정 내용	결정 사유
-	은평구 불광동 170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위치 : 은평구 불광동 170번지 일대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면적 : 53,915.8㎡	노후 · 불량 주택이 혼재되어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계획적 ·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지역 지정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53,915.8	100.0	-
시행구역	공동주택 용지	소 계		43,196.6	80.1	-
		A1	사업추진예정구역1 (가로주택정비사업)	19,670.7	36.5	-
		A2	사업추진예정구역2 (가로주택정비사업)	8,860.3	16.4	-
		A3	사업추진예정구역3 (가로주택정비사업)	14,665.5	27.2	-
	정비기반 시설	소계		7,146.1	13.3	-
		도로		6,100.2	11.3	-
		공공공지		1,045.9	2.0	-
시행구역 외	소계			3,573.1	6.6	-
	정비기반 시설	도로		3,573.1	6.6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다. 정비기반시설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도시계획도로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위해 기결정 도로에 대한 사항만을 고시하고자 함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기존 미지정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로의 설치계획(안)은 본 계획수립 시 관련부서 협의 및 심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자 함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1)	8	국지 도로	304	불광동 204	불광동 170-71	일반 도로	-	-
폐지	-	-	-	4	국지 도로	-	-	-	-	-	-
폐지	-	-	-	6	국지 도로	-	-	-	-	-	-
폐지	소로	3	-	6	국지 도로	-	-	-	-	-	-
기정	중로	1	1	12~23 (16.5~21)	집산 도로	1,820 (260)	불광동	불광동	일반 도로	-	은평구 고시 제2023-108호
변경	중로	1	1	12~23 (16.5~21)	집산 도로	1,820 (260)	불광동	불광동	일반 도로	-	일부 12m→15m
기정	소로	1	-	10	국지 도로	-	-	-	-	-	-
변경	중로	2	(1)	10~15	국지 도로	480	불광동 423-40	불광동 177-21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	6	국지 도로	-	-	-	-	-	-
변경	소로	1	(1)	6~10	국지 도로	120	불광동 177-3	불광동 171-60	일반 도로	-	-
변경	중로	3	(1)	14	국지 도로	70	불광동 170-184	불광동 171-62	일반 도로	-	-
기정	소로	3	-	5	국지 도로	-	-	-	-	-	-
변경	소로	1	(2)	10	국지 도로	147	불광동 146-2	불광동 105-138	일반 도로	-	-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	6	국지 도로	-	-	-	-	-	-
변경	소로	2	(2)	6~8	국지 도로	206	불광동 106-10	불광동 105-136	일반 도로	-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공공공지

• 불광동 170번지 일대 주민들과 인근 주거 이용자들을 위한 주민 교류 및 소통 거점 마련을 위해 조성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공지	공공공지	불광동 170-30	-	증)1,045.9	1,045.9	-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관리지역 내 추진되는 모아주택사업을 통해 주변 지역에 부족한 생활편의 시설 을 공동이용시설로 설치 계획함

구 분	설치기준	비 고
사업추진예정구역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세대당 2.5㎡ × 1.25 이상 설치	구역내
사업추진예정구역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구역내
사업추진예정구역3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구역내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라. 교통계획

○ 교통처리 계획

• 주변 도로의 접근성과 교통체계를 고려하여 적절위치 내 진출입구 개설을 통한 차량진출입간 서비스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체계 정합성을 고려하여 기존 도로망 및 일방통행 체계를 유지하고, 추후 늘어 나는 세대수 및 개발밀도를 고려하여 불광로(도시계획시설도로 기준)
(12m→15m) 및 그 외 도로 (6m→7~10m)를 확폭하여 교통을 원활하게 계획함

※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일 경우. 교통영향평가 필요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인 불광로 차량진출입 불허	-
차량진출입구간	• 연서로34길, 불광로20길을 통해 차량진출입구 설치	-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도면표시	구역명	위치	면적(㎡)	특례 사항	특례 적용 사항	비고
합계			43,196.6	공통사항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공통사항 경관 특화를 위한 창의적인 배치 및 건축물 계획	-
A1	사업예정구역1 (가로주택정비사업)	불광동 170-83	19,670.7			
A2	사업예정구역2 (가로주택정비사업)	불광동 170-42	8,860.3			
A3	사업예정구역3 (가로주택정비사업)	불광동 162-2	14,665.5			

※ 개별 사업시행구역 면적은 조합설립인가 및 연번부여 현황 면적과 상이하며, 효율적·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구역계 조정(안)으로 제시함
※ ( )는 모아타운 전체면적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바. 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구 분		위치	면적	통합적용	완화적용
도면표시	사업구역				
합계			43,196.6	대지의 조경(42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44조), 지하층의 설치(53조), 건폐율(55조) 부설주차장의 설치(주차장법 제19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하수도법 제34조)	대지의 조경(제42조), 건폐율(제55조), 용적률(제58조), 건축물의 높이제한(제6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제61조)
A1	사업예정구역1 (가로주택정비사업)	불광동 170-83	19,670.7		
A2	사업예정구역2 (가로주택정비사업)	불광동 170-42	8,860.3		
A3	사업예정구역3 (가로주택정비사업)	불광동 162-2	14,665.5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사. 건폐율 · 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 계획

구 분		내용			적용구역
시행구역 내	가로주택 정비사업	건폐율	59.67% 이하		공동주택용지 A1 (제2종일반)
		용적률	198.76% 이하	248.35% 이하	
		높이	용도지역 층수 적용		
		건폐율	60% 이하		공동주택용지 A2, A3 (제2종일반)
		용적률	200% 이하	250% 이하	
		높이	용도지역 층수 적용		
	공공공지	건폐율	관계법령에 따름		공공공지 B1 (제2종일반)
		용적률	관계법령에 따름		
		높이	용도지역 층수 적용		

아.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용도 ·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용도

도면표시 변호		구분		계획내용	비고
시행구역 내	A1~3	유형		• 공동주택용지	-
		용도	허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13호, 14호에 의한 부대 · 복리시설 • 「서울특별시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조례」 제44조 공동이용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건축선	모아주택 1~3구역	• 건축한계선(4m) : A1구역 서측 도로 인접 부분 • 건축한계선(3m) : A1구역 서측 도로 인접 부분 제외 가로변 및 공동주택용지 - 가로환경 및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 계획 - 건축한계선(3m)으로 조성되는 전면공지는 보도부속형으로 조성 • 보차혼용통로(6m) : A2구역 우상단에 계획 • 공공보행통로(8m) : A1구역 및 A3구역에 계획	-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	모아주택 1~3구역	•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은 가로활성화가 필요한 주요 가로로 가로의 ½ 이상 대지안의 공지 또는 건축한계선에 맞추어 건축물의 저층부(1층 이상)를 설치하고, 해당공간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연도형으로 조성 • 가로활성화시설의 권장용도 - 주택법제2조 13,14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에 의한 공동이용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커뮤니티가로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배치유도 - 구역 내 주가로인 역말로9길에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 지정	-

자.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계획

도면표시		위치	전체 세대	임대주택 세대수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비고
도면 표시번호	사업구역					
합계			1,420	238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전체 임대세대수 중 16.7%
A1	사업예정구역1 (가로주택정비사업)	불광동 170-83	620	72		전체 임대세대수 중 11.6%
A2	사업예정구역2 (가로주택정비사업)	불광동 170-42	305	81		전체 임대세대수 중 26.5%
A3	사업예정구역3 (가로주택정비사업)	불광동 162-2	495	85		전체 임대세대수 중 17.1%

차. 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제1종일반주거지역	34,080.9	감) 34,080.9	-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9,642.7	감) 19,642.7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53,723.6	53,723.6	99.6
자연녹지지역	192.2	-	192.2	0.4
합계	53,915.8	-	53,915.8	100.0

카. 특별건축구역지역에 관한 계획

도면 표시	면적			계획내용	계획사유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특별 건축 구역	-	53,915.8	53,915.8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경관 특화를 위한 창의적인 배치 건축물 계획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장 확대 설치	-

구분	내용
건축법	대지안의 조경(42조), 건폐율(55조), 용적률(56조), 건축물의 높이제한(6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61조)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의 배치(10조), 기준척도(13조), 비상급수시설(35조), 난방설비 등(37조) 등
통합적용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설치

타.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과의 연계 계획

○ 해당없음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4. 관계도서

○ 은평구 정비사업신속 추진단(☎ 02-351 -7473)에 비치 · 열람하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결정도

○ 관리지역 결정도(기정)

○ 관리지역 결정도(변경)

○ 토지이용계획(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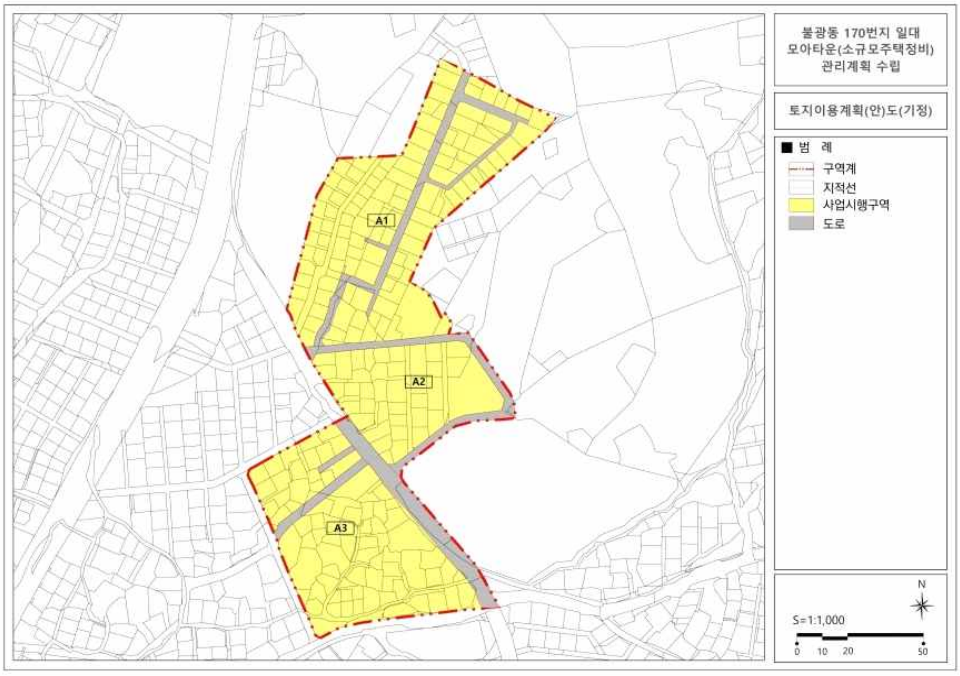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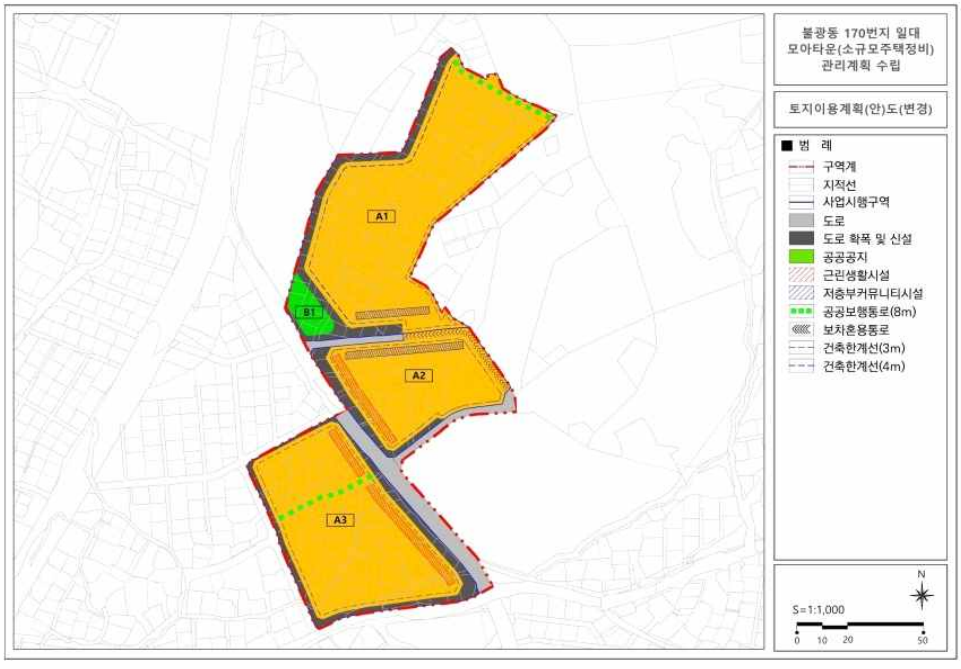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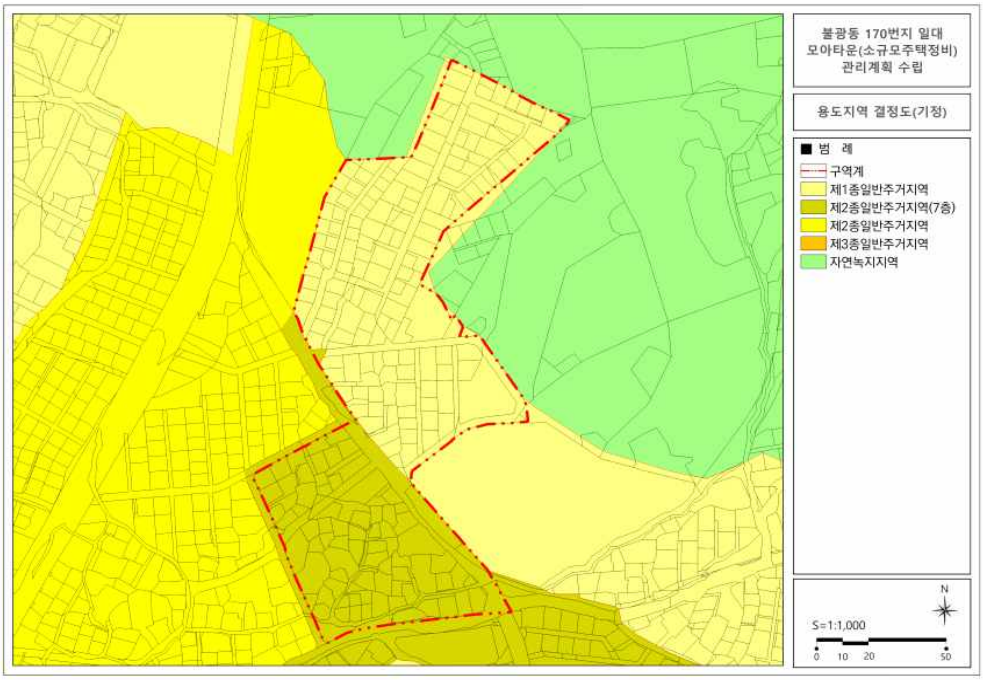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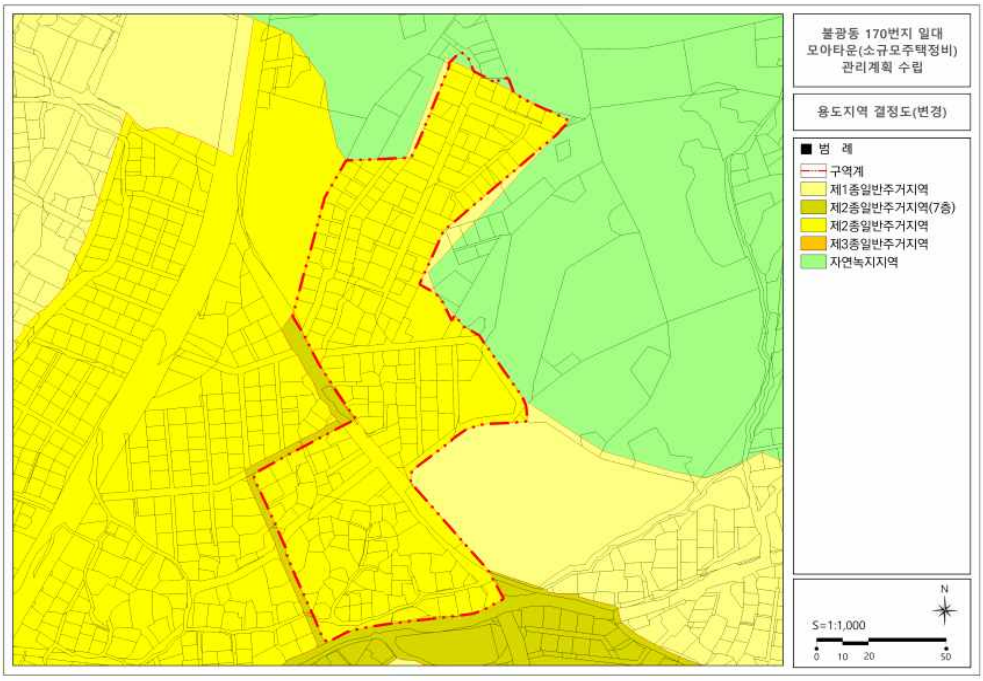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결정(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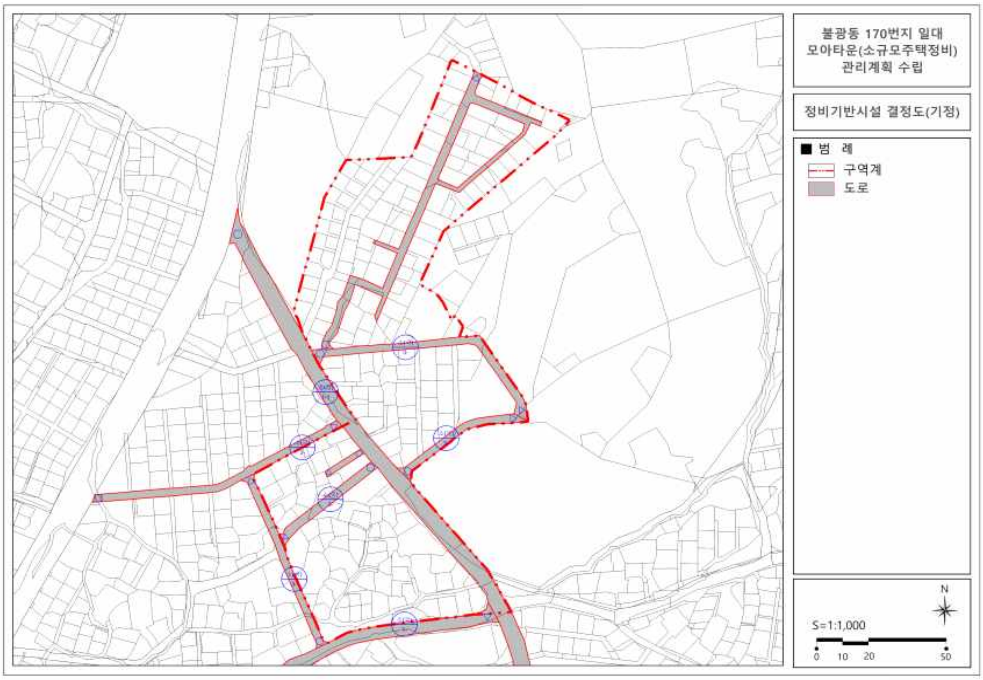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결정(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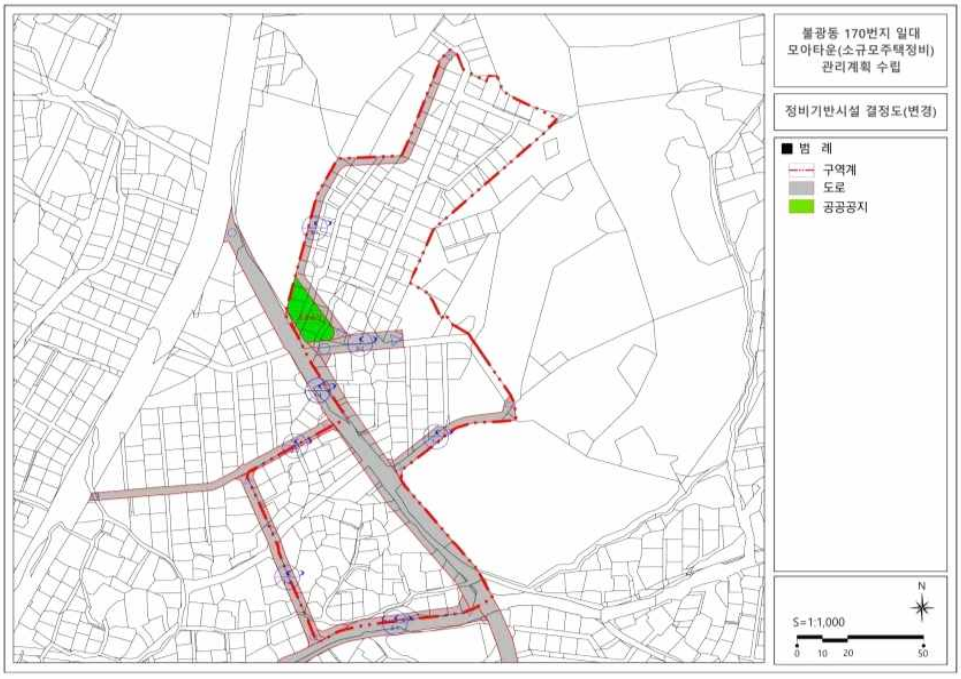

○ 건축물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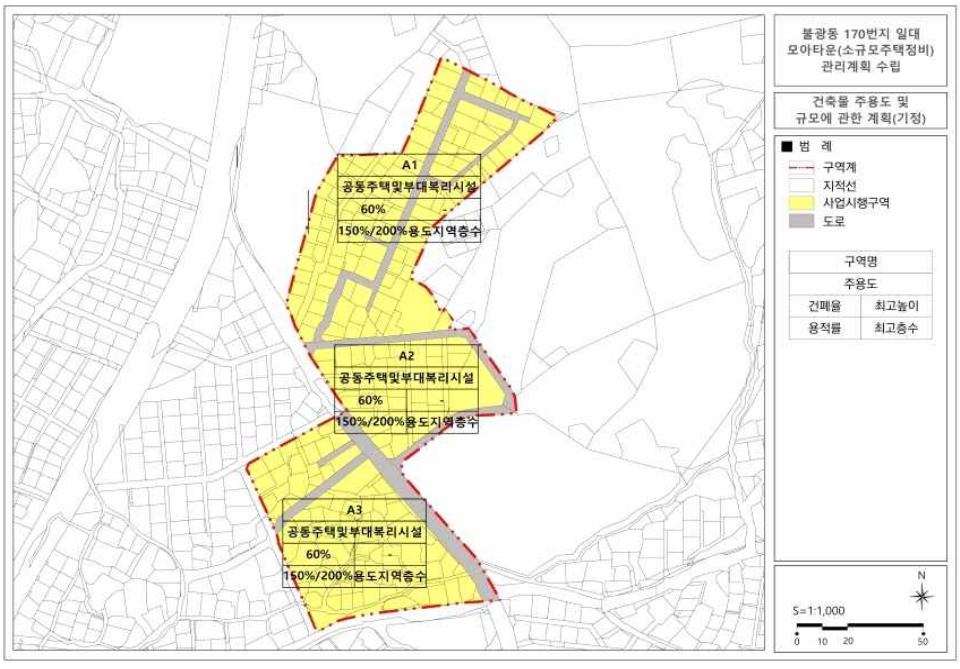

○ 건축물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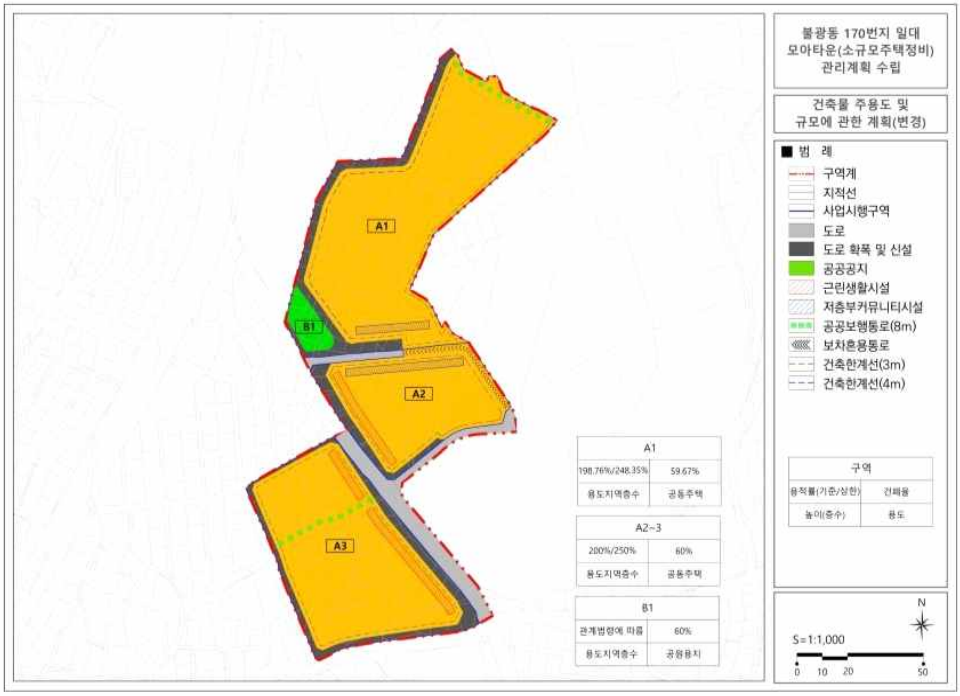

○ 건축물의 배치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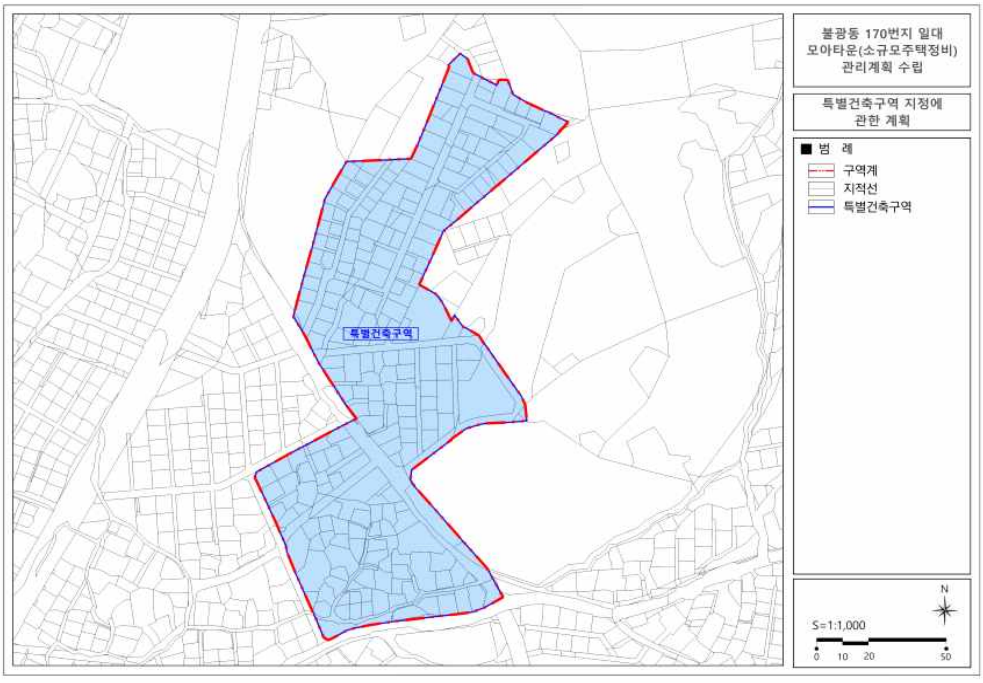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05호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74호(2023.8.31.)로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된 바 있는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계획 변경 승인에 대하여 2025년 제3차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2025.8.21.)를 거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3조 규정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물류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나. 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315번지 일원
   다. 면적 : 104,244.7㎡

2. 물류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ㅇ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 16.7.14.)된 양천구 신정동 1315번지 일원에 대하여 변화하는 물류·유통 추세에 대응하고, 노후화된 기존의 물류시설과는 차별화된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하여, 서울 서남권의 새로운 도심형 복합물류거점 조성 도모

3.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시행자 주소 및 명칭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 167(신정동), 주식회사 서부티엔디
   나. 대표자 성명 : 승만호

4. 물류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 기정 : 2022년 ~ 2028년
      - 변경 : 2022년 ~ 2030년 12월
   나. 개발방법(변경없음) : 민간개발방식(토지소유자 직접개발)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비율(%)	비고
복합시설용지		66,215.8	63.5	
지원시설용지		31,260.1	30.0	
공공시설용지	공공시설	1,513.6	1.5	
	도로	3,691.5	3.5	
	녹지	1,563.7	1.5	
	소계	6,768.8	6.5	
합계		104,244.7	100.0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 계획(변경없음)

가) 단지 내 도로 계획(변경없음)

구분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계	5	39,181	-	-	1	350	4	38,831
광로	1	35,250	-	-	-	-	1	35,250
대로	2	3,401	-	-	-	-	2	3,401
중로	2	530	-	-	1	350	1	180
소로	-	-	-	-	-	-	-	-

나) 구역 외 도로 계획(변경없음)

구분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계	1	3,341	1	3,341	-	-	-	-
광로	-	-	-	-	-	-	-	-
대로	-	-	-	-	-	-	-	-
중로	1	3,341	1	3,341	-	-	-	-
소로	-	-	-	-	-	-	-	-

2) 자동차정류장 계획(변경)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	27,697.0	증) 216.5	27,913.5	
자동차정류장(물류터미널)	신정동 1315번지 일원	27,697.0	증) 216.5	27,913.5	입체적 결정

3) 공원·녹지 계획(변경없음)

가) 녹지 계획(변경없음)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계	-	1,563.7	
경관녹지	신정동 1315번지 일원	1,563.7	

5의2. 건축계획 및 복합용지이용계획(변경)

가. 건축계획(변경)

1) 복합시설용지(변경)

구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구역면적		66,215.8㎡	66,215.8㎡	-	
건폐율		59.8%	59.9%	증) 0.1%	60% 이하
용적률		336.8%	336.9%	증) 0.1%	340% 이하
건축면적		39,627.7㎡	39,726.0㎡	증) 98.3㎡	
연면적	지상	286,565.2㎡	288,174.9㎡	증) 1,609.7㎡	
	지하	265,785.4㎡	277,996.5㎡	증) 12,211.1㎡	
	소계	552,350.6㎡	566,171.4㎡	증) 13,820.8㎡	
	용적률 산정용	223,037.7㎡	223,103.7㎡	증) 66.0㎡	
높이		76m	76m	-	최고높이 90m 이하
층수		지하 7층, 지상 15층	지하 7층, 지상 15층	-	

※ 향후 건축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상기 건축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시설용지(변경)

구분		기정	변경	증감	비고
구역면적		31,260.1㎡	31,260.1㎡	-	
건폐율		45.2%	42.9%	감) 2.3%	60% 이하
용적률		423.3%	396.1%	감) 27.2%	430% 이하
건축면적		14,120.1㎡	13,412.0㎡	감) 708.1㎡	
연면적	지상	132,319.4㎡	123,824.9㎡	감) 8,494.5㎡	
	지하	105,203.5㎡	101,906.3㎡	감) 3,297.2㎡	
	소계	237,522.9㎡	225,731.2㎡	감) 8,494.5㎡	
	용적률 산정용	132,319.4㎡	123,824.9㎡	감) 1.1m	
높이		74m	72.9m		최고높이 90m 이하
층수		지하 5층, 지상 25층	지하 5층, 지상 25층		

※ 향후 건축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상기 건축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나. 복합용지이용계획(변경없음)

1) 복합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내용	비고
복합시설 용지	물류단지 시설	물류시설	○ 창고시설(창고, 집배송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차고) 등	
		상류시설	○ 판매시설(대규모 점포)	
	지원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2)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구분		내용	비고
지원시설 용지	지원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공동주택(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근린생활시설 등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주요 유치시설

1) 물류단지시설

ㅇ 물류시설 : 창고시설(창고, 집배송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차고) 등

ㅇ 상류시설 : 판매시설(대규모 점포)

2) 지원시설

ㅇ 지원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공동주택(아파트),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근린생활시설 등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

ㅇ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 배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배치

7. 공공기여계획(변경)

가. 공공기여 총량(변경)

ㅇ 기정 : 1,042.3억원(토지가액의 20.8%)

ㅇ 변경 : 1,610.2억원(토지가액의 20.8%)

나. 공공기여 종류, 위치, 규모(변경)

ㅇ 기정

종류	위치	규모	비고
공공임대주택	ㅇ 남부순환로88길변 (대상지 북측)	ㅇ 세대수 : 92세대 – 49Type : 23세대 – 59Type : 41세대 – 84Type : 28세대 ㅇ 연면적 : 13,902.2㎡ ㅇ 대지지분 : 1,829.7㎡	ㅇ 지원시설
신정체육센터	ㅇ 남부순환로변 (대상지 동측)	ㅇ 연면적 : 17,050.0㎡ ㅇ 장비 비용 : 8.1억원 ㅇ 대지지분 : 2,044.0㎡	ㅇ 상류시설 상부에 제공
공공청사	ㅇ 신정로변 (대상지 남측)	ㅇ 연면적 : 5,421.0㎡ – 창업지원시설 : 5,271.0㎡ – 통합상황실 : 150.0㎡ ㅇ 대지면적(별도획지) : 1,513.6㎡	ㅇ 물류시설 남측에 별도획지로 제공

ㅇ 변경

종류	위치	규모	비고
공공임대주택	ㅇ 남부순환로88길변 (대상지 북측)	ㅇ 세대수 : 98세대 – 49Type : 23세대 – 59Type : 64세대 – 84Type : 11세대 ㅇ 연면적 : 13,651.0㎡ ㅇ 대지지분 : 1,890.4㎡	ㅇ 지원시설
신정체육센터	ㅇ 남부순환로변 (대상지 동측)	ㅇ 연면적 : 17,050.0㎡ ㅇ 장비 비용 : 8.1억원 ㅇ 대지지분 : 1,994.1㎡	ㅇ 상류시설 상부에 제공
공공청사	ㅇ 신정로변 (대상지 남측)	ㅇ 연면적 : 5,421.0㎡ – 창업지원시설 : 5,271.0㎡ – 통합상황실 : 150.0㎡ ㅇ 장비 비용 : 8.4억원 ㅇ 대지면적(별도획지) : 1,513.6㎡	ㅇ 물류시설 남측에 별도획지로 제공

※ 향후 건축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상기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다. 공공기여 제공방법, 설치주체, 귀속주체(변경없음)

종류		제공방법	설치주체	귀속주체
공공임대주택		ㅇ 건물 + 대지지분	ㅇ 사업시행자	ㅇ 서울시(공공주택과)
신정체육센터		ㅇ 건물 + 대지지분		ㅇ 양천구(문화체육과)
공공청사	창업지원시설	ㅇ 건물 + 별도획지		ㅇ 서울시(창업지원과)
	통합상황실			ㅇ 서울시(도로시설과)

8.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별첨

9. 물류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 해당사항 없음

10.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양천구 신정동 1315번지 일원	116,909.1	-	116,909.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74호 (2023. 8. 31.)	

※ 지구단위계획구역(116,909.1㎡) = 도시첨단물류단지(104,244.7㎡) 및 주변도로 포함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494.5	-	494.5	0.4	
	제3종일반주거지역	2,762.0	-	2,762.0	2.4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13,652.6	-	113,652.6	97.2	
합 계		116,909.1	-	116,909.1	100.0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용도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도로(변경없음)

(1)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구분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계	5	39,181	-	-	1	350	4	38,831
광로	1	35,250	-	-	-	-	1	35,250
대로	2	3,401	-	-	-	-	2	3,401
중로	2	530	-	-	1	350	1	180
소로	-	-	-	-	-	-	-	-

(2)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19	40~50	주간선도로	35,250	삼전동	방화동	일반 도로	-	' 78.6.29	-
기정	대로	3	88	25~40	주간선도로	2,900	신정동 576-3	궁동 산1-3	일반 도로	-	' 81.1.21	-
기정	대로	3	A	25~40	국지도로	501	신정동 산140-2	신정동 805-5	일반 도로	-	양천구고시 제2003-33호 (2003.6.30)	-
기정	중로	2	A	15	국지도로	180	신정동 857-4	신정동 805-8	일반 도로	-	' 74.1.12	-
기정	중로	2	1	20~25	국지도로	350	신정동 754-8	신정동 857-4	일반 도로	-	-	-

나) 자동차정류장(변경)

(1) 자동차정류장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자동차 정류장 (물류터미널)	신정동 1315번지 일원	27,697.0 (입체적 결정)	증) 216.5	27,913.5 (입체적 결정)	서고시 484 (' 79.11.23.)	입체적 결정 조서 참조

※ 27,913.5㎡는 수평투영면적임

(2)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공간적 범위 결정) 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자동차 정류장 (물류터미널)	신정동 1315번지 일원	층수(층)	지하6층~ 지상15층	–	지하6층~ 지상15층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74호 (2023.8.31.)	도시계획시설과 비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는 입체적결정도 (공간적범위결정도) 참조
				수평투영면적(㎡)	27,697.0	증) 216.5	27,913.5		
				연면적(㎡)	277,032.6	증) 8,262.5	285,295.1		

(3)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①	자동차 정류장 (물류 터미널)	○ 자동차정류장(물류터미널)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간적 범위결정) – 층수 : 지하6층~지상15층 – 수평투영면적 : 27,913.5㎡ – 연면적 : 285,295.1㎡ – 대지지분 : 33,366.3㎡	○ 2025년 제3차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25.8.21.) 결과에 따라 건축계획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른 자동차정류장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 및 면적 변경

다) 녹지(변경없음)

(1) 녹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녹지	경관녹지	신정동 1315번지 일원	1,563.7	–	1,563.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74호 (2023.8.31.)	–

라) 구역 외 도로(변경없음)

(1) 도로 총괄표(변경없음)

구분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계	1	3,341	1	3,341	–	–	–	–
광로	–	–	–	–	–	–	–	–
대로	–	–	–	–	–	–	–	–
중로	1	3,341	1	3,341	–	–	–	–
소로	–	–	–	–	–	–	–	–

(2)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18	20~28	국지도로	3,341	천왕동 3-5	궁동 3-4	일반 도로	–	–	–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①	1	66,215.8	신정동 1315번지 일원	66,215.8	복합시설용지
기정	②	2	31,260.1		31,260.1	지원시설용지
기정	③	3	1,513.6		1,513.6	공공시설용지

2)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건축물의 허용용도 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A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의한 일반물류단지시설, 제7의2호에 의한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 제8호의 지원시설	복합시설용지
B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 지원시설	지원시설용지
C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별표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32조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공공시설용지

나) 건축물의 불허용도 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A	○ 지원시설 중 위락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6.위락시설 중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에 한함)	-

3) 건축물의 개발밀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건폐율·용적률 계획(변경없음)

구분	건폐율	용적률	비고
① 복합시설용지	60% 이하	340% 이하	-
② 지원시설용지	60% 이하	430% 이하	-
③ 공공시설용지	60% 이하	370% 이하	-

나) 건축물 높이 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적용지역	높이계획	
최고높이	대상지 전체	90m 이하 (지상 25층 이하)	공항시설법에 따른 최고높이 : 134m (지반고 22m ~ 31m)

4) 건축물의 배치·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계획(변경없음)

구분	위치	계획기준	비고
건축한계선	○ 남부순환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 신정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9m	
	○ 신정로7길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5m	
	○ 남부순환로88길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 신정로11길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8m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가)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계획(변경)

○ 기정

구분		계획내용	적용기준	비고
전면공지	간선/이면 도로변	○ 대지 내 건축한계선으로 확보하는 구간을 전면공지로 조성 – 전면공지는 사업대상지 진·출입에 필요한 도로 및 보도로 확보	건축한계선 확보 구간	
공개공지	공개공지 위치	○ 공개공지 위치지정이 표시되어 있는 위치에 공개공지 조성	공개공지 4개소 위치지정	
	공개공지 조성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조성	–	
공공보행통로		○ 24시간 일반인이 보행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 ○ 공공보행통로는 단차가 없이 연속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애물(담장, 계단, 화단 등) 설치 불가 ○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재료 및 포장을 하여야 하며, 야간통행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공공보행통로 1개소 위치지정	

○ 변경

구분		계획내용	적용기준	비고
전면공지	간선/이면 도로변	○ 대지 내 건축한계선으로 확보하는 구간을 전면공지로 조성 – 전면공지는 사업대상지 진·출입에 필요한 도로 및 보도로 확보	건축한계선 확보 구간	
공개공지	공개공지 위치	○ 공개공지 위치지정이 표시되어 있는 위치에 공개공지 조성	공개공지 4개소 위치지정	
	공개공지 조성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조성	–	
공공보행통로		○ 24시간 일반인이 보행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 ○ 공공보행통로의 최소폭원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제시하는 3m 이상으로 조성 ○ 공공보행통로는 단차가 없이 연속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애물(담장, 계단, 화단 등) 설치 불가 ○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재료 및 포장을 하여야 하며, 야간통행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공공보행통로 1개소 위치지정	

나) 차량동선 계획(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구간	○ 대상지 주요 교차로변에서 30~50m 차량진출입 불허(공공시설용지 제외)	–

1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 게재 생략

14. 기타사항

가. 2025년 제3차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25.8.21.)결과에 따른 조건이행계획에 따라 아래 내용을 이행할 것

조건이행 계획	지원시설용지로 이어지는 수직동선은 24시간 개방될 수 있도록 ① 지역권 설정에 대한 사항을 준공전 협의하거나, ② 물류단지관리계획에 관련 내용을 명시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의견(사건번호 25의제1947, ’25.9.25. 조건부 동의)을 이행할 것

15.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청 물류정책과(☎ 02-2133-4085), 양천구청 도시계획과(☎ 02-2620-3503)에 비치하고, 지형도면은 국토교통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별첨 :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및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 등(변경)

가. 편입토지조서(변경)

1) 단지 내(변경)

주소	구분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구분	비고
양천구 신정동	기정	1315	차	83,129.3	83,129.3	주식회사 서부티엔디	-
	기정	1315-1	주	3,638.3	3,638.3	주식회사 서부티엔디	-
	기정	1315-2	차	5,413.3	5,413.3	서울특별시	수용
	기정	1315-3	차	3,725.7	3,725.7	주식회사 서부티엔디	-
	기정	1315-4	대	1.0	1.0	주식회사 서부티엔디	-
	기정	1315-5	대	786.0	786.0	조성근 외 171명	수용·사용
	변경					이창범 외 156명	
	기정	1315-6	대	101.0	101.0	주식회사 서부티엔디	-
	기정	1315-7	대	1,074.0	1,074.0	주식회사 서부티엔디	-
	기정	1315-8	대	270.0	270.0	주식회사 서부티엔디	-
	기정	1315-9	대	3,117.0	3,117.0	조성근 외 171명	수용·사용
	변경					이창범 외 156명	
	기정	1315-21	차	2,989.1	2,989.1	양천구	수용
합 계				104,244.7	104,244.7	-	-

2) 단지 외(남부순환로변)(변경없음)

주소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구분	비고
양천구 신정동	1315-18	도	1,473.9	414.5	양천구	사용
	1315-19	도	85.5	82.9	국(국토교통부)	사용
	1315-20	도	638.2	626.6	양천구	사용
	735-5	도	6,006.0	5.5	서울시	사용
합 계			8,203.6	1,129.5	-	-

3) 단지 내·외(신정로변)(변경)

주소	구분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구분	비고
양천구 신정동	기정	1315-1	주	3,638.3	418.6	주식회사 서부티엔디	-
	기정	742-3	도	1,830.0	999.0	서울시	사용
	기정	1315	차	83,129.3	743.5	주식회사 서부티엔디	-
	기정	1315-2	차	5,413.3	271.1	서울시	사용
	기정	1315-3	차	3,725.7	185.5	주식회사 서부티엔디	-
	기정	1315-4	대	1.0	1.0	주식회사 서부티엔디	-
	기정	1315-5	대	786.0	276.4	조성근 외 171명	수용·사용
	변경					이창범 외 156명	
	기정	812-17	대	106.0	106.0	서울시	사용
합 계				98,629.6	3,001.1	-	-

4) 단지 내·외(신정로7길변)(변경)

주소	구분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구분	비고
양천구 신정동	기정	1315-7	대	1,074.0	100.2	주식회사 서부티엔디	-
	기정	1315-9	대	3,117.0	44.3	조성근 외 171명	수용·사용
	변경					이창범 외 156명	
	기정	1315-10	도	25.0	25.0	국(국토교통부)	사용
	기정	1315-11	도	1,517.6	1,517.6	양천구	사용
	기정	1315	차	83,129.3	728.5	주식회사 서부티엔디	-
합 계				88,862.9	2,415.6	-	-

5) 단지 내·외(남부순환로88길변)(변경없음)

주소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구분	비고
양천구 신정동	1315	차	83,129.3	334.7	주식회사 서부티엔디	-
	1315-12	도	681.8	681.8	양천구	사용
	1315-13	도	244.0	25.8	양천구	사용
	1315-15	도	2,196.1	66.8	국(국토교통부)	사용
합 계			86,251.2	1,109.1	-	-

6) 단지 내·외(신정로11길변)(변경없음)

주소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구분	비고
양천구 신정동	751	도	2,316.0	931.2	양천구	사용
	857-4	도	972.0	376.8	국(국토교통부)	사용
	1315-15	도	2,196.1	2,129.3	국(국토교통부)	사용
	1315-13	도	244.0	218.2	양천구	사용
	1315-14	도	374.6	374.6	국(국토교통부)	사용
	860-1	도	30.0	30.0	국(국토교통부)	사용
	751-1	도	1,450.0	1,450.0	양천구	사용
	1315-16	도	1,015.7	1,015.7	양천구	사용
	1315	차	83,129.3	413.7	주식회사 서부티엔디	-
	1315-17	도	101.6	101.6	양천구	사용
	1315-18	도	1,473.9	980.1	양천구	사용
	1315-21	차	2,989.1	181.0	양천구	사용
	1287-2	도	1,849.7	296.2	양천구	사용
합 계			98,142.0	8,498.4	-	-

7) 단지 외(오리로변)(변경없음)

주소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구분	비고
구로구 궁동	3-4	도	2,258.0	115.5	서울특별시	사용
	3-5	도	121.0	38.0	서울특별시	사용
	3-7	도	148.0	32.8	서울특별시	사용
	4-5	도	2,390.0	41.1	서울특별시	사용
	17-11	도	1,213.0	70.4	서울특별시	사용
	252	구	27,229.0	19.8	국토교통부	사용
합 계			33,359.0	317.6	-	-

나. 건축물조서(변경없음)

구분	명칭	건축면적(㎡)	연면적(㎡)							용도
			계	지층	1층	2층	3층	4층	옥탑	
총계		11,719.25	41,382.18	4,894.18	11,679.25	10,039.08	9,579.33	4,940.75	249.59	
1	1동	1,469.76	6,003.34	1,469.76	1,469.76	1,469.76	1,469.76	-	124.3	사무실A동
2	2동	1,469.76	6,004.33	1,469.76	1,469.76	1,469.76	1,469.76	-	125.29	사무실B동
3	3동	1,157.7	1,157.7	-	1,157.7	-	-	-	-	하치장
4	5동	40	40	40	-	-	-	-	-	보일러실
5	서부트럭 터미널	7,582.03	6,214.3	1,512	1,512	1,512	1,512	166.3	-	사무실C동
6			9,090	54	2,259	2,259	2,259	2,259	-	창고 A동
7			9,728.27	-	2,325.92	2,371.45	2,515.45	2,515.45	-	창고 B동
8			1,207.5	-	603.75	603.75	-	-	-	정비동
9			528	-	528	-	-	-	-	주유소
10			1,408.74	348.66	353.36	353.36	353.36	-	-	본관동
소계		7,582.03	28,176.81	1,914.66	7,582.03	7,099.56	6,639.81	4,940.75	-	

다.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및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 등(변경)

1) 토지(변경)

가) 단지 내(변경)

주소	구분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구분	비고
양천구 신정동	기정	1315-2	차	5,413.3	5,413.3	서울특별시	수용
	기정	1315-5	대	786.0	786.0	조성근 외 171명	수용사용
	변경					이창범 외 156명	
	기정	1315-9	대	3,117.0	3,117.0	조성근 외 171명	수용사용
	변경					이창범 외 156명	
	기정	1315-21	차	2,989.1	2,989.1	양천구	수용
합 계				12,305.4	12,305.4	-	-

나) 단지 외(남부순환로변)(변경없음)

주소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구분	비고
양천구 신정동	1315-18	도	1,473.9	414.5	양천구	사용
	1315-19	도	85.5	82.9	국(국토교통부)	사용
	1315-20	도	638.2	626.6	양천구	사용
	735-5	도	6,006.0	5.5	서울시	사용
합 계			8,203.6	1,129.5	-	-

다) 단지 내·외(신정로변)(변경)

주소	구분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구분	비고
양천구 신정동	기정	742-3	도	1,830.0	999.0	서울시	사용
	기정	1315-2	차	5,413.3	271.1	서울시	사용
	기정	1315-5	대	786.0	276.4	조성근 외 171명	수용·사용
	변경					이창범 외 156명	
	기정	812-17	대	106.0	106.0	서울시	사용
합 계				8,135.3	1,652.5	-	-

라) 단지 내·외(신정로7길변)(변경)

주소	구분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구분	비고
양천구 신정동	기정	1315-9	대	3,117.0	44.3	조성근 외 171명	수용·사용
	변경					이창범 외 156명	
	기정	1315-10	도	25.0	25.0	국(국토교통부)	사용
	기정	1315-11	도	1,517.6	1,517.6	양천구	사용
합 계				4,659.6	1,586.9	-	-

마) 단지 내·외(남부순환로88길변)(변경없음)

주소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구분	비고
양천구 신정동	1315-12	도	681.8	681.8	양천구	사용
	1315-13	도	244.0	25.8	양천구	사용
	1315-15	도	2,196.1	66.8	국(국토교통부)	사용
합 계			3,121.9	774.4	-	-

바) 단지 내·외(신정로11길변)(변경없음)

주소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구분	비고
양천구 신정동	751	도	2,316.0	931.2	양천구	사용
	857-4	도	972.0	376.8	국(국토교통부)	사용
	1315-15	도	2,196.1	2,129.3	국(국토교통부)	사용
	1315-13	도	244.0	218.2	양천구	사용
	1315-14	도	374.6	374.6	국(국토교통부)	사용
	860-1	도	30.0	30.0	국(국토교통부)	사용
	751-1	도	1,450.0	1,450.0	양천구	사용
	1315-16	도	1,015.7	1,015.7	양천구	사용
	1315-17	도	101.6	101.6	양천구	사용
	1315-18	도	1,473.9	980.1	양천구	사용
	1315-21	차	2,989.1	181.0	양천구	사용
	1287-2	도	1,849.7	296.2	양천구	사용
합 계			15,012.7	8,084.7	-	-

사) 단지 외(오리로변)(변경없음)

주소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구분	비고
구로구 궁동	3-4	도	2,258.0	115.5	서울특별시	사용
	3-5	도	121.0	38.0	서울특별시	사용
	3-7	도	148.0	32.8	서울특별시	사용
	4-5	도	2,390.0	41.1	서울특별시	사용
	17-11	도	1,213.0	70.4	서울특별시	사용
	252	구	27,229.0	19.8	국토교통부	사용
합 계			33,359.0	317.6	-	-

2) 건축물(변경)

ㅇ 기정

연번	호실	소유자	소유면적(㎡)		주소
			토지	건축물	
1	1동 지하 1호	서부티엔디	468.10 / 4009	94.00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67 (신정동)
2	1동 지하 2호			47.00	
3	1동 지하 3호			47.00	
4	1동 지하 4호			47.00	
5	1동 지하 5호			47.00	
6	1동 지하 6호			94.00	
7	1동 지하 7호			47.00	
8	1동 지하 8호			47.00	
9	1동 지하 9호			47.00	
10	1동 지하 10호			47.00	
11	1동 지하 11호			94.00	
12	1동 지하 12호			47.00	
13	1동 지하 13호			47.00	
14	1동 지하 14호			47.00	
15	1동 지하 15호			47.00	
16	1동 지하 16호			47.00	
17	1동 지하 17호			47.00	
18	1동 지하 18호			47.00	
19	1동 지하 19호			47.00	
20	1동 지하 20호			38.44	
21	1동 지하 21호			38.44	
22	1동 지하 22호			38.44	
23	1동 지하 23호			38.44	
24	1동 지하 24호			38.44	
25	1동 지하 26호			47.00	
26	1동 지하 27호			47.00	
27	1동 지하 28호			94.00	
28	2동 지하 1호			47.00	
29	2동 지하 2호			47.00	
30	2동 지하 3호			47.00	
31	2동 지하 4호			47.00	
32	2동 지하 5호			47.00	
33	2동 지하 6호			47.00	
34	2동 지하 7호			94.00	
35	2동 지하 8호			47.00	
36	2동 지하 9호			47.00	
37	2동 지하 10호			47.00	

연번	호실	소유자	소유면적(㎡)		주소
			토지	건축물	
38	2동 지하 11호			47.00	
39	2동 지하 12호			94.00	
40	2동 지하 13호			94.00	
41	2동 지하 14호			47.00	
42	2동 지하 15호			47.00	
43	2동 지하 16호			47.00	
44	2동 지하 17호			47.00	
45	2동 지하 18호			47.00	
46	2동 지하 19호			47.00	
47	2동 지하 20호			38.44	
48	2동 지하 21호			38.44	
49	2동 지하 22호			38.44	
50	2동 지하 23호			38.44	
51	2동 지하 24호			38.44	
52	2동 지하 26호			47.00	
53	2동 지하 27호			47.00	
54	2동 지하 28호			94.00	
55	2동 3층 13호			93.80	
56	2동 3층 15호			46.91	
57	2동 3층 16호			46.91	
58	2동 3층 17호			93.80	
59	2동 3층 19호			93.80	
60	2동 3층 29호			46.91	
61	3동 하치장	서부티엔디	91,939.3	1,157.70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67 (신정동)
62	5동 보일러실			40.00	
63	사무실 C동			6,214.30	
64	창고 A동			9,090.00	
65	창고 B동			9,728.27	
66	정비동			1,207.50	
67	본관동			1,408.74	
68	주유소			528.00	
69	1동 지하 25호	조성근	19.14 / 4009	47.00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971-2 101호
70	1동 1층 1호	문순옥	19.14 / 4009	45.93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7길 34-7
71	1동 1층 2호	정경업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67 제1동 제1층 제2호
72	1동 1층 3호	이재경	19.14 / 4009	45.93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91, 106동 1204호(성복힐스테이트 1차)
73	1동 1층 4호	이상규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3길 38 103동 1501호(신정동 신정 이편한세상)
74	1동 1층 5호	송민중	19.14 / 4009	45.93	경기도 시흥시 소래산길 18 101동 1701호(극동아파트)
75	1동 1층 6호	전금만	19.14 / 4009	45.93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 20길 6 현대 APT 103동 304호
76	1동 1층 7호	이선아	38.28 / 4009	45.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91 404동 1401호(마두동,백마마을)
	2동 1층 7호			45.93	
77	1동 1층 8호	이희정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80 신시가지 APT 803동 403호
78	1동 1층 9호	한재승	19.14 / 4009	45.93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489번길 10 플러스빌 101호
		민경남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손곡로 53 502동1202호(동천동 수진마을 신명스카이빌)
79	1동 1층 10호	서충식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300 505동 902호(신정동 신정5차 현대아파트)
80	1동 1층 11호	최지원	38.28 / 4009	45.93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1가길 22, 101(궁동, 방주빌라)
81	1동 1층 12호	조숙자	19.14 / 4009	45.93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333-24 중앙사원주택 507호
82	1동 1층 13호	이일민	19.14 / 4009	45.93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8길 45 라동 2호(구의동 신일연립)

연번	호실	소유자	소유면적(㎡)		주소
			토지	건축물	
83	1동 1층 14호	황복순	19.14 / 4009	45.93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5길 18 902호(태승훼미리 아파트)
84	1동 1층 15호	정한희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오목로 30길 16-1
		정한분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3길 107 푸르지오 APT 106동 804호
85	1동 1층 16호	정미자	19.14 / 4009	45.93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정금로 473번길 63
86	1동 1층 17호	이경익	19.14 / 4009	45.93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1064-12
87	1동 1층 18호	박광일	19.14 / 4009	45.93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796, 114동 202호
88	1동 1층 19호	최혜성	19.14 / 4009	45.93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양1로 30 718동 1901호(사동 안산고잔 7차 푸르지오)
89	1동 1층 20호	백혜경	19.14 / 4009	45.93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742 마곡수명산 파크1단지아파트 112동 603호
90	1동 1층 21호	배진경	38.28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00 1332동 503호(신정동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91	1동 1층 22호	최명자	38.28 / 4009	45.93	경기도 안산시 상록 화랑로 4953동 807호(성포동 예술인아파트)
92	1동 1층 23호	장지혜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20 101동 1106호(목동, 목동성원초원아파트)
93	1동 1층 24호	김정의	19.14 / 4009	45.9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81 2118동 1902호(상동 다정한마을)
94	1동 1층 25호	박상술	38.28 / 4009	45.9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088-4 2층
	1동 2층 12호			45.93	
95	1동 1층 26호	박영애	19.14 / 4009	45.93	서울 강서구 강서로 7길 52-3, 903호(화곡동)
96	1동 1층 27호	김정은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신목로 4길 2(신정동)
97	1동 1층 28호	한해광	38.28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67 제1동 제1층 제28호
	1동 2층 10호			45.93	
98	1동 1층 29호	김옥현	38.28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12길 60, 102동 1505호(신정동, 목동현대아파트)
		신흥식			
	2동 1층 2호	김옥현		45.93	
		신흥식			
99	1동 1층 30호	김범택	19.14 / 4009	45.93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중앙로 32 208동 702호(중앙하이츠빌아파트)
100	1동 1층 31호	송숙희	19.14 / 4009	45.93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401, 910호(목동, 부영그린타운2차)
101	1동 1층 32호	양은주	19.14 / 4009	45.93	경기도 용인시 예현로 35번길 21 예현마을 현대 홈타운 104동 1603호
102	1동 2층 1호	이은귀	19.14 / 4009	45.93	서울시 구로구 부일로 9길 127, 온수 힐스테이트 APT 107동 403호
103	1동 2층 2호	이현경	19.14 / 4009	45.93	서울시 구로구 부일로 9길 127, 온수 힐스테이트 APT 107동 403호
104	1동 2층 3호	김월자	38.28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70, 101동 1202호(신정 현대아파트)
	2동 1층 17호			45.93	
105	1동 2층 4호	이정자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70, 신정 현대 APT 104동 1204호
106	1동 2층 5호	신지영	38.28 / 4009	45.93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8길 94, 1909호(서초동)
	2동 1층 32호	신지원		45.93	서울시 송파구 성내천로6, 101동 1801호(오금동)
107	1동 2층 6호	이권희	19.14 / 4009	45.93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현내항길 319
108	1동 2층 7호	이나연	19.14 / 4009	45.93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3길 107, 113동 201호(화곡동, 화곡푸르지오)
		이나희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3길 106, 804동 201호(화곡동, 화곡푸르지오)
109	1동 2층 8호	김춘자	19.14 / 4009	45.93	서울시 구로구 중앙로 5길 62 서울가든 APT 5동 611호
110	1동 2층 9호	유인숙	19.14 / 4009	45.93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2길 65, 101동 1901호(행당동, 서울숲리버뷰자이)
		유동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170 햇빛마을 2102동 1503호
		류승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103동 608호(장항동)
111	1동 2층 11호	표성은	19.14 / 4009	45.93	서울시 구로구 궁동 112-9 호수2차 104호
112	1동 2층 13호	이영숙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중앙로 47길 47-9(신정동)
113	1동 2층 14호	한재창	19.14 / 4009	45.93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38-14 세한빌딩 5층
114	1동 2층 15호	고은희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70 신정 현대 APT 104동 901호
115	1동 2층 16호	서복진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401 대림아크로빌 A동 1303호
116	1동 2층 17호	김은경	19.14 / 4009	45.93	서울시 관악구 보라매로 4 태영빌딩 4층
117	1동 2층 18호	김원겸	19.14 / 4009	45.93	
		김우겸			

연번	호실	소유자	소유면적(㎡)		주소
			토지	건축물	
118	1동 2층 19호	김문숙 이현	19.14 / 4009	45.93	
119	1동 2층 20호	김영률 견세미	19.14 / 4009	45.93	
120	1동 2층 21호	이제길 정한희	19.14 / 4009	45.93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382 한마을 APT 101동 1305호 충청남도 아산시 남부로8번길 77(방축동)
121	1동 2층 22호	박광억	19.14 / 4009	45.93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13길 22-1, A동 401호
122	1동 2층 23호	한창선	19.14 / 4009	45.9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484번길
123	1동 2층 24호	임종태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오목로 300 현대하이페리온 2차 204동 3202호
124	1동 2층 25호	박점화 최정식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30, 1401동 202호(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00, 1301동 1102호(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25	1동 2층 26호	오신기	19.14 / 4009	45.93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 47길 56-9 1층(고척동)
126	1동 2층 27호	손옥순	19.14 / 4009	45.9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창박로 30 수리산 현대APT 102동 102호
127	1동 2층 28호	남진우 김영주	19.14 / 4009	45.9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연현로 79번길 57, 306동 505호(석수동,석수엘지빌리지)
128	1동 2층 29호	장영자	19.14 / 4009	45.93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호로 5길 14 601호(본오동)
129	1동 2층 30호	이재환	19.14 / 4009	45.93	경기도 김포시 중봉로 1-1 신안3차 304동 1404호
130	1동 2층 31호	라호명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400 목동신시가지 APT 1010동 201호
131	1동 2층 32호	임현철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67 B동 지하 32호 강서통신
132	1동 3층 1호 1동 3층 16호	최윤호	38.28 / 4009	36.00 46.91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401 910호(목동 부영그린타운 2차)
133	1동 3층 2호	조윤영	19.14 / 4009	36.00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35길 10, 401동 1504호
134	1동 3층 3호	정종덕	19.14 / 4009	46.9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80 부천 현대아이파크 203동 2204호
135	1동 3층 4호	김평숙	19.14 / 4009	46.91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70 신정 현대 APT 107동 2001호
136	1동 3층 5호	전복녀	19.14 / 4009	45.93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3길 107 화곡 푸르지오 109동 406호
137	1동 3층 6호	조영자	19.14 / 4009	46.91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로 41 101동 501호(남천동 코오롱 하늘채 골든비치)
138	1동 3층 7호 2동 3층 23호	윤용준	38.28 / 4009	46.91 46.91	인천시 서구 청라커넬로 319번길 3-9, 201호(경서동)
139	1동 3층 8호 1동 3층 9호	백영창 백영길	38.28 / 4009	46.91 46.91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8길 16-12 삼영빌딩 3층
140	1동 3층 10호	박진현	19.14 / 4009	46.91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796 114동 202호(불광동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APT)
141	1동 3층 11호	허훈석	19.14 / 4009	36.00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시범길 20 1416동 1802호(동탄역 시범 한화 꿈에그린 프레스티지)
142	1동 3층 12호	임국빈	19.14 / 4009	46.91	경기도 하남시 풍산대로 997
143	1동 3층 13호	김종성	19.14 / 4009	46.91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7길 60-7, 406동 1301호(신정동 푸른마을)
144	1동 3층 14호	장혜영	19.14 / 4009	46.91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길 12 자이APT 112동 2402호
145	1동 3층 15호	김복현 유광용	19.14 / 4009	46.91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59 104동 601호(신대방동, 보라매파크빌아파트)
146	1동 3층 17호	송숙화	19.14 / 4009	46.91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401 1712호 (목동 부영그린타운 2차)
147	1동 3층 18호	정순주	19.14 / 4009	46.91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 220 (옥길호반베르디움) 102동 701호
148	1동 3층 19호	이은자	19.14 / 4009	46.91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70 104동 1006호 (신정동 신정현대아파트)
149	1동 3층 20호	김동진	19.14 / 4009	46.91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67 제1동 제3층 제20호
150	1동 3층 21호	이희배	19.14 / 4009	46.91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66길 15 (동화빌라 402호)
151	1동 3층 22호	문경혁	19.14 / 4009	46.91	서울시 은평구 불광로 121 (불광동)
152	1동 3층 23호	서선교 맹유진	19.14 / 4009	46.91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85길 16, 102동 1901호(신월동, 대주파크필)
153	1동 3층 24호	정재욱	19.14 / 4009	46.91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517,105동 1508호(중계동,건영2차)

연번	호실	소유자	소유면적(㎡)		주소
			토지	건축물	
154	1동 3층 25호	황연화	19.14 / 4009	46.91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 8가길 3(시흥동)
155	1동 3층 26호	이두호	19.14 / 4009	46.91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 21가길 48-9
156	1동 3층 27호	강옥분	19.14 / 4009	46.91	서울시 관악구 은천로 35가길 24
157	1동 3층 28호	권태호	19.14 / 4009	46.91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3길 38 신정 이편한세상 APT 105동 1503호
158	1동 3층 29호	김광진	19.14 / 4009	46.90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432-5 119동 803호(학마을아파트)
159	1동 3층 30호	한우섭	19.14 / 4009	46.9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116, 206동 1201호(주엽동, 강선마을)
160	1동 3층 31호	박은정	38.28 / 4009	36.00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796, 114동 202호
	1동 3층 32호	박은진		36.00	
161	2동 지하 25호	신호철	19.14 / 4009	47.00	경기도 광주시 벌원길 64-5 동보허브빌 APT 104동 1414호
162	2동 1층 1호	안언철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7길 60-7 푸른마을 APT 406동 603호
		이은자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70 신정 현대 APT 104동 1006호
163	2동 1층 3호	송현철	19.14 / 4009	45.93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송학동길 36
164	2동 1층 4호	김용재	19.14 / 4009	45.93	경기도 광명시 광명로 877 한진 APT 105동 1809호
165	2동 1층 5호	정종석	19.14 / 4009	45.9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152 파크타운 130동 301호
166	2동 1층 6호	예신희	38.28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 230 목동 아이파크 APT 103동 1604호
	2동 3층 32호			46.91	
167	2동 1층 8호	유재성	19.14 / 4009	45.93	서울시 용산구 청과로77가길 17(서계동)
168	2동 1층 9호	민영홍	19.14 / 4009	45.93	충남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 9길 59 대림한들 A 203동 1403호
169	2동 1층 10호	이열	19.14 / 4009	45.93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3길 107 푸르지오 APT 106동 804호
170	2동 1층 11호	정재원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340 925동 801호(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71	2동 1층 12호	방경자	19.14 / 4009	45.93	경기 김포시 고촌읍 수기로 67-54 109동 902호(수기마을 힐스테이트)
172	2동 1층 13호	공광상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목동 648-2
173	2동 1층 14호	김희규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85길 16 대주파크빌 102동 801호
174	2동 1층 15호	남호만	19.14 / 4009	45.93	인천시 연수구 원인재로 88 114동 1502호 (삼환아파트)
175	2동 1층 16호	서종화	19.14 / 4009	45.9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81, 210동 1002호
176	2동 1층 18호	신광웅	19.14 / 4009	45.93	서울 강서구 강서로 348 우장산힐스테이트아파트 138동 1403호
177	2동 1층 19호	설경순	19.14 / 4009	45.93	뉴질랜드 오랜드시 존스가 존사우 4
178	2동 1층 20호	박혜경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오목로 300 현대하이페리온 2차 204동 3202호
179	2동 1층 21호	전신자	19.14 / 4009	45.9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 3로 61 하이파크시티 일산파밀리에 4단지 410동 1702호
180	2동 1층 22호	김동기	19.14 / 4009	45.93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5가 42 레미안아파트 403호 1901호
181	2동 1층 23호	전태문	19.14 / 4009	45.93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33 강변마을 청도 APT 104동 102호
182	2동 1층 24호	박정자	19.14 / 4009	45.93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89 101동 902호 (가양동 우성아파트)
183	2동 1층 25호	김문길	19.14 / 4009	45.93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 49 동부골든 APT 201동 1003호
184	2동 1층 26호	이찬영	19.14 / 4009	45.9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17길 22 302호(대신빌)
185	2동 1층 27호	장유환	19.14 / 4009	45.93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162, 706동 403호(휴먼시아)
186	2동 1층 28호	이지선	19.14 / 4009	45.93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24길 74-12, 901호(장안동, 파크리움)
		이지혜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46길 9, 406호(화곡동, 연우넥스트뷰)
187	2동 1층 29호	박정효	19.14 / 4009	45.93	서울시 강서구 수명로 2 가길 22 마곡 수명산파크 709동 1001호
		박기청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348 105동 404호 내발산동 우장산힐스테이트
188	2동 1층 30호	권태선	19.14 / 4009	45.93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46-1 101동 1001호(상도엠코타운센트럴파크)
189	2동 1층 31호	이수범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중앙로 48길 23-1 4층
190	2동 2층 1호	한준호	19.14 / 4009	45.93	제주특별차지도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 74, 107동 201호(라온프라이빗에듀)
191	2동 2층 2호	변지훈	19.14 / 4009	45.93	경기도 부천시 도약로 206,208동 2003호(약대동,부천두산위브트레지운)
192	2동 2층 3호	박춘규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00 목동 신시가지 APT 1317동 204호
193	2동 2층 4호	㈜경남상운	38.28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67 서부트럭터미널 제2동 제2층 제4호
	2동 2층 29호			45.93	
194	2동 2층 5호	박기훈	19.14 / 4009	45.93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18길 52-19 청송평화 하이맨션 204호

연번	호실	소유자	소유면적(㎡)		주소
			토지	건축물	
195	2동 2층 6호	고영숙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67 제2동 제2층 제6호
		고경숙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929-25 702호
196	2동 2층 7호	손은주	19.14 / 4009	45.93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15, 101동 1707호(목동, 목동금강에스쁘아아파트)
197	2동 2층 8호	조종희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67 B동 208호
198	2동 2층 9호	지영옥	19.14 / 4009	45.93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서로 9길 3 문래현대 APT 502동 1001호
199	2동 2층 10호	최준식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67 제2동 제2층 제10호
200	2동 2층 11호	최은영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67 제2동 제2층 제11호
		최영오			서울시 성동구 독서당로 218, 101동 405호(옥수동)
201	2동 2층 12호	이순분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67 A동 308호
202	2동 2층 13호	노영옥	19.14 / 4009	45.93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609 삼익APT 10동 507호
203	2동 2층 14호	장지수	38.28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67 제2동 제2층 제16호
	2동 2층 16호			45.93	
204	2동 2층 15호	이학현	19.14 / 4009	45.93	인천시 계양구 길마로 83 현대 APT 202동 1401호
205	2동 2층 17호	이무춘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67 제2동 제2층 제17호
206	2동 2층 18호	오숙자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67 B동 218호
		정현석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67 B동 218호
207	2동 2층 19호	용마로지스㈜	19.14 / 4009	45.93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78 용마로지스㈜
208	2동 2층 20호	변영진	19.14 / 4009	45.93	인천시 부평구 체육관로 57 삼산타운 607동 901호
209	2동 2층 21호	전태식	19.14 / 4009	45.93	서울시 금천구 금하로 793 벽산 APT 1단지 116동 910호
210	2동 2층 22호	조성호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70, 101동 1105호(신정동,현대아파트)
		이지영			
211	2동 2층 23호	김영순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38 목동신시가지 APT 1단지 129동 1508호
212	2동 2층 24호	신용한	19.14 / 4009	45.93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276, 703동 1205호
213	2동 2층 25호	김옥순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400 목동신시가지 APT 1026동 1005호
214	2동 2층 26호	박성희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300 신정 5차 현대 APT 505동 902호
215	2동 2층 27호	김연희	19.14 / 4009	45.93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1길 7 장안 힐스테이트 1000동 804호
216	2동 2층 28호	정종석	19.14 / 4009	45.9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152 파크타운 130동 301호
		민경남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손곡로53 502동 1202호(동천동 수진마을 신명스카이뷰)
217	2동 2층 30호	김의언	19.14 / 4009	45.93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178 위브더스테이트 301동 605호
218	2동 2층 31호	정종렬	19.14 / 4009	45.9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140, 101동 906호(탄현동, 큰마을대림아파트)
219	2동 2층 32호	김식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67 제2동 제3층 제21호
220	2동 3층 1호	김복례	19.14 / 4009	46.91	서울시 관악구 은천로 39길 25-4, 봉천동
221	2동 3층 2호	김선미	19.14 / 4009	46.91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70 신정현대 APT 107동 1202호
		박순규			
222	2동 3층 3호	장정희	38.28 / 4009	46.91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1길 20 동일하이빌 APT 204동 1606호
	2동 3층 21호			46.91	
223	2동 3층 4호	이교순	19.14 / 4009	46.91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382 한마을 APT 120동 1305호
224	2동 3층 5호	한성임	19.14 / 4009	46.9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088-4 2층
225	2동 3층 6호	박혜영	19.14 / 4009	46.91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348 105동 404호 내발산동 우장산힐스테이트
226	2동 3층 7호	양재운	19.14 / 4009	46.91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263 로즈가든 303호
227	2동 3층 8호	한분임	19.14 / 4009	46.91	경기도 군포시 당동 873 쌍용 APT 101동 902호
228	2동 3층 9호	류춘숙	19.14 / 4009	46.91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280번길 27, 중흥마을 신동아 APT 617동 1401호
229	2동 3층 10호	김성식	19.14 / 4009	46.91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3길 38, 102동 2103호(신정동, 신정이-편한세상)
		김정숙			
230	2동 3층 11호	김종기	19.14 / 4009	46.91	경기도 파주시 해솔로 20, 405동 2103호
231	2동 3층 12호	조건기	19.14 / 4009	46.91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67 제2동 제3층 제12호
232	2동 3층 22호	노보규	19.14 / 4009	46.91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67 제1동 제3층 제26호

연번	호실	소유자	소유면적(㎡)		주소
			토지	건축물	
		이연주			서울시 강서구 우장산로 8, 101동 1202호 월드메르디앙
233	2동 3층 24호	길영주	19.14 / 4009	46.91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21나길 85-6, 102동 104호(개봉동, 건영아파트)
234	2동 3층 25호	고선희	19.14 / 4009	46.91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1길 20 동일하이빌 APT 205동 1501호
235	2동 3층 26호	서애순	19.14 / 4009	46.91	서울시 구로구 남부순환로 775 개봉 푸르지오 APT 101동 2002호
236	2동 3층 27호	임기태	19.14 / 4009	46.91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53 1동 1906호 (신정동 동문 굿모닝탑)
237	2동 3층 28호	김광수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225-12 302동 801호 (신정동 학마을아파트)
238	2동 3층 30호	최영숙	19.14 / 4009	46.91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30 목동신시가지 APT 1408동 1506호
239	2동 3층 31호	김정원	19.14 / 4009	46.91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 현대슈퍼빌 B동 2304호

○ 변경

연번	호실	소유자	소유면적(㎡)		주소
			토지	건축물	
1	1동 지하 1호	서부티엔디	774.34 / 4009	94.00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67 (신정동)
2	1동 지하 2호			47.00	
3	1동 지하 3호			47.00	
4	1동 지하 4호			47.00	
5	1동 지하 5호			47.00	
6	1동 지하 6호			94.00	
7	1동 지하 7호			47.00	
8	1동 지하 8호			47.00	
9	1동 지하 9호			47.00	
10	1동 지하 10호			47.00	
11	1동 지하 11호			94.00	
12	1동 지하 12호			47.00	
13	1동 지하 13호			47.00	
14	1동 지하 14호			47.00	
15	1동 지하 15호			47.00	
16	1동 지하 16호			47.00	
17	1동 지하 17호			47.00	
18	1동 지하 18호			47.00	
19	1동 지하 19호			47.00	
20	1동 지하 20호			38.44	
21	1동 지하 21호			38.44	
22	1동 지하 22호			38.44	
23	1동 지하 23호			38.44	
24	1동 지하 24호			47.00	
25	1동 지하 26호			47.00	
26	1동 지하 27호			47.00	
27	1동 지하 28호			94.00	

연번	호실	소유자	소유면적(㎡)		주소
			토지	건축물	
28	1동 1층 3호			45.93	
29	1동 1층 7호			45.93	
30	1동 1층 9호			45.93	
31	1동 1층 32호			45.93	
32	1동 2층 13호			45.93	
33	1동 2층 24호			45.93	
34	1동 3층 1호			36.00	
35	2동 지하 1호			47.00	
36	2동 지하 2호			47.00	
37	2동 지하 3호			47.00	
38	2동 지하 4호			47.00	
39	2동 지하 5호			47.00	
40	2동 지하 6호			47.00	
41	2동 지하 7호			94.00	
42	2동 지하 8호			47.00	
43	2동 지하 9호			47.00	
44	2동 지하 10호			47.00	
45	2동 지하 11호			47.00	
46	2동 지하 12호			94.00	
47	2동 지하 13호			94.00	
48	2동 지하 14호			47.00	
49	2동 지하 15호			47.00	
50	2동 지하 16호			47.00	
51	2동 지하 17호			47.00	
52	2동 지하 18호			47.00	
53	2동 지하 19호			47.00	
54	2동 지하 20호			38.44	
55	2동 지하 21호			38.44	
56	2동 지하 22호			38.44	
57	2동 지하 23호			38.44	
58	2동 지하 24호			47.00	
59	2동 지하 26호			47.00	
60	2동 지하 27호			47.00	
61	2동 지하 28호			94.00	
62	2동 1층 4호			45.93	
63	2동 1층 7호			45.93	
64	2동 1층 13호			45.93	
65	2동 1층 20호			45.93	

연번	호실	소유자	소유면적(㎡)		주소
			토지	건축물	
66	2동 1층 22호			45.93	
67	2동 2층 1호			45.93	
68	2동 2층 4호			45.93	
69	2동 2층 28호			45.93	
70	2동 2층 29호			45.93	
71	2동 3층 9호			46.91	
72	2동 3층 11호			46.91	
73	2동 3층 13호			93.80	
74	2동 3층 15호			46.91	
75	2동 3층 16호			46.91	
76	2동 3층 17호			93.80	
77	2동 3층 19호			93.80	
78	2동 3층 29호			46.91	
79	2동 3층 32호			46.91	
80	3동 하치장	서부티엔디	91,939.3	1,157.70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67 (신정동)
81	5동 보일러실			40.00	
82	사무실 C동			6,214.30	
83	창고 A동			9,090.00	
84	창고 B동			9,728.27	
85	정비동			1,207.50	
86	본관동			1,408.74	
87	주유소			528.00	
88	1동 지하 25호	이창범	19.14 / 4009	47.00	서울시 양천구 중앙로 48길 4, 101호(신정동,은성아트빌)
89	1동 1층 1호	문순옥	19.14 / 4009	45.93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7길 34-7
90	1동 1층 2호	정경업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67, 서부트럭터미널 A동 102호
91	1동 1층 4호	이동섭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월정로 101, 419호(신월동,샤르망오피스텔)
92	1동 1층 5호	송민중	19.14 / 4009	45.93	경기도 시흥시 소래산길 18, 101동 1701호(대야동,극동아파트)
93	1동 1층 6호	전금만	19.14 / 4009	45.93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 20길 6, 현대APT 103동 304호
94	1동 1층 8호	이희정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80, 신시가지APT 803동 403호
95	1동 1층 10호	서충식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300, 505동 902호(신정동,신정5차현대아파트)
96	1동 1층 11호	최지원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83길 47, 409동 304호(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4단지)
97	1동 1층 12호	조숙자	19.14 / 4009	45.93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30, 201동 502호(독산동, 롯데캐슬2차)
98	1동 1층 13호	이일민	19.14 / 4009	45.93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8길 45, 라동 2호(구의동,신일연립)
99	1동 1층 14호	황복순	19.14 / 4009	45.93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5길 18, 902호(태승훼미리아파트)
100	1동 1층 15호	정한희	19.14 / 4009	45.93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382, 한마을 APT 101동 1305호
		정한분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3길, 107 푸르지오 APT 106동 804호
101	1동 1층 16호	정미자	19.14 / 4009	45.93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정금로 473번길 63

연번	호실	소유자	소유면적(㎡)		주소
			토지	건축물	
102	1동 1층 17호	이경익	19.14 / 4009	45.93	서울시 관악구 남현3길 37(남현동)
103	1동 1층 18호	박광일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67, 서부트럭터미널 A동 331호
104	1동 1층 19호	최혜성	19.14 / 4009	45.9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26, 23동 302호 kt물류(원곡동,안산유통상가)
105	1동 1층 20호	백혜경	19.14 / 4009	45.93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3길 107, 112동 801호(화곡동)
106	1동 1층 21호	배진경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00, 1332동 503호(신정동,목동신시가지아파트)
107	1동 1층 22호	최명자	19.14 / 4009	45.9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26, 23동 302호 kt물류(원곡동,안산유통상가)
108	1동 1층 23호	석명수	19.14 / 4009	45.93	서울 양천구 곰달래로5길 30, 금빛새마을금고(신월동)
109	1동 1층 24호	김정의	19.14 / 4009	45.9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81, 2118동 1902호(상동,다정한마을)
110	1동 1층 25호	박종혁	19.14 / 4009	45.93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2088-4, 2층
111	1동 1층 26호	박영애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20길 20, 201호(목동,파인빌)
112	1동 1층 27호	김정은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신목로 4길 2(신정동)
113	1동 1층 28호	한해광	38.28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67, 서부트럭터미널 A동 128호
	1동 2층 10호			45.93	
114	1동 1층 29호	김옥현, 신흥식	38.28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12길 60, 102동 1505호(신정동, 목동현대아파트)
	2동 1층 2호			45.93	
115	1동 1층 30호	김범택	19.14 / 4009	45.93	경기도 평택시 서재8로 30, 109동 1204호(지제역푸르지오엘리아츠아파트)
116	1동 1층 31호	송숙희	19.14 / 4009	45.93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401, 910호(목동, 부영그린타운2차)
117	1동 2층 1호	이은귀	19.14 / 4009	45.93	서울시 구로구 부일로 9길 127, 온수 힐스테이트 APT 107동 403호
118	1동 2층 2호	이현경	19.14 / 4009	45.93	서울시 구로구 부일로 9길 127, 온수 힐스테이트 APT 107동 403호
119	1동 2층 3호	김월자	38.28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67, 서부트럭터미널 A동 203호
	2동 1층 17호			45.93	
120	1동 2층 4호	이정자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70, 신정 현대 APT 104동 1204호
121	1동 2층 5호	신지영, 신지원	38.28 / 4009	45.93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4층 법무법인 건우
	2동 1층 32호			45.93	서울시 송파구 성내천로6, 101동 1801호(오금동)
122	1동 2층 6호	이권희	19.14 / 4009	45.93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현내항길 319
123	1동 2층 7호	이나연	19.14 / 4009	45.93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3길 107, 113동 201호(화곡동, 화곡푸르지오)
		이나희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3길 107, 106동 804호(화곡동,화곡프루지오)
124	1동 2층 8호	김춘자	19.14 / 4009	45.93	서울시 구로구 중앙로 5길 62, 서울가든APT 5동 611호
125	1동 2층 9호	한승욱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400, 1014동 804호(신정동,목동신시가지아파트)
126	1동 2층 11호	표성은	19.14 / 4009	45.93	서울시 구로구 궁동 112-9, 호수 2차 104호
127	1동 2층 12호	박상술	38.28 / 4009	45.93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2088-4, 2층
	1동 3층 27호			46.91	
128	1동 2층 14호	한재창	19.14 / 4009	45.9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518번길 15, 210동 803호(보정동)
129	1동 2층 15호	고은희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70, 신정현대APT 104동 901호
130	1동 2층 16호	서복진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401, 대림아크로빌 A동 1303호
131	1동 2층 17호	김은경	19.14 / 4009	45.93	서울시 관악구 보라매로 4, 태영빌딩 4층
132	1동 2층 18호	김원겸	19.14 / 4009	45.9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165,1202동 703호(판교동,판교원마을12단지)
		김우겸			

연번	호실	소유자	소유면적(㎡)		주소
			토지	건축물	
133	1동 2층 19호	김문숙 이현	19.14 / 4009	45.93	서울시 관악구 보라매로 4, 태영빌딩 4층
134	1동 2층 20호	김영률 견세미	19.14 / 4009	45.93	서울시 관악구 보라매로 4, 태영빌딩 4층
135	1동 2층 21호	이제길 정한희	19.14 / 4009	45.93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382 한마을 APT 101동 1305호
136	1동 2층 22호	박광억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67, 서부트럭터미널 A동 331호
137	1동 2층 23호	한창선	19.14 / 4009	45.93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996번길 6, 304호(하안동)
138	1동 2층 25호	박점화 최정식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30, 1401동 202호(신정동,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9	1동 2층 26호	오신기	19.14 / 4009	45.93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 47길 56-9, 1층(고척동)
140	1동 2층 27호	손옥순	19.14 / 4009	45.9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창박로 30, 수리산현대APT 102동 102호
141	1동 2층 28호	이상백 맹은정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1길 20, 206동 602호(신정동,동일하이빌)
142	1동 2층 29호	장영자	19.14 / 4009	45.93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호로 5길 14, 601호(본오동)
143	1동 2층 30호	이재환	19.14 / 4009	45.93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불은남로 442번길 29-13
144	1동 2층 31호	라호명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400, 목동신시가지 APT 1010동 201호
145	1동 2층 32호	임현철	19.14 / 4009	45.93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118-4, 온수탑비딩 101호 SK물류
146	1동 3층 2호	조윤영	19.14 / 4009	36.00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67, 서부트럭터미널 A동 331호
147	1동 3층 3호	정종덕	19.14 / 4009	46.9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680, 부천 현대아이파크 203동 2204호
148	1동 3층 4호	김평숙	19.14 / 4009	46.91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70, 신정 현대 APT 107동 2001호
149	1동 3층 5호	이진성	19.14 / 4009	45.93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13길 107, 109동 406호(화곡동,프루지오)
150	1동 3층 6호	조영자	19.14 / 4009	46.91	부산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30, B동 4706호(중동,엘시티)
151	1동 3층 7호 2동 3층 23호	최원영	38.28 / 4009	46.91 46.91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52, 1층 글라스윌드 안경
152	1동 3층 8호	백영창	19.14 / 4009	46.91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57번길 70, 합동택배 4층
153	1동 3층 9호	백영길	19.14 / 4009	46.91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57번길 70, 합동택배 4층
154	1동 3층 10호	박진현	19.14 / 4009	46.91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67, 서부트럭터미널 A동 331호
155	1동 3층 11호	남재현	19.14 / 4009	36.00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시범길 20, 1416동 1802호(동탄역시범 한화 꿈에그린프레스티지)
156	1동 3층 12호	임자영	19.14 / 4009	46.91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997(풍산동)
157	1동 3층 13호	김종성	19.14 / 4009	46.91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7길 60-7, 406동 1301호(신정동 푸른마을)
158	1동 3층 14호	구화자 이래현	19.14 / 4009	46.91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188 금빛새마을금고(신월동)
159	1동 3층 15호	김복현 유광용	19.14 / 4009	46.91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59, 104동 601호(신대방동)
160	1동 3층 16호	최윤호	19.14 / 4009	46.91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401, 910호 (목동,부영그린타운 2차)
161	1동 3층 17호	송숙화	19.14 / 4009	46.91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401, 1712호 (목동,부영그린타운 2차)
162	1동 3층 18호	정순주	19.14 / 4009	46.91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 220, 102동 701호(옥길호반베르디움)

연번	호실	소유자	소유면적(㎡)		주소
			토지	건축물	
163	1동 3층 19호	이은자	19.14 / 4009	46.91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70, 104동 1006호(신정동,신정현대아파트)
164	1동 3층 20호	김동진	19.14 / 4009	46.91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67, 서부트럭터미널 A동 320호
165	1동 3층 21호	이희배	19.14 / 4009	46.91	서울시 양천구 월정로9길20, 203동 507호(신월동, 양천벽산블루밍2단지)
166	1동 3층 22호	문경혁	19.14 / 4009	46.91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65, 104동 503호(후암동,브라운스톤 남산아파트)
167	1동 3층 23호	맹유진	19.14 / 4009	46.91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85길16, 102동 1901호(신월동,대주파크빌)
168	1동 3층 24호	정재욱	19.14 / 4009	46.91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430, 101동 1005호(중계동,중앙하이츠)
169	1동 3층 25호	황연화	19.14 / 4009	46.91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188 금빛새마을금고
170	1동 3층 26호	이두호	19.14 / 4009	46.91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 21가길 48-9
171	1동 3층 28호	권영범 권영욱 권영진	19.14 / 4009	46.91	인천시 서구 원당대로 820번2길 18, 5동 402호(당하동,드림하우스)
172	1동 3층 29호	김광진	19.14 / 4009	46.90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45-9, 동산빌라 102호
173	1동 3층 30호	한우섭	19.14 / 4009	46.9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23, 101동 301호(대화동,일산더샵)
174	1동 3층 31호	박은정, 박은진	38.28 / 4009	36.00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67, 서부트럭터미널 A동 331호
	1동 3층 32호			36.00	
175	2동 지하 25호	신동협	19.14 / 4009	47.00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로 4길 7
176	2동 1층 1호	안언철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7길 60-7, 406동 603호(신정동,푸른마을아파트)
177	2동 1층 3호	송현철	19.14 / 4009	45.93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송학동길 36
178	2동 1층 5호	정종석	19.14 / 4009	45.9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152, 파크타운 130동 301호
179	2동 1층 6호	예신희	19.14/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 230, 목동 아이파크 APT 103동 1604호
180	2동 1층 8호	유재성	19.14 / 4009	45.93	서울시 용산구 청과로77가길 17(서계동)
181	2동 1층 9호	민영홍	19.14 / 4009	45.93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 8길 45, 방죽안휴먼시아아파트 102동701호
182	2동 1층 10호	강상원	19.14 / 4009	45.93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죽양대로 498-11(방초리)
183	2동 1층 11호	정재원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340, 925동 801호(신정동,목동신시가지아파트9단지)
184	2동 1층 12호	방경자	19.14 / 4009	45.93	서울시 영등포구 디지털로420, 103동 1003호(보라매 신동아파밀리애)
185	2동 1층 14호	최은지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1길 20, 205동 2003호(신정동,동일하이빌)
186	2동 1층 15호	남호만	19.14 / 4009	45.93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11-15, 103동 1202호(오산원동,푸르지오)
187	2동 1층 16호	서종화	19.14 / 4009	45.9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81, 210동 1002호
188	2동 1층 18호	신광웅	19.14 / 4009	45.93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870, 롯데캐슬이스트폴 102동 1001호
189	2동 1층 19호	설경순	19.14 / 4009	45.93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870, 롯데캐슬이스트폴 102동 1001호
190	2동 1층 21호	전신자	19.14 / 4009	45.9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하이파크 3로 61, 410동 1702호(덕이동,하이파크시티일산파밀리에4단지)
191	2동 1층 23호	전태문	19.14 / 4009	45.93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33, 강변마을 청도 APT 104동 102호
192	2동 1층 24호	박정자	19.14 / 4009	45.93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489, 101동 902호 (가양동,우성아파트)
193	2동 1층 25호	김문길	19.14 / 4009	45.93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 49, 동부골든 APT 201동 1003호
194	2동 1층 26호	이찬영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 17길 22, 302호(대신빌)
195	2동 1층 27호	장유환	19.14 / 4009	45.93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길리 붓드기길 181
196	2동 1층 28호	이지선 이지혜	19.14 / 4009	45.93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 27가길 18, 603호(장안동,장안엘리시아)

연번	호실	소유자	소유면적(㎡)		주소
			토지	건축물	
197	2동 1층 29호	박정효 박기청	19.14 / 4009	45.93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7길 108, 112동 603호(내발산동,마곡수명산파크1단지)
198	2동 1층 30호	권태선	19.14 / 4009	45.93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46-1, 101동 1001호(상도엠코타운센트럴파크)
199	2동 1층 31호	이수범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중앙로 48길 23-1, 4층
200	2동 2층 2호	변지훈	19.14 / 4009	45.93	경기도 부천시 도약로 206,208동 2003호(약대동,부천두산위브트레지운)
201	2동 2층 3호	박춘규	19.14 / 4009	45.93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4길 19, 704동 1005호(장지동,송파파인타운7단지)
202	2동 2층 5호	박기훈	19.14 / 4009	45.93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18길 52-19, 청송평화 하이맨션 204호
203	2동 2층 6호	고영숙 고경숙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67, 서부트럭터미널 B동 206호
204	2동 2층 7호	손은주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70, 225동 101호(목동,목동신시가지아파트)
205	2동 2층 8호	조종희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67, 서부트럭터미널 B동 208호
206	2동 2층 9호	지영옥	19.14 / 4009	45.93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서로 9길 3, 문래현대 APT 502동 1001호
207	2동 2층 10호	신윤민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1길 50-2, 1층 새마을금고(신정동,영광빌딩)
208	2동 2층 11호	최은영 한창우	19.14 / 4009	45.93	서울시 노원구 중계로 233, 102동 1305호(중계동,청구3차)
209	2동 2층 12호	이순분	19.14 / 4009	45.93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 21나길 61-3, 1층 점포 ㈜창성물류(개봉동)
210	2동 2층 13호	노영옥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67, 서부트럭터미널 B동 213호
211	2동 2층 14호 2동 2층 16호	장지수	38.28 / 4009	45.93 45.9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67, 서부트럭터미널 B동 216호
212	2동 2층 15호	이학현	19.14 / 4009	45.93	인천시 계양구 길마로 83, 현대 APT 202동 1401호
213	2동 2층 17호	이무춘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67, 서부트럭터미널 B동 217호
214	2동 2층 18호	오숙자 정현석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67, 서부트럭터미널 B동 218호
215	2동 2층 19호	용마로지스㈜	19.14 / 4009	45.93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78 용마로지스㈜
216	2동 2층 20호	변영진	19.14 / 4009	45.93	경기도 부천시 상동로 90, 808호(상동,메가플러스)
217	2동 2층 21호	전태식	19.14 / 4009	45.93	서울시 금천구 금하로 793, 벽산 APT 1단지 116동 910호
218	2동 2층 22호	조성호 이지영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70, 104동 1403호(신정동, 현대아파트)
219	2동 2층 23호	김영순	19.14 / 4009	45.93	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38, 목동신시가지 APT 1단지 129동 1103호
220	2동 2층 24호	신용한	19.14 / 4009	45.93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종생로 99-5(율생리)
221	2동 2층 25호	김옥순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400, 목동신시가지 APT 1026동 1005호
222	2동 2층 26호	박성희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300, 신정 5차 현대 APT 505동 902호
223	2동 2층 27호	김연희	19.14 / 4009	45.93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 52, 202동 801호(장암동,수락리버시티2단지)
224	2동 2층 30호	김의언	19.14 / 4009	45.93	경기도 부천시 옥산로 83, 1007동 803호(중동,꿈마을)
225	2동 2층 31호	정종렬	19.14 / 4009	45.93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1645, 114동 101호(대야동,두산위브 더파크)
226	2동 2층 32호	김식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83길 17, 104동 201호(신월동,아이파크위브1단지)
227	2동 3층 1호	김복례	19.14 / 4009	46.91	서울시 관악구 은천로 39길 25-4, 201호(봉천동,한스빌)
228	2동 3층 2호	김선미	19.14 / 4009	46.91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70, 신정현대 APT 107동 1202호

연번	호실	소유자	소유면적(㎡)		주소
			토지	건축물	
		박순규			
229	2동 3층 3호	장정희	38.28 / 4009	46.91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 113 (하길리)
	2동 3층 21호			46.91	
230	2동 3층 4호	이교순	19.14 / 4009	46.91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광시동로 551-8
231	2동 3층 5호	한성임	19.14 / 4009	46.9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088-4, 2층
232	2동 3층 6호	박혜영	19.14 / 4009	46.91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7나길 3, 501호(내발산동)
233	2동 3층 7호	양재운	19.14 / 4009	46.91	서울시 양천구 신정4동 969-19, 1층 해조수산
234	2동 3층 8호	한분임	19.14 / 4009	46.91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40, 808동 401호(산본동,한양수리아파트)
235	2동 3층 10호	김성식	19.14 / 4009	46.91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3길 38, 102동 2103호(신정동, 신정이-편한세상)
		김정숙			
236	2동 3층 12호	조건기	19.14 / 4009	46.9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231, 928동 803호(중동,미리내마을)
237	2동 3층 22호	노보규	19.14 / 4009	46.91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67, 서부트럭터미널 A동 326호
		이연주			
238	2동 3층 24호	길영주	19.14 / 4009	46.91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21나길 85-6, 102동 104호(개봉동, 건영아파트)
239	2동 3층 25호	고선희	19.14 / 4009	46.91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11길 20, 동일하이빌 APT 205동 1501호
240	2동 3층 26호	서애순	19.14 / 4009	46.91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56, 112동 2904호(철산동, 래미안자이)
241	2동 3층 27호	임기태	19.14 / 4009	46.91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53, 1동 1906호 (신정동, 동문굿모닝탑)
242	2동 3층 28호	김광수	19.14 / 4009	45.93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225-12, 302동 801호 (신정동,학마을아파트)
243	2동 3층 30호	최영숙	19.14 / 4009	46.91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30, 목동신시가지 APT 1408동 1506호
244	2동 3층 31호	김정원	19.14 / 4009	46.91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 B동 204호 (서초동,현대슈퍼빌)

3) 지장물(변경없음)

구분	규모	소유자	주소
통신시설	1식	SK브로드밴드(주)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258

※ 붙임1. 도시첨단물류단지 관련도면(변경)

가. 도시첨단물류단지 구역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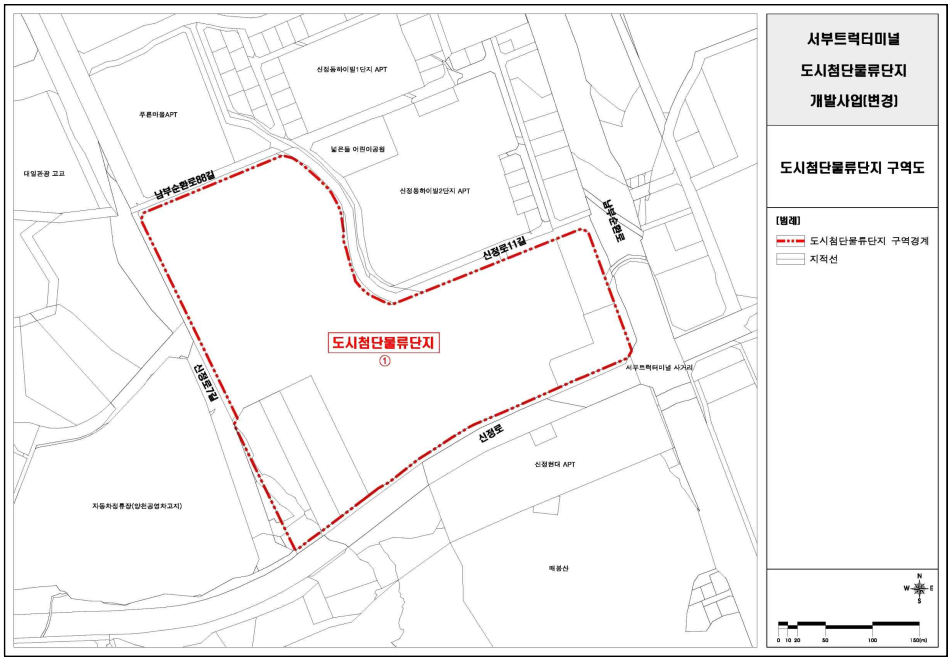

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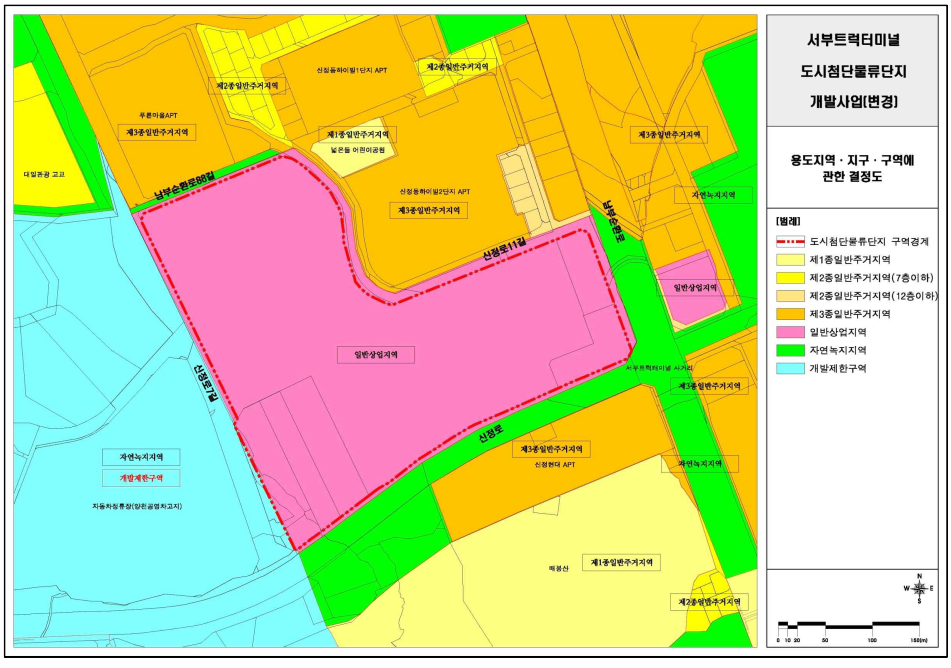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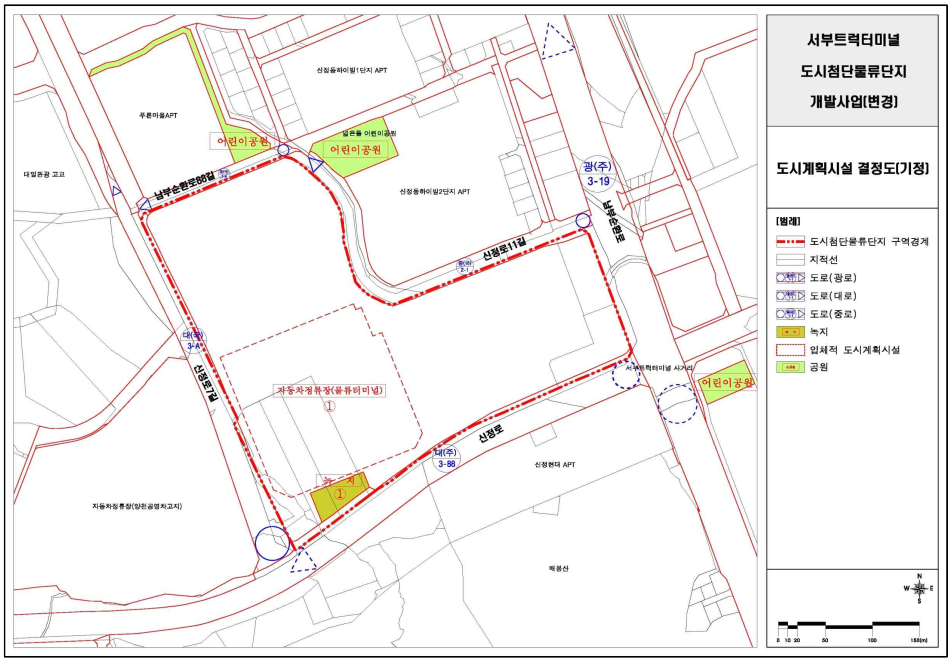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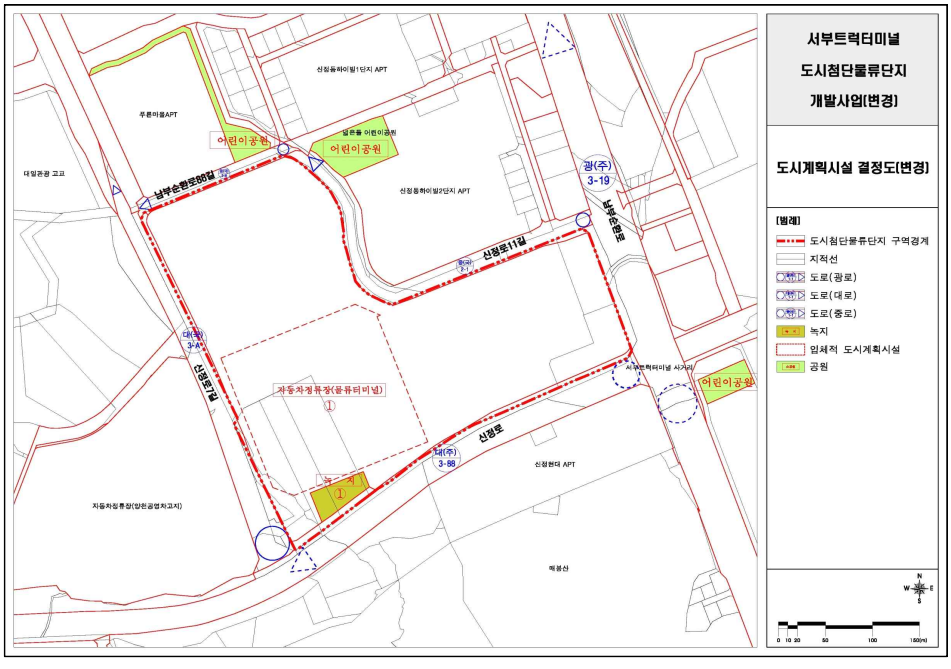

마.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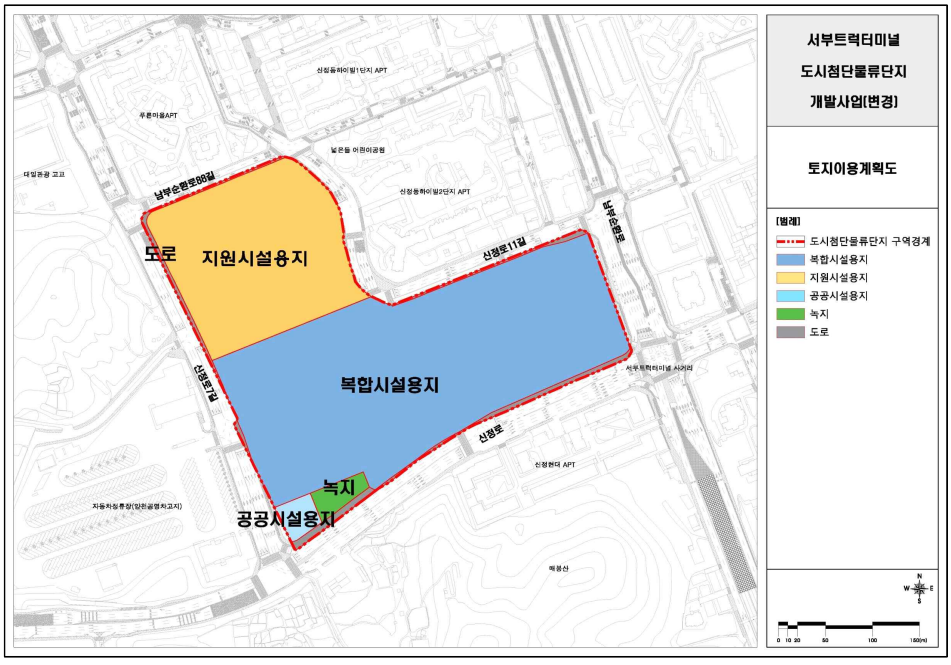

※ 붙임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관련도면(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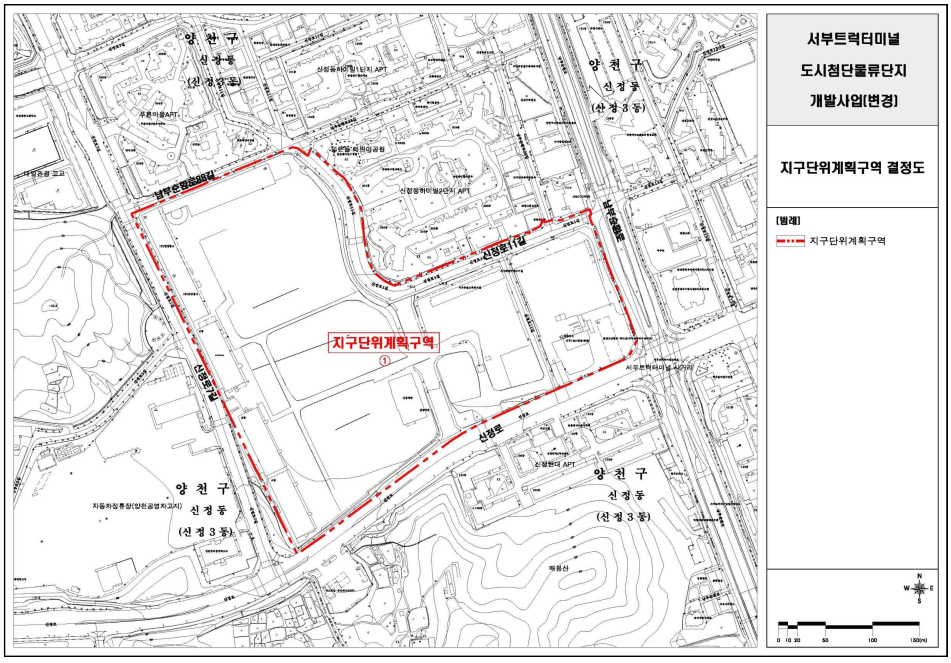

나.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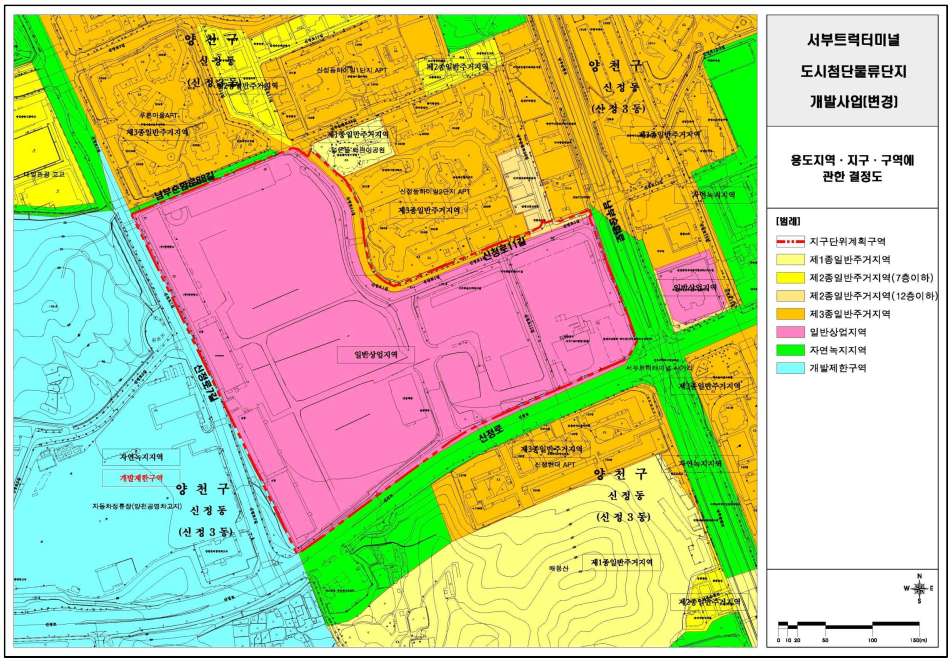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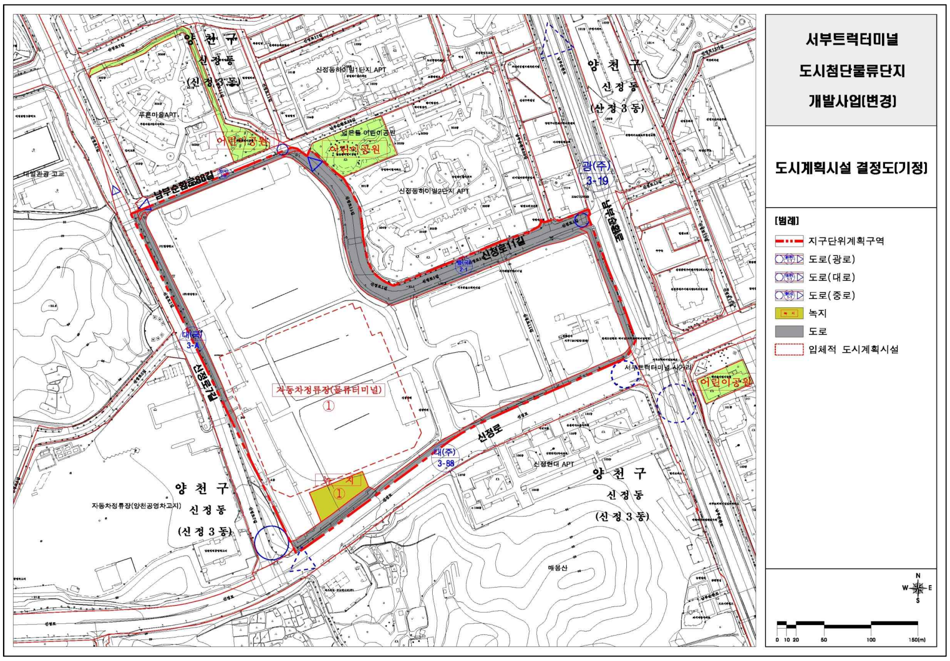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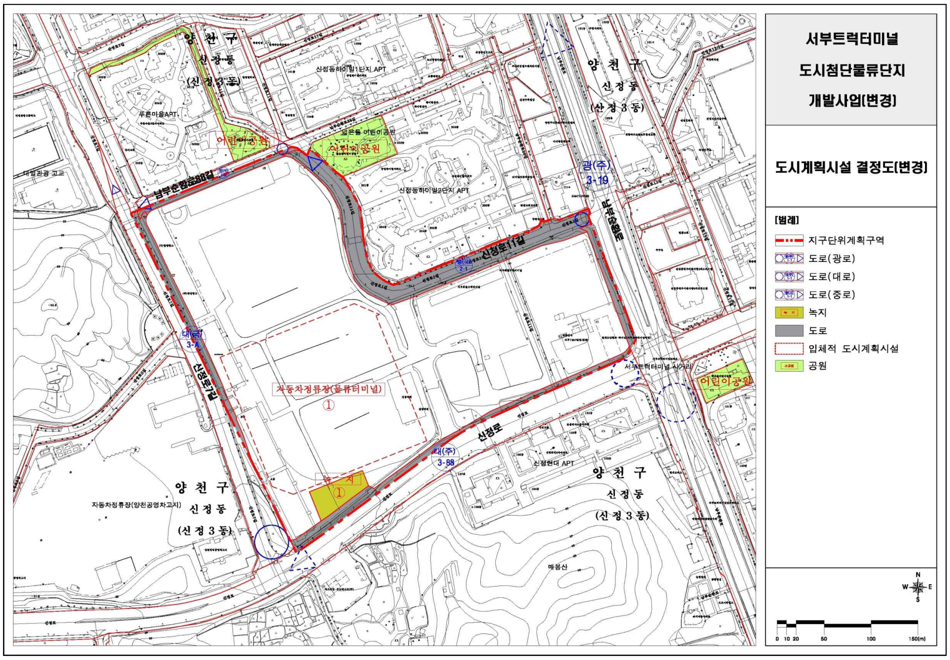

마.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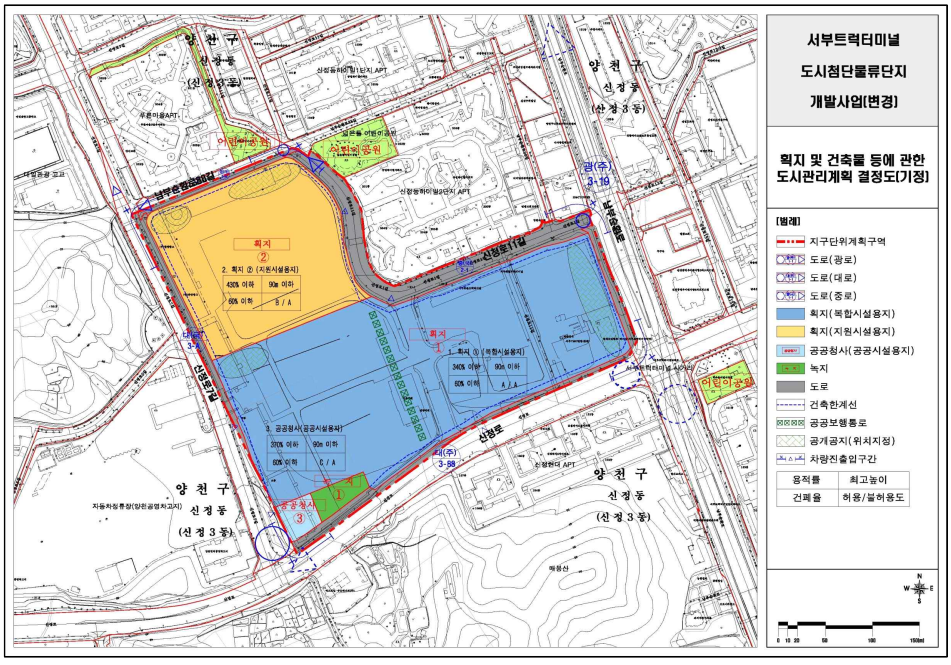

바.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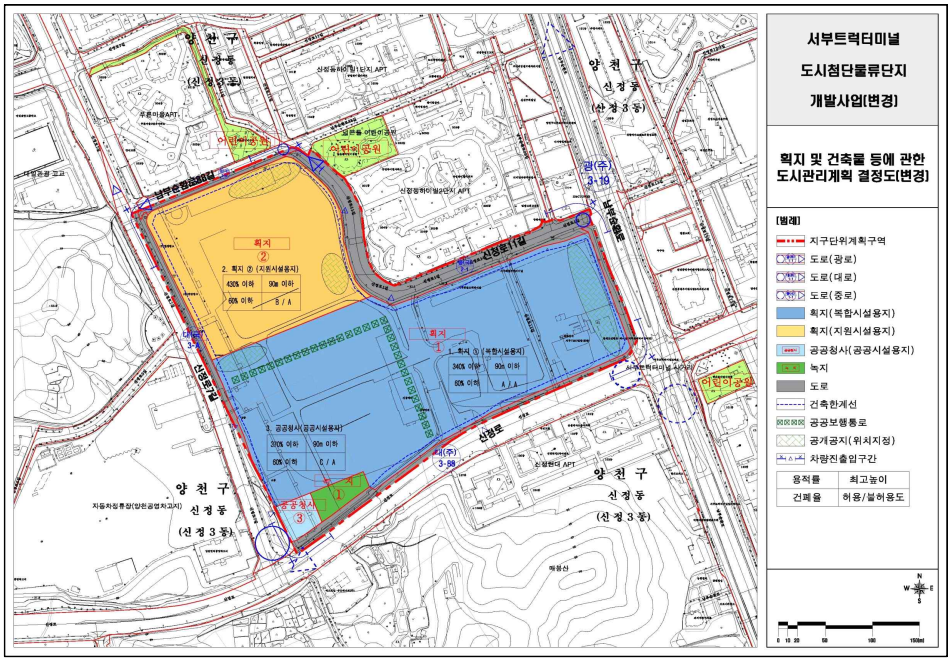

사. 구역 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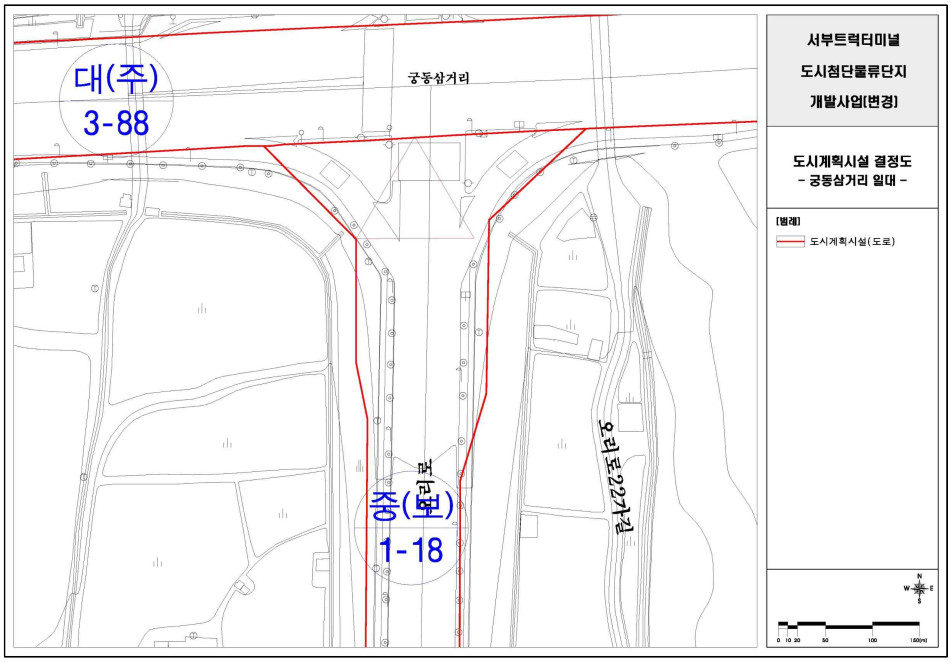

아.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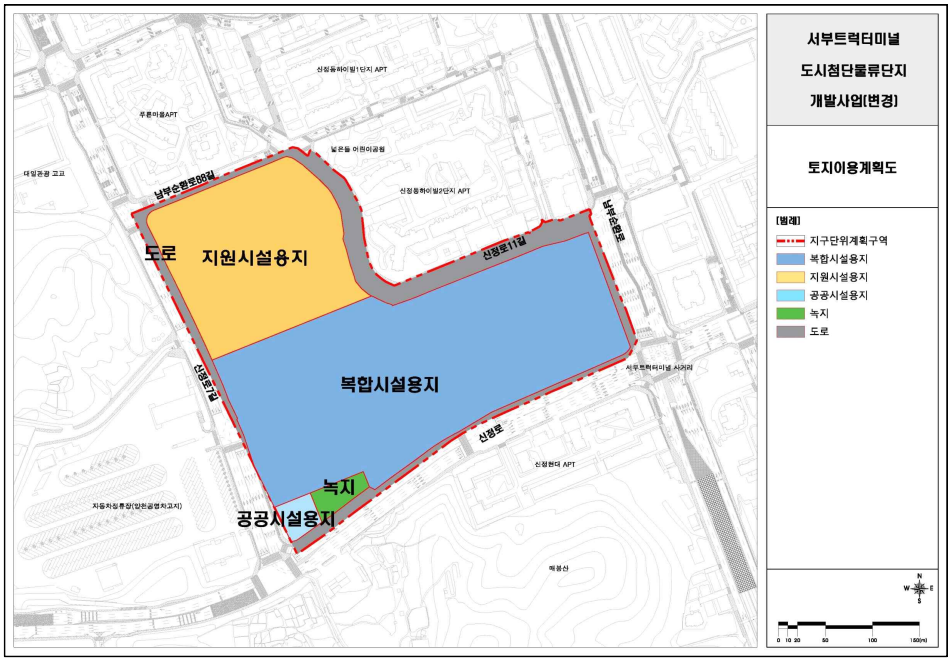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06호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503호(2009.12.10.)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0호(2010.06.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3호(2010.09.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64호(2011.09.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6호(2013.06.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25호(2013.07.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84호(2014.05.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25호(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2호(2016.0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9호(2017.02.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13호(2017.06.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37호(2017.11.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63호(2017.12.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4호(2018.02.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98호(2018.06.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54호(2019.02.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06호(2019.03.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30호(2019.04.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16호(2020.05.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61호(2020.06.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76호(2020.09.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8호(2020.09.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43호(2020.11.0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06호(2022.07.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4호(2023.01.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89호(2023.05.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36호(2023.10.12.),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28호(2023.11.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72호(2024.08.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40호(2025.03.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32호(2025.04.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56호(2025.05.08.)로 변경 결정된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5항 및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합니다.

2.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포함)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지정목적
노량진 재정비 촉진지구	주거지형	동작구 노량진동 270-2번지 일대	704,278.5	동작구 노량진동·대방동 일대의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 밀집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서남생활권의 자족적인 배후주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관리구역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촉진사업의 종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704,278.5	-	704,278.5	-	-
촉진 구역	소계 (8개 구역)		461,076.9	-	461,076.9	-	-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동 278-2번지 일대	132,187.0	-	132,187.0	주택재개발	-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동 312-75번지 일대	16,213.0	-	16,213.0	주택재개발	-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동 232-19번지 일대	72,799.0	-	72,799.0	주택재개발	-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동 227-121번지 일대	40,493.5	-	40,493.5	주택재개발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동 270-3번지 일대	37,809.0	-	37,809.0	주택재개발	-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노량진동 294-220번지 일대	72,822.0	-	72,822.0	주택재개발	-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대방동 13-31번지 일대	33,154.5	-	33,154.5	주택재개발	-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대방동 23-61번지 일대	55,598.9	-	55,598.9	주택재개발	-
존치 구역	소계 (4개 구역)		113,130.0	-	113,130.0	-	-
	노량진9존치관리구역	노량진동 84-11번지 일대	18,606.0	-	18,606.0	-	-
	노량진10존치관리구역	대방동 49-2번지 일대	57,305.0	-	57,305.0	-	-
	노량진11존치관리구역	노량진동 84-18번지 일대	21,642.0	-	21,642.0	-	-
	노량진12존치관리구역	노량진동 310-95번지 일대	15,577.0	-	15,577.0	-	-
존치 시설	소계 (11개 시설)		105,207.0	-	105,207.0	-	-
	6(동작전화국)	-	6,571.0	-	6,571.0	-	-
	7(근린생활시설)	-	5,831.0	-	5,831.0	-	-
	8(영화초/영등포중,고)	-	46,550.0	-	46,550.0	-	-
	9(장성빌딩)	-	4,484.0	-	4,484.0	-	-
	10(장승배기길)	-	18,366.0	-	18,366.0	-	-
	11(동작도서관)	-	1,934.0	-	1,934.0	-	-
	12(노량진천주교교회)	-	2,559.0	-	2,559.0	-	-
	13(송학대교회)	-	5,232.0	-	5,232.0	-	-
	14(송학공원/동아유치원)	-	11,598.0	-	11,598.0	-	-
	15(원명빌딩/현황도로)	-	711.0	-	711.0	-	-
	16(영진교회/현황도로)	-	1,371.0	-	1,371.0	-	-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촉진사업의 종류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시행 구역	노량진1재개발구역	노량진동 122-37번지 일대	17,539.6	-	17,539.6	(주택재개발)	-
	신노량진시장정비사업구역	노량진동 307-9번지 일대	7,325.0	-	7,325.0	(시장정비사업)	-

3.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3-1.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나. 용도지역에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공동이용시설	관리사무소	노량진4 재정비 촉진구역내	402.16	감) 162.66	239.50	
	경로당		335.00	증) 30.40	365.40	
	보육시설		380.00	감) 0.04	379.96	
	작은도서관		411.40	-	411.40	
	주민운동시설		142.98	-	142.98	옥외
	어린이놀이터		1,055.00	-	1,055.00	옥외
	주민편의시설		3,790.74	증) 640.65	4,431.39	
	저출산시설		-	증) 560.00	560.00	(개방운영)
	고령화시설		-	증) 395.00	395.00	(개방운영)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며,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마.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1)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 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	40,493.5	-	-	동작구 노량진동 227-5번지 일대	195	-	-	195	-	-

2)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평균	최고
기정	노량진4 재정비 촉진구역	40,493.5	4-1	31,521.8	동작구 노량진동 227-5번지 일대	공동주택	17.38 이하	263.69 이하	120 이하	25층	35층
			4-2	2,006 (1,909)	동작구 노량진동 225-171번지 일대	공공청사 체육시설	60 이하	200 이하	-	-	7층
변경	노량진4 재정비 촉진구역	40,493.5	4-1	31,521.8	동작구 노량진동 227-5번지 일대	공동주택	18.18 이하	275.47 이하	120 이하	25층	35층
			4-2	2,006 (1,909)	동작구 노량진동 225-171번지 일대	공공청사 체육시설	60 이하	200 이하	-	-	7층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분		계	임대(㎡)					분양(㎡)			
				소계	40이하	40~50	50~60	60~85	소계	60이하	60~85	85초과
	기정	주택(호)	842	149	61	65	23	-	693	287	248	158
		비율(%)	100.00	17.69	7.24	7.72	2.73	-	82.31	34.09	29.45	18.77
	변경	주택(호)	835	126	51	51	20	4	709	230	320	159
		비율(%)	100.00	15.1	6.1	6.1	2.4	0.5	84.9	27.6	38.3	19.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중앙공원(공공공지) 변 : 건축한계선 3m ◦ 15m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 기타 건축선은 건축법 및 주택법등의 관계법규에 따름
대지내 통로 계획 (공공보행통로)	◦ 폭원 6m 이상으로 설치하되 24시간 개방할 것 ◦ 기타 사항은 노량진재정비촉진계획 건축지침도 및 시행지침에 따름

※ 변경사유 : 통합심의 결과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 등 반영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
※ ( )는 노량진4촉진구역 내 면적임

3) 용적률 계획(변경)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 (구역면적)	택지 (공동주택)	신설 정비기반시설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택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40,493.5㎡	31,521.8㎡	9,955.7㎡	1,560.3㎡	1,899.8㎡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순부담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9,955.7㎡ - 1,560.3㎡ - 1,899.8㎡ = 6,495.6㎡ ※ 신설 정비기반시설 : 정비기반시설(8,971.7㎡), 공공시설 토지환산면적(984.0㎡) 포함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217.8% (기준용적률 완화 29.8% 포함)				
상한 용적률	• 기준 용적률 x (1 + 1.3 × 가중치 × α토지) = 217.8% x [1 + 1.3 x 1 x (6,495.6 / 31,521.8)] = 276.14% ※ α토지 = 공공시설등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기준용적률 산정(변경)

용도지역	대지면적(㎡)	기준용적률 산정				비 고
		기 정		변 경		
		용적률 (상향후, %)	연면적 (㎡)	용적률 (상향전, %)	연면적 (㎡)	
소 계	31,521.8	208.0	65,583.20	188.0	59,278.84	
제1종일반	1,245.0	170.0	2,116.50	150.0	1,867.50	
제2종(7층)	572.9	190.0	1,088.51	170.0	973.93	
제2종일반	29,703.9	210.0	62,378.19	190.0	56,437.41	

– 기준용적률 완화(신설)

구분	항 목			완화량	계획
1	주택정책	1인, 신혼 (소형주택)	• 전용40㎡미만(최대5%p), 40~50㎡미만(최대10%p), 50~60㎡미만(최대5%p) ⇒ 계획 10% : 40㎡미만 (5%p), 40~50㎡미만 (5%p) – 39㎡형 : 세대수× 지상연면적/ 대지면적 = 27× 58.4002㎡/ 31,521.8㎡ = 5.002% ≒ 5.0% – 49㎡형 : 세대수× 지상연면적/ 대지면적 = 22× 71.9862㎡/ 31,521.8㎡ = 5.024% ≒ 5.0%	최대 10%	10.0%
2		고령화	• 노인복지시설 : 노인종합복지관(개방운영) • 산식 =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제외)/주민공동시설면적(의무면적))×0.25 (인정시0.3 적용) ⇒ 계획 : 188% × (395㎡ / 2,609.4㎡) × 0.25 = 7.115% ≒ 7.1%	최대 10%	7.1%
3		저출산	• 저출산 및 양육지원시설 : 실내어린이놀이터(개방운영) • 산식 = 기준용적률×(조성면적(의무제외)/주민공동시설면적(의무면적))×0.25 (인정시0.3 적용) ⇒ 계획 : 188% × (560㎡ /2,609.4㎡) × 0.25 = 10.087% ≒ 10.0%	최대 10%	10.0%
4		세대통합	• 최소 전용85㎡ 초과하는 세대구분형 주택 도입 • 산식 = (세대구분형 세대수/전용85㎡ 초과 세대수)×α (전용50㎡미만 0.5 / 50㎡이상 1.0)	최대 10%	–
5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		• 공시지가 보정값이1.0일 경우 0%p, 2.0일 경우 : 10%p (직선보간법적용) • 보정값= (서울시 평균공시지가/사업부지 평균공시지가) (24년 기준) ⇒ 계획 2.7%: 5,969,319 / 4,727,749 = 1.262 ≒ 1.27	최대 10%	2.7%
합 계				최대 30%	29.8%

바.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계획기준	• 임대주택건설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이상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 40㎡이하 ※ 40㎡ 이하 : 40~50㎡ 이하 : 50~60㎡ 이하 = 40~50% : 40~50% : 10~20%		
산출근거	• 전체세대수 : 835세대 •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 126세대 : 835세대 × 15% = 125.25세대 ∴ 126세대 > 125.25세대		
건립규모	세대수	전체 비율	임대주택 비율
합 계	126세대	15.1%	100.00%
40㎡이하	51세대	6.1%	40.48%
40~50㎡이하	51세대	6.1%	40.48%
50~60㎡이하	20세대	2.4%	15.87%
60~85㎡이하	4세대	0.5%	3.17%

※ 변경사유 : 통합심의 결과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 등 반영에 따른 임대주택건설계획 변경

사. 기부채납 계획 및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조서(변경없음)

아. 도시경관과 환견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자.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차. 생태면적률(변경없음)

카. 건축계획(변경)

구 분			기 정	증 감	변 경	비고
구역면적(㎡)			40,493.50	-	40,493.50	
대지면적(㎡)			31,521.80	-	31,521.80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83,119.30	증) 3,713.41	86,832.71	
건축면적(㎡)			5,477.58	증) 253.66	5,731.24	
용적률(%)			263.69	증) 11.78	275.47	
건폐율(%)			17.38	증) 0.80	18.18	
주차대수	아파트	지상 (대)	-	-	-	
		지하 (대)	1,265	증) 70	1,335	
	근생	지하 (대)	6	감) 6	-	
	계 (대)		1,271	증) 64	1,335	

타. 토지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변경)

<table>
<tr><td>추정
비례율</td><td>•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X 100%
• 추정비례율 : 100.30%
⇒ (9,059억 - 7,080억) / 1,973억 X 100 = 100.30%
- 총수입 추정 : 9,059억
- 총지출 추정 : 7,080억
- 종전자산총액 추정 : 1,973억</td></tr>
<tr><td>개별
종전
자산
추정액</td><td>• 감정평가를 통한 종전자산액 산출</td></tr>
<tr><td>추정
분담금
산출</td><td>•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table>
<tr><th colspan="2">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th><th>추정 권리가액(b)</th><th>추정분담금(a-b)</th></tr>
<tr><td>전용39㎡형</td><td>4.64억</td><td rowspan="5">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100.30%)</td><td rowspan="5">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td></tr>
<tr><td>전용49㎡형</td><td>5.73억</td></tr>
<tr><td>전용59㎡형</td><td>6.45억</td></tr>
<tr><td>전용84㎡형</td><td>8.55억</td></tr>
<tr><td>전용106㎡형</td><td>10.80억</td></tr>
</table></td></tr>
</table>

※ 위 분담금 추산액은 관리처분계획 인가(2022.12.19.)의 종전자산 추산액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향후 관리 처분계획(변경)인가 시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2.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나. 용도지역에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063.2	증) 64.8	5,128.0	-
공동 이용 시설	관리사무소	노량진5 재정비 촉진구역 내	347.4	감) 25.2	322.2	-
	경비실		29.6	증) 0.3	29.9	-
	주민공동시설		923.4	감) 122.9	800.5	-
	경로당		260.6	증) 70.7	331.3	-
	보육시설		427.3	증) 10.2	437.5	-
	문고		244.9	증) 177.7	422.6	-
	주민운동시설		1,889.8	감) 37.8	1,852.0	-
	어린이놀이터		940.2	감) 8.2	932.0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며,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변경사유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없음)

2) 건축시설계획(변경)

<table>
<tr><td colspan="2">구역구분</td><td colspan="3">가구 또는 획지구분</td><td rowspan="2">위치</td><td rowspan="2">주된 용도</td><td rowspan="2">건폐율 (%)</td><td rowspan="2">용적률 (%)</td><td rowspan="2">높이 (m)</td><td colspan="2">층수</td></tr>
<tr><td>명칭</td><td>면적(㎡)</td><td colspan="2">명칭</td><td>면적(㎡)</td><td>평균</td><td>최고</td></tr>
<tr><td rowspan="4">노량진5 재정비 촉진구역</td><td rowspan="4">37,809</td><td>기정</td><td>5-1</td><td>26,109.9</td><td>노량진동 273-9번지 일대</td><td>공동 주택</td><td>18.57 이하</td><td>270.63 이하</td><td>90 이하</td><td>-</td><td>30층 이하</td></tr>
<tr><td>변경</td><td>5-1</td><td>26,109.9</td><td>노량진동 273-9번지 일대</td><td>공동 주택</td><td>19.55 이하</td><td>270.58 이하</td><td>90 이하</td><td>-</td><td>30층 이하</td></tr>
<tr><td colspan="2">5-2</td><td>2,977.0</td><td>노량진동 270-3번지 일대</td><td>종교 시설</td><td colspan="4">건축법규에 따름</td></tr>
<tr><td colspan="2">5-3</td><td>330.0</td><td>노량진동 284-1번지 일대</td><td>종교 시설</td><td colspan="4">건축법규에 따름</td></tr>
</table>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분		계	임대(㎡)				분양(㎡)			
				소계	40이하	40~50	50~60	소계	60이하	60~85	85초과
	기정	주택(호)	727(26)	130	52	60	18	597(26)	253	304	40(26)
		비율(%)	100.00	17.88	7.15	8.25	2.48	82.12	34.80	41.82	5.50
	변경	주택(호)	727	130	52	60	18	597	253	304	40
		비율(%)	100.00	17.88	7.15	8.25	2.48	82.12	34.80	41.82	5.5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중앙공원 변 : 건축한계선 3m • 15m, 보행자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6m • 기타 건축선은 건축법 및 주택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름
공공보행통로 계획	• 노량진1구역과 8구역을 연결하는 동서간 공공보행통로 계획(폭7m)

※ ( )는 부분 임대주택

※ 변경사유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건폐율 및 용적률 변경, 부분 임대주택 삭제

바.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사. 기부채납 계획(변경없음)

아.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자.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없음)

차. 생태면적률 : 30%이상 확보(변경없음)

카. 건축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고
구역면적(㎡)	37,809.00	-	37,809.00	
대지면적(㎡)	26,109.90	-	26,109.90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70,662.29	감) 14.14	70,648.15	
건축면적(㎡)	4,848.05	증) 256.08	5,104.13	
건폐율(%)	18.57	증) 0.98	19.55	
용적률(%)	270.63	감) 0.05	270.58	
세대수(세대)	727	-	727	
주차대수(대)	984	증) 95	1,079	

※ 변경사유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건축계획 변경

타. 토지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4-1.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다. 기반시설 결정 조서(변경없음)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2)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가) 건축물의 용도(변경없음)

구 분	가 구	용 도	비 고
주용도	4-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4-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 따름	-

나) 건폐율 계획(변경없음)

구 분	용 도	비 고
4-1	• 60.0% 이하	-
4-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 따름	-

다) 용적률 계획(변경)

구 분		용 적 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4-1	기 정	208.0%	-	263.72% 이하	300.0% 이하	-
	변 경	217.8%		276.10% 이하		
4-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 따름				-

라) 높이 계획(변경없음)

구 분	용 도	비 고
4-1	• 평균 25층 이하 / 최고 35층 이하	-
4-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 따름	-

마)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건축한계선	중앙공원(공공공지) 변	•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
	15m 도로변	•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
	기타	• 기타 사항은 건축법 및 주택법 등에 따름

마.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공공보행통로	공동주택 부지내	• 보행자 통행에 이용 될 수 있도록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폭원 : 6m 이상

2)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비율 (%)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계	임대주택	소형주택	전체세대수 대비	전체비율	공공임대중 소형주택
합 계	835	100.0	126	126	-	15.1	100.00	-
40㎡ 이하	107	12.8	51	51	-	6.1	40.48	-
40~50㎡ 이하	105	12.6	51	51	-	6.1	40.48	-
50~60㎡ 이하	140	16.8	20	20	-	2.4	15.87	-
60~85㎡ 이하	324	38.8	4	4	-	0.5	3.17	-
85㎡ 초과	159	19.0	-	-	-	-	-	-

※ 변경사유 : 통합심의 결과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 등 반영에 따른 임대주택건설계획 변경

4-2.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변경없음)

5. 2025년 제2차(’ 25.10.21.) 도시재정비(수권)소위원회 심의결과
-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 원안가결

6.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붙임(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총괄) 고시) 및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에 명시: 결정(변경) 도서 게재 생략

7. 지형도면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및 동작구 도시정비1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8.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과(☎02-2133- 7224) 및 동작구 도시정비1과(☎02-820-1974~5)에 관련 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노량진4 정비구역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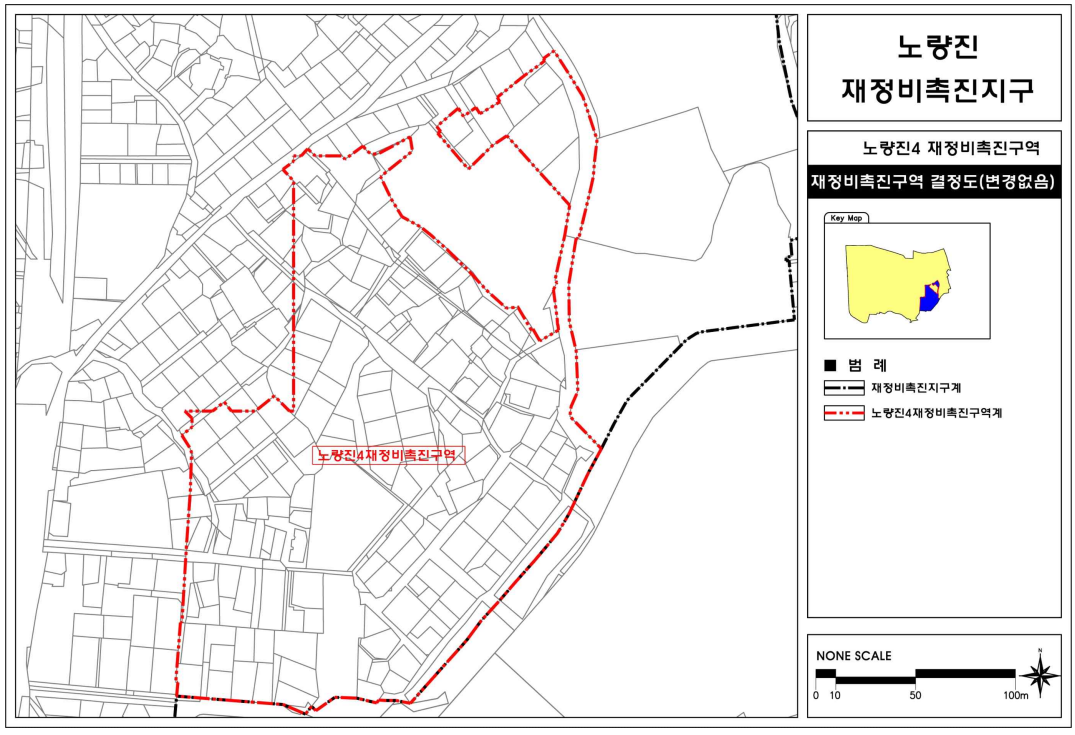

■ 노량진4 토지이용계획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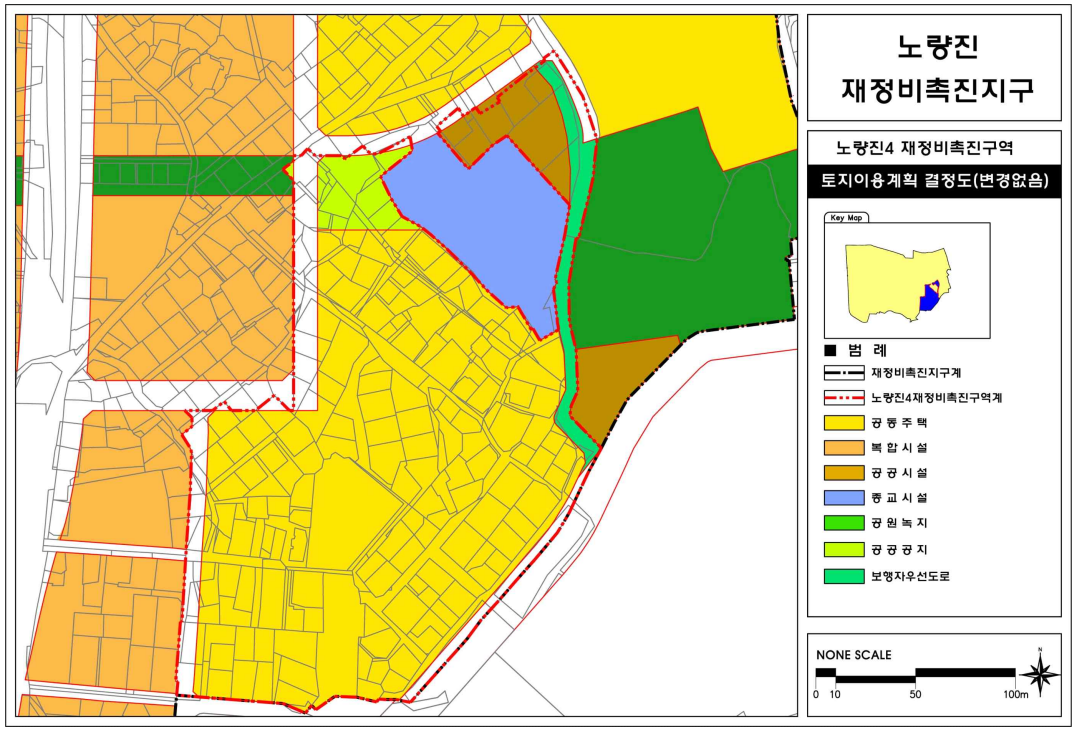

■ 노량진4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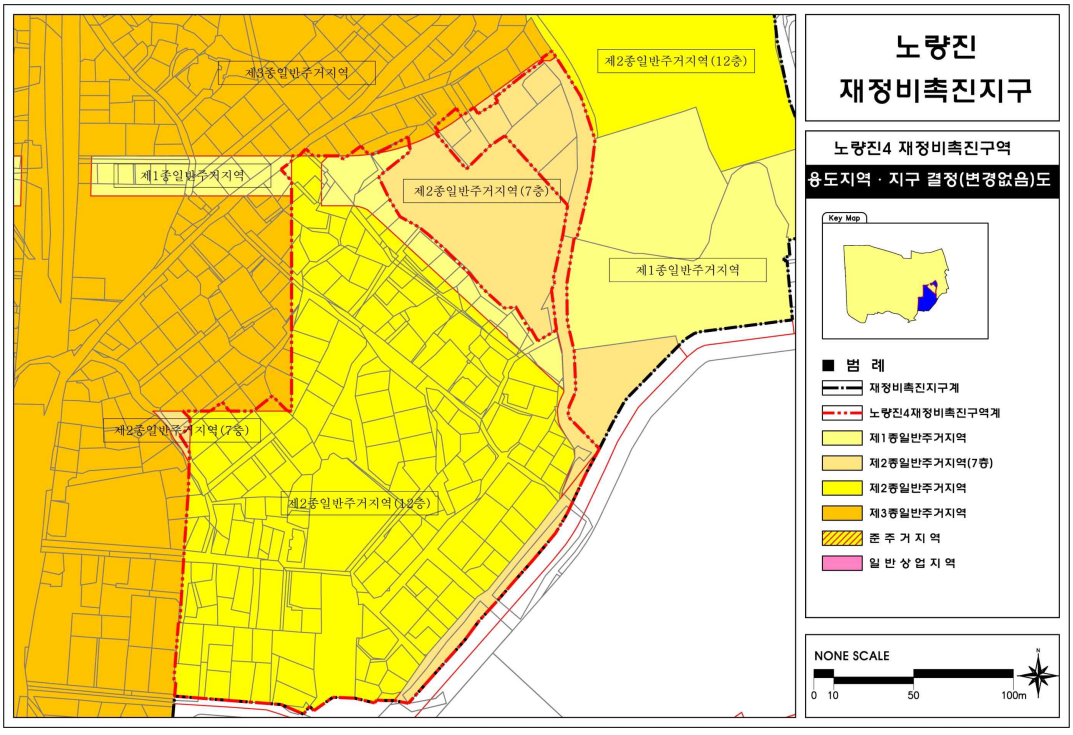

■ 노량진4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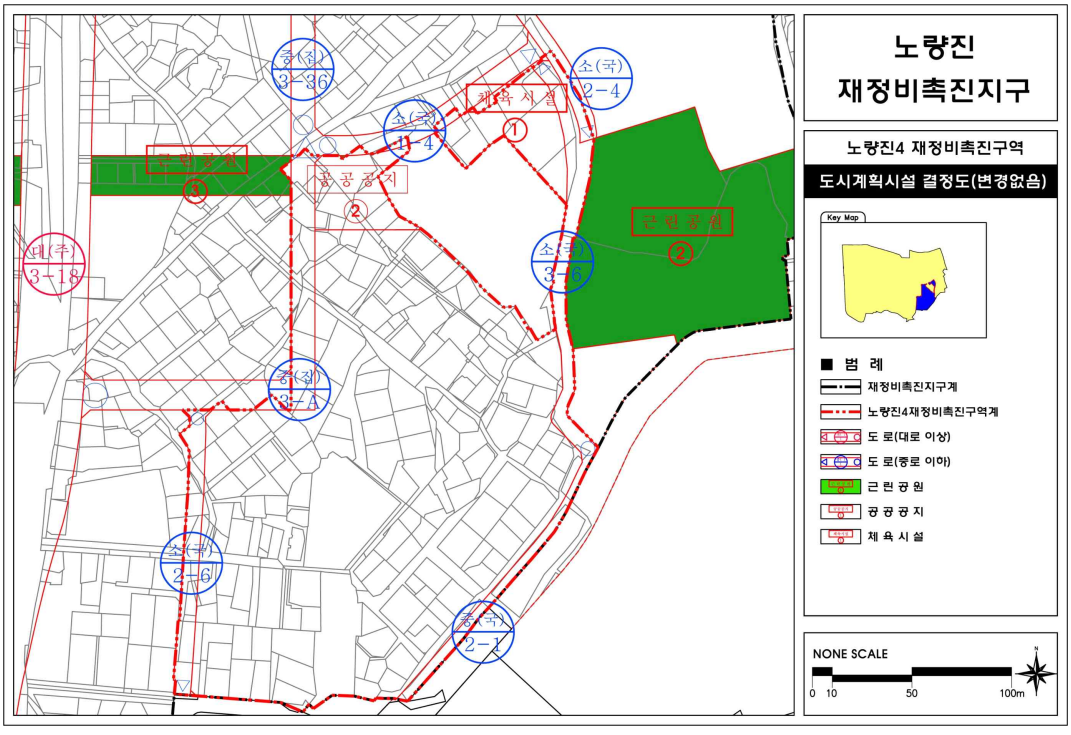

■ 노량진4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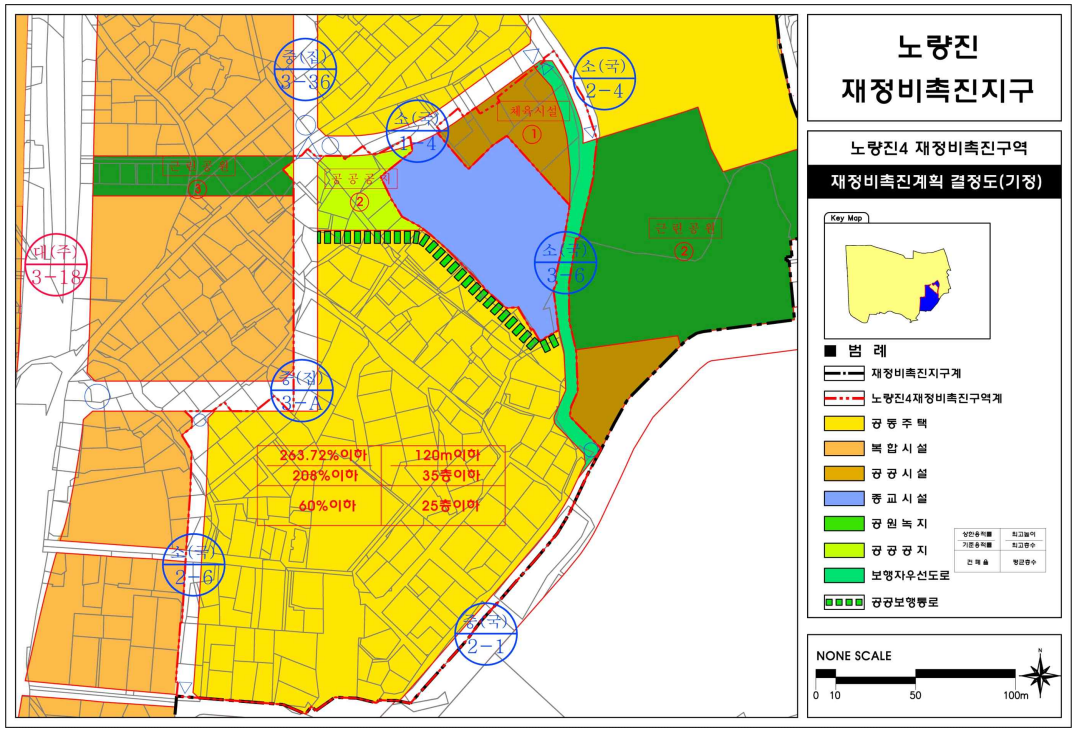

■ 노량진4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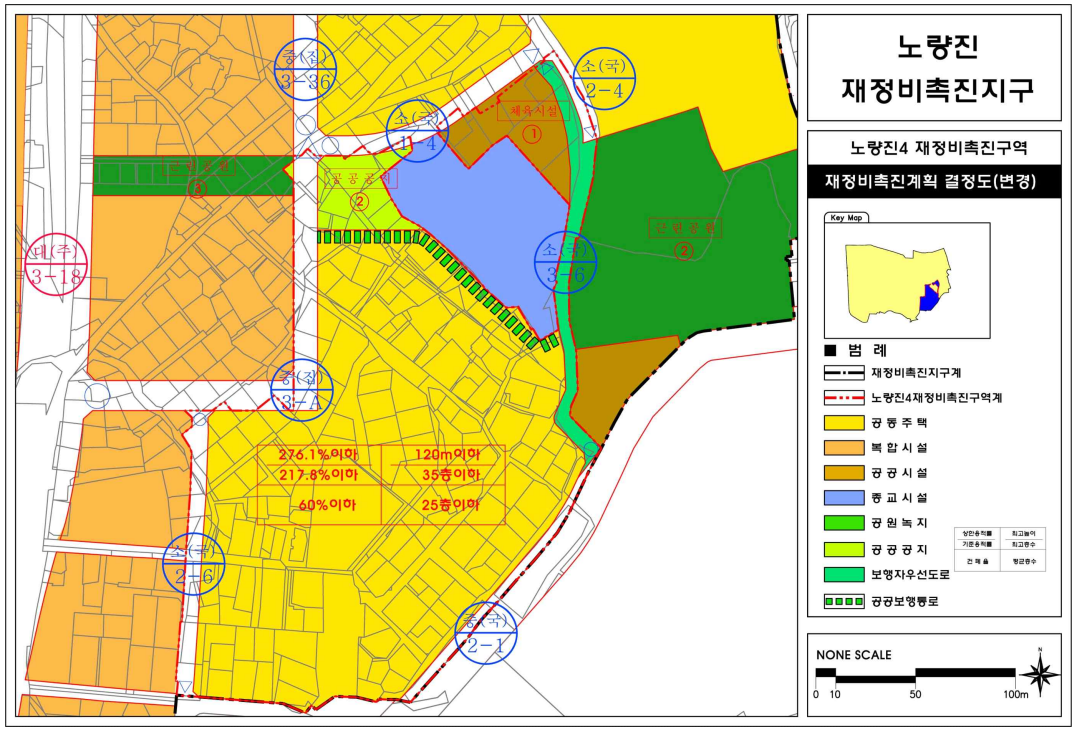

■ 노량진4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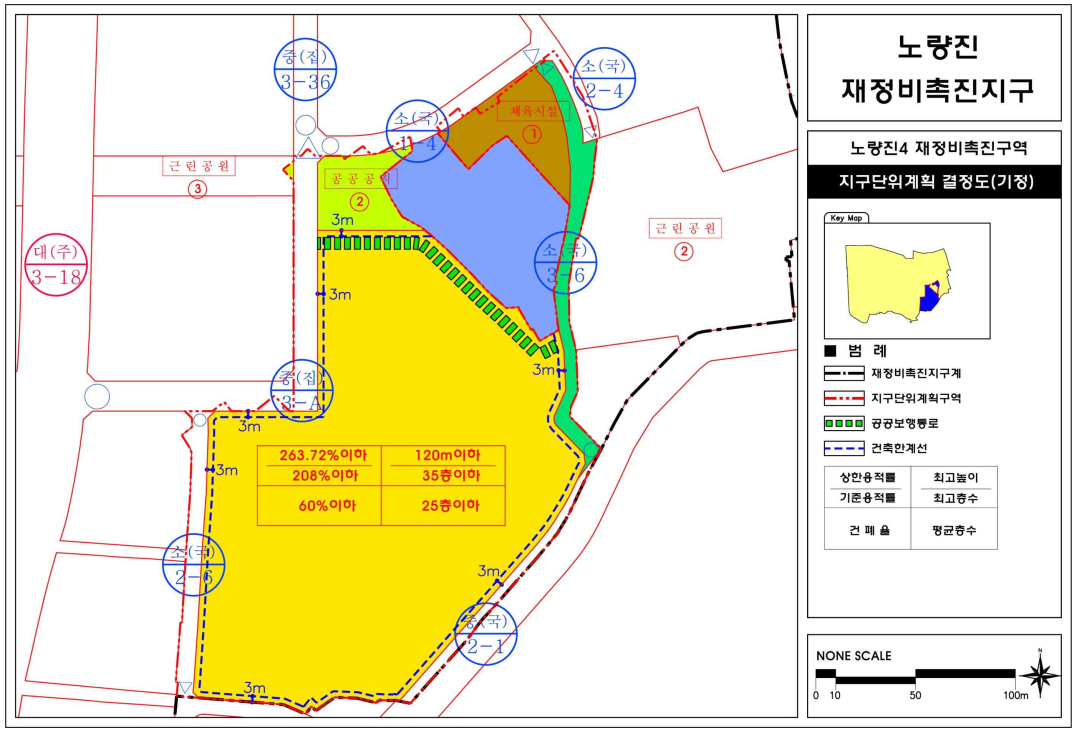

■ 노량진4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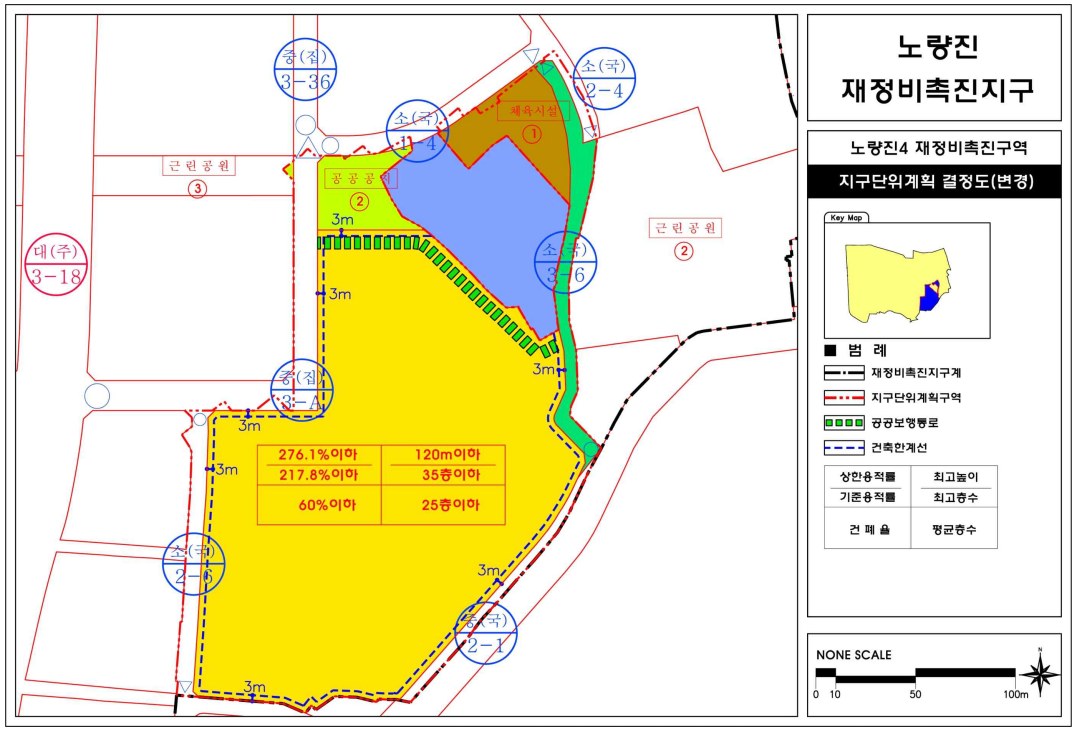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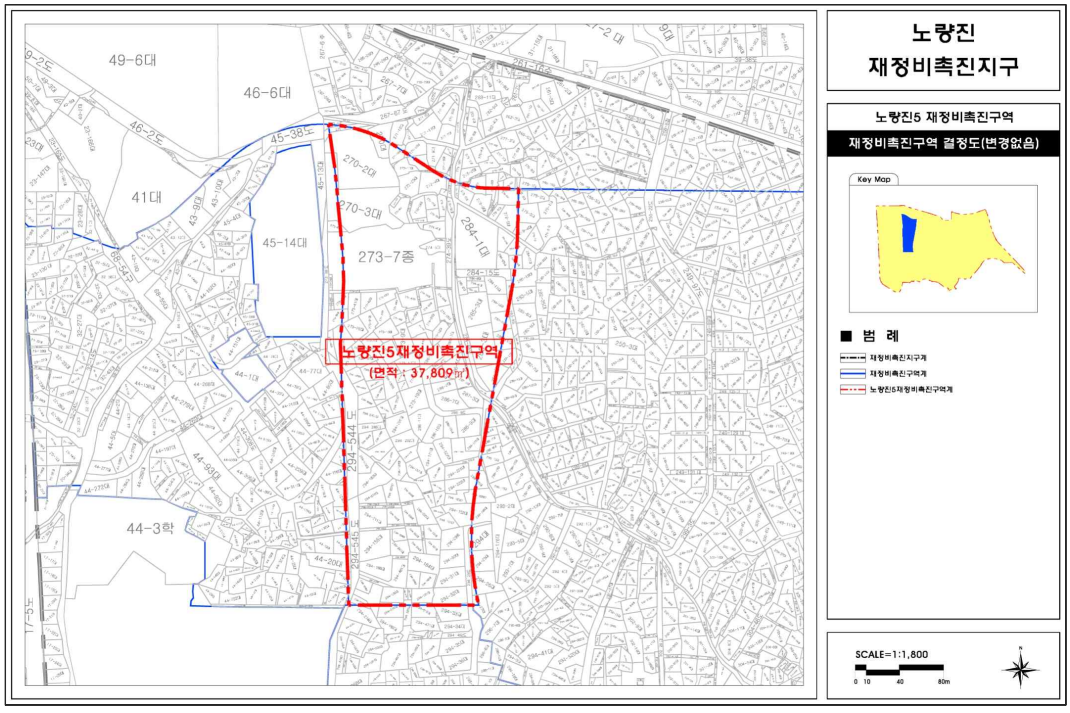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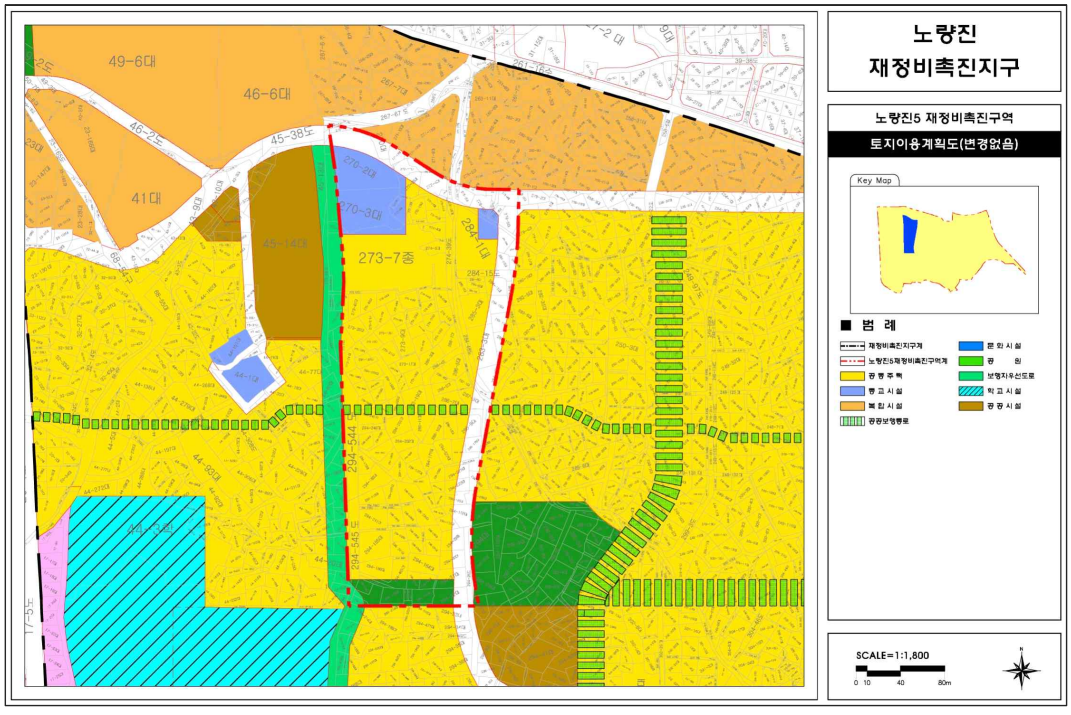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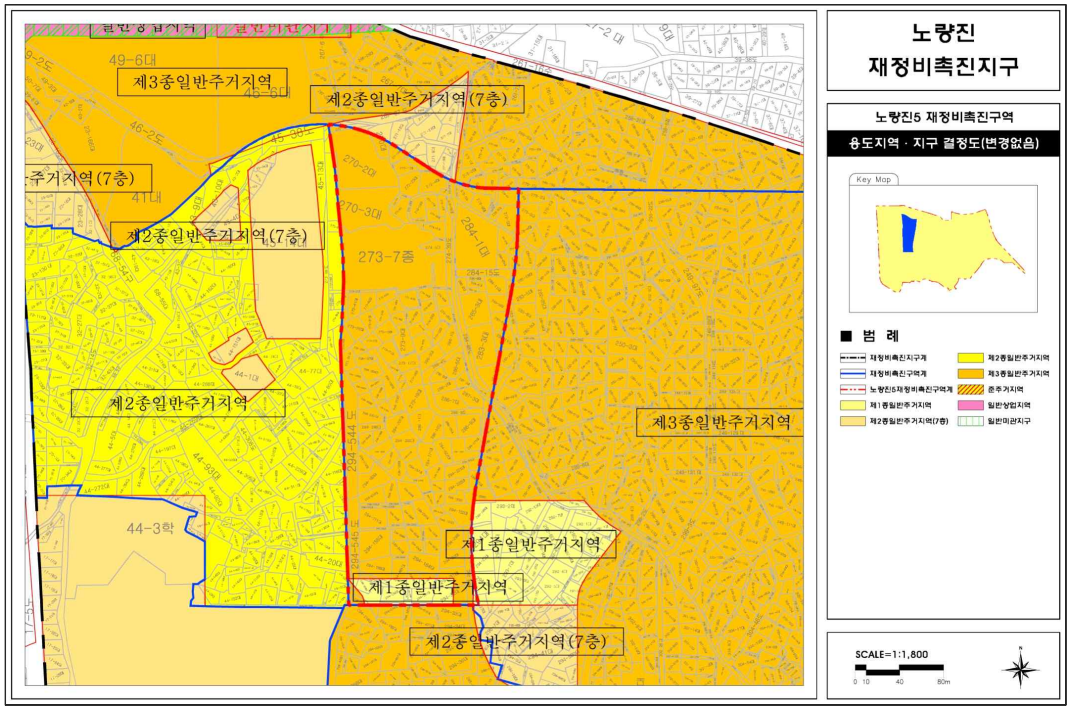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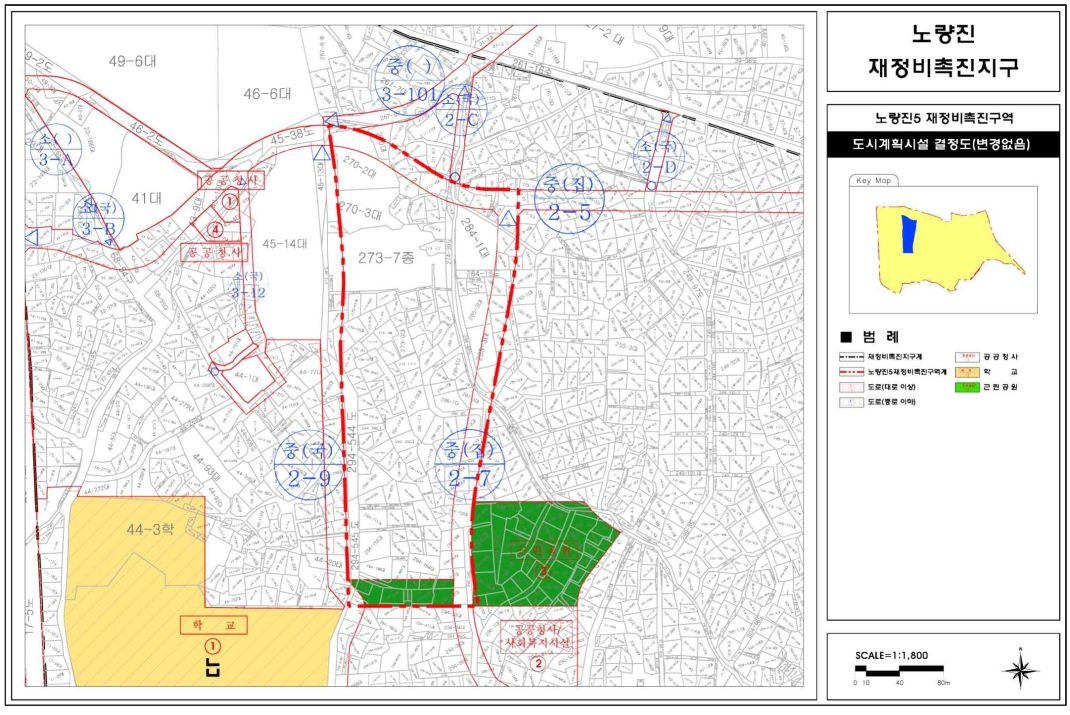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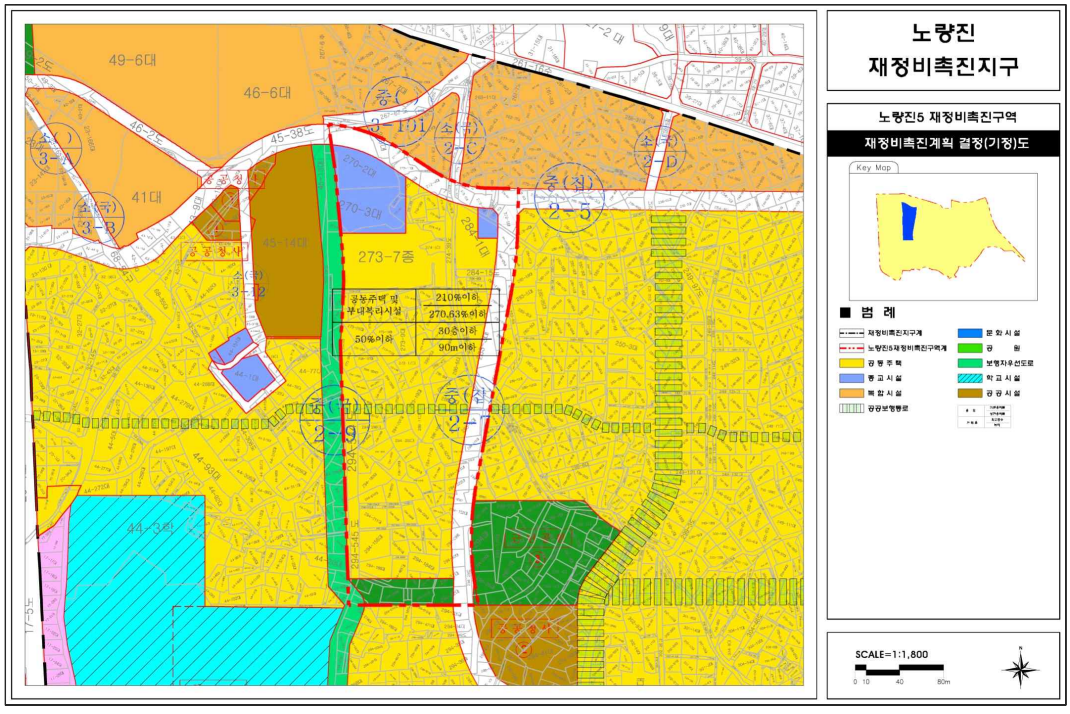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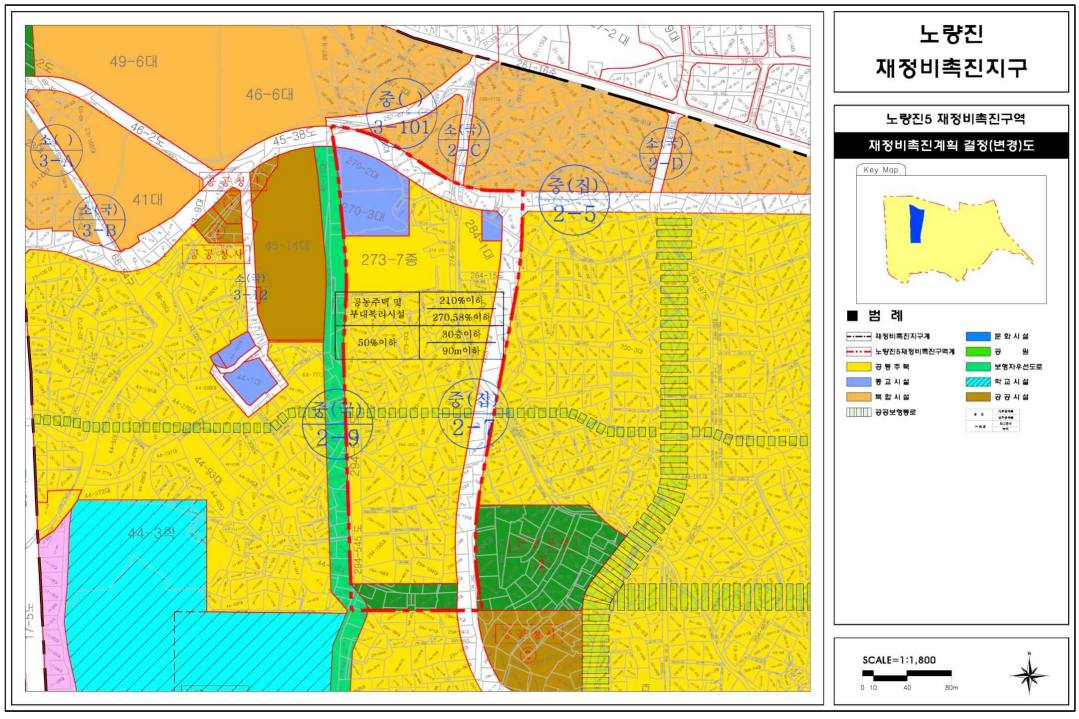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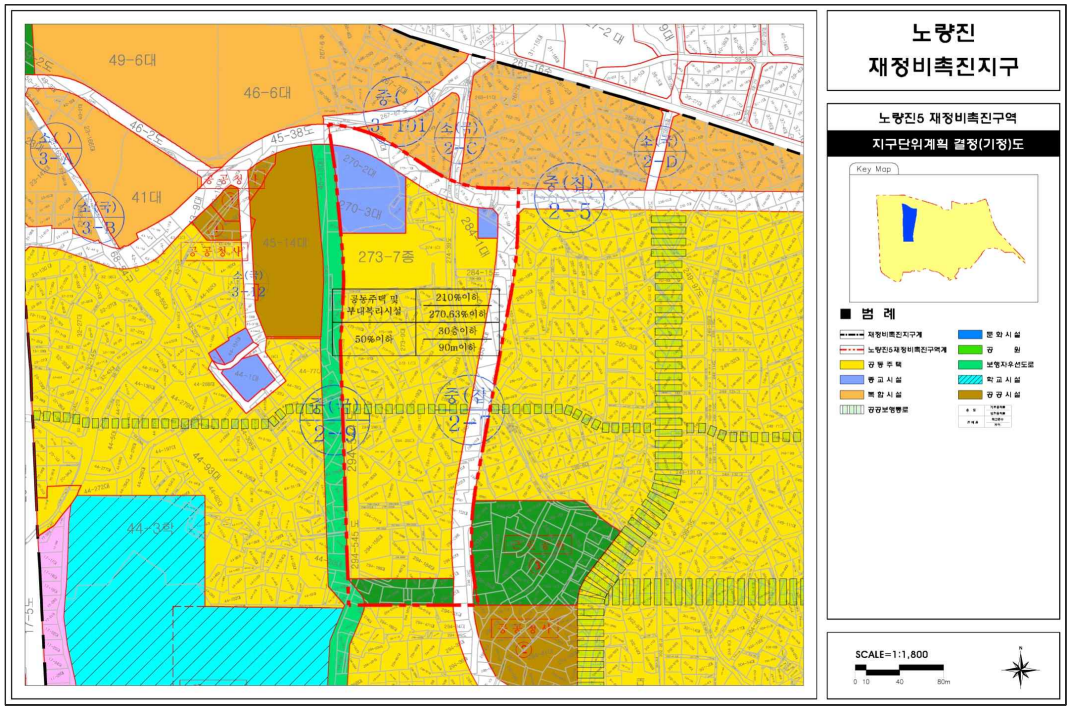

■ 노량진5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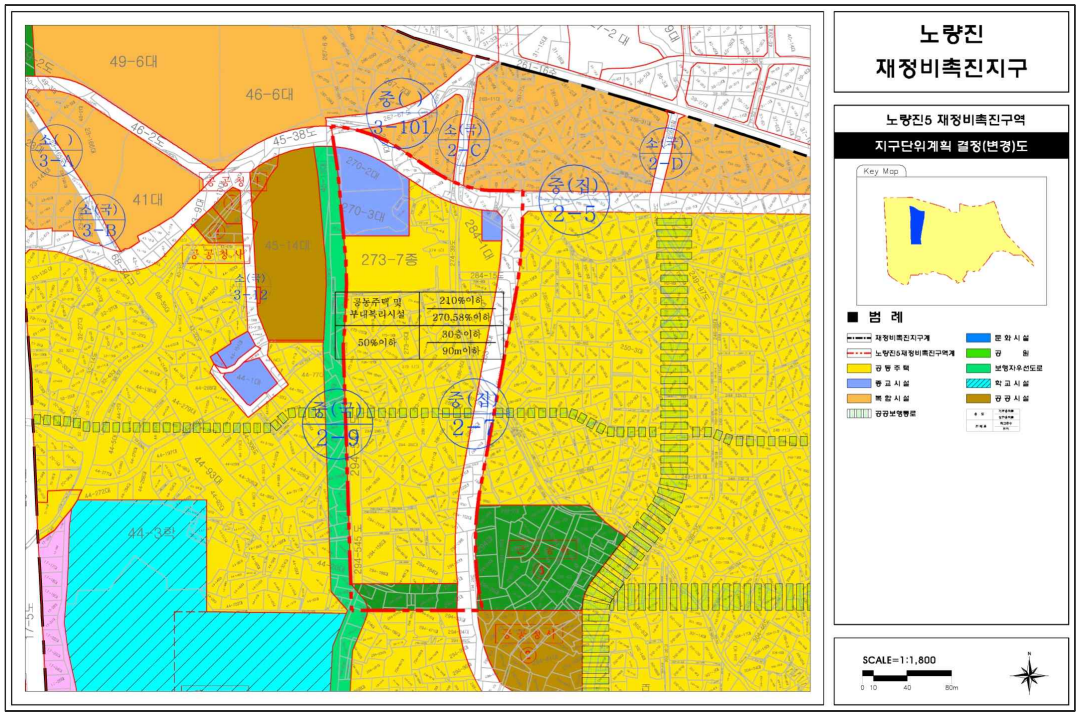

붙임 :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총괄) 고시

1.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동작구 노량진동 270-2번지 일대	704,278.5	-	704,278.5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704,278.5	-	704,278.5	100.0	-
획지	소 계	480,604.8	-	480,604.8	68.2	-
	단독주택	314,314.6	-	314,314.6	44.6	-
	공동주택	146,411.2	-	146,411.2	20.8	-
	복합시설	7,907.0	-	7,907.0	1.1	-
	근린생활시설	11,972.0	-	11,972.0	1.7	-
	종교시설	11,972.0	-	11,972.0	1.7	-
기반시설	소 계	223,673.7	-	223,673.7	31.8	-
	공원녹지	37,402.4	-	37,402.4	5.3	-
	공공시설	20,408.0	-	20,408.0	2.9	-
	공공공지	1,508.0	-	1,508.0	0.2	-
	문화시설	5,571.0	-	5,571.0	0.8	-
	학 교	59,409.0	-	59,409.0	8.5	-
	도 로	99,375.3	-	99,375.3	14.1	-

나. 인구·주택 수용계획(변경)

1) 규모별 주택수용계획

구 분		계획세대 (세대)		인구수 (인)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10,676	10,669	28,691	28,672	
기 시행구역		511	511	1,379	1,379	
존치구역		1,126	1,126	2,906	2,906	
재정비 촉진구역	소 계	9,039	9,032	24,406	24,387	
	40 ㎡이하	1,048	1,075	2,830	2,903	
	40~60㎡	3,512	3,401	9,482	9,183	
	60~85㎡	3,806	3,882	10,276	10,481	
	85 ㎡ 초과	673(81)	674(55)	1,818	1,820	

※ ( )는 부분임대주택(노량진1, 노량진6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사유 :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건축계획 변경, 노량진5 재정비촉진구역 내 부분임대주택 삭제

다.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라. 공원 · 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마. 교통계획(변경없음)

바. 경관계획(변경없음)

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구분	구역 번호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 시행방식	정비유형	비고
기정	1	뉴타운	노량진 1동	232-19	7.3	190%	-	50%	3	주택재개발 사업	전면개발	노량진3 재정비촉진구역
기정	2		노량진 2동	278-2	13.2	210%	-	50%	3	주택재개발 사업	전면개발	노량진1 재정비촉진구역
기정	3		노량진 2동	294-220	7.3	210%	-	50%	3	주택재개발 사업	전면개발	노량진6 재정비촉진구역
기정	22		노량진 2동	312-75	1.6	190%	-	50%	3	주택재개발 사업	전면개발	노량진2 재정비촉진구역
기정 변경	23		노량진 1동	227-5	4.0	210% 217.8%	-	60%	3	주택재개발 사업	전면개발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
기정	24		노량진 2동	270-3	3.8	210%	-	50%	3	주택재개발 사업	전면개발	노량진5 재정비촉진구역
기정	25		대방동	13-31	3.3	195%	-	60%	3	주택재개발 사업	전면개발	노량진7 재정비촉진구역
기정	26		대방동	23-61	5.5	210%	-	60%	3	주택재개발 사업	전면개발	노량진8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사유 :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 반영에 따른 용적률 계획 변경

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자.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없음)

차. 용도지구 변경계획(변경없음)

카.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구역명		구역면적 (㎡)	건폐율(%)		용적률(%)			평균층수/ 최고(높이)층수	비 고
			기준	계획	상한	완화	계획		
노량진1재정비촉진구역		132,187.0	50이하	24.17	300이하	266.08	265.60	- / 33층(110m)이하	기준용적률 20%완화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16,213.0	54이하	49.88	414이하	414.00	408.56	- / 45층(155m)이하	역세권밀도 계획적용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72,799.0	50이하	22.20	250이하	242.67	241.26	- / 30층(110m)이하	-
노량진4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40,493.5	60이하	17.38	300이하	263.72	263.69	25층 / 35층(120m)이하	기준용적률 20%완화
	변경			18.18		276.10	275.47		기준용적률 29.8%완화
노량진5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37,809.0	50이하	18.57	300이하	272.81	270.63	- / 30층(90m)이하	기준용적률 20%완화
	변경			19.55			270.58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72,822.0	50이하	19.51	300이하	272.33	272.32	- / 49층(150m)이하	기준용적률 20%완화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33,154.5	60이하	24.33	240이하	242.06	237.44	18층 / 30층(90m)이하	기준용적률 5%완화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55,598.9	60이하	22.10	300이하	242.05	236.43	22층 / 30층(90m)이하	기준용적률 20%완화

※ 변경사유 :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 반영에 따른 용적률 계획 변경, 노량진5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계획 건폐율, 용적률 변경

타.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없음)

파.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

구분		합계	분양(부분임대)				임대					부분임대
			소계	60㎡ 이하	60~85㎡ 이하	85㎡ 초과	소계	40㎡ 이하	40~50㎡	50~60㎡	60~85㎡	
총계	기정	9,039 (81)	7,418 (81)	2,988	3,757	673 (81)	1,621 [26]	623	595	354	49 [26]	81
	변경	9,032 (55)	7,434 (55)	2,931	3,829	674 (55)	1,598 [26]	613	581	351	53 [26]	55
노량진1촉진구역		2,992 (32)	2,461 (32)	1,322	1,041	98 (32)	531 [26]	214	180	111	26 [26]	32
노량진2촉진구역		404	299	79	179	41	105	-	-	82	23	-
노량진3촉진구역		1,012	838	198	443	197	174	80	74	20	-	-
노량진4 촉진구역	기정	842	693	287	248	158	149	61	65	23	-	-
	변경	835	709	230	320	159	126	51	51	20	4	-
노량진5촉진구역	기정	727 (26)	597 (26)	253	304	40 (26)	130	52	60	18	-	26
	변경	727	597	253	304	40	130	52	60	18	-	0
노량진6촉진구역		1,499 (23)	1,237 (23)	412	753	72 (23)	262	106	106	50	-	23
노량진7촉진구역		576	478	174	301	3	98	40	40	18	-	-
노량진8촉진구역		987	815	263	488	64	172	70	70	32	-	-

※ 변경사유 :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 건축계획 변경, 노량진5 재정비촉진구역 내 부분 임대주택 삭제

※ ( )는 부분임대 세대수, [ ]는 노량진1촉진구역 기부채납 임대주택수

하.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거. 광고물 관리계획(변경없음)

너. 폐기물 관리계획(변경없음)

더. 방재계획(변경없음)

러. 정보화계획(변경없음)

머. 에너지순환계획(변경없음)

버. 특성화계획(변경없음)

서. 기타계획(변경없음)

어.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1) 노량진1구역 ~ 3) 노량진3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4) 노량진4구역(주택재개발사업) ~ 5) 노량진5구역(주택재개발사업) : 생략(본문 내용과 같음)

6) 노량진6구역 ~ 8) 노량진8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07호

『이문 · 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문3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96호(2008.1.7) 및 제2009-93호(2009.03.12.), 제2009-529호(2009.12.24.), 제2010-365호 (2010.10.21), 제2011-198호(2011.07.14.), 제2011-210호(2011.7.21.), 제2011-397호(2011.11.29.), 제2012-78호(2012.4.5.), 제2012-162호(2012.06.28.), 제2012-359호(2012.12.27.), 제2013-263호 (2013.08.08.), 제2014-89호(2014.03.13.), 제2014-290호(2014.08.21.), 제2014-373호(2014.10.30.), 제2015-20호(2015.01.22.), 제2015-206호(2015.7.16.), 제2015-325호(2015.10.22.), 제2016-122호 (2016.04.21.), 제2016-148호(2016.05.26.), 제2016-233호(2016.8.4.), 제2016-285호(2016.9.8.), 제2016-360호(2016.11.10.), 제2016-379호(2016.11.17.), 제2017-13호(2017.1.12.), 제2017-189호 (2017.6.1.), 제2018-93호(2018.3.29.), 제2018-124호(2018.4.26.), 제2018-218호(2018.7.19.), 제2019-19호(2019.1.17.), 제2019-103호(2019.3.21.), 제2019-163호(2019.5.23.), 제2019-241호 (2019.7.25.), 제2019-264호(2019.8.8.), 제2019-280호(2019.8.22.), 제2019-309호(2019.9.19.), 제2020-59호(2020.2.13.), 제2020-255호(2020.6.18.), 제2020-264호(2020.6.25.), 제2020-306호 (2020.7.16.), 제2020-331호(2020.8.6.), 제2020-452호(2020.11.12.), 제2020-483호(2020.11.26.), 제2020-591호(2020.12.31.), 제2021-86호(2021.2.18.), 제2021-131호(2021.3.18.), 제2021-147호 (2021.3.25.), 제2021-178호(2021.4.8.), 제2021-330호(2021.7.8.), 제2021-484호(2021.9.2.), 제2022-498호(2022.12.22.), 제2024-391호(2022.12.22.), 제2024-391호(2024.8.8.), 제2024-605호(2024.12.12.), 제2025-204호(2025.04.17.), 제2025-240호(2025.05.01.), 동대문구고시 제2025-82호(2025.05.15.), 제2025-85호(2025.05.22.)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지형도면 작성 고시된 이문 · 휘경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문 · 휘경재정비 촉진계획(이문3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변경) 결정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이문 · 휘경	주거지형	동대문구	802,027.4	증) 10	802,037.4	-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재정비촉진지구		이문 · 휘경동 일원				

※ 이문3-1구역 내 누락된 필지(이문동 135-41번지) 추가에 따른 변경(선형 변경없음)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 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802,027.4	증) 10	802,037.4	100.0	-
주거용지	소 계	457,581.7	증) 10	457,591.7	57.1	-
	공동주택	445,960.2	증) 10	445,970.2	55.6	중앙 · 삼익 · 금호(사업완료) 포함
	주상복합	11,621.5	-	11,621.5	1.4	KCC 웰츠타워 등
종교용지	소 계	6,407.0	-	6,407.0	0.8	-
	종교시설	6,407.0	-	6,407.0	0.8	6개
근생용지	소 계	86,318.5	-	86,318.5	10.8	-
	상업업무	84,898.0	-	84,898.0	10.6	이문 · 회기 지구단위계획구역
	근린생활시설용지	1,420.5	-	1,420.5	0.2	이문3 · 4구역, 휘경2구역(획지6-2)
공공시설용지	소 계	251,720.2	-	251,720.2	31.4	-
	도 로	135,638.7	-	135,638.7	16.9	보행자전용도로 포함
	철 도	44,411.5	-	44,411.5	5.5	-
	공 원	36,945.4	-	36,945.4	4.6	-
	녹 지	10,259.3	-	10,259.3	1.3	연결녹지, 철도변 완충녹지
	학 교	9,781.6	-	9,781.6	1.2	초등학교 1개교
	복합커뮤니티센터	7,906.3	-	7,906.3	1.0	4개소 - 3개소 : 도시계획시설 결정 - 1개소 : 도시계획시설 제외(4구역)
	공공청사등	4,563.4	-	4,563.4	0.6	공공청사, 광장, 공공공지, 방수설비
	주 차 장	2,214.0	-	2,214.0	0.3	지하주차장2개소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5,530㎡ 중복결정 제외)

※ 이문3-1구역 내 누락된 필지(이문동 135-41번지) 추가에 따른 변경(선형 변경없음)

2) 인구·주택수용계획 (변경없음)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변경없음)
5) 교통계획 (변경없음)
6) 경관계획 (변경없음)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없음)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촉진지구		802,027.4	증) 10	802,037.4	100.0	
촉진구역		570,981.4	증) 10	570,991.4	71.2	-
이문1구역		145,937.3	-	145,937.3	18.2	-
이문3구역		154,783.0	증) 10	154,793.0	19.3	결합개발 구역
이문3-1구역		133,542.0	증) 10	133,552.0	16.7	구역지정 요건 완화, 역세권
이문3-2구역		21,241.0	-	21,241.0	2.6	구릉지
이문4구역		149,481.2	-	149,481.2	18.6	-
휘경1구역		12,967.7	-	12,967.7	1.6	정비구역 기 지정
휘경2구역		43,685.3	-	43,685.3	5.4	-
휘경3구역		64,126.9	-	64,126.9	8.0	-
존치지역		231,046.0	-	231,046.0	28.8	-
지구단위 계획구역	소 계	156,347.0	-	156,347.0	19.5	-
	②	67,495.2	-	67,495.2	8.4	이문지구단위계획
	③	88,851.8	-	88,851.8	11.1	회기지구단위계획(촉진지구내)
존치시설 및 건축물	소 계	74,699.0	-	74,699.0	9.3	-
	⑤	4,877.0	-	4,877.0	0.6	웰츠타워(주상복합) 등
	⑥	12,993.0	-	12,993.0	1.6	이문로
	⑦	11,776.0	-	11,776.0	1.5	중앙하이츠 아파트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⑧	17,243.0	-	17,243.0	2.1	경원선
	⑨	8,446.0	-	8,446.0	1.1	삼익아파트
	⑩	1,319.0	-	1,319.0	0.2	빗물펌프장(방수설비)
	⑪	7,298.0	-	7,298.0	0.9	중앙선
	⑫	6,357.0	-	6,357.0	0.8	기타 존치건축물
	⑬	3,196.0	-	3,196.0	0.4	이문동 교회
	⑭	1,194.0	-	1,194.0	0.1	중랑제일교회

※ 이문3-1구역 내 누락된 필지(이문동 135-41번지) 추가에 따른 변경(선형 변경없음)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802,027.4	증) 10	802,037.4	100.0	
주거지역	소 계	791,168.4	증) 10	791,178.4	98.6	
	제1종 일반주거지역	21,241.0	-	21,241.0	2.6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126,469.2	-	126,469.2	15.8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8,963.0	-	258,963.0	32.3	
	제3종 일반주거지역	270,851.5	-	270,851.5	33.8	
	준주거지역	113,643.7	증) 10	113,653.7	14.2	
상업지역	소 계	10,859.0	-	10,859.0	1.4	
	일반상업지역	10,859.0	-	10,859.0	1.4	

※ 이문3-1구역 내 누락된 필지(이문동 135-41번지) 추가에 따른 변경(선형 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구 변경계획 (변경없음)

11)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

구역명	주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계획	
		기준	상한		평균층수 / 최고층수	최고높이(m)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0%	247.64%이하	30%이하	18.8이하 / 27이하	103이하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	-	-	-	-	-
이문3-1 기정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0%	477.89%이하	45%이하	35이하 / 50이하	185이하
이문3-1 변경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0%	477.88%이하	45%이하	35이하 / 50이하	185이하
이문3-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70%	75%이하	40%이하	/ 40이하	20이하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0%	316.70%이하	35%이하	- / 43이하	140이하
휘경1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30%	265%이하	30%이하	19이하 / 20이하	78이하
휘경2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0%	300%이하	30%이하	25이하 / 30이하	112이하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0%	300%이하	30%이하	26이하 / 35이하	118이하

※ 이문3-1구역 내 누락된 필지(이문동 135-41번지) 추가에 따른 용적률 변경

12)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변경)

구 분	촉진구역 (㎡)									
	구분	소계	이문1	이문 3			이문4	휘경1	휘경2	휘경3
				소계	3-1	3-2				
촉진구역(㎡)①	기정	570,981.4	145,937.3	154,783.0	133,542.0	21,241.0	149,481.2	12,967.7	43,685.3	64,126.9
	변경	570,991.4		154,793.0	133,552.0					
분담률(%)②	기정	21.26								
계획기반시설(㎡)③	기정	144,407.4	28,862.2	34,326.0	34,326.0	-	43,862.2	1,855.7	13,892.4	21,608.9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④	기정	23,117.7	-	1,280.0	1,280.0	-	10,939.0	563.0	6,371.0	3,964.7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⑤	기정	9,079.48	3,429.98	-	-	-	5,389.5	-	260.0	-
계획기반시설중 유상매입시설면적(㎡)⑥	기정	-	-	-	-	-	-	-	-	-
순부담제외면적(㎡)⑦	기정	2,043.0	-	2,043.0	2,043.0	-	-	-	-	-

구 분	촉진구역 (㎡)									
	구분	소계	이문1	이문 3			이문4	휘경1	휘경2	휘경3
				소계	3-1	3-2				
건축물 토지환산면적(㎡)⑧	기정	11,087.1	-	3,999.0	3,999.0	-	7,088.1	-	-	-
순분담면적(㎡) (B=③-④-⑤+⑥-⑦+⑧) (순부담비율)	기정	121,254.32 (21.2%)	25,432.22 (17.4%)	35,002.0 (22.6%)	35,002.0 (26.2%)	-	34,621.8 (23.2%)	1,292.7 (10.0%)	7,261.4 (16.6%)	17,644.2 (27.5%)

주) 이문3(3-1), 이문3(3-2)재정비촉진구역은 서울시 '결합개발제도 운영기준' 에 의한 결합개발구역으로서 하나의 구역으로 공원·녹지면적산정
주) 휘경1재정비촉진구역은 30,000㎡ 이하의 기 결정된 정비구역으로 2㎡/세대 기준 적용
주) 이문3재정비촉진구역의 순부담면적은 인센티브 제외 도로(1,827㎡) 및 이전이 기 결정된 보건소 부지면적(216㎡)은 불포함한 수치임.
주) 이문3재정비촉진구역은 추가로 건축물(이문1동 주민센터, 임대주택, 공영주차장, 토지환산면적 2,971㎡)을 기부채납함.
주)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계획기반시설(49,016.5㎡) 중 4,472.5㎡는 지하차도 설치비용, 사회복지시설 용지내 사회복지시설(연면적 800㎡) 및 지하주차장(연면적 1,200㎡) 을 부지면적으로 환산하여 추가 적용
- 지하차도 설치비용 환산부지면적(3,413.3㎡)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15,407,000천원) ÷ 공시지가 2배(4,514천원)
- 사회복지시설 환산부지면적(488.9㎡) = 공공시설 설치비용(2,663천원) * 연면적(800㎡)/공시지가2배(4,357천원)
- 지하주차장 환산부지면적(570.3㎡) = 공공시설 설치비용(2,071천원) * 연면적(1,200㎡)/공시지가2배(4,357천원)
※ 이문1구역 서울시토지 유상매각 불요 필지 반영 : 이문동264-187(23㎡), 이문동264-188(20㎡), 이문동 292-251(50㎡)
※ 이문3-1구역 내 누락된 필지(이문동 135-41번지) 추가에 따른 변경(선형 변경없음)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변경없음)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5) 기타 계획(에너지순환계획, 방재계획, 정보화계획, 특성화계획, 친환경건축물 가이드라인) (변경없음)
16) 광고물 관리계획 (변경없음)
17)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8)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이문3구역 외 변경없음)
(1) 이문3(3-1)구역(재개발사업) (변경)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 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이문3(3-1) 재정비촉진구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149-8 일원	133,542.0	증) 10	133,552.0	

※ 구역 내 누락된 필지(이문동 135-41번지) 추가에 따른 변경(선형 변경없음)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33,542	증) 10	133,552	100.0	
주거지역	소계	130,442	증) 10	130,452	97.7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제2종일반주거지역	34,391	-	34,391	25.8	
	준주거지역	96,051	증) 10	96,061	71.9	
상업지역	소계	3,100	-	3,100	2.3	
	일반상업지역	3,100	-	3,100	2.3	

※ 구역 내 누락된 필지(이문동 135-41번지) 추가에 따른 변경(선형 변경없음)

다) 정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율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33,542	증) 10	133,552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34,326	-	34,326	25.7	
	도 로	19,649	-	19,649	14.7	
	공 원	12,967	-	12,967	9.7	
	공공청사	1,408	-	1,408	1.1	
	주차장	262	-	262	0.2	
	철도용지	40	-	40	0.0	
택 지 (획지)	소 계	99,216	증) 10	99,226	74.3	
	3-1-1	53,292	-	53,292	39.9	공동주택 및 비주거
	3-1-2	42,482	증) 10	42,492	31.8	공동주택 및 비주거
	3-1-5	450	-	450	0.3	종교시설(성결교회)
	3-1-6	371	-	371	0.3	종교시설(원불교)
	3-1-7	2,364	-	2,364	1.8	근린생활시설
	3-1-8	257	-	257	0.2	근린생활시설

※ 구역 내 누락된 필지(이문동 135-41번지) 추가에 따른 변경(선형 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① 도로 (변경없음)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9	20~25	보조 간선	4,000 (270)	휘경지서앞 중1-8호선	번동98-1 대3-39호선	일반 도로	총고시 722 (1936.12.26)	-
기정	대로	2	A	20~32	집산 도로	463 (291)	이문동 86-139	이문동 258-25	일반 도로	서고2007-496 (2008.01.07)	-
기정	중로	1	-	15~21	국지 도로	273	이문동 304-14	이문동 292-178	일반 도로	서고2002-143 (2002.05.02)	-
기정	소로	1	A	10~12	국지 도로	228	이문동 255-187	이문동 163-76	일반 도로	서고2019-264 (2019.08.08)	-
기정	소로	2	A	9	국지 도로	204	이문동 292-46	이문동 292-97	일반 도로	서고2007-496 (2008.01.07)	-
기정	소로	3	A	8	국지 도로	277	이문동 138	이문동 163-76	일반 도로	서고2019-264 (2019.08.08)	-
기정	소로	3	B	4	국지 도로	28	이문동 255-182	이문동 255-178	일반 도로	서고2019-264 (2019.08.08)	-
기정	소로	3	C	6	국지 도로	156	이문동 292-52	이문동 258-31	일반 도로	서고2019-264 (2019.08.08)	-
기정	소로	3	D	8	국지 도로	13	이문동 292-257	이문동 292-54	일반 도로	서고2019-264 (2019.08.08.)	-

※ ( )는 촉진구역 내 연장임

② 주차장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후		
기정	-	주차장	이문동 255-184 일원	5,530	-	5,530	서고2019-264 (2019.08.08.))	지상 : 262㎡(1층 램프구간) 지하 : 5,268㎡ (시설 중복결정,소공원하부)

③ 철도 (변경없음)

■ 철도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k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증감	변경후		
기정	②	철도	일반철도	한강로3가 (용산역)	성북역 도봉구시계	-	25.7	- (17,135)	-	- (17,135)	건고64 (78.1.29)	경원선
기정	④	철도	일반철도	이문동 134,135 일대	-	-	-	9,306	-	9,306	서고289 (79.6.30)	이문역

주) ( )는 재정비촉진구역내 연장을 의미함

④ 공원 (변경없음)

■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기정	①	공원	소공원	이문동 256-375 일원	8,585	-	8,585	서고2007-496 (08.01.07)	중앙공원
기정	⑭	공원	어린이공원	이문동 163-235 일원	2,461	-	2,461	서고2007-496 (08.01.07)	독구말공원
기정	-	공원	소공원	이문동 363-5 일원	1,921	-	1,921	서고2007-496 (19.08.08)	-

⑤ 공공청사(변경)

■ 공공청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기정	③	공공청사	-	이문동 304-10일원	1,408	-	1,408	서고2007-496 (08.01.07)	상부 임대주택과 중복결정

■ 건축물의 범위(변경)

구분	용도	건폐율	용적률	규모
기정	복합공공청사 (건강증진센터 및 이문1동주민센터)	60% 이하	400% 이하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5,140㎡
	임대주택			지상5층~지상8층, 연면적 2,260㎡ ※ 건축심의를 통해 세부계획 결정

구분	용도	건폐율	용적률	규모
변경	복합공공청사 (건강증진센터 및 이문1동주민센터)	60% 이하	400% 이하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5,140㎡
	임대주택			지상6층~지상9층, 연면적 2,260㎡ ※ 건축심의를 통해 세부계획 결정

※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층수 변경(복합공공청사 및 임대주택의 연면적은 준공시점의 최종 면적을 반영하여 변경 예정)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주	
기정	이문3(3-1) 재정비 촉진구역	133,542	-	-	동대문구 이문동 149-8 일원	945	-	-	945	-	-
변경		133,552									

※ 구역 내 누락된 필지(이문동 135-41번지) 추가에 따른 변경(선형 변경없음)

■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평균	최고
기정	이문3(3-1) 재정비 촉진 구역	133,542	3-1-1	53,292	이문동 134-4 일원	공동주택 및 비주거	40 이하	477.89이하	35층 이하	50층 이하(185m이하)
			3-1-2	42,482	이문동 163 일원	공동주택 및 비주거	35 이하			40층 이하(160m이하)
			3-1-5	450	이문동 293-6 일원	종교시설	관련법령에 따름			
			3-1-6	371	이문동 304-10 일원	종교시설	관련법령에 따름			
			3-1-7	2,364	이문동 292-58 일원	근생	관련법령에 따름			
			3-1-8	257	이문동 292-72 일원	근생	관련법령에 따름			
변경		133,552	3-1-1	53,292	이문동 134-4 일원	공동주택 및 비주거	40 이하	477.88이하	35층 이하	50층 이하(185m이하)
			3-1-2	42,492	이문동 163 일원	공동주택 및 비주거	35 이하			40층 이하(160m이하)

<table>
<tr><td rowspan="2">결정
구분</td><td colspan="2">구역구분</td><td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d><td rowspan="2">위 치</td><td rowspan="2">주된
용도</td><td rowspan="2">건폐율
(%)</td><td rowspan="2">용적률
(%)</td><td colspan="2">높이</td></tr>
<tr><td>명 칭</td><td>면적
(㎡)</td><td>명 칭</td><td>면적
(㎡)</td><td>평균</td><td>최고</td></tr>
<tr><td rowspan="4"></td><td rowspan="4"></td><td rowspan="4"></td><td>3-1-5</td><td>450</td><td>이문동 293-6 일원</td><td>종교시설</td><td colspan="4">관련법령에 따름</td></tr>
<tr><td>3-1-6</td><td>371</td><td>이문동 304-10 일원</td><td>종교시설</td><td colspan="4">관련법령에 따름</td></tr>
<tr><td>3-1-7</td><td>2,364</td><td>이문동 292-58 일원</td><td>근생</td><td colspan="4">관련법령에 따름</td></tr>
<tr><td>3-1-8</td><td>257</td><td>이문동 292-72 일원</td><td>근생</td><td colspan="4">관련법령에 따름</td></tr>
<tr><td rowspan="3">기정</td><td colspan="2">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6">• 총세대수: 4,169세대 (임대 626세대, 공공임대주택 684세대)
• 규모별 건설비율
<table>
<tr><td colspan="2">구분</td><td>합계</td><td>분양</td><td>임대</td><td>공공임대</td></tr>
<tr><td colspan="2">총 세대수</td><td>4,169</td><td>2,859</td><td>626</td><td>684</td></tr>
<tr><td rowspan="4">60㎡ 미만</td><td>40㎡ 이하</td><td>663</td><td>82</td><td>322</td><td>259</td></tr>
<tr><td>40~50㎡</td><td>612</td><td>22</td><td>254</td><td>336</td></tr>
<tr><td>50~60㎡</td><td>1,556</td><td>1,417</td><td>50</td><td>89</td></tr>
<tr><td>소계</td><td>2,831</td><td>1,521</td><td>626</td><td>684</td></tr>
<tr><td colspan="2">60~85㎡</td><td>1,224</td><td>1,224</td><td>-</td><td>-</td></tr>
<tr><td colspan="2">85㎡ 초과</td><td>114</td><td>114</td><td>-</td><td>-</td></tr>
</table></td></tr>
<tr><td colspan="2">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3">○ 경원선 철도변 : 12m
○ 중1-9호선(이문로)변 : 10~12m
○ 대2-A호선(지구순환가로)변 : 10m</td><td colspan="3">○ 중1-0호선변 : 8m
○ 기타도로변 : 6m</td></tr>
<tr><td colspan="2">공공보행통로
계획</td><td colspan="6">○ 공동주택 용지 내 6m 폭원 공공보행통로 4개소 계획</td></tr>
</table>

※ 이문3-1구역의 용적률은 477.88%, 평균층수는 35층 내에서, 획지별로 계획여건에 따라 차등하여 운용함
※ 공공청사용지는 준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를 적용함
주) 인공지반(데크)설치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범위내에서 조정가능
※ 구역 내 누락된 필지(이문동 135-41번지) 추가에 따른 변경(선형 변경없음)

(라)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없음)
(바)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변경없음)
(사) 환경성 검토결과 (변경없음)
(아)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2) 이문3(3-2)구역(재개발사업) (변경없음)

19) 이문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20) 회기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 이문3 주택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33,542	증) 10	133,552	100.0	
주거지역	소계	130,442	증) 10	130,452	97.7	
	제2종일반주거지역	34,391	-	34,391	25.8	
	준주거지역	96,051	증) 10	96,061	71.9	
상업지역	소계	3,100	-	3,100	2.3	
	일반상업지역	3,100	-	3,100	2.3	

※ 구역 내 누락된 필지(이문동 135-41번지) 추가에 따른 변경(선형 변경없음)

2) 기반시설 결정(변경)조서

① 도로(변경없음)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9	20~25	보조 간선	4,000 (270)	휘경지서앞 중1-8호선	번동98-1 대3-39호선	일반 도로	총고시 722 (1936.12.26)	-
기정	대로	2	A	20~32	집산 도로	463 (291)	이문동 86-139	이문동 258-25	일반 도로	서고2007-496 (2008.01.07)	-
기정	중로	1	-	15~21	국지 도로	273	이문동 304-14	이문동 292-178	일반 도로	서고2002-143 (2002.05.02)	-
기정	소로	1	A	10~12	국지 도로	228	이문동 255-187	이문동 163-76	일반 도로	서고2019-264 (2019.08.08)	-
기정	소로	2	A	9	국지 도로	204	이문동 292-46	이문동 292-97	일반 도로	서고2007-496 (2008.01.07)	-
기정	소로	3	A	8	국지 도로	277	이문동 138	이문동 163-76	일반 도로	서고2019-264 (2019.08.08)	-
기정	소로	3	B	4	국지 도로	28	이문동 255-182	이문동 255-178	일반 도로	서고2019-264 (2019.08.08)	-

구분	규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C	6	국지 도로	156	이문동 292-52	이문동 258-31	일반 도로	서고2019-264 (2019.08.08)	-
기정	소로	3	D	8	국지 도로	13	이문동 292-257	이문동 292-54	일반 도로	서고2019-264 (2019.08.08.)	-

※ ( )는 촉진구역 내 연장임

② 주차장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후		
기정	-	주차장	이문동 255-184 일원	5,530	-	5,530	서고2019-264 (2019.08.08.))	지상 : 262㎡(1층 램프구간) 지하 : 5,268㎡ (시설 중복결정,소공원하부)

③ 철도 (변경없음)

■ 철도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km)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 정	증 감	변 경 후		
기정	②	철도	일반 철도	한강로3가 (용산역)	성북역 도봉구시계	-	25.7	- (17,135)	-	- (17,135)	건고64 (78.1.29)	경원선
기정	④	철도	일반 철도	이문동 134,135 일대	-	-	-	9,306	-	9,306	서고289 (79.6.30)	이문역

주) ( )는 재정비촉진구역내 연장을 의미함

④ 공원 (변경없음)

■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후		
기정	①	공원	소공원	이문동 256-375 일원	8,585	-	8,585	서고2007-496 (08.01.07)	중앙공원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후		
기정	⑭	공원	어린이공원	이문동 163-235 일원	2,461	-	2,461	서고2007-496 (08.01.07)	독구말공원
기정	-	공원	소공원	이문동 363-5 일원	1,921	-	1,921	서고2007-496 (19.08.08)	-

⑤ 공공청사(변경)

■ 공공청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후		
기정	③	공공청사	-	이문동 304-10일원	1,408	-	1,408	서고2007-496 (08.01.07)	상부 임대주택과 중복결정

■ 건축물의 범위(변경)

구분	용도	건폐율	용적률	규모
기정	복합공공청사 (건강증진센터 및 이문1동주민센터)	60% 이하	400% 이하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5,140㎡
	임대주택			지상5층~지상8층, 연면적 2,260㎡ ※ 건축심의를 통해 세부계획 결정
변경	복합공공청사 (건강증진센터 및 이문1동주민센터)	60% 이하	400% 이하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5,140㎡
	임대주택			지상6층~지상9층, 연면적 2,260㎡ ※ 건축심의를 통해 세부계획 결정

※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층수 변경(복합공공청사 및 임대주택의 연면적은 준공시점의 최종 면적을 반영하여 변경 예정)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구 분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이문3 (3-1) 재정비 촉진구역	99,216	99,226	3-1-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134-4 일원	53,292	-	53,292	공동주택 및 비주거
			3-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163 일원	42,482	증) 10	42,492	공동주택 및 비주거
			3-1-5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93-6 일원	450	-	450	종교시설
			3-1-6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304-10 일원	371	-	371	종교시설
			3-1-7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92-61 일원	2,364	-	2,364	근린생활시설
			3-1-8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92-72 일원	257	-	257	근린생활시설

※ 구역 내 누락된 필지(이문동 135-41번지) 추가에 따른 변경(선형 변경없음)

2)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①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	용도	비고
기정	허용 용도	3-1-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중 상점 등	허용용도 외에는 불허
		3-1-2		
		3-1-5	종교시설	
		3-1-6		
		3-1-7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중 상점 등	
		3-1-8		
변경	허용 용도	3-1-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중 상점 등	허용용도는 재정비촉진계획 상 주용도와 동일
		3-1-2		
		3-1-5	종교시설	
		3-1-6		

구분		가구	용도	비고
		3-1-7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중 상점 등	
		3-1-8		

※ 재정비촉진계획 상 '주용도' 는 해당 건축물의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6호)

② 건축물 밀도에 관한 계획조서(변경)

구분	가구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평균층수	최고높이	
기정	3-1-1	40이하	477.89이하	35층이하	50층이하(185m이하)	공동주택용지 용적률 계획은 별도 표기
	3-1-2	35이하			40층이하(160m이하)	
	3-1-5	관련 법령을 따름				
	3-1-6					
	3-1-7					
	3-1-8					
변경	3-1-1	40이하	477.88이하	35층이하	50층이하(185m이하)	공동주택용지 용적률 계획은 별도 표기
	3-1-2	35이하			40층이하(160m이하)	
	3-1-5	관련 법령을 따름				
	3-1-6					
	3-1-7					
	3-1-8					

※ 구역 내 누락된 필지(이문동 135-41번지) 추가에 따른 용적률 변경

■ 공동주택용지 용적률 계획(변경)

구분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	결합개발용적률	역세권 상향 용적률	
기정	210%	300.0%	331.6%	477.89%	계획 419.73%
변경				477.88%	계획 419.69%

※ 구역 내 누락된 필지(이문동 135-41번지) 추가에 따른 용적률 변경

■ 용적률 완화사항(변경)

구분	용적률			비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결합개발	공공주택 건설	
기정	90%	31.60%	44.065%	-
변경			44.045%	-

※ 구역 내 누락된 필지(이문동 135-41번지) 추가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 용적률 변경

3)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4) 경관계획(배치 · 형태 포함)(변경없음)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4.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외 기 결정된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5.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도서 참조 : 생략
(비치된 도서와 같음)
※ 첨부된 관련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6.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실 재정비촉진과 (☎ 02-2133-7227) 및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02-2127-4759)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 (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문3(3-1) 촉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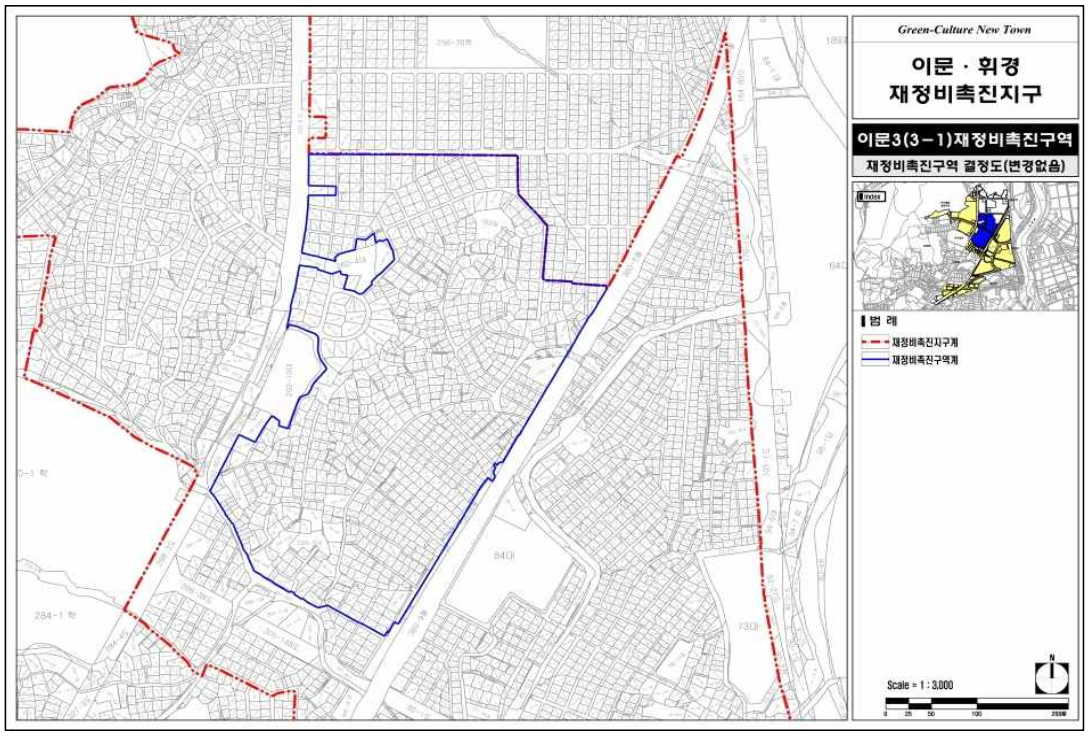

【이문3(3-1)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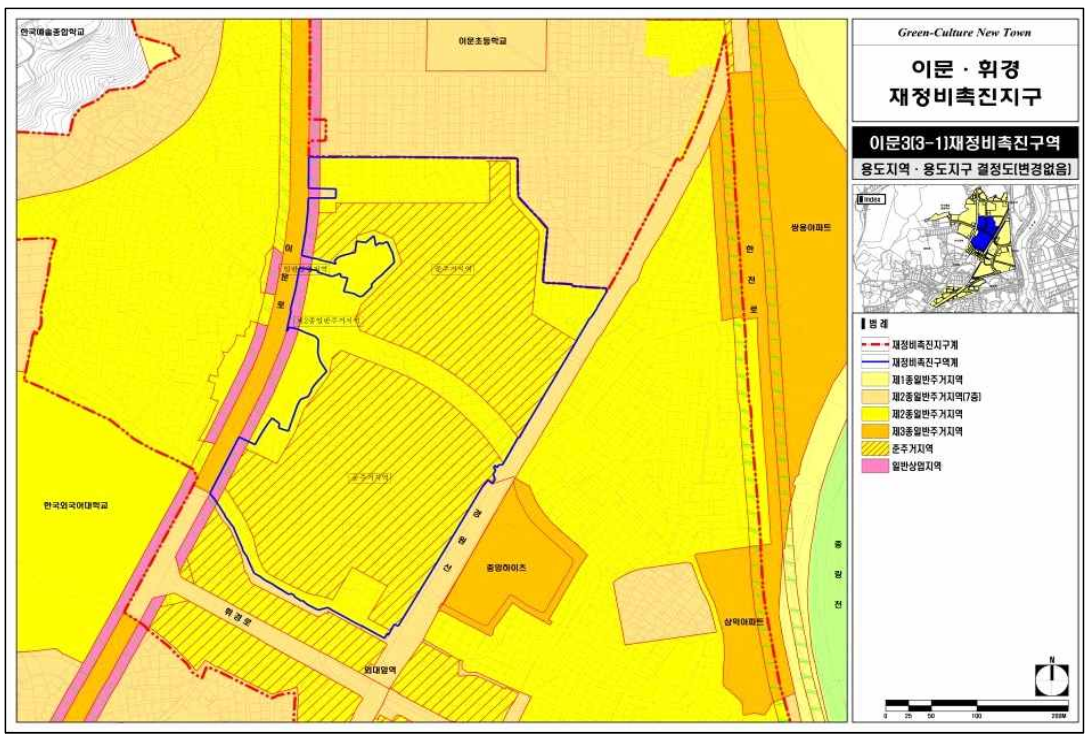

【이문3(3-1)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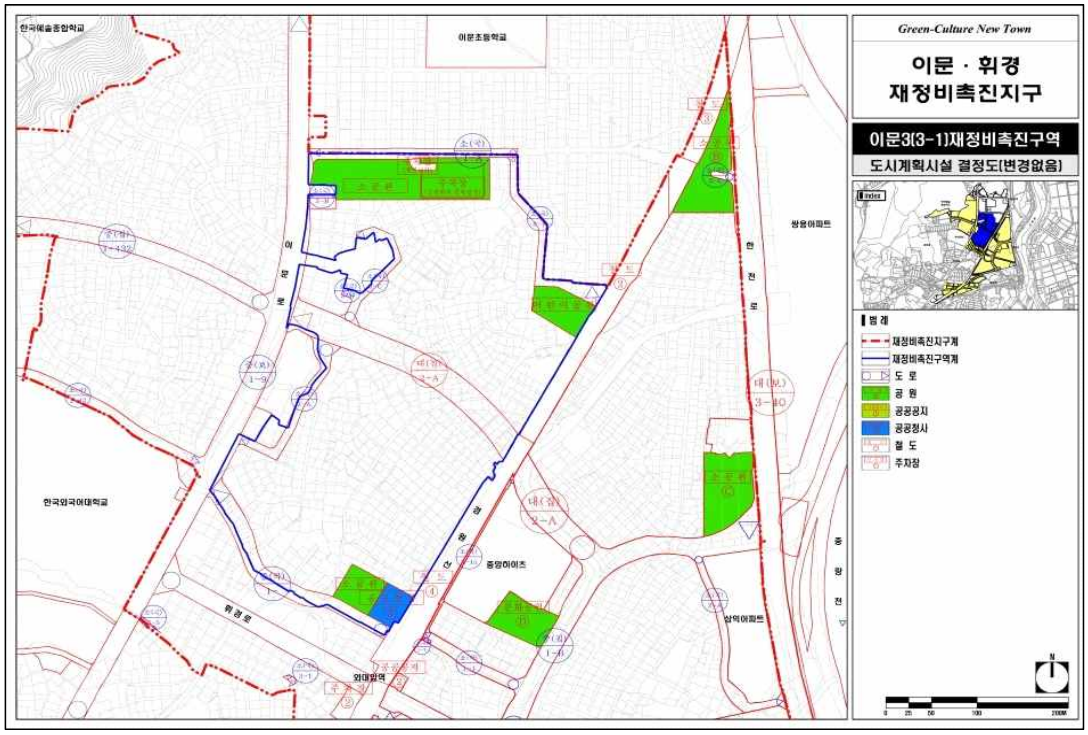

– 이하 여백 –

【이문3(3-2) 촉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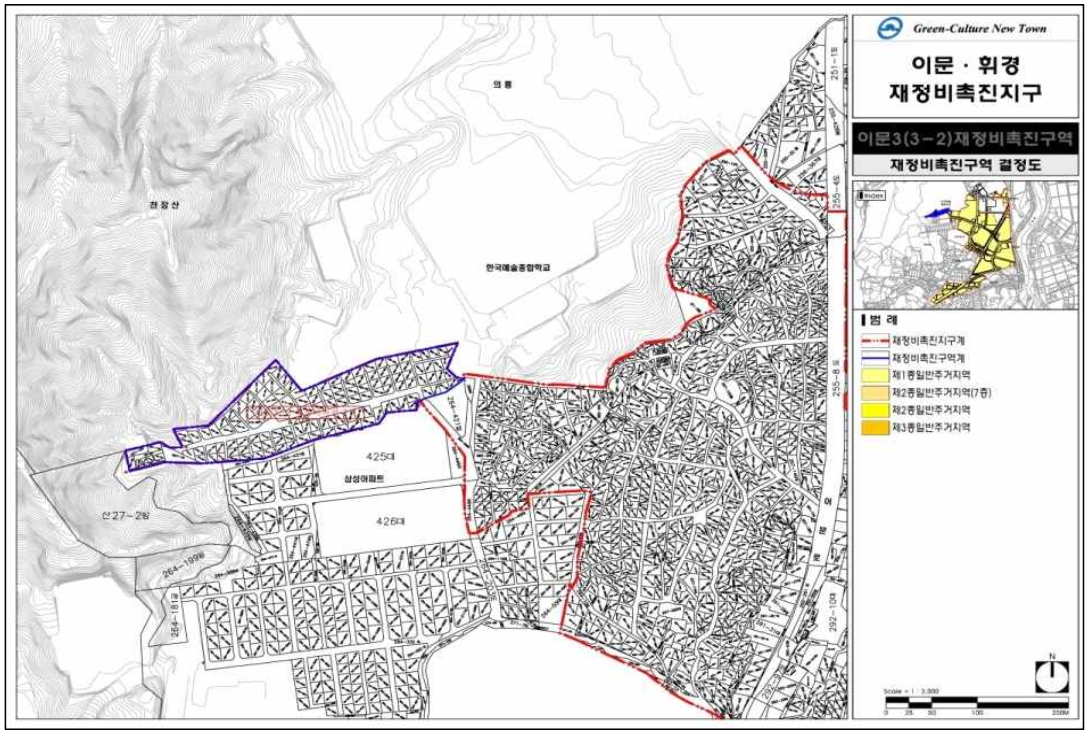

【이문3(3-2)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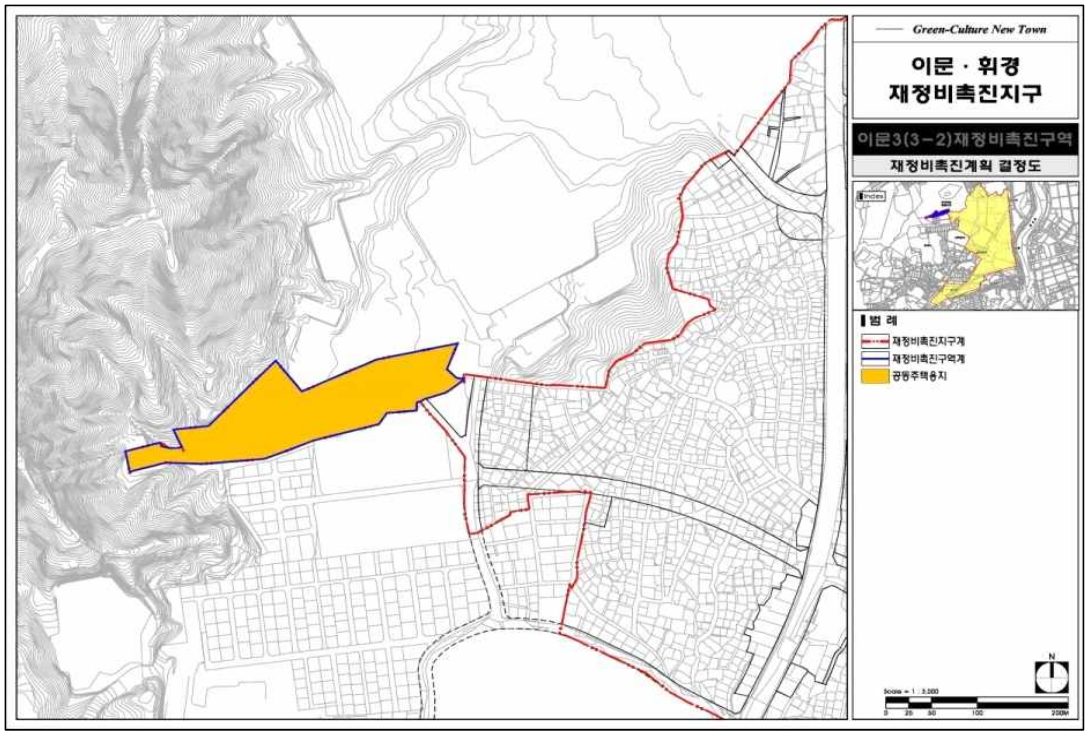

【이문3(3-2) 용도지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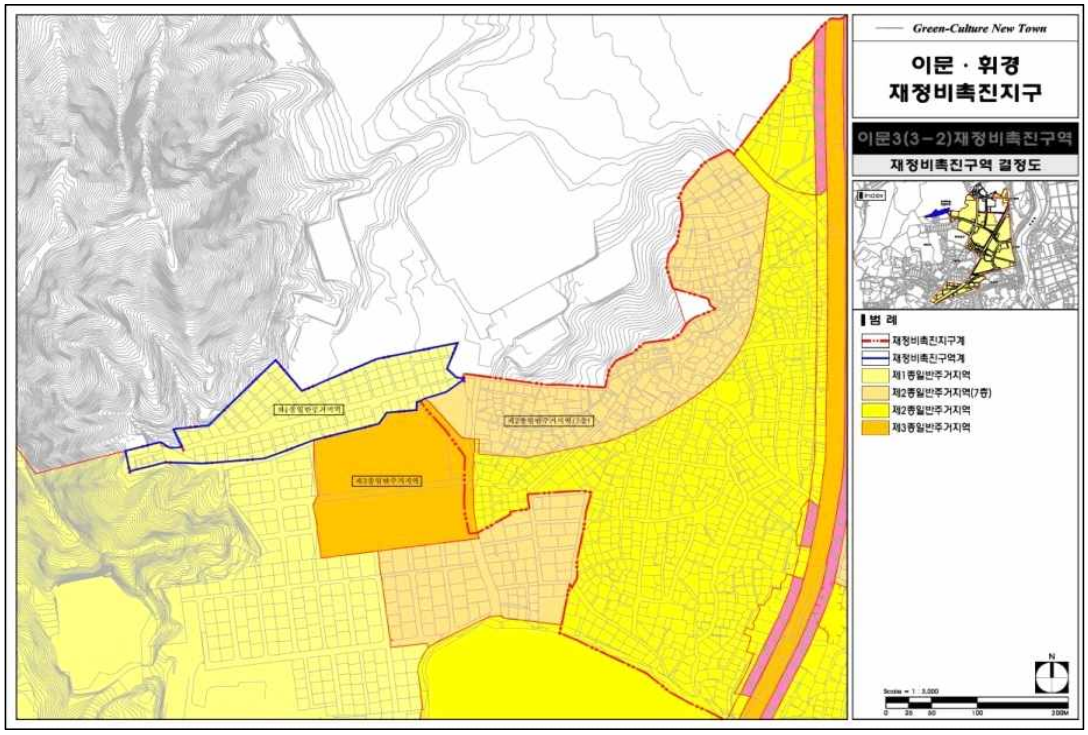

- 이하 여백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08호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변경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된「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0호, 2023.2.16.),「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변경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423호, 2024.8.29.)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에 따라 확정·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고 시 명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변경 고시

2. 변경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도시환경 정비, 중심지 기능 회복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따른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운영 중인「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에 대하여,

○ 정비가능구역, 용적률·높이 계획, 상업지역 주거비율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및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기본계획 운영상의 기준 보완 등을 위해, 금번 기본계획을 변경을 통하여 정비사업의 공공성 및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3. 변경내용

가. 정비가능구역

- 정비가능구역 추가

기 존	변 경
♦ 정비가능구역(11개)	♦ 정비가능구역(14개)
- 도심(1개) · 영등포	- **도심(2개)** · **강남,** 영등포
- 광역중심(3개) · 청량리·왕십리, 용산, 가산·대림	- 광역중심**(5개)** · **잠실,** 청량리·왕십리, 용산, 가산·대림, **창동·상계**

기 존	변 경
- 지역중심(7개) · 신촌, 연신내·불광, 사당·이수, 성수, 봉천, 천호·길동, 동대문	- 지역중심(7개) · 신촌, 연신내·불광, 사당·이수, 성수, 봉천, 천호·길동, 동대문

※ 정비가능구역 : 서울도시기본계획 등에 따른 지역중심이상의 중심지로서, 상기 중심지 범역 내 용도지역이 상업, 준주거,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기준은 별도 수립

- 정비구역 지정요건 변경

기 존	변 경
♦ **검토기준** -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 상업, 준주거, 준공업지역 〈 신설 〉	♦ **검토기준** -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 상업, 준주거, 준공업지역 ※ **세부기준은 별도 수립**
- 다음 기준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지역 · 노후도 :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 최소필지 : 150㎡ 미만 필지비율 40% 이상 · 저밀이용: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 ※ 신축건축물 비율 : 10년이내 신축건축물 비율 15% 이상 지역 제외	- 다음 기준을 만족하는 지역 · 노후도 :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 **(삭제)** · **(삭제)** ※ **(삭제)**
- 구역별 최소면적은 3,000㎡이상, 지구별 최소면적은 1,000㎡ 이상 권장. 단, 대상지의 입지적 특성,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지역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비구역 결정	- **구역(지구)별 최소면적은 2,000㎡ 이상**. 단, 대상지의 입지적 특성,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지역 파급효과 등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비구역 결정

- 통합 마스터플랜 세부 수립기준

기 존	변 경
♦ **높이기준(지구단위계획 기수립지역)** - 해당 지구단위계획상 높이계획 적용 ♦ **높이기준(지구단위계획 미수립지역)** - 범역 내 건축물 현황과 대상지 주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사업구역 등 개발(예정)지의 결정된 높이체계	♦ **높이기준(공통사항)** - **범역 내 건축물 현황과 대상지 주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정비기본계획 높이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되도록 계획 수립**

기 존	변 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되도록 계획 수립	

나. 정비예정구역의 의제

– 예정구역 의제사업

기 존	변 경
♦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상 전략재생형에 한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의제(현재 수립중인 2040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변경사항 준용)	♦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 –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 상 산업복합형**에 한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의제

다. 용적률 계획

– 용적률 체계 변경

기 존	변 경
♦ **일반상업** – 600% / 800% / 법적용적률 2배 ♦ **준주거** – 300% / 400% / 법적용적률 2배 ♦ **준공업** – 양평 10,12,13구역 용적률 체계	♦ **일반상업(서울도심 도심부 및 도심부 외)** – 600% / **880%** / 법적용적률 2배 ♦ **준주거(서울도심 도심부 및 도심부 외)** – 300% / **440%** / 법적용적률 2배 ♦ **준공업** **– (삭제)**

장기전세주택 미설치 시	장기전세주택 설치 시	비고
· 기준 230% · 최대 230%+α	· 기준 230% · 허용 280% (장기전세주택 건립용적률 25%, 장기전세주택으로 인한 완화용적률 25%) · 최대 280%+α	–

<table>
<tr><th>기 존</th><th>변 경</th></tr>
<tr><td>

- 신규 정비예정구역 운용방안

<table>
<tr><td colspan="2">구분</td><td>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도시정비형 예정구역 전환('08.03.)</td><td>주거환경 정비예정구역→예정구역 전환('10.03.)</td><td>우선 정비대상구역('10.03.)</td></tr>
<tr><td colspan="2">구역명</td><td>양평 10,12,13구역</td><td>양평14구역</td><td>문래동2가 2, 신도림동 293 성수동2가 301-27</td></tr>
<tr><td rowspan="2">용적률 체계</td><td>공동주택 부지</td><td>230%+α</td><td colspan="2">210% + 20% +α</td></tr>
<tr><td>산업 부지</td><td colspan="3">400%+α</td></tr>
</table>

- (신설)

</td><td>

- (삭제)

- 준공업지역 제도개선('24.11.)에 따라 운용

※ 준공업지역 운영기준 변경 시 그에 따름

</td></tr>
</table>

※ 공통사항

-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 또는 2000.7.1. 이전 용도지역이 결정되었거나 변경된 지역은 금번 변경된 용적률 체계 적용

- 2000.7.1. 이후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 용도지역 세분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량

기 존	변 경
♦ 신설	♦ (서울도심 도심부)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세분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량 -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용도지역 세분 변경 시,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부문)에 따른 공공기여량 적용 가능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변경

기 존	변 경
♦ **허용용적률**(서울도심 도심부) **– 도시경제활성화(관광진흥법 상 3성급 이상 호텔 도입 시)** : 호텔복합비율에 따라 최대 100% ♦ **허용용적률**(서울도심 도심부 외) **– 개방형녹지 확보 시:** 최대 100% · 개방형녹지 20% 설치 시 : 정량 50% · 개방형녹지 20% 초과 설치 시 : 정률 / 보상계수 1 **– 도시경제활성화(업무전용빌딩)** : 업무복합비율에 비례하여 최대 50% ♦ **허용용적률**(서울도심 도심부 및 도심부 외) **– 복합개발(구역(지구)간 공동개발)** : 정량 / 최대 인센티브 50% **– 친환경(재활용 건축자재)** : 정률 / 보상계수 0.4 / 최대 인센티브 20% **– 생활SOC(도서관, 보육시설 등)** : 정량 / 최대 인센티브 100% · 요건 : 도서관, 노인여가, 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청소년아동시설, 보육시설, 일자리창출공간 **– 공익시설(건축물 내 공익시설)** : 정률 / 보상계수 0.2 / 최대 인센티브 50% **– 공익시설(실내 공개공지)** : 정률 / 보상계수 0.2 / 최대 인센티브 50% **– 무장애도시조성(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	♦ **허용용적률**(서울도심 도심부 및 **도심부 외**) **– 도시경제활성화(관광진흥법 상 3성급 이상 호텔 도입 시)** : 호텔복합비율에 따라 최대 100% ♦ **허용용적률**(서울도심 도심부 외) **– 개방형녹지 확보 시: 최대 150%** · 개방형녹지 20% 설치 시 : 정량 50% · 개방형녹지 20% 초과 설치 시 : 정률 / 보상계수 1 **– 도시경제활성화(업무전용빌딩)*** : 업무복합비율에 비례하여 최대 **100%** ♦ **허용용적률**(서울도심 도심부 및 도심부 외) **– 복합개발(구역(지구)간 공동개발)** : 정량 / 최대 인센티브 **100%** **– (삭제)** **– 생활SOC(도서관, 보육시설 등)** : 정량 / 최대 인센티브 100% · 요건 : 도서관, 노인여가, 복지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아동시설, 보육시설 **– (삭제)** **– 공익시설(실내 공개공간)** : 정률 / 보상계수 0.2 / 최대 인센티브 50% **– (삭제)****

기 존	변 경
정량 / 최대 인센티브 30% **- 가로지장물 이전/지중화:** 정률 / 보상계수 2 / 최대 인센티브 50% **- 지하철 출입구 이전 시:** 정률 / 보상계수 2 / 최대 인센티브 50%	**- 가로지장물 이전/지중화:** 정률 / **보상계수 3 / 최대 인센티브 100%** **- 지하철 출입구 이전 시:** 정률 / 보상계수 2 / **최대 인센티브 100%**

* 업무복합비율에 따르 인센티브 부여량

복합비율	50%미만	50%이상~60%미만	60%이상~70%미만	70%이상
인센티브량	-	60%	80%	100%

** 필요시 BF유도 별도 지침 운영

기 존	변 경
◆ 허용용적률(서울도심 도심부 및 도심부 외) - (신설)	**◆ 허용용적률(서울도심 도심부 및 도심부 외)** **- 관련 법령에 의거 산후조리원 설치 시 :** **정률 / 보상계수 0.4 / 최대 인센티브 200%*** **- 관련 법령에 의거 예식장 설치 시 :** **정률 / 보상계수 0.4 / 최대 인센티브 200%*** **- 시니어주택 도입 시 : 도입 면적에 따라 최대 200%****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 또는 민간임대 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고령자 대상)'** **- 순환형 정비사업 추진 시 :** **세입자 수용비율에 따라 최대 200%*****

* 산후조리원, 예식장 설치는 공공 무상임대 조건이며 관련기관(부서) 요청 시 적용 가능

** 시니어주택 도입 면적에 따른 인센티브량(안)

도입면적(지상부 연면적)	20% 이상	50% 이상
인센티브	100%	200%

*** 정비사업 추진 시 임시장소(대체 영업장 또는 거처) 마련에 따른 인센티브량(안)

수용비율[1]	20% 이상	50% 이상
인센티브	최대 100%	최대 200%

※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될 경우 적용 가능

[변경] 허용용적률 인센티브_서울도심 도심부

구 분	목 표	인센티브 대상	요 건	산정 방식	완화량 또는 보상계수	적용량
계획 유도	녹지 생태공간	개방형녹지 확보 시	지구별 개방형녹지 30%(3천㎡미만 소규모 20%) 초과 - 초과면적을 도입시설면적으로 산정	정률 부여	2.0	최대 100%
		공동개발 시 녹지확보	지구간 건축협정(협의 등)에 따른 공동개발을 통해 도로일부를 녹지공간으로 조정 시	정량 부여	50%	최대 50%
	복합개발	구역(지구)간 공동개발	구역(지구)간 통합을 통해 대지면적 1만㎡이상 개발시	정량 부여	**100%**	**최대 100%**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기준의 15%이상 추가 설치 시	정량 부여	20%	최대 20%
		전기차충전소 설치	서울시 친환경자동차 조례에 따른 충전기 법적의무 사항 ½이상 초과설치 시	정량 부여	20%	최대 20%
		재활용 건축자재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시**	**정량 부여**	**20%**	최대 20%
		장수명 주택인증	장수명 주택인증항목 적용 시	정량 부여	20%	
	저출산 고령화 대책시설	**산후조리원**	**관련법령 등에 의거 설치 시 ※ 공공 무상임대 조건으로 관련부서 운영계획 수립 시 적용 가능**	**정률 부여**	**0.4**	**최대 200%**
		예식장	**관련법령 등에 의거 설치 시 ※ 공공 무상임대 조건으로 관련부서 운영계획 수립 시 적용 가능**	**정률 부여**		**최대 200%**
		시니어주택	**시니어주택 도입(노인복지법 또는 민간임대주택법) (지상부 연면적의 20% 이상 도입 시)**	**도입면적에 따라 최대 200%**		
	도시경제 활성화	지역별 도시경제활성화 유도 용도	MICE 산업관련시설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별 유도용도 기준에 따름 정률부여 0.4 최대 10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도입 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지식기반 산업시설 도입 시			
			전략산업육성조례에 따른 신성장산업육성시설 도입 시			
			관광진흥법 상 3성급 호텔이상 도입시	호텔복합비율에 따라 최대100%		

1) [기준] 상가 : 점포수, 사람 : 세대수

구 분	목 표	인센티브 대상	요 건	산정 방식	완화량 또는 보상계수	적용량
			건축연면적의 30%이상 주거도입 시 **※ 오피스텔 제외 및 주거 안정항목 중복 적용 불가**	주거복합비율에 비례하여 최대 100%		
	생활SOC	도서관, 보육시설 등	도서관, 노인여가, 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청소년아동시설, 보육시설, **일자리창출공간**	정률 부여	0.4	최대 100%
	문화인프라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영화상영관 등	공연법 등록대상,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등록대상, 영화진흥법 등록대상	정률 부여	0.4	최대 100%
	주거안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주택법에 의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도입 (전용 60㎡이하,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도입 시)	정량 부여	50%	최대 50%
	공익시설	**건축물내 공익시설**	**~~소규모 기업의 다양한 활동공간(개방형라운지 등)을 제공하는 시설 등 도입 시~~**	정률 부여	0.2	최대 50%
		특정층(최상층)개방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건축물 최상층에 공공에게 개방된 공공공간(전망대 로비) 조성 시			
		실내 공개**공간**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내 공개공지 도입 시(세부지침 조정)			
		저층부 개방공간	지상부 개방형녹지공간과 직접 연결되는 저층부 (최소1층) 특정시간대 완전 개방 시		0.3	
	보행가로 활성화	**무장애도시조성[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상 우수 등급 인증 시~~**	**정량 부여**	**30%**	**최대 30%**
		공공보행통로 등 (지하보행통로 포함)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조성 시	정률 부여	2.0	최대 30%
		가로지장물 이전/지중화	가로지장물이전/지중화 (가로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구역내에서 연결되는 구역외 도로도 포함) ※ 도입시설면적은 공사구간 면적 기준.단, 지상 전주·전선의 이전/지중화 시에는 시설 공사비 환산면적 기준으로 적용	정률 부여	**3.0**	**최대 100%**
			지하철 출입구 이전 시		2.0	**최대 100%**
	안전·방재	방재 관련시설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방재와 관련된 시설 설치 시	정량 부여	20%	최대 20%
	세입자 대책	**순환형 정비사업**	**순환형 정비사업 추진 시**	**수용비율에 따라 최대 200%**		
	역사보전	건축자산 등	법적의무대상은 아니나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니는 것에 대하여 보전계획 수립 시	정량 부여	50%	최대 50%
의무	역사보전	지정·등록문화재 등	문화재 등 법적의무대상에 대하여 보전계획 수립 시	정량 부여	50%	최대 50%

[변경] 허용용적률 인센티브_서울도심 도심부 외

구 분	목 표	인센티브 대상	요 건	산정 방식	완화량 또는 보상계수	적용량
계획 용도	녹지 생태공간	개방형녹지 확보 시	지구별 개방형녹지 20% 설치 시	정량 부여	50%	**최대 150%**
			지구별 개방형녹지 20% 초과 설치 시 - 초과면적을 도입시설면적으로 산정	정률 부여	1	
		공동개발 시 녹지확보	지구간 건축협정(협의 등)에 따른 공동개발을 통해 도로일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 시	정량 부여	50%	최대 50%
	복합개발	구역(지구)간 공동개발	구역(지구)간 통합을 통해 대지면적 1만㎡이상 개발시	정량 부여	**100%**	**최대 100%**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기준의 15%이상 추가 설치 시	정량 부여	20%	최대 20%

2) 필요시 BF유도 별도 지침 운영

구 분	목 표	인센티브 대상	요 건	산정방식	완화량 또는 보상계수	적용량
		전기차충전소 설치	서울시 친환경자동차 조례에 따른 충전기 법적의무 사항 ½이상 초과설치 시	정량부여	20%	최대 20%
		재활용 건축자재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시	정량부여	20%	최대 20%
		장수명 주택인증	장수명 주택인증항목 적용 시	정량부여	20%	
	저출산 고령화 대책시설	산후조리원	관련법령 등에 의거 설치 시 ※ 공공 무상임대 조건으로 관련부서 운영계획 수립 시 적용 가	정률부여	0.4	최대 200%
		예식장	관련법령 등에 의거 설치 시 ※ 공공 무상임대 조건으로 관련부서 운영계획 수립 시 적용 가	정률부여		최대 200%
		시니어주택	시니어주택 도입(노인복지법 또는 민간임대주택법) (지상부 연면적의 20% 이상 도입 시)	도입면적에 따라 최대 200%		
	도시경제 활성화	지역별 도시경제활성화 유도 용도	MICE 산업관련시설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별 유도용도 기준에 따름 정률부여 0.4 최대 10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도입 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지식기반 산업시설 도입 시			
			전략산업육성조례에 따른 신성장산업육성시설 도입 시			
			대학생 창업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등 도입 시			
			관광진흥법 상 3성급 호텔이상 도입시	호텔복합비율에 따라 최대100%		
			업무전용빌딩(업무시설 50% 이상 복합하는 경우에 한함) 설치 시(단, 오피스텔 제외)	업무복합비율에 비례하여 최대 100%		
	생활SOC	도서관, 보육시설 등	도서관, 노인여가 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청소년아동시설, 보육시설, 일자리창출공간	정률부여	0.4	최대 100%
	문화인프라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영화상영관 등	공연법 등록대상,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등록대상, 영화진흥법 등록대상	정률부여	0.4	최대 100%
	주거안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주택법에 의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도입 (전용 60㎡이하,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도입 시)	정량부여	50%	최대 50%
	공익시설	건축물내 공익시설	소규모 기업의 다양한 활동공간(개방형라운지 등)을 제공하는 시설 등 도입 시	정률부여	0.2	최대 50%
		특정층(최상층)개방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건축물 최상층에 공공에게 개방된 공공공간(전망대 로비) 조성 시			
		실내 공개공간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내 공개공지 도입 시(세부지침 조정)			
		저층부 개방공간	지상부 개방형녹지공간과 직접 연결되는 저층부 (최소1층) 특정시간대 완전 개방 시		0.3	
	보행가로 활성화	무장애도시조성[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상 우수 등급 인증 시	정량부여	30%	최대 30%
		공공보행통로 등 (지하보행통로 포함)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조성 시	정률부여	2.0	최대 30%
		가로지장물 이전/지중화	가로지장물이전/지중화 (가로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구역내에서 연결되는 구역외 도로도 포함) ※ 도입시설면적은 공사구간 면적 기준 단, 지상 전주·전선의 이전/지중화 시에는 시절 공사비 환산면적 기준으로 적용	정률부여	3.0	최대 100%
			지하철 출입구 이전 시		2.0	최대 100%

구 분	목 표	인센티브 대상	요 건	산정 방식	완화량 또는 보상계수	적용량
	안전·방재	방재 관련시설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방재와 관련된 시설 설치 시	정량 부여	20%	최대 20%
	세입자 대책	**순환형 정비사업**	**순환형 정비사업 추진 시**	**수용비율에 따라 최대 200%**		
	역사보전	건축자산 등	법적의무대상은 아니나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니는 것에 대하여 보전계획 수립 시	정량 부여	50%	최대 50%
의무	역사보전	지정·등록문화재 등	문화재 등 법적의무대상에 대하여 보전계획 수립 시	정량 부여	50%	최대 50%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변경

기 존	변 경
♦ **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상한용적률은 허용용적률에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등을 제공하거나 서울도심 도심부의 경우 공개공지 의무면적 초과 조성 시 추가로 부여 ~(이하생략)~	–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상한용적률은 허용용적률에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등을 제공하거나 **서울도심 도심부의 경우** 공개공지 의무면적 초과 조성 시 추가로 부여 ~(이하생략)
♦ **상한용적률(서울도심 도심부 및 도심부외)**	♦ **상한용적률(서울도심 도심부 및 도심부외)**
– (신설)	– **지하철출입구등을 대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기부채납 또는 구분지상권 설정) 및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 **도시계획조례 제51조제2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름** (관련조항 개정시 그에 따름) ※ **가로지장물 이전 및 지중화,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불가**
– 녹색건축 초과등급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초과등급 인증, 지능형건축물 인증시 인센티브 제공	– 녹색건축 초과등급 인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시 인센티브 제공
① 녹색건축 초과등급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① 녹색건축 초과등급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3) 필요시 BF유도 별도 지침 운영

기 존	변 경
· 허용용적률 × 1.0 × 녹색건축물 인증완화 비율 ②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초과등급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 1.0 ×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완화 비율 ③ 지능형건축물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 0.5 × 지능형건축물 인증완화 비율 ※ ①,②는 별도 적용이 가능하며, ③지능형건축물 인증에 따른 용적률 완화는 녹색건축물 초과등급 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초과등급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가능하며, ①+②+③은 허용용적률의 최대 15%까지 완화 ※ 친환경 상한용적률은 구역 부담률 충족 및 필수 정비기반시설 우선 확보 시 적용 - (신설)	· 허용용적률 × 1.0 × 녹색건축물 인증완화 비율 ②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 1.0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완화 비율 **③ (삭제)** **※ ①+②는 허용용적률의 최대 15%까지 완화** ※ 친환경 상한용적률은 구역 부담률 충족 및 필수 정비기반시설 우선 확보 시 적용 **◆ 상한용적률 산정 시 허용용적률은 확보한 값을 적용하되, 일반상업지역은 800%, 준주거지역은 400%를 초과할 수 없음**

※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완화조건	최대완화비율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6%
녹색건축 우수 등급	3%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및 관계 법령 개정시 변경된 규정에 따름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완화조건	최대완화비율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플러스(+) 등급	15%
제로에너지건축물 2등급	14%
제로에너지건축물 3등급	13%

완화조건	최대완화비율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12%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11%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및 관계 법령 개정시 변경된 규정에 따름

라. 건폐율 계획

기 존	변 경
♦ **건폐율(서울도심 도심부)** – 60%이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해 완화 가능 ♦ **건폐율(서울도심 도심부외)** – 도시계획조례 건폐율 적용 ♦ **건폐율(서울도심 도심부 및 도심부외)** – **(신설)**	♦ **건폐율(서울도심 도심부)** – 60%이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해 완화 가능 ♦ **건폐율(서울도심 도심부외)** – 도시계획조례 건폐율 적용 ♦ **건폐율(서울도심 도심부 및 도심부외)** – **숙박인프라 확충 관련 별도 정책 수립 시 그에 따름**

마. 높이 계획

기 존

♦ **기준높이 및 최고높이(서울도심 도심부외)**

구 분		기준높이(m)	최고높이(m)
영등포	역세권	150	200
	일반상업	100	200
	준공업	80/150	200
용산		80 ~ 150	–
청량리	일반업무	70	–
	혼합서비스	50	–
가산대림		지구단위계획에 따름	
마포·공덕	역세권	110	–
	업무상업	110	–
	업무주거	70	–
	일반업무	70/90	–

변 경

♦ **기준높이 및 최고높이(서울도심 도심부외)**

구 분		기준높이(m)	최고높이(m)
영등포	역세권	제한없음	–
	일반상업	제한없음	–
	준공업	제한없음	–
용산		150	–
청량리	일반업무	150	–
	혼합서비스	150	–
가산대림		150	–
마포·공덕	역세권	150	–
	업무상업	150	–
	업무주거	150	–
	일반업무	150	–

<table>
<tr><th>기 존</th><th>변 경</th></tr>
<tr><td>
<table>
<tr><th>구 분</th><th>기준높이(m)</th><th>최고높이(m)</th></tr>
<tr><td>연신내 · 불광</td><td colspan="2">지구단위계획에 따름</td></tr>
<tr><td>신촌</td><td colspan="2">지구단위계획에 따름</td></tr>
<tr><td>봉천</td><td colspan="2">지구단위계획에 따름</td></tr>
</table>
♦ 완화높이(서울도심 도심부)
- 매장문화재와 같은 역사문화자원을 전면 보존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 완화 가능

♦ 완화높이(서울도심 도심부)
- 공공성 확보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완화 및 강화 가능

· 경관 및 주변지역과의 보행, 상권활성화, 통경축, 인접대지와의 관계,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30m 범위 내 높이 완화’ 및 ‘강화’

♦ 개방형녹지 확보율에 따른 추가 높이 완화(α)
- 완화높이m = 적정건폐율50% × (기준높이+20m) / (80%-개방형녹지율%)
</td><td>
<table>
<tr><th>구 분</th><th>기준높이(m)</th><th>최고높이(m)</th></tr>
<tr><td>연신내 · 불광</td><td>130</td><td>-</td></tr>
<tr><td>신촌</td><td>130</td><td>-</td></tr>
<tr><td>봉천</td><td>130</td><td>-</td></tr>
</table>
♦ 완화높이(서울도심 도심부)
- 매장문화재와 같은 역사문화자원을 전면 보존하여 가부채납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 완화 가능

♦ 완화높이(서울도심 도심부 및 도심부외)
- 그 외 추가적 완화는 공공성 확보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완화 및 강화 가능
· 경관 및 주변지역과의 보행, 시책사항 반영, 상권활성화, 통경축, 인접대지와의 관계,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30m 범위 내 높이 완화’ 및 ‘강화’

♦ 개방형녹지 확보율에 따른 추가 높이 완화(α)
- 완화높이m = [적정건폐율50% × (기준높이+20m) / (80%-개방형녹지율%)] - 기준높이
</td></tr>
</table>

바. 상업지역 주거공급계획

<table>
<tr><th>기 존</th><th>변 경</th></tr>
<tr><td>
♦ 주거비율
- 주거주용도 도입 시 주거비율은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적용하며(비주거용도는 전체 용적률의 10% 이상 의무) 중심지 위계와 지역상황을 고려, 지역별 주거비율 차등 적용

· 서울도심 도심부 : 최대 90%
</td><td>
♦ 주거비율
- 주거주용도 도입 시 주거비율은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적용(비주거용도는 전체 용적률의 10% 이상 의무) ~~중심지 위계와 지역상황을 고려, 지역별 주거비율 차등 적용~~

· 삭제
</td></tr>
</table>

기 존	변 경
・영등포 및 광역중심, 연신내(GTX) : 최대 80%	・**삭제**
・지역중심 : 최대 90%	・**삭제**
♦ **공공주택 등 확보기준**	♦ **삭제**
- 주거용적률 400%를 기준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의 1/2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단, 상업지역에서는 관련 부서 협의 시 매입예산의 과다소요 등으로 공공주택 확보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도 가능	- **(삭제)**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공공주택 확보 의무비율 산정 시 제외	- **(삭제)**
-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80% 이상을 전용 85㎡ 이하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하며, 공공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로 확보	- **(삭제)**
- 주거비율 완화에 따라 증가하는 공공주택 등 확보 시 공공이 부담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삭제)**

기 존	변 경
♦ 오피스텔 관리방안(준주거지역 공통사항) – 오피스텔은 준주택 용도로 관리토록 하며, 주민편익 시설 등 설치를 의무화한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준주택 용도로 관리, 주거비율 완화 시 완화받는 용적률의 1/2 공공주택 의무 적용 · 거주 주민의 편익 도모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생활 SOC 공급을 위해 주민편익시설 등 설치를 의무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주민공동시설 설치 준용) ※ 지역특성 및 대상지 여건상 주민 공동시설 설치가 어려울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	♦ 오피스텔 관리방안(준주거지역 공통사항) – 오피스텔은 준주택 용도로 관리토록 하며, 주민편익 시설 등 설치를 의무화한다. · **삭제** · 거주 주민의 편익 도모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생활 SOC 공급을 위해 주민편익시설 등 설치를 의무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 주민공동시설 설치 준용) ※ 지역특성 및 대상지 여건상 주민 공동시설 설치가 어려울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
♦ 노인복지주택 관리방안(준주거지역 공통사항) – 노인복지주택은 준주택 용도로 관리토록 하며, 주민편익시설 등 설치 의무화 · 주거용 오피스텔은 준주택 용도로 관리, 주거비율 완화 시 완화받는 용적률의 1/2 공공주택 의무 적용 · 거주 주민의 편익 도모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생활SOC 공급을 위해 주민편익시설 등 설치 의무화 ※ 노인복지주택 관련 법령에 따른 필수시설 설치 ※ 주민편익시설은 의무설치하나 노인복지주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가능	♦ 삭제 – (삭제)

사. 시니어주택 공급 부문 신설

기 존	변 경
♦ 신설	♦ 시니어주택 도입 및 활성화 - 정의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고령자)'(입주대상자 변경 불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도시정비법 제9조 제1항 10호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적용 ※ 고령자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 1호 나목 3) 적용 - 주 용 도 · 각 지역별 토지이용계획상 건축물 주용도 계획에도 불구하고 시니어주택 주용도 도입 가능 - 주거비율 · 시니어주택 및 필수부대시설은 주거비율 산정시 주거로 산정 - 용적률 계획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지상 연면적의 20%이상 시니어주택 도입 시 허용용적률 최대 200% 부여 - 높이 계획 · 지상 연면적의 20% 이상 시니어주택 계획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하여 기준높이 외 추가높이 완화(최대 30m) 가능 - 도입시설 기준 · 노인주거복지시설 시설기준 등 관련 기준 충족 ※ 관련 법령 개정 시 변경된 규정에 따름 · 데이케어센터 등 노유자시설, 의료 관련 시설 등 시니어주택과 연계되는 시설 설치 원칙. 단, 개발규모상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인접시설과 협약 및 운영계획 등 제시 ※ 그 외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함

아. 기타 변경 사항

기 존	변 경
◆ 마포·공덕지역 용적률계획 - 마포로 일대 일부 준주거지역(마포로 4-7지구, 마포로2구역, 마포대교·공덕동 로타리 주변, 중림동 등)은 주변 완료지구 현황을 고려하여 용적률 등을 설정한 바, 용도지역 상향 조정 여부는 정비구역 지정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단,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 맞게 용적률 체계 적용 - (신설)	◆ 마포·공덕지역 용적률계획 - 마포로 일대 일부 준주거지역(마포로 4-7지구, **마포로2구역,** 마포대교·공덕동 로타리 주변, 중림동 등)은 주변 완료지구 현황을 고려하여 용적률 등을 설정한 바, 용도지역 상향 조정 여부는 정비구역 지정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단,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 맞게 용적률 체계 적용 - **현황용적률이 조례 용적률을 초과하는 재재개발지구에서 용도지역 상향(일반상업지역) 시는 아래의 용적률 및 의무공공기여 적용** · **용적률체계 : 현황용적률/800%/법적용적률 2배** **※ 다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9항제2호 적용** · **공공기여량 : (800%-현황용적률) × 0.6 / 800%**

자. 경과규정

- 기본계획 변경 고시 이전
  · 정비계획 결정(변경포함)을 위한 주민공람을 추진한 경우에는 종전 기본계획 적용이 가능하다.
- 기본계획 변경 고시 이후
  · 정비계획 결정(변경포함)하는 경우 금번 기본계획변경 사항을 적용한다
  · 단, 높이와 용적률은 추가로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결정된 사항은 인정하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 경미한 변경 시에는 종전 기본계획 적용이 가능하다.
  · 공공주택이 계획된 사업지의 경우 매입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변경한다.

4. 관련도서 : 서울도시공간포털(https://urban.seoul.go.kr)-정보광장-자료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09호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38호(2010.12.02.)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나진상가 15동 일대에 대하여 2025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5.8.25)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23.6)을 통해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역할을 분담하는 신산업중심지로 육성하고 미래 혁신거점이 될 수 있도록 용산전자상가지구 나진상가 15동 일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Ⅱ.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용산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봉래동 ~ 용산구 한강로 일대	3,458,443.3	서고 제1995-53호 ('95.3.8.)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계		3,458,443.30	100.0	-
주거지역	소 계	2,356,386.96	68.1	-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87,000.00	2.5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509,382.80	14.7	-
	제2종일반주거지역	493,545.05	14.3	-
	제3종일반주거지역	1,095,475.01	31.7	-
	준주거지역	170,984.10	4.9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966,895.14	28.0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35,161.20	3.9	-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

1) 시장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유통업무설비 결정조서 :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유통 업무설비	한강로2가 15-2일대	108,584.1	감)14,314.8	94,269.3	건고제332호 (85.07.31)	특7 : 1,992.9㎡ 특8 : 12,321.9㎡

※ 유통업무설비 변경 면적은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7, 8 내 유통업무설비 면적 합한 값임

■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유통업무설비	유통업무설비시설 폐지 - 위치 : 한강로2가 15-2일대 - 면적 : 14,314.8㎡ (특7 : 1,992.9㎡)	신산업용도로의 전환을 위해 물류시설시스템의 변화로 기능이 상실된 유통업무설비 폐지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마. 방재시설 : 변경없음

바. 보건위생시설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가. 가구계획 및 획지 규모 결정 조서 : 변경

1) 서울역 선형필지지구 ~ 6) 신계지구 : 변경없음

7) 전자상가지구 결정조서 : 변경

가구 번호	동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전4	한강로3가	3-23	1,992.9	-	획지1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7

■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7(신설)

구분	가구번호	동	지번	면적(㎡)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한강로3가	3-23	1,992.9	-	증) 1,992.9	1,992.9	-

8) 한강로지구 ~ 12) 이촌지구 : 변경없음

2.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1) 건폐율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용적률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 기정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전자상가지구	유통업무설비시설	100m이하	-

■ 변경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전자상가지구	유통업무설비시설	100m이하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을 따름

다.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라. 건축물 형태·색채 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가.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1) ~ 캠프킴부지 특별계획구역(46) : 변경없음

나.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8(47) : 신설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7	한강로3가 3-23	-	증) 1,992.9	1,992.9	-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신설)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특별계획구역 신설 면적 : 1,992.9㎡	유통업무설비 폐지하고 토지 복합화를 통해 합리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계획구역 신설

2)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비고
위 치		• 한강로3가 3-23 일원	-
구역면적		• 1,992.9㎡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폐지	
가구 및 획지		• 1,992.9㎡	-
건축물 용도	불허	• 장례식장,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지정	• 신산업용도,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전체 연면적 30%이상)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시행자는 신산업 용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계획서 제출 ※ 신산업용도 : ICT기반의 정보통신산업·소프트웨어·디지털 콘텐츠, 연구개발업 등 ※ 지정용도는 제시된 용도 중 택할 수 있음	-
	권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가로활성화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중 식품, 잡화, 의류, 서적 등 일용품소매점 / 제1종, 제2종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서점(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가로변에 접한 외벽길이의 1/2 이상 연접 배치) • 운동시설 • 신산업용도	-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비고
건축물 밀도	건폐율	• 60% 이하 ※ 공중공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인정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가능	-
	용적률	• 기준 : 250% 이하 • 허용 : 610% 이하 • 상한 : 800% 이하 ※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800%까지 인정 ※ 공개공지 초과 설치, 친환경 의무기준 초과 등을 통한 800% 초과 가능 - 적용산식 : 허용용적률 X 완화비율	-
	높이	• 120m + α 이하 ※ 계획 내용을 고려(디자인 특화, 개방형 녹지 확보)하여 높이 완화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가능	-
건축선	건축한계선	• 청파로변, 새창로변, 이면부 3m	-
배치 및 형태	건축물 형태	• 새창로변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 유도 • 저층부 높이는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 내 건축물과 연계 및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 고층부 개방감 확보 및 도시환경 개선 유도 •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고려	-
	개방형 라운지	•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개방된 구조로 조성하되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조성함	-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비고
대지내 공지	공개 공지	공통	• 공개공지 최소 폭 9m이상 확보 및 필로티형 공개공지의 유효높이는 8m이상 확보 • 대상지 입지특성에 따른 보행체계분석을 통해 일반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실효성 있고 개방적인 형태로 조성		-
		개별	• 청파로변 가각부 공개공지 위치 지정 • 공중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등과 저층부 판매시설 등 가로활성화 용도와 연계 조성하고 일반인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 보도 및 녹화공간 조성 ※ 전면공지 내 연결브릿지 설치 검토 가능		-
대지내 통로	공중공공 보행통로		• 청파로변(30m) 조성 ※ 공중공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인정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
	연결 브릿지		새창로(30m), 청파로(8m) 2개소	• 특별계획구역 5,9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계획	-
			※ 공중공공보행통로 및 연결브릿지 설치는 "용산전자상가 입체보행가이드라인(안)" 을 따름 ※ 연결브릿지는 주변지역과의 연결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협약을 통해 민간에서 운영관리 검토 ※ 연결브릿지는 특별계획구역간 지형의 고저차와 우선 설치 현황을 고려, 동일레벨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외 차량출입 허용 ※ 청파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지침도 참조)		-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 공공기여율 14.0% ※ 「신산업용도」 30% 도입을 고려한 공공기여율 결정 • 공공기여 사항 ① 도로 ② 주차장		-
기타			• 개방형 녹지 20% 이상 확보 • 특별계획구역간 유연한 통합 허용		-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

①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 등의 규정에 의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 제9호 규정에 의해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지의 분할, 교환에 관한 사항
2. 자율적 공동개발
3. 전면공지,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등 대지내 공지 및 대지내 통로(공공보행통로, 공중공공보행통로, 연결브릿지)의 위치, 성격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4, 신산업용도 지정용도 세부업종 변경
5.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6. 건축선에 접해야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7.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차량출입구가 변경되는 경우, 이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8.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 향후 관련 법령 및 지침이 제·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변경된 법령 및 지침을 적용함

Ⅲ.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결정조서

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신설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신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7	한강로3가 3-23 일원	-	증) 1,992.9	1,992.9	-

■ 특별계획구역 결정(신설)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특별계획구역 신설 면적 : 1,992.9㎡	유통업무설비 폐지하고 신산업용도 복합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계획구역 신설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용도지역 : 변경없음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1,992.9	-	1,992.9	100.0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992.9	-	1,992.9	100.0	-

2) 용도지구 : 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신설

1) 가구 및 획지 결정조서 : 신설

구 분	구 역 명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7	가	한강로3가 3-23	1,992.9	획지

■ 가구 및 획지 결정(신설) 사유서

구 분	구 역 명	변경사유
신 설	• 획지 신설 - 면적 : 1,992.9㎡	• 유통업무설비 폐지하고 토지 복합화를 통해 합리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계획구역 신설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 결정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용도	불허용도 ①	• 장례식장,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좌동	-
	권장용도 ①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가로활성화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중 식품, 잡화, 의류, 서적 등 일용품소매점 / 제1종, 2종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서점(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가로변에 접한 외벽길이의 1/2 이상 연접 배치) • 운동시설 • 신산업용도	좌동	-
	지정용도 ①	• 신산업용도,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전체 연면적 30%이상)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시행자는 신산업 용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계획서 제출 ※ 신산업용도 : ICT기반의 정보통신산업·소프트웨어·디지털 콘텐츠, 연구개발업 등 ※ 지정용도는 제시된 용도 중 택할 수 있음	좌동	-

※ 별표1 : 신산업용도 가능 업종

-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AI·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지로 육성하기 위해 ICT 산업분류에 의거하여 신산업용도 가능 업종을 제시
- 다만, 미래산업 동향 및 신기술의 출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미한 변경을 통해 용산 전자상가의 유치업종의 범위의 유연성을 유지

※ 도입용도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해 신산업용도를 대장상 기재하여 자치구에서 관리

※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신산업용도 지정용도 세부업종 변경

【10차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신산업용도 가능업종】

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261	• 반도체 제조업
	262	• 전자부품 제조업
	263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264	•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265	•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출판업(58)	582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업
방송업(60)	601	• 라디오 방송업
	602	• 텔레비전 방송업
우편 및 통신업(61)	612	• 전기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620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63)	631	•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9	• 기타 정보 서비스업
연구개발업(701)	7011	•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2	• 공학 연구개발업
	7013	•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2020 ICT통합분류체계(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신산업용도 가능업종】

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정보통신 방송기기업 (1000.0000)	1100.0000	• 전자부품
	1200.0000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300.0000	• 통신 및 방송기기
	1400.0000	• 영상 빛 음향기기
	1500.0000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정보통신 방송서비스업 (2000.0000)	2100.0000	• 통신서비스
	2200.0000	• 방송서비스
	2300.0000	• 정보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3000.0000)	3100.0000	• 패키지소프트웨어
	3200.0000	• 게임소프트웨어
	3300.0000	• IT서비스
	3400.0000	• 디지털콘텐츠 개발제작

2) 건축물의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결정

■ 건폐율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획지	60% 이하 ※ 공중공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인정시 건축 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가능	좌동	-

■ 용적률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용적률	기준	250% 이하	좌동	-
	허용	610% 이하	좌동	-
	상한	800% 이하	950.19% 이하	-

※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800%까지 인정

※ 공개공지 초과 설치, 친환경 의무기준 초과 등을 통해 800% 초과 가능

- 적용산식 : 허용용적률 × 완화비율

■ 높이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준높이	• 120m + α 이하 ※ α는 계획 내용을 고려(디자인 특화, 개방형 녹지 확보)하여 높이완화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가능	• 130m이하	-

3) 건축물 배치 및 형태 결정

■ 건축물 배치·형태 등에 관한 결정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축한계선	• 청파로변, 새창로변, 이면부 3m	좌동	-
건축물 형태	• 저층부 높이는 전자상가 내 건축물과 연계 및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 고층부 탑상형 건축을 통해 시각적 개방감 및 도시환경 개선 유도 • 가로활성화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개방적 형태의 건축물 권장(캐노피, 아케이드, 어닝 등의 적극적 활용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좌동	-
개방형 라운지	•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개방된 구조로 조성하되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조성함	좌동	-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공통	• 공개공지 최소 폭 9m이상 확보 및 필로티형 공개공지의 유효높이는 8m이상 확보 • 대상지 입지특성에 따른 보행체계분석을 통해 일반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실효성 있고 개방적인 형태로 조성		좌동	-
		개별	• 청파로변 가각부 공개공지 위치 지정 • 공중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등과 저층부 판매시설 등 가로활성화 용도와 연계 조성하고 일반인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좌동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 보도 및 녹화공간 조성 ※ 전면공지 내 연결브릿지 설치 검토 가능		좌동	-
대지 내 통로	공중공공 보행통로		• 청파로변(30m) 조성 ※ 공중공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인정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좌동	-
	연결브릿지		새창로(30m) 청파로(8m) 2개소	• 특별계획구역 5,9구역 연결하는 연결 브릿지 설치계획	좌동	-
			※ 공중공공보행통로 및 연결브릿지 설치는 “용산전자상가 입체보행가이드라인(안)” 을 따름 ※ 연결브릿지는 주변지역과의 연결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협약을 통해 민간에서 운영관리 검토 ※ 연결브릿지는 특별계획구역간 지형의 고저차와 우선 설치 현황을 고려, 동일레벨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외 차량출입 허용 ※ 청파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지침도 참조)	좌동	-

3)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에 관한 결정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 공공기여율 14.0% ※ 「신산업용도」 30% 도입을 고려한 공공기여율 결정 • 공공기여 사항 ① 도로 ② 주차장	• 공공기여 부담률(순부담률) : 23.96%(공공기여 면적 : 477.5㎡) • 도로 - 토지 : 12.6㎡(0.64%) • 공영 주차장 - 토지 : 464.9㎡(23.33%)	-

※ 향후 토지가 및 건축계획, 여건변화 등에 따라 면적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한강로3가 3-43(61.8㎡)는 서울특별시(36.6㎡), 민간(25.2㎡)가 소유하고 있음. 이 중 민간 지분에 대하여 토지 공공기여하는 사항임
※ 주차장 부지는 총 면적 2,216.3㎡로 특8 공공기여를 포함하고 있음
- 특7: 464.9㎡, 특8 공공기여: 619.2㎡

라.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비고
위 치		• 한강로3가 3-23 일원	-
구역면적		• 1,992.9㎡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폐지	
가구 및 획지		• 1,992.9㎡	-
건축물 용도	불허	• 장례식장,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지정	• 신산업용도,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전체 연면적 30%이상)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시행자는 신산업 용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계획서 제출 ※ 신산업용도 : ICT기반의 정보통신산업·소프트웨어·디지털 콘텐츠, 연구개발업 등 ※ 지정용도는 제시된 용도 중 택할 수 있음	-
	권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가로활성화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중 식품, 잡화, 의류, 서적 등 일용품소매점 / 제1종, 제2종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서점(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가로변에 접한 외벽길이의 1/2 이상 연접 배치) • 운동시설 • 신산업용도	-
건축물 밀도	건폐율	• 60% 이하 ※ 공중공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인정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가능	-
	용적률	• 기준 : 250.0% 이하 • 허용 : 610.0% 이하	-

구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비고
			• 상한 : 950.19% 이하	
	높이		• 130m이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청파로변, 새창로변, 이면부 3m	-
배치 및 형태	건축물 형태		• 새창로변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 유도 • 저층부 높이는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 내 건축물과 연계 및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 고층부 개방감 확보 및 도시환경 개선 유도 •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고려	-
	개방형 라운지		•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개방된 구조로 조성하되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조성함	-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공통	• 공개공지 최소 폭 9m이상 확보 및 필로티형 공개공지의 유효높이는 8m이상 확보 • 대상지 입지특성에 따른 보행체계분석을 통해 일반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실효성 있고 개방적인 형태로 조성	-
		개별	• 청파로변 가각부 공개공지 위치 지정 • 공중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등과 저층부 판매시설 등 가로활성화 용도와 연계 조성하고 일반인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 보도 및 녹화공간 조성 ※ 전면공지 내 연결브릿지 설치 검토 가능	-
대지내 통로	공중공공 보행통로		• 청파로변(30m) 조성 ※ 공중공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인정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
	연결 브릿지	새창로(30m), 청파로(8m) 2개소	• 특별계획구역 5,9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계획	-
			※ 공중공공보행통로 및 연결브릿지 설치는 "용산전자상가 입체보행가이드라인(안)" 을 따름 ※ 연결브릿지는 주변지역과의 연결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협약을 통해 민간에서 운영관리 검토 ※ 연결브릿지는 특별계획구역간 지형의 고저차와 우선 설치 현황을 고려, 동일레벨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외 차량출입 허용 ※ 청파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지침도 참조)	-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 공공기여율 23.96% ※ 용적률 완화적용에 따른 기부채납 23.96% • 공공기여 사항 ① 도로(0.64%) ② 주차장(23.33%)	-
기타			• 개방형 녹지 20% 이상 확보 • 특별계획구역간 유연한 통합 허용	-

마. 인센티브계획에 관한 결정사항

1) 인센티브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23.3.)」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중점 인센티브와 계획유도 인센티브로 구분함
- 중점 인센티브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을 의무적으로 계획하며,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인센티브량은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으로 대체 불가함
- 중점 인센티브는 획지별 가급적 1~2개 항목이 해당하도록 계획함
- 구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중점 인센티브를 계획하지 않을 수 있음
- 인센티브 항목은 구역현황, 입지여건, 용도지역, 접도 조건 등에 따라 차별화하고, 동일한 가구 내에서도 차등하여 계획할 수 있음
- 향후, 지상전주 및 전신지중화는 한전 등 관련부서 협의에 따라 적용 여부 검토

유형	인센티브 항목		세부계획기준	비고
중점	신산업융도 도입		• 지식기반산업시설, 창업지원시설, 스마트 물류시설 등 신산업융도 30%(전체 연면적 기준) 초과 도입시 : 기준용적률(250%) x (신산업융도 30% 초과면적/연면적)*2.4 ※ 도입시설 산정시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산정	최대 120%p
	입체보행데크		• 대지 내 공중 공공보행통로(입체보행데크) 조성 시	정량 10%p
			• 인접 타 특별계획구역과의 공중 공공보행통로(입체보행데크) 조성 시 ※ 설치되는 보행데크(브릿지형) 개수당 인센티브 부여	정량 20%p
	녹지 초과 확보	개방형	• 개방형녹지 의무기준 20% 초과 설치시 - 20% 설치 시 : 인센티브 40%p 정량부여 - 20% 초과 설치 시 : 초과면적을 도입시설면적으로 산정, 최대 80%p : 기준용적률 x (추가녹지면적 / 대지면적) x 2.0 ※ 20% 초과 설치 시 정량 인센티브 40%와 초과면적으로 산정한 인센티브량을 합산하여 최대 80% 이하 부여	최대 100%p
		입체	• 입체녹지면적 설치 시, 최대 20%p (저층부 상부, 옥상, 벽면 녹화 포함) : 기준용적률 x (추가녹지면적 / 대지면적) x 2.0	
	방재안전		• 빗물이용시설 설치시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침투량(ton/hr)의 합 ≥건축면적 x 0.05 또는 대지면적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 기준용적률 x 0.08	최대 20%p

계획 유도	공익시설 도입	• 건축물 내 공익시설 : 소규모기업의 활동공간(개방형 라운지 등) • 특정층(최상층) 개방 : 최상층에 공공공간(전망대, 로비 등) 조성 시 : 기준용적률 x (도입시설 연면적/대지면적) x 0.4	최대 40%p
	저층부 개방공간 확보	• 저층부 녹지와 연계되는 저층부(최소1층) 특정 시간대 완전 개방시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6시간 이상)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1층 바닥면적) x 0.6	
	공공보행통로	•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 도입 시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대지면적) x 4.0	최대 40%p
	권장용도 도입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및 운동시설 : 기준용적률 x (도입시설 연면적/대지면적) x 0.6 ※ 도입시설 산정시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산정	최대 40%p
	가로활성화용도	•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및 1층 외벽길이의 1/2이상 설치	정량 40%p
	로봇친화형 건축물	• 로봇친화형 건축물 우수등급 이상 인증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인센티브 적용시 서울시(도시관리과)와 사전협의 하고, 국토부 등 새로운 제도 및 기준 마련시 이를 반영하여야 함	정량 40%p
	전신지중화	• 주변도로의 기존 지상 전주 및 전선(통신케이블 등 포함) 지중화 시	정량 40%p

Ⅳ.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2133-8385) 및 용산구 도시계획과(☎ 2199-741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공간포털 (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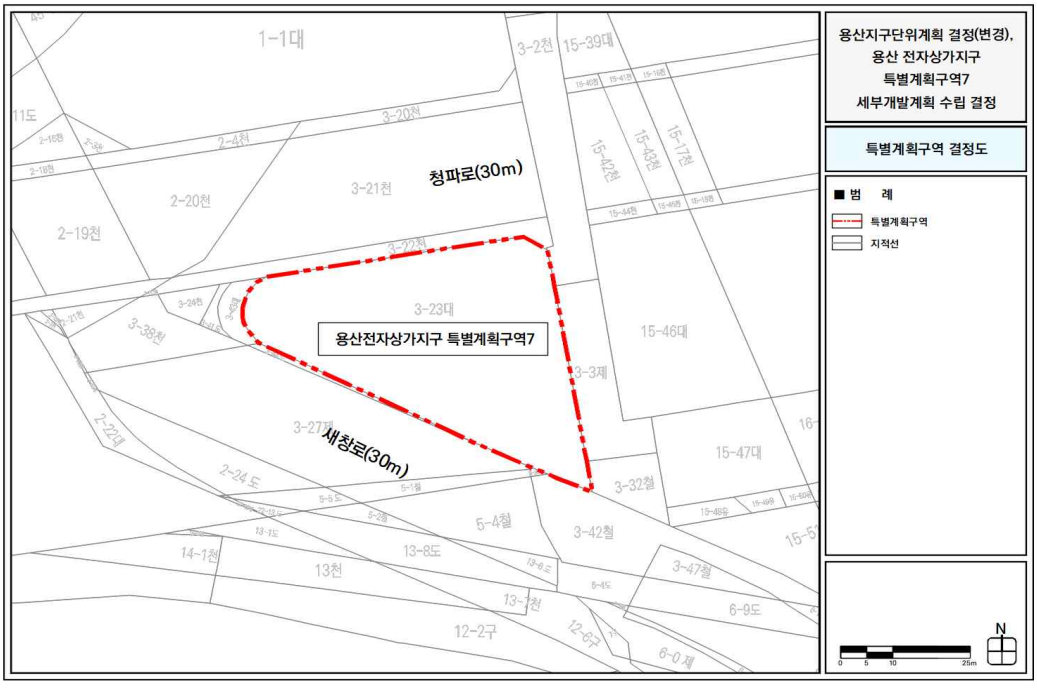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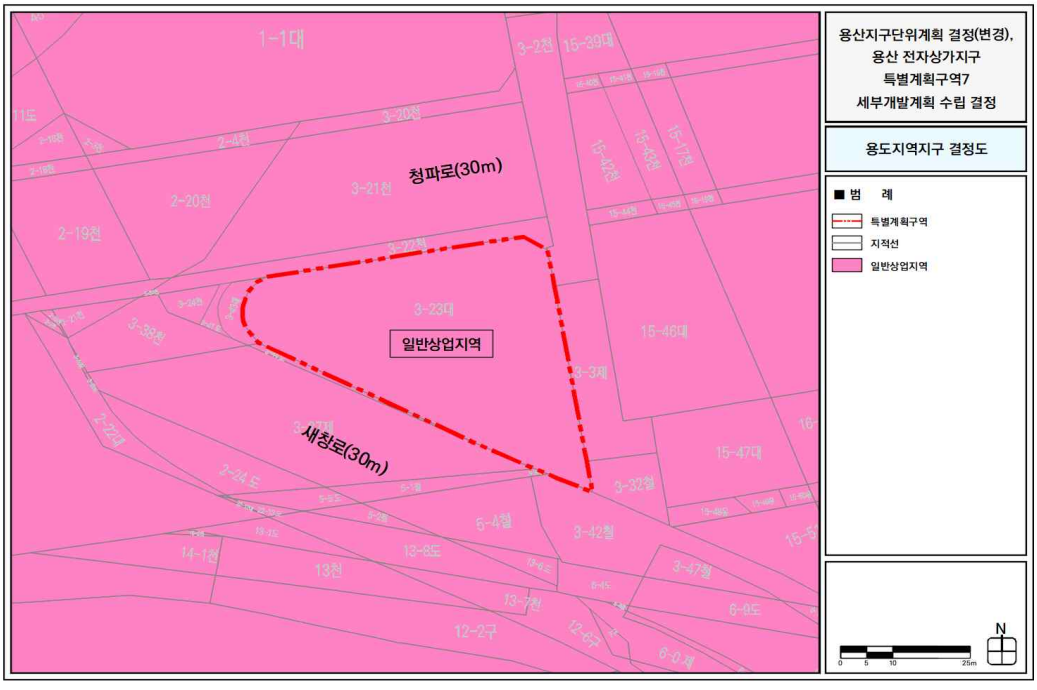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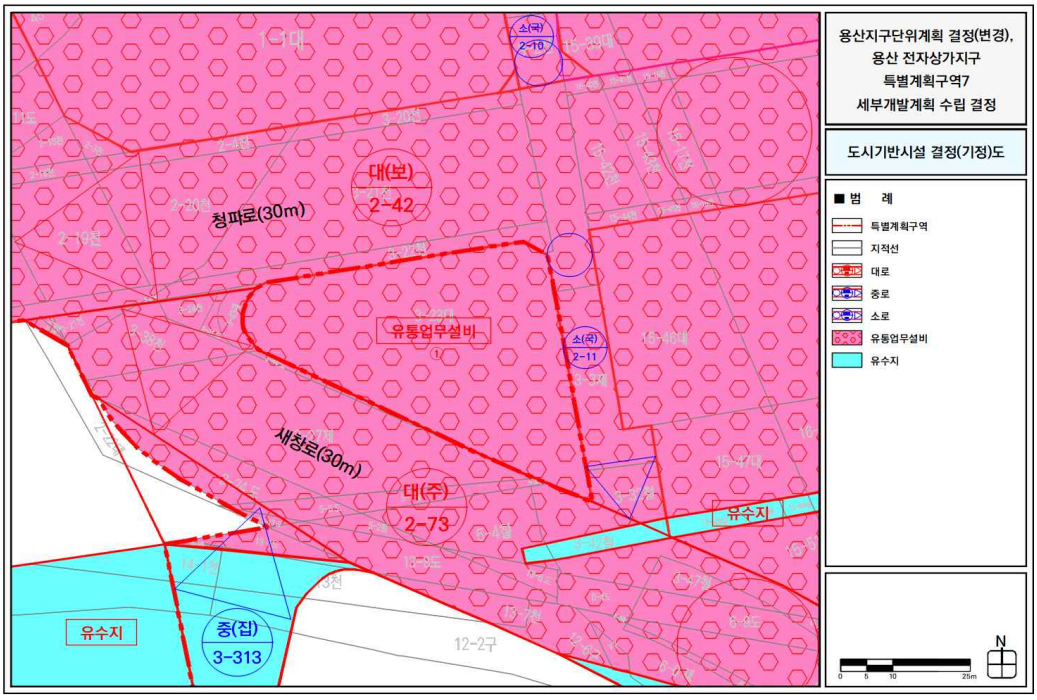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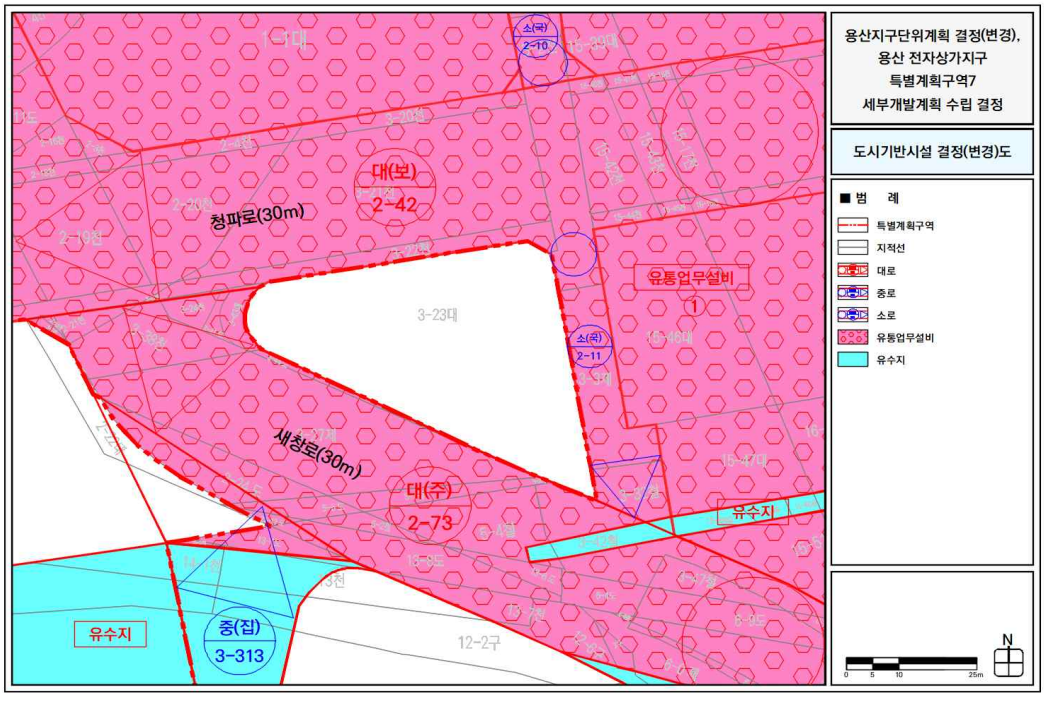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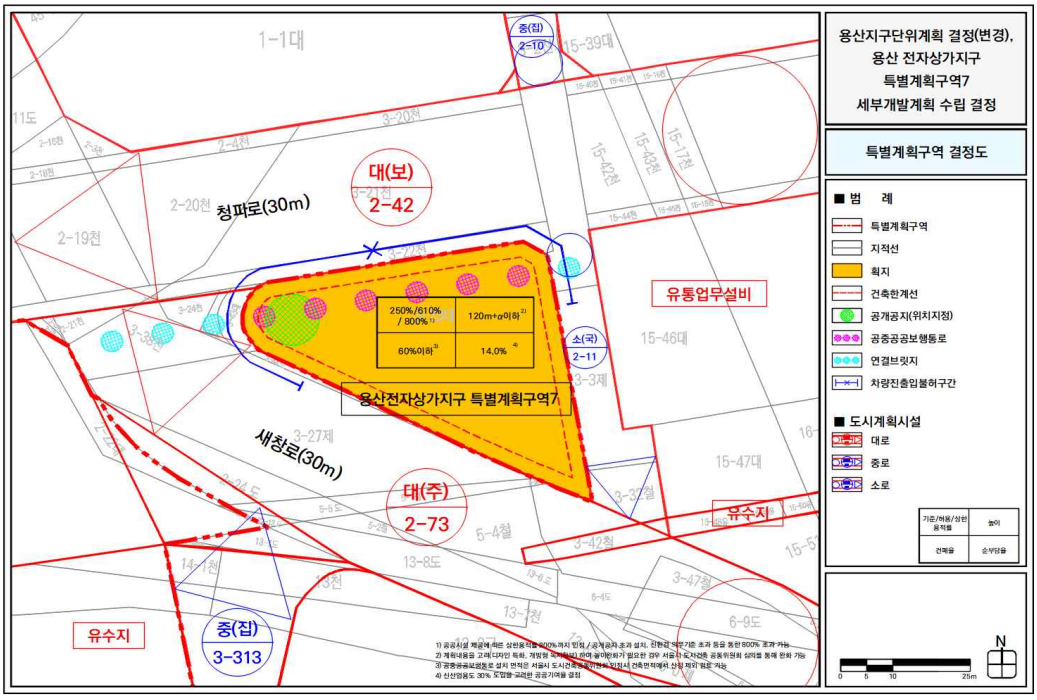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10호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38호(2010.12.02.)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나진상가 17·18동 일대에 대하여 2025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5.8.25)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23.6)을 통해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역할을 분담하는 신산업중심지로 육성하고 미래 혁신거점이 될 수 있도록 용산전자상가지구 나진상가 17·18동 일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Ⅱ.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용산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봉래동 ~ 용산구 한강로 일대	3,458,443.3	서고 제1995-53호 ('95.3.8.)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계		3,458,443.30	100.0	-
주거지역	소 계	2,356,386.96	68.1	-
	제1종일반주거지역	87,000.00	2.5	-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509,382.80	14.7	-
	제2종일반주거지역	493,545.05	14.3	-
	제3종일반주거지역	1,095,475.01	31.7	-
	준주거지역	170,984.10	4.9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966,895.14	28.0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35,161.20	3.9	-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 : 변경

1) 도로 결정조서 : 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유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64	6	국지 도로	85	한강로2가 12-12	한강로2가 47	일반 도로	-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3-64	도로 신설	인근 필지(한강로2가 14-18, 맹지)의 도로 부재에 따른 맹지 해소

2) 주차장 결정조서 :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주차장	한강로2가 414일대	564	감)564	-	서고제638호 ('87.09.16)	-
폐지	②	주차장	한강로2가 12-12일대	4,662	감)4,662	-	건고332호 ('85.07.31)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②	주차장	주차장 폐지	주차장 노후(37년 경과) 저이용시설을 국가 유공자 권익증진을 위한 보훈회관 조성과 주차수요에 새롭게 대응코자 함

3) 자동차정류장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

1) 시장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유통업무설비 결정조서 :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③	유통 업무설비	한강로2가 15-2일대	108,584.1	감)14,314.8	94,269.3	건고제332호 (85.07.31)	특7 : 1,992.9㎡ 특8 : 12,321.9㎡

※ 유통업무설비 변경 면적은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7, 8 내 유통업무설비 면적 합한 값임

■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③	유통업무설비	• 유통업무설비시설 폐지 - 위치 : 한강로2가 15-2일대 - 면적 : 14,321.8㎡ (특8 : 12,321.9㎡)	• 신산업용도로의 전환을 위해 물류시설시스템의 변화로 기능이 상실된 유통업무설비 폐지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마. 방재시설 : 변경없음

바. 보건위생시설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가. 가구계획 및 획지 규모 결정조서 : 변경

1) 서울역 선형필지지구 ~ 6) 신계지구 : 변경없음

7) 전자상가지구 결정조서 : 변경

가구 번호	동	지번	면적(㎡)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전1	한강로2가 외 2개동	한강로2가 15-2대 외 15개 필지	10,140.5	-	획지1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8
-	한강로2가 외 1개동	한강로2가 12-12 외 7개 필지	2,216.3	-	획지2	

■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8(신설)

구분	가구번호	면적(㎡)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고
			동	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신설	-	10,140.5	한강로2가	15-38	2.7	2.7	용산 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8	획지1
				15-39	322.6	300.8		
				15-2	7,316.4	7,316.4		
				12-7	383.9	383.9		
				12-8	51.9	51.9		
				12-9	812.2	330.6		
				12-12	1,581.3	750.7		
				12-18	88.5	88.5		
				12-19	40.7	40.7		
			한강로3가	3-1	165.6	5.7		
			신계동	6-24	98.8	98.8		
				6-28	24.6	24.6		
				6-29	452.0	452.0		
				6-33	20.8	20.8		
				6-34	68.0	68.0		
				12-33	623.8	204.4		

신설	-	2,216.3	한강로2가	416	258.3	197.8	용산 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8	획지2
				414	261.8	76.4		
				12-9	812.2	481.6		
				12-12	1581.3	577.3		
				12-13	232.6	232.6		
			신계동	47	52.9	35.8		
				12-33	623.8	419.4		
				23-17	195.4	195.4		

8) 한강로지구 ~ 12) 이촌지구 : 변경없음

2.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개발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1) 건폐율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용적률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 기정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전자상가지구	유통업무설비시설	100m이하	-

■ 변경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전자상가지구	유통업무설비시설	100m이하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을 따름

다. 건축물 배치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라. 건축물 형태·색채 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가.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1) ~ 캠프킴부지 특별계획구역(46) : 변경없음

나.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8(48) : 신설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㊽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8	한강로2가 15-2 일원	-	증)12,894.9	12,894.9	-

※ 특별계획구역 12,894.9㎡내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7 공공기여(주차장) 464.9㎡ 포함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신설)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특별계획구역 신설 면적 : 12,894.9㎡	유통업무설비 폐지하고 신산업용도 복합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계획구역 신설

2)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비고
위 치			• 한강로2가 15-2 일원	-
구역면적			• 12,894.9㎡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폐지	-
가구 및 획지		획지1	• 10,140.5㎡	-
		획지2	• 2,216.3㎡	-
건축물 용도	불허	획지1	• 장례식장,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지정	획지1	• 신산업용도,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전체 연면적 30%이상)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시행자는 신산업 용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계획서 제출 ※ 신산업용도 : ICT기반의 정보통신산업·소프트웨어·디지털 콘텐츠, 연구개발업 등 ※ 지정용도는 제시된 용도 중 택할 수 있음	-
		획지2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업무시설 등 도입 가능	-
	권장	획지1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가로활성화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중 식품, 잡화, 의류, 서적 등 일용품소매점 / 제1종, 제2종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서점(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가로변에 접한 외벽길이의 1/2 이상 연접 배치) • 운동시설 • 신산업용도	-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비고
건축물 밀도	건폐율	획지1	• 60% 이하 ※ 공중공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인정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가능	-
		획지2	• 90%이하 ※ 주차전용 건축물 설치로 인한 건폐율 완화	-
	용적률	획지1	• 기준 : 249.65% 이하 • 허용 : 606.87% 이하 • 상한 : 795.65% 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가중평균용적률 적용 ※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795.65%까지 인정 ※ 공개공지 초과 설치, 친환경 의무기준 초과 등을 통한 795.65% 초과 가능 - 적용산식 : 허용용적률 X 완화비율	-
		획지2	• 669.36%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가중평균용적률 적용	-
	높이	획지1	• 100m + α 이하 ※ 계획 내용을 고려(디자인 특화, 개방형 녹지 확보)하여 높이 완화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가능	-
		획지2	• 45m이하	-
건축선	건축 한계선		• 청파로변, 새창로49길 : 3m • 이면부(북측) : 1.5m • 이면부(획지2) : 1m	-
	벽면 한계선	획지2	• 소(국) 3-64변 : 3m(필로티계획으로 높이 9m 이상(3개층) 확보)	-
배치 및 형태	건축물 형태		• 저층부는 주요 보행축(청파로)의 가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입체보행연계 및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개방적인 형태 도입 • 고층부는 개방형녹지와 연계하여, 개방감 및 통경공간 확보를 위한 탑상형의 건축 형태를 계획함	-
	개방형 라운지		•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개방된 구조로 조성하되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조성함	-
	이면부 단차구간		• 스텝형 조경 등 입체조경을 도입하여 옹벽을 최소화하여 조성함	-
대지내 공지	공개 공지	공통	• 공개공지 최소 폭 9m이상 확보 및 필로티형 공개공지의 유효높이는 8m이상 확보 • 대상지 입지특성에 따른 보행체계분석을 통해 일반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실효성 있고 개방적인 형태로	-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비고
			조성	
		개별	• 청파로변, 청파로변 가각부 공개공지 위치 지정 • 공중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등과 저층부 판매시설 등 가로활성화 용도와 연계 조성하고 일반인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 보도 및 녹화공간 조성 ※ 전면공지 내 연결브릿지 설치 검토 가능	-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비고
대지내 통로	공공 보행통로	• 청파로-주차장 간 지상부 보행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폭5m) 시·종점 지정		-
	공중공공 보행통로	• 청파로변(30m) 조성 ※ 공중공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인정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가능		-
	연결 브릿지	청파로(30m),청파로(8m) 2개소	• 특별계획구역 6, 10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계획	-
		※ 공중공공보행통로 및 연결브릿지 설치는 '용산전자상가 입체보행 가이드라인(안)' 을 따름 ※ 연결브릿지는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협약을 통해 민간에서 운영 관리 검토 ※ 연결브릿지는 특별계획구역 지형의 고저차와 우선 설치 현황을 고려, 동일 레벨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외 차량출입 허용 ※ 청파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지침도 참조)		-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 공공기여율 24.5% ※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율(9.5%)은 상한용적률 미적용 (단,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 15% 상한용적률 적용) ※ 「신산업융도」 30% 도입을 고려한 공공기여율 결정 • 공공기여 사항 ① 공영주차장 ② 도로 ③ 산업혁신기반 마련(공공임대업무시설)		-
기타		• 개방형 녹지 20%이상 확보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역 내 인근 부지와 통합개발 가능 • 인근 부지(한강로2가 14-18)와 연접한 공개공지는 단차 없이 통합조성 검토 • 인근 부지(한강로2가 14-18)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차량 회차공간 확보		-

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

①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처리 등) 등의 규정에 의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 제9호 규정에 의해 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지의 분할, 교환에 관한 사항
2. 자율적 공동개발
3. 전면공지,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등 대지내 공지 및 대지내 통로(공공보행통로, 공중공공보행통로, 연결브릿지)의 위치, 성격 및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4, 신산업용도 지정용도 세부업종 변경
5.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6. 건축선에 접해야하는 건축물 벽면에 관한 사항
7.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차량출입구가 변경되는 경우, 이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8.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 향후 관련 법령 및 지침이 제·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변경된 법령 및 지침을 적용함

Ⅲ.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결정조서

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신설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신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㊽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8	한강로2가 15-2 일원	-	증)12,894.9	12,894.9	-	

※ 특별계획구역 12,894.9㎡내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7 공공기여(주차장) 464.9㎡ 포함

■ 특별계획구역 결정(신설)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특별계획구역 신설 면적 : 12,894.9㎡	• 유통업무설비 폐지하고 신산업융도 복합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계획구역 신설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용도지역 : 변경없음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12,894.9	-	12,894.9	100.0	-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48.3	-	248.3	1.9	-
	제3종일반주거지역	520.1		520.1	4.1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2,126.5	-	12,126.5	94.0	-

2) 용도지구 : 변경없음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신설

1) 가구 및 획지 결정조서 : 신설

구 분	구 역 명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8	가	한강로2가 15-2 일원	10,140.5	획지1
신 설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8	나	한강로2가 12-12 일원	2,216.3	획지2

■ 가구 및 획지 결정(신설) 사유서

구 분	구 역 명	변경사유
신 설	• 획지 신설 - 획지1 : 10,140.5㎡ - 획지2 : 2,216.3㎡	• 유통업무설비 폐지하고 토지 복합화를 통해 합리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계획구역 신설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 결정

구 분		적용구역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용도	불허용도 ①	획지1	• 장례식장,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좌동	-
	권장용도 ①	획지1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가로활성화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중 식품, 잡화, 의류, 서적 등 일용품소매점 / 제1종, 2종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서점(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가로변에 접한 외벽길이의 1/2 이상 연접 배치) • 운동시설 • 신산업용도	좌동	-
	지정용도 ①	획지1	• 신산업용도,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전체 연면적 30%이상)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시행자는 신산업 용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계획서 제출 ※ 신산업용도 : ICT기반의 정보통신산업·소프트웨어·디지털 콘텐츠, 연구개발업 등 ※ 지정용도는 제시된 용도 중 택할 수 있음	좌동	-
	지정용도 ②	획지2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업무시설 등 도입 가능	좌동	

※ 별표1 : 신산업용도 가능 업종

-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AHCT 기반의 신산업 혁신지로 육성하기 위해 ICT 산업분류에 의거하여 신산업용도 가능 업종을 제시
- 다만, 미래산업 동향 및 신기술의 출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미한 변경을 통해 용산 전자상가의 유치업종의 범위의 유연성을 유지

※ 도입용도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해 신산업용도를 대장상 기재하여 자치구에서 관리

※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신산업용도 지정용도 세부업종 변경

【10차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신산업용도 가능업종】

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261	• 반도체 제조업
	262	• 전자부품 제조업
	263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264	•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265	•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출판업(58)	582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업
방송업(60)	601	• 라디오 방송업
	602	• 텔레비전 방송업
우편 및 통신업(61)	612	• 전기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620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63)	631	•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9	• 기타 정보 서비스업
연구개발업(701)	7011	•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2	• 공학 연구개발업
	7013	•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2020 ICT통합분류체계(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른 신산업용도 가능업종】

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정보통신 방송기기업 (1000.0000)	1100.0000	• 전자부품
	1200.0000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300.0000	• 통신 및 방송기기
	1400.0000	• 영상 빛 음향기기
	1500.0000	• 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정보통신 방송서비스업 (2000.0000)	2100.0000	• 통신서비스
	2200.0000	• 방송서비스
	2300.0000	• 정보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콘텐츠 (3000.0000)	3100.0000	• 패키지소프트웨어
	3200.0000	• 게임소프트웨어
	3300.0000	• IT서비스
	3400.0000	• 디지털콘텐츠 개발·제작

2) 건축물의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결정

■ 건폐율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획지1	• 60% 이하 ※ 공중공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인정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가능	좌동	-
획지2	• 90% 이하 ※ 주차전용 건축물 설치로 인한 건폐율 완화	좌동	-

■ 용적률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획지1	기준	249.65% 이하	좌동	가중평균 용적률 적용
	허용	606.87% 이하	좌동	
	상한	795.65% 이하	975.58%이하	
획지2	669.36%이하		좌동	가중평균 용적률 적용

※ 획지1: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가중평균용적률 적용 /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795.65%까지 인정

/ 공개공지 초과 설치, 친환경 의무기준 초과 등을 통해 795.65% 초과 가능(적용산식 : 허용용적률 × 완화비율)

※ 획지2: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가중평균용적률 적용

■ 높이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획지1	• 100m + α 이하 ※ α는 계획 내용을 고려(디자인 특화, 개방형 녹지 확보)하여 높이완화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가능	• 135m 이하	-
획지2	• 45m이하	좌동	-

3) 건축물 배치 및 형태 결정

■ 건축물 배치·형태 등에 관한 결정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축한계선	• 청파로변, 새창로49길 : 3m • 이면부(북측) : 1.5m • 이면부(획지2) : 1m	좌동	-
벽면한계선	• 소(국) 3-64변 : 3m(필로티계획으로 높이 9m 이상(3개층) 확보)	좌동	-
건축물 형태	• 저층부는 주요 보행축(청파로)의 가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입체보행연계 및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개방적인 형태 도입 • 고층부는 개방형녹지와 연계하여, 개방감 및 통경공간 확보를 위한 탑상형의 건축형태를 계획함	좌동	-
개방형 라운지	•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개방된 구조로 조성하되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조성함	좌동	-
이면부 단차구간	• 스텝형 조경 등 입체조경을 도입하여 옹벽을 최소화하여 조성함	좌동	-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

<table>
<tr><th colspan="3">구 분</th><th colspan="2">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th><th>세부개발계획</th><th>비고</th></tr>
<tr><td rowspan="4">대지내 공지</td><td rowspan="2">공개공지</td><td>공통</td><td colspan="2">• 공개공지 최소 폭 9m이상 확보 및 필로티형 공개공지의 유효높이는 8m이상 확보
• 대상지 입지특성에 따른 보행체계분석을 통해 일반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실효성 있고 개방적인 형태로 조성</td><td>좌동</td><td>-</td></tr>
<tr><td>개별</td><td colspan="2">• 청파로변, 청파로변 가각부 공개공지 위치 지정
• 공중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등과 저층부 판매시설 등 가로활성화 용도와 연계 조성하고 일반인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td><td>좌동</td><td>-</td></tr>
<tr><td colspan="2">전면공지</td><td colspan="2">• 건축한계선 후퇴부 보도 및 녹화공간 조성
※ 전면공지 내 연결브릿지 설치 검토 가능</td><td>좌동</td><td>-</td></tr>
<tr><td colspan="3">공공보행통로</td><td colspan="2">• 청파로-주차장 간 지상부 보행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폭 5m) 시·종점 지정</td><td>좌동</td><td>-</td></tr>
<tr><td rowspan="3">대지내 통로</td><td colspan="2">공중공공보행통로</td><td colspan="2">• 청파로변(30m) 조성
※ 공중공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인정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가능</td><td>좌동</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연결브릿지</td><td>청파로(30m)
청파로(8m)
2개소</td><td>• 특별계획구역 6, 10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 계획</td><td rowspan="2">좌동</td><td rowspan="2">-</td></tr>
<tr><td colspan="2">※ 공중공공보행통로 및 연결브릿지 설치는 '용산전자상가 입체보행 가이드라인(안)' 을 따름
※ 연결브릿지는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협약을</td></tr>
</table>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통해 민간에서 운영관리 검토 ※ 연결브릿지는 특별계획구역 지형의 고저차와 우선 설치 현황을 고려, 동일레벨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외 차량출입 허용 ※ 청파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지침도 참조)	좌동	-

3)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에 관한 결정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 공공기여율 24.5% ※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율 (9.5%)은 상한용적률 미적용 (단,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 15% 상한용적률 적용) ※ 「신산업융도」 30% 도입을 고려한 공공기여율 결정 • 공공기여 사항 ① 공영주차장 ② 도로 ③ 산업혁신기반 마련(공공임대업무시설)	• 공공기여 부담률(순부담률) : 36.29%(공공기여 면적 3,680.2㎡) • 공영 주차장 - 계 : 2,480.7㎡(24.46%) - 토지 : 458.0㎡ - 건축물 환산부지 : 2,022.7㎡ • 도로 - 도로 : 10.9㎡(0.11%) • 공공임대업무시설 - 계 : 1,188.6㎡(11.72%) - 토지 : 681.4㎡ - 건축물 환산부지 : 507.2㎡	-

※ 주차장 부지는 총 면적 2,216.3㎡로 특7 공공기여를 포함하고 있음
- 특7: 464.9㎡, 특8 공공기여: 619.2㎡

※ 주차장토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임에 따라 가중치 적용
- 토지면적 : 619.2㎡ / 적용면적 : 458.0㎡

※ 대상지 인근 부지(한강로2가 14-18)로 원활한 교통흐름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도로(소로3-64호선)를 조성하여 공공에 제공하나, 공공기여 미적용함 (공공기여 부담률 미포함)

※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는 상한용적률 미적용(9.5%)

※ 공영주차장과 공공임대업무시설 간 면적조정 가능

4)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 공공시설

구 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관리청)
	명칭	세분류				
신설	공공시설 (건축물)	공영주차장	한강로2가 12-12	연면적: 20,847.6㎡	-	서울시
신설	공공시설 (건축물)	공공임대 업무시설	한강로2가 15-2	연면적: 9,214.3㎡	-	서울시

※ 1) 기부채납면적은 확정측량성과 및 감정평가 등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2) 향후 토지 및 건축계획 변경, 인수자와의 협의 등에 따라 연면적은 조정될 수 있음

라.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구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비고
위 치			• 한강로2가 15-2 일원	-
구역면적			• 12,894.9㎡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폐지	-
가구 및 획지		획지1	• 10,140.5㎡	-
		획지2	• 2,216.3㎡	-
건축물 용도	불허	획지1	• 장례식장,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지정	획지1	• 신산업용도,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전체 연면적 30%이상)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시행자는 신산업 용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계획서 제출 ※ 신산업용도 : ICT기반의 정보통신산업·소프트웨어·디지털 콘텐츠, 연구개발업 등 ※ 지정용도는 제시된 용도 중 택할 수 있음	-
		획지2	•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업무시설 등 도입 가능	-
	권장	획지1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가로활성화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중 식품, 잡화, 의류, 서적 등 일용품소매점 / 제1종, 제2종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서점(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가로변에 접한 외벽길이의 1/2 이상 연접 배치) • 운동시설 • 신산업용도	-

구분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비고
건축물 밀도	건폐율	획지1	• 60% 이하 ※ 공중공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인정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가능	-
		획지2	• 90%이하 ※ 주차전용 건축물 설치로 인한 건폐율 완화	-
	용적률	획지1	• 기준 : 249.65% 이하 • 허용 : 606.87% 이하 • 상한 : 975.58% 이하	-
		획지2	• 669.36% 이하	-
	높이	획지1	• 135m이하	-
		획지2	• 45m이하	-
건축선	건축 한계선		• 청파로변, 새창로49길 : 3m • 이면부(북측) : 1.5m • 이면부(획지2) : 1m	-
	벽면 한계선	획지2	• 소(국) 3-64변 : 3m(필로티계획으로 높이 9m 이상(3개층) 확보)	-

배치 및 형태	건축물 형태		• 저층부는 주요 보행축(청파로)의 가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입체보행연계 및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개방적인 형태 도입 • 고층부는 개방형녹지와 연계하여, 개방감 및 통경공간 확보를 위한 탑상형의 건축 형태를 계획함	-
	개방형 라운지		•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개방된 구조로 조성하되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조성함	-
	이면부 단차구간		• 스텝형 조경 등 입체조경을 도입하여 옹벽을 최소화하여 조성함	-
대지내 공지	공개 공지	공통	• 공개공지 최소 폭 9m이상 확보 및 필로티형 공개공지의 유효높이는 8m이상 확보 • 대상지 입지특성에 따른 보행체계분석을 통해 일반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실효성 있고 개방적인 형태로 조성	-
		개별	• 청파로변, 청파로변 가각부 공개공지 위치 지정 • 공중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등과 저층부 판매시설 등 가로활성화 용도와 연계 조성하고 일반인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 보도 및 녹화공간 조성 ※ 전면공지 내 연결브릿지 설치 검토 가능	-
대지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 청파로-주차장 간 지상부 보행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폭5m) 시·종점 지정	-

	공중공공 보행통로	• 청파로변(30m) 조성 ※ 공중공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인정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가능		-
	연결브릿지	청파로(30m),청파로(8m) 2개소	• 특별계획구역 6, 10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계획	-
		※ 공중공공보행통로 및 연결브릿지 설치는 '용산전자상가 입체보행 가이드라인(안)' 을 따름 ※ 연결브릿지는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협약을 통해 민간에서 운영관리 검토 ※ 연결브릿지는 특별계획구역 지형의 고저차와 우선 설치 현황을 고려, 동일레벨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 외 차량출입 허용 ※ 청파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지침도 참조)		-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 공공기여율 36.29% ※ 용적률 완화적용에 따른 기부채납 26.79% ※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기부채납 9.50% • 공공기여 사항 ① 공영주차장(24.46%) ② 도로(0.11%) ③ 산업혁신기반 마련(공공임대업무시설)(11.72%)		-
기타		• 개방형 녹지 20%이상 확보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구역 내 인근 부지와 통합개발 가능 • 인근 부지(한강로2가 14-18)와 연접한 공개공지는 단차 없이 통합조성 검토 • 인근 부지(한강로2가 14-18)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차량 회차공간 확보		-

마. 인센티브계획에 관한 결정사항

1) 인센티브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23.3.)」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중점 인센티브와 계획유도 인센티브로 구분함
- 중점 인센티브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을 의무적으로 계획하며,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인센티브량은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으로 대체 불가함
- 중점 인센티브는 획지별 가급적 1~2개 항목이 해당하도록 계획함
- 구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중점 인센티브를 계획하지 않을 수 있음
- 인센티브 항목은 구역현황, 입지여건, 용도지역, 접도 조건 등에 따라 차별화하고, 동일한 가구 내에서도 차등하여 계획할 수 있음
- 향후, 지상전주 및 전신지중화는 한전 등 관련부서 협의에 따라 적용 여부 검토

유형	인센티브 항목		세부계획기준	비고
중점	신산업융도 도입		• 지식기반산업시설, 창업지원시설, 스마트 물류시설 등 신산업융도 30%(전체 연면적 기준) 초과 도입시 : 기준용적률(250%) x (신산업융도 30% 초과면적/연면적)*2.4 ※ 도입시설 산정시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산정	최대 120%p
	입체보행데크		• 대지 내 공중 공공보행통로(입체보행데크) 조성 시	정량 10%p
			• 인접 타 특별계획구역과의 공중 공공보행통로(입체보행데크) 조성 시 ※ 설치되는 보행데크(브릿지형) 개수당 인센티브 부여	정량 20%p
	녹지 초과 확보	개방형	• 개방형녹지 의무기준 20% 초과 설치시 - 20% 설치 시 : 인센티브 40%p 정량부여 - 20% 초과 설치 시 : 초과면적을 도입시설면적으로 산정, 최대 80%p : 기준용적률 x (추가녹지면적 / 대지면적) x 2.0 ※ 20% 초과 설치 시 정량 인센티브 40%와 초과면적으로 산정한 인센티브량을 합산하여 최대 80% 이하 부여	최대 100%p
		입체	• 입체녹지면적 설치 시, 최대 20%p (저층부 상부, 옥상, 벽면 녹화 포함) : 기준용적률 x (추가녹지면적 / 대지면적) x 2.0	
	방재안전		• 빗물이용시설 설치시 -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침투량(ton/hr)의 합 ≥건축면적 x 0.05 또는 대지면적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 기준용적률 x 0.08	최대 20%p

계획 유도	공익시설 도입	• 건축물 내 공익시설 : 소규모기업의 활동공간(개방형 라운지 등) • 특정층(최상층) 개방 : 최상층에 공공공간(전망대, 로비 등) 조성 시 : 기준용적률 x (도입시설 연면적/대지면적) x 0.4	최대 40%p
	저층부 개방공간 확보	• 저층부 녹지와 연계되는 저층부(최소1층) 특정 시간대 완전 개방시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6시간 이상)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1층 바닥면적) x 0.6	
	공공보행통로	•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 도입 시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대지면적) x 4.0	최대 40%p
	권장용도 도입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및 운동시설 : 기준용적률 x (도입시설 연면적/대지면적) x 0.6 ※ 도입시설 산정시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산정	최대 40%p
	가로활성화용도	•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및 1층 외벽길이의 1/2이상 설치	정량 40%p
	로봇친화형 건축물	• 로봇친화형 건축물 우수등급 이상 인증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인센티브 적용시 서울시(도시관리과)와 사전협의 하고, 국토부 등 새로운 제도 및 기준 마련시 이를 반영하여야 함	정량 40%p
	전신지중화	• 주변도로의 기존 지상 전주 및 전선(통신케이블 등 포함) 지중화 시	정량 40%p

Ⅳ.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2133-8385) 및 용산구 도시계획과(☎ 2199-741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공간포털 (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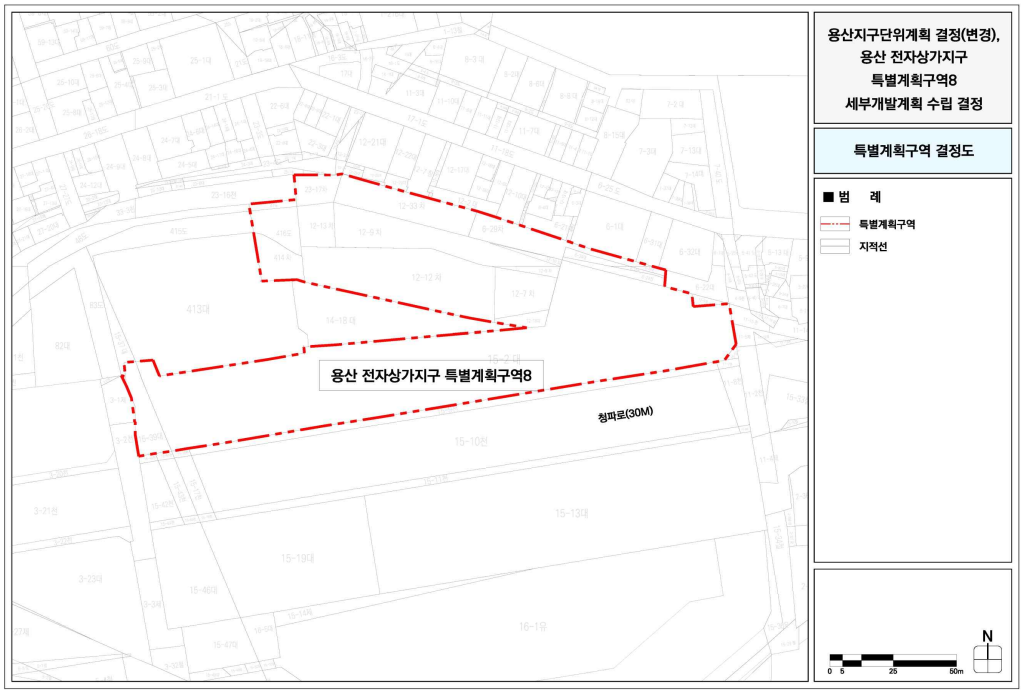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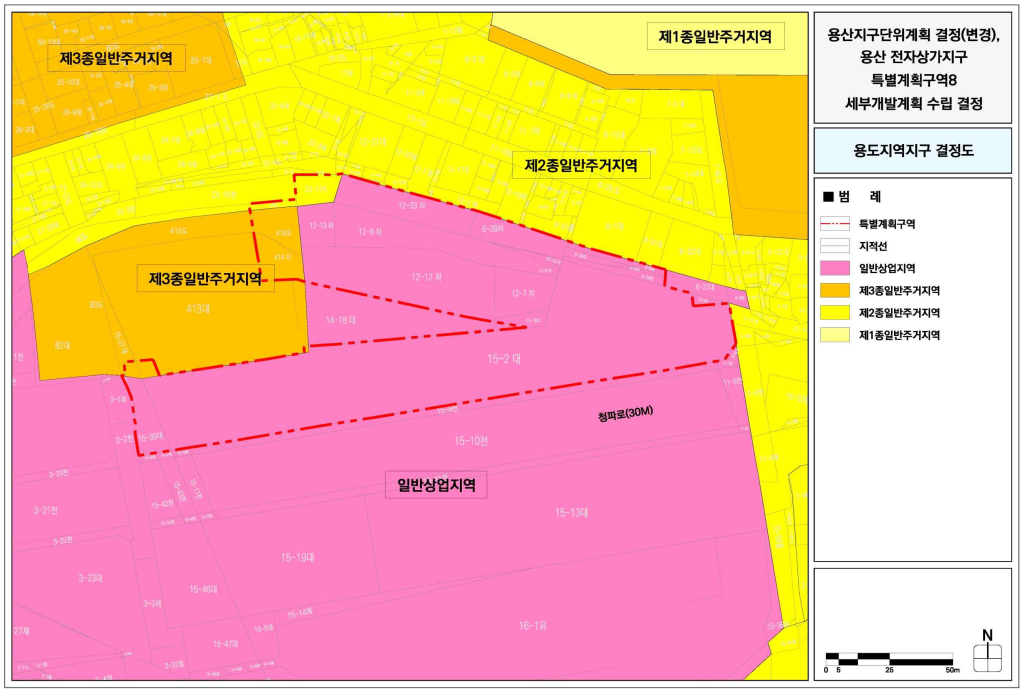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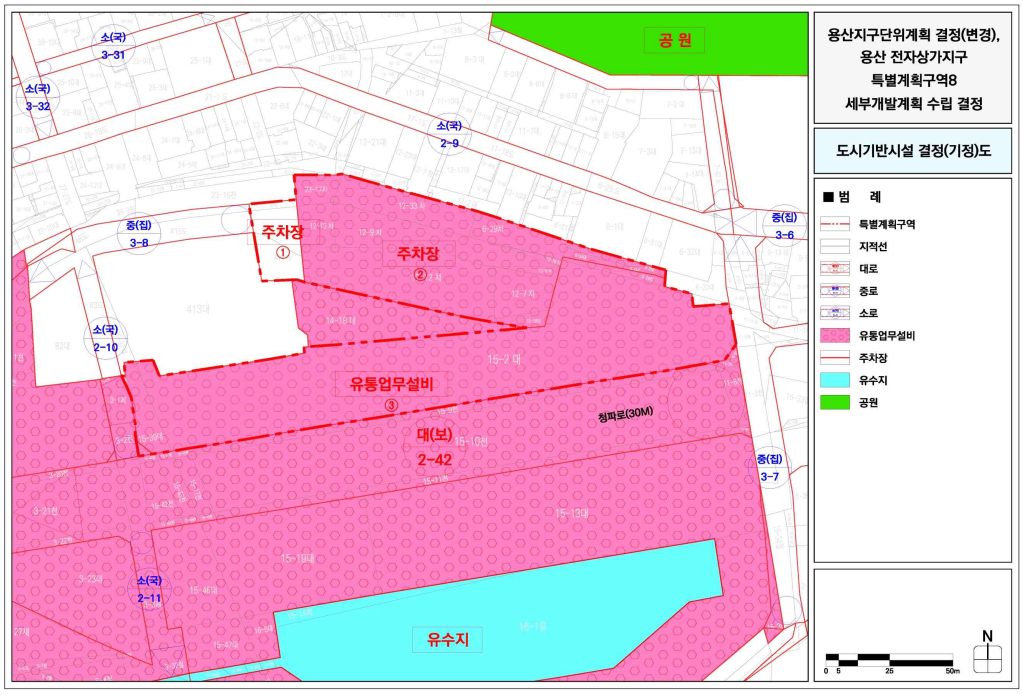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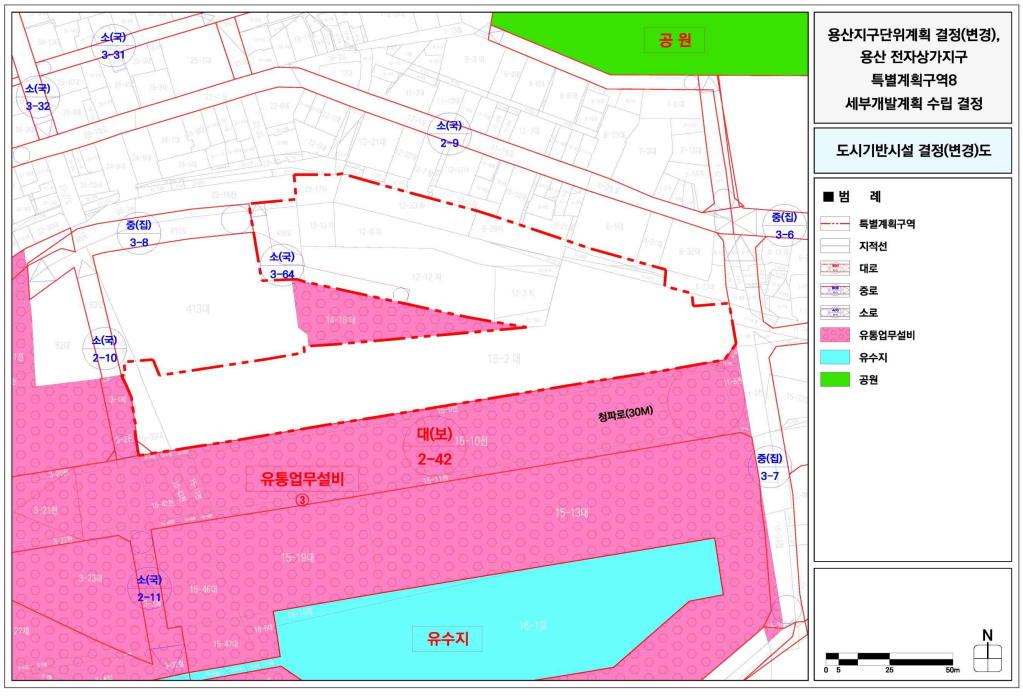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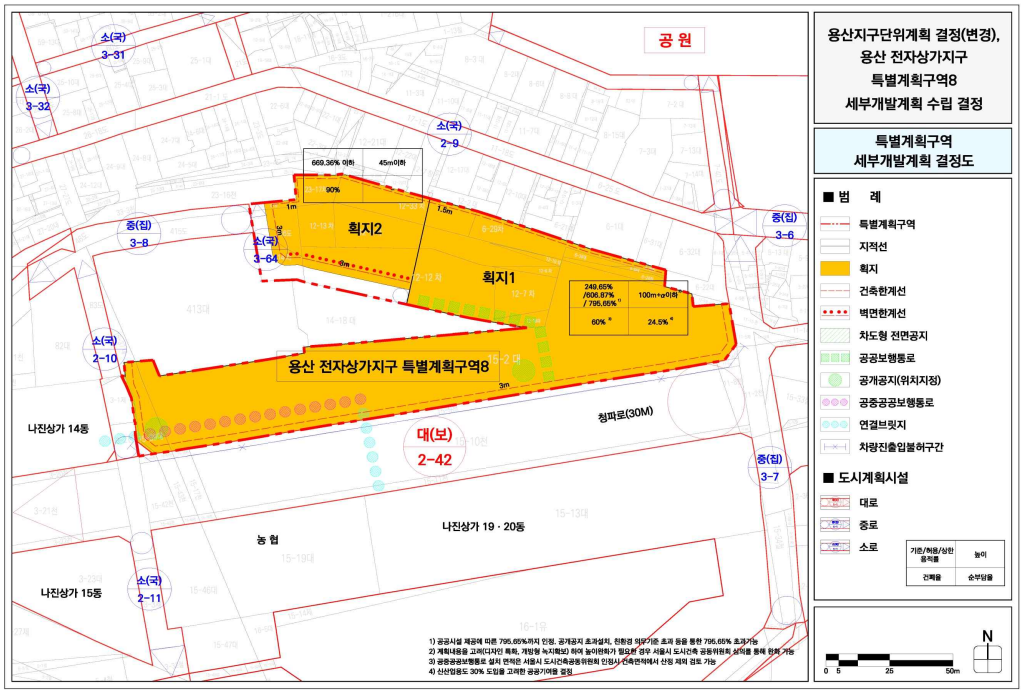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11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25.11.3.)에서 선정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별 권리산정기준일

연번	자치구	구역명(가칭)	위 치	면적(㎡)	권리산정기준일
1	용산구	-	용산동2가 1-597 일대	53,734	2025-09-25 (자치구 요청일)
2	용산구	-	이태원동 214-37 일대	66,986	2025-09-25 (자치구 요청일)
3	종로구	-	행촌동 210-2 일대	76,310	2025-09-26 (자치구 요청일)
4	마포구	-	합정동 444-12 일대	40,753	2025-09-25 (자치구 요청일)
5	은평구	-	녹번동 35-78 일대	20,320	2025-09-25 (자치구 요청일)
6	금천구	-	시흥동 1-1 일대	24,901	2025-08-22 (자치구 요청일)
7	구로구	-	구로동 739-7 일대	92,521	2025-09-25 (자치구 요청일)

※ 면적은 참고용으로, 향후 측량 등으로 달라질 수 있음

2. 지정사유

○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할 경우 지역 주민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따라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3.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필지만 기준이 적용되며, 정비구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기준은 자동 실효(후보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자동 실효)

4.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안내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02-2133-7236) 또는 아래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부서명	연락처	비고
용산구	재정비사업과	02-2199-7463	
종로구	도시개발과	02-2148-2682	
마포구	주택상생과	02-3153-9336	
은평구	정비사업신속추진과	02-351-7744	
금천구	주거정비과	02-2627-1558	
구로구	도시개발과	02-860-2964	

■ 관계도면

○ 용산구 용산동2가 1-597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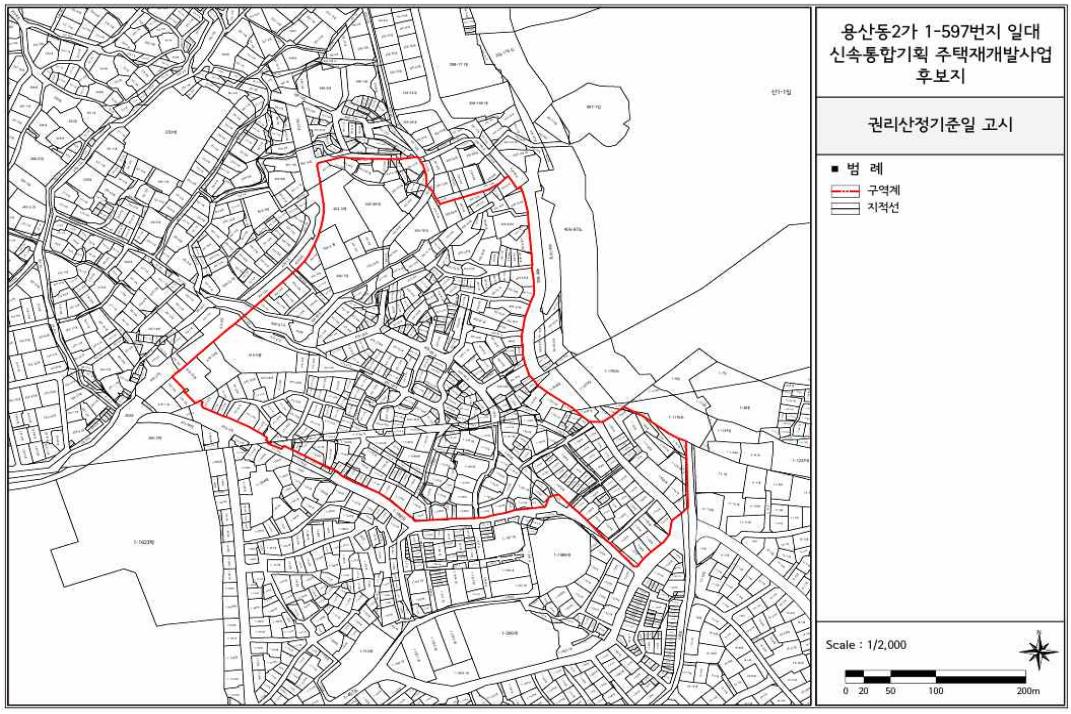

○ 용산구 이태원동 214-37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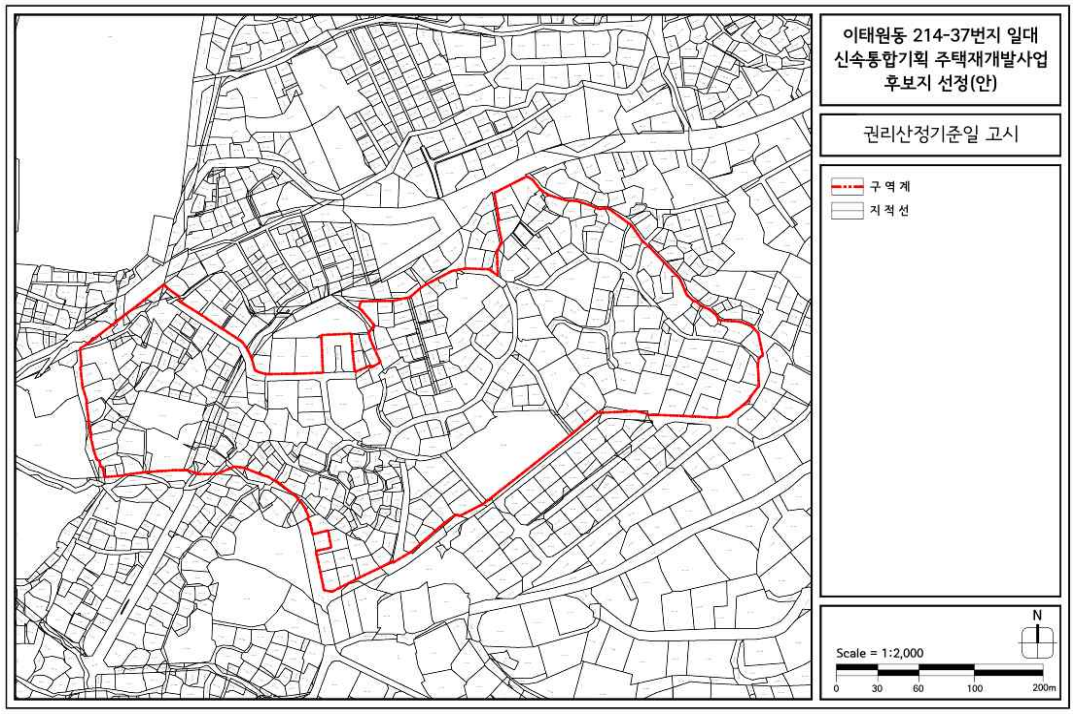

○ 종로구 행촌동 210-2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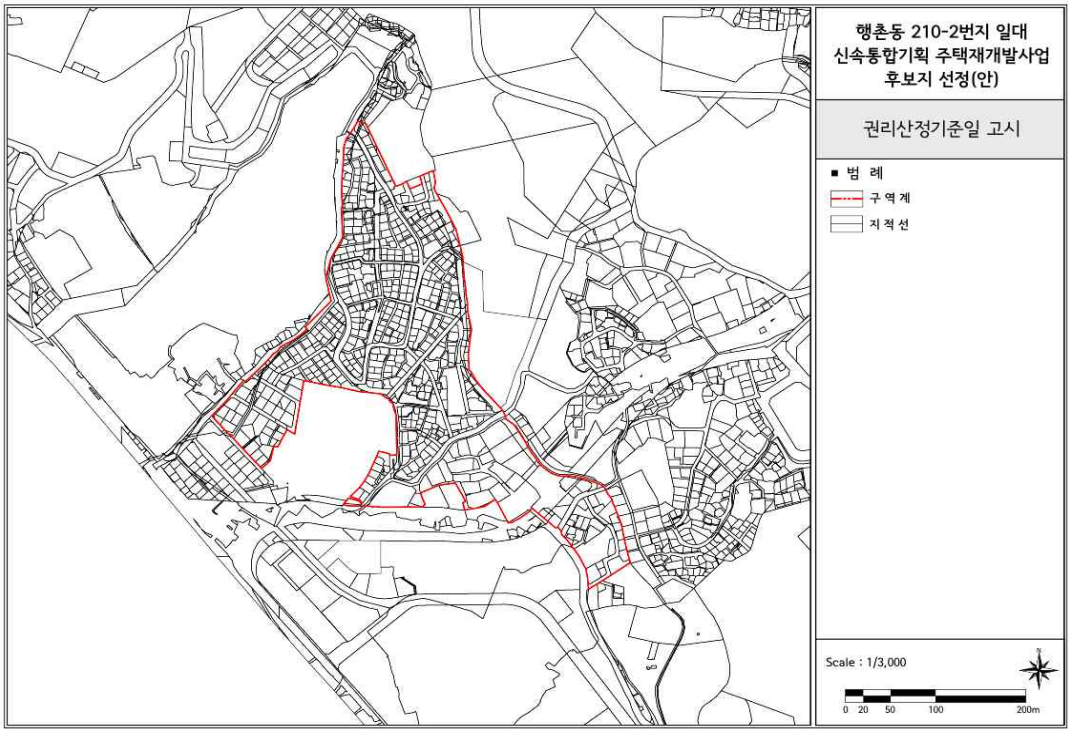

○ 마포구 합정동 444-12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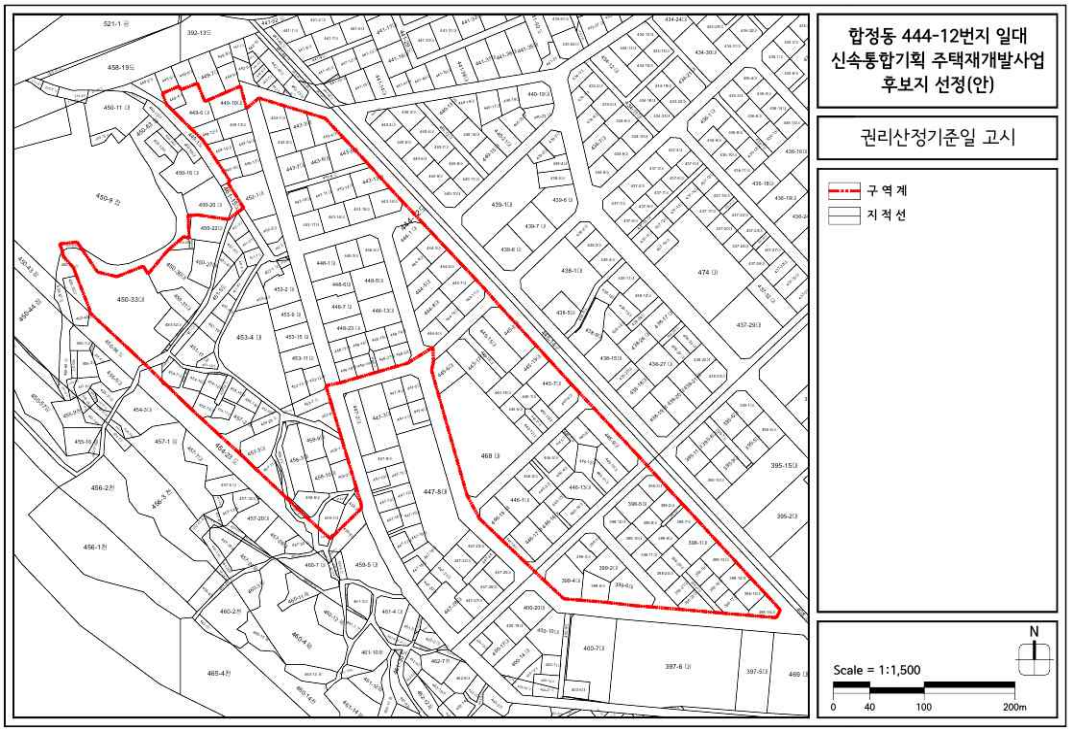

○ 은평구 녹번동 35-78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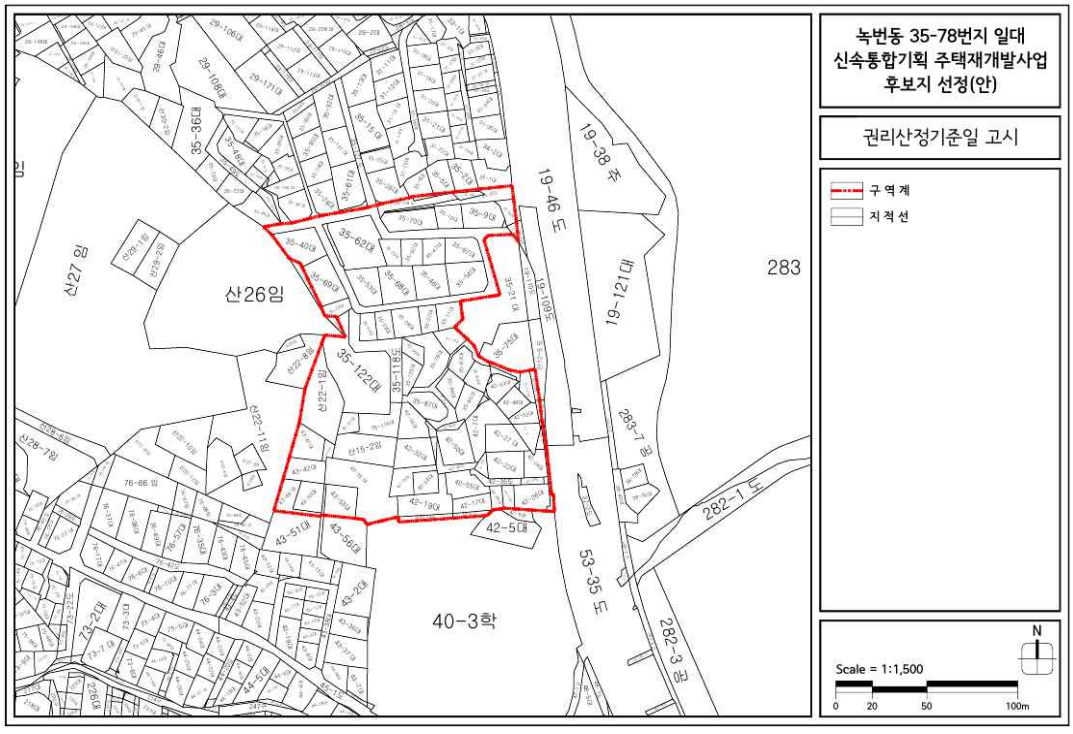

○ 금천구 시흥동 1-1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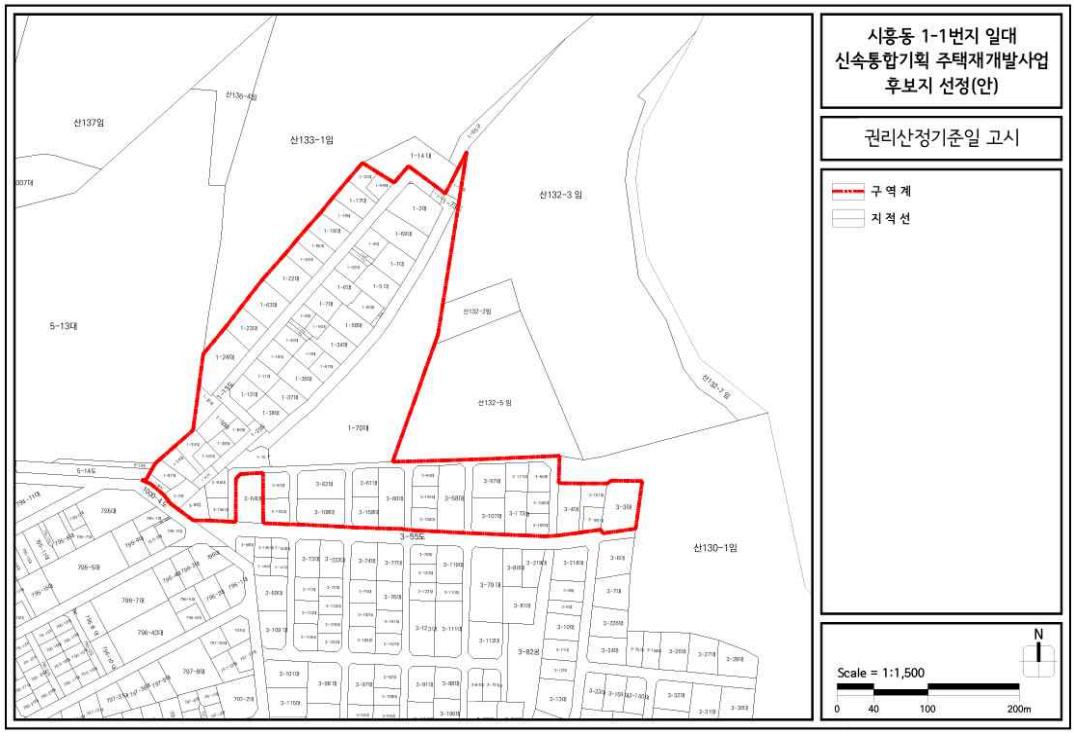

○ 구로구 구로동 739-7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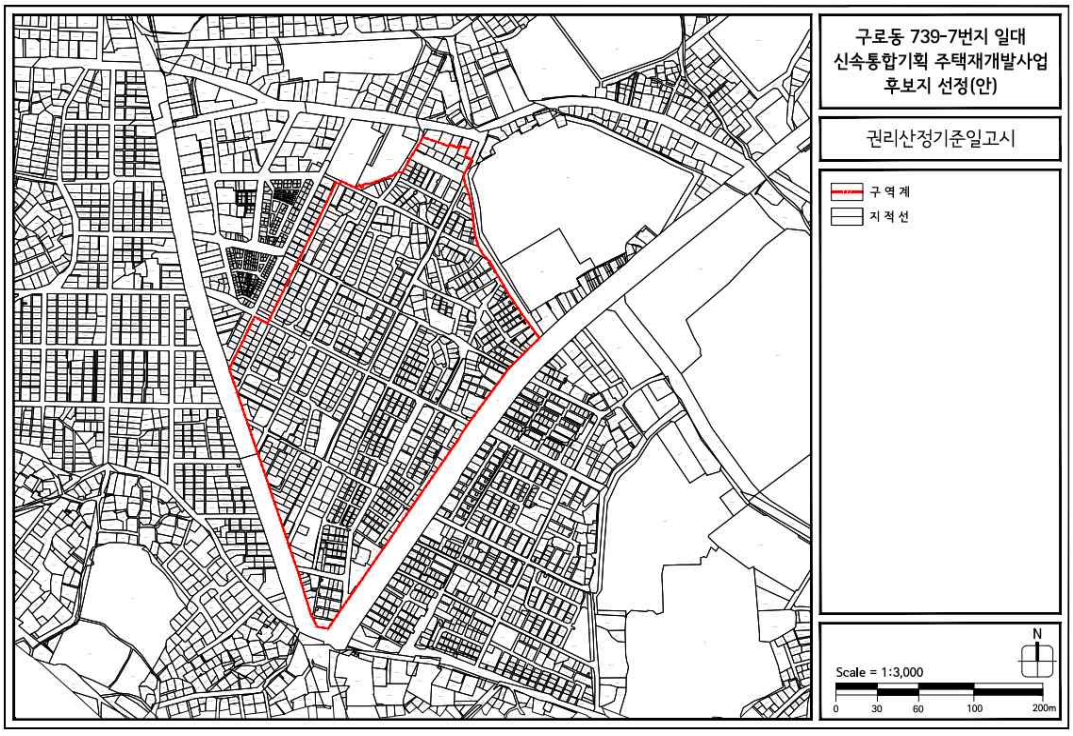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12호

건축허가등 제한 지형도면 고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및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선정,미선정)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착공을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축허가 제한 신규(안)

가. 제한목적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및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선정,미선정) 내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실시하고자 함

나. 제한근거 :「건축법」 제18조 제2항 및 제4항

다. 제한기간 : (최초)제한공고(고시)일로부터 2년

※ 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

라. 제한구역 : ’ 25년 제5차(10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상정구역

연번	자치구	구역명 (가칭)	위치	제한면적(㎡)	선정여부	비고 (이력)
1	용산구	-	용산동2가 1-597 일대	53,734	선정	-
2	마포구	-	합정동 444-12 일대	40,753	선정	-
3	은평구	-	녹번동 35-78 일대	20,320	선정	-
4	성북구	-	하월곡동 90-206 일대	67,925	미선정	-
5	금천구	-	시흥동 1-1 일대	24,901	선정	-
6	구로구	-	구로동 739-7 일대	92,521	선정	-

※ 주택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던 미선정 구역이 이후 신속통합기획 또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① 미선정 당시의 구역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며, ② 아래 ‘마. 제한대상 및 제한 제외 대상’ 의 선정구역 으로 변경

(旣지정된 구역의 건축제한 기간에는 변동 없이 최초 고시일로부터 2년 유지됨)

2. 건축허가 제한 변경(안)

가. 제한목적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및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선정,미선정) 내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실시하고자 함

나. 제한근거 : 「건축법」 제18조 제2항 및 제4항

다. 제한구역 및 변경(안) : 아래 표 참조

※ 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

① 면적 변경 : ’ 25년 제5차(10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상정구역

연번	자치구	구역명(가칭)	위치	기 제한 면적(㎡)	금회 제한 면적(㎡)			제한기간	선정 여부
					합계	확대	제척		
1	용산구	-	이태원동 214-37 일대	58,724	66,986	8,262	-	변경 없음 (2023.01.17.~2026.01.16.)	선정
2	종로구	-	창신동 143-37 일대	57,886	49,119	597	9,364	변경 없음 (2023.01.17.~2026.01.16.)	미선정
3	종로구	-	행촌동 210-2 일대	74,937	76,310	1,546	173	변경 없음 (2023.01.17.~2026.01.16)	선정

※ 주택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던 미선정 구역이 이후 신속통합기획 또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아래 ‘마. 제한대상 및 제한 제외 대상’ 의 선정구역 으로 변경

(旣지정된 구역의 건축제한 기간에는 변동 없이 최초 고시일로부터 2년 유지됨)

※ 용산구 이태원동 214-37 일대의 건축허가 제한 이력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8호, 제2025-46호 참고

※ 종로구 창신12구역의 건축허가 제한 이력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6호, 제2025-415호 참고

※ 종로구 행촌동 210-2 일대의 건축허가 제한 이력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58호, 제2025-46호

② 기간 연장

연번	자치구	구역명(가칭)	위치	기 제한 면적(㎡)	제한기간		현재 후보지 선정 여부
					연장 전	연장 후(1년 연장)	
1	성북구	성북4	성북동 29-51 일대	16,002	2023.11.14.~2025.11.13	2023.11.14.~2026.11.13	미선정

※ 성북구 성북4구역의 건축허가 제한 이력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97호 참고

3. 제한대상 및 제한제외 대상

선정구역

1) 제한대상

가)「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나)「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다)「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

라)「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마)「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제한제외 대상

가)「건축법」제11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나)「건축법」제14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

다)「건축법」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라)「재난안전관리기본법」및「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단, 제한제외대상은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 :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허가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등의 행위

미선정(보류)구역

1) 제한대상

가)「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나)「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다)「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

라)「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마)「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단, 제한대상은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에 한함

※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 :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2) 제한제외 대상

가)「건축법」제11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나)「건축법」제14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

다)「건축법」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라)「재난안전관리기본법」및「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단, 제한제외대상은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4. 지형도면 : 붙임 참조

5. 안내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2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지형도면

○ 용산구 용산동2가 1-597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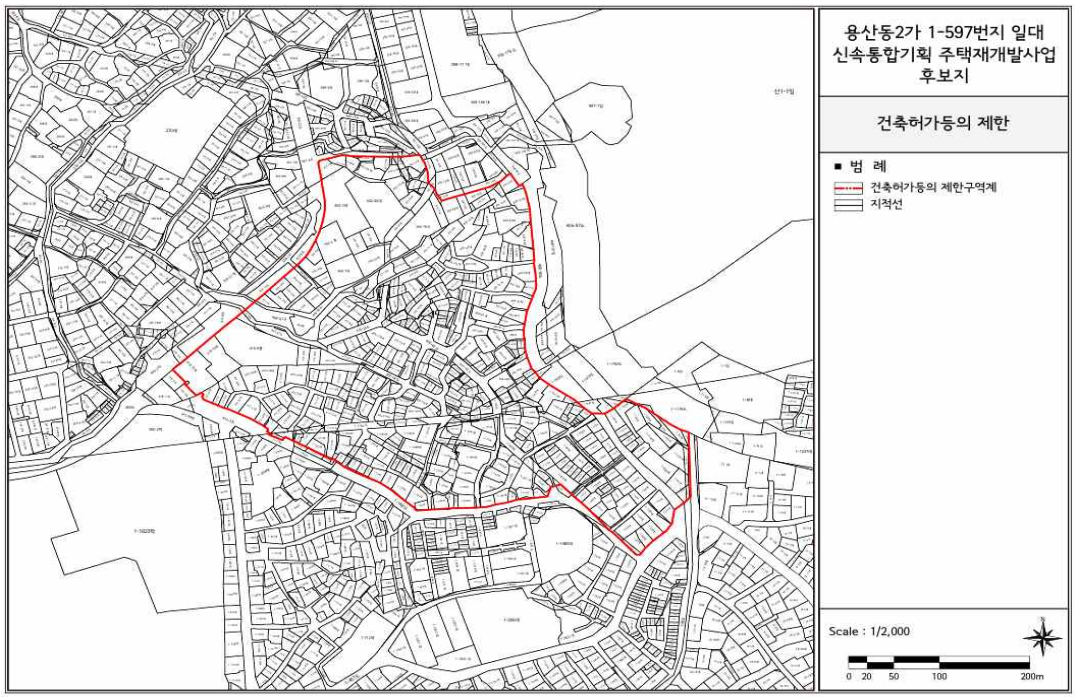

○ 용산구 이태원동 214-37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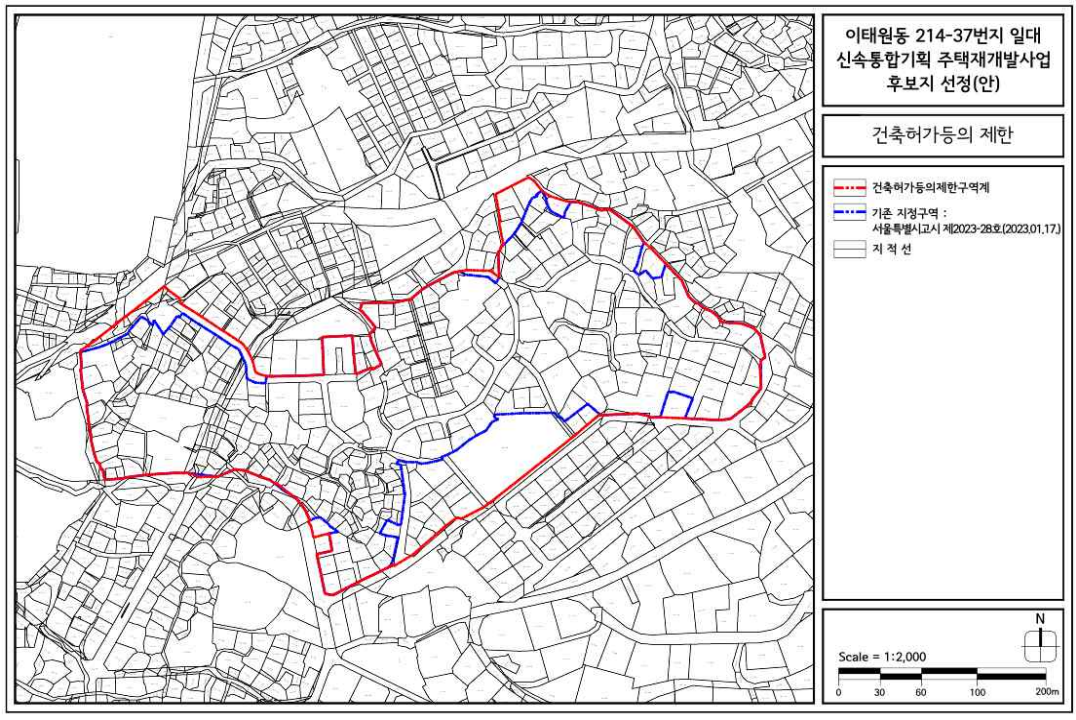

○ 종로구 창신동 143-37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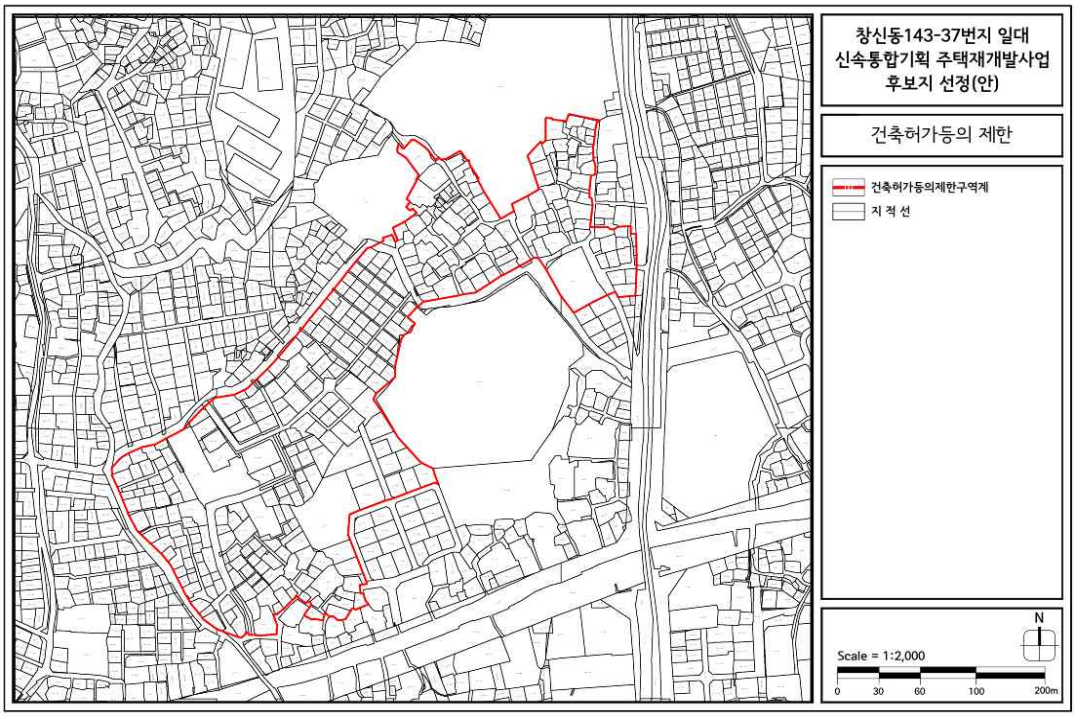

○ 종로구 행촌동 210-2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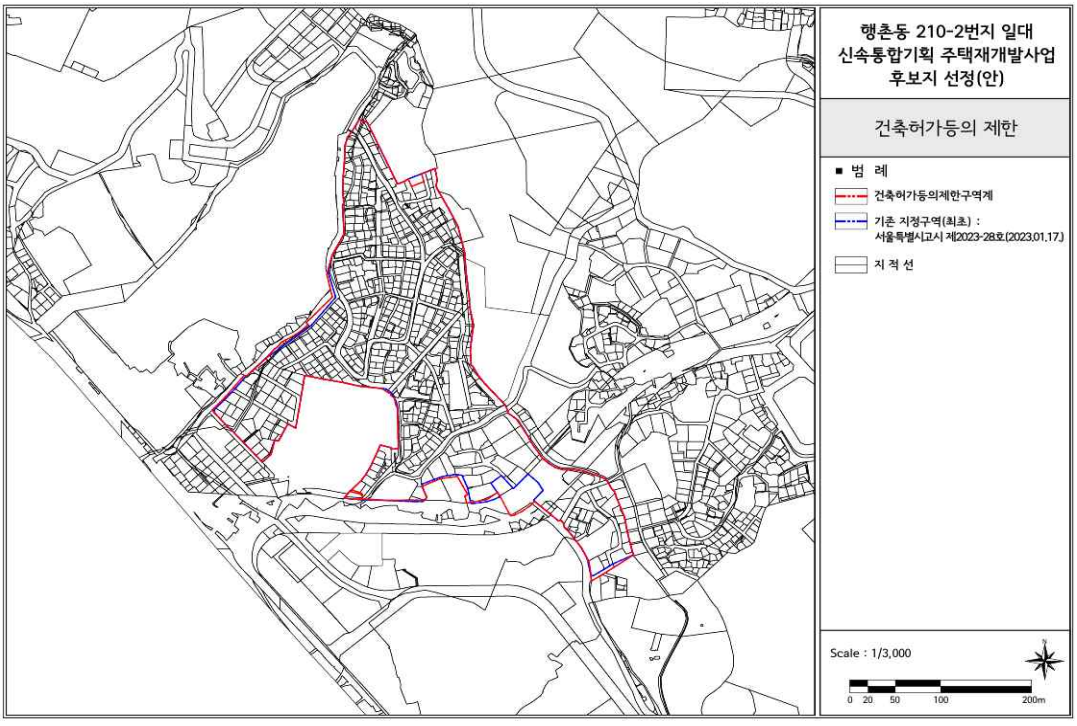

○ 마포구 합정동 444-12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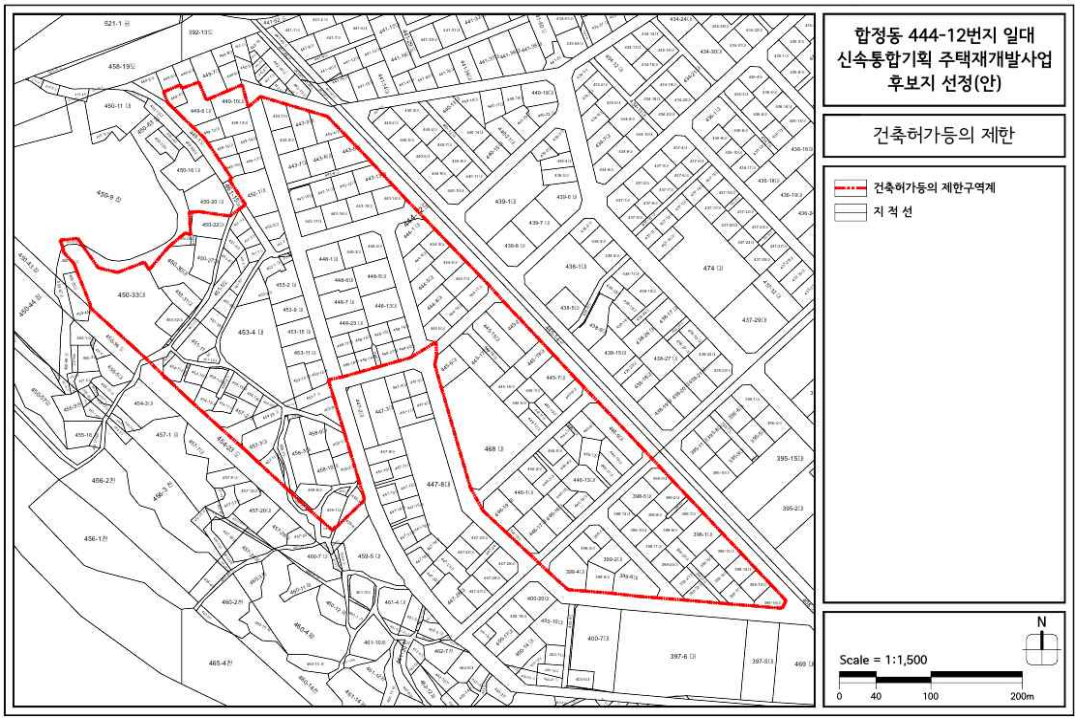

○ 은평구 녹번동 35-78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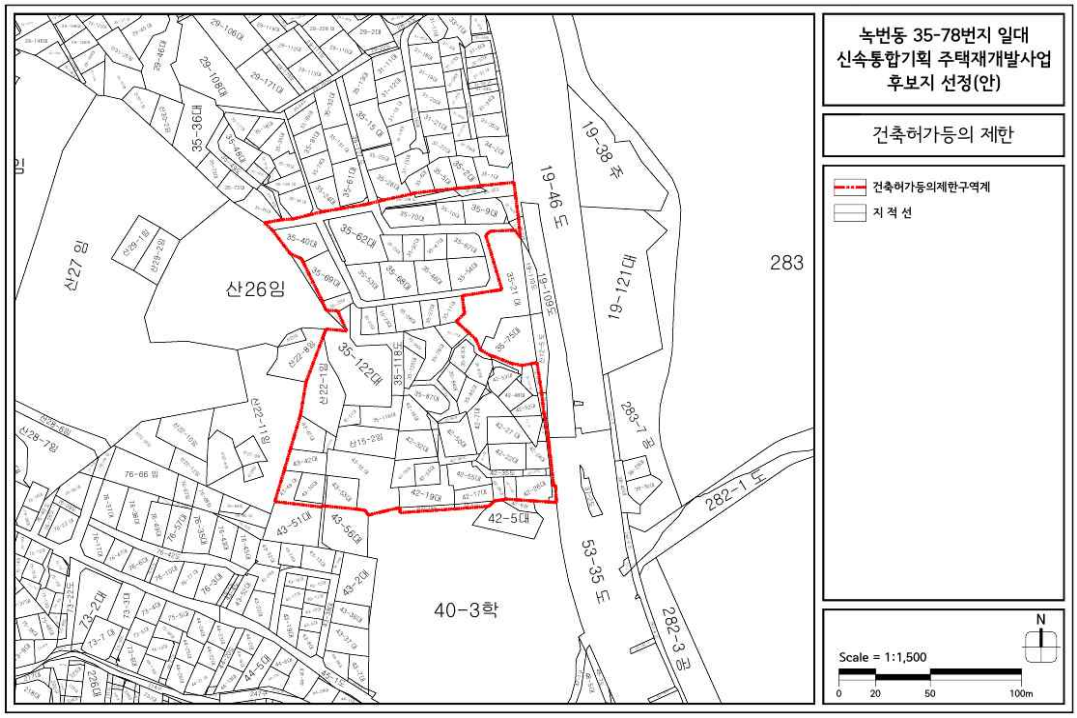

○ 성북구 하월곡동 90-206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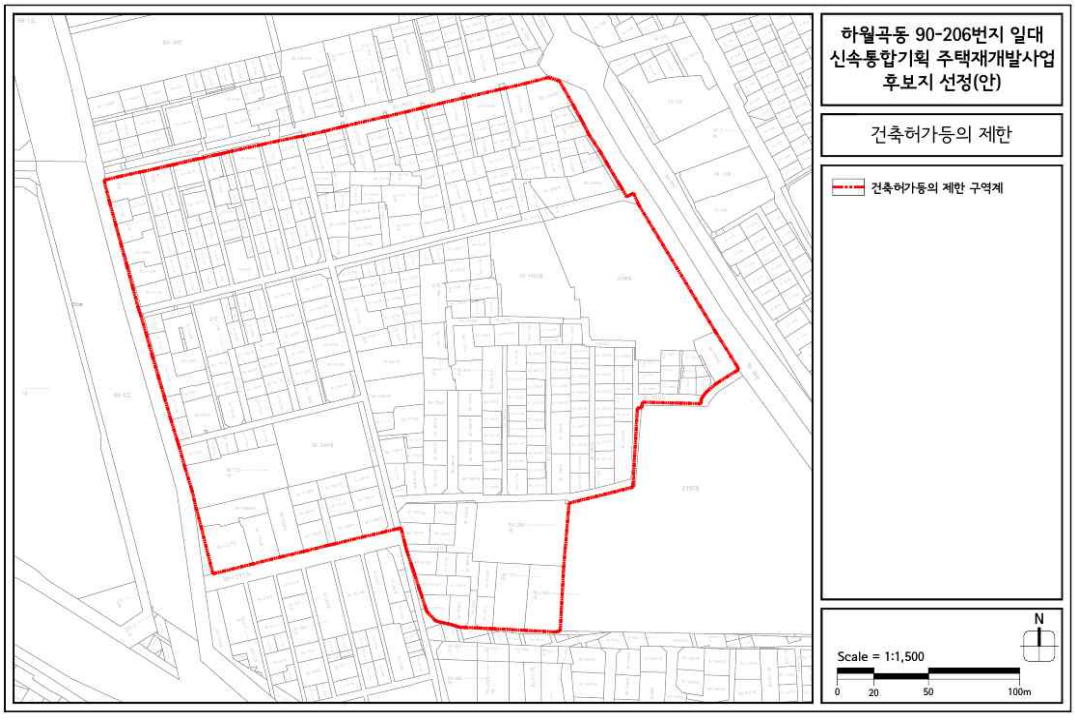

○ 금천구 시흥동 1-1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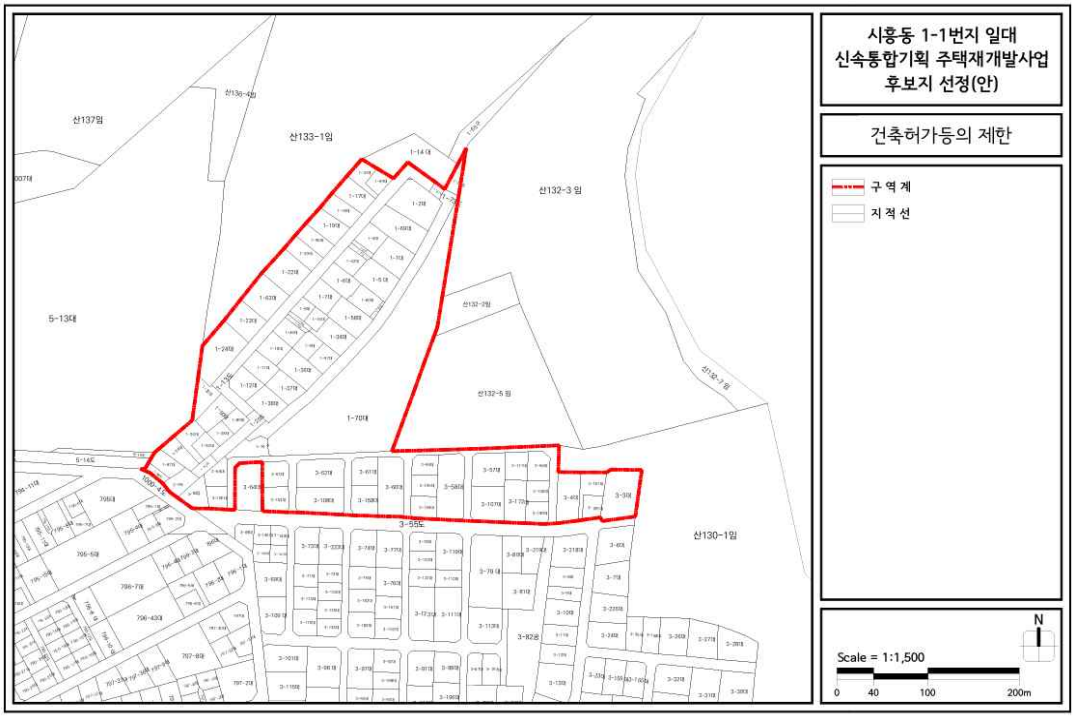

○ 구로구 구로동 739-7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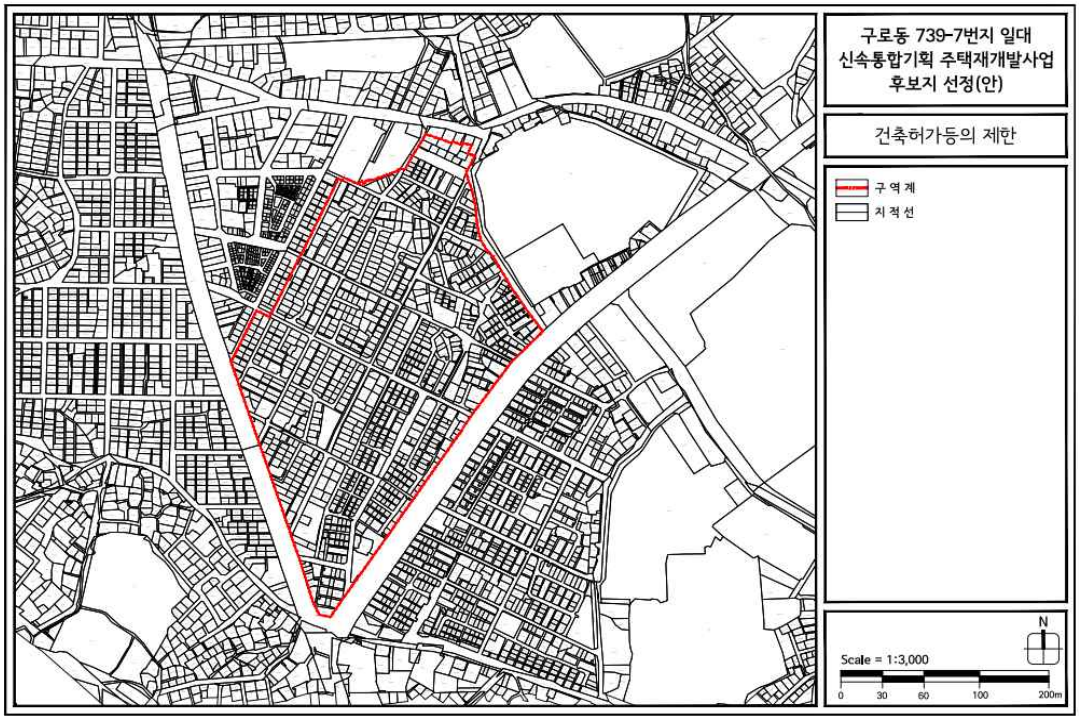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13호

고덕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17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6호(2005.02.0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7호(2006.0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72호(2010.12.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3호(2015.08.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31호(2018.07.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66호(2019.11.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63호(2020.06.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88호(2023.11.09.)로 결정(변경) 고시된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17(고덕현대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2023.07.28. 신속통합기획을 완료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5.07.18.)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신설	고덕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강동구 명일동 56번지	37,658.5	

2.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합계		37,658.5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1,541.3	4.1	
	도로	1,541.3	4.1	
획지	소계	36,117.2	95.9	
	획지	36,117.2	95.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 비례율

· 추정 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총자산 총액 x 100%
· 추정 비례율 : 100.91%
⇒ (14,541억 - 5,875억) / 8,588억 X 100% ≒ 100.91%
- 총 수입 추정 : 약 14,541억
- 총 지출 추정 : 약 5,875억
- 종전자산 총액 추정 : 약 8,588억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고덕현대아파트 타입별 종전자산 : 약식추정방식(감정평가법인 추정)

구분		적용산식				
구분	유형(전용)	세대수	전용면적(㎡)	대지권면적(㎡)	세대당 가격(천원)	종전자산 추정액(천원)
공동주택	84.91㎡	164	84.91	51.937	1,417,500	232,470,000
	131.83㎡	360	131.83	80.631	1,730,000	622,800,000
	소계	524	61,384.04	37,544.83	-	855,270,000
상가	지층	2	110	56.827	1,061,500	2,123,000
	2층	1	110	56.836	1,393,000	1,393,000
	소계	3	220	113.663	-	3,516,000
합계		527	61,604.04	37,658.49	종전자산소계	858,786,000 (약 8,588억)

※ 상기 종전자산가액은 고덕현대아파트 및 인근 공동주택 실거래가, KB부동산시세, 한국부동산원 자료 등을 참고하여 산정된 금액임

추정 분담금 산출

· 아파트 추정 분담금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		추정 권리가액(b)	추정 분담금(a-b)
전용 59㎡형	13.3억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 비례율 (100.91%)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
전용 84㎡형	16.5억		
전용 98㎡형	17.9억		
전용 117㎡형	20.1억		
전용 128㎡형	21.1억		

※ 추정 일반분양단가(55,000천원/3.3㎡)를 평형별 효용격차를 고려하여 배분하였음
※ 조합원 분양가는 분양원가 등을 고려하여 일반분양가 대비 90%로 결정하였음
※ 보류지 세대 5세대를 감안하였음

· 상가 추정 분담금

구분	층	추정 분양가 범위(천원/3.3㎡)	적용단가 (천원/3.3㎡)		효용비율	비고
			조합원	일반분양		
상가	지1층	47,000~52,000	45,818	50,909	1.00	연도형 1층

※ 조합원 분양가는 분양원가 등을 고려하여 일반분양가 대비 90%로 결정하였음
※ 상가 추정액은 인근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시설의 1층 시세수준이 50,000천원/3.3㎡ 내외 수준으로서, 대상 아파트단지 뿐 아니라 인근 재건축단지가 준공된 것을 전제로 인근의 교통시설에 따른 유동인구와의 적합성, 배후지의 크기, 근린생활시설의 위치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상기 거래사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지1층(연도형 1층 상가)의 평균적인 시세 수준을 추정하였음

※ 상기 추정분담금은 추산액으로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기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4.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7,658.5	-	37,658.5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37,658.5	-	37,658.5	100.0	

5.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B	17.5	집산도로	289 (132)	광로 2-80	중로 1-2	일반도로	-	2018. 07.19.	구천면로
변경	중로	2	B	18	집산도로	289 (132)	광로 2-80	중로 1-2	일반도로	-	2018. 07.19.	
기정	중로	1	5	20	집산도로	285	중로 1-242	중로 1-2	일반도로	-	1982. 04.29.	고덕로 62길
기정	중로	1	242	20	집산도로	625 (137)	광로 2-80	대로 1-1	일반도로	-	1982. 04.29.	동남로 71길

※ ( )는 구역 내 연장임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노선번호	변경후 노선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B	중로 2-B	· 폭원 변경 - B : 17.5m → 18.0m 증) 0.5m	- 대상지 남측(명일동 61 일원) 특별계획구역 해제(2018.07.19.)로 구역 내 추가 0.5m 확폭을 통한 도로폭 18m 확보

※ 도로 폭 18m 확보 :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도로 계획 반영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기준면적	계획면적	비고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강동구 명일동 56번지 (획지)	-	500㎡	
	경비실		-	60㎡	
	관리사무소		55.1㎡	200㎡	10㎡ + (952세대 - 50세대) × 0.05
주민공동이용시설	소 계		2,975㎡	6,660㎡	(952세대 × 2.5㎡) × 1.25
	경로당		330㎡	350㎡	
	어린이집		330㎡	700㎡	개방
	작은도서관		158㎡	200㎡	
	서울형 키즈카페		-	350㎡	개방
	주민운동시설		-	800㎡	
	어린이놀이터		1,152㎡	1,500㎡	
	커뮤니티시설		-	2,760㎡	

※ 향후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기준 적용

7.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 개량 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고덕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37,658.5	획지	36,117.2	강동구 명일동 56번지	8	-	-	8	-	

※ 획지 면적은 정비기반시설 1,541.3㎡ 제외 면적임

8.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최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준	허용	정비계획	법적상한		
신설	고덕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37,658.5	획지	36,117.2	강동구 명일동 56번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10	226.8	239.38	299.97	158m 이하/49층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주택공급계획 : 952세대(분양 827세대, 공공주택 125세대)

구분		세대수(공공주택)	비율(%)	비고
합계		952(125)	100.0(13.1)	-
60㎡ 이하	59.90㎡	346(102)	36.4(10.7)	-
60㎡ 초과~85㎡ 이하	84.90㎡	245(23)	25.7(2.4)	-
85㎡ 초과	98.90㎡	186	19.5	-
	117.90㎡	129	13.6	
	128.90㎡	46	4.8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 건립 : 62.1%
• 공공주택(장기전세주택) : 125세대 계획

심의완화 사항

• 법적상한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정비계획용적률(239.38%) → 법적상한용적률(299.97%)
- 공공주택(국민주택규모 주택)용적률 : (299.97% - 239.38%) × 50% = 30.29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동남로71길, 고덕로62길, 구천면로 : 건축한계선 5m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계획, 보도와 일체적으로 조성, 지속적 개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역권 설정*
• 인접대지 경계선 : 건축한계선 3m~10m

기타사항

• 창의적 건축물 디자인을 위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
• 공공보행통로 : 특별계획구역 17, 18 경계부(폭 5m, 면적 1,161㎡)
- 고덕역 4번 출구에서 대명초등학교(후문)로 연결되는 보행동선을 고려
- 지속적 개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역권 설정*
• 공공보행통로 주변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 배치
• 중저층 배치구간 : 고덕로62길(폭 25m, 20층 이하)
• 가로활성화 배치구간 : 구천면로변(연도형 상가 설치)
• 보행 편의를 위해 동남로와 고덕로62길을 연결하는 동서방향의 단지 내 보행동선 계획

※ 지역권 설정권자는 강동구청장, 존속기간은 영구로 등기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추후 강동구, 조합 간 합의서를 체결하고 분양계약서(조합원, 일반분양)에 위 내용을 명기하도록 함

나. 용적률 계획

<table>
<tr><th>구분</th><th colspan="5">산정내용</th></tr>
<tr><td rowspan="2">토지이용
계획</td><td>구역면적
(㎡)</td><td>획지면적
(㎡)</td><td>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도로)</td><td>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td><td>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td></tr>
<tr><td>37,658.5</td><td>36,117.2</td><td>1,541.3㎡</td><td>-</td><td>-</td></tr>
<tr><td>공공시설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5">• 순부담 면적(순부담 비율)
=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등 면적 -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1,541.3㎡(4.1%)</td></tr>
<tr><td>기준용적률</td><td colspan="5">• 210%</td></tr>
<tr><td>허용용적률</td><td colspan="5">•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
= 226.8% = 210% + 16.8%(공공보행통로 6.8% + 열린단지 5% + 돌봄시설 5%)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인센티브</th><th>적용</th></tr>
<tr><td>공공
보행통로</td><td>• 특별계획구역 17, 18 경계부에 폭 5m의 공공보행통로 조성(1개소, 면적 1,161㎡, 지역권* 설정)
- 산정 : 210% × (1,161㎡/36,117.2㎡) × 1 = 6.8% ※ α = 1
* 지역권 : 통행 등 일정목적으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로 설정)</td><td>10%
이내</td><td>6.8%</td></tr>
<tr><td>열린단지</td><td>•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개방된 공공보행통로 변으로 개방형 커뮤니티(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키즈카페) 조성, 구천면로변 연도형 상가 조성
-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기, 준공 후에도 유지</td><td>5%</td><td>5%</td></tr>
<tr><td>돌봄시설</td><td>• 국공립어린이집(370㎡) 및 서울형키즈카페(350㎡) 설치 및 제공 (무상임대) (720㎡, 의무면적 대비 24.2%)
- 산정 : 210% × {(700㎡-330㎡+350㎡) / 2,975㎡} × 0.1 = 5.08%
※ 주민공동시설 의무면적(「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의4)
(세대수×2.5㎡)×1.25 = (952세대×2.5㎡)×1.25 = 2,975㎡ 이상
※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강동구와 무상임대 등에 대한 협약서 체결</td><td>5%
이내</td><td>5%</td></tr>
<tr><td>합 계</td><td colspan="2">최대 20%</td><td>16.8%</td></tr>
</table>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의 인정 여부는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용적률이 변경될 수 있음</td></tr>
<tr><td>상한
용적률</td><td colspan="5">•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x 가중치 x α토지)}
= 226.8% × (1 + (1.3 x 1 x 0.042675)) = 239.38%
∵ 정비계획용적률 = 239.38%
<table>
<tr><td>가중치</td><td>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허용용적률 / 사업부지 허용용적률
= 226.8% / 226.8% = 1</td></tr>
<tr><td>α토지</td><td>공공시설 등 부지 중 토지 및 대지지분으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및 대지지분)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1,541.3㎡ / 36,117.2㎡ = 0.042675</td></tr>
</table></td></tr>
</table>

구분	산정내용
법적상한 용적률	• 299.97% = 상한(정비계획)용적률 239.38% + 초과용적률 60.59% ※ 초과용적률의 1/2은 국민주택규모로 주택 건설

9.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 예상 세대수	비고
신규	주택재건축사업	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가칭)고덕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기존 : 524세대 계획 : 952세대 증가 : 428대	-

10.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환경보전	• 토양포장 면적을 최소화하고 필요시 최대한 틈새 투수 포장 활용 • 조경계획 수립 시 다층구조의 식생대를 조성하여 조류를 유인하고, 소규모 비오톱을 조성하여 새로운 녹지축을 형성 • 단지 내 청정연료를 사용토록 계획하고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설계기법을 도입하여 장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토록 하며,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 조경녹지 및 가로변에는 대기오염 물질의 정화 능력 및 적응력이 우수한 환경정화 수종을 우선 식재토록 계획 • 차음성능이 우수한 창호 사용 등을 통한 정온한 환경 유지
재난방지	• 사업대상지 내 전면공지 등은 우수침투가 가능한 투수성 바닥 포장을 사용하고, 내구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소재를 이용 • 지구내 자연지반을 최대화하고 표면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수 침투율이 높은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 • 공사는 원칙적으로 우기를 피하여 시행하고 절개지 발생 시 비닐 등을 덮어 토사 유실 방지 • 터파기 공사 시 균열, 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흙막이공법을 실시 후 공사 시행

1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교육환경 보호	계획시	- 주변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차량이 출입하는 지구 내 진입도로 주변으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 추후 교통영향 분석 시 스쿨존 계획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	
	공사시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 - 공사 시 학생 및 교직원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계획내용</th><th>비고</th></tr>
<tr><td>교육환경
보호</td><td>공사시</td><td>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기준
생활소음 규제 기준

<table>
<tr><th>구분</th><th>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th><th>주간
(07:00~18:00)</th><th>야간
(22:00~05:00)</th></tr>
<tr><td>주거지역 내 공사장</td><td>60dB(A) 이하</td><td>65dB(A) 이하</td><td>50dB(A) 이하</td></tr>
</table>

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비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은 공휴일에 한하여 -5dB을 규제 기준치에 보정함
생활진동 규제기준

<table>
<tr><th>구분</th><th>주간
(06:00~22:00)</th><th>심야
(22:00~06:00)</th></tr>
<tr><td>주거지역</td><td>65dB(V) 이하</td><td>60dB(V) 이하</td></tr>
</table>

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 소음·진동 발생 저감 대책
저소음·저진동 건설기계 및 공법의 선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에서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와 '소음·진동관리법(제49조2)'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 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를 사용
전달경로에서의 방지 대책
공사 시 방음벽을 학교 주변에 설치하여 소음 저감 효과를 높임
이동성이 낮은 건설기계의 현장 방음 대책
항타기, 굴삭기 등 발생 소음이 크고 이동성이 낮은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에 근접하여 이동식 방음벽 또는 방음커버 등을 활용함으로써 소음 저감 효과를 높임

</td><td></td></tr>
</table>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분	시행방법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 범죄예방을 위해 공간 구조론과 범죄 예방학을 응용한 CPTED 원리를 다양하게 설계전략으로 전환하여 적용 ⇒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도시환경이 범죄에 대한 방어적인 기능을 갖도록 디자인하여 범죄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도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고 안전감을 인식토록 하는 도시조성 전략

13. 세입자 주거대책

가. 주거세입자 현황

전체 524가구 중 세입자 약 109가구 (전체 가구수의 20.8%)

나. 재정착이 가능한 주택규모 공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라 공공주택 125세대 건립

구분			세대수(세대)		
			계	분양주택	공공주택
재건축	합계		952	827	125
	전용 면적	60㎡ 이하	346	244	102
		60㎡ 초과 ~ 85㎡ 이하	245	222	23
		85㎡ 초과	361	361	-

1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가.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

1)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용도 현황(동)			구역 내 건축물 허가 현황(동)		
계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계	유허가	무허가
8	7	1	8	8	-

2) 거주현황

유형별 주택 호수		거주 가구수(가구)			구역 내 거주 인구수(인)			비고
		소계	가옥주	세입자	소계	가옥주	세입자	
계	524	524	415	109	1,174	930	244	
공동주택	524	524	415	109	1,174	930	244	

※ 거주현황의 경우 ' 24.02.28. 기준으로 작성한 사항임

3) 규모별, 유형별 거주현황

구분(전용면적)	공동주택(세대수)					비고
	소계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합계	524	524	-	-	-	-
60㎡ 이하	-	-	-	-	-	-
60㎡ 초과 ~ 85㎡ 이하	164	164	-	-	-	전용 84㎡
85㎡ 초과	360	360	-	-	-	전용 131㎡

나.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규모 (전용면적)		세대수(세대)				비고
		계	조합원분양	일반분양	공공주택	
합 계		952	524	303	125	
60㎡ 이하	59.90㎡	346	33	211	102	
60㎡ 초과 ~ 85㎡ 이하	84.90㎡	245	180	42	23	
85㎡ 초과	소계	361	311	50	-	
	98.90㎡	186	186	-	-	
	117.90㎡	129	102	27	-	
	128.90㎡	46	23	23	-	

15.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가구	면적(㎡)	획 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고덕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획지1	36,117.2	A1	강동구 명일동 5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6.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1)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 colspan="5">주요내용</th></tr>
<tr><td colspan="2">계획기준</td><td colspan="5">•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계획</td></tr>
<tr><td colspan="2">법적상한용적률</td><td colspan="5">• 299.97% 이하</td></tr>
<tr><td colspan="2">상한용적률
(정비계획 용적률)</td><td colspan="5">• 239.38% 이하</td></tr>
<tr><td rowspan="3">공공주택
의무면적
산출근거</td><td>초과 용적률</td><td colspan="5">• 법적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299.97% - 239.38% = 60.59%</td></tr>
<tr><td>초과 용적률의 50%</td><td colspan="5">• 60.59% × 0.5 = 30.295%</td></tr>
<tr><td>의무면적</td><td colspan="5">• 36,117.2㎡(대지면적) × 30.295% = 10,941.71㎡ 이상</td></tr>
<tr><td colspan="2" rowspan="4">공공주택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계획</td><td>전용면적</td><td>공급면적</td><td>세대수(세대)</td><td>계획면적</td><td>비고</td></tr>
<tr><td>59.90㎡</td><td>82.60㎡</td><td>102</td><td>8,425.20㎡</td><td>-</td></tr>
<tr><td>84.90㎡</td><td>112.60㎡</td><td>23</td><td>2,589.80㎡</td><td>-</td></tr>
<tr><td colspan="2">합계</td><td>125</td><td>11,015.00㎡</td><td>(의무) 10,941.71㎡
이상 확보</td></tr>
</table>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적은 공동주택 공급면적 기준
※ 용적률 완화로 공급되는 공공주택 125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며, 장기전세주택의 50%는 미리내집으로 활용

2) 주택의 규모별 비율(정비계획)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규모
(전용면적)</th><th rowspan="2">전체
세대수
(세대)</th><th rowspan="2">전체
비율
(%)</th><th colspan="3">세대수(세대)</th><th colspan="2">공공주택 비율(%)</th></tr>
<tr><th>조합원
분양</th><th>일반
분양</th><th>공공주택</th><th>전체 세대수 대비</th><th>전체비율</th></tr>
<tr><td colspan="2">합 계</td><td>952</td><td>100.0</td><td>524</td><td>303</td><td>125</td><td>13.1</td><td>100.0</td></tr>
<tr><td>60㎡ 이하</td><td>59.90㎡</td><td>346</td><td>36.4</td><td>33</td><td>211</td><td>102</td><td>10.7</td><td>81.6</td></tr>
<tr><td>60㎡ 초과 ~
85㎡ 이하</td><td>84.90㎡</td><td>245</td><td>25.7</td><td>180</td><td>42</td><td>23</td><td>2.4</td><td>18.4</td></tr>
<tr><td rowspan="4">85㎡ 초과</td><td>소계</td><td>361</td><td>37.9</td><td>311</td><td>50</td><td>-</td><td>-</td><td>-</td></tr>
<tr><td>98.90㎡</td><td>186</td><td>19.5</td><td>186</td><td>-</td><td>-</td><td>-</td><td>-</td></tr>
<tr><td>117.90㎡</td><td>129</td><td>13.6</td><td>102</td><td>27</td><td>-</td><td>-</td><td>-</td></tr>
<tr><td>128.90㎡</td><td>46</td><td>4.8</td><td>23</td><td>23</td><td>-</td><td>-</td><td>-</td></tr>
</table>

※ 조합원 분양 합계는 공동주택 소유 조합원 기준이며, 면적별 배분은 관리처분계획 및 선호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7.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1. 수질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 공사 중 토사유출에 의한 오탁 부하 가중 · 운영 시 계획 세대에 의한 오수 발생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등
2. 물순환 수리·수문	생태면적률 30%	○	· 생태 면적률 30.41%로 계획	·인공지반 녹지 등 적용
3.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계획구역 내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계획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4.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 폐유 발생 등 토양 오염 발생 우려	·폐기물처리계획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 처리
5. 지형·지질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 절성토를 최소화토록 할 것임 · 지형변동률은 미미할 것임	· 절성토 및 지형 변화를 최소화하고, 지하수위 보전계획 수립
6. 생태네트워크	녹지·수생태 연결성 확보	○	· 녹지면적Ⅲ, 녹지모양Ⅱ, 내부연결성Ⅰ, 외부연결성Ⅲ으로 녹지평가지표Ⅰ	· 인공지반 녹지 등 조성을 통한 녹지 공간 확보 및 녹지네트워크 구축
7. 비오톱 및 동·식물상	비오톱 등급 향상	○	· 비오톱유형평가 4등급 · 개별 비오톱 평가 제외 지역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 생태기능 및 생물 서식 공간 확보
8. 바람, 열	바람길 확보	○	· 건축물 입지로 인한 바람길 및 기상의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열환경 공간유형도 불투수 포장 비율 높음	· 바람길을 고려한 건축배치 계획 수립 ·충분한 녹지 공간 조성으로 열섬효과 최소화
9. 대기질·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 공사 중 장비가동 및 토사이동, 운영 시 연료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확산	·세륜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청정연료 사용 및 녹지 조성 ·친환경보일러 설치방안 검토
10.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 공사 시 생활폐기물, 폐유, 건설폐기물 발생 ·운영 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폐기물처리계획 및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 처리
11. 에너지·온실가스	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수립	○	· 에너지 사용량 증가 · 공사 시 투입 장비, 운영 시 이용 차량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건설장비 공회전 최소화 · LNG 사용, 온실가스배출 최소화 ·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12. 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 공사 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발생 · 운영 시 주변 가로망에 의한 소음영향 발생	· 장비 분산 투입, 저소음 장비 사용 및 가설 방음 판넬 설치
13. 경관	Skyline보전	○	· 시설물 배치로 인한 스카이라인의 변화 예상	· 건물배치, 형태, 높이 계획에 반영
	조망권 확보	○	· 주변 주거지역의 조망권 확보 필요	·주변 토지이용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을 구성
	녹지공간 확보	○	·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조경 녹지 등에 대한 다양한 경관 연출을 도모
14.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휴식 및 여가 공간 부족	· 녹지 등 휴식 및 여가 공간 확보
15.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	·주변 주거지역의 일조장해 영향이 크지 않도록 계획 수립	· 건축물 주변 충분한 일조시간을 확보하도록 계획 수립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16. 인구 및 주거	인구 및 주거를 고려한 계획 수립	-	·인구 및 주거 현황 조사	·952세대 계획

18.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구분	계획내용
기본방향	• 철거 및 착공 시 현지조사 시점에 활용이 가능한 녹지, 수목을 선정하되 수목 상태, 수목의 군집 형성 여부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도록 함
기존 수목의 활용계획	• 기존 수목들의 자체 조사를 통한 활용 대상 선정 • 조사 결과 은행나무, 느티나무, 마로니에, 단풍나무, 포플러 등 조경수로써 선형 녹지 상태로 분포하고 있음. 본 구역은 탄소 저감 대책의 방안으로 환경정화 수종을 우선적으로 구역 내 녹지 등에 식재할 예정이므로 이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선별하되, 사업시행 시 조경수로써 활용 가능성을 판단하고 가능한 이식 후 재식하는 방안 검토 • 이식하게 될 경우, 장소는 서울시, 강동구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근처 근린공원을 활용하며, 재식이 가능한 조경수에 대하여는 본 계획에서 단지 내 조경수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19.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구분			세대수(세대)	인구수(인)	비율(%)
재건축	합계		952	2,132	100
	전용 면적	60㎡ 이하	346	775	36.4
		60㎡ 초과 ~ 85㎡ 이하	245	549	25.7
		85㎡ 초과	361	808	37.9

※ 세대당 인구는 가구당 인구인 2.24인으로 산정(강동구청 홈페이지 2024년 8월 통계자료)

20.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21.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2.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 해당사항 없음

23. 구역 내 옛길, 옛물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24.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관한 계획

가.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

구분	가이드라인	반영사항	비고
계획의 방향	• 9호선 신설역 개통에 따른 고덕택지(명일동 일대)의 입지 위상 및 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한 기획안 수립 • 특별계획구역17(고덕현대아파트)과 연접한 특별계획구역18 (명일한양아파트)의 개별 재건축 또는 통합 재건축 시를 대비한 통합적 계획 수립 ※ 특별계획구역18은 지구차원의 통합적 계획구상 위해 연계검토한 사항으로 향후 특별계획구역18 정비계획 및 건축계획 수립 시 추가 검토하여 계획 확정 예정	• 9호선 신설역 개통에 따른 고덕택지(명일동 일대)의 입지 위상 및 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한 기획안 수립 • 특별계획구역17 (고덕현대아파트)과 연접한 특별계획구역18 (명일한양아파트)의 재건축 시를 고려한 계획 수립	
정비 구역계	• 특별계획구역 17(고덕현대아파트) :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을 따름 • 특별계획구역 18(명일한양아파트) : 동남로변 완충녹지(폭원 10m)를 구역계에 포함, 지역 내 필요한 공공시설 등 대체 검토 ※ 통합 재건축 시에도 동남로변 완충녹지(폭원 10m)를 구역계 포함하여 계획 검토	• 특별계획구역 17(고덕현대아파트) :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을 따름	
용도 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공 시설 등	[특별계획구역 17, 18 통합적 기반시설계획] • 도로(특별계획구역17, 18 공통) - 원활한 교통처리 위해 고덕로62길, 구천면로 확폭 · 고덕로62길: 12m(2차선) → 16m(3차선) 확폭 ※ 향후 우성아파트 재건축 시 20m(4차선)로 확폭 검토 · 구천면로: 15m(2차선) → 18m 확폭(3차선) • 공원(특별계획구역18) - 현황 은하수어린이공원은 지하철9호선 개통과 지역 일대 유동인구 증가를 고려해 한영중고교앞 교차로로 위치 이동 검토(기존 은하수어린이공원 면적 이상 확보) • 녹지(특별계획구역18) - 동남로변 완충녹지를 구역계에 포함해 공원과 일체적으로 조성, 보행 및 휴식 공간으로 활용 ※ 통합 재건축 시 법적 공원녹지면적 확보 ※ 공공시설 등의 종류 및 규모는 정비계획 입안과정에서 관계부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도로 - 고덕로62길 : 12m(2차선) → 16m(3차선) 확폭 - 구천면로 : 15m(2차선) → 18m(3차선) 확폭	
용적률	• 기준용적률 : 210% 이하 • 허용용적률 : 230% 이하 • 상한용적률(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상한용적률 및 「도정법」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① 243% 내외 : 공공기여 시설 및 종류, 규모 등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과정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산정 - 상한용적률② (법적상한) 300% 이하 : 상한①~상한②(법적)까지 증가 용적률의 1/2은 공공주택으로 확보(「도정법 시행령」제54조, 「서울시 도정조례」 제30조) ※ 용적률 체계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재정비) 등에 따르며 정비계획 입안과정에서 최종 확정	• 기준용적률 : 210% • 허용용적률 : 226.80% • 상한용적률 : 239.38% • 법적상한용적률 : 299.97% → 증가 용적률의 1/2은 공공주택(125세대)으로 확보	

구분	가이드라인	반영사항	비고
주택 공급	• 계획세대수 940세대 내외 ※ 주택공급계획은 정비계획 입안과정에서 주민 수요조사를 통해 변경 가능 ※ 공공주택은 주택정책실 협의를 통해 세대수 및 평형규모 결정	• 952세대 계획 - 공공주택 125세대 (전용면적 59.9㎡ 102세대, 84.9㎡ 23세대)	
층수 /높이	• 창의혁신디자인 시 높이계획 유연하게 적용 가능 (창의혁신 디자인 여부는 도시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서울시 관련 절차에 따라 최종 결정) - 신속통합기획 시뮬레이션(안) : 최고층수 50층 내외 ※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체결 시, 특별계획구역 17과 18구역 사이 인접 대지 경계선 기준 완화 허용	• 창의혁신 디자인 등 우수디자인 반영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 • 최고층수 49층 ※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체결 시, 특별계획구역 17과 18구역 사이 인접대지 경계선 기준 완화 허용	
경관 계획	• 스카이라인은 고덕택지(명일동 일대) 재건축 시를 고려해 주변 도시맥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명일공원~대상지 방향 통경축 확보를 위해 동남로71길과 구천면로변으로 중저층배치구간 설정(권장) 및 'V' 자형 스카이라인 형성 • 고덕로62길에서의 가로변 위압감 최소화를 위해 중저층 배치 및 개방감 있는 건축배치 계획 수립	• 명일공원 ~ 대상지 방향 통경축 확보를 위해 동남로71길과 구천면로변으로 'V' 자형 스카이라인 형성 • 고덕로62길 가로변 중저층 배치 및 개방감 있는 건축배치 계획 수립	
건축 한계선	• 보행 편의성 및 가로활성화를 고려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이상 확보 -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되는 대지 내 공지는 보도부속형(필요 시 차도부속형)으로 계획하되, 보행공간은 보도(도시계획도로)와 일체적으로 조성	• 구천면로, 고덕로62길, 동남로71길 : 건축한계선 5m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계획, 보도와 일체적으로 조성 • 인접대지 경계 : 건축한계선 3~10m	
보행 동선	• 공공보행통로 - 고덕역 4번출구에서 대명초등학교(후문)로 연결되는 보행동선을 고려해 특별계획구역 17, 18 경계부에 폭원 10m의 공공보행통로 설치 (특별계획구역 17, 18에서 각각 5m 확보) • 단지 내 보행 동선(권장) - 보행편의를 위해 동남로와 고덕로62길을 연결하는 동서방향의 단지 내 보행동선 계획 ※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신설역(한영외고역(예정)) 에서 공원으로 지하철출입구 연결 허용	• 공공보행통로 - 특별계획구역 17, 18 경계부에 폭 5m의 공공보행통로 설치 • 단지 내 보행동선 - 보행 편의를 위해 동남로와 고덕로62길을 연결하는 동서방향의 단지 내 보행동선 계획	
차량 진출 입구	[특별계획구역 17, 18 통합적 교통처리계획] • 특별계획구역 17 : 공동주택 출입구는 동남로71길 1개소, 고덕로62길 1개소 설치 • 특별계획구역 18 : 공동주택 출입구는 동남로71길 1개소, 구천면로 1개소 설치	• 차량 진출입구 계획 : 동남로71길 1개소, 고덕로62길 1개소 설치	

구분	가이드라인	반영사항	비고
	※ 통합 재건축 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남로71길 출입구는 1개소로 통합 검토 ※ 교통처리계획은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2020.2) 교통영향평가 취지를 반영하여 계획 ※ 차량출입불허구간은 정비계획 지침도에 따르며, 향후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검토 가능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 재건축사업 시행 이후 인구수 증가에 따른 상가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로활성화 용도 배치(권장), 연도형 상가 설치 유도 • 고덕역에서 단지로 이어지는 보행 활성화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주변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 배치(권장)	• 구천면로 : 가로활성화 용도 배치 - 한영외고역(신설 예정) 신설 역세권에 대응한 미래 수요를 반영하여 연도형 상가 설치 • 공공보행통로 주변으로 주민공동시설 배치 - 어린이집, 서울형키즈카페,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나. 건축계획 가이드라인

구분	가이드라인	반영사항	비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 창의적 건축물 디자인을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을 전제로 계획 • 특별건축구역 적용에 따른 인동거리 완화 등은 주거유형 다양화, 경관성, 일조, 프라이버시 등 주거 성능이 개선되도록 계획	• 창의적 건축물 디자인을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 주거유형의 다양성 확보와 함께 일조, 경관, 프라이버시 등 주거 성능 향상에 중점을 두어 계획	
단지 배치 계획	• 특별계획구역 17, 18구역 간 조화로운 단지 설계를 유도 - 공공보행통로 중심으로 오픈스페이스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 - 통경축, 건축선의 연결을 위해 개방감 있는 건축 배치 및 가로경관 형성 - 중저층과 고층 주동이 조화를 이루는 일체적 스카이라인 계획 수립 • 가로활성화용도 배치구간(권장) - 동남로71길 : 고덕역세권 상권(고덕택지 내 중심 상업기능)과 연계 - 구천면로: 한영외고역(신설 예정) 신설역세권에 대응한 미래 수요를 반영, 연도형상가 설치 권장 • 주민공동이용시설 배치구간(권장) - 고덕역에서 단지로 이어지는 보행 활성화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주변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 배치	• 특별계획구역 17, 18구역 간 조화로운 단지 설계 - 공공보행통로를 중심으로 오픈스페이스 연계 - 통경축, 건축선 연결을 통해 개방감 있는 건축배치 계획(전체 필로티 계획) - 중저층과 고층 주동이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 계획 • 구천면로: 가로활성화 용도 배치 - 한영외고역(신설 예정) 신설 역세권에 대응한 미래 수요를 반영하여 연도형 상가 설치 • 공공보행통로 주변으로 주민공동시설 배치 - 어린이집, 서울형키즈카페,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구분	가이드라인	반영사항	비고
스카이라인 및 경관 계획	• 스카이라인은 고덕택지(명일동 일대) 재건축 시를 고려해 주변 도시맥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단지 경계부에서 중앙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점진적 스카이라인 계획 – 명일공원에서 대상지 방향으로의 통경축 확보를 위해 동남로71길과 구천면로변으로 중저층 배치구간 설정(권장) 및 'V' 자형 스카이라인 형성 • 단지 중앙부에는 고층 및 초고층 주동 탑상형을 배치해, 단지 내 충분한 오픈스페이스와 통경구간을 확보 • 고덕로62길에서의 가로변 위압감 최소화를 위해 중저층 배치 및 개방감 있는 건축배치 계획 수립 ※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체결 시, 특별계획구역 17과 18구역 사이 인접 대지 경계선 기준 완화 허용	• 단지 경계부에서 중앙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점진적 스카이라인 계획 • 동남로71길, 구천면로변 통경축 확보를 위해 'V' 자형 스카이라인 계획 • 단지 중앙부 고층(49층) 주동 탑상형을 배치하고, 오픈스페이스와 통경 구간 확보 • 고덕로62길 중저층 배치 및 개방감 있는 건축 배치 계획 수립 ※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체결 시, 특별계획구역 17과 18구역 사이 인접 대지 경계선 기준 완화 허용	
외부 공간 및 동선 계획	• 단지 내 충분한 녹지 및 외부공간을 조성하여, 기존 아파트단지 내 부족했던 휴식, 여가공간 확충 • 고덕로62길 주변 연도형 주동 배치 시, 보이드(void) 공간, 필로티 구조를 적극 활용하여 가로에서의 개방감 확보 • 가로변 차량 출입으로 인한 보행 단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행 친화적 가로공간 설계 • 자전거 동선과 보행동선을 분리하여 보행 안전성을 확보	• 단지 내 충분한 녹지 공간을 계획하고 벤치, 파고라 등 휴식, 여가공간 조성 • 전체 주동 필로티 구조로 가로에서의 개방감 확보 및 열린단지 조성 • 보행자의 연속적인 이동과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도록 식재대, 볼라드 등 완충 공간 확보 및 보행 친화적 가로공간 계획 •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계획하였으며, 포장 재질 및 색상 분리 등을 통해 보행 안전성 확보	
건축 시설 계획	• 동남로71길, 구천면로변 근린생활시설은 연도형 상가 설치를 권장하며, 상업지구 및 역세권 기능과 연계한 가로 활성화를 도모 • 주민공동이용시설 중 외부개방시설은 가로변, 공공보행통로변 우선 설치	• 구천면로 : 가로활성화 용도 배치 – 한영외고역(신설 예정) 신설 역세권에 대응한 미래 수요를 반영하여 연도형 상가 설치 • 외부 개방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서울형키즈카페) 공공보행통로변에 배치	
공원 녹지 계획	[특별계획구역 17, 18 통합적 공원녹지계획] • 공원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제공원으로 조성하고, 신설역세권과 연계한 시설도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 검토 ※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신설역(한영외고역(예정))에서 공원으로 지하철출입구 연결 허용 • 녹지는 공원과 일체적으로 조성하되, 시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 검토	–	

Ⅱ.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동구 고덕1동2동, 명일2동, 상일동 일대	3,883,394	-	3,883,39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36호 (2005.2.5)	-
	특별계획구역 17	강동구 명일동 56번지	37,658.5	-	37,658.5		대상지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없음

다.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①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B	17.5	집산도로	289 (132)	광로 2-80	중로 1-2	일반도로	-	2018. 07.19.	구천면로
변경	중로	2	B	18	집산도로	289 (132)	광로 2-80	중로 1-2	일반도로	-	2018. 07.19.	
기정	중로	1	5	20	집산도로	285	중로 1-242	중로 1-2	일반도로	-	1982. 04.29.	고덕로 62길
기정	중로	1	242	20	집산도로	625 (137)	광로 2-80	대로 1-1	일반도로	-	1982. 04.29.	동남로 71길

※ ( )는 구역 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노선번호	변경후 노선번호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2-B	중로 2-B	· 폭원 변경 - B : 17.5m → 18.0m 증) 0.5m	- 대상지 남측(명일동 61 일원) 특별계획구역 해제(2018.07.19.)로 구역 내 추가 0.5m 확폭을 통한 도로폭 18m 확보

※ 도로 폭 18m 확보 :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도로 계획 반영

② 주차장 : 변경없음

2) 공간시설 : 변경없음

3)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4) 보건위생시설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내용 : 특별계획구역 17 외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17(고덕현대아파트)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좌동	
도시기반 시설계획		• 공원 :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5%이상 또는 계획세대당 2㎡의 공원면적을 확보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위치에 집중 배치	• 관련 규정 준수	
		• 특별계획구역 내 기존 도시기반시설(도로, 공원, 유치원 등)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조정변경 할 수 있음	• 정비계획에 따름	
건축물 관련 계획	용도	• 허용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적률	• 기준용적률 : 230% •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 (1+1.3α) • 여기서 α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α= 공공시설 합계 기부채납면적 / 공공시설 기부채납 후 대지면적)	• 기준용적률 : 210%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β - β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적용 (20% 이내)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x {1 + (1.3 x 가중치 x α토지) + (0.7~1 x α건축물) + (0.7 x α현금)} - α토지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및 대지지분)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 중 토지 및 대지지분으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α건축물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및 대지지분)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 중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α현금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및 대지지분)로 제공한 후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 중 현금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건폐율	• 30% 이하	좌동	
	높이	-	• 158m 이하(49층 이하)	
	건축물 배치	• 건축한계선 계획 - 5m : 구천면길, 약수터길, 주양길변	• 건축한계선 계획 - 동남로71길, 고덕로62길, 구천면로 : 5m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계획, 보도와 일체적으로 조성, 지역권 설정) - 인접대지 경계선 : 3m ~ 10m • 주민공동시설 배치구간 - 공공보행통로 주변으로 주민공동시설 배치 • 가로활성화용도 배치구간 - 구천면로 : 연도형 상가 설치 • 중저층 배치구간 : 고덕로62길	
	건축 기준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어린이공원, 근린공원포함)·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 유원지·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인접대지 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한다. [별표1] • 인동간격 기준 -16층 이상인 탑상형(하나의 엘리베이터실 및 계단실(코아)에서 직접 단위세대로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로서 한 건축물의 외벽에서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거리가 각각의 건축물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정남북 방향의 수평거리의 1배 이상 이격 [별표2] -높은 건축물의 층수가 12층 이상인 경우로서, 건축물이 서로 겹치는 부분의 길이가 낮은 건축물의 측벽너비 이하 이고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높은 건축물 높이의 0.8배이상이고, 낮은 건축물의 높이 이상 이격 [별표3]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 (마주 보는 2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에 한한다)의 건축물이 낮고, 주개구부(거실과 주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 방향이 남쪽방향을 향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이의	• 건축법 등 관련 규정 준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변경	
	수평거리가 높은 건축물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 이격 [별표4]		
대지내 공지계획	• 대지내공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내용 준수	• 건축한계선 5m(동남로71길, 고덕로62길, 구천면로)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로 계획, 보도와 일체적으로 조성, 공공에 항시 개방 (지역권 설정)	
보행동선	-	• 공공보행통로 - 특별계획구역 17, 18 경계부에 폭원 5m의 공공보행통로 설치 • 단지내 보행동선 - 보행 편의를 위해 동남로와 고덕로62길을 연결하는 동서방향의 단지 내 보행동선 계획	
교통처리 계획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없음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없음	
경관 및 건축물 관련 제반 계획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 준수	• 관련 규정 준수	
관련 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관련지침 등 우선 준용 • 단독주택등 저층주택지 관리방안 세부시행기준의 내용 준용	• 관련 규정 준수	

※ 지역권 설정권자는 강동구청장, 존속기간은 영구로 등기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추후 강동구, 조합 간 합의서를 체결하고 분양계약서(조합원, 일반분양)에 위 내용을 명기하도록 함

Ⅲ. 2025년 제7차(2025.07.18.)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 수정가결

구분	심의 결과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제7차 도시계획 수권분과 위원회	수정 가결	○건축계획, 대지조성계획, 용적률 계획, 건폐율 계획, 높이 계획, 건축한계선 및 주택공급계획은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안) 반영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안)을 반영하였음	반영

Ⅳ. 관련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서 : 생략

Ⅵ.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299) 및 강동구 재건축재개발과(02-3425-5985)에 관련 도서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덕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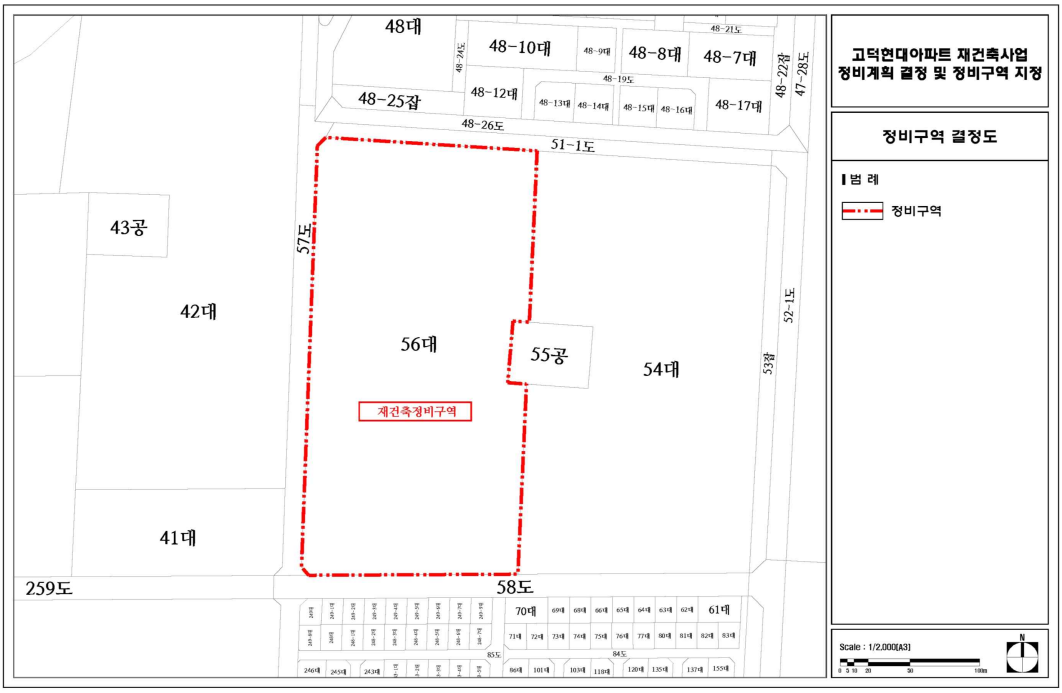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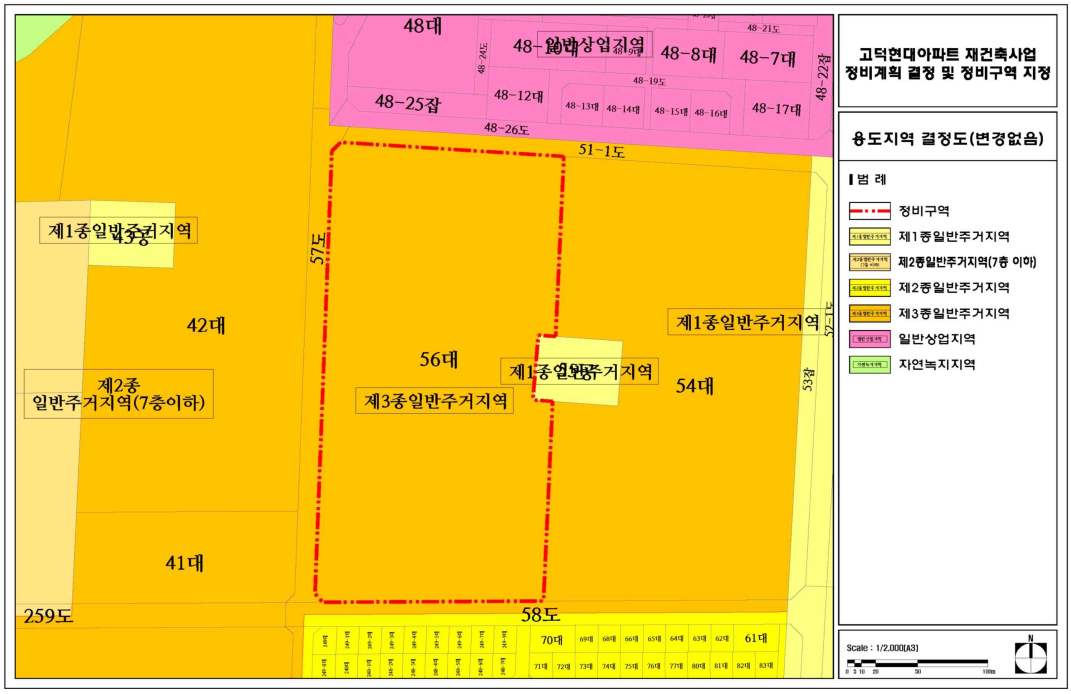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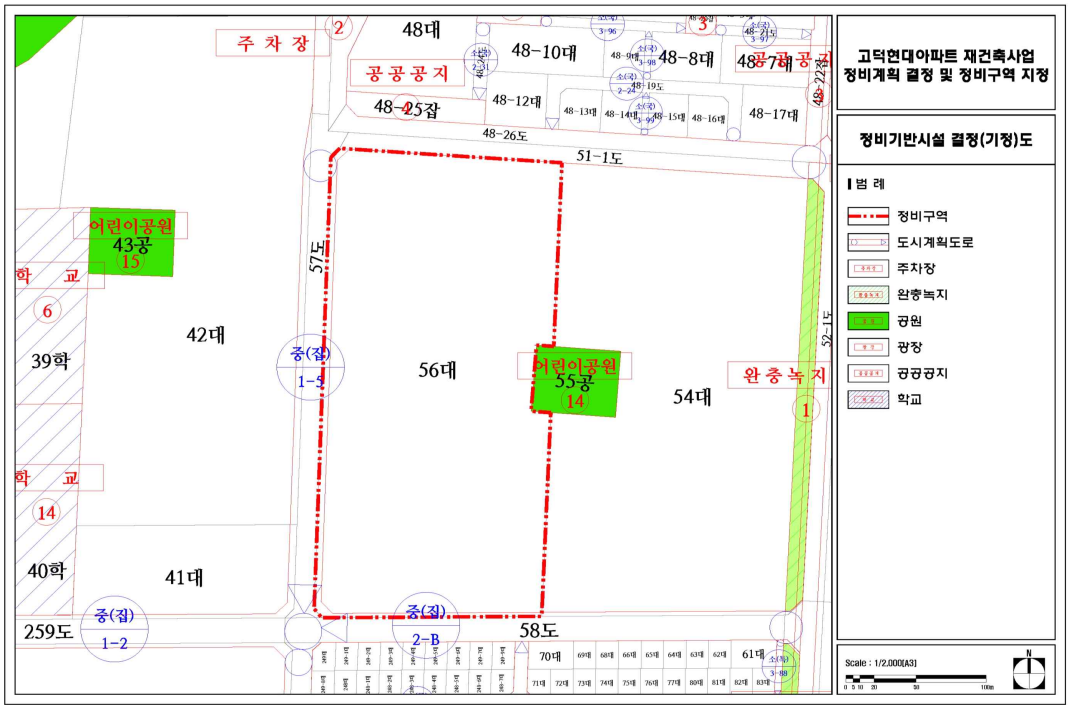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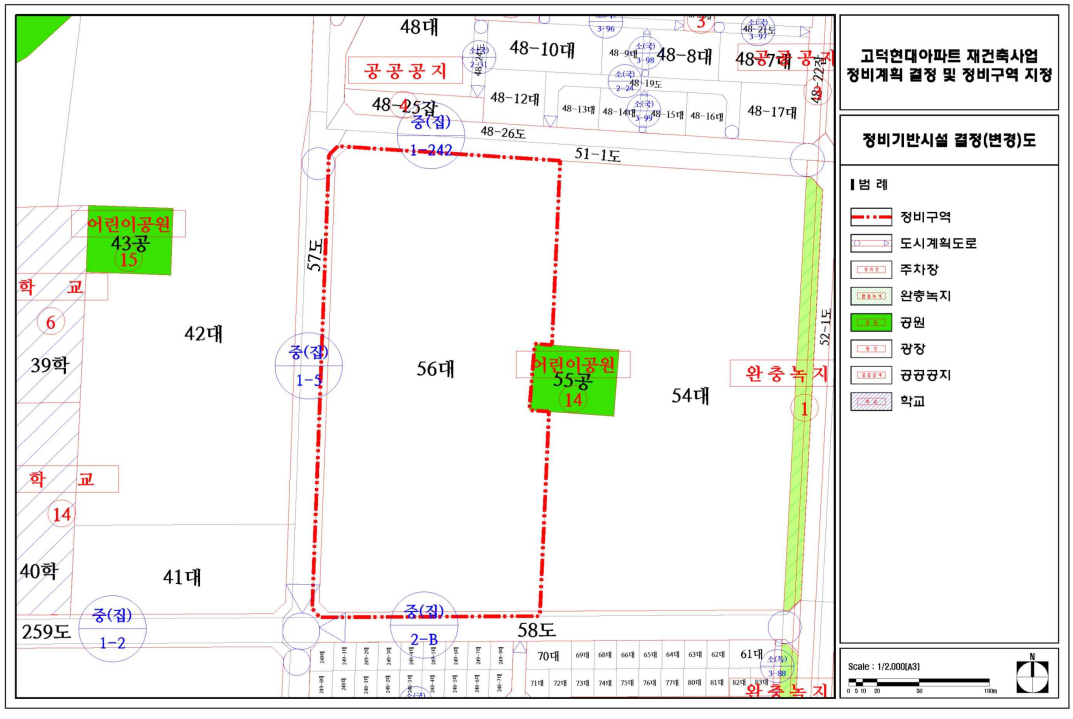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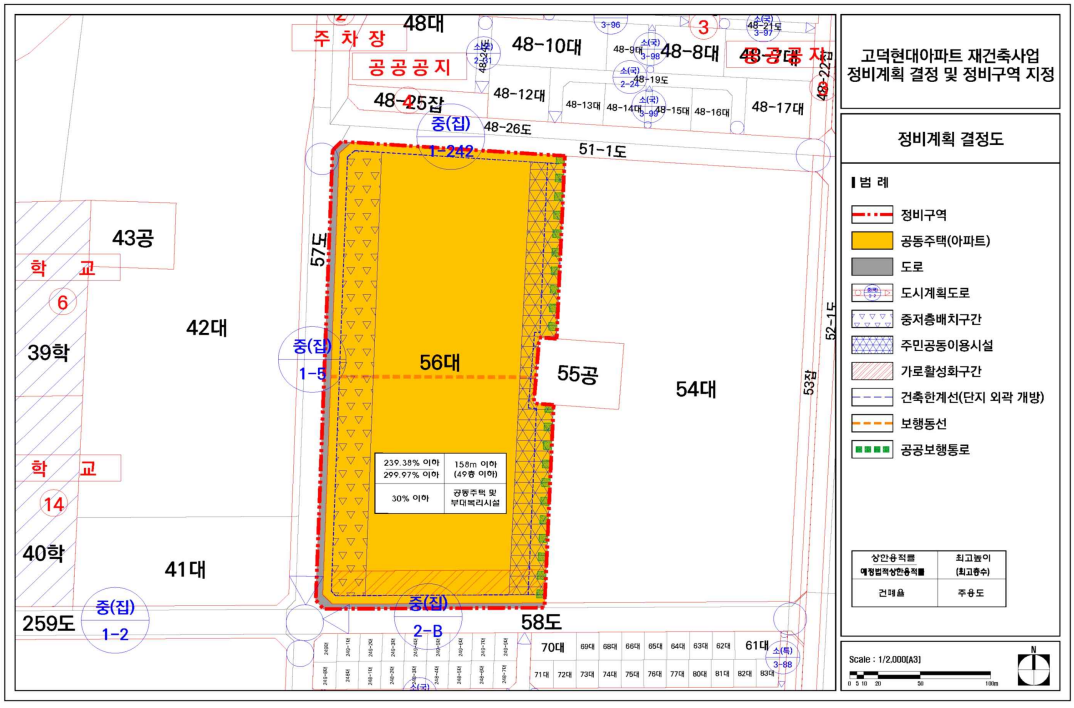
고덕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결정도
범 례
정비구역
공동주택(아파트)
도로
도시계획도로
중저층배치구간
주민공동이용시설
가로활성화구간
건축한계선(단지 외곽 개방)
보행동선
공공보행통로
주 차 장
공 공 공 지
48대
48-10대
48-8대
48-12대
48-25잡
48-17대
중(집) 1-242
48-26도
51-1도
57도
43공
학 교
6
42대
39학
중(집) 1-5
56대
55공
54대
52-1도
53잡
학 교
14
40학
41대
259도
중(집) 1-2
중(집) 2-B
58도
70대
61대
239.38% 이하
299.97% 이하
158m 이하
(49층 이하)
30%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상한용적률
최고높이
건폐율
주용도
Scale : 1/2,000[A3]

<붙임 2>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특별계획구역 17 세부지침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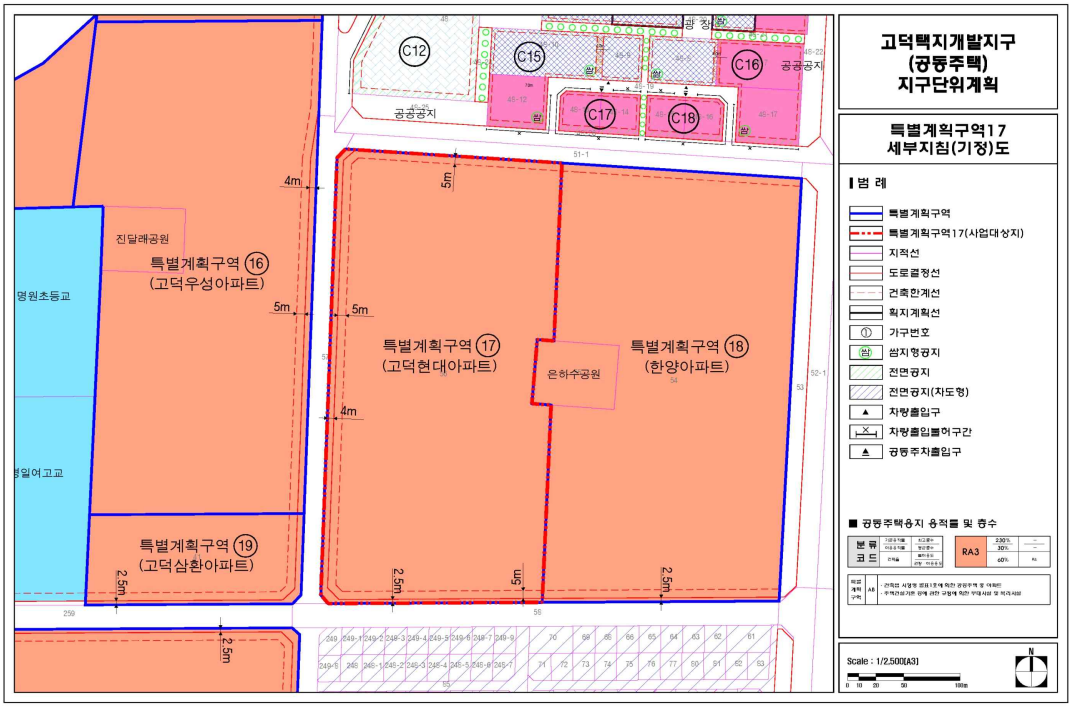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 17 세부지침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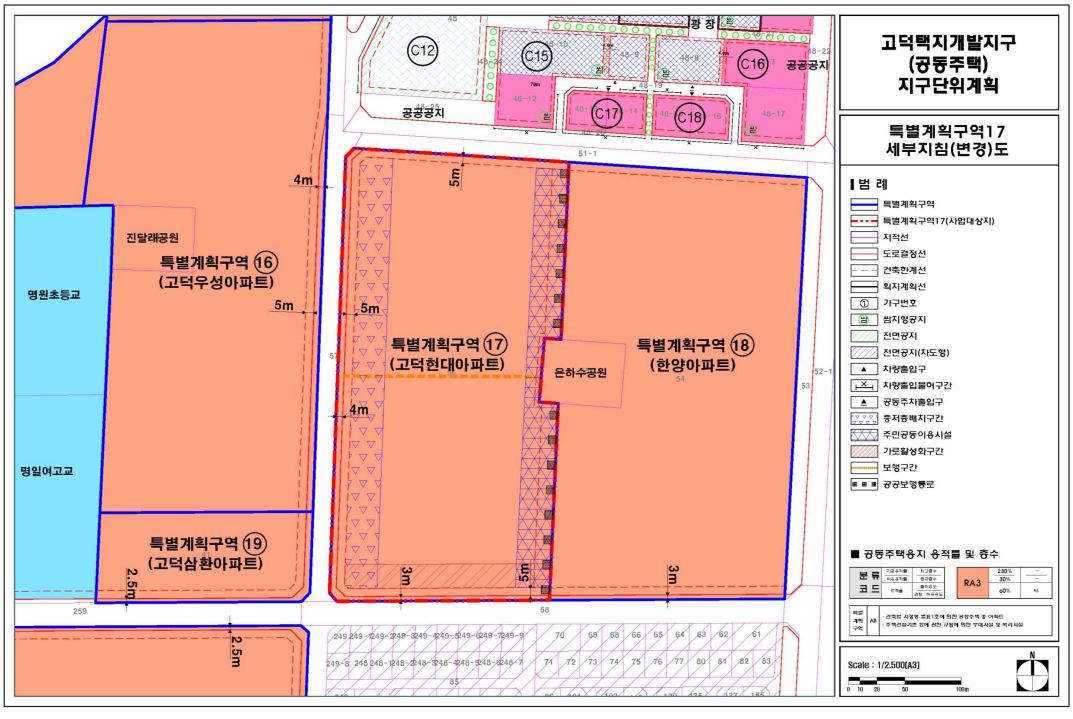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14호

명일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14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6호(2005.02.0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7호(2006.0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72호(2010.12.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3호(2015.08.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31호(2018.07.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66호(2019.11.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63호(2020.06.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88호(2023.11.09.)로 결정(변경) 고시된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14(명일신동아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5.07.18.)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명일신동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강동구 명일동 44번지	-	증) 39,558.8	39,558.8	-

2.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39,558.8	100.0	-
획지	소계	38,452.5	97.2	-
	획지1(A1)	38,452.5	97.2	공동주택 용지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1,106.3	2.8	-
	도로	1,106.3	2.8	-

3.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 비례율 (a)

• 추정 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X 100%
• 추정 비례율 산정방식 : 91.75%
= (13,749.5억 - 5,818.0억) / 8,644.8억 X 100% = 91.75%
- 총 수입 추정 : 13,749.5억
- 총 지출 추정 : 5,818.0억
- 종전자산 총액 추정 : 8,644.8억(추정 매도청구 대상 가액 제외)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b)

• 아파트 종전자산 = 부동산 시세조회(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 2024년 06월 기준) 및 최근 3년(2021년 06월~2024년 06월) 실거래가 평균 등을 참작하여 KB부동산 시세와 한국부동산원 시세의 상한값의 평균으로 종전자산 추정(추정분담금 검증 당시 기준)

구□ 분	세대수	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	3년 실거래가 평균	종전자산 추정(원)
29평형	120	1,235,000,000	1,200,000,000	1,229,000,000	1,217,500,000
39평형	180	1,500,000,000	1,500,000,000	1,456,000,000	1,500,000,000
44평형	270	1,610,000,000	1,630,000,000	1,703,000,000	1,620,000,000
합계					**853,500,000,000**

• 상가 종전자산 = 명일신동아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거래사례, 인근 2000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거래사례의 위치별, 층별 효용비율을 적용하여 추정
- 명일신동아아파트 및 인근 2000년 이전 준공된 아파트 상가 거래 사례

단지	층	계약면적(㎡)	거래가격(원)	계약면적당 단가(원/3.3㎡)	비고
A	1	9.812	150,000,000	50,537,000	-
B	1	38.38	685,000,000	59,001,000	-
C	1	17.22	360,000,000	69,110,000	-
D	-1	26.98	250,000,000	30,632,000	-

- 상가 종전자산 추정

동	층수	호수	계약면적(㎡)	층별추정액(원)	평균단가(원/3.3㎡)	층별효용비
상가	-1	9	571.70	5,284,000,000	30,554,000	0.50
	1	14	383.75	6,787,000,000	58,466,000	1.00
	2	6	383.75	3,574,000,000	30,788,000	0.55
유치원	-1,1	1	244.50	2,800,000,000	37,858,000	-
합계		30	1,583.70	**18,445,000,000**	38,502,000	

※ 유치원호는 상가동 외 별동으로 유치원호의 층, 대지권 면적비율, 전유면적의 크기, 위치 등을 감안하여 평균단가를 산출하였음
※ 상가동 층별 효용지수 (1층 : 1.00, 2층 : 0.55, 지하층 : 0.50)
※ 아파트 종전자산 및 상가 종전자산은 향후 실제 감정평가 시 층, 위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종전자산 총액: 853,500,000,000원 + 18,445,000,000 = 871,945,000,000원
• 비례율 산정용 종전자산 총액: 871,945,000,000원 - 7,457,500,000원(추정 매도청구가액 5세대)
= 864,487,500,000원

추정 분담금 산출

• 아파트 추정 분담금 산정방식
- ①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② 추정 권리가액 = ③ 추정 분담금

①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② 추정 권리가액	③ 추정 분담금
전용 59㎡형	11,91억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 비례율 (91.75%)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
전용 74㎡형	13,67억		
전용 84㎡형	15.18억		
전용 94㎡형	16.13억		
전용 102㎡형	17.12억		
전용 112㎡형	18.75억		
전용 129㎡형	20.83억		

※ 아파트 조합원 평균 분양가는 일반분양가 3.3㎡ 당 5,000만원 추정액의 90%를 기준으로 산정됨

• 상가 추정 분담금

구분	층	추정분양가 범위(원/3.3㎡)	조합원 적용단가(원/3.3㎡)	효용비율	추정분담
고덕역 인근 상가	1	65,000,000	58,500,000	1.00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 부담 / - : 환급)
부출입구 인근 상가	1	56,500,000	50,985,000	0.87	
유치원	1	48,750,000	43,875,000	0.75	

※ 상가 조합원 평균 분양가는 각 위치별 추정 분양가 수준 추정액의 90%를 기준으로 산정됨.

※ 해당 분담금은 추산액으로 향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 · 종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주거지역	합계	39,558.8	-	39,558.8	10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39,558.8	-	39,558.8	100.0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5.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	35 (5)	보조간선	2,007 (216)	중로 3-180	지구계	일반 도로	-	1971.04.07.	-
기정	중로	1	242	20	집산도로	625 (8)	광로 2-80	대로1-1	일반 도로	-	1982.04.29.	-

※ ( )는 구역 내 폭원 및 연장임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기준면적(㎡)	면적(㎡)	비고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소계	명일동 44번지	2,959.38	3,300	
	경로당		330	340	
	어린이집		330	340	국공립
	작은도서관		158	220	
	주민운동시설		-	600	
	어린이놀이터		1,147	1,150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기준면적(㎡)	면적(㎡)	비고
	주민공동시설		-	650	지하
부대 시설	관리사무소		54.85	275	
	경비실		-	50	

※ 향후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기준 적용

7.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명일신동아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39,558.8	획지1 (A1)	38,452.5	명일동 44번지	9	-	-	9	-	-

8.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m) (최고 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준	허용	상한	법적 상한		
신설	명일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39,558.8	획지1 (A1)	38,452.5	강동구명일동 44 번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10 이하	230 이하	238.6 이하	299.99 이하	160m 이하 (49층 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주택공급계획 : 947세대(분양 812세대, 공공주택 135세대)

구분		세대수(공공주택)	비율(%)	비고
계		947(135)	100.0(14.2)	-
60㎡ 이하	59.98㎡	207(110)	22.3(11.6)	공공주택 110세대 포함
60㎡ 초과 ~85㎡ 이하	74.98㎡	113	11.9	-
	84.98㎡	212(25)	22.4(2.6)	공공주택 25세대 포함
85㎡ 초과	94.98㎡	117	12.3	-
	102.98㎡	116	12.2	-
	112.98㎡	135	14.3	-
	129.98㎡	47	5.0	-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최고 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준	허용	상한	법적 상한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5조 제2항」에 따라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85㎡ 이하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 건설 비율 적용 제외(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6호, 2024.1.19.) :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합이 종전 주택(재건축하기 전의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합보다 작거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클 것(64,434.9㎡ × 130% = 83,765.4㎡ 이하 → 주거전용면적 83,324.06㎡(29.32% 증가) 계획) :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을 모두 85㎡ 이하 규모로 건설할 것 (조합원 이외 분양 85㎡ 이하로 계획) • 공공주택(장기전세주택) : 135세대 계획					
심의완화 사항								• 법적상한용적률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정비계획용적률(238.6%) → 법적상한용적률(299.99%) - 공공주택(국민주택규모 주택)용적률 : (299.99% - 238.6%) × 50% = 30.69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지정 - 고덕로변, 원터근린공원변 : 10m - 고덕로62길변 : 5m - 우성아파트변 : 3m ※ 건축한계선 확보를 통한 전면공지는 보도와 일체적으로 조성하고 지속적 개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역권 설정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공공보행통로 : 폭 6m 조성(지역권 설정) - 원터근린공원~ 고덕로62길 연계 • 차량출입불허구간 : 고덕로변 일부(2개소, 70m /70m) 지정 •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					

※ 지역권 설정권자는 강동구청장, 존속기간은 영구로 등기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추후 강동구, 조합 간 합의서를 체결하고 분양계약서(조합원, 일반분양)에 위 내용을 명기하도록 함

나. 용적률 계획

<table>
<tr><td>구분</td><td colspan="6">산정내용</td></tr>
<tr><td rowspan="2">토지이용계획</td><td>구역면적</td><td>대지면적</td><td>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도로) 면적</td><td>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td><td>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td><td>건축물·현금 환산부지 면적</td></tr>
<tr><td>39,558.8㎡</td><td>38,452.5㎡</td><td>1,106.3㎡</td><td>-</td><td>-</td><td>-</td></tr>
<tr><td>공공시설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6">• 순부담 면적 (순부담 비율)
=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등 면적 -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1,106.3㎡ (2.8%)</td></tr>
<tr><td>기준용적률</td><td colspan="6">• 210%</td></tr>
<tr><td>허용용적률</td><td colspan="6">•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 = 230%
= 210% + 20%(공공보행통로 5% + 열린단지 5% + 층간소음 해소 5% + 방재·안전 5%)
<table>
<tr><td>구 분</td><td colspan="2">인센티브</td><td>적용</td></tr>
<tr><td>공공 보행통로</td><td>• 원터근린공원 ~ 고덕로62길을 연결하는 폭 6m의 공공보행통로 조성 (1개소, 면적 993.4㎡, 지역권* 설정)
- 산정 : 210% × (993.4㎡/38,452.5㎡) × 1 = 5.4% ※ α = 1
* 지역권 : 통행 등 일정목적으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등기로 설정)</td><td>10% 이내</td><td>5%</td></tr>
<tr><td>열린단지</td><td>• 단지 외곽 담장 미설치 또는 수목 식재, 원터근린공원변 열린단지 조성, 고덕역사거리변 연도형 상가 조성(지형도면 고시)
-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기, 준공 후에도 유지</td><td>5%</td><td>5%</td></tr>
<tr><td>층간소음 해소</td><td>• 바닥(중량)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 적용
- 1등급 5%</td><td>5% 이내</td><td>5%</td></tr>
<tr><td>방재·안전</td><td>• 화재·소방·피난안전 등 공동주택 안전성능 개선 또는 저류지 설치 시
- 기준 : 안전성능을 의무기준보다 초과 설치하여 관련 위원회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td><td>5% 이내</td><td>5%</td></tr>
<tr><td>합 계</td><td colspan="2">최대 20%</td><td>20%</td></tr>
</table>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의 인정 여부는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용적률이 변경될 수 있음</td></tr>
<tr><td>상한용적률</td><td colspan="6">•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x 가중치 x α토지)}
= 230% × (1 + (1.3 x 1 x 0.02877)) = 238.6%
∵ 정비계획용적률 = 238.6%
<table>
<tr><td>가중치</td><td>공공시설 등 제공부지의 허용용적률 / 사업부지 허용용적률
= 230% / 230% = 1</td></tr>
<tr><td>α토지</td><td>공공시설 등 부지 중 토지 및 대지지분으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및 대지지분)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1,106.3㎡ / 38,452.5㎡ = 0.02877</td></tr>
</table></td></tr>
<tr><td>법적상한 용적률</td><td colspan="6">• 299.99%
= 상한(정비계획)용적률 238.6% + 초과용적률 61.39%
※ 초과용적률의 1/2은 국민주택규모로 주택 건설</td></tr>
</table>

9.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 예상 세대수	비고
신규	재건축사업	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가칭)명일신동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기존 : 570세대 계획 : 947세대 증가 : 377대	-

10.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시 경관	• 사업시행 시 사업지 주변 고덕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Open Space 개념과 도시적 디자인을 도입하여 기존의 노후된 경관을 개선하고, 사업대상지 주변의 공동주택지 및 지형과 어울리는 경관 이미지를 연출하도록 하며 동시에 스카이라인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	-
환경 보전	• 실시계획 수립 시 절성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 외부 유출, 내부 유입 최소화 • 구역 내 공지는 조경식재공간 조성으로 불투수 면적 최소화 및 녹지율 확보 • 다량의 건축폐기물과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환경 영향이 예상되므로 착공 시에는 관련 법규에 의거 환경 영향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
재난 방지	• 구역 내 화재 발생을 대비한 방재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을 수립 • 자연 토양 유지 및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률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 재해 시 소방도로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 동선 체계를 구축	-

1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대상지 반경 200m 내 명원초등학교, 배재중·고등학교 입지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 건설공사 시 소음, 진동, 먼지 등의 교육환경 저해 요인 억제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 • 공사 시 학생 및 교직원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소음·진동 발생 저감 대책 • 저소음·저진동 건설기계 및 공법의 선정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에서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와 '소음·진동관리법(제49조2)' 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 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를 사용 • 전달경로에서의 방지 대책 - 공사시 방음벽을 학교 주변에 설치하여 소음 저감 효과를 높임 • 이동성이 낮은 건설기계의 현장 방음 대책 - 항타기, 굴삭기 등 발생 소음이 크고 이동성이 낮은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에 근접하여 이동식 방음벽 또는 방음커버 등을 활용함으로써 소음 저감 효과를 높임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분	계획내용	
범죄 예방을 고려한 환경설계 (CPTED)	분명한 시야선 확보	· 건축물 설계 시 시야 선을 확보하고, 숨을 수 있는 장소 최소화 · 도로변을 따라 관목을 식재하고, 안으로 교목을 식재하여 시야 확보 · 수목 식재 형태 및 크기의 일관성 유지로 은닉 장소를 없앰 · 공원 등 녹지 설계 시 도로에서 내부가 관찰 가능하도록 조성 등
	적합한 조명의 사용	· 어둠이 없는 적합한 조명설계
	고립지역 개선	· 시야 선이 닿지 않거나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곳, 사람의 통행이 적거나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유사시 구조 요청 또는 구조가 어려운 지역을 과감히 없애는 설계
	사각지대의 개선	· 감시가 곤란한 지역은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사각지대를 없애는 설계
	대지의 복합적 사용증진	· 다양한 복합시설 배치로 활용도를 높여 시설 이용을 증진시키고, 통행자에 의한 자연적 감시로 안전성 확보
	활동인자 증대	· 일정 지역에 모여 활동하도록 하여 도로나 공간에 생동감을 부여함으로써 범죄 기회를 감소시킴
	영역성 강화	· 특정 지역에 대한 소유감·영역성 부여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에게는 허가받지 않은 영역 침범에 불안 심리를 증폭시켜 범죄를 예방
	정확한 표시로 정보제공	· 표지판은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 시민이나 방문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 간선변 및 이면도로변 보행로에 유도등 및 안내시설 설치로 통로의 인지성 확보와 비상 장소 활용
	쾌적한 공간설계	· 보안장비 설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환경이 메말라 오히려 공포감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사용자에게 안락감을 제공

구분	계획내용
범죄예방 프로그램화	·능동적 범죄예방 체계 및 개방형 공간구조 형성, 통합형 관리시스템 구축 ·가로 및 구역별로 적합한 시설 설치로 효율적인 방범 체계 구축

13. 세입자 주거대책

가. 주거세입자 현황

• 전체 570가구 중 세입자 약 122가구 (전체 가구수의 21.4%)

나. 재정착이 가능한 주택규모 공급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라 공공주택 135세대 건립

구분			세대수(세대)		
			계	분양주택	공공주택
재건축	합계		947	812	135
	전용면적	60㎡ 이하	207	97	110
		60㎡ 초과 ~ 85㎡ 이하	325	300	25
		85㎡ 초과	415	415	-

1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가.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

1) 건축물 동수

구역 내 건축물 용도 현황(동)			구역 내 건축물 허가 현황(동)		
계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계	유허가	무허가
9	7	2	9	9	-

2) 거주현황

유형별 주택 호수	거주 가구수(가구)			구역 내 거주 인구수(인)			비고
	소계	가옥주	세입자	소계	가옥주	세입자	
계	570	448	122	1,825	1,434	391	
공동주택	570	448	122	1,825	1,434	391	

※ 거주현황의 경우 ' 24.02.28. 기준으로 작성한 사항임

3) 규모별, 유형별 거주현황

구 분	공동주택					비고
	소계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합 계	570	570	-	-	-	-
60㎡ 이하	-	-	-	-	-	-
60㎡ 초과 ~ 85㎡ 이하	120	120	-	-	-	전용 81㎡
85㎡초과	450	450	-	-	-	전용 112㎡, 전용 127㎡

나.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규모 (전용면적)		세대수(세대)				비 고
		계	조합원분양	일반분양	공공주택	
합 계		947	570	242	135	-
60㎡ 이하	59.98㎡	207	38	59	110	-
60㎡ 초과 ~ 85㎡ 이하	소계	325	117	183	25	-
	74.98㎡	113	44	69	-	-
	84.98㎡	212	73	114	25	-
85㎡ 초과	소계	415	415	-	-	-
	94.98㎡	117	117	-	-	-
	102.98㎡	116	116	-	-	-
	112.98㎡	135	135	-	-	-
	129.98㎡	47	47	-	-	-

15.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구분	가구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명일신동아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획지1(A1)	39,558.8	명일동 44	38,452.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6.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1)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공공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 colspan="5">주요내용</th></tr>
<tr><td colspan="2">계획기준</td><td colspan="5">• 공공주택(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건설 :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계획</td></tr>
<tr><td colspan="2">법적상한용적률</td><td colspan="5">• 299.99% 이하</td></tr>
<tr><td colspan="2">상한용적률
(정비계획 용적률)</td><td colspan="5">• 238.60% 이하</td></tr>
<tr><td rowspan="3">공공주택
의무면적
산출근거</td><td>초과 용적률</td><td colspan="5">• 법적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299.99% - 238.60% = 61.39%</td></tr>
<tr><td>초과 용적률의 50%</td><td colspan="5">• 61.39% X 0.5 = 30.695%</td></tr>
<tr><td>의무면적</td><td colspan="5">• 38,452.5㎡(대지면적) X 30.695% = 11,802.99㎡ 이상</td></tr>
<tr><td colspan="2" rowspan="4">공공주택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계획</td><td>전용면적</td><td>공급면적</td><td>세대수(세대)</td><td>계획면적</td><td>비고</td></tr>
<tr><td>59.98㎡</td><td>81.5691㎡</td><td>110</td><td>8,972.60㎡</td><td>-</td></tr>
<tr><td>84.98㎡</td><td>114.2716㎡</td><td>25</td><td>2,856.79㎡</td><td>-</td></tr>
<tr><td colspan="2">합계</td><td>135</td><td>11,829.39㎡</td><td>(의무) 11,802.99㎡
이상 확보</td></tr>
</table>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인가 시 조정 될 수 있으며, 면적은 공동주택 공급면적 기준
※ 용적률 완화로 공급되는 공공주택 135세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며, 장기전세주택의 50%는 미리내집으로 활용

2) 주택의 규모별 비율(정비계획)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규모
(전용면적)</th><th rowspan="2">전체
세대수
(세대)</th><th rowspan="2">전체
비율
(%)</th><th colspan="3">세대수(세대)</th><th colspan="2">공공주택 비율(%)</th></tr>
<tr><th>조합원
분양</th><th>일반
분양</th><th>공공주택</th><th>전체 세대수 대비</th><th>전체비율</th></tr>
<tr><td colspan="2">합 계</td><td>947</td><td>100.0</td><td>570</td><td>242</td><td>135</td><td>14.3</td><td>100.0</td></tr>
<tr><td>60㎡ 이하</td><td>59.98㎡</td><td>207</td><td>21.9</td><td>38</td><td>59</td><td>110</td><td>11.6</td><td>81.5</td></tr>
<tr><td rowspan="3">60㎡ 초과 ~
85㎡ 이하</td><td>소 계</td><td>325</td><td>34.3</td><td>117</td><td>183</td><td>25</td><td>2.7</td><td>18.5</td></tr>
<tr><td>74.98㎡</td><td>113</td><td>11.9</td><td>44</td><td>69</td><td>-</td><td>-</td><td>-</td></tr>
<tr><td>84.98㎡</td><td>212</td><td>22.4</td><td>73</td><td>114</td><td>25</td><td>2.7</td><td>18.5</td></tr>
<tr><td rowspan="5">85㎡ 초과</td><td>소 계</td><td>415</td><td>43.8</td><td>415</td><td>-</td><td>-</td><td>-</td><td>-</td></tr>
<tr><td>94.98㎡</td><td>117</td><td>12.3</td><td>117</td><td>-</td><td>-</td><td>-</td><td>-</td></tr>
<tr><td>102.98㎡</td><td>116</td><td>12.2</td><td>116</td><td>-</td><td>-</td><td>-</td><td>-</td></tr>
<tr><td>112.98㎡</td><td>135</td><td>14.3</td><td>135</td><td>-</td><td>-</td><td>-</td><td>-</td></tr>
<tr><td>129.98㎡</td><td>47</td><td>5.0</td><td>47</td><td>-</td><td>-</td><td>-</td><td>-</td></tr>
</table>

※ 조합원 분양 합계는 공동주택 소유 조합원 기준이며, 면적별 배분은 관리처분계획 및 선호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7.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1.비오톱	비오톱 확보	○	• 비오톱유형평가 4등급	• 높은 등급 지역은 존치 • 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
2.생태네트워크	연결성 확보	○	• 인접 공원과의 연결성 가능지역	• 녹지 조성, 주변지역 연계	-
3.동식물상	동식물 보호	○	• 공원 연접 지역으로 소형동물 서식 • 공동주택 부지 내 조경 식재지 분포	• 단지 내 녹지공간 확보로 소형동물 서식공간 마련 • 수목 존치 및 식재	-
4.자연환경자산	자연자산 보존	○	• 서측 원터근린공원 생태자연도 2등급	• 원터근린공원과 연계한 수목 식재	-
5.토지이용	쾌적한 토지이용	○	• 주거지 노후 · 불량 및 주거환경 개선 필요	• 계획인구 수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
6.토 양	토양관리	○	• 토양오염 없음	• 토양오염 관리 준수	-
7.지형지질	지형변동 최소화	○	• 표고 30~35m 100.0%, 경사 5° 미만 100.0% 분포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
8.물순환,수리·수문	생태면적 30% 이상	○	• 개발면적 660㎡ 이상 공동주택	• 생태면적율 30.0% 이상 확보 • 투수포장 및 녹지계획	-
9.수질(지표/지하)	오수 발생 최소화	○	• 계획지구 동측 고덕천 위치 •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만족(하천)	• 공사 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 운영 시 오수처리계획 수립	-
10.바 람	바람길 확보	○	• 평균풍속 2.33m/s, 주풍향 서풍	• 바람길 확보를 위한 건물 배치 • 단지 내 오픈스페이스 확보	-
11.열	열환경 개선	○	• 불투수포장 비율 높음	• 녹지 및 투수포장계획	-
12. 대기질/미세먼지	비산먼지 발생억제	○	• 대기오염 유발 시설 없음	• 세륜 · 세차시설 설치 • 살수차량 운용 및 방진망 설치	-
13.온실가스	에너지절약	○	• 주변 지역 에너지 사용 및 도로교통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 녹색· 조성, 에너지 절약계획 등	-
14.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처리	○	• 2022년 강동구 생활폐기물 : 120,664.4ton/년	• 공사 시 및 운영 시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고
15.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 LNG 및 전력 사용량 산정	• 신·재생에너지 설치계획 •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
16.소음진동	소음 · 진동 기준	○	• 소음 조사 결과 주간 66db,야간62db • 진동 조사결과 주간 47db, 야간 44db	• 공사 시 및 운영 시 저감대책 수립(가설방음벽, 방음벽 등)	-
17.경관	Skyline보전 조망권 확보	○	• 도심형 경관 형성	• Skyline 보전 및 조망권 확보 • 통경축 확보	-
18.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 · 여가공간 확보	○	• 인접 공원으로 휴식 및 여가공간 확보	•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도서관 등 계획	-
19.일조	총 4시간 및 연속 2시간확보	○	• 건축법상 일조권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준수	• 일조피해를 최소화하는 건축물 배치계획 마련	-
20.보행친화공간	보행자/자전거전용도로 계획	○	•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부족 • 고덕로, 고덕로62길변 보행자 · 자전거겸용도로	•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계획 • 고덕로변 보도높이형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 • 고덕로62길변 보행자 · 자전거겸용도로 계획	-
21.인구	계획인구 적정성	○	• 강동구 인구 감소 추세	• 적정 계획인구 계획	-
22.주거	주거환경 개선	○	• 강동구 주택수 148,323호	• 주거공간 확충, 주거환경 재정비	-

18.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구분	계획내용
기존 수목 현황	• 계획대상지 내에 분포하는 수종은 왕벚나무 179주, 향나무 177주, 은행나무 88주 등 총 27분류군 742주가 식재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수고는 2m~18m로 확인됨
기존 수목의 활용계획	• 사업 시행으로 인해 단지 내 생육중인 식생은 대부분 훼손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경계획 수립 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향토수종을 대상으로 생육 상태를 고려하여 이식 수목을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

19.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구분			세대수(세대)	인구수(인)	비율(%)
재건축	합계		947	2,122	100
	전용 면적	60㎡ 이하	207	464	21.9
		60㎡ 초과 ~ 85㎡ 이하	325	728	34.3
		85㎡ 초과	415	930	43.8

※ 세대당 인구는 가구당 인구인 2.24인으로 산정(강동구청 홈페이지 2024년 8월 통계자료)

20.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21.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2.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 해당사항 없음

23. 구역 내 옛길, 옛물길,「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 해당사항 없음

Ⅱ.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동구 고덕1동·2동, 명일2동, 상일동 일대	3,883,394	-	3,883,39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36호 (2005.2.5)	-
	특별계획구역 14	강동구 명일동 44번지	39,558.8	-	39,558.8		대상지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없음

다. 도시기반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내용 : 특별계획구역 14 외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14(신동아아파트) (변경)

구분	계획지침		비고
	기정	변경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구분		계획지침		비고
		기정	변경	
도시기반 시설계획		• 공원 :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5% 이상 또는 계획세대당 2㎡의 공원면적을 확보 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위치에 집중배치	• 관련규정 준수	
		• 특별계획구역 내 기존 도시기반시설 (도로,공원,유치원 등)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조정변경 할 수 있음	• 정비계획에 따름	
건축물 관련 계획	용도	• 허용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용적률	• 기준용적률 : 230% •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x (1 + 1.3α) 여기서 α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α= 공공시설 합계 기부채납면적 / 공공시설 기부채납 후 대지면적)	• 기준용적률 : 210% 이하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β - β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적용 (20% 이내)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x {1 + (1.3 x 가중치 x α토지) + (0.7 ~ 1 x α건축물) + (0.7 x α현금)} - α토지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및 대지지분)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 중 토지 및 대지지분으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α건축물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및 대지지분)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 중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α현금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및 대지지분)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 중 현금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건폐율	• 30% 이하	• 30% 이하	
	높이	-	• 160m 이하(최고높이 49층 이하)	
	건축물 배치	• 건축한계선 계획 - 10m : 원터공원, 고덕동길변 - 5m : 약수터길변	• 건축한계선 계획 - 10m : 원터근린공원변, 고덕로변 - 5m : 고덕로62길변 - 3m : 우성아파트변 ※ 전면공지로 계획, 지속적 개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역권 설정	

구분		계획지침		비고
		기정	변경	
건축물 관련 계획	건축 기준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포함)·도로 ·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인접 대지 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 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별표1] • 인동간격 기준 - 16층 이상인 탑상형(하나의 엘리베이터실 및 계단실(코아) 에서 직접 단위세대로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로서 한 건축물의 외벽에서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거리가 각각의 건축물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정남북 방향의 수평거리의 1배이상 이격 [별표2] - 높은 건축물의 층수가 12층 이상인 경우로서, 건축물이 서로 겹치는 부분의 길이가 낮은 건축물의 측벽너비 이하이고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높은 건축물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의 높이 이상 이격[별표3] -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 (마주보는 2동의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에 한한다)의 건축물이 낮고, 주개구부 (거실과 주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 방향이 남쪽방향을 향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이의 수평거리가 높은 건축물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 이격 [별표4]	• 건축법 등 관련 규정 준수	
대지내 공지계획		• 대지 내 공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내용 준수	• 건축한계선 확보를 통한 전면공지는 보도와 일체적으로 조성하고 지속적 개방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역권 설정(지역권자 : 강동구청장)	

구분	계획지침		비고
	기정	변경	
보행동선	-	• 공공보행통로(지역권 설정) - 원터근린공원~고덕로62길을 연결하는 폭원 6m 공공보행통로 설치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 불허구간 : 고덕동길 지정	• 차량출입불허구간 : 고덕로변 일부 (2개소, 70m/70m) 지정	
경관 및 건축물 관련 제반 계획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 준수	• 관련 규정 준수	
관련 계획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관련지침 등 우선 준용 •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지 관리방안 세부시행기준의 내용 준용	• 관련 규정 준수	

※ 지역권 설정권자는 강동구청장, 존속기간은 영구로 등기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추후 강동구, 조합 간 합의서를 체결하고 분양 계약서(조합원, 일반분양)에 위 내용을 명기하도록 함

Ⅲ. 2025년 제7차(2025.07.18.)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 수정가결

구분	심의 결과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제7차 도시계획 수권분과 위원회	수정 가결	〈 수정사항 〉 • 획지면적, 용적률 계획, 높이 계획, 대지조성계획,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공공기여 계획, 순부담면적 및 주택공급계획은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안) 반영	•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안)을 반영하였음	반영
		〈 조건사항 〉 • 원터공원~대상지~삼환아파트~미관광장으로 연결되는 통경축이 확보되도록 건축배치 계획에 반영하고, 향후, 명일삼환아파트 재건축 시 대상지와 연계되는 통경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	• 원터공원~대상지~삼환아파트~미관광장으로 연결되는 통경축이 일직선 상 확보되도록 건축배치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 향후 명일삼환아파트 개발사업 추진 시 강동구와 협의하여 대상지와 연계되는 통경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반영

구분	심의 결과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 향후,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차량진출입구(2개소) 기하구조의 변경에 대해 차량이 원활히 통행하고 대상지 일대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할 것	• 향후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차량진출입구(2개소) 기하구조의 변경에 대해 차량이 원활히 통행하고 대상지 일대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하겠음	향후 반영

Ⅳ. 관련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서 : 생략

Ⅵ.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299) 및 강동구 재건축재개발과(02-3425-5985)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명일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 정비구역 결정도

■ 용도지역 결정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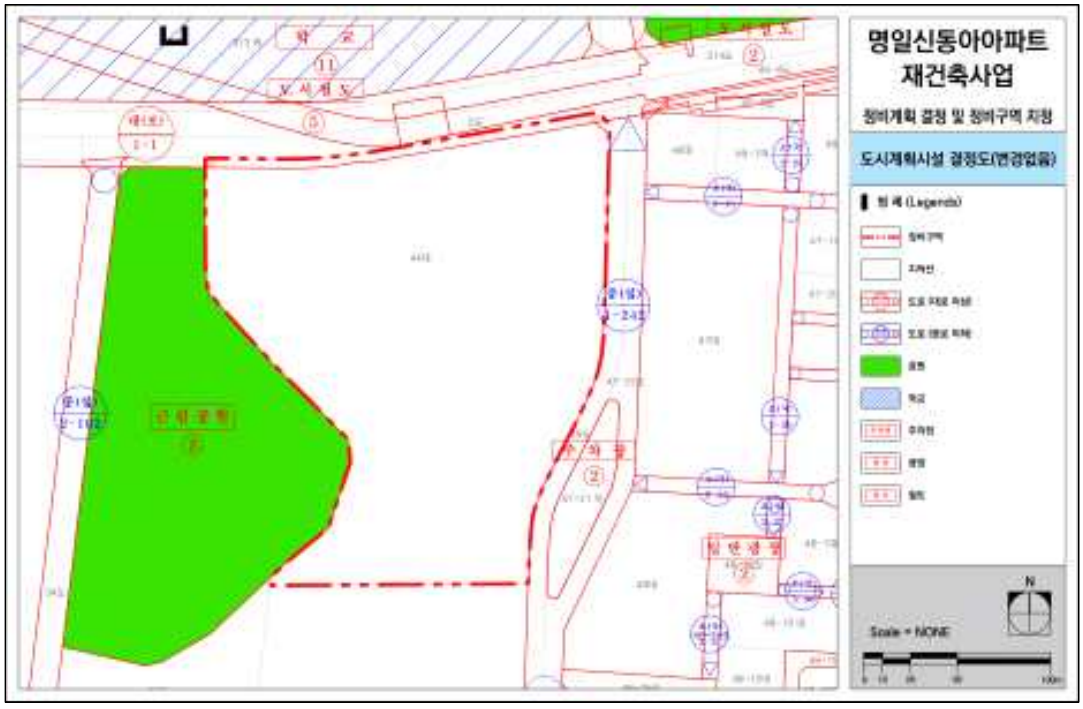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

<붙임 2>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특별계획구역 14 세부지침도(기정)

■ 특별계획구역 14 세부지침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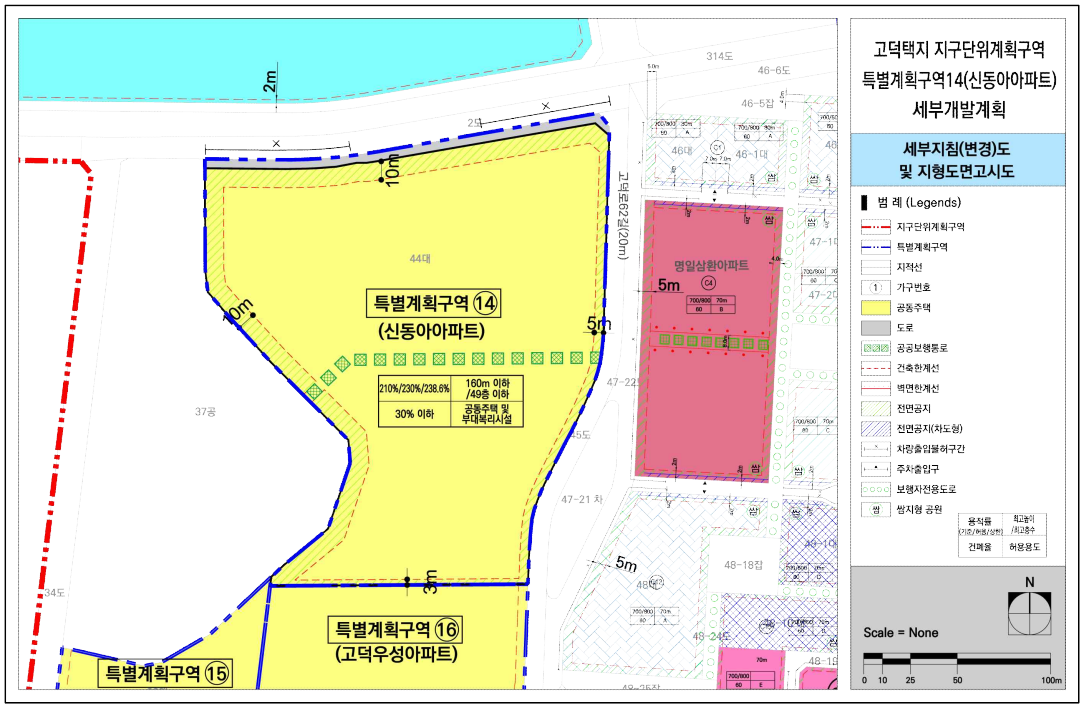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068호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9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해 과태료 수시분 부과 후, 송달불능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법 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9조,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 서울특별시 공해차량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등

3. 공시송달내용(총5건)

과태료부과 대상 차량				처분의 근거자료(위반내역)			처분내용
순번	차량 등록번호	성명	주소	일시	장소	내용	과태료
1	91나7401	CHA*DHRY SAJID SALEEM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7-09 23:30	영등포01_여의2교(제물포길) 1차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200,000원
2	03노1717	박*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7-10 14:34	노원05_화랑로(화랑대역) 4차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200,000원
3	90부1337	오*진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7-19 15:37	송파01_송파대로 1차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200,000원
4	18너3409	주식회사 교*문화신문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6-30 12:43	금천02_서부간선도로(안양) 2차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200,000원
5	11더7210	박*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7-29 18:51	은평07_증산로(DMC) 1차로	공해차량 운행제한 위반	200,000원

4. 공고 기간 : 공고일(서울시 시보 게재일)로부터 14일간

5. 이의신청 안내

가. 이의신청 기한 : 과태료 부과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나. 본 부과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붙임 서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고, 이의신청 기한 내 이의신청서의 제출을 안 하면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이의신청서 제출 방법

- 우편 제출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대기정책과(운행차관리팀)
- 모바일(문자) 제출 :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사진 촬영하여 업무용 핸드폰
  (010-9615-3659)으로 문자 전송
- 담당 : 김석근 (Tel 02-2133-3659) 끝.

붙임 : 이의신청서(서식) 1부. 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 명 (차량번호)	( )		생년월일	
	주 소	(☎)			
과태료 처분내역	부과기관	서울특별시		부과번호	
	부과일자			과태료 금액	
	위반내용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074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6조, 제44조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6조, 제26조에 근거하여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한 화물운수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반환에 대한 행정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처분대상 : ㈜정운로지스
2. 처분내용
   - 서울86바3805 등 34대에 대한 유가보조금 44,978,750원 반환 처분
3. 처분근거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6조 및 제44조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6조 및 제26조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불복절차
   - 청구절차 : 행정심판의 청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행정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 청구기간 :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안내
   가. 서울특별시 물류정책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 등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반환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관련문의 안내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둥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담당자 : 물류정책과 물류지원팀 이종식
      - 전화 : 02-2133-4097, 팩스 : 02-2133-1055. 끝.

[붙임]

※ (주)정운로지스 반환 대상 내역

연번	차량번호	금액(원)	기간
1	서울86바3805	294,343원	2022-04-08 ~ 2023-03-21
2	서울86바3806	225,929원	2022-03-20 ~ 2023-03-20
3	서울86바3807	1,131,219원	2022-04-09 ~ 2023-10-05
4	서울86바3808	368,989원	2022-03-23 ~ 2022-10-13
5	서울86바3810	360,432원	2023-05-16 ~ 2023-10-17
6	서울86바3811	943,638원	2022-06-03 ~ 2023-10-19
7	서울86바3812	478,593원	2022-03-22 ~ 2023-03-18
8	서울86바3814	294,633원	2023-05-19 ~ 2023-10-19
9	서울86바3815	1,521,195원	2022-02-12 ~ 2023-10-18
10	서울86바3816	1,599,041원	2022-03-03 ~ 2024-02-13
11	서울86바3817	1,517,473원	2022-03-03 ~ 2023-10-05
12	서울86바3818	695,215원	2022-09-30 ~ 2023-05-12
13	서울86바3820	661,112원	2022-03-15 ~ 2023-04-22
14	서울86바3821	686,324원	2022-03-22 ~ 2023-10-18
15	서울86바3822	4,332,412원	2022-02-25 ~ 2023-10-19
16	서울86바3823	572,903원	2022-03-22 ~ 2023-01-27
17	서울86바3824	1,887,876원	2022-03-31 ~ 2023-10-19
18	서울86바3825	1,056,061원	2022-08-23 ~ 2023-12-23
19	서울86바3826	341,645원	2022-05-27 ~ 2023-01-09
20	서울86바3827	3,162,749원	2022-02-25 ~ 2024-02-06
21	서울86바3828	241,930원	2022-06-16 ~ 2022-07-24
22	서울86바3829	1,320,640원	2022-05-04 ~ 2024-01-24
23	서울86바3830	914,431원	2022-04-02 ~ 2023-08-22
24	서울86바3831	1,711,154원	2022-09-19 ~ 2023-10-19
25	서울86바3832	693,743원	2022-05-03 ~ 2023-07-24

연번	차량번호	금액(원)	기간
26	서울86바3834	252,409원	2022-07-21 ~ 2023-03-14
27	서울86바3835	2,454,705원	2022-06-22 ~ 2023-05-15
28	서울86바3836	1,622,959원	2022-03-14 ~ 2024-02-29
29	서울86바3837	2,239,866원	2022-03-15 ~ 2024-02-22
30	서울86바3838	1,192,012원	2022-03-05 ~ 2024-02-20
31	서울86바3839	2,121,170원	2022-03-08 ~ 2024-03-16
32	서울86바3841	3,313,827원	2022-02-25 ~ 2024-02-01
33	서울86바3842	3,409,407원	2022-03-01 ~ 2024-02-15
34	서울86바3843	1,358,716원	2023-04-19 ~ 2024-02-06
합계		44,978,750원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079호

양천자원회수시설 환경상영향조사 결과 열람 공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양천자원회수시설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나. 조사기간 : 2024. 10월 ~ 2025. 7월 (계절별 조사)
   다. 조사내용 :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대기질, 수질, 소음, 진동, 토양, 악취)
   라. 조사결과 : 양천자원회수시설 운영으로 인한 대기질, 수질, 소음, 진동, 토양, 악취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됨 (붙임 조사결과서 참조)
2. 열람기간 : 2025. 11. 3. ~ 2025. 12. 12. (근무시간 내)
3. 열람대상 : 해당 지역주민
4. 열람장소
   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 별관1동 12층 자원회수시설과)
   나.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121 (목동), 양천자원회수시설 녹색환경교육센터 2층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 조사자료는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에서도 공개(http://rrf.seoul.go.kr)
5. 기타 문의사항 : 서울시 자원회수시설과(☎02-2133-3682), 양천자원회수시설(☎02-2655-2311)

붙임 : 양천자원회수시설 환경상영향조사 요약보고서 1부.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082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 등으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11.6. ~ 2025.11.20.(14일간)

2. 처분 사전통지 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실시		처분 근거
					일시 및 장소	주재자	
에스아이건설㈜ (유수일)	건축 공사업 01-44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3, 927호 (여의도동, 맨하탄빌딩)	○ 무등록자에게 하도급 공사명: 충북 진천군 시험 연구소 하수급인: ㈜제이에스피씨엠 하도공종: 실내건축공사업 위반내용: 무등록자에게 하도급 하도급액: 378,092,000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2025.12.1.(월) 11:00 건설혁신담당관 청문실	담당 사무관 김문수	법 제82조 제2항 제3호

3.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19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083호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유치기관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위반 기관에 대하여 같은법 제22조(시정명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법 령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같은 법 제22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14조 제4항

3. 처분대상 및 내용
- 붙임1 시정명령 공시송달 대상 목록(124개소)

구분	기관명	위반내역	예정된 행정처분
유치의료기관	미드라인성형외과의원 등 14개소	○ 사업실적 보고의무 위반 - 2024년도 사업실적을 2025년 2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하나, 기한 내 보고하지 아니함	시정명령
유치업자	㈜보람컨설팅 등 110개소		

4. 공고 기간 : 2025.11.3.~2025.11.21.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25.12.5.
나. 본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제출서 양식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방법
- 메일 제출 : cms0921@seoul.go.kr
- 우편 제출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보건의료정책과(의약무팀)
라. 공시송달 대상기관에서는 행정절차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처분 전에 서면이나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의견제출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에 의견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6.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보건의료정책과(☎02-2133-75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붙임1] 시정명령 대상 외국인환자유치기관(124개소)

구분	등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유치사업자	A-2015-01-02-1774	서울유니	강유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25길 17, 601호(역삼동, 역삼프리마빌)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17-01-01-3131	주식회사 글로벌닥터스	김혜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30 (양평동3가, 에이스 하이테크시티3) 301-304호 중 46-1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18-01-01-3457	㈜보람컨설팅	한준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림로 59 (구로동, 구로두산아파트) 107동 306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0-01-01-3982	신한비엠에스 주식회사	임 규헌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36 (신내동) 신내데시앙플렉스 A동 904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0-01-01-4021	주식회사 아로아소프트	최종현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99길 22 (역삼동) 202~205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0-01-01-4191	(주)서진월드투어	여승철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38 (가산동, 고려테크온) 301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2-01-01-4515	(주)서진항공	여승철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38 (가산동, 고려테크온) 301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2-01-01-4551	수라국제주식회사	맹상뢰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 3 (신당동, 맥스타일) 17층 17005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2-01-02-4561	케이윈코리아	손교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3길 16-7 (양평동4가, 금강하우징) B동 204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2-01-01-4608	원스톱주식회사	김소연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65 (가산동, 백상스타타워1차) 210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2-01-01-4583	태풍국제여행사	임형택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4길 16 (서교동) 서교스위트하우스202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1-4834	신양하이텍코리아 주식회사	진씽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8길 33 (남산동2가) 엠플스페이스 304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2-01-01-4617	(주)한코리아투어	김재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13길 11 (문래동6가, 문래파라곤) 201-904	시정명령

구분	등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유치사업자	A-2022-01-01-4627	주식회사 케이더봄	한재형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61 (동교동, 케이스퀘어)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1-4670	루컷메디투어	박성현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9 (가산동, 신한이노플렉스) 3층 303 A-11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1-4680	신원국제투어 주식회사	주영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63 (홍은동, 봉산빌딩) 2층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1-4677	(주)더블유티씨아시아	김영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9길 6-7 (서초동) 134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1-4686	(주)골든크라운국제여행사	김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에이동 10층 1012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1-4684	주식회사 대흥국제여행사	정경태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7길 21 (을지로2가, 명동아르누보센텀) 1동 704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1-4714	주식회사 유레프씨아이앤디	김혜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3길 38 (논현동, 논현웰스톤) 101호~105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1-4740	더리젠글로벌	이석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 70 (잠원동, 영서빌딩) 비1 엠피스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1-4784	주식회사 버텍스랩	허정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95길 87 (잠원동) 3층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1-4749	주식회사 리젠웰리스	이동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84길 33 (역삼동, 대우디오빌플러스) 219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1-4773	리퓨어헬스케어 주식회사	김용상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5 (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17차) 1806호~1809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2-4772	인서울여행사	김재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 75 (망원동) 2층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1-4841	(주)이리스컨설팅	최영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03길 6 (삼성동) 203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1-4786	(주)에이랩코리아	박승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68 (사당동) 2층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1-4820	(주)신대륙물산	김문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0길 16 (대치동) 2층 (동산빌딩)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1-4852	주식회사 공팔리터	최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25 (성수동1가, KD타워) 411호	시정명령

구분	등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유치사업자	A-2023-01-01-4798	주식회사 더모멘트(THE MOMENT)	안현주	서울특별시마포구어울마당로136-9 (서교동) 2층(서교동)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1-4811	주식회사 취한망	이성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47 (신공덕동, 공덕코어) 15층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2-4808	비씨	이정복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세로5나길47 (창천동) 4층3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1-4833	주식회사 뉴온더웨이투어	쉬펑원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4길 19-1 (회현동3가) 3층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1-4837	주식회사 정동국제여행사	고명염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391 (마곡동, 문영비즈웍스) 801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1-4836	(주)월드마이스	김동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89 (서교동) 3층 3-2호 (서교동)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1-4853	주식회사 웨이브글로벌스	진태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2길 15 (대치동) 144호(대치동, 디아이타워)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1-4874	주식회사 이화연	왕평샤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흥대로 589-8 (대림동, 신대림자이) 201동 1105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1-4972	디아이메디컬 주식회사	진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34길 6 (논현동) 2층202호-A323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2-4887	케이엔씨 의료관광	유미애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07길 21 (잠원동, 대능빌딩)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07길 21 2층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1-4875	주식회사 웨이브메디	주우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57 (잠원동, 성한빌딩) 7층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1-4901	주식회사 트래블링	김윤식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36길 30 (가산동) ks타워 1612호,1613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1-4909	뷰티풀트립 주식회사	성현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27 (마곡동, 마곡센트럴타워 I) 819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1-4918	주식회사 한국상무국제여행사	손용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27 (마곡동, 마곡센트럴타워 I) 1219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1-4915	주식회사 와요	윤에리카영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13 (논현동) 1층 202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1-4956	주식회사 프렌다리	부툼판 파톰폰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8 (노고산동, 우정마샹스 오피스텔) 434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2-4946	화도	황해숙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흥15길 5 (반포동, 태평밸리) 208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2-4947	에이치알글로벌	이동훈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340 (신림동, 르네상스 복합쇼핑몰) 7층	시정명령

구분	등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유치사업자	A-2023-01-01-4961	(주)더제이메디컬	김대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93 (갈월동) 4층 105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1-4997	주식회사 한신이엔디	맹정태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53 (녹번동) 201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2-5008	국경그룹	황도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3-24 2층(우측)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1-5013	주식회사 좋은친구	문일경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7길 21 (을지로2가, 명동아르누보센텀) 212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1-5006	주식회사 제이앤엘글로벌	이대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신천동,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30층 3035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1-5021	주식회사 메디히어	김기환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 13 (신당동, 제일평화시장) 5층 A-1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2-5011	에스에스	김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45 (신사동, 인우빌딩(INWOO)) 11층 1125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1-5046	(주)담소리츠	김익환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13길 75 (화양동) 2층 2078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1-5027	드리아스	이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99-6 527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1-5072	주식회사 팀코어스	이명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30길 72 (신사동) 233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1-5052	(주)글로잉글로벌	양금성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5길 22 (서초동, 그린빌오피스텔) 1305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1-5053	주식회사 은하철도	여종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9-1 282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1-5056	주식회사 시크릿팜	손미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19길 11 (당산동2가, 남일빌딩) 301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1-5082	스위트 스마일 주식회사	쥐샤오상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5 (저동2가, 창강빌딩) 203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2-5104	에이에스엠 인터내셔날	진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1 (여의도동) 13층5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1-5118	주식회사 와이케이피 에듀케이션	최영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07 (삼성동, JS타워) 5층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2-5130	재우기	정재욱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10다길 30-1 (삼선동1가, 반석빌딩) B01호	시정명령

구분	등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유치사업자	A-2023-01-02-5128	엠엔씨 코리아	김완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202 (자곡동, 강남힐스테이트에코) 549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2-5133	오렌지브릿지	베레즈나이리나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28길 80 (봉천동, 관악월드메르디앙아파트) 102동 103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1-5158	(주)더에잇	이동건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90 (노량진동, 고려교육타워-어바니엘한강) 5층 510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1-5185	주식회사 공팔리터메디컬	최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25 (성수동1가, KD타워) 607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2-5191	비엠글로벌	조현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3 (개포동, 대청타워) 2011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1-5187	주식회사 72스퀘어	구세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동, 문정역테라타워) 비동 7층 비707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3-01-02-5194	제이디랩스	정덕연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101길 11 (청담동) 507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4-01-01-5400	(주)골드투어클럽	조영걸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8길 40-8 (성산동) 2층(성산동)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4-01-01-5241	주식회사 팬다여행사	XIN HECHUN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158 (마곡동, 마곡센트럴타워Ⅱ) 1215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4-01-01-5242	컨설팅줌(주)	추이리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30길 72 (신사동) 311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4-01-02-5252	시온메디	안수남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40 9-509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4-01-01-5384	주식회사 고도기획	이한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08 (논현동, 영동월드빌딩) 5층 506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4-01-01-5278	㈜비앤비위드 파트너스	홍정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A동 901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4-01-01-5280	주식회사 노블 바이오 메디컬	임미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83길 18 (대치동, 동현빌딩) 208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4-01-01-5323	이찌주식회사	장아난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8 (노고산동, 우정마샹스 오피스텔) 435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4-01-01-5328	주식회사 혜윰기획	이민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0길 36 (삼성동, 세심 이집) 4층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4-01-01-5342	주식회사 세운트래블	박인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로 152 (마곡동, 두산더랜드타워) 711,712,713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4-01-02-5380	비에스컴패니(뷰티스타트)	송소영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6로 45 (마곡동, 리더스퀘어마곡) A동 6층 611-E659호	시정명령

구분	등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유치사업자	A-2024-01-01-5347	주식회사 글로벌게이트	최우승	서울특별시강남구도산대로 149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4-01-01-5355	영메인테인뷰티 주식회사	왕쯔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8 (노고산동, 우정마샹스 오피스텔) 5층 521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4-01-01-5372	호수미주식회사	오미선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문정동, 송파 테라타워2) 비동 208호 유13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4-01-01-5401	러쉬베리 주식회사	최구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 59 (잠원동, 라성빌딩) 4층 4625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4-01-02-5395	고이 메디케어 센터	김지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856 (불광동, 메트로타워) 11층 11018호(불광동, 메트로타워)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4-01-01-5397	주식회사 한지여행사	리중례	서울특별시중구장충단로247 (을지로6가, 굿모닝시티쇼핑몰) 1606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4-01-02-5404	미영국제메디컬	왕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105 (장안동, 장안 NEW CITY) 1111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4-01-01-5493	주식회사 쿄월드여행사	김균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2길 23-3 (신설동) 진흥빌딩 404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4-01-02-5466	구일여행사	김용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71길 2-1 (대조동, 대조빌딩) 4층 428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4-01-01-5507	주식회사 와이지피이공이사	김성홍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 891 (명일동) 1802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4-01-01-5583	주식회사피앤케이아이앤씨	인승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종로1가, 르메이에르종로타운1) 736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4-01-02-5576	렛츠골프앤트립	임수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65 (논현동, 마일스디오빌) 2층 208-10호(논현동, 마일스디오빌)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4-01-02-5572	더온리 트래블	유효황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64 (서교동, 서교제일빌딩) 8층 ES 818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4-01-01-5622	주식회사 글로벌메디컬	박승하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26길 15 (노량진동) 101	시정명령

구분	등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유치사업자	A-2024-01-01-5630	프리큐티 주식회사	정지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여의도동, 파크원) 타워 1, 501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4-01-01-5623	주식회사청유그룹	김승준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10 (남대문로5가, 단암빌딩) 13층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4-01-02-5634	얼굴기획	이상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34길 7 (역삼동) 6층 6140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4-01-01-5649	주식회사 에일런	당덕양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로5길 23 (종암동) 1층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4-01-01-5670	주식회사 테마포커스	이상학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B동201-26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4-01-01-5663	케이홀릭스그룹 주식회사	일라하그바이수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5길 63 (황학동) 제비1층 비105-가60호(황학동)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4-01-01-5676	주식회사 밀리언파이	오상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96길 13 (청담동) 3층(청담동,팝콤빌딩)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4-01-01-5722	케이엘메디 주식회사	쥬커브게렐토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27 (전농동,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3330호 (전농동, 청량리롯데캐슬스카이-엘65오피스텔)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4-01-01-5678	주식회사 스텔라38	정정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46 (청담동, 경원오피스텔) 15층 1520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4-01-01-5679	(주) 방대국제투어	한영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35 (대림동, 건설스마트빌딩) 8층 801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4-01-01-5705	주식회사 메인뷰티메디컬투어	장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46길 7 (논현동) 3층 303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24-01-02-5738	자몽	장자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19 (정릉동, 정릉푸르지오아파트) 101동 801호	시정명령
유치사업자	A-2013-01-01-0842	㈜ 엠아이지2013(MIG2013 Co., Ltd)	김건희	서울 강북구 도봉로 274-1 (미아동) 2층	시정명령

구분	등록번호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유치사업자	A-2020-01-01-4039	엔케이헬스케어주식회사	강주원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33길 5 (논현동, 동화빌딩) 301호	시정명령
유치의료기관	M-2020-01-08-5810	미드라인성형외과의원	김준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0 (역삼동, 상경빌딩) 7층	시정명령
유치의료기관	M-2024-01-07-8359	목동공감한의원	공인성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312 (목동, 제일빌딩) 5층 목동공감한의원	시정명령
유치의료기관	M-2024-01-05-8300	디원치과의원	이선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11 (신사동, S-TOWER) 4, 5층	시정명령
유치의료기관	M-2024-01-05-8274	더뉴치과의원	정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32 (역삼동, 점프밀라노) 9층 802, 803호 더뉴치과의원	시정명령
유치의료기관	M-2024-01-08-7864	연세브라이튼안과의원	나영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42 (역삼동) 흥국생명빌딩4층 연세브라이튼안과의원	시정명령
유치의료기관	M-2024-01-08-7827	비비의원	문주혁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75 (서초동, 서초현대타워아파트) 6층 비비의원	시정명령
유치의료기관	M-2024-01-08-7692	하트웰의원	노환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26 (성수동2가, 더리브 세종타워) 2층 201호	시정명령
유치의료기관	M-2023-01-05-7544	제이에스치과의원	진교성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8 (서초동, 서초아트자이) 2층 제이에스치과	시정명령
유치의료기관	M-2023-01-08-7506	뮤토에스엠씨의원	김창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5-3 15층	시정명령
유치의료기관	M-2023-01-08-7456	제노성형외과의원	이원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20 (신사동, 제이씨빌딩) 5층	시정명령
유치의료기관	M-2023-01-07-7087	강남보성한의원	조동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13 (역삼동, APEXTOWER) 402호 , 강남보성한의원	시정명령
유치의료기관	M-2021-01-07-6126	김정국한의원	김정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08 (역삼동, 글라스톤빌딩) 3층	시정명령
유치의료기관	M-2020-01-07-5717	사암은성한의원	정유웅	서울 중랑구 면목로73길 10 (면목동, 성우빌딩) 1~3층 사암은성한의원	시정명령
유치의료기관	M-2020-01-07-5645	온바디한의원	정소영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5 (논현동, 동양빌딩) 502호	시정명령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 )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전통지, 처분통지 등의 문서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전자우편주소(e-mail)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의료해외진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서울특별시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098호

2025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공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1항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제 운영과 관련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공표 절차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도개요

○ 추진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안전관리 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여 아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대상

○ 인정요건

–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 · 건축 · 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종원업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갱신 대상은 공표일 기준으로 2년임.

2. 인정 공표 대상(신규) : 총 22개소

연번	업종	대상명	영업주	주소	관할
1	휴게음식점	스타벅스 안국점	손정현	종로구 북촌로 5-1	종로
2	일반음식점	무궁화	정호석	중구 남대문로 81	중부
3	휴게음식점	스타벅스 어린이대공원역점	㈜에쓰씨케이 컴퍼니	광진구 능동로 243	광진
4	영화상영관	롯데시네마 용산	롯데컬처웍스㈜	용산구 청파로 74	용산
5	휴게음식점	라온 디저트	이미경	동대문구 정릉천동로 108-1	동대문

연번	업종	대상명	영업주	주소	관할
6	휴게음식점	바스켓테이블	김만중	성북구 동소문로 115-1	성북
7	휴게음식점	스타벅스 진관DT점	㈜에쓰씨케이 컴퍼니	은평구 연서로 645	은평
8	일반음식점	미들앤사우스하우스	㈜케이티에스 테이트(이대산)	강남구 논현로 854	강남
9	휴게음식점	몽중헌 반포점	씨제이 제일제당㈜	서초구 서초중앙로 249	서초
10	휴게음식점	스타벅스 김포공항DT점	㈜에쓰씨케이 컴퍼니	강서구 개화동로 517	강서
11	휴게음식점	스타벅스 명일역점	㈜에쓰씨케이 컴퍼니	강동구 양재대로 1647	강동
12	학원	라이즈어학원 강동캠퍼스	심다윗	강동구 양재대로 1544	강동
13	영화상영관	CGV 방학점	정종민	도봉구 도봉로 684	도봉
14	일반음식점	송림가	송희순	구로구 경인로 398	구로
15	휴게음식점	스타벅스 공릉DT점	㈜에쓰씨케이 컴퍼니	노원구 동일로 1015	노원
16	일반음식점	비아폐 목동점	양미희	양천구 목동동로 309	양천
17	영화상영관	씨네일레븐 (중랑 롯데시네마)	박광수	중랑구 동일로 951	중랑
18	일반음식점	교촌치킨 사가정역점	조성춘	중랑구 면목로45길 3-4	중랑
19	휴게음식점	설빙 중앙대점	방주연 외 1인	동작구 흑석로 101-10	동작
20	휴게음식점	스타벅스 강북구청사거리점	㈜에쓰씨케이 컴퍼니	강북구 도봉로 365	강북
21	휴게음식점	스타벅스 왕십리역9번출구점	㈜에쓰씨케이 컴퍼니	성동구 고산자로 234	성동
22	일반음식점	아웃백스테이크 가산점	감영준	금천구 디지털로10길 9	금천

3. 인정 공표 대상(갱신) : 총 19개소

연번	업종	대상명	영업주	주소	관할
1	영화상영관	롯데시네마 에비뉴엘	김종열	중구 남대문로 130	중부
2	일반음식점	한일관 타임스퀘어점	김은숙	영등포구 영중로 125	영등포
3	휴게음식점	카페구월	구교이 구교윤	성북구 보문로30길 43	성북
4	휴게음식점	스타벅스 미아이마트점	㈜에스씨케이컴퍼니	성북구 도봉로 17	성북
5	휴게음식점	스타벅스 서초역이회빌딩점	㈜에스씨케이컴퍼니	서초구 반포대로21길 3	서초
6	휴게음식점	커피빈 삼성생명강남사옥점	㈜커피빈 코리아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서초
7	휴게음식점	맥도날드 등촌DT점	한국맥도날드유한회사	강서구 양천로 546	강서
8	일반음식점	애슐리퀸즈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	㈜이랜드이츠	강서구 하늘길 38	강서
9	일반음식점	로니로티 천호점	엄세진	강동구 천호대로 1027	강동
10	일반음식점	㈜이춘복참치 공덕점	이춘복	마포구 마포대로 92	마포
11	휴게음식점	투썸플레이스 방학역점	김정용	도봉구 도봉로 696	도봉
12	휴게음식점	만족커피	구경희	관악구 관악로13길 7	관악
13	산후조리원	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파구 충민로2길 20	송파
14	휴게음식점	스타벅스 가락본점	㈜에스씨케이컴퍼니	송파구 송파대로30길 13	송파
15	휴게음식점	맥도날드 송파DT점	한국맥도날드유한회사	송파구 도곡로 434	송파
16	휴게음식점	롯데리아 사가정역점	조현광	중랑구 면목로 333	중랑
17	휴게음식점	투썸플레이스 용마산역점	김태현	중랑구 면목로 249	중랑
18	일반음식점	소담촌 사당직영점	한현숙 외 1인	동작구 동작대로 43	동작

연번	업종	대상명	영업주	주소	관할
19	일반음식점	메이탄 성수서울숲점	최경주	성동구 왕십리로 50	성동

4. 공 표 일 : 2025. 11. 9.(일)

5. 인정기간 : 2025. 11. 9. ~ 2027. 11. 8.(2년 간)

6.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02-3706-152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108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 공시송달 공고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또는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82조(과태료)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수취거절,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된 과태료 수시분 부과처분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수시분 부과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별첨
4. 공고기간 : 2025. 11. 6. ~ 2025. 11. 19. (14일간)
 - 공시송달 대상자는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단속되었기에 「철도안전법」 제8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아래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될 예정입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아래의 안내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2025. 11. 20. ~ 2025. 12. 3.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종료일부터 14일
 - 이의제기 기한: 2025. 11. 20. ~ 2026. 1. 18.(60일간)
   ※ 기한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5. 이의제기 안내
 -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이의제기 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도시철도과
   F A X: 02-2133-1076
6.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02-2133-4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2. 이의신청서 1부. 끝.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일자 2025.9.1./납기 2025.10.30.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과세구분	과세번호	위반행위	과세금액	위반일자
1	1078834511149	기타	6102**-*******	박*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51길 20	수시분	000811	물품판매	150,000	2025-04-01 12:35
2	1078834511150	폐문부재	6905**-*******	신*식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59	수시분	000812	물품판매	150,000	2025-04-07 11:03
3	1078834511151	기타	7008**-*******	이*식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47	수시분	000813	물품판매	150,000	2025-04-08 10:04
4	1078834511214	기타	4810**-*******	정*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169번길 52	수시분	000876	물품판매	150,000	2025-05-22 14:38
5	1078834511225	기타	5206**-*******	김*식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림말길 37	수시분	000887	물품판매	150,000	2025-06-26 13:10
6	1078834511152	기타	7008**-*******	이*식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47	수시분	000814	물품판매	150,000	2025-04-08 12:28
7	1078834511153	폐문부재	5409**-*******	이*식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수시분	000815	물품판매	150,000	2025-04-11 11:29
8	1078834511154	폐문부재	5409**-*******	이*식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수시분	000816	물품판매	150,000	2025-04-11 11:43
9	1078834511227	폐문부재	6108**-*******	김*식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47,	수시분	000889	물품판매	150,000	2025-06-16 11:17
10	1078834511228	기타	6108**-*******	김*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169번길 52	수시분	000890	물품판매	150,000	2025-06-21 11:34
11	1078834511229	기타	6108**-*******	김*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169번길 52	수시분	000891	물품판매	150,000	2025-06-23 11:18
12	1078834511230	기타	6108**-*******	김*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169번길 52	수시분	000892	물품판매	150,000	2025-06-24 11:09
13	1078834511155	기타	6908**-*******	강*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3길 2-15	수시분	000817	물품판매	150,000	2025-04-14 10:22
14	1078834511156	폐문부재	5409**-*******	이*식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수시분	000818	물품판매	150,000	2025-04-17 11:02
15	1078834511157	폐문부재	5409**-*******	이*식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수시분	000819	물품판매	150,000	2025-04-18 12:50
16	1078834511158	폐문부재	5409**-*******	이*식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수시분	000820	물품판매	150,000	2025-04-21 13:28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과세구분	과세번호	위반행위	과세금액	위반일자
17	1078834511231	기타	6108**-*******	김*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169번길 52	수시분	000893	물품판매	150,000	2025-06-25 11:12
18	1078834511232	기타	6105**-*******	배*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169번길 52	수시분	000894	물품판매	150,000	2025-06-25 14:37
19	1078834511161	폐문부재	4302**-*******	조*식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5길 4-3	수시분	000823	철도종사자 지시위반	3,000,000	2025-04-07 17:00
20	1078834511162	기타	4812**-*******	이*식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29번길 37	수시분	000824	물품판매	150,000	2025-04-15 10:51
21	1078834511163	기타	7511**-*******	연*식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림말길 37	수시분	000825	철도종사자 지시위반	3,000,000	2025-04-17 11:50
22	1078834511164	기타	6210**-*******	김*식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122길 23 (독산동)	수시분	000826	철도종사자 지시위반	3,000,000	2025-04-23 11:07
23	1078834511165	기타	6210**-*******	김*식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122길 23 (독산동)	수시분	000827	철도종사자 지시위반	3,000,000	2025-04-24 10:54
24	1078834511166	기타	6210**-*******	김*식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122길 23 (독산동)	수시분	000828	철도종사자 지시위반	3,000,000	2025-04-01 11:42
25	1078834511167	이사불명	4711**-*******	서*식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71 (신당동)	수시분	000829	물품판매	150,000	2025-04-08 12:08
26	1078834511168	기타	4111**-*******	김*식	서울특별시 양천구 은행정로5길 42	수시분	000830	철도종사자 지시위반	3,000,000	2025-04-13 14:00
27	1078834511169	기타	7511**-*******	연*식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림말길 37	수시분	000831	철도종사자 지시위반	3,000,000	2025-04-19 11:45
28	1078834511170	수취거절	4811**-*******	김*식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662	수시분	000832	물품판매	150,000	2025-04-01 10:39
29	1078834511171	기타	6610**-*******	김*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16길 64	수시분	000833	물품판매	150,000	2025-04-01 13:47
30	1078834511172	기타	6610**-*******	김*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16길 64	수시분	000834	물품판매	150,000	2025-04-02 13:55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과세구분	과세번호	위반행위	과세금액	위반일자
31	1078834511173	기타	6610**-*******	김*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16길 64	수시분	000835	물품판매	150,000	2025-04-03 10:42
32	1078834511174	기타	6610**-*******	김*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16길 64	수시분	000836	물품판매	150,000	2025-04-03 14:20
33	1078834511175	수취거절	4811**-*******	김*식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662	수시분	000837	물품판매	150,000	2025-04-29 10:36
34	1078834511176	이사불명	4711**-*******	서*식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71 (신당동)	수시분	000838	물품판매	150,000	2025-04-30 10:53
35	1078834511177	기타	6210**-*******	김*식	서울특별시 금천구 남부순환로122길 23 (독산동)	수시분	000839	철도종사자 지시위반	3,000,000	2025-04-12 12:30
36	1078834511178	기타	6610**-*******	김*식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16길 64	수시분	000840	물품판매	150,000	2025-04-08 13:50
37	1078834511188	기타	6103**-*******	박*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15번길 58-7	수시분	000850	물품판매	150,000	2025-05-22 11:30
38	1078834511190	기타	5312**-*******	정*식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촌로 31	수시분	000852	물품판매	150,000	2025-05-15 13:09
39	1078834511191	폐문부재	4302**-*******	조*식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5길 4-3	수시분	000853	철도종사자 지시위반	3,000,000	2025-05-14 17:28
40	1078834511218	기타	4503**-*******	구*식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길 6-7	수시분	000880	철도종사자 지시위반	3,000,000	2025-06-05 16:53

<서식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위반일시		위반장소	
	부과관청		부과일자	
	부과번호		부과금액	
이의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 . .

신청인 (인)

서울시장 귀하

※ 문의전화 : 02-2133-4350 FAX : 02-2133-1076

☞ 팩스(FAX)로 접수하신 민원인께서는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109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또는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82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수취거절,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사전통지서 송달 불능분을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근　　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별첨
4. 공고기간 : 2025. 11. 6. ~ 2025. 11. 19.(14일간)
 - 공시송달 대상자는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단속되었기에 「철도안전법」 제8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안내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5. 의견제출 안내
 -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메일: baekho8@seoul.go.kr
 팩스: 02-2133-1076
 우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도시철도과
 방문: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도시철도과
 - 의견제출기한 : 2025. 11. 20. ~ 2025. 12. 4. (15일간)
6.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02-2133-4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7월 위반자 사전통지 반송건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우편번호	발송지 주소	위반장소	위반일시
1	1078834512084	기타	2025-09-09 10:45	4810**-*******	정*복	21545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169번길 52	열차	2025-07-01 14:44
2	1078834512085	폐문부재	2025-09-08 08:00	8011**-*******	임*재	15801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47	열차	2025-07-04 11:56
3	1078834512086	폐문부재	2025-09-09 10:52	5409**-*******	이*재	5511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5-07-09 11:04
4	1078834512087	폐문부재	2025-09-09 10:52	5409**-*******	이*재	5511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5-07-09 11:41
5	1078834512088	기타	2025-09-09 07:01	7008**-*******	이*재	0875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47	열차	2025-07-12 08:52
6	1078834512089	폐문부재	2025-09-09 10:52	5409**-*******	이*재	5511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5	열차	2025-07-14 10:36
7	1078834512090	기타	2025-09-09 07:01	7008**-*******	이*재	08755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47	열차	2025-07-30 12:00
8	1078834512094	기타	2025-09-10 10:10	4812**-*******	이*재	15017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29번길 37	열차	2025-07-28 10:19
9	1078834512096	기타	2025-09-09 10:00	4204**-*******	김*재	04758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조로16길	열차	2025-07-13 10:50
10	1078834512097	기타	2025-09-10 10:10	4812**-*******	이*재	15017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29번길 37	열차	2025-07-16 11:31
11	1078834512098	기타	2025-09-09 10:00	7511**-*******	연*재	04735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림말길 37	역사	2025-07-30 12:30
12	1078834512101	이사불명	2025-09-03 14:16	4711**-*******	서*재	04589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71 (신당동)	열차	2025-07-11 10:37
13	1078834512103	기타	2025-09-09 09:43	6610**-*******	김*재	028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16길 64	열차	2025-07-18 14:02
14	1078834512112	기타	2025-09-09 09:43	6610**-*******	김*재	028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16길 64	열차	2025-07-08 12:48
15	1078834512130	기타	2025-09-09 09:43	6610**-*******	김*재	02800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16길 64	열차	2025-07-30 12:04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110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또는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82조(과태료)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수취거절,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된 과태료 독촉고지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별첨
4. 공고기간 : 2025. 11. 6. ~ 2025. 11. 19. (14일간)
 - 과태료 납부지연에 따라 가산금 3%가 부과되었으며, 중가산금 1.2%씩(최대 75%)이 매월 부과됩니다.
 - 「지방세기본법」의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02-2133-4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2025년 8월 과태료 독촉고지 반송건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물건명	과세금액	위반일시
1	1078834487762	기타	2025-08-27 10:26	6908**-*******	강*철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43길, 2-15, 1층 101호	이동상인	150,000	2024-10-01 15:11
2	1078834487763	기타	2025-08-27 06:59	7008**-*******	이*일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647, 2호	이동상인	150,000	2024-10-05 08:52
3	1078834487764	기타	2025-08-27 06:59	7008**-*******	이*일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647, 2호	이동상인	150,000	2024-10-25 10:32
4	1078834487765	기타	2025-08-27 06:59	7008**-*******	이*일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647, 2호	이동상인	150,000	2024-10-29 13:25
5	1078834487766	기타	2025-08-27 06:59	7008**-*******	이*일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647, 2호	이동상인	150,000	2024-10-31 10:07
6	1078834487771	주소불명	2025-08-21 13:08	6202**-*******	이*일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12	이동상인	150,000	2024-10-26 09:40
7	1078834487772	폐문부재	2025-08-27 09:56	7205**-*******	권*일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21길 34-3	전도	150,000	2024-10-11 17:50
8	1078834487773	수취인불명	2025-08-21 12:56	5401**-*******	김*일	서울시 종로구 평창길 12(신분증 확인주소)	이동상인	150,000	2024-10-01 13:06
9	1078834487774	수취인불명	2025-08-21 12:22	7511**-*******	연*일	서울시 성동구 한림말 3길 22 201호	철도종사자지시위반	3,000,000	2024-10-02 12:16
10	1078834487775	기타	2025-08-27 09:20	6610**-*******	김*일	성북구 종암로 16길 64 옥탑층, 자양동	이동상인	150,000	2024-10-03 10:15
11	1078834487776	기타	2025-08-27 12:00	4111**-*******	김*일	서울시 양천구 은행정로 5길 42-2, 401호	철도종사자지시위반	3,000,000	2024-10-13 12:47
12	1078834487777	수취인불명	2025-08-21 12:22	7511**-*******	연*일	서울시 성동구 한림말 3길 22 201호, 402호	철도종사자지시위반	3,000,000	2024-10-17 13:35
13	1078834487778	기타	2025-08-27 12:00	4111**-*******	김*일	서울시 양천구 은행정로 5길 42-2, 402호	철도종사자지시위반	3,000,000	2024-10-29 13:28
14	1078834487779	기타	2025-08-28 08:05	4406**-*******	김*일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5길 15, 402호	이동상인	150,000	2024-10-04 11:23
15	1078834487781	기타	2025-08-28 08:05	4406**-*******	김*일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5길 15, 402호	이동상인	150,000	2024-10-23 10:54
16	1078834487782	기타	2025-08-28 08:05	4406**-*******	김*일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5길 15, 401호	이동상인	150,000	2024-10-25 10:44
17	1078834487783	기타	2025-08-27 09:20	6610**-*******	김*일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길 64, 402호	이동상인	150,000	2024-10-29 13:38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물건명	과세금액	위반일시
18	1078834487784	수취거절	2025-08-21 12:05	4811**-*******	김*일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62, 301동 804호, 신당동	이동상인	150,000	2024-10-30 11:26
19	1078834487785	주소불명	2025-08-21 11:27	5206**-*******	김*일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53길 2 303호 (양평동4가, 에이스리버티움), 402호	이동상인	150,000	2024-10-05 09:10
20	1078834487786	기타	2025-08-27 09:20	6610**-*******	김*일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16길 64 옥탑층, 자양동	이동상인	150,000	2024-10-26 14:09
21	1078834487788	기타	2025-08-27 09:20	6610**-*******	김*일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길 64 종암동, 신당동	이동상인	150,000	2024-10-04 10:54
22	1078834487789	기타	2025-08-27 08:20	4406**-*******	김*일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망우동(401호), 402호	이동상인	150,000	2024-10-09 13:50
23	1078834487794	기타	2025-08-27 09:20	6610**-*******	김*일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길 64 종암동	이동상인	150,000	2024-10-17 13:15
24	1078834487795	수취인불명	2025-08-21 10:57	4711**-*******	서*일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3길 28-5 수유동	이동상인	150,000	2024-10-18 13:10
25	1078834487797	기타	2025-08-27 08:20	4406**-*******	김*일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망우동(401호)	이동상인	150,000	2024-10-21 10:53
26	1078834487802	폐문부재	2025-08-28 11:00	4807**-*******	김*일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466번길 3 106동 212호	이동상인	150,000	2024-10-26 10:45
27	1078834487804	기타	2025-08-27 08:20	4406**-*******	김*일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망우동)	이동상인	150,000	2024-10-01 11:21
28	1078834487805	기타	2025-08-27 08:20	4406**-*******	김*일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망우동)	이동상인	150,000	2024-10-03 11:09
29	1078834487808	폐문부재	2025-08-27 08:40	6905**-*******	신*일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201호	이동상인	150,000	2024-10-11 12:09
30	1078834487811	기타	2025-08-27 08:20	4406**-*******	김*일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망우동)	이동상인	150,000	2024-10-14 12:00
31	1078834487814	기타	2025-08-27 06:59	7008**-*******	이*일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647, 21호	이동상인	150,000	2024-11-07 12:00
32	1078834487815	폐문부재	2025-08-27 11:50	5409**-*******	이*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2길 25,102동 716호(평화주공)	이동상인	150,000	2024-11-11 10:50
33	1078834487816	폐문부재	2025-08-27 11:50	5409**-*******	이*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2길 25,102동 716호(평화주공)	이동상인	150,000	2024-11-11 12:07
34	1078834487817	폐문부재	2025-08-27 11:50	5409**-*******	이*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2길 25,102동 716호(평화주공)	이동상인	150,000	2024-11-12 10:13
35	1078834487818	폐문부재	2025-08-27 11:50	5409**-*******	이*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2길 25,102동 716호(평화주공)	이동상인	150,000	2024-11-26 11:20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물건명	과세금액	위반일시
36	1078834487819	기타	2025-08-27 10:26	6102**-*******	박*일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51길 20-7(신길동)	이동상인	150,000	2024-11-30 11:26
37	1078834487822	폐문부재	2025-08-27 09:56	7205**-*******	권*일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21길 34-3(녹번동,2층)	연설 · 권유	150,000	2024-11-27 17:37
38	1078834487823	기타	2025-08-27 10:49	8404**-*******	장*일	경기도 부천시 성오로 133, 204호 성산리치빌	철도종사자위반	3,000,000	2024-11-03 11:53
39	1078834487824	수취인불명	2025-08-21 12:22	7511**-*******	연*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림말 3길 22, 201호	철도종사자위반	3,000,000	2024-11-09 12:37
40	1078834487825	주소불명	2025-08-20 12:43	7404**-*******	오*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택지3길 22,308호	철도종사자위반	3,000,000	2024-11-22 13:38
41	1078834487826	기타	2025-08-27 08:20	4406**-*******	김*일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이동상인	150,000	2024-11-01 11:06
42	1078834487827	기타	2025-08-27 08:20	4406**-*******	김*일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이동상인	150,000	2024-11-04 13:10
43	1078834487828	기타	2025-08-27 09:20	6610**-*******	김*일	서울 성북구 종암로 16길 64, 옥탑층	이동상인	150,000	2024-11-06 13:14
44	1078834487829	기타	2025-08-27 08:20	4406**-*******	김*일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이동상인	150,000	2024-11-13 13:42
45	1078834487830	기타	2025-08-27 09:20	6610**-*******	김*일	서울 성북구 종암로 16길 64, 옥탑층	이동상인	150,000	2024-11-18 14:22
46	1078834487831	기타	2025-08-27 08:20	4406**-*******	김*일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 4층	이동상인	150,000	2024-11-19 10:41
47	1078834487832	기타	2025-08-27 08:20	4406**-*******	김*일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4층	이동상인	150,000	2024-11-20 10:38
48	1078834487847	기타	2025-08-27 08:20	4406**-*******	김*일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망우동(401호)	이동상인	150,000	2024-11-22 14:30
49	1078834487850	기타	2025-08-27 09:20	6610**-*******	김*일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길 64 종암동	이동상인	150,000	2024-11-27 11:02
50	1078834487858	폐문부재	2025-08-28 11:00	7208**-*******	신*일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39번길 86	연설권유	150,000	2024-12-02 14:46
51	1078834487859	주소불명	2025-08-21 09:16	8310**-*******	조*일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522(괴안동)	기부요청	150,000	2024-12-05 23:00
52	1078834487860	기타	2025-08-27 08:44	6010**-*******	정*일	서울시 종로구 통일로 12길 40-19 지층(행촌동)	연설권유	150,000	2024-12-12 18:11
53	1078834487861	주소불명	2025-08-21 09:05	6908**-*******	강*일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 43길 21-15	이동상인	150,000	2024-12-20 10:17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물건명	과세금액	위반일시
54	1078834487862	폐문부재	2025-08-27 11:50	5409**-*******	이*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2길 25,102동 716호(평화주공)	이동상인	150,000	2024-12-27 13:34
55	1078834487863	폐문부재	2025-08-27 11:50	5409**-*******	이*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2길 25,102동 716호(평화주공)	이동상인	150,000	2024-12-28 11:01
56	1078834487864	폐문부재	2025-08-27 11:50	5409**-*******	이*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2길 25,102동 716호(평화주공)	이동상인	150,000	2024-12-30 11:10
57	1078834487867	기타	2025-08-27 10:26	6908**-*******	강*일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 43길 2-15 1층 101호	이동상인	150,000	2024-12-18 10:54
58	1078834487868	폐문부재	2025-08-26 18:00	6905**-*******	신*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259, 612호(원평노블레스11차)	이동상인	150,000	2024-12-17 11:05
59	1078834487869	기타	2025-08-27 09:00	6210**-*******	김*일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122길23(독산동), 103호	철도종사자지시위반	3,000,000	2024-12-10 10:57
60	1078834487871	폐문부재	2025-08-26 18:00	6911**-*******	박*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97번길 31, 2층	철도종사자지시위반	3,000,000	2024-12-06 13:35
61	1078834487872	기타	2025-08-27 08:20	4406**-*******	김*일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4층	이동상인	150,000	2024-12-04 13:36
62	1078834487873	폐문부재	2025-08-27 09:56	7205**-*******	권*일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21길 34-3 (녹번동 2층)	연설권유	150,000	2024-12-04 16:55
63	1078834487874	기타	2025-08-27 08:20	4406**-*******	김*일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이동상인	150,000	2024-12-16 13:36
64	1078834487875	기타	2025-08-27 09:20	6610**-*******	김*일	서울 성북구 종암로 16길 64, 옥탑층	이동상인	150,000	2024-12-18 10:42
65	1078834487876	기타	2025-08-27 08:20	4406**-*******	김*일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이동상인	150,000	2024-12-19 10:31
66	1078834487877	기타	2025-08-27 08:20	4811**-*******	김*일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이동상인	150,000	2024-12-26 10:58
67	1078834487878	기타	2025-08-27 08:20	4406**-*******	김*일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이동상인	150,000	2024-12-27 10:41
68	1078834487889	기타	2025-08-27 08:20	4406**-*******	김*일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망우동(401호)	이동상인	150,000	2024-12-16 10:16
69	1078834487890	기타	2025-08-27 08:20	4406**-*******	김*일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망우동(401호)	이동상인	150,000	2024-12-20 12:18
70	1078834487892	기타	2025-08-27 08:20	4406**-*******	김*일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망우동(401호)	이동상인	150,000	2024-12-31 12:20
71	1078834487910	기타	2025-08-27 06:17	5312**-*******	정*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촌로 31, B동 404호	이동상인	150,000	2025-01-24 14:38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물건명	과세금액	위반일시
72	1078834487912	기타	2025-08-27 09:00	5105**-*******	장*일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156,401호(남영빌라)	이동상인	150,000	2025-01-07 16:37
73	1078834487936	기타	2025-08-27 08:00	4810**-*******	정*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산로169번길 52, 나동 101호	이동상인	150,000	2025-01-23 14:54
74	1078834487955	기타	2025-08-27 09:00	5105**-*******	장*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56, 401호	물품판매	150,000	2025-02-03 11:16
75	1078834487956	기타	2025-08-27 09:00	5105**-*******	장*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56, 401호	물품판매	150,000	2025-02-03 11:40
76	1078834487959	기타	2025-08-27 09:00	5105**-*******	장*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56, 401호	물품판매	150,000	2025-02-06 12:10
77	1078834487965	기타	2025-08-27 06:17	5312**-*******	정*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촌로 31, B동 404호(일신동 골드캐슬)	물품판매	150,000	2025-03-11 12:07
78	1078834487968	기타	2025-08-27 08:00	4810**-*******	정*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169번길 52, 나동 101호(간석동)	물품판매	150,000	2025-03-31 15:00
79	1078834487969	기타	2025-08-27 09:00	5105**-*******	장*일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 156, 401호	물품판매	150,000	2025-03-13 11:28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111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77조,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정*수	경기도 구리시 벌말로 1**-**(토평동)	일시: 2025-07-31 09:55 장소: 서부간선지하도로 내용: 운행제한 높이 0.16m 초과	처분일: 2025. 9. 30.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25. 11. 30.
남*규	경기도 김포시 봉화로51번길 **, *동 ***호(사우동)	일시: 2025-08-26 18:45 장소: 서부간선지하도로 내용: 운행제한 높이 0.12m 초과	처분일: 2025. 9. 30.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25. 11. 30.
최*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4안길 *-*(본오동)	일시: 2025-09-01 08:30 장소: 서부간선지하도로 내용: 운행제한 높이 0.18m 초과	처분일: 2025. 9. 30. 과태료: 30만 원 납기일: 2025. 11. 30.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이*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 ***동 ****호 (논현동)	일시: 2025-06-13 15:01 장소: 범박터널 입구 내용: 운행제한 축하중 1.35t 초과	처분일: 2025. 8. 1. 과태료: 50만 원 납기일: 2025. 11. 30.

4. 공고기간: 2025. 11. 6.~2025. 11. 19.

5. 납부기한: 2025. 11. 30.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5%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113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보통신공사업의 신규 등록 내역(10월)

연번	등록 번호	등록 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1	204212	'25. 10. 13.	주식회사 유니윈즈 김상형 (110111-5753713)	서울시 강동구 고덕비즈밸리로 26, 강동U1센터 비-1208호 (고덕동)
2	204213	'25. 10. 13.	주식회사 지수아이앤씨 정승원 (110111-4186486)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27길 2, 일동홀딩스(주)사옥 3층 (양재동)
3	204214	'25. 10. 17.	주식회사 제이앤와이지 홍두표 (110111-0937159)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83, 우림블루나인비즈니스센터 에이동 1903호 (염창동)
4	204215	'25. 10. 20.	주식회사 미래정보기술원 장석윤 (110111-3212274)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32, 장산빌딩 6층 (방배동)
5	204216	'25. 10. 20.	리사이클렛저 주식회사 김기종 (131111-0601863)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아이티벤처타워서관 10층 (가락동)
6	204217	'25. 10. 20.	윤네트웍스 주식회사 윤한 (110111-0928470)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9길 27, 세림빌딩 2층 (가락동)
7	204218	'25. 10. 27.	주식회사 한국씨엠씨 신현국, 신호철 (110111-3203843)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42, 한화비즈메트로1차 4층 (구로동)

연번	등록 번호	등록 일자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8	204219	'25. 10. 28.	주식회사 어플라이언스코리아 이동구 (110111-4255827)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55, 코오롱싸이언스밸리2차 1205,1206호 (구로동)
9	204220	'25. 10. 28.	주식회사 루스케이프 (Lugh scape Co.,Ltd.) 하갑철, 맹지아 (110111-4086529)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83, 우림블루나인비즈니스센터 에이동 1707호 (염창동)
10	204221	'25. 10. 28.	주식회사 에이펙스플 홍순철 (110111-7648219)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27, 229호 (충정로3가, 충정리시온)
11	204222	'25. 10. 31.	주식회사 델타시스템 유중철 (134111-0148630)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77, 서울숲IT밸리 1206호 (성수동1가)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공사업등록의 신청 등)

3. 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정보통신과 ☎ 02-2133-288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118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의견진술)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안*이*알 등 489명
4. 공고기간 : 2025. 11. 06. ~ 2025. 11. 26.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25. 11. 06. ~ 2025. 11. 26.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와 함께 인터넷(http://cartax.seoul.go.kr)또는 서울특별시 교통지도단속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경(50%)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의견제출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4층 교통지도단속반 과태료과징팀
   - 전화번호 : 02-2133-4570~79 팩스번호 : 02-2133-4904
   ※ 서울시 교통위반단속조회(http://cartax.seoul.go.kr)에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제출 대상 및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1부.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	200나79**	(*)*안*이*알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06 18:37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	378거39**	이*종	충청북도 음성군	2025-09-02 10:3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	34하82**	홍*환	경기도 남양주시	2025-09-08 08:16	태릉~ 서울여대	50,000
4	152호34**	(*)*스*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8-26 18:06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5	200나79**	(*)*안*이*알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06 18:3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6	142호13**	L*N*E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5-09-02 10:4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7	125호59**	박*복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9-08 09:4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8	116허62**	김*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9-09 07:47	잠원IC~반포IC	50,000
9	15부14**	K*I*A*A*I*H*O*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2025-09-16 19:15	연희IC~연세대교차로	50,000
10	380수72**	다*렌*(*)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9-14 20:37	연희IC~연세대교차로	50,000
11	169하29**	(*)*웃*브*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9-11 13:4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6-2	50,000
12	111서91**	김*아	경기도 용인시	2025-09-22 15:26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3	60보86**	김*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9-23 07:1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4	322로83**	C*U*G*U*I*Y*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9-18 18:15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여의도동)	50,000
15	171하52**	빅*데*터*식*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12 17:5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6	33수27**	L*E*A*E*K*U*G*M	경기도 김포시	2025-09-22 15: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	50,000
17	64로08**	김*칠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9-23 17:22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8	90더29**	박*식	충청북도 제천시	2025-09-23 18:52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9	108너91**	(*)*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9-24 08:54	개화 사거리~김포공항 교차로	50,000
20	01머14**	주*회*위*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9-19 13:46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여의도동)	50,000
21	194호73**	정*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9-13 17:30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2	35러28**	박*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9-22 08:25	이대역교차로~굴레방다리교차로	50,000
23	57서31**	임*수	경기도 광주시	2025-09-22 18:1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4	255주74**	김*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22 18:0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5	82두27**	박*민	경기도 남양주시	2025-09-22 07:4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6	46소42**	김*분	대구광역시 서구	2025-09-22 18:1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7	152소58**	주*회*슬*엔*테*먼*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9-17 19:38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28	153허75**	김*남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9-15 18:3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9	163소25**	새*디*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9-18 17:15	종합운동장교차로~ 종합운동장역	50,000
30	22두60**	권*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5-09-22 18:24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31	54서26**	P*T*A*A*R*T	경기도 안산시	2025-09-22 12:56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2	143호46**	성*상	경기도 군포시	2025-09-17 09:3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3	212고57**	주*회*제*에*치*일*리*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9-20 11:18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34	81누45**	P*A*C*E*G*I*	경기도 평택시	2025-09-22 19:0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35	705어10**	양*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5-09-22 18:15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60,000
36	77거55**	강*희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9-22 18:38	개화동 영신PVC 상사	60,000
37	94부66**	최*현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9-18 10:43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9 (여의도동)	50,000
38	101보84**	차*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9-18 17:3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9	140하77**	(*)*출*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9-18 14:06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40	181하43**	김*윤	부산광역시 사하구	2025-09-20 11:2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41	49두56**	정*하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22 07:55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42	193허42**	주*회*드*곤*스	경기도 시흥시	2025-09-15 17:56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43	05하34**	(*)*영*엔*	경기도 화성시	2025-09-17 01:23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44	152호34**	(*)*스*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8-26 18:05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45	212고57**	주*회*제*에*치*일*리*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9-20 11:17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46	19노13**	Z*A*G*H*N*L*N	경기도 안산시	2025-08-08 17:25	잠원IC~반포역	50,000
47	서울32사59**	김*복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8-08 17:25	잠원IC~반포역	50,000
48	37누75**	안*석	경기도 안양시	2025-09-22 14:43	신용산역~ 삼각지역	50,000
49	213우62**	이*미	인천광역시 서구	2025-08-25 13:57	연희IC~모래내고가	50,000
50	342구94**	최*현	대전광역시 대덕구	2025-09-22 13:1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51	206하72**	집*치*사*들*박*진*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5-09-19 17:19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52	19도54**	조*아	서울특별시 중구	2025-09-22 20:03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53	836로19**	박*훈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09-22 08:0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54	50모42**	최*혜	경기도 남양주시	2025-09-23 20:30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55	49무11**	이*희	경기도 평택시	2025-09-15 18:06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813	50,000
56	85고06**	주*회*위*랜*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09-18 11:43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6 (여의도동)	50,000
57	197호67**	권*희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9-19 16:48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58	55루13**	안*성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9-22 19:52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59	서울32사47**	곽*수	경기도 남양주시	2025-09-22 07:42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60	294수56**	김*란	경기도 남양주시	2025-09-22 09:0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61	353노42**	안*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9-17 13:38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 (여의도동, 대교아파트)	50,000
62	65보61**	주*회*디*와*네*워*	경기도 남양주시	2025-09-23 09:49	고촌IC~개화교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63	17우73**	윤*자	경기도 화성시	2025-09-23 09:2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64	278나28**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14 13:34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18 (신사동)	50,000
65	360누82**	(*)*이*슈*코*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5-09-23 08:5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66	154호88**	모*렌*카*식*사	경기도 동두천시	2025-09-23 17:54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67	135버78**	박*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9-23 17:11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68	151어39**	하*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23 17:17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69	175호76**	푸*솔*광*주*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09-23 21:39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70	321도79**	김*심	경기도 고양시	2025-09-19 12:31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71	231허37**	우*개*(*)	충청북도 청주시	2025-09-20 12:47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72	346두37**	주*회*영*리*레*즈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9-23 08:16	대치역~학여울역교차로	50,000
73	138우37**	김*욱	충청남도 천안시	2025-08-08 13:50	반포IC~서초IC	50,000
74	서울82배14**	조*현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9-22 09:01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75	321도79**	김*심	경기도 고양시	2025-09-19 12:3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76	68누10**	윤*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22 11:4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77	32로20**	A*D*L*A*V*Z*Z*E*I*R*I*U*L*	경기도 안성시	2025-09-22 15:14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78	381러12**	장*경	경기도 광주시	2025-09-23 07:4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79	서울중차91**	방*남	서울특별시 중구	2025-09-03 16:04	종로4가교차로~청계4가교차로	40,000
80	02무11**	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18 14:15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10 (신사동)	50,000
81	경기35바26**	주*회*선*운*	경기도 안양시	2025-09-07 13:04	석수역1번출구~기아대교앞교차로	50,000
82	191나95**	주*회*피*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9-16 14:27	한양아파트앞사거리~성수대교남단교차로	50,000
83	103마57**	윤*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22 08:54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84	139가51**	이*빈	충청북도 청주시	2025-09-22 14:4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85	141로36**	박*숙	전라남도 강진군	2025-09-22 07:3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86	48서04**	주*회*자*에*앤*	대구광역시 동구	2025-09-22 19:4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87	101도15**	김*훈	경기도 고양시	2025-09-11 12:10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88	55저11**	이*옥	경기도 고양시	2025-09-22 17:20	개회동 영신PVC 상사	50,000
89	50나18**	한*훈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9-22 18:06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90	801머88**	신*범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9-22 14:38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91	325고63**	주*회*누*종*기*	경기도 가평군	2025-09-03 16:23	성수대교남단교차로~압구정역교차로	50,000
92	148어65**	송*희	인천광역시 서구	2025-09-04 07:22	등촌역~염창역	50,000
93	서울31사26**	고*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9-04 19:30	중앙대입구교차로~한남대교남단교차로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94	서울32사46**	최*대	경기도 양평군	2025-09-05 17:10	압구정역교차로~성수대교남단교차로	50,000
95	88러72**	김*정	경기도 광주시	2025-09-23 08:0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96	05하30**	비*그*고*움*정*합*사*소*전*문*	경기도 수원시	2025-09-17 20:0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97	159호48**	강*정	서울특별시 중구	2025-09-20 11:28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98	800주79**	박*혁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9-22 09:01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99	40마94**	J*N*A*H*A	인천광역시 강화군	2025-09-22 11:3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00	18소41**	노*용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9-22 11:5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01	50저70**	유*하	서울특별시 중구	2025-09-22 12:1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02	04머47**	정*숙	경기도 광명시	2025-09-22 12:5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03	11저53**	김*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9-22 14:5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04	서울32자21**	서*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09-22 08:2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05	37어66**	윤*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9-22 19:2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106	경기34바14**	범*상*(*)	경기도 의정부시	2025-09-22 09:16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107	151우20**	임*철	경기도 포천시	2025-09-22 19:1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08	229하76**	(*)*로*프*비	대전광역시 서구	2025-08-28 19:5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09	212고57**	주*회*제*에*지*일*리*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9-20 11:1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10	17부49**	박*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9-22 18:0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11	서울32사64**	김*회	경기도 의정부시	2025-09-22 18:26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112	179허68**	김*성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5-09-15 15:09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13	338두86**	Q*A*X*N*H*N*	경기도 부천시	2025-09-22 09:4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14	87소56**	노*은	인천광역시 서구	2025-09-23 17:08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38 (신사동)	50,000
115	210너46**	조*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23 19:2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16	서울91자41**	이*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09-23 08:1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17	328서74**	김*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9-23 07:5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118	162두64**	허*임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9-23 20:05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119	86라05**	김*임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9-23 08:44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120	197도57**	유*열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9-23 08:2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21	67루68**	백*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09-23 08:04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122	349가57**	정*나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9-23 19:2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123	서울31사13**	공*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09-04 23:32	천호대교	50,000
124	49무65**	심*욱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9-23 18:32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25	81보71**	주*희*알*라*아*레*딩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5-09-23 14:46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126	187수74**	박*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9-23 13:33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127	247거88**	오*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9-23 09:41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128	370다81**	김*숙	경기도 용인시	2025-09-23 18:24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129	69저07**	김*숙	경기도 오산시	2025-09-22 17:11	서울현대병원앞	50,000
130	46라13**	구*희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9-22 18:4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31	160거24**	주*희*현*피*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23 13:58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32	11오93**	주*숙	경기도 화성시	2025-09-23 17:5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33	58마77**	김*은	경기도 성남시	2025-09-23 08:05	강남소방서앞	50,000
134	서울31아21**	김*근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5-09-22 07:42	국립현충원교차로~흑석역	50,000
135	서울32아21**	김*만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22 15:26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36	120가98**	정*건*	경기도 평택시	2025-09-16 09:59	청계산입구삼거리~염곡사거리	50,000
137	서울32사52**	박*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9-22 14:14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38	17모54**	염*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9-22 18:2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39	49누19**	박*식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9-22 19:5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40	362소73**	이*태	대구광역시 수성구	2025-09-22 20:4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41	358라93**	황*욱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9-23 09:05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142	88나79**	서*호	경기도 남양주시	2025-09-23 08:33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143	116허62**	김*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9-09 07:50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144	170너61**	H*L*M*V*A*I*J*N*A*I*J*N*G*I	광주광역시 북구	2025-09-22 17:42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45	322저92**	서*희	경기도 군포시	2025-09-22 20:2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46	90부84**	오*교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9-18 10:04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6 (여의도동)	50,000
147	119고57**	한*수	경기도 부천시	2025-09-23 15:00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48	서울31아23**	이*남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9-23 18:30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149	135다10**	권*숙	대전광역시 중구	2025-09-23 19:09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150	90고27**	김*빈	경상남도 통영시	2025-09-23 17:46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151	366조67**	조*용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5-09-11 08:3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52	117마10**	서*리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9-19 12:38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53	321도79**	김*심	경기도 고양시	2025-09-19 12:29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54	135가41**	전*영	경기도 평택시	2025-09-22 10:30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55	105루17**	임*욱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23 19:1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56	95버74**	주*회*대*골*	경기도 구리시	2025-09-23 08:2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57	257고63**	남*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5-09-23 08:4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58	195하65**	주*회*다*산*(*창*)	충청남도 보령시	2025-09-16 17:11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59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22 11:33	양재동 양재IC 하행	60,000
160	서울32아10**	정*화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9-22 09:1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61	17누70**	김*배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5-09-22 09:2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62	서울88바36**	김*희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5-09-22 09:2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63	199하10**	남*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9-12 17:26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164	236구62**	하*엘*주*	경기도 화성시	2025-09-22 07:15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165	46머87**	조*연	경기도 김포시	2025-09-22 15:4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66	서울32자61**	반*덕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9-24 07:31	영등포역교차로~영등포로터리	50,000
167	287두86**	박*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14 19:37	용산역앞교차로~한강대교북단교차로	50,000
168	36루52**	유*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9-24 08:49	종합운동장교차로~종합운동장역8번출구	50,000
169	서울31아68**	한*희	경기도 광주시	2025-09-24 08:49	종합운동장교차로~종합운동장역8번출구	50,000
170	803가77**	(*)*이*디*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9-23 09:13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171	320더39**	박*은	경기도 김포시	2025-09-23 18:05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72	42수23**	이*민	경기도 고양시	2025-09-12 07:05	김포공항교차로~김포공항입구교차로	50,000
173	56가46**	김*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22 17:1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74	69머80**	안*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22 07:4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75	125호82**	(*)*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5-09-22 19:3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176	서울31사34**	장*식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9-19 09:14	개화 사거리~김포공항 교차로	50,000
177	161하96**	타*주*회*	경기도 연천군	2025-09-20 15:33	장한평역 교차로 ~ 군자교	50,000
178	156오14**	(*)*에*치*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9-17 15:08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9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50,000
179	197하91**	(*)*우*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9-05 18:00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80	182오79**	K*M*E*N*M*N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9-23 14:1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81	165호33**	로*스*피*파*너*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16 09:15	고속터미널역~고속터미널교차로	50,000
182	172허25**	A*L*R*S*T*R*M*R*J*	경기도 화성시	2025-09-17 07:09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183	38소53**	김*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09-22 19:5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84	서울31자31**	서*안	경기도 광주시	2025-09-22 17:5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185	007나71**	대*건*장*	경기도 파주시	2025-09-22 07:40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60,000
186	61두91**	주*탁	경기도 성남시	2025-09-23 20:3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87	014나94**	오*카*너*솔*션*식*사	경기도 광주시	2025-09-23 09:1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60,000
188	61두91**	주*탁	경기도 성남시	2025-09-23 20:3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89	서울31자50**	김*환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9-23 09:1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90	231허37**	우*개*(*)	충청북도 청주시	2025-09-15 18:36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91	116하25**	강*호	경기도 남양주시	2025-09-15 20:1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92	143도57**	양*천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23 10:5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93	158머25**	박*영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5-09-23 11:1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94	339구86**	함*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9-23 11:0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95	04로21**	K*M*U*Y*N	경기도 용인시	2025-09-23 12:58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96	329두94**	이*현	경기도 의정부시	2025-09-22 07:1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97	183부27**	정*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09-23 09:0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98	서울31사78**	이*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9-23 20:0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99	65하37**	변*선	광주광역시 광산구	2025-09-09 15: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	50,000
200	26허99**	주*회*하*카*상	충청남도 천안시	2025-09-22 17:5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01	69라18**	H*N*U*L*N*	경기도 시흥시	2025-09-22 10:37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02	서울36바22**	최*기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9-23 20:34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203	145버38**	주*회*유*온*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5-09-23 13:5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04	88조61**	에*스*설*전*주*	경기도 오산시	2025-09-23 12:40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05	81보71**	주*회*알*라*아*레*딩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5-09-23 14:44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06	04로21**	K*M*U*Y*N	경기도 용인시	2025-09-23 12:56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07	81보71**	주*회*알*라*아*레*딩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5-09-23 14:4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08	145버38**	주*회*유*온*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5-09-23 20:0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09	378거39**	이*종	충청북도 음성군	2025-09-02 10:35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10	116허62**	김*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9-09 07:4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11	245버36**	(*)*코*	경기도 의정부시	2025-08-26 18:42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212	29호62**	정*철	경기도 고양시	2025-09-05 07:20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13	109허72**	황*환	경기도 김포시	2025-08-26 10:29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50,000
214	116허62**	김*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9-09 07:48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15	191하86**	한*엔*니*링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9-09 18:3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16	169하97**	(*)*비*	경기도 고양시	2025-09-10 08:17	엘스아파트앞	50,000
217	326구78**	류*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9-09 16:00	사당역~이수역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18	802누66**	주*회*피*앰*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05 18:2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19	176호32**	(*)*웅*너*	경기도 고양시	2025-09-12 16:46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220	171하52**	빅*데*터*식*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11 18:1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21	133하59**	정*성	경기도 성남시	2025-09-08 17:5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22	162두56**	김*복	경기도 의정부시	2025-09-12 18:13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23	34더37**	(*)*이*컴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9-09 09:26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224	143호22**	(*)*이*빌*스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8-28 08:01	개화교	50,000
225	156하44**	설*애*식*사	경기도 광주시	2025-09-12 16:4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26	299수72**	정*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8-25 11:41	삼성교~강남경찰서교차로	50,000
227	360무94**	아*에*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12 20:17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28	126호35**	(*)*리	충청남도 아산시	2025-08-28 14:45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229	200나79**	(*)*안*이*알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06 18:39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230	인천30바86**	임*재	인천광역시 서구	2025-09-24 13:30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31	152서49**	강*자	전라남도 여수시	2025-09-24 13:49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32	399모43**	이*석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9-26 10:1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33	57오53**	주*회*해*	경기도 파주시	2025-09-26 17:29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34	139저62**	이*화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26 19:2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35	25구88**	손*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9-26 14:42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36	서울32아31**	홍*화	경기도 김포시	2025-09-20 15:11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9-2 (여의도동)	50,000
237	12노71**	김*영	경기도 남양주시	2025-09-26 12:26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38	113서10**	문*심	경기도 광주시	2025-08-08 09:43	헌인릉입구교차로~서울시어린이병원	50,000
239	123루91**	김*희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5-09-24 07:55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240	서울강남너03**	K*A*I*J*N*V*H*B*B*L*O*A*U*B*K*G*I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23 18:36	학여울역교차로~대치역	40,000
241	157러70**	주*헌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9-25 08:23	헌인릉입구교차로~서울시어린이병원	50,000
242	397구94**	(*)*튜*코*아	경기도 고양시	2025-09-25 08:15	개화역~개화사거리	50,000
243	경기74아94**	(*)*주*수*객	경기도 남양주시	2025-09-26 11:21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60,000
244	서울31사95**	김*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9-25 19:23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245	32버33**	정*숙	경기도 김포시	2025-09-26 17:22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46	376머88**	이*창	대구광역시 북구	2025-09-26 16:4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47	16누46**	김*배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09-24 17:10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248	32오21**	김*희	경기도 고양시	2025-09-28 07:55	진관동 구파발역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49	30두98**	D*T*I*H*Y	경기도 이천시	2025-09-25 15:51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250	62주15**	유*준	경상남도 거창군	2025-09-28 10:47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251	87다70**	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9-25 09:2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52	서울31사30**	서*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9-26 19:58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253	53부84**	S*K*D*E*K*U*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9-27 11:1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254	35수29**	주*회*엠*이*리*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9-26 07:28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255	32수64**	H*N*U*M*N	충청남도 아산시	2025-09-27 11:48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256	92너31**	김*성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25-09-25 17:23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257	12라69**	주*회*큐*핏	경기도 용인시	2025-09-26 16:33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58	360오70**	김*영	경기도 하남시	2025-09-25 19:1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59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25 11:53	양재동 양재IC 하행	60,000
260	03어26**	김*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25-09-24 17:3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61	01도62**	알*벳*트*션*식*사	대전광역시 서구	2025-09-26 11:30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262	83거02**	마*형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9-27 16:33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63	60머76**	K*A*M*H*M*A*U*A*R	경기도 화성시	2025-09-28 01:02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264	117라71**	전*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9-24 18:5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65	374보60**	기*윤	경기도 광명시	2025-09-24 09:1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66	16머19**	윤*성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9-24 23:3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267	177가25**	차*진	경기도 김포시	2025-09-25 14:5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68	경기91아25**	이*희	경기도 동두천시	2025-09-24 09:2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269	24보26**	허*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9-25 20:07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270	16노73**	김*철	충청북도 제천시	2025-09-24 20:45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71	13고87**	문*진	충청남도 태안군	2025-09-25 07:20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72	47라34**	주*회*도*인*네*널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9-26 19:4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73	43저88**	주*회*에*제*컴*니	경기도 광명시	2025-09-26 13:41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74	02오02**	김*욱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9-24 19:44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275	01구21**	송*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5-09-25 08:2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76	서울83자37**	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9-25 16:5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77	61루84**	사*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26 16:50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34 (신사동)	50,000
278	27머08**	최*정	경기도 고양시	2025-09-24 19:21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79	175호12**	푸*솔*광*주*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09-25 17:1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80	153하96**	(*)*일*트*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09-27 19:20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81	서울31바93**	허*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9-28 13:22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282	46더07**	강*욱	경기도 화성시	2025-09-28 08:53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83	32너83**	주*호*베*데*레	경기도 의정부시	2025-09-24 14:4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84	152서49**	강*자	전라남도 여수시	2025-09-24 13:50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85	인천83사91**	이*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5-09-24 15:0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86	57오53**	주*회*해*	경기도 파주시	2025-09-26 17:30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287	96두29**	한*우	경기도 의정부시	2025-09-26 07:19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288	366더96**	임*석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5-09-26 20:0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289	309루74**	강*호	경기도 성남시	2025-09-26 17:5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90	197다17**	주*회*심*교*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9-26 09:5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91	48라03**	장*석	경기도 성남시	2025-09-27 17:24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92	서울91자23**	최*섭	경기도 광주시	2025-09-24 09:4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93	15모56**	노*나	경기도 의정부시	2025-09-26 17:53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94	254우55**	E*E*I*G*Y*E*E*T*P*A*	경기도 평택시	2025-09-26 17:5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95	서울83자45**	최*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9-25 07:4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96	81부51**	(*)*이*더*유*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26 08:43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97	34서42**	고*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9-26 16:29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98	116라55**	오*광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9-25 18:19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99	251노34**	주*회*아*돔	경기도 하남시	2025-09-26 08:1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00	20나50**	김*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09-25 08:16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301	280소32**	신*영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9-26 20:3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02	40노34**	장*순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9-24 10:38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303	302러68**	이*백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9-17 09:24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304	167서27**	엄*철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09-26 17:54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05	394마81**	전*경	경기도 김포시	2025-09-26 15:1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06	96마84**	주*회*다*산*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26 08:1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07	358오86**	박*모	경기도 광주시	2025-09-24 17:1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08	28오37**	박*용	경기도 용인시	2025-09-27 13:10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309	서울32아32**	사*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24 20:4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10	43주21**	P*A*H*Y*U*E*	전라남도 순천시	2025-09-25 08:26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311	21어42**	김*섭	경기도 남양주시	2025-09-25 20:43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12	05주63**	조*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9-25 17:07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313	81조49**	정*옥	경기도 안성시	2025-09-25 07:19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14	213도39**	이*진	경기도 시흥시	2025-09-27 13:53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외방향)	50,000
315	845조75**	심*옥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9-25 09:12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316	12노71**	김*영	경기도 남양주시	2025-09-26 12:27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317	서울31사60**	오*수	경기도 부천시	2025-09-26 19:59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18	254우55**	E*E*I*G*Y*E*E*T*P*A*	경기도 평택시	2025-09-26 17:58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319	89고12**	조*상	충청남도 부여군	2025-09-25 08:27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320	20어92**	이*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9-24 19:39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321	31모33**	황*국	경기도 고양시	2025-09-26 16:5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322	103마33**	강*희	경기도 성남시	2025-09-24 11:16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23	93수65**	염*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5-09-26 17:20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324	01두06**	박*국	경기도 수원시	2025-09-28 17:44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325	265루66**	M*V*O*O*M*K*U*H*S*N*G*I	경기도 성남시	2025-09-28 16:12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326	100조67**	전*완	인천광역시 서구	2025-09-24 07:45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27	153하96**	(*)*일*트*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09-27 19:18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28	35루43**	(*)*앤*투*연*소*B*D*0*,*I*.*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9-24 16:3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29	59거35**	정*욱	경기도 남양주시	2025-09-25 14:47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330	62오48**	이*은	경기도 파주시	2025-09-27 11:09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31	30버41**	성*경	경기도 광주시	2025-09-24 12:07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332	246보13**	이*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5-09-26 08:55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333	06오39**	T*A*H*N*O*N*	충청남도 천안시	2025-09-27 17:31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334	12로72**	김*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5-09-25 10:0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35	경기92배27**	한*아	경기도 광주시	2025-09-24 17:3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36	62오48**	이*은	경기도 파주시	2025-09-27 11:1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337	107부42**	김*	서울특별시 중구	2025-09-24 19:48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338	25소37**	강*순	경상남도 창원시	2025-09-24 12:0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39	01무87**	블*펄*라*빗*궤*유*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5-09-22 08:4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10	50,000
340	240머41**	한*수	경기도 성남시	2025-09-24 19:1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341	서울32사20**	백*석	경기도 구리시	2025-09-24 08:43	성내교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42	06서16**	강*연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9-25 19:13	태릉~화랑대사거리	50,000
343	서울32바33**	홍*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09-24 19:4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44	815로77**	정*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09-25 09:2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45	39수19**	윤*식	경기도 하남시	2025-09-22 14:40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9-2 (여의도동)	50,000
346	391수23**	이*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9-27 07:43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347	114노93**	주*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9-25 16:41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348	83노06**	심*환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9-26 18:10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349	60부04**	김*근	인천광역시 서구	2025-09-26 18:49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50	56조30**	이*규	경상남도 창원시	2025-09-26 17:17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51	38모30**	이*훈	경기도 용인시	2025-09-26 18:2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52	11라70**	문*균	경기도 성남시	2025-09-25 11:06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353	38다62**	주*회*비*오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5-09-21 13:01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354	경기88바98**	최*남	경기도 남양주시	2025-09-18 08:51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355	95서08**	주*회*대*리*르*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9-20 09:49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50,000
356	25고61**	주*회*미*이*지	경기도 평택시	2025-09-25 09:4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357	209가82**	김*화	경기도 김포시	2025-09-26 09:3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58	37도16**	주*회*알*비*씨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9-16 13:10	여의도동 여의도 하이투자증권	50,000
359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27 11:47	양재동 양재IC 하행	60,000
360	152서49**	강*자	전라남도 여수시	2025-09-24 13:48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61	서울38아39**	이*옥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5-09-24 07:34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362	03버19**	김*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25 08:11	대치역~학여울역	50,000
363	33다26**	이*목	경기도 군포시	2025-09-26 07:47	국립현충원~흑석역	50,000
364	90저40**	김*준	인천광역시 서구	2025-09-05 13:38	답십리역~장한평역	50,000
365	43버13**	대*리*서*주*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9-24 17:51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366	93주78**	대*건*주*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9-25 07:29	몽촌토성역~송파구청교차로	50,000
367	269로26**	주*회*제*엔*	경기도 고양시	2025-09-19 15:02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21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50,000
368	35루08**	정*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25 09:0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69	67부22**	윤*훈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5-09-23 09:43	은천삼거리~봉천로사거리	50,000
370	61하83**	프*렌*카*주*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9-21 09:34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50,000
371	824러10**	주*회*케*와*씨	경기도 파주시	2025-09-18 11:18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372	55노47**	H*G*S*I*O*H*D*U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5-09-28 10:02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73	226너76**	김*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25 09:1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74	111너93**	정*영	경기도 하남시	2025-09-25 09:1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75	257버93**	윤*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27 12:01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76	287더88**	최*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9-27 10:53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77	166무31**	유*회*비*라*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9-15 07:59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378	87다34**	주*회*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9-26 18:58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379	서울84사23**	심*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9-26 17:29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380	01나70**	윤*용	경기도 남양주시	2025-09-26 09:45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381	843저91**	주*회*태*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9-26 10:1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82	163도89**	엄*출	경상북도 포항시	2025-09-24 17:1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83	서울31바36**	박*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9-25 09:1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84	204나14**	L*E*U*G*U*	경기도 평택시	2025-09-25 15:4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85	155라94**	주*회*대*스*	충청북도 청주시	2025-09-26 10:42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86	155라94**	주*회*대*스*	충청북도 청주시	2025-09-26 10:43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387	330주74**	최*택	충청북도 청주시	2025-09-25 12:0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88	47라70**	(*)*합*축*사*소*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24 17:10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389	137거97**	강*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9-24 19:54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390	88조51**	심*선	경기도 남양주시	2025-09-18 09:45	삼육에코팜센터~육사야구장	50,000
391	324더39**	인*환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5-09-20 15:33	사당역~이수역	50,000
392	47소14**	A*S*R*E*	경상북도 경주시	2025-09-19 15:54	한남ic~신동초교교차로	50,000
393	서울32사70**	전*권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9-22 07:33	삼성교~강남경찰서교차로	50,000
394	69어05**	심*경	경기도 남양주시	2025-09-22 07:34	삼성교~강남경찰서교차로	50,000
395	52나02**	Q*X*A*Y*	경기도 부천시	2025-09-21 18:28	반포역~고속터미널역	50,000
396	241서50**	(*)*스*스*	경기도 용인시	2025-09-22 08:43	복정역~장지역	50,000
397	223부75**	강*식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9-11 07:48	서울대입구역~낙성대역	50,000
398	서울성북차07**	조*훈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9-23 11:08	종로4가교차로~청계4가교차로	40,000
399	37무05**	류*희	경기도 남양주시	2025-09-24 09:4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00	서울31아70**	한*천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9-18 15: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50,000
401	31모54**	김*순	경기도 의정부시	2025-09-24 19:0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402	40머34**	김*민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9-26 17:30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403	153주76**	K*M*L*V*U*I*A	광주광역시 광산구	2025-09-27 15:42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404	135도97**	강*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9-25 11:14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405	163조93**	오*훈	경기도 남양주시	2025-09-23 07:39	국립현충원교차로~흑석역	50,000
406	22저90**	(*)*이*컴*터*육*컴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9-24 17:14	종합운동장교차로~잠실새내역	50,000
407	서울38아25**	권*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9-24 17:02	삼성교~강남경찰서교차로	50,000
408	302너76**	(*)*흠	경기도 고양시	2025-09-24 18:39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409	67저07**	김*란	경기도 남양주시	2025-09-24 18:52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410	18누14**	우*기	경기도 양주시	2025-09-24 19:12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411	146라13**	주*회*더*우*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5-09-25 17:33	천호대교~광장사거리	50,000
412	서울32사91**	김*화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9-26 07:27	올림픽공원교차로~송파구청교차로	50,000
413	58거43**	박*선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24 08:06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14	15모93**	유*자	경기도 하남시	2025-09-24 14:36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415	서울32자56**	김*만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9-25 08:24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416	254우55**	E*E*I*G*Y*E*E*T*P*A*	경기도 평택시	2025-09-26 17:57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417	45마92**	김*현	경기도 평택시	2025-09-25 18:12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418	22고06**	이*아	경기도 양주시	2025-09-24 07:3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419	175가18**	이*형	경기도 의정부시	2025-09-24 13:4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20	서울32자49**	신*수	경기도 의정부시	2025-09-26 18:04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421	15도02**	전*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9-24 17:55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422	50러26**	윤*태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9-26 20:01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423	14도63**	배*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27 12:5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424	153주76**	K*M*L*V*U*I*A	광주광역시 광산구	2025-09-27 15:41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425	124하93**	주*회*전*렌*카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9-26 19:5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426	91모68**	양*석	경기도 포천시	2025-09-26 20:07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427	134구31**	부*에*지*동*합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5-09-24 17:30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428	서울85자56**	오*옥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9-25 10:52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429	391수23**	이*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9-27 07:42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430	97라56**	이*철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9-24 09:38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431	서울31자60**	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9-25 17:43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432	서울89자30**	이*영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5-09-20 09:03	영등포구 신송빌딩 앞	50,000
433	808고70**	김*선	경기도 부천시	2025-09-26 15:00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434	36루09**	방*나	경기도 수원시	2025-09-27 18:04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35	서울36바22**	이*영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9-25 06:55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436	152거66**	안*채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5-09-26 17:38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437	257버93**	윤*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27 12:03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38	53마07**	임*운	경기도 이천시	2025-09-24 20:1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439	369우84**	(*)*진*	경기도 고양시	2025-09-24 20:4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440	36루58**	(*)*레*트*직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25 20:0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41	229로75**	조*희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9-24 09:41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442	54다53**	김*희	경기도 남양주시	2025-09-24 08:29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443	07누89**	(*)*아*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2025-09-25 18:52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444	66루83**	이*모	경기도 부천시	2025-09-24 16:1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45	60보86**	김*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9-24 07:1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46	139누59**	조*득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24 14:56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447	83거02**	마*형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9-27 16:32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448	06오39**	T*A*H*N*O*N*	충청남도 천안시	2025-09-27 17:3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449	100머48**	임*훈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8-26 09:00	성내교	50,000
450	184너62**	주*회*큐*재*력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5-09-24 18:04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451	235너78**	유*석	경기도 가평군	2025-09-24 18:23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452	서울36거39**	유*상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9-25 08:34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453	45조93**	신*단	경기도 안산시	2025-09-24 17:2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54	15서23**	강*메*칼*터*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9-25 18:1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55	서울82배22**	황*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9-26 17:5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56	66루77**	이*주	광주광역시 서구	2025-09-26 08:58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457	09라97**	(*)*연*속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9-26 17:53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458	175허72**	푸*솔*광*주*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09-28 19:19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459	51모45**	최*숙	경기도 파주시	2025-09-25 17:2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460	153하96**	(*)*일*트*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09-27 19:21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61	03누75**	최*진	경기도 파주시	2025-09-24 19:0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462	89누86**	김*늘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9-25 09:2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463	41고48**	박*욱	경기도 시흥시	2025-09-16 15:47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464	59소53**	(*)*복*씨*오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24 09:0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465	15거72**	한*광	충청남도 서산시	2025-09-17 13:53	영등포구 롯데캐슬엠파이어 앞	50,000
466	174주33**	임*빈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9-25 20:4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467	88모85**	윤*권	경기도 용인시	2025-09-24 09:4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468	09누02**	김*순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9-26 19:24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469	353오46**	윤*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9-24 10:45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470	서울86자44**	조*덕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9-24 16:1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71	84머04**	이*수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5-09-16 09:24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50,000
472	31거06**	김*동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9-24 19:0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473	29어09**	강*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9-25 10:29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50,000
474	45나55**	(*)*식*통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9-24 08:2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75	37수90**	박*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9-25 09:3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76	107보47**	이*철	경기도 하남시	2025-09-22 09:33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34 (신사동)	50,000
477	164더97**	L*G*Y*I*A*D*V*L*A*V*A	경기도 평택시	2025-09-28 11:05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478	88머93**	손*영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09-26 12:2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79	342구62**	하*신	경기도 광주시	2025-09-18 10:05	여의도동 여의도 하이투자증권	50,000
480	22머93**	이*준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9-26 18:01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481	86오06**	이*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9-24 17:1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482	91소72**	최*선	경기도 남양주시	2025-09-25 09:41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483	서울85자56**	오*옥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9-25 10:53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484	29버69**	A*D*R*K*M*N*V*A*A*	경기도 안산시	2025-09-28 13:4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85	서울31아12**	정*태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9-26 11:5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86	357누17**	김*준	경기도 구리시	2025-09-24 17:25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487	207가51**	주*회*레*푸*트*이*	경기도 김포시	2025-09-24 08:49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488	838모23**	주*회*원*전*	경기도 광주시	2025-09-26 17:46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489	서울38아84**	고*진	경기도 용인시	2025-09-24 20:2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과태료 부과처분 관련 의견제출서 제출 안내

- 귀하의 차량이 전용차로 통행 위반으로 단속되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의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임을 통지하며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요의견제출 대상(**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준거**)

구 분	증 빙 서 류
범죄의 예방 ·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기관장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공사계약서, 기관장 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병명이 기재된 응급환자 진료확인서(의료기관 발행)
화재 · 수해 ·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기관장확인서(해당 기관 공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 · 하차를 돕는 경우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 가능한 증빙서류

- 의견제출서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의견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을 심의하여 결과를 별도 통보하여드립니다.
- 의견제출서는 앞면의 우편물 발송기관 주소 또는 팩스로 발송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팩스 제출 시 수신여부 확인)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https://cartax.seoul.go.kr)를 통해서 방문 없이 의견제출서를 바로 작성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의견제출 항목은 증빙서류의 적정여부 및 관련 법에 의한 운전자 의무(조치)사항 이행여부도 심의대상이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3급), 미성년자는 의견 제출기한 내에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과태료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 감경대상인 경우,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과태료 감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견제출서 작성 서식(예시)

의 견 제 출 서

차 량 번 호	위 반 일 시	위 반 장 소
○○가○○○○	○○○○년 ○○월 ○○일 ○○시 ○○분	○○로 ○○길 ○○주변 ○○○○앞

- 제출의견 기재 : (단속된 사안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 제출자 성명 : ○○○ - 제출자 주소 : ○○시 ○○구 ○○로 ○○, **상세주소 입력** - 제출자 전화번호 :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납부 안내

-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면 앞면에 기재된 입금계좌 또는 은행 창구·ATM기, 이택스(https://etax.seoul.go.kr)에서 의견 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해당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기한 경과시 첫달에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1개월마다 1.2% 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가산된 과태료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차 종	이 륜 자 동 차	승 용 자 동 차	승 합 자 동 차
과태료	40,000원	50,000원	60,000원
체납시 최대 과태료	70,000원	87,500원	105,000원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임대자동차 운행자정보 제출 안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임대한 자동차의 운행자 정보를 과태료 부과기관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문서24(https://docu.gdoc.go.kr)를 통해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차량임대계약서 사본, 기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면허증 사본 등)
- 의견진술 기한까지 자동차 운행자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119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고지분 중 미납된 과태료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 및 최고)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0조(독촉장) 규정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 이사, 주소불명,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161조, 및 시행령 제88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폐*와* 등 616명
4. 공고기간 : 2025. 11. 06. ~ 2025. 11. 30.
-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 교통지도단속반 과태료과징팀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농협, 전국 우체국 및 전국 편의점(세븐일레븐, GS25, CU, 바이더웨이), 무인 수납기(은행 및 각 구청) 등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롯데, 외환) 납부는 편의점 및 무인 수납기에서만 가능합니다.

5. 압류예고 안내
과태료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및 국세징수법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납부의무자)의 재산(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을 압류 합니다.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단속자료 확인 : 서울특별시 교통위반단속조회
(http://cartax.seoul.go.kr)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 과태료과징팀(☎ 02-2133-4570~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	40부25**	(*)*페*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4-10 17:2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2,100
2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4-14 10:41	서초동 서초IC 하행	62,520
3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4-07 17:37	서초동 서초IC 상행	62,520
4	58두30**	주*회*티*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4-16 18:3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2,100
5	821로56**	주*회*위*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25-04-16 18:26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2,100
6	805노25**	주*회*농*산*유*	경기도 구리시	2025-04-22 09:30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2,100
7	20두81**	주*회*아*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4-14 17:1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2,100
8	40부25**	(*)*페*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4-10 17:23	서초동 서초IC 하행	52,100
9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4-14 10:43	양재동 양재IC 하행	62,520
10	40부25**	(*)*페*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4-10 17:27	양재동 양재IC 하행	52,100
11	194호70**	주*회*라*래*건*사*소	경기도 수원시	2025-05-23 07:15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2,100
12	24우02**	(*)*알*스*베*트*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4-22 09:50	봉천중앙시장앞	52,100
13	163보13**	공*수*대*주*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4-21 09:1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2,100
14	228주84**	주*회*엔*미*	경기도 광주시	2025-04-14 17:35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2,100
15	08마01**	(*)*엔*프*덕*(*N*P*O*U*T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4-08 08:26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여의도동)	52,100
16	08두09**	농*회*법*주*회*누*바*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5-04-08 09:4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2,100
17	08두09**	농*회*법*주*회*누*바*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5-04-11 09:4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2,100
18	152허23**	주*회*피*스*글*벌	경기도 안양시	2025-03-31 15:18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52,100
19	89저63**	(*)*린*월*	경기도 용인시	2025-04-27 19:59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2,100
20	193허61**	광*통*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4-28 07:31	몽촌토성역~잠실역	52,100
21	177하48**	(*)*트*타*즈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4-03 09:4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2,100
22	199하36**	사*법*대*아*추*골*협*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4-01 19:0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2,100
23	803로75**	주*회*피*엠*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3-31 18:1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2,100
24	198누75**	주*회*회*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3-28 16:43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여의도동)	52,100
25	006나93**	(*)*오*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5-04-01 07:51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62,52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6	91소63**	주*회*호*산*개*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4-07 07:1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2,100
27	152호42**	주*회*화*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4-04 21:52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2,100
28	143호19**	주*회*승*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4-04 15:52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2,100
29	222호12**	(*)*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4-04 08:56	개화동 영신PVC 상사	52,100
30	38두34**	D*R*E*A*D*E*M*C*A*L	경기도 평택시	2025-05-03 13:10	양재동 양재IC 하행	52,100
31	145버38**	주*회*유*온*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5-04-07 17:5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2,100
32	223호48**	주*회*코*프*지*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4-04 09:26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2,100
33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4-07 11:05	양재동 양재IC 하행	62,520
34	서울88아19**	남*상*주*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4-18 06:1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62,520
35	92버72**	(*)*치*리*	경기도 양주시	2025-05-04 13:16	서초동 서초IC 하행	52,100
36	125호26**	주*회*비*프*토*빌*티	경기도 용인시	2025-04-22 14:27	양재동 양재IC 상행	52,100
37	23부71**	씨*원*동*중*법*주*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5-14 07:39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2,100
38	92버72**	(*)*치*리*	경기도 양주시	2025-05-04 13:18	양재동 양재IC 하행	52,100
39	23부71**	씨*원*동*중*법*주*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5-12 07:36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2,100
40	서울06너52**	주*회*중*이*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05-12 08:51	개화동 영신PVC 상사	62,520
41	112누19**	페*비*골*클*주*회*	인천광역시 서구	2025-05-18 09: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12	52,100
42	291오13**	주*회*유*하*징	전라남도 광양시	2025-05-07 13:49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2,100
43	20마41**	(*)*성*업*발	경기도 안양시	2025-04-07 07:1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2,100
44	충남81바11**	충*화*자*차*주*	충청남도 공주시	2025-05-20 08:54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62,520
45	68너98**	주*회*석*	충청남도 홍성군	2025-05-19 17:45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2,100
46	839나63**	주*회*샛*농*	경기도 구리시	2025-05-20 13:08	여의대로2길, 사학연금서울센터부근	52,100
47	821두93**	(*)*눔*	경기도 시흥시	2025-04-25 09:23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2,100
48	97고15**	디*이*리*주*회*	경기도 고양시	2025-05-26 17:35	개화동 영신PVC 상사	52,100
49	274다81**	신*이*티*주*	경기도 김포시	2025-04-23 08:05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2,100
50	42도21**	랜*마*건*주*회*	경기도 성남시	2025-04-25 14:26	양재동 양재IC 하행	52,100
51	08두09**	농*회*법*주*회*누*바*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5-04-14 19:1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2,100
52	68무91**	주*회*에*지*국*발	울산광역시 남구	2025-04-11 14:38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2,100
53	156호48**	(*)*앤*홀*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3-28 08:11	대치역~도곡역	52,1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54	220호53**	(*)*디*인*루*	경기도 부천시	2025-03-26 20:0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2,100
55	07주18**	주*회*에*스*어	경기도 하남시	2025-03-25 18:50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2,100
56	985라28**	(*)*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4-28 17:1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62,520
57	서울38자64**	주*회*제*앰*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4-08 10:27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2,100
58	05서06**	주*회*에*치*모*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5-04-08 17:3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2,100
59	14주93**	(*)*니*리*이*브	경기도 안산시	2025-04-18 20:45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2,100
60	20가61**	주*회*와*즈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5-04-10 18:17	상계동 상계백병원	52,100
61	190하80**	찜*	경기도 용인시	2025-03-23 11:35	쌍문역~정의여중입구교차로	52,100
62	141무96**	(*)*이*시*	경기도 김포시	2025-03-20 09:44	신설동역~신설동역오거리	52,100
63	228주84**	주*회*엔*미*	경기도 광주시	2025-04-25 17:14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2,100
64	120오30**	주*회*씨*치*퍼*	경기도 남양주시	2025-03-25 16:11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2,100
65	45오77**	주*회*케*지	경기도 남양주시	2025-04-07 17:1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2,100
66	254조42**	청*씨*디*식*사	경기도 부천시	2025-04-04 15:45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2,100
67	42도21**	랜*마*건*주*회*	경기도 성남시	2025-04-25 14:2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2,100
68	69수58**	주*회*커*트*인	경기도 파주시	2025-04-15 18:38	양재동 양재IC 하행	52,100
69	92러03**	(*)*대	경기도 평택시	2025-04-11 23:14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2,100
70	814저61**	바*종*건*(*)	경기도 하남시	2025-04-10 07:5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2,100
71	52나06**	주*회*이*운*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25-04-14 09:21	서울여대~화랑대사거리	52,100
72	101호68**	엠*티*퍼*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4-14 08:02	내곡ic~염곡ic	52,100
73	191허96**	주*회*디*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4-12 18:15	서초동 반포IC 상행	52,100
74	221하25**	주*회*비*얼*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4-08 20:0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2,100
75	05루39**	주*회*디*인*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4-09 08:03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2,100
76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4-25 10:51	서초동 서초IC 하행	62,520
77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4-13 17:47	서초동 서초IC 상행	62,520
78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4-27 10:56	양재동 양재IC 하행	62,520
79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4-27 10:54	서초동 서초IC 하행	62,520
80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4-27 17:27	서초동 서초IC 상행	62,520
81	95수87**	주*회*옥*포*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4-23 12:06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외방향)	52,1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82	75주87**	(*)*루*렉*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4-10 13:14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62,520
83	42두97**	(*)*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4-25 19:38	상계동 상계백병원	52,100
84	56부28**	주*회*제*앤*이*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4-12 16:24	가락시장사거리~가락시장역	52,100
85	경기79사38**	하*한*속*광*주*	경기도 여주시	2025-04-27 18:12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62,520
86	32너83**	주*호*베*데*레	경기도 의정부시	2025-04-25 18:3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2,100
87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4-13 11:15	서초동 서초IC 하행	62,520
88	66허06**	사*법*한*기*개*협*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04-14 07:55	천호대교~아차산역방면	52,100
89	25오34**	주*회*태*종*건*	경기도 오산시	2025-04-13 17:02	서초동 서초IC 하행	52,100
90	25오34**	주*회*태*종*건*	경기도 오산시	2025-04-13 17:0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2,100
91	25오34**	주*회*태*종*건*	경기도 오산시	2025-04-13 17:04	양재동 양재IC 하행	52,100
92	96저09**	주*회*에*엠*설	경기도 평택시	2025-04-25 09:59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2,100
93	29호01**	(*)*야*코*아*헬*케*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4-14 08:2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2,100
94	128호42**	(*)*리*이	대구광역시 서구	2025-04-23 15:50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2,100
95	128호42**	(*)*리*이	대구광역시 서구	2025-04-23 19:2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2,100
96	125호26**	주*회*비*프*토*빌*티	경기도 용인시	2025-04-22 14:29	서초동 반포IC 상행	52,100
97	125호26**	주*회*비*프*토*빌*티	경기도 용인시	2025-04-22 14:28	서초동 서초IC 상행	52,100
98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4-17 20:24	서초동 서초IC 상행	62,520
99	25고61**	주*회*미*이*지	경기도 평택시	2025-04-11 15:47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2,100
100	69수58**	주*회*커*트*인	경기도 파주시	2025-04-15 18:37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2,100
101	203저29**	주*회*아*	경기도 용인시	2025-03-18 08:40	경부 서초IC~반포IC 상행	52,100
102	145버38**	주*회*유*온*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5-04-19 12:55	양재동 양재IC 상행	52,100
103	50거35**	세*법*온*원	경기도 의왕시	2025-04-18 21:06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2,100
104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4-19 12:06	양재동 양재IC 하행	62,520
105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4-19 12:04	서초동 서초IC 하행	62,520
106	86수57**	로*건*주*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5-04-18 18:54	수색동 경의중앙선 수색역1번출구 공영주차장	52,100
107	159저28**	(*)*스*기*	경기도 화성시	2025-04-18 14:47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2,100
108	145버38**	주*회*유*온*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5-04-19 12:56	서초동 서초IC 상행	52,1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09	360무94**	아*에*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4-02 19:07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2,100
110	96저09**	주*회*에*엠*설	경기도 평택시	2025-04-22 08:51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2,100
111	338누82**	주*회*파*스*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04-22 08:33	금천소방서~말미사거리	52,100
112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4-21 17:22	서초동 서초IC 상행	62,520
113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4-21 10:56	양재동 양재IC 하행	62,520
114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4-21 10:54	서초동 서초IC 하행	62,520
115	194하54**	(*)*운*얼*이*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4-21 14:56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2,100
116	22더23**	(*)*원*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4-09 19:12	반포3동주민센터교차로~신동초교교차로	52,100
117	64구46**	주*회*한*	경기도 의정부시	2025-04-20 10:25	양재동 양재IC 하행	52,100
118	165하24**	세*기*물*(*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4-09 20:1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2,100
119	05누20**	동*노*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4-23 09:16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2,100
120	172루27**	주*회*이*파*유*육*발*	인천광역시 중구	2025-04-12 12:00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2,100
121	19마50**	(*)*공*앤*	충청남도 천안시	2025-04-10 07:29	고척교~고척교교차로	52,100
122	174소98**	주*회*소*트*들	경기도 남양주시	2025-04-14 08:51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2,100
123	64구46**	주*회*한*	경기도 의정부시	2025-04-20 10:2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2,100
124	64구46**	주*회*한*	경기도 의정부시	2025-04-20 10:23	서초동 서초IC 하행	52,100
125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4-19 16:35	서초동 서초IC 상행	62,520
126	841누80**	오*스*레*트*이*코*아*식*사	경기도 광주시	2025-04-09 07:32	복정역~장지교 교차로	52,100
127	386거64**	(*)*니*저*	경기도 김포시	2025-03-27 18:0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2,100
128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4-17 11:25	서초동 서초IC 하행	62,520
129	65로87**	이*고*드*식*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4-17 09:54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2,100
130	228주84**	주*회*엔*미*	경기도 광주시	2025-04-17 18:06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2,100
131	22소52**	(*)*리*엔*테*먼*	경기도 용인시	2025-04-20 09:04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2,100
132	194호75**	N*R*O*V*T*B*K*	경기도 성남시	2025-03-30 20:3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2,100
133	194호75**	N*R*O*V*T*B*K*	경기도 성남시	2025-03-30 20:29	서초동 서초IC 하행	52,100
134	109호66**	김*	경기도 부천시	2025-03-25 19: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52,100
135	149허15**	N*R*O*V*T*B*K*	경기도 성남시	2025-03-26 16:59	양재동 양재IC 상행	52,1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36	76보79**	이*익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4-09 17:54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62,520
137	34나63**	유*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5-26 17:1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2,100
138	806루43**	김*범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5-26 17:4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2,100
139	100모22**	전*희	경기도 하남시	2025-05-26 17:1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2,100
140	243루76**	이*호	경기도 하남시	2025-04-22 13:1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2,100
141	20너25**	오*선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5-04-25 19:5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2,100
142	46루02**	양*혁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5-04-18 09:0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2,100
143	220하56**	최*훈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4-03 20:28	개화동 영신PVC 상사	52,100
144	16무95**	T*A*A*A*A*P*A*A*H	경기도 안산시	2025-04-12 13:4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2,100
145	69소03**	김*길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4-17 18:5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2,100
146	67가11**	황*석	경기도 안산시	2025-04-15 09:3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2,100
147	46머90**	이*민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5-07 17:32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2,100
148	경기92바90**	김*일	경기도 광주시	2025-04-24 07:11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2,100
149	55노31**	백*철	경기도 광주시	2025-04-11 08:1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2,100
150	153하51**	이*철	경기도 광주시	2025-04-10 17:5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2,100
151	49구62**	송*석	경기도 광주시	2025-04-16 07:2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2,100
152	130호66**	김*호	경기도 광주시	2025-04-01 10:03	장지동 장지역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2,100
153	47러03**	황*진	경기도 포천시	2025-04-22 11:0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2,100
154	123두47**	H*M*N*R*	경기도 안산시	2025-04-08 14:54	양재동 양재IC 상행	52,100
155	123두47**	H*M*N*R*	경기도 안산시	2025-04-08 14:56	서초동 반포IC 상행	52,100
156	123두47**	H*M*N*R*	경기도 안산시	2025-04-08 14:55	서초동 서초IC 상행	52,100
157	경기51바90**	김*남	경기도 안산시	2025-05-20 09:34	개화동 영신PVC 상사	52,100
158	289소57**	길*혁	경기도 안산시	2025-05-19 16:46	서초동 서초IC 하행	52,100
159	04부70**	김*한	경기도 안산시	2025-04-21 16:46	서초동 서초IC 하행	52,100
160	59부44**	박*훈	경기도 부천시	2025-05-07 20:4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2,100
161	177호71**	정*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4-25 17:23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2,100
162	149허54**	권*도	경기도 구리시	2025-04-17 17:46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2,1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63	190허96**	강*희	경기도 구리시	2025-04-17 09:22	개화동 영신PVC 상사	52,100
164	333루41**	문*성	인천광역시 강화군	2025-04-07 15:2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2,100
165	55보35**	김*숙	인천광역시 강화군	2025-04-11 01:29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2,100
166	58라90**	최*웅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2025-04-20 20:29	서초동 반포IC 상행	52,100
167	경기90사44**	양*민	경기도 하남시	2025-04-18 09:55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53 (영등포동3가)	52,100
168	59너36**	이*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4-08 18:26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2,100
169	156마42**	황*호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2025-04-15 19:42	개화동 영신PVC 상사	52,100
170	36주56**	김*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4-17 17:1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2,100
171	379머72**	정*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5-12 18:49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2,100
172	67조88**	박*형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4-25 16:35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26 (신사동)	52,100
173	43거29**	김*웅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4-09 19:28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2,100
174	105마97**	L*N*O*G*I*	경기도 시흥시	2025-04-10 12:0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2,100
175	서울85자68**	정*철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4-14 15:25	압구정로데오역~성수대교	52,100
176	101호26**	김*문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2025-04-01 09:1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2,100
177	800라69**	이*영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3-25 08:51	방학교~도봉보건소사거리	52,100
178	172오39**	이*흥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5-03-30 10:41	동산삼거리 ~ 구파발사거리	52,100
179	149허88**	이*오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3-26 20:37	서초동 반포IC 상행	52,100
180	140로69**	이*령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3-28 17:23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2,100
181	387도55**	김*연	경기도 용인시	2025-04-14 09:41	서초동 반포IC 상행	52,100
182	96너03**	김*애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4-14 18:1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2,100
183	280누33**	유*빈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4-12 10:33	사천교교차로~ 연희IC	52,100
184	경기87바86**	최*철	경기도 고양시	2025-04-11 18:59	개화동 영신PVC 상사	52,100
185	54나96**	김*왕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4-15 11:45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2,100
186	23더36**	이*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4-16 07:59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52,100
187	353오86**	이*형	광주광역시 북구	2025-04-01 16:11	양재동 양재IC 상행	52,100
188	827버38**	서*길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5-04-24 17:46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2,100
189	803구31**	송*근	경기도 성남시	2025-04-23 08:12	내곡IC~염곡IC	52,1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90	217수74**	한*혁	경기도 고양시	2025-04-29 08:59	동산육교~구파발사거리	52,100
191	230가91**	장*산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4-10 14:1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2,100
192	107저61**	최*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5-04-25 16:2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2,100
193	347노42**	이*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4-27 10:15	광나루역~아차산역사거리 방면	52,100
194	235두64**	송*연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4-10 18:42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2,100
195	67어22**	고*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2025-04-09 19:54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2,100
196	65로80**	손*택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4-10 16:23	염창역~등촌사거리	52,100
197	06모89**	임*규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5-04-23 20:18	개화동 영신PVC 상사	52,100
198	04호24**	진*호	경기도 의왕시	2025-03-28 05:18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2,100
199	125하17**	임*준	경기도 부천시	2025-03-31 17:5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2,100
200	24호26**	황*선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3-24 19:2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2,100
201	48누53**	박*열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5-08 08:58	상계동 상계백병원	52,100
202	04호24**	진*호	경기도 의왕시	2025-03-25 20:12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2,100
203	96다30**	도*수	경기도 고양시	2025-04-16 09:09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79	52,100
204	179호70**	방*도	경기도 안산시	2025-03-19 10:1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2,100
205	85오94**	오*숙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4-11 17:17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2,100
206	30버62**	최*실	경기도 과천시	2025-04-13 17:58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2,100
207	156호99**	심*애	경기도 성남시	2025-04-14 16:58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2,100
208	177보45**	노*욱	경기도 고양시	2025-04-15 09:14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2,100
209	38수92**	김*복	경상남도 창원시	2025-04-14 19:5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2,100
210	229호59**	유*현	경기도 하남시	2025-04-24 08:4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2,100
211	177허12**	최*정	경기도 하남시	2025-04-21 11:0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2,100
212	179하20**	서*국	경기도 부천시	2025-04-11 18:06	신사역~논현역	52,100
213	101하46**	홍*석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5-03-21 19:06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2,100
214	51러84**	고*영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5-04 10:04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1 (여의도동)	52,100
215	56고29**	장*근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5-04-17 19:24	개화동 영신PVC 상사	52,100
216	34주16**	이*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4-11 07:23	대치역~도곡역	52,1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17	14러01**	김*석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4-10 18:0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2,100
218	58노39**	성*선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4-22 17:52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2,100
219	233로18**	진*환	경상남도 거제시	2025-04-15 18:28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2,100
220	16부83**	백*진	경기도 남양주시	2025-04-09 10:40	성내교	52,100
221	194하44**	이*문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5-03-26 18:1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2,100
222	46로87**	Y*L*O*H*V*A*H*I*D*N*H*K*R*T*G*I	충청북도 청주시	2025-04-12 17:15	서초동 서초IC 상행	52,100
223	46로87**	Y*L*O*H*V*A*H*I*D*N*H*K*R*T*G*I	충청북도 청주시	2025-04-12 17:16	서초동 반포IC 상행	52,100
224	46로87**	Y*L*O*H*V*A*H*I*D*N*H*K*R*T*G*I	충청북도 청주시	2025-04-12 17:14	양재동 양재IC 상행	52,100
225	서울31사36**	안*수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5-07 20:21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52,100
226	94모19**	이*영	충청북도 청주시	2025-04-15 12:01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2,100
227	110저45**	김*겸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4-09 20:47	상계동 상계백병원	52,100
228	서울91자78**	정*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4-22 14:24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2,100
229	101호28**	정*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3-25 19:17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 (여의도동, 수정아파트)	52,100
230	81두32**	김*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4-11 20:02	개화동 영신PVC 상사	52,100
231	41저80**	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5-03 12:02	서초동 서초IC 하행	52,100
232	41저80**	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5-03 12:0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2,100
233	805오31**	황*기	경기도 남양주시	2025-04-11 09:1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2,100
234	127보85**	피*숙	경기도 남양주시	2025-04-09 20:33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2,100
235	27도29**	공*남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4-07 07:48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2,100
236	서울32아13**	김*년	경기도 남양주시	2025-04-08 17:3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2,100
237	58너88**	유*호	경기도 남양주시	2025-04-16 12:16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2,100
238	서울91자12**	고*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5-04-22 08:13	반포역~고속터미널교차로	52,100
239	167허55**	이*임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5-03-28 17:19	성수대교남단교차로~압구정역	52,100
240	서울85자84**	박*금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5-04-20 20:20	번동 혜모로 아파트 건너편	52,100
241	100러60**	윤*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5-14 07:55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2,1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42	92로97**	신*균	경기도 남양주시	2025-05-14 07:4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2,100
243	233어71**	김*희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5-07 15:45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2,100
244	241거50**	유*석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5-06 16:49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2,100
245	246다83**	김*리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5-14 17:1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2,100
246	198머73**	변*원	경기도 파주시	2025-04-14 19:01	양재동 양재IC 상행	52,100
247	82로59**	선*옥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4-21 07:3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2,100
248	서울서대문자78**	이*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04-23 17:44	종로5가역~흥인지문교차로	41,680
249	159다33**	박*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4-14 08:00	금천소방서~말미사거리	52,100
250	85우60**	주*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4-16 17:50	구로교~대림사거리	52,100
251	190호47**	황*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04-03 10:36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2,100
252	101하22**	추*성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4-25 23:42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2,100
253	09머65**	한*정	경기도 파주시	2025-04-07 18:06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2,100
254	48가65**	임*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3-04 07:44	영등포시장교차로~영등포교차로	52,100
255	04무43**	장*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4-11 07:25	복정역~장지교교차로	52,100
256	305주25**	S*E*F*N*H*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4-25 18:46	서초동 서초IC 하행	52,100
257	185주75**	신*식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04-23 18:34	은천삼거리~서울대입구역	52,100
258	27구52**	A*D*K*R*M*A*R*N	충청북도 청주시	2025-04-12 14:06	양재동 양재IC 하행	52,100
259	174호89**	박*희	부산광역시 연제구	2025-04-10 19:00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2,100
260	152하67**	차*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025-03-23 21:35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2,100
261	109호22**	이*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2025-04-21 15:36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2,100
262	83어58**	변*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5-05-12 11:17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2,100
263	105하62**	김*웅	경기도 평택시	2025-03-31 09:1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2,100
264	15구36**	신*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4-21 18:23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9-2 (여의도동)	52,100
265	232조51**	권*희	경기도 시흥시	2025-05-26 09:43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2,100
266	319누98**	박*현	충청남도 홍성군	2025-05-10 11:47	양재동 양재IC 상행	52,100
267	143두48**	이*수	경기도 평택시	2025-04-09 09:11	양재동 양재IC 상행	52,1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68	143두48**	이*수	경기도 평택시	2025-04-09 09:13	서초동 반포IC 상행	52,100
269	143두48**	이*수	경기도 평택시	2025-04-09 09:12	서초동 서초IC 상행	52,100
270	149러61**	이*실	부산광역시 동구	2025-05-05 16:34	양재동 양재IC 하행	52,100
271	46가07**	최*희	경기도 평택시	2025-04-09 17:07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2,100
272	29하95**	김*린	충청남도 천안시	2025-05-11 12:05	서초동 반포IC 상행	52,100
273	170허38**	권*현	충청남도 천안시	2024-11-29 15:17	양재동 양재IC 상행	52,100
274	170허38**	권*현	충청남도 천안시	2024-11-29 15:19	서초동 반포IC 상행	52,100
275	170허38**	권*현	충청남도 천안시	2024-11-29 15:18	서초동 서초IC 상행	52,100
276	60저78**	한*원	충청남도 천안시	2025-05-26 09:41	개화동 영신PVC 상사	52,100
277	167러37**	이*숙	충청남도 천안시	2025-05-07 09:50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2,100
278	46가07**	최*희	경기도 평택시	2025-04-09 17:06	서초동 서초IC 하행	52,100
279	282라12**	김*혜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5-15 11:19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여의도동)	52,100
280	서울31바21**	백*걸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5-05-02 15:44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2,100
281	64노60**	박*희	경기도 남양주시	2025-04-28 15:23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2,100
282	47러03**	황*진	경기도 포천시	2025-04-18 12:19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2,100
283	142서58**	윤*란	경기도 수원시	2025-05-18 11:2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2,100
284	101호26**	김*호	경기도 시흥시	2025-03-20 19:0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2,100
285	163두88**	정*진	경기도 시흥시	2025-04-10 09:48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2,100
286	54로04**	H*N*Y*N*H*O	경기도 안산시	2025-04-25 19:30	서초동 서초IC 하행	52,100
287	41라16**	K*A*T*U*I*	경기도 시흥시	2025-04-24 08:5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2,100
288	192호38**	이*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5-20 16:48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2,100
289	서울35러26**	김*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05-08 09:0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2,100
290	서울31사16**	정*열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04-25 14:29	영등포구 신송빌딩 앞	52,100
291	322루58**	유*라	경기도 파주시	2025-04-25 14:5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2,100
292	06하37**	정*동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2025-05-03 19:57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52,100
293	서울31사49**	강*숙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5-04 14:56	공덕역~애오개역	52,1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94	167조35**	김*경	경기도 의정부시	2025-05-12 17:3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2,100
295	104거81**	원*희	충청북도 제천시	2025-05-19 18:45	양재동 양재IC 하행	52,100
296	14마23**	이*영	경기도 의정부시	2025-05-19 20:07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2,100
297	65주83**	D*R*E*K*N	경기도 이천시	2025-05-14 14:21	양재동 양재IC 상행	52,100
298	175허16**	서*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04-29 08:49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2,100
299	26저31**	유*준	충청남도 천안시	2025-05-18 17:58	서초동 반포IC 상행	52,100
300	87우69**	백*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04-24 17:52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2,100
301	67로53**	성*현	경기도 이천시	2025-05-19 09:36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2,100
302	69보02**	지*곤	경기도 남양주시	2025-04-24 17:58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2,100
303	262로93**	홍*언	경기도 파주시	2025-04-24 11:03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2,100
304	55마28**	오*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05-21 10:24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2,100
305	397저60**	함*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5-02 10:51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2,100
306	05로13**	최*옥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4-29 08:11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2,100
307	165허65**	신*훈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5-10 11:5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2,100
308	314루98**	이*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05-16 16:39	서초동 반포IC 상행	52,100
309	25모05**	박*훈	경기도 남양주시	2025-05-26 09:03	서울여대~화랑대사거리	52,100
310	303보43**	이*정	경기도 남양주시	2025-04-23 18:5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2,100
311	50소87**	강*규	경기도 시흥시	2025-05-15 08:10	개화동 영신PVC 상사	52,100
312	23거50**	김*민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5-15 10:43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2,100
313	43더88**	문*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5-14 19:0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2,100
314	58도14**	박*서	경기도 부천시	2025-05-23 17:3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2,100
315	94모57**	김*재	경기도 광주시	2025-05-12 07:16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2,100
316	58도56**	장*봉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5-14 17:35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2,100
317	16주64**	한*주	경기도 의정부시	2025-04-30 18:49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2,100
318	03조06**	안*현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4-30 17:3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2,100
319	222수80**	최*준	경기도 남양주시	2025-05-15 08:40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2,100
320	346소97**	전*홍	경기도 의정부시	2025-05-16 19:0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2,100
321	서울32자65**	채*경	경기도 남양주시	2025-05-01 10:30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2,1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22	373고55**	진*태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5-08 15:14	서초동 서초IC 상행	52,100
323	373고55**	진*태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5-08 15:15	서초동 반포IC 상행	52,100
324	232모40**	김*철	경기도 부천시	2025-05-02 19:10	개화동 영신PVC 상사	52,100
325	64로12**	전*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2025-05-02 19:1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2,100
326	63도84**	우*권	경기도 용인시	2025-05-03 08:46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2,100
327	67주42**	김*영	경기도 고양시	2025-05-02 20:31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2,100
328	28구48**	이*철	경기도 고양시	2025-05-06 08:18	서초동 서초IC 하행	52,100
329	252다57**	김*섭	경기도 고양시	2025-05-13 09:26	개화동 영신PVC 상사	52,100
330	48어55**	박*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5-05-12 20:4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2,100
331	101하73**	이*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5-08 18:23	서초동 서초IC 하행	52,100
332	125러77**	P*A*H*O*U*	경기도 용인시	2025-05-25 16:27	서초동 서초IC 하행	52,100
333	114러77**	정*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5-02 18:2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2,100
334	101하73**	이*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5-08 18:2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2,100
335	39저55**	진*석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5-08 18:25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2,100
336	43저83**	정*윤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5-08 18:5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2,100
337	21두97**	백*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5-08 19:56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2,100
338	175하80**	정*현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5-09 09:18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2,100
339	14더03**	정*훈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5-09 19:14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2,100
340	26가71**	최*택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5-08 09:4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2,100
341	100러60**	윤*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5-08 18:1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2,100
342	29라39**	이*순	전라남도 광양시	2025-05-28 17:52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2,100
343	239노91**	김*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5-28 16: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	52,100
344	서울31자88**	김*대	경기도 광명시	2025-05-22 18:14	개화동 영신PVC 상사	52,100
345	314루98**	이*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05-22 15:35	양재동 양재IC 상행	52,100
346	314루98**	이*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05-22 15:37	서초동 반포IC 상행	52,100
347	40루24**	최*명	경기도 고양시	2025-05-23 17:1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2,100
348	40루24**	최*명	경기도 고양시	2025-05-08 17:2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2,100
349	125러77**	P*A*H*O*U*	경기도 용인시	2025-05-25 16:2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2,1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50	83로32**	이*혜	경기도 성남시	2025-05-23 08:1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2,100
351	72너18**	김*성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5-22 17:32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62,520
352	경기84바89**	장*태	경기도 의정부시	2025-04-18 10:2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2,100
353	22모48**	N*U*E*H*U*H*	전라남도 무안군	2025-05-02 19:1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2,100
354	서울32사72**	정*겸	경기도 의정부시	2025-05-03 10:04	메가박스앞	52,100
355	286도38**	신*순	경기도 하남시	2025-05-27 13:33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2,100
356	225보35**	김*우	서울특별시 중구	2025-05-27 07:2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2,100
357	84주08**	최*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4-24 15:35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52,100
358	58라90**	최*웅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2025-04-20 20:27	양재동 양재IC 상행	52,100
359	75오72**	최*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5-08 18:57	장지동 장지역 중앙정류소(시내방향)	62,520
360	41고50**	김*윤	경기도 의정부시	2025-04-18 11:2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2,100
361	48조78**	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5-30 17:3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2,100
362	261러76**	윤*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5-30 19:33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2,100
363	186부35**	박*수	충청북도 청주시	2025-05-30 18:47	서초동 서초IC 하행	52,100
364	23우73**	김*규	경기도 의정부시	2025-04-09 18:2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2,100
365	68소89**	이*찬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4-10 14:02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2,100
366	175어89**	김*광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4-09 19:22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2,100
367	46구38**	송*숙	경기도 의정부시	2025-04-23 08:10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2,100
368	244노18**	이*웅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5-01 17:26	개화동 영신PVC 상사	52,100
369	154고32**	이*현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5-11 11:06	서초동 서초IC 상행	52,100
370	68조25**	김*정	경기도 고양시	2025-05-27 16:30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2,100
371	08구05**	김*창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5-26 19:21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9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52,100
372	서울32아40**	강*정	경기도 남양주시	2025-05-29 09:37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2,100
373	인천83바55**	이*열	인천광역시 서구	2025-05-29 09:50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2,100
374	27조98**	김*연	경기도 군포시	2025-05-11 16:48	오현로 137주변	52,100
375	126다74**	이*건	경기도 의정부시	2025-05-09 17:4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2,100
376	245모14**	이*근	경기도 광주시	2025-05-09 16:33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2,1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77	101허39**	신*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5-09 18:3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2,100
378	249우85**	이*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5-08 20:32	개화동 영신PVC 상사	52,100
379	162거49**	김*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5-19 09:54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2,100
380	204무30**	박*철	경기도 수원시	2025-05-19 13:29	서초동 서초IC 하행	52,100
381	37고78**	윤*석	경기도 수원시	2025-05-24 11:42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2,100
382	199다74**	박*길	경기도 화성시	2025-05-24 10:26	양재동 양재IC 상행	52,100
383	89노19**	김*덕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5-05-24 08:42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2,100
384	서울32아20**	김*근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4-24 11:56	잠실새내역~잠실운동장사거리	52,100
385	159소34**	백*희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4-17 09:09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2,100
386	815서45**	이*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5-04-18 17:06	서초동 서초IC 상행	52,100
387	283마16**	K*M*U*Y*N	경기도 용인시	2025-04-25 16:1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2,100
388	26러95**	서*련	경기도 평택시	2025-05-08 22:49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2,100
389	58모23**	서*미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5-15 07:46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2,100
390	165하71**	T*R*U*B*E*T*K*I*B*K	경상남도 김해시	2025-05-21 17:26	서초동 반포IC 상행	52,100
391	165하71**	T*R*U*B*E*T*K*I*B*K	경상남도 김해시	2025-05-21 17:25	서초동 서초IC 상행	52,100
392	68무88**	최*찬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5-21 17:12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2,100
393	165하71**	T*R*U*B*E*T*K*I*B*K	경상남도 김해시	2025-05-21 17:24	양재동 양재IC 상행	52,100
394	03두68**	김*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5-01 09:4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2,100
395	14루04**	김*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5-04-30 19:2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2,100
396	247버28**	서*조	경기도 시흥시	2025-05-08 15:52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2,100
397	243루50**	홍*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4-30 17:33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2,100
398	서울32바16**	김*균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4-30 20:33	개화동 영신PVC 상사	52,100
399	04오04**	박*용	경기도 고양시	2025-05-21 08:48	개화동 영신PVC 상사	52,100
400	41로01**	유*원	경기도 용인시	2025-04-29 07:45	서초동 서초IC 상행	52,100
401	392서90**	박*영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5-15 17:20	서초동 반포IC 상행	52,100
402	65모38**	박*롱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5-16 10:45	삼성교~강남경찰서교차로	52,100
403	252마49**	정*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5-14 19:35	상계동 상계백병원	52,100
404	서울32자43**	김*성	경기도 남양주시	2025-05-14 20:18	육사야구장~화랑대사거리	52,1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405	40머02**	박*만	경기도 고양시	2025-05-21 15:02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52,100
406	221가17**	이*준	경기도 양주시	2025-05-21 17:25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2,100
407	39러29**	박*근	경기도 평택시	2025-05-21 15:32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2,100
408	823라24**	전*배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5-22 07:5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2,100
409	111보62**	박*범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05-15 20:2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2,100
410	22도37**	임*수	경기도 화성시	2024-03-03 23:2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2,100
411	37더46**	안*수	경기도 용인시	2025-04-29 17:4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2,100
412	14우16**	조*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4-29 18:52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2,100
413	181무22**	류*홍	경기도 고양시	2025-04-30 08:06	은평뉴타운10단지~구파발사거리	52,100
414	63어98**	K*M*A*Y*U*G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5-22 20:0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2,100
415	225하15**	이*민	광주광역시 광산구	2025-05-22 10:40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2,100
416	경기광명파71**	오*민	경기도 광명시	2025-05-21 18:09	중앙시장앞	41,680
417	24더98**	김*순	경기도 부천시	2025-05-14 15:09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2,100
418	10도16**	강*경	경기도 의정부시	2025-04-28 09:54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52,100
419	40고27**	이*진	경기도 성남시	2025-04-28 20:4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2,100
420	62부21**	양*석	경기도 하남시	2025-05-16 18:18	개화동 영신PVC 상사	52,100
421	392다65**	박*철	대구광역시 북구	2025-05-15 17:56	양재동 양재IC 하행	52,100
422	32다66**	권*용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5-15 18:18	개화동 영신PVC 상사	52,100
423	154두63**	정*한	경기도 의정부시	2025-05-15 18:5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2,100
424	389버61**	백*미	경기도 화성시	2025-05-15 20:2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2,100
425	347가65**	전*영	경기도 용인시	2025-05-16 10:07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2,100
426	125러77**	P*A*H*O*U*	경기도 용인시	2025-05-25 16:29	양재동 양재IC 하행	52,100
427	813나30**	우*에브루	경상남도 김해시	2025-05-29 18:31	서초동 서초IC 상행	52,100
428	149허44**	김*영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5-01 20:0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2,100
429	05하90**	오*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5-05-01 18:0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2,100
430	37고63**	김*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5-01 16:33	서초동 반포IC 상행	52,100
431	349버36**	김*근	충청북도 청주시	2025-05-01 18:24	서초동 서초IC 하행	52,1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432	349버36**	김*근	충청북도 청주시	2025-05-01 18:2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2,100
433	18루63**	F*N*H*O*H*	광주광역시 북구	2025-05-28 10:42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2,100
434	19노90**	Y*N*I*G*U	경기도 오산시	2025-05-27 18:44	개화동 영신PVC 상사	52,100
435	813나30**	우*에브루	경상남도 김해시	2025-05-29 18:32	서초동 반포IC 상행	52,100
436	130주34**	이*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5-13 07:27	상계동 상계백병원	52,100
437	49부75**	류*휘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5-09 11:4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2,100
438	19루64**	A*R*M*V*I*O*A*H*N*H*V*A*J*N*I*I	경기도 고양시	2025-05-10 07:32	서초동 서초IC 하행	52,100
439	16가27**	이*하	경기도 고양시	2025-05-09 23:31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2,100
440	서울32사69**	김*택	경기도 김포시	2025-05-10 23:40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2,100
441	125러77**	P*A*H*O*U*	경기도 용인시	2025-05-18 15:2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2,100
442	165보46**	박*찬	경기도 용인시	2025-05-19 10:29	강남소방서앞	52,100
443	158오80**	이*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5-05-19 07:57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2,100
444	05러96**	조*훈	경기도 용인시	2025-05-25 08:23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여의도동)	52,100
445	43머55**	구*모	경기도 남양주시	2025-04-30 19:12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2,100
446	243더64**	신*민	경기도 광주시	2025-04-28 18:17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2,100
447	84도06**	이*종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5-01 12:00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2,100
448	03우40**	안*범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5-01 11:25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2,100
449	02더32**	김*수	경기도 의정부시	2025-05-01 09:3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2,100
450	46더85**	서*희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4-29 17:3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2,100
451	57누45**	김*영	경기도 고양시	2025-04-29 16:49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2,100
452	236저92**	심*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4-29 18:03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2,100
453	95부55**	김*진	경기도 광명시	2025-04-30 08:39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2,100
454	51보82**	이*훈	경기도 양주시	2025-05-23 12:15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2,100
455	서울관악거00**	김*식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5-13 15:30	봉천로사거리~은천삼거리	41,680
456	125러77**	P*A*H*O*U*	경기도 용인시	2025-05-17 08:4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2,100
457	125러77**	P*A*H*O*U*	경기도 용인시	2025-05-17 08:41	서초동 서초IC 하행	52,1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458	69도01**	김*희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5-14 19:40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2,100
459	서울32사46**	김*종	인천광역시 서구	2025-05-15 07:39	개화동 영신PVC 상사	52,100
460	66우16**	나*희	경기도 안양시	2025-05-20 20:26	서초동 반포IC 상행	52,100
461	247너52**	S*I*U*K*R*A*R*B*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4-30 18:40	천호대교	52,100
462	180노19**	허*광	충청북도 진천군	2025-04-30 15:49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2,100
463	28고96**	안*희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5-02 20:33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2,100
464	303보43**	이*정	경기도 남양주시	2025-04-22 15:39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2,100
465	41라80**	한*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4-15 15:04	양재동 양재IC 상행	52,100
466	137라87**	심*정	서울특별시 중구	2025-04-24 11:16	서초동 서초IC 하행	52,100
467	67두01**	유*아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4-10 19:2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2,100
468	84누08**	김*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4-18 07:59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2,100
469	19노17**	엄*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4-09 17:33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124	52,100
470	19어90**	전*영	경상북도 구미시	2025-04-24 18:0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2,100
471	52거04**	이*애	인천광역시 서구	2025-04-17 09:18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2,100
472	10고45**	배*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4-14 17:1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2,100
473	136마10**	송*환	경기도 수원시	2025-04-16 13:2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2,100
474	293머56**	채*리	경기도 양주시	2025-05-12 07:5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2,100
475	55루32**	김*영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4-16 17:4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2,100
476	161거25**	김*빈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4-18 10:4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2,100
477	16노20**	박*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5-20 07:3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2,100
478	282수64**	C*O*O*J*E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4-14 08:49	삼성교~강남경찰서교차로	52,100
479	27라64**	N*J*I*D*N*V*H*M*I*D*N*K*O*J*N*G*I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4-19 17:59	양재동 양재IC 하행	52,100
480	27부19**	박*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4-28 17:21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2,100
481	379소24**	김*진	경기도 화성시	2025-04-27 10:13	서초동 반포IC 상행	52,100
482	177허66**	정*열	경기도 화성시	2025-05-12 17:31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2,100
483	109허75**	유*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4-02 17:11	개화동 영신PVC 상사	52,100
484	200서35**	이*현	경기도 부천시	2025-05-16 17:1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2,1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485	55로37**	채*석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5-19 20:32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2,100
486	322주17**	이*우	전라남도 장성군	2025-04-23 09:44	서초동 반포IC 상행	52,100
487	815로41**	현*철	경기도 양평군	2025-04-25 17:1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2,100
488	130호22**	이*준	경기도 양주시	2025-04-25 18:4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2,100
489	경기36나89**	이*승	경기도 김포시	2025-04-23 08:42	개화동 영신PVC 상사	52,100
490	84무70**	서*수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4-21 19:30	양재동 양재IC 상행	52,100
491	16라05**	김*애	경기도 안양시	2025-04-25 16:07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2,100
492	84고53**	권*택	경기도 안양시	2025-04-22 07:49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2,100
493	332조42**	김*중	경기도 성남시	2025-04-25 22:4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2,100
494	356우12**	G*O*U*	경기도 수원시	2025-04-25 10:05	서초동 반포IC 상행	52,100
495	58저09**	이*승	인천광역시 중구	2025-04-24 10:3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2,100
496	57루13**	김*복	인천광역시 서구	2025-04-10 17:33	개화동 영신PVC 상사	52,100
497	20소27**	E*O*A*G*I*I*I*A*E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5-04-07 19:3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2,100
498	20소27**	E*O*A*G*I*I*I*A*E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5-04-07 19:34	서초동 서초IC 하행	52,100
499	152라38**	이*재	경기도 용인시	2025-04-21 18:53	서초동 서초IC 상행	52,100
500	250루35**	신*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4-08 17:23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2,100
501	134우13**	김*준	경기도 광명시	2025-04-22 09:42	양재동 양재IC 상행	52,100
502	134우13**	김*준	경기도 광명시	2025-04-22 09:46	서초동 반포IC 상행	52,100
503	184다99**	김*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25-04-10 08:04	양재동 양재IC 상행	52,100
504	85서19**	김*욱	경기도 수원시	2025-04-10 18:03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2,100
505	43더02**	한*환	경기도 의정부시	2025-05-06 20:31	서초동 반포IC 상행	52,100
506	서울32바44**	이*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5-12 10:28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2,100
507	43구46**	최*진	세종특별자치시 새롬중앙로	2025-04-26 09:55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내방향)	52,100
508	03주68**	서*희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4-18 19:32	상계동 상계백병원	52,100
509	182호13**	박*식	경기도 광주시	2025-04-22 10:54	서초동 반포IC 상행	52,100
510	182호13**	박*식	경기도 광주시	2025-04-18 09:48	서초동 반포IC 상행	52,100
511	182호13**	박*식	경기도 광주시	2025-04-28 17:32	양재동 양재IC 하행	52,100
512	182호13**	박*식	경기도 광주시	2025-04-28 17:30	서초동 서초IC 하행	52,1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513	16구55**	이*현	경기도 의정부시	2025-04-09 08:20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2,100
514	113로27**	김*한	충청남도 천안시	2025-05-20 14:14	양재동 양재IC 상행	52,100
515	113로27**	김*한	충청남도 천안시	2025-05-20 14:15	서초동 서초IC 상행	52,100
516	113로27**	김*한	충청남도 천안시	2025-05-20 16:5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2,100
517	113로27**	김*한	충청남도 천안시	2025-05-20 16:53	서초동 서초IC 하행	52,100
518	340러60**	이*섭	충청남도 아산시	2025-04-23 18:19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2,100
519	82라88**	정*덕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4-09 07:2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2,100
520	89두07**	현*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4-28 07:01	내곡IC~염곡IC	52,100
521	134고88**	조*비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4-25 15:13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2,100
522	266주82**	주*솜	경기도 화성시	2025-04-19 10:14	서초동 서초IC 상행	52,100
523	59라75**	이*열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5-04-23 08:50	육사야구장~화랑대사거리	52,100
524	197호45**	조*화	경기도 화성시	2025-04-09 17:2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2,100
525	197호45**	조*화	경기도 화성시	2025-04-08 17:2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2,100
526	825주13**	김*화	경기도 하남시	2025-05-14 14:32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2,100
527	45우97**	허*봉	경기도 하남시	2025-04-09 20:1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2,100
528	224주82**	김*미	경기도 고양시	2025-04-29 08:59	동산육교~구파발사거리	52,100
529	109하71**	김*량	경기도 광명시	2025-04-07 13:5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2,100
530	63로78**	L*F*I*O*G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5-05-20 00:55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2,100
531	156호44**	김*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5-04-04 08:3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2,100
532	53소07**	임*주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4-07 19:5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2,100
533	815서45**	이*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5-04-23 15:04	양재동 양재IC 상행	52,100
534	815서45**	이*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5-04-23 15:05	서초동 반포IC 상행	52,100
535	815서45**	이*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5-04-18 17:05	양재동 양재IC 상행	52,100
536	803어74**	정*순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04-16 07:2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2,100
537	47보99**	문*원	경기도 김포시	2025-05-20 09:06	개화사거리~김포공항사거리	52,100
538	05고26**	남*모	경기도 김포시	2025-05-07 09:23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2,100
539	64너59**	조*환	경기도 김포시	2025-04-01 07:37	개화교	52,100
540	38조11**	문*환	경기도 의정부시	2025-04-07 17:52	군자역~아차산역삼거리	52,1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541	283마16**	K*M*U*Y*N	경기도 용인시	2025-04-25 16:15	양재동 양재IC 하행	52,100
542	54머63**	강*보	경기도 고양시	2025-04-08 08:16	개화동 영신PVC 상사	52,100
543	240노91**	T*N*D*A*D	광주광역시 광산구	2025-04-21 10:16	서초동 반포IC 상행	52,100
544	101호10**	김*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25-04-28 17:3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2,100
545	199누99**	구*이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25-04-19 17:14	서초동 서초IC 하행	52,100
546	61우87**	채*묵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4-22 07:52	양재동 양재IC 하행	52,100
547	116저61**	강*숙	경기도 김포시	2025-04-11 09:28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2,100
548	84주08**	최*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4-18 15:36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52,100
549	18거57**	윤*정	경상북도 구미시	2025-05-23 18:30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2,100
550	13루71**	송*탁	경상남도 김해시	2025-04-21 20:34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2,100
551	42너78**	민*준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4-07 16:4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2,100
552	129노52**	엄*섭	경기도 고양시	2025-05-19 19:39	개화동 영신PVC 상사	52,100
553	96고08**	조*우	경기도 성남시	2025-04-09 10:51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2,100
554	60구03**	A*D*M*N*O*O*A*I*B*K*B*U*O*F*R*G*I	경기도 성남시	2025-04-25 13:2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2,100
555	38노54**	원*지	경기도 성남시	2025-04-17 17:16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2,100
556	11어26**	김*정	경기도 성남시	2025-05-19 09:37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2,100
557	33호08**	이*운	경기도 성남시	2025-05-04 11:32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2,100
558	379라77**	박*찬	전라남도 담양군	2025-04-25 18:0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2,100
559	서울31바39**	박*훈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5-08 09:12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2,100
560	20나59**	유*길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5-04-09 17:59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2,100
561	65거94**	천*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4-08 08:51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2,100
562	283마16**	K*M*U*Y*N	경기도 용인시	2025-04-25 14:45	양재동 양재IC 상행	52,100
563	283마16**	K*M*U*Y*N	경기도 용인시	2025-04-25 16:13	서초동 서초IC 하행	52,100
564	108주49**	박*태	세종특별자치시	2025-05-10 15:01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2,100
565	257가65**	표*영	대구광역시 북구	2025-05-15 12:39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2,100
566	155호10**	조*제	광주광역시 남구	2025-04-04 18:4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2,100
567	76다65**	한*천	경기도 광주시	2025-04-09 10:51	서초동 서초IC 하행	62,52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568	서울강북가10**	김*찬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4-17 09:43	천호대교~광나루역방면	41,680
569	813저65**	이*성	경기도 수원시	2025-04-21 09:2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2,100
570	165루67**	김*연	경기도 연천군	2025-04-18 11:2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2,100
571	292노99**	이*재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4-08 09:1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2,100
572	35구54**	김*정	경기도 용인시	2025-05-02 12:13	서초동 반포IC 상행	52,100
573	125러77**	P*A*H*O*U*	경기도 용인시	2025-05-18 15:27	서초동 서초IC 하행	52,100
574	91조16**	배*욱	경기도 수원시	2025-04-28 15:29	서초동 서초IC 하행	52,100
575	161하12**	정*철	충청남도 천안시	2025-04-22 09:37	서초동 반포IC 상행	52,100
576	161하12**	정*철	충청남도 천안시	2025-04-22 09:36	서초동 서초IC 상행	52,100
577	312우93**	주*세바아이다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4-09 18:13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 (여의도동)	52,100
578	05부36**	최*아	경기도 용인시	2025-05-20 07:3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2,100
579	184다99**	김*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25-04-10 08:06	서초동 반포IC 상행	52,100
580	96루08**	장*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4-10 17:1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2,100
581	92더59**	박*수	서울특별시 중구	2025-04-08 07:2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2,100
582	142호25**	김*용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5-04-09 15:4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2,100
583	260노83**	박*선	경기도 의정부시	2025-04-08 18:25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2,100
584	57고21**	김*희	경기도 고양시	2025-05-30 18:07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2,100
585	서울32아35**	김*진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05-31 07:42	삼양입구사거리~미아사거리역	52,100
586	14어97**	김*숙	경기도 남양주시	2025-05-31 10:32	장지동 장지역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2,100
587	109호40**	이*규	대전광역시 서구	2025-04-11 11:19	서초동 서초IC 상행	52,100
588	109호40**	이*규	대전광역시 서구	2025-04-11 11:18	양재동 양재IC 상행	52,100
589	344로10**	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5-20 04:4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2,100
590	237수72**	이*용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5-13 20:16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2,100
591	237수72**	이*용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5-13 20:19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2,100
592	27나37**	서*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4-09 08:44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2,100
593	173마90**	서*석	경기도 수원시	2025-04-18 15:56	서초동 서초IC 하행	52,100
594	192하94**	이*영	경기도 수원시	2025-05-12 12:02	서초동 서초IC 상행	52,100
595	192하94**	이*영	경기도 수원시	2025-05-12 12:03	서초동 반포IC 상행	52,1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596	63나69**	오*미	경기도 고양시	2025-05-11 11:52	영등포구 샛강역 1번출구 앞	52,100
597	20오65**	태*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4-25 08:24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2,100
598	47누22**	유*성	인천광역시 서구	2025-04-29 08:45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2,100
599	63라09**	김*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5-27 18:45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2,100
600	310더88**	김*민	인천광역시 서구	2025-04-25 11:10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2,100
601	52서27**	정*홍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5-07 09:19	개화동 영신PVC 상사	52,100
602	179허69**	박*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4-20 19:23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2,100
603	43버94**	정*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4-07 19:1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2,100
604	19저73**	김*진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5-02 19:35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2,100
605	259러60**	김*기	인천광역시 서구	2025-05-02 19:1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2,100
606	54러87**	김*진	경기도 수원시	2025-05-03 08:52	서초동 반포IC 상행	52,100
607	249오46**	한*운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5-13 19:58	개화동 영신PVC 상사	52,100
608	서울32바87**	권*민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5-05-22 17:57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2,100
609	07우23**	송*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5-19 08:21	압구정로데오역~성수대교남단교차로	52,100
610	43두69**	조*아	경기도 가평군	2025-04-17 08:25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영등포역	52,100
611	124호97**	황*선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4-26 14:12	서초동 반포IC 상행	52,100
612	47러03**	황*진	경기도 포천시	2025-05-02 07:35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2,100
613	141무30**	정*영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5-05-08 18:42	상계동 상계백병원	52,100
614	140고48**	박*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5-09 08:36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2,100
615	238부28**	곽*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5-09 07:53	국립현충원교차로~흑석역	52,100
616	346수80**	이*우	경기도 이천시	2025-05-30 13:1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2,10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120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및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전용차로(버스, 자전거)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161조, 및 시행령 제88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주*회*아*넷 등 1,047명
4. 공고기간 : 2025. 11. 06. ~ 2025. 11. 30.
   -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 과태료과징팀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 받아 시중은행, 농협, 전국 우체국 및 전국 편의점(세븐일레븐, GS25, CU, 바이더웨이), 무인수납기 (은행 및 각 구청) 등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롯데, 외환)납부는 편의점 및 무인 수납기에서만 가능합니다.
5. 이의제기 안내
   - 이의제기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터넷 검색창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http://cartax.seoul.go.kr)를 통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단속반 과태료과징팀 팩스(02-2133-4904) 및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이송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단속자료 확인 사이트 : 서울특별시 교통위반단속조회 (http://cartax.seoul.go.kr)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 과태료과징팀(☎ 02-2133-4570~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수시분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	264더56**	주*회*아*넷	울산광역시 북구	2025-07-14 09:4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	252우69**	(*)*지*라*프*코*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24 10:3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	20오05**	농*회*법*주*회*아*랑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2025-07-24 17:4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	85보01**	(*)*안*반	경기도 안산시	2025-07-24 18:3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5	경기49사10**	주*회*하*의*클*	경기도 남양주시	2025-07-12 16:26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6	252모14**	농*회*법*도*주*회*	경기도 광주시	2025-07-12 20:0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7	46더30**	에*에*치*파*너*(*)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24 17:4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8	190저77**	주*회*유*연*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7-24 17:12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9	156더25**	주*회*케*에*원*트*스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7-14 09:09	삼육대~태릉	50,000
10	160호17**	시*레*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7-14 09:11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11	252더56**	주*회*3*0*레*	경기도 성남시	2025-07-14 09:4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2	51무50**	삼*건*주*회*	전라남도 진도군	2025-07-25 17:11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3	83도57**	주*회*우*산*개*	전라남도 장성군	2025-08-05 07:31	몽촌토성역~ 송파구청교차로	50,000
14	172호26**	(*)*명*찰*보	인천광역시 서구	2025-07-01 08:5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5	149오64**	주*회*제*스*이*홀*스	인천광역시 서구	2025-07-23 18:2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6	135저93**	주*회*시*본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5-07-29 18:3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7	251노34**	주*회*아*돔	경기도 하남시	2025-07-17 08:0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8	84무37**	다*유*주*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11 07:54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9	171하52**	빅*데*터*식*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10 18:4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0	284부34**	사*나*식*사	경기도 용인시	2025-07-11 08:18	압구정역~ 성수대교남단교차로	50,000
21	61두24**	주*회*용*	경기도 김포시	2025-07-17 08:51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2	09거72**	주*회*에*치*플*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7-17 17:47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23	175호19**	다*무*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7-17 17:5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4	14두72**	주*회*조*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24 13:3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5	84수57**	주*회*우*유*	경기도 하남시	2025-07-17 07:5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6	231부18**	주*회*록*쟈	경기도 안성시	2025-07-17 10:40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7	21다94**	주*회*태*산*	경상북도 포항시	2025-07-07 17:01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28	82주75**	(*)*진*탈*리*	경기도 군포시	2025-07-11 07:26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9	82주75**	(*)*진*탈*리*	경기도 군포시	2025-07-11 07:25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0	62조39**	오*밸*코*아*주*(*품*)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11 09:17	개화교~개화사거리	50,000
31	08서81**	주*회*베*트*터*셔*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7-11 10:01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여의도동)	50,000
32	360누82**	(*)*이*슈*코*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5-07-24 08:1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3	142부69**	주*회*공*경*	서울특별시 중구	2025-08-07 18:29	압구정로데오역~성수대교	50,000
34	01무87**	블*펄*라*빗*쿼*유*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5-08-04 19:34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35	108러77**	L*G*A*G	경기도 광명시	2025-07-09 08:52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36	222호39**	(*)*티*이*리*	경기도 하남시	2025-07-28 17:52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37	18노06**	(*)*티*컴	서울특별시 중구	2025-08-08 14:50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38	18노06**	(*)*티*컴	서울특별시 중구	2025-08-01 14:13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39	140하78**	땡*카*주*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2025-07-21 09:4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0	서울31아23**	최*조	경기도 고양시	2025-07-15 18:3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1	222호38**	농*회*법*주*회*성*리*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2025-07-04 19:15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외방향)	50,000
42	32서27**	(*)*성*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5-07-23 09:2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79	50,000
43	251소97**	이*형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7-29 20:02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44	251소97**	이*형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7-17 19:0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45	25너04**	(*)*우*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7-31 16: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	50,000
46	802버15**	주*회*현*필*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5-07-11 13:48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47	82오10**	주*회*더*팜	경기도 광주시	2025-08-07 14:03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48	81누01**	(*)*성*텍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5-08-01 12:57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49	846구60**	주*회*푸*앤*쿨	경기도 남양주시	2025-07-07 07:5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50	81다01**	(*)*늘*드	경기도 남양주시	2025-08-06 17:3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51	23주67**	(*)*도*합*설	경기도 남양주시	2025-07-16 09:13	육사야구장~화랑대사거리	50,000
52	69두85**	송*영	경기도 김포시	2025-07-18 19:24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53	161도56**	주*회*엔*	경기도 김포시	2025-07-11 19:07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54	12오30**	주*회*세*연*소	세종특별자치시	2025-08-05 09:46	염곡IC~염곡지하차도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한누리대로			
55	815고44**	주*회*금*프*시*트	경기도 광주시	2025-08-01 19:5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56	228주84**	주*회*엔*미*	경기도 광주시	2025-07-17 18:54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57	50보23**	주*회*에*스*	울산광역시 남구	2025-07-28 15:08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58	53하43**	주*회*페*먼*코*아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2025-07-09 18:10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59	140하78**	땡*카*주*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2025-07-21 09:40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60	83누55**	(*)*이*이*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5-07-23 18:34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61	128소74**	스*트*트*스*식*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8-09 13:25	이수교차로~이수역	50,000
62	166무31**	유*회*비*라*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7-28 07:11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63	20로33**	주*회*소*크*프*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8-01 17:30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64	109허75**	주*회*한*렌*카	경기도 고양시	2025-07-14 17:57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65	47하15**	주*회*싱*벙*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7-14 17:16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66	96소95**	(*)*트*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7-14 17:38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67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14 12:23	양재동 양재IC 하행	60,000
68	31호74**	토*A*A*동*달*구*	경기도 고양시	2025-07-26 14:07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69	13가04**	타*렌*주*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8-12 07:19	연희IC~ 연세대교차로	50,000
70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27 12:40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71	331루50**	(*)*엔*스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5-06-21 14:22	염창역~ 등촌역	50,000
72	270더56**	(*)*션*미*	서울특별시 중구	2025-07-26 19:10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73	168부84**	에*치*디*설*식*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6-10 17:4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74	83부06**	일*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6-20 10:36	서초ic~반포ic	50,000
75	223호71**	(*)*에*지*리*	서울특별시 중구	2025-06-26 08:35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96 (잠실동)	50,000
76	168루35**	주*회*제*엔*코*레*션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5-06-20 16:46	정동사거리~서대문역	50,000
77	223수23**	경*프*임*앤*(*)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5-08-18 07:3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78	728머37**	주*회*전*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8-13 10:39	진관동 구파발역 중앙정류소(시내방향)	60,000
79	728머37**	주*회*전*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8-13 15:30	진관동 구파발역 중앙정류소(시내방향)	60,000
80	81나26**	주*회*참*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8-14 14:40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81	322주25**	주*회*당*리*파*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8-14 19:4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82	46고53**	춘*닭*비*산*영*조*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25-08-21 17:5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83	88오50**	주*회*온*푸*	경기도 부천시	2025-08-01 08:19	개화교~개화사거리	50,000
84	221호11**	(*)*창*류*통	경기도 남양주시	2025-07-21 19:43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85	82어88**	주*회*월*미*	경기도 화성시	2025-08-14 09:4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86	115호21**	(*)*부*트*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8-29 14:3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87	서울32아52**	이*근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8-26 09:08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88	27너64**	세*리*(*)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8-27 18:0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89	823라24**	주*회*건*석*	경기도 남양주시	2025-08-22 17:48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90	816고17**	주*회*티*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5-07-22 08:4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91	228주84**	주*회*엔*미*	경기도 광주시	2025-07-10 18:49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92	40마68**	W*H*N*L*A*	충청남도 서산시	2025-07-07 17:02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93	316마81**	(*)*이*	경기도 고양시	2025-07-07 18:46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94	58무03**	아*리*라*선*주*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07 19:1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95	30우77**	(*)*원*판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07 17:22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96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07 18:25	서초동 서초IC 상행	60,000
97	07로61**	주*회*유*오*라*프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07 15:27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98	143호84**	(*)*니*인*스*리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7-07 09:17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99	811주63**	주*회*더*유*스	경기도 광주시	2025-07-07 19:1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00	46어58**	(*)*이*드*	경기도 화성시	2025-07-07 09:13	개화교~개화사거리	50,000
101	231허37**	우*개*(*)	충청북도 청주시	2025-08-02 17:29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02	231허37**	우*개*(*)	충청북도 청주시	2025-08-02 17:30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03	61오02**	M*R*A*K*N*E*H*	경기도 평택시	2025-08-24 13:54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04	61오02**	M*R*A*K*N*E*H*	경기도 평택시	2025-08-24 13:56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05	61오02**	M*R*A*K*N*E*H*	경기도 평택시	2025-08-24 13:55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06	85너68**	주*회*유*스*	경기도 남양주시	2025-07-04 08:3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07	368루17**	동*개*주*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08 11:40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08	180허33**	주*회*쿠*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03 17:2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09	95주98**	(*)*아*업*경	경기도 구리시	2025-07-08 14:58	은천삼거리~봉천고개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10	193호33**	(*)*이*가*코*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03 11:18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11	193호33**	(*)*이*가*코*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03 11:2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12	45고49**	(*)*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5-07-08 07:23	온수골사거리~노원역	50,000
113	213버14**	주*회*헤*프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08 08:3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14	86버67**	(*)*촌*드	경상남도 창원시	2025-07-14 23:56	홍은동 북한산 더샵아파트(시외방향)	50,000
115	172하92**	주*회*에*앤*얼*이*스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7-08 07:44	천호대교~광나루역	50,000
116	299소97**	주*회*팀*	부산광역시 영도구	2025-07-08 11:14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17	05하46**	주*회*제*비*베*트*J*I*V*S*)	경기도 파주시	2025-07-15 09:4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18	89도29**	곰*운*	경기도 고양시	2025-07-14 20:27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119	05누20**	동*노*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7-15 09:30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120	25너04**	(*)*우*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7-08 15:5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	50,000
121	286소81**	주*회*베*툼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8-19 17:37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22	82어88**	주*회*월*미*	경기도 화성시	2025-07-18 10:2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23	115하70**	주*회*차*자*터*	충청북도 충주시	2025-07-20 20:25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24	103루90**	주*회*엘*이*지*	충청북도 청주시	2025-07-18 16:41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25	345누50**	(*)*링*톤	대구광역시 동구	2025-07-29 19:24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126	광주85사22**	유*회*호*운*	광주광역시 남구	2025-07-25 08:3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27	55부27**	(*)*.*해*광	경상북도 포항시	2025-08-08 17:36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28	경북87아59**	삼*물*(*)	경상북도 의성군	2025-07-31 08:34	장지교교차로	60,000
129	182머58**	주*회*버*파*투*	부산광역시 남구	2025-06-27 17:4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30	82어88**	주*회*월*미*	경기도 화성시	2025-08-08 09:4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31	171러85**	주*회*태*아*엔*	경기도 화성시	2025-07-28 17:26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32	817구80**	농*회*법*초*에*엔*(*)	경기도 하남시	2025-08-08 15:26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133	169하80**	주*회*더*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07-18 17:3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34	170루43**	주*회*위*하*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6-30 14:34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35	175하27**	일*케*칼*식*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7-01 07:39	개화교~개화사거리	50,000
136	06루11**	합*에*지*주*	충청북도 음성군	2025-07-23 17:51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37	125호80**	주*회*도*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7-11 11:27	염곡IC~염곡지하차도	50,000
138	41나57**	(*)*얄*밀*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28 20:14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139	193호93**	주*회*마*웨*솔*션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7-25 13:23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50,000
140	230허15**	(*)*알*이*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7-23 18:0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41	153호42**	노*법*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08 17:20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내방향)	50,000
142	172허73**	(*)*드*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7-30 08:03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43	837저40**	좋*선*주*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7-24 08:39	여의도동 여의도 하이투자증권	50,000
144	58다76**	(*)*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25-07-10 14:27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45	207모64**	(*)*양*합*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7-28 13:07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50,000
146	230하96**	(*)*보*아*앤*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7-28 09:09	고촌IC~개화교	50,000
147	153하62**	엠*스*앤*주*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7-09 08:16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48	160호17**	시*레*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7-24 09:15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149	169하96**	유*인*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7-25 18:2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50	177호96**	(*)*랜*이*축*사*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31 07:23	삼성교~강남경찰서교차로	50,000
151	145다99**	제*박*컴*니*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30 13:0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52	106라94**	주*회*교*	경기도 수원시	2025-07-09 08:12	고촌IC~개화교	50,000
153	24호32**	샐*디*전*	경기도 용인시	2025-07-30 19:2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54	20오05**	농*회*법*주*회*아*랑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2025-07-22 17:5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55	174호11**	(*)*에*시*퍼*	경기도 안양시	2025-06-30 18:2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56	335라36**	주*회*걸*컴*니	경기도 수원시	2025-07-04 18:04	신사역~논현역	50,000
157	52버85**	(*)*이*티*드	경기도 안양시	2025-07-16 19:06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158	58마60**	주*회*마*비*	경기도 안양시	2025-07-24 07:15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59	203루84**	주*회*디*공*	경기도 용인시	2025-07-04 18:01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60	86더37**	(*)*앤*스*크	경기도 수원시	2025-07-18 13:3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61	199하77**	주*회*오*스*엠*스	경기도 수원시	2025-07-09 17:4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81-4	50,000
162	308주58**	G*R*I*O*C*R*R	경기도 성남시	2025-07-30 14:0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63	114모73**	G*E*O*I*J*G*	경기도 성남시	2025-08-06 09:03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64	114모73**	G*E*O*I*J*G*	경기도 성남시	2025-08-06 09:01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65	197하38**	(*)*이*스*퍼*이*	경기도 성남시	2025-07-05 11:00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166	17버08**	(*)*월*스*	광주광역시 남구	2025-07-11 10:2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67	225호27**	(*)*이*이*엠*	경기도 평택시	2025-06-30 13:58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68	86가52**	명*건*(*)	경기도 하남시	2025-07-09 09:04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169	02모78**	주*회*커*텀*시*	경기도 하남시	2025-07-12 16:23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170	163우78**	(*)*그*퍼*	경기도 하남시	2025-07-16 17:54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71	68버02**	(*)*록*	경기도 포천시	2025-07-24 07:3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72	185무30**	천*도*방*건*주*회*	경기도 포천시	2025-07-25 08:49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173	14루67**	(*)*동*전	경기도 포천시	2025-07-28 19:03	태릉~화랑대사거리	50,000
174	71로12**	(*)*센	경기도 파주시	2025-07-23 20:33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60,000
175	67모03**	주*회*세*로*스	경기도 평택시	2025-07-19 11:2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76	40부28**	케*에*치*시*발*식*사	경기도 평택시	2025-08-03 11:04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177	127버94**	주*회*온*물*	경기도 파주시	2025-08-10 13:43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178	54고72**	주*회*디*더*유	경기도 이천시	2025-07-30 15:57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79	195하39**	주*회*하*랜*알*이*리*	경기도 용인시	2025-07-23 09:43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여의도동)	50,000
180	01어93**	(*)*청	경기도 용인시	2025-07-23 07:16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81	05누20**	동*노*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7-23 08:56	개화동로(김포공항방면)	50,000
182	21마09**	이*레*너*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7-23 08:42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183	04저46**	주*회*먹*벤*스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8-07 16:4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84	156루59**	주*회*버*코*아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7-15 17:5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85	133저13**	머*랩*주*회*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7-31 20:45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86	306오62**	(*)*선*통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7-23 12:3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87	156노76**	주*회*에*에*지*퍼*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7-10 11:27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88	166무31**	유*회*비*라*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7-07 08:05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189	815도77**	주*회*아*레*보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8-04 14:18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90	822무45**	(*)*이*스*터*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7-18 10:08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91	156호48**	(*)*앤*홀*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7-23 18:1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92	821주32**	주*회*아*콘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7-30 18:23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193	34두73**	(*)*선*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7-31 19:2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94	12무39**	대*화*켐*식*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8-05 08:27	온수골사거리~노원역앞	50,000
195	209소51**	L*S*Y*N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7-16 09:3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96	45오56**	주*회*라*프*스*리*(*|*E*A*K*R*A*O*,*t*)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7-30 10:41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197	16나50**	주*회*민*종*건*사*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16 17:34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198	27다74**	주*회*코*스*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09 17:30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199	14어09**	주*회*아*에*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8-05 18:11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200	132다50**	(*)*그*리*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31 08:32	장지교교차로	50,000
201	서울38자64**	주*회*제*엠*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21 08:4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02	381루25**	티*스*코*레*션*식*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29 20:4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03	381루25**	티*스*코*레*션*식*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15 19:0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04	04저46**	주*회*먹*벤*스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8-07 16:46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05	서울38자64**	주*회*제*엠*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25 10:09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06	서울38자64**	주*회*제*엠*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21 08:41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207	57고90**	주*적*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18 16:48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08	142호59**	(*)*엔*트*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21 17:20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209	346주50**	주*회*트*플*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25 17:3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10	115러36**	새*새*식*사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8-01 14:32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11	145다99**	제*박*컴*니*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11 11:16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12	145다99**	제*박*컴*니*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11 10:51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13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25 11:46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214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18 12:01	양재동 양재IC 하행	60,000
215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30 12:37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216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28 12:22	양재동 양재IC 하행	60,000
217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28 12:20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218	45오56**	주*회*라*프*스*리*(*|*E*A*K*R*A*O*,*t*)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7-18 16:09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19	213버14**	주*회*해*프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8-08 09:4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20	06부04**	주*회*제*앤*이*파*너*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21 08:3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21	146오38**	주*회*키*크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8-06 09:08	화랑로	50,000
222	67너06**	주*회*극*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08 18:58	우장초등학교~화곡역	50,000
223	197호39**	(*)*익*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7-09 17:2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24	192호71**	에*케*(*K*주*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5-07-28 18:25	삼각지교차로~전자상가입구교차로	50,000
225	36라98**	(*)*앤*이*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25 07:21	대치역~도곡역	50,000
226	163조36**	주*회*케*웨*브*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30 13:0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27	83버53**	중*엔*니*링*식*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07-09 08:53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50,000
228	45오56**	주*회*라*프*스*리*(*I*E*A*K*R*A*O*,*I*)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7-31 11:2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29	331노91**	(*)*이*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8-01 01:40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230	93머37**	대*토*주*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7-31 08:27	용화여고~노원역	50,000
231	63조27**	백*훈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8-05 17:3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32	92도10**	하*통*주*회*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8-06 15:29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33	238보78**	주*회*소*기*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28 17:41	하계5.6단지앞	50,000
234	171하52**	빅*데*터*식*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31 17:5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35	150보29**	주*회*비*비*얼*펙*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08-06 08:22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236	81노66**	(*)*보*지*어*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7-21 08:27	상계11.13단지교차로~ 마들역	50,000
237	87보51**	주*회*백*디*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7-16 15:0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38	68도16**	(*)*민*축*사*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04 19:1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61	50,000
239	68도16**	(*)*민*축*사*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15 16:59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81-3	50,000
240	171하52**	빅*데*터*식*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23 17:2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41	17부97**	T*O*V*A*I*I*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5-07-25 18:0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42	81도68**	김*정	경기도 의정부시	2025-08-05 17:2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43	274모30**	이*석	경기도 하남시	2025-08-06 13:4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44	177호78**	박*태	경기도 하남시	2025-07-04 05:45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245	101호66**	황*보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6-30 20:50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46	18우85**	유*화	경기도 의정부시	2025-08-07 08:39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47	32다27**	K*M*U*I*A*E*S*N*R*V*C*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5-07-07 08:48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48	161마98**	황*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5-07-17 10:29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49	경기14모88**	김*열	경기도 남양주시	2025-07-09 11:2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60,000
250	80무73**	권*형	경기도 의정부시	2025-07-17 20:1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51	경기37바40**	임*기	경기도 부천시	2025-08-25 07:32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52	32다27**	K*M*U*I*A*E*S*N*R*V*C*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5-07-07 08:46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53	41도86**	조*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7-04 20:25	국제금융로8길	50,000
254	144부11**	J*N*O*G*E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8-01 09:41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255	160허21**	서*준	충청북도 옥천군	2025-06-12 12:00	반포IC상행	50,000
256	152호74**	정*숙	충청북도 음성군	2025-07-10 17:24	압구정로데오역~성수대교	50,000
257	60고71**	A*K*A*H*A*D*L*Z*Z*B*U*S*L*M*E*A*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5-08-01 20:1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58	69오93**	유*기	경기도 시흥시	2025-07-15 20:45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59	26거56**	조*준	경기도 과천시	2025-08-01 18:13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260	42가45**	박*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5-07-29 09:03	고촌IC~개화교	50,000
261	187모49**	홍*기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07-08 20:02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62	103가33**	오*홍	부산광역시 남구	2025-07-23 16:44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63	252우30**	J*N*I*Z*O*	부산광역시 기장군	2025-08-05 20:42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264	54나95**	정*원	대전광역시 서구	2025-08-07 09:45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65	26로17**	윤*영	대전광역시 동구	2025-07-21 15:04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66	220버47**	장*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2025-07-24 14:51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67	191오31**	이*은	경기도 화성시	2025-07-19 11:33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68	258루81**	김*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7-14 09:09	몽촌토성역~ 송파구청교차로	50,000
269	138하72**	김*민	경상남도 양산시	2025-07-14 13:44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70	138하72**	김*민	경상남도 양산시	2025-07-14 13:42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71	175호70**	우*수	경상남도 김해시	2025-07-18 17:42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72	175호70**	우*수	경상남도 김해시	2025-07-18 17:4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273	143호11**	정*섭	경상남도 거제시	2025-08-13 15:31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274	18누24**	김*환	경기도 화성시	2025-08-01 13:45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275	19노43**	양*철	경기도 화성시	2025-07-11 08:44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276	235호70**	김*윤	경기도 광명시	2025-07-21 17:13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277	서울36바19**	조*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5-07-29 20:1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78	19러28**	배*성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5-08-06 10:44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79	서울강북하11**	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5-08-22 17:27	월계1교교차로~하계5,6단지교차로	40,000
280	168우94**	김*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7-29 09:3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81	09조09**	유*택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31 09:23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82	서울31사15**	이*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03 09:57	대치역~도곡역	50,000
283	서울31아66**	최*근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8-01 17:4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84	164조76**	김*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8-24 15:51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9-2 (여의도동)	50,000
285	29버69**	엄*술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5-07-31 10:24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86	03두68**	김*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11 20:42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87	서울31아51**	김*종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7-15 18:22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21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50,000
288	51고26**	김*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8-04 15:10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50,000
289	15주83**	한*희	경기도 양주시	2025-07-07 20:03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90	47루54**	최*동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7-09 09:1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91	50오51**	김*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7-18 19:5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92	서울32자10**	손*현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8-07 09:43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93	19보29**	황*서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2025-07-30 17:46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94	82조60**	이*현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5-07-22 11:50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외방향)	50,000
295	104버36**	박*익	경기도 부천시	2025-07-17 15:18	종로5가~동대문역	50,000
296	177서75**	이*희	인천광역시 서구	2025-07-11 08:37	개화교~개화사거리	50,000
297	01구96**	장*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8-08 10:03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98	811도23**	김*환	경기도 시흥시	2025-07-31 08:33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299	308러43**	L*O*O*G*U*	경기도 시흥시	2025-07-21 09:3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00	119소18**	임*순	경기도 시흥시	2025-07-23 18:09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301	82누09**	이*린	경기도 남양주시	2025-08-01 09:3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302	19우03**	홍*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07-24 19:1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03	29버69**	엄*술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5-07-31 18:49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04	서울32자35**	이*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5-08-19 08:08	압구정역교차로~가로수길교차로	50,000
305	312우36**	오*화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8-08 16:56	압구정역교차로~가로수길교차로	50,000
306	101호48**	진*민	경상북도 칠곡군	2025-06-17 17:4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07	100머96**	이*정	경기도 수원시	2025-07-04 08:28	복정역~장지역	50,000
308	182주59**	정*오	경기도 수원시	2025-08-07 08:5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09	18마40**	정*연	경기도 남양주시	2025-07-22 08:53	sk주유소~육사야구장	50,000
310	39다11**	정*희	경기도 남양주시	2025-08-05 19:03	화랑로	50,000
311	135고31**	이*순	경기도 남양주시	2025-07-10 09:15	삼육대~태릉국제스케이트장	50,000
312	42마11**	진*미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7-10 08:5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13	85더04**	강*구	경기도 광주시	2025-08-29 09:1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14	서울31바56**	한*렬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7-31 17:3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15	서울31바44**	김*흔	경기도 양주시	2025-07-23 17:1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16	309고14**	이*환	경기도 광주시	2025-06-19 18:07	잠원ic~서초ic	50,000
317	179호44**	한*성	경기도 광주시	2025-08-15 10:29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318	58마92**	엄*웅	경기도 광주시	2025-07-14 10:49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319	58마92**	엄*웅	경기도 광주시	2025-07-14 10:50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20	서울32자20**	김*식	경기도 광주시	2025-07-10 13:23	강남소방서앞	50,000
321	121다66**	이*준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6-18 13:26	양재ic~반포ic	50,000
322	221하32**	이*국	경기도 광주시	2025-07-23 19:17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323	23하28**	송*희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5-07-23 19:42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24	149서26**	황*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5-07-25 16:08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325	60더03**	홍*권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8-25 07:43	국립현충원교차로~흑석역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26	서울서초카67**	강*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8-04 12:12	압구정역교차로~성수대교남단교차로	40,000
327	116허60**	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7-15 17:2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28	116허60**	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7-15 18:2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29	70하10**	홍*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7-08 16:49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330	서울38아70**	김*수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8-01 15:55	압구정역~가로수길교차로	50,000
331	256루33**	박*국	경기도 양주시	2025-07-25 05:0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332	53구64**	서*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15 07:36	국립현충원교차로~흑석역	50,000
333	15구36**	신*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7-29 10:45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3 (여의도동)	50,000
334	142호51**	황*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5-08-13 17:43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335	89수05**	조*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8-01 19:38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336	378루66**	박*혁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07 20:20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337	357무78**	장*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25 17:18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338	서울32바87**	정*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7-20 19:26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50,000
339	34소89**	심*섭	경기도 고양시	2025-07-20 16:43	은평지문교~구파발사거리	50,000
340	37머91**	정*관	경기도 양주시	2025-07-08 17:54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341	136노61**	김*영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7-24 19:0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342	28무19**	최*민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7-29 18:37	정의여중입구교차로~도봉보건소교차로	50,000
343	232머88**	유*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8-07 17:1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344	66조84**	임*모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7-23 18:10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345	61우87**	채*묵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27 20:04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46	31보64**	김*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8-19 17:4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47	375누25**	김*희	경기도 고양시	2025-08-26 09:3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48	70부36**	이*자	경기도 광주시	2025-07-17 08:2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60,000
349	05보30**	임*수	경기도 하남시	2025-08-06 06:4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350	302모95**	홍*희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8-01 19:37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351	서울36바12**	신*환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8-05 18:17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352	244다73**	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7-23 19:28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353	06소69**	옥*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8-25 19:1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54	62오79**	진*준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8-19 08:41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3 (여의도동)	50,000
355	58다84**	안*현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5-08-26 08:1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56	05보30**	임*수	경기도 하남시	2025-08-05 06:5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357	51노31**	박*일	경기도 가평군	2025-07-17 20:1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58	서울31아29**	최*식	경기도 하남시	2025-07-30 15:11	성내교	50,000
359	서울31아29**	최*식	경기도 하남시	2025-08-06 19:4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60	100머88**	김*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08 18:51	군자교~군자역	50,000
361	11허84**	최*경	경기도 용인시	2025-05-30 14:21	을지로2가교차로~퇴계로2가교차로	50,000
362	45어89**	김*숙	경기도 용인시	2025-07-19 12:00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363	179허33**	이*홍	경기도 김포시	2025-08-11 18:52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64	90도57**	장*원	경기도 파주시	2025-07-07 11:49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365	370너35**	김*호	경기도 의정부시	2025-08-26 04:2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366	247너52**	김*식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7-15 08:5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67	146호15**	무*마드나시르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5-07-16 18:5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68	25저70**	전*보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7-21 20:48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369	29머61**	최*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7-17 10:49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370	116나86**	김*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7-31 17:50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371	서울중차73**	이*준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7-01 17:53	군자교~군자역	40,000
372	289더72**	박*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8-06 17:4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73	서울31아68**	원*수	경기도 남양주시	2025-08-08 17:30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374	65조14**	오*욱	경기도 고양시	2025-08-05 08:3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75	83주81**	박*희	경기도 고양시	2025-07-03 08:43	종로2가 스타벅스 종각점	50,000
376	146하93**	유*상	경기도 남양주시	2025-07-02 17:0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77	28고07**	김*숙	충청남도 논산시	2025-07-29 15:58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21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50,000
378	39저55**	진*석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8-07 18:51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379	05더71**	S*N*S*E*G*U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07-28 20:0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80	01라94**	J*N*U*J*E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8-05 17:53	국립현충원교차로~흑석역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81	19버14**	김*향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8-08 20:40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382	374러52**	이*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8-01 20:42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83	62주73**	이*훈	경기도 시흥시	2025-08-05 08:09	우장산역교차로~명덕여고사거리	50,000
384	19무05**	김*자	경기도 의왕시	2025-08-04 12:56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385	165허68**	임*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6-30 20:1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86	서울31아33**	정*용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8-05 19:03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387	서울31사55**	박*근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8-06 14:43	잠실3사거리	50,000
388	56라56**	전*행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7-11 13:48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389	서울31자51**	신*기	경기도 하남시	2025-07-07 15:38	잠실3사거리~잠실새내역	50,000
390	176마91**	송*준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30 17:49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391	167하42**	김*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11 14:50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392	67도01**	이*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8-13 09:4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93	88머93**	최*환	경기도 용인시	2025-07-29 18:22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94	173러29**	김*진	경기도 김포시	2025-08-08 20:34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95	309고30**	서*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5-08-06 07:41	개화동로(김포공항방면)	50,000
396	인천32바18**	김*권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5-07-11 19:53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97	25보09**	김*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5-06-28 17:52	한성대입구역 교차로	50,000
398	서울38아53**	이*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7-15 17:1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99	144저61**	유*석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22 19:25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400	경기89사25**	김*환	경기도 시흥시	2025-08-06 14:28	압구정로데오역~성수대교	50,000
401	29하94**	이*열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7-23 14:46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402	119누11**	함*현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8-03 11:28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403	238로93**	D*V*S*L*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5-08-04 12:32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404	238로93**	D*V*S*L*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5-08-04 12:33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405	238로93**	D*V*S*L*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5-08-04 12:34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06	164마10**	김*준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5-07-30 18:31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407	236모72**	K*M*E*E*A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5-08-07 16:29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408	236모72**	K*M*E*E*A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5-08-07 16:3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409	321부10**	F*N*M*I*I*N*	경기도 시흥시	2025-07-28 08:03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410	53수81**	강*석	경기도 고양시	2025-08-11 13:47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411	01더12**	황*성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8-08 20:07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412	45주72**	S*N*I*G*U*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11 18:04	노원구민회관교차로~중계근린공원교차로	50,000
413	08보14**	채*희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8-08 17:1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414	06머05**	이*환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8-14 17:30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415	53소61**	R*K*M*T*V*U*H*O*A*I*U*L*	경기도 성남시	2025-08-03 17:05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416	65더77**	Y*N*O*E*	경기도 고양시	2025-08-18 20:4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417	65더77**	Y*N*O*E*	경기도 고양시	2025-08-21 20:4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418	370수64**	김*슬	경기도 고양시	2025-08-26 07:33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419	130호22**	안*희	경기도 남양주시	2025-07-16 09:03	서울여대~화랑대사거리	50,000
420	46어94**	L*J*N*Z*U	경기도 고양시	2025-07-08 18:52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421	84보59**	류*자	경기도 수원시	2025-07-29 17:06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422	192하10**	김*수	경기도 수원시	2025-08-07 09:0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423	252다75**	박*영	경기도 고양시	2025-08-07 15:1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424	69더45**	박*호	경기도 수원시	2025-07-14 08:13	개화교	50,000
425	255수50**	김*철	경기도 고양시	2025-07-16 20:50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426	258서65**	한*법	경기도 고양시	2025-07-18 08:0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427	36라76**	정*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7-25 14:24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428	33하94**	박*영	경기도 수원시	2025-07-11 12:5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429	서울31사42**	정*복	경기도 고양시	2025-07-25 20:07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430	288부76**	박*범	경기도 고양시	2025-08-13 15:19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431	서울31자34**	정*욱	경기도 성남시	2025-08-13 08:1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32	014다64**	박*창	경기도 성남시	2025-07-28 16:56	강남소방서앞	60,000
433	서울31사48**	김*태	경기도 성남시	2025-07-31 18:33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434	295루82**	손*경	경기도 고양시	2025-08-05 10:44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435	03누02**	유*수	경기도 고양시	2025-07-31 20:4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436	23너38**	P*N*M*R*E*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8-29 19:3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437	141오71**	홍*석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7-25 08:1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438	14소12**	김*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8-01 17:3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439	경기96자90**	정*규	경기도 화성시	2025-08-07 07:41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440	177호56**	최*철	경기도 의정부시	2025-06-24 20:1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41	경기83사79**	심*섭	경기도 부천시	2025-07-18 08:2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42	168거50**	오*준	경기도 부천시	2025-08-09 10:31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443	경기83사79**	이*우	경기도 부천시	2025-07-25 07:06	여의도동 여의도 하이투자증권	50,000
444	145주52**	박*영	경기도 남양주시	2025-08-13 17:41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445	282마16**	임*수	경기도 남양주시	2025-08-05 18:4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446	54구84**	문*선	경기도 시흥시	2025-07-16 11:20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447	16더88**	A*A*I*A*A*A*I*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5-07-08 21:14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448	56도61**	김*정	인천광역시 서구	2025-07-31 07:42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449	184오71**	권*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8-07 08:58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450	812우46**	김*환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28 13:2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51	183마83**	김*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25 09:05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452	30오65**	엄*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21 09:31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453	276더15**	백*진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8-13 18:25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454	175허60**	이*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7-14 18:05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455	18보63**	조*순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7-29 15:09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456	43소18**	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8-01 15:21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457	43소18**	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8-01 15:2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458	81소07**	윤*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8-07 13:25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459	93너26**	서*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7-03 18:04	영등포역교차로~영등포로터리	50,000
460	35오27**	김*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7-16 17:3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461	35오27**	김*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7-16 16:0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462	18보63**	조*순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7-25 08:14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463	43소18**	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8-01 15:23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464	서울32바69**	김*성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7-14 07:20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465	359주74**	김*철	경기도 용인시	2025-07-24 19:42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466	288노83**	조*형	경기도 용인시	2025-08-06 17:1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467	28거90**	안*근	경기도 김포시	2025-07-09 09:27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468	240다66**	노*화	경기도 광주시	2025-08-18 20:3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469	199도48**	윤*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5-07-30 08:48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470	인천84바38**	한*섭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5-08-26 09:50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471	02어01**	김*종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5-08-14 09:39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472	82로52**	최*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2025-07-12 08:00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50,000
473	91거89**	김*수	경기도 하남시	2025-08-06 08:5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74	서울광진하85**	김*수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6-13 14:33	장한평역~군자역	40,000
475	서울88바65**	이*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18 08:5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476	23너33**	김*옥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8-04 18:2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477	18다78**	박*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09 07:39	대치역~도곡역	50,000
478	서울35아16**	최*민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7-08 09:16	개화교~개화사거리	50,000
479	166거24**	김*래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10 17:18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480	18가71**	강*환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7-08 09:1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50,000
481	63노62**	정*훈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8-14 08:59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482	146하95**	김*돈	경기도 하남시	2025-07-08 06:33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483	125호77**	홍*웅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05 12:46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484	서울32바73**	박*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7-29 20:27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485	57호97**	W*N*U*L*A*G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6-29 10:17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486	55너59**	정*수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8-03 14:20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487	55너59**	정*수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8-10 14:20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488	149호12**	나*훈	경기도 파주시	2025-07-25 07:19	개화동로(김포공항방면)	50,000
489	22다63**	박*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7-16 09:18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490	255조18**	조*채	경기도 부천시	2025-07-02 12:26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491	02나65**	D*C*S*A*D*O*E*E*O*E	경기도 평택시	2025-07-20 09:15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492	37마09**	배*진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8-14 09:4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93	105하65**	J*N*I*N*U*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28 15:5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94	24노40**	K*M*A*U*L*O*N*S*P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21 08:5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95	63나81**	정*영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8-01 18:0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496	32다92**	박*경	경기도 평택시	2025-07-25 17:2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97	02나65**	D*C*S*A*D*O*E*E*O*E	경기도 평택시	2025-07-13 20:41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498	02나65**	D*C*S*A*D*O*E*E*O*E	경기도 평택시	2025-07-20 09:16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499	27저06**	김*우	경기도 남양주시	2025-07-18 18:5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500	230우12**	채*수	경기도 파주시	2025-07-22 18:0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501	843소13**	정*철	경기도 하남시	2025-08-04 11:27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502	24구38**	변*운	경기도 의정부시	2025-07-11 09:26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503	29더44**	성*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08-07 08:12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504	138모73**	최*영	대전광역시 동구	2025-07-25 15:23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505	62소04**	임*대	대전광역시 대덕구	2025-08-02 17:43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506	62소04**	임*대	대전광역시 대덕구	2025-08-02 17:44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507	43노34**	조*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8-04 19:31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508	서울노원차89**	전*식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24 17:58	논현역교차로	40,000
509	133하88**	L*S*O*E*M*R*U*N	경상북도 경주시	2025-07-29 18:2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510	294고22**	C*O*U*N*A*H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15 17:2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511	서울80배93**	김*호	대구광역시 서구	2025-07-02 13:26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여의도동)	50,000
512	서울성북나67**	정*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7-21 13:42	종로3가역~종로4가교차로	40,000
513	263조26**	한*희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8-27 09:1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514	35더58**	장*원	경상남도 진주시	2025-08-08 09:00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515	133하88**	L*S*O*E*M*R*U*N	경상북도 경주시	2025-07-29 18:25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516	133하88**	L*S*O*E*M*R*U*N	경상북도 경주시	2025-07-29 16:00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517	서울32자20**	정*수	경기도 의정부시	2025-07-14 09:10	태릉~ 서울여대	50,000
518	133하88**	L*S*O*E*M*R*U*N	경상북도 경주시	2025-07-29 15:5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519	42너81**	박*철	경기도 하남시	2025-07-23 19:4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520	서울32사70**	김*관	경기도 부천시	2025-07-30 19:5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521	71더21**	서*준	경기도 부천시	2025-07-11 18:50	개화동 영신PVC 상사	60,000
522	04수02**	한*환	경기도 부천시	2025-07-23 17:5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523	서울32사30**	김*오	경기도 의정부시	2025-08-01 18:36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524	224두21**	유*애	경기도 의정부시	2025-08-06 20:1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525	22가52**	임*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8-22 16:36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526	29조25**	이*진	충청남도 아산시	2025-08-19 13:06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527	61버17**	전*진	경기도 남양주시	2025-07-22 18:01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528	183서43**	김*연	경기도 김포시	2025-07-12 17:2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529	149허67**	조*비	경기도 부천시	2025-07-17 18:3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530	139부60**	정*진	경기도 화성시	2025-08-01 20:1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531	50어14**	A*D*B*A*D*L*A*M*N	경기도 화성시	2025-08-24 10:35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532	819모26**	고*연	경기도 화성시	2025-07-09 10:01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533	29조25**	이*진	충청남도 아산시	2025-08-19 13:07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534	46소47**	이*국	경기도 남양주시	2025-08-04 10:37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535	29조25**	이*진	충청남도 아산시	2025-08-19 13:08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536	서울32사74**	박*종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5-07-23 14:10	압구정역~가로수길교차로	50,000
537	843모84**	하*현	대구광역시 달서구	2025-07-20 16:25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외방향)	50,000
538	18머92**	박*열	대구광역시 달성군	2025-07-10 17:13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539	161다33**	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07-10 19:2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540	69서44**	이*연	경기도 안양시	2025-08-12 12:20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541	21무27**	박*식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8-22 08:21	천호대교	50,000
542	87두92**	안*희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5-08-08 17:51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543	61고47**	이*철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5-08-22 18:3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544	73수43**	이*달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5-07-23 07:53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60,000
545	62루71**	김*석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8-03 17:35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35 (성산동)	50,000
546	경기48바54**	이*현	경기도 구리시	2025-07-18 08:1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547	70우71**	이*옥	경기도 양평군	2025-07-24 07:5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60,000
548	12다66**	이*우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7-24 19:19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549	259가16**	최*	경기도 안양시	2025-08-22 11:01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550	경기98아40**	박*원	경기도 오산시	2025-08-13 21:28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60,000
551	서울은평파65**	양*욱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5-08-25 17:41	동산육교~구파발사거리	40,000
552	서울31자11**	김*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5-08-18 13:05	한신상가앞	50,000
553	825도43**	전*규	경기도 광주시	2025-08-18 14:2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554	242주68**	김*연	경기도 오산시	2025-08-08 08:1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555	60버19**	김*남	경기도 오산시	2025-07-16 07:50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556	경기37바44**	김*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2025-08-17 08:51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557	67조62**	박*영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8-16 12:38	도봉구민회관앞	50,000
558	192호38**	이*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7-08 16:54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559	348오78**	공*태	경상북도 경주시	2025-08-20 11:11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560	327구86**	차*경	경기도 용인시	2025-08-01 12:41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561	247부18**	J*N*O*G*I*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8-01 16:11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562	309보43**	배*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8-01 11:47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563	305가49**	김*수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8-01 08:3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564	34오89**	안*선	경기도 포천시	2025-07-31 10:16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565	193하88**	N*T*A*A*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5-07-31 10:51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566	46고65**	주*돈	경기도 안양시	2025-08-26 19:48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567	32버63**	박*활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8-04 17:4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568	146우30**	김*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8-20 17:13	개화역~개화사거리	50,000
569	36호60**	G*O*I*G*U*	경기도 안산시	2025-08-02 11:01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570	85다14**	신*철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5-07-15 17:48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571	서울81배53**	윤*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08-26 07:16	연희ic~연세대교차로	50,000
572	221호99**	박*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08-01 20:0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573	229하71**	김*영	부산광역시 서구	2025-06-11 18:55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574	229하71**	김*영	부산광역시 서구	2025-06-11 18:56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575	87두92**	안*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5-08-08 17:5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576	296부67**	이*미	경기도 광주시	2025-08-05 12:27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577	125주84**	안*미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8-28 17:39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578	146루34**	이*현	경기도 양주시	2025-08-12 20:4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579	06오98**	이*은	경기도 수원시	2025-08-07 15:53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580	06오98**	이*은	경기도 수원시	2025-08-07 15:5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581	06오98**	이*은	경기도 수원시	2025-08-07 15:54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582	16마84**	서*한	부산광역시 동구	2025-08-07 08:21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583	64도60**	정*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8-04 16:21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3 (여의도동)	50,000
584	33모85**	설*미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8-05 17:19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585	233호92**	이*아	경기도 안양시	2025-07-28 19:23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586	45러86**	설*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7-29 09:25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의도동)	50,000
587	64다08**	조*영	경기도 남양주시	2025-07-28 18:52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588	193하88**	N*T*A*A*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5-07-29 10:1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589	35가75**	이*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8-04 20:06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590	21모53**	문*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08-04 18:45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591	27모92**	장*식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8-25 09:36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592	232도64**	이*성	경기도 의정부시	2025-08-07 09:29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593	85모08**	이*구	경기도 하남시	2025-08-29 08:2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594	178누43**	정*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8-28 20:25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595	43러76**	최*주	경기도 군포시	2025-08-06 20:3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596	18고07**	김*주	경기도 안양시	2025-08-06 15:5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597	288너60**	이*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8-06 17:1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598	162소58**	서*옥	경기도 하남시	2025-08-26 08:4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599	서울32자43**	김*윤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5-08-26 09:19	박석고개교차로~은평성모병원사거리	50,000
600	184두72**	김*영	경기도 의정부시	2025-08-29 08:47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601	145하13**	김*임	경기도 남양주시	2025-08-05 09:4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602	842도11**	이*열	경기도 광주시	2025-08-20 20:0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603	88모32**	이*행	경기도 양평군	2025-08-12 18:35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604	서울31자51**	염*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8-04 16:23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605	19서12**	서*희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8-04 18:37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606	50오56**	서*배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8-01 17:41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607	26누27**	김*수	경기도 광주시	2025-08-01 09:36	강남소방서앞	50,000
608	서울38아35**	김*열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8-01 08:3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609	299주17**	임*래	충청남도 부여군	2025-07-09 13:4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08	50,000
610	20루77**	서*석	경기도 남양주시	2025-07-15 17:32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611	176호35**	나*주	경기도 화성시	2025-06-25 16:27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612	106오37**	이*진	경기도 화성시	2025-07-11 10:0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613	56가96**	차*현	경기도 화성시	2025-07-31 18:5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614	서울31바25**	김*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8-01 20:1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615	243조51**	정*광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8-04 09:01	태릉~화랑대사거리	50,000
616	332고43**	정*식	경기도 광주시	2025-08-31 15:48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617	125호31**	김*철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5-08-01 16:04	압구정역~가로수길교차로	50,000
618	196수17**	이*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8-24 16:43	영등포역~영등포로터리	50,000
619	76나12**	박*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8-08 08:1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60,000
620	309더72**	최*기	대구광역시 북구	2025-07-18 17:18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621	서울38아70**	배*화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08-01 17:1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622	경기83사83**	김*오	경기도 부천시	2025-08-11 20:21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623	332노10**	김*수	경기도 하남시	2025-08-08 18:5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624	40부43**	김*태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24 07:52	국립현충원~흑석역	50,000
625	서울31사24**	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07-15 09:30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626	67저75**	이*석	경상북도 구미시	2025-08-14 20:32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627	128하26**	정*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5-07-17 17:2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628	11거86**	유*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5-07-22 18:2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629	25로99**	이*원	경기도 광주시	2025-07-08 09:25	태릉~화랑대사거리	50,000
630	36마69**	최*호	경기도 광주시	2025-08-25 15:3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631	308어71**	오*진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8-22 09:4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632	서울32자60**	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8-13 19:25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633	65오06**	이*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07-15 09:36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634	77러21**	윤*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07-10 12:22	천호대교	60,000
635	서울38아30**	오*열	경기도 양주시	2025-08-04 09:43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636	66저88**	이*수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7-23 17:14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637	서울85자65**	문*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7-28 15:27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06 (신사동)	50,000
638	339구94**	이*근	경기도 남양주시	2025-08-22 20:0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639	48무79**	김*길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7-14 17:2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640	322로83**	안*진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7-31 17:3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641	80주96**	조*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07-17 09:28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642	125호56**	나*섭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7-31 17:43	시흥대로 중앙철재종합상가앞	50,000
643	서울32자51**	유*림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7-30 20:49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644	234소16**	김*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8-21 10:35	한신상가앞	50,000
645	50서85**	채*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8-20 16:5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646	97어01**	정*철	경기도 광주시	2025-08-20 08:27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647	185주75**	신*식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08-01 18:35	은천삼거리~봉천로사거리	50,000
648	04마68**	남*경훈	경기도 동두천시	2025-07-29 19:2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649	80주96**	조*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07-09 09:45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여의도동)	50,000
650	01도76**	김*중	경기도 안산시	2025-08-06 15:24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651	55오86**	김*민	경기도 안산시	2025-07-15 08:3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652	194라38**	장*랑	경기도 안양시	2025-07-25 17:4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653	경기81자59**	고*순	경기도 남양주시	2025-07-07 09:3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654	31가01**	고*경	경기도 김포시	2025-07-08 08:08	고촌IC~ 개화교	50,000
655	04마68**	남*경훈	경기도 동두천시	2025-07-09 19:22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656	80오66**	윤*일	경기도 남양주시	2025-07-24 09:01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657	경기84배27**	천*진	경기도 의정부시	2025-07-21 09:36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658	82구19**	서*원	경상남도 함안군	2025-07-17 16:34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659	24구70**	한*석	경기도 군포시	2025-07-16 13:5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660	116허78**	윤*람	경기도 용인시	2025-07-22 17:14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661	39두60**	V*L*A*U*V*V*L*R*A	경기도 용인시	2025-07-23 11:2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662	101하13**	권*철	경기도 동두천시	2025-06-20 18:3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663	154호91**	김*리	경기도 의정부시	2025-07-15 12:26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664	54서05**	강*심	경기도 의정부시	2025-07-22 17:54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665	82구19**	서*원	경상남도 함안군	2025-07-17 16:3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666	246부18**	정*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8-05 18:41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667	54주01**	전*빈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6-25 10:41	서초IC~반포IC	50,000
668	269너19**	서*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7-16 18:19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669	46러08**	김*용	경상북도 경주시	2025-08-07 20:00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670	339라12**	김*열	경상북도 김천시	2025-08-06 09:2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671	227서42**	류*동	경상북도 성주군	2025-07-14 10:40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672	25조03**	안*남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5-08-02 05:41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673	19두91**	이*현	경기도 하남시	2025-08-25 07:28	몽촌토성역~ 송파구청교차로	50,000
674	10무07**	윤*임	경기도 안산시	2025-08-06 11:09	장지동 장지역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675	139서59**	이*백	경기도 시흥시	2025-07-07 16:45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676	54다59**	현*우	경기도 안산시	2025-08-02 09:38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3 (여의도동)	50,000
677	282노83**	이*	경기도 안산시	2025-07-30 08:4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678	53소60**	C*I*H*N*U*	경기도 안산시	2025-07-15 19:4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679	53소60**	C*I*H*N*U*	경기도 안산시	2025-07-15 19:44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680	18다34**	L*Y*N*G*N*	경기도 안산시	2025-07-23 16:44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외방향)	50,000
681	82구19**	서*원	경상남도 함안군	2025-07-17 16:36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682	78우65**	L*X*A*G*I	경기도 안산시	2025-07-21 16:17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60,000
683	249주58**	J*N*O*G*U*	경기도 안산시	2025-07-12 06:38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50,000
684	24너94**	G*T*A*U*E*A*I*D*T*A*A*G*	경기도 김포시	2025-08-01 23:37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685	61수08**	김*형	경기도 의왕시	2025-08-14 20:39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686	19러35**	정*인	경상남도 진주시	2025-08-29 19:57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687	61더40**	최*철	경상남도 창원시	2025-07-15 09:09	미아역~수유사거리	50,000
688	31소74**	박*자	경상남도 함안군	2025-07-21 17:1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689	291저84**	C*I*H*N*N*N	경기도 시흥시	2025-07-26 12:24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690	257버93**	윤*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25 14:54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691	52노73**	이*행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5-07-24 10:16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692	10주77**	김*경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5-08-15 12:06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693	28너78**	강*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7-19 19:14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694	179하62**	강*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10 17:1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695	59소61**	안*남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07-15 09:4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696	156허48**	정*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08-16 11:57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697	27더25**	박*웅	경기도 오산시	2025-08-01 19:5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698	196오95**	이*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7-23 17:33	하계역교차로~하계5,6단지교차로	50,000
699	257버93**	윤*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25 14:55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700	31우09**	김*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5-07-29 19:2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701	65고54**	정*민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8-29 17:31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702	102누99**	허*정	경기도 하남시	2025-08-19 09:0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703	261부69**	전*수	대구광역시 달성군	2025-08-19 09:1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704	134다66**	한*	경기도 오산시	2025-08-06 13:17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705	48다04**	이*범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8-06 08:38	서울 서초구 잠원로 148 (잠원동, 잠원연합상가)	50,000
706	22도65**	최*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08-19 18:4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707	193하88**	N*T*A*A*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5-07-24 11:38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708	64도60**	정*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7-26 11:02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50,000
709	81러71**	한*랑	경기도 파주시	2025-07-16 20:4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710	139무55**	강*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25-08-13 19:4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711	231하41**	H*A*G*A*I*G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7-30 19:2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712	146하97**	이*찬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7-03 09:4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713	113모39**	L*E*A*A*H*O*U*G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5-07-13 10:00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5 (여의도동)	50,000
714	119서99**	S*N*U*E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2025-07-27 23:11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715	193하88**	N*T*A*A*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5-07-22 10:17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716	193하88**	N*T*A*A*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5-07-25 10:1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717	221수90**	이*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8-02 11:49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3 (여의도동)	50,000
718	175누91**	윤*영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8-14 11:3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719	25구62**	장*은	전라남도 장성군	2025-08-14 12:12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720	43라84**	K*M*I*I*L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5-07-18 17:00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721	43라84**	K*M*I*I*L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5-07-14 17:49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722	21머43**	최*훈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7-07 18:5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723	95어58**	강*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8-07 20:0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724	서울31바46**	황*덕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5-08-18 18:03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725	34어94**	강*녀	경기도 광주시	2025-08-08 07:1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726	19무71**	조*경	경기도 군포시	2025-08-05 18:3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727	104모39**	이*우	경기도 포천시	2025-08-05 19:1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728	130라55**	이*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7-22 14:30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729	08누56**	이*석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7-15 09:28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730	388서90**	성*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8-19 18:11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731	인천30바15**	김*달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5-07-25 09:21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732	68로93**	이*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07-21 19:3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733	179수50**	이*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07-18 17:59	삼각지역~신용산역 방향	50,000
734	315보43**	이*수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5-08-05 20:2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735	01누03**	김*한	경기도 양주시	2025-07-15 18:20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736	103가33**	오*홍	부산광역시 남구	2025-07-23 16:4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737	170루99**	조*집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7-07 09:14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738	29저40**	이*주	경기도 남양주시	2025-08-07 20:26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739	154호44**	김*식	경기도 파주시	2025-06-30 11:5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740	16소64**	김*영	경기도 김포시	2025-07-11 17:44	개화교~개화사거리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741	196하87**	신*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025-07-18 20:48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742	09주38**	유*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8-18 17:2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743	337우12**	C*I*H*N*I	경기도 시흥시	2025-07-15 08:4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744	86저05**	장*	경기도 안산시	2025-07-18 09:1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745	92어65**	서*호	경기도 안양시	2025-07-14 08:45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746	서울31자66**	한*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7-14 13:06	종합운동장사거리~잠실새내역	50,000
747	01버05**	서*문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5-07-22 15:3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748	152누10**	강*자	경기도 의정부시	2025-07-21 08:26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749	46구38**	송*숙	경기도 의정부시	2025-07-10 08:05	상계15단지앞	50,000
750	59모56**	조*방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25 19:1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751	212고72**	황*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7-14 18:50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752	서울89자11**	하*훈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7-08 10:29	논현역~신사역	50,000
753	837보11**	유*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5-08-25 08:0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754	서울32자47**	최*옥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7-08 08:38	강동구청역~풍납사거리	50,000
755	291저84**	C*I*H*N*N*N	경기도 시흥시	2025-07-26 12:2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756	24마45**	조*태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7-29 19:08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757	53러59**	김*숙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5-07-02 09:54	연신내역~구산역	50,000
758	46주47**	홍*수	경기도 성남시	2025-08-18 14:23	천호대교~광장사거리	50,000
759	60우63**	김*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5-07-10 16:30	연희ic~연세대교차로	50,000
760	서울89자33**	길*완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7-16 21:25	홍은동 북한산 더샵아파트(시외방향)	50,000
761	172하30**	김*출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5-08-17 08:28	연세대앞	50,000
762	33러58**	김*훈	경기도 용인시	2025-08-04 08:4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763	223허79**	황*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5-06-30 18:2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764	29하64**	강*원	경기도 여주시	2025-08-06 09:0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765	33너77**	유*임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2025-08-06 09:40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766	35로24**	이*남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07-17 11:04	영등포구 롯데캐슬엠파이어 앞	50,000
767	64나68**	이*진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08-02 20:23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768	78구25**	강*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07-07 10:06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769	서울강남너37**	유*희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06-14 14:28	논현역~신사역	40,000
770	291저84**	C*I*H*N*N*N	경기도 시흥시	2025-07-26 12:23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771	13두80**	채*석	경기도 파주시	2025-07-30 13:14	수색동 경의중앙선 수색역1번출구 공영주차장	50,000
772	327러11**	선*영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8-22 20:44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773	05무10**	최*석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7-10 20:1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774	서울32바92**	김*춘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7-09 18:47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775	서울31자15**	조*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11 09:05	월계1교~하계5-6단지 교차로	50,000
776	56두32**	홍*표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28 15:4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777	815두25**	김*식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12 17:3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778	322서74**	경*주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8-05 17:49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779	83모19**	권*숙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7-02 10:06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9-2 (여의도동)	50,000
780	69도58**	김*빈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8-19 17:1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781	253모16**	김*선	전라남도 화순군	2025-07-17 10:38	성수대교남단교차로~압구정역교차로	50,000
782	244로99**	김*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7-23 17:1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783	11주33**	김*숙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7-24 09:28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784	11주33**	김*숙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7-24 09:17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785	194호70**	장*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8-22 10:5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786	서울31사77**	이*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8-22 20:5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787	서울31사71**	정*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31 08:42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788	09나28**	김*규	대전광역시 유성구	2025-08-21 15:20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789	157어97**	양*오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8-06 19:35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790	97가38**	김*림	경기도 고양시	2025-08-30 15:24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791	38수84**	김*기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5-08-31 15:3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792	810서29**	정*규	경기도 시흥시	2025-08-20 16:01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08 (여의도동)	50,000
793	서울38아61**	최*영	경기도 부천시	2025-08-18 08:49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794	395다24**	이*미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8-13 19:16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795	83주86**	금*호	경기도 의정부시	2025-08-29 08:08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796	55부96**	채*묵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8-14 20:26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797	22너74**	서*석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08-13 07:11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798	서울32자23**	이*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8-12 20:47	영등포구 샛강역 1번출구 앞	50,000
799	48로91**	신*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8-13 20:0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800	81두65**	한*수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2025-08-18 19:09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801	86로15**	박*극	경기도 고양시	2025-08-11 12:08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802	41모70**	김*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08-11 07:34	강남소방서앞	50,000
803	29저62**	이*식	경기도 군포시	2025-08-27 16:50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804	60머62**	나*엽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7-30 08:4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805	49모47**	최*구	경기도 고양시	2025-08-21 19:2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806	52무69**	김*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5-07-12 19:5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807	72조33**	박*욱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5-08-08 08:02	강남소방서앞	60,000
808	386고22**	김*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25-08-08 20:15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809	22로84**	이*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8-08 07:1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810	인천30바32**	조*남	인천광역시 서구	2025-08-01 09:44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811	85어04**	임*자	인천광역시 서구	2025-07-07 07:5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812	160라86**	이*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7-29 13:44	청량리역~경동시장사거리	50,000
813	174주70**	최*석	경기도 김포시	2025-08-18 20:44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814	경기93자36**	김*성	경기도 김포시	2025-07-31 16:0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815	323소40**	김*숙	경기도 성남시	2025-07-22 12:33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816	서울32바62**	김*수	경기도 성남시	2025-08-05 15:16	종합운동장사거리~잠실새내역교차로	50,000
817	62우38**	전*민	경기도 성남시	2025-08-06 19:01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818	81부55**	이*섭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7-07 08:1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819	50나18**	한*훈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7-23 18:34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820	136가33**	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2025-08-27 09:3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821	30도10**	이*희	경기도 고양시	2025-07-23 08:1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822	서울32자15**	주*수	서울특별시 중구	2025-07-02 13:39	종합운동장교차로~종합운동장역	50,000
823	51거30**	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2025-08-05 16:09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7 (여의도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삼부아파트)	
824	155호65**	윤*재	광주광역시 남구	2025-07-31 20:50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825	서울31사39**	이*종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8-13 17:35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826	810서69**	이*옥	인천광역시 서구	2025-08-10 10:03	영등포구 샛강역 1번출구 앞	50,000
827	인천30바71**	서*섭	인천광역시 서구	2025-08-08 18:00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828	96두89**	이*영	인천광역시 서구	2025-08-04 17:12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829	331러76**	민*기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8-11 08:42	올림픽대교남단교차로~올림픽회관교차로	50,000
830	49머64**	박*신	인천광역시 중구	2025-07-11 20:1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831	146하96**	김*국	인천광역시 중구	2025-07-04 09:50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832	72거16**	김*언	전라남도 신안군	2025-07-28 07:13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833	서울31아25**	홍*석	경기도 김포시	2025-08-01 10:45	종합운동장교차로~종합운동장사거리	50,000
834	경기06소74**	함*수	경기도 김포시	2025-07-10 09:36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60,000
835	296다40**	조*	경기도 김포시	2025-08-28 08:01	고촌IC~ 개화교	50,000
836	85조07**	이*형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8-06 14:57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837	60머62**	나*엽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7-25 08:3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838	36더52**	조*희	경기도 의정부시	2025-08-29 18:29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839	389다97**	박*진	광주광역시 서구	2025-08-07 10:0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840	인천83바42**	양*준	인천광역시 서구	2025-07-09 09:55	경문고교교차로~이수역사거리	50,000
841	64부33**	J*M*N*V*H*S*N*A*O*U*O*I*H	충청남도 아산시	2025-07-28 12:1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842	64부33**	J*M*N*V*H*S*N*A*O*U*O*I*H	충청남도 아산시	2025-07-28 12:14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843	178고73**	권*기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8-31 15:36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844	358버93**	김*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5-08-22 18:12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845	239너68**	김*준	경기도 성남시	2025-08-11 07:37	장지교교차로	50,000
846	339로51**	최*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8-13 18:44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847	167조35**	김*경	경기도 의정부시	2025-08-21 17:1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848	357가40**	송*기	경기도 고양시	2025-08-13 07:30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849	30버50**	박*훈	경기도 파주시	2025-08-20 08:14	고촌IC~ 개화교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850	서울중파88**	K*A*A*O*O*B*K*L*S*E*U*L*	서울특별시 종로구	2025-08-11 09:35	종로4가교차로~청계4가교차로	40,000
851	38나03**	S*T*I*U	경기도 김포시	2025-07-09 08:38	개화교~개화사거리	50,000
852	38나03**	S*T*I*U	경기도 김포시	2025-08-28 08:57	고촌IC~개화교	50,000
853	53머94**	이*진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8-09 11:14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854	264더23**	하*빈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8-01 19:48	국립현충원~흑석역	50,000
855	116허71**	김*영	경기도 고양시	2025-07-04 17:55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856	05다38**	신*구	경기도 파주시	2025-07-10 08:59	삼양입구사거리~미아역	50,000
857	51보16**	이*규	전라남도 고흥군	2025-08-08 08:23	온수골사거리~노원역	50,000
858	23다65**	유*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8-02 23:13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외방향)	50,000
859	58모23**	서*미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7-29 18:34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860	36더25**	J*N*I*G*U*N*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7-25 17:06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861	31나92**	김*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7-08 09:2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862	47나64**	김*완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07-11 18:36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863	68다87**	강*화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8-06 08:23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864	22소77**	김*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7-22 18:5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865	122하84**	오*현	서울특별시 은평구	2025-07-16 18:1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866	30버01**	박*훈	경기도 양주시	2025-07-31 13:33	종로2가 스타벅스 종각점	50,000
867	66가34**	이*옥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7-29 08:0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868	서울31아27**	윤*원	경기도 고양시	2025-07-11 09:4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869	123노27**	J*N*U*E*	경기도 고양시	2025-07-23 18:2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870	268모63**	이*용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8-01 17:51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871	서울32사13**	김*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8-07 17:3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872	63구32**	안*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07-30 20:4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873	13우77**	최*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25-07-26 12:49	영등포역~ 영등포로터리	50,000
874	123어32**	김*수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8-14 14:13	염창역~등촌역사거리	50,000
875	41로43**	이*복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8-01 20:4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876	92부33**	임*빈	경기도 남양주시	2025-08-03 18:42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877	805더41**	최*희	경기도 남양주시	2025-08-21 18:5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878	150로27**	김*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08-22 08:0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879	62두97**	김*식	경기도 수원시	2025-08-07 12:2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880	807노65**	장*윤	경기도 수원시	2025-07-24 13:2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881	142호19**	정*모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7-21 17:3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882	229하28**	방*문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8-07 18:14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883	30소80**	최*석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07-11 10:3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884	58우72**	김*현	인천광역시 강화군	2025-07-24 20:30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885	274마59**	정*철	인천광역시 강화군	2025-08-25 20:36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886	36루58**	안*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2025-07-28 16:10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887	14다74**	홍*용	경기도 고양시	2025-08-04 07:33	개화교~개화사거리	50,000
888	42구90**	박*준	경기도 남양주시	2025-08-01 18:0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889	34마67**	Z*A*P*N*C*E*G	경기도 남양주시	2025-07-12 23:2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890	377부83**	조*진	경기도 남양주시	2025-07-15 09:02	태릉~ 서울여대	50,000
891	57고49**	김*주	경기도 남양주시	2025-08-05 10:25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892	30구22**	B*O*P*A*H*M*A*K*I*	충청남도 아산시	2025-07-25 17:4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893	64부33**	J*M*N*V*H*S*N*A*O*U*O*I*H	충청남도 아산시	2025-07-28 12:16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894	220보28**	L*D*N*L	충청남도 당진시	2025-08-10 16:41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895	55마36**	양*진	경기도 수원시	2025-08-29 09:30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896	26조46**	정*훈	경기도 수원시	2025-08-05 09:3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897	42수08**	윤*희	경상북도 예천군	2025-08-09 20:15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898	61보17**	조*우	울산광역시 남구	2025-07-10 17:46	한남IC~반포IC	50,000
899	인천94바62**	정*수	인천광역시 강화군	2025-08-07 11:0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900	262어49**	허*식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07-14 09:20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901	267라20**	문*원	인천광역시 서구	2025-08-08 09:50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902	358주41**	권*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8-07 07:40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903	105하30**	최*석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8-04 19:24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904	180러37**	D*O*H*T*U*D*N*	경기도 양주시	2025-08-04 17:3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905	34호78**	김*희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7-19 09:31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906	34호78**	김*희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7-19 09:32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907	서울양천카60**	가*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6-27 19:09	고속터미널교차로	40,000
908	179호28**	김*성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5-07-27 21:19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909	29어31**	최*청	서울특별시 동작구	2025-08-03 20:33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910	220보28**	L*D*N*L	충청남도 당진시	2025-08-10 16:40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911	135너36**	B*X*N*U*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23 10:08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912	32다27**	K*M*U*I*A*E*S*N*R*V*C*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5-07-07 08:45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913	177하13**	이*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8-03 12:34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914	177하13**	이*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5-08-03 12:32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915	27고36**	황*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25-07-23 10:59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916	221하26**	김*정	충청남도 공주시	2025-08-21 18:0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917	220보28**	L*D*N*L	충청남도 당진시	2025-08-10 18:05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918	316거72**	이*영	경기도 남양주시	2025-08-05 08:58	담터1교차로~태릉	50,000
919	34나74**	전*현	인천광역시 중구	2025-08-13 08:1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920	122조76**	황*연	충청남도 태안군	2025-07-22 19:1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921	55소64**	김*나	충청남도 홍성군	2025-08-31 10:42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922	105하30**	최*석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8-12 14:53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923	197하13**	한*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8-12 12:2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924	49우25**	K*R*O*O*S*F*R*O*R*S*A*U*L*	충청북도 청주시	2025-08-20 16:28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925	800노77**	김*수	충청북도 충주시	2025-08-20 20:37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926	서울38아56**	노*수	경기도 부천시	2025-08-13 19:05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10 (신사동)	50,000
927	237우54**	김*섭	충청남도 천안시	2025-07-20 12:4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928	24너77**	조*주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8-19 20:44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929	17부43**	장*영	경기도 김포시	2025-08-12 17:5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930	30루99**	임*수	경기도 평택시	2025-08-28 19:5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931	101저43**	김*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8-25 10:52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3 (여의도동)	50,000
932	810소85**	조*배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8-25 09:3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933	345서90**	박*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8-26 20:15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934	28서99**	김*환	광주광역시 북구	2025-08-26 20:45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935	71소77**	탁*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8-12 18:5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60,000
936	40고27**	이*진	경기도 성남시	2025-07-11 18:22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937	48구48**	김*희	인천광역시 중구	2025-08-23 15:12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938	230서74**	유*학	인천광역시 중구	2025-08-07 12:04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939	101하89**	고*민	전라남도 목포시	2025-08-24 18:18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외방향)	50,000
940	서울32아25**	이*업	경기도 김포시	2025-07-07 07:16	개화동로(김포공항방면)	50,000
941	서울32아25**	이*업	경기도 김포시	2025-08-01 18:38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942	83주66**	권*양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025-06-27 17:44	염창역~등촌역	50,000
943	185너86**	이*준	충청남도 천안시	2025-07-30 15:1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944	11저06**	전*인	경기도 성남시	2025-07-29 09:0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945	54거66**	김*선	경기도 수원시	2025-07-23 15:20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외방향)	50,000
946	57어08**	이*수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8-13 17:1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947	240마49**	송*준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8-19 18:56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948	68서14**	박*윤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8-05 19:5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949	33다14**	P*K*A*I*S*R*N*V*C*	충청남도 아산시	2025-07-23 11:28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950	140거33**	P*A*M*N*Y*	충청남도 천안시	2025-07-28 10:00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951	인천30바23**	유*영	인천광역시 서구	2025-07-09 07:41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952	233호72**	김*재	경기도 양주시	2025-07-31 17:36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953	51조47**	전*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8-13 18:56	고속터미널역~반포역	50,000
954	82버28**	김*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8-04 17:21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955	23조24**	이*헌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5-08-01 11:35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50,000
956	82라92**	G*O*H*N*Z*U	경기도 포천시	2025-08-01 10:28	복정역~장지교교차로	50,000
957	84도50**	임*선	부산광역시 사하구	2025-07-31 19:12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958	서울32아45**	조*열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07-31 18:34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959	359조99**	X*H*O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8-07 09:25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960	49다94**	홍*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025-07-31 13:48	영등포구 샛강역 1번출구 앞	50,000
961	12저54**	강*강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07-31 07:1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962	24수54**	이*훈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8-26 20:5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963	111도31**	전*희	경기도 남양주시	2025-08-20 09:26	담터1교차로~화랑대사거리	50,000
964	22마56**	박*용	경기도 고양시	2025-08-29 20:1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965	50고19**	성*환	경기도 성남시	2025-08-20 09:52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966	36부04**	최*실	충청북도 괴산군	2025-07-09 19:22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967	148고15**	엄*진	울산광역시 북구	2025-08-11 07:29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968	229구23**	J*N*O*G*U*	경기도 화성시	2025-08-13 18:17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969	148고15**	엄*진	울산광역시 북구	2025-08-11 07:2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970	148고15**	엄*진	울산광역시 북구	2025-08-11 07:27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971	192머82**	정*철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5-08-22 09:3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972	52부49**	한*인	경기도 고양시	2025-08-22 20:3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973	220보28**	L*D*N*L	충청남도 당진시	2025-08-10 16:3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974	224무23**	김*미	경기도 성남시	2025-07-17 09:4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975	814루93**	J*A*G*H*N*I	경기도 남양주시	2025-08-08 20:5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976	805마76**	박*숙	경기도 화성시	2025-08-12 17:2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977	66모55**	변*희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8-27 08:49	은천삼거리~봉천로사거리	50,000
978	125호86**	한*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5-07-07 20:0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979	125호86**	한*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5-07-25 18:2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980	125호86**	한*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5-06-20 17:5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981	31누03**	Z*A*W*N*I*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5-07-14 18:21	이화사거리~혜화역	50,000
982	서울성동타06**	이*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5-08-01 09:29	연세대교차로 앞	40,000
983	33보98**	박*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7-25 09:36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221	50,000
984	822더91**	강*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08-28 19:01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985	146두56**	박*국	경기도 고양시	2025-08-29 07:2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986	381어95**	유*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8-21 17:34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987	서울31아19**	민*선	경기도 의정부시	2025-08-13 08:05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988	58모22**	오*석	경기도 고양시	2025-08-21 08:44	온수골사거리~노원역교차로	50,000
989	144노93**	이*호	경기도 용인시	2025-08-28 19:14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990	356도71**	한*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8-28 18:4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991	822더91**	강*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08-28 20:49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992	08나28**	박*익	인천광역시 서구	2025-08-29 08:0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993	844부92**	조*성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8-18 18:49	태릉~담터지하차도	50,000
994	52구66**	안*배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08-28 16:31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995	168누27**	김*진	서울특별시 도봉구	2025-08-25 09:42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996	356조83**	우*철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8-25 10:52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997	서울88바87**	조*남	경기도 김포시	2025-08-26 18:2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998	18소41**	노*용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08-25 15:1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999	362도14**	이*주	경기도 화성시	2025-08-27 10:13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000	서울31바90**	이*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11-17 16:28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1001	100우46**	박*성	경기도 성남시	2025-08-12 13:22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002	133하66**	권*미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7-01 17:14	롯데백화점본점앞	50,000
1003	충남80자77**	장*자	충청남도 천안시	2025-07-30 14:1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004	165허60**	전*진	충청남도 천안시	2025-08-01 13:02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005	165허60**	전*진	충청남도 천안시	2025-07-16 13:40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006	09도79**	손*재	충청남도 천안시	2025-08-26 08:54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007	238부26**	김*빈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8-30 16:05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1008	36조08**	이*연	경기도 수원시	2025-08-29 08:4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009	서울86자47**	황*준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8-12 16:0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010	171도16**	이*진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8-19 16:49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011	19서43**	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2025-08-19 12:05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012	271버12**	주*주	경기도 김포시	2025-08-22 18:18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013	서울31바57**	최*순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08-29 18:4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014	175로83**	김*철	충청북도 음성군	2025-08-21 09:29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015	24어40**	박*주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8-13 18:3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016	61나58**	N*M*E*I*B*C*N*	인천광역시 서구	2025-08-03 14:23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여의도동)	50,000
1017	54더99**	박*형	경기도 안산시	2025-08-01 07:21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1018	서울31사17**	박*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2025-08-20 18:1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019	175저86**	장*식	서울특별시 노원구	2025-08-21 08:44	온수골사거리~노원역교차로	50,000
1020	서울38아64**	정*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7-29 08:52	개화교~개화사거리	50,000
1021	04무52**	박*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07-29 16:27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1022	216보94**	허*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5-08-13 17:3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023	67무78**	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08-04 17:14	등촌역	50,000
1024	233너27**	이*선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08-06 18:10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1025	213버79**	김*기	경기도 파주시	2025-07-07 18:45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1026	92수37**	신*준	서울특별시 중구	2025-07-09 18:0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027	26구73**	이*훈	서울특별시 중구	2025-07-09 20:15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028	109호14**	유*곤	경상북도 칠곡군	2025-07-15 17:4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029	142호62**	김*주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5-07-02 08:1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030	91더10**	장*별	인천광역시 서구	2025-07-21 12:3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031	62너36**	조*성	인천광역시 서구	2025-08-02 17:56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032	347모55**	강*숙	충청남도 예산군	2025-08-11 09:28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1033	720호94**	차*천	경기도 동두천시	2025-07-01 19:0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60,000
1034	805서19**	임*호	경기도 남양주시	2025-08-11 09:32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1035	226러53**	신*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5-08-11 16:36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036	인천30바82**	황*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5-08-11 09:47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037	109가82**	김*철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5-08-09 17:00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1038	53루16**	이*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2025-08-09 17:10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1039	247고63**	남*준	경기도 남양주시	2025-07-25 15:03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1040	서울32아23**	서*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08-07 06:19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1041	서울31바81**	임*엽	경기도 김포시	2025-07-22 17:36	개화동로(김포공항방면)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042	35가03**	정*랑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8-12 17:16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1043	32두62**	장*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07-08 19:4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044	서울31아40**	김*열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7-22 19:14	잠실새내역교차로~종합운동장사거리	50,000
1045	63저71**	임*규	서울특별시 강동구	2025-08-27 08:08	종합운동장교차로~잠실야구장	50,000
1046	54서47**	강*성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07-25 17:27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047	35어82**	박*범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07-10 07:35	시흥IC~디지털단지입구교차로	50,00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123호

도시관리계획(명동관광특구 등 68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관광숙박 특화 목적 명동관광특구 등 68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계획 등 결정 변경]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68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

▢ 대상 :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68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치구	구역명	비고
중구	명동관광특구, 북창, 소공, 남대문시장, 동대문역사문화공원주변, 정동 일대	6개소
강남구	테헤란로, 양재중심지구	2개소
송파구	잠실광역중심제1지구, 잠실광역중심제2지구	2개소
서초구	서초로, 양재지구중심	2개소
마포구	마포지구, 신촌지구일대, 아현2지구	3개소
용산구	용산, 이태원로주변, 한남	3개소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중심, 신길지구중심,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대림광역중심	4개소
종로구	세종로, 익선, 종로2·3가, 종로4·5가, 숭인, 숭인2, 돈화문로, 운현궁 주변, 조계사주변, 율곡로, 인사동	11개소
성동구	왕십리 광역중심	1개소

자치구	구역명	비고
동대문구	청량리역 전면부, 장안평일대, 신설, 전농2지구중심	4개소
광진구	건대입구역지구, 군자역지구, 화양1지구	3개소
동작구	사당 · 이수, 노량진지구, 신대방지구	3개소
강서구	화곡역 지구중심, 공항로, 까치산역 지구중심, 공항지구중심	4개소
강북구	수유 · 번동	1개소
강동구	천호지구	1개소
서대문구	충정	1개소
은평구	불광, 연신내, 응암지구중심	3개소
관악구	신림지구중심, 봉천지역중심, 대림지역중심, 난곡사거리지구중심,	4개소
금천구	가산, 금천구심, 독산	3개소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1개소
성북구	동선지구중심, 석관지구중심	2개소
도봉구	쌍문지구중심	1개소
노원구	공릉	1개소
중랑구	면목지구중심, 묵동지구중심	2개소

2 관광숙박 특화 계획

□ 관광숙박 특화구역의 지정

1) 관광숙박 특화구역

○ 관광특구 등 관광수요가 높은 지역 : 9개 구역

구분	구역명	구역 면적(㎡)	자치구	위 치	결정 내용
1	명동관광특구	300,545	중구	중구 명동1가 54번지 일대	관광숙박 특화구역 지정
2	북창	93,187	중구	중구 북창동 104번지 일대	
3	테헤란로	959,160	강남구	강남구 역삼1동, 역삼2동, 삼성2동, 대치4동 일원	
4	잠실광역중심제1지구	858,791	송파구	송파구 신천동, 방이동, 올림픽로 주변	
5	여의도 금융중심	1,120,586	영등포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일대	
6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792,010	영등포구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98-9번지 일원	
7	마포지구	238,525	마포구	마포구 신촌로, 양화로변 일대	
8	용산	3,467,822	용산구	중구 봉래동 ~ 용산구 한강로일대	
9	왕십리 광역중심	218,000	성동구	성동구 하왕십리동, 도선동, 홍익동, 행당동 일대	

○ 호텔공급 확대를 위한 번화가 및 교통이 양호한 상업지역 : 61개 구역(한시 적용)
- 완화 적용기간 : 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까지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가 의제되거나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까지 한시적 적용

구분	구역명	구역 면적(㎡)	자치구	위 치	결정 내용
1	양재중심지구	30,274	강남구	강남구 도곡동 957 일대	관광숙박 특화구역 지정 (한시적용)
2	천호지구	655,437	강동구	강동구 천호동, 길동, 둔촌동, 성내동 일원	
3	수유 · 번동	436,100	강북구	강북구 수유동 192번지 일대 및 번동 416번지 일대	
4	화곡역 지구중심	141,673	강서구	강서구 화곡동 1064번지 일원	
5	공항로	440,474	강서구	강서구 가양동, 공항동, 내발산동, 등촌동, 염창동, 화곡동 일대	
6	까치산역 지구중심	221,180	강서구	강서구 화곡동 897번지 일대	
7	공항지구중심	123,531	강서구	강서구 방화동 612번지 일대	
8	신림지구중심	534,795	관악구	관악구 신림동 1428번지 일대	
9	난곡사거리지구중심	158,693	관악구	관악구 신림동 1474 일대	
10	대림지역중심	20,100	관악구	관악구 신림동 1643, 1655번지 일대	
11	봉천지역중심	573,347	관악구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사거리 일대	
12	군자역지구	165,245	광진구	광진구 중곡동 157-1 일대	
13	건대입구역지구	171,352	광진구	광진구 화양동 6-1호 일대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역세권주변)	
14	화양1지구	307,010	광진구	광진구 화양동 18-1호 일대	
15	구로디지털단지역	58,045	구로구	구로구 구로동 1124-1번지 일원	
16	가산	122,687	금천구	금천구 가산동 140-1번지 일대	

구분	구역명	구역 면적(㎡)	자치구	위 치	결정 내용
17	금천구심	747,098	금천구	금천구 시흥동 994번지 일대	관광숙박 특화구역 지정 (한시적용)
18	독산	198,388	금천구	금천구 독산동 1030번지 일대	
19	전농2지구중심	24,764	동대문구	동대문구 전농동 33번지 일대	
20	청량리역 전면부	331,246	동대문구	동대문구 청량리동 268번지 일대	
21	장안평일대	523,805	동대문구	성동구 용답동, 동대문구 장안동, 답십리동 일대 (성동구 용답동 230-4)	
22	신설	162,354	동대문구	동대문구 신설동 117-23, 109-5번지 일대	
23	사당·이수	475,540	동작구	사당·이수역 일대	
24	신대방지구	57,025	동작구	동작구 대방동 405번지 일대	
25	노량진지구	87,123	동작구	동작구 노량진동 46번지 일대	
26	아현2지구	41,230	마포구	마포구 아현동 331 일대	
27	신촌지구일대	548,255	마포구	서대문구, 마포구 신촌로터리 일대	
28	충정	24,230	서대문구	서대문구 미근동 21번지 일원	
29	공릉	35,733	노원구	노원구 공릉동 670번지 일대	
30	쌍문지구중심	184,840	도봉구	도봉구 쌍문동 88번지 일대 창동 659번지 일대	
31	석관지구중심	132,352	성북구	성북구 석관동 242-1번지 일대	
32	동선지구중심	189,529	성북구	성북구 동선동1가 71번지 일대	
33	서초로	599,620	서초구	서초역 ~ 강남역	
34	양재지구중심	110,192	서초구	서초구 서초동 1366번지 일대, 양재동 12번지 일대	

구분	구역명	구역 면적(㎡)	자치구	위 치	결정 내용
35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주변	669,072	중구	중구 을지로6가 18-79 일대	관광숙박 특화구역 지정 (한시적용)
36	신길지구중심	66,657	영등포구	영등포구 신길동 254-7번지 일대	
37	대림광역중심	49,561	영등포구	영등포구 대림동 1104-1 일대	
38	한남	336,396	용산구	용산구 한남동 일원	
39	이태원로 주변	287,413	용산구	용산구 이태원동, 한남동 일대	
40	응암지구중심	99,700	은평구	은평구 응암동 577번지일대	
41	연신내	157,763	은평구	은평구 불광동 311번지 일대, 대조동 185번지 일대, 갈현동 396번지 일대	
42	불광	178,167	은평구	은평구 불광동 272-5번지 일대	
43	인사동	124,068	종로구	종로구 경운동 90-18번지 일대	
44	율곡로	446,340	종로구	종로구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효제동, 충신동, 종로6가 일대	
45	조계사주변	66,698	종로구	종로구 수송동,견지동 일대	
46	세종로	208,156	종로구	종로구 세종로 주변	
47	종로2 · 3가	189,840	종로구	종로구 관철동, 관수동 및 돈의동 일대	
48	운현궁 주변	147,809	종로구	종로구 경운동, 운니동, 익선동, 낙원동 일대	
49	숭인2	119,450	종로구	종로구 숭인동 1150일대	
50	돈화문로	147,860	종로구	종로구 돈화문로,율곡로 주변	
51	숭인	218,280	종로구	종로구 숭인동 200-16 일대	
52	종로4 · 5가	299,647	종로구	종로구 종로4 · 5가 일대	

구분	구역명	구역 면적(㎡)	자치구	위 치	결정 내용
53	익선	31,122	종로구	종로구 익선동 156번지 일대	관광숙박 특화구역 지정 (한시적용)
54	정동 일대	508,446.3	중구	중구 정동, 서소문동,순화동, 종로구 신문로1.2가 일대	
55	남대문시장	38,129	중구	중구 남창동 31-1번지 일대	
56	소공	13,614	중구	중구 태평로2가 23번지 일원	
57	묵동지구중심	207,936	중랑구	중랑구 묵동 165번지 일대	
58	면목지구중심	125,000	중랑구	중랑구 면목동 634일대	
59	잠실광역중심제2지구	367,687	송파구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로 주변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등 별도의 개별법령에 따라 계획된 구역은 해당 계획에 따름

▢ 관광숙박 특화구역 내 용적률 계획 및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1) 적용 기준

○ 관광숙박 특화구역 내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1조제2항1호다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용적률 계획’을 적용할 수 있음

–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용적률 계획 및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적용하는 경우, 개별 건축 인허가 이전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관련부서(도시관리과)와 사전 협의 추진

• 특별계획(가능)구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변경) 시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용적률 계획’ 적용 가능

•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하는 상한용적률 항목은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상한용적률과 중첩 적용 가능하며, 이 경우 「국토계획법」 제78조제7항 등 관련규정 준수

※ 관련 법령 및 조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함

※ 한옥, 문화재 등 역사자산 밀집지역, 지역특성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 용적률 완화가 제한되는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혼재된 노선형 상업지역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함

2)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용적률 계획

○ 2000.07.01. 이전에 용도지역이 결정되었거나 변경된 지역

구분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관광숙박시설	공공시설등 제공
상업지역	근린상업	600(500)%이하	600(500)%이하	780(65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일반상업	800(600)%이하	800(600)%이하	1,040(78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 ) 안은 서울도심의 경우 적용

○ 2000.07.01. 이후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2000.07.01.이후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용적률 계획 예시

△△ 지구단위계획구역							
구분	기정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상한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관광숙박시설	공공시설등 제공
제3종일반 → 일반상업	250% 이하	610% 이하	800% 이하	250% 이하	610% 이하	850% 이하	1,040% 이하
일반주거 → 일반상업	300% 이하	630% 이하	800% 이하	300% 이하	630% 이하	870% 이하	1,040% 이하
준주거 → 일반상업	400% 이하	660% 이하	800% 이하	400% 이하	660% 이하	900% 이하	1,040% 이하

□□ 지구단위계획구역(서울도심 내)							
구분	기정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관광숙박시설	공공시설등 제공
일반상업 → 중심상업	600% 이하	80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600% 이하	800% 이하	1,040% 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3)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table>
<tr><th>구분</th><th>주요 내용</th></tr>
<tr><td>산정방법</td><td>관광숙박시설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법적용적률 × 용적률 완화 비율
• 법적용적률은 「도시계획조례」 제48조, 제49조제3항, 제50조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 용적률을 말함 (용도지역 상향 시, 변경 후 용도지역 용적률)
• 용적률 완화 비율은 최대 30퍼센트 범위 이내 ‘관광숙박시설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기존 모텔을 관광숙박시설로 개발하는 경우 최대 완화범위 적용가능
<table>
<tr><th rowspan="2">항목</th><th colspan="3">처리기준 및 계수</th></tr>
<tr><th>0.8</th><th>0.9</th><th>1.0</th></tr>
<tr><td>상대보호구역</td><td>-</td><td>○</td><td>×</td></tr>
<tr><td>객실비율</td><td>70% 미만</td><td>-</td><td>80% 이상</td></tr>
</table>
※ 객실 비율이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최저계수부터 직선보간법(이웃한 두 점 사이를 1차식으로 보간하는 선형보간)에 따라 산정
※ 객실 비율은 전체 연면적에 대한 객실 사용 바닥면적 합계로서 호텔 운영을 위한 주차장, 기계실/전기실 지원시설 및 복도, 화장실의 공용면적은 객실 연면적에 포함
※ 모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 따른 일반숙박시설로서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숙박업 중 여관, 모텔, 여인숙 등으로 운영중인 경우를 말함
※ 복합건축물(관광숙박시설 포함) 건립 시에는 관광숙박시설 연면적 비율에 대해서만 용적률 완화를 적용하고, 증축 시에는 증축되는 관광숙박시설의 객실 연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적용함</td></tr>
<tr><td>비고</td><td>• 관광숙박시설 건립기준, 버스 주정차 유도기준, 교통처리방안 등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관광숙박시설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함</td></tr>
</table>

▢ 관광숙박 특화구역 내 건폐율 · 높이 · 최대개발규모 완화 사항

○ 관광숙박 특화구역 내에서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관련부서(도시관리과) 협의를 통해 건폐율, 높이, 최대개발규모 완화 적용 가능 (건폐율 완화와 높이 완화는 중복 적용 불가. 단, 기존 모텔을 관광숙박시설로 개발하는 경우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중복적용 가능)

적용구역	완화사항	완화범위
관광숙박 특화구역	건폐율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 허용하는 범위 이내
	높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최고높이의 1.3배 이내
	최대개발규모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최대개발규모 미적용

Ⅲ. 관계도면 : 변경 없음(붙임 참조)

– 본 열람공고는 금회 변경된 사항에 한해 유효하며, 그 외 사항은 기정 내용을 따름

Ⅳ.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2133-8374), 중구 도심정비과(☎3396-5784), 강남구 도시계획과(☎3423-6118), 송파구 도시계획과(☎2147-3002), 서초구 도시계획과(☎2155-6781), 마포구 도시계획과(☎3153-9357), 용산구 도시계획과(☎2199-7394), 영등포구 도시계획과(☎2670-3533), 종로구 건축과(☎2148-2813), 성동구 도시계획과(☎2286-5560), 동대문구 도시계획과(☎2127-4946), 광진구 도시계획과(☎450-7690), 동작구 도시계획과(☎820-9665), 강서구 도시계획과(☎2600-6656), 강북구 도시계획과(☎901-6872), 강동구 도시계획과(☎3425-6033), 서대문구 도시계획과(☎330-4317), 은평구 공간계획과(☎351-7413), 관악구 도시계획과(☎879-6361), 금천구 도시계획과(☎2627-2063), 구로구 도시계획과(☎860-2957), 성북구 도시계획과(☎2241-2683), 도봉구 도시계획과(☎2091-3564), 노원구 도시관리과(☎2116-3866), 중랑구 도시계획과(☎2094-2182)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서울소식→공고→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붙임] 관계도면

○ 관광특구 등 관광수요가 높은 지역 : 9개 구역

▌명동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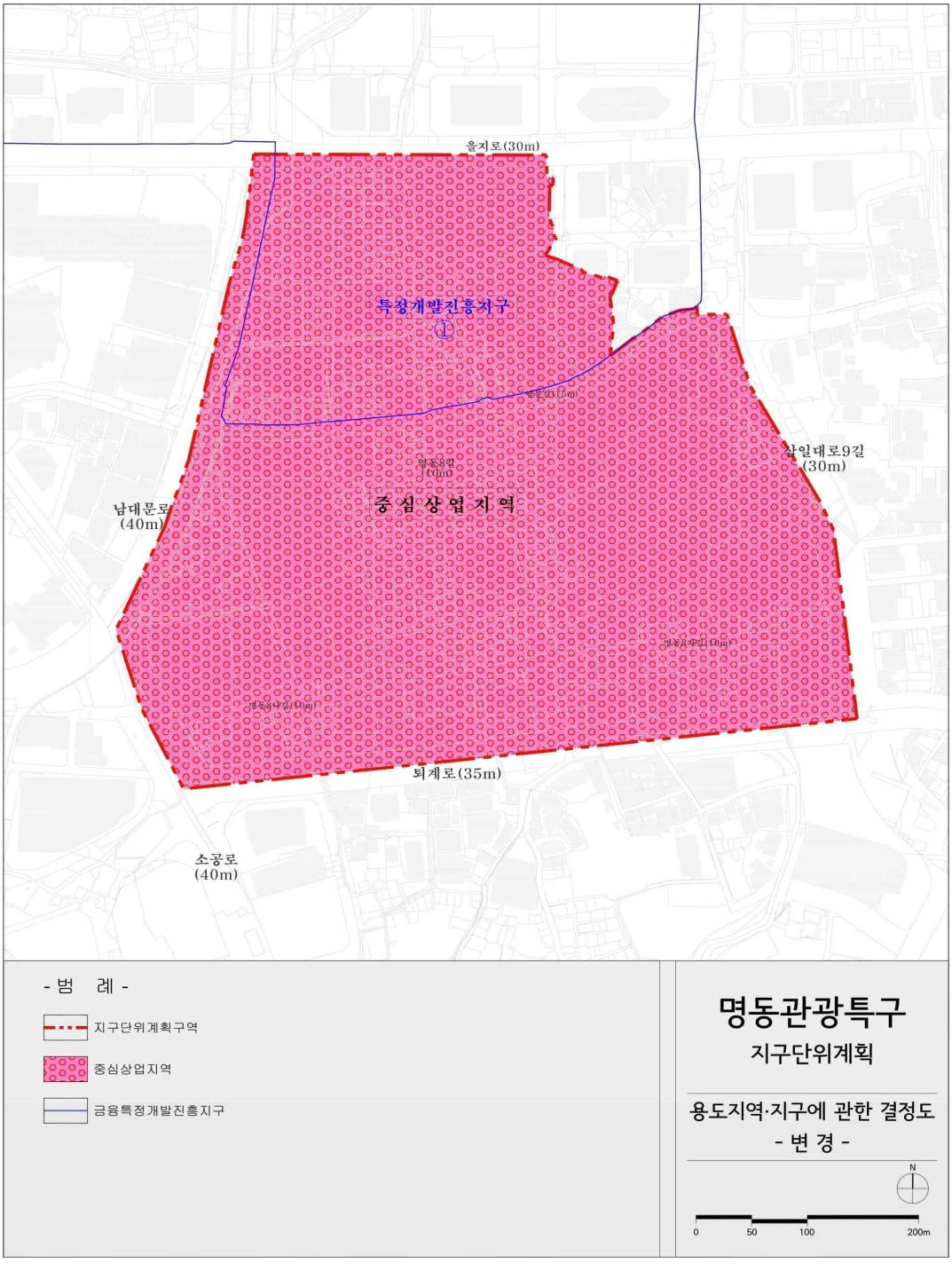

▌북창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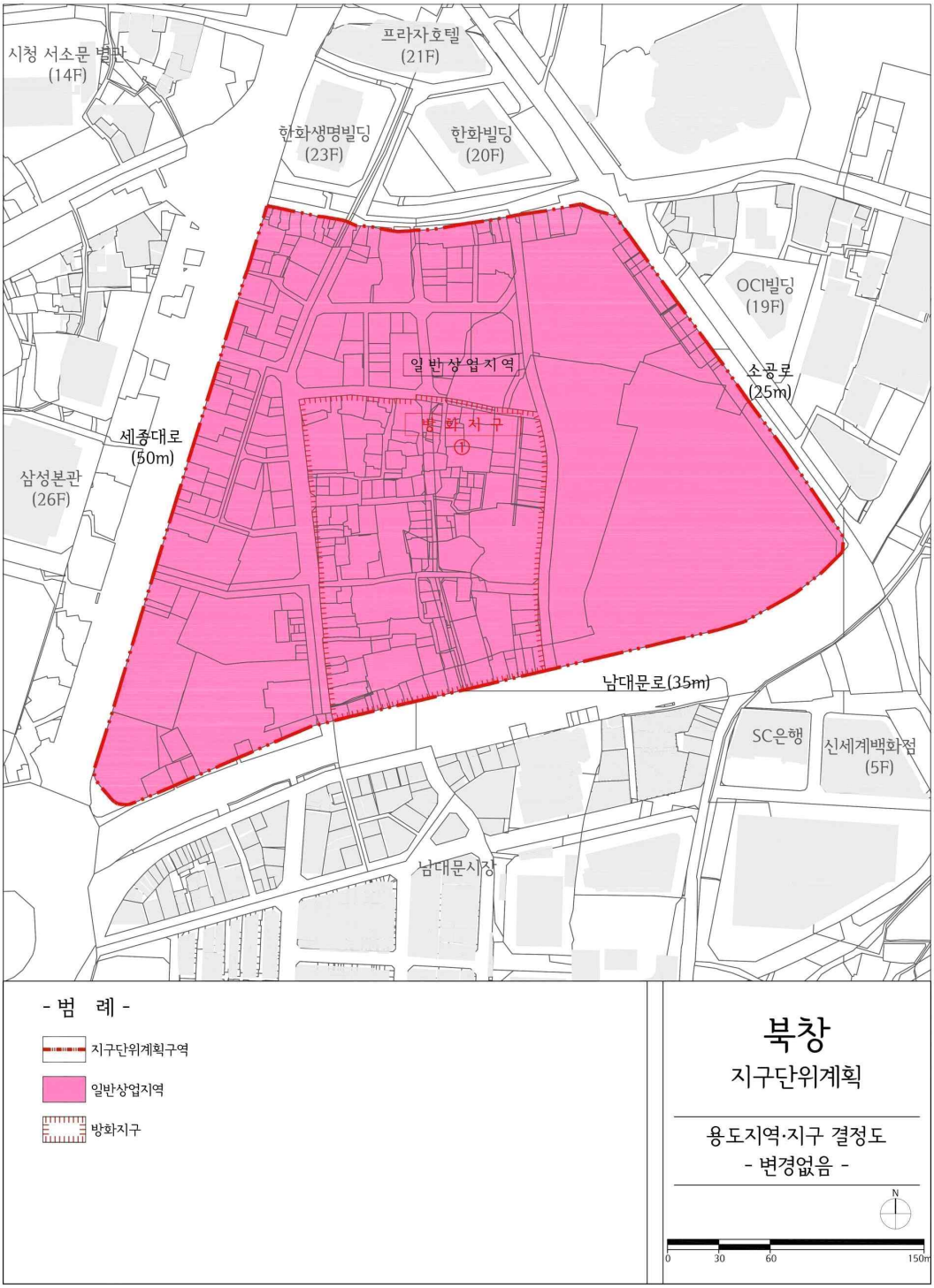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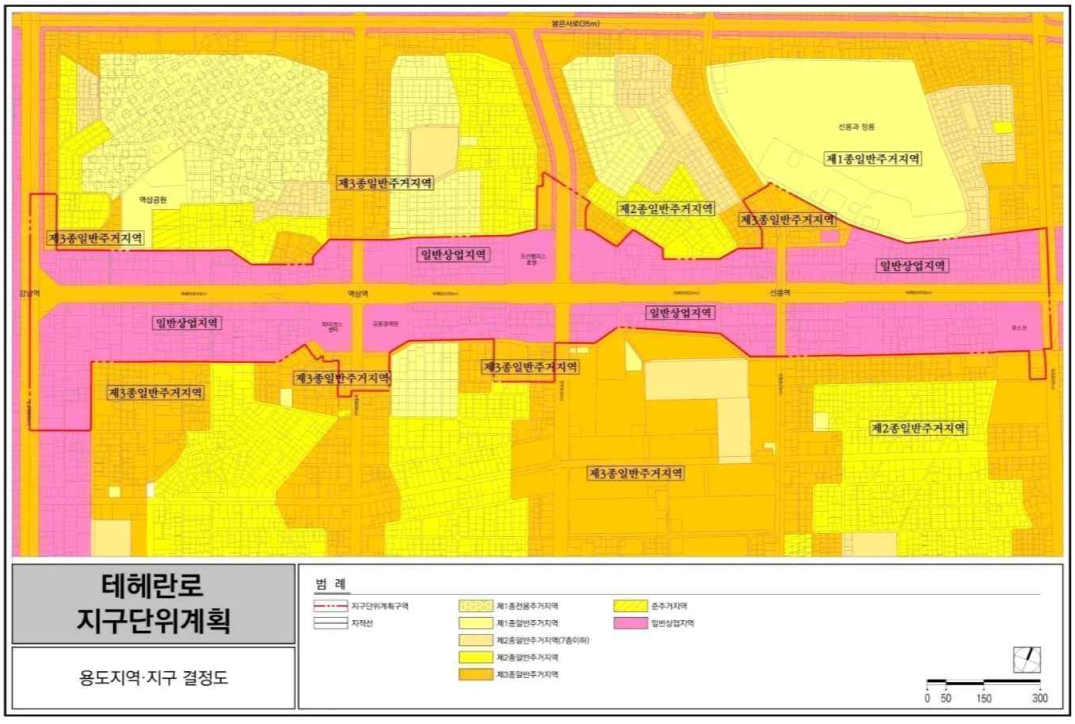

▌잠실광역중심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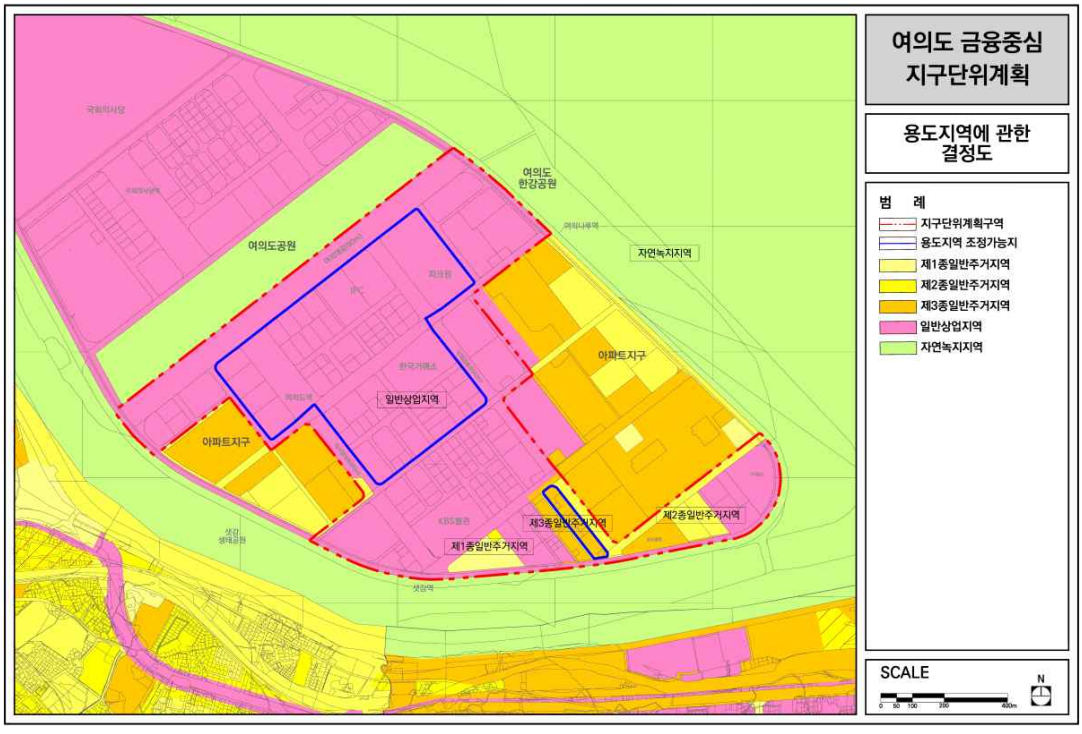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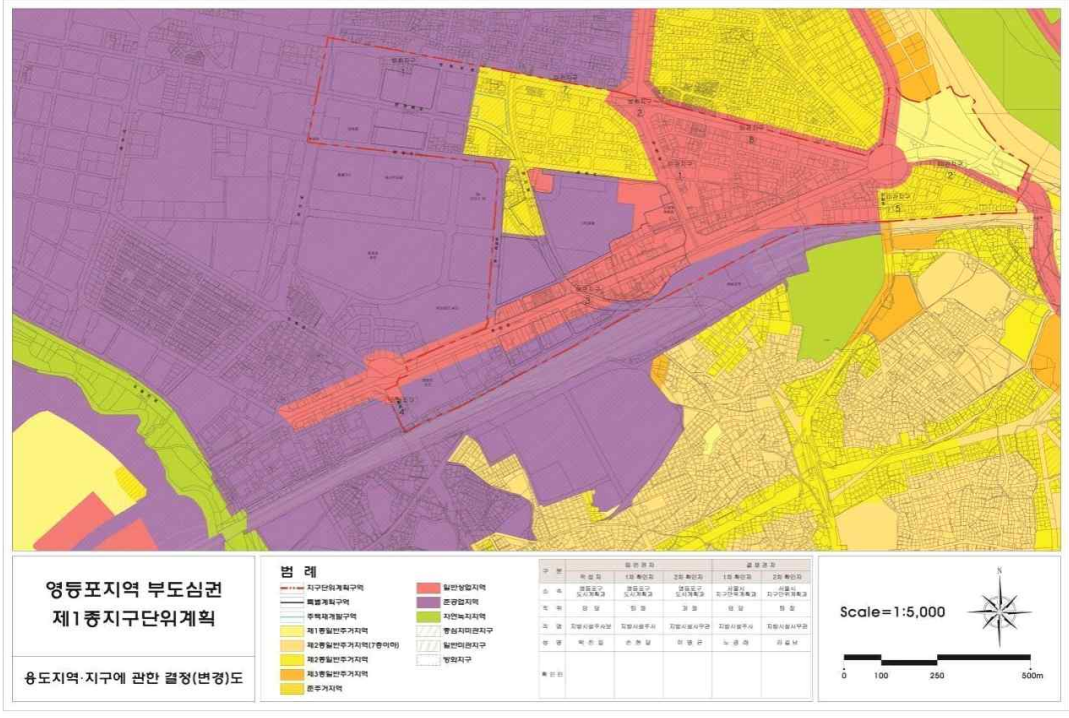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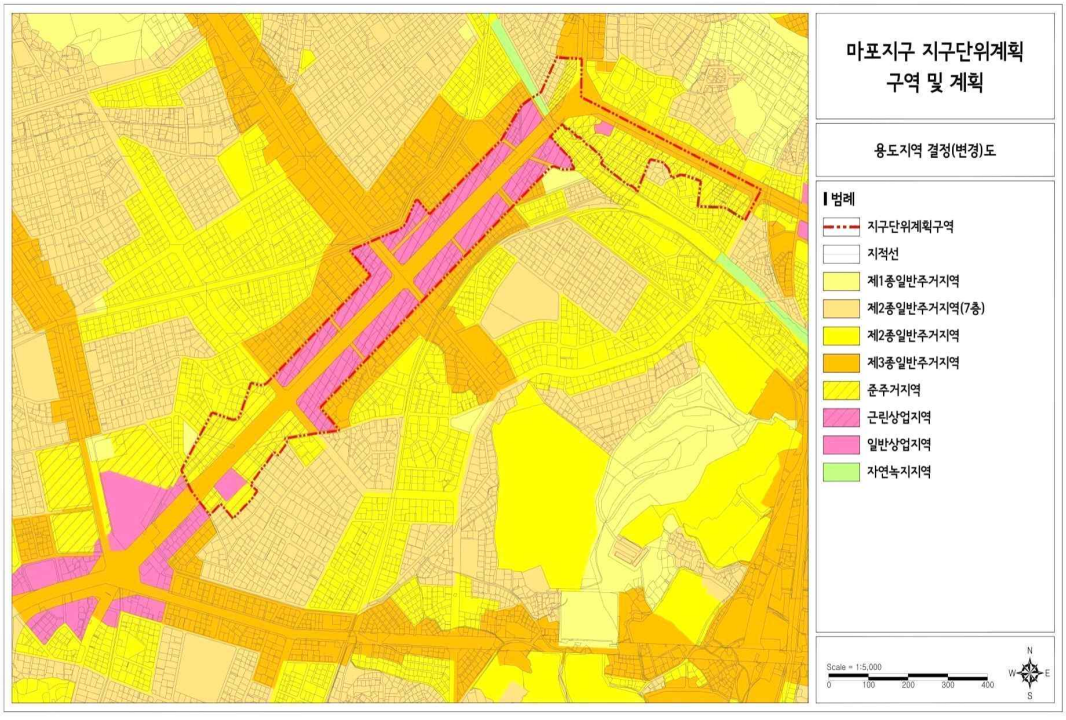

▌용산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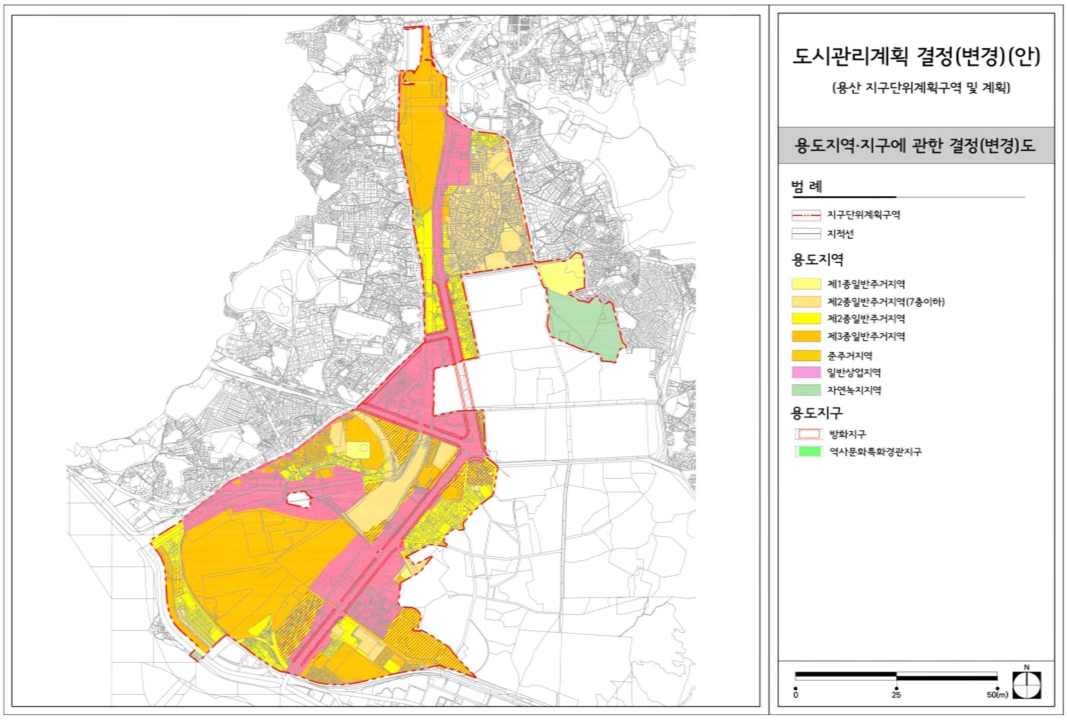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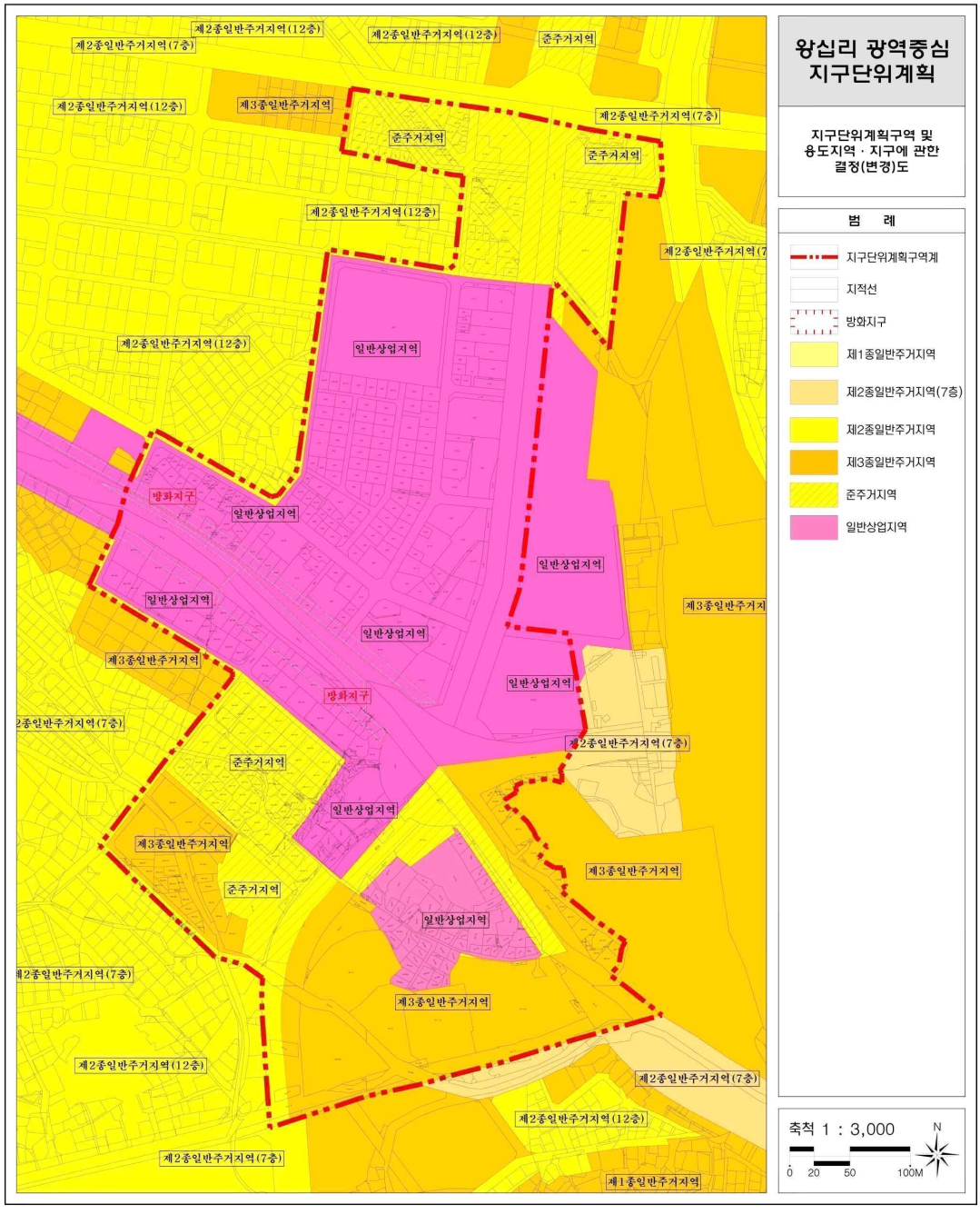

○ 호텔공급 확대를 위한 번화가 및 교통이 양호한 상업지역 : 61개 구역(한시 적용)

▌양재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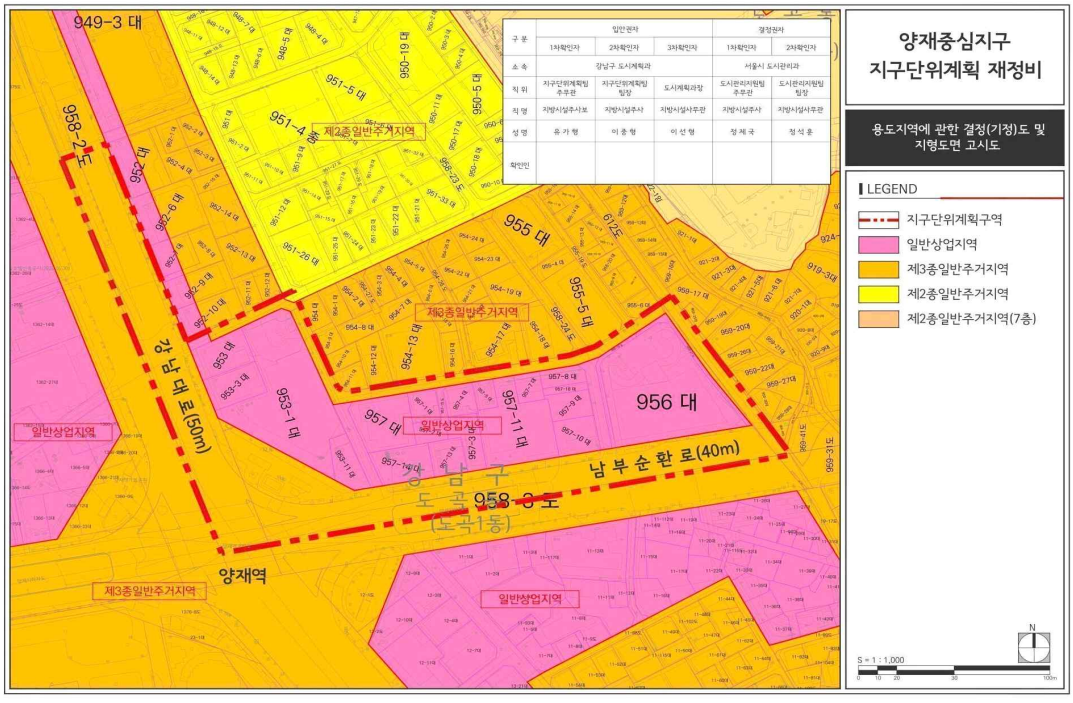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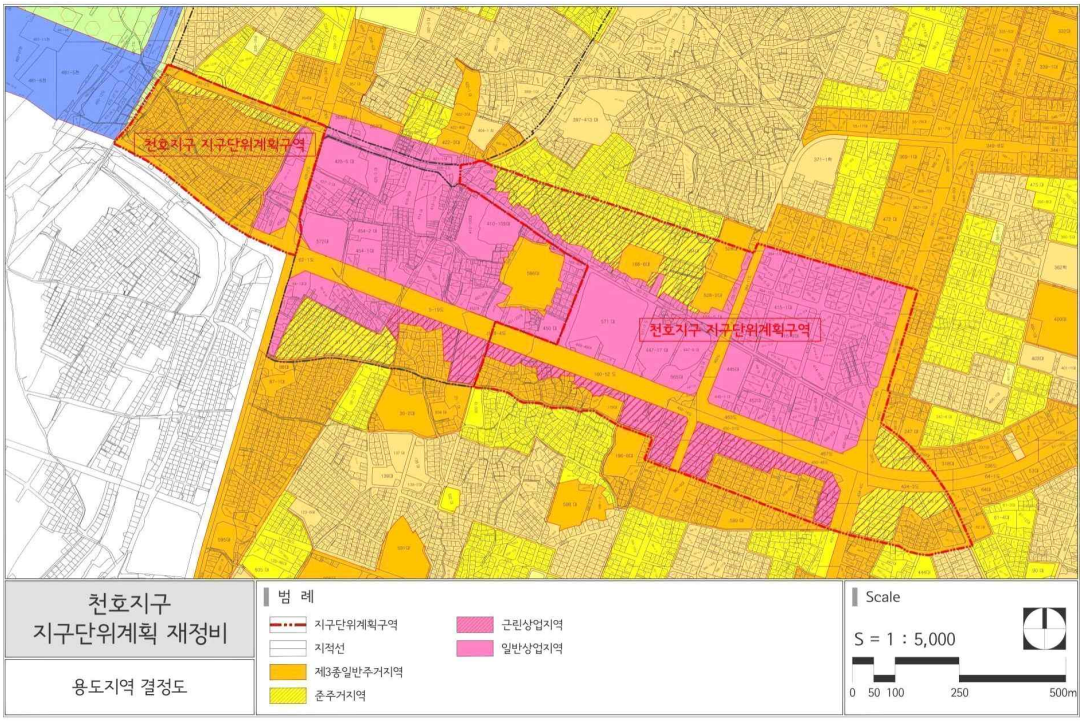

▌수유 · 번동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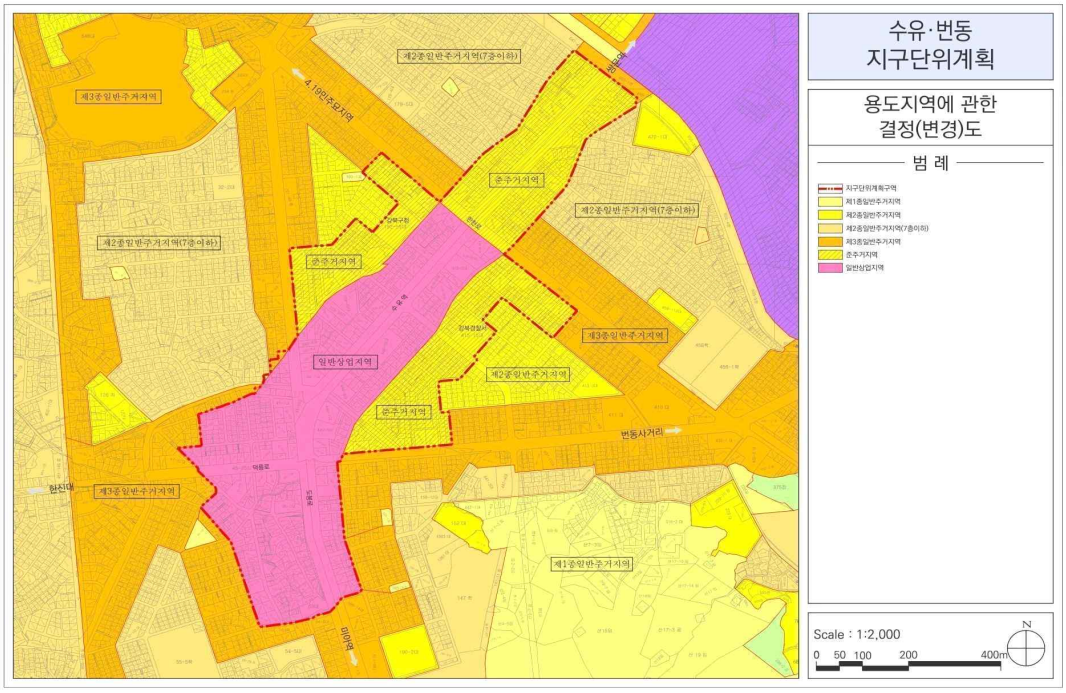

▌화곡역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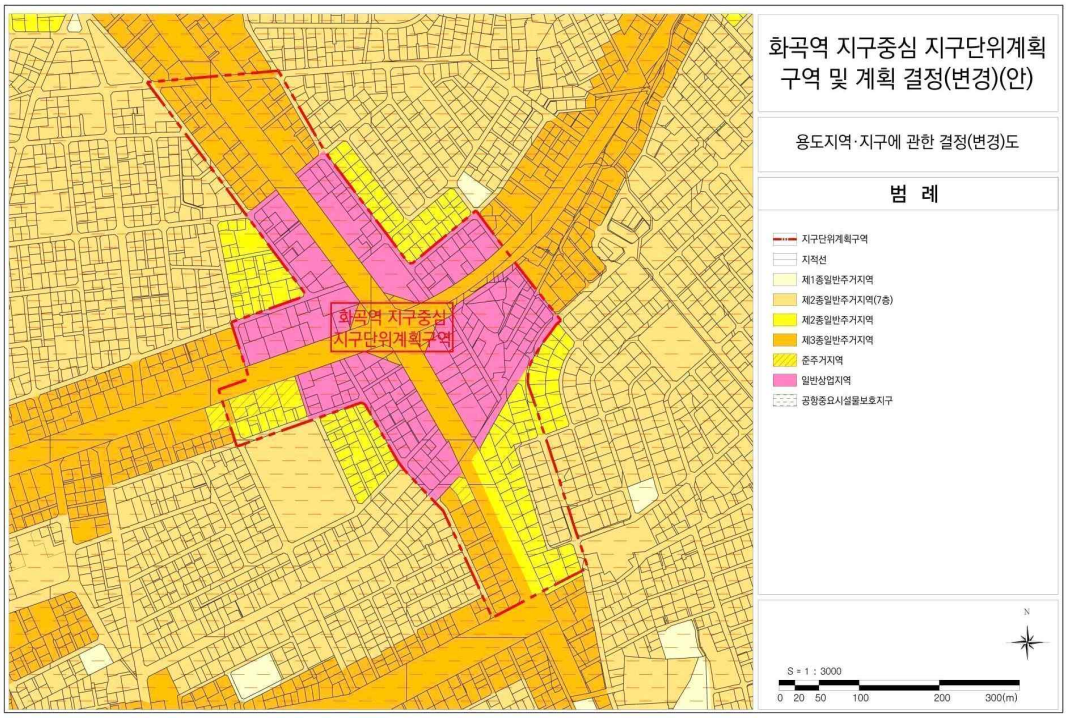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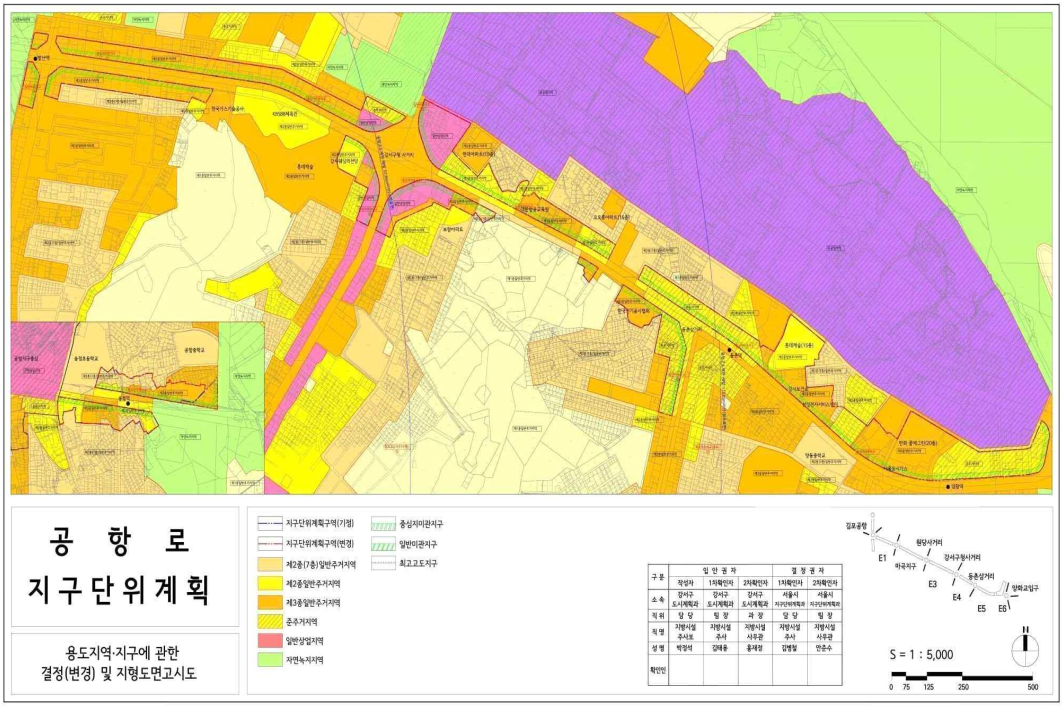

▌까치산역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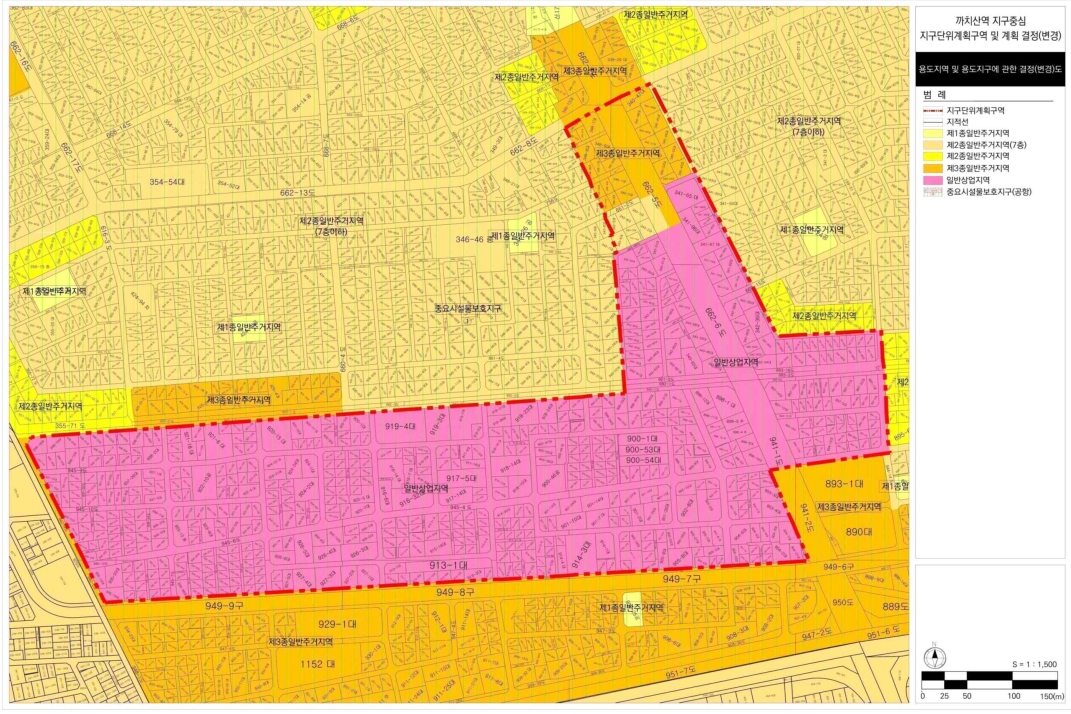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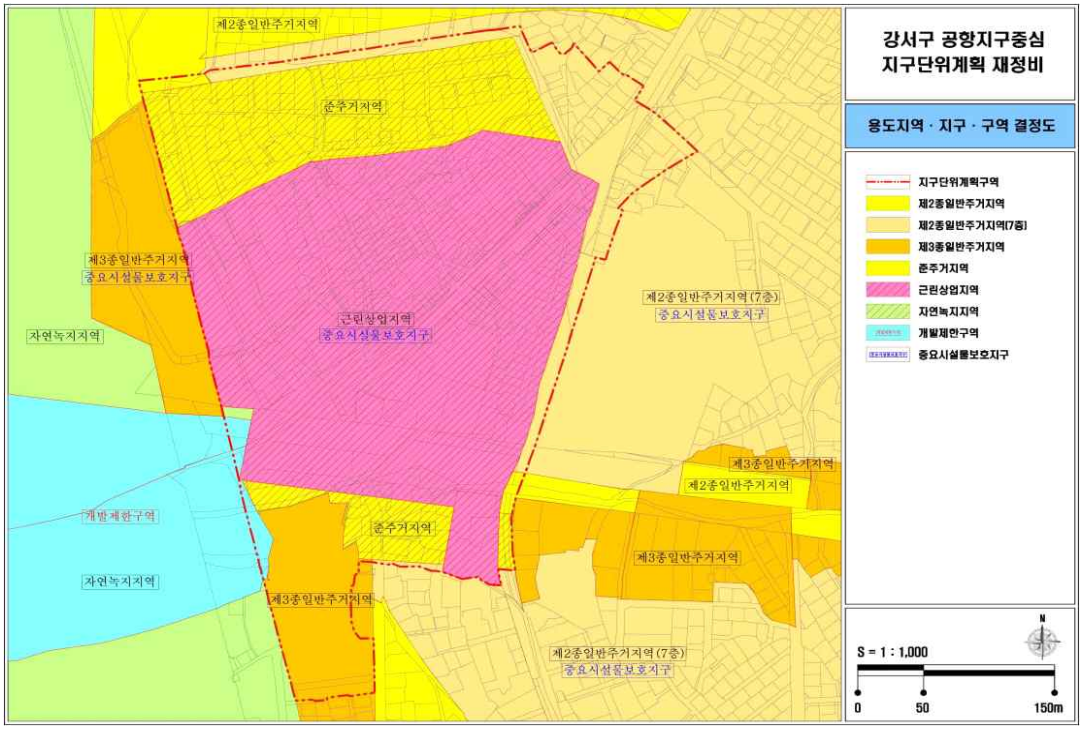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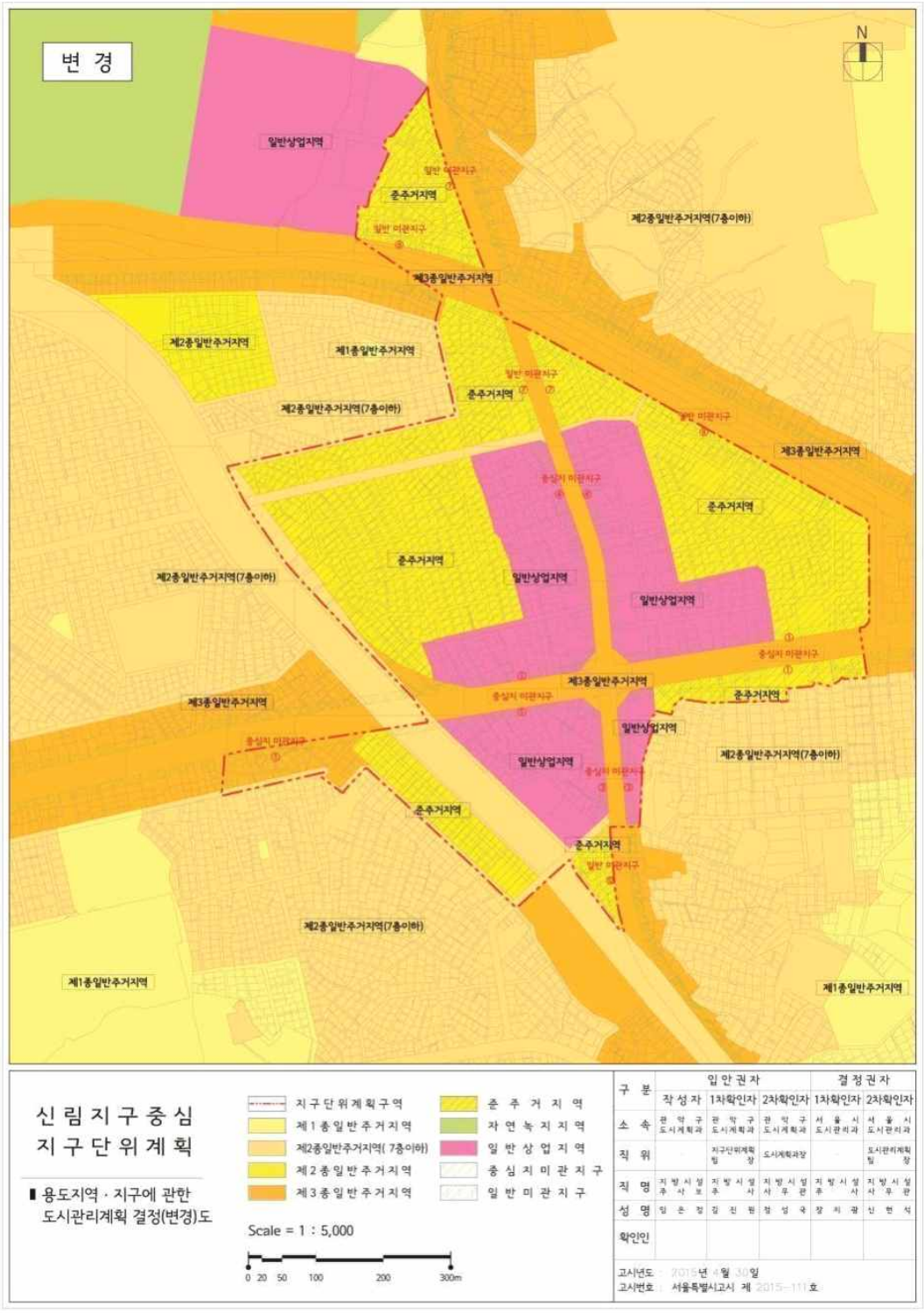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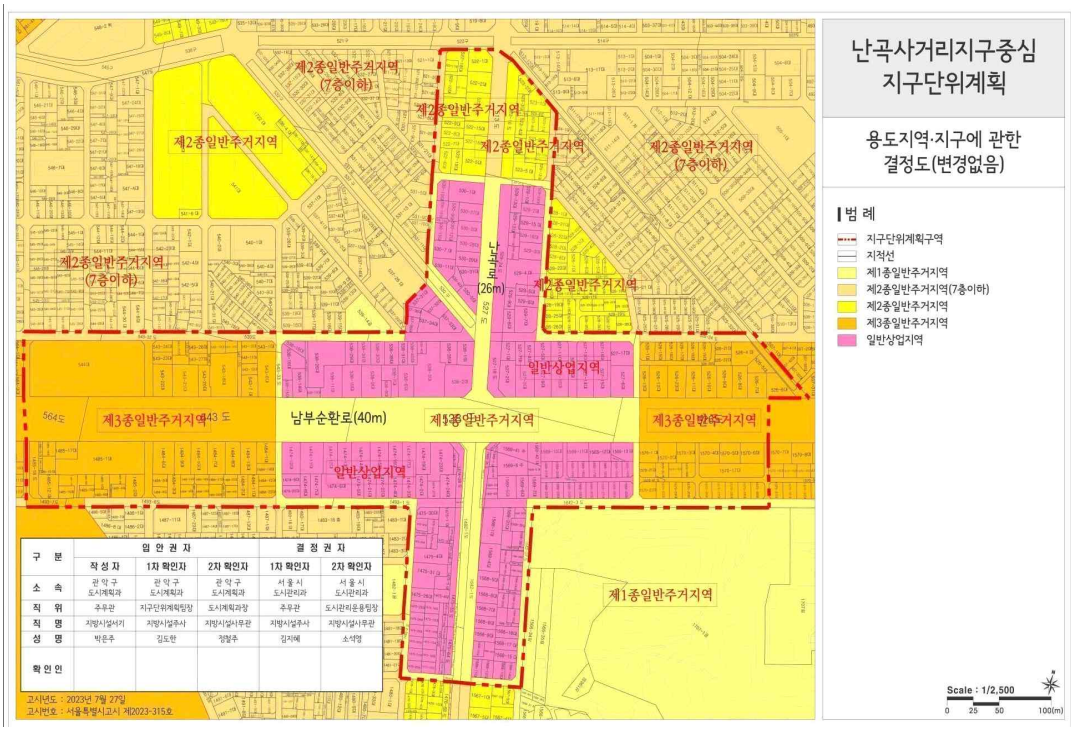

구 분	입 안 권 자			결 정 권 자	
	작 성 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관악구 도시계획과	관악구 도시계획과	관악구 도시계획과	서울시 도시관리과	서울시 도시관리과
직 위	주무관	지구단위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주무관	도시관리운용팀장
직 명	지방시설서기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지방시설주사	지방시설사무관
성 명	박은주	김도한	정철주	김지혜	소석영
확 인 인					

▌대림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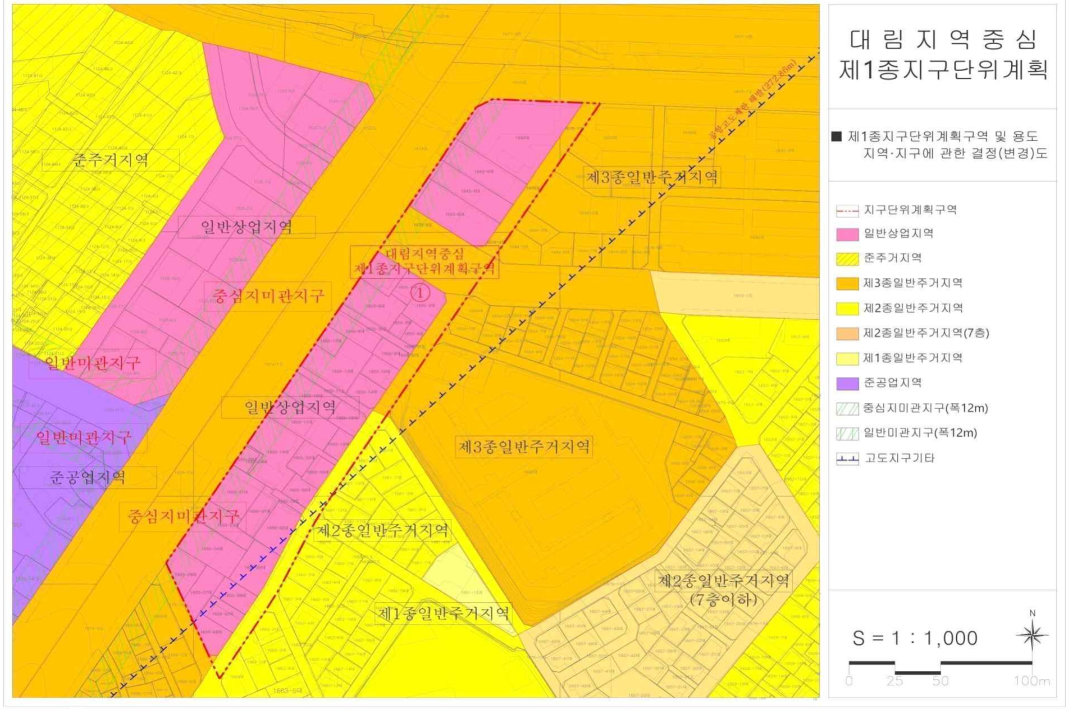

▌봉천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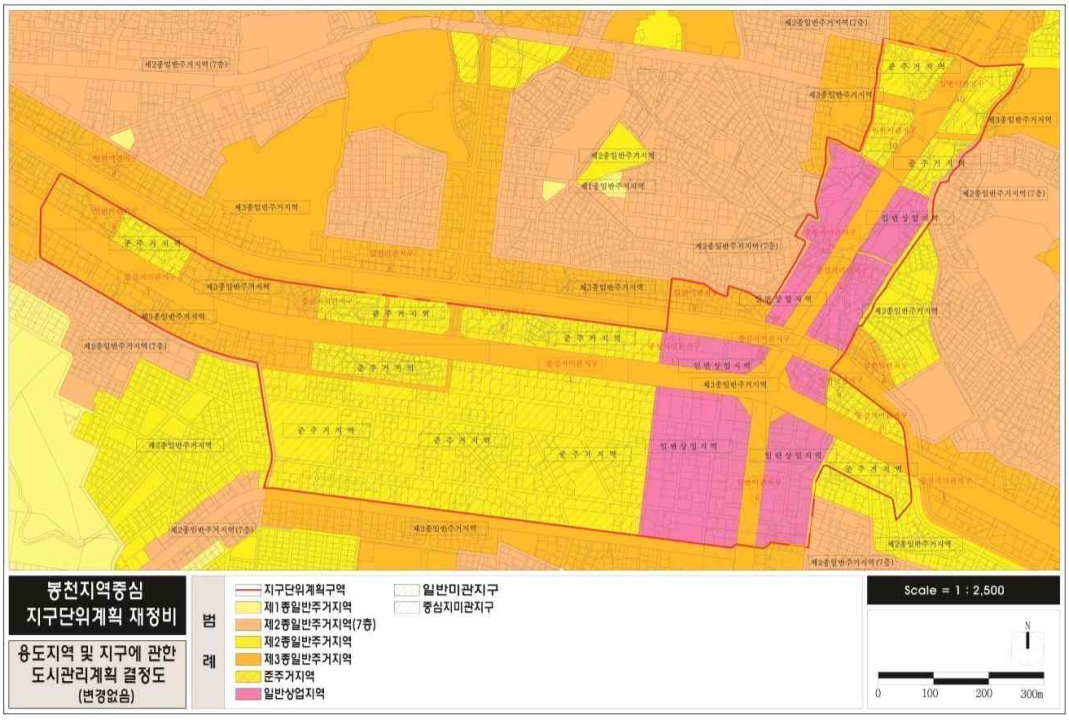

▌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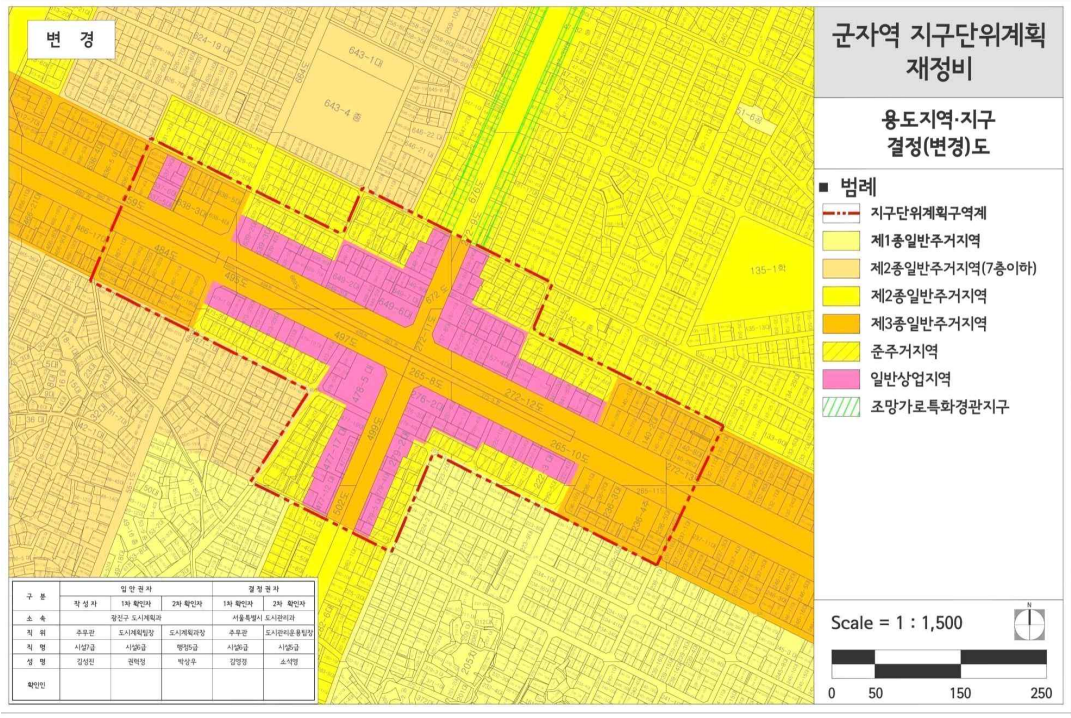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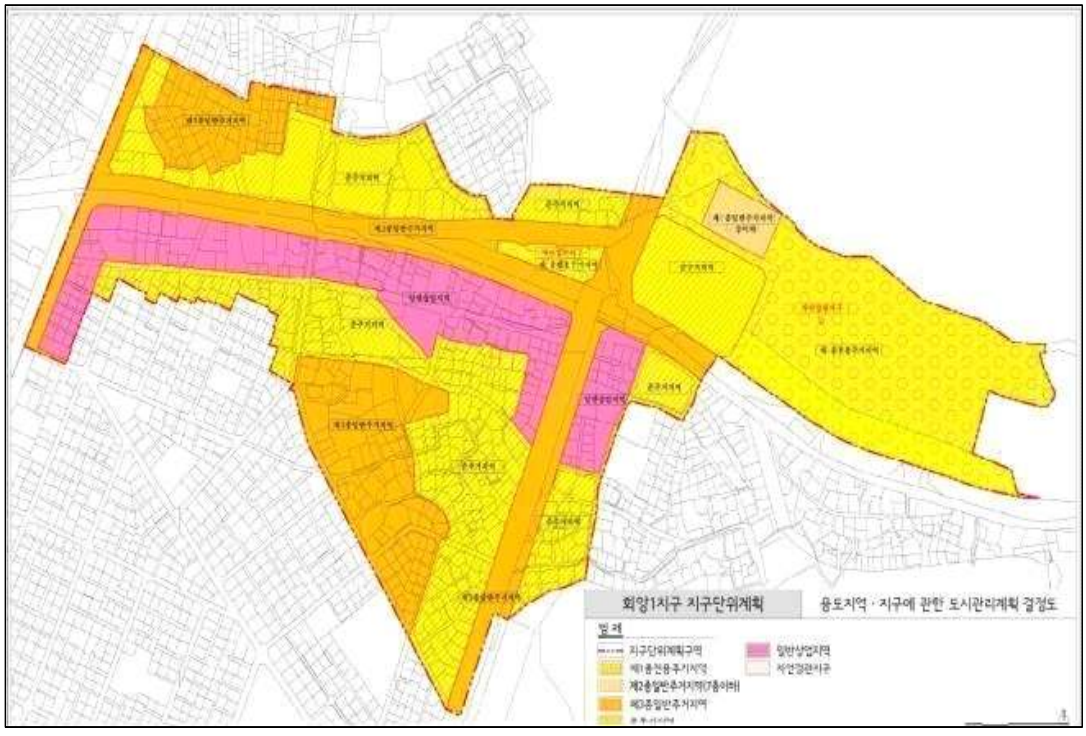

▌구로디지털단지역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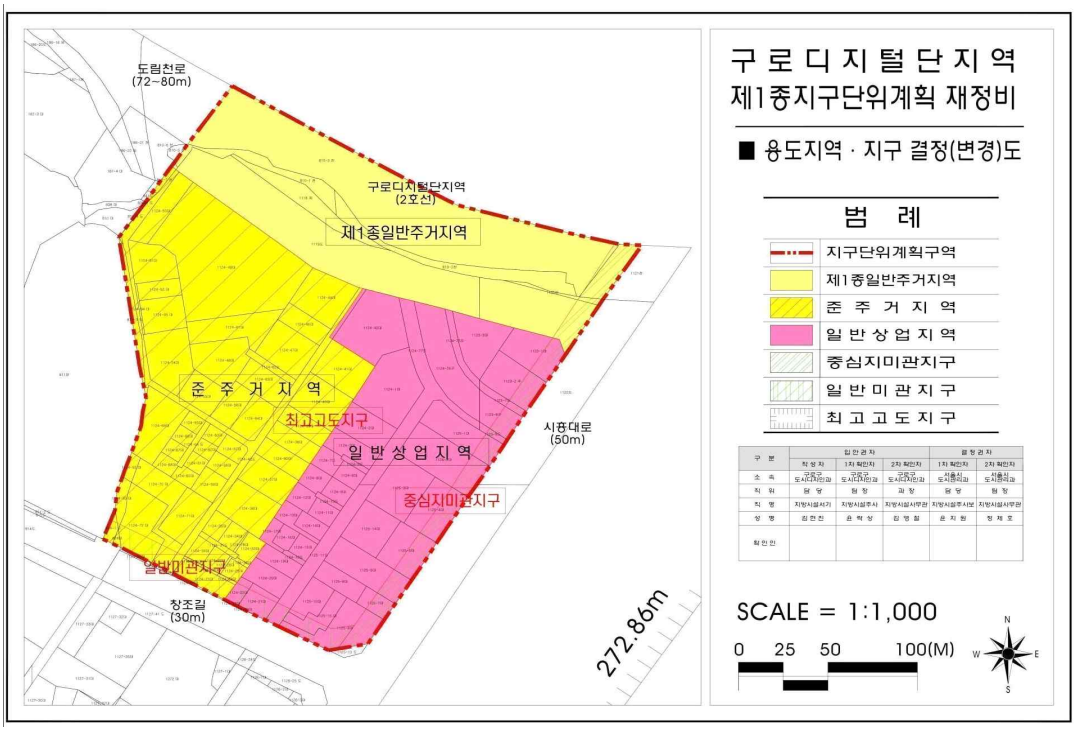

▌가산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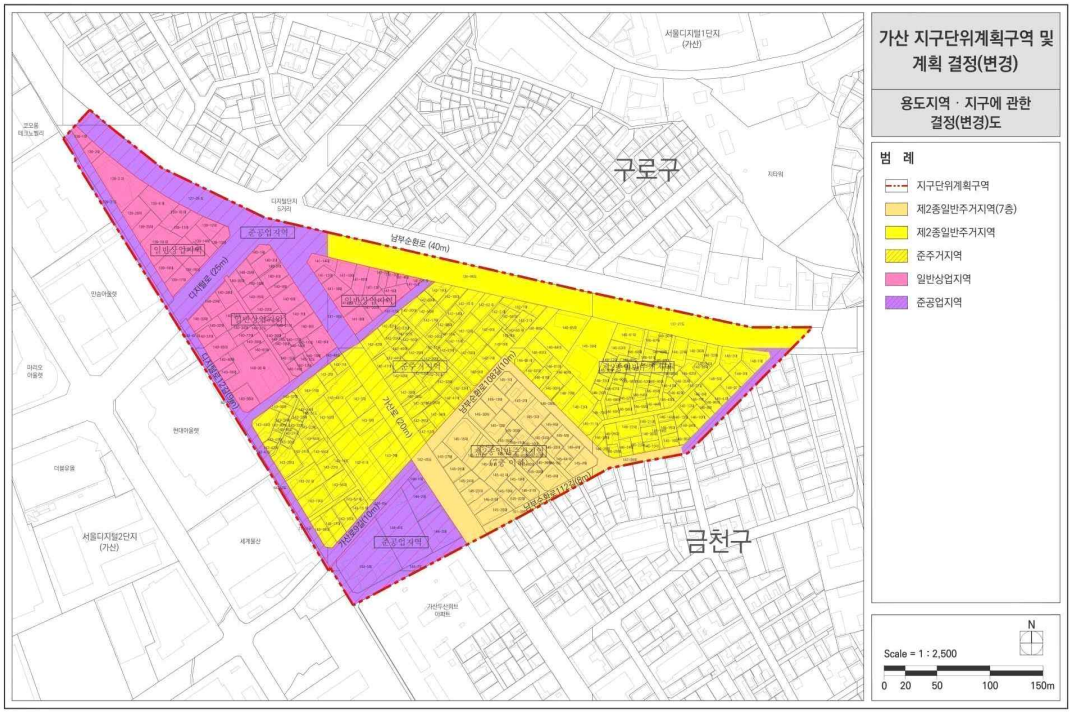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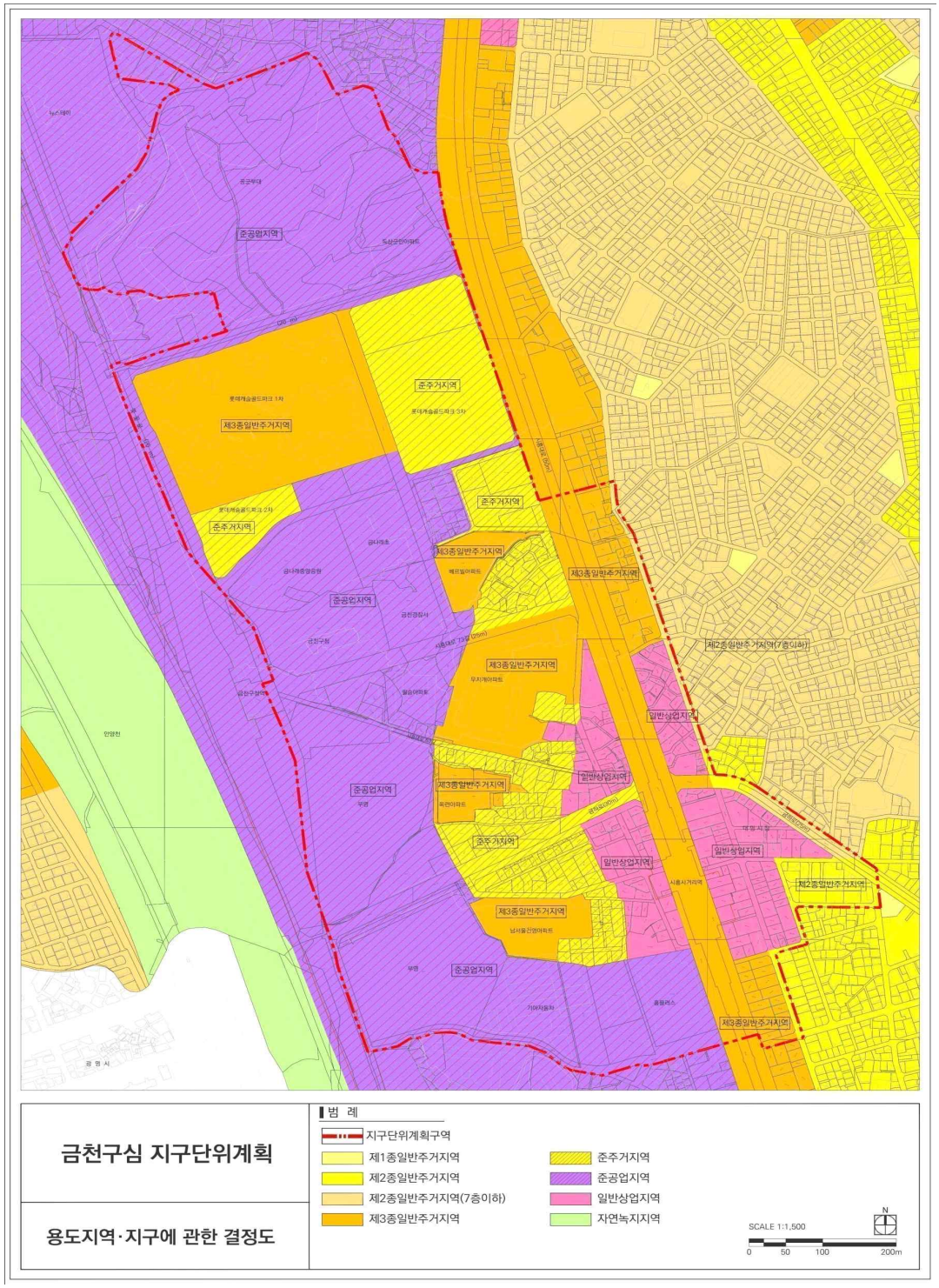

▌독산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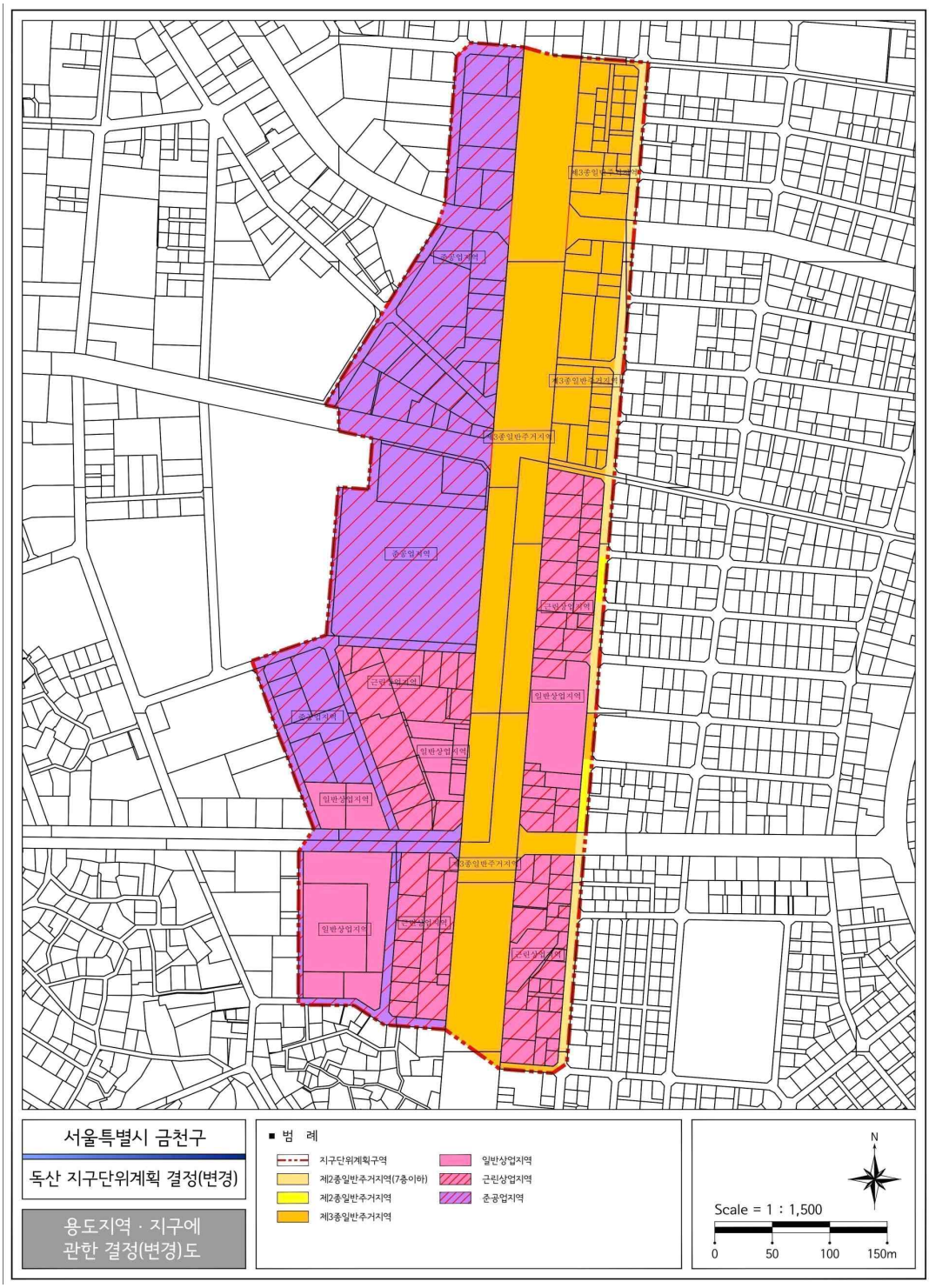

▌전농2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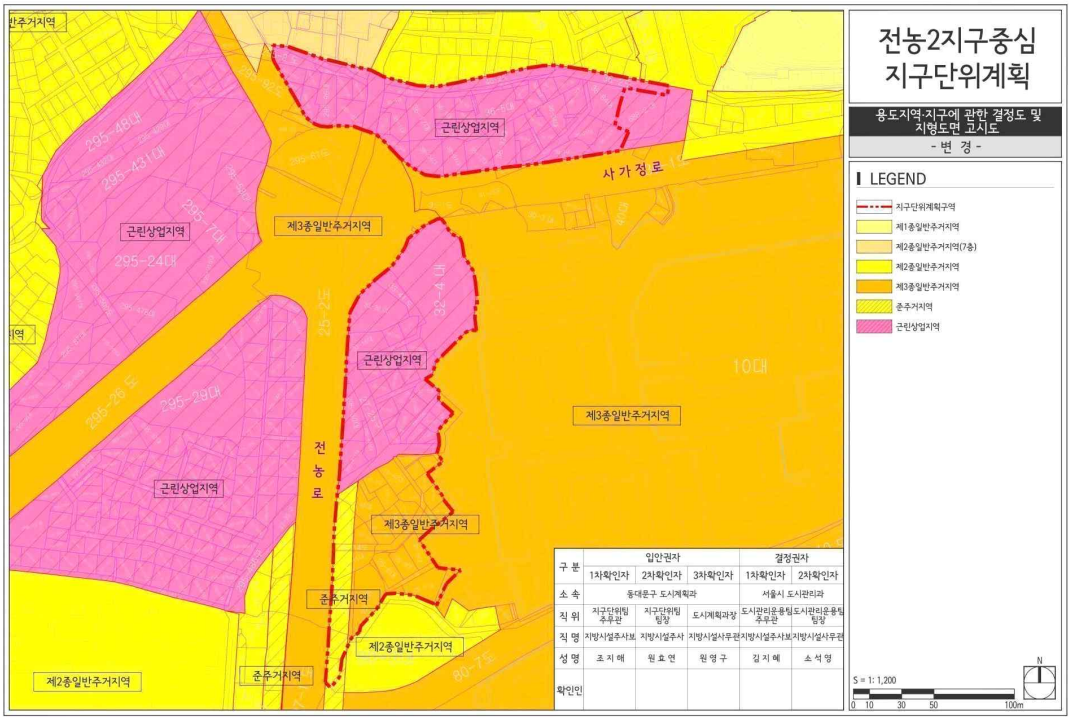

▌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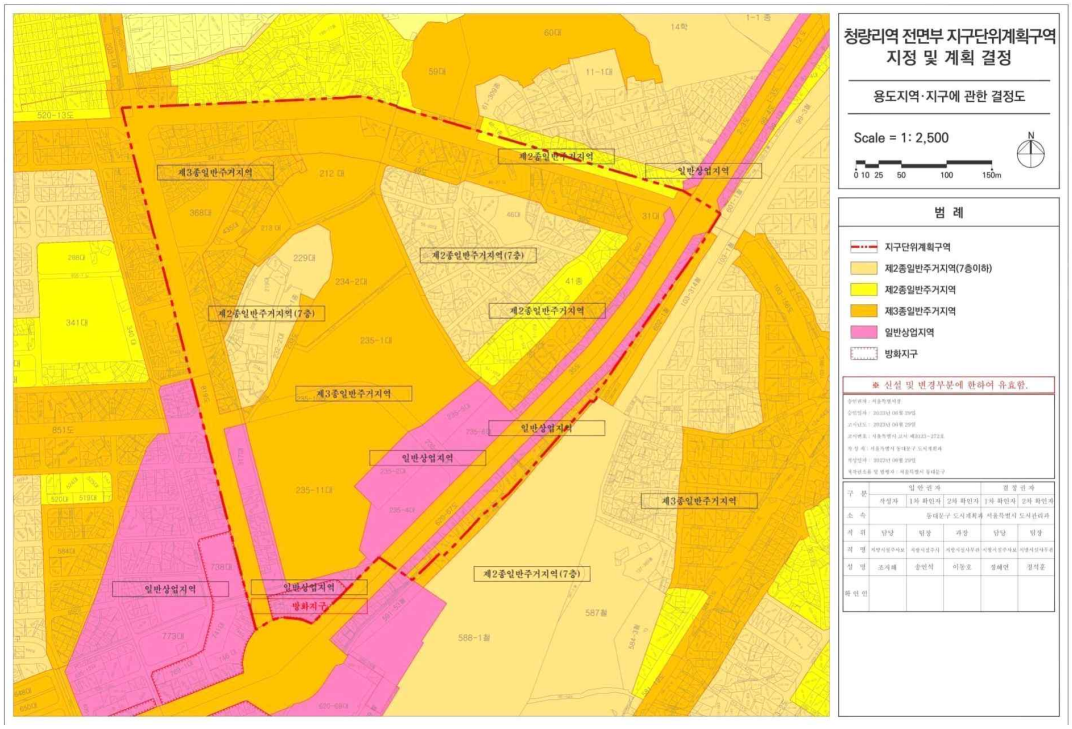

▌장안평일대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신설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사당 · 이수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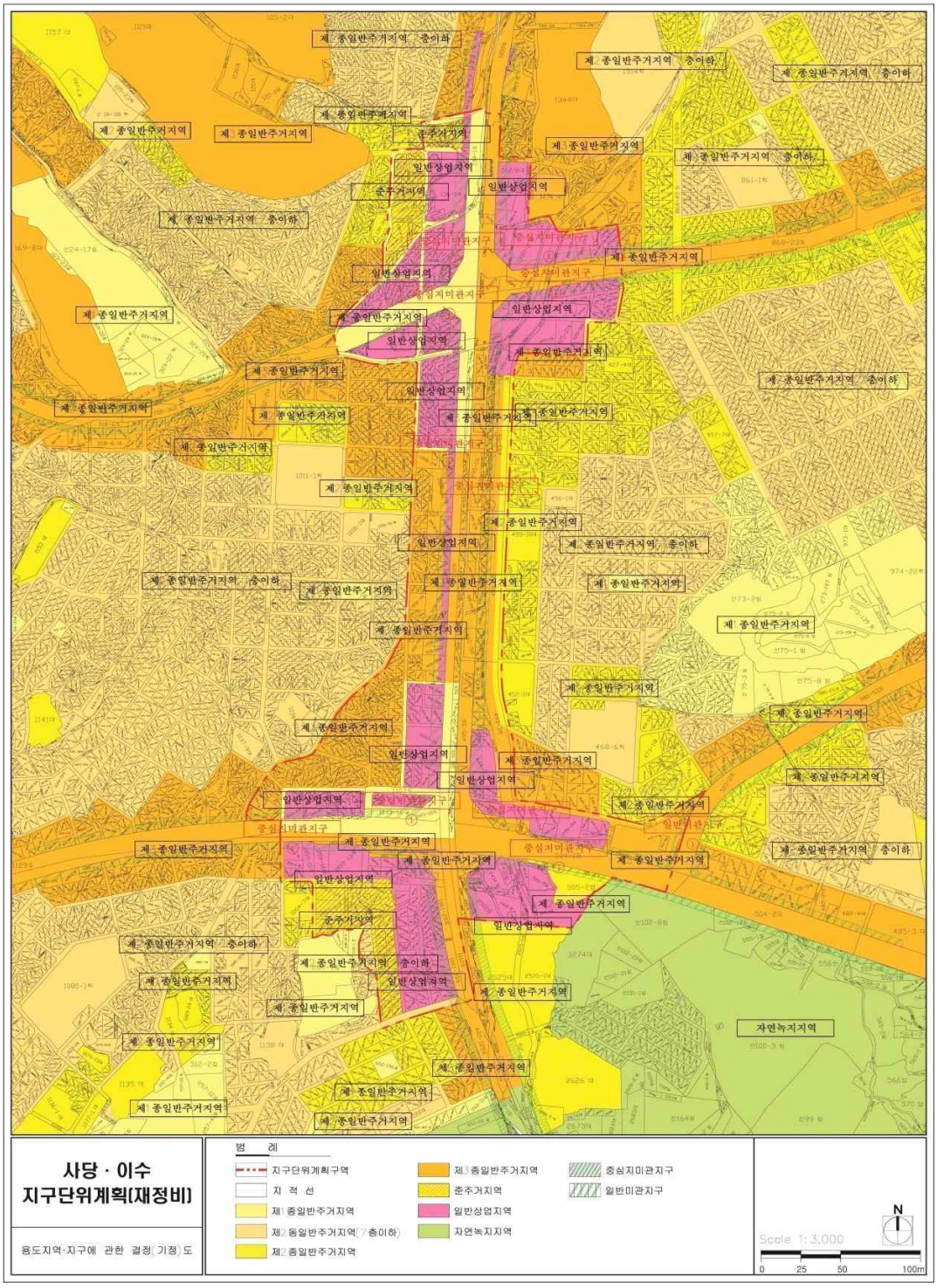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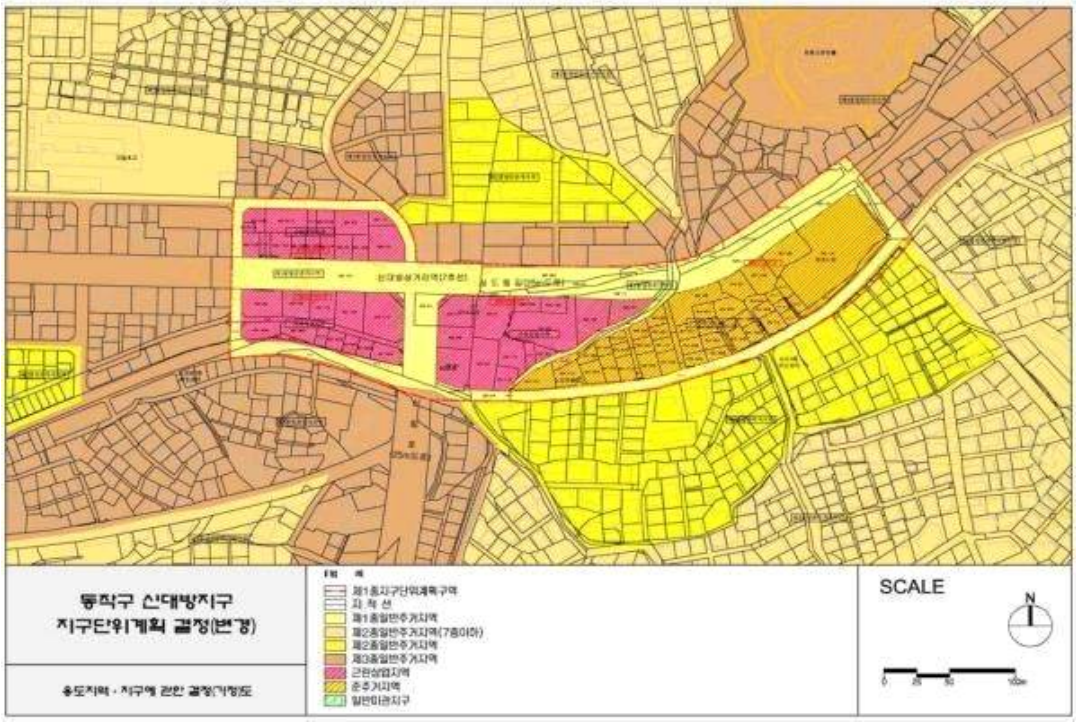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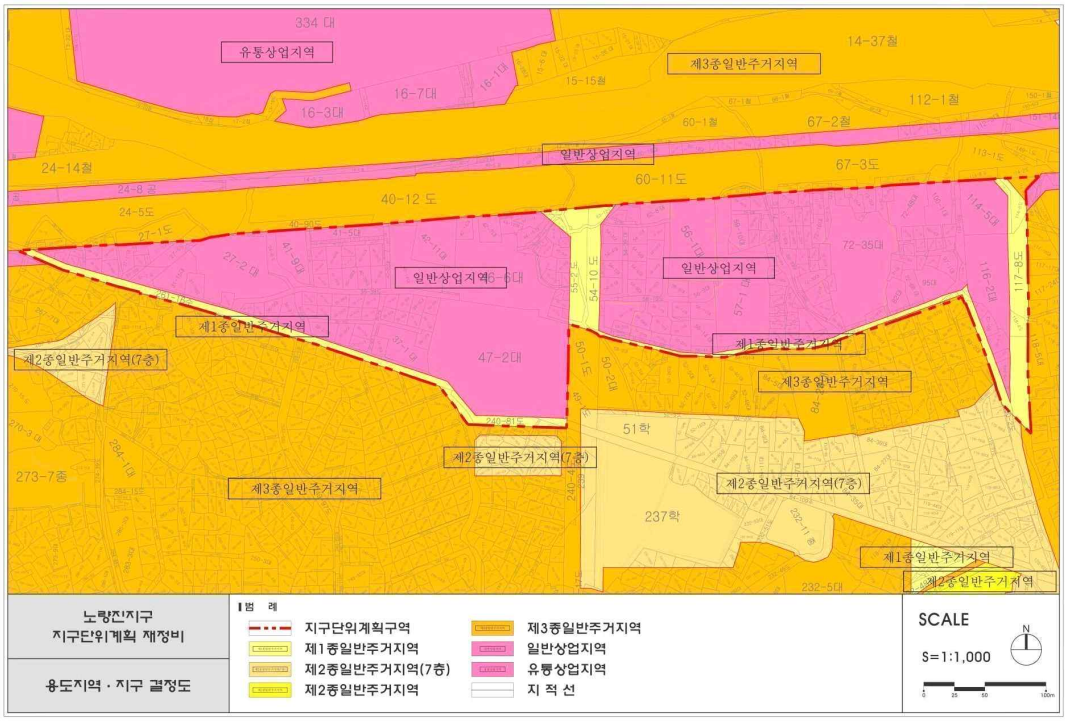

▌아현2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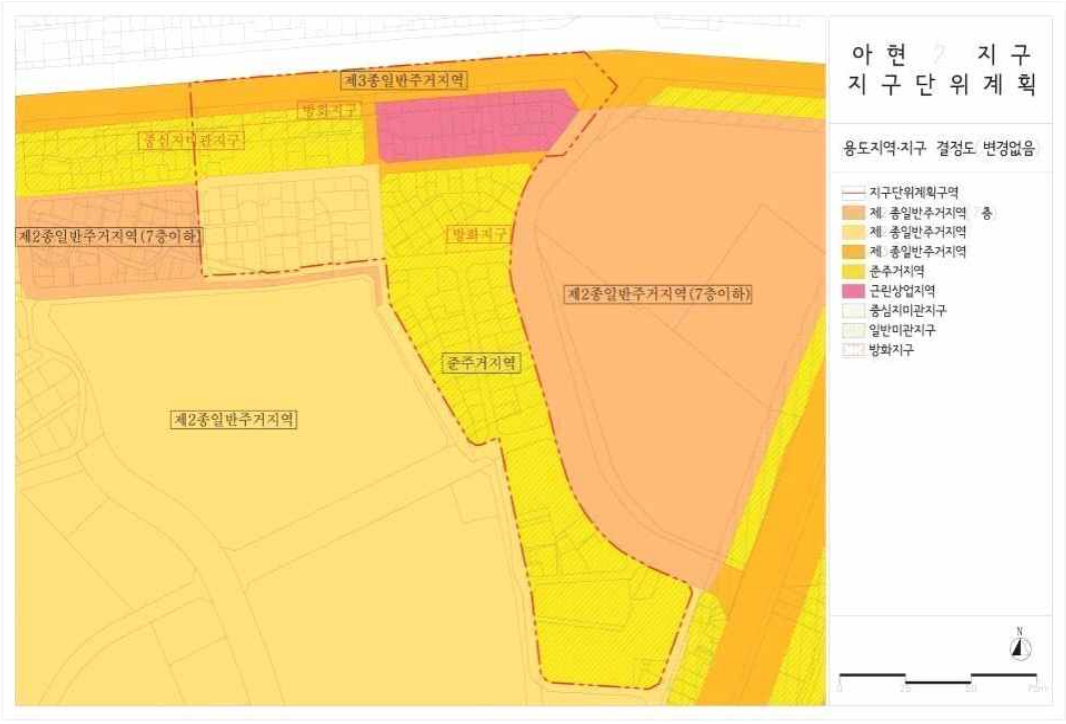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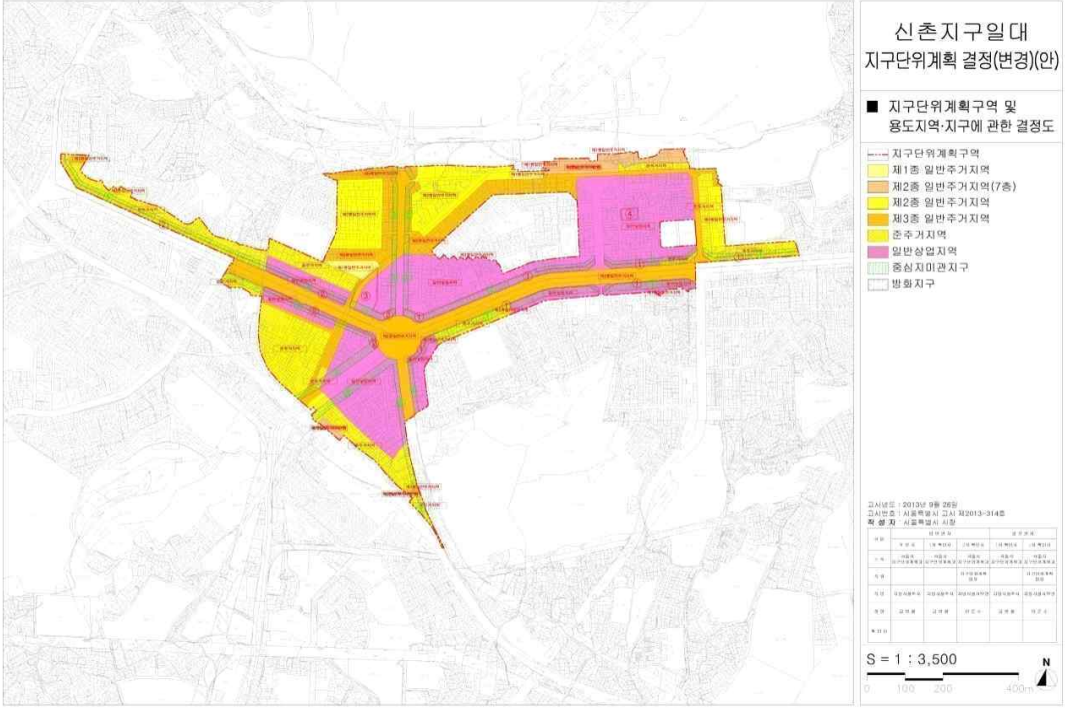

▌ 충정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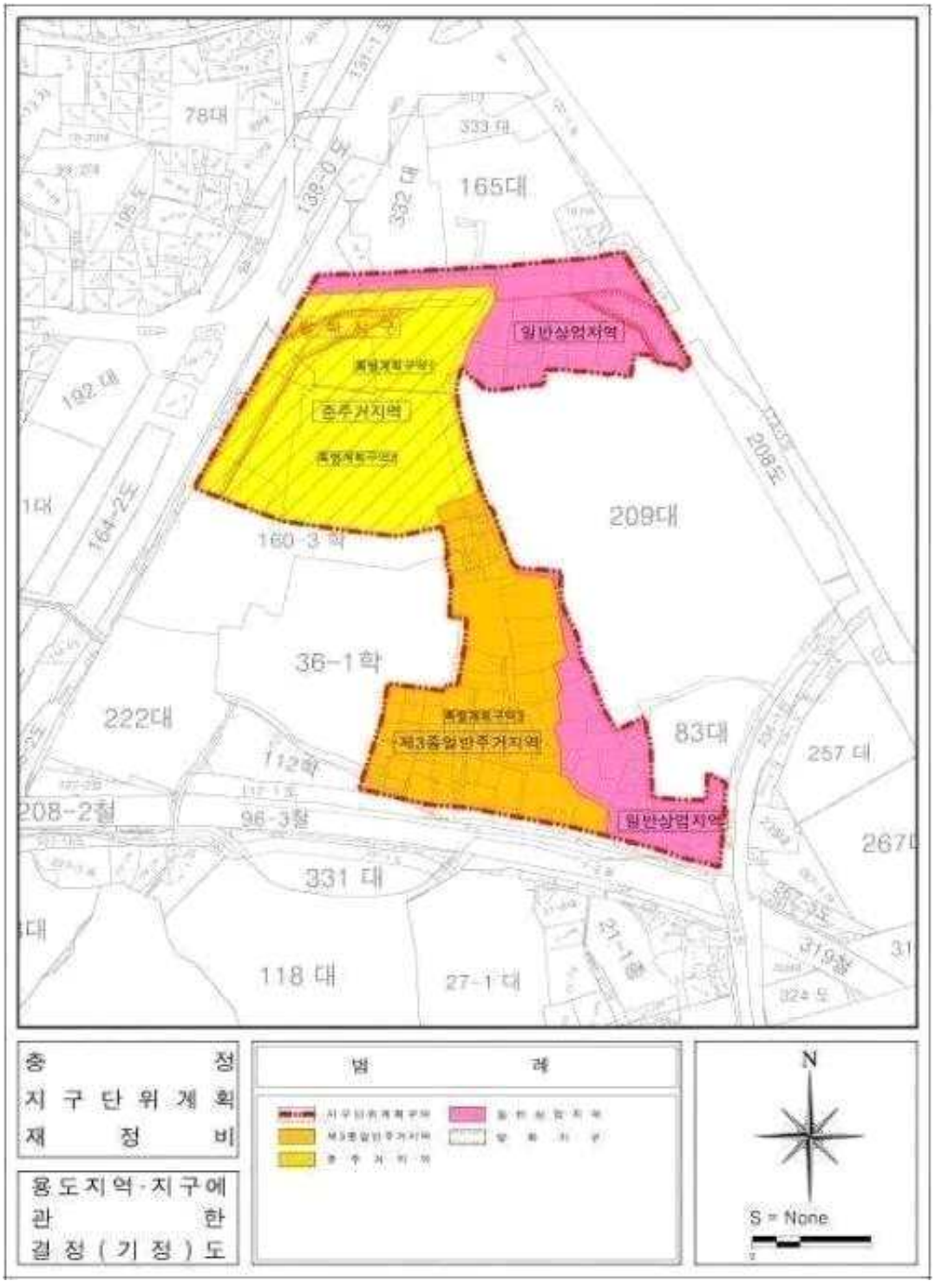

▌공릉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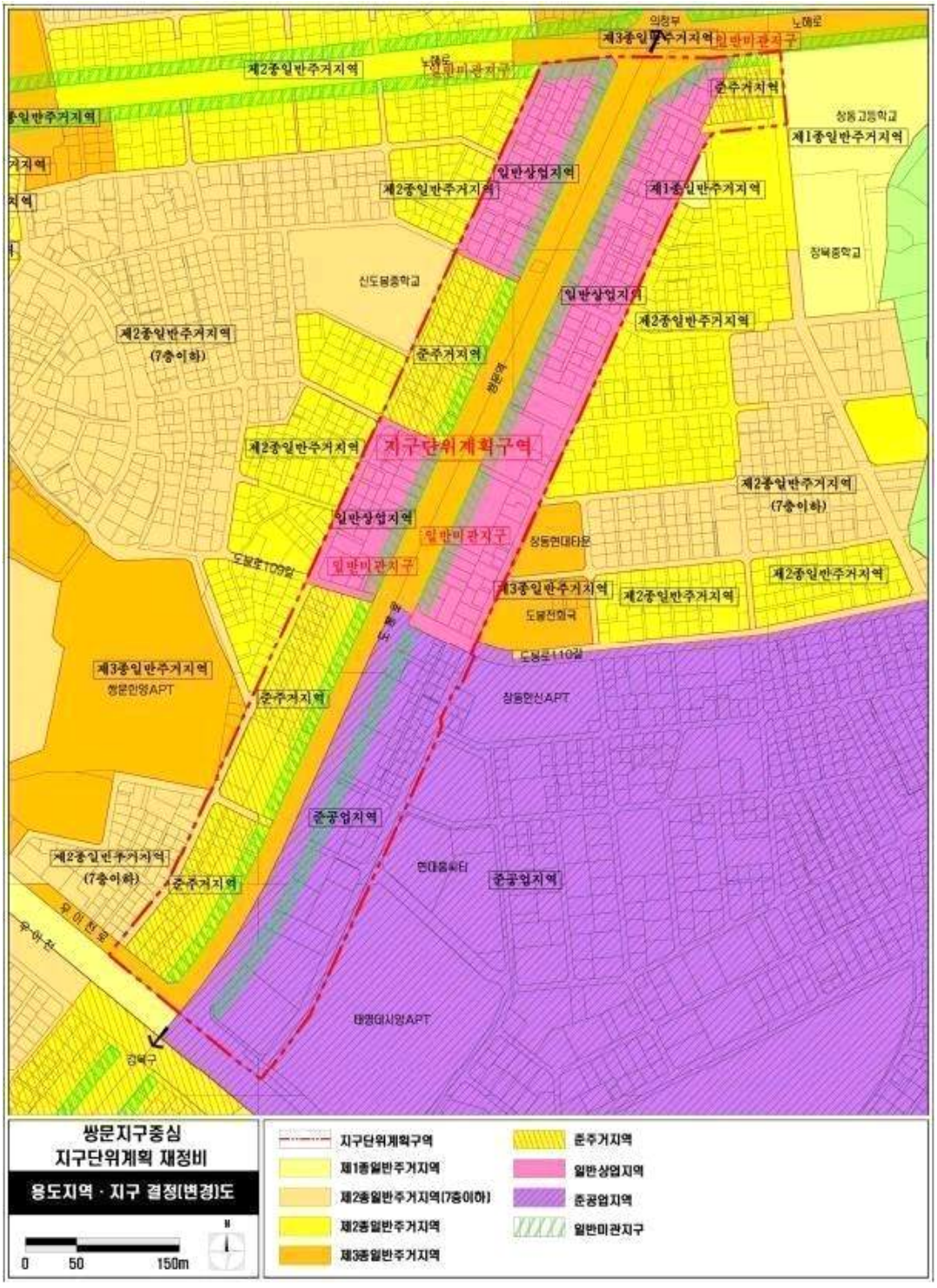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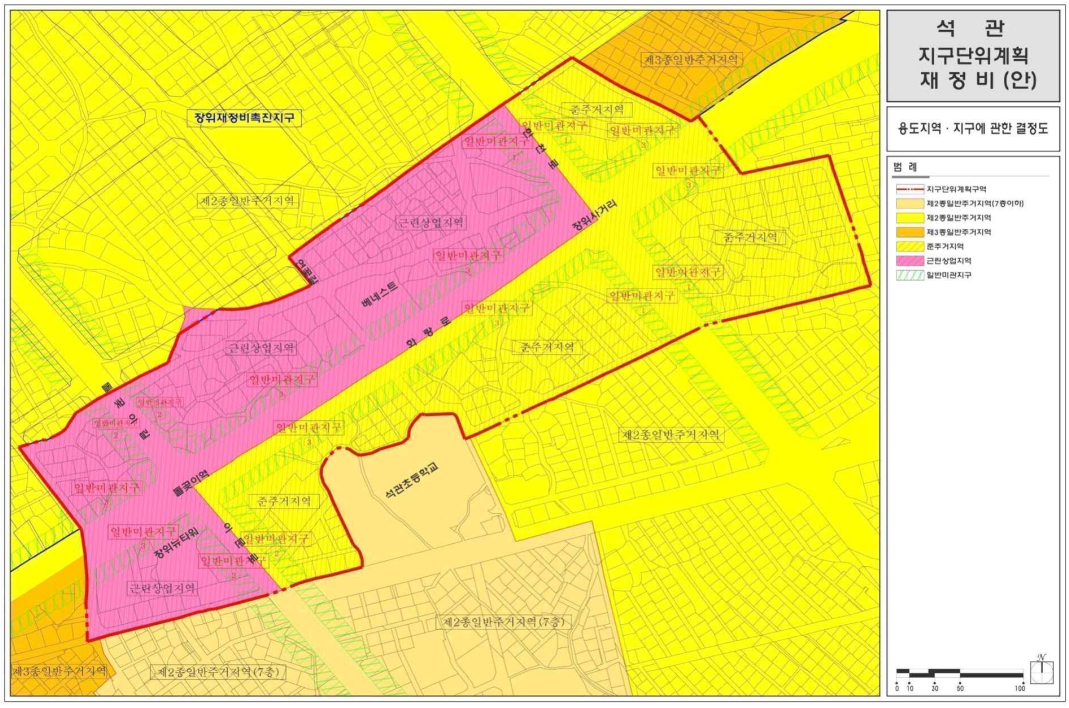

▌동선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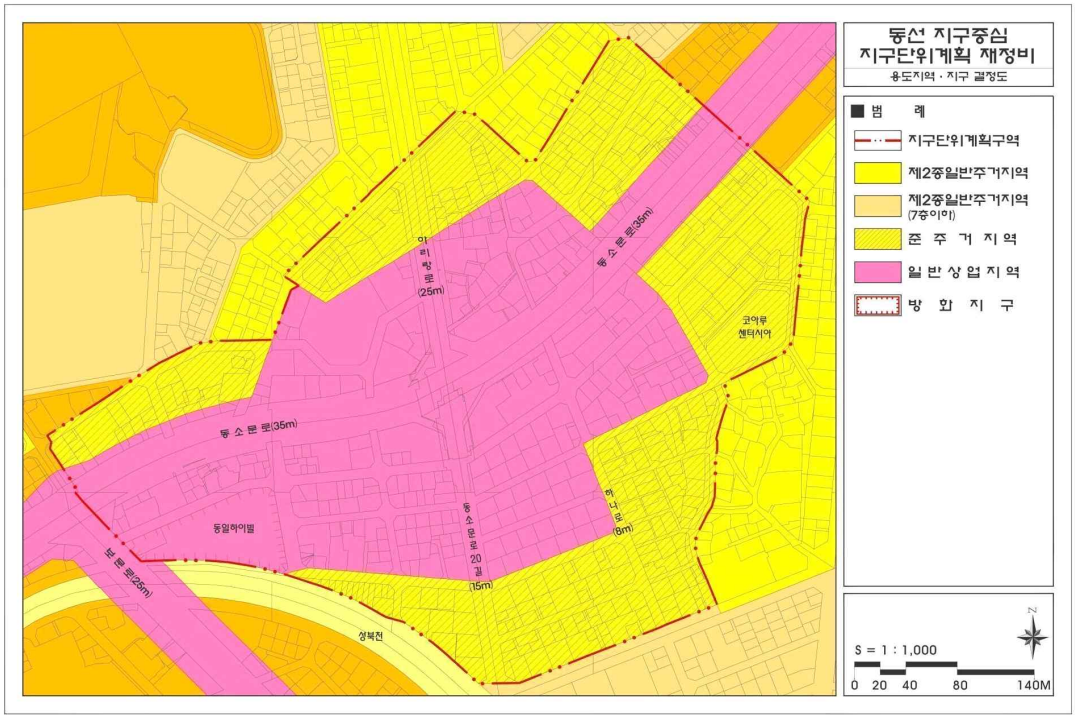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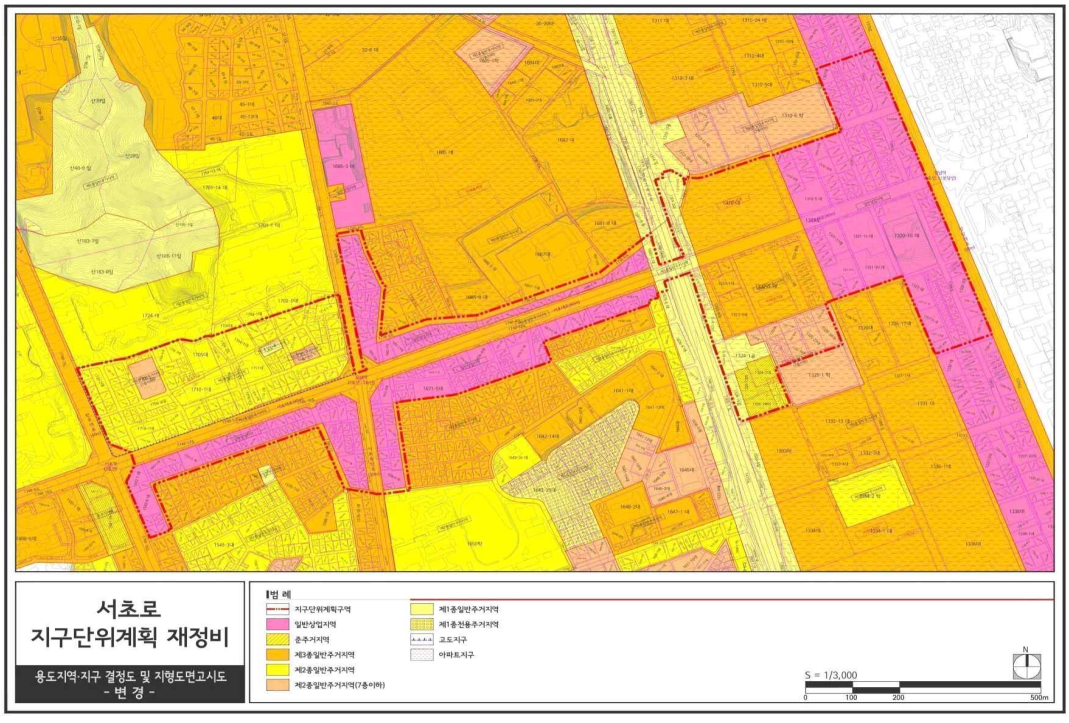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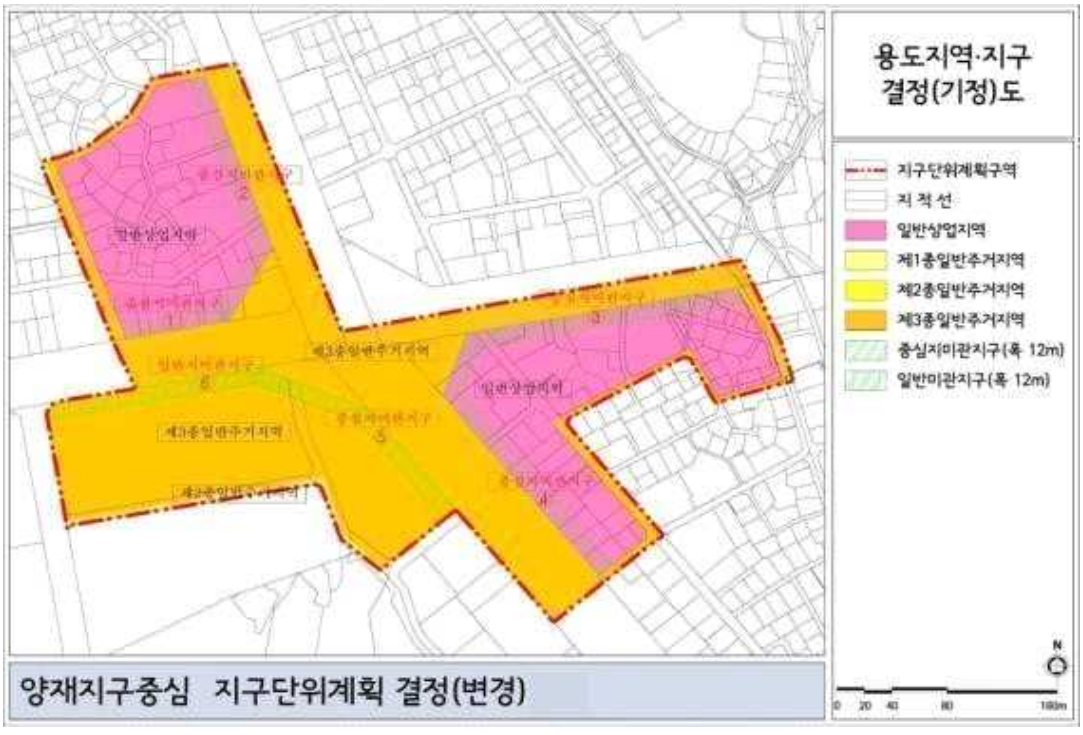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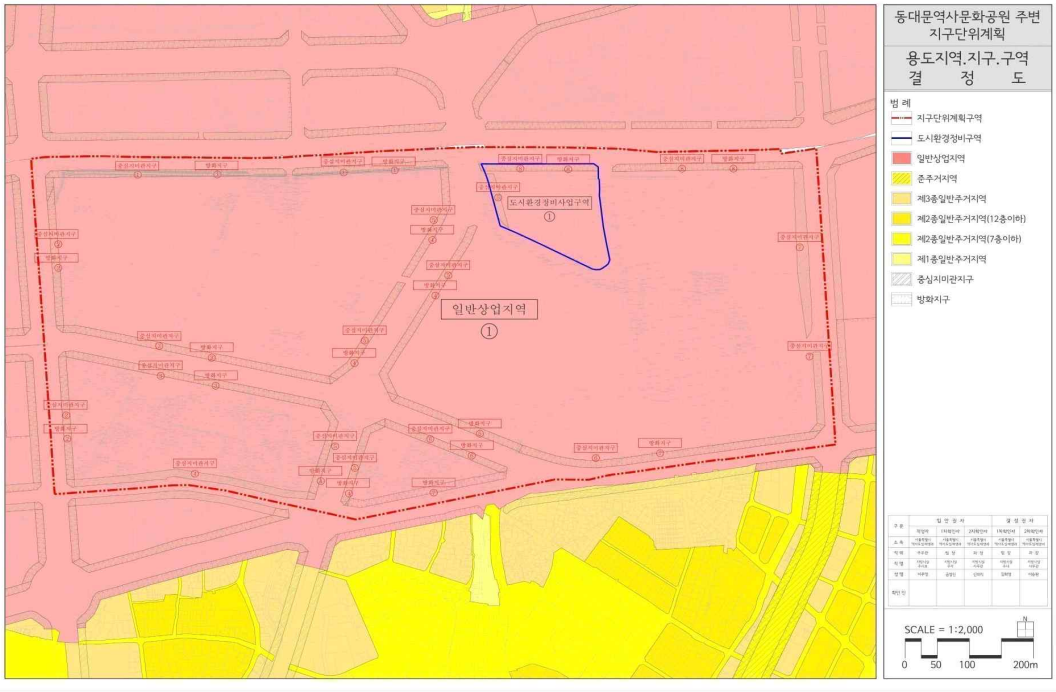

▌신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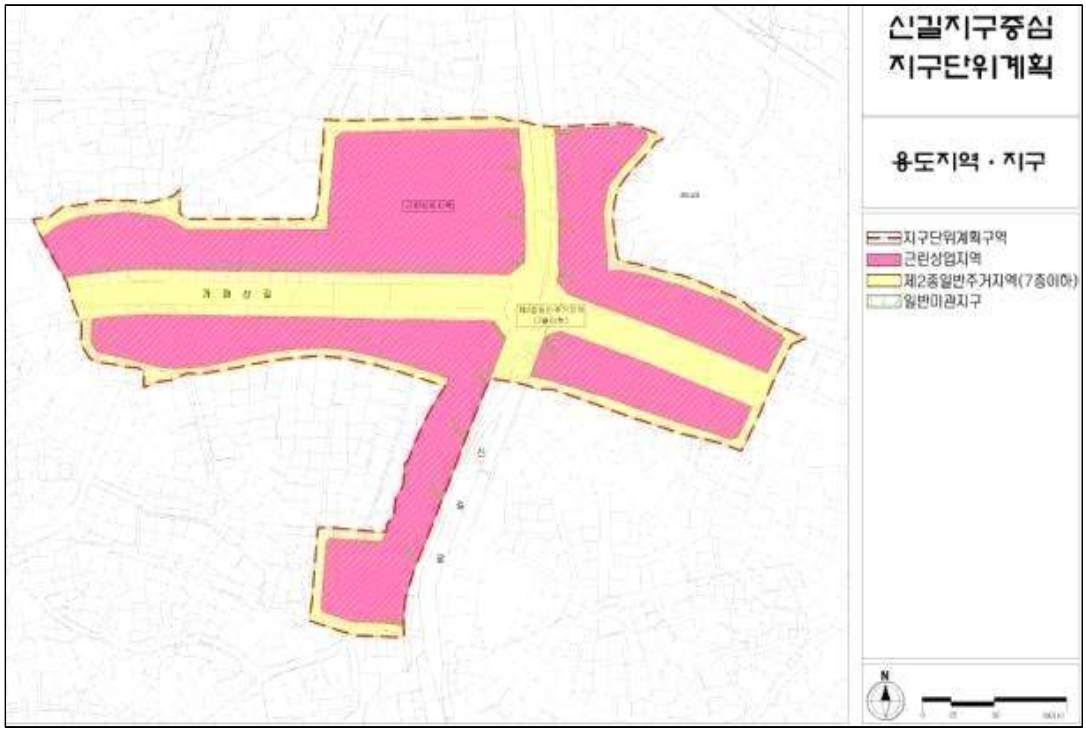

▌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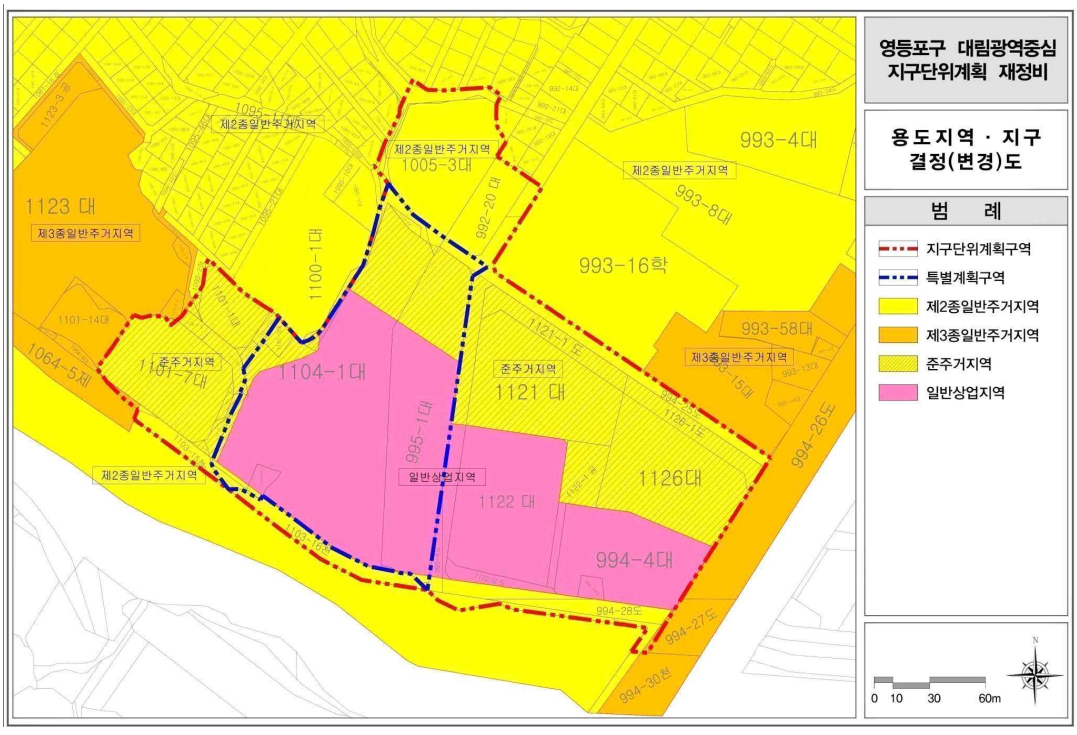

▌한남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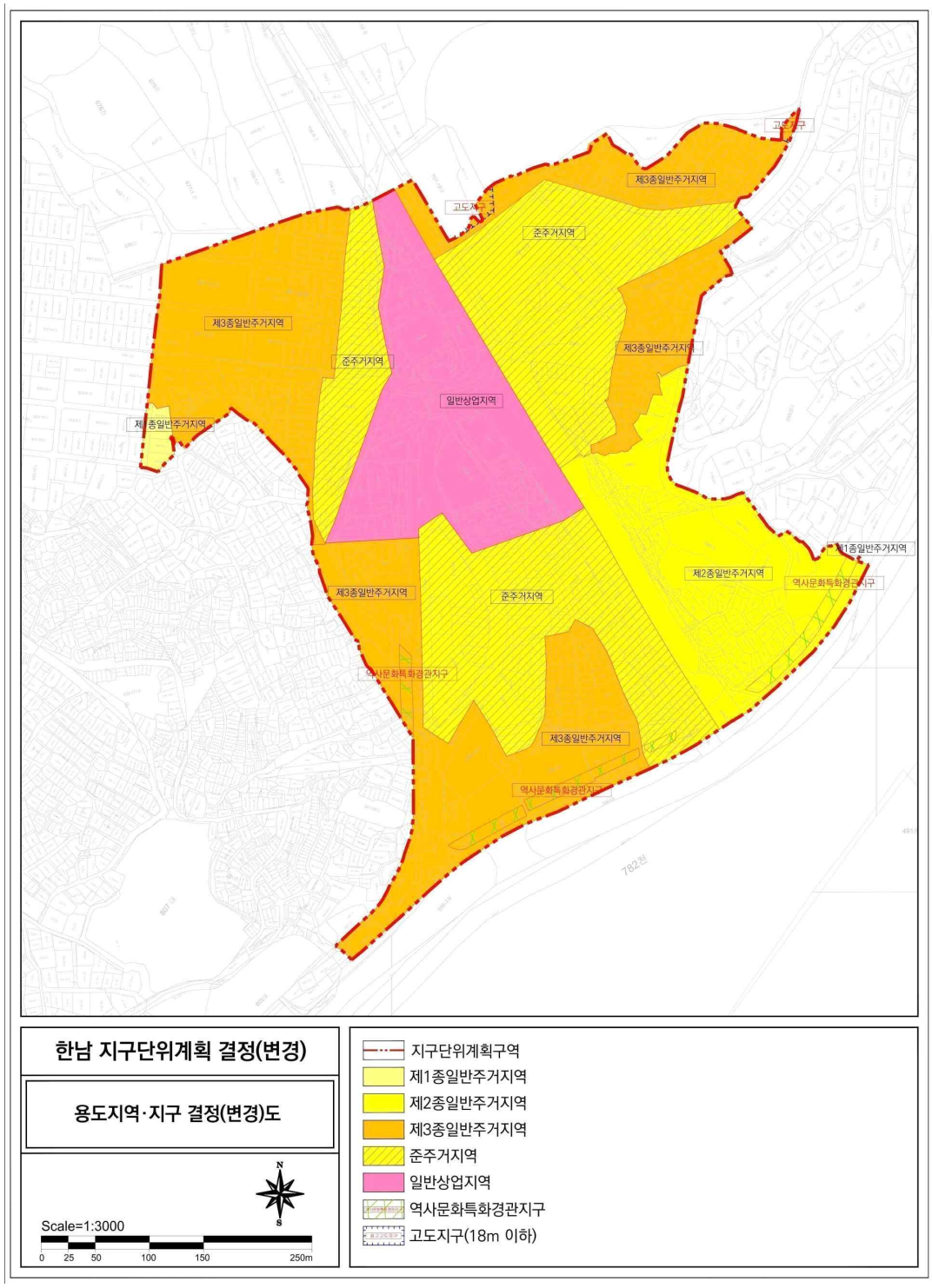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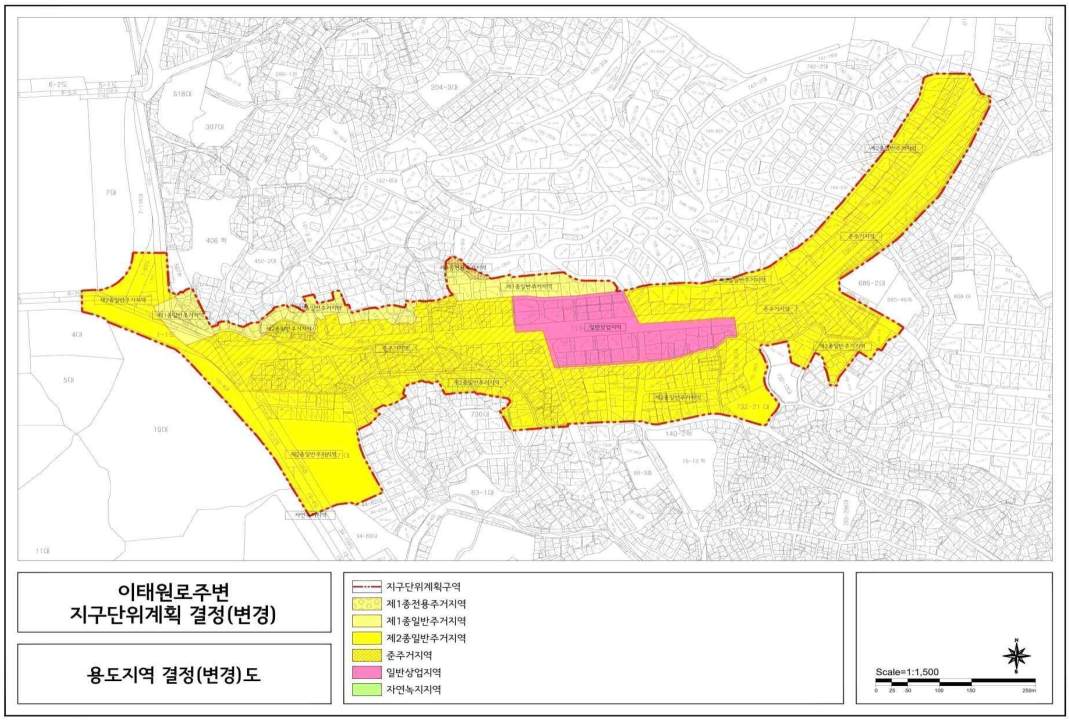

▌응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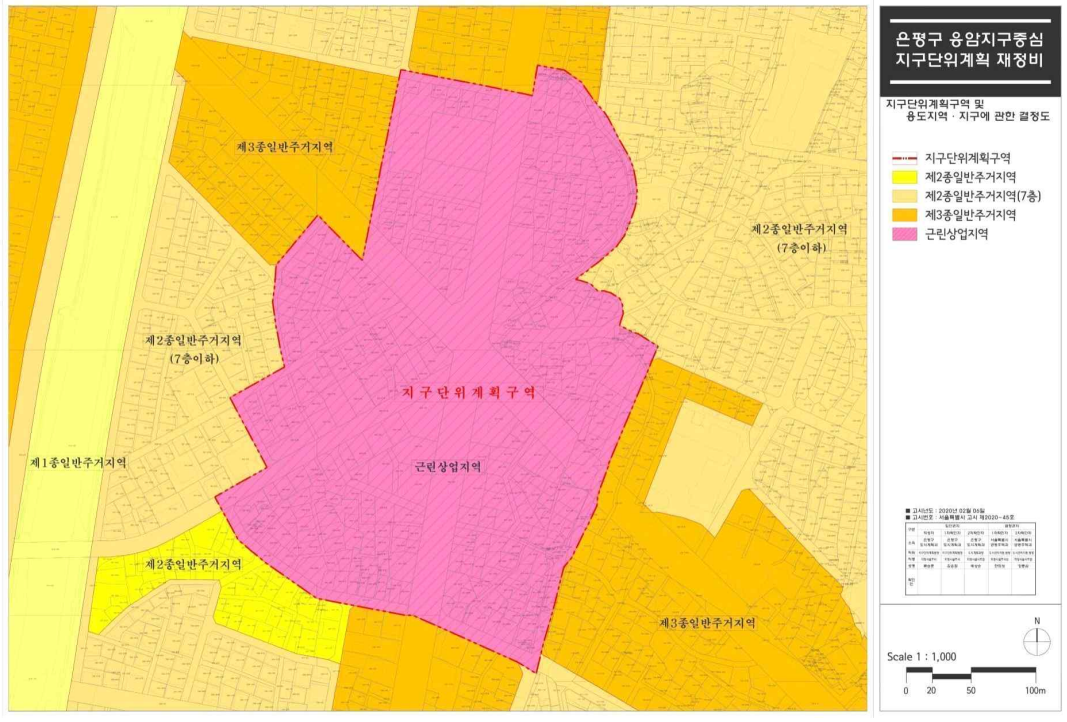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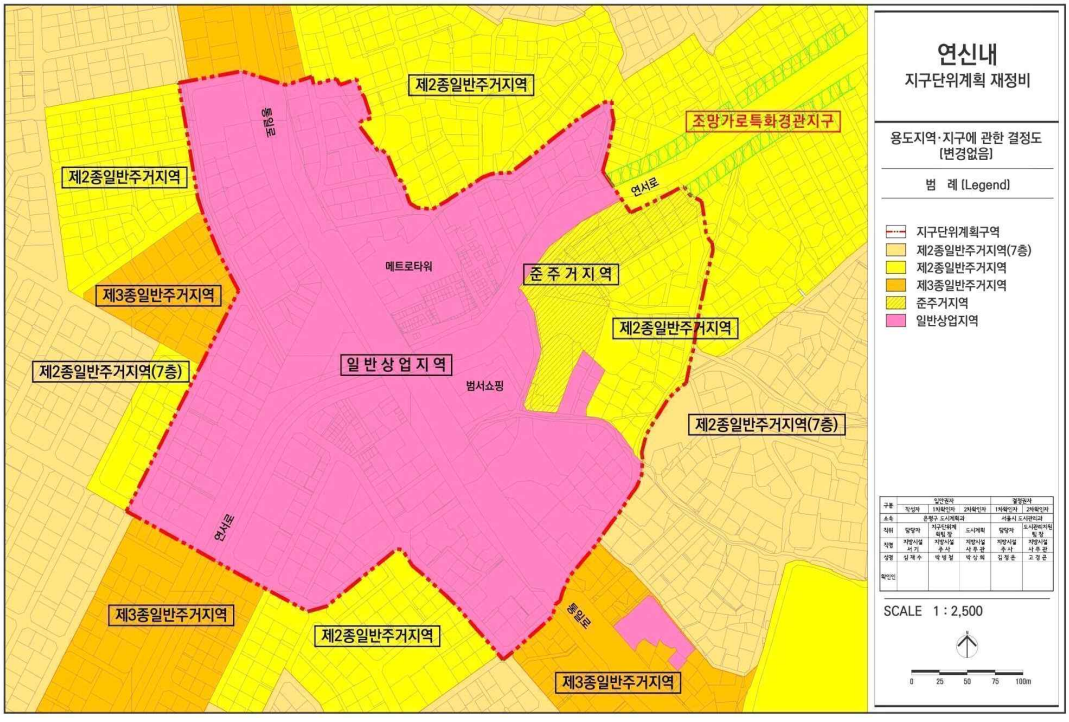

▌불광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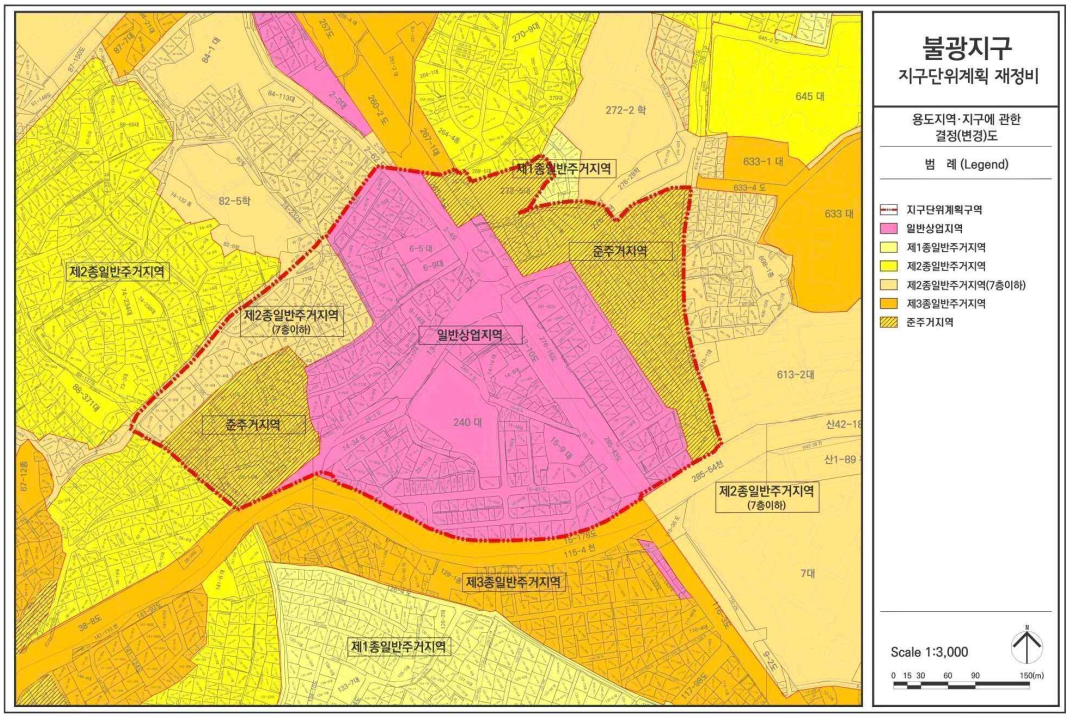

▌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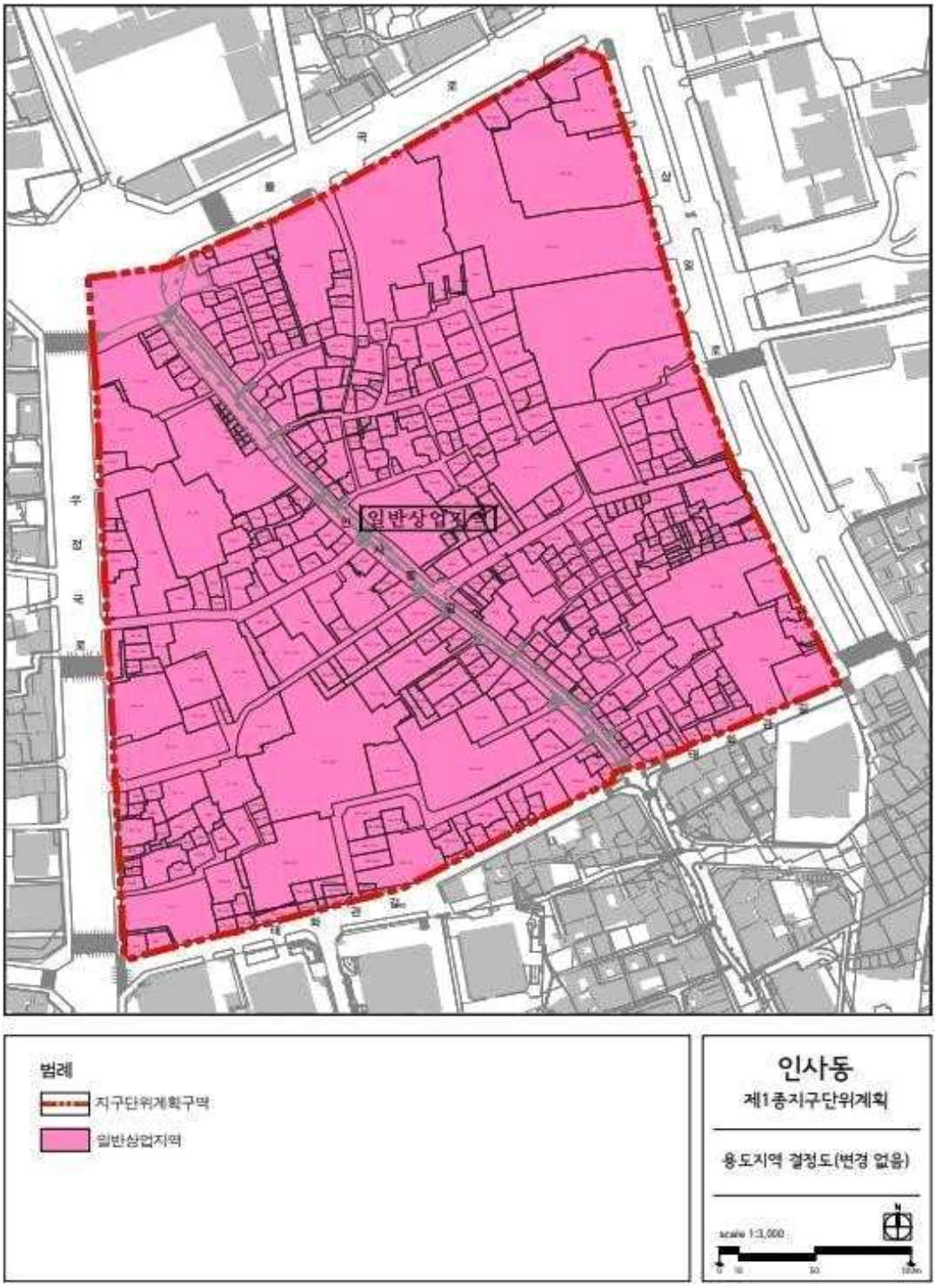

▌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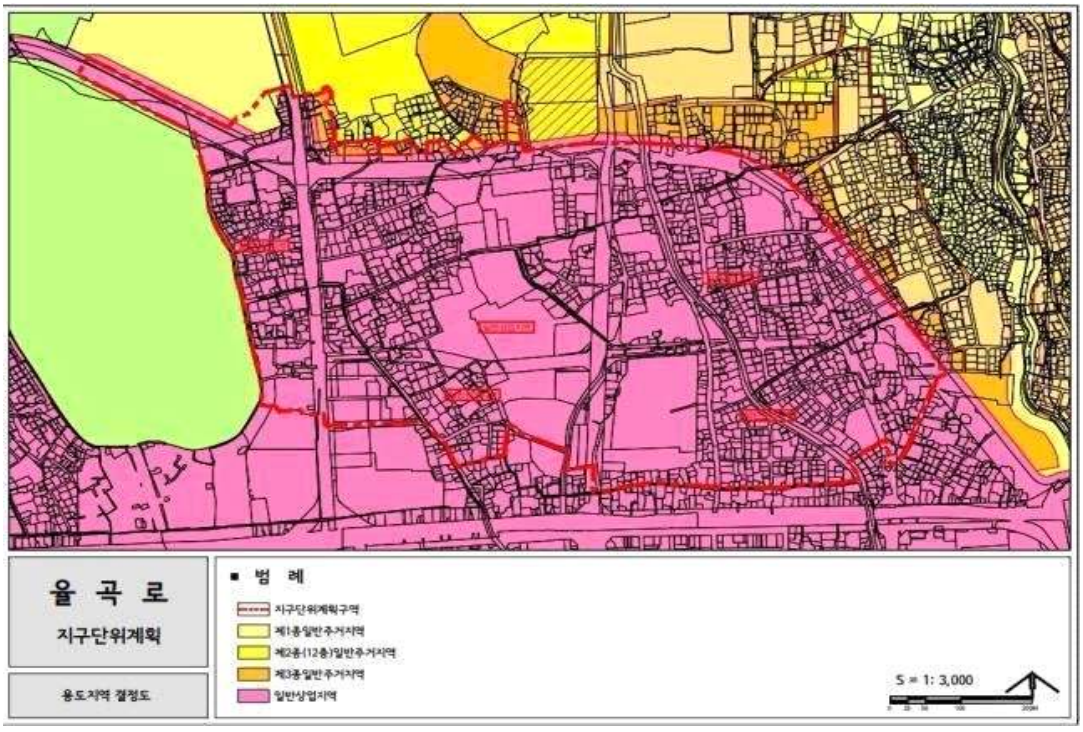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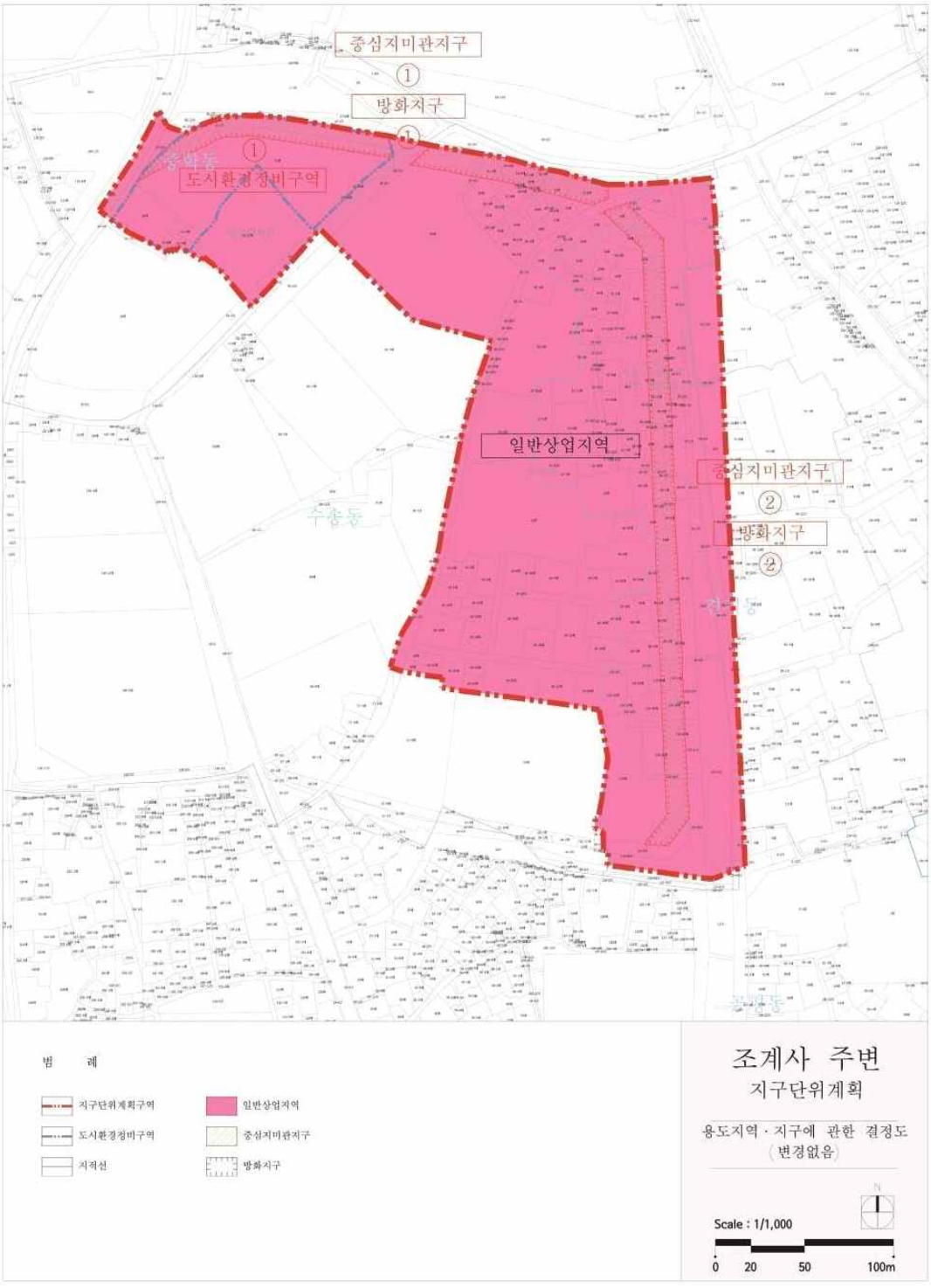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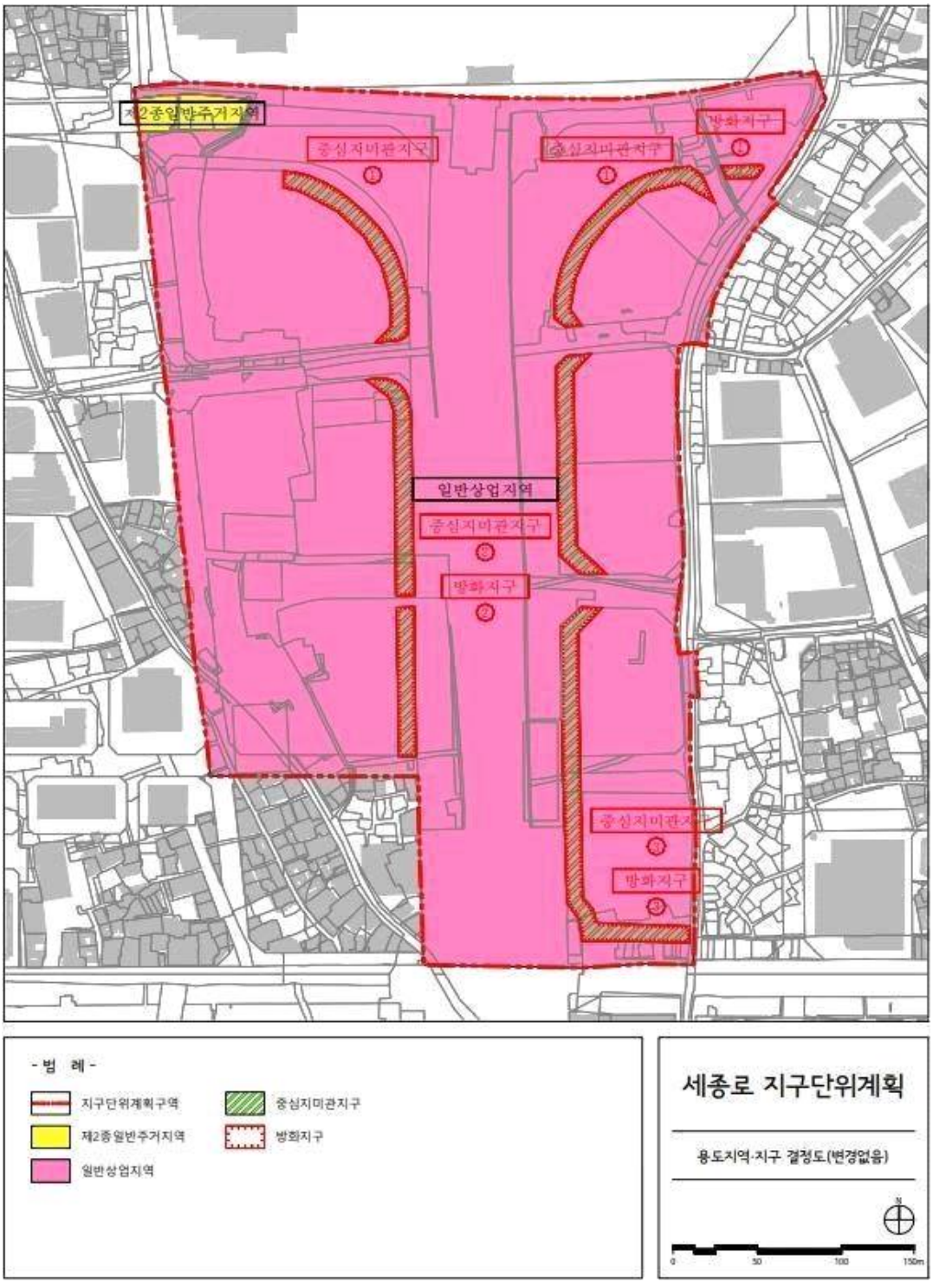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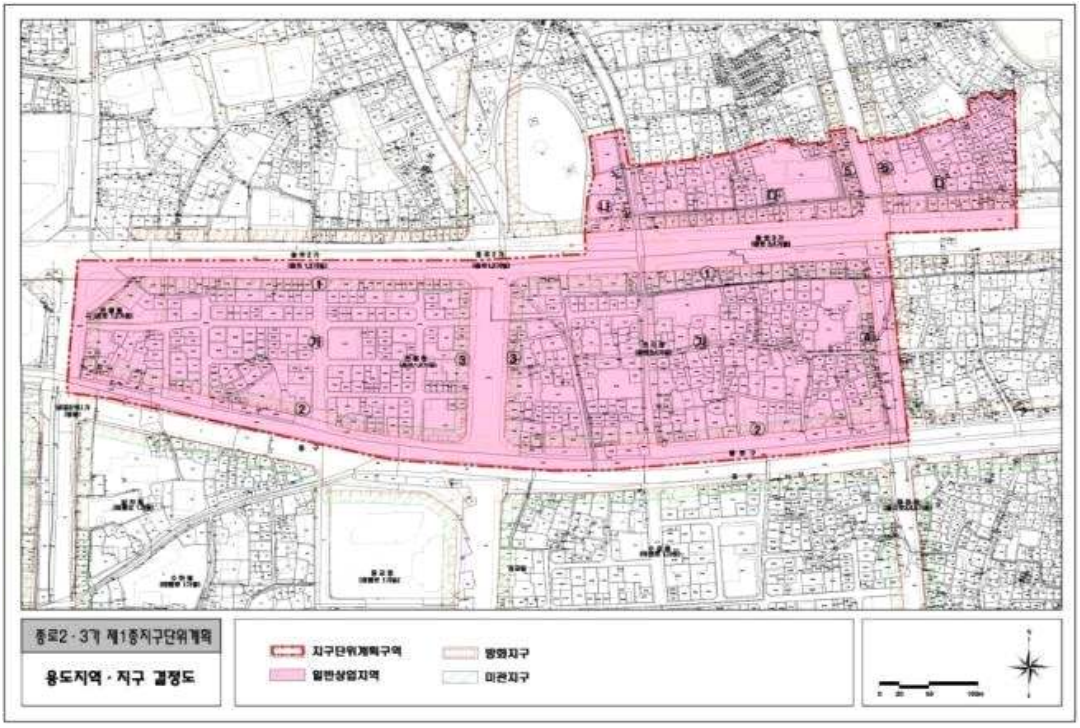

▌ 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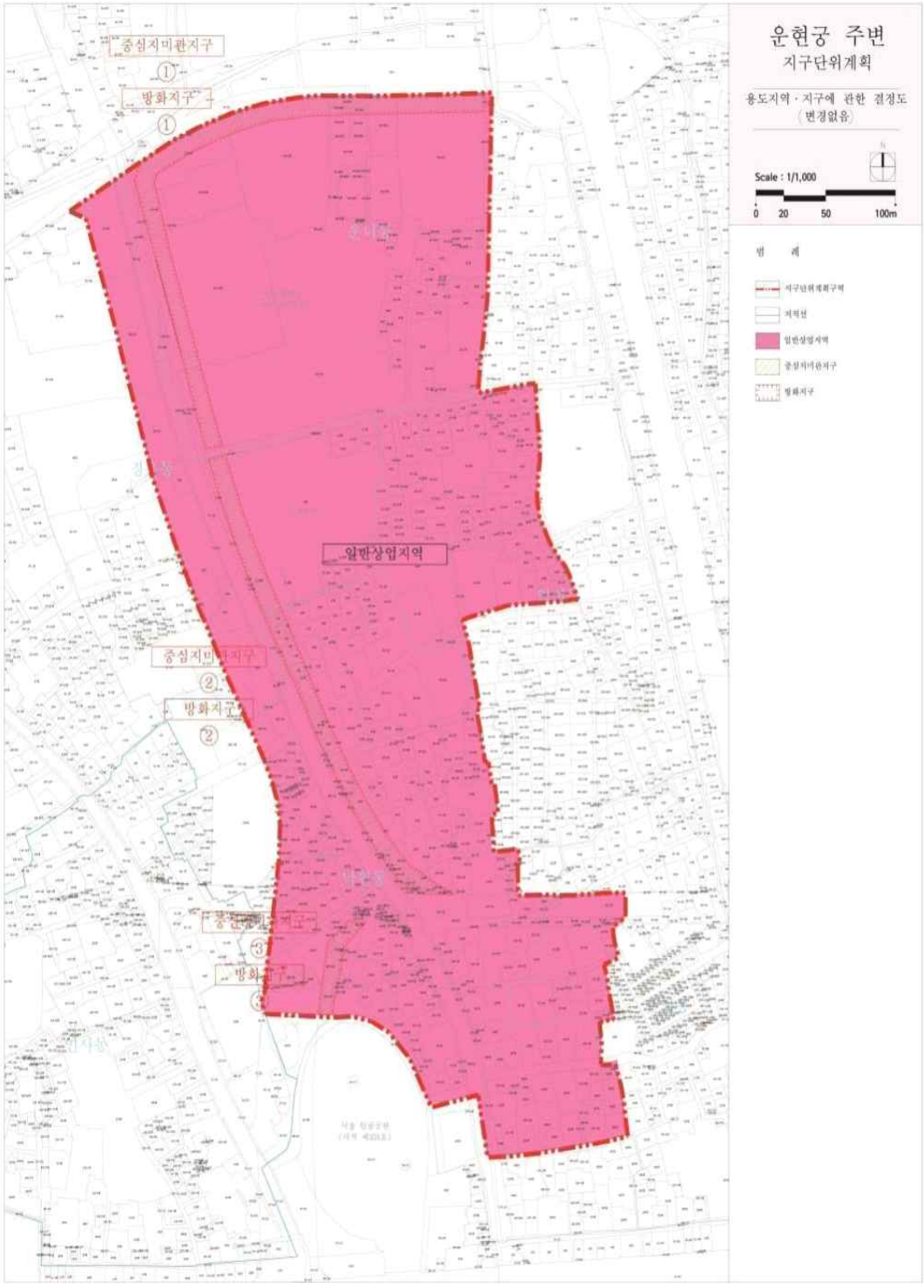

▌ 승인2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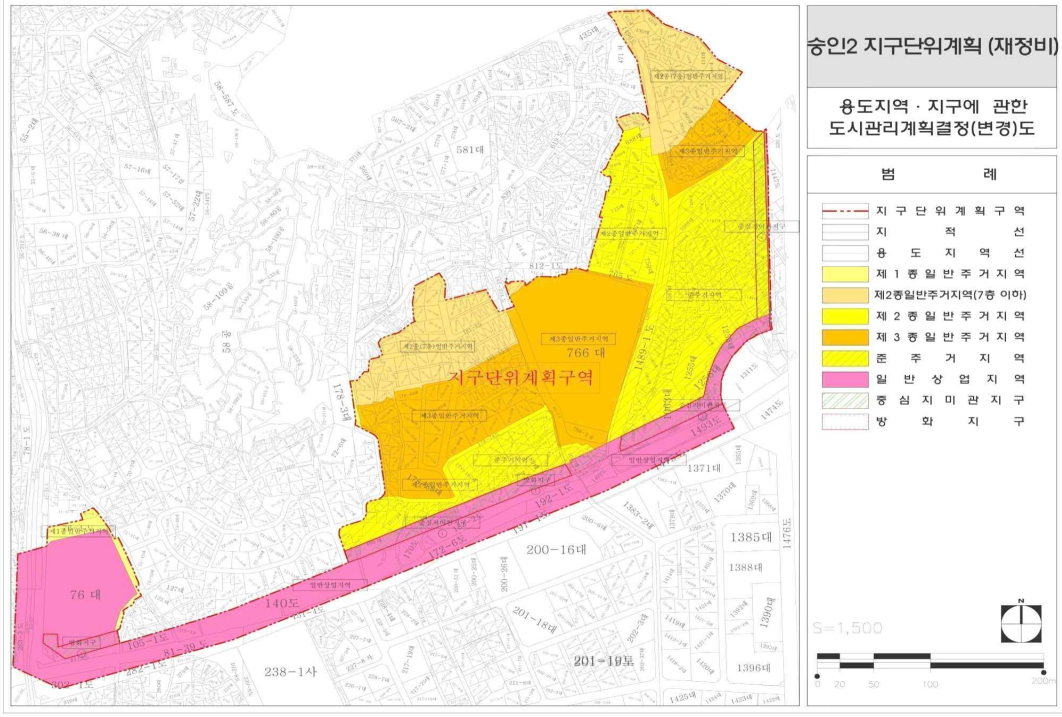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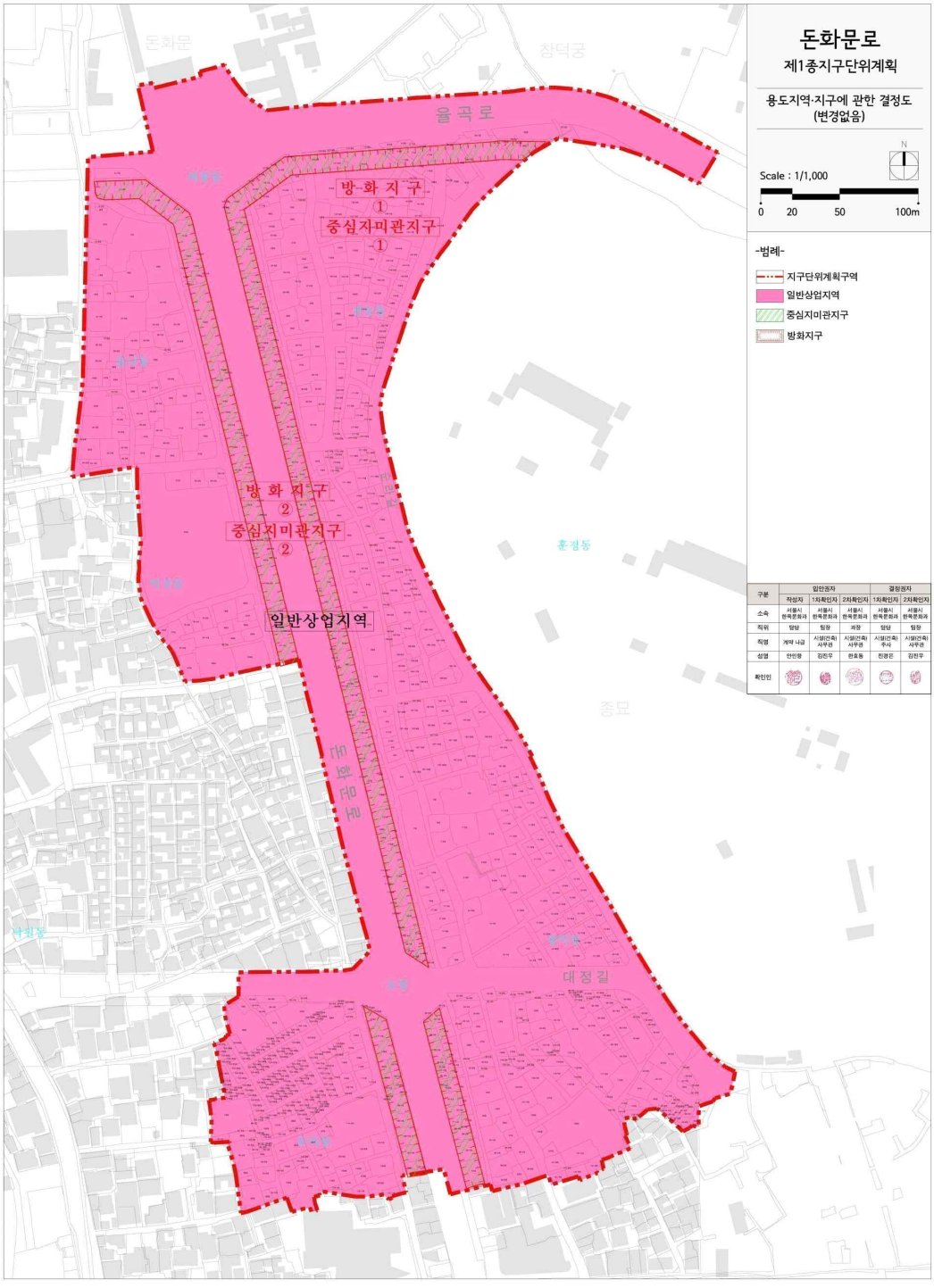

▌ 숭인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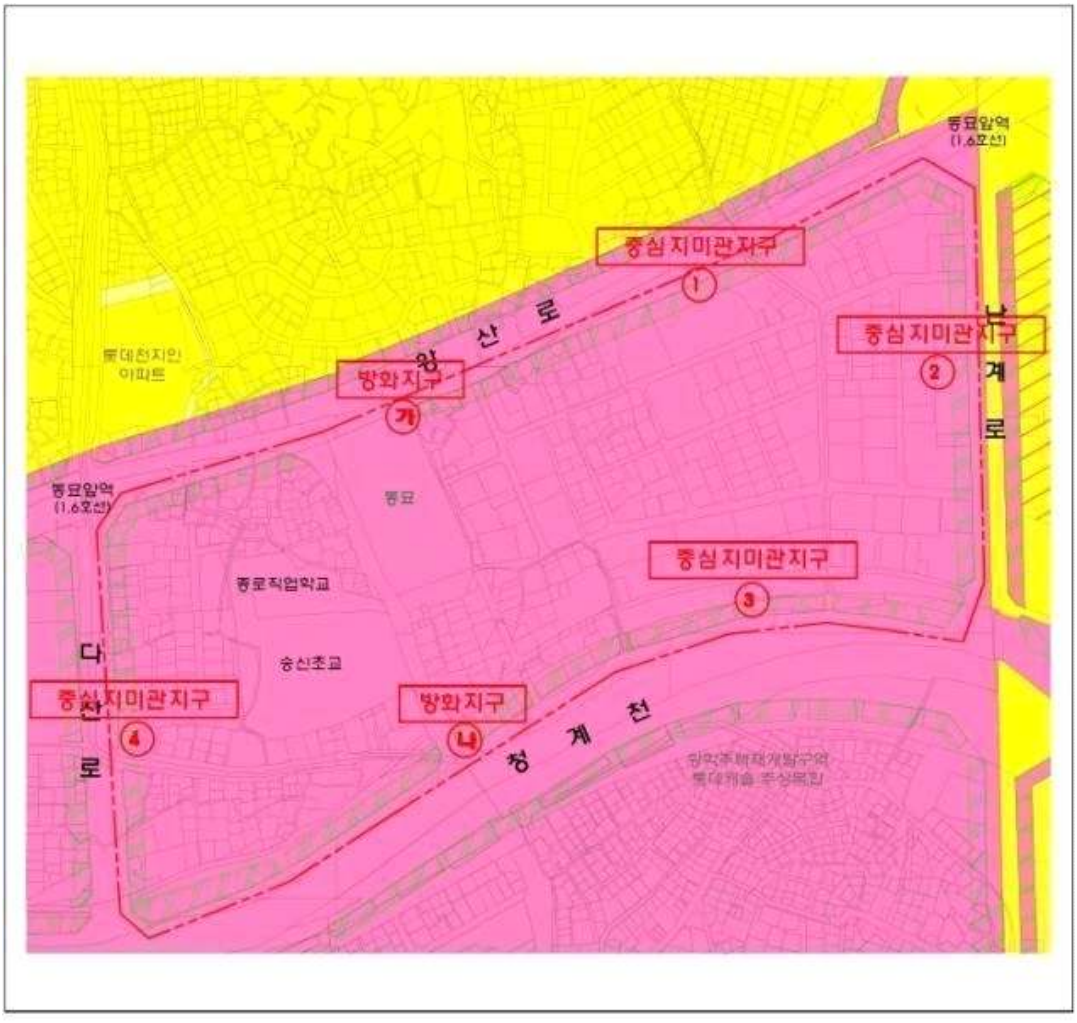

숭인 제1종지구단위계획 최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심지미관지구 방화지구	N

▌종로4 · 5가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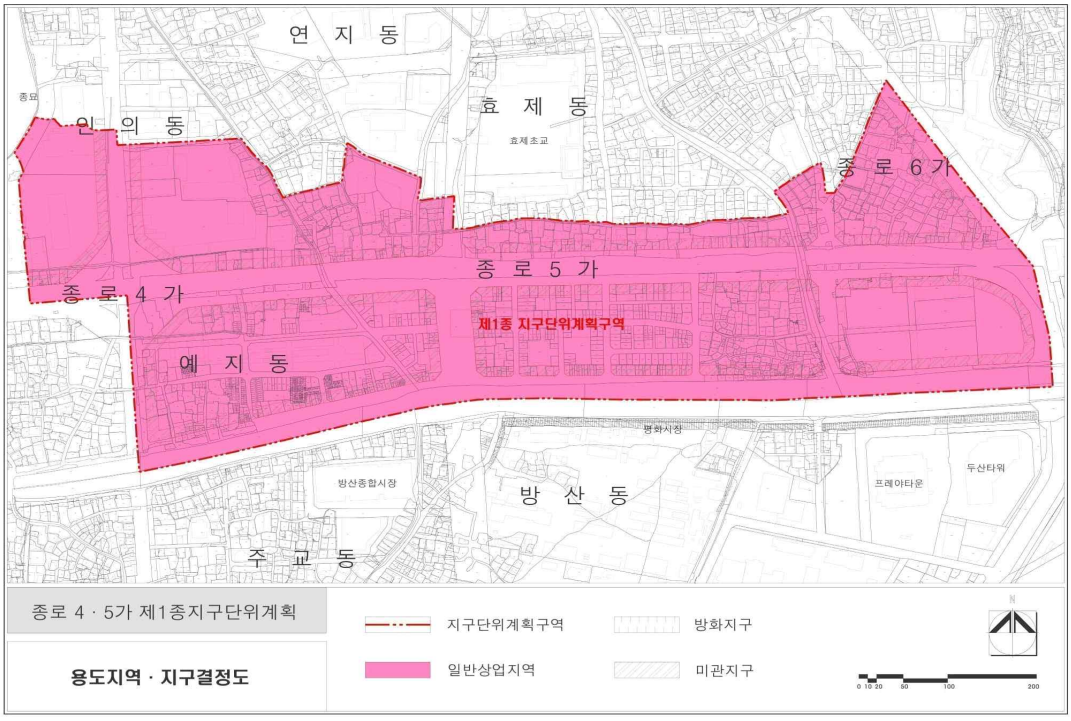

▌익선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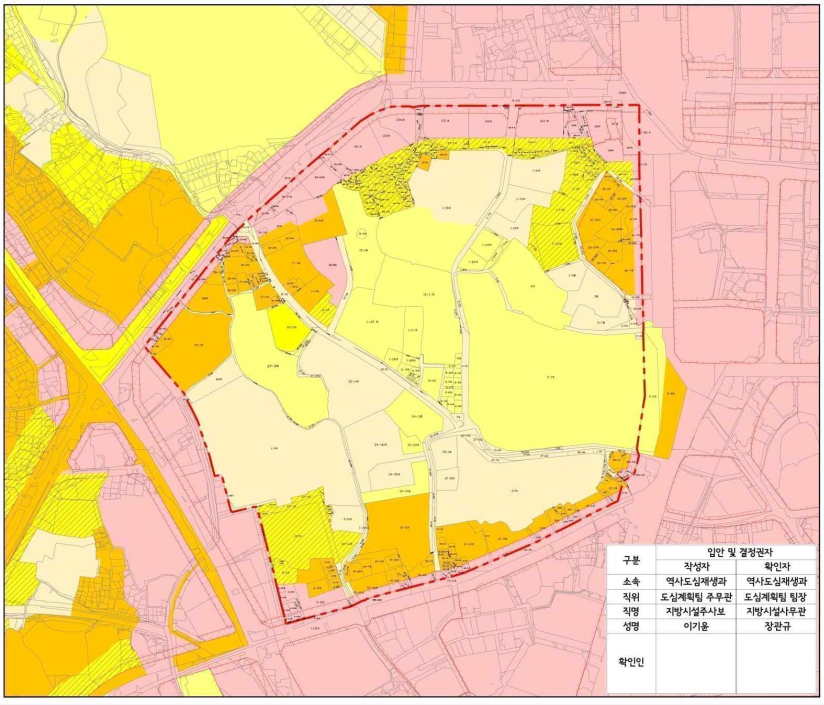

▌남대문시장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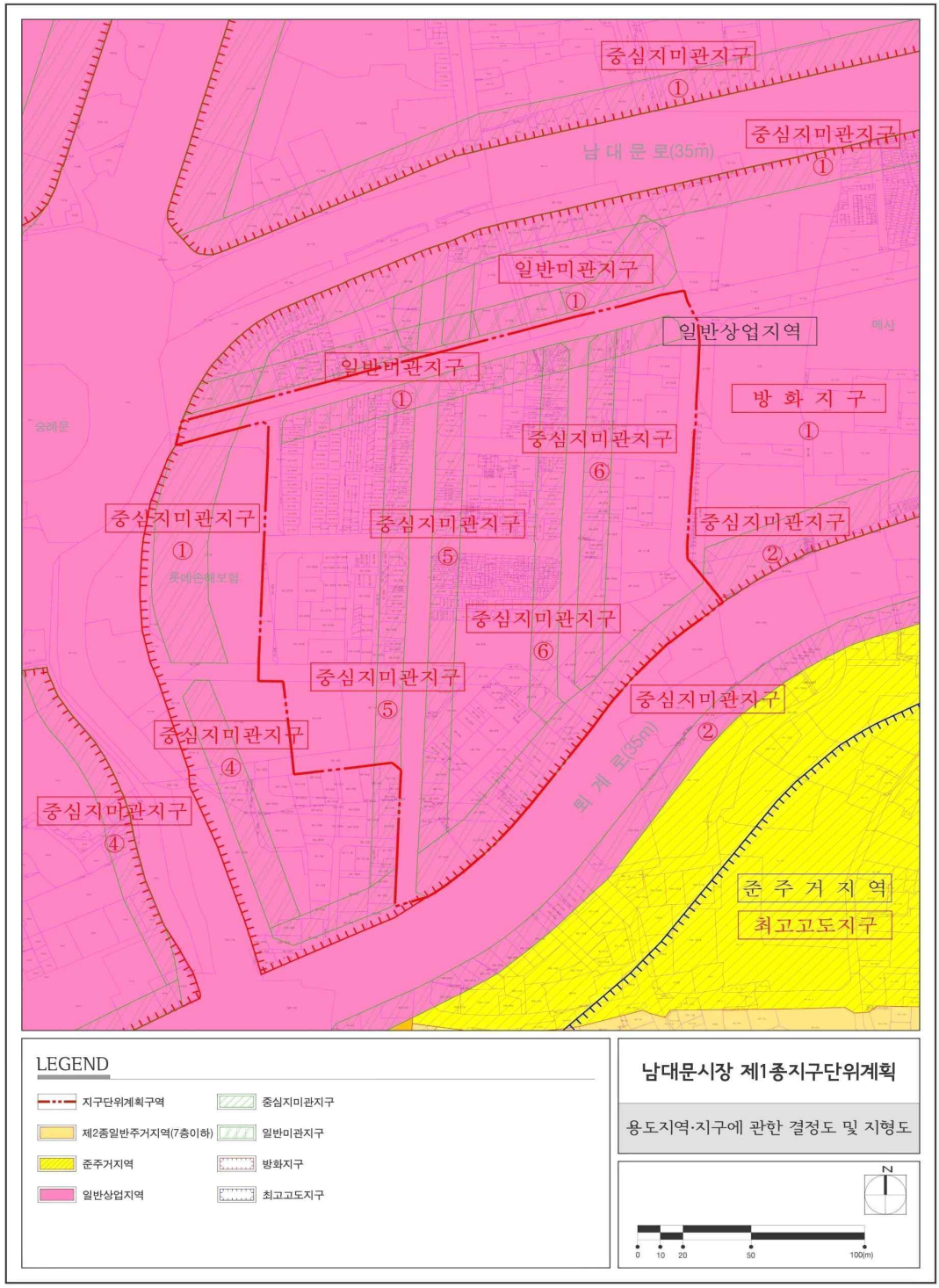

▌소공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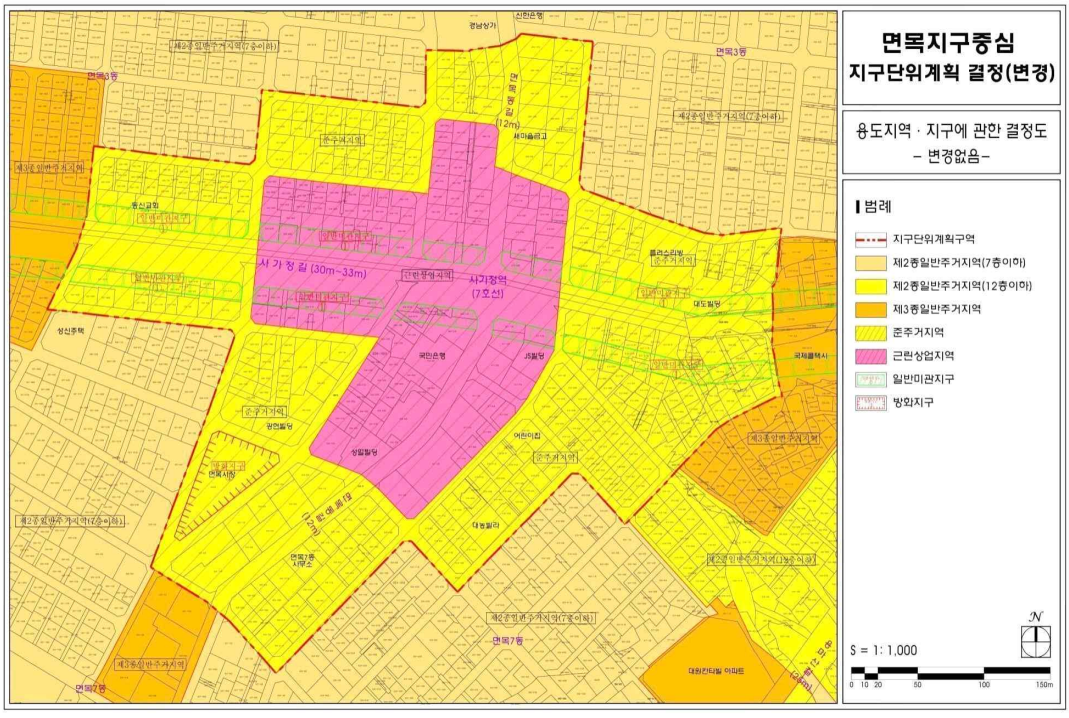

▌잠실광역중심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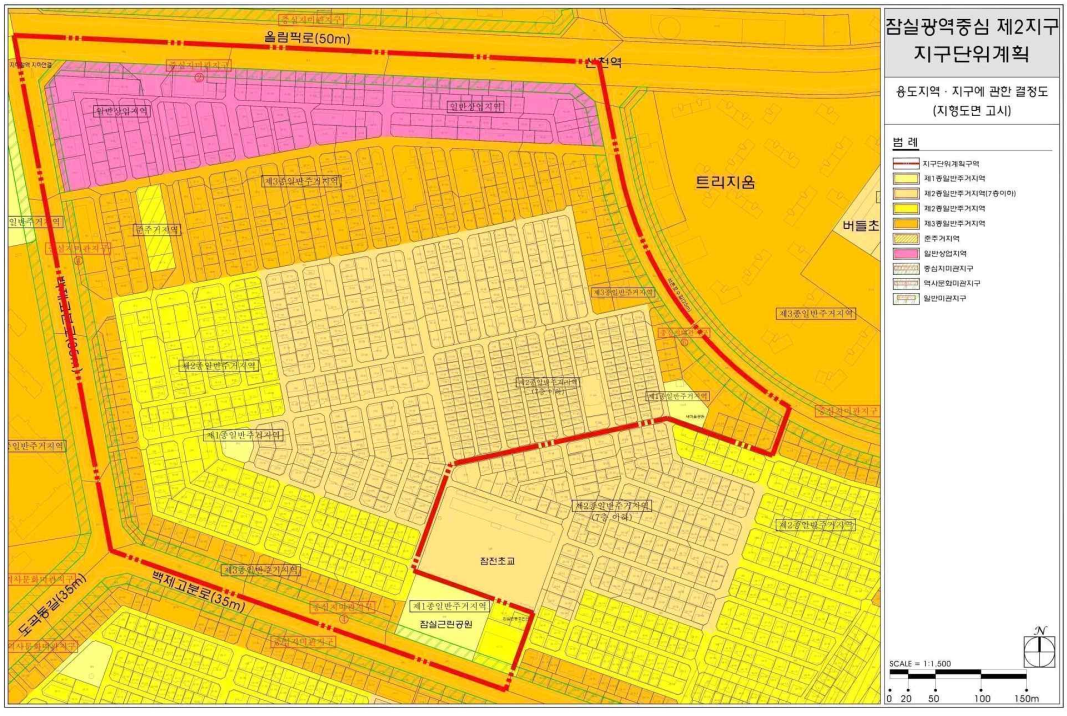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128호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1.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나진상가 10·11동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5.09.24. 개최된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 02-2133-8385)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 02-2199-7412)
3. 열람내용

[1]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안)

0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0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
      1)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유통업무설비	한강로2가 15일대	108,584.1	감) 3,085.9	105,498.2	건고-제332호 (85.07.31.)	-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마. 방재시설 : 변경없음
바. 보건위생시설 : 변경없음

0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 규모 결정(변경)조서
■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4 : 변경(기재생략)
2.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기재생략)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기재생략)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결정(신설)조서
가.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4 ㊿ : 신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㊿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4	한강로3가 1-3 일대	-	증) 3,085.9	3,085.9	-	-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신설

구분		계획지침	비고
위치		• 한강로3가 1-3 일원	-
면적		• 3,085.9㎡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용도지구		-	-
가구 및 획지		• 획지 : 3,085.9㎡	-
밀도	건폐율	• 60% 이하 ※ 공중공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인정 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가능	공중공공 보행통로 면적제외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허용 610% 이하, 상한 800% 이하 ※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등 설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녹색건축 인증·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시 800% 초과 가능 (적용산식 : 허용용적률 x 완화비율)	-
높이		• 100m + α ※ α는 계획내용을 고려(디자인 특화, 개방형녹지 확보)하여 높이 완화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결정	-
건축물 용도	불허용도	• 장례식장,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구분			계획지침		비고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지정용도		• 신산업용도,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시행자는 신산업용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계획서 제출 ※ 신산업용도 : ICT기반의 정보통신산업 · 소프트웨어 · 디지털 콘텐츠, 연구개발업 등 ※ 지정용도는 제시된 용도 중 택할 수 있음		전체 연면적의 30% 이상
	권장용도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가로활성화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7호 판매시설 중 식품, 잡화, 의류, 서적 등 일용품소매점 / 제1종, 제2종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서점(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가로변에 접한 외벽길이의 1/2이상 연접 배치) • 제13호의 운동시설 • 신산업용도		
건축선	건축한계선		• 청파로 변 및 이면부 : 3m		-
배치 및 형태	건축물 형태		• 저층부 높이는 전자상가 내 건축물과 연계 및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 고층부 탑상형 건축을 통해 시각적 개방감 및 도시환경 개선 유도 • 가로활성화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개방적 형태의 건축물 권장 (캐노피, 아케이드, 어닝 등의 적극적 활용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공개공지	공통	• 공개공지 최소 폭 9m 이상 확보 및 필로티형 공개공지의 유효높이는 8m 이상 확보 • 대상지 입지특성에 따른 보행체계 분석을 통해 일반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실효성 있고 개방적인 형태로 조성		-
		개별	• 청파로 변 가각부 공개공지 위치 지정 • 용산전자상가 사거리에 개방적인 형태로 조성 • 공중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등과 저층부 판매시설 등 가로활성화 용도와 연계 조성하고 일반인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3m) 보도 및 녹화공간 조성 ※ 전면공지 내 연결브릿지 설치 검토 가능		-
	공중공공 보행통로		• 청파로 변 조성 ※ 공중공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 인정 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가능		-
	연결 브릿지		새창로 1개소	• 특별계획구역 6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 계획	-
			청파로 1개소	• 특별계획구역 5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 계획	
			이면부 1개소	• 특별계획구역 3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 계획	
			※ 공중공공보행통로 및 연결브릿지 설치는 “용산전자상가 입체보행 가이드라인(안)” 을 따름 ※ 연결브릿지는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약을 통해 민간에서 운영관리 검토		

구분	계획지침	비고
	※ 연결브릿지는 특별계획구역 간 지형의 고저차와 우선 설치 현황을 고려, 동일 레벨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	
교통처리계획	• 청파로 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지침도 참조)	-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 공공기여율 : 17.5% 이상 ※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율 2.5% 상한용적률 미적용 단,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 15% 상한용적률 적용 ※ 「신산업융도」 30% 도입을 고려한 공공기여율 결정 • 공공기여 사항 ① 공공기여부지 ② 공공지원시설	-
기타	• 주거비율 : 지상 연면적의 50% 이하(전용 60㎡ 이하, 전체 20% 이상) • 특별계획구역간 유연한 통합 허용 • 개방형 녹지(녹화공간) 20% 이상 확보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폐지 • 건축허가 전 신산업융도, 입체보행통로 등 세부개발계획 항목의 구현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제출	-

0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 기재생략 (열람장소 비치)

4. 관계도서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5. 기타사항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 02-2133-83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129호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6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1.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나진상가 14동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6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5.9.24. 개최된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등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 02-2133-8385)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 02-2199-7412)
3. 열람내용

[1]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안)

0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0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
1) 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유통업무설비	한강로2가 15일대	108,584.1	감) 4,654.4	103,929.7	건고-제332호 ('85.07.31.)	-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마. 방재시설 : 변경없음

바. 보건위생시설 : 변경없음

0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 규모 결정(변경)조서

■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6 : 변경(기재생략(열람장소 비치))

2.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기재생략(열람장소 비치))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기재생략(열람장소 비치))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결정(신설)조서

가.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6 ㊷ : 신설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㊷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6	한강로3가 1-1 일대	-	감) 3,160.9	3,160.9	-	-

■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신설

구분		계획지침	비고
위치		• 한강로3가 1-1 일원	-
면적		• 3,160.9㎡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용도지구		-	-
가구 및 획지		• 3,160.9㎡	-
밀도	건폐율	• 60% 이하 ※ 공중공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인정 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가능	공중공공 보행통로 면적제외
	용적률	• 기준 250% 이하, 허용 610% 이하, 상한 800% 이하 ※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등 설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녹색건축 인증·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시 800% 초과 가능 (적용산식 : 허용용적률 x 완화비율)	-
높이		• 100m + α ※ α는 계획 내용을 고려(디자인 특화, 개방형 녹지 확보)하여 높이 완화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가능	-
건축물 용도	불허	• 장례식장, 공장(지식산업센터 제외)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지정	• 신산업용도,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	전체

구분			계획지침	비고
			※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시행자는 신산업용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계획서 제출 ※ 신산업용도 : ICT기반의 정보통신산업 · 소프트웨어 · 디지털 콘텐츠, 연구개발업 등 ※ 지정용도는 제시된 용도 중 택할 수 있음	연면적 30% 이상
	권장		•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가로활성화 용도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7호 판매시설 중 식품, 잡화, 의류, 서적 등 일용품소매점 / 제1종, 제2종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서점(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가로변에 접한 외벽길이의 1/2 이상 연접 배치) • 제13호의 운동시설 • 신산업용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청파로변, 새창로변, 이면도로변 : 3m	-
배치 및 형태	건축물 형태		• 저층부 높이는 전자상가 내 건축물과 연계 및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 고층부 탑상형 건축을 통해 시각적 개방감 및 도시환경 개선 유도 • 가로활성화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개방적 형태의 건축물 권장 (캐노피, 아케이드, 어닝 등의 적극적 활용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대지 내 공지 및 통로	공개공지	공통	• 공개공지 최소 폭 9m 이상 확보 및 필로티형 공개공지의 유효높이는 8m 이상 확보 • 대상지 입지특성에 따른 보행체계 분석을 통해 일반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실효성 있고 개방적인 형태로 조성	-
		개별	• 청파로 변 가각부 공개공지 위치 지정 • 용산전자상가 사거리에 개방적인 형태로 조성 • 공중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등과 저층부 판매시설 등 가로활성화 용도와 연계 조성하고 일반인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후퇴부(3m) 보도 및 녹화공간 조성 ※ 전면공지 내 연결브릿지 설치 검토 가능	-
	공중공공 보행통로		• 청파로 변 조성 ※ 공중공공보행통로 설치 면적은 서울시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 인정 시 건축면적에서 산정 제외 검토 가능	-
	연결 브릿지		새창로 1개소 • 특별계획구역 4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 계획 이면부 1개소 • 특별계획구역 8구역 연결하는 연결브릿지 설치 계획 ※ 공중공공보행통로 및 연결브릿지 설치는 “용산전자상가 입체보행 가이드라인(안)” 을 따름 ※ 연결브릿지는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약을 통해 민간에서 운영관리 검토 ※ 연결브릿지는 특별계획구역 간 지형의 고저차와 우선 설치 현황을 고려, 동일 레벨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	-
교통처리계획			• 청파로 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지침도 참조)	-

구분	계획지침	비고
공공기여에 관한 사항	• 공공기여율 17.5% 이상 ※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율 2.5% 상한용적률 미적용 단,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 15% 상한용적률 적용 ※ 「신산업용도」 30% 도입을 고려한 공공기여율 결정 • 공공기여 사항 ① 공공기여부지 ② 공공지원시설	-
기타	• 주거비율 : 지상 연면적의 50% 이하(전용 60㎡ 이하, 전체 20% 이상) • 특별계획구역 간 유연한 통합 허용 • 개방형 녹지(녹화공간) 20% 이상 확보 •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폐지 • 건축허가 전 신산업용도, 입체보행통로 등 세부개발계획 항목의 구현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제출	-

04.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6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 기재생략 (열람장소 비치)

4. 관계도서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5. 기타사항
-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 02-2133-83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130호

서울시 준공업지역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공고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산업 · 주거 · 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적인 토지이용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산업혁신을 촉진하고, 신산업 중심의 복합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준공업지역을 활성화 하고자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 후보지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자치구, 토지주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모개요
  ○ 공 모 명 : 서울시 준공업지역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 공모기간 : '25.11.6.(목) ~ '26.1.5.(월) 60일간
  ○ 공모대상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서울시 관내 도시공업지역*
  1) 구역면적 5천㎡ 이상
  2)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구역
  - 대규모 공장 이전부지(산업혁신구역 조성을 위해 이전을 희망하는 부지 포함)
  -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 공공시설 이전부지
  - 공업지역내 미개발부지(저이용부지)
  * 「도시공업지역법」 제2조에 따라 산업단지 등 다른 법령으로 관리되는 공업지역을 제외한 순수 공업지역
  ○ 공모 신청자격 : 사업대상지 토지 소유권을 전부 확보한 1인 소유자

2. 공모신청 및 접수
  ○ 신청기한 : 2026. 1. 5. (월) 17:00 까지
  ※ 접수 마감시간 이후 접수는 불가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신청방법 : 해당 자치구 도시계획과로 방문 신청
  - 토지 소유자(방문신청) → 자치구 도시계획과(공문제출) → 市 도시계획과

※ 공모 및 선정절차

공모공고	⇨	공모신청	⇨	대상지 검토	⇨	공모신청 제출	⇨	선정위원회 개최 및 평가	⇨	선정여부 결과 통보
서울시		토지소유자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서울시		서울시		서울시→자치구

※ 직접 방문 제출만 허용

○ 제출서류

토지 소유자→자치구	- 공모신청서(서식1, 첨부서류) 1부 - 제안서(서식2) 1부 ※ 사업대상지 위치, 면적, 현황, 추진방향(사업방향, 도입기능, 활성화 방안)등 자유기재 기타증빙서류 ·토지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자치구→서울시	- 토지 소유자가 제출한 서류 사본 일체 1부 - 추천 공문, 자치구 검토보고서(서식 3), 각종 근거자료 등 각 1부

3.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 절차 및 일정

공모 절차	일 정	내 용
공청회 (시범사업 설명)	2025. 10. 30.(목)	지역 주민, 토지소유자, 시·자치구 공무원 등
공모 공고	2025. 11. 6.(목)	공고 전 보도자료 배포
공모 기간	2025. 11. 6.(목) ~ 2026. 1. 5.(월)	해당 자치구(도시계획과) 신청 접수 ※ 제출기간 이후 제출자는 심사대상 제외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2026. 1. 15.(목)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
시범사업 후보지 발표	2026. 1. 22.(목)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및 보도자료 배포

※ 상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된 일정을 공지 예정

4. 산업혁신구역 계획 수립기준

산업비율	가용총연면적의 50% 이상
용 적 률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의 1.3배 이상(위원회 심의를 통해 추가 완화 가능) ※ 공개공지 등 추가 완화용적률은 별도 적용
공공기여	용적률 증가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예시: 용적률 증가분의 50%)
공공기여 완화	미래전략산업용도 일정 비율 이상(예시: 가용총연면적의 30% 이상) 도입 시 공공기여율 완화(완화 범위는 위원회 심의로 결정)

※ 산업혁신구역사업 기준(안)은 변경될 수 있음

※ 완화 등 특례사항은 市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5. 심사평가 및 후보지 선정
  ○ 공모신청자격 충족 및 관련법규 상 사업가능여부 사전적격 평가
    – 사전 적격 평가는 아래 평가항목으로 정량적 평가
      · 노후 산업시설 / 역세권 / 도로 접도율 / 구역면적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평가를 통해 최종 후보지 선정
    – 선정심사위원회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
    – 사전적격 평가 통과된 신청서에 대해 아래의 평가항목으로 평가
      · 필요성 및 시급성 / 목표 및 적정성 / 실현가능성 / 사업추진 효과
    – 심사위원 평가점수 및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후보지 선정(약 2개소)
      ※ 공모 접수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개소는 조정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선정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위조, 변조된 서류 또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모두 포함) 시범사업 후보지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후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공모 신청 후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산업혁신구역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 후 절차 진행 시 제반 비용은 사업자 부담 사항임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공모지침 및 서식 다운로드〉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식_공고_고시공고] (http://www.seoul.go.kr)

〈문의 및 상담〉
  –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02-2670-3538)
  – 금천구 도시계획과(☎ 02-2627-1553)
  – 도봉구 도시계획과(☎ 02-2091-3553)
  – 구로구 도시계획과(☎ 02-860-3326)
  – 강서구 도시계획과(☎ 02-2600-6387)
  – 성동구 도시계획과(☎ 02-2286-5553)
  – 서울시 도시계획과(☎ 02-2133-8327, 8328)

서식) 1. 공모신청서 1부.
2. 제안서 작성 예시(참고) 1부.
3. 자치구 검토 보고서 1부.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142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조정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375,525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2가 1-597 일대	53,734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용산구	이태원동 214-37 일대	66,986	
	마포구	합정동 444-12 일대	40,753	
	은평구	녹번동 35-78 일대	20,320	
	종로구	행촌동 210-2 일대	76,310	
	금천구	시흥동 1-1 일대	24,901	
	구로구	구로동 739-8 일대	92,521	

○ 지정기간 : 2025년 11월 11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

2. 허가구역 조정(구역변경) 대상지역

1) 구역변경 1개소

○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 선정지(1개소)

대상지역	면적(㎡)			비고
	변경전	변경후	증감	
마포구 공덕동 11-24 일대	82,320.2	84,389.0	증 2,068.8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 지정기간 : 2025년 1월 2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

※ 단, 편입필지 효력발생일('25. 11. 11.) / 제척필지 효력발생일('25. 11. 6.)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지정, 조정 공통사항)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 초과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서 확인 *

* 기타정보-토지거래허가-토지거래허가구역(서울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6.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 참조

- 붙임 1 (지정 7개소)
- 붙임 2 (조정 1개소)

※ 토지e음(http://www.eum.go.kr),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세부정보를 확인 가능

붙임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지정

1. 용산구 용산동2가 1-597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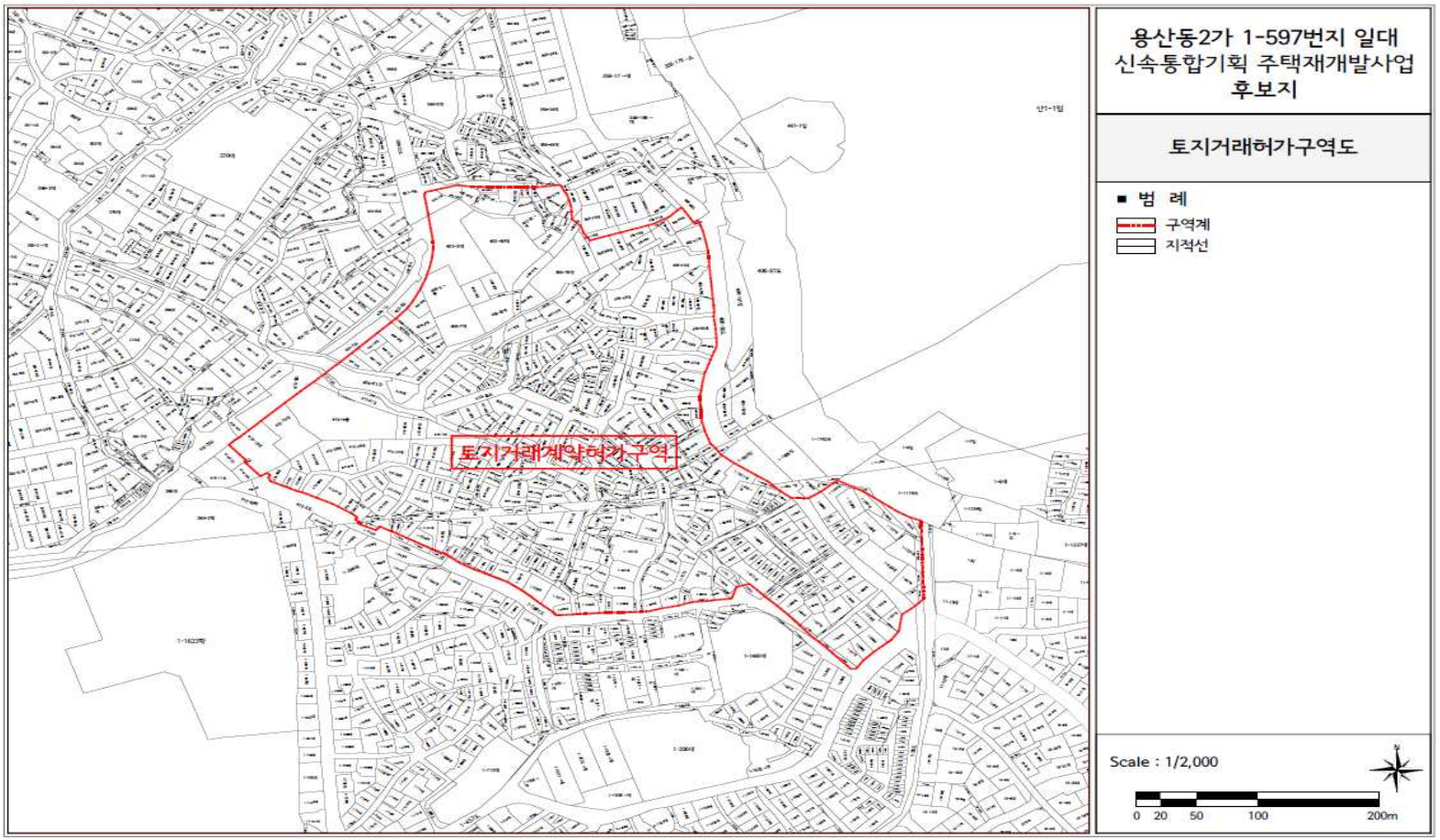

2. 용산구 이태원동 214-37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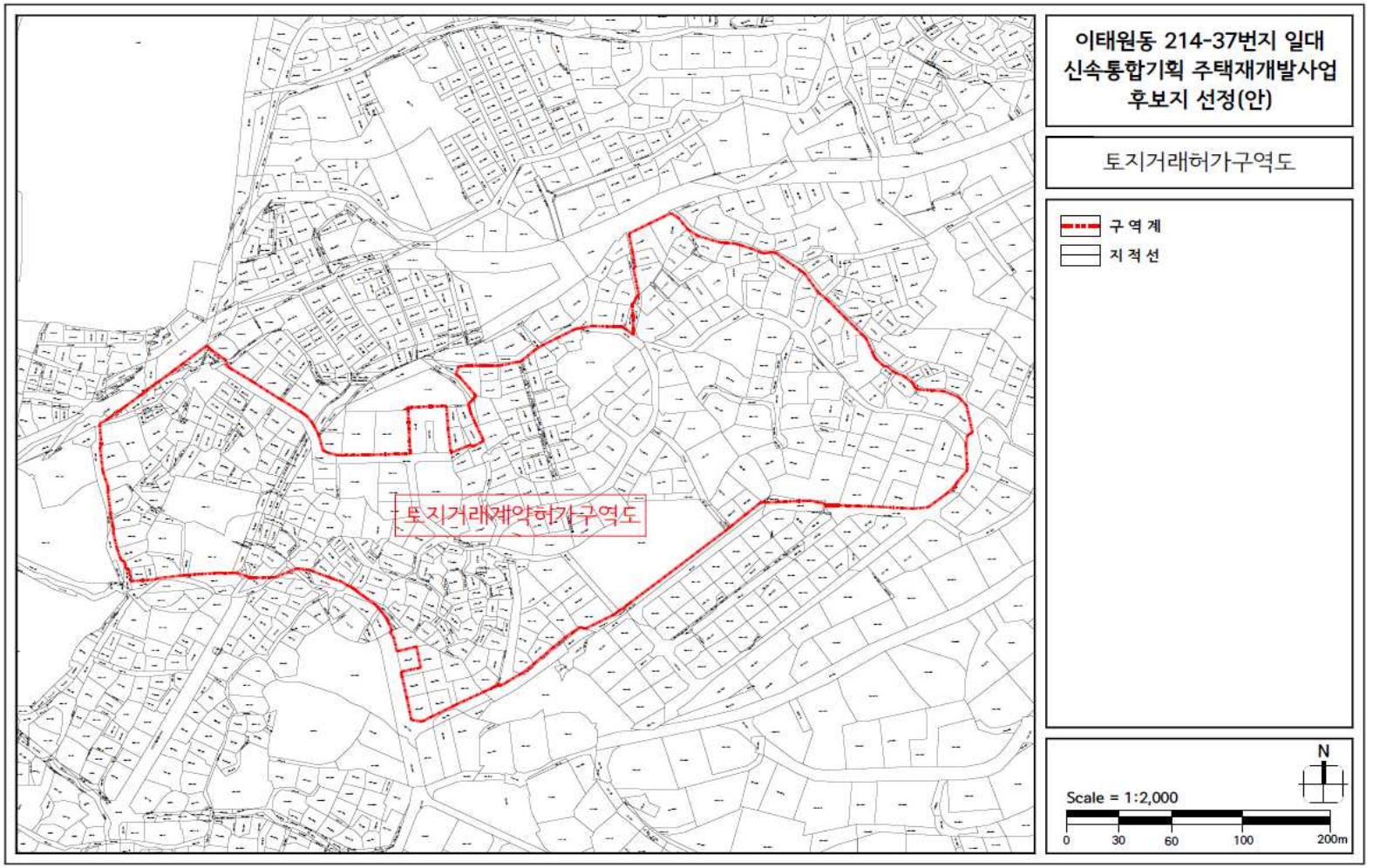

3. 마포구 합정동 444-12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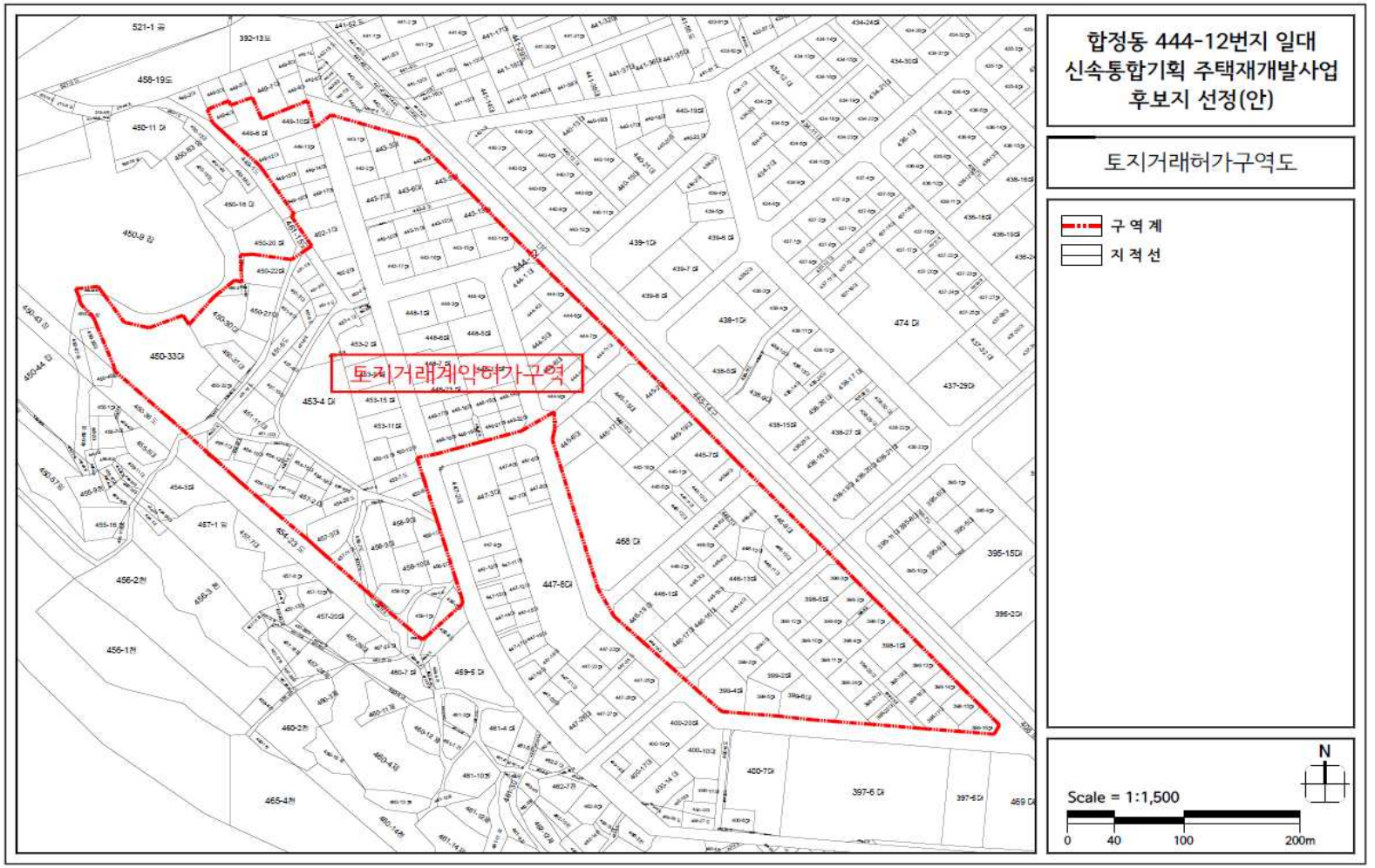

4. 은평구 녹번동 35-78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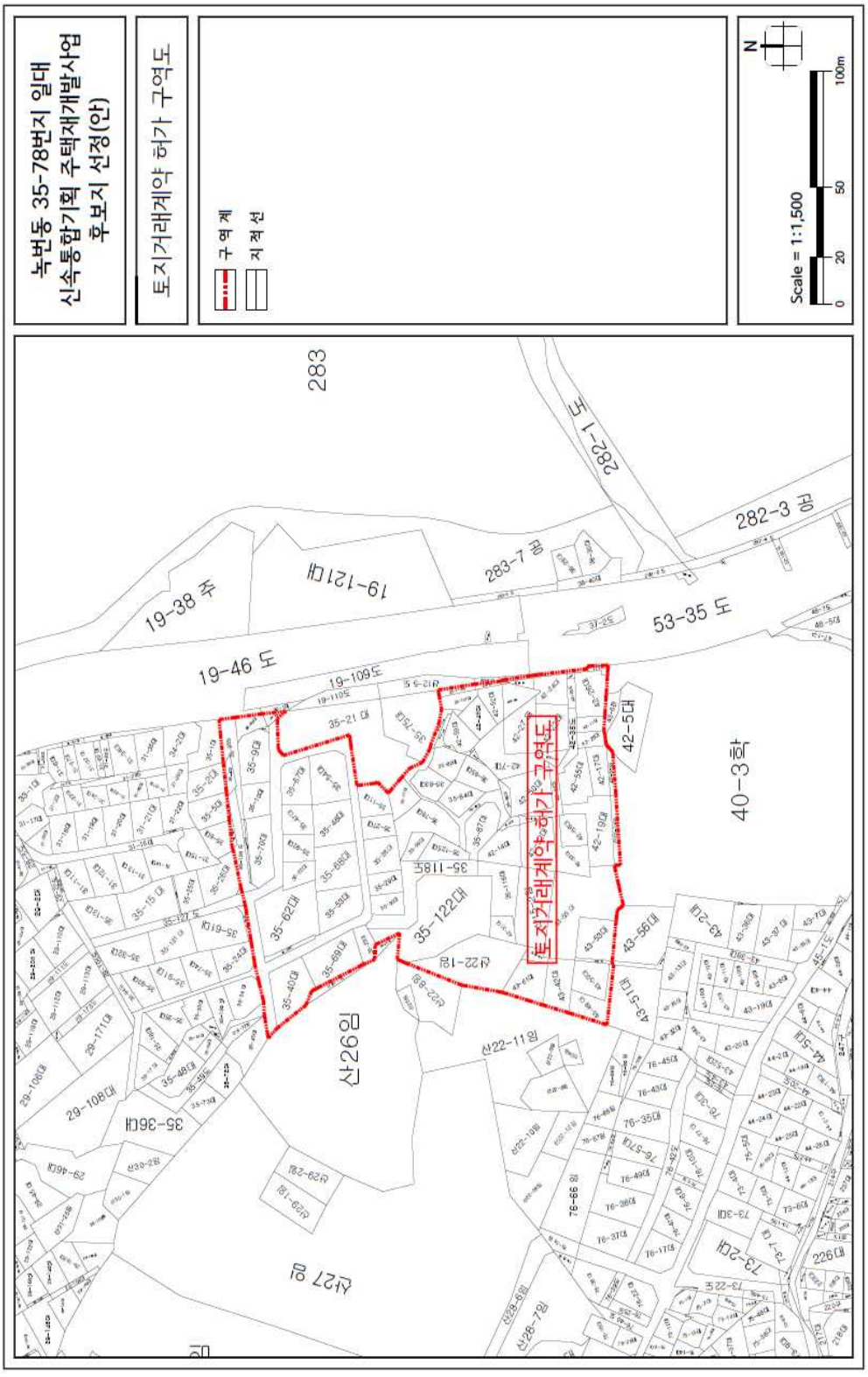

5. 종로구 행촌동 210-2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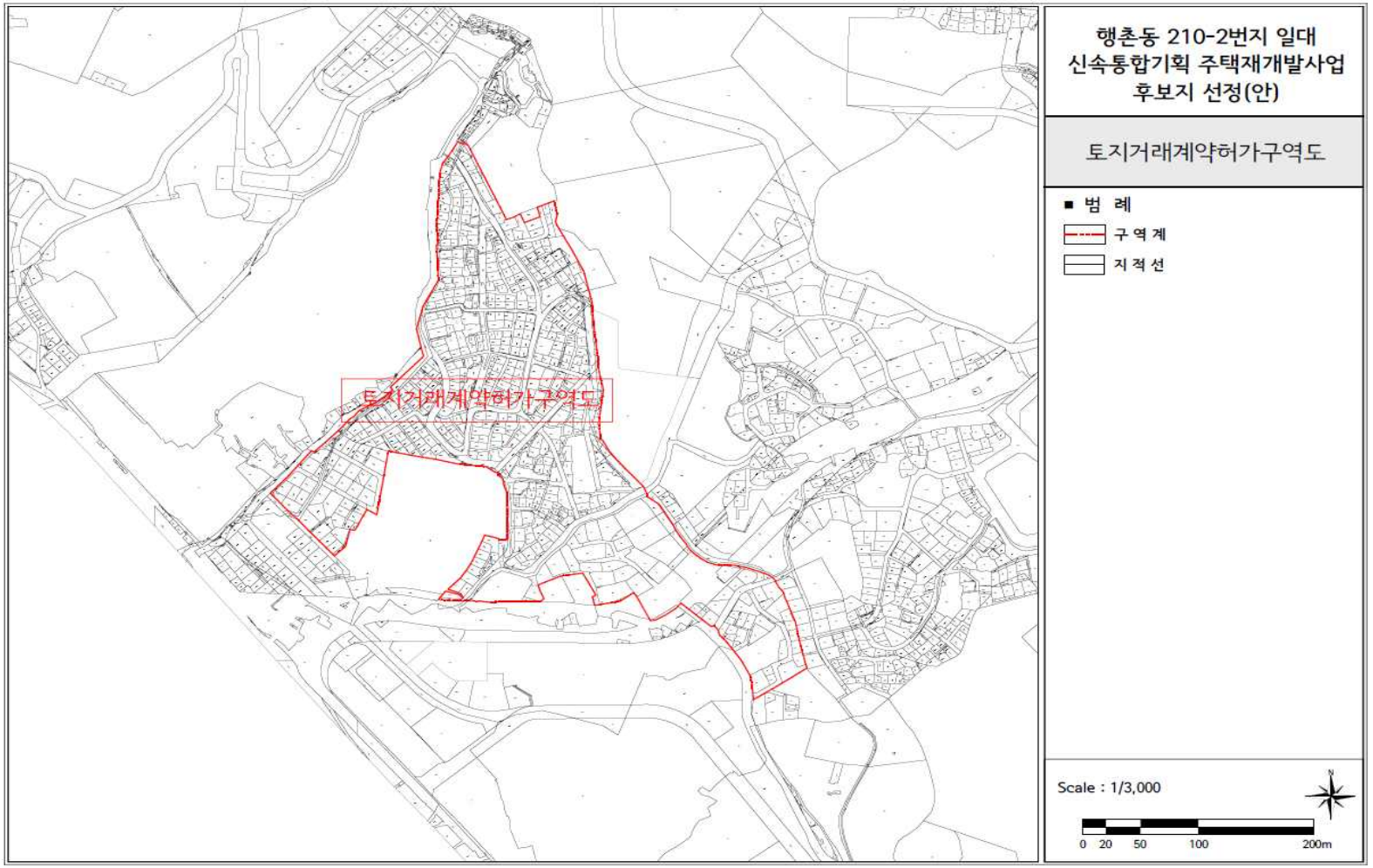

6. 금천구 시흥동 1-1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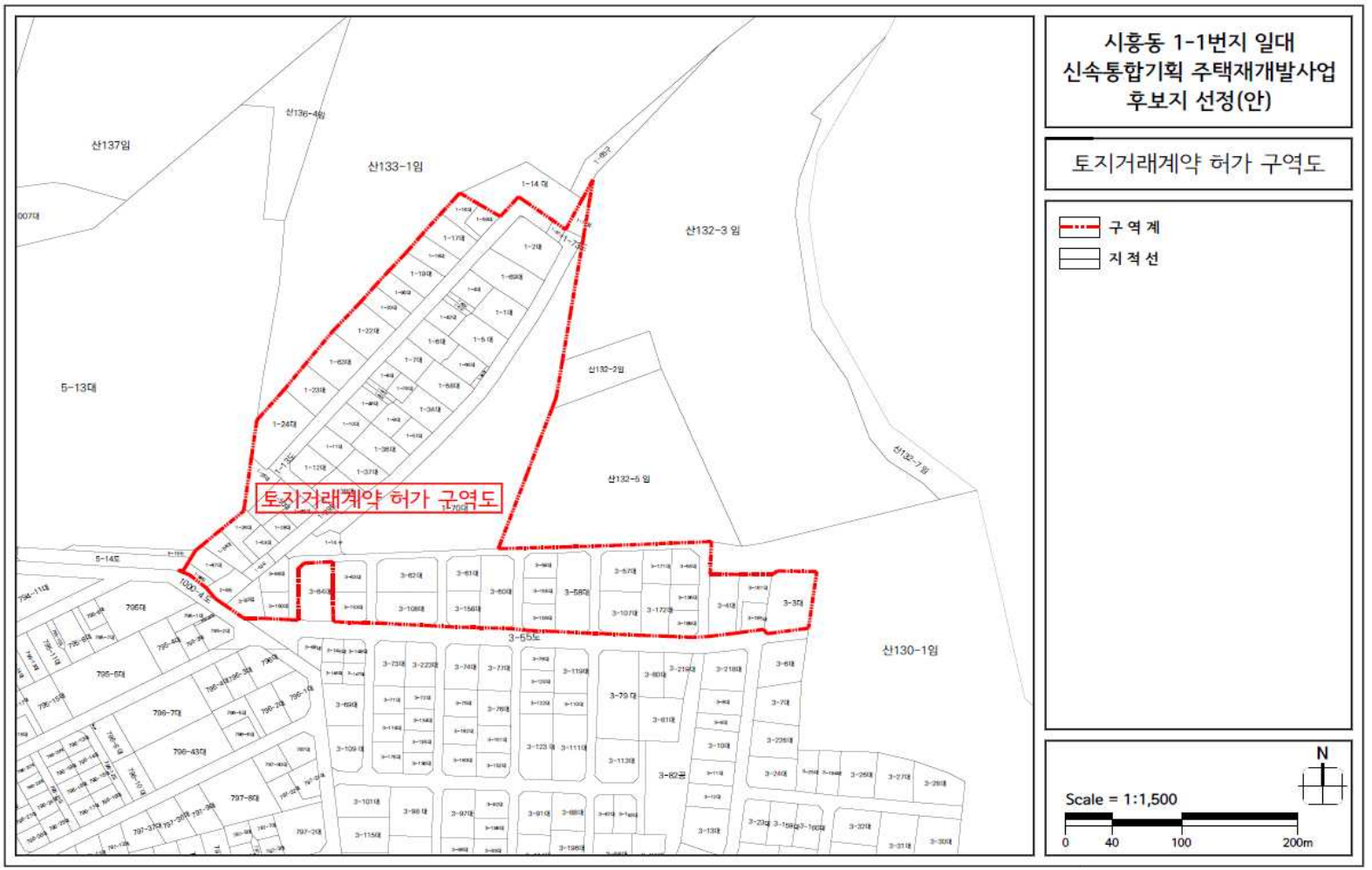

7. 구로구 구로동 739-7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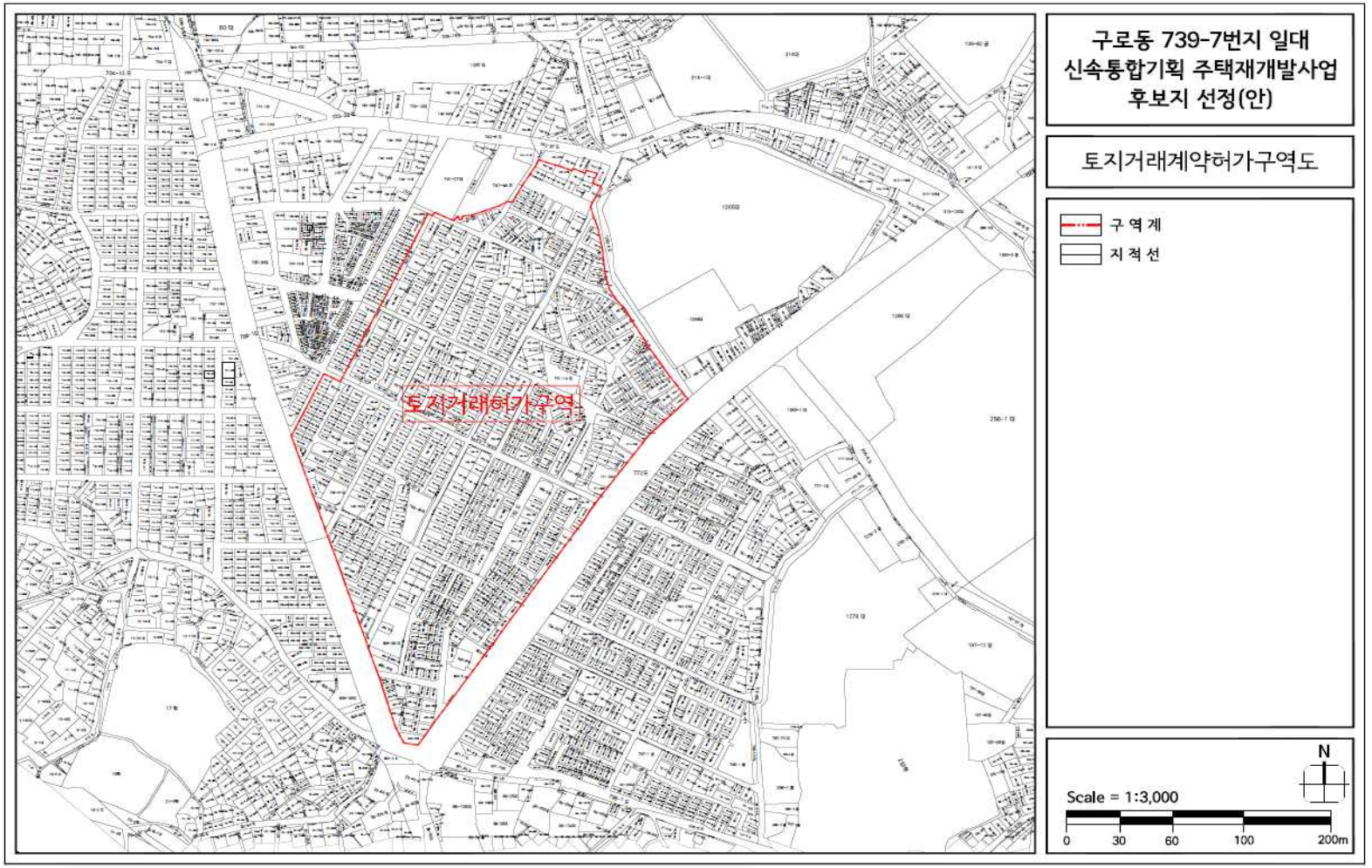

붙임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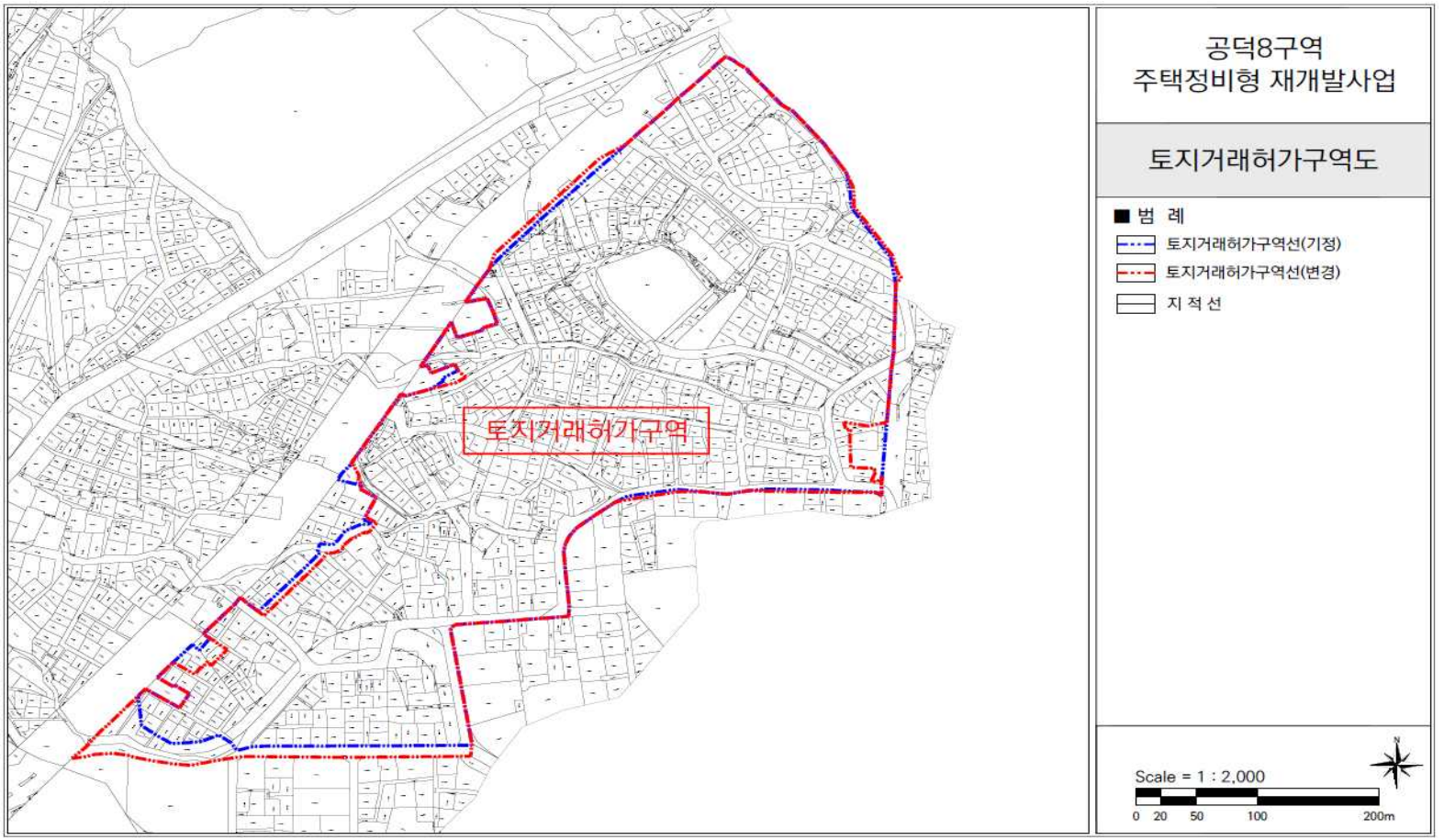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규칙]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10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5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 제1항 중 “평정규칙 제24조제2항 단서”를 “평정규칙 제24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전출 제한의 예외) 영 제27조의7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출제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에는 전출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교류 방법, 절차 등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0의 경력평정 가산점 부여 직위에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감사담당 근무자”를 추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6.1.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0의 개정 사항은 2027.1.1.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 전출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나. 교육지원청 감사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 및 근무 동기부여를 위해 경력평정 가산점을 부여하는 한편,

다. 인사규칙의 불명확한 문구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무경력 가산점 (제33조의2)

- 인사규칙 제33조의2 조항의 문구 정비
- 제33조의2 제1항 문구 중 ‘제24조제2항 단서’를 ‘제24조제2항제1호’로 명확화

나. 전출 제한의 예외 신설 (제35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7(전출의 제한) 개정사항 반영
-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에는 전출제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있도록 함

다. 가산점 부여 직위 지정 (별표 20)

- 가산점 부여 직위에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감사담당 근무자 추가
- 교육지원청 감사 직무의 난도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감사업무 기피 현상 완화를 유도하고 감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10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 인
2025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와 주요내용 >

1. 폐지이유

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제정(2020. 12. 4.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서 정한 내용보다 더 강화된 내용의 기본 계획을 교육부 장관이 수립하고, 교육감은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사실상 소멸함

나. 이에 조례가 폐지(2022. 1. 6. 공포)되었고, 그에 따라 상위 법령 근거가 소멸한 동 규칙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시설물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칙」을 폐지함

구 고 시

◈ 성동구고시 제2025-189호

도시계획시설사업(응봉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0-36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0-38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사업(응봉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공원녹지과(☏ 2286-56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보입니다.

2025년 11월 6일
성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214-3호 등 3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사업의 명칭 : 응봉근린공원 조성사업(보상)

다. 사업의 면적 : 1,735.45㎡

연번	소재지번	지목	면적(㎡)		비고(변경사항)
			지적	편입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214-3	전	1,732.00	1,732.00	· 기정) 관목 4,918주 → 변경) 교목 61주, 관목 110주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22-663	대	22.00	2.45	· 기정) 관목 74주 → 변경) 관목 20주
3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24-411	대	1.00	1.00	

라.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시행자: 서울특별시장(사무수임자 성동구청장)
2)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장

바. 사업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열람장소 : 성동구청 10층 공원녹지과

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성동구청 공원녹지과(☏ 2286-565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 업 명 : 응봉근린공원 조성

□ 사업 시행자 : 성동구청장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계				1,735.45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214-3	전	1,732	1,732	김○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번길 ○○, ○층	○○○신용협동조합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지분5분의1
							최○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번길 ○○, ○○동 ○○호	근저당권설정	
					김○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시청로 ○○, ○○동 ○○호				지분5분의1
					심○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일봉로 ○○, ○○동 ○○호				지분5분의1
					이○선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 ○○, ○○동 ○○호				지분5분의1
					최○식	대구광역시 서구 북비산로 ○○길 ○-○				지분5분의1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2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22-663	대	22	22*79 /1620	○○지구 주택개량재개발 조합 (조합장 정○영)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 (조합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				
3				22*101 /1620	○○지구 주택개량재개발 조합 (조합장 정○영)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 (조합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				
4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24-411	대	1	1	박○률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				지분 857분의103
					정○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				지분 857분의113
					김○철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				지분 857분의132
					박○숙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 ○○아파트 ○-○○○				지분 857분의132
					이○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 ○○아파트 ○○-○○				지분 857분의132
					정○화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아동 ○-○ ○○아파트 ○-○○				지분 857분의113
					김○선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 ○○아파트 ○○동 ○○○호				지분 857분의132

(붙임2)

사업대상지 위치도

○ 응봉근린공원(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214-3)

○ 응봉근린공원(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22-663, 324-411)

(붙임3)

계획평면도(보상용지도)

○ 응봉근린공원(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2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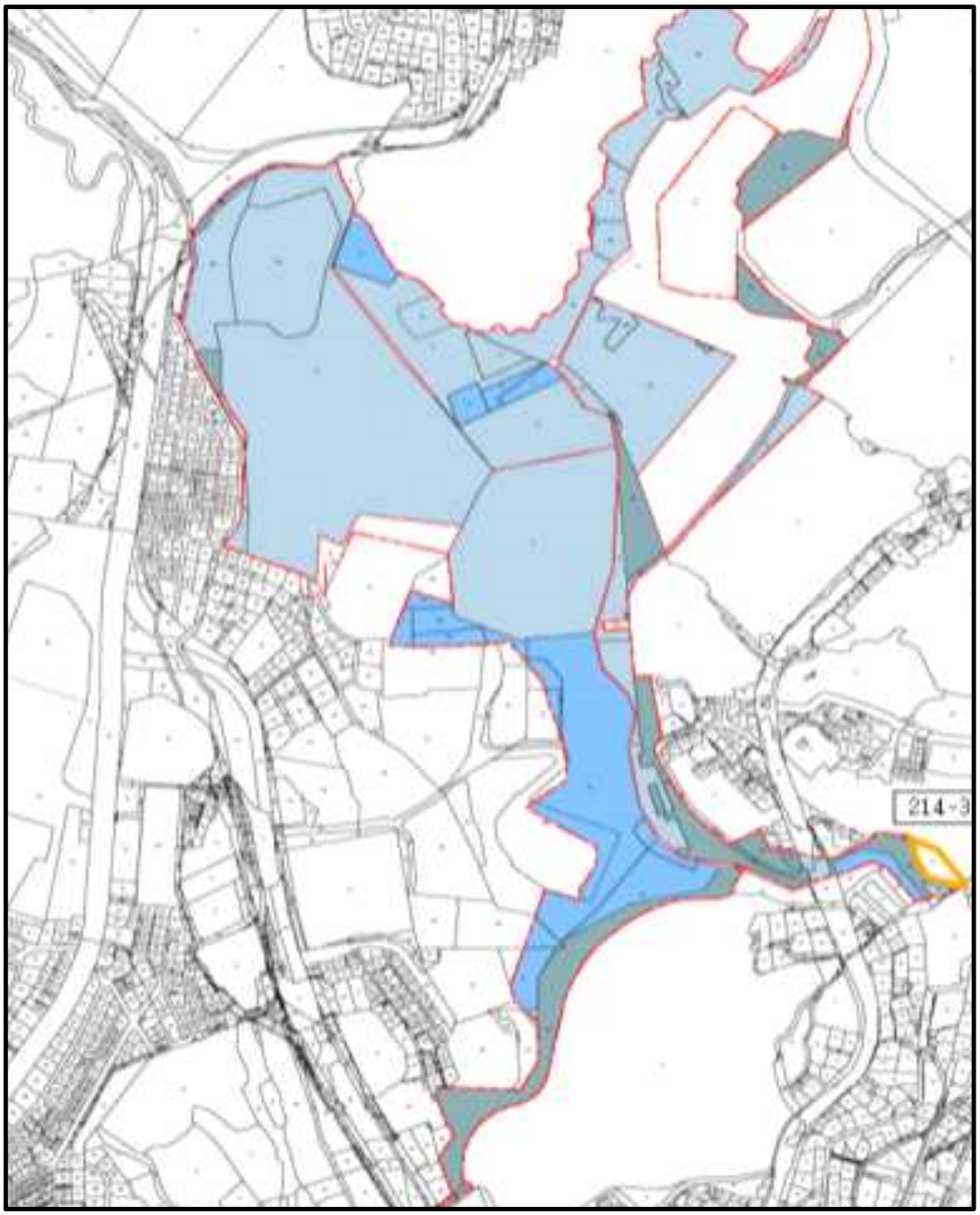

○ 응봉근린공원(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22-663, 324-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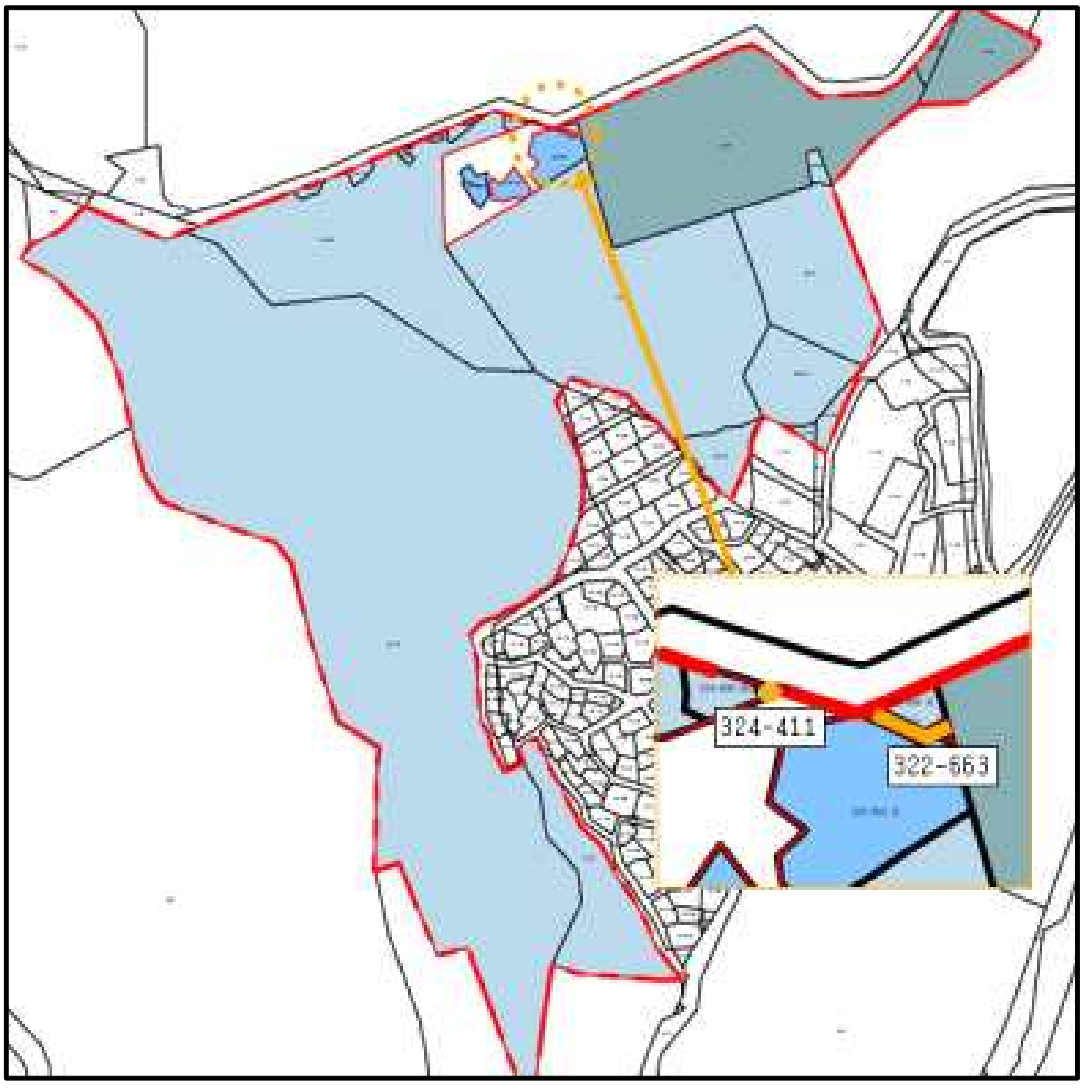

(붙임4)

공사 설계도서

○ [당초] 응봉근린공원(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2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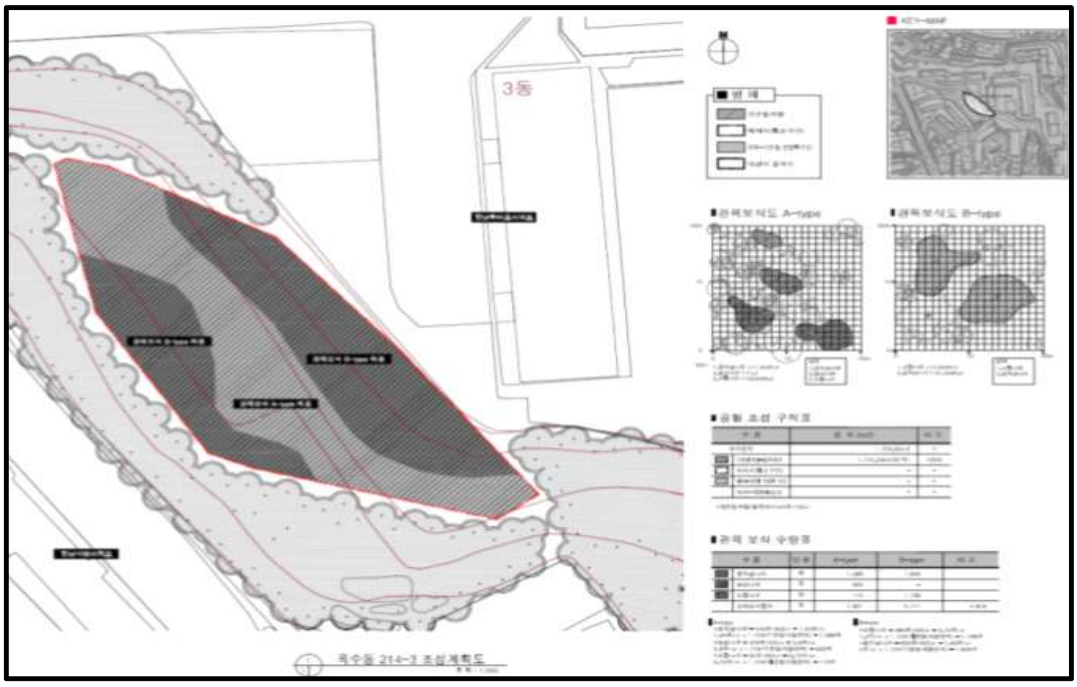

○ [변경] 응봉근린공원(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2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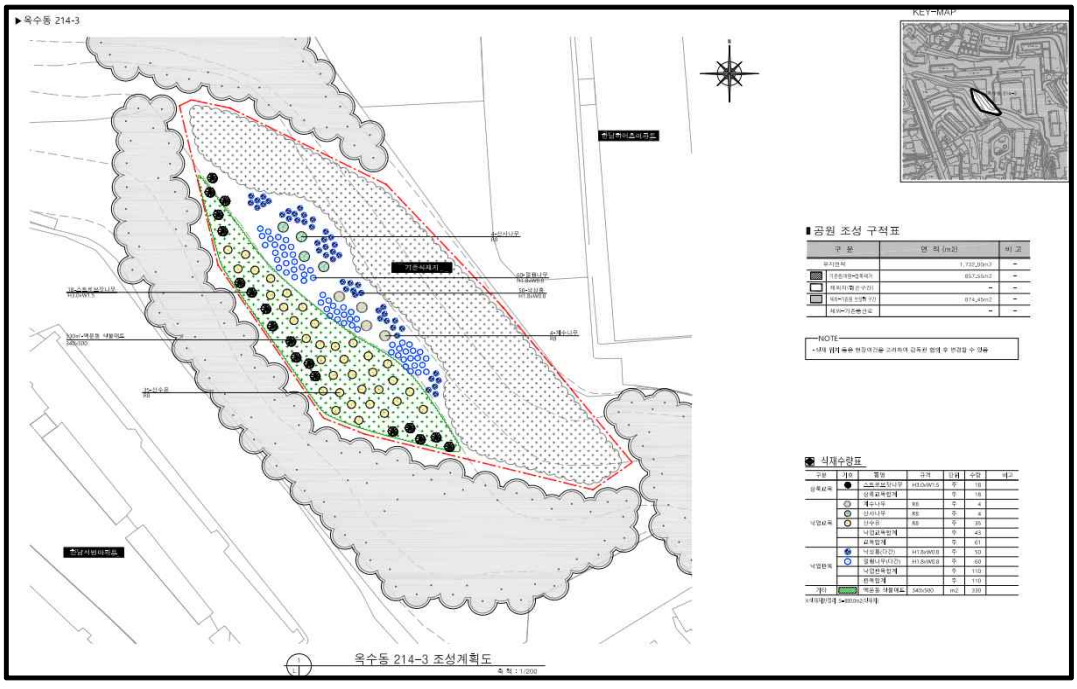

○ [당초] 응봉근린공원(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22-663, 324-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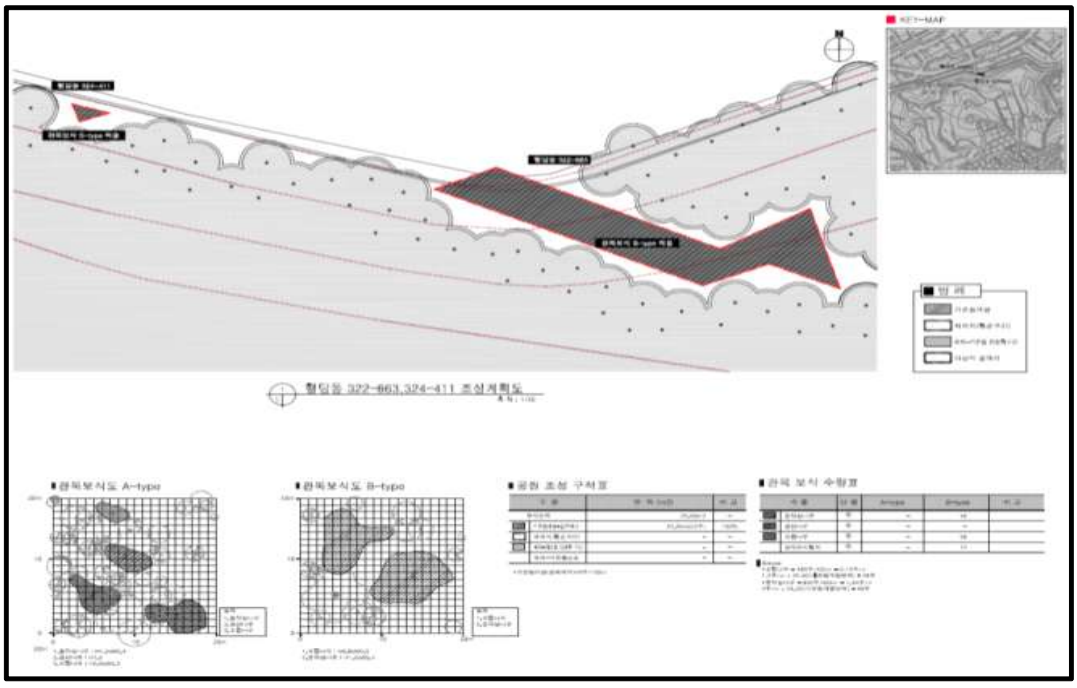

○ [변경] 응봉근린공원(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22-663, 324-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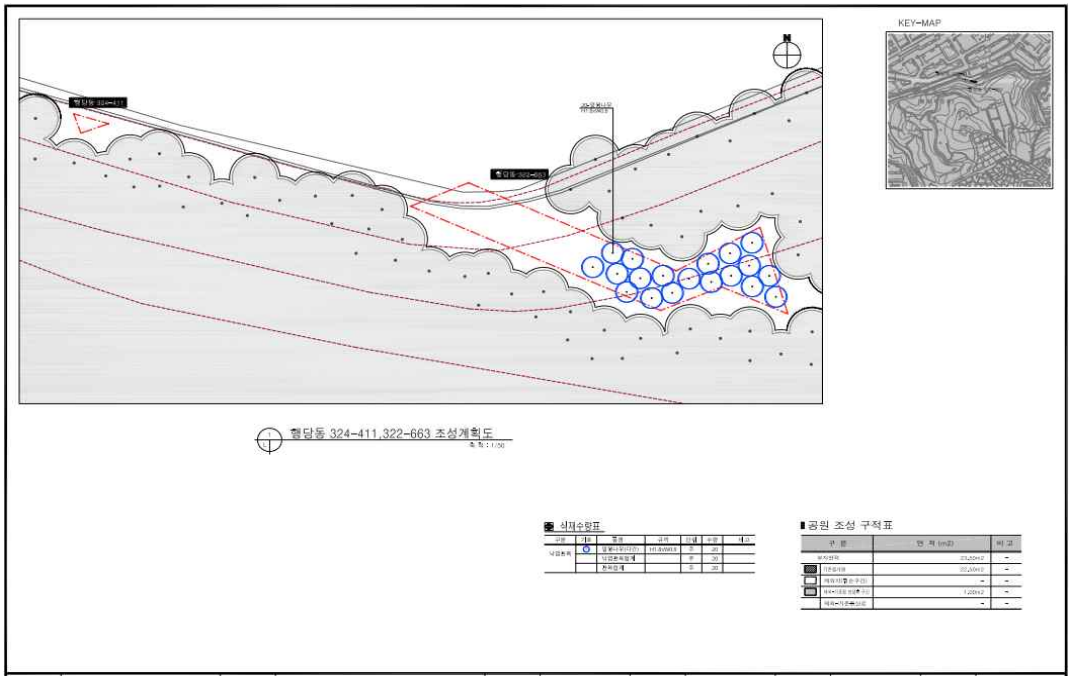

◈ 성북구고시 제2025-162호

도시계획시설(개운산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1. 총독부고시 제1940-208호(1940.3.12.)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결정(변경) 및 성북구고시 제2019-99호(2019.6.13.)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성북구고시 제2021-99호(2021.6.3.)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성북구 안암동5가 산1-55일대 개운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을 작성 및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공원녹지과(☎2241-3663)에 비치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산1-55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사업
  ○ 사업의 명칭 : 개운산근린공원 조성
다. 사업의 내용 및 규모(변경없음)
  ○ 사업의 규모 : 32,090㎡
  ○ 사업의 내용 :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의 보상
라.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마 시설관리청(변경없음) : 서울특별시장
바. 사업기간(변경)
  ○ 착 수 일 : 2019. 6. 13.
  ○ 준공예정일 : 2026. 6. 12.(기간 연장)
사. 수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성북구 공원녹지과(☎2241-36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개운산근린공원 조성

연번	위치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명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 권리종류 및 내용	
1	안암동5가	산1-55	임야	4,513	4,5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	학교법인 ***				
2	안암동5가	산1-93	임야	12,664	12,66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	학교법인 ***				
3	안암동5가	산1-95	임야	14,777	14,77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	학교법인 ***				
4	안암동5가	산1-96	임야	136	136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5가 *-*	학교법인 ***				

◈ 은평구고시 제2025-11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2493호(1966. 6. 21.)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은 평 구 청 장

1. 결정취지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도로)를 현황에 부합하도록 결정(경미한변경)코자 함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가.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	20~23	집산 도로	1,820 (470)	불광동 (불광동 239-21)	불광동 (불광동 220-2)	일반 도로	-	건고 제2493호 (1966.6.21.)	• 선형 일부조정 - 부지면적의 5% 미만의 경미한 변경 • 시·종점 변경 없음
변경	중로	1	1	20~23	집산 도로	1,820 (470)	불광동 (불광동 239-21)	불광동 (불광동 220-2)	일반 도로	-		

나.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류	중로1류	• 선형 일부조정 · 불광동 13-22 필지 · 부지면적의 5% 미만의 경미한 변경 • 시·종점 변경 없음	• 현황에 부합하도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계획변경

3. 관계도면 : 붙임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고시관련 세부 내용에 대한 시민 열람 편의를 위하여 은평구청 도시계획과(☎351-741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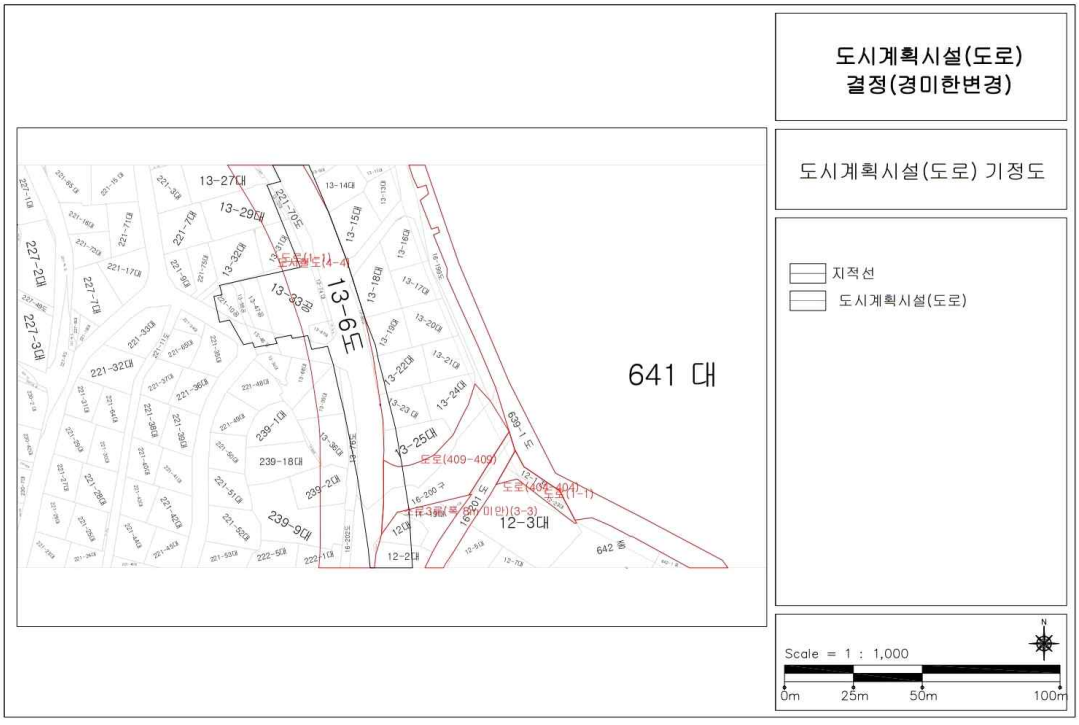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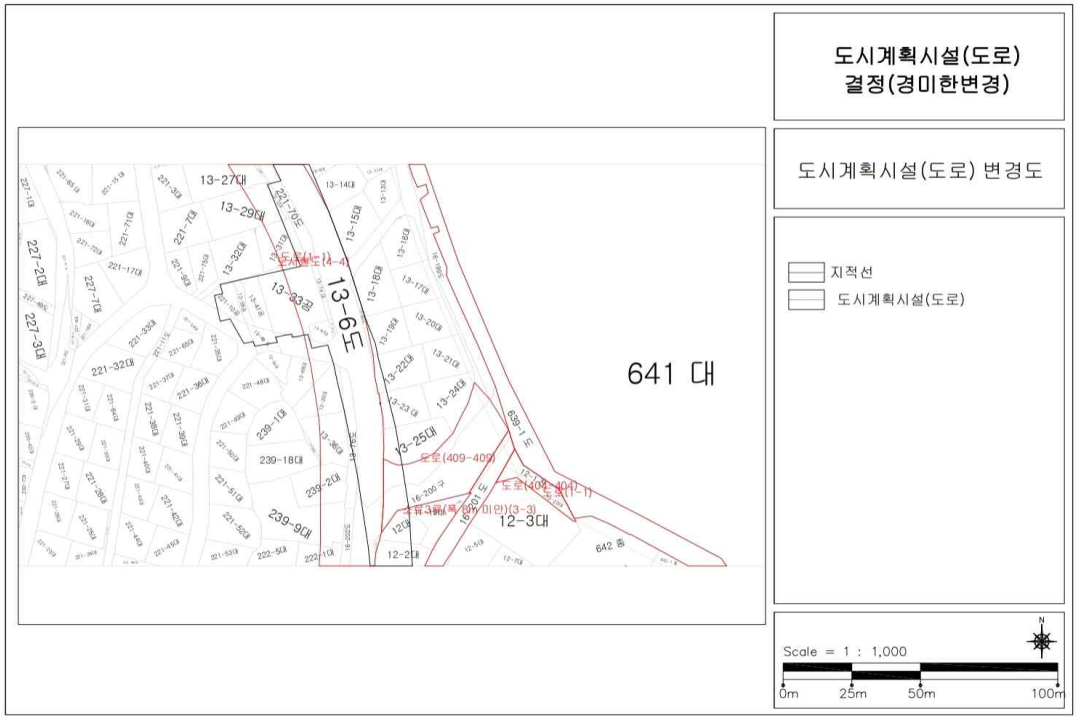

◈ 동작구고시 제2025-153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고시

1.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5-22호(2025.2.27.)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된 “상도동 283-226번지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보상” 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핵심정책추진단(02-820-1088)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6일
동 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83-226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 명 칭 : 상도동 283-226번지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보상
다. 사업규모
- 규 모 : 3,096.5㎡
- 용 도 : 사회복지시설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작성고시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소유자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및내용	
1	상도동 283-226	임야	3,096.5	3,096.5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기획재정부	3,096.5/3,096.5				사용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이용 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상도동 283-226	건물 (1층)	벽돌조	49.58	주거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	한○호				기존무허가 건물
2	상도동 283-226	건물 (1층)	벽돌조	26.44	주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	임○준				기존무허가 건물
3	상도동 283-226	건물 (1층)	벽돌조	26.44	주거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길 ○○○	이○원				기존무허가 건물
4	상도동 283-226	건물 (1층)	벽돌조	49.58	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	박○기				기존무허가 건물

◈ 송파구고시 제2025-95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326호(1984.08.25.)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3-84호(2023.06.15.)로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219호(2024.05.02.)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5-45호(2025.04.11.)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1239 일대 한국체육대학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경미한 변경)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02-2147-29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6일
송 파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실시계획(변경)인가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1239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 사업의 명칭: 한국체육대학교 다목적체육관,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승강기 증축

   다.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부지면적: 111,902.30㎡
   - 건축연면적: 107,779.93㎡

   라.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1239 일대)

   마. 사업시행기간
   - 다목적체육관 · 실내수영장 · (천마)기숙사 증축, 행복기숙사 신축(변경없음)
   - 골프연습장 증축: (기정) 착공일로부터 ~ 2025.9.30. ⇒ (변경) 착공일로부터 ~ 2026.3.4.
     - 변경사유: 문화재 지표조사, 급수배관 이설 등으로 공사 지연되어 시행기간 변경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변경없음

2. 열람장소 : 송파구 도시계획과 (☎02-2147-2995)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구 공 고

◈ 중구공고 제2025-1091호

소공 제4구역 및 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285호(1978.09.26.)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건설부고시 제147호(1980.5.19.)로 구역 변경, 재개발사업계획 결정 고시된 소공 제4구역 내 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중구청 도심정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6일
중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25. 11. 5. ~ 2025. 12. 5. (31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 (☎02-3396-5776)
다. 의견제출방법 : 공람의견서 작성하여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라. 관계서류 : 생략 (공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
마. 공람내용 : 아래와 같음

Ⅰ. 소공 제4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1. 정비구역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소공 제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지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소공 제4구역	소공동 30,51,74번지	18,783.0	건설부 고시 제147호 (1980.05.19.)	-

3) 정비구역을 분할통합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관련 계획 : 해당없음

4)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각 지구별 개발에 따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	-

5)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구역명	지구명	정비방식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소공 제4구역	7지구	존치지구	소공동 32-7일대	4,213.2	증) 86.7	4,299.9	-
기정		8지구	존치지구	소공동40일대	1,295.9	증) 85.6	1,381.5	-
변경		8지구	소단위정비지구					-
기정		9지구	존치지구	소공동41일대	1,266.8	감) 97.0	1,169.8	-

※ 7,8,9지구 외 면적 변경사항 없음.(타 지구 획지 기재 생략)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변경 사유서

구분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7지구	• 지구면적변경	• 지적선에 따른 지구면적 변경
변경	8지구	• 정비수법 및 지구면적 변경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사업시행지구로 전환 및 구역계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변경	9지구	• 지구면적 변경	• 지적선에 따른 지구면적 변경

2. 정비계획 결정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8,783.0	-	18,783.0	100.0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484.45	증) 301.2	1,785.65	9.5	-
	도로	654.5	증) 301.2	955.7	5.1	-
	시장	829.95	-	829.95	4.4	서울시고시 제131호 (1973.7.30.)
획 지	7지구	4,213.2	증) 86.7	4,299.9	22.9	존치지구
	8지구	1,295.9	증) 85.6	1,381.5	7.4	존치지구→소단위정비지구
	9지구	1,266.8	감) 97.0	1,169.8	6.2	존치→시행

※ 7,8,9지구 외 면적 변경사항 없음.(타 지구 획지 기재 생략)

■ 토지이용계획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정비기반 시설 등	현황 도로 확폭 및 도시계획시설 지정	• 정비기반시설 개선
획 지	7지구, 8지구, 9지구 획지 면적 변경	• 7,9지구 지적선에 따른 지구면적 변경 • 8지구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사업시행지구로 전환 및 구역계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3)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계획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조서

①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120	소공동 24	소공동 50-18	일반도로	-	건설부고시 제147호 (1980.5.19.)	
신설	소로	3	1	4~5	국지도로	70	소공동 45-4	남대문로2가 111-1	일반도로	-	-	-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소로 3-1	• 소로신설	• 차량 진·출입 동선 및 현황도로를 고려하여 도로 신설

② 유통 및 공급시설

■ 시장 결정 조서(변경없음)

Ⅱ. 8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1. 정비계획 결정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295.9	증) 109.7	1,405.6	100.0	

※ 지구계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용도지역 변경사항 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1,295.9	증) 109.7	1,405.6	1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	증) 24.1	24.1	1.7	-
	도 로	-	증) 24.1	24.1	1.7	-
획 지	소계	1,295.9	증) 85.6	1,381.5	98.3	-
	획지	1,295.9	증) 85.6	1,381.5	98.3	-

■ 토지이용계획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정비기반 시설 등	현황 도로 확폭 및 도시계획시설 지정	• 정비기반시설 개선
획 지	획지면적 증가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사업시행지구로 전환 및 구역계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3)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계획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조서

①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1	4~5	국지도로	70	소공동 45-4	남대문로2가 111-1	일반도로	-	-	-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소로 3-1	• 소로신설	• 차량 진·출입 동선 및 현황도로를 고려하여 도로 신설

4)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가. 정비기반시설 (변경)조서

①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1	4~5	국지도로	70	소공동 45-4	남대문로2가 111-1	일반도로	-	-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소로 3-1	• 소로신설	• 차량 진·출입 동선 및 현황도로를 고려하여 도로 신설

나.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부담)계획

구분	사업 지구	시행 면적 (㎡)	획지 면적 (㎡)	정비기반시설 제공 면적 (㎡)		계획기반 시설 내 기존 공공용지 (㎡)	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국공유지 (㎡)	건축물 기부채납		현금 기부 채납 환산 면적 (㎡)	순부담 면적 (㎡)	순부 담률 (%)	비고
				계	토지			환산 면적 (㎡)	대지 지분 (㎡)				
변경	8지구	1,405.6	1,381.5	24.1	24.1	-	-	27.8	48.0	38.6	138.5	9.85	-

※ 순부담률 = 순부담면적 / (시행면적 - 계획기반시설 내 기존 공공용지 - 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국공유지)

① 건축물 기부채납 계획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	비고 (관리청)
신규	청년창업센터	소공동 40	• 토지지분 48.0㎡ • 연면적 626.91㎡	층수: 지상 10층 (중구청장)

5)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결정구분	부담면적(㎡)	산출근거	비고
현금기부채납	38.6㎡	• 3,665,608,470원(개략치) • 산식 : 현금 기부채납액 / 부지가액(공시지가 평균액의 2배)	토지환산면적

※ 사업시행자는 추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2조에 따라 확정·납부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해당없음

7)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8지구	1,295.9	획지	1,295.9	소공동 40번지 일대	1	-	-	1	-	-
변경		1,405.6		1,381.5							-

8) 건축물에 관한 계획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구역명</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치</th><th rowspan="2">주용도</th><th rowspan="2">건폐율(%)</th><th rowspan="2">용적률(%)</th><th rowspan="2">높이(m)</th><th rowspan="2">비고</th></tr>
<tr><th>명칭</th><th>면적(㎡)</th><th>명칭</th><th>면적(㎡)</th></tr>
<tr><td>기정</td><td>8지구</td><td>1,295.9</td><td>획지</td><td>1,295.9</td><td>소공동40일대</td><td>주차장</td><td>49.77</td><td>497.7</td><td>35.5</td><td>존치
지구</td></tr>
<tr><td>변경</td><td>8지구</td><td>1,405.6</td><td>획지</td><td>1,381.5</td><td>소공동40일대</td><td>업무시설</td><td>60이하
저층부(5층이하)
80이하 주1)</td><td>830이하</td><td>90이하</td><td>소단위
정비지구</td></tr>
<tr><td>건축물의 용적률 완화에 관한 사항</td><td colspan="10">• 용적률 : 600% → 658%적용
① 기준용적률 : 600%
② 허용용적률 완화량 : 58%
<table><tr><th>목 적</th><th>인센티브 요건 및 완화량</th><th>산정방식</th><th>완화량</th></tr><tr><td>도시경제
활성화</td><td>· 벤쳐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도입 시
-기준용적률 X (도입시설면적/대지면적) X 보상계수
=600% X (339.15㎡/1,381.5㎡) X 0.4 = 58</td><td>지역별 유도용도
기준에 따름
정률부여 0.4
최대 100%</td><td>58%</td></tr><tr><td colspan="3">계</td><td>58%</td></tr></table>
③ 상한용적률 완화량 : 172%
-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 81%
<table><tr><th>구 분</th><th>내 용</th></tr><tr><td>기반시설 부담</td><td>· 토지,건축물 기부채납 및 현금납부</td></tr><tr><td>인센티브 산식</td><td>· 상한 용적률
= 허용 용적률 ×[1+(1.3×α토지)(1.2×α건축물)+(1×α현금)]
*α토지 = 공공시설부지제공한 면적 / 공공시설부지(토지)제공 후 대지면적
= 72.1㎡/(1,405.6㎡-72.1㎡)=0.0541
*α건축물 = 공공시설부지제공한 면적 / 공공시설부지(토지)제공 후 대지면적
= 27.8㎡/(1,405.6㎡-72.1㎡)=0.0209
*α현금 = 공공시설부지제공한 면적 / 공공시설부지(토지)제공 후 대지면적
= 38.6㎡/ (1,405.6㎡-72.1㎡)= 0.0289</td></tr><tr><td>적용내용</td><td>· 658×[1+(1.3×0.0541)+(1.2×0.0209)+(1×0.0289)]=739%</td></tr><tr><td colspan="2">완화량</td><td>81%</td></tr></table>
- 친환경 인센티브 녹색건축 초과등급 인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공 : 91%
<table><tr><th>구분</th><th>산정기준</th><th>계획기준</th><th>적용량</th></tr><tr><td rowspan="2">친환경
건축물</td><td>우량(그린3등급)</td><td>우수(그린2등급): 3%</td><td rowspan="2">658(허용용적률) X 14% =92%
(91%적용)</td></tr><tr><td>제로에너지건축물등급</td><td>건축물 에너지 효율 5등급
: 11%</td></tr></table></td></tr>
<tr><td>높이</td><td colspan="10">• 높이계획: 90m 이하 주2)</td></tr>
</table>

구분	구역명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건축한계선에 관한 계획					• 남대문로변 3m, 대상지 남측도로 1m					
대지 내 공지	공개 공지				• 남대문로변 활성화를 위한 전면배치					
	전면 공지				• 보행공간 마련을 위한 보도형 전면공지					
기타 사항	가로활성화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일반음식점 제5호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제7호판매시설 중 상점					
	저층부 외관				• 1층 벽면적의 50% 이상 투시형 구조					

주1)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기준높이는 90m이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한국은행 문화보호 3구역에 해당하여 높이 확보 어려움으로 저층부 건폐율(5층 이하) 완화 적용

주2-1)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현상변경 허용 기준 및 문화재 주변 높이기준을 우선 적용함.

주2-2) 문화유산 보존 영향성 검토 결과 옥상, 파라펫, 옥탑계단탑, 승강기 탑 등 이와 기타 유사한 것을 포함하여 55.6m 이하로 적용함.

9)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등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	-

10)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지분율 산정방식	▪ 추정지분율 = 분양대상자 투자금액(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평가액 +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차액 + 비용부담액) / 총사업비(분양예정의 대지평가액 + 신축건축물 시설평가액) -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차액(총 대지평가차액) =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액 - 대지조성비 - 총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평가액 - 개별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차액(각 토지등소유자별) = 총 대지평가차액 ⅹ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평가액 비율 - 비용부담액(사업시행자 부담 원칙) = 대지조성비 + 신축건축비(신축건축물 시설평가액)
추정 지분율	▪ 추정지분율 : 100% - 분양대상자 투자금액/ 총사업비 = (73,163,702 + 8,296,893 + 553,546,355) / 635,006,950 = 100% = 1

구분		금액(천원)	비고
종후 토지 및 건물평가금액 (총 사업비)	계	635,006,950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액	84,460,595	①

<table>
<tr><td></td><td>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금액(천원)</th><th>비고</th></tr>
<tr><td colspan="2">신축건물시설 평가액</td><td>550,546,355</td><td>②</td></tr>
<tr><td colspan="2">대지조성비</td><td>3,000,000</td><td>③</td></tr>
<tr><td colspan="2">총 종전 토지 및 건물평가액</td><td>73,163,702</td><td>④</td></tr>
<tr><td colspan="2">총 대지평가차액</td><td>8,296,893</td><td>① - ③ - ④ = ⑤</td></tr>
<tr><td colspan="2">비용부담액(사업시행자 부담 원칙)</td><td>553,546,355</td><td>② + ③ = ⑥</td></tr>
</table>
*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종전자산 추산액)은 약식 감정평가한 감정평가 금액
총사업비(종후 평가금액 추산액)는 향후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종
이 나와야 확정할 수 있지만,
분담금을 추산하기 위하여, 정비사업비(추산액)를 기준으로 작성(단, 정확성을 위해 약식 종후평가 권장)
</td></tr>
<tr><td>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td><td>▪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권리가액 상당액)
- 임의 산정(A)의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종전 자산(토지 또는 건축물) : 69,944,422(가정)(⑦)
- (A)의 개별 종전토지 또는 건물 평가액 비율 = 69,944,422(⑦) / 73,163,702(④) ≒ 86.03%(⑧)
- (A)의 개별 대지평가차액 = 8,296,893(⑤) X 86.03%(⑧) ≒ 7,138,009(⑨)
- (A)의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권리가액 상당액) = 62,944,422(⑦) + 7,138,009(⑨) = 70,082,431(⑩)
- (A)의 지분율 = 70,082,431(⑩) / 635,006,950(①+②) ≒ 11.04%</td></tr>
<tr><td>추정
수익률</td><td>추정수익률(사업시행에 따른 개별 종전자산의 수익률) : 00%
- 개별 권리가액 상당액 / 개별 종전자산(토지 또는 건축물) X 100%</td></tr>
<tr><td>추정
분담금
산출</td><td>▪ 추정분담금(개략적인 개별 분담금) 산출방식
- 개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
※ 토지등소유자가 분양받는 물건에 비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가액 상당액이 높을 경우 개별 분담금인 청산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사업시행자 지급), 그 반대인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청산금을 지급(사업시행자 징수)

▪ (A)의 종전토지 또는 건물 평가액 629억원 가정에 따른 개략적인 개별 분담금(예시)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토지등소유자
분양가(추산액)
(3.3㎡당, 천원)</th><th>토지등소유자
분양가
(추산액, 천원)</th><th>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
(권리가액 상당액,천원)</th><th>개별 분담금
(천원)</th><th>비고</th></tr>
<tr><td>업무시설
근린 생활시설</td><td>일괄적용</td><td>32,287</td><td>176,499,000</td><td>70,082,431</td><td>106,367,000</td><td>사업시행자
징수</td></tr>
</table>
</td></tr>
</table>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1) 정비구역 및 주변 지역의 주택 수급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12)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해당없음

13)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해당없음

14)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보전	•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을 통한 지형변동 및 토량이동 최소화 • 투수성포장의 최대한 확보를 통한 우수영향 저감 • 건설폐기물 발생 시 최대한 재활용하고 불가능한 폐기물은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	-
재난방지	• 건축법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 화재방지를 위해 가능한 내연성, 불연성 건축자재 사용	-

15)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해당없음

16)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항 목	개 선 방 안
주변가로 및 교차로	• 『소공동 부영호텔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 2019.7』 개선안 반영
	• 주변 교차로 최적신호 운영방안 제시(3개소)
진출입 동선	• 사업지 진출입구 운영방안 제시(1개소)
	• 사업지 남측 진출입로 전일 일방통행 운영
대중교통 보행 및 자전거	• 남대문로 보도 설치(B=4.0m, L=8.8m)
	• 남대문로 전면공지내 보행공간 확보(B=3.0m)
	• 보행동선 단절지점 횡단보도 설치(2개소)
	• 자전거보관소 설치(법정주차대수의 20%이상)
주차시설	• 법정주차대수 : 99대(최고한도) • 주차수요 : 87대(원단위법, 2033년) • 계획주차대수 : 76대(법정 최고한도 대비 76.8%, 수요대비 87.4%) - 확장형주차 : 계획주차대수의 30%이상 확보 - 장애인주차 : 법정주차대수의 3%이상 확보 - 가족배려주차 : 계획주차대수의 10%이상 확보 - 전기차주차 : 계획주차대수의 5%이상 확보
교통안전 및 기타	•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에 차량경고등 설치(1개소)
	• 교통안전표지판 설치(2개소)
	• 사업지 주변 과속방지턱 설치(1개소)

항 목	개 선 방 안
	• 시거 불량지점 반사경 설치(1개소)
	• 요일별 우회전 허용 노면표시 및 표지판 삭제

17)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디자인을 통한 범죄예방기법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적용

·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의 기본방향에 따름

–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

–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함

–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함

–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 관리

· 「건축법」 제53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고려하여 계획

18)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해당없음

19) 옛길, 옛 물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 해당없음

–이하여백–

Ⅲ. 소공 제4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소공 제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소공동 30, 51, 74번지	18,783.0	-	18,783.0	-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 : 공람도서 참조

Ⅳ. 8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 : 공람도서 참조

Ⅴ. 관계도면

1. 정비계획 : 공람도서 참조
2. 지구단위계획 : 공람도서 참조

Ⅵ. 기타

-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해당 공람 내용은 최종 결정·고시 이전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도심정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구공고 제2025-1100호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0·11지구 내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의견청취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327호(1994.10.07.)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2024.04.18. 정비사업 통합심의 후, 2025.09.08. BF예비인증 완료된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본 공원조성계획(최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6일
중 구 청 장

1. 공원종류: 어린이공원(1개소)
2. 위 치: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156-71번지 일대
3. 면 적: 2,828㎡
4. 조성계획(안): 별첨 조서 참조
5. 열람기간: 열람공고일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중구청 공원녹지과 (☎02-3396-5852)
7. 본 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공원녹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 조성계획결정 조서

1. 총괄표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156-71번지 일대)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2,828.00	1,036.87	-	-	-	114	-
기반	소 계	360.16	360.16	-	-	-	55	-
	도 로	314.82	314.82	-	-	-	2	-
	광 장	45.34	45.34	-	-	-	53	-
조경시설		-	-	-	-	-	-	-
휴양시설		204.92	204.92	-	-	-	5	-
유희시설		335.10	335.10	-	-	-	3	-
운동시설		129.52	129.52	-	-	-	4	-
관리시설		14.89	14.89	-	-	-	1	-
녹지 및 기타		1,783.41	1,783.41	-	-	-	46	-
시설률 (법정 60%)		1,044.59㎡/2,828.00㎡ *100=36.94%						

2. 시설조서

구 분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 면적	연면적	
계				2,828.00	1,044.60	-	-	-	-	114
기반시설	소 계			360.16	360.16	-	-	-	-	55
	도 로			314.82	314.82	-	-	-	-	
	광 장	가-1		45.34	45.34	-	-	-	-	
	앉음벽	①								2
	볼라드	②								16
	점자유도블럭	③								37
휴양시설	소 계			204.92	204.92	-	-	-	-	5
	휴게쉼터-1	나-1		126.42	126.42	-	-	-	-	
	휴게쉼터-2	나-2		27.54	27.54	-	-	-	-	
	휴게쉼터-3	나-3		47.71	47.71	-	-	-	-	
	휴게쉼터-4	나-4		3.25	3.25	-	-	-	-	
	계단	④								1
	티하우스	⑤								2
	그네의자	⑥								2
유희시설	소 계			335.10	335.10	-	-	-	-	3
	어린이놀이터	다		335.10	335.10	-	-	-	-	
	조합놀이대	⑦								1
	무장애회전놀이	⑧								1
	트램펄린	⑨								1
운동시설	소 계			129.52	129.52	-	-	-	-	4
	운동공간-1	라-1		64.56	64.56	-	-	-	-	
	운동공간-2	라-2		64.96	64.96	-	-	-	-	
	야외운동기구A	⑩								2
	야외운동기구B	⑪								1
	야외운동기구C	⑫								1
관리시설	소 계			14.89	14.89	-	-	-	-	1
	옹벽	마		14.89	14.89	-	-	-	-	
	조경석쌓기	⑬								1
녹지 및 기타	소 계			1,783.41	-	-	-	-	-	46
	녹지 및 기타	바-1		1,783.41	-	-	-	-	-	
	종합안내판	⑭								1
	방향안내판	⑮								1
	점자안내판	⑮								4
	미스트볼라드	⑰								40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합 계				186.91	314.82				
신설	산책로	소 계			186.91	314.82				
신설	산책로	-	1	1.8	9.33	16.79	연결로	가-3	가-2	
신설		-	2	1.8	69.61	125.29	연결로	가-1	가-2	
신설		-	3	1.6	95.46	152.73	산책로	산-2	가-2	
신설		-	4	1.6	12.51	20.01	연결로	가-4	산-3	

조성계획도

마포로5 어린이공원 조성

■ 범례

구 분	기호	시설명	면적(M2)	공작물	비 고
기반시설	산-1	도로	16.79		
	산-2	도로	125.29		
	산-3	도로	152.73		
	산-4	도로	20.01		
	가-1	광장	11.79		
	가-2	광장	10.73		
	가-3	광장	6.53		
	가-4	광장	16.29		
	①	앉음벽		2	
	②	볼라드		16	
	③	점자유도블럭		37	
	계		360.16	55	
휴양시설	나-1	휴게쉼터-1	126.42		
	나-2	휴게쉼터-2	27.54		
	나-3	휴게쉼터-3	47.71		
	나-4	휴게쉼터-4	3.25		
	④	계단		1	
	⑤	티하우스		2	
	⑥	그네의자		2	
	계		204.92	5	

구 분	기호	시설명	면적(M2)	공작물	비 고
유희시설	다	어린이놀이터	335.10		
	⑦	조합놀이대		1	
	⑧	무장애회전놀이		1	
	⑨	트램펄린		1	
	계		335.10	3	
운동시설	라-1	운동공간-1	64.56		
	라-2	운동공간-2	64.96		
	⑩	야외운동기구A		2	
	⑪	야외운동기구B		1	
	⑫	야외운동기구C		1	
	계		129.52	4	

구 분	기호	시설명	면적(M2)	공작물	비 고
관리시설	마	옹벽	14.89		
	⑬	조경석쌓기		1	
	계		14.89	1	
녹지 및 기타	바		1,783.41		
	⑭	종합안내판		1	
	⑮	방향안내판		1	
	⑯	점자안내판		4	
	⑰	미스트볼라드		40	
	계		1,783.41	46	
합 계			2,828.00	114	

◈ 구로구공고 제2025-1900호

항동지구 2호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국토부고시 제2010-806호(2010.11.15.)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지정]되고, 국토부고시 제2024-504호(2024.09.24.)로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최종 고시된 구로구 항동지구 2호 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본 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6일
구 로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공원)현황
   가. 시 설 명 : 항동지구 2호 근린공원
   나. 위　　치 : 서울시 구로구 항동 75 일대
   다. 면　　적 : 14,425.60㎡
2. 공고내용 : 항동지구 2호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안)
   가. 목　　적 :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 후 2026년 SH공사→구로구로 기부채납 예정인 항동지구 2호 근린공원에 대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개발사업 중 공원 내 풋살장 및 휴게시설을 반영한 조성계획을 수립·변경코자 SH공사에서 의뢰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공공체육시설 수요를 충족하고 체력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함
   나. 변경내역 : 공원 내 풋살장 및 휴게시설 조성사업 등에 따른 시설면적 반영

부지면적(㎡)			시설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14,425.60	14,425.60	-	103.00	739.41	증)636.41

- 기반시설 : 0.00㎡ → 98.74㎡ (증 98.74㎡)
- 휴양시설 : 103.00㎡ → 125.11㎡ (증 22.11㎡)
- 운동시설 : 0.00㎡ → 515.56㎡ (증 515.56㎡)
- 녹　　지 : 14,322.60㎡ → 13,686.19㎡ (감 636.41㎡)

3. 열람기간 : 2025. 11. 7. ~ 11. 20.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구로구청 공원녹지과 (☎02-860-3088)
5. 관계도서 : 게재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항동지구 2호 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구로구 항동 75 일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4,425.60	103.00				25	14,425.60	739.41				42	시설면적 증가 636.41㎡ (증 17기)
기반시설	소계							98.74	98.74					증 98.74㎡
	도로							9.83	9.83					증 9.83㎡
	광장							88.91	88.91					증 88.91㎡
조경시설													5	증 5기
유희시설														
휴양시설		103.00	103.00				3	125.11	125.11				4	증 22.11㎡ (증 1기)
교양시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운동시설							515.56	515.56				2	증 515.56㎡ (증 2기)
편익시설													
관리시설						22						31	증 9기
그 밖의시설													
녹지 및 기타	14,322.60						13,686.19						감 636.41
시설율 (법정 40%)	(103.00 / 14,425.60) × 100 = 0.71%						(739.41 / 14,425.60) × 100 = 5.12%						증 4.41%
건폐율 (법정 10%)	-						-						

2. 시설조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14,425.60	103.00		995m			25			14,425.60	739.41					42	증 636.41
기반시설	소 계												98.74	98.74						증 98.74
	도 로											구로구 항동 75-2	9.83	9.83						신설
	광 장										나	구로구 항동 75-2	88.91	88.91						신설
조경시설	소 계						80m												5	
	조경석쌓기A	①	구로구 항동 77-1				35m				①	구로구 항동 77-1							1	35m
	조경석쌓기B	②	구로구 항동 산36-1				12m				②	구로구 항동 산36-1							1	12m
	조경석쌓기C	③	구로구 항동 산36-1				27m				③	구로구 항동 산36-1							1	27m
	조경석쌓기D	④	구로구 항동 산36-1				6m				④	구로구 항동 산36-1							1	6m
	경관옹벽										⑫	구로구 항동 76-1							1	신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휴양시설	소 계			103.00	103.00					3			125.11	125.11					4	증 22.11
	휴게공간	가	구로구 항동 145-3	103.00	103.00						가	구로구 항동 145-3	103.00	103.00						
	휴게쉼터										다	구로구 항동 75-2	22.11	22.11						신설
	근로자휴게소A	⑤	구로구 항동 145-7							1	⑤	구로구 항동 145-7							1	
	근로자휴게소B	⑥	구로구 항동 145-3							1	⑥	구로구 항동 145-3							1	
	근로자휴게소C	⑦	구로구 항동 145-3							1	⑦	구로구 항동 145-3							1	
	파고라										⑬	구로구 항동 75							1	신설
운동시설	소 계												515.56	515.56					2	증 570.59
	풋살경기장										라	구로구 항동 75	515.56	515.56						신설
	풋살골대										⑭	구로구 항동 75							2	신설
관리시	소 계						875m			22									31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설	로프휀스	⑧	구로구 항동 75				661m				⑧	구로구 항동 75							1	661m
	표지말뚝	⑨	구로구 항동 산34-13							4	⑨	구로구 항동 산34-13							4	
	수로안전휀스	⑩	구로구 항동 75				214m				⑩	구로구 항동 75							1	214m
	방부목흙막이	⑪	구로구 항동 145-3							18	⑪	구로구 항동 145-3							18	
	안전휀스										⑮	구로구 항동 76-1							1	신설
	안내판										⑯	구로구 항동 75							1	신설
	보안등										⑰	구로구 항동 75							5	신설
녹지 및 기타	소 계			14,322.60									13,686.19							감 636.41
	녹지 및 기타			14,322.60									13,686.19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변경					6.55	9.83				
당초	산책로	소 계								
변경					6.55	9.83				
신설		–	1	1.5	6.55	9.83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나	

조성계획도(당초)

2호 근린공원(항동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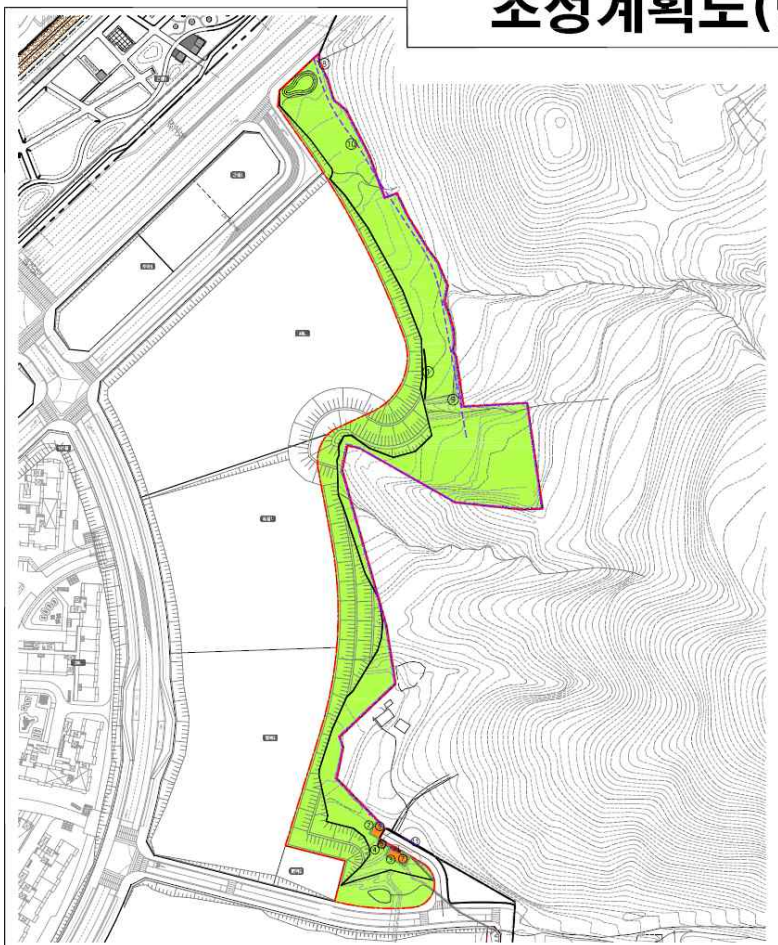

KEY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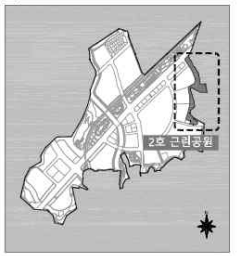

0 5 10 20 40(m) (A3:1/2000)

■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개)	비고
합계			14,425.60	103.00	-	955m	-	-	25	
조경시설	소계		-	-	-	80m	-	-	-	
	조경석쌓기A	①	-	-	-	35m	-	-	-	
	조경석쌓기B	②	-	-	-	12m	-	-	-	
	조경석쌓기C	③	-	-	-	27m	-	-	-	
	조경석쌓기D	④	-	-	-	6m	-	-	-	
유희시설	소계		103.00	103.00	-	-	-	-	3	
	휴게공간	가	103.00	103.00	-	-	-	-	-	
	근로자휴게소A	⑤	-	-	-	-	-	-	1	
	근로자휴게소B	⑥	-	-	-	-	-	-	1	
	근로자휴게소C	⑦	-	-	-	-	-	-	1	
교양시설	소계		-	-	-	875m	-	-	22	
	로프데스	⑧	-	-	-	661m	-	-	-	
	포지말뚝	⑨	-	-	-	-	-	-	4	
	수로안전펜스	⑩	-	-	-	214m	-	-	-	
	방부목울타리	⑪	-	-	-	-	-	-	18	
녹지 및 기타	소계		14,322.60	-	-	-	-	-	-	
	녹지		14,322.60	-	-	-	-	-	-	

조성계획도(변경)

2호 근린공원(항동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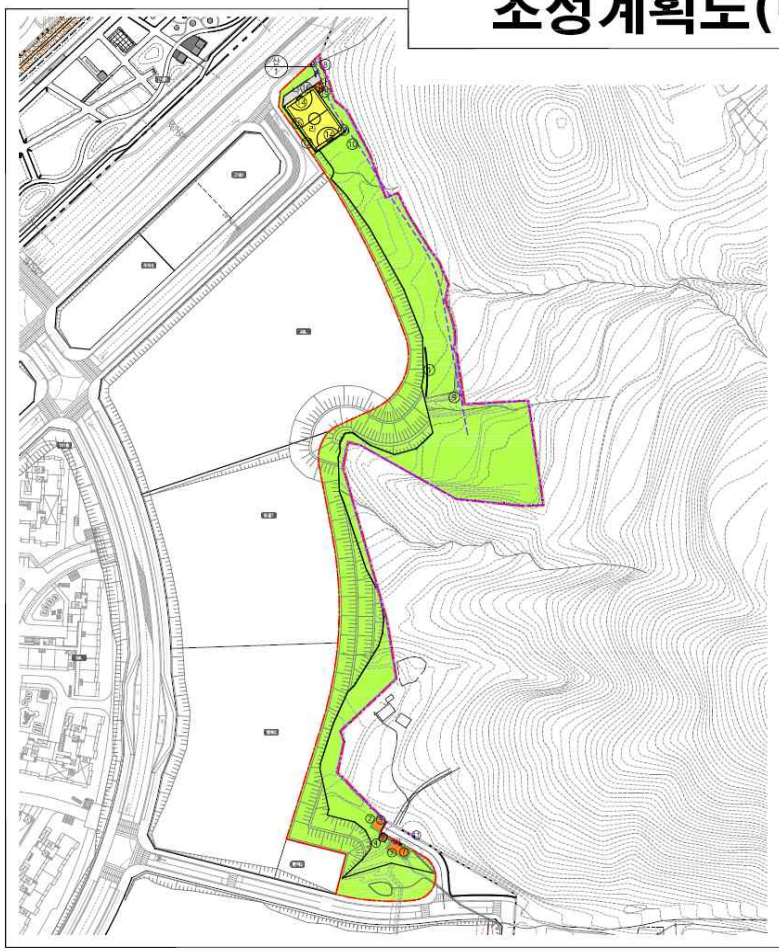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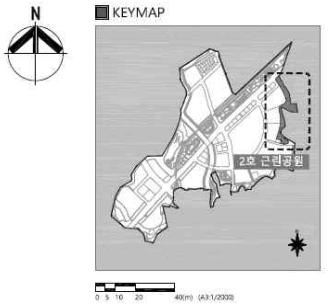

■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비고
합계			14,425.60	739.41	-	-	-	-	42	
기반시설	소계		98.74	98.74	-	-	-	-	-	
	도로		9.83	9.83	-	-	-	-	-	
	광장	나	88.91	88.91	-	-	-	-	-	
주요시설	소계		-	-	-	-	-	-	5	
	조경석쌓기A	①	-	-	-	-	-	-	1	35m
	조경석쌓기B	②	-	-	-	-	-	-	1	12m
	조경석쌓기C	③	-	-	-	-	-	-	1	27m
	조경석쌓기D	④	-	-	-	-	-	-	1	6m
	경관옹벽	⑤	-	-	-	-	-	-	1	
휴양시설	소계		125.11	125.11	-	-	-	-	4	
	휴게공간	가	103.00	103.00	-	-	-	-	-	
	휴게쉼터	다	22.11	22.11	-	-	-	-	-	
	근로자휴게소A	⑥	-	-	-	-	-	-	1	
	근로자휴게소B	⑦	-	-	-	-	-	-	1	
	근로자휴게소C	⑧	-	-	-	-	-	-	1	
	화고과	⑨	-	-	-	-	-	-	1	
운동시설	소계		515.56	515.56	-	-	-	-	2	
	포설경기장	라	515.56	515.56	-	-	-	-	-	
	동심광대	⑩	-	-	-	-	-	-	2	
편익시설	소계		-	-	-	-	-	-	31	
	쿠프테스	⑪	-	-	-	-	-	-	1	661m
	포지블럭	⑫	-	-	-	-	-	-	4	
	수로안전펜스	⑬	-	-	-	-	-	-	1	214m
	방부목울타리	⑭	-	-	-	-	-	-	18	
	안전펜스	⑮	-	-	-	-	-	-	1	
	안내판	⑯	-	-	-	-	-	-	1	
	보안등	⑰	-	-	-	-	-	-	5	
공원기타	소계		13,686.19	-	-	-	-	-	-	
	녹지		13,686.19	-	-	-	-	-	-	

◈ 동작구공고 제2025-194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306호(1998. 8.26.)로 최초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로 결정되고, 동작구고시 제2021-2호(2021. 1. 7.)로 변경결정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6일
동 작 구 청 장

1.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동작구청 핵심정책추진단
(장승배기로 70, 4층, ☎ 02-820-1081)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나. 도시계획시설(공간적 범위) 결정 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4. 관계도서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5. 기타사항
-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로 의견서(서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초구공고 제2025-2157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문화공원2 조성계획결정(최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52호(2017.4.27.)호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72호(2022.6.23.)호로 변경 결정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문화공원2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최초)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초 구 청 장

1. 공원현황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문화공원2 조성계획결정(최초) 열람공고
   나. 위　　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901번지 일원
   다. 공원면적: 45,209.00㎡

2. 조성계획(안)
   2. 조성계획 결정(최초)(안)
   가. 목 적 : 문화공원 조성을 통해 올림픽대로 상부에 입체공원을 조성하고 한강과 연결, 문화시설과 신반포로를 잇는 인프라를 형성하여 문화공원과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조성내역
   - 기반시설 : 광장 및 도로 (5,296.02㎡)
   - 조경시설 : 잔디마당 및 옹벽 (1,347.82㎡)
   - 휴양시설 : 숲속쉼터, 전망쉼터 (1,538.39㎡)
   - 유희시설 : 모래놀이터 (50.87㎡)
   - 교양시설 : 전시장 (2,026.82㎡)
   - 편익시설 : 주차장진입로 (138.99㎡)
   - 녹　　지 : 녹지 (19,442.29㎡)
   - 기타시설 : 덮개구조물 (15,367.80㎡)

3.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4.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열람시간 09:00 ~ 18:00)
5. 열람장소 : 서초구청 푸른도시과(☎02-2155-6861)

6. 본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문화공원2 조성계획 결정조서. 1부.
2.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문화공원2 조성계획도 1부. 끝.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문화공원2 조성계획결정(최초)조서

1. 총괄표 (위치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910번지 일대)

구 분		최초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45,209.00	25,766.71				122	
기반시설	소 계	5,296.02	5,296.02					
	도 로	4,674.71	4,674.71					신설
	광 장	621.31	621.31					신설
조경시설		1,347.82	1,347.82				8	신설
휴양시설		1,538.39	1,538.39				27	신설
유희시설		50.87	50.87					신설
교양시설		2,026.82	2,026.82	1	0.00	4,753.94		신설

구 분	최초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편익시설	138.99	138.99					신설
관리시설						87	신설
녹지	19,442.29						신설
기타시설	15,367.80	15,367.80					신설
시 설 률 (법정제한없음)	(25,766.71/45,209.00) × 100 = 56.99%						
건 폐 율 (법정 20%)	없음						

2. 시설조서

구 분		최 조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45,209.00	25,766.71			0.00	4,753.94	122	
기반시설	소 계			5,296.02	5,296.02						
	도 로		반포동 910번지 일대	4,674.71	4,674.71						신설
	광장	가	5개소	621.31	621.31						신설
		가-1	반포동 910번지 일대	86.12	86.12						신설
		가-2	반포동 910번지 일대	373.02	373.02						신설
		가-3	반포동 910번지 일대	36.88	36.88						신설
		가-4	반포동 910번지 일대	63.37	63.37						신설
		가-5	반포동 910번지 일대	61.92	61.92						신설
조경시	소 계			1,347.82	1,347.82					8	

구 분		최 조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설	계류	나	반포동 910번지 일대	229.42	229.42						신설
	원형못	다	반포동 910번지 일대	28.27	28.27						신설
	빗물수로	라	반포동 910번지 일대	89.89	89.89						신설
	연못	마	반포동 910번지 일대	78.75	78.75						신설
	잔디마당	바	반포동 910번지 일대	366.29	366.29						신설
	옹벽	사	2개소	555.20	555.20						신설
		사-1	반포동 910번지 일대	144.00	144.00						신설
		사-2	반포동 910번지 일대	411.20	411.20						신설
조경시설	조형돌	①	아-2 근처 녹지							4	신설
	연결다리	②	나							1	신설

구 분		최 조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징검다리	③	나							3	신설
휴양시설	소계			1,538.39	1,538.39					27	
	숲속쉼터	아	3개소	1,000.32	1,000.32						신설
		아-1	반포동 910번지 일대	110.50	110.50						신설
		아-2	반포동 910번지 일대	565.07	565.07						신설
		아-3	반포동 910번지 일대	324.75	324.75						신설
	전망쉼터	자	반포동 910번지 일대	538.07	538.07						신설
	파빌리온	④	바							1	신설
	벤치	⑤	반포동 910번지 일대							4	신설
	통나무놀기	⑥	아-2							3	신설

구 분		최 조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원목평상	⑦	자							16	신설
	전망바위	⑧	덮개구조물 녹지							3	신설
유희시설	소계			50.87	50.87						
	모래놀이터	차	반포동 910번지 일대	50.87	50.87						신설
교양시설	소계			2,026.82	2,026.82			0.00	4,753.94		
	전시장	카	반포동 910번지 일대	2,026.82	2,026.82			0.00	4,753.94		신설
편익시설	소계			138.99	138.99						
	주차장 진입로	타	반포동 910번지 일대	138.99	138.99						신설

구 분		최 조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관리시설	소계									87	
	공원등	⑨	반포동 910번지 일대							63	신설
	CCTV	⑩	반포동 910번지 일대							24	신설
녹지	소계			19,442.29							
	녹지		반포동 910번지 일대	19,442.29							신설
기타시설	소계			15,367.80	15,367.80						
	덮개구조물		반포동 910번지 일대	874.17	874.17						신설
	덮개구조물 (중복)		반포동 910번지 일대	(8,083.25)	(8,083.25)						신설
	덮개접근로 (중복)		반포동 910번지 일대	(547.28)	(547.28)						신설
	한강변 기타시설		반포동 910번지 일대	14,493.63	14,493.63						신설

3.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소 계					4,674.72				
신설	소로	3	1	4.0	247.46	990.68	연결로	남측진입	가-2	
		3	2	4.0-6.7	147.73	615.46	연결로	가-2	서측진입	
		3	3	4.0-5.5	144.06	647.20	연결로	동측진입	산책로-11	
		3	4	4.0-5.5	50.85	213.25	연결로	소로-3	가-2	
		3	5	2.4	102.47	245.92	연결로	가-3	가-4	
		3	6	2.4	51.13	122.71	연결로	가-3	가-5	
		3	7	3.0	44.29	132.87	연결로	가-3	북측진입	
		3	8	2.4	124.80	299.97	연결로	가-4	소로-7	
		3	9	2.4	29.32	70.31	연결로	소로-7	가-5	
	산책로	-	1	4.0	12.65	50.16	연결로	남측진입	서측단지	
		-	2	2.0-9.0	33.46	82.51	연결로	소로-1	가-1	
		-	3	4.0	5.54	22.16	연결로	소로-1	서측단지	
		-	4	1.5	29.03	43.63	산책로	소로-1	근린공원	
		-	5	1.5-4.0	17.15	33.47	산책로	소로-1	근린공원	
		-	6	2.0-6.0	159.83	334.35	산책로	소로-1	동측진입	
		-	7	2.0-4.0	52.85	112.99	산책로	소로-4	산책로-6	
		-	8	4.0	9.55	38.27	연결로	가-2	서측단지	
		-	9	1.1	4.31	4.72	연결로	소로-2	카	
		-	10	1.1	2.16	2.36	연결로	소로-2	카	
		-	11	1.5-9.0	96.61	207.36	산책로	소로-3	소로-2	
		-	12	4.0	5.88	23.53	연결로	소로-3	카	
		-	13	1.5	211.88	317.76	연결로	공원경계	타	
		-	14	1.5	43.54	63.08	연결로	타	공원경계	

위 치 도

Scale: A1 = NONE, A3 = NONE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문화공원2

■ 사 업 대 상 지
_위 치: 서초구 반포동 901번지 일원
_면 적: 45,209.00㎡

조 성 계 획 도

Scale: A1 = 1/1200, A3 = 1/2400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문화공원2

■ 조성계획표

구 분	부호	시설명	부지면적(m2)	시설면적(m2)	공작물(기)	비 고
총 계			45,209.00		122	100%
시설합계			25,766.71	25,766.71	122	56.99%
기반시설		소계	5,296.02	5,296.02		11.71%
		도로	4,674.71	4,674.71		공원내신설도로
	가	광장	621.31	621.31		
	가-1	만남광장	86.12	86.12		
	가-2	중앙광장	373.02	373.02		
	가-3	진입광장1	36.88	36.88		
	가-4	진입광장2	63.37	63.37		
	가-5	진입광장3	61.92	61.92		
조경시설		소계	1,347.82	1,347.82	8	2.98%
	나	계류	229.42	229.42		
	다	원형못	28.27	28.27		
	라	빗물수로	89.89	89.89		
	마	연못	78.75	78.75		
	바	잔디마당	366.29	366.29		
	사	용벽	555.20	555.20		
	사-1	용벽	144.00	144.00		
	사-2	자연석쌓기	411.20	411.20		
	①	조형돌			4	
	②	연결다리			1	
	③	징검다리			3	
휴양시설		소계	1,538.39	1,538.39	27	3.40%
	아	습속쉼터	1,000.32	1,000.32		
	아-1	습속쉼터	110.50	110.50		
	아-2	습체험공간	565.07	565.07		
	아-3	습마당	324.75	324.75		
	자	전망쉼터	538.07	538.07		
	④	파빌리온			1	
	⑤	벤치			4	
	⑥	동-나무놀기			3	
	⑦	원목평상			16	
	⑧	전망바위			3	
유희시설		소계	50.87	50.87		0.11%
	차	모래놀이터	50.87	50.87		
교양시설		소계	2,026.82	2,026.82		4.48%
	카	전시장	2,026.82	2,026.82		
경역시설		소계	138.99	138.99		0.31%
	타	주차장진입로	138.99	138.99		
관리시설		소계			87	
	⑨	공원등			63	
	⑩	CCTV			24	
녹지		소계	19,442.29			43.01%
		녹지	19,442.29			
기타시설		소계	15,367.80	15,367.80		33.99%
		덮개구조물	874.17	874.17		
		덮개구조물(중복)	(8,083.25)	(8,083.25)		
		덮개접근로(중복)	(547.28)	(547.28)		
		환경변기마시설	14,493.63	14,493.63		

◈ 강남구공고 제2025-246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82-7번지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6일
강 남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강남구청 도시계획과(☎02-3423-6104)
다. 열람내용: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안)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신설	소로	3	-	1.5m	특수 도로	131.6m	청담동 82-7	청담동 82-7	보행자 전용도로	-	-	입체적 결정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보행자전용도로)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구분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청담동 82-7 일대	길이	-	증)131.6m	131.6m	-	199.4㎡ (구분지상권 실면적)
				폭	-	증)1.5m	1.5m		
				높이	-	증)해발고도41.0~50.0m	해발고도41.0~50.0m		
				면적	-	증)199.4㎡	199.4㎡		

※ 도시계획시설 면적, 높이 등은 추후 관리청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보행자 전용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길이 : 131.6m - 폭 : 1.5m - 높이 : 41.0~50.0m (해발고도 기준) - 수평투영면적 : 199.4㎡	• 보행환경이 열악한 이면도로 상 보행자,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도모를 위해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하여 보행환경 개선

※ 세부 구역의 범위, 계획 등은 열람장소 비치도서 및 도면으로 갈음

라. 관련도서: 열람장소에 관련 도서 및 도면 비치

마.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서울소식→공고→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 본 계획(안)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관련도면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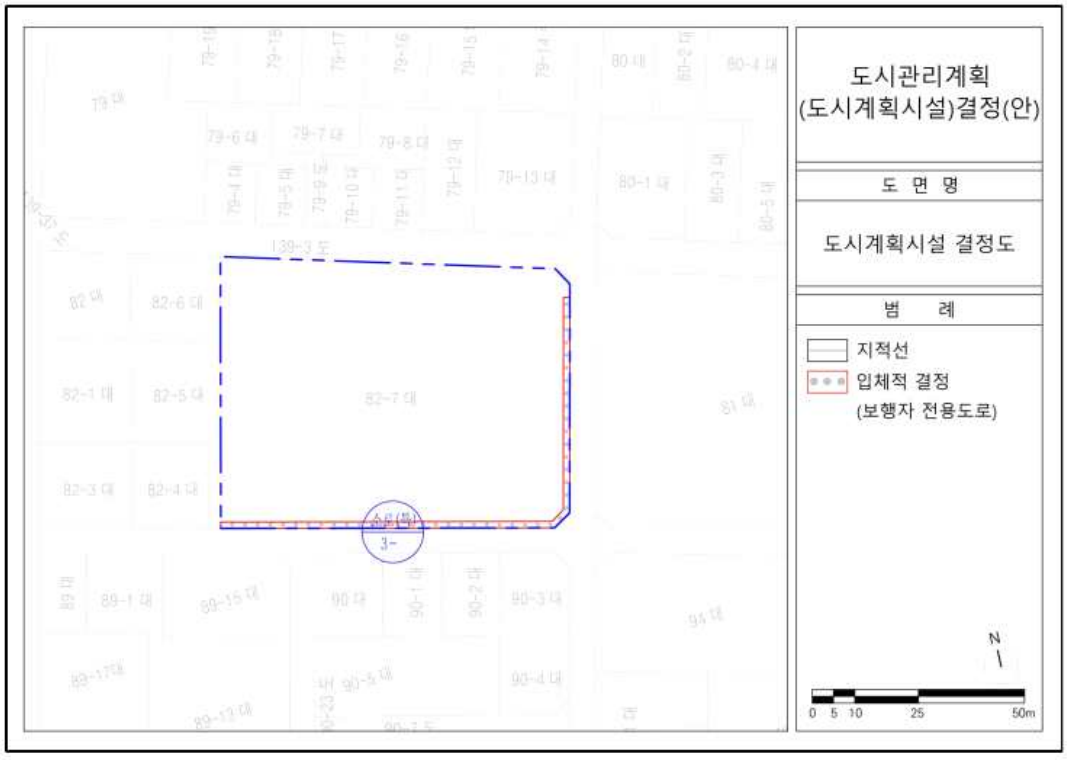

2)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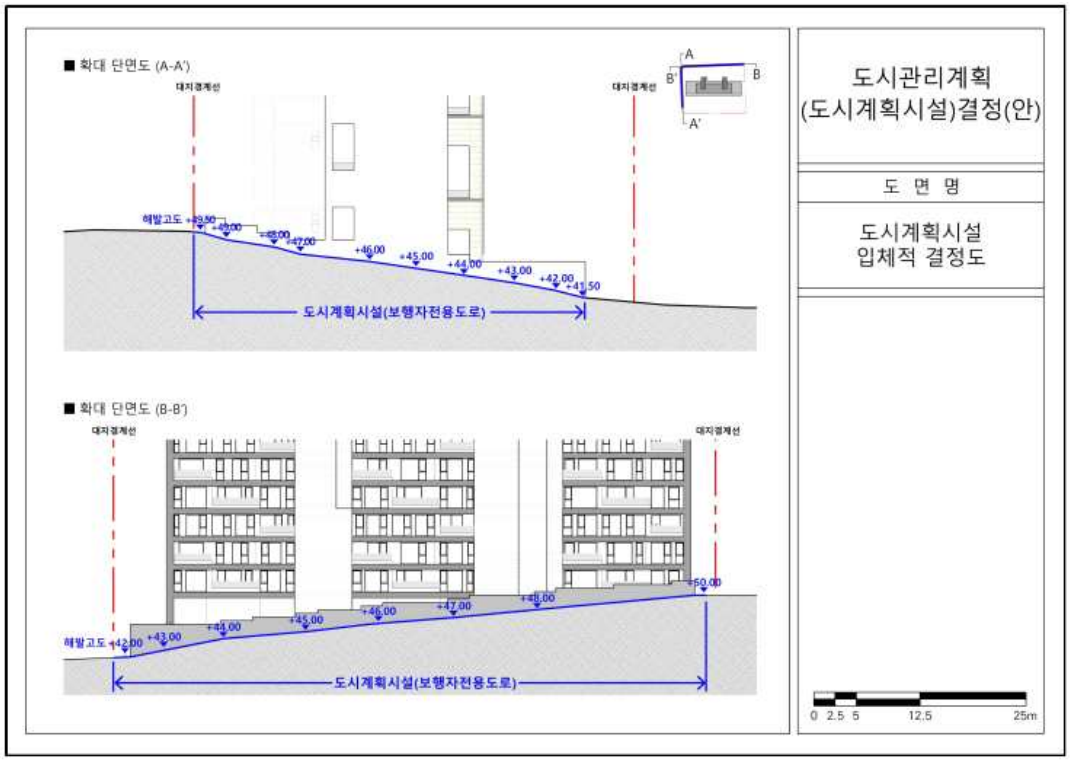

사업소고시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43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인천해양경찰서	인천시 서구 청라루비로 96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2천	992㎡	수상레저 조종면허 PC시험장	'25.10.17. ~ '28.10.16.	'25.10.23.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44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운항구역/ 점용위치	점용목적	점용면적	점용기간	
㈜은예 반포지점 (대표 양미영)	서울특별시 서초구 올림픽대로 683(반포동)	세빛섬 내 가빛섬 ~ 예빛섬 사이 수상 구역	수상레저사업	튜브스터 10대 구조선 1대	2025.11.1. ~ 2025.11.31	2025. 10.31.
㈜써클원네스 서울 (대표 박소희)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73	한강대교 ~ 동작대교	육상작업장 1,100㎡ 수상작업장 1,500㎡	대체건조를 위한 유선장 설치 및 공사	2025.11.1. ~ 2025.12.31.	
			육상작업장 1,100㎡ 수상작업장 1,500㎡	대체건조를 위한 유선장 설치 및 공사 (기간연장)	2026.1.1. ~ 2026.9.30.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44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도영로 115	서울시계 내 한강 (한강철교)	선박 2척: 353.64㎡ (기선1척, 부선1척)	구조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을위한 선박운항	'25. 11. 1. ~ '25. 12. 31.	'25. 10. 31.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44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 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마포인트	경기도 시흥시 엠티브이북로 **-**, *동,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나루길 435 (망원 한강공원내)	유선장 1,546㎡ (간접 3,685㎡)	유선 및 마리나업	2024.1.1.~ 2026.12.31.	2025. 10.

※ 하천점용허가 면적 변경(1,414㎡ → 1,546㎡)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44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미래한강본부 (수상공간조성과)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서울시계 내 한강 (서초구 반포동 647 일원)	선박 2척: 61㎡ (모터보트1척, 바지1척)	수상푸드존 조성 관련 지반조사를 위한 선박운항	'25. 11. 5. ~ '25. 12. 10.	'25. 11. 4.

사업소공고

◈ 미래한강본부공고 제2025-442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위반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수시분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고기간 : 2025. 11. 06. ~ 2025. 11. 19. (14일)

5. 수령방법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6.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반송구분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일자	납기일자	공시송달여부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1	부과고지	960311-*******	김*연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09	0011148	2025-09-08	2025-11-30	Y	2025-09-24	폐문부재	2025-11-01	2025-11-06	2025-11-19
2	부과고지	660915-*******	양*진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9	0001247	2025-09-08	2025-11-30	Y	2025-09-19	폐문부재	2025-11-01	2025-11-06	2025-11-19
3	부과고지	601222-*******	이*자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9	0001250	2025-09-08	2025-11-30	Y	2025-09-1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4	부과고지	610628-*******	남*호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09	0001251	2025-09-08	2025-11-30	Y	2025-09-1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5	부과고지	134811-*******	(주*********셔널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10	0001274	2025-10-17	2025-11-30	Y	2025-10-23	주소불명	2025-11-01	2025-11-06	2025-11-19
6	부과고지	031026-*******	BU*****NG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차	2025-10	0001276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7	부과고지	951121-*******	FA**********GLI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10	0001277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8	부과고지	580418-*******	HA******N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10	0001279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9	부과고지	001009-*******	HO**********NH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10	0001280	2025-10-17	2025-11-30	Y	2025-10-28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선택	반송구분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일자	납기일자	공시송달여부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10	부과고지	970413-*******	KH********** **********LI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10	001283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1	부과고지	810112-*******	LI*****A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10	001284	2025-10-17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2	부과고지	910516-*******	MA********** **********LI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10	001285	2025-10-17	2025-11-30	Y	2025-10-28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3	부과고지	970621-*******	OT**********IR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10	001289	2025-10-17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4	부과고지	050116-*******	SR********** **********GLI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10	001291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5	부과고지	980223-*******	UK********** **EK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10	001292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6	부과고지	040510-*******	VI****U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차	2025-10	001293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7	부과고지	731128-*******	강*민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10	001294	2025-10-17	2025-11-30	Y	2025-10-30	폐문부재	2025-11-01	2025-11-06	2025-11-19
18	부과고지	660813-*******	고*영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296	2025-10-17	2025-11-30	Y	2025-10-28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선택	반송구분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일자	납기일자	공시송달여부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19	부과고지	660813-*******	고*영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297	2025-10-17	2025-11-30	Y	2025-10-28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20	부과고지	660813-*******	고*영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298	2025-10-17	2025-11-30	Y	2025-10-28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21	부과고지	821121-*******	김*은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차	2025-10	001301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22	부과고지	730204-*******	김*용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10	001311	2025-10-17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23	부과고지	701206-*******	김*동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10	001312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24	부과고지	970729-*******	김*진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10	001314	2025-10-17	2025-11-30	Y	2025-10-28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25	부과고지	630815-*******	김*일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10	001315	2025-10-17	2025-11-30	Y	2025-10-23	수취인불명	2025-11-01	2025-11-06	2025-11-19
26	부과고지	950810-*******	김*훈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10	001317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폐문부재	2025-11-01	2025-11-06	2025-11-19
27	부과고지	900424-*******	김*식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10	001318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폐문부재	2025-11-01	2025-11-06	2025-11-19

선택	반송구분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일자	납기일자	공시송달여부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28	부과고지	730815-*******	김*호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319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폐문부재	2025-11-01	2025-11-06	2025-11-19
29	부과고지	821015-*******	김*환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10	001320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30	부과고지	681007-*******	김*택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10	001321	2025-10-17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31	부과고지	700919-*******	김*호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10	001323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32	부과고지	970213-*******	김*영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10	001325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33	부과고지	970213-*******	김*영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10	001326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34	부과고지	460929-*******	김*원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328	2025-10-17	2025-11-30	Y	2025-10-28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35	부과고지	460929-*******	김*원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329	2025-10-17	2025-11-30	Y	2025-10-28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36	부과고지	460929-*******	김*원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330	2025-10-17	2025-11-30	Y	2025-10-28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선택	반송구분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일자	납기일자	공시송달여부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37	부과고지	460929-*******	김*원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331	2025-10-17	2025-11-30	Y	2025-10-28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38	부과고지	810119-*******	김*림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이륜차	2025-10	001332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39	부과고지	720309-*******	김*완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333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40	부과고지	720309-*******	김*완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334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41	부과고지	720309-*******	김*완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335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42	부과고지	720309-*******	김*완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336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43	부과고지	720309-*******	김*완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337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44	부과고지	720309-*******	김*완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338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45	부과고지	580717-*******	김*영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주차행위**********이륜차	2025-10	001339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선택	반송구분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일자	납기일자	공시송달여부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46	부과고지	831211-*******	나*경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10	001350	2025-10-17	2025-11-30	Y	2025-10-23	수취인불명	2025-11-01	2025-11-06	2025-11-19
47	부과고지	610628-*******	남*호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351	2025-10-17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48	부과고지	610628-*******	남*호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352	2025-10-17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49	부과고지	610628-*******	남*호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353	2025-10-17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50	부과고지	610628-*******	남*호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354	2025-10-17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51	부과고지	610628-*******	남*호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355	2025-10-17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52	부과고지	910427-*******	노*웅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10	001356	2025-10-17	2025-11-30	Y	2025-10-23	이사불명	2025-11-01	2025-11-06	2025-11-19
53	부과고지	930307-*******	노*아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자동차	2025-10	001358	2025-10-17	2025-11-30	Y	2025-10-28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54	부과고지	680809-*******	류*근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10	001359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선택	반송구분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일자	납기일자	공시송달여부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55	부과고지	711221-*******	문*호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10	001360	2025-10-17	2025-11-30	Y	2025-10-28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56	부과고지	810201-*******	박*현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10	001364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폐문부재	2025-11-01	2025-11-06	2025-11-19
57	부과고지	770911-*******	박*선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365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58	부과고지	970510-*******	변*우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차	2025-10	001374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59	부과고지	590621-*******	서*만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10	001377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60	부과고지	751019-*******	송*광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10	001378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폐문부재	2025-11-01	2025-11-06	2025-11-19
61	부과고지	750313-*******	신*수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379	2025-10-17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62	부과고지	750313-*******	신*수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380	2025-10-17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63	부과고지	750313-*******	신*수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381	2025-10-17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선택	반송구분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일자	납기일자	공시송달여부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64	부과고지	750313-*******	신*수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382	2025-10-17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65	부과고지	750313-*******	신*수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383	2025-10-17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66	부과고지	750313-*******	신*수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384	2025-10-17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67	부과고지	750313-*******	신*수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385	2025-10-17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68	부과고지	801214-*******	신*환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10	001386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69	부과고지	930103-*******	신*섭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10	001387	2025-10-17	2025-11-30	Y	2025-10-23	주소불명	2025-11-01	2025-11-06	2025-11-19
70	부과고지	851216-*******	신*범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10	001388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폐문부재	2025-11-01	2025-11-06	2025-11-19
71	부과고지	870911-*******	심*섭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10	001389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72	부과고지	681114-*******	안*진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10	001390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선택	반송구분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일자	납기일자	공시송달여부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73	부과고지	660915-*******	양*진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391	2025-10-17	2025-11-30	Y	2025-10-23	수취인불명	2025-11-01	2025-11-06	2025-11-19
74	부과고지	660915-*******	양*진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392	2025-10-17	2025-11-30	Y	2025-10-23	수취인불명	2025-11-01	2025-11-06	2025-11-19
75	부과고지	660915-*******	양*진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393	2025-10-17	2025-11-30	Y	2025-10-23	수취인불명	2025-11-01	2025-11-06	2025-11-19
76	부과고지	660915-*******	양*진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394	2025-10-17	2025-11-30	Y	2025-10-23	수취인불명	2025-11-01	2025-11-06	2025-11-19
77	부과고지	660915-*******	양*진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395	2025-10-17	2025-11-30	Y	2025-10-23	수취인불명	2025-11-01	2025-11-06	2025-11-19
78	부과고지	660915-*******	양*진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396	2025-10-17	2025-11-30	Y	2025-10-23	수취인불명	2025-11-01	2025-11-06	2025-11-19
79	부과고지	660915-*******	양*진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397	2025-10-17	2025-11-30	Y	2025-10-23	수취인불명	2025-11-01	2025-11-06	2025-11-19
80	부과고지	660915-*******	양*진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398	2025-10-17	2025-11-30	Y	2025-10-23	수취인불명	2025-11-01	2025-11-06	2025-11-19
81	부과고지	660915-*******	양*진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399	2025-10-17	2025-11-30	Y	2025-10-23	수취인불명	2025-11-01	2025-11-06	2025-11-19

선택	반송구분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일자	납기일자	공시송달여부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82	부과고지	660915-*******	양*진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400	2025-10-17	2025-11-30	Y	2025-10-23	수취인불명	2025-11-01	2025-11-06	2025-11-19
83	부과고지	830201-*******	오*철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차	2025-10	001403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84	부과고지	680115-*******	유*주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10	001406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폐문부재	2025-11-01	2025-11-06	2025-11-19
85	부과고지	681014-*******	윤*백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10	001408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86	부과고지	910331-*******	이*현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장소 외 주차행위**********이륜차	2025-10	001409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폐문부재	2025-11-01	2025-11-06	2025-11-19
87	부과고지	970113-*******	이*한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이륜차	2025-10	001410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88	부과고지	821017-*******	이*혁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10	001418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89	부과고지	800414-*******	이*희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419	2025-10-17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90	부과고지	820123-*******	이*진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10	001420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선택	반송구분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일자	납기일자	공시송달여부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91	부과고지	740205-*******	이*성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차	2025-10	0001421	2025-10-17	2025-11-30	Y	2025-10-22	이사불명	2025-11-01	2025-11-06	2025-11-19
92	부과고지	830922-*******	이*화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공원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2025-10	0001422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폐문부재	2025-11-01	2025-11-06	2025-11-19
93	부과고지	680912-*******	이*광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2025-10	0001423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94	부과고지	010303-*******	이*표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10	0001424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폐문부재	2025-11-01	2025-11-06	2025-11-19
95	부과고지	930513-*******	이*주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차	2025-10	0001427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96	부과고지	660903-*******	임*식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01433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97	부과고지	660903-*******	임*식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01434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98	부과고지	660903-*******	임*식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01435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99	부과고지	660903-*******	임*식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01436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선택	반송구분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일자	납기일자	공시송달불여부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100	부과고지	890728-*******	장*근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차	2025-10	001438	2025-10-17	2025-11-30	Y	2025-10-28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01	부과고지	650510-*******	장*경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10	001439	2025-10-17	2025-11-30	Y	2025-10-28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02	부과고지	610828-*******	정*순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444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03	부과고지	610828-*******	정*순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445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04	부과고지	871225-*******	정*이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10	001446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05	부과고지	700114-*******	정*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10	001447	2025-10-17	2025-11-30	Y	2025-10-28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06	부과고지	861119-*******	조*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10	001450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07	부과고지	134511-*******	주*****엔시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10	001452	2025-10-17	2025-11-30	Y	2025-10-22	수취인불명	2025-11-01	2025-11-06	2025-11-19
108	부과고지	820613-*******	최*택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457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선택	반송구분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일자	납기일자	공시송달여부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109	부과고지	820613-*******	최*택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458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10	부과고지	480910-*******	최*석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이륜차	2025-10	001467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11	부과고지	660505-*******	최*민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468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12	부과고지	660505-*******	최*민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469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13	부과고지	810511-*******	하*춘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2025-10	001470	2025-10-17	2025-11-30	Y	2025-10-28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14	부과고지	930524-*******	허*길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10	001471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폐문부재	2025-11-01	2025-11-06	2025-11-19
115	부과고지	720312-*******	홍*호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473	2025-10-17	2025-11-30	Y	2025-10-28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16	부과고지	720312-*******	홍*호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474	2025-10-17	2025-11-30	Y	2025-10-28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17	부과고지	720312-*******	홍*호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475	2025-10-17	2025-11-30	Y	2025-10-28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선택	반송구분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일자	납기일자	공시송달여부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118	부과고지	720312-*******	홍*호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476	2025-10-17	2025-11-30	Y	2025-10-28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19	부과고지	720312-*******	홍*호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477	2025-10-17	2025-11-30	Y	2025-10-28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20	부과고지	720312-*******	홍*호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478	2025-10-17	2025-11-30	Y	2025-10-28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21	부과고지	720312-*******	홍*호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479	2025-10-17	2025-11-30	Y	2025-10-28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22	부과고지	720312-*******	홍*호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480	2025-10-17	2025-11-30	Y	2025-10-28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23	부과고지	950819-*******	홍*수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10	001481	2025-10-17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24	부과고지	134211-*******	(주******스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10	001489	2025-10-20	2025-11-30	Y	2025-10-24	이사불명	2025-11-01	2025-11-06	2025-11-19
125	부과고지	660813-*******	고*영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493	2025-10-20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26	부과고지	981109-*******	김*태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10	001498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선택	반송구분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일자	납기일자	공시송달여부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127	부과고지	730815-*******	김*호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499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폐문부재	2025-11-01	2025-11-06	2025-11-19
128	부과고지	730815-*******	김*호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500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폐문부재	2025-11-01	2025-11-06	2025-11-19
129	부과고지	760910-*******	김*경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지동차	2025-10	001502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30	부과고지	460929-*******	김*원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505	2025-10-20	2025-11-30	Y	2025-10-27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31	부과고지	460929-*******	김*원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506	2025-10-20	2025-11-30	Y	2025-10-27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32	부과고지	460929-*******	김*원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507	2025-10-20	2025-11-30	Y	2025-10-27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33	부과고지	460929-*******	김*원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508	2025-10-20	2025-11-30	Y	2025-10-27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34	부과고지	720309-*******	김*완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510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35	부과고지	720309-*******	김*완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511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선택	반송구분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일자	납기일자	공시송달여부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136	부과고지	780327-*******	김*주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514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37	부과고지	780327-*******	김*주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515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38	부과고지	840603-*******	김*중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10	001517	2025-10-20	2025-11-30	Y	2025-10-23	수취인불명	2025-11-01	2025-11-06	2025-11-19
139	부과고지	770831-*******	도*혜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2025-10	001521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40	부과고지	770911-*******	박*선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524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41	부과고지	911009-*******	박*진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10	001527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42	부과고지	720306-*******	백*호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10	001532	2025-10-20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43	부과고지	760313-*******	신*수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534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44	부과고지	760313-*******	신*수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535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선택	반송구분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일자	납기일자	공시송달여부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145	부과고지	920103-*******	신*나	10-288706	[서일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10	001536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폐문부재	2025-11-01	2025-11-06	2025-11-19
146	부과고지	660915-*******	양*진	10-288706	[서일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537	2025-10-20	2025-11-30	Y	2025-10-24	수취인불명	2025-11-01	2025-11-06	2025-11-19
147	부과고지	800908-*******	원*희	10-288706	[서일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10	001539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폐문부재	2025-11-01	2025-11-06	2025-11-19
148	부과고지	970403-*******	윤*섭	10-288706	[서일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10	001541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폐문부재	2025-11-01	2025-11-06	2025-11-19
149	부과고지	971103-*******	이*호	10-288706	[서일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10	001545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50	부과고지	961014-*******	이*희	10-288706	[서일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10	001550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폐문부재	2025-11-01	2025-11-06	2025-11-19
151	부과고지	610924-*******	이*규	10-288706	[서일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10	001551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폐문부재	2025-11-01	2025-11-06	2025-11-19
152	부과고지	660903-*******	임*식	10-288706	[서일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553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53	부과고지	710510-*******	임*수	10-288706	[서일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10	001554	2025-10-20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선택	반송구분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일자	납기일자	공시송달여부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154	부과고지	610828-*******	정*순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555	2025-10-20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55	부과고지	830126-*******	정*영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10	001558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폐문부재	2025-11-01	2025-11-06	2025-11-19
156	부과고지	820613-*******	최*택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563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57	부과고지	660505-*******	최*민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565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58	부과고지	660505-*******	최*민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566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59	부과고지	750907-*******	홍*익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569	2025-10-20	2025-11-30	Y	2025-10-23	수취인불명	2025-11-01	2025-11-06	2025-11-19
160	부과고지	720312-*******	홍*호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570	2025-10-20	2025-11-30	Y	2025-10-27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61	부과고지	720312-*******	홍*호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571	2025-10-20	2025-11-30	Y	2025-10-27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62	부과고지	600611-*******	전*수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오물 또는 폐기물투기	2025-10	001576	2025-10-20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선택	반송구분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일자	납기일자	공시송달여부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163	부과고지	860218-*******	한*이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10	001581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64	부과고지	820604-*******	황*희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10	001582	2025-10-20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65	부과고지	521208-*******	황*성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10	001583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66	부과고지	600320-*******	허*우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10	001587	2025-10-20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67	부과고지	880628-*******	성*모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10	001590	2025-10-20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68	부과고지	891230-*******	박*지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10	001595	2025-10-20	2025-11-30	Y	2025-10-24	이사불명	2025-11-01	2025-11-06	2025-11-19
169	부과고지	660713-*******	최*기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10	001596	2025-10-20	2025-11-30	Y	2025-10-24	수취인불명	2025-11-01	2025-11-06	2025-11-19
170	부과고지	960707-*******	김*선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10	001598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71	부과고지	040227-*******	NG*********NH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10	001599	2025-10-20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선택	반송구분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일자	납기일자	공시송달여부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172	부과고지	110111-*******	(주******통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이륜차	2025-10	001601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73	부과고지	810421-*******	장*라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10	001605	2025-10-20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74	부과고지	921223-*******	한*향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 주차행위*********자동차	2025-10	001607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75	부과고지	820228-*******	조*석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이륜차	2025-10	001612	2025-10-20	2025-11-30	Y	2025-10-23	수취인불명	2025-11-01	2025-11-06	2025-11-19
176	부과고지	940612-*******	박*찬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지정된장소외의장소에서의주차행위*********이륜차	2025-10	001613	2025-10-20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77	부과고지	780327-*******	김*주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616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78	부과고지	660505-*******	최*민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618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79	부과고지	660813-*******	고*영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619	2025-10-20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80	부과고지	770213-*******	정*민	10-288706	[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620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선택	반송구분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일자	납기일자	공시송달물여부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181	부과고지	681224-*******	이*옥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621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82	부과고지	720309-*******	김*완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622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83	부과고지	750907-*******	홍*익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624	2025-10-20	2025-11-30	Y	2025-10-23	수취인불명	2025-11-01	2025-11-06	2025-11-19
184	부과고지	750313-*******	신*수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625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85	부과고지	730815-*******	김*호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626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폐문부재	2025-11-01	2025-11-06	2025-11-19
186	부과고지	770911-*******	박*선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상행위	2025-10	001628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87	부과고지	680130-*******	이*재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성행위	2025-10	001631	2025-10-20	2025-11-30	Y	2025-10-24	주소불명	2025-11-01	2025-11-06	2025-11-19
188	부과고지	910623-*******	김*완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성행위	2025-10	001634	2025-10-20	2025-11-30	Y	2025-10-24	수취인불명	2025-11-01	2025-11-06	2025-11-19
189	부과고지	700917-*******	유*원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성행위	2025-10	001636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선택	반송구분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일자	납기일자	공시송달여부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190	부과고지	590417-*******	이*동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5-10	001639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91	부과고지	690613-*******	김*희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5-10	001641	2025-10-20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92	부과고지	681224-*******	이*옥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5-10	001644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93	부과고지	730815-*******	김*호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5-10	001646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폐문부재	2025-11-01	2025-11-06	2025-11-19
194	부과고지	590417-*******	이*동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5-10	001647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95	부과고지	610828-*******	정*순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5-10	001648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96	부과고지	750117-*******	김*선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5-10	001650	2025-10-20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97	부과고지	750907-*******	홍*익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5-10	001651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198	부과고지	770911-*******	박*선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5-10	001652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선택	반송구분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일자	납기일자	공시송달물여부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199	부과고지	770911-*******	박*선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5-10	001652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200	부과고지	750313-*******	신*수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5-10	001653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201	부과고지	790807-*******	정*만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5-10	001655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202	부과고지	660903-*******	임*식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5-10	001658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203	부과고지	710928-*******	심*보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5-10	001659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204	부과고지	780327-*******	김*주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5-10	001660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205	부과고지	570604-*******	최*일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5-10	001661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206	부과고지	720309-*******	김*완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5-10	001663	2025-10-20	2025-11-30	Y	2025-10-27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207	부과고지	680704-*******	조*화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5-10	001665	2025-10-20	2025-11-30	Y	2025-10-29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선택	반송구분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일자	납기일자	공시송달여부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208	부과고지	561025-*******	임*순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5-10	001666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209	부과고지	520103-*******	김*권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5-10	001668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210	부과고지	790207-*******	한*민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5-10	001669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211	부과고지	741001-*******	이*언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5-10	001673	2025-10-20	2025-11-30	Y	2025-10-24	수취인불명	2025-11-01	2025-11-06	2025-11-19
212	부과고지	610828-*******	정*순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5-10	001677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213	부과고지	720620-*******	윤*선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5-10	001678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214	부과고지	851017-*******	명*환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5-10	001680	2025-10-20	2025-11-30	Y	2025-10-24	이사불명	2025-11-01	2025-11-06	2025-11-19
215	부과고지	750210-*******	김*식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5-10	001682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216	부과고지	670115-*******	정*칠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5-10	001684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선택	반송구분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일자	납기일자	공시송달여부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217	부과고지	580609-*******	이*헌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5-10	001686	2025-10-20	2025-11-30	Y	2025-10-27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218	부과고지	020724-*******	이*호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5-10	001687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219	부과고지	710611-*******	최*혁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5-10	001690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220	부과고지	630423-*******	이*복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5-10	001691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폐문부재	2025-11-01	2025-11-06	2025-11-19
221	부과고지	480814-*******	서*인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5-10	001692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222	부과고지	820613-*******	최*택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5-10	001693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223	부과고지	620707-*******	강*성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5-10	001694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224	부과고지	821017-*******	윤*완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5-10	001696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폐문부재	2025-11-01	2025-11-06	2025-11-19
225	부과고지	741114-*******	박*주	10-288706	[서일빈]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5-10	001697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선택	반송구분	주민(법인)번호	성명/법인명	세목코드	세목명	과세대상	과세년월	과세번호	부과일자	납기일자	공시송달여부	반송일자	반송사유	공시송달일	공시시작일	공시종료일
226	부과고지	741114-*******	박*주	10-288706	[서일반]서울특별시한강공원보전및이용관련위반과태료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2025-10	001698	2025-10-20	2025-11-30	Y	2025-10-30	기타	2025-11-01	2025-11-06	2025-11-19

정 정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094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정정) 열람공고

2021년 2월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마포구 성산동 670 도면과 지정대상지가 일치하지 않아 이의 정정을 위하여「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정정)사유 : ’ 21.2.25. 산사태취약지역으로 고시하였으나 도면과 지정대상지 가 일치하지 않아 이를 정정하고자 함(【붙임 1】, 【붙임 2】)
   가. 지정(정정)대상지 :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670

2. 지정(정정)대상지의 소재 및 면적,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1】과 같음

3. 지정(정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4. 지정(정정) 예정 연월일 : 2025. 12.~2026. 1.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 3】과 같음

6. 열람공고기간 : 2025. 11. 6.~ 2025. 12. 6.

7. 의견제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정정) 열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나 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붙임 4】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시 산지방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산지방재과(☎02-2133-2182), 서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02-6438-21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정정) 대상지 토지 조서

구 분	토지 소재지		지목	지적 (㎡)	지정면적 (㎡)	소유자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성 명	주 소	
기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670 일대	공원	106,302.5	31,00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성산동)	
변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670	공원	106,302.5	31,000	서울특별시	-	지번 정정

【붙 임 2】

번호: 2021년도 제 3 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구역 도면(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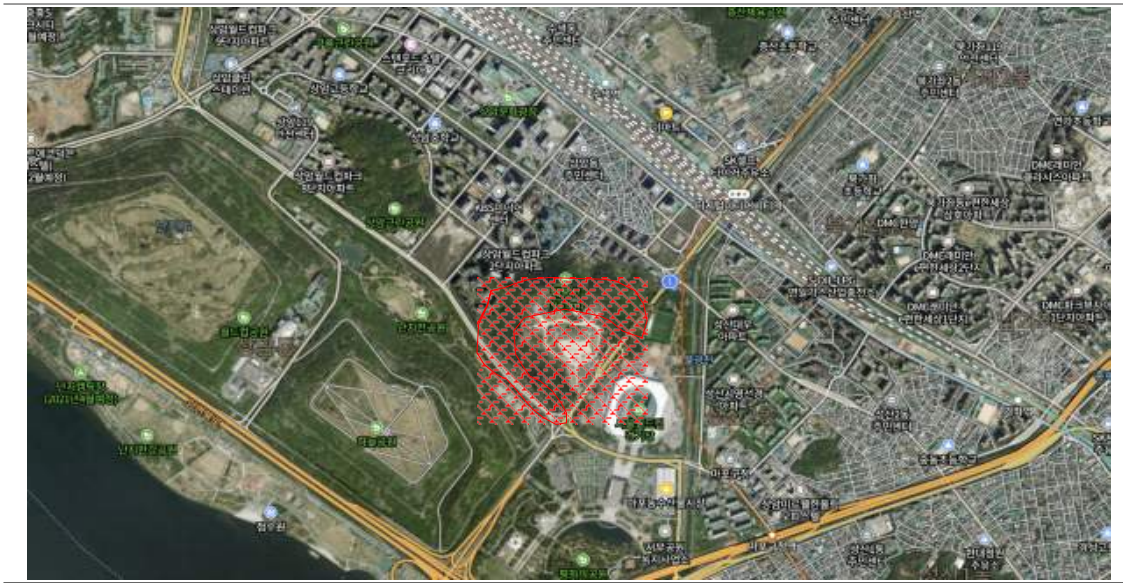

〈보기〉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기정)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고시번호·일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670 일대	공원	106,302.5	31,000	제2021-106호·2021.2.25.

번호: 2025년도 제 1 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정정) 구역 도면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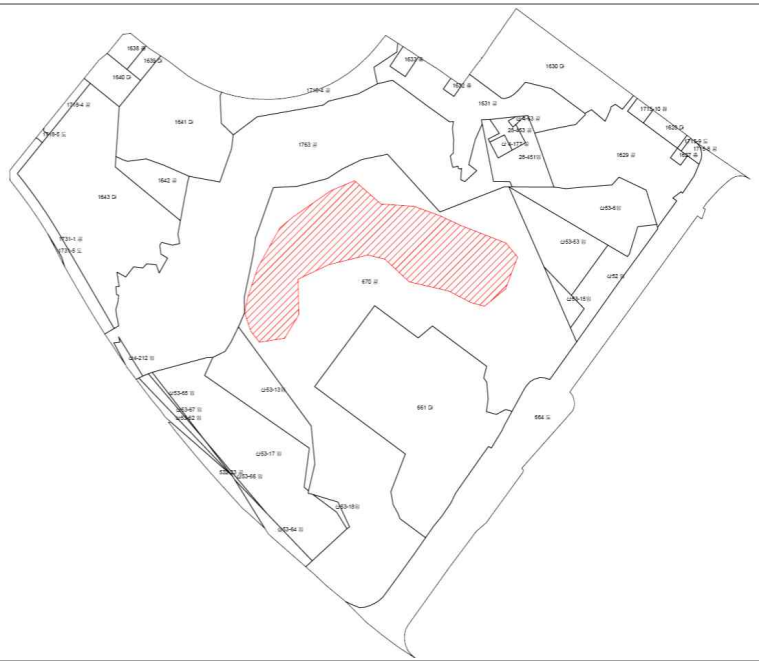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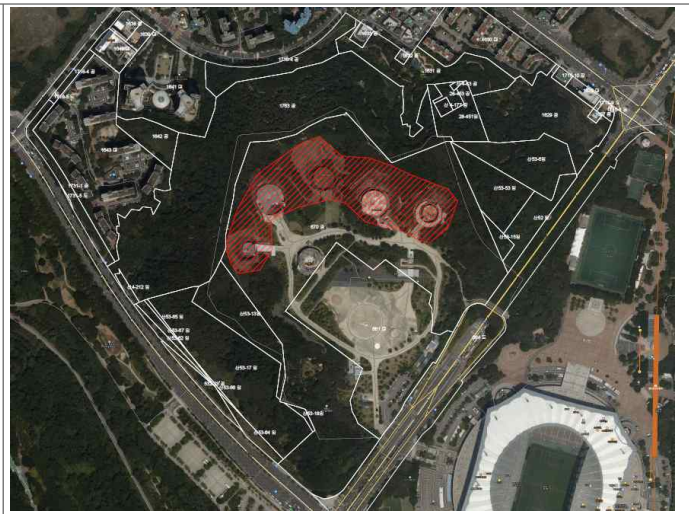

〈보기〉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변경)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시·군,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	지정 면적(㎡)	고시번호·일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670	공원	106,302.5	31,000	

【붙 임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산림보호법」 발췌

제45조의10(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 · 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 · 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 · 금지하거나 보수 · 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54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5조의10을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 ·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⑥ 제2항을 위반한 자로서 그 피해 가격이 산지 가격으로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상(情狀)에 따라 구류(拘留)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 수 있다.

⑦ 상습적으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⑧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붙 임 4】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5.12.3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정정)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 이유		
지정 예정지	소재지	
	면적	㎡
이의신청 면적		㎡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 조사 확인	→	심 의	→	결정 통지
신청인				처 리 기 관: 지역산사태예방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기관의 장
선람

공람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55 문의 : ☎120